맑 스

자 본 론

제 1 권

전 세계 무산자는 련합하라!

맑 스

자 본 론

제 1 권

중국민족어문번역센터 중역

민 족 출 판 사

범 례

1. 본문과 부록중의 문헌은 집필 또는 발표한 시간의 순서대로 배렬했다. 개별적인 경우에 한부의 저작 또는 문헌 시리즈의 완전성과 유기적인 련계를 유지하기 위해 배렬순서를 융통성있게 처리했다.

2. 차례와 본문중에 별표 * 가 있는 표제들은 모두 편자가 단것이다.

3. 인용문에 있는 거듭인용표 〈 〉 내의 문자와 문장부호는 맑스 또는 엥겔스가 단것이고 인용문중에 찍힌 방점 ∘ 은 맑스 또는 엥겔스가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단것이다.

4. 차례와 본문중에 있는 꺾쇠괄호 [ ] 내의 문자는 편자가 첨가한것이다.

5. 편자 주석이라 밝히지 않은 각주는 맑스 또는 엥겔스가 단 원주이다.

차 례

칼 맑스 제1판 서문 7-14
칼 맑스 제2판 발문 15-26
칼 맑스 프랑스문판 서문과 발문 27-28
프리드리히 엥겔스 제3판 서문 31-34
프리드리히 엥겔스 영문판 서문 35-40
프리드리히 엥겔스 제4판 서문 41-49

제 1 부
자본의 생산과정

제 1 편
상품과 화폐

제 1 장 상품 53-122
1. 상품의 두 요인—사용가치와 가치(가치 실체, 가치량) 53
2. 상품에 구현되여있는 로동의 이중성 62
3. 가치형태 또는 교환가치 71
A. 간단한, 개별적인 또는 우연적인 가치형태 72
(1) 가치표현의 량극—상대적가치형태와 등가형태 72
(2) 상대적가치형태 74
(a) 상대적가치형태의 내용 74
(b) 상대적가치형태의 량적규정성 79

(3) 등가형태 ····· 83
(4) 단순한 가치형태의 총체 ····· 90
B. 전체적인 또는 전개된 가치형태 ····· 93
(1) 전개된 상대적가치형태 ····· 93
(2) 특수한 등가형태 ····· 95
(3) 전체적인 또는 전개된 가치형태의 결함 ····· 95
C. 일반적가치형태 ····· 97
(1) 가치형태의 변화된 성격 ····· 97
(2) 상대적가치형태와 등가형태의 발전관계 ····· 100
(3) 일반적가치형태로부터 화폐형태에로의 이행 ····· 103
D. 화폐형태 ····· 104
4. 상품의 물신숭배성과 그 비밀 ····· 105
제 2 장 교환과정 ····· 123-135
제 3 장 화폐 또는 상품류통 ····· 136-204
1. 가치척도 ····· 136
2. 류 통 수 단 ····· 149
(a) 상품의 변태 ····· 149
(b) 화폐의 류통 ····· 164
(c) 주화. 가치기호 ····· 177
3. 화폐 ····· 184
(a) 축장화폐의 형성 ····· 184
(b) 지불수단 ····· 191
(c) 세계화폐 ····· 200

제 2 편
화폐의 자본에로의 전화

제 4 장 화폐의 자본에로의 전화 ····· 205-246

1. 자본의 일반적공식 ····· 205
2. 일반적공식의 모순 ····· 218
3. 로동력의 구매와 판매 ····· 233

제 3 편
절대적잉여가치의 생산

제 5 장 로동과정과 가치증식과정 ····· 247-277
1. 로동과정 ····· 247
2. 가치증식과정 ····· 259
제 6 장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 278-294
제 7 장 잉여가치률 ····· 295-321
1. 로동력의 착취도 ····· 295
2. 생산물의 비률적부분들에서의 생산
물가치의 표현 ····· 307
3. 씨니어의 《마지막 1시간》 ····· 312
4. 잉여생산물 ····· 320
제 8 장 로동일 ····· 322-420
1. 로동일의 한계 ····· 322
2. 잉여로동에 대한 탐욕. 공장주와 령주 ····· 328
3. 착취의 법적제한이 없는 영국의 제 산업부문 ····· 339
4. 주간로동과 야간로동. 교대제 ····· 357
5. 표준로동일획득을 위한 투쟁. 14세기중엽에서
17세기말엽까지의 로동일연장에 관한 강제법 ····· 368
6. 표준로동을 위한 투쟁. 법률에 의한 로동시간의
강제적제한. 1833~1864년의 영국의 공장립법 ····· 385
7. 표준로동일획득을 위한 투쟁. 영국의
공장립법이 다른 나라에 미친 반작용 ····· 413

제 9 장 잉여가치률과 잉여가치총량 ····· 421-433

제 4 편
상대적잉여가치의 생산

제 10 장 상대적잉여가치의 개념 ····· 435-448
제 11 장 협업 ····· 449-468
제 12 장 분업과 공장제수공업 ····· 469-513
1. 공장제수공업의 이중적기원 ····· 469
2. 부분로동자와 그의 도구 ····· 473
3. 공장제수공업의 두 기본형태 —이종적공장제
수공업과 유기적공장제수공업 ····· 477
4. 공장제수공업내부에서의 분업과
사회내부에서의 분업 ····· 489
5. 공장제수공업의 자본주의적성격 ····· 500
제 13 장 기계와 대공업 ····· 514-688
1. 기계의 발전 ····· 514
2. 기계로부터 생산물에로의 가치이전 ····· 534
3. 기계적생산이 로동자에게 미치는 직접적영향 ····· 545
(a) 자본에 의한 보조로동력의 취득.
녀성로동과 아동로동 ····· 545
(b) 로동일의 연장 ····· 556
(c) 로동의 강화 ····· 564
4. 공장 ····· 577
5. 로동자와 기계와의 투쟁 ····· 587
6. 기계에 의하여 구축되는 로동자들에 관한 보상리론 ····· 600
7. 기계적생산의 발전에 따르는 로동자의 배척과
흡인. 면방직업에서의 공황 ····· 612

8. 대공업으로 인한 공장제수공업, 수공업,
가내로동의 혁명 ····· 628
(a)수공업과 분업에 기초한 협업의 폐절 ····· 628
(b) 공장제수공업과 가내로동에
대한 공장제도의 반작용 ····· 631
(c) 현대적공장제수공업 ····· 633
(d) 현대적가내로동 ····· 637
(e) 현대적공장제수공업 및 현대적가내 로동의
대공업에로의 이행. 이러한 생산방식에의
공장법의적용에 의한 이 혁명의 촉진 ····· 642
9. 공장립법(보건 및 교육 조항). 영국에서의
그의 일반화 ····· 656
10. 대공업과 농업 ····· 685

제 5 편
절대적 및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 14 장 절대적 및 상대적 잉여가치 ····· 689-703
제 15 장 로동력의 가격과 잉여가치의
량적변동 ····· 704-719
I. 로동일의 길이와 로동강도가 변하지 않고 (주어진
것이고)로동의 생산력이 변하는 경우 ····· 705
II. 로동일과 로동생산력이 변하지 않고
로동강도가 변하는 경우 ····· 711
III. 로동생산력과 로동강도가 변하지 않고
로동일이 변하는 경우 ····· 713
IV. 로동의 지속시간, 생산력 및 강도가
동시에 변하는 경우 ····· 715
제 16 장 잉여가치률의 여러가지 공식 ····· 720-725

제 6 편
로 임

제 17 장 로동력의 가치 또는 가격의
로임에로의 전화 ····· 727-737
제 18 장 시간제임금 ····· 738-748
제 19 장 도급제임금 ····· 749-759
제 20 장 로임의 국민적차이 ····· 760-768

제 7 편
자본의 축적과정

제 21 장 단순재생산 ····· 769-786
제 22 장 잉여가치의 자본에로의 전화 ····· 787-831
1. 확대된 규모에서의 자본주의적생산과정.
상품생산의 소유법칙의 자본주의적
취득법칙으로의 전화 ····· 787
2.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에 관한
정치경제학상의 그릇된 견해 ····· 800
3. 자본과 수입으로의 잉여가치의 분할. 절욕론 ····· 804
4. 자본과 수입으로의 잉여가치의 분할비률과는
관계없이 축적의 규모를 규정하는 몇가지
사정. 로동력의 착취도. 로동의 생산력.
사용되는 자본과 소비되는 자본간의
차액의 증대. 선대자본의 크기 ····· 814
5. 소위 로동기금 ····· 827
제 23 장 자본주의적축적의 일반적법칙 ····· 832-960
1. 자본구성이 변함없는 경우에 축적에

따르는 로동력수요의 증가 ····· 832
2. 축적과 그에 수반되는 집적의 진행행정에서의
가변자본부분의 상대적감소 ····· 843
3. 상대적과잉인구 또는 산업예비군의 루진적생산 ····· 852
4. 상대적과잉인구의 각이한 존재형태.
자본주의적축적의 일반적법칙 ····· 868
5. 자본주의적축적의 일반적법칙의 례증 ····· 878
(a) 1846~1866년의 잉글랜드 ····· 878
(b) 브리텐공업로동계급중 낮은
임금을 받는 계층 ····· 886
(c) 류랑민 ····· 898
(d) 로동계급중 최고의 지불을 받는 부분에
미치는 공황의 영향 ····· 903
(e) 브리텐의 농업무산계급 ····· 909
(f) 아일랜드 ····· 941
제 24 장 소위 시초축적 ····· 961-1025
1. 시초축적의 비밀 ····· 961
2. 농촌주민으로부터의 토지수탈 ····· 965
3. 15세기말이후의 피수탈자에 대한 피비린 립법.
임금인하를 위한 제 법률 ····· 987
4. 자본주의적차지농업가의 발생 ····· 997
5. 공업에 대한 농업혁명의 반작용.
산업자본을 위한 국내시장의 형성 ····· 1001
6. 산업자본가의 발생 ····· 1006
7. 자본주의적축적의 력사적경향 ····· 1021
제 25 장 현대식민리론 ····· 1026-1039

주 해 ····· 1043-1I25

사진

칼 맑스의 사진(1867년) ····· 3
엥겔스에게 보내는 맑스의 편지(1867년 8월 16일) ····· 5
《자본론》, 제1권, 독일문판, 제1판 속표지 ····· 9
《자본론》, 제1권, 프랑스문판, 출판자 라샤뜨르
에게 보내는 맑스의 편지 ·····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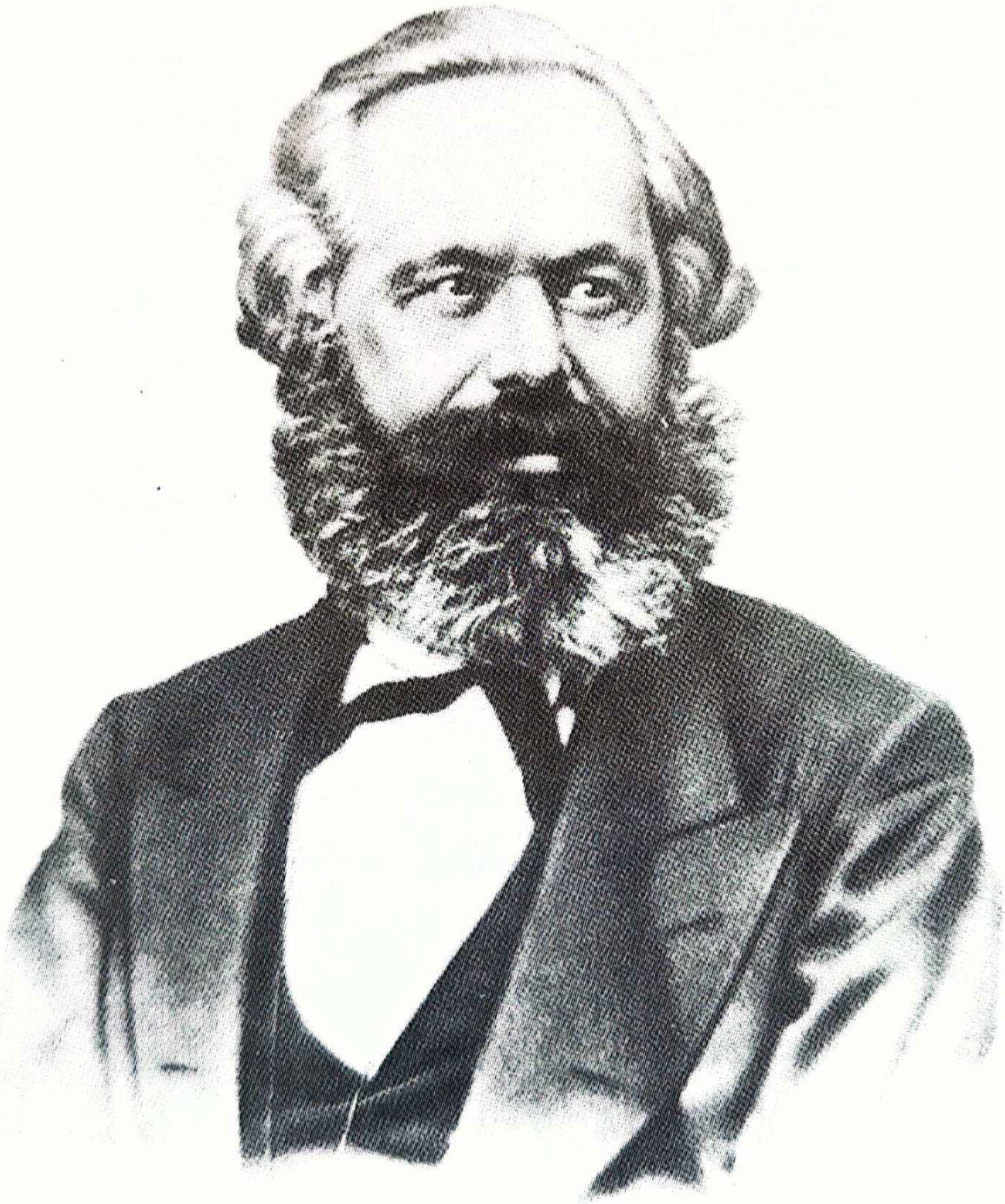
맑 스

자 본 론

정 치 경 제 학 비 판

제 1 권

제1부 자본의 생산과정



엥겔스에게 보내는 맑스의 편지 1867년 8월 16일

나의 잊을수 없는 벗
무산계급의 용감하고 충실하고 고결한 선봉투사

윌헬름 웰프에게

이 책을 드림
1809년 6월 21일 타르나우에서 탄생
1864년 5월 9일 만체스터에서 망명중에 사망

제 1 판 서 문[1]

내가 이제 제1권을 세상에 내놓는 이 저작은 1859년에 간행된 나의 저작 《정치경제학비판》의 속편이다. 처음저작과 속편간의 장기간에 걸친 중단은 거듭 나의 사업을 중단시킨 다년간의 병때문이였다.

먼저 나온 그 저작의 내용은 이 책 제1장에 요약되여있다.[2] 이렇게 한것은 비단 전후 련관과 완전을 기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였다. 서술이 개선되여있다. 이전 저작에서는 그저 간단히 언급하는데 그친 많은 점들이 이 저작에서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더 상세히 전개되여있고 또 반대로 거기에서는 상세하게 전개된 점들이 여기에서는 그저 간단하게 언급되여있다. 가치리론 및 화폐리론의 력사에 관한 부분이 여기에서는 당연히 완전히 삭제되였다.[3] 그러나 처음저작의 독자는 이 책 제1장의 주들에서 이 두 리론의 력사에 대한 새로운 자료들을 발견하게 될것이다.

무엇이든지 처음이 어렵다는것은 어느 과학에나 들어맞는 말이다. 그러므로 제1장 특히 상품분석이 들어있는 절을 리해하기가 가장 힘들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치실체와 가치량의 분석에 관하여 말한다면 나는 이 분석을 될수록

알기 쉽게 하였다.(1) 화폐형태를 완성된 모습으로 하는 가치형태는 극히 무내용하며 또 간단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혜는 2,000년 이상이나 이 가치형태를 해명해보려고 노력해왔으나 여태껏 성공①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편 훨씬 더 내용이 풍부하고 복잡한 형태의 분석에는 적어도 대체적으로 성공한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발육한 신체는 신체의 세포보다 연구하기가 더 쉽기때문이다. 그뿐만아니라 경제적 형태의 분석에서는 현미경도 화학시약도 소용이 없다. 추상력이 이것들을 대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자산계급사회에서는 로동생산물의 상품형태 또는 상품의 가치형태가 경제적세포형태이다. 교양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치형태의 분석은 아주 사소한것을 캐고드는것으로 보일것이다. 그것은 사실 사소한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례컨대 현미해부학에서 문제로 삼는 그러한 종류의 사소한것이다.

그러므로 가치형태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면 이 책을 리해하기 어렵다고 비난할수 없을것이다. 나는 물론 무엇이건 새로운것을 배우려고 하며 따라서 또 자기로서 사색하려고 하는 독자들을 두고 말하는것이다.

물리학자는 자연과정을 가장 전형적인 형태에서, 교란적인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상태에서 그것을 관찰하든가 또는

---

(1) 이렇게 하는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것은 슐째-델리츠를 반박한 F. 라쌀의 저작중 저자가 이 제목에 관한 나의 연구의 《정신적정수》를 제공한다고 언명하고있는 그 부분까지 중대한 오해를 포함하고있기때문이다. 겸해서 한마디 한다면 F. 라쌀은 자기의 경제학적저작의 모든 일반적인 리론적명제들, 례컨대 자본의 력사적성격, 생산관계와 생산방식간의 련관 등등에 관한 명제들을 거의 축자적으로, 내가 만들어낸 술어에 이르기까지, 그것도 출처도 밝히지 않고 나의 저작에서 차용하고있는데 이것은 물론 선전상의 고려에서 나온것이였을것이다. 나는 물론 그의 세부적론의나 실지응용을 두고 말하는것이 아니다. 그런것들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4]

① 이 책 74~75페지를 보라. —편집자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Oekonomie.

Von

Karl Marx.

Erster Band.

Buch 1: Der Produktionsprocess des Kapitals.

Das Rooht dor Uewbersetzung wird vorbobalton.

Hamburg
Verlag von Otto Meissner.
1867.

New-York: L. W. Schmidt. 24 Barclay-Street.

《자본론》, 제1권, 독일문판, 제1판 속표지

가능하다면 과정의 순수한 진행을 보장할수 있는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한다. 이 저서에서 내가 연구하는것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며 그에 적응하는 생산관계와 교환관계이다. 이 생산방식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고있는 나라는 이때까지는 영국이다. 영국이 나의 리론전개에서 주요한 례증으로 되는 리유는 여기에 있다. 그러나 만약 독일의 독자가 누구든지 영국의 공업 및 농업 로동자들의 형편을 보고 위선적으로 눈살을 찌프리든가 또는 독일에서는 사태가 결코 그렇게는 나쁘지 않다고 락관적으로 자기를 위안하려 한다면 나는 그에게 웨쳐야 하겠다. 이것은 바로 그대를 두고 하는 말이다[5]! 라고.

자본주의적생산의 자연법칙들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적대관계의 발전정도가 높은가 낮은가 하는것은 여기에서는 절대로 문제로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 법칙들자체에 있으며 움직일수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작용하며 또 관철되는 이 경향에 있다. 산업이 더 발전한 나라는 덜 발전한 나라에다 그 나라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은 그만두기로 하자.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적생산이 완전히 수립되여있는 곳에서는, 례컨대 본래의 공장에서는 공장법이라는 평형추가 없는탓으로 사태는 영국보다 훨씬 더 나쁘다. 기타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서유럽 대륙의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으로 해서뿐만아니라 또한 그 발전의 부족으로 해서도 고통을 받고있다. 현대의 재난이외에도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일련의 재난이 우리를 억누르고있는데 이러한 재난은 시대에 뒤떨어진 진부한 생산방식이 시세에 맞지 않는 사회정치적관계를 수반하여 존속하고있는데서 생겨난것이다. 우리는 산것

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있을뿐만아니라 죽은것에 의해서도 고통을 받고있다.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붙잡고있다!

독일과 서유럽대륙의 기타 나라들의 사회통계는 영국의 사회통계에 비하면 매우 빈약하다.[6] 그렇지만 그 사회통계는 그 배후에 메두사의 대가리가 있다는것을 느끼기에 충분할만큼은 면사포를 걷어올려주고있다. 만약 우리 나라 정부들이나 의회들이 영국에서처럼 경제형편에 관한 정기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면, 만약 영국에서처럼 이 위원회에 진상을 구명할 그러한 전권이 부여된다면, 만약 영국의 공장감독관이나 《공중위생》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영국의 의사나 녀성, 아동의 착취정형, 주택, 영향상태 등등에 대한 영국의 조사위원과 같은 그러한 전문지식이 있고 편견없고 결단력있는 사람들을 이 목적을 위하여 발견할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자신의 사태에 깜짝 놀랄것이다. 페르쎄우스는 괴물을 추격하기 위하여 도깨비감투를 썼다. 그런데 우리는 괴물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하여 도깨비감투를 푹 눌러쓰고 눈과 귀를 가리우고있다.

이런 점에서 자기를 속여서는 안된다. 18세기의 미국독립전쟁[7]이 유럽의 중간계급에게 경종을 울린것과 마찬가지로 19세기의 미국남북전쟁[8]은 유럽의 로동계급에게 경종을 울렸다. 영국에서는 변혁과정이 이미 뚜렷이 눈에 뜨이게 되였다. 일정한 정도에 도달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대륙에 반영될것이다. 대륙에서는 그것은 로동계급자체의 발전정도에 따라 더 잔인한 형태를 취하든가 또는 더 인도적인 형태를 취하든가 할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지배계급은 더 고상한 동기와는 별개로 그들자신의 리해관계로 하여 부득이 로동계급의 발전을 방해하며 법률로 처리할수 있는 일체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을수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나는 이 책에서 영국의 공장립법의 력사와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그처럼 많은 지면을 들여 상세히 서술한것이다. 어떠한 나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배워야 하며 또 배울수 있다. 한 사회는 비록 자기운동의 자연법칙을 탐색하였다 하더라도—그런데 현대사회의 경제적운동법칙을 폭로하는것이 본 저작의 종국적목적이다—자연적인 발전계단을 뛰여넘을수 없으며 법령으로 그것을 폐지할수도 없는것이다. 그러나 그 사회는 분만의 진통을 단축하며 경감할수는 있다.

있을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한마디 말하여두겠다. 자본가와 지주의 모습을 나는 결코 장미빛으로 그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인간이 문제로 되는것은 오직 그들이 경제적범주의 인격화로, 일정한 계급적관계와 리해관계의 담당자로 되는 한에서이다. 경제적사회구성체의 발전을 자연사적과정으로 보는 나의 관점으로서는 다른 어떠한 관점보다도 더 개인에게 제 관계의 책임을 지울수 없다. 개인은 주관적으로는 아무리 제 관계를 초월하고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의연히 제 관계의 산물인것이다.

정치경제학령역에서 자유로운 과학적연구는 다른 모든 령역에서 부딪칠수 있는 그러한 적들과만 부딪치는것이 아니다. 정치경제학이 취급하는 자료의 독특한 성질은 자유로운 과학적연구를 반대하는 전장에 인간의 가슴에서 가장 맹렬하고 가장 저렬하고 가장 추악한 감정을, 사적리익의 복수의 녀신을 불러들인다. 례컨대 영국의 고교회파[9]는 그의 39개 교조[10]중의 38개에 대한 공격은 용서할지언정 그의 화폐수입의 39분의 1에 대한 공격은 용서하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무신론까지도 전통적인 소유관계에 대한 비판에 비하면 경미한

과실인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하나의 진보가 있다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례컨대 최근 몇주일내에 발표된 청서[11] 《산업문제와 로동조합문제에 관한 녀왕의 재외사절과의 통신》을 지적한다. 영국녀왕의 재외대표자들이 이 통신에서 아주 솔직하게 말하기를, 독일에서나 프랑스에서나 요컨대 유럽대륙의 어느 문명국에서나 자본과 로동간의 현존하는 제 관계의 변화가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명백해지고있으며 또 불가피한것이라고 하였다. 동시에 대서양 저쪽에서도 북아메리카 합중국 부대통령 웨이드씨가 공개집회에서, 노예제도의 폐지 후에는 자본관계와 토지소유관계의 변화가 일정에 올랐다고 언명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시대의 징조로서 이 징조는 자포로도, 흑의로도 감출수 없는것이다. 이것은 래일이라도 기적이 일어나리라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의 사회가 견고한 결정체가 아니라 변화할수 있으며 또 부단한 변화과정에 있는 유기체라는 예감이 지배계급내부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이 저작의 제2권은 자본의 류통과정(제2부)과 자본의 총과정의 제 형태(제3부)를 취급하게 될것이며 마지막 제3권(제4부)은 리론의 력사를 취급하게 될것이다.[12]

나는 과학적비판에서 나온 의견이라면 무엇이든지 환영한다. 그러나 내가 한번도 양보한 일이 없는 소위 여론이라는 편견에 대해서는 위대한 플로렌스인의 말이 의연히 나의 좌우명으로 될것이다.

제 갈길을 가라, 남이야 뭐라든![13]

칼 맑스

1867년 7월 25일, 런던에서

제 2 판 발 문

나는 우선 제1판 독자들에게 제2판에 가한 수정에 대하여 말해야 하겠다. 얼핏 보아도 알수 있는바와 같이 편장들이 일층 알기 쉽게 구분되여있다. 추가한 주는 모두 제2판 주라고 밝히였다. 본문자체에 관하여 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다.

제1장 제1절에서는 일체 교환가치가 표현되는 등식의 분석을 통하여 가치를 이끌어내는것이 과학적으로 일층 엄밀하게 진행되였으며 또 제1판에서는 간단히 언급한데 지나지 않았던, 가치실체와 사회적필요로동시간에 의한 가치량의 규정과의 사이의 련관이 명백하게 강조되였다. 제1장 제3절(가치형태)은 완전히 개작되였다. 이것은 제1판에서 서술이 이중으로 되여있었기때문에 필요하게 되였다. 一부언해두지만 이 이중적서술은 나의 벗인 한노베르 출신 L. 쿠겔만의사의 권고에 따라 그렇게 한것이였다. 1867년 봄에 내가 그를 방문하였을 때에 함부르그로부터 초교지가 도착하였는데 그때 그는 대다수의 독자를 위해서 가치형태의 보충적인, 일층 강의식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나에게 납득시켰던것이다. 一제1장의 마지막 절 《상품의 물신숭배성과 그 비밀》은 대부분 개작되였다. 제3장 제1절(가치척도)은 면밀하게 수정되였다.

그 리유는 제1판에서 이 절은 독자들이 《정치경제학비판》(1859년 베를린판)에 있는 설명을 참조하리라고 생각하여 대충 서술하였던 까닭이다. 제7장 특히 제2절은 많이 개작되였다.

때로는 순전히 문체를 고친 곳도 군데군데 있는데 이러한 원문의 수정을 일일이 다 지적하는것은 쓸데없는 일일것이다. 이러한 수정은 본서 전체에 걸쳐 어디나 다 있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빠리에서 발간되고있는 프랑스문번역[14]을 교열하면서 독일문원본의 어떤 부분들에 대하여 어떤 개소는 더 철저히 개작해야 하며 또 어떤 개소는 문체를 더 고치거나 또는 우연적인 착오를 더 면밀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렇게 할 시간이 나에게는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긴급한 사업을 하고있던 1871년 가을에야 책이 다 팔려서 1872년 1월에는 제2판인쇄를 시작하여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기때문이다.

《자본론》이 독일로동계급의 광범한 층에게 급속히 리해되게 된것은 나의 로력에 대한 최고의 보수이다. 경제문제에서는 자산계급적립장에 서있는 사람인 윈의 공장주 마이에르씨는 프로씨아—프랑스전쟁[15]시에 간행된 한 소책자[16]에서, 독일인의 세습재산이라고 인정되여온 탁월한 리론적사색능력은 독일의 소위 유식계급에게서는 완전히 소멸되였으나 그대신 독일의 로동계급속에서 부활되고있다고 아주 옳게 말하였다.[17]

독일에서는 정치경제학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외국의 과학으로 되여있다. 구스타프 폰 귈리흐는 자기의 저서 《상업, 공업, 농업에 대한 력사적서술》에서, 특히 1830년에 출판된 그 책의 첫 두권에서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발전을 방해하고 따라서 또 현대적자산계급사회의 건설을 방해한 력사적사정을 대체로 이미 해명하였다. 결국 정치경제

학이 설 지반이 없었다. 정치경제학은 영국과 프랑스에서 완성품으로서 수입되였고 독일정치경제학교수들은 의연히 학생이였다. 외국현실의 리론적표현은 그들의 수중에서 하나의 교의집으로 되였는데 그것을 그들은 자기들을 포위한 소자산계급적세계의 정신으로써 해석하였다. 다시말하면 외곡하였다. 그들은 자기의 과학적무능력에 대한 전혀 억제할수 없는 감정과 사실상 그들에게는 서투른 분야에서 선생노릇을 해야 한다는 량심의 동요를 엄폐하려고 애쓰는 나머지 문헌사적박식으로써 풍을 떨거나 또는 소위 관방학[18]에서 즉 지식의 잡동사니에서ㅡ희망에 넘치는① 독일관료후보자들은 이러한 지식의 잡동사니의 시련을 견디여내야 하였던것이다ㅡ차용한 전혀 관계없는 자료들을 혼합하는것을 일삼아왔다.

1848년이래 자본주의적생산은 독일에서 급속히 발전하였고 현재는 벌써 투기와 협잡이 성행하는 시기에 들어섰다. 그러나 우리의 전문가들의 운명은 의연히 상서롭지 못하였다. 그들이 편견없이 정치경제학을 연구할수 있었을 때에는 독일의 현실에 현대적경제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나타났을 때에는 자산계급적시야의 한계안에서 그것을 편견없이 연구하는것을 더는 용허하지 않는 그러한 환경이 이미 조성되였다. 정치경제학이 자산계급적인것인 한에 있어서는 즉 그것이 자본주의제도를 사회적생산의 력사적인 과도적발전단계로 보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회적생산의 절대적종국적형태로 보는 한에 있어서는 그것은 계급투쟁이 아직 잠재적상태에 있거나 또는 오직 개별적인 현상으로서만 나타나는 동안만 과학으로 남아있을수 있다.

영국을 들어보자. 영국의 고전정치경제학은 계급투쟁이

① 제3판과 제4판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으로 되여있다.ㅡ편집자

발전하지 않았던 시기의것이다. 영국고전정치경제학의 최후의 위대한 대표자인 리카도는 마침내 이 계급적리해관계의 대립, 로임과 리윤간의 대립, 리윤과 지대간의 대립을 의식적으로 자기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것은 그가 이 대립을 순진하게도 사회의 자연법칙으로 보았기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자산계급적경제과학은 넘을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였다. 리카도가 살아있을 때에 벌써 그에 대립하여 씨스몽디라는 인물을 통하여 자산계급적경제과학에 대한 비판이 나타났다.(1)

이에 계속되는 1820~1830년시대는 영국에서는 정치경제학분야에서 과학이 활기를 띠게 된것이 특징이다. 이 시기는 리카도리론이 비속화되고 보급된 시기인 동시에 그의 리론이 구학파와 투쟁한 시기였다.[20] 볼만한 시합들이 벌어졌다. 그 당시 경제학자들이 론쟁을 한 정형은 유럽대륙에는 거의 알려져있지 않다. 왜냐 하면 그 론쟁은 대부분 잡지론문에나 시사문제에 관한 간행물에나 소책자 등에서 분산적으로 전개되였기때문이다. 이 론쟁이 공평무사한 성격을 가지고있은것은ㅡ비록 례외적으로는 리카도의 리론이 그때 벌써 자산계급적경제에 대한 공격무기[21]로 사용되였지만ㅡ그 당시의 정형으로 설명된다. 한편으로 대공업자체는 겨우 유년기를 벗어난데 불과하였는데 이것은 대공업이 그 현대적생활의주기적 순환을 1825년의 공황과 함께 비로소 시작한 사실만으로도 증명된다. 다른 한편 자본과 로동간의 계급투쟁도 뒤전으로 밀리였다. 그것은 정치적으로는 신성동맹[22]의 주위에 뭉친 정부들과 봉건령주들을 한편으로 하고 자산계급이 지도하는 인민대중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량자간의 알륵때문이였으며

---

(1) 나의 저작 《정치경제학비판》, 39페지를 보라[19].

경제적으로는 산업자본과 귀족적토지소유간의 분쟁때문이였다. 이 분쟁은 프랑스에서는 분할지소유와 대토지소유와의 대립의 배후에 숨어있었으며 영국에서는 곡물법[23]의 실시이래 공개적으로 폭발하였다. 이 시대에 있어서의 영국의 정치경제학문헌들은 께내의사의 사망후 프랑스에 있은 경제학적 질풍노도의 시대를 상기시키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직 늦가을의 따뜻한 날씨가 봄을 상기시키는것과 같은것이다. 1830년에는 최종적으로 결정적인 위기가 닥쳐왔던것이다.

자산계급은 프랑스와 영국에서 이미 정권을 탈취하였다. 그때부터 계급투쟁은 실천적으로나 리론적으로나 더욱더 공공연하고 위협적인 형태를 취하였다. 그것은 과학적인 자산계급적경제학의 조종을 울리였다. 이제는 벌써 어떤 정리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는것이 문제로 되는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본에 유익한가 유해한가, 편리한가 불편한가, 반경찰적인가 아닌가 하는것이 문제로 되였다. 사심없는 연구는 고용문사들의 론쟁으로 교체되고 편견없는 과학적탐구는 변호론의 더러운 량심과 악의로 교체되였다. 그러나 공장주 코브던과 브라이트를 선두로 한 곡물법반대동맹[24]이 세상에 내놓은 주제넘은 소책자도 그것이 토지소유귀족을 반대하여 론쟁을 걸었다는 점에서 비록 과학적인 관심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일정한 력사적인 관심은 끌었다. 로버트 필경이 집정한이래의 자유무역립법은 이 최후의 가시조차 속류경제학에서 제거해버렸다.[25]

대륙에 있어서의 1848년의 혁명은 영국에서도 반응을 일으켰다. 아직도 과학적의의를 주장하며 지배계급의 단순한 궤변가나 추종자로 되는데 만족하지 않던 사람들은 자본의 정치경제학을, 이제는 더는 무시할수 없게 된 무산계급의 요

구와 조화시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죤 스튜어트 밀을 제일 뚜렷한 대표자로 하는 무미건조한 혼합주의가 나왔다.[26] 이것은 《자산계급적》 경제학의 파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서는 로씨야의 위대한 학자이며 평론가인 H. 체르늬셴스끼가 벌써 그의 저작 《밀 정치경제학개요》에서 훌륭하게 해명하였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적대적성격이 프랑스와 영국에서 력사적인 투쟁을 통하여 떠들썩하게 나타난후에야 독일에서는 그 생산방식이 겨우 성숙하였는데 그때 독일무산계급은 벌써 독일자산계급보다 훨씬 더 리론적으로 명백한 계급의식을 가지고있었다. 그러므로 자산계급적정치경제학과학이 이 나라에서 가능하게 된것 같이 보이였을 때 그것은 다시 불가능하게 되여버렸다.

이와 같은 사정밑에서 자산계급적정치경제학의 대변자들은 두개 진영으로 분렬되였다. 한편에는 약바르고 돈벌이를 즐기는 실무가들이 속류경제학적변호론의 가장 천박한, 따라서 가장 성공적인 대표자 바스띠아의 기치아래에 집결하였다. 다른 한편에는 자기들의 학문의 교수적위엄을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이 조화될수 없는것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죤 스튜어트 밀의 뒤를 따라갔다①. 독일사람들은 자산계급적경제학의 몰락의 시기에도 그 고전적인 시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연히 외국인의 순전한 학생, 맹종자, 모방자, 외국대상사의 소행상인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독일사회의 특수한 력사적발전은 이 나라에서 《자산계급적》 경제학의 독창적인 육성의 가능성을 죄다 배제하였으나 그에 대한 비판의 가능성을 배제한것은 아니였

① 밀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비판, 이 책 590~592페지를 보라. 一편집자

다. 그와 같은 비판이 대체로 한 계급을 대표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것은 오직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변혁과 계급의 종국적폐절을 자기의 력사적사명으로 하는 그러한 계급—무산계급만을 대표할수 있다.

독일의 자산계급의 대변자들은 학자이든 학자 아니든지를 막론하고 그들이 나의 이전 저작에 대하여 그렇게 한것처럼 《자본론》을 우선 묵살하려 하였다.[27] 그러나 이런 전술이 벌써 시대의 정세에 적합하지 않게 되자 그들은 나의 책을 비판한다는 구실밑에 《자산계급적의식을 진정시키기 위한》 처방들을 써냈다. 그러나 그들은 로동자신문에서 유력한 반대자들을 만나게 되였으며(례컨대 《인민국가》 지상의 요제프 디츠겐의 론문을 보라.[28]) 지금까지 이들에게 답변을 주지 못하고있다.(1)

《자본론》의 훌륭한 로씨야문번역본이 1872년 봄에 뻬쩨르부르그에서 나왔다. 3,000부 발간되였으나 현재 벌써 거의 다 팔렸다. 벌써 1871년에 끼예브종합대학 정치경제학교수 H. 지베르씨는 자기의 저서 《리카도의 가치와 자본의 리론》에서 가치, 화폐 및 자본에 관한 나의 리론이 그 기본적인 점에서 스미스-리카도학설의 필연적인 계승발전임을 증명

---

(1) 독일속류경제학의 구변이 좋은 말공부쟁이들은 나의 저서의 문체와 서술방식을 비난한다. 《자본론》의 문장상 결함을 엄격히 비판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도 나를 따르지 못할것이다. 그러나 이 제씨들과 그들의 독자층의 편의와 기쁨을 위하여 나는 여기에 영국인의 평론과 로씨야인의 평론을 인용하려 한다. 나의 견해에 대하여 완전히 적의를 가지고있는 《토요평론》은 독일문판 제1판에 대한 그 단평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서술은 《가장 무미건조한 경제문제에까지도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한다》. 《싼크트뻬쩨르부르그신보》는 1872년 4월 20일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서술은 극히 전문적인 약간의 부분을 제외하면 알기 쉽고 명료하며 연구대상이 고도의 과학성을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히 생동한것이 특징이다. 이 점에 있어서 저자는…보통사람을 괄치아프게 하는 그러한 모호하고 무미건조한 말로써 자기의 책을 쓰는…독일의 대다수 학자들과는 비슷하지도 않다.》 현대독일 민족자유주의적 교수들의 문헌의 독자들은 두통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고통을 받고있는것이다.

하였다. 서유럽사람들이 그의 이 훌륭한 저서를 읽고 놀라는 것은 순 리론적인 관점이 철저하게 관철되여있다는 점이다.

《자본론》에서 적용된 방법이 사람들에게 잘 리해되여 있지 않다는것은 그 방법에 대한 여러가지 모순되는 평가에 의하여서도 증명되고있다.

레컨대 빠리의 《실증주의평론》[29]은 한편으로는 내가 경제학을 형이상학적으로 고찰하고있다고 비난하고 또 한편으로는—무엇인지 추측해보라!—내가 주어진 사실의 비판적 분석에 국한하고 미래의 대중식당을 위한 료리법(꽁뜨주의적인?)을 쓰고있지 않다고 비난하고있다. 형이상학적이라는 비난에 대하여 지베르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본래의 리론이 문제로 되는 한 맑스의 방법은 영국학파전체가 사용하는 연역법이며 그 결점과 우점은 가장 우수한 리론경제학자들에게 공통되는것이다.》[30]

M. 블로크씨는 소책자 《독일의 사회주의리론가들》(1872년 7월호 및 8월호의 《경제학자잡지》에서 나의 방법이 분석적방법이라는것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맑스씨는 이 저작으로써 그가 자장 탁월한 분석적재능이 있는 사상가라는것을 실증하였다.》

독일평론가들은 물론 헤겔식궤변이라고 비난하고있다.[31] 뻬쩨르부르그의 《유럽통보》는 《자본론》의 방법만을 취급한 론문(1872년 5월호, 427～436페지)[32]에서 나의 연구방법은 엄격히 실재론적이나 서술방법은 불행하게도 독일적변증법적이라는것을 발견하고있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만약 서술의 외적형식으로 판단한다면 일견 맑스는 최대의 관념론적철학자, 그것도 이 말의 (독일) 적의미 즉 나쁜 의미에서의 관념론적철학자인듯하다. 그러나 실은 그는 경제학비판사업에서 그의 일체 선구자들보다 무한히 더 실재론자인것이다.…그를 관념론자라고 말할

수는 도저히 없다.》

이 필자자신의 비판에서 약간 발취하는것이 그에게 대한 가장 훌륭한 대답으로 될것이다. 뿐만아니라 이 발취는 로씨아어원문을 리해할수 없는 나의 많은 독자들에게는 흥미있는 것일것이다.

내가 나의 방법의 유물론적기초를 론한 《정치경제학비판》 서문(1859년 베를린판, 4~7페지[33])에서 한단락을 인용한 다음 이 필자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맑스에게 있어서는 오직 한가지가 중요하다. 그것은 즉 그가 연구하고있는 현상의 법칙을 발견하는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것은 현상들이 일정한 완성형태를 가지고있는 한에서, 또 그 현상들이 주어진 기간에 볼수 있는 그러한 련관속에 있는 한에서 그 현상들을 지배하는 그 법칙뿐이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것은 현상들의 변화와 발전의 법칙 즉 한 형태로부터 다른 형태에로의 이행의 법칙, 련관의 한 질서로부터 다른 질서에로의 이행의 법칙이다. 그는 일단 이 법칙을 발견하자 이 법칙이 사회생활에 발현되는 그 결과들을 상세하게 연구한다.…따라서 맑스는 오직 다음 한가지에만 전념한다. 즉 정확한 과학적연구에 의하여 사회관계의 일정한 질서의 필연성을 증명하며 그 출발점과 거점으로 되는 사실들을 될수록 더 완전무결하게 확정하는것이다. 그에게 있어서는 현재의 질서의 필연성을 론증하고 동시에 이 질서가 불가피적으로 이행하지 않을수 없는 다른 질서의 필연성을 론증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믿건 안믿건, 이것을 의식하건 말건 전혀 상관이 없다. 맑스는 사회의 운동을 비단 인간의 의지, 의식 및 의도와는 독립하여있을뿐만아니라 도리여 그자체가 인간의 의지, 의식 및 의도를 규정하는 그러한 법칙들이 지배하는 하나의 자연사적과정이라고 본다.…만약 의식적요소가 문화사에서 그러한 종속적인 역할을 논다면 문화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비판이 의식의 어떤 형태나 어떤 결과를 그 기초로 삼을수는 도저히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다시말하면 비판의 출발점으로 될수 있는것은 리념이 아니고 오직 외적현상뿐이다. 비판은 사실을 리념과 비교대조하는

데 있는것이 아니라 한 사실을 다른 사실과 비교대조하는데 있을것이다. 이 비판에서 중요한것은 오직 두개의 사실을 가급적으로 더 정확하게 연구하는것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것들이 서로 다른 발전단계를 이루고있다는것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질서의 서렬, 이 발전단계들이 나타나는 순서 및 련관을 그만 못지 않게 정확하게 연구하는것이다.…그런데 어떤 사람은 경제생활의 일반적법칙들은 동일한것이며 그것을 현재에 적용하건 과거에 적용하건 매일반이라고 말할것이다. 바로 이것을 맑스는 부정한다. 그에 의하면 그와 같은 추상적인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그의 견해에 의하면 그와 반대로 매개 력사적시기는 다 그자체의 법칙을 가지고있다.…생활이 주어진 발전시기를 경과하여 주어진 단계로부터 다른 단계로 이행하자마자 그것은 벌써 다른 법칙에 의하여 지배되기 시작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생활은 생물학의 다른 령역에서의 발전사와 류사한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종래의 경제학자들은 경제법칙의 성질을 알지 못하고 경제법칙을 물리학이나 화학의 법칙과 같은것으로 생각하였던것이다.…현상에 대한 더욱 깊은 분석은 사회적유기체들도 식물유기체나 동물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서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것을 증명하였다.…이 유기체들의 구조전체의 차이, 그것들의 개개의 기관의 차이, 기관이 기능하는 조건들의 차이 등등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현상이라도 전혀 다른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맑스는 례컨대 인구법칙이 어느 시대, 어느곳에서나 동일하다는것을 부정한다. 그는 반대로 매개 발전단계는 그자체의 인구법칙을 가지고있다고 주장한다.…생산력의 발전수준이 다름에 따라 생산관계와 그 관계를 규제하는 법칙들도 달라진다. 맑스는 다만 이 관점에서 자기자신에 대하여 자본주의적경제제도를 연구하며 해명할 목표를 내세움으로써 경제생활의 정확한 연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목표를 엄밀히 과학적으로 정식화하였을따름이다.…이와 같은 연구의 과학적가치는 어떤 하나의 주어진 사회유기체의 발생, 생존, 발전, 사멸을 규제하며 또 그것과 다른 보다 높은 유기체와의 그 교체를 규제하는 특수한 법칙들을 해명하는데 있다. 맑스의 저서는 이러한 가치를 실지로 가지고있다.》

이 필자는 그가 나의 현실적방법이라고 부른 그것을 아

주 정확하게 묘사하였고 또 나 개인이 이 방법을 적용한데 대하여 아주 호의적으로 묘사하였는데 이리하여 그가 묘사한 것은 변증법적방법이외의 어떤것이겠는가?

물론 서술방식은 형식상 연구방식과 다르지 않으면 안된다. 연구는 자료를 상세히 소유하며 자료의 각이한 발전형태들을 분석하며 이 발전형태들의 내적련관을 구명해야 한다. 이 사업이 끝난후에라야 비로소 현실적운동을 적절하게 서술할수 있다. 이것이 성공하여 자료의 생명이 관념적으로 반영되면 우리는 마치 선험적구성을 상대로 하는것 같이 보일수 있다.

나의 변증법적방법은 근본적으로 헤겔의 변증법적방법과 다를뿐만아니라 그것과는 정반대되는것이다.[34] 헤겔에게 있어서는 그가 리념이라는 명칭밑에 자립적인 주체로까지 전화시키고있는 사유과정은 현실적인것의 창조자이고 현실적인것은 사유과정의 외적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나에게 있어서는 반대로 관념적인것은 인간의 두뇌에 옮겨져서 거기에서 번역된 물질적인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약 30년전에 헤겔변증법이 아직 류행하고있던 때에 헤겔변증법의 신비적인 측면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내가 《자본론》 제1권을 저술하고있던 때에 지금 독일지식계에서 큰소리를 치는, 짜증을 잘 내고 불손하고 또 범속한 아류들[35]이 일찌기 레씽시대에 용감한 모제스 멘델스존이 스삐노자를 대하듯이 헤겔을 바로 《죽은 개》[36]로 대하는것이 버릇으로 되였다. 그러므로 나는 자신을 이 위대한 사상가의 제자라고 솔직히 승인하고 가치리론에 관한 장에서는 군데군데 헤겔의 특유한 표현방식을 흉내내기까지 하였다. 변증법이 헤겔의 수중에서 신비화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다름아닌 헤겔이 처음으로 변증법의 일반적운동형태를 포괄적으로 또 의식적으

로 서술하였던것이다. 헤겔에게 있어서는 변증법이 거꾸로 서있다. 신비적인 껍질속에 들어있는 합리적인 알맹이를 찾아내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거꾸로 세워야 한다.

변증법은 그 신비화된 형태로 독일에서 류행하였는데 그것은 변증법이 현존사물을 찬미하는듯이 보였기때문이다. 변증법은 그 합리적인 모습에서는 자산계급과 공론을 즐기는 그 대변자들에게 분노와 공포를 자아낼뿐이다. 왜냐 하면 변증법은 현존사물의 긍정적인 리해속에 그 부정적리해, 그 필연적인 몰락의 리해를 동시에 포함하며 모든 기성형태를 운동의 흐름에서, 따라서 또한 그 지나가버리기 쉬운 측면에서 고찰하며 어떤것에도 굴하지 않으며 또 그 본질상 비판적이며 혁명적이기때문이다.

실제적자산자는 현대적산업이 통과하는 주기적순환의 변동속에서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에 가득찬 운동을 가장 통절하게 느끼게 되는데 이 변동의 절정은 바로 전반적공황이다. 이 공황은 비록 아직은 그 초기단계에 있지만 또다시 박두하고있으며 또 그것은 그 무대의 전면성과 그 작용의 강도로 해서 새 신성프로씨아-독일제국의 벼락부자들의 머리속에까지 변증법을 주입시킬것이다.

칼 맑스

1873년 1월 24일, 런던에서

프랑스문판 서문과 발문

공민 모리스 라샤뜨르 앞

친애하는 공민!

《자본론》 번역판[14]을 정기적분책으로 발간하려는 당신의 생각에 나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와 같은 형태로 출판되면 이 저서는 로동계급의 수중에 더 쉽게 들어가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제의의 좋은 측면입니다. 그러나 그 나쁜 측면도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고있는, 이때까지 경제문제에 적용된 일이 없는 분석방법은 첫 몇장을 매우 읽기 어렵게 하고있습니다. 프랑스독자들은 언제나 성급히 결론에 도달하려하며 일반적인 원칙이 자기들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있는 문제들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가를 알려고 갈망하고있는만큼 나는 그들이 읽기 시작하였으나 곧 더 읽어내려갈수 없어 싫증을 내지 않을가 하는것이 념려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불리한 점이지만 이에 대하여 나는 그저 진리를 갈망하는 독자에게 미리 이 점을 알려주고 각오하도록 하는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과학에는 탄탄한 대로가 없습니다. 오직 피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학의 가파른 오솔길을 기여올라가는자만이 과학의 빛나는 절정에 도달할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공민, 충심으로부터 인사를 드립니다.

칼 맑스

1872년 3월 18일, 런던에서

독자들에게

J. 루아씨는 될수록 정확한, 심지어 축자적인 번역을 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는 자기의 임무를 아주 꼼꼼하게 수행하였다. 그러나 바로 그의 꼼꼼한 면밀성으로 하여 나는 독자가 그것을 일층 더 리해하기 쉽게 서술방식에 수정을 가하지 않을수 없었다. 책이 분책으로 발간됨에 따라 그때그때 수정하였기때문에 언제나 한결같이 면밀하게는 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문체가 균일하게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일단 교열사업에 착수하였을 때 나는 기본으로 되여있는 원본(독일문판 제2판)의 원문도 교열하여 어떤 개소는 간략하게 하고 어떤 개소는 완전하게 하며 력사적 또는 통계적 자료를 보충하며 비판적주석을 붙이는 등등이 필요하다는것을 느꼈다. 이 프랑스문판에 어떠한 문장상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본과는 독립적인 과학적가치를 가지므로 독일어를 아는 독자들도 참조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나는 독일문판 제2판 발문으로부터 독일에서의 정치경제학발전과 본 저서에서 사용한 방법을 설명한 개소를 발취하여 아래에 첨부한다.

칼 맑스

1875년 4월 28일, 런던에서

Londres 18 Mars 1872.

Au citoyen Maurice La Châtre.

Cher citoyen,

J'applaudis à votre idée de publier la traduction de mon Kapital en livraisons périodiques. Sous cette forme l'ouvrage sera plus accessible à la classe ouvrière et pour moi cette considération l'emporte sur toute autre.

Voilà le beau côté de votre médaille, mais en voici le revers: la méthode d'analyse que j'ai employée et qui n'avait pas encore été appliquée aux sujets économiques, rend assez ardue la lecture des premiers chapitres, et il est à craindre que le public, fr. n'ait toujours impatience de connaître, avide de connaître le rapport des principes généraux avec les questions immédiates qui le passionnent, ne veuille passer outre parce qu'il n'aura pas tout d'abord passer outre.

C'est là un désavantage contre lequel je ne puis rien sinon d'avertir et prémunir les lecteurs soucieux de vérité. Il n'y a pas de route royale pour la science et ceux seulement ont chance d'arriver à ses sommets lumineux qui ne craignent pas de se fatiguer à gravir ses sentiers escarpés.

Recevez, mon cit. cher, l'assurance de mes sentiments dévoués.

Karl Marx.

《자본론》, 제1권, 프랑스문판 출판자 라샤뜨르에게
보내는 맑스의 편지

제 3 판 서 문

맑스는 불행하게도 이 제3판의 출판준비사업을 몸소 진행할수가 없었다. 현재 그의 적대자까지도 그 위대성앞에 머리를 숙이는 이 위력있는 사상가는 1883년 3월 14일에 서거하였다.

40년간에 걸쳐 서로 친밀히 사귀여온 나의 가장 훌륭한, 가장 성실한 벗, 말로써는 감사의 마음을 다 표현할수 없는 벗 맑스를 잃어버린 나에게 이제는 이 제1권 제3판과 또 맑스가 수고의 형태로 남긴 제2권[37]의 출판을 준비할 의무가 부과되였다. 내가 이 의무의 첫부분을 어떻게 수행하였는가에 대하여 나는 여기서 독자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맑스는 처음에는 제1권 본문의 대부분을 개작하며 어떤 리론적명제들을 더 명확하게 표현하며 새로운 명제들을 첨가하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력사적 및 통계적 자료를 보충할 것을 예정하고있었다. 그의 병환과 제2권의 최종원고를 완성해야 할 필요성으로 하여 그는 이것을 단념하였다. 오직 가장 필요한것만을 정정하고 이 시기에 발간된 프랑스문판(《LeCapital》, par Karl Marx. Paris, Lachâtre, 1873[14])에 이미 실려있는 보충만을 삽입하지 않을수 없었다.

맑스가 남긴 책들가운데서 맑스자신이 군데군데 정정하였고 또 프랑스문판을 참조하라고 명시한 독일문책[38]이 한책

발견되였고 또 맑스가 새 판에서 리용하려고 하였던 모든 개소가 정확하게 표시되여있는 프랑스문판이 한책 발견되였다. 이 정정과 보충은 소수의 례외를 제외하고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인 《자본의 축적과정》이라는 편에 국한되여있다. 그앞에 있는 편들은 근본적으로 개작되였으나 이 편의 이전의 본문은 다른 편에 비하여 초고에 더 접근하고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문체가 더 생기발랄하며 더 미끈하기는 하나 그러나 그와 동시에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더 소홀하였으며 영어식어법이 혼용되였으며 군데군데 명확치 못한 곳이 있었다. 서술행정에는 여기저기 틈이 있었다. 그것은 개별적인 중요한 점들이 그저 간단히 언급되여있었을뿐이였기때문이다.

문체에 관하여 말한다면 맑스자신이 여러 장절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였으며 또 많은 구두상의 지시를 하였다. 이것으로 나는 내가 어느 정도로 영어식술어와 기타 영어식어법을 제거해야 할것인가에 대한 표준을 정할수 있었다. 맑스라면 아마 추가와 보충을 물론 수정하였을것이며 류창한 프랑스어를 자기의 간결한 독일어로 바꾸어놓았을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들을 가급적으로 원래 본문에 적합하게 번역하는것으로써 만족할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이 제3판에서 나는 저자자신이 수정하였을지 어떨지 확실히 알수 없는것은 일언반구도 정정하지 않았다. 나는 독일경제학자들이 흔히 쓰는 재래의 통용어들 례컨대 현금을 주고 타인의 로동을 받는자를 로동**공급자**라고 하며 삯을 받고 자기 로동을 탈취당하는자를 로동**령수자**[39]라고 하는 이 잠꼬대같은 말을 《자본론》에 도입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프랑스어에서도 역시 일상생활에서 《일》이라는 의미로 travail (로동) 이라는 말이 사용된다. 그러나 프랑스인

들은 자본가를 donneur de travail (로동공급자), 로동자를 receveur de travail (로동령수자) 라고 부르려는 그러한 경제학자를 당연히 미친사람이라고 생각할것이다.

나는 원문에서 일관하여 사용되고있는 영국의 화폐와 도량형단위를 신독일단위들로 환산하여놓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자본론》 제1판이 나왔을 당시 독일에는 1년의 날자의 수만큼이나 많은 종류의 도량형이 있었다. 게다가 또 2종의 마르크가 있었고 (제국마르크는 당시에는 아직, 30년대말에 그것을 고안해낸 죄트베르의 머리속에서만 통용되였다.) 2종의 굴덴이 있었고 적어도 3종의 탈레르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그 단위가 《신 3분의 2》[40]였다. 자연과학에서는 메터제가 통용되고 세계시장에서는 영국도량형이 통용되고있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그 실제적례증들을 거의 전적으로 영국의 공업상황에서 취해오지 않을수 없었던 저서에서 영국도량형단위를 리용한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였다. 이 마지막 리유는 오늘날에도 의연히 결정적의의를 가지고있다. 세계시장의 상황이 거의 변경되지 않았고 특히 결정적인 공업부문 즉 제철공업과 면방직공업에서는 현재도 거의 전적으로 영국도량형이 통용되고있는것만큼 더욱 그러한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그리 리해되고있지 않은 맑스의 인용방식에 관하여 약간 말하려 한다. 순전히 사실을 서술하며 묘사하는데 지나지 않는 개소에서는 례컨대 영국의 청서[11]로부터의 인용같은것은 단순한 인증임은 두말할것 없다. 다른 경제학자들의 리론적견해가 인용되는 때에는 사정이 다르다. 여기서 인용은 발전행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경제사상이 어디서 어느때에 누구에 의하여 처음으로 명백하게 표명되였

는가를 확정하려 할뿐이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인용; 경제학적견해가 과학사에서 의의를 가지고있다는것, 그것,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시대의 경제적상태의 적절한 리; 적표현이라는것뿐이다. 그러나 이 견해가 이 저서의 저자: 견지로 보아 절대적 또는 상대적 타당성을 가지고있는가 : 는 완전히 과거의 력사에 속하는것으로 되여버렸는가 하는: 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이와 같이 이 인용들은 오직 경제: 학의 력사에서 차용해온 본문에 대한 주석에 불과하며 경: 리론분야에서 달성한 개개의 극히 중요한 진보를 시기와 : 시자들에 따라 확정하는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것은 (때까지 그 력사저술가들이 오직 출세주의자들의 편파적인 1 식만을 그 특색으로 하고있은 그러한 과학에서는 매우 필: 하였다. 이제 독자는 어째서 맑스가 제2판 서문[41]에서 지: 하고있는바와 같이 독일경제학자들을 극히 례외적으로만 ; 용하게 되였는가 하는 리유도 리해할수 있을것이다.

제2권은 1884년중에 발간될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42]

프리드리히 엥겔스

1883년 11월 7일, 런던에서

영 문 판 서 문

《자본론》의 영문판 출판[43]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해석이 필요없다. 오히려 반대로 이 책에서 전개되고있는 리론이 지난 몇해동안 영국과 미국의 정기간행물과 현행문헌에서 부단히 론의의 대상으로, 공격과 변호, 해석과 외곡의 대상으로 되여온것을 보아 어째서 이 영문판 출판이 이때까지 지연되였는가 하는데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것이다.

1883년에 저자가 서거한후 얼마 오래지 않아 이 저작의 영문판이 실지로 필요하다는것이 명백하게 되였을 때에, 맑스와 본 서문의 필자의 옛벗이며 아마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이 저서의 내용에 정통하고있는 사람인 쌔뮤얼 무어씨는 맑스의 저작방면의 유서집행자들이 그 발간을 열망하고있던 이 번역을 담당할것을 승낙하였다. 물론 나는 번역원고를 원본과 대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정의견을 제기하기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후에 무어씨는 자기의 본직때문에 우리전체가 바라는것처럼 빨리 그 번역을 끝낼수 없다는것을 알게 되였을 때 우리는 이 사업의 일부를 담당하겠다는 에이블링박사의 제의를 기꺼이 접수하였다. 동시에 맑스의 막내딸인 에이블링부인은 인용문들을 대조하며 또 맑스가 영국의 저자들과 청서에서 발취하여 자신이 독일어로 번역한 많은 인용구를 원문대로 회복시킬것을 제의하였다. 에이블링부인은 이 사업을 불가피한 약간의 례외를 제외하고는 철저히 수행하였다.

이 책의 다음 부분들은 에이블링박사가 번역하였다. 1. 제

10장(로동일)과 제11장(잉여가치률과 잉여가치량), 2. 제6편(로임, 제19장부터 제22장까지 포함됨), 3. 제24장 제4절(축적의 규모를 결정하는 사정들)로부터 이 제1부의 마지막까지. 여기에는 제24장 마지막 부분, 제25장 및 제8편 전부(《제26장—제33장》)가 포함됨, 4. 저자의 두개의 서문.[44] 그외의 부분은 전부 무어씨가 번역하였다. 이와 같이 역자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나 나는 전반사업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우리의 전체 사업의 의거로 된 독일문판 제3판은 저자가 남긴 기록을 리용하여 내가 1883년에 준비하였다. 이 기록에는 제2판 원문의 어떤 개소를 1873년에 발간된 프랑스문판 원문(1)에 지정된 구절로 바꾸어야 하는가를 지시하고있다. 그리하여 제2판 원문에 가한 정정은 약 10년전에 미국에서 계획하였다가 주로 적당한 역자가 없었던탓으로 완수되지 못한 영문번역에 대한 맑스의 일련의 친필지시[45]에서 지적한 그 정정과 대체로 일치하다. 이 수고는 뉴져시주 호보켄 출신인 우리의 오랜 벗 F. A. 조르게가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거기에는 프랑스문판에 의하여 보충할 개소들이 지적되여있다. 그러나 이 수고는 제3판을 위한 저자의 최후의 지시보다 여러해전에 집필된것이기때문에 나는 오직 례외적으로만, 주로 그것이 우리가 어떤 난점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리용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마찬가지로 프랑스문판 본문도 대다수의 어려운 구절에서는 참조하였는데 그것은 원문에 포함되여있는 전체 의미중에서 어떤것을 번역에서 희생시

---

(1) 칼 맑스 《자본론》, M. J. 루아 역, 저자 완전교열, 빠리, 라샤뜨르 간행. 이 번역에는 특히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독일문판 제2판의 본문에 대한 상당한 정정과 추가가 포함되여있다.

켜야 할 경우에 저자자신은 어떠한것을 희생시켰겠는가를 지시해주고있었기때문이였다.

그렇지만 우리가 독자들에게 제거해드리지 못한 곤난이 하나 있다. 그것은 약간의 술어를 비단 일상생활에서뿐만아니라 보통정치경제학에서 쓰는것과도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피한것이였다. 과학의 모든 새로운 견지는 그 과학의 술어에서의 혁명을 포함한다. 이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것은 화학이다. 화학에서는 술어전체가 약 20년에 한번씩 근본적으로 변경되고있다. 화학에서는 일련의 서로 다른 명칭으로 불리우지 않은 유기화합물은 거의 하나도 찾아볼수 없을것이다. 정치경제학은 일반적으로 상공업생활의 술어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는것으로 만족하여왔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술어들이 표현하는 개념들의 좁은 범위안에 자기자신을 국한시키고있다는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던것이다. 례컨대 고전정치경제학은 리윤과 지대는 로동자가 자기의 기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생산물의 부지불부분(기업주는 이 부지불부분의 최초의 취득자일뿐이고 그 최후의 유일한 소유자는 아니다.)의 일부분이며 한몫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고전정치경제학도 리윤과 지대에 관한 통속적개념의 한계를 넘지 못하였고 생산물의 이 부지불부분(맑스가 잉여생산물이라고 칭한 부분)을 하나의 전체로서 즉 그 총체에서 연구한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고전정치경제학은 이 부분의 기원, 그 성질에 관하여서나 그 가치의 그후의 분배를 규제하는 법칙에 관하여 명백한 리해에 도달한적이 없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농업과 수공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산업이 구별없이 제조업(manufacture)이라는 술어에 포괄되여왔으며 그리하여 경제

사의 본질적으로 다른 두개의 큰 시대 즉 손로동의 분업에 기초하고있는 본래의 의미에서의 공장제수공업시대와 기계의 사용에 기초하고있는 현대적공업시대간의 구별이 말살되고있다. 그러므로 현대적자본주의생산을 다만 인류경제사의 과도적단계로 보는 리론은 이 생산형태를 영원하고 종국적인것으로 간주하는 저술가들의 관용술어와는 반드시 다른 술어를 사용해야 할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명백하다.

저자의 인용방법에 대하여 몇마디 말하는것은 부당한 일이 아닐것이다. 대다수 경우에 인용문들은 통례대로 본문에서 제기한 주장을 지지하는 문헌적증거로 되고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일정한 명제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하여 처음으로 명백하게 표명되였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경제학적저술가들의 구절들이 인용되고있다. 이렇게 인용되는것은 그 인용되는 명제가 당시 우세였던 사회적생산 및 교환 조건들의 어느 정도 적절한 표현으로서 중요성을 가지는 경우인데 여기서 그 명제를 맑스자신이 승인하는가 안하는가 또는 그것이 보편적의의를 가지는가 안가지는가 하는것과는 전혀 관계없다. 그러므로 이 인용문들은 이 과학의 력사에서 취해온 주석으로써 본문을 보충하는것이다.

우리의 번역은 이 저작의 제1부만을 포괄한다. 그러나 이 제1부는 현저한 정도로 그자체가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있으며 또 20년간에 걸쳐서 독립적저작으로서 인정되여왔었다. 1885년에 내가 독일어로 출판한 제2부는 제3부가 없이는 분명히 불완전한것인데 제3부는 아마 1887년말이전에는 발간될 수 없을것이다. 제3부가 독일어원문으로 출판되는 그때에 제2부와 제3부의 영문판의 준비를 생각하여도 늦지 않을것이다.[46]

《자본론》은 대륙에서는 흔히 《로동계급의 성경》[47]이라고 불리운다. 로동운동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저작에서 도달한 결론들이 비단 독일과 스위스에서뿐만아니라 프랑스, 화란, 벨지끄, 미국 심지어 이딸리아와 에스빠냐에서까지도 나날이 가일층 로동계급의 위대한 운동의 기본원칙으로 되고있다는것, 모든 곳에서 로동계급은 이 결론들을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희망의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인정하고있다는것을 부인하지 못할것이다. 또 영국에서도 바로 지금 맑스의 리론은 로동계급의 대렬내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양있는》 사람들사이에서도 보급되여있는 사회주의운동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영국의 경제형편을 철저하게 연구하는것이 불가피한 국민적필요성으로서 제기될 그러한 시기가 급속히 다가오고있다. 생산의 끊임없는 급속한 확대, 따라서 또 시장의 끊임없는 급속한 확대가 없이는 존재할수 없는 이 나라의 산업체계의 운동은 정체에 빠지기 시작하였다. 자유무역은 그 밑이 드러났고 만체스터까지도 자기의 이 종전의 경제적복음에 의심을 품고있다.(1) 다른 나라들의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공업은 도처에서 영국의 생산을 직접 위협하고있는데 그것은 비단 보호관세시장에서 그러할뿐만아니라 중립시장에서도, 지어 영국해협의 이쪽에서까지도 그러하다. 생산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장성하고있는데 시장의 확대는 기껏해야 산수급수적으로 진행되고있다. 1825년부터 1867년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반복되여

---

(1) 오늘 오후에 개최된 만체스터상업회의소 분기회의에서는 자유무역문제에 관하여 열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다음과 같은 결의안이 제출되였다. 《다른 나라들이 영국의 자유무역의 모범을 따르리라고 쓸데없이 40년간이나 기다렸으니만큼 본 상업회의소는 이제는 자기의 립장을 재검토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생각한다.》 결의안은 단 1표의 다수로써 부결되였다. 표수는 찬성 21표, 반대 22표였다. (《저녁기발》,1886년 11월 1일호)

온 정체, 번영, 과잉생산 및 공황의 10년을 주기로 하는 순환은 확실히 종결된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영속적이며 만성적인 불경기라는 절망의 수렁에 몰아넣고야말것이다. 그처럼 기다리는 번영기는 이제는 오지 않을것이다. 번영기의 도래를 예고하는듯한 징조가 감촉되자 곧 이 징조는 또다시 사라지군 한다. 겨울이 닥쳐올 때마다 《실업자를 어떻게 할것인가?》라는 큰 문제가 또다시 제기된다. 실업자수는 해마다 증가되고있는데 아무도 이 문제에 해답을 주지 못하고있다. 그런데 우리는 실업자들이 참다못하여 자기 수중에 자기 운명을 틀어쥐게 될 그러한 시기를 거의 예상할수 있다. 그와 같은 시기에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것이다. 그 사람의 전체 리론은 그가 전 생애에 걸쳐 영국의 경제사와 경제형편을 연구한 결과이며 또 그는 이 연구에 의하여 적어도 유럽에서는 영국은 완전히 평화적, 합법적 수단으로 필연적인 사회혁명을 수행할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던것이다. 물론 그는 영국의 지배계급들이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반란》[8]없이 이 평화적, 합법적 혁명에 굴복하리라고는 거의 기대할수 없다고 부언하는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

프리드리히 엥겔스

1886년 11월 5일

제 4 판 서 문

제4판은 본문과 주를 될수 있는대로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을 나에게 요구하였다. 어떻게 내가 이 요구를 수행하였는가를 간단히 말하고저 한다.

나는 다시한번 프랑스문판과 맑스의 수기[48]를 대조한 다음 프랑스문판에서 약간의 부분을 취하여 독일문판 본문에 새로 보충하였다. 그것들은 80페지(제3판 88페지), 458~460페지(제3판 509~510페지), 547~551페지(제3판 600페지), 591~593페지(제3판 644페지) 및 596페지(제3판 648페지)의 주79①에서 볼수 있다. 그리고 또 나는 프랑스문판과 영문판의 선례에 따라 광산로동자에 관한 긴 주(제3판 509~515페지)를 본문(제4판 461~467페지)②에 첨가하였다. 기타의 사소한 변경들은 순전히 기술적성격을 띤것이다.

다음으로 나는 특히 력사적조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러한 개소에는 약간의 해설적인 주를 보충하였다. 이러한 보충적주는 모두 꺾쇠묶음표안에 넣고 나의 성명의 두문자나 또는 《D. H.》③라고 표시하였다.

이 기간에 영문판을 출판하면서 수다한 인용문을 전면적으로 교열하는것이 필요하게 되였다. 영문판을 위하여 맑스의 막내딸 엘리너가 수고를 들여 전체 인용개소를 원전과 대조하여준 결과 인용문의 대다수를 이루는 영문자료로부터의

① 이 책 138, 567~569, 674~678, 722~724, 728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이 책 569~576페지를 보라. —편집자

③ 《D. H.》는 독일어 《der Herausgeber》(즉 《편집자》)의 두 문자인데 이 책에서는 꺾쇠묶음표 ( ) 안에 넣고 에프 엔이라고 표시하였다. —편집자

인용문이 영문판에서는 독일문판으로부터의 재번역이 아니고 영문원전의 원문이 그대로 실려있다. 그러므로 나는 제4판에서는 이 원문을 되살린 영문판 본문을 참고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여기서 일부 개소에서 사소한 부정확한 점이 발견되였다. 일부분은 노트에서 옮겨쓸 때에 잘못 쓴데서, 일부분은 판을 세번 거듭하는 동안에 쌓이고쌓인 오식에서 생겨난 인용페지의 착오가 있었다. 발취장에서 대량적으로 인용할 때에는 불가피한 착오로서 인용표 또는 줄임표의 위치가 잘못된것이 있었다. 인용문의 번역에서 그리 적절하지 못한 용어가 선택된 곳도 여기저기 있었다. 몇개 소는 맑스가 아직 영어를 알지 못하고 영국경제학자들의 저서들을 프랑스문번역판으로 읽고있었을 때인 1843~1845년에 빠리에서 필기한 낡은 노트에서 인용되여있었다. 중역한 결과 인용문의 의미가 약간 달라진 경우(례컨대 스튜어트, 유어 등등의 경우가 그러하다.)에는 나는 영어원문을 리용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와 류사한 사소한 부정확한 점과 소홀히 된 점도 모두 정정하였다. 그런데 독자들은 이 제4판을 이전 판들과 비교해 본다면 이 모든 힘드는 정정이 이 책에 이렇다 할만한 변경을 조금도 가져오지 않았다는것을 알수 있을것이다. 오직 하나의 인용문만이 그 출처를 찾을수 없었는데 그것은 리쳐드 죠운즈에게서 인용한것(제4판 562페지 주 47①)이였다. 아마도 맑스가 책이름을 잘못 쓴것 같다.[49] 기타의 인용문은 모두 그 증명력을 완전히 가지고있거나 또는 현재와 같은 정확한 형태를 갖춤으로써 증명력을 일층 더 가지게 되였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하나의 지나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① 이 책 690페지를 보라. —편집자

내가 알기에는 맑스가 인용한 인용문의 정확성이 의문으로 되였던 경우는 단 한번밖에 없었다. 그런데 맑스의 서거 후에도 이 인용문이 이야기거리로 되여있기때문에 나는 여기서 그것을 말하지 않을수 없다.[50]

1872년 3월 7일 독일공장주동맹의 기관지인 베를린의 잡지《조화》에 《칼 맑스는 어떻게 인용하는가》라는 하나의 닉명①론문이 게재되였다. 이 론문에서 필자는 도덕적분개를 가지고 무례한 말을 써가면서 1863년 4월 16일에 진술한 글래드스턴의 예산연설로부터의 맑스의 인용(1864년 국제로동자협회창립선언에 인용되였고 《자본론》 제1권, 제4판, 617페지 즉 제3판 670~671페지②에 재차 인용되였다.)은 위조라고 주장하였다. 맑스가 인용한 《사람을 도취케 하는 재부와 권력의 증대는…전적으로 유산계급에만 국한되여있다.》는 문구는 《핸사드》의(준관방적) 속기록에는 한마디도 실려있지 않다고 상기론문필자는 말한다. 《그러나 이 문구는 글래드스턴의 연설에는 아무데도 없다. 그 연설에서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다. 〔이다음부터는 굵은 활자로〕 **맑스는 이 구절을 형식상으로나 실질상으로나 위조하여 첨가하였다!**》라고.

그해 5월에 《조화》의 이 호를 받은 맑스는 이 닉명필자③에게 《인민국가》지 6월 1일호에서 답변하였다. 그는 자기가 어떤 신문기사에서 인용했던지 생각나지 않아서 우선 두개의 영문출판물에 이와 꼭같은 의미의 인용문이 있다는것을 지적한 다음 《타임스》지의 보도를 인용하는데 국한하였다. 이 보도에 의하면 글래드스턴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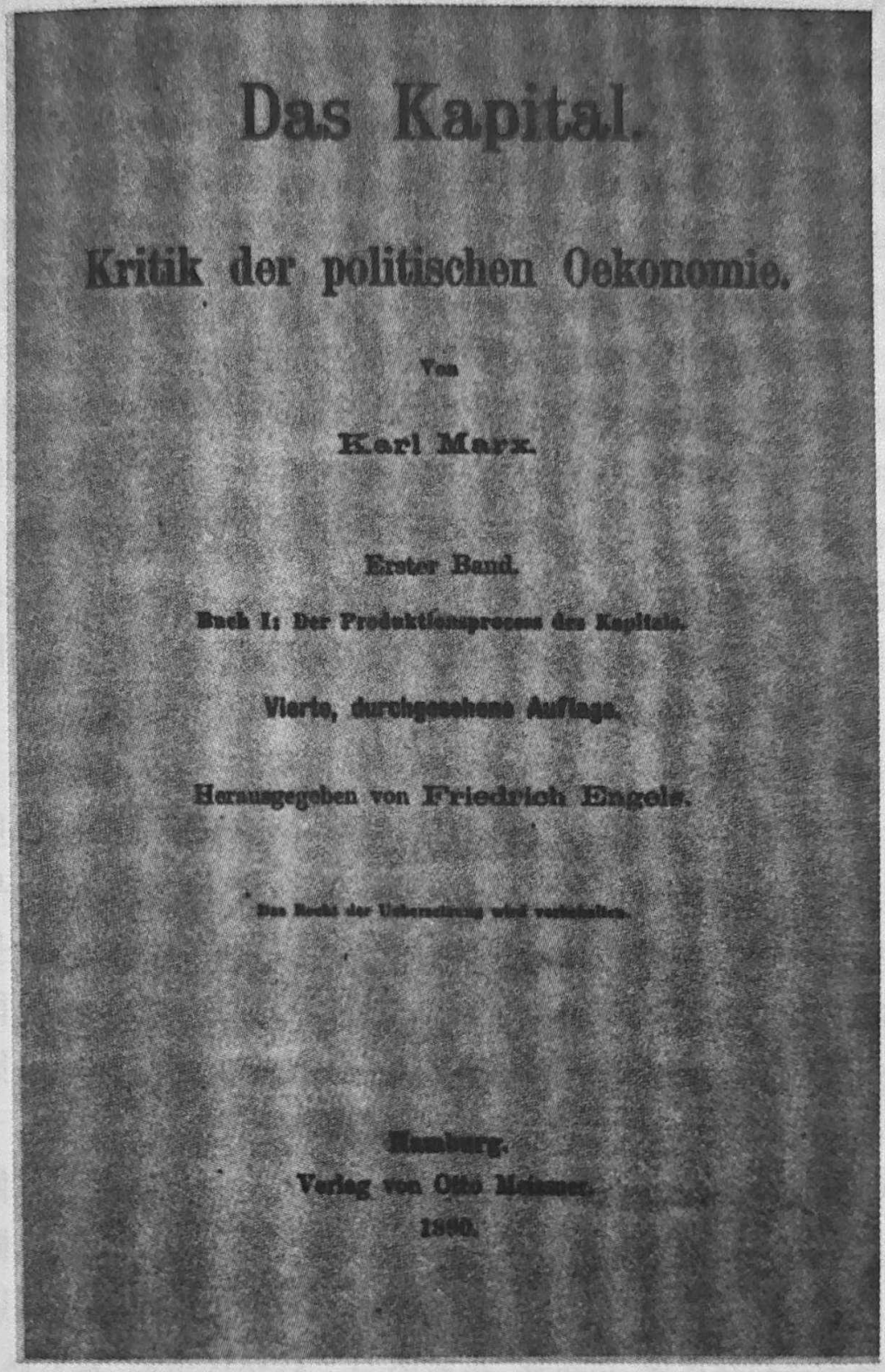
《이것이 이 나라의 재부의 상태이다. 사람을 도취케 하는 이 재

① L. 브렌타노를 말한다. —편집자
② 이 책 751페지를 보라. —편집자
③《브렌타노의 글에 대한 대답》을 가리킨다. —편집자

부와 권력의 증대가 만일 부유한 계급에게만 국한되여있다는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그것을 거의 우려와 비통으로써 주시할것이라는것을 고백하지 않을수 없다. 그런데 이 사실은 로동주민의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여주지 않는다. 내 생각에는 완전히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자료에 근거한, 내가 방금 진술한 재부의 증대는 전적으로 유산계급에게만 국한되여있는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글래드스턴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자기에게 있어서 고통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바로 그렇다**고 말하고있는것이다. 즉 사람을 도취케 하는 이러한 권력과 재부의 증대는 전적으로 유산계급에만 국한되여**있다**고 말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 준관방적인 《핸사드》에 관하여서는 맑스는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글래드스턴씨는 후일에 뜯어고친 자기 연설의 이 수정문에서는 현명하게도 영국의 재정대신의 말로서는 확실히 망신을 당할 위험이 있는 그 개소를 삭제해버렸다. 그렇지만 이것은 영국의회의 전래의 상투수단이지 결코 베벨을 반대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꼬마 라스케르의 새 발명은 아니다[51].》

익명필자는 더욱 화를 냈다. 그는 7월 4일의 《조화》지상에서의 자기의 답변에서, 간접적인 전거를 젖혀놓고 의회연설은 속기록에 의해서 인용하는것이 《관례》로 되여있다고 수줍은듯이 말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타임스》지의 보도(이속에는 《위조하여 첨가한》문구가 들어있다.)와 《핸사드》의 보도(여기에는 이 문구가 없다.)는 《실질상 완전히 일치》하며 또 《타임스》지의 보도는 《창립선언중의 그 악명높은 개소와는 정반대의것》을 포함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때 이 사람은 《타임스》지의 보도에는 이 소위 《정반대》의것과 아울러 바로 그 《악명높은 개소》도 분명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Oekonomie.

Von

Karl Marx.

Erster Band.

Buch I: Der Produktionsprozess des Kapitals.

Vierte, durchgesehene Auflage.

Herausgegeben von Friedrich Engels.

Das Recht der Uebersetzung wird vorbehalten.

Hamburg.
Verlag von Otto Meissner.
1890.

《자본론》, 제1권, 독일문판, 제4판 속표지

히 포함되여있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는 조심스럽게 침묵을 지키고있다.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닉명필자는 그가 난처하게 되였다는것과 오직 새로운 간계만이 그를 구원할수 있다는것을 느꼈다. 그리하여 그는 지금 증명한바와 같은 《철면피한 거짓》으로 가득찬 자기의 론문에서 《악의》, 《비성실》, 《허위적인증》, 《이 허위적인용》, 《철면피한 거짓》, 《완전히 위조된 인용》, 《이러한 위조》,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등등과 같은 극단적인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동시에 론쟁문제를 슬며시 다른 분야에 넘기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우리가 〔즉 《허위적》이 아닌 닉명필자가〕 글래드스턴의 말의 내용에 어떠한 의의를 부여하는가를 다른 론문에서 설명》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전혀 보잘것없는 그의 이 견해가 마치 조금이라도 이 문제와 관계가 있는듯이! 이 다른 론문은 7월 11일의 《조화》지상에 실리였다.

맑스는 이에 대하여 8월 7일부 《인민국가》지상에서 다시한번 답변①하였는데 이번에는 해당 개소를 1863년 4월 17일부 《새별》지와 《조간신보》에서도 인용하였다. 이 두 신문에 의하면 글래드스턴은 사람을 도취케 하는 이 재부와 권력의 증대가 만일 실지로 부유한 계급에게만 국한되여있다는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그것을 우려…로써 주시할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증대는 확실히 재산을 소유한 계급에게만 국한되여있다고 말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이 기사들에도 맑스가 《위조하여 첨가》하였다는 문구가 그대로 들어있다. 더 나아가 맑스는, 다음날 아침에 서로 관계없이 나온 세개의 신문기사가 그 점에서 완전히 일치하다는데서 사실 그렇게 말하였다는것이 실증되는 그 문구가 주지하는바와

① 《브렌타노의 글에 대한 두번째 대답》. 一편집자

같은 《관례》에 따라 검열된 《핸사드》의 의사록에는 실려 있지 않다는것과, 글래드스턴은 그것을 맑스의 말을 빌려쓴다면 《후일에 슬쩍 삭제하였다》는것을 《타임스》지와 《핸사드》의 원문들을 대비함으로써 다시한번 확증하였다. 끝으로 맑스는 닉명필자를 이 이상 더 상대로 할 시간이 없다는것을 언명하였다. 이렇게 되니 닉명필자도 이것으로 만족하였던지 적어도 맑스에게 《조화》지의 그다음호들은 보내지 않았다.

이로써 사건은 종말을 짓고 망각되여버린것 같이 보였다. 하기는 그후 케임브리지대학과 관계를 가지고있는 사람들로부터 맑스가 《자본론》에서 문필상 대단한 죄악을 범했다고 하는 정체불명의 풍설이 한두차례 전해온적은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조사해도 확실한것은 도무지 알 도리가 없었다. 그러던차에 1883년 11월 29일 즉 맑스가 서거한후 8개월이 지나서 《타임스》지상에 케임브리지의 트리니티대학으로부터 온, 쎄들리 테일러라고 서명한 한통의 편지가 나타났다. 극히 온건한 협동조합운동을 하고있는 이 소인은 그 서한에서 전혀 뜻밖에도 드디여 우리에게 비단 케임브리지의 요언에 관해서뿐만아니라 《조화》지의 닉명필자에 관해서도 해명해주었다.

트리니티대학의 이 소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아주 기묘하게 생각되는것은 글래드스턴의 연설로부터의 인용문을 국제당의 〔창립〕 선언에 넣으라고 분명히 강요한 그 악의를 **브렌타노교수**(당시는 브레슬라우대학에 있었으나 현재는 슈트라스부르그대학에 있다.)가 비로소 폭로…할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인용문을 변호하려고 시도한…칼 맑스씨는 브렌타노가 재치있게 치자 대번에 거꾸러졌으나 그래도 단말마적으로 배심좋게도, 글래드스턴씨는 1863년 4월 17일부의 〈타임스〉지상에 실린 자기 연설의 보도를 그것이 〈핸사

드>에 나타나기전에 뜯어고쳐 영국재정대신의 말로서는 확실히 망신을 당할 위험이 있는 개소를 말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브렌타노가 원문을 세밀히 대조하여 <타임스>지와 <핸사드>의 보도가 교활하게 앞뒤를 끊어버린 인용이 글래드스턴의 말에 전가한 그러한 의미를 절대로 포함하고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치하다는것을 증명하였을 때 맑스는 시간이 없다는 구실밑에 퇴각하여버렸던것이다!》

사건의 진상은 바로 이러하였다! 그리고 《조화》 지상의 브렌타노씨의 닉명론전은 케임브리지의 생산협동조합적환상에 그처럼 휘황하게 반영되였던것이다! 독일공장주동맹의 성 게오르기우스인 브렌타노가 바로 이렇게 서서 바로 이렇게 검을 휘둘러[52] 《재치있게 치》니 저승의 룡 맑스는 그만 《대번에 거꾸러져서》 그의 발밑에서 《단말마적으로》 꿈틀거리다 숨이졌다는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아리오스또적전투기는 우리의 성 게오르기우스①의 간계를 가리우려는데 불과하다. 여기서 문제로 된것은 벌써 《위조하여 첨가한것》이나 《위조》가 아니고 오직 《교활하게도 앞뒤를 끊어버리고 인용한것》인것이다. 전체 문제는 어느새 다른 분야로 옮겨졌으며 그리고 성 게오르기우스와 케임브리지의 방패잡이②는 왜 그렇게 하는것이 필요한가를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엘리너 맑스는 《타임스》 지가 그의 론문을 게재하는것을 거절한 까닭에 월간잡지 《현대》(1884년 2월호)에서 테일러에게 답변하였다. 이 답변에서 그는 론쟁을 일찌기 문제로 되여있던 하나의 점 즉 맑스가 그 문구를 《위조하여 첨가》 하였는가 안하였는가 하는 점에 집중시켰다. 쎄들리 테일러씨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그의 의견에

① 브렌타노를 가리킨다. 一편집자
② 쎄들리 테일러를 가리킨다. 一편집자

의하면 맑스와 브렌타노간의 론쟁에 있어서는

《글래드스턴씨의 연설가운데 어떤 한 문구가 있었느냐 또는 없었느냐 하는 문제는, 인용의 의도가 글래드스턴의 말의 진의를 그대로 전달하는데 있었는가 또는 그것을 외곡하는데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비하면 극히 부차적인 의의밖에 가지지 못하는것이였다.》

그다음 그는 《타임스》지의 보도가 《실지로 모순되는 말을 내포하고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타의 전후 문맥은 만약 이것을 정당하게, 다시말하면 자유주의적 —글래드스턴적의미로 해석한다면 글래드스턴씨가 말하려고 **원하였던**것을 보여주고있다고 말하였다.(《현대》,1884년 3월호) 여기서 가장 우스운것은 케임브리지의 우리 소인이 이제는 연설을, 닉명필자 브렌타노의 의견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핸사드》에서 인용**하지 않고** 그 보도가 《조잡하지 않을수 없다》고 같은 브렌타노가 특징지은 《타임스》지로부터 열심히 인용하고있는 사실이다. 《핸사드》에는 이 시끄러운 문구가 **들어있지 않으니** 그렇게 할밖에!

엘리너 맑스가 《현대》의 같은 호에서 이 론의를 분쇄하는것은 용이한 일이였다. 둘중에 하나일것이다. 테일러씨가 1872년의 론쟁론설을 읽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는 지금 《거짓말》을 하는것이다. 그나마 그의 거짓말은 비단 없던것을 《위조하여 첨가》하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있던것을 《삭제》하는데도 있는것이다, 또는 그가 이 론쟁론설을 읽지 않았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는 발언할 권리가 없는것이다. 하여튼 그는 맑스가 《위조하여 첨가》하였다고 하는 자기의 벗 브렌타노의 고발을 감히 지지하지 못한것만은 확실하다. 반대로 이제는 맑스가 《위조하여 첨가》한것이 아니고 하나

의 중요한 문구를 말살하였다는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문구는 창립선언 5페지에 소위 《위조하여 첨가》 하였다고 하는 문구보다 몇줄앞에 인용되여있다. 글래드스턴의 연설가운데 있는 《모순》에 관해서 말한다면(《자본론》 618페지의 주 105①, 제3판 672페지에서)《글래드스턴의 1863~1864년예산연설에 있는 허다한 극심한 모순》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이 바로 맑스가 아니고 누구인가! 그는 다만 쎄들리 테일러식으로 이 모순을 자유주의의 쾌감속에 해소시키려고 시도하지 않았을뿐이다. 그리고 엘리너 맑스는 답변의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있다. 《사실은 정반대이다. 맑스는 인용할 가치 있는것을 말살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위조하여 첨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는 글래드스턴의 연설에서는 확실히 말하였으나 어떻게 되여서 <핸사드>의 기사에서는 탈락된 어떤 한구절을 부활시켜서 망각으로부터 구원해냈던 것이다.》

이것으로써 쎄들리 테일러씨도 진정하였다. 20년동안 큰 두 나라에 걸쳐서 진행된 이 교수적론쟁의 결과로 맑스의 문필상 량심을 누구도 감히 그 이상 비방하지 못하게 되였다. 또 금후 브렌타노씨는 《핸사드》의 법왕적무과실성을 믿지 않을것이며 마찬가지로 쎄들리 테일러씨는 아마 브렌타노씨의 문필적전투보고를 믿지 않게 될것이다.

F. 엥겔스

1890년 6월 25일, 런던에서

① 이 책 752페지를 보라. —편집자

제 1 부

자본의 생산과정

제 1 편
상품과 화폐

제 1 장
상 품

1. 상품의 두 요인—사용가치와 가치(가치실체, 가치량)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는 《상품의 거대한 집대성》(1)으로서 나타나며 개개의 상품은 이러한 부의 원소적형태로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구는 상품의 분석으로부터 시작된다.

상품은 우선 외적대상이며 그 속성에 의하여 인간의 어떤 종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물건이다. 이 욕망의 성질이 어떠한가, 그것이 례컨대 위로부터 일어나는가 또는 환상으로부터 일어나는가 하는것은 사태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2) 또 그 물건이 어떻게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가 즉

---

(1) 칼 맑스 《정치경제학비판》,1859년 베를린판, 3페지[53].

(2) 《욕망은 수요를 포함한다. 그것은 정신의 식욕이며 기아가 육체에 대하여 자연적인것처럼 자연적이다.…대다수 (물건) 는 정신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까닭에 가치를 가진다.》 (니컬레스 배어보운 《더 가벼운 새 화페를 주조할데 관한 론술. 화페가치를 높

생활수단으로서, 다시말하면 소비품으로서 직접 충족시키는가, 생산수단으로서 간접으로 충족시키는가 하는것도 여기서 문제로 되지 않는다.

철, 종이 등등과 같은 개개의 유용물은 두개 관점에서 즉 질적측면과 량적측면에서 고찰할수 있다. 개개의 그러한 물건은 많은 속성의 총체이고 따라서 여러 면에서 유용할수 있다. 이 여러 면, 따라서 물건의 다양한 사용방식을 발견하는것은 력사의 사업이다.(3) 유용물의 량을 측정하기 위한 사회적척도를 찾아내는것도 또한 그러하다. 상품척도의 차이는 일부분은 측정되는 대상의 성질이 다른데서 생기며 일부분은 관습에서 생긴다.

물건의 유용성은 물건으로 하여금 사용가치로 되게 한다.(4) 그러나 이 유용성은 공중에 떠있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상품체의 속성에 의하여 제약되며 상품체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철, 밀, 금강석 등등과 같은 상품체 그 자체가 사용가치 또는 재물인것이다. 상품체의 이 성질은 그 사용속성의 취득에 인간이 들인 로동이 많은가 적은가에는

일데 관한 로크씨의 고찰에 대한 대답》,1696년 런던판, 2~3페지)

(3) 《물건은 어디서나 동일한 내재적장점 (이것은 배어보운에게 있어서는 사용가치를 표시하는 독특한 용어이다.) 을 가지고있다. 례컨대 철을 끌어당기는 자석의 장점과 같은것이 그것이다.》(니컬레스 배어보운 《더 가벼운 새 화폐를 주조할데 관한 론술. 화폐가치를 높일데 관한 로크씨의 고찰에 대한 대답》, 1696년 런던판, 6페지)철을 끌어당기는 자석의 속성은 그 속성에 의하여 자극성이 발견된 때에야 비로소 유용하게 되였다.

(4) 《온갖 물건의 자연적 worth (가치) 는 그것이 여러가지 인간생활의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또는 그 편의에 이바지하는데 적당하다는 점에 있다.》(죤 로크 《리자인하의 제 결과에 관한 약간의 고찰(1691년)》, 《죤 로크저작집》 1777년 런던판, 제2권, 28페지에 수록.) 17세기에 있어서도 우리는 영국저술가들이 《worth》를 사용가치의 의미로 또 《value》를 교환가치의 의미로 사용한것을 자주 발견하는데 이것은 직접적사물을 게르만어원의 말로, 반영된 사물을 로만어원의 말로 표시하기를 좋아하는 영어의 정신에 완전히 부합된다.

의존하지 않는다. 사용가치를 고찰할 때에는 항상 몇타스의 시계나 몇엘레의 아마포나 몇톤의 철 등등과 같이 항상 그 량적규정성이 전제로 되여있다. 상품의 사용가치는 상품학이라는 특수한 학과에 재료를 제공한다.(5) 사용가치는 오직 사용 또는 소비에서만 실현된다. 사용가치는 부의 사회적형태 여하를 막론하고 부의 물질적내용을 형성한다. 우리가 고찰하게 되는 사회형태에서는 사용가치는 동시에 교환가치의 물질적담당자로 된다.

교환가치는 우선 어떤 종류의 사용가치가 다른 종류의 사용가치와 교환되는 량적관계 또는 비률(6)로서 나타난다. 이것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한다. 그러므로 교환가치는 어떤 우연적이며 순전히 상대적인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상품자체에 고유한 내재적교환가치(valeur intrinsèque)라는것은 일종의 형용모순①인것 같이 보인다.(7) 이 문제를 더 자세히 고찰하여보자.

어떤 일정한 량의 상품, 례컨대 한쿼터의 밀은 x량의 구두약, y량의 명주, z량의 금 등등과 교환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가지 같지 않은 비률로 다른 상품들과 교환된다. 따

---

(5) 자산계급사회에서는 누구나 상품구매자로서는 백과전서적인 상품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법적가정[54]이 지배하고있다.

(6) 《가치란 어떤 물건과 다른 물건, 어떤 생산물의 일정한 량과 다른 생산물의 일정한 량이 교환되는 관계이다.》(르 뜨론 《사회적리익에 관하여》, 대르편찬, 《중농학파》 (에 수록), 1846년 빠리판, 889페지)

(7) 《어떠한 물건도 내재적교환가치를 가질수 없다.》(니컬레스 배어보운 《더 가벼운 새 화페를 주조할데 관한 론술. 화페가치를 높일데 관한 로크씨의 고찰에 대한 대답》, 6페지) 혹은 바틀러가 말한것과 같이

《물건의 가치는
바로 그 물건이 가져오는것과 같다.》[55]

---

① 《형용모순》의 원문은 《contradictio in adjecto》인데 《둥근 사각형》, 《나무로 만든 철》 따위의 모순을 가리킨다. —편집자

라서 밀은 단 하나의 교환가치를 가지는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교환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x량의 구두약, y량의 명주, z량의 금 등등은 모두 밀 한쿼터의 교환가치들인 까닭에 x량의 구두약, y량의 명주, z량의 금 등등은 서로 바꾸어놓을수 있는, 또는 서로 같은 크기의 교환가치들이 아니면 안된다. 이로부터 첫째로, 동일한 상품의 유효한 제 교환가치들은 동일한 그 무엇을 표현하고있으며 둘째로, 일반적으로 교환가치는 자기자신과는 구별되는 다른 어떤 내용의 표현방식 또는 《현상형태》로밖에 될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음으로 두개의 상품 례컨대 밀과 철을 들어보자. 그것들의 교환비률이 어떻든지간에 그 교환비률은 항상 어떤 주어진 량의 밀의 일정한 량의 철에 등치되는 하나의 등식, 례컨대 1쿼터의 밀=a쩬트네르의 철로써 표시될수 있다. 이 등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개의 각이한 물건 즉 1쿼터의 밀과 a쩬트네르의 철에는 크기가 같은 어떤 공통적인것이 들어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량자는 제3자와 같으며 이 제3자자체는 첫째것도 아니고 둘째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량자는 그것이 교환가치인 한 모두 제3자에 환원될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간단한 기하학의 실례로써 설명할수 있다. 모든 직선형의 면적을 결정하며 비교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것을 삼각형으로 분할한다. 또 삼각형 그자체는 이 외견상의 형상과는 전혀 다른 표현에 즉 밑변과 높이와의 적의 2분의 1에 환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 상품의 교환가치는 하나의 공통적인것에 환원되여야 하는바 그것들은 이러한 공통적인것의 많은 량 또는 적은 량을 표시한다.

이러한 공통적인것은 상품의 기하학적, 물리학적, 화학적

또는 기타의 자연적속성일수는 없다. 상품의 물체적속성은 일반적으로 오직 그것이 상품으로 하여금 유용하게 하는 한에 있어서만, 따라서 사용가치로 되게 하는 한에 있어서만 고찰의 대상으로 된다. 다른 한편 상품교환관계를 명백히 특징짓는것은 바로 상품의 사용가치의 사상이다. 상품의 교환관계의 내부에서는 어떤 하나의 사용가치는 그것이 적당한 비률로 존재하기만 한다면 다른 어떤 사용가치와도 꼭같은것으로 인정된다. 또는 로배어보운이 말하는바와 같이

《어떤 종류의 상품과 다른 종류의 상품은 그 교환가치가 같기만 하면 다를것이 없다. 같은 교환가치를 가지는 물건들사이에는 차이나 구별이 없다.》(8)

사용가치로서는 제 상품은 무엇보다도 먼저 질적으로 구별되나 교환가치로서는 제 상품은 오직 량적차이만을 가질수 있으며 따라서 거기에는 단 한 원자의 사용가치도 포함되여 있지 않다.

만약 상품체의 사용가치를 도외시한다면 상품체에 남는것은 오직 하나의 속성 즉 로동생산물이라는 속성뿐이다. 그러나 그 로동생산물도 우리의 손에서 이미 변화를 일으킨다. 로동생산물의 사용가치를 사상한다면 로동생산물을 사용가치로 되게 하는 물체적인 구성부분과 형태까지도 사상하는것으로 된다. 이제는 이 로동생산물은 책상도, 집도, 방사도, 기타의 어떤 유용물도 아니다. 감각적으로 포착할수 있는 그 모든 속성은 사라져버렸다. 이제는 그것은 또한 가구사의 로동이나 건축로동이나 방적로동이나 기타 어떤 일정한 생산적

(8) 《어떤 종류의 상품과 다른 종류의 상품은 그 교환가치가 같기만 하면 다를것이 없다. 같은 교환가치를 가지는 물건들사이에는 차이나 구별이 없다.…100파운드의 가치를 가지는 연이나 철은 100파운드의 가치를 가지는 은이나 금과 같은 크기의 교환가치를 가진다.》(니컬레스 배어보운 《더 가벼운 새 화페를 주조할데 관한 론술. 화페가치를 높일데 관한 로크씨의 고찰에 대한 대답》, 53페지와 7페지)

로동의 생산물이 아니다. 로동생산물의 유용한 성질이 사라짐과 동시에 로동생산물에 구현되여있는 각종 로동의 유용한 성질도 사라지며 따라서 이러한 로동의 각이한 구체적형태도 사라진다. 이러한 로동은 이제는 서로 구별되지 않으며 모두가 다 동일한 인간로동으로 즉 추상적인간로동으로 환원된다.

그러면 이제는 로동생산물에 남아있는것을 고찰하여보자. 거기에는 유령과도 같은 동일한 대상성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며 무차별한 인간로동의 단순한 응고체 즉 그 지출형태에는 관계없는 인간로동력지출의 단순한 응고체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이러한 물건들은 이제는 그 생산에 인간로동력이 지출되여있으며 인간로동이 퇴적되여있다는것을 표시할뿐이다. 이러한 물건들은 그것들에 공통적인 사회적실체의 결정으로서는 가치—상품가치인것이다.

상품의 교환관계자체에서는 그 교환가치는 그 사용가치와 전혀 관계없는것으로서 우리앞에 나타났다. 만일 우리가 실지로 로동생산물의 사용가치를 사상한다면 우리는 지금 규정된것과 같은 로동생산물의 가치를 얻는다. 그러므로 상품의 교환관계 또는 교환가치에 표현되는 그 공통물이 바로 상품의 가치이다.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는 가치의 필연적인 표현방식 또는 필연적인 현상형태로서의 교환가치를 다시 고찰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우선 가치를 이 형태와는 관계없이 고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사용가치 또는 재물이 가치를 가지는것은 오직 거기에 추상적인간로동이 대상화 또는 물질화되여있기때문이다. 그러면 그 가치량은 어떻게 측정되는가? 거기에 들어있는 《가치를 형성하는 실체》의 량 즉 로동의 량에 의하여 측정된다. 로동자체의 량은 그 계속적시간에 의하여 측정

되며 로동시간은 또 시간, 일 등등과 같은 일정한 시간적단위를 그 척도로 삼는다.

어떤 상품의 가치가 그 생산과정에서 지출된 로동의 량에 의하여 규정된다면 어떤 사람이 태만할수록, 숙련되지 못할수록 그가 상품을 제조하는데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되므로 그의 상품은 가치가 그만큼 더 클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가치의 실체를 형성하는 로동은 같은 인간로동이며 동일한 인간로동력의 지출이다. 상품세계의 제 가치로 표현되는 사회의 총로동력은 비록 그것이 무수한 개별적로동력으로 구성되여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는 동일한 인간로동력으로 간주된다. 이 개개의 개별적로동력은 그것이 사회적평균로동력의 성격을 가지며 그러한 사회적평균로동력으로서 작용하며 따라서 일정한 상품의 생산에 있어서 역시 평균적으로 필요한 로동시간 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로동시간만을 요하는 한, 다른 로동력과 같은 인간로동력이다. 사회적필요로동시간이란 사회적인, 정상적인 현 생산조건하에서 또 로동의 숙련도와 강도의 사회적평균수준하에서 어떤 사용가치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로동시간이다. 례컨대 영국에서는 증기직포기[56]가 채용된 이후에는 일정한 량의 방사를 직물로 전화시키는데 종전에 비하여 아마 절반의 로동만이 요구되였을것이다. 영국의 수직포공은 이러한 전화에도 실지는 종전과 같은 로동시간을 소비하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그의 개별적인 1로동시간의 생산물은 사회적인 반로동시간밖에 대표하지 못하게 되였고 따라서 그 가치는 종전의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였다.

이와 같이 어떤 사용가치의 가치량을 규정하는것은 오직 사회적으로 필요한 로동의 량 즉 그 사용가치의 생산에 사회

적으로 필요한 로동시간일뿐이다.(9) 이 경우에 개개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그 종류의 상품의 평균적견본으로 간주된다.(10) 따라서 동일한 로동량이 들어있는 상품 또는 동일한 로동시간내에 생산될수 있는 상품은 동일한 가치량을 가진다. 어떤 상품의 가치와 개개의 다른 상품의 가치와의 비례는 전자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과 후자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과의 비례와 같다. 《가치로서는 모든 상품은 일정한 량의 응결된 로동시간에 불과하다.》(11)

그러므로 만약 어떤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의 가치량도 변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이 로동시간은 로동생산력이 변동할 때마다 변동한다. 로동생산력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규정되며 그중에서도 특히 로동자들의 평균적숙련도, 과학발전수준과 그 공업기술학적응용의 발전단계, 생산과정의 사회적결합, 생산수단의 규모와 작용능력에 의하여, 또 자연적조건에 의하여 결정된다. 례컨대 동일한 량의 로동이라도 풍년에는 8부쉘의 밀로 표현되며 흉년에는 겨우 4부쉘의 밀로 표현될뿐이다. 동일한 량의 로동이라도 부광에서는 빈광에서보다 더 많은 금속을 공급하는 등등이다. 금강석은 치각에는 희소하다. 그러므로 그것을 발견하는데는 평균적으로 많은 로동시간이 들게 된다. 따라서 그것은 적은 체적으로써 많은 로동을 표현한다. 제이

---

(9) 제2판 주: 《그것들 (생활필수품) 이 호상 교환될 때의 그 가치는 그 생산에 반드시 필요하며 또 보통 사용되는 로동의 량에 의하여 규정된다.》(《화폐리자일반 특히 공채리자에 대한 약간의 고찰》, 런던판, 36~37페지). 전세기의 이 주목할만한 닉명저서는 발행년도가 표시되여있지 않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보아 그것은 죠지2세때인 1739년이나 1740년에 발간된것이 분명하다.

(10) 《동일한 종류의 전체 생산물은 본래 하나의 량을 이루고있는데 그 가격은 특수한 조건과는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결정된다.》(르 뜨론 《사회적리익에 관하여》, 893페지)

(11) 칼 맑스 《정치경제학비판》, 1859년 베를린판, 6페지[57]

커브는 금이 일찌기 그 완전한 가치에 따라 치불된적이 있었는가를 의심하고있다.[58] 금강석에 관하여는 일층 더 그렇게 말할수 있다. 에슈웨게에 의하면 1823년 이전 80년간의 브라질금강석광의 총생산물의 가격은 브라질의 사탕수수 또는 커피 재배농장의 1년 반의 평균생산물의 가격에도 달하지 못하였다[59]고 하나 실은 전자는 훨씬 더 많은 로동을, 따라서 더 많은 가치를 대표하고있었음에도 그러하였다. 금강석함유량이 더 풍부한 광산이 발견되면 동일한 로동량이 더 많은 금강석으로 표현될것이며 따라서 그 가치는 저락할것이다. 만약 적은 로동으로써 석탄을 금강석으로 전화시키는데 성공한다면 금강석의 가치는 벽돌의 가치이하로 떨어질수 있을것이다. 일반적으로 로동생산력이 크면 클수록 어떤 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은 그만큼 적으며 거기에 결정되여있는 로동량도 그만큼 적고 그 가치도 그만큼 작다. 반대로 로동생산력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떤 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은 그만큼 많으며 그 가치도 그만큼 크다. 이와 같이 어떤 상품의 가치량은 이 상품에 실현되여있는 로동의 량에 정비례하고 그 생산력에 반비례하여 변동한다.

어떤 물건은 가치가 아니면서도 사용가치일수 있다. 그 물건의 인간에 대한 유용성이 로동에 의하여 매개되지 않는 경우에 그러하다. 례컨대 공기, 처녀지, 자연초원, 원생림 등등이 그러하다. 어떤 물건은 상품이 아니면서 유용하며 또 인간로동의 생산물일수 있다. 자기의 생산물로써 자기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사용가치를 만들기는 하지만 상품을 만들지는 않는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는 단순히 사용가치를 생산할뿐만아니라 타인을 위한 사용가치 즉 사회적사용가치를 생산하여야 한다. (또 그저 단순히 타인을 위

해서 뿐만이 아니다. 중세기의 농민은 봉건령주에게 공납으로 바칠 곡물을 생산하였고 승려에게 10분의 1세로 바칠 곡물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공납으로 바친 곡물이나 10분의 1세로 바친 곡물은 그것이 타인을 위하여 생산되였다는것만으로써는 아직 상품으로 되지 않았다. 상품으로 되기 위해서는 생산물이 사용가치로서 사용하는 사람의 손에 교환을 통하여 이전되여야 한다.) [11a] 끝으로 물건은 사용대상이 아니고서는 가치일수 없다. 만약 그것이 소용없는것이라면 거기에 들어있는 로동도 역시 소용없는것으로 되여 그것은 로동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따라서 가치도 형성하지 못한다.

2. 상품에 구현되여있는 로동의 이중성

처음에 상품은 이중적인것으로서 즉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서 우리앞에 나타났다. 그후에 로동도 또한 그것이 가치로 표현되는 한에 있어서는 더는 사용가치의 창조자로서의 로동에 속하는것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지 않는다는것이 판명되였다. 상품에 들어있는 로동의 이 이중성은 내가 처음으로 비판적으로 지적한것이다.[12] 이것은 정치경제학의 리해에 있어서 결정적인 점이기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두 상품, 가령 1개의 저고리와 10엘레의 아마포를 례로 들어보자. 전자의 가치가 후자의 가치의 2배라고 하자. 그럴때

(11a) 제4판 주: 이 꺾쇠묶음표안에 들어있는 말이 없었던탓으로 마치 맑스가 생산자이외의 사람이 소비하는 생산물을 무엇이든지 상품으로 간주한것 같은 오해가 아주 빈번히 생겼기때문에 나는 이 말을 삽입하였다. —F. E.

(12) 칼 맑스 《정치경제학비판》, 1859년 베를린판, 12~13페지 및 기타 페지[60]

에는 10엘레의 아마포=W라고 하면 1개의 저고리=2W이다.

저고리는 특수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사용가치이다.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종류의 생산활동이 필요하다. 이 생산활동은 그 목적, 작업방식, 대상, 수단 및 결과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와 같이 그 유용성이 그 생산물의 사용가치에 또는 그 생산물이 사용가치라는 점에 표현되는 그러한 로동을 우리는 간단히 유용로동이라고 한다. 이 관점에서는 로동은 항상 그 유용한 효과와 관련하여 고찰된다.

저고리와 아마포가 질적으로 다른 사용가치인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들의 정재를 매개하는 로동도 질적으로 서로 다른것—재봉로동과 직포로동이다. 만약 이 두 물건이 질적으로 다른 사용가치가 아니라면 따라서 질적으로 다른 유용로동의 생산물이 아니라면 그것들은 절대로 상품으로 서로 대립할수 없을것이다. 저고리는 저고리와는 교환되지 않으며 한 사용가치는 동일한 사용가치와 교환되지 않는다.

각이한 종류의 사용가치 또는 상품체의 총체에는 그만큼 각이한 속, 종, 과, 아종, 변종으로 나누어지는 다양한 유용로동의 총체—사회적분업이 나타난다. 사회적분업은 상품생산의 존재조건이다. 그러나 반대로 상품생산이 사회적분업의 존재조건인것은 아니다. 고대인도의 공동체[61]에서는 로동이 사회적으로 분할되여있었으나 생산물은 상품으로 되지 않았다. 더 가까운 실례를 든다면 어느 공장에서나 로동은 체계적으로 분할되여있으나 이 분할은 로동자들이 그들의 개인적 생산물을 교환하는것으로써 매개되는것은 아니다. 오직 자립적인, 호상독립한 사적로동의 생산물만이 상품으로서 서로 대립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것을 보았다. 매개 상품의 사용가치에는 일정한 합목적적인 생산활동 또는 유용로동이 들어있다. 여러가지 사용가치는 거기에 질적으로 다른 유용로동이 들어있지 않다면 상품으로서 서로 대립할수 없다. 그 생산물이 일반적으로 상품의 형태를 취하는 사회에서는, 다시말하면 상품생산자들의 사회에서는 독립적생산자들의 사사일로서 서로 독립하여 수행되는 각종 유용로동의 이러한 질적차이는 많은 가지가 있는 체제로 즉 사회적분업에로 발전한다.

저고리로서는 그것을 입는 사람이 재봉사자신이건 또는 재봉사의 고객이건 그것은 아무래도 좋다. 그 어느 경우에나 저고리는 사용가치로서 작용한다. 마찬가지로 저고리와 그것을 생산하는 로동간의 관계도 재봉로동이 특수한 직업으로, 사회적분업의 독립적인 일환으로 되여있다는 사실에 의해서는 달라지지 않는다. 의복에 대한 수요가 있던 곳에서는 인간은 재봉사가 나오기전부터 몇천년동안이나 재봉일을 하여왔다. 그러나 저고리, 아마포와 같은 천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적부의 온갖 요소들의 존재는 항상 특수한 자연물질을 인간의 특수한 욕망에 적응시키는 특별한 합목적적생산활동에 의하여 매개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사용가치의 창조자로서의 로동, 유용로동으로서의 로동은 어떠한 사회적형태와도 관계없는 인간생존의 조건이며 인간과 자연간의 물질변환을 즉 인간생활을 매개할수 있게 하는 영원한 자연적필연성이다.

저고리, 아마포 등등과 같은 사용가치 한마디로 말하면 상품체들은 두 요소—자연물질과 로동의 결합이다. 저고리, 아마포 등등에 들어있는 모든 각이한 유용로동의 총화를 제거한다면 남는것은 언제나 인간의 어떠한 협력도 없이 천연

적으로 존재하는 일종의 물질적기초뿐이다. 인간은 생산과정에서 오직 자연자체가 행동하는것처럼 행동할수 있을뿐이다. 다시말하면 오직 물질의 형태를 변경할수 있을뿐이다.(13) 그뿐이 아니다. 이러한 형태를 변경하는 로동자체에 있어서도 인간은 부단히 자연력의 도움에 의거한다. 따라서 로동은 그것이 생산하는 사용가치, 물질적부의 유일한 원천인것은 아니다. 윌리엄 페티가 말한바와 같이 로동은 물질적부의 아버지이고 토지는 그 어머니이다.[62]

이제는 사용대상으로서의 상품에서 상품가치로 넘어가자.

우리의 가정에 의하면 저고리는 아마포의 2배의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이것은 량적차이에 지나지 않으며 이 량적차이는 아직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만약 1개의 저고리의 가치가 10엘레의 아마포의 가치의 2배에 해당한다면 20엘레의 아마포는 1개의 저고리와 동일한 가치량을 가진다는것을 상기하게 된다. 가치로서는 저고리와 아마포는 동일한 실체를 가진 물건이며 동일한 종류의 로동의 객관적표현이다. 그러나 재봉과 직포는 질적으로 서로 다른 로동이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사회상태도 있다. 거기서는 동일한 인간이 번갈아 재봉도 하고 직포도 하며 따라서

---

(13) 《우주의 모든 현상은 인간의 손에 의하여 생기든지 혹은 자연의 일반적법칙에 의하여 일어나든지를 막론하고 사실상의 창조가 아니고 다만 물질의 형태변화에 지나지 않는다. 결합과 분리—이것이 인간리성이 재생산의 관념을 분석할 때에 거듭 발견하는 유일한 요소이다. 가치 (사용가치를 말한다. 물론 베리자신은 여기서 중농주의자와 론쟁하면서 자기가 어떤 종류의 가치를 말하고있는가를 똑똑히는 알지 못하고있다.) 와 부의 재생산이 진행된다. 례컨대 토지와 공기와 물이 들에서 곡물로 전화되는 경우나 곤충의 분비물이 인간의 수중에서 명주로 전화되는 경우나 개개의 금속조각이 결합되여 시계로 조립되는 경우가 다 그러하다.》(피에드로 베리 《정치경제학에 관한 고찰》, 1771년 처음으로 출판됨, 쿠스또디 편찬, 《이딸리아정치경제학고전저작가론문집 · 현대편》, 제15권, 21~22페지에 수록.)

각이한 이 두 종류의 로동방식이 동일한 개인의 로동의 변종에 지나지 않으며 아직은 각이한 개인들의 특수한 고정된 기능으로는 되여있지 않다. 그것은 마치 재봉사가 오늘 만드는 저고리와 래일 만드는 바지가 동일한 개인적로동의 변종인것과 꼭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얼핏 보아도 알수 있는바와 같이 우리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로동에 대한 수요의 방향이 변하는데 따라 인간로동의 일정한 부분이 때로는 재봉의 형태를 취하고 때로는 직포의 형태를 취한다. 로동의 이와 같은 형태변화가 마찰없이 일어난다고는 말할수 없으나 어차피 일어나야 한다. 만약 생산활동의 규정성, 따라서 로동의 유용한 성격을 도외시한다면 로동에 남는것은 그것이 인간로동력의 지출이라는것이다. 재봉로동과 직포로동은 비록 질적으로 다른 생산활동이기는 하나 량자는 모두 인간의 뇌수, 근육, 신경, 손 등등의 생산적지출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모두 인간로동인것이다. 그것들은 오직 인간로동력지출의 각이한 두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로동력이 이런 또는 저런 형태로 지출되기 위해서는 그자체가 일정한 정도로 발달되여 있어야 할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상품가치에는 오직 인간로동자체, 인간로동일반의 지출이 구현되여있다. 자산계급사회에서 장군이나 은행가는 큰 역할을 하지만 단순히 인간으로서는 극히 보잘것없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14) 여기서 인간로동도 바로 그러하다. 인간로동이라는것은 특별하게 발달하지 않은 모든 보통인간의 육체가 평균적으로 소유하고있는 단순한 로동력의 지출인것이다. **단순한 평균적로동**자체는 나라가 다르고 또 문화사적시대가 다르면 그 성격도 다르지만

(14) 헤겔 《법철학》, 1840년 베를린판, 250페지, 제190절을 참조하라.

그러나 일정한 사회에서는 일정한것이다. 보다 복잡한 로동은 다만 **자승한** 또는 더 정확히 말해서 **몇곱한** 단순로동을 의미할뿐이며 그리하여 적은 량의 복잡로동은 많은 량의 단순로동과 같게 된다. 이와 같은 환원이 부단히 진행되고있다는것은 경험이 보여주는바이다. 어떤 상품은 가장 복잡한 로동의 생산물일수 있으나 그 **가치**는 그 상품을 단순로동의 생산물과 등치되게 하며 따라서 가치자체는 일정한 량의 단순로동을 표시할뿐이다.(15) 각이한 종류의 로동이 그 측정단위로서의 단순로동으로 환원되는 각이한 비률은 생산자들의 배후에서 사회적과정에 의하여 확정되며 따라서 생산자들에게는 그것이 관습에 의하여 결정되는것 같이 보인다.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하의 서술에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로동력이든지 그것을 직접 단순로동력으로 간주할것인데 그것은 오직 환원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가치로서의 저고리와 아마포에 있어서는 그 사용가치의 구별이 사상되는것과 마찬가지로 이 가치로 표시되는 로동에서는 재봉과 직포라는 로동의 유용형태상 구별이 사상된다. 사용가치로서의 저고리와 아마포는 특정목적의 생산활동이 천 및 실과 결합된것이나 이에 반하여 가치로서의 저고리와 아마포는 동일한 종류의 로동의 응결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가치에 들어있는 로동도 또한 천과 실에 대한 그들의 생산적관계로서가 아니라 오직 인간로동력의 지출로서만 의미를 가진다. 재봉로동과 직포로

---

(15) 독자는 여기서 문제로 되는것이 로동자가 헤컨대 1로동일의 대가로 받는 임금 또는 가치가 아니라 그의 1로동일이 대상화되여있는 상품가치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로임이라는 범주는 우리 서술의 이 단계에서는 아직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①

① 이 책 613~622페지를 보라. —편집자

동은 바로 그 질적차이에 의하여 사용가치로서의 저고리와 아마포를 형성하는 요소로 되며 그 특수한 질이 사상되여 량자가 동일한 질 즉 인간로동이라는 질을 가지는 한에서만 저고리와 아마포의 가치의 실체로 된다.

그러나 저고리와 아마포는 비단 가치일반일뿐만아니라 일정한 량의 가치이다. 우리의 가정에 의하면 1개의 저고리는 10엘레의 아마포의 2배의 가치를 가진다. 그것들의 가치량의 이와 같은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가? 아마포에는 저고리에 비하여 절반의 로동밖에 들어있지 않으며 그리하여 저고리의 생산에는 아마포의 생산에 비하여 2배의 시간동안 로동력을 지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에서 생긴다.

그러므로 상품의 사용가치에 대해서는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로동의 질만이 의의를 가지나 가치량에 대해서는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로동의 량만이 의의를 가지며 이러한 로동은 벌써 아무런 질적차이도 가지지 않는 인간로동에 환원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로동이 어떻게 수행되는가, 무엇을 하는가가 문제로 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로동이 얼마나 지출되는가, 로동이 얼마동안 계속되는가가 문제로 된다. 상품의 가치량은 상품에 들어있는 로동의 량만을 표시하는 까닭에 상품들은 일정한 비례하에서는 항상 같은 량의 가치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1개의 저고리의 생산에 필요한 일체 유용로동의 생산력이 변하지 않는다면 저고리들의 가치량은 저고리의 량이 증대하는데 따라 증대할것이다. 만약 1개의 저고리가 x로동일을 대표한다면 2개의 저고리는 2x로동일을 대표할것이다, 등등. 그러나 1개의 저고리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이 2배로 증가하거나 혹은 절반으로 감소한다고 가정하자. 전자의 경

우에 1개의 저고리는 종전의 2개의 저고리가 가지고있던만큼 한 가치를 가지게 될것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2개의 저고리가 종전에 1개의 저고리가 가지고있던만큼한 가치밖에 가지지 못하게 될것이다. 비록 두 경우에 있어서 저고리는 전에나 후에나 의연히 동일한 효용을 가지며 또 저고리에 들어있는 유용로동은 전에나 후에나 의연히 동일한 질을 가져도 그렇게 되는것이다. 그러나 저고리의 생산에 지출된 로동의 량은 변하였다.

더 많은 량의 사용가치자체는 더 많은 물질적부를 이룬다. 2개의 저고리는 1개의 저고리보다 더 많은 물질적부이다. 2개의 저고리는 두사람을 입힐수 있지만 1개의 저고리는 오직 한사람밖에 입히지 못한다,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부의 량은 증대하나 반면에 그 가치량은 동시에 감소될수도 있다. 이러한 대립적인 운동은 로동의 이중성에서 생긴다. 생산력은 물론 항상 유용한 구체적인 로동의 생산력이며 실제에 있어서 주어진 시간내의 합목적적생산활동의 작용의 정도만을 규정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유용로동은 그 생산력의 제고 또는 저하에 정비례하여 더 풍부한 또는 더 빈약한 생산물원천으로 된다. 이와 반대로 생산력의 변동 그자체는 가치로 표현되는 로동에는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생산력은 로동의 구체적유용형태에 속하는 까닭에 로동의 구체적유용형태가 사상되기만 하면 생산력은 벌써 로동에 영향을 줄수 없는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동일한 로동은 동일한 시간에는 생산력이 아무리 변동하여도 항상 동일한 가치량을 창조한다. 그러나 그 로동은 동일한 시간에 각이한 량의 사용가치를 제공한다. 즉 생산력이 제고되는 때에는 더 많이 제공하며 생산력이 감소되는 때에는 더 적게 제공한다. 그러

므로 로동의 생산성을 높이며 따라서 또 로동에 의하여 제공되는 사용가치의 총량을 증대시키는 그러한 생산력의 변동은 그것이 이 사용가치총량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의 총화를 축소시킬 때에는 이 증대된 총량의 가치량을 감소시킨다.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로 된다.

온갖 로동은 한편으로는 생리학적의미에서의 인간로동력의 지출이다. 동등한 인간로동 또는 추상적인간로동이라는 이러한 속성에서는 로동은 상품의 가치를 형성한다. 온갖 로동은 다른 한편으로는 특수한 합목적적형태에서의 인간로동력의 지출이다. 구체적유용로동이라는 이러한 속성에서는 로동은 사용가치를 생산한다. (16)

---

(16) 제2판 주: 《로동만이 모든 시기에 모든 상품의 가치가 평가되며 비교될수 있는 종국적, 현실적 척도》라는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애담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동일한 량의 로동은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로동자자신에게 있어서 동일한 가치를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로동자는 그의 건강, 체력 및 활동의 정상적상태에서 또 그가 가질수 있는 숙련과 기능의 평균정도에서 항상 그의 휴식, 그의 자유, 그의 행복의 동일한 부분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된다.》(《제 국민의 부》, 제1권, 제5장) 한편으로는 애담 스미스는 여기서(그러나 모든 곳에서 그런것은 아니다.) 상품생산에 지출된 로동량에 의한 가치의 규정을 로동의 가치에 의한 상품가치의 규정과 혼동하고있으며 따라서 동일한 량의 로동은 항상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하고있다. 다른 한편 그는 로동은 그것이 상품가치로 표현되는 한에 있어서는 로동력의 지출을 의미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느끼고있으나 그러나 이 지출을 그는 역시 정상적인 생명활동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휴식과 자유와 행복의 희생으로서만 묘사하고있다. 그가 현대적임금로동자를 보고있었던것은 틀림없다.—이 문제에 있어서는 주 (9)에 인용된 익명필자인, 애담 스미스의 선행자가 훨씬 더 적절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어떤 사람이 이 사용대상을 생산하는데 1주일이 걸렸다.…그리고 그것과 교환하여 어떤 다른 물건을 제공하는자는 어떤 물건이 그로 하여금 동일한 labour (로동) 와 시간을 들이게 하였는가를 계산함으로써 어떤 물건이 상대자의 물건의 실제적등가물인가를 가장 잘 평가할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어떤 사람이 일정한 시간내에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데 지출한 로동이 그와 동일한 시간내에 다른 사람이 다른 물건을 생산하는데 지출한 로동과 교환된다는 점에 있다.》 (《화폐리자일반 특히 공채리자에 대한 약간의 고찰》, 39페지)— (제4판 주: 영어에는 로동의 이와 같은 두 각이한 측면을 표시하는데 두개의 각이한 말이 있는 장점이 있다. 사용가치를 창조하는, 질적으로 규정된 로동은 labour와 구별하여 work라고 부르며 가치를 창조하는, 오직 량적으로만 측정되는 로동은 work와 구별하여 labour라고 부른다. 영문판, 14페지 각주를 보라. —F. E.)

3. 가치형태 또는 교환가치

상품은 철, 아마포, 밀 등등과 같은 사용가치 또는 상품체의 형태로 세상에 태여난다. 이것은 상품의 평범한 자연적 형태이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상품으로 되는것은 오직 이중적인것이기때문이며 오직 사용대상인 동시에 가치의 담당자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오직 이 이중적형태 즉 자연적형태와 가치형태를 가지는 한에 있어서만 상품으로 나타나며 또는 상품형태를 가진다.

상품의 가치대상성은 도무지 어떻게 포착해야 할는지 알 수 없는 입잰 퀴클리부인과는 구별된다. 상품체의 감각적이고 거친 대상성과는 정반대로 상품체의 가치대상성에는 단 한원자의 자연물질도 들어있지 않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개개의 상품을 아무리 만져보고 돌려보아도 그것은 가치물로서는 포착할수 없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상품은 그것이 동일한 사회적단위인 인간로동의 표현인 한에서만 가치대상성을 가진다는것, 따라서 그 가치대상성은 순전히 사회적인것이라는것을 상기한다면 가치대상성은 오직 상품과 상품간의 사회적관계에서만 나타날수 있다는 사실이 역시 자명한것으로 된다. 사실 우리는 상품의 교환가치 또는 교환관계로부터 출발하여 거기에 숨어있는 상품가치를 찾아냈다.① 이제 우리는 가치의 이 현상형태로 되돌아가야 하겠다.

누구나 다른것은 아무것도 몰라도 상품이 그 사용가치의 여러가지 잡다한 자연적형태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있는 하나

① 이 책 49~51페지를 보라. —편집자

의 공통적인 가치형태 즉 화폐형태를 가지고있다는것은 다 알고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자산계급적경제학이 일찌기 엄두도 내지 못하였던 일을 하여야 한다. 그것은 이 화폐형태의 발생을 밝히는것, 다시말하면 상품의 가치관계에 포함되여있는 가치표현의 발전을 그 가장 간단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모습으로부터 가장 눈부신 화폐형태에 이르기까지를 뒤쫓아가는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화폐의 수수께끼도 동시에 사라질것이다.

가장 간단한 가치관계는 두말할것없이 어떤 한 종류의 상품과 다른 종류의 한 상품(그것이 어떤것이든)과의 가치관계이다. 그러므로 두 상품간의 가치관계는 한 상품에 가장 간단한 가치표현을 준다.

A. 간단한, 개별적인 또는 우연적인 가치형태

x량의 상품 A=y량의 상품 B, 또는 x량의 상품 A는 y량의 상품 B와 가치가 같다.

(20엘레의 아마포=1개의 저고리, 또는 20엘레의 아마포는 1개의 저고리와 가치가 같다.)

(1) 가치표현의 량극—상대적가치형태와 등가형태

온갖 가치형태의 비밀은 이 간단한 가치형태속에 숨어있다. 그러므로 이 형태의 분석은 확실히 곤난하다.

종류가 다른 두 상품 A와 B, 우리의 례에서는 아마포와 저고리는 여기서 분명히 두개의 각이한 역할을 한다. 아마포는 자기의 가치를 저고리로 표현하며 저고리는 이러한 가치표현의 재

료로 된다. 제1의 상품은 능동적역할을 하며 제2의 상품은 피동적역할을 한다. 제1의 상품의 가치는 상대적가치로서 표현된다. 바꾸어말하면 그것은 상대적가치형태에 있다. 제2의 상품은 등가물로서 기능한다. 바꾸어말하면 그것은 등가형태에 있다.

상대적가치형태와 등가형태는 동일한 가치표현의 호상 의존하며 호상 제약하는 불가분적계기들이지만 그와 동시에 호상 배제하는 또는 대립하는 량단 즉 량극이다. 이 량극은 언제나 이 가치표현에 의하여 호상 련관되여있는 각이한 두 상품에 분배된다. 나는 례컨대 아마포의 가치를 아마포로 표현할수는 없다. 20엘레의 아마포=20엘레의 아마포는 결코 가치표현이 아니다. 이 등식은 오히려 반대로 20엘레의 아마포는 20엘레의 아마포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라는것 즉 일정한 량의 사용대상인 아마포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라는것을 말하고있다. 따라서 아마포의 가치는 오직 상대적으로만, 다시말하면 다른 상품으로써만 표현될수 있다. 그러므로 아마포의 상대적가치형태는 어떤 다른 상품이 아마포에 대립하여 등가형태에 있는것을 전제로 한다. 다른 한편 등가물의 역할을 하는 이 다른 상품은 동시에 상대적가치형태에 있을수 없다. 그것은 자기의 가치를 표현하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직 다른 상품의 가치표현에 재료를 제공하고있을뿐이다.

물론 20엘레의 아마포=1개의 저고리, 또는 20엘레의 아마포는 1개의 저고리와 가치가 같다는 표현은 1개의 저고리=20엘레의 아마포 또는 1개의 저고리는 20엘레의 아마포와 가치가 같다는 반대의 관계를 내포하고있다. 그러나 저고리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보는바와 같이 등식을 반대로 만들어야 하며 또 그렇게 하기만 하면 저고리 대신에 아마포가 등가물로 된다. 따라서 동일한 상품은 동일

한 가치표현에서는 동시에 량쪽 형태를 취할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이 량쪽 형태는 대극으로서 서로 배제한다.

어떤 상품이 상대적가치형태에 있는가 또는 그에 대립하는 등가형태에 있는가 하는것은 오로지 그 상품이 가치표현에서 그때그때에 차지하는 위치에 의하여, 다시말하면 그 상품이 자체의 가치가 표현되는 상품인가 또는 자체가 가치를 표현하는 상품인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상대적가치형태

(a) 상대적가치형태의 내용

한 상품의 간단한 가치표현이 두 상품의 가치관계속에 어떻게 숨어있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가치관계를 우선 그 량적관계와는 완전히 독립하여 고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이와 정반대의 연구방법을 취하여 가치관계에서 두가지 상품의 일정한 량이 서로 등치되는 그 비률만을 본다. 그들은 각이한 물건의 크기는 그것이 동일한 단위에 환원된후에라야 비로소 량적으로 비교할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있다. 오직 동일한 단위의 표현으로서만 그것은 동일한 명칭의 크기, 따라서 약분할수 있는 크기로 되는것이다.(17)

20엘레의 아마포=1개의 저고리이든지, 혹은 =20개의 저고리이든지, 혹은 =X개의 저고리이든지간에 다시말하면 일정한 량의 아마포가 다량의 저고리의 가치가 있든지 혹은

---

(17) 가치형태의 분석에 몰두한 S. 베일리와 같은 소수의 경제학자들이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것은 첫째로는 그들이 가치형태를 가치와 혼동한 까닭이며 둘째로는 그들이 공리적인 자산자의 조잡한 영향하에서 처음부터 다만 량적규정성에만 주의를 돌렸던 까닭이다. 《량에 대한 지배가…가치를 형성한다.》(《화폐와 그 가치의 변동》, 1837년 런던판, 11페지) 저자 S. 베일리.

소량의 저고리의 가치가 있든지간에 어쨌든 그러한 비률은 어느것이나 다 항상 아마포와 저고리가 가치량으로서는 동일한 단위의 표현이며 동일한 성질을 가진 물건이라는것을 포함한다. 아마포=저고리가 이 등식의 기초이다.

그러나 질적으로 서로 등치되는 이 두 상품은 동일한 역할을 하는것은 아니다. 오직 아마포의 가치만이 표현될뿐이다. 어떻게 표현되는가? 아마포가 자기의 《등가물》 또는 자기와 《교환될수 있는 물건》으로서의 저고리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를 통해서 표현된다. 이 관계에서 저고리는 가치의 존재형태, 가치물로서 인정된다. 왜냐 하면 저고리는 오직 가치물로서만 아마포와 동일한것이기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아마포자체의 가치적존재가 나타난다. 즉 독립적표현을 얻는다. 왜냐 하면 아마포는 오직 가치로서만, 자기와 가치가 같은것으로서의; 또 자기와 교환될수 있는 물건으로서의 저고리와 관계할수 있기때문이다. 류사한 례를 든다면 버터산과 개미산프로필에테르는 서로 다른 물질이다. 그렇지만 량자는 모두 동일한 화학적실체인 탄소(C), 수소(H), 산소(O)로 이루어져있으며 또한 백분비구성 즉 $C_4H_8O_2$를 가지고있다. 이제 만약 개미산프로필에테르가 버터산과 등치된다면 이 관계에서는 첫째로, 개미산프로필에테르가 $C_4H_8O_2$의 존재형태에 지나지 않으며, 둘째로, 버터산도 역시 $C_4H_8O_2$로 구성되여있다는것을 의미할것이다. 이와 같이 버터산에 개미산프로필에테르가 등치됨으로써 버터산의 화학적실체는 그 물체형태와는 다르게 표현될것이다.

우리가 상품은 가치로서는 인간로동의 단순한 응결체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분석은 상품을 가치추상에 환원하는것이지만 그러나 상품에 그 자연적형태와는 다른 어떤 가치형태를

부여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상품의 다른 상품에 대한 가치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경우에는 그 상품의 가치적성격이 다른 상품에 대한 그 상품의 관계를 통하여 나타난다.

례컨대 저고리가 가치물로서 아마포에 등치된다면 저고리에 포함되여있는 로동은 아마포에 포함되여있는 로동과 등치되는것이다. 저고리를 만드는 재봉로동이 아마포를 만드는 직포로동과는 다른 종류의 구체적로동이라는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재봉을 직포와 등치되게 하는것은 재봉을 사실상 두가지 로동에서 현실적으로 같은것에 즉 그것들에 공통한 인간로동이라는 성격에 환원하는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우회적방식에 의하여 명백한것은 직포도 역시 그것이 가치를 짜는 한에 있어서는 재봉과 구별되는 특징이 없고 따라서 추상적인간로동이라는 사실이다. 가치를 형성하는 로동의 특수한 성격을 나타내는것은 종류가 다른 상품들의 등가표현뿐이다. 왜냐 하면 이 등가표현이 각종 상품에 들어있는 각종 로동을 사실상 그것들에 공통적인것 즉 인간로동일반에 환원하기때문이다.(17a)

그렇지만 아마포의 가치를 구성하는 로동의 특수한 성격을 표현하는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류동상태에 있는 인간로동력 또는 인간로동은 가치를 형성하지만 그러나 그자체는 가

(17a) 제2판 주: 윌리엄 페티이후에 가치의 성질을 통찰한 최초의 경제학자의 한사람인 유명한 프랭클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상업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한 로동을 다른 로동과 교환하는 행위이외의 아무것도 아닌 까닭에 모든 물건의 가치는 로동에 의하여 가장 정당하게 평가된다.》(스파스편찬, 《프랭클린저작집》, 1836년 보스톤판, 제2권, 267페지) 프랭클린은 모든 물건의 가치를 《로동에 의하여》 평가함으로써 그가 교환되는 로동들간의 차이를 사상하며 또 따라서 그것들을 동일한 인간로동에 환원하고있다는것을 의식하지 못하고있다. 그러나 그는 의식하지 못한것을 말은 하고있다. 그는 처음에는 《한 로동》에 관하여 말하고 다음에는 《다른 로동》에 관하여 말하고 끝으로 진일보의 규정도 없는, 모든 물건의 가치의 실체로서의 《로동》에 관하여 말하고있다.

치가 아니다. 로동은 응결상태에서, 대상적형태에서 가치로 되는것이다. 아마포의 가치를 인간로동의 응결물로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물적으로 아마포자체와는 구별되며 또 동시에 아마포와 기타 상품에 공통한 하나의 《대상성》으로서 표현되여야 한다. 이 과제는 이미 해결되였다.

아마포의 가치관계에서 저고리가 아마포와 질적으로 같은것으로서, 같은 성질의것으로서 인정되는것은 그것이 가치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저고리는 가치를 표현하는 물건 또는 감촉될수 있는 자기의 자연적형태로 가치를 표현하는 물건으로 인정된다. 물론 저고리 즉 저고리라는 상품체는 하나의 사용가치에 지나지 않는다. 저고리는 아마포의 임의의 한 쪼각과 마찬가지로 가치를 표현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저고리가 아마포에 대한 자기의 가치관계의 내부에서는 그 외부에서보다 더 큰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실증할 뿐이다. 이것은 마치 많은 사람들이 금모루로 장식한 옷을 입었을 때에는 그것을 입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의의를 가지는것과 같다.

저고리의 생산에는 재봉로동의 형태로 인간로동력이 실제로 지출되였다. 따라서 저고리에는 인간로동이 쌓여있다. 이 측면에서 본다면 저고리는 《가치의 담당자》이다. 물론 저고리의 이러한 속성 그자체는 저고리의 천이 아무리 닳아 얇아져도 들여다보이는것은 아니다. 아마포와의 가치관계에서는 저고리는 오직 이러한 측면만을 나타낸다. 다시말하면 물체화된 가치로서만, 가치체로서만 인정된다. 저고리는 단추까지 채우고 나타나도 아마포는 그속에서 자기와 동족인 아름다운 가치의 령혼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아마포에 대하여 가치가 동시에 저고리라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서는 저고리가

아마포앞에서 가치를 표시할수 없다. 그것은 마치 개인 A에 대하여 페하가 동시에 개인 B라는 육체적모습을 취하지 않고서는 따라서 국왕이 교체될 때마다 용모와 머리털 기타가 변함이 없이는 개인 A는 개인 B를 페하로서 대할수 없는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저고리가 아마포의 등가물로 되는 가치관계에서 저고리의 형태는 가치형태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상품 아마포의 가치는 상품 저고리의 물체에 표현되며 한 상품의 가치는 다른 상품의 사용가치에 표현된다. 아마포는 사용가치로서는 저고리와 감각적으로 구별되는 물건이지만 가치로서는 아마포는 《저고리와 같은것》이며 따라서 저고리와 같은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아마포는 그 자연적형태와는 다른 가치형태를 얻는다. 아마포의 가치적존재가 그와 저고리와의 동등성에서 표현되는것은 마치 기독교도의 양같은 성질이 그와 신의 재끼양[63]과의 동등성에서 표현되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상품가치의 분석이 우에서 우리에게 말해준 모든것을 아마포자신이 다른 상품인 저고리와 교제하게 되자마자 이야기하는것을 본다. 다만 아마포는 자기에게만 통하는 언어로써 즉 상품어로써 자기의 사상을 표현할뿐이다. 아마포는 로동이 인간로동이라는 추상적속성에서 아마포자신의 가치를 형성한다는것을 말하기 위하여 저고리가 아마포와 동등한 의의를 가지는 한에 있어서, 따라서 가치인 한에 있어서 아마포와 동일한 로동으로 형성되여있다고 말한다. 아마포는 그 고상한 가치대상성이 그 거치른 자기 물체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가치는 저고리의 형태를 가지며 따라서 그자신은 가치물로서 저고리와 꼭같다고 말한다. 겸하여 말해둔다면 헤브라이어이외에 상품어에도 역시 더 정확하거나

더 부정확한 많은 방언들이 있다. 례컨대 상품 B를 상품 A에 등치하게 하는것은 상품 A자체의 가치표현이라는 사실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독일어의 《Wertsein》〔가치, 가치존재〕은 로만어의 동사 valere, valer, valoir〔가치가 있다〕에 비하여 적절하지 못하다. 빠리는 확실히 미사값에 상등하다![64]

따라서 가치관계를 매개로 하여 상품 B의 자연적형태가 상품 A의 가치형태로 된다. 다시말하면 상품 B의 물체가 상품 A의 가치의 거울로 된다.(18) 상품 A는 가치체로서의, 인간로동의 물질화로서의 상품 B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B의 사용가치를 자기자신의 가치표현의 재료로 삼는다. 상품 A의 가치는 이와 같이 상품 B의 사용가치에 표현되여 상대적가치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b) 상대적가치형태의 량적규정성

그 가치가 표현되여야 하는 매개 상품은 모두 일정한 량의 사용대상이다. 례컨대 15쉐펠의 밀, 100폰드의 커피 등등이다. 이 주어진 상품량은 일정한 량의 인간로동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가치형태는 비단 가치일반뿐만아니라 량적으로 규정된 가치 즉 가치량도 표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상품 A의 상품 B에 대한 가치관계, 아마포의 저고리에 대한

---

(18)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도 또한 상품과 같다. 인간은 손에 거울을 들고 이 세상에 태여나는것도 아니며 나는 나다라고 주장하는 피흐테류의 철학자로서 태여나는것도 아니므로 인간은 처음에 다른 사람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본다. 인간 페테르는 자기와 같은 인간 파울과 관계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자기자신에 관계하게 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페테르에게 있어서는 파울전체가 그 파울적인 육체 그대로 인간이라는 종족의 현상형태로 인정되는것이다.

가치관계에서는 저고리라는 상품종류가 비단 가치체일반으로서 아마포에 질적으로 등치될뿐만아니라 일정한 량의 가치체 또는 등가물 례컨대 1개의 저고리는 일정한 량의 아마포, 례컨대 20엘레의 아마포에 등치된다.

《20엘레의 아마포=1개의 저고리 또는 20엘레의 아마포는 1개의 저고리와 가치가 같다.》는 등식은 1개의 저고리에는 20엘레의 아마포에 들어있는것과 꼭같은 량의 가치실체가 들어있다는것, 따라서 이 두 상품량은 동일한 량의 로동 또는 동일한 로동시간을 들인것이라는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20엘레의 아마포 또는 1개의 저고리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은 직포로동 또는 재봉로동의 생산력이 변동하는데 따라 변동한다. 이제는 이러한 변동이 가치량의 상대적표현에 주는 영향을 일층 상세하게 연구하여야 한다.

Ⅰ. 아마포의 가치는 변하는데(19) 저고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경우. 례컨대 아마포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이 아마재배지의 비옥도의 감소로 말미암아 2배로 늘어난다면 아마포의 가치도 2배로 늘어날것이다. 20엘레의 아마포=1개의 저고리가 아니라 20엘레의 아마포=2개의 저고리로 될것이다. 왜냐 하면 1개의 저고리에는 이제는 20엘레의 아마포에 들어있는 로동시간의 절반밖에 들어있지 않기때문이다. 반대로 만약 아마포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이 례컨대 직포기의 개량으로 말미암아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아마포의 가치도 절반으로 떨어질것이다. 이에 따라 이제는 20엘레의 아마포=$\frac{1}{2}$개의 저고리로 된다. 이와 같이 상품 B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경우

(19) 《가치》라는 표현은 여기에서는 앞에서도 여기저기에서 그러했거니와 량적으로 규정된 가치 즉 가치량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되고있다.

에는 상품 A의 상대적가치 즉 상품 B에 표현되는 상품 A의 가치는 상품 A의 가치에 정비례하여 등귀 또는 저락한다.

Ⅱ. 아마포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데 저고리의 가치가 변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저고리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이 례컨대 양털깎기가 잘 안되였기때문에 2배로 늘어난다면 20엘레의 아마포=1개의 저고리가 아니라 이제는 20엘레의 아마포=$\frac{1}{2}$개의 저고리로 될것이다. 반대로 만약 저고리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진다면 20엘레의 아마포=2개의 저고리로 될것이다. 그러므로 상품 A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품 B에 표현되는 상품 A의 상대적가치는 상품 B의 가치의 변동에 반비례하여 저락 또는 등귀한다.

Ⅰ과 Ⅱ의 여러가지 경우를 비교하여보면 상대적가치의 동일한 량적변동이 정반대되는 원인에서 발생할수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리하여 20엘레의 아마포=1개의 저고리라는 등식이 1) 어떤 때는 아마포의 가치가 2배로 되기때문에 또 어떤 때는 저고리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기때문에 20엘레의 아마포=2개의 저고리라는 등식으로 되며 또 2) 어떤 때는 아마포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기때문에 또 어떤 때는 저고리의 가치가 2배로 등귀하기때문에 20엘레의 아마포=$\frac{1}{2}$개의 저고리라는 등식으로 된다.

Ⅲ. 아마포와 저고리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량이 동시에 동일한 방향으로 또 동일한 비률로 변동할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이 상품들의 가치가 아무리 변동하더라도 의연히 20엘레의 아마포=1개의 저고리이다. 이 상품들의 가치의 변동은 그것들을 가치가 변하지 않은 제3의 상품과 비교할 때에만 나타난다. 만약 모든 상품의 가치가 동시에 동일한 비률

로 등귀 또는 저락한다면 그 상품들의 상대적가치는 변하지 않을것이다. 이 경우에 상품가치의 현실적변동은 동일한 로동시간내에 제공되는 상품량이 일반적으로 종전에 비해서 더 많은가 또는 더 적은가 하는데 의하여 알수 있을것이다.

Ⅳ. 아마포와 저고리의 생산에 각각 필요한 로동시간이, 따라서 그것들의 가치가 동시에, 동일한 방향으로 그러나 각이한 정도로 변동하든가 혹은 반대방향으로 변동하는 등등의 경우가 있을수 있다. 그러한 종류의 일체 가능한 조합이 한 상품의 상대적가치에 주는 영향은 Ⅰ, Ⅱ, Ⅲ의 경우를 적용하면 간단히 알수 있다.

이리하여 가치량의 현실적변동은 가치량의 상대적표현에는 즉 상대적가치량에는 명확하게 완전히 반영되지 않는다. 한 상품의 상대적가치는 그 상품의 가치가 변동하지 않아도 변동할수 있다. 또한 상품의 상대적가치는 그 상품의 가치가 변동하여도 변동하지 않을수 있다. 끝으로 한 상품의 가치량 및 이 가치량의 상대적표현이 동시에 변동하여도 그 변동이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20)

---

(20) 제2판 주: 가치량과 그 상대적표현과의 이 불일치를 속류정치경제학이 습관적인 명민성으로 리용하여왔다. 례를 들면 이러하다. 《A와 교환되는 B가 등귀하는 까닭에 —비록 그때에 A에 지출되는 로동이 감소되는것은 아니지만— A가 저락한다는것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당신들의 일반적가치원리는 파탄될것이다.…A의 가치가 B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등귀하는 결과 B의 가치가 A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저락한다는것을 인정한다면 한 상품의 가치는 항상 거기에 구현된 로동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한 리카도가 내놓은 대명제의 토대는 무너지고말것이다. 왜냐 하면 만약 A의 비용의 어떤 변동이 A와 교환되는 B와의 관계에서 A자체의 가치를 변화시킬뿐만아니라 B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량에는 아무런 변동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의 가치도 A의 가치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변화시킨다면 그 경우에는 어떤 물품에 지출된 로동량이 그 가치를 규제한다는것을 단언하는 학설이 파탄될뿐만아니라 어떤 물품의 생산비가 그 가치를 규제한다는 학설도 역시 파탄되기때문이다.》(J. 브로드허스트《정치경제학》, 1842년 런던판, 11, 14페지)

브로드허스트씨는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말할수 있을것이다. $\frac{10}{20}$, $\frac{10}{50}$, $\frac{10}{100}$ 등등의 분수를 잘 보라. 10이라는 수는 의연히 불변인데 그 상대적크기 즉 분모 20, 50,

(3) 등가형태

우리는 다음과 같은것을 보았다. 상품 A(아마포)는 그 가치를 다른 종류의 상품 B(저고리)의 사용가치로 표현함으로써 상품 B자체에 하나의 독특한 가치형태 즉 등가형태를 부여한다.① 상품 아마포는 저고리가 그 물체적형태와는 다른 가치형태를 취하지 않고 상품 아마포와 등치된다는데 의하여 자기자신의 가치존재를 외부에 나타낸다. 이와 같이 아마포는 저고리가 직접 자기와 교환될수 있다는데 의하여 자기자신의 가치존재를 실지로 표현한다. 따라서 어떤 상품의 등가형태라는것은 그 상품이 다른 상품과 직접 교환될수 있는 형태이다.

어떤 종류의 상품, 례컨대 저고리가 다른 종류의 상품 례컨대 아마포의 등가물로 되며 그리하여 저고리가 아마포와 직접 교환될수 있는 형태에 있다는 특수한 속성을 획득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결코 저고리와 아마포가 서로 교환될수 있는 비률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이 비률은 아마포의 가치량이 주어져있는만큼 저고리의 가치량에 의존한다. 저고리가 등가물로서 표현되고 아마포가 상대적가치로서 표현되든 혹은 반대로 아마포가 등가물로서 표현되고 저고리가 상대적가치로서 표현되든간에 저고리의 가치량은 의연히 저고리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에 의하여, 따라서 저고리의 가치형태와는 관계없이 결정된다. 그러나 저고리라는 상품종류가 가치표현에 있어서 등가물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때에는 저고리의

100에 대한 그 크기는 부단히 감소된다. 따라서 어떤 정수 례컨대 10의 크기는 거기에 들어있는 단위수에 의하여 《규제》된다는 대원리는 무너진다고.

① 이 책 62~63페지를 보라. —편집자

가치량은 가치량으로서의 표현을 받지 못한다. 저고리의 가치량은 가치등식에서는 오히려 다만 어떤 물건의 일정한 량으로서 나타날뿐이다.

례컨대 40엘레의 아마포는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2개의 저고리의 가치가 있다. 저고리라는 상품종류는 여기서 등가물의 역할을 하며 저고리라는 사용가치는 가치체로서 아마포에 대립하는 까닭에 저고리의 일정한 량은 아마포의 일정한 가치량을 표현하는데 충분하다. 그러므로 2개의 저고리는 40엘레의 아마포의 가치량을 표현할수 있다. 그러나 2개의 저고리는 자기자신의 가치량 즉 저고리의 가치량은 결코 표현할수 없다. 가치등식에서 등가물은 항상 어떤 물건, 어떤 사용가치의 단순한 량의 형태만을 취한다는 이 사실을 피상적으로 리해하였기때문에 베일리는 오유에 빠졌으며 그의 많은 선행자 및 후계자와 마찬가지로 가치표현에서 오직 량적 관계만을 보게 되였다. 사실에 있어서 상품의 등가형태는 결코 가치의 량적규정을 포함하는것이 아니다.

등가형태를 고찰할 때에 눈에 띄는 첫째 특징은 사용가치가 그 대립물인 가치의 현상형태로 된다는 점이다.

상품의 자연적형태가 가치형태로 된다. 그러나 주의하라. 이러한 전환은 상품 B(저고리 또는 밀 또는 철 등등)에 있어서는 오직 임의의 다른 상품 A(아마포 등등)가 그것과 맺는 가치관계의 내부에서만, 오직 이 관계의 내부에서만 일어난다. 어떠한 상품도 자기자신에 대하여 등가물로서 관계를 맺을수 없으며 따라서 자기자신의 자연적외피를 자기자신의 가치의 표현으로 삼을수는 없기때문에 어떤 상품이나 등가물로서의 다른 상품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된다. 즉 다른 상품의 자연적외피를 자기자신의 가치형태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

이 사실을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상품체자체를, 다시말하면 사용가치로서의 상품체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척도를 실례로 들어보자. 덩어리사탕은 물체인 까닭에 무게가 있고 따라서 일정한 중량을 가지고있으나 어떤 덩어리사탕에서도 그 중량을 직접 눈으로 볼수도 없으며 또는 손으로 감촉할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중량이 미리 확정되여있는 몇개의 쇠쪼각을 취한다. 철의 물체적형태는 그자체로서 관찰할 때에는 덩어리사탕의 물체적형태와 마찬가지로 무게의 현상형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덩어리사탕을 무게로서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것을 철과의 중량관계에 놓는다. 이 관계에서 철은 무게이외에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는 하나의 물체로서 기능한다. 그러므로 철의 량은 사탕의 중량의 척도로 쓰이며 또 그것은 사탕이라는 물체에 대해서는 오직 무게의 체화물 또는 무게의 현상형태만을 대표한다. 철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것은 사탕이나 또는 그 중량이 측정되여야 할 기타의 어떤 물체가 철과 맺는 중량관계의 내부에서뿐이다. 만약 이 두 물체가 다 무게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이러한 관계를 맺을수 없을것이며 따라서 그것들중의 일방이 타방의 무게의 표현으로 될수 없을것이다. 우리가 이 량자를 저울우에 놓을 때에 우리는 이 량자가 무게로서는 동일하며 따라서 일정한 비률을 취하면 동일한 중량을 가진다는것을 실제로 알게 된다. 철의 물체가 중량척도로서는 덩어리사탕에 대하여 오직 무게만을 대표하는것과 마차가지로 우리의 가치표현에서는 저고리의 물체가 아마포에 대하여 오직 가치만을 대표한다.

그러나 류사성은 여기에서 끝난다. 철은 덩어리사탕의 중량표현에서 두 물체에 공통한 자연적속성 즉 그것들의 무게를 대표하지만 저고리는 아마포의 가치표현에서 두 물건의 초자연

적속성 즉 그것들의 가치, 순 사회적인 어떤것을 대표한다.

한 상품 레컨대 아마포의 상대적가치형태는 그 가치 존재를 아마포의 물체 및 이 물체의 속성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서 레컨대 저고리와 같은것으로서 표현하는만큼 이 표현자체가 벌써 그 배후에 어떤 사회적관계가 숨어있다는것을 암시하고있다. 등가형태는 이것과는 반대이다. 등가형태는 어떤 상품체 레컨대 저고리라는 이 물건자체가 가치를 표현하며 따라서 천연적으로 가치형태를 가지고있다는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이것은 오직 상품 아마포가 상품 저고리를 등가물로 하고있는 가치관계의 내부에서 인정될뿐이다.(21) 그러나 어떤 물건의 속성은 그 물건과 다른 물건과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것이 아니고 다만 그러한 관계속에서 나타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저고리도 무게가 있다든가 또는 체온을 보존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속성과 꼭 마찬가지로 자기의 등가형태 즉 다른 상품들과 직접 교환될수 있는 속성을 천연적으로 가지고있는듯이 보인다. 등가형태의 수수께끼가 이로부터 발생하는데 정치경제학자의 조잡한 자산계급적안목에는 등가형태가 완성되여 화폐로서 자기앞에 나타나는 그때에라야 비로소 이 수수께끼가 눈에 뜨인다. 그때에 정치경제학자는 금과 은을 그보다 덜 찬란한 상품들과 바꾸어놓음으로써 또 일찌기 등가물상품의 역할을 논 일이 있는 보통상품의 목록을 항상 새로운 만족감으로써 렬거함으로써 금과 은의 신비로운 성격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는 20엘레의 아마포=1개의 저고리라는 가장 간단한 가치표현이 벌써 등가형태의 수수께끼를

---

(21)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반성규정[65]은 기묘한것이다. 레컨대 어떤 사람은 오직 다른 사람들이 신하로서 그에게 대하기때문에 왕인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반대로 그가 왕인 까닭에 자기들이 신하라고 생각한다.

풀수 있게 한다는것을 깨닫지 못한다.

등가물로 되는 상품체는 항상 추상적인 인간로동의 체화물로 인정되며 동시에 항상 일정한 유용한 구체적로동의 생산물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구체적로동이 추상적인간로동의 표현으로 된다. 례컨대 저고리가 추상적인간로동의 실현으로서만 인정된다면 저고리에 실제로 실현되여있는 재봉로동은 추상적인간로동의 실현형태로서만 인정된다. 아마포의 가치표현에 있어서 재봉로동의 유용성은 그것이 의복을 만드는데, 따라서 또 사람을 만드는①데 있는것이 아니라 그자체가 곧 가치라고 보이는 그러한 물체, 다시말하면 아마포의 가치에 대상화되여있는 로동과 조금도 구별이 없는 그러한 로동의 응고체를 만드는데 있다. 그와 같은 가치의 거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봉로동 그자체는 인간로동이라는 자기의 추상적 속성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반영해서는 안된다.

재봉의 형태에서나 직포의 형태에서나 다 인간로동력이 지출된다. 그러므로 이 량자는 인간로동이라는 일반적속성을 가지고있으며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는, 례컨대 가치생산에서는 오직 이 관점에서만 고찰되여야 한다. 이것은 조금도 신비한것이 아니다. 그러나 상품의 가치표현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례컨대 직포가 직포라는 그 구체적형태에서가 아니라 인간로동이라는 그 일반적속성에서 아마포의 가치를 형성한다는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마포의 등가물을 생산하는 구체적로동인 재봉이 추상적인간로동의 감각할수 있는 실현형태로서 직포에 대립된다.

---

① 원문은 독일속담 《Kleider machen Leute》를 리용하고있는데 이것을 문자그대로 번역하면 《의복이 사람을 만든다.》로 되나 의미상으로는 《의복이 날개다》라는 말이다. -편집자

이와 같이 구체적로동이 그 대립물인 추상적인간로동의 현상형태로 된다는것이 등가형태의 제2의 특징이다.

그러나 이 구체적로동인 재봉로동은 무차별적인 인간로동의 단순한 표현으로 인정되기때문에 이 형태에서 그것은 다른 로동 즉 아마포에 들어있는 로동과 동등한 형태를 가지며 따라서 그것은 상품을 생산하는 다른 모든 로동과 같이 사적로동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직접 사회적인 형태의 로동인 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재봉로동은 다른 상품과 직접 교환될수 있는 하나의 생산물로 자기자신을 표현한다. 이와 같이 사적로동이 그 대립물의 형태로 즉 직접 사회적인 형태의 로동으로 된다는것이 등가형태의 제3의 특징이다.

등가형태의 마지막 두 특징은 만약 우리가 그처럼 많은 사유형태, 사회적형태 및 자연적형태와 아울러 가치형태를 처음으로 분석한 위대한 연구가에게까지 소급한다면 일층 더 리해하기 쉽게 될것이다. 그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선 상품의 화폐형태는 단순한 가치형태가; 다시말하면 한 상품가치의 어떤 임의의 다른 상품에 의한 표현이 일층 발전한것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명백히 지적하였다. 왜냐 하면 그는 사실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기때문이다.

《5개의 침대=한채의 가옥》 은
《5개의 침대=얼마의 화폐》 와
《다름이 없다》 라고.

그는 더 나아가 이 가치표현을 포함하고있는 가치관계는 가옥과 침대의 질적동등성을 조건으로 하며 그리고 이 감각적으로 각이한 물건들은 이와 같은 본질상의 동등성이 없이는 약분할수 있는 량으로서 서로 관계를 맺을수 없으리라는

것을 간파하고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교환은 동등성 없이는 있을수 없고 동등성은 약분가능성 없이는 있을수 없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멈추고 가치형태의 그 이상의 분석을 포기하고있다. 《그러나 종류가 다른 이러한 물건들이 약분된다는것은》 즉 질적으로 동일하다는것은 《실지로는 불가능하다》. 그와 같은 동등성은 물건들의 진정한 성질과는 다른것일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오직 《실제적수요를 위한 응급수단》 일따름이다.[66]

이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로 하여금 그 이상 더 분석할수 없게 한것이 바로 무엇인가를 자기스스로 우리에게 말하여주고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가치개념의 결여이다. 이 동등물 즉 침대의 가치표현에서 가옥이 침대를 위하여 표시하여주는 그 공통한 실체는 무엇인가? 그러한것은 《실지로는 존재할수 없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어째서? 가옥이 침대에 대하여 어떤 동등물을 표시하는것은 그것이 침대와 가옥의 량자에 있는 현실적인 동등물을 표시하는 한에 있어서이다. 그런데 이 현실적인 동등물은 인간로동인것이다.

그러나 상품가치의 형태에서는 일체 로동이 동등한 인간로동으로서 따라서 동등한 의의를 가지는것으로서 표현된다는 이 사실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치형태자체에서 간파하지 못하였다. 왜냐 하면 희랍사회는 노예로동에 기초하였고 따라서 인간들간의 불평등과 인간로동력간의 불평등을 그 자연적기초로 삼고있었기때문이다. 일체 로동은 그것이 인간로동일반인 까닭에 또 그 한에 있어서 동등하며 동등한 의의를 가진다는 가치표현의 이 비밀은 인간의 평등이라는 개념이 벌써 공고한 국민적인 선입견으로 되는 그때에라야만 비로소 해명될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상품형태가 로동

생산물의 일반적형태이며 따라서 또한 상품소유자로서의 인간호상관계가 지배적인 사회관계로 되여있는 그러한 사회에서만 비로소 가능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천재는 바로 그가 상품의 가치표현에서 동등관계를 발견한데서 빛을 내고있다. 다만 그는 그가 생존하고있던 사회의 력사적제한성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동등관계가 《실지로는》 무엇인가 하는것을 발견할수 없었던것이다.

(4) 단순한 가치형태의 총체

한 상품의 단순한 가치형태는 그 상품과 다른 종류의 한 상품과의 가치관계속에 또는 교환관계속에 포함되여있다. 상품 A의 가치는 상품 B가 상품 A와 직접 교환될수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질적으로 표현되며 일정한 량의 상품 B가 주어진 량의 상품 A와 교환될수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량적으로 표현된다. 바꾸어말하면 한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이 《교환가치》로서 표현되는데 의하여 독립적인 표현을 가진다. 우리는 이 장의 서두에서는 관용적표현에 따라 상품은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라고 말하였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옳지 않다. 상품은 사용가치 또는 사용대상인 동시에 또 《가치》인것이다. 상품은 그 가치가 그 자연적형태와는 다른 하나의 독특한 현상형태 즉 교환가치라는 현상형태를 취할 때에 이러한 이중물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상품은 그것을 고립적으로 고찰하여서는 결코 이 교환가치형태를 가지지 않으며 항상 그와 종류가 다른 제2의 상품과의 가치관계 또는 교환관계에서만 이 형태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리해하고있기만 한다면 상술한 표현은 유해로운것이 아니라 오

히려 간편한것으로 된다.

우리의 분석이 증명한바와 같이 상품의 가치형태 또는 가치표현이 상품가치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것이지 그와 반대로 가치 및 가치량이 교환가치로서의 그 표현방식으로부터 나오는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생각하는것은 중상주의자들이나 그들의 현대추종자들인 패리에, 가닐 등등(22)의 망상[67]이며 그들의 반대자인 현대자유무역행상인 바스띠아와 그 일파의 망상이다[68]. 중상주의자들은 가치표현의 질적측면에, 따라서 화폐를 그의 완성형태로 하는 상품의 등가형태에 중점을 두며 이와 반대로 어떠한 값으로든지 자기 상품을 팔아치우지 않으면 안되는 현대자유무역행상인들은 상대적가치형태의 량적측면에 중점을 둔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품의 가치 및 가치량은 그것들이 교환관계에 의한 표현에만 존재하며 따라서 매일의 물가표에만 존재하는것이다. 롬바드거리[69]의 극히 혼란된 관념을 될수 있는 한 박식으로써 분식하는것을 자기의 직책으로 삼고있는 스코틀랜드인 머클라우드는 미신적인 중상주의자와 개화한 자유무역행상인사이에서 훌륭한 종합을 이루고있다.[70]

상품 B에 대한 가치관계에 포함되여있는 상품 A의 가치표현을 상세하게 고찰하면 이 관계의 내부에서는 상품 A의 자연적형태는 오직 사용가치의 모습으로서만, 또 상품 B의 자연적형태는 가치형태 또는 가치의 모습으로서만 의의를 가진다는것이 명백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상품에 숨어있는 사용가치와 가치와의 내부적대립은 하나의 외부적대립을 통하여, 다시말하면 두 상품의 관계를 통하여 표현된다. 그리고

---

(22) 제2판 주: F. L. A. 패리에 (세관 부검사관) 《상업과의 관계에서 본 정부에 관하여》, 1805년 빠리판. 샤를 가닐 《정치경제학의 제 체계에 관하여》, 1821년 빠리 제2판.

이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표현되는 한쪽 상품은 직접 사용가치로서만 의의를 가지며 거기에 가치가 표현되는 다른 쪽 상품은 이에 반하여 직접 교환가치로서 의의를 가진다. 이와 같이 한 상품의 단순한 가치형태는 그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사용가치와 가치와의 대립의 단순한 현상형태이다.

로동생산물은 어떠한 사회상태하에서도 사용대상이지만 그러나 오직 력사적으로 규정된 발전시대만이 즉 사용물의 생산에 지출된 로동이 이 물건의 《대상적》 속성으로서 즉 그 물건의 가치로서 표현되는 바로 그러한 시대만이 로동생산물을 상품에로 전화시킨다. 이로부터 상품의 단순한 가치형태는 동시에 로동생산물의 단순한 상품형태이며 따라서 또 상품형태의 발전도 가치형태의 발전과 일치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단순한 가치형태가 즉 일련의 변태를 경과했어야 비로소 가격형태로 성숙하는 이 맹아형태가 불충분한것임은 첫눈에도 명백하다.

상품 A의 가치를 어떤 상품 B로 표현하는것은 상품 A의 가치를 다만 그 자신의 사용가치와 구별할따름이며 따라서 또 상품 A를 다만 그자체와는 다른 종류의 어떤 개별적 상품과의 교환관계에 놓을뿐이며 상품 A와 다른 모든 상품과의 질적동일성 및 량적비률성을 표현하는것은 아니다. 한 상품의 단순한 상대적가치형태에는 다른 한 상품의 개별적인 등가형태가 대응한다. 그리하여 저고리는 아마포의 상대적가치표현에서 오직 이 종류의 개별적 상품 아마포와의 관계에서만 등가형태 즉 직접 교환될수 있는 형태를 가진다.

그렇지만 개별적인 가치형태는 스스로 더 완전한 형태에로 이행한다. 이 개별적인 가치형태를 매개로 하여서는 한 상품 A의 가치는 오직 하나의 다른 종류의 상품에 의하여서

만 표현될뿐이다. 그러나 이 제2의 상품이 어떤 종류의것인가 즉 저고리인가, 철인가, 밀인가 기타 무엇인가 하는것은 아무래도 좋다. 그러므로 동일한 상품이 어러저러한 다른 상품종류와 가치관계를 맺는데 따라 동일한 상품의 여러가지 단순한 가치표현들이 생긴다.(22a) 동일한 상품의 가능한 가치표현의 수는 그 상품과는 다른 상품종류의 수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그리하여 그 상품의 개별적인 가치표현은 여러가지 단순한 가치표현의 얼마든지 확대될수 있는 계렬로 전화된다.

B. 전체적인 또는 전개된 가치형태

z량의 상품 A=u량의 상품 B, 또는 =v량의 상품 C,
또는=w량의 상품 D, 또는=x량의 상품 E, 또는=등등.
(20엘레의 아마포=1개의 저고리, 또는 =10폰드의 차, 또는 =40폰드의 커피, 또는 =1쿼터의 밀, 또는 =2온스의 곰, 또는 =$\frac{1}{2}$톤의 철, 또는 = 등등.)

(1) 전개된 상대적가치형태

어떤 하나의 상품 례컨대 아마포의 가치는 이제는 상품세계의 무수한 다른 요소들로 표현된다. 다른 모든 상품체는 아마포가치의 거울로 된다.(23) 그리하여 이제야 비로소 이

(22a) 제2판 주: 례컨대 호메로스에 있어서는 한 물건의 가치가 일련의 여러가지 물건들로 표현된다.[71]

(23) 그러므로 우리는 아마포의 가치를 저고리로 표현한다면 아마포의 저고리가치라고 말하며 아마포의 가치를 곡물로 표현한다면 아마포의 곡물가치라고 말한다, 등등. 그와 같은 매개 표현은 저고리, 곡물 등등의 사용가치에 나타

가치자체가 참으로 무차별적인간로동의 응결체로서 나타난다. 왜냐 하면 이 가치를 형성하는 로동은 이제는 다른 어떤 인간로동과도－그것이 어떠한 자연적형태를 가지고있든지, 그때문에 또 그것이 저고리, 또는 밀, 또는 철, 또는 금 등등 그 어느것에 대상화되여있든간에－동일한 의의를 가지는 로동으로서 아주 뚜렷하게 표현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마포는 자기의 가치형태를 통하여 이제는 다른 어떤 개별적상품종류와 사회적관계를 맺을뿐만아니라 상품세계전체와도 사회적관계를 맺는다. 상품으로서는 아마포는 상품세계의 한 공민이다. 그와 동시에 상품가치표현의 무한한 계렬은 상품가치가 그것이 표현되는 사용가치의 특수한 형태에는 전혀 관계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제1의 형태 즉 20엘레의 아마포=1개의 저고리에서는 이 두 상품이 일정한 량적비률로 서로 교환될수 있다는것은 우연한 사실일지도 모른다. 이와 반대로 제2의 형태에서는 우연적현상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며 또 이 우연적현상을 규정하는 그러한 배경이 곧 드러난다. 아마포의 가치는 그것이 저고리 또는 커피 또는 철 등등 그 어느것에 표현되든지간에 즉 각양각색의 소유자에 속하는 무한히 다양한 상품중의 어

내는것은 아마포의 가치라는것을 의미한다. 《어떤 상품이든지 그 가치는 그 상품의 교환관계를 표현하는것이기때문에 우리는 그 상품과 비교되는 상품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상품의 가치를…곡물가치, 직물가치 등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리하여 무수한 다른 종류의 가치가 있다. 즉 현존하는 상품종류의 수만큼 가치의 종류가 있고 그것들은 모두 동일하게 실질적이며 또 동일하게 명목적이다.》(《가치의 성질, 척도 및 원인에 관한 비판적론술, 주로 리카도씨`및 그의 추종자들의 저작에 관하여. 견해의 형성 및 발표에 관한 략론의 저자의 저서》, 1825년 런던판, 39페지) 그 당시 영국에서 큰 소동을 일으킨 이 익명저서의 저자인 S. 베일리는 동일한 상품가치의 이러한 잡다한 상대적표현을 지적함으로써 가치에 관한 모든 개념 규정을 부정해버렸다고 망상하고있다. 그의 식견의 천박성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가 리카도학설의 약점을 찔렀다는 사실은 리카도학파[72]가 레컨대 《웨스트민스터평론》에서 그를 공격할 때에 나타낸 그 격분이 이것을 증명하였다.

느것에 표현되든지간에 그 크기는 언제나 같다. 두 개인적상품소유자간의 우연적관계는 소멸된다. 교환이 상품의 가치량을 규제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상품의 가치량이 상품의 교환비률을 규제한다는것이 명백해진다.

(2) 특수한 등가형태

저고리, 차, 밀, 철 등등의 상품은 모두가 아마포의 가치표현에 있어서 등가물로서, 따라서 가치체로서 인정된다. 이각 상품의 일정한 자연적형태는 이제는 많은 다른 특수한 등가형태와 아울러 하나의 특수한 등가형태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각이한 상품체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일정한, 구체적인 유용한 로동종류는 이제는 바로 그만큼한 수의 인간로동일반의 특수한 실현형태 또는 현상형태로서 인정된다.

(3) 전체적인 또는 전개된 가치형태의 결함

첫째로, 여기서 상품의 상대적가치표현은 그 표현계렬이 결코 종결되지 않기때문에 미완성이다. 하나의 가치등식이 다른 가치등식에 련결되여 이루는 련쇄는 새로운 가치표현의 재료를 재공하는 새로운 종류의 상품이 나타날 때마다 언제나 계속 연장될수 있다. 둘째로, 이와 같은 련쇄는 조각조각 끊어진 여러가지 종류의 가치표현의 착잡한 조각나무세공을 이룬다. 끝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는것이지만— 어떤 상품의 상대적가치나 이 전개된 형태에 표현된다면 매개 상품의 상대적가치형태는 기타의 어떠한 상품의 상대적가치형태와도 다른 가치표현의 무한한 계렬을 가지게 된다. 전개된 상대적

가치형태의 결함은 그에 대응하는 등가형태에 반영된다. 여기서는 매개의 상품종류의 자연적형태가 다른 무수한 특수한 등가형태들과 병렬하는 하나의 특수한 등가형태이므로 대체로 서로 배제하는 제한된 등가형태들만이 존재할뿐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매개의 특수한 상품등가물에 들어있는 일정한, 구체적인, 유용한 로동종류도 다만 인간로동의 특수한, 따라서 불완전한 현상형태일따름이다. 확실히 인간로동은 이 특수한 현상형태들의 총범위에서 그 완전한 또는 전체적인 현상형태를 가진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인간로동은 통일적인 현상형태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확대된 상대적가치형태는 오직 단순한 상대적가치표현들의 총화 또는 제1형태의 등식들의 총화로써만 이루어진다. 례컨대

20엘레의 아마포=1개의 저고리

20엘레의 아마포=10폰드의 차 등등.

그러나 이 매개 등식은 또 전도하여 놓으면 다음과 같은 동일한 등식도 포함하고있다.

1개의 저고리=20엘레의 아마포

10폰드의 차=20엘레의 아마포 등등.

사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마포를 다른 많은 상품들과 교환하며 따라서 아마포의 가치를 일련의 다른 상품으로 표현한다면 필연적으로 다른 많은 상품소유자들도 역시 그들의 상품을 아마포와 교환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들의 각이한 상품의 가치를 동일한 제3의 상품으로 즉 아마포로 표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20엘레의 아마포=1개의 저고리, 또는 =10폰드의 차, 또는 =등등의 계렬을 전도하면, 다시말해서 이 계렬에 사실상 이미 포함되여있는 거꾸로의 관계를 표

현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를 얻게 된다.

C. 일반적가치형태

1개의 저고리 =
10폰드의 차 =
40폰드의 커피=
1쿼터의 밀=
2온스의 금=
$\frac{1}{2}$톤의 철=
X량의 상품 A=
등등의 상품= } 20엘레의 아마포

(1) 가치형태의 변화된 성격

상품들은 자기의 가치를 이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1) 단순하게 표현한다. 왜냐 하면 그것들은 단 하나의 상품으로 표현하기때문이다. 2) 통일적으로 표현한다. 왜냐 하면 그것들은 동일한 상품으로 표현하기때문이다. 상품들의 가치형태는 단순하고 공통적이며 따라서 일반적이다.

제1형태와 제2형태는 다 한 상품의 가치를 그자체의 사용가치 또는 그 상품체와는 다른 어떤것으로 표현되게 하였을뿐이다.

제1형태는 1개의 저고리=20엘레의 아마포, 10폰드의 차 =$\frac{1}{2}$톤의 철 등등과 같은 가치등식을 제공하였다. 저고리의 가치는 아마포와 동등한것으로서 표현되며 차의 가치는 철과

동등한것으로서 표현된다, 등등. 그러나 아마포와 동등한것 및 철과 동등한것—저고리 및 차의 이러한 가치표현들은 마치 아마포와 철이 서로 다른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르다. 이 형태는 실지로는 로동생산물이 우연적인, 례외적인 교환에 의하여 상품에로 전화되는 교환의 시초단계에서만 나타난다는것이 명백하다.

제2형태는 제1형태보다 더 완전하게 한 상품의 가치를 그 자체의 사용가치로부터 분리시킨다. 왜냐 하면 이제는 례컨대 저고리의 가치는 모든 가능한 형태에서 즉 아마포와 동등한것, 철과 동등한것, 차와 동등한것 등등으로서 요컨대 저고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다른 물건과 동등한것으로서 저고리의 자연적형태에 대립하기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여기서는 상품의 공통한 가치표현들이 모두다 직접 배제된다. 왜냐 하면 매개 상품의 가치표현에 있어서 다른 모든 상품은 이제는 오직 등가물의 형태로만 나타나기때문이다. 확대된 가치형태는 어떤 로동생산물 례컨대 가축이 벌써 우연적으로가 아니라 관습적으로 많은 다른 상품과 교환되는 그때에 비로소 사실상 나타난다.

새로 얻은 형태는 상품세계의 가치들을 상품세계에서 분리된 같은 종류의 한 상품 례컨대 아마포로 표현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상품의 가치를 아마포와의 그것들의 동등성을 통하여 표현한다. 이제는 매개 상품의 가치는 아마포와 동등한것으로서 비단 그자체의 사용가치와 구별될뿐만아니라 일체 사용가치와 구별되며 또 바로 그렇게 됨으로써 그 상품과 모든 다른 상품에 공통한것으로서 표현된다. 그러므로 오직 이 형태만이 비로소 상품들을 가치로서 현실적으로 서로 관련시키며 또는 그것들로 하여금 호상간에 교환가치로

서 나타나게 한다.

앞의 두 형태는 한 상품의 가치를 혹은 단 하나의 다른 종류의 상품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그것과 다른 일련의 많은 상품으로 표현하거나 한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개별적상품이 가치형태를 획득하는것은 말하자면 그 상품의 사사로운 일이고 또 개별적상품은 다른 상품들의 협력없이 이것을 수행한다. 다른 상품들은 그 상품에 대하여 등가물이라는 피동적역할을 할따름이다. 이와는 반대로 일반적가치형태는 오직 상품세계의 공동사업으로서만 발생한다. 어떤 상품이 일반적인 가치표현을 획득하는것은, 동시에 다른 모든 상품이 자기의 가치를 동일한 등가물로 표현하며 또 새로 나타나는 매개 상품종류는 반드시 이것을 모방해야 하는데 기인할뿐이다. 상품들의 가치대상성이란 이 물건들의 《사회적정재》에 지나지 않는것이므로 이 대상성은 오직 상품들의 전면적인 사회적관계에 의해서만 표현될수 있으며 따라서 상품들의 가치형태는 반드시 사회적으로 공인하는 형태여야 한다는것이 명백해진다.

모든 상품은 아마포와 같은것이라는 형태에서 이제는 질적으로 같은것으로서 즉 가치일반으로서 나타날뿐만아니라 동시에 량적으로 비교될수 있는 가치량으로서도 나타난다. 모든 상품은 자기의 가치량을 동일한 재료에 즉 아마포에 반영하는 까닭에 이것들의 가치량은 서로 반영된다. 례컨대 10폰드의 차=20엘레의 아마포 및 40폰드의 커피=20엘레의 아마포. 따라서 10폰드의 차=40폰드의 커피. 바꾸어말하면 1폰드의 커피에 포함되여있는 가치실체 즉 로동은 1폰드의 차에 들어있는 그것의 $\frac{1}{4}$만 들어있다.

상품세계의 일반적인 상대적가치형태는 상품세계로부터 배제된 등가물상품인 아마포에 일반적등가물의 성격을 부여한다. 아마포자체의 자연적형태가 이 상품세계의 공통한 가치모습으로 되며 따라서 아마포는 다른 모든 상품과 직접 교환될수 있는것이다. 아마포의 물체형태가 온갖 인간로동의 눈에 보이는 화신, 일반적인 사회적번데기로서 인정된다. 직포로동 즉 아마포를 생산하는 사적로동은 동시에 일반적인 사회적형태에, 모든 다른 로동과의 동등성의 형태에 존재한다. 일반적가치형태를 구성하는 무수한 등식은 아마포에 실현되여있는 로동을 다른 상품에 들어있는 모든 종류의 로동과 순차적으로 등치시키며 또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직포로동을 인간로동일반의 일반적현상형태로 만든다. 이와 같이 상품가치에 대상화된 로동은 현실적로동의 모든 구체적형태와 유용한 속성이 사상된 로동으로서 소극적으로 표현될뿐만이 아니다. 이 로동자체의 적극적인 본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로동은 모든 현실적로동이 인간로동이라는 그것들의 공통한 성격에로, 인간로동력의 지출에로 환원된것이다.

로동생산물을 무차별적인간로동의 단순한 응고체로서 표현하는 일반적가치형태는 그자체의 구조에 의하여 그것이 상품세계의 사회적표현이라는것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일반적가치형태는 상품세계의 내부에서는 로동의 일반적인 인간적성격이 로동의 독특한 사회적성격을 이루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2) 상대적가치형태와 등가형태의 발전관계

상대적가치형태의 발전정도에는 등가형태의 발전정도가

대응한다. 그러나—주의해야 할것이지만—등가형태의 발전은 상대적가치형태의 발전의 표현이며 그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한 상품의 단순한 또는 단독적인 상대적가치형태는 다른 한 상품으로 하여금 개별적인 등가물로 되게 한다. 확대된 상대적가치형태 즉 다른 모든 상품에서의 한 상품의 가치의 표현은 이 다른 모든 상품에 여러가지 특수한 등가물의 형태를 부여한다. 끝으로 특수한 한 종류의 상품이 일반적등가물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것은 다른 모든 상품이 그것을 자기의 통일적인 일반적인 가치형태의 재료로 삼기때문이다.

가치형태일반이 발전하는것과 같은 정도로 그 량극인 상대적가치형태와 등가형태간의 대립도 그만큼 발전한다.

제1형태—20엘레의 아마포=1개의 저고리—도 벌써 이 대립을 내포하고있기는 하나 그것을 고정시키지는 않는다. 우리가 이 등식을 왼쪽으로부터 읽는가 또는 오른쪽으로부터 읽는가에 따라 량극의 상품인 아마포와 저고리가 각각 번갈아 혹은 상대적가치형태에 있기도 하며 혹은 등가형태에 있기도 한다. 여기서는 아직 량극의 대립성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곤난하다.

제2형태에서는 언제나 단 한 종류의 상품만이 자기의 상대적가치를 완전히 전개할수 있다. 바꾸어말하면 오직 모든 다른 상품이 그것에 대립하여 등가형태에 있기때문에 또 그러한 한에 있어서만 그 상품자체가 전개된 상대적가치형태를 가지는것이다. 여기서는 벌써 가치등식(례컨대 20엘레의 아마포=1개의 저고리, 또는 =10폰드의 차, 또는 =1쿼터의 밀 등등)의 두 변은 이 가치등식의 전 성격을 변경시키지 않고는, 그것을 전체적가치형태로부터 일반적가치형태로 전화시

키지 않고는 바꾸어놓을수 없다.

끝으로 마지막 형태 즉 제3형태가 상품세계에 대하여 일반적이며 사회적인 상대적가치형태를 부여하는것은 상품세계에 속하는 모든 상품이 단 하나를 제외하고는 일반적등가형태에서 배제되여있기때문이며 또 그러한 한에 있어서만이다. 그러므로 아마포라는 한 상품이 모든 다른 상품과의 직접적 교환가능성의 형태에 또는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형태에 있는 것은 모든 다른 상품이 이러한 형태에 있지 않기때문이며 또 그러한 한에 있어서만이다.(24)

반대로 일반적등가물로서 기능하는 상품은 상품세계의 통일적인 따라서 일반적인 상대적가치형태에서 제외되여있다. 만약 아모포가 또는 일반적등가형태에 있는 어떤 한 상품이 동시에 일반적인 상대적가치형태에도 참가한다면 아마포는 자신이 자신의 등가물로 되여야 할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20엘레의 아마포=20엘레의 아마포로 되는데 이것은 가치도 가치량도 표현하지 않는 하나의 동의반복으로 될것이다. 일반적등가물의 상대적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

(24) 사실상 사람들은 일반적인 직접적교환가능성의 형태를 보아도 그것이 하나의 대립적인 상품형태이며 마치 자석의 양극이 음극과 불가분적인것과 마찬가지로 비직접적교환가능성의 형태와 불가분적이라는 사실을 결코 알아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일체 상품에 대하여 동시적으로 직접적교환가능성의 락인을 찍을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일체 천주교신자를 법왕으로 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상품생산을 인간적자유와 개인적독립의 최고봉으로 보는 소자산자에게 있어서는 이 형태와 관련되여있는 결함들 특히 상품이 직접적교환가능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결함을 제거하는것은 물론 지극히 바라는바일것이다. 이 속물적공상을 그린것이 쁘루동의 사회주의이다. 그것은 내가 다른 개소에서 지적한바와 같이[73] 결코 독창적인것도 아니고 쁘루동보다 훨씬 이전에 그레이, 브레이 등등이 더 잘 전개한것을 되풀이하고있을뿐이다. 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러한 지혜가 일부 사람들사이에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류행하는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어떤 학파도 쁘루동학파[74]처럼 《과학》이라는 말을 람용한 일이 없다. 리유는 아래와 같다.

《개념이 없는 곳에
말이 제때에 찾아온다.》[75]

오히려 제3형태를 바꾸어놓아야 할것이다. 일반적등가물은 기타의 상품들과 공통적인 상대적가치형태를 가지지 못하고 그 가치는 모든 다른 상품체의 무한한 계렬에서 상대적으로 표현된다. 그리하여 전개된 상대적가치형태 즉 제2형태가 등가물상품의 특수한 상대적가치형태로서 표현된다.

(3) 일반적가치형태로부터 화폐형태에로의 이행

일반적등가형태는 가치일반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어떤 상품이나 다 이 형태를 취할수 있다. 다른 한편 한 상품은 오직 그것이 모든 다른 상품에 의하여 등가물로 배제되기때문에 또 배제되는 한에 있어서만 일반적등가형태(제3형태)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배제가 종국적으로 특수한 상품종류에 한정되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상품세계의 통일적인 상대적가치형태는 객관적인 고정성과 일반적인 사회적효력을 획득한다.

등가형태가 상품의 자연적형태에 사회적으로 유착된 그러한 특수한 상품종류는 화폐상품으로 된다. 즉 화폐로서 기능한다. 상품세계의 내부에서 일반적등가물의 역할을 하는것이 이 상품종류의 특유한 사회적기능으로 되며 따라서 그 상품의 사회적독점으로 된다. 제2형태에서는 아마포의 각종 특수한 등가물로서 기능하였고 제3형태에서는 자기의 상대적가치를 공통적으로 아마포로써 표현하는 상품들중에서 어떤 특정된 상품이 이 특권적지위를 력사적으로 쟁취하였다. 그것은 즉 금이다. 그러므로 제3형태에서 상품 아마포의 자리에 상품 금을 놓으면 다음과 같은 형태를 얻게 된다.

D. 화폐형태

20엘레의 아마포=
1개의 저고리=
10폰드의 차=
40폰드의 커피=
1쿼터의 밀=
$\frac{1}{2}$톤의 철=
X량의 상품 A=
} 2온스의 금

제1형태에서 제2형태로 또 제2형태에서 제3형태로 이행할 때에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와 반대로 제4형태가 제3형태와 구별되는것은 오직 아마포 대신에 이제는 금이 일반적등가형태를 가진다는 점뿐이다. 금은 제4형태에서 바로 아마포가 제3형태에서 노는것과 같은 역할 즉 일반적등가물의 역할을 수행한다. 진보한것은 오직 직접적인 일반적교환가능성의 형태 즉 일반적등가형태가 이제는 사회적관습에 의하여 상품 금의 특수한 자연적형태와 종국적으로 유착되였다는 점뿐이다.

금이 화폐로서 다른 상품에 대립하는것은 그것이 이미 이전부터 상품으로서 다른 상품에 대립하고있었기때문이다. 모든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금도 등가물로서 기능하였다. 그것은 혹은 개별적인 교환행위에서의 개별적등가물로서 혹은 다른 등가물상품들과 병렬되는 특수한 등가물로서 기능하였다. 금은 점차적으로 혹은 좁은 범위에서 혹은 넓은 범위

에서 일반적등가물로서 기능하게 되였다. 금은 상품세계의 가치표현에서 이 지위를 독점하자마자 화폐상품으로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화폐상품으로 된 그 순간부터 비로소 제4형태는 제3형태와 구별되게 된다. 바꾸어말하면 일반적가치형태가 화폐형태로 전화하는것이다.

이미 화폐상품으로서 기능하고있는 상품(례컨대 금)에서의 한 상품(례컨대 아마포)의 단순한 상대적가치표현은 가격형태이다. 그러므로 아마포의 《가격형태》는 다음과 같다.

20엘레의 아마포=2온스의 금,

또는 만약 금 2온스의 주화명칭이 2파운드라면,

20엘레의 아마포=2파운드.

화폐형태의 리해에서의 곤난은 일반적등가형태에 관한 리해, 따라서 일반적가치형태 즉 제3형태에 국한된다. 제3형태는 되돌아가 제2형태 즉 전개된 가치형태에 귀착되며 그리고 이 제2형태의 구성요소는 제1형태 즉 20엘레의 아마포=1개의 저고리 또는 X량의 상품 A=y량의 상품 B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상품형태는 화폐형태의 맹아이다.

4. 상품의 물신숭배성과 그 비밀

상품은 얼핏 보면 하나의 자명하고 평범한 물건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품에 대한 분석은 그것이 형이상학적궤변과 신학적중얼거림에 충만된 기묘한 물건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상품이 사용가치인 한에 있어서는 그 속성에 의하여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킨다는 관점에서 보든지 또는 그것이 인간로동의 생산물로서 비로소 이러한 속성을 가진다는 관점에서 보

든지 상품에는 조금도 신비한것이 없다. 인간이 자기의 활동에 의하여 자연물질의 형태를 인간에게 유용한 방식으로 변화시킨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례컨대 목재로 책상을 만들면 목재의 형태는 변한다. 그러나 책상은 의연히 목재이며 감각할수 있는 보통물건이다. 그러나 책상은 상품으로 나타나자마자 하나의 감각적인 동시에 초감각적인 물건[76]으로 되여버린다. 그것은 비단 자기의 네다리로 지상에 설뿐만아니라 모든 다른 상품에 대하여 머리로 거꾸로 서기도 한다. 그리고 책상의 이 나무대가리는 책상이 저절로 춤을 추기 시작할 때보다도 훨씬 더 기이한 망상을 보여준다.(25)

그러므로 상품의 신비로운 성격은 상품의 사용가치에서 나오는것은 아니다. 또 그것은 가치규정의 내용에서 나오는것도 아니다. 그 리유는 첫째로, 유용로동, 또는 생산활동이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유기체의 기능이고 또 매개의 그러한 기능은 그 내용과 그 형식이 어떠하든간에 본질적으로는 모두다 인간의 뇌수, 신경, 근육, 감각기관 등등의 지출이라는것은 하나의 생리학적진리이기때문이다. 둘째로, 가치량을 규정하는 기초로 되는것 즉 이와 같은 지출의 계속시간 또는 로동량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직접 감각적으로도 로동의 질과는 구별될수 있기때문이다. 어떠한 사회상태에서도 생활수단의 생산에 소비되는 로동시간은 비록 발전단계가 다름에 따라 그 정도는 다를지라도 어쨌든 사람들의 관심사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26) 끝으로 사람들이 어

---

(25) 우리는 나머지 전 세계가 완전히 정지상태에 있는것 같이 보이였던 바로 그때에 다른것들을 고무격려하기 위하여 중국과 책상이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는것을 상기한다.[77]

(26) 제2판 주: 고대게르만인들간에서는 1모르겐의 토지면적은 1일간의 로동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였다. 이로부터 모르겐은 Tagwerk (하루의 일) (또는Tagwanne)

떠한 방식으로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로동하게 되자 그들의 로동도 또한 사회적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러면 로동생산물이 상품형태를 취하자마자 생기는 그 수수께끼같은 성격은 어디에서 오는가? 분명히 이 형태 그자체에서 오는것이다. 인간로동의 동등성은 로동생산물의 동등한 가치대상성이라는 물적형태를 취하며 그 계속시간에 의한 인간로동력지출의 측정은 로동생산물의 가치량이라는 형태를 취하며 끝으로 생산자들의 로동의 사회적규정이 실현되는 그들간의 관계는 로동생산물의 사회적관계라는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상품형태의 신비성은 다만 다음과 같은데 있다. 즉 상품형태는 인간에 대하여 인간자신의 로동의 사회적성격을 로동생산물들자체의 대상적성격으로서, 그 물건들의 자연적인 사회적속성으로서 반영하며 따라서 또 총로동에 대한 생산자들의 사회적관계도 그들의 외부에 존재하는 물건들간의 사회적관계로서 반영한다는데 있다. 이와 같은 전환에 의하여 로동생산물은 상품으로 되며 감각적인 동시에 초감각적인 물건 또는 사회적인 물건으로 된다. 이것은 마치 물건이 시신경에 주는 빛의 인상이 시신경자체의 주관적자극으로 표현되지 않고 눈밖에 존재하는 물건의 객관적형태로 표현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시각의 경우에는 빛이 현실적으로 한 물건으로부터 즉 외적대상으로부터 다른 한 물건에 즉 눈에 던져진다. 이것은 물리적인 물체들간의 하나의 물리적관계이다. 이와 반대로 로동생산물의 상품형태 및 상품형태가 표현되는 로동생산물의 가치관계는 로동생산물의 물리적성질 및

(jurnale 또는 jurnalis, terra jurnalis, jornalis 또는 diurnalis), Mannwerk (한사람의 일), Mannskraft (한사람의 힘), Mannsmaad, Mannshauet (한사람의 수확량) 등등으로 불리우게 되였다. 게오르그 루드위히폰 마우레르 《마르크, 농가, 촌락, 도시 제도 및 공공정권의 력사개론》, 1854년 뮨헨판, 129페지이하를 보라.

그로부터 발생하는 물적관계와는 절대로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것은 인간자체의 일정한 사회적관계에 지나지 않는데 이 관계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물건들간의 관계인것 같은 환영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류례를 발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종교적세계의 몽롱한 세계로 달아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는 인간두뇌의 산물이 그자신의 생명이 부여되였고 그것들 상호간에나 인간과의 사이에도 관계를 맺고 있는 독립적존재물로 보인다. 상품세계에서는 인간의 손의 산물이 바로 그렇게 보인다. 이것을 나는 물신숭배라고 부른다. 이 물신숭배는 로동생산물이 상품으로서 생산되자마자 로동생산물에 붙으며 따라서 상품생산과 분리시킬수 없는것이다.

상품세계의 이 물신숭배성은 이상의 분석이 보여준바와 같이 상품을 생산하는 로동에 고유한 사회적성격으로부터 생긴다.

대체로 사용대상이 상품으로 되는것은 오직 그것이 서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사적로동의 생산물이기때문이다. 이러한 사적로동의 총체가 사회적총로동을 형성한다. 생산자들은 그들의 로동생산물의 교환을 통해서만 사회적접촉에 들어가기때문에 그들의 사적로동의 특수한 사회적성격도 역시 이 교환의 내부에서 비로소 나타난다. 바꾸어말하면 교환에 의하여 로동생산물들간에 수립되는 제 관계 따라서 그것들을 매개로 하여 생산자자신들간에 수립되는 제 관계를 통해서만 사적로동은 사실상 사회적총로동의 일부분으로서 발현된다. 그러므로 생산자들에게는 그들의 사적로동의 사회적관계는 그것이 사실상 나타나있는 바로 그대로 나타난다. 즉 사람들이 자기들의 로동에서 맺는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관계로서가

아니라 도리여 사람들의 물적관계 및 물건들의 사회적관계로서 나타난다.

로동생산물은 그 교환의 내부에서 비로소 그것의 감각적으로 각이한 사용대상성으로부터 분리된 사회적으로 동등한 가치대상성을 획득한다. 유용물과 가치물에로의 로동생산물의 이와 같은 분렬은 교환이 이미 충분히 보급되고 중요성을 가지게 되여 유용물이 교환을 위하여 생산되며 따라서 물건의 가치적성격이 이미 그 생산자체에서 고려되는 때에만 비로소 실제로 실현된다. 이 순간부터 생산자들의 사적로동은 실제로 이중적인 사회적성격을 가지게 된다. 생산자들의 사적로동은 한편으로는 일정한 유용로동으로서 일정한 사회적 욕망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총로동의 일부분, 사회적분업의 자연생장적체계의 일부분이라는것을 실증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매개의 특수한 유용한 사적로동이 다른 모든 종류의 유용한 사적로동과 교환될수 있는 한에서만 따라서 그것들과 동등한것으로 인정되는 한에서만 생산자들의 사적로동은 생산자자신들의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킬수 있다. 모든 점에서 서로 완전히 다른 각종 로동의 동등성은 오직 그 현실적불동등성을 사상한 결과일뿐이다. 즉 그것들이 인간로동력의 지출로서, 추상적인간로동으로서 가지고있는 공통한 성격에 환원된 결과일뿐이다. 사적생산자들의 두뇌는 그들의 사적로동의 이러한 이중적인 사회적성격을 실제적인 교역, 생산물교환에서 나타나는 형태로만 반영한다. 따라서 그들의 사적로동의 사회적으로 유용한 성격을 로동생산물이 유용한것이여야 한다는, 그것도 타인에게 유용한것이여야 한다는 그러한 형태로 반영하며 또 다른 종류의 로동의 동등성이라는 사회적성격을 물질적으로 각이한 이러

한 물건 즉 로동생산물이 공통한 가치성격을 가지고있다는 형태로 반영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들의 로동생산물을 가치로서 서로 관계시키는것은 그러한 물건이 그들에게 있어서 동일한 인간로동의 단순한 물적외피로 인정되기때문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이다. 사람들은 교환에서 그들의 각이한 종류의 생산물을 가치로서 서로 등치시킴으로써 그들의 각이한 로동을 인간로동으로서 서로 등치시키는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알지는 못하나 이렇게 하고있는것이다.(27) 그러므로 가치의 이마에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것이 씌여져있지 않다[78]. 가치는 도리여 매개의 로동생산물을 일종의 사회적상형문자로 전환시킨다. 후에 사람들은 이 상형문자의 의미를 해독하고 그들자신의 사회적생산물의 비밀을 알려고 한다. 왜냐 하면 사용대상의 가치로서의 규정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사회적생산물이기때문이다. 로동생산물은 그것이 가치인 한에 있어서는 그 생산에 지출된 인간로동의 단순한 물적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후일의 과학적발견은 인류발전사에 있어서 한 시대를 이루기는 하지만 그것은 결코 로동의 사회적성격의 물적외관을 없애버리지는 못한다. 서로 독립한 사적로동의 특수한 사회적성격은 인간로동으로서의 그 통등성에 있으며 또한 로동생산물의 가치성격의 형태를 취하는것 즉 상품생산이라는 이 특수한 생산형태에만 타당한 특성이 상품생산관계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상술한 발견 이전에나 이후에나 최종

---

(27) 제2판 주: 그러므로 갈리아니가 가치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라고 말하였을 때에 그는 물적외피로 가리워진 관계라고 첨가했어야 할것이다.(갈리아니 《화폐론》, 꾸스또디 편찬 《이딸라아정치경제학고전저작가론문집 · 현대편》, 1803년 밀라노판, 제3권, 221페지에 수록.)

적인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마치 과학에 의하여 공기가 그 제 요소로 분해되여도 공기형태는 하나의 물리적인 물체적형태로서 존속하고있는것과 같다.

생산물의 교환자들이 우선 실제적으로 관심을 가지는것은 자기의 생산물에 대하여 얼마만큼 타인의 생산물을 받을 수 있는가 즉 어떠한 비률로 생산물들이 교환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비률이 관습에 의하여 일정한 고정성을 가지게 되면 마치 그것이 로동생산물의 본성으로부터 생기는것 같이 보인다. 그리하여 례컨대 1톤의 철과 2온스의 금이 가치가 같다는것은 1폰드의 금과 1폰드의 철이 그것들의 물리적속성이나 화학적속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무게를 가진다는 것과 같은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로동생산물의 가치성격은 생산물들이 가치량으로서 발현되는데 의하여 비로소 확립되는것이다. 가치량은 교환자들의 의사나 예견이나 행동과는 관계없이 부단히 변동한다. 교환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자신의 사회적운동이 물건들의 운동의 형태를 취하며 그들은 이 운동을 통제하는것이 아니라 도리여 그 운동에 의하여 통제된다. 서로 독립하여 수행되나 사회적분업의 자연발생적인 부분들로서 전면적으로 호상 의존하는 사적로동이 그 사회적인 비례적척도에 부단히 환원되는것은 생산물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로동시간이 사적로동생산물들의 우연적이며 부단히 변동하는 교환비률을 통하여 마치 사람의 머리우에 집이 무너지는 때의 중력의 법칙과 같이 작용하는 규제적인 자연법칙으로서 강제적으로 관철되기때문이라[28]는 과학적인

(28) 《주기적혁명을 통하여서만 관철될수 있는 이 법칙을 우리는 어떻게 리해하여야 할것인가? 그것은 바로 당사자들의 무의식적행동에 기초하고있는 자연법칙인것이다.》(프리드리히 엥겔스 《국민경제학비판대강》, 아르놀드 루게와 칼 맑스가 편찬한 잡지 《독프년지》, 1844년 빠리판에 수록.)

식이 경험자체로부터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완전히 발전된 상품생산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로동시간에 의한 가치량의 규정은 상대적인 상품가치의 현상적운동의 배후에 숨어있는 하나의 비밀이다. 이 비밀의 발견은 로동생산물의 가치량이 순전히 우연적으로 규정되는듯한 외관을 제거하기는 하나 결코 가치량규정의 물적형태를 제거하지는 못한다.

인간생활의 형태에 관한 고찰, 따라서 또 이 형태의 과학적분석은 일반적으로 그 현실적발전과는 반대의 길을 밟는다. 이 고찰은 사후에 시작된다. 다시말하면 발전과정의 완성된 결과로부터 시작된다. 로동생산물에 상품의 락인을 찍는, 따라서 상품류통의 전제로 되는 형태들은 사람들이 이 형태의 력사적성격이 아니라—이 형태는 오히려 그들이 보기에는 불변하는것이다—그 내용을 해명해보려고 시도하기전에 벌써 사회생활의 자연적형태의 고정성을 획득한다. 그리하여 오직 상품가격의 분석만이 가치량을 규정할수 있게 하였고 또 오직 상품의 공통적인 화폐적표현만이 상품의 가치성격을 확정할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상품세계의 이러한 완성형태—화폐형태—야말로 사적로동의 사회적성격을, 따라서 사적로동자들의 사회적관계를 명백히 보여주지 않고 반대로 그것을 물적형태로써 가리우는것이다. 내가 저고리, 장화 등등은 추상적인간로동의 일반적체화물로서의 아마포와 관계를 맺는다고 말한다면 이 표현이 황당무계하다는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저고리, 장화 등등의 생산자들이 이 상품들을 일반적등가물로서의 아마포와(또는 금은과, 그래도 사태에는 변동이 없다.) 관계를 맺게 한다면 사회총로동에 대한 그들의 사적로동의 관계는 바로 이러한 황당무계한 형태로 표현된다.

이러한 제 형태들이 바로 자산계급적경제학의 여러 범주

들을 이루고있다. 이러한 범주들이야말로 이 력사적으로 규정된 사회적생산방식 즉 상품생산의 생산관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유효한, 따라서 객관적인 사유형태이다. 그러므로 상품세계의 모든 신비성, 상품생산의 기초우에서 로동생산물을 몽롱하게 둘러싸고있는 모든 마법과 요술—이 모든것은 우리가 다른 생산형태로 달아나자마자 즉시로 사라진다.

정치경제학은 로빈슨의 이야기를 즐기므로(29) 우선 섬에서의 로빈슨의 생활을 보기로 하자. 로빈슨은 그 본성이 검박하기는 하나 그래도 그는 각종 욕망을 충족시켜야 하며 따라서 도구를 만들며 가구를 제작하며 라마를 길들이며 물고기를 잡으며 사냥을 하는 등등의 각종 유용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도나 그와 류사한것에 관해서는 말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우리의 로빈슨은 이러한것들에서 기쁨을 느끼고있으며 이와 같은 종류의 활동을 휴식으로 생각하기때문이다. 그의 생산적기능은 여러가지로 다르지만 그는 그러한 기능의 전체가 동일한 로빈슨의 활동의 각이한 형태, 따라서 인간로동의 각이한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알고있다. 필요자체는 그로 하여금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각이한 기능간에 정확히 할당하지 않을수 없게 한다. 어떤 기능이 그의 전체 활동에서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기능이 더 적은 자리를 차지하는가 하는것은 소기의 유용한 효과를

---

(29) 제2판 주: 리카도에게도 역시 그의 로빈슨이야기가 없지 않다.[79] 《그는 원시적어부와 원시적사냥군으로 하여금 즉시로 상품소유자로서 물고기와 짐승을 그 교환가치에 대상화되여있는 로동시간에 비례하여 교환하도록 만든다. 이때 그는 원시적어부와 원시적사냥군이 1817년 런던거래소에서 통용되고있던 년리계산표에 의거하여 자기들의 로동도구를 계산한다는 시대착오에 빠지고있다. 〈오엔씨의 평행사변형〉[80]이 자산계급적사회형태이외에 그가 알고있던 유일한 사회형태인듯하다.》(칼 맑스《정치경제학비판》, 38~39페지[81])

달성하기 위하여 그가 극복해야 할 곤난이 큰가 작은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경험은 그에게 이것을 가르치며 난파선에서 시계와 장부와 잉크와 철필을 구원해낸 우리의 로빈슨은 참다운 영국사람답게 즉시로 자기자신의 생활에 대하여 부기를 하기 시작한다. 그의 재산목록에는 그가 소유하고있는 사용대상들, 그 생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작업, 끝으로 이 여러가지 생산물의 일정한 량의 생산에 그가 평균적으로 들이는 로동시간 등의 명세가 포함된다. 로빈슨과 그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진 부를 구성하는 물건들과의 전체 관계는 여기에서 아주 간단명료하여 막스 위르트씨까지도 특별히 머리를 쓰지 않아도 능히 리해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 관계에는 벌써 가치에 관한 일체 본질적인 규정이 들어있다.

이제 우리는 로빈슨의 밝은 섬으로부터 음침한 유럽의 중세기로 옮겨가자. 우리는 여기에서 독립적인 인간이 아니라 모두 의존하고있는 사람들—농노와 령주, 가신과 제후, 속인과 승려—을 보게 된다. 여기에서는 인격적예속관계가 물질적생산의 사회적관계와 이에 기초하고있는 생활분야들을 모두 특징짓는다. 그러나 바로 인격적예속관계가 이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있기때문에 로동과 생산물은 그것들의 현실적 존재와는 다른 환상적인 모습을 취할 필요가 없다. 로동과 생산물은 실제적부역과 현물공납으로서 사회적기구속에 들어간다. 여기에서는 로동의 자연적형태, 로동의 특수성이 로동의 직접 사회적인 형태로 되며 상품생산에 립각하고있는 사회에서처럼 로동의 일반성이 로동의 직접 사회적인 형태로 되는것이 아니다. 부역로동도 상품생산로동과 마찬가지로 역시 시간에 의하여 측정되기는 하나 매개 농노는 그가 자기의 령주를 위한 부역에 지출하는것이 자기자신의 로동력

의 일정한 량이라는것을 알고있다. 그가 승려에게 바쳐야 하는 10분의 1세는 승려의 축복에 비하면 훨씬 더 명백한것이다. 그러므로 중세기사람들의 호상관계에서의 그 가장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든지간에 여기에서는 언제나 로동에서의 사람들의 사회적관계는 그들자신의 인격적관계로서 나타나며 물건들간의 즉 로동생산물들간의 사회적관계로 변장하지는 않는다.

공동적인 로동 즉 직접 사회화된 로동을 고찰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문화민족의 력사의 초기에 나타나는 그러한 로동의 원시적형태에까지 소급할 필요는 없다.(30) 더 가까운 실례로 되는것은 자기의 수요를 위하여 곡물, 가축, 실, 아마포, 의복 등등을 생산하는 농민가족의 농촌가부장적생산이다. 이 가족들에게 있어서 이 여러가지 물건은 그들의 가족로동의 각이한 생산물이기는 하나 그것들자신이 상품으로서 호상 대립하지는 않는다. 이 생산물들을 생산하는 여러가지 로동 례컨대 경작, 가축사양, 방적, 직포, 재봉 등등은 그 자연적형태에서 사회적기능으로 된다. 왜냐 하면 이것들은 상품생산과 마찬가지로 그자체의 자연발생적분업을 가진 가족의 기능들이기때문이다. 성별, 년령의 차이 및 계절의 교체와 더불어 변동하는 로동의 자연적조건은 가족성원들간의 로동의 배당과 개별적가족성원의 로동시간을 규제한다. 그러나

---

(30) 제2판 주: 《원시공동소유형태는 특수적으로 슬라브적형태이며 심지어는 오로지 로씨야적형태라고까지 하는 가소로운 편견이 최근에 널리 퍼지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로마인, 게르만인, 켈트인들에게서 우리가 그 흔적을 찾아볼수 있는 원시적형태이며 이러한 형태의 수많은 표본들은 부분적으로는 황폐화되여버렸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도인들에게서 볼수 있다. 공동소유의 아시아적 특히 인도적 형태의 일층 면밀한 연구는 원시공동소유의 각이한 형태로부터 어떻게 그 붕괴의 각이한 형태가 발생하였는가를 보여줄것이다. 그리하여 례컨대 로마적 및 게르만적 사적소유의 각이한 원형은 인도적공동소유의 각이한 형태로부터 이끌어낼수 있다.》(칼 맑스 《정치경제학비판》, 10페지[82])

시간에 의하여 측정되는 개인로동력지출은 여기에서는 처음부터 로동자체의 사회적규정으로서 나타난다. 왜냐 하면 개인로동력은 여기에서는 처음부터 오직 가족의 총로동력의 기관으로서만 작용하기때문이다.

끝으로 기분전환을 위하여 공동적생산수단으로써 일하며 또 자기들의 많은 개인적로동력을 의식적으로 하나의 사회적로동력으로서 지출하는 자유인들의 련합체를 생각해보기로 하자. 여기에서도 로빈슨적로동의 모든 규정들이 반복되나 그것은 개인적규모에서가 아니라 사회적규모에서이다. 로빈슨의 전체 생산물은 오직 그의 개인적생산물이였고 따라서 직접 그 자신을 위한 사용대상이였다. 이 련합체의 총생산물은 사회적생산물이다. 이 생산물의 일부분은 다시 생산수단으로 쓰인다. 이 부분은 의연히 사회적인것이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부분은 련합체의 성원들에 의하여 생활수단으로서 소비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그들사이에 분배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분배방식은 사회적생산유기체자체의 특수한 방식에 따라 또 그것에 상응하는 생산자들의 력사적발전정도에 따라 변화할것이다. 다만 상품생산과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생활수단에 대한 매개 생산자의 몫이 그의 로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전제하자. 그렇게 된다면 로동시간은 이중의 역할을 하게 될것이다. 로동시간의 사회적계획적분배는 각이한 욕망에 대한 각이한 로동기능간의 적절한 비률을 규제한다. 다른 한편 로동시간은 또한 공동로동에 대한, 따라서 또 공동생산물중의 개인적소비부분에 대한 생산자의 개인적몫의 척도로 된다. 사람들이 그들의 로동과 로동생산물에 대하여 가지는 사회적관계는 여기서 생산에서나 분배에서나 간단명료하다.

상품생산자사회의 일반적인 사회적생산관계는 생산자들이 자기의 생산물을 상품으로서 따라서 또 가치로서 대하며 또 이 물적형태에서 그들의 사적로동을 동등한 인간로동으로서 호상 관계시킨다는 점에 있는데 이와 같은 사회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종교는 추상적인간을 숭배하는 기독교 특히는 그 자산계급적발전인 신교, 자연신교 등등이다. 고대아시아적 등등의 고대적생산방식[83]하에서는 생산물의 상품에 로의 전화, 따라서 또한 상품생산자로서의 인간의 존재는 종속적인 역할을 놀뿐이였으나 그러나 그 역할은 공동체가 그 붕괴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일층 더 커졌던것이다. 본래의 의미에서의 상업민족은 에피쿠로스의 신들과 같이 또는 뽈스까사회의 빈틈에 끼여사는 유태인들과 같이 오직 고대세계의 간극[84]에만 존재하고있었다. 이러한 고로한 사회적생산유기체는 자산계급의 사회적생산유기체에 비하여 비상히 더 간단명료하였으나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자연적씨족관계의 태줄로부터 아직 분리되지 못한 개인들의 미성숙에 기초한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접적인 지배와 예속의 관계에 기초한것이였다. 그러한 생산유기체의 존재조건으로 된것은 로동생산력의 낮은 발전단계 및 그에 대응하여 국한된 그들의 물질적인 생활생산과정내부에서의 인간들의 관계, 따라서 인간 호상간과 인간 대 자연간의 국한된 관계였다. 이 현실적국한성이 관념적으로 고대의 자연종교나 민간종교에 반영되였다. 현실세계의 종교적반영은 대체로 오직 실천적인 일상생활관계가 인간대 인간 및 인간 대 자연간의 극히 명백하고도 합리적인 관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때에라야만 비로소 소멸될수 있다.[85] 사회적생활과정 즉 물질적생산과정의 모습은 그것이 자유롭게 련합된 사람들의 산물로서 그들의 의식적 계획적 통제

밑에 있게 되는 그때에라야만 비로소 그 신비로운 연막을 벗어버린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일정한 물질적기초 또는 일련의 물질적존재조건이 필요하다. 이 조건자체는 장구하고 고통스러운 발전사의 자연발생적산물인것이다.

정치경제학이 불완전하기는 하나(31) 가치 및 가치량을 분석하였고 또 이러한 형태들에 숨어있는 내용을 밝힌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째서 이 내용이 그러한 형태를 취하는가, 다시말하면 어째서 로동이 가치로 표현되며 또 왜 그 계속시간에 의하여 측정되는 로동량이 로동생산물의 가치량으로 표

(31) 가치량에 관한 리카도의 분석이 불충분하다는것—그러나 이것이 가장 우수한 분석이다—은 본 저술의 제3부 및 제4부에서 보게 될것이다.[86] 가치일반에 관하여 말한다면 고전정치경제학은 가치로 표현되는 로동과 그 생산물의 사용가치로 표현되는 그 동일한 로동과를 어디서도 명확하게 또 똑똑한 의식을 가지고 구별하지는 못하였다. 물론 고전정치경제학은 실지로는 이러한 구별을 하였다. 왜냐 하면 그것은 로동을 어떤 때는 량적측면에서, 또 어떤 때는 질적측면에서 고찰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각종 로동의 순전한 량적구별은 그 질적 통일성 또는 동등성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추상적인간로동에로의 그 환원을 전제로 한다는것을 고전정치경제학은 리해하지 못하였다. 례컨대 리카도는 데스뛰뜨 드 뜨라씨의 다음과 같은 말에 찬동한다고 표명하였다. 《우리의 육체적 및 정신적 능력이 우리의 유일한 본원적부임은 확실하므로 이 능력의 사용 즉 어떤 종류의 로동은 우리의 본원적재보로 된다. 그리고 우리가 부라고 부르는 모든 물건은 언제나 이 능력의 사용이 창조하는것이다.…그리고 이 모든 물건은 오직 그것을 창조한 로동만을 대표한다는것도 확실하다. 또 만약 이 물건들이 하나의 가치를 가진다면 혹은 두개의 다른 가치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직 그 물건들을 낳는 로동의 가치로부터만 나올수 있을뿐이라는것도 확실하다.》(리카도《정치경제학원리》, 1821년 런던 제3판, 334페지) 우리는 다만 리카도가 데스뛰뜨의 말을 자기대로 더 깊이 해석하고있다는것을 지적해둔다. 데스뛰뜨는 확실히 한편으로는 부를 형성하는 모든 물건이 《그것을 창조한 로동을 대표한다.》고 말하고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물건들이 그 《두개의 다른 가치》(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로동의 가치》에서 얻는다고 말하고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우선 한 상품의(이 경우에는 로동의) 가치를 전제로 하고 다음에는 또 그것으로 다른 상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속류경제학의 천박하고 비속한 관점에 빠지고있다. 그런데 리카도는 데스뛰뜨의 이 말을 사용가치에나 교환가치에나 로동(로동의 가치가 아니고)이 표현되여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있다. 그러나 리카도 자신은 이중적으로 표현되는 로동의 이중적성격을 구별하지 못한탓으로 《가치와 부, 그것들의 각이한 속성》이라는 장전체에 걸쳐서 J. B. 쎄와 같은 사람의 비속한 견해와 다투느라고 고생하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이다. 그러므로 나중에 그는 데스뛰뜨가, 가치의 원천으로서의 로동에 관해서는 틀림없이 자기의 견해와 일치하나 다른 한편 가치개념에 관해서는 데스뛰뜨가 쎄의 견해와 일치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고있다.

현되는가 하는 문제는 정치경제학이 한번도 제기한적이 없었다.(32) 공식 즉 생산과정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이 생산과정을 지배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구성체에 자기가 속한다는것을 이마우에 써붙인 그러한 공식[78]이 정치경제학의 자산계급적의식에는 생산적로동자체와 마찬가지로 자명한 자연필연성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정치경제학이 사회적생산유기체의 자산계급이전의 형태들을 취급하는 태도는 대체로 교부[87]들이 기독교이전의 종교를 취급하는 태도와 같다.(33)

---

(32) 고전정치경제학의 근본적결함의 하나는 그것이 상품 특히 상품가치의 분석으로부터 가치를 교환가치로 되게 하는 가치형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있다. 바로 A. 스미스와 리카도 같은 가장 훌륭한 대표자들에게 있어서조차 고전정치경제학은 가치형태를 전혀 중요하지 않은것으로 또는 상품의 본성밖에 존재하는것으로 보고있다. 그 리유는 고전정치경제학이 가치량의 분석에 모든 주의를 팔렸다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다. 그 리유는 더 심각한데 있다. 로동생산물의 가치형태는 자산계급적생산방식의 가장 추상적인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고 바로 이 형태에 의하여 자산계급적생산방식은 사회적생산의 특수한 한류형으로서 특징지어지며 또 그렇게 됨으로써 동시에 력사적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므로 만약 자산계급적생산방식을 사회적생산의 영원한 자연적형태라고 잘못 인정한다면 가치형태의 특수성도, 따라서 상품형태와 이것이 가일층 발전한 형태인 화폐형태, 자본형태 등등의 특수성까지도 필연적으로 홀시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동시간에 의한 가치량의 측정에 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 경제학자들에게서 화폐에 관한 즉 일반적등가물의 완성된 모습에 관한 가장 잡다하고 완전히 모순된 견해들을 발견한다. 이것은 례컨대 화폐에 관한 보통 통용되는 정의로써는 설명할수 없는 은행업을 취급하는 경우에 특히 뚜렷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에 대립하여 부활된 중상주의적체계(가닐 등등[67])가 발생하였는데 이 체계는 가치에서 오직 사회적형태만을,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사회적형태의 아무런 실체도 없는 외관만을 보고있다. --여기서 똑똑히 말해둘것은 내가 고전정치경제학이라고 하는것은 W. 페티이후의 모든 경제학을 의미한다는것이다. 이 경제학은 속류경제학과는 반대로 자산계급적생산관계의 내적련관을 연구한다. 속류경제학은 오직 외관상의 련관의 범위안에서만 헤매며 이를테면 가장 조잡한 현상을 그럴듯하게 해석하여 자산계급의 일상적수요에 적응하기 위하여 벌써 훨씬 전에 과학적경제학이 제공한 재료들을 반복적으로 되씹고있다. 기타 면에서 속류경제학은, 자신의 최선의 세계에 대한 자산계급적생산당사자들의 진부하고 자만하는 관념을 현학적으로 체계화하며 또 이 관념을 영원한 진리로 선포하는데 그치고있다.

(33) 《경제학자들[88]은 그 론의에 있어서 기묘한 수법을 사용한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두개의 제도만이 존재한다. 즉 하나는 인위적인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적인 제도이다. 봉건제도는 인위적인 제도이고 자산계급제도는 자연적인 제도이다. 이 점에 있어서 경제학자들은 두 종류의 종교를 설정하고있는 신학자들과 류사하다. 그들의 종교가 아닌 종교는 모두 인간이 날조한것이고 그들자신의 종교는 신의 계시인것이다…그리

일부 경제학자들이 상품세계에 내재하는 물신숭배성 또는 로동의 사회적규정의 물적외관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혼란에 빠지고있는가 하는것은 교환가치의 형성에 있어서의 자연의 역할에 관한 그들의 지리하고 무의미한 론쟁이 잘 보여준다. 교환가치는 어떤 물건에 지출된 로동을 표현하는 일정한 사회적방식인 까닭에 거기에는 례컨대 수형시세와 마찬가지로 아무러한 자연물질도 포함되여있지 않다.

상품형태는 자산계급적생산의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덜

하여 력사는 이때까지는 존재하였으나 이제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칼 맑스 《철학의 빈곤. 쁘루동씨의 〈빈곤의 철학〉에 대한 대답》, 1847년판, 113페지[89]) 고대의 희랍인과 로마인은 오직 략탈에 의해서만 생활하였다고 생각하는 바스띠아씨는 우습기 짝이 없다. 만약 사람들이 여러 세기에 걸쳐서 략탈에 의해서 생활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략탈할수 있는 그 무엇이 항상 있어야 할것이다. 바꾸어말하면 반드시 략탈대상이 부단히 재생산되여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희랍인과 로마인도 역시 그 어떤 생산과정 따라서 그 어떤 경제를 가지고있었으며 그것은 자산계급경제가 현대세계의 물질적인 기초를 이루고있는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세계의 물질적인 기초를 이루고있었다고 생각해야 할것이다. 혹은 바스띠아는 노예로동에 기초한 생산방식은 략탈제도에 기초한것이라고 생각한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그는 위험한 길에 들어선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까지도 노예로동의 평가를 잘못했었는데 하물며 바스띠아와 같은 보잘것없는 경제학자가 어떻게 임금로동의 평가를 옳게 할수 있겠는가?—나는 이 기회를 리용하여 나의 저서 《정치경제학비판》(1859년)이 출판되였을 때 미국의 어떤 독일어신문이 나에게 한 이론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하려 한다.[90] 이 신문은 말하기를, 일정한 생산방식 및 그에 적응하는 생산관계, 간단히 말하면 《사회의 경제적구조는 현실적토대를 이룬다. 이 토대우에 법률적 및 정치적 상부구조가 서며 이 토대에 일정한 사회적의식형태들이 상응한다.》, 《물질적생활의 생산방식은 사회적, 정치적 및 정신적 생활과정일반을 제약한다.》[91]는 나의 이 모든 견해는 물질적리해관계가 지배하는 현대세계에 대해서는 확실히 타당하나 천주교가 지배하고있던 중세기나 또 정치가 지배하고있던 아테네와 로마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우선 놀라운것은 중세기와 고대세계에 관한 이 주지의 언사를 그 누가 아직 알지 못하고있는것 같이 생각하는자가 있다는 사실이다. 중세기가 천주교에 의해서는 생활할수 없었고 고대세계가 정치에 의해서는 생활할수 없었다는것은 분명하다. 반대로 이 두 시대에 있어서의 생활수단의 획득 방식이나 방법이 왜 한경우에는 정치가, 다른 경우에는 천주교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는가 하는것을 설명하여준다. 그뿐만아니라 례컨대 토지소유의 력사가 로마공화국의 리면사로 되여있다는 사실은 로마공화국의 력사에 그다지 정통하지 않아도 알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벌써 돈 끼호떼는, 편력기사는 어떤 사회경제형태와도 동일하게 량립할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오유때문에 록록히 대가를 치렀던것이다.

발달한 형태이므로—그렇기때문에 그것은 비록 오늘날과 같이 지배적이며 따라서 특징적인것으로는 되지 않았지만 비교적 일찍부터 출현하였던것이다.—그 물신숭배적성격을 아직은 비교적 쉽게 알아볼수 있는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더 구체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이 단순성의 외관까지도 없어진다. 중금주의의 환상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중금주의가, 금은은 화폐로서 사회적생산관계를 표현하나 그러나 이상한 사회적속성을 가진 자연물의 형태로 그것을 표현한다는것을 보지 못한데서 오는것이다. 그런데 그처럼 거만하게 중금주의를 멸시하는 현대경제학도 그것이 자본을 취급하자마자 물신숭배성을 아주 뚜렷이 나타내고있지 않는가? 지대는 사회로부터가 아니라 토지로부터 발생한다는 중농주의자들의 환상이 파멸된것은 얼마나 오래전 일인가?

그러나 너무 앞으로 뛰여나가지 않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우선 상품형태자체와 관련되는 또 하나의 실례만 들기로 하자. 만약 상품이 말할줄 안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이 말할것이다. 우리의 사용가치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도 모른다. 물건으로서의 우리는 사용가치가 없다. 물건으로서의 우리가 가지고있는것은 우리의 가치이다. 상품물로서의 우리들자신의 류통이 이것을 증명하고있다. 우리는 오직 교환가치로서만 호상관계를 맺을뿐이다. 이제 이러한 상품의 심정이 경제학자들의 입으로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들어보자.

《가치 (교환가치) 는 물건의 속성이고 부 (사용가치) 는 인간의 속성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치는 필연적으로 교환을 전제로 하나 부는 그렇지 않다.》(34) 《부 (사용가치) 는 인간의 속성이고 가치는 상

---

(34) 《정치경제학상의 약간의 용어, 특히는 가치, 수요공급과 관련된 론쟁에 대한 고찰》, 1821년 런던판, 16페지.

품의 속성이다. 인간 또는 공동체는 부유하다. 진주 또는 금강석은 가치있는 물건이다.…》 진주 또는 금강석은 진주 또는 금강석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35)

이때까지 그 어떤 화학자도 진주 또는 금강석에서 교환가치를 발견한 일이 없다. 그러나 비판적깊이를 특히 자부하는, 이 화학적실체를 발견한 경제학자들은 물건의 사용가치는 그 물적속성과는 관계가 없으며 반대로 그것들의 가치는 물건으로서의 그것에 내재한다는것을 발견하고있다. 그들의 이와 같은 견해를 확증하는것은 물건의 사용가치는 인간을 위하여 교환없이, 다시말하면 물건과 사람간의 직접적인 관계속에서 실현되나 반대로 물건의 가치는 오직 교환에서만, 다시말하면 하나의 사회적과정에서만 실현된다는 기묘한 사정이다. 여기에서 야경 씨코울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는 선량한 도그베리[93]를 상기하지 않을수 없다.

《잘 생긴 용모는 환경의 덕택이지만 글 읽고 글씨 쓰는 솜씨는 타고난 재질이다.》(36)라고.

---

(35) S. 베일리 《가치의 성질, 척도 및 원인에 관한 비판적론술》, 165페지이하.[92]

(36) 《정치경제학상의 약간의 용어, …론쟁에 대한 고찰》의 저자와 S. 베릴리는 리카도에게 교환가치를 단순히 상대적인것으로부터 어떤 절대적인것에로 전화시켰다는 죄를 들씌운다. 이와 반대이다. 그는 례컨대 금강석, 진주와 같은 물건들이 교환가치로서 소유하는 그 외관상 상대성을 이 외관의 배후에 숨어있는 그것들의 실제적인 관계에 즉 인간로동의 단순한 표현으로서의 그것들의 상대성에 환원시켰던것이다. 만약 리카도주의자가 베일리에 대하여 란포한 언사를 썼으나 그러나 적절한 답변은 주지 못했다면 그 리유는 오직 그들이 리카도자신에게서 가치와 가치형태 즉 교환가치간의 내부적련관에 관한 아무러한 해명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데 있다.

제 2 장

교 환 과 정

상품은 자기로 시장에 갈수 없으며 스스로 자기들끼리 교환될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품의 보호자인 상품소유자를 찾지 않으면 안된다. 상품은 물건이며 따라서 인간에 저항하지 못한다. 만약 상품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인간은 폭력을 사용할수 있다. 다시말하면 그것을 탈취할수 있다.(37) 이 물건들을 상품으로서 서로 관련시키기 위해서는 상품보호자들이 자기들의 의지를 이러한 물건들에 체현할 사람으로서 서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리하여 한 상품소유자는 다른 상품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만 즉 각자는 쌍방에 공통된 하나의 의지행위를 매개로 해서만 자기의 상품을 양도하고 타인의 상품을 자기의것으로 만들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 상대방을 사적소유자로서 인정하여야 한다. 계약을 그 형식으로 하는 이 법적관계는(법률로써 고정되든말든간에) 경제적관계가 반영되여있는 하나의 의지관계이다. 이 법적관계 또는 의지관계의 내용은 경제적관계자체에 의하여 주어져있다.(38) 사람들은 여기서 다만 서로 상품의 대표자로서

---

(37) 그 경건성으로써 소문난 12세기에도 상품중에는 가끔 극히 미묘한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그리하여 그 당시 프랑스의 한 시인은 랑디시장[94]에 나타난 상품들로서 천, 구두, 가죽, 농구, 모피 등등과 아울러 《몸을 파는 녀자》도 들었다.

(38) 쁘루동은 처음에 정의, 영원한 정의라는 자기의 리상을 상품생산에 상응하는

만 따라서 상품의 소유자로서만 존재한다. 대체로 전개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는 인물들의 경제적가장은 경제적관계의 인격화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은 이 경제적관계의 담당자로서 서로 대립한다는것을 보게 될것이다.

상품소유자가 상품과 주로 구별되는 점은 상품에 대하여 다른 어느 상품체도 오직 그자체의 가치의 현상형태로만 된다는 사정이다. 날 때부터 평등파[95]이며 키니크파[96]인 상품은 다른 어떤 상품과도 비록 그것이 마리또르네스보다도 더 보기 흉한 외모를 가지고있다 할지라도 비단 그 정신뿐만아니라 몸까지도 교환할 용의를 항상 가지고있다. 상품에는 상품체의 구체적속성을 파악할 감각이 없으나 상품소유자는 이것을 자기자신의 5관 및 그 이상의 감각으로써 보충하여준다. 상품소유자의 상품은 그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사용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것을 시장에 가지고가지 않을것이다. 그의 상품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는 사용가치를 가진다. 상품소유자에 대하여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다만 교환가치의 담당자이며 따라서 교환수단으로 되는 그런 사용가치만을 가진다.(39) 그러므로 그는 자기에게 필요한 사용가

법적관계에서 끌어낸다. 겸하여 말한다면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상품생산형태는 정의와 마찬가지로 영원한것이라고 하는 모든 시정배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론증을 하여주었다. 그다음에 그는 반대로 현실적상품생산 및 이에 상응하는 현실적법률을 이 리상에 따라 개조하려고 한다. 만약 어떤 화학자가 물질변환의 현실적법칙을 연구하고 이에 기초하여 일정한 과제를 해결할 대신에 물질변환을 《자연상태》 및 《친화력》이라는 《영원한 리념》에 의하여 개조하려고 한다면 이 화학자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것인가? 우리가 《고리대》는 《영원한 정의》, 《영원한 공정》, 《영원한 상호부조》 및 기타의 《영원한 진리》와 모순된다고 말할 때에 우리는 고리대에 관하여 일찌기 그것이 《영원한 은총》, 《영원한 신앙》, 《신의 영원한 의지》와 모순된다고 말한 교부[87]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아는것이 있는가?

(39) 《왜냐 하면 어떤 물건에나 두가지 용도가 있기때문이다.—하나는 그 물건에 고유한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다. 례컨대 신은 신는데도 쓰일수 있고 교환에도 쓰일수 있다. 량자는 모두 신의 사용가치이다. 왜냐 하면 자신에게는 없는 어떤 물건

치를 가진 상품과의 교환으로 자기 상품을 양도하려고 한다. 모든 상품은 그 소유자에게는 비사용가치이고 그것의 비소유자에게는 사용가치이다. 그러므로 상품은 전면적으로 소유자를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소유자를 바꾸는것이 상품의 교환인데 이 교환이 상품들을 가치로서 서로 관련시키며 또 가치로서 실현한다. 그러므로 상품은 자기를 사용가치로서 실현할수 있기전에 먼저 가치로서 실현되여야 한다.

다른 한편 상품은 가치로서 자기를 실현할수 있기전에 자기가 사용가치임을 실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 하면 상품에 지출된 인간로동은 오직 타인에게 유용한 형태로 지출된 경우에 한해서만 로동으로 인정되기때문이다. 그러나 그 로동이 과연 타인에게 유용한가 어떤가, 따라서 그 생산물이 타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가 어떤가 하는것은 오직 상품의 교환만이 이를 증명할수 있다.

어떤 상품소유자든지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사용가치가 있는 다른 상품과의 교환으로만 자기의 상품을 양도하려고 한다. 그러한 한에 있어서 교환은 그에 대하여 순전히 개인적과정이다. 다른 한편 그는 자기의 상품을 가치로서 실현하려고 한다. 다시말하면 자기의 마음에 드는, 같은 가치를 가진 다른 상품이 있기만 하면 그자신의 상품이 다른 상품소유자에게 대하여 사용가치를 가지든가 안가지든지간에 그 다른 상품으로써 자기의 상품을 가치로서 실현하려고 한다. 그러한 한에 있어서는 교환은 그에게 대하여 일반적인 사회적과정이다. 그러나 동일한 과정이 모든 상품소유자에

례컨대 식료품과 신을 교환하는 사람까지도 역시 신을 신으로서 리용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신의 본래의 용도는 아니다. 그것은 이 교환을 위하여 존재하는것은 아니기때문이다.》(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제1부, 제9장)

대하여 동시에 다만 개인적과정이면서 동시에 다만 일반적인 사회적과정일수는 없다.

더 상세히 고찰하면 어느 상품소유자에게 대하여서나 모든 타인의 상품은 자기의 상품의 특수한 등가물로 되며 따라서 자기의 상품은 다른 모든 상품의 일반적등가물로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상품소유자가 동일하게 행동하기때문에 어떤 상품도 일반적등가물로 되지 못하며 따라서 또 상품들은 가치로서 서로 등치되며 가치량으로서 서로 비교되는 일반적인 상대적가치형태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결코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생산물 또는 사용가치로서만 서로 대립하는것이다.

우리의 상품소유자들은 곤경에 직면하여 파우스트처럼 생각한다. 처음에 행동이 있었다.[97] 그리하여 그들은 생각하기전에 이미 행동하였던것이다. 상품의 본성의 법칙들은 상품소유자들의 자연적본능에서 발현된다. 그들은 자기의 상품을 일반적등가물로서의 어떤 다른 상품과 대립적으로 관련시킴으로써만 비로소 자기의 상품을 가치로서 또 따라서 상품으로서 서로 관련시킬수 있다. 이것은 상품분석이 보여주었다. 그러나 오직 사회적행위만이 어떤 일정한 상품을 일반적등가물로 만들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상품의 사회적행동이 어떤 일정한 상품을 분리시키는데 그 분리된 상품에 의하여 다른 모든 상품이 자기들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표시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상품의 자연적형태가 사회적으로 공인되는 등가형태로 된다. 일반적등가물로 되는것은 사회적과정에 의하여 이 분리된 상품의 특수한 사회적기능으로 된다. 그리하여 이 상품은 화폐로 된다.

《그들은 한마음한뜻으로 짐승에게 힘과 권력을 부여한다. 이 각

인이 없는자는 모두 물건을 사거나 팔수 없게 하였다. 이 각인이란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의 수자이다.》(《묵시록》[98])

화폐결정은 교환과정의 필연적산물이며 이 교환과정내에서 종류가 다른 로동생산물들은 실제로 서로 등치되며 따라서 또 실제로 상품에로 전환된다. 교환이 확대되고 심화되는 력사적과정은 상품의 본성속에 잠자고있는 사용가치와 가치간의 대립을 발전시킨다. 교역을 위하여 이 대립을 외부에 표현하려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상품가치의 하나의 독립적형태가 발생하였고 이 욕망은 이 형태가 상품과 화페에로의 상품의 분화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완결될 때까지는 정지되는 일이 없다. 따라서 바로 로동생산물의 상품에로의 전화가 생기는것과 같은 정도로 상품의 화페에로의 전화도 생긴다.(40)

직접적인 생산물교환은 한편으로는 단순한 가치표현의 형태를 가지나 다른편으로는 아직 이 형태를 가지지 못한다. 이 형태는 x량의 상품 A=y량의 상품 B이다. 직접적인 생산물교환의 형태는 x량의 사용대상 A=y량의 사용대상 B이다.(41) 여기서 A와 B라는 물건은 교환이전에는 상품이 아니며 교환을 통하여 비로소 상품으로 된다. 어떤 사용대상이 가능성으로 보아 교환가치로 되는 최초의 방식은 그 사용대상이 비사용가치로서의 즉 그 소유자의 직접적욕망을 넘는 량의 사용가치로서의 그 정재이다. 물건자체는 인간에게 있

---

(40) 이것에 의하여 소자산계급적사회주의의 교활함을 판단하라. 소자산계급적사회주의는 상품생산을 영구화하려 하면서 동시에 《화페와 상품간의 대립》을, 따라서 또 화페 그자체를 폐지하려고 한다. 왜냐 하면 화페는 오직 이 대립에서만 존재하는 까닭이다. 만일 그렇게 할수 있다면 법왕을 폐지하고 천주교를 존속시킬수도 있을것이다. 이에 관하여 더 상세한것은 나의 저서 《정치경제학비판》, 61페지이하를 보라.[99]

(41) 두개의 각이한 사용대상이 교환되는것이 아니라 미개인들사이에서 가끔 보는 바와 같이 물건의 잡다한 더미가 어떤 제3의 물건에 대한 등가물로서 제공되는 동안은 직접적인 생산물교환까지도 겨우 그 입구에 서있을뿐이다.

어서 외적인것이며 따라서 양도될수 있다. 이 양도가 호상적인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오직 이 양도될수 있는 물건들의 사적소유자로서 따라서 서로 독립한 사람으로서 아무말없이 대립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서로 타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관계는 자연발생적공동체의 성원들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공동체의 형태가 가부장적가족이든 고대인도 공동체[61]이든 잉카국[100] 및 기타 등등이든 마찬가지이다. 상품교환은 공동체가 끝나는 곳에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 또는 다른 공동체성원과 접촉하는 점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물건들이 한번 대외적공동생활에서 상품으로 되기만 하면 그것들은 반작용으로 내부적공동생활에서도 상품으로 된다. 이러한 물건들의 량적인 교환비률은 최초에는 전적으로 우연적이다. 그 물건들이 교환될수 있는것은 그것을 서로 양도하려고 하는 그 소유자들의 의지행위에 의해서이다. 그러는중에 다른 사람의 사용대상에 대한 욕망이 점차로 고정된다. 교환의 부단한 반복은 그것을 하나의 규칙적인 사회적과정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로동생산물의 적어도 일부분은 처음부터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이 순간부터 한편으로는 직접적수요에 대한 물건의 유용성과 교환을 위한 물건의 유용성간의 분리가 확정되게 된다. 물건의 사용가치는 물건의 교환가치로부터 분리된다. 다른 한편 그러한 물건이 교환되는 량적인 비률은 물건의 생산자체에 의존하게 된다. 관습은 그것들을 가치량으로서 고정시킨다.

직접적인 생산물교환에서는 매개 상품은 그 소유자에게는 직접 교환수단으로 되며 비소유자에게는 직접 등가물로 된다. 그러나 오직 이 상품이 후자에게 사용가치로 되는 한에 있어서만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교환물은 아직은 그자체

의 사용가치로부터 또는 교환당사자의 개인적인 욕망으로부터 독립된 가치형태를 가지지 못한다. 이러한 가치형태의 필요성은 교환과정에 들어오는 상품의 수와 종류가 증가함에 따라 커진다. 문제는 그 해결수단과 동시에 발생한다. 상품소유자들이 그들자신의 물품을 여러가지 다른 물품과 교환하며 비교하는 교역은 여러가지 상품소유자의 여러가지 상품이 그 교역내부에서 동일한 제3의 상품종류와 교환되며 또 가치로서 비교되지 않고서는 결코 진행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제3의 상품은 다른 각이한 상품의 등가물로 됨으로써 비록 협애한 한계내에서일지라도 직접 일반적인 또는 사회적인 등가형태를 가진다. 이 일반적등가형태는 그것을 발생시킨 일시적인 사회적접촉과 함께 발생하고 또 소멸한다. 그것은 번갈아 또 일시적으로 때로는 이 상품에 때로는 저 상품에 유착한다. 그러나 상품교환의 발전과 더불어 그것은 전적으로 특종상품에만 고착된다. 바꾸어말하면 화폐형태로 결정된다. 그것이 바로 어떤 종류의 상품과 계속 유착하는가 하는것은 처음에는 우연적이다. 그러나 대체로 두가지 사정이 여기서 결정적역할을 논다. 화폐형태는 사실상 당지 생산물의 교환가치의 자연발생적현상형태인 외래의 가장 중요한 교환물품과 유착하든지 혹은 당지의 양도할수 있는 재산의 주요한 요소를 이루는 사용대상 례컨대 가축과 같은것과 유착하든지 한다. 유목민족들은 제일 처음 화폐형태를 발전시켰다. 그것은 그들의 전체 재산이 가동적인, 따라서 직접 양도할수 있는 형태를 가지기때문이며 또 그들의 생활양식이 그들을 부단히 다른 공동체와 접촉하게 하며 따라서 생산물교환을 환기시키기때문이다. 인간은 노예의 형태에 있는 인간자체를 원시적인 화폐재료로 전환시킨 일은 가끔 있었으나 토지를

화폐재료로 전환시킨 일은 없었다. 그러한 사상은 이미 발전된 자산계급사회에서만 발생할수 있었다. 그러한 사상은 17세기의 마지막 3분기에 비로소 나타났고 또 그 사상을 전국적규모에서 실천에 옮기려고 처음으로 시도한것은 그 한세기후인 프랑스자산계급혁명시기였다.[101]

상품교환이 그 지방적한계를 돌파하고 따라서 상품가치가 인간로동일반의 물질화로 확대되여가는것과 같은 비률로 화폐형태는 일반적등가물이라는 사회적기능을 수행하는데 천연적으로 적합한 상품에로 즉 귀금속에로 옮아간다.

《금은은 천연적으로 화폐는 아니지만 화폐는 천연적으로 금은이다.》(42)는것은 금은의 자연적속성이 화폐의 기능들을 감당하기에 적합하다는것을 보여준다.(43) 그러나 아직 우리는 다만 화폐의 한가지 기능밖에 모른다. 즉 화폐가 상품가치의 현상형태로서 또는 상품가치량을 사회적으로 표현하는 재료로서 쓰인다는 기능뿐이다. 가치의 적절한 현상형태로 될수 있는것 또는 추상적인간로동 따라서 동등한 인간로동의 물질화로 될수있는것은 어느 부분을 떼여보아도 균등한 질을 가지고있는 물질뿐이다. 다른 한편 가치량의 구별은 순전히 량적인것이므로 화폐상품은 순전히 량적으로 구별할수 있는 물건이여야 한다. 다시말하면 그것을 마음대로 작은 부분으로 분할할수 있으며 또 이 작은 부분들이 다시 합칠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여야 한다. 그런데 금은은 천연적으로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있다.

---

(42) 칼 맑스 《정치경제학비판》, 135페지.[102] 《귀금속은…천연적으로 화페이다.》(갈리아니 《화페론》, 꾸스또디 편찬, 《이딸라아정치경제학고전저작가론문집 · 현대편》, 제3권, 137페지에 수록.)

(43) 더 상세한것은 나의 상술한 저서의 《귀금속》 절을 참조하라.[103]

화폐상품의 사용가치는 이중적이다. 그것은 상품으로서의 그의 특수한 사용가치—례컨대 금은 이발의 충전과 사치품의 원료 등에 쓰인다.—이외에 그것의 독특한 사회적기능으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형식적인 사용가치를 가진다.

다른 모든 상품은 화폐의 특수한 등가물에 불과하며 화폐는 이 상품들의 일반적등가물이므로 이러한 상품들은 일반적상품으로서의 화폐(44)에 대하여 특수한 상품으로서 관계를 맺는다.

이미 본바와 같이 화폐형태는 다른 모든 상품의 제 관계의 반사가 한 상품에만 고정되여있는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① 따라서 《화폐가 상품이다.》(45)는것은 화폐의 완성형태로부터 출발하여 반대로 그것을 분석하는자에게만 하나의 발견으로 된다. 교환과정은 그것이 화폐로 전화시킨 상품에 가치를 부여하는것이 아니라 다만 그 독특한 가치형태를 부여할뿐이다. 이 두 규정의 혼동은 금은의 가치가 상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관념에 이르게 하였다.(46) 화폐는

---

(44) 《화폐는 일반적상품이다.》(베리 《정치경제학에 관한 고찰》, 16페지)

(45) 《우리가 귀금속이라는 일반적명칭으로 부를수 있는 금은자체는… 그 가치가 …때로는 등귀하며 때로는 저락하는…상품이다.… 그것들의 더 적은 중량을 가지고 국내의 농산물 또는 공업제품의 더 많은 량을 구매할수 있게 된다면 그때에는 귀금속의 가치가 높다고 인정할수 있다.》((S. 클레먼트) 《호상관계에 있는 화폐, 상업 및 환자의 일반적개념에 관한 론술》, 한 상인의 저작, 1695년 런던판, 7페지). 《은과 금은 주조된것, 주조되지 않은것을 막론하고 모든 다른 물건의 척도로 사용되기는 하나 그것들도 술, 기름, 담배, 천 또는 모직물과 마찬가지로 상품이다.》((J. 챠일드) 《무역 특히 동인도무역에 관한 론술》, 1689년 런던판, 2페지) 《왕국의 자산과 부를 화폐에만 국한시키는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또 금은은 상품에서 제외될수도 없다.》((Th. 퍼필런) 《동인도무역은 왕국에 가장 유리한 무역》, 1677년 런던판, 4페지)

(46) 《금은은 그것이 화폐로 되기전에 금속으로서 가치를 가진다.》(갈리아니 《화폐론》, 72페지) 로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사람들의 일반적합의는 은이 화폐로 되는데 적합한 속성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은에 하나의 상상적가치를 부여하였다.》(죤 로크 《리자인하와 화폐가치인상의 제 결과에 관한 약간의 고찰》(1691년) 《죤 로크저작집》, 1777년판, 제2권, 15페지에 수록.) 이와 반대로 로는 다음과 같이

---

① 이 책 86~87, 105~106페지를 보라. —편집자

어떤 기능들에 있어서 그 자체의 단순한 화폐기호로써 대치될수 있기때문에 이로부터 화폐는 단순한 기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다른 오유가 발생하였다. 다른 한편 이 오해에는 물건의 화폐형태는 물건자체에 대하여 외적인것이고 그것은 그 배후에 숨어있는 인간관계의 현상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예감이 들어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매개 상품은 일종의 기호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가치로서는 상품은 거기에 지출된 인간로동의 물적외피에 지나지 않기때문이다.(47) 그러나 일

말한다. 《어떻게 각이한 국민들이 어떤 하나의 물건에 상상적가치를 부여할수 있겠는가…또는 어떻게 이 상상적가치가 유지될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자신이 문제를 얼마나 리해하지 못하였는가는 다음과 같은 말로써 알수 있다. 《은은 그것이 가지고있던 사용가치에 따라서 즉 그 현실적가치에 따라서 교환되였다. 그것은 화폐로 쓰인다는 리유로 또 하나의 추가적가치를 얻었다.》(쟌 로 《통화와 상업에 관한 고찰》, E. 대르 편찬, 《18세기의 재정경제학자》, 469, 470페지에 수록.)

(47)《화폐는 그것들의 (상품들의) 기호이다.》(V. 드 포르본내 《상업원리》, 1766년 라이덴신판, 제2권, 143페지) 《기호로서의 화폐는 상품들에 의하여 끌리운다.》(우와 같은 책, 155페지) 《화폐는 물건의 기호이며 물건의 대리자이다.》(몽떼스끼외 《법의 정신》, 《몽떼스끼외전집》, 1767년 런던판, 제2권, 3페지) 《화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다. 왜냐 하면 그자체가 부이기때문이다. 그것은 가치의 대리자가 아니고 가치의 등가물이다.》(르 뜨론 《가치, 류통, 공업 국내외무역의 견지에서의 사회적리익에 관하여》, 910페지) 《가치의 개념을 검토한다면 물건 그자체는 기호로만 볼수 있다. 물건은 그자체로서 인정되는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치를 가지는것으로서 인정되는것이다.》(헤겔 《법철학》, 100페지) 경제학자들[88]보다 훨씬 이전에 법학자들이 화폐는 단순한 기호이며 귀금속의 가치는 순 상상적인것이라는 관념을 내놓았는데 이 법학자들은 왕의 권력에 아부추종하면서 중세기의 전 기간에 걸쳐서 로마제국의 전통과 《판데크텐》[104]의 화폐개념에 의거하여 왕의 화폐위조권을 옹호하였던것이다. 이 법학자들의 눈치 빠른 한 제자인 필리프6세 발루아[105]는 1346년의 한 칙령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화폐주조의 업무, 제조, 형상, 발행고 그리고 주화를 짐이 유리하고 또 편리하다고 인정하는 값으로 류통시키기 위한 주화에 관한 명령을 반포할 권한은 오로지 짐에게 속한다는것은 누구도 감히 의심하지 않으며 또 의심해서는 안된다.》 황제가 화폐가치를 명령으로써 규정한다는것은 로마법의 신조였다. 당시 화폐를 상품으로 취급하는것은 명문으로써 금지되여있었다. 《화폐는 누구도 사서는 안된다. 왜냐 하면 일반적사용을 위하여 제정한 화폐가 상품으로 되여서는 안되기때문이다.》[106] 이 점에 관한 좋은 설명은 G. F. 빠니니 《물건의 정당한 가격에 관한 시론》(꾸스또디 편찬, 《이딸리아정치경제학고전저작가 론문집·현대편》, 1751년판, 제2권)에서 주고있다. 빠니니는 특히 이 저작의 제2편에서 법학자 제씨를 론박하고있다.

정한 생산방식의 기초우에서 물건이 가지게 되는 사회적성격 또는 이 생산방식의 기초우에서 로동의 사회적규정이 가지는 물적성격을 단순한 기호라고 말하는것은 그것을 인간의 자의적반성의 산물이라고 말하는것과 같다. 이것은 18세기에 류행하던 계몽주의적수법이였으며 이 수법에 의하여 아직도 그 발생과정을 해명할수 없었던 인간관계의 수수께끼 같은 형태로부터 적어도 일시적이나마 그 기이한 외관을 제거하려고 하였던것이다.

우에서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한 상품의 등가형태는 그 상품의 가치량에 대한 량적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① 금은 화폐이며 따라서 다른 모든 상품과 직접 교환될수 있는 물건이라는것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례컨대 10폰드의 금이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있는가를 아는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온갖 상품과 마찬가지로 화폐는 그자체의 가치량을 오직 상대적으로만 다른 상품으로써 표현할수 있다. 화폐자체의 가치는 그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되며 그만큼한 량의 로동시간이 응결되여있는 다른 상품의 량으로 표현된다.(48) 이와 같은 금의 상대적가치량은 금의 산지에서 직접적물물교환에 의하여 확정된다. 금이 화폐로서 류통에 들어갈 때에도 그 가치는 이미 결정되여있다. 벌써 17세기 마지막 수십년에 화폐가 상품이라는것이 이미 해명되였는데 그것은 화폐분석에서 커다란 단서로 되기는 하였으나 역시 단서에 지나지 않았다. 곤난은 화폐가 상품이라는것을 리해

(48) 《만약 어떤 사람이 1부쉘의 곡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1온스의 은을 페루의 지하에서 채굴하여 런던에 가지고올수 있다면 후자는 전자의 자연가격으로 될것이다. 이제 만약 은함유량이 더 풍부한 새로운 광산이 발견된 결과 2온스의 은을 종전에 1온스를 생산하던것과 같은 정도로 용이하게 생산할수 있게 된다면 곡물은

① 이 책 71페지를 보라. —편집자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째서, 무엇에 의하여 상품이 화폐로 되는가를 리해하는데 있는것이다.(49)

우리가 본바와 같이 벌써 x량의 상품 A=y량의 상품 B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표현에서도 다른 한 물건의 가치량을 표현하는 물건은 그 등가형태를 이러한 관계와는 독립하여 자연적인 사회적속성으로서 가지고있는듯이 보인다.① 우리는 이 허위적외관이 어떻게 확립되는가를 검토하였다. 그 외관은 일반적등가형태가 어떤 특별한 종류의 상품의 자연적형태와 유착하자마자 즉 화폐형태에 결정되자마자 완성되는것이다. 다른 상품이 그 가치를 한 상품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표현하기때문에 그 상품은 비로소 화폐로 되는것으로 보이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마치 그 상품이 화폐이기때문에 다른 상품들은 일반적으로 그 가치를 그 상품으로 표현하는듯이 보인다. 매개하는 운동은 그자체의 결과속에 사라지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상품들은 자신이 아무런 협력을 하지 않고도 그자체의 가치모습을 그것들의 외부에 그것들과 병립하여 존재하는 한 상품체로서 완성되여있는것을 발견한다.

기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1부쉘당 10실링으로 되여도 이전에는 5실링이였던것과 같이 헐하게 될것이다.》(윌리엄 페티 《조세의 공납에 관한 론술》, 1667년 런던판, 31페지)

(49) 교수 로쉐르씨는 우리에게 가르쳐 말하기를 《화폐의 그릇된 정의는 두개의 주요한 부류로 나누어지는바 화폐를 상품이상의것으로 간주하는것과 상품이하의것으로 간주하는것이 그것이다.》라고 한 다음에 화폐성격에 관한 잡다한 저술목록을 들었으나 그것을 통해서는 화폐리론의 현실적력사에 대한 가장 희미한 인식조차 엿볼수 없다. 또 그다음 훈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여튼 최근의 대다수 국민경제학자들이 화폐를 다른 상품들과 구별하는 (그렇다면 화폐는 역시 상품이하의것이거나 또는 상품이상의것인가?) 특수성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를 돌리고있지 않다는것은 부인할수 없다.… 그러한 한에 있어서는 가널 기타의 반중상주의적반동은 전혀 무근거한것도 아니다.》(윌헬름 로쉐르 《국민경제학원리》, 1858년 제3판, 207~210페지) 이상—이하—불충분하게—그러한 한에 있어서—전혀 아니다! 이것이 소위 개념규정이라는것이다! 그리고 또 이따위 절충주의적교수식잡담을 로쉐르씨는 겸손하게도 정치경제학의 《해부생리학적방법》이라고 칭한다! 다만 한가지 발견만은 그의 공적인데 그것은 바로 화폐는 《기분 좋은 상품》이라는것이다.

---

① 이 책 62~73페지를 보라. —편집자

이러한 물건 즉 금은은 지하에서 나오는 바로 그 형태에서 동시에 모든 인간로동의 직접적화신으로 되는것이다. 이로부터 화폐의 마술이 나온다. 인간의 사회적생산과정에서의 단순한 원자적관계, 따라서 인간의 통제와 인간의 의식적인 개인적행위로부터 독립한 그들자신의 생산관계의 물적모습은 우선 그들의 로동생산물이 일반적으로 상품형태를 취한다는 점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화폐의 물신숭배성의 수수께끼는 오직 사람의 눈에 보이게 된, 사람의 눈을 현혹케 만든 상품의 물신숭배성에 불과하다.

제 3 장

화폐 또는 상품류통

1. 가치척도

간단을 기하기 위하여 나는 이 저서에서는 어디서나 금을 화폐상품이라고 전제한다.

금의 첫째 기능은 상품세계에 그 가치표현의 재료를 제공하는것 또는 상품들의 가치를 질적으로 동일하며 량적으로 비교할수 있는 동일한 명칭의 크기로서 표현하는것이다. 그리하여 금은 일반적가치척도로서 기능하며 또 오직 이 기능에 의해서만 이 독특한 등가물상품인 금이 우선 화폐로 된다.

상품들은 화폐로 하여 약분될수 있는것은 아니다. 그와 반대이다. 전체 상품은 가치로서는 대상화된 인간로동인것만큼 그자체가 약분될수 있는 까닭에 상품들은 자체의 가치를 하나의 특수한 상품으로써 공동으로 측정할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특수한 상품을 그것들의 공통적인 가치척도 또는 화폐로 전화시킬수 있는것이다. 가치척도로서의 화폐는 상품의 내재적가치척도인 로동시간의 필연적인 현상형태이다.(50)

---

(50) 어째서 화폐가 직접 로동시간자체를 대표하지 못하는가, 어째서 례컨대 한장의 지폐가 x로동시간을 표시하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간단히 어째서 상품생산의 기초우

금에 있어서의 한 상품의 가치표현—x량의 상품 A=y량의 화폐상품—은 그 상품의 화폐형태 또는 그 상품의 가격이다. 이제는 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형태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다만 한개의 등식 례컨대 1톤의 철=2온스의 금만으로 충분하다. 이 등식은 이제는 다른 상품들의 가치등식과 대렬을 지어 행진할 필요는 없다. 왜냐 하면 등가물상품인 금은 벌써 화폐의 성격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상품들의 일반적인 상대적가치형태는 이제는 또다시 그것들의 최초의 형태 즉 단순한 또는 개별적인 상대적가치형태의 모습을 가진다. 다른 한편 확대된 상대적가치표현 또는 상대적가치표현의 무한한 계렬은 화폐상품의 독특한 상대적가치형태로 된다. 그러나 이 계렬은 이제는 벌써 상품들의 가격에서 사회적으로 제공되여있다. 우리는 물가표를 거꾸로 읽으면 화폐의 가치량이 다종다양한 상품으로 표현되여있는것을 볼수 있다. 그러나 화폐는 가격을 가지고있지 않다. 화폐가 다른 상품들의 이러한 통일적인 상대적가치형태에 참가하기위해서는 자기자신의 등가물로서의 자기자신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에서는 로동생산물이 상품으로서 표현되지 않으면 안되는가 하는 문제에 귀착된다. 왜냐 하면 상품이라는 표현에는 상품이 상품과 화폐상품으로 량분되는 그 이중화가 포함되여있기때문이다. 또는 어째서 사적로동이 직접 사회적로동으로서 즉 그 대립물로서 취급될수 없는가 하는 문제에 귀착된다. 상품생산의 기초우에서의 《로동화폐》에 관한 천박한 공상에 대해서 나는 다른 개소에서 상세하게 론하였다. (《정치경제학비판》, 61페지이하[107].) 여기서 또 하나 지적하려는것은 례컨대 오엔의 《로동화폐》[108]는 극장의 입장권이 《화폐》가 아닌것과 마찬가지로 《화폐》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엔은 직접 사회화된 로동을 즉 상품생산과는 정반대인 생산형태를 전제로 하고있다. 로동증명서는 다만 공동로동에 대한 생산자의 개인적분담과 공동생산물중 소비에 돌려지는 부분에 대한 그의 개인적청구권을 확증할뿐이다. 그러나 오엔은 상품생산을 전제로 하면서 동시에 상품생산의 필연적 제 조건을 화폐의 요술로써 회피해보려고 생각한것은 아니였다.

상품의 가격 또는 화폐형태는 상품의 가치형태일반과 마찬가지로 손으로 잡을수 있는 실재적인 물체형태와는 구별되는, 따라서 오직 관념적인 또는 상상적인 형태이다. 철, 아마포, 밀 등등의 가치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이 물건들자체내에 존재한다. 그 가치는 그것들의 금과의 동등성에 의하여, 말하자면 다만 이러한 물건들의 머리속에만 있는 금과의 관계에 의하여 표현된다. 그러므로 상품수호자가 상품의 가격을 외부세계에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혀를 이러한 물건의 머리속에 들이밀든가 또는 이러한 물건에 표딱지를 매달아주든가 해야 한다.(51) 상품의 금에서의 가치표현은 관념적인것이므로 상품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만 상상적인 또는 관념적인 금만을 사용할수 있다. 모든 상품수호자가 다 알고있는봐와 같이 그가 자기의 상품의 가치에 가격형태 또는 상상적인 금형태를 부여하더라도 결코 자기의 상품을 금으로 전화시킨것이 아니며 또 그가 금으로 몇백만이라는 상품가치를 평가하는데도 현실적인 금은 조금도 필요로 하지 않는것이다.…그러므로 화폐는 다만 상상적인 또는 관념적인 화폐로서만 가치척도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정이 가

---

(51) 미개인 또는 반미개인은 혀를 이것과는 다르게 사용한다. 레컨대 선장 패리는 배핀만서안의 주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이 경우에 (생산물교환에 있어서) …그들은 그것 (그들에게 제공된 물건) 을 혀로 두번씩 핥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교환이 만족하게 끝났다고 생각하는것 같이 보였다.》[109] 이와 마찬가지로 동부 에스키모인사이에서도 교환자는 물건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핥군 하였다. 이와 같이 북방에서 혀가 점유의 기관으로 인정되고있다면 남방에서 배가 재산축적의 기관으로 인정되고있는것은 조금도 기이한 일이 아니다. 카페르인은 사람의 재부를 그 사람의 배집이 나온 정도에 따라서 평가한다. 카페르인은 극히 령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리유는 1864년의 영국정부의 위생보고가 로동계급의 대다수에게는 지방질이 부족하다는것을 탄식하고있던 바로 그해[110]에 의사 하비(혈액순환을 발견한 하비가 아니다.)라는자는 자산계급과 귀족계급의 지방과다증을 고쳐주겠다는 엉터리처방을 냄으로써 부자로 된 일이 있었기때문이다.

장 엉터리없는 리론들을 발생시켰다.(52) 비록 오직 상상적인 화폐만이 가치척도의 기능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가격은 완전히 실재적인 화폐재료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다. 례컨대 1톤의 철에 포함되여있는 가치 즉 인간로동의 량은 동일한 량의 로동을 포함하고있는 상상적인 화폐상품량에 의하여 표현된다. 따라서 1톤의 철의 가치는 금, 은 또는 동의 어느것이 가치척도로 쓰이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가격표현을 가진다. 즉 금, 은 또는 동의 전혀 다른 량으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만약 각이한 두 상품 례컨대 금과 은이 동시에 가치척도로 쓰인다면 전체 상품은 각이한 두 가격표현 즉 금가격과 은가격을 가질것이며 또 그것은 금 대 은의 가치비률 례컨대 1:15가 변동하지 않는 한 무사히 병존할수 있다. 그러나 이 가치비률이 변동할 때마다 상품의 금가격과 은가격 간의 비률이 교란되며 그리하여 가치척도의 이중화가 가치척도의 기능과 모순된다는것이 사실로써 증명된다.(53)

---

(52) 칼 맑스 《정치경제학비판》 중의 《화페의 측정단위에 관한 제 학설》, 53페지 이하를 보라.[111]

(53) 제2판 주: 《금과 은이 법률상 화페로서 즉 가치척도로서 병존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것들을 동일한 물질로 간주하려는 무의한 시도가 있었다. 만약 동일한 로동시간이 변함없이 동일한 비률의 은과 금에 대상화되여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은과 금이 동일한 물질이며 가치가 낮은 금속인 은의 일정한 량은 일정한 금량의 변함없는 분수라는것을 가정하는것이다. 에드워드3세시대로부터 죠지2세시대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화페제도의 력사는 금과 은의 가치비률의 법적고정과 금은가치의 현실적인 변동 사이의 충돌에서 생기는 부단한 혼란의 련속을 이루고있다. 어떤 때에는 금이, 어떤 때에는 은이 너무 높게 평가되였다. 너무 낮게 평가된 금속은 류통에서 물러나와 용해되고 수출되였다. 그리하여 두 금속의 가치비률은 다시 법률에 의하여 변경되였으나 새로운 명목가치는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가치비률과 충돌하였다. 현재는 인도와 중국의 은수요때문에 은에 비하여 금의 가치가 극히 미미하게 일시적으로 저락하였는데 그때문에 프랑스에서 은이 수출되고 그것이 금에 의하여 류통에서 구축되는 동일한 현상이 대규모로 일어났다. 1855년, 1856년 및 1857년에 프랑스에서는 금수출에 대한 금수입의 초과액은 4,158만파운드에 달하였는데 은수입에 대한 은수출의 초과액은 34,704,000파운드였다. 이 두 금속이 다 법률상 가치척도로 되여있고 따라서 지불을 받는측에서는 이 량자를 다 받아야 하나, 지불하는측에서는 마음대로 은으로나 금으로 지불할수 있는 그러한 나라에서는 사실상 가치가 등귀하고있는 금속은 액면초과분

가격이 정해져있는 상품들은 모두 a량의 상품 A=x량의 금, b량의 상품 B=z량의 금, c량의 상품 C=y량의 금 등등의 형태로 표시된다. 여기서 a, b, c는 A, B, C라는 상품종류의 일정한 량을 표시하며 x, z, y는 금의 일정한 량을 표시한다. 그러므로 상품들의 가치는 크기가 서로 다른 상상적인 금의 량에로 전화되여있다. 즉 상품의 착잡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명칭의 량 즉 금량에로 전화되여있다. 상품들의 가치는 이러한 각이한 금량으로서 서로 비교되며 측정된다. 그리하여 기술상 어떤 고정된 금량을 상품가치의 측정단위로 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 측정단위자체는 또다시 정제되는 부분으로 분할됨으로써 측정기준에로 발전한다. 금, 은, 동은 화폐로 되기전에 벌써 그것들의 금속중량으로서 이러한 측정기준을 가지고있다. 례컨대 1폰드가 측정단위로 쓰이는 경우에 그것은 한편으로는 다시 온스 등등에로 분할되며 다른 편으로는 쩬트네르 등등에로 통합되게 된다.(54) 그러므로 모든 금속류통에서는 중량기준의 기존명칭들이 화폐기준 또는 가격기준의 최초의 명칭으로도 된다.

화폐는 가치척도로서 또 가격기준으로서 두개의 전혀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화폐는 인간로동의 사회적체화물로서는

이 붙으며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자체의 가격을 과대평가된 금속으로 측정하며 이 후자만이 가치척도로 된다. 이 령역에서의 모든 력사적경험은 간단히 다음과 같은데 귀착된다. 즉 법률상 두 상품이 가치척도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여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그중 한 상품만이 가치척도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는것이다.》(칼 맑스 《정치경제학비판》, 52~53페지[112])

(54) 제2판 주: 영국에서는 화폐기준의 단위로서의 1온스의 금이 정제되는 부분들로 분할될수 없는데 이 기이한 사실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우리 나라의 주화제도는 본래는 은에만 적합하게 되여있었다. 그러므로 1온스의 은은 언제든지 어떤 정수의 주화로 분할될수 있다. 그러나 금이 그후에 오직 은에만 적응한 주화제도에 리용되게 된 까닭에 1온스의 금은 정제되는 소주화로 주조할수 없다.》(머클래런 《통화의 력사》, 1858년 런던판, 16페지)

가치척도이고 정해진 금속중량으로서는 가격기준이다. 화폐는 가치척도로서는 무한히 다양한 상품의 가치를 가격에로 쭉 상상적인 금량에로 전환시키는데 봉사하며 가격기준으로서는 이러한 금량을 측정한다. 가치척도에 의하여 가치로서의 상품이 측정된다. 한편 가격기준은 어떤 하나의 금량으로써 각이한 금량을 측정하는것이지 어떤 금량의 가치를 다른 금량의 중량으로써 측정하는것은 아니다. 가격기준으로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중량이 측정단위로서 고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는 동일한 명칭의 량을 규정하는 다른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척도비률의 고정성이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가격기준은 측정단위로 쓰이는 동일한 금량이 변하지 않을수록 자기의 기능을 더 잘 수행하게 된다. 금이 가치척도로 쓰일수 있는것은 오직 그자체가 로동생산물이고 따라서 가능성으로 보아 가변적인 가치이기때문이다.(55)

우선 금의 가치변동이 가격기준으로서의 금의 기능에 결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것은 명백하다. 금가치가 아무리 변동하더라도 각이한 금량의 가치비률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가령 금가치가 1000% 떨어진다 하더라도 12온스의 금은 여전히 1온스의 금의 12배의 가치를 가질것이다. 가격에서는 각이한 금량들 호상간의 비률만이 문제로 된다. 다른 한편 1온스의 금이 그 가치의 저락 혹은 등귀에 따라 그 중량을 변동하지 않기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등분한 부분의 중량도 변동하지 않으며 따라서 금은 그 가치가 아무리 변동하더라도 고정적인 가격기준으로서는 항상 동일한 역할을 한다.

---

(55) 제2판 주: 영국의 저서들에서는 가치척도(measure of value)와 가격기준(standard of value)에 대한 혼란이 말할수없이 심하다. 량자의 기능 또 따라서 량자의 명칭은 항상 혼동되고있다.

금의 가치변동은 또한 금이 가치척도로서 기능하는것도 방해하지 않는다. 금의 가치변동은 모든 상품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주며 따라서 기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 호상간의 상대적가치에는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비록 이제는 이러한 가치가 모두 이전보다 높거나 낮은 금가격으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한 상품의 가치를 다른 어떤 한 상품의 사용가치로 표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품을 금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전제로 되여있는것은 오직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량의 금을 생산하는데 일정한 량의 로동이 필요하다는것뿐이다. 상품가격의 변동에 관해서 말한다면 일반적으로 우에서 전개된 단순한 상대적가치표현의 법칙들이 이에 적용된다.①

상품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오르는것은 화폐가치가 변함없다면 상품가치가 오르는 경우뿐이며 상품가치가 변함없다면 화폐가치가 내리는 경우뿐이다. 그와 반대로 상품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내리는것은 화폐가치가 변함없다면 상품가치가 내리는 경우뿐이며 상품가치가 변함없다면 화폐가치가 오르는 경우뿐이다. 여기로부터 화폐가치의 등귀는 항상 그만큼 상품가격을 저락시키며 또 화폐가치의 저락은 항상 그만큼 상품가격을 등귀시킨다는 결론은 결코 나오지 않는다. 가치가 변동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할수 있다. 례컨대 그 가치가 화폐가치와 같은 비률로 동시에 등귀하는 그러한 상품은 동일한 가격을 유지한다. 만일 이러한 상품의 가치가 화폐가치보다 더 늦게 오르거나 더 빨리 오를 경우에는 그 가격의 저락 또는 등귀는 상품의 가치변동과 화폐의 가치변동간의 차이에 의하여 규정된다, 등등.

① 이 책 68~70페지를 보라. —편집자

이제는 가격형태의 고찰로 되돌아가자.

금속중량의 화폐명칭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그 원래의 중량명칭과 점차 분리되게 된다. 그중에서 력사적으로 결정적인 원인들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정도가 비교적 낮은 민족들에게 있어서의 외국화폐의 류입. 례컨대 고대로마에서는 금은의 주화는 처음에는 외국상품으로서 류통되고있었다. 이 외국화폐의 명칭은 국내의 중량명칭과는 다른것이다. 2) 부의 증대에 따라 그리 귀중하지 않은 금속은 보다 귀중한 금속에 의하여 가치척도의 기능으로부터 구축된다. 동은 은에 의하여, 은은 금에 의하여 구축된다.—비록 이 순서가 시적년대기[113]와는 모순된다고는 하지만.(56) 례컨대 파운드는 은의 현실적인 1폰드에 대한 화폐명칭이였다. 금이 가치척도로서의 은을 구축하게 되자 이 동일한 명칭은 금과 은의 가치비률에 따라 대개 $\frac{1}{15}$폰드의 금에 적용되게 되였다, 등등.

이제는 화폐명칭으로서의 파운드와 금의 보통중량명칭으로서의 폰드는 분리되여버렸다.(57) 3) 몇백년에 걸친 군주들의 부단한 화폐위조. 이것은 주화의 원래 중량에서 사실상 명칭만을 남기였다.(58)

이러한 력사적과정으로 말미암아 금속중량의 화폐명칭이

---

(56) 그리고 또 이러한 년대기는 일반적인 력사적타당성이 있는것도 아니다.

(57) 제2판 주: 그리하여 영국의 파운드는 그 원래 중량의 $\frac{1}{3}$이하를 대표하고있으며 합병[114]이전의 스코틀랜드의 파운드는 겨우 $\frac{1}{36}$을, 프랑스의 리브르는 $\frac{1}{74}$을, 에스빠냐의 마라베디는 $\frac{1}{1,000}$이하를, 뽀르뚜갈의 레이는 그보다도 더 작은 비률을 대표하고있다.[115]

(58) 제2판 주: 《현재는 그 명칭이 벌써 관념적인것에 지나지 않게 된 주화들은 어떤 민족에 있어서도 가장 오랜 주화들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한때는 실재적인것이였고 또 그것들이 실재적이였기때문에 그것으로 계산하였던것이다.》(갈리아니 《화폐론》, 153페지)

그 보통중량명칭으로부터 분리되는것은 민족적관습으로 되고 있다. 화폐기준은 한편으로는 순전히 관습적인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것이므로 그것은 결국 법적으로 규제된다. 귀금속의 어떤 일정한 중량 례컨대 1온스의 금은 공적으로 몇등분으로 분할되여 파운드, 탈레르 등과 같은 법적세례명을 받는다. 이 등분은 현실적인 화폐적측정단위로서 통용되며 그것은 이번에는 또다시 실링, 펜스 등과 같은 법적세례명을 가지는 다른 등분으로 세분된다.(59) 이때 일정한 금속중량이 금속화폐의 기준으로 되는것은 의연히 전과 같다. 달라진것은 분할방식과 명칭뿐이다.

그리하여 가격 또는 상품의 가치가 관념적으로 전화된 금량은 이제는 금기준의 화폐명칭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승인된 계산명칭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1쿼터의 밀이 1온스의 금과 같다고 말할 대신에 그것이 3파운드 17실링 $10\frac{1}{2}$ 펜스와 같다고 말할것이다. 이와 같이 상품은 자기의 값이 얼마라는것을 자기의 화폐명칭으로 말하며 화폐는 어떤 물건을 가치로서, 따라서 또 화폐형태로 확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계산화폐로 쓰인다.(60)

어떤 물건의 명칭은 그 물건의 성질에 대하여서는 전적으로 외적인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야코브라는것

---

(59) 제2판 주: 데이비드 어커트씨는 그의 《상용어》에서 현재 영국의 화폐기준의 단위인 1파운드는 대략 $\frac{1}{4}$온스의 금과 같다는 사실을 괴이한 일(!)이라고 말하였으며 《이것은 기준을 확립하는것이 아니라 척도를 위조하는것이다.》라고 말하고있다. (105페지) 그는 금중량의 이러한 《허위적인 명칭》에서 기타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명의 위조의 손을 보고있다.

(60) 제2판 주: 《어떤 사람이 아나카르씨스에게 희랍사람들이 무엇때문에 화폐를 사용하는가고 물었을 때 그는 계산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대답하였다.》(아테나이오스 《학자들의 향연》, 쉬와이그호이제르 편찬, 1802년판, 제2권, 제1부, 제4편, 제49절 (120페지))

을 안다고 해도 그 사람에 관하여 아는것은 하나도 없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파운드, 탈레르, 프랑, 두카트 등등의 화폐명칭에는 가치관계의 흔적이 없어졌다. 이러한 신비한 기호가 가지고있는 은밀한 의미에 대한 혼란은 화폐명칭이 상품가치를 표현하는 동시에 어떤 금속중량 즉 화폐기준의 등분까지도 표현한다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더욱 심하게 된다.(61) 다른 한편 가치가 상품세계의 잡다한 물체들과는 달리, 이러한 개념이 없는 물적인 또 동시에 순전히 사회적인 형태로 발전하는것은 필연적이다.(62)

가격은 상품에 대상화되여있는 로동의 화폐명칭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품과 그 이름이 상품가격인 그 화폐량이 등가라고 하는것은 하나의 동의반복이다. 그것은 대체로 어떤 상품의 상대적가치표현이 언제든지 두 상품의 등가성의 표현이

---

(61) 제2판 주: 《가격기준으로서의 금은 상품가격과 동일한 계산명칭으로 나타나며 그리하여 레컨대 1온스의 금은 1톤의 철의 가치와 꼭 마찬가지로 3파운드 17실링 $10\frac{1}{2}$펜스로 표현되므로 금의 이와 같은 계산명칭은 금의 주조가격이라고 불리워왔다. 그리하여 금(또는 은)은 그자체의 재료로 평가되며 또 그것은 다른 모든 상품과는 달라서 어떤 고정가격을 국가로부터 받는다는 괴상한 관념이 이로부터 생겨났다. 일정한 금중량의 계산명칭을 고정시키는것이 이 중량의 가치를 고정시키는것으로 오해되고있다.》(맑스 《정치경제학비판》, 52페지[116])

(62) 《정치경제학비판》의 《화폐의 측정단위에 관한 제 학설》, 53페지이하[111]를 참조하라. 《주조가격》의 인상 또는 인하에 관한 환상은 모두 법적으로 고정되여있는 금 또는 은의 중량부분을 나타내는 법정화폐명칭을 국가측으로부터 더 큰 또는 더 작은 중량부분에 옮겨 사용함으로써 레컨대 $\frac{1}{4}$온스의 금으로 20실링을 주조할 대신에 장차 40실링을 주조할수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환상에 관하여는, 그것이 국가적 및 사적 채권자에 대한 졸렬한 재정적술책이 아니고 경제적인 《기적료법》을 찾아내기 위한것인한에 있어서는 페티가 《화폐문답. 핼리팩스후작에게. 1682년》에서 이미 상세히 론술하였다. 그런데 그의 직접적계승자인 다돌리 노스경 및 존 로크까지도—그후의 사람들은 말할것도 없고—다만 그의 학설을 비속화하는수밖에 없었다. 페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만약 국가의 부가 하나의 포고에 의하여 10배로 될수 있다면 그러한 포고가 우리의 위정자들에 의하여 훨씬 이전에 발포되지 않았다는것이 이상하다.》(우와 같은 책, 36페지)

기때문이다.(63) 그러나 상품가치량의 지수로서의 가격은 그 상품과 화폐와의 교환비률의 지수이기는 하지만 그와 반대로 그 상품과 화폐와의 교환비률의 지수는 반드시 그 상품의 가치량의 지수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가령 동일한 량의 사회적필요로동이 1쿼터의 밀로도 표현되며 2파운드(약 $\frac{1}{2}$온스의 금)로도 표현된다고 하자. 2파운드는 밀 1쿼터의 가치량의 화폐적표현 또는 그 가격이다. 이제 만약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1쿼터의 밀에 3파운드의 가격을 붙일수 있게 되든가 또는 1파운드의 가격을 붙이지 않을수 없게 된다면 1파운드와 3파운드는 이 밀의 가치량의 표현으로서는 너무 작거나 또는 너무 크다. 그러나 1파운드와 3파운드는 이 밀의 가격이다. 왜냐 하면 그것들은 첫째로는 이 밀의 가치형태 즉 화폐이며 둘째로는 이 밀과 화폐와의 교환비률의 지수이기때문이다. 생산조건이 변동하지 않는 한 또는 로동생산력이 변동하지 않는 한 1쿼터의 밀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의연히 동일한 량의 사회적로동시간이 지출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밀생산자의 의지에도 또는 다른 상품소유자의 의지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품의 가치량은 사회적로동시간에 대한 어떤 필연적인, 상품의 형성과정에 내재하는 관계를 표현한다. 가치량이 가격으로 전화되는것과 더불어 이 필연적인 관계는 일정한 상품과 그 외부에 존재하는 화폐상품과의 교환비률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 교환비률에는 그 상품의 가치량이 표현되는 동시에 또한 일정한 조건밑

---

(63) 《그렇지 않다면 화폐에 있어서의 백만의 가치는 상품에 있어서의 동일한 가치보다 크다는것을 승인하지 않으면 안된다.》(르 뜨론 《가치, 류통, 공업, 국내외무역의 견지에서의 사회적리익에 관하여》, 919페지) 따라서 《어떤 하나의 가치가 그것과 동일한 다른 가치보다 크다.》는것을 승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에서 그 상품이 양도되는 경우의 가치량이상 또는 가치량이하도 표현될수 있다. 따라서 가격과 가치량간의 량적불일치의 가능성 또는 가치량으로부터의 가격의 배리의 가능성은 가격형태자체에 내재하고있다. 이것은 결코 가격형태의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가격형태를 하나의 생산방식 즉 규칙이 오직 규칙이 없이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평균법칙으로서만 관철될수 있는 그러한 생산방식에 적합한 형태로 만든다.

그러나 가격형태는 가치량과 가격간의 즉 가치량과 그 화폐적표현간의 량적불일치의 가능성을 허용할뿐만아니라 하나의 질적모순까지도 내포하고있을수 있다. 그리하여 비록 화폐는 상품의 가치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격이 전혀 가치표현으로 되지 않게 되는 모순이 생겨난다. 그자체로서는 상품이 아닌것 례컨대 량심, 명예 등등과 같은것은 그 소유자가 화폐로 판매할수 있는 물건으로 되며 그리하여 그것들은 가격을 통하여 상품형태를 취할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물건은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않지만 형식상 가격을 가질수 있다. 이 경우에 가격표현은 수학상의 어떤 수량과 같이 상상적인것으로 된다. 다른 한편 상상적인 가격형태 례컨대 인간로동이 대상화되여있지 않기때문에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않는 미개간지의 가격같은것도 어떤 현실적인 가치관계 또는 그것으로부터 파생한 관계를 숨길수 있다.

상대적가치형태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가격은 어떤 상품 례컨대 1톤의 철의 가치를 표현하는것은 일정한 량의 등가물 례컨대 1온스의 금이 철과 직접 교환될수 있다는데 의하여 표현하는것이지 결코 그와 반대로 철이 금과 직접 교환될수 있다는데 의하여 표현하는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품은 실지

로 교환가치로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 자연적형체를 벗어버리고 오직 상상적인 금으로부터 현실적인 금에로 전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상품이 이 변체를 실현하는것은 헤겔의 《개념》이 필연으로부터 자유에로의 이행[117]을 실현하는 것보다도, 가재가 껍질을 벗어버리는것보다도, 성 히에로니무스가(64) 아담의 원죄로부터 벗어나는것보다도 《더 간고한 것》만은 사실이다. 상품은 레컨대 철이라는 그 현실적인 모습과 함께 관념적인 가치모습 또는 상상적인 금모습을 가격속에 가질수는 있으나 현실적인 철인 동시에 현실적인 금일수는 없다. 상품에 가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상적인 금을 그것과 등치되게 하면 된다. 그러나 상품이 그 소유자에 대하여 일반적등가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금으로 교체되지 않으면 안된다. 레컨대 철의 소유자가 어떤 향락용상품의 소유자와 대면하여 그에게 철가격을 가리켜 그것이 화폐형태라고 말한다면 그 향락용상품의 소유자는, 천국에서 성 페트루스가 그앞에서 신앙조항을 랑독한 단떼에게 대답한 것과 같이 대답할것이다.

《그 돈의 무게와 품질은 잘 알려져있다.

그러나 말해보라, 그것이 네 주머니에 있는가》[119]

가격형태는, 상품이 화폐와의 교환으로 양도될수 있다는 것과 또 이러한 양도가 필요하다는것을 내포하고있다. 다른 한편 금은 오직 그것이 교환과정내부에서 이미 화폐상품으로

---

(64) 성 히에로니무스가 젊었을 때 물질적인 정욕과 애써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는것은 사막에서 아름다운 녀인의 영상과 싸운 그의 투쟁이 보여주는바이지만 만년에는 정신적정욕과 애써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레컨대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마음속으로 세계심판자의 앞에 서있다고 생각하였다.》 《너는 누구냐?》고 어떤 목소리가 물었다. 《나는 기독교도올시다.》 그러자 세계심판자는 우뢰같은 소리를 질렀다. 《거짓말이다. 너는 한개의 키케로신도에 지나지 않는다!》[118]하고.

류통되고있기때문에 관념적인 가치척도로 기능한다. 그러므로 관념적인 가치척도속에는 경질화폐가 숨어있다.

2. 류 통 수 단

(a) 상품의 변태

이미 본바와 같이 상품의 교환과정은 모순되며 서로 배제하는 관계를 포함하고있다.① 상품의 발전은 이 모순들을 해소하는것이 아니라 이 모순들이 운동할수 있는 형태를 창조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현실적인 모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례컨대 어떤 물체가 다른 한 물체를 향하여 부단히 락하하면서 동시에 그 물체로부터 부단히 떨어져나가는것은 하나의 모순이다. 타원은 이 모순이 실현되는 동시에 해결되는 운동형태의 하나이다.

교환과정은 그것이 상품을 비사용가치로 인정하는 사람의 손으로부터 사용가치로 인정하는 사람의 손에로 이전시키는 한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물질변환이다. 어떤 유용한 로동형태의 생산물이 다른 유용한 로동형태의 생산물과 바뀌운다. 상품이 사용가치로 쓰이는 장소에 한번 도달하면 그것은 상품교환령역에서 떨어져나가 소비령역에로 들어간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것은 오직 상품교환령역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체 과정을 다만 형태의 측면에서만 고찰할것이다. 다시말하면 사회적물질변환을 매개하는 상품들의 형태변환 또는 변태만을 고찰할것이다.

---

① 이 책 49~54, 89~93페지를 보라. —편집자

이 형태변환에 대한 리해가 극히 불충분한것은 가치개념 자체가 똑똑하지 못한것을 제외한다면 상품의 매개 형태변환이 두 종류의 상품 즉 보통상품과 화폐상품과의 교환을 통하여 수행된다는 사정에 기인한다. 우리가 상품과 금과의 교환이라는 이 물질적요소에만 주의를 돌린다면 바로 우리가 보아야 할것을 즉 형태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지 못하게 된다. 즉 금은 단순한 상품으로서는 아직 화폐가 아니라는것 그리고 다른 상품들은 그것들의 가격을 통하여 그자체의 화폐적모습으로서의 금과 자기자체를 관계시키고있다는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

상품은 우선 도금도 하지 않고 사탕칠도 하지 않고 태여난 그 모습대로 교환과정에 들어간다. 교환과정은 상품과 화폐에로의 상품의 이중화를 낳는다. 즉 상품이 그 사용가치와 가치간의 내재적대립을 표현하는 외부적대립을 낳는다. 이 외부적대립에서 사용가치로서의 상품이 교환가치로서의 화폐에 대립한다. 다른 한편 이 대립의 쌍방은 모두 상품이며 따라서 모두 사용가치와 가치의 통일이다. 그러나 이 차이의 통일은 량극중의 매개 극에서 서로 반대로 표현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량극의 호상관계를 표현한다. 상품은 현실적으로는 사용가치이며 그 가치존재는 가격에서 다만 관념적으로만 나타난다. 그리고 가격은 상품을 대립하고있는 금과 관계시키며 금을 자기의 현실적인 가치모습으로 되게 한다. 그와 반대로 금이라는 물질은 오직 가치의 화신으로서, 화폐로서 역할할뿐이다. 따라서 금은 현실적으로는 교환가치이다. 금의 사용가치는 아직 상대적가치표현들의 계렬에서 다만 관념적으로만 나타난다. 이 상대적가치표현의 계렬에서 금은 그것에 대립하는 상품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것들을 그

현실적사용자태의 총체로 만든다. 상품들의 이와 같은 대립적형태들이 상품교환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운동형태들이다.

이제 우리는 어떤 한 상품소유자 례컨대 우리의 옛친구인 아마포직포자와 함께 교환과정의 무대인 상품시장에 가보기로 하자. 그의 상품 즉 20엘레의 아마포는 가격이 정해져 있다. 그 가격은 2파운드이다. 그는 이것을 2파운드와 교환하고 다음에는 구식사람인것만큼 그 2파운드를 다시 같은 가격의 가정용성경책과 교환한다. 그 직포자에 대해서는 오직 상품이고 오직 가치의 담당자일따름인 아마포는 그 가치모습인 금과의 교환으로 양도되며 다음 이 가치모습으로부터 또 다시 성경책이라는 하나의 다른 상품과의 교환으로 양도된다. 이제 이 성경책은 사용대상으로서 직포자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신앙욕망을 충족시킬것이다. 이와 같이 상품의 교환과정은 서로 대립하고 서로 보충하는 두개의 변태에 의하여 즉 상품의 화폐에로의 전화와 화폐의 상품에로의 재전화에 의하여 수행된다.(65) 상품의 변태의 두 요소는 동시에 상품소유자의 거래—판매 즉 상품의 화폐와의 교환, 구매 즉 화폐의 상품과의 교환 및 이 두 행위의 통일 즉 구매를 위한 판매이기도 하다.

이제 아마포직포자가 이 거래의 마지막결과를 살펴본다면 그는 아마포 대신에 성경책을 즉 그의 본래의 상품 대신에 그것과 가치는 같으나 유용성이 같지 않은 한개의 다른 상품을 가지고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는 자기의 기타

---

(65)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말하였다.…불에서 만물이 생기며 만물에서 불이 생긴다. 이것은 금에서 여러가지 물품이 생기고 여러가지 물품에서 금이 나오는것과 같다.》(F. 라쌀 《에페소스의 어두운 사람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 1858년 베를린판, 제1권, 222페지) 이 개소에 대한 라쌀의 주(224페지 주3)는 화폐를 부당하게도 단순한 가치기호라고 설명하고있다.[120]

생활수단과 생산수단을 얻는다. 그의 립장에서 보면 전체 과정은 그의 로동생산물과 다른 사람의 로동생산물과의 교환을 즉 생산물들의 교환을 매개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상품의 교환과정은 다음과 같은 형태변환으로 수행된다.

상품—화폐—상품

W—G—W

물질적내용으로 보면 이 운동은 W—W, 상품과 상품과의 교환이며 사회적로동의 물질변환이며 그 결과에는 과정자체도 사라진다.

W—G. 상품의 제1변태 또는 판매. 상품가치가 상품체로부터 금체로 뛰여넘어가는것은 내가 그것을 다른 곳에서 말한바[121]와 같이 상품의 결사적인 비약이다. 만약 이 비약에 실패한다면 상품은 타격을 받지 않을수도 있으나 상품소유자는 틀림없이 타격을 받는다. 사회적분업은 상품소유자의 로동을 일면적인것으로 만드는 동시에 그의 욕망을 다면적인것으로 만든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의 생산물은 그에게는 오직 교환가치로만 된다. 그러나 그의 생산물은 오직 화폐에서만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일반적인 등가형태를 가지며 그 화폐는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다. 화폐를 거기에서 끌어내기 위해서는 상품은 우선 그 화폐소유자에게 있어서 사용가치로 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그 상품에 지출된 로동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태로 지출되여있지 않으면 안된다. 바꾸어말하면 그 로동은 사회적분업의 일환으로서 실증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분업은 하나의 자연발생적인 생산유기체이며 그 실은 상품생산자의 배후에서 이미 짰고 또 계속하여 짜고 있는것이다. 상품은 어떤 새로운 로동방식의 생산물이며 새

로 생긴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거나 또는 자기로서 어떤 욕망을 새로 불러일으키려고 할수도 있다. 어제까지는 동일한 상품생산자의 많은 기능중의 한 기능이였던 어떤 특수한 작업이 오늘은 이 련관으로부터 분리되여 독립적인것으로 되며 또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의 부분적생산물을 독립적상품으로서 시장에 내보낼수도 있다. 이 분리과정을 위하여 조건이 성숙되여있을수도 있고 성숙되여있지 않을수도 있다. 어떤 생산물은 오늘은 하나의 사회적욕망을 충족시키고있다. 그것은 래일에는 어떤 류사한 종류의 생산물에 의하여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자기의 지위로부터 구축당할수도 있다. 어떤 로동은 우리의 아마포직포자의 로동처럼 사회적분업의 공인된 일환으로 되여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써는 아직 그의 20엘레의 아마포가 사용가치를 가지리라는것이 결코 보장되여있지 않다. 아마포에 대한 사회적욕망은 다른 모든 사회적 욕망과 마찬가지로 한도가 있는데 그것이 벌써 그 아마포직포자의 경쟁자들에 의하여 충족되여있다면 우리 친구의 생산물은 여분의것으로, 남아도는것으로 되며 따라서 또 무용한 것으로 된다. 선물로 받는 말의 이발을 보지 말라[122]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아마포직포자는 결코 선사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 간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의 생산물의 사용가치가 실증되고 따라서 화폐가 그 상품에 끌리여온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제는 대체 얼마만큼한 화폐인가 하는것이 문제로 된다. 물론 이에 대한 대답은 이미 그 가치량의 지표인 상품의 가격속에 벌써 예상되여있다. 우리는 상품소유자가 범할수 있는 순전히 주관적인 오산을 무시하자. 그것은 시장에서 즉시 객관적으로 시정되는것이다. 그는 자기 생산물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평균로동시간만을 지출하였다고 하자. 따

라서 그 상품의 가격은 그 상품에 대상화되여있는 사회적로동량의 화폐적명칭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마포직조업의 이전부터 보장되여오던 생산조건이 우리의 아마포직포자의 허락이 없이 또 그의 배후에서 갑자기 변하였다. 어제까지는 틀림없이 1엘레의 아마포를 생산하는 사회적필요로동시간이였던것이 오늘은 그렇지 않게 되였다. 이것은 화폐소유자가 우리 친구의 여러 경쟁자들이 정한 가격에 근거하여 열심히 증명하는바이다. 그에게 불행한 일은 세상에 아마포직포자가 많다는 사실이다. 끝으로 시장에 있는 매 조각의 아마포에는 사회적필요로동시간만이 포함되여있다고 가정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각들의 총량에 포함된 이미 지출된 로동시간은 여전히 과도할수 있다. 만약 시장의 배집이 1엘레당 2실링이라는 정상가격으로는 아마포의 총량을 흡수할수 없다면 이 사실은 사회적총로동시간중 너무나 많은 부분이 아마포직조업의 형태로 지출되여있다는것을 증명하여준다. 그 결과는 마치 매개의 개별적아마포직포자가 자기의 개인적생산물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로동시간이상의 로동시간을 지출한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에는 《같이 잡혀 같이 죽는다.》① 는 격이다. 시장에 있는 일체 아마포는 오직 단 하나의 상품으로서 기능하며 그 매개 조각은 오직 이 한 상품의 정제되는 부분으로서만 기능한다. 그리고 실제로 매 1엘레의 가치는 모두 동등한 인간로동의 사회적으로 규정된 동일한 량의 물질화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123]

보는바와 같이 상품은 화폐를 사랑하고있으나 《진정한 사랑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124] 분업의 체계속에 자기의 《분산된 사지》[125]를 표현하고있는 사회적생산유기체의

① 독일의 속담인데 고생을 같이한다는 뜻이다. —편집자

량적구조는 그 질적구조와 마찬가지로 자연발생적이며 우연적인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상품소유자들은 그들을 독립적인 사적생산자로 만드는 그 동일한 분업이 사회적생산과정 및 이 과정에서의 그들의 관계를 그들자신으로부터 독립적인 것으로 만들고있다는것을 발견하며 사람들의 호상간의 독립성은 전면적인 물적의존성의 체계로서 보충되여있다는것을 발견한다.

분업은 로동생산물을 상품에로 전화시키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상품의 화폐에로의 전화를 필연적인것으로 만든다. 동시에 분업은 이 전화의 성공여부를 우연적인것으로 만든다. 그러나 여기에서 현상을 순수한 형태에서 고찰해야 할것이며 따라서 그 정상적인 진행을 전제로 하여야 할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다시말하면 상품이 팔리기만 한다면 상품의 형태변환은 항상 일어난다. 하기는 이 형태변환에서 실체—가치량—가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감소 또는 증대될수 있지만.

한 상품소유자에 대하여는 금이 그의 상품과 바뀌우며 다른 상품소유자에 대하여는 상품이 그의 금과 바뀌운다. 곧 눈에 띄우는 현상은 상품과 금이 즉 20엘레의 아마포와 2파운드가 소유자를 바꾸었다는것, 장소를 바꾸었다는것 즉 그것들이 교환되였다는것이다. 그러나 상품은 무엇과 교환되는가? 그자신의 일반적인 가치모습과 교환된다. 또 금은 무엇과 교환되는가? 자신의 사용가치의 특수한 모습과 교환된다. 어째서 금은 화폐로서 아마포에 대립하는가? 2파운드라는 아마포의 가격 또는 아마포의 화폐명칭이 벌써 아마포를 화폐로서의 금에 관계시키고있기때문이다. 상품이 그 본래의 상품형태로부터 벗어나는것은 상품의 양도에 의하여 완수된다.

다시말하면 그 상품의 가격에서는 오직 상상적인것으로만 되여있는 금을 상품의 사용가치가 현실적으로 끌어오는 그 순간에 완수된다. 그러므로 상품의 가격의 실현 또는 상품의 오직 관념적인 가치형태의 실현은 동시에 화폐의 오직 관념적인 사용가치의 실현이다. 그리하여 상품의 화폐로의 전화는 동시에 화폐의 상품에로의 전화이다. 이 하나의 과정은 이면적인 과정이다. 즉 상품소유자의 극에서는 판매이며 화폐소유자인 반대극에서는 구매이다. 바꾸어말하면 판매는 구매이며, W—G는 동시에 G—W이다.(66)

지금까지 우리는 다만 인간들의 경제적관계 즉 상품소유자들의 관계만을 알고있을뿐이다. 이 관계에서 상품소유자는 자기의 로동생산물을 내줌으로써만 다른 사람의 로동생산물을 얻는다. 그러므로 한 상품소유자에 대하여 다른 상품소유자가 화폐소유자로서 대립할수 있는것은 다만 그의 로동생산물이 천연적으로 화폐형태를 취하고있으며 화폐재료로, 금 등등으로 되여있기때문이거나 혹은 그자신의 상품이 벌써 탈피하여 그의 본래의 사용형태를 벗어버렸기때문이다. 금은 화폐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지점에서 상품시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 지점은 금의 산지에 있는데 거기에서 금은 직접적인 로동생산물로서 가치가 같은 다른 로동생산물과 교환된다. 그러나 이 순간부터 언제나 금은 실현된 상품가격을 나타낸다.(67) 금산지에서의 상품과 금과의

---

(66) 《모든 판매는 동시에 구매이다.》(께내의사 《상업 및 수공업자의 로동에 관한 대화》, 대르 편찬, 《중농학파》, 1846년 빠리판, 제1부, 170페지에 (수록)), 또는 같은 께내가 그의 《일반준칙》에서 말하고있는바와 같이 《파는것은 사는것이다》.[126]

(67) 《한 상품의 가격에 대해서는 오직 다른 상품의 가격으로써만 지불될수 있다.》(매르씨에 드 라 리비에르 《정치사회의 자연적 및 본질적 질서》, 대르 편찬, 《중농학파》, 제2부, 554페지에 (수록))

교환을 도외시한다면 금은 어떠한 상품소유자의 수중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모두 그가 양도한 상품의 리탈된 모습이며 판매의 산물 또는 상품의 제1변태 W—G의 산물이다.(68) 금이 관념적화폐 또는 가치척도로 된것은 모든 상품이 그 가치를 금으로 측정하며 그리하여 금을 상품의 사용모습의 상상적인 대립물로, 그것들의 가치모습으로 만들었기때문이다. 금이 현실적인 화폐로 되는것은 상품이 그 전면적인 양도에 의하여 금을 그것들의 현실적으로 리탈한 또는 전화한 사용모습으로 만들며 따라서 상품의 현실적인 가치모습으로 만들기때문이다. 가치모습으로서는 상품은 그 자연생장적인 사용가치의 온갖 흔적, 그 상품을 창조한 특수한 유용로동의 온갖 흔적을 버리고 무차별적인간로동의 동일한 사회적화신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화폐를 보아서는 그것에 전화된 상품이 어떠한 종류의것인가를 도저히 알수 없다. 화폐형태에서는 이 상품이나 저 상품이나 다 완전히 같게 보인다. 그러므로 화폐는 똥거름일수도 있다. 비록 똥거름이 화폐인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의 아마포직포자가 그의 상품을 양도하여 얻어온 두개의 금화가 1쿼터의 밀의 전화된 모습이라고 가정하자. 아마포의 판매 W—G는 동시에 그 구매 G—W이다. 그러나 아마포의 판매로서는 이 과정은 하나의 운동을 개시하는데 이 운동은 그 대립의 과정 즉 성경책의 구매로써 끝난다. 아마포의 구매로서는 이 과정은 하나의 운동을 끝내는데 이 운동은 그 반대의 과정 즉 밀의 판매로써 시작된것이다. W—G(아마포—화폐) 즉 하나의 운동 W—G—W(아마포—화

---

(68) 《화폐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판매하지 않으면 안된다.》 (매르씨에 드 라 리비에르 《정치사회의 자연적 및 본질적 질서》, 대르 편찬, 《중농학파》, 제2부, 543페지에 (수록))

페—성경책)의 첫단계는 동시에 G—W(화페—아마포) 즉 다른 하나의 운동 W—G—W(밀—화페—아마포)의 마지막 단계이다. 한 상품의 제1변태 즉 상품형태로부터 화페에로의 그 전화는 언제나 동시에 다른 한 상품의 상반되는 제2변태 즉 화페형태로부터 상품에로의 그 재전화이다.(69)

G—W. 상품의 제2변태 또는 최후의 변태 즉 구매. 화페는 다른 모든 상품의 리탈한 모습 또는 그것들의 일반적양도의 산물이므로 절대적으로 양도될수 있는 상품이다. 화페는 모든 가격을 거꾸로 읽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화페자신의 상품화를 위한 헌신적재료로서의 모든 상품체에 자신을 비추고 있는것이다. 동시에 상품이 화페에 던지는 추파인 이 가격은 화페의 전화능력의 한계 즉 화페자체의 량을 표시한다. 상품은 화폐로 되면 사라져 없어지므로 화페를 보아서는 그것이 어떻게 하여 그 소유자의 손에 들어왔으며 또는 무엇이 그것으로 전화되였는가 하는것은 알수 없다. 화페의 유래야 어찌되였든, 화페는 구린내가 나지 않는다.[127] 화페는 한편으로는 판매된 상품을 대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매할수 있는 상품을 대표한다.(70)

G—W 즉 구매는 동시에 판매 즉 W—G이다. 따라서 어떤 상품의 최후의 변태는 동시에 다른 상품의 최초의 변태이다. 우리의 아마포직포자에게 있어서는 그의 상품의 생애는 그가 2파운드를 재전화한 성경책으로써 끝난다. 그러나 성경

---

(69) 우에서 말한바와 같이 금 또는 은의 생산자는 례외로 되는데 그는 자기의 생산물을 먼저 팔지 않고도 그것을 교환에 내놓는다.①

(70) 《우리 수중에 있는 화페는 우리가 사려고 하는 물건들을 대표하며 또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 화페를 받고 판매한 물건들을 대표한다.》(매르씨에 드라 리비에르 《정치사회의 자연적 및 본질적 질서》, 대르 편찬, 《중농학파》, 제2권, 586페지에 (수록))

① 이 책 111, 117, 130페지를 보라. —편집자

책판매자는 아마포직포자로부터 받은 2파운드를 소주와 바꾼다. G—W 즉 W—G—W(아마포—화폐—성경책)의 마지막 단계는 동시에 W—G 즉 W—G—W(성경책—화폐—소주)의 제1단계이다. 상품생산자는 오직 어떤 한 방면의 생산물만을 시장에 공급하기때문에 그는 그 생산물을 흔히 다량으로 판매하지만 그 반면에 그는 그의 다방면적인 욕망으로 말미암아 실현된 가격 또는 얻은 화폐액을 부단히 다수의 구매에로 분산시키지 않을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의 판매는 각종 상품의 허다한 구매를 일으킨다. 그리하여 어떤 상품의 마지막 변태는 허다한 다른 상품들의 첫 변태의 총화를 이룬다.

이제 어떤 상품 례컨대 아마포의 총변태를 고찰한다면 제일먼저 눈에 띄우는것은 그것이 서로 대립하고 서로 보충하는 두 운동 W—G와 G—W로써 이루어져있다는것이다. 상품의 이 대립적인 두 전화는 그 상품소유자의 대립적인 두개의 사회적과정으로써 실현되며 또 그 상품소유자의 대립적인 두 경제적역할에 반영된다. 그는 판매의 당사자로서는 판매자로 되며 구매의 당사자로서는 구매자로 된다. 그러나 상품의 어떠한 전화에 있어서도 상품의 두 형태 즉 상품형태와 화폐형태는 동시적으로 그러나 오직 서로 대립하는 량극에서만 존재하는만큼 동일한 상품소유자에 대해서는 그가 판매자인 경우에는 다른 한 구매자가 그에게 대립하며 그가 구매자인 경우에는 다른 한 판매자가 그에게 대립한다. 동일한 상품이 서로 반대되는 두 전화를 순차적으로 경과하여 상품으로부터 화폐로 되고 화폐로부터 상품으로 되는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상품소유자도 판매자의 역할을 하는데로부터 구매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 두 역할은 결코 고정적인 역할이 아니고 상품류통의 내부에서 부단히 사람을 교체하는

그러한 역할이다.

한 상품의 총체적변태는 그 가장 간단한 형태에서는 4개의 극과 3명의 등장인물을 전제로 한다. 처음에는 상품에 그 가치모습으로서의 화폐가 대립하는데 이 가치모습은 저편에서, 타인의 주머니속에서 물질적으로 견고한 현실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그 상품소유자에게는 화폐소유자가 대립한다. 이제 상품이 화폐로 전화하자마자 그 화폐는 그 상품의 일시적인 등가형태로 되는바 이 등가형태의 사용가치 또는 내용은 이편에, 다른 상품체들속에 존재한다. 상품의 제1전화의 종점인 화폐는 동시에 상품의 제2전화의 출발점으로 된다. 그리하여 제1막에서의 판매자는 제2막에서는 구매자로 되며 거기에서는 제3의 상품소유자가 판매자로서 그에게 대립한다.(71)

상품변태의 이러한 상반되는 두 운동단계는 하나의 순환을 이룬다. 즉 상품형태, 상품형태의 탈각, 상품형태에로의 복귀가 그것이다. 물론 상품 그자체는 여기서 대립적으로 규정된다. 상품은 그 소유자에게는 출발점에서는 비사용가치이고 종점에서는 사용가치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화폐는 우선 상품이 전화되는 견고한 가치결정체로서 나타나고 다음에는 상품의 단순한 등가형태로 해소되여버린다.

한 상품의 순환을 형성하는 두 변태는 동시에 다른 두 상품의 반대방향으로의 부분적변태를 형성한다. 동일한 상품(아마포)이 그자체의 변태의 계렬을 개시하는 동시에 다른 한 상품(밀)의 총체적변태를 종결짓는다. 상품은 자기의 제1전환 즉 판매에서는 이와 같은 두가지 역을 한몸으로 담당한

---

(71) 《이와 같이 여기에는 4개의 종점과 3명의 계약당사자가 있고 그중의 한사람은 두번 등장한다.》 (르 뜨론 《가치, 류통, 공업, 국내외무역의 견지에서의 사회적리익에 관하여》, 909페지)

다. 이와 반대로 상품이 금번데기로 되여 자기의 생애를 끝마칠 때에는 그것은 동시에 제3의 상품의 제1변태를 완성시킨다. 이와 같이 매개 상품의 변태계렬이 그리는 순환은 다른 상품들의 순환과 불가분적으로 뒤엉켜있다. 이 총과정은 상품류통으로서 나타난다.

상품류통은 다만 형식적으로뿐만아니라 본질적으로도 직접적인 생산물교환과 다르다. 이제 우에서 서술한 과정을 좀 돌이켜보자. 아마포직포자는 틀림없이 아마포를 성경책과 교환하였으며 자기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교환하였다. 그러나 이 현상은 오직 그자신에게만 진실인것이다. 싸늘한 신성성보다 사람을 덥혀주는 음료를 더 좋아하는 성경책판매자는 성경책이 아마포와 교환된다는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아마포직포자가 밀이 그의 아마포와 교환된다는것을 생각하지도 않은것과 같다, 등등. B의 상품은 A의 상품을 대체하나 A와 B는 그들의 상품을 서로 교환하지는 않는다. 실지로 A와 B가 호상간 서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특수한 관계는 결코 상품류통의 일반적조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상품교환이 어떻게 직접적인 생산물교환의 개인적 및 지방적 한계를 타파하고 인간로동일반의 물질변환을 발전시키는가를 본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사자들에 의하여서는 통제되지 않는 사회적인 자연적련관의 일련의 총체가 발전한다. 직조업자가 아마포를 팔수 있는것은 오직 농민이 벌써 밀을 팔았기때문이며 소주애호가가 성경책을 팔수 있는것은 오직 직조업자가 벌써 아마포를 팔았기때문이며 양조업자가 소주를 팔수 있는것은 오직 다른 사람이 벌써 영생불사의 물[128]을 팔았기때문이다, 등등.

그렇기때문에 류통과정은 직접적생산물교환과는 달리 사

용가치의 장소변환 또는 소유자변환에 의하여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다. 화폐는 그것이 한 상품의 변태계렬로부터 최종적으로 리탈한다고 해서 사라져버리는것이 아니다. 화폐는 언제나 상품이 내준 류통장소에 가라앉는다. 례컨대 아마포의 총변태 즉 아마포—화폐—성경책에서는 우선 아마포가 류통에서 리탈하고 화폐가 그 자리를 차지하며 다음에는 성경책이 류통에서 리탈하고 화폐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한 상품이 다른 상품과 교체되면 화폐상품은 제3자의 손에 남게 된다.(72) 류통은 부단히 화폐를 땀처럼 류출시킨다.

매개의 판매는 동시에 구매이고 또 그 반대이기도 하기때문에 상품류통은 필연적으로 판매와 구매간의 균형을 조성한다는 독단이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것이다. 만약 그것이 현실적으로 수행되는 판매의 수가 구매의 수와 동일하다는것을 말하는것이라면 그것은 싫증나는 동의반복이다. 그러나 이 독단은 판매자가 그자신의 구매자를 시장으로 데려온다는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판매와 구매는 대극적으로 대립하고있는 두 인물 즉 상품소유자와 화폐소유자간의 호상관계로서는 하나의 동일한 행위이다. 그러나 동일한 인물의 행동으로서는 그것들은 대극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두개의 행위이다. 그러므로 판매와 구매와의 동일성은 상품이 류통이라는 련금술도가니속에 투입되였는데 화폐로서 다시 나오지 못한다면 즉 상품소유자에 의하여 판매되지 못하며 따라서 화폐소유자에 의하여 구매되지 못한다면 그러한 상품은 무용지물로 된다는것을 포함하고있다. 이 동일성은 또한 다음과 같은것도 포함하고있다. 즉 만약 이 과정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휴지점을, 길수도 있고 짧을수도 있는 상품의 생

(72) 제2판 주: 이 현상은 극히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 특히 속류자유무역론자들은 대체로 이것을 보지 못하고있다.

애의 한 시기를 이룬다는것을 포함하고있다. 상품의 제1변태는 판매인 동시에 구매이기때문에 이 부분적과정은 동시에 독립적인 과정이다. 구매자는 상품을 가지고있고 판매자는 화폐를 가지고있다. 즉 판매자는 다시 시장에 일찍 나타나든지 늦게 나타나든지간에 류통할수 있는 형태를 보존하고있는 그러한 상품을 가지고있다. 그 어떤 다른 사람이 구매하지 않으면 누구도 판매할수 없다. 그러나 누구나 그자신이 판매했다고 해서 즉시로 구매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다. 류통은 생산물교환의 시간적, 장소적, 개인적 한계를 타파하는데 이것은 바로 생산물교환에 존재하는 자기의 로동생산물의 양도와 다른 사람의 로동생산물의 취득간의 직접적동일성이 류통에 의하여 판매와 구매의 대립으로 분렬되기때문이다. 독립적인것으로서 서로 대립하고있는 과정들이 하나의 내부적통일을 이루고있다는것은 바로 그 과정들의 내부적통일이 외부적대립속에서 운동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서로 보충하는것이기때문에 내부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과정의 외부적독립화가 일정한 점에 도달하면 통일은 공황을 통하여 강압적으로 관철된다. 상품에 내재하는 대립 즉 사용가치와 가치와의 대립, 사적로동이 동시에 직접적으로 사회적로동으로서 표현되여야 한다는 대립, 특수적인 구체적로동이 동시에 오직 추상적인 일반적로동으로서만 인정된다는 대립, 물건의 인격화와 인격의 물화간의 대립—이러한 내재적모순은 상품변태의 대립에서 그 발전된 운동형태를 취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태들은 공황의 가능성을, 오직 가능성만을 포함하고있다. 이 가능성의 현실성으로의 발전은 단순한 상품류통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아직 전혀 존재하지 않는 관계들의 총체를 필요로 한다.(73)

---

(73) 《정치경제학비판》,74~76페지[129]에서 내가 제임즈 밀에 관하여 서술한것을 참조하라. 여기서는 두가지 점이 경제학적변호론자의 방법의 특징으로 되여있다. 첫째로

화폐는 상품류통의 매개자로서 류통수단이라는 기능을 가진다.

(b) 화폐의 류통

로동생산물의 물질변환이 수행되는 형태변환 W—G—W는 동일한 가치가 상품으로서 과정의 출발점이 되며 또 상품으로서 다시 동일한 점에 되돌아오는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상품의 이 운동은 순환이다. 다른 한편 이 형태는 화폐의 순환을 배제한다. 이러한 운동의 결과 화폐는 그 출발점에서 부단히 멀리 떨어져나가며 출발점으로 되돌아오지는 않는다. 판매자가 그의 상품의 전화된 모습인 화폐를 쥐고 놓지 않는 동안은 상품은 의연히 제1변태의 단계에 있다. 다시 말하면 그 류통의 앞절반을 통과하였을뿐이다. 구매를 위한 판매라는 이 과정이 완성되는 때에 화폐는 그 본래의 소유자의 손에서 또다시 멀어진다. 물론 아마포직포자가 성경책을 산 뒤에 또 새로 아마포를 팔 때에는 화폐가 그의 수중에 되돌아오는것이다. 그러나 그 화폐는 최초의 20엘레의 아마포의 류통에 의하여 되돌아오는것이 아니다. 이 류통에 의해서는 화폐는 도리여 아마포직포자의 수중으로부터 성경책판매

는 상품류통과 직접적인 생산물교환간의 구별을 단순히 사상함으로써 이 량자를 동일시하는것이다. 둘째로는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의 생산당사자들의 관계를 상품류통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관계에 해소시킴으로써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의 모순을 부정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상품생산과 상품류통은 비록 그 범위와 영향력에 있어서는 각이하다 할지라도 극히 다양한 생산방식들에 볼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단지 그것들에 공통한 추상적인 상품류통의 범주들만을 안다 할지라도 이 생산방식들의 종차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따라서 그것들을 판단할수 없다. 정치경제학외의 어떠한 과학에서도 초보적인 자명한것을 가지고 그처럼 굉장히 떠들어대는 일이 없다. 례컨대 J. B. 쎄는 그가 상품이 생산물이라는것을 안다고 해서 공황을 부인하려고 덤벼든다.[130]

자의 수중에로 멀리 떨어져나간것이다. 화폐는 새로운 상품이 동일한 류통과정을 갱신 또는 반복함으로써만 되돌아오며 또 이 류통과정도 그전의 경우와 마찬가지 결과로써 끝난다. 그러므로 상품류통에 의하여 화폐에 직접 부여되는 운동형태는 화폐가 부단히 출발점으로부터 멀어져가는것, 화폐가 한 상품소유자의 수중으로부터 다른 상품소유자의 수중에로 이전하는것 또는 화폐의 류통이다(currency, cours de la monnaie).

화폐의 류통은 동일한 과정의 부단한 단조로운 반복을 표시한다. 상품은 항상 판매자측에 있고 화폐는 항상 구매수단으로서 구매자측에 있다. 화폐는 상품의 가격을 실현시킴으로써 구매수단으로서 기능한다. 화폐는 가격을 실현시킴으로써 상품을 판매자의 수중으로부터 구매자의 수중에로 이전시키며 그와 동시에 자신은 구매자의 손으로부터 판매자의 손에로 넘어가 다른 상품과 더불어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화폐운동의 이와 같은 일면적인 형태가 상품운동의 이면적인 형태로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은 엄폐되여있다. 상품류통의 본성 그자체가 바로 이와 반대되는 외관을 빚어낸다. 상품의 제1변태는 외관상 비단 화폐의 운동으로서뿐만아니라 또한 상품자체의 운동으로서도 나타나지만 상품의 제2변태는 오직 화폐의 운동으로서만 나타난다. 상품은 그 류통의 앞절반에서 화폐와 위치를 바꾼다. 그와 동시에 상품의 사용모습은 류통분야로부터 탈락되여 소비에로 들어간다.(74) 상품의 가치모습 또는 상품의 화폐가면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상품은 류통의 뒤절반을 벌써 자체의 자연적인 외피가 아니라 금의

(74) 상품이 여러차례 판매되는 경우—이러한 현상은 여기에서 아직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에도 그 상품은 마지막 종국적인 판매에 의하여 류통분야에서 소비분야로 떨어져들어가 거기서 생활수단 또는 생산수단으로서 복무한다.

외피를 쓰고 통과한다. 그리하여 운동의 련속성은 전적으로 화폐측에서만 볼수 있다. 그리고 상품에 대하여서는 두 대립적인 과정을 포함하는 그 동일한 운동이 화폐자체의 운동으로서는 그것이 언제나 동일한 과정을 즉 화폐가 빈번히 다른 상품과 자리를 바꾸는것을 포함하고있다. 그러므로 상품류통의 결과 즉 다른 상품에 의한 한 상품의 교체는 마치 그 상품자체의 형태변환에 의해서가 아니라 류통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에 의하여 생기는듯이 보이며 마치 류통수단으로서의 화폐가 자체로서는 운동하지 않는 상품을 류통시키여 그 상품을 사용가치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수중으로부터 사용가치로 인정하는 사람의 수중에로, 항상 화폐자신의 운동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전시키는듯이 보인다. 화폐는 부단히 상품 대신에 류통장소를 차지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자신의 출발점에서 멀리 떨어져가면서 부단히 상품을 류통분야로부터 리탈시킨다. 그러므로 화폐운동은 상품류통의 표현에 지나지 않지만 외관상으로는 반대로 상품류통이 화폐운동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듯이 보인다.(75)

다른 한편 화폐가 류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된것은 오직 화폐가 상품의 독립화한 가치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류통수단으로서의 화폐의 운동은 사실상 상품자체의 형태운동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상품형태의 운동은 화폐류통에 뚜렷이 반영되지 않을수 없다. 례컨대 아마포는 우선 자기의 상품형태를 자기의 화폐형태로 전화시킨다. 그다음 그 제1변태 W—G의 최후의 극 즉 화폐형태는 그 최후의 변태

---

(75) 《그것 (화폐) 은 생산물들이 그것에 부여하는 운동외에는 어떤 운동도 하지 않는다.》 (르 뜨론 《가치, 류통, 공업, 국내외무역의 견지에서의 사회적리익에 관하여》, 885페지)

G—W의 최초의 극으로 즉 아마포가 성경책에로 재전화된다. 그러나 이 두 형태변환은 어느것이나 상품과 화폐와의 교환을 통하여, 그것들 호상간의 위치변환에 의하여 수행된다. 동일한 화폐조각이 상품의 탈각된 모습으로서 판매자의 수중에 들어왔다가 상품의 절대적으로 양도될수 있는 모습으로서 그 수중으로부터 떠나간다. 화폐는 두번 위치를 바꾼다. 아마포의 제1변태는 이 화폐조각을 직조업자의 주머니속에 넣어주며 제2변태는 그것을 다시 끄집어낸다. 이와 같이 동일한 상품의 대립적인 두 형태변환은 반대방향에로의 화폐의 두번의 위치변환에 반영된다.

이와 반대로 오직 일면적인 상품변태만이 일어난다면 팔기만 하든지 혹은 사기만 하든지간에 동일한 화폐는 역시 오직 한번만 위치를 바꾼다. 화폐의 제2위치변환은 언제든지 상품의 제2의 변태 즉 화폐로부터 상품에로의 재전화를 표시한다. 동일한 화폐조각의 위치변환의 빈번한 반복에는 비단 어떤 한 상품의 변태의 계렬이 반영될뿐만아니라 상품세계전체의 무수한 변태간의 뒤엉킨 관계도 또한 반영된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오직 여기서 고찰하는 단순한 상품류통의 형태에만 적용된다는것은 아주 자명한 일이다.

매개 상품은 류통에서의 제1보에서, 그 제1형태변환에서 벌써 류통으로부터 떨어져나가고 거기에는 부단히 새로운 상품이 들어온다. 이와 반대로 화폐는 류통수단으로서는 부단히 류통분야에 머물러있으며 부단히 그속에서 뛰여다닌다. 그러므로 이 류통분야가 얼마만큼 화폐를 부단히 흡수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한 나라에서 날마다 수많은 동시적인 따라서 공간적으로 병행하는 일면적인 상품변태가 생기고있다. 바꾸어말하면 일방

으로부터의 판매만이, 타방으로부터의 구매만이 진행되고있다. 상품은 그 가격에 있어서 벌써 상상적인 일정한 화폐량과 등치되여있다. 그런데 여기서 고찰되는 직접적인 류통형태는 상품과 화폐를 부단히 물체적으로 서로 대립시켜 상품을 판매라는 극에, 화폐를 구매라는 반대극에 있게 하므로 상품세계의 류통과정에 필요한 류통수단의 총량은 이미 상품의 가격총액에 의하여 규정되여있다. 사실 화폐는 상품의 가격총액에서 이미 관념적으로 표현되여있는 금의 총액을 현실적으로 표시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두 총액이 같다는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있는바와 같이 상품가치가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품의 가격은 금(화폐재료)자체의 가치와 함께 변동하며 금의 가치가 저락하면 그에 비례하여 등귀하며 금의 가치가 등귀하면 그에 비례하여 저락한다.① 그리하여 상품의 가격총액이 증대 또는 감소하는데 따라서 류통하는 화폐의 량도 같은 정도로 증가 또는 감소하지 않을수 없다. 이 경우에 류통수단의 량의 변동이 확실히 화폐자체에 의하여 생기지만 그것은 류통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치척도로서의 화폐의 기능에 의하여 생기는것이다. 처음에는 상품의 가격이 화폐가치에 반비례하여 변동하고 다음에는 류통수단의 량이 상품의 가격에 정비례하여 변동한다. 만약 례컨대 금의 가치가 저락하지 않더라도 은이 금 대신에 가치척도로 되든가 또는 은의 가치가 등귀하지 않더라도 금이 은을 가치척도의 기능으로부터 구축한다면 이와 꼭같은 현상이 일어날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종전의 금보다 더 많은 량의 은이 류통하게 될것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종전의 은보다 더 적은 량의 금이 류통하게 될것이다. 이 두 경우에 모두 화폐재료의 가치 즉 가치척도로

① 이 책 118~119페지를 보라. —편집자

서 기능하는 상품의 가치가 변동하며 그때문에 상품가치의 가격표현도 변동할것이며 또 이에 따라 이 가격의 실현에 쓰이는, 류통하는 화폐량도 변동할것이다. 이미 본바와 같이 상품의 류통분야에는 하나의 구멍이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 금(또는 은, 요컨대 화폐재료)이 일정한 가치를 가지는 상품으로서 류통분야에 들어온다.① 이 가치는 화폐의 가치척도로서의 기능의, 따라서 가격결정의 전제조건으로서 존재한다. 이제 례컨대 가치척도자체의 가치가 저락한다면 이것은 우선 귀금속의 산지에서 상품으로서의 귀금속과 직접 교환되는 그러한 상품들의 가격의 변동으로 나타날것이다. 그러나 특히 자산계급사회의 그리 발전하지 못한 단계에서는 기타 상품의 대부분은 아직도 오래동안 환상적인것으로 된 낡은 가치척도의 가치에 의하여 계속 평가될것이다. 그러나 한 상품은 상품간의 가치관계를 통하여 다른 상품에 영향을 주며 상품의 금가격 또는 은가격은 점차 그 상품의 가치자체에 의하여 규정되는 비률에 합치하도록 조정되며 드디여 일체 상품가치가 화폐금속의 새로운 가치에 적응하여 평가될것이다. 이 조정과정은 귀금속과 직접 교환되는 상품을 대신하여 흘러들어오는 귀금속의 부단한 증대를 수반한다. 그러므로 상품들간에 이러한 새로운 수정된 가격이 보급되는 정도에 따라, 다시말하면 상품의 가치가 금속의 새로운, 이미 저락한 또 일정한 점까지 계속 저락하고있는 가치로 평가되는 정도에 따라 그것과 같은 정도로 상품의 가치의 실현에 필요한 귀금속의 증가량도 이미 존재하게 된다. 새로운 금은산지의 발견에 뒤이어 일어난 제 사실을 일면적으로 고찰하였기때문에 17세기 특히 18세기에는 상품가격이 등귀한것은 보다 많은 금은이 류통수단으로서 기능하게 되였기때문이라는 그

① 이 책 111페지를 보라. —편집자

릇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였다. 아래에서 우리는 금의 가치는 이미 주어진것으로 가정하겠는데 사실상 그것은 가격평가의 순간에는 이미 주어진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전제밑에서는 류통수단의 총량은 상품의 실현되여야 할 가격총액에 의하여 규정되여있다. 이제 만일 더 나아가 매개 상품종류의 가격을 주어진것으로 전제한다면 상품가격총액은 분명히 류통내부에 존재하는 상품총량에 의하여 결정될것이다. 만약 1쿼터의 밀의 가치가 2파운드라면 100쿼터의 밀은 200파운드, 200쿼터는 400파운드 등등이며 따라서 밀의 량의 증가에 따라 그것이 판매될 때에 그것과 위치를 바꾸는 화폐의 량도 증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그리 머리를 쓰지 않아도 알수 있다.

만약 상품량이 주어진것으로 전제되여있다면 류통하는 화폐의 량은 상품의 가격변동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한다. 그것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것은 상품의 가격총액이 그 가격변동의 결과로서 증가 또는 감소하기때문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모든 상품의 가격이 동시적으로 등귀 또는 저락하는것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정한 수의 주요상품의 가격이 한 경우에 등귀하고 다른 경우에 저락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전체 류통상품의 실현되여야 할 가격총액은 증대 또는 감소하며 또 이에 따라 류통하는 화폐의 량이 증대 혹은 감소한다. 상품의 가격변동이 상품의 현실적인 가치변동을 반영하건 혹은 단지 시장가격의 동요만을 반영하건 류통수단의 량에 대한 그 영향은 동일하다.

서로 관련되지 않고 동시적으로 일어나며 따라서 공간적으로 병존하는 일정한 수의 판매 또는 부분적변태 례컨대 1쿼터의 밀, 20엘레의 아마포, 1권의 성경책, 4갈론의 소주의 판

매가 진행된다고 하자. 이 물품들의 가격이 어느것이나 모두 2파운드이고 따라서 실현되여야 할 가격총액이 8파운드라면 8파운드의 화폐총량이 류통에 들어가야 할것이다. 이와 반대로 만약 동일한 이 네가지 상품들이 각각 우에서 고찰한 변태계렬의 일환을 이룬다면 즉 1쿼터의 밀—2파운드—20엘레의 아마포—2파운드—1권의 성경책—2파운드—4갈론의 소주—2파운드로 되여있다면 이 2파운드는 이 각종 상품의 가격을 차례차례로 실현하며 따라서 8파운드의 가격총액을 실현하는데 의하여 이러한 상품들을 순차적으로 류통시키게 될것이며 나중에 양조업자의 손에서 휴식하게 될것이다. 이 2파운드는 4회 류통한다. 동일한 화폐조각의 이와 같은 반복적인 장소변환은 상품의 이중적인 형태변환을 즉 대립적인 두 류통단계를 통과하는 상품의 운동을 표현하며 또 그와 동시에 각종 상품의 변태의 뒤엉킨 관계를 표현한다(76). 이 과정이 통과하는 서로 대립하며 서로 보충하는 단계들은 공간적으로는 병존할수 없고 다만 시간적으로만 계속될수 있다. 그러므로 시간이 이 과정의 계속을 측정하는 척도로 된다. 바꾸어말하면 일정한 시간내의 동일한 화폐조각의 류통회수에 의하여 화폐의 류통속도가 측정된다. 상술한 네가지 상품의 류통과정이 례컨대 1일간에 계속되였다고 하자. 그럴 때에는 실현되여야 할 가격총액은 8파운드이고 1일간의 동일한 화폐조각의 류통회수는 4회이고 류통하는 화폐총량은 2파운드이다. 즉 일정한 기간내의 류통과정에 있어서는

$$\frac{\text{상품의 가격총액}}{\text{동일한 명칭의 화폐조각의 류통회수}} = \text{류통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화}$$

(76) 《오직 생산물만이 그것 (화폐) 을 운동시키며 류통시킨다.…그것 (즉 화폐) 의 운동속도는 그 수량을 보충한다. 그것은 필요할 때에는 일순간도 쉬지 않고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옮아간다.》 (르 뜨론 《가치, 류통, 공업, 국내외무역의 견지에서의 사회적 리익에 관하여》, 915~916페지)

페총량이다. 이 법칙은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일정한 기간내의 일국의 류통과정은 한편으로는 많은 분산적인, 동시적인, 공간적으로 병존하는 판매(또는 구매)를 즉 동일한 화폐조각이 다만 한번만 위치를 바꾸는 또는 다만 1회의 류통만을 수행하는 부분적변태를 포괄하며 다른 편으로는 동일한 화폐조각이 많든적든 여러차례 류통하며 부분적으로는 서로 병행하고 부분적으로는 서로 뒤엉켜있으며 많든적든 여러 환절을 가진 변태의 많은 계렬을 포괄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류통하고있는 모든 동일한 명칭의 화폐조각의 총류통회수로부터 개개의 화폐조각의 평균류통회수 또는 화폐류통의 평균속도가 나온다. 례컨대 하루의 류통과정의 시초에 있어서 류통에 투입되는 화폐량은 동시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병행하여 류통하는 상품의 가격총액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과정의 내부에서는 한개의 화폐조각은 다른 화폐조각에 대하여 이를테면 련대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그것들중의 하나가 자기의 류통속도를 빠르게 한다면 다른것의 류통속도를 느리게 할것이며 지어 다른것을 류통분야에서 완전히 구축할수도 있다. 왜냐 하면 류통분야는 오직 일정한 금량만을 흡수할수 있을뿐인데 이 량은 그것에 그 개별적요소들의 평균류통회수를 승하면 실현되여야 할 가격총액과 같게 되는 그러한 량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 화폐조각의 류통회수가 증가하면 그 류통량은 감소하며 그 류통회수가 감소하면 그 량은 증가한다. 평균류통속도가 일정하다면 류통수단으로서 기능할수 있는 화폐의 량도 일정할것이기때문에 우리는 례컨대 1파운드권의 일정한 량을 류통에 투입하기만 하면 그만한 량의 소버린금화를 류통에서 끌어내올수 있다.—이것은 모든 은행이 잘 알고있는 술책이다.

화폐류통에는 오직 상품의 류통과정만이 즉 대립적인 변

태에 의한 상품의 순환만이 나타나므로 화폐의 류통속도에는 상품의 형태변환의 속도, 변태계렬들의 련속적으로 서로 뒤엉켜있는 관계, 물질변환의 신속성, 류통분야로부터의 상품의 급속한 퇴출 및 새로운 상품에 의한 그만큼 급속한 교체 등이 나타난다. 따라서 화폐류통이 신속하면 상품의 사용모습의 가치모습에로의 전화 및 가치모습의 사용모습에로의 재전화라는 서로 대립하며 서로 보충하는 두 단계 즉 판매와 구매라는 두 과정의 류동적인 통일이 나타난다. 이와 반대로 화폐류통이 완만하면 이 두 과정의 분렬과 대립적인 독립화, 형태변환의 정체, 따라서 물질변환의 정체가 나타난다. 이 정체가 무엇에 기인하는가 하는것은 물론 류통 그자체에서는 알아낼수 없다. 류통은 이 현상자체를 보여주는데 지나지 않는다. 화폐류통이 완만해짐에 따라서 류통분야의 도처에서 화폐의 출몰차수가 떠지는것을 보고 통속적견해가 이 현상을 류통수단의 량적부족으로써 설명하는것도 당연한 일이다.(77)

---

(77) 《화폐는…매매의 일반적척도이므로 누구나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있으나 구매자를 발견하지 못하는자는 왕국내 또는 일국내의 화폐의 부족이 그의 상품이 팔리지 않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므로 화폐가 부족하다는 원성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잘못이다.…화폐가 더 필요하다고 웨치는 이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고있는가?…차지농업가는 불평을 말한다.…만약 국내에 더 많은 화폐가 있다면 자기의 생산물을 상당한 가격으로 판매할수 있을것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가 필요로 하는것은 화폐가 아니고 그가 팔기를 원하나 팔리지 않는 자기의 곡물과 가축의 상당한 가격일것이다.…어째서 그는 이 상당한 가격을 받을수 없는가?…그 리유는 (1) 국내에 곡물과 가축이 너무나 많아서 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그 대다수가 그와 마찬가지로 팔려고만 하고 사기를 원하는자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든가 혹은 (2) 수출에 의한 평상시의 국외판로가 두절되여있든가…혹은 (3) 례컨대 빈궁해져서 이전처럼 생계지출을 할수 없는 경우에 보는바와 같이 소비가 감소되였든가 그중의 어느것이다. 그러므로 차지농업가들의 물품을 팔리게 하는것은 화폐의 증가가 아니라 실지 시장을 압박하고있는 이 세 원인중 어느 하나의 제거이다.…도매상과 소매상도 마찬가지로 화폐를 요구하고 있다. 즉 그들은 시장이 정체되여있기때문에 그들이 거래하는 물품의 판로를 요구하고 있다.…국가는 부가 이 손에서 저 손에로 부단히 이전하고있을 때에 가장 번영한다.》 (다들리 노스경 《상업에 관한 론술》, 1691년 런던판, 11～15페지의 여러 개소) 헤렌슈완드의 모든 사기술은 상품의 본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따라서 또 상품류통에서 발로되는

그리하여 매개 기간에 류통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화폐총량은 한편으로는 류통하는 상품세계의 가격총액에 의하여 규정되며 다른편으로는 상품세계의 대립적인 류통과정들의 류동의 완급에 의하여 규정되는데 가격총액중의 몇분의 1이 동일한 화폐조각에 의하여 실현될수 있는가 하는것은 이 류동의 완급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상품의 가격총액은 매개 상품종류의 가격과 그 량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세개의 요인 즉 가격의 변동, 류통상품의 량 그리고 끝으로 화폐의 류통속도는 각이한 방향에서 또 각이한 비률로 변동될수 있다. 그러므로 실현되여야 할 가격총액 따라서 이것에 의하여 제약되는 류통수단의 량도 역시 매우 많은 결합이 있을수 있다. 여기서는 이 결합들중 상품가격의 력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을 들기로 하자.

상품가격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류통상품의 량이 증가하든가 또는 화폐의 류통속도가 감소하든가 또 이 량자가 함께 작용하든가 하는데 따라 류통수단의 량은 증가할수 있다. 반대로 상품량의 감소 또는 화폐의 류통속도의 증가에 따라 류통수단의 량은 감소할수 있다.

상품가격이 전반적으로 등귀하는 경우에는 류통상품의 량이 상품가격의 등귀와 같은 비률로 감소하든가 또는 류통상품량은 변하지 않지만 화폐의 류통속도가 가격등귀와 같은 속도로 증가하든가 하면 류통수단의 량은 변하지 않을수 있다. 상품량이 가격의 등귀보다 더 급속히 감소하든가 또는 화폐의 류통속도가 가격의 등귀보다 더 급속히 증가하든가

모순이 류통수단의 증가에 의하여 제거될수 있다고 하는 점에 귀착된다. 생산과정 및 류통과정의 정체를 류통수단의 부족으로써 설명하는것은 일반적인 환상에 지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례컨대 정부의 졸렬한 《통화조절》의 결과인 류통수단의 현실적부족이 그것만으로는 정체를 야기할수 없다는 결론은 결코 나오지 않는다.

하면 류통수단의 량은 감소할수 있다.

상품가격이 전반적으로 저락하는 경우에는 상품량이 그 가격저락과 같은 비률로 증가하든가 또는 화폐의 류통속도가 가격저락과 동일한 비률로 감소하든가 하면 류통수단의 량은 변하지 않을수 있다. 상품가격의 저락보다 상품량이 더 급속히 증가하든가 또는 상품가격의 저락보다 류통속도가 더 급속히 감소하든가 하면 류통수단의 량은 증가할수 있다.

각이한 요인들의 변동은 서로 상쇄될수 있기때문에 그 요인들의 부단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여야 할 상품가격의 총액은, 따라서 또 류통화폐의 량은 변하지 않을수 있다. 그러므로 특히 비교적 장기간을 두고 고찰할 때에는 매개 나라에서 류통하는 화폐량의 평균수준은 외관으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것보다는 훨씬 더 불변적이며 또 주기적으로 생산공황과 상업공황에 의하여 또 드물게는 화폐가치자체의 변동에 의하여 야기되는 격렬한 동요의 시기를 례외로 한다면 외관으로부터 예상하는것보다 이 평균수준으로부터의 배리도 훨씬 적다.

류통수단의 량이 류통상품의 가격총액과 화폐류통의 평균속도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법칙(78)은 또 다음과 같이 표현

(78) 《일국의 상업을 운영하는데 요구되는 화폐는 일정한 량과 비률이 있는데 그보다도 많든가 적든가 하면 상업을 저해할것이다. 그것은 령세소매상업에 있어서 온화의 거스름돈을 주며 또는 최저액면의 온화로써도 결제할수 없는 그러한 지불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비률의 파싱동화가 필요한것과 꼭 마찬가지다.…이제 상업에 필요한 파싱동화수의 비률이 구매하는 사람들의 수와 그들의 구매의 빈번성과 또 특히 최저액면의 온화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업에 필요한 화폐(금화와 온화)의 비률도 역시 교역의 빈번성과 지불액수의 대소에 의하여 결정될것이다.》(윌리엄 페티《조세공납에 관한 론술》, 1667년 런던판, 17페지) A. 영은 그의 저서 《정치산수》(1774년 런던판)에서, 《가격은 화폐량에 의하여 결정된다》라는 하나의 특별한 제목(이 책의 112페지이하)밑에 J. 스튜어트 등이 공격한 흄의 학설을 옹호하였다. 나는 《정치경제학비판》, 149페지[131]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A. 스미스)는 화폐를 전혀 그릇되게 단순한 상품으로 고찰함으로써 류통하는 주화의 량에 관한 문제를 슬

할수 있다. 즉 상품의 가치총액과 상품의 변태의 평균속도가 주어진 경우에는 류통하는 화폐 또는 화폐재료의 량은 그자체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와 반대로 상품가격이 류통수단의 량에 의하여 규정되며 또 이 후자는 이번에는 일국내에 존재하는 화폐재료의 량에 의하여 규정된다는듯이 생각하는 환상(79)은, 그 최초의 대표자들에 있어서는 상품은 가격을 가지지 않고 또 화폐는 가치를 가지지 않고 류통과정에 들어가며 그다음 거기에서 상품더미의 일정한 부분이 금속더미의 해당 부분과 교환된다는 엉터리없는 가설에 근원을 두고있는것이다(80).

그머니 말살하고있다.》 이 말은 A. 스미스가 전문 화폐를 고찰하고있는 개소들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나 그는 약간의 개별적경우에 있어서는 례컨대 정치경제학의 이전 체계들을 비판할 때에는 옳은 말을 하고있다. 《주화의 량은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주화에 의하여 류통될 상품들의 가치에 의하여 규제된다.…어느 나라에서나 1년간의 매매되는 물건의 가치는 그것을 류통시키며 또 해당 소비자들간에 분배하기 위하여 일정한 량의 화폐를 필요로 하나 이 일정한 량 이상의 화폐를 사용할수는 없다. 류통의 수로는 그것을 채우는데 충분한 액수를 자기쪽에 필연적으로 끌어들이나 그 이상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제 국민의 부》, (제3권), 제4편, 제1장, (87~89페지)) 이와 마찬가지로 A. 스미스는 자기의 저서를 정식으로는 분업의 찬미로써 시작하고있으나 후에 이르러 국가수입의 원천에 관한 마지막 편에서는 때때로 그의 스승인 A. 퍼거슨의 분업에 대한 비난을 되풀이하고있다.

(79) 《물가는 어떤 나라에서나 국민들사이에 류통하는 금은의 량이 증가함에 따라 물론 등귀할것이다. 따라서 또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금은이 감소될 때에는 모든 물가는 화폐의 이러한 감소에 비례하여 저락하지 않을수 없다.》(제이커브 밴덜린트 《화폐만능론》, 1734년 런던판, 5페지) 밴덜린트의 저서와 흄의 《소론및론문집》과를 상세히 비교하여보면 흄이 다른 면에서도 훌륭한 밴덜린트의 이 저서를 알았고 또 리용하였다는것을 나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류통수단의 량이 가격을 규정한다는 견해는 배어보운과 그보다 훨씬 더 이전의 저술가들에게서도 볼수 있다. 밴덜린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제한한 무역에 의하여는 아무런 불편도 일어날수 없고 매우 큰 리익만이 생겨날수 있다. 왜냐 하면 만약 어떤 나라의 현금량이 이러한 무역의 영향하에 감소된다면—보호관세와 수입금지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것이다—그 현금을 받아들이는 나라에서는 현금량이 국내에 증가함에 따라 모든 물가가 등귀하지 않을수 없기때문이다.… 오래지 않아 우리 나라의 공업제품과 기타 온갖 물건의 가격은 떨어져서 무역차액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될것이며 화폐는 국내로 다시 흘러들어오게 될것이다.》(우와 같은 책, 43~44페지)

(80) 매개 상품종류의 가격이 류통하는 상품전체의 가격총액의 한 요소를 구성하고

(C) 주화. 가치기호

류통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으로부터 화폐의 주화모습이 생긴다. 상품의 가격 또는 그 화폐명칭속에 상상적으로 표현되는 금의 중량부분은 류통과정에서는 그것과 동일한 명칭을 가지는 금조각 또는 주화로서 상품에 대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격표준의 확정과 마찬가지로 주화제조는 국가에

있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서로 약분될수 없는 사용가치의 총량이 어떻게 일국에 존재하는 금과 은의 총량과 교환되는가 하는것은 전혀 리해할수 없다. 만약 우리가 상품세계를 하나의 단일한 총상품으로 간주하고 매개 상품은 오직 그 총상품의 해당 부분으로 되여있다고 대담하게 가정한다면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홀륭한 산수계산식이 나온다. 총상품=X쩬트네르의 금, 상품 A=총상품의 일정한 부분=X쩬트네르의 금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 이런것을 바로 문자그대로 몽떼스끼외가 말하고있다. 《만약 우리가 세계에 현존하는 금은량을 현존하는 상품의 총량과 비교한다면 하나하나의 생산물 또는 상품을 모두 일정한 화폐량과 비교할수 있을것이다. 세계에는 오직 한 종류의 생산물 또는 상품이 존재한다고, 다시말하면 오직 한가지 물건만이 판매된다고 가정하며 또 그것은 화폐와 마찬가지로 분할될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이 상품의 일정한 부분은 화폐총량의 일정한 부분과 상응하게 되며 상품총량의 절반은 화폐총량의 절반과 상응하게 될것이다, 등등…상품가격의 결정은 근본적으로는 항상 상품의 총량과 그 화폐기호 총량간의 비례에 의하여 결정될것이다.》(몽떼스끼외 《법의 정신》, 《몽떼스끼외전집》, 제3권, 12~13페지) 리카도와 그의 제자들인 제임즈밀, 오버스턴경 및 기타가 이 리론을 가일층 발전시킨데 대해서는 《정치경제학비판》, 140~146페지 및 150페지이하 각 페지[132]를 참조하라. 죤 스튜어트 밀씨는 그에 특유한 절충주의적론리를 가지고 자기의 부친인 제임즈 밀의 견해와 그에 정반대되는 견해를 동시에 채용하는 재간을 피우고 있다. 만약 우리가 레컨대 그의 교과서개요인 《정치경제학원리》의 본문을, 그가 현대적 애담 스미스로 자처하고 나선 그의 서문(초판)[133]과 비교하여 본다면 우리는 이 사람의 소박성과 이 사람을 정말 애담 스미스로 믿은 일반독자의 소박성중 어느것을 더 놀랍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게 된다. 이 사람과 애담 스미스와의 대비는 카즈일가의 윌리엄즈 카즈장군과 웰링턴공작과의 대비와 흡사하다.[134] 넓이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나 보잘것없는 죤 스튜어트 밀씨의 정치경제학분야에서의 독창적연구는 1844년에 발간된 《정치경제학의 약간의 미해결문제에 관한 론술》이라는 그의 소책자에 몽땅 그대로 들어있다. 로크는 금은에는 가치가 없다는것과 그 가치는 그 량에 의하여 결정된다는것과의 관련을 다음과 같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있다. 《사람들은 금과 은에 상상적가치를 부여하는데 일치하게 동의하였으므로…이 두 금속의 내재적가치는 그것들의 량외의 아무것도 아니다.》(《리자인하와 화폐가치인상의 제 결과에 관한 약간의 고찰》, 1691년 《로크저작집》, 1777년판, 제2권, 15페지에 (수록))

속한다. 금과 은이 주화로서 몸에 두르고 그것들이 세계시장에 나타날 때에는 다시 벗어버리는 그 각이한 국가적제복에는 상품류통의 국내적 또는 민족적 령역과 전반적세계시장령역간의 구분이 나타난다.

따라서 금주화와 금덩어리와는 원래 외형상으로만 구별될뿐이고 금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부단히 전화될수 있다(81). 조폐국에서 나오는 길은 동시에 도가니로 가는 길이다. 즉 금화는 류통하는 동안에 어떤것은 많이, 어떤것은 적게 마멸된다. 금화의 칭호와 금의 실체, 명목적함량과 실질적함량이 점차 서로 분리되는 과정이 시작된다. 명칭이 같은 금화들이 중량이 달라지기때문에 가치가 다르게 된다. 류통수단으로서의 금은 가격기준으로서의 금으로부터 배리하며 또 그렇게 됨으로써 그 가격을 실현시켜주어야 할 상품들의 현실적인 등가물로 될수 없게 된다. 중세기와 18세기에 이르기까지의 근세의 주화사는 이러한 혼란의 력사를 이루고있다. 주화의 금존재를 금가상으로 전화시키는, 다시말하면 주화를 그 공칭금속함량의 상징으로 전화시키는 류통과정의 자

---

(81) 주조료 등등과 같은 세부문제를 취급하는것은 물론 전혀 나의 과업으로 될수 없다. 그러나 《영국정부가 무료로 화폐를 주조》 하는 《관대한 아량》에 감탄하고있는 랑만주의적아첨분자 아담 뮐레르[135]에 대해서는 다들리 노스경의 다음과 같은 말을 들면 충분하다. 《은과 금은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그 썰물과 밀물이 있다. 일정한 량의 은이 에스빠냐로부터 도착하면…그것은 런던탑으로 이송되여 거기서 주조된다. 그후 얼마 오래지 않아 수출을 위하여 금덩어리, 은덩어리에 대한 수요가 일어날것이다. 만약 그때에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조금도 없고 모두가 주조되여있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그것들을 다시 녹여야 할것이다. 그렇게 해도 손실은 없을것이다. 왜냐 하면 소유자는 주조료를 부담하지 않았기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여 국민은 쓸데없는 손해를 당했던것이니 그것은 마치 노새에게 먹일 짚으로 새끼를 꼬는데 돈을 쓴셈이기때문이다. 만약 상인이 (노스자신은 찰즈2세시대의 가장 큰 상인의 한사람이였다.) 주조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였다면 그는 그가 소유하는 은을 상당한 리유없이는 런던탑으로 보내지 않았을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조된 화폐는 항상 주조되지 않은 은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될것이다.》 (노스 《상업에 관한 론술》, 1691년 런던판, 18페지)

연발생적경향은 가장 현대적인 법률까지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 법률은 금화가 통용될수 없게 되며 주화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마멸정도를 규정하고있다.

화폐의 류통 그자체가 주화의 실질적함량을 그 명목적함량과 분리시키며 그 금속정재를 그 기능적정재와 분리시킨다면 화폐류통에는 벌써 주화의 기능을 담당하는 금속화폐를 다른 재료로 만든 기호 또는 상징으로써 대신할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하고있다. 한편으로는 중량이 극히 적은 금화 또는 은화를 주조하는것이 기술적으로 곤난하다는 사정과 그리고 다른편으로는 원래 저급금속이 고급금속보다 먼저(은이 금보다 먼저, 동이 은보다 먼저) 가치척도로 쓰이였고 따라서 고급금속이 그것을 구축하는 그 순간까지 저급금속이 화폐로서 류통하고있었다는 사정이 은제기호와 동제기호가 금화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력사적으로 설명하여준다. 그것들은 주화가 가장 빨리 류통하는, 따라서 가장 빨리 마멸하는 그러한 류통분야에서, 다시말하면 매매가 최소의 규모에서 부단히 반복되는 그러한 곳에서 금을 대신하게 된다. 이러한 금은 위성들이 금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점령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은 그것들만을 금 대신에 지불할 때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한도액을 극히 낮게 정한다. 각이한 종류의 주화가 류통되는 특수한 분야들은 물론 서로 뒤엉켜 있다. 보조주화는 최소금화의 분수부분의 지불을 위하여 금과 나란히 나타난다. 금은 부단히 소매류통에 들어오나 그러나 보조주화와 교체됨으로써 마찬가지 정도로 부단히 거기에서 쫓겨나간다(82).

---

(82) 《만약 은화가 소액지불에 요구되는 량을 결코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모아서 다액지불에 충분한 량으로 만들수는 도저히 없을것이다.…다액지불에서 금화를 사용

은제기호와 동제기호의 금속함량은 법률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규정된다. 그것들은 류통에서 금화보다도 더 빨리 마멸한다. 그러므로 그것들의 주화적기능은 사실상 그것들의 중량과는 관계없는것으로 된다. 즉 대체로 가치와는 전혀 관계없는것으로 된다. 금의 주화정재는 그 가치실체와는 완전히 분리된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무가치한 물건, 례컨대 종이쪽지가 금을 대신하여 주화로서 기능할수 있게 된다. 금속제의 화폐기호에서는 순전히 상징적인 그 성격이 아직 어느 정도 엄폐되여있다. 지페에서는 그러한 성격이 뚜렷하게 로출된다. 과연 어려운것은 제1보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국가지페만을 문제로 삼는다. 국가지페는 직접 금속류통에서 발생한다. 한편 신용화페는 단순상품류통의 관점에서는 아직 우리에게 전혀 알려져있지 않는 관계들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겸해서 지적하거니와 본래의 의미의 지페가 류통수단으로서의 화페의 기능에서 발생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신용화페는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페의 기능에 그 자연발생적근원을 가지고있다(83).

하면 필연적으로 소매상업에서도 금화를 사용하게 될것이다. 즉 금화를 소유하는자는 소액구매에 그것을 사용하고 그대신에 구매한 상품과 아울러 은화로 거스름돈을 받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소매상의 수중에 집중되여있던 은화의 여분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로부터 리탈하여 일반류통에 산포된다. 그러나 만약 은화가 금화 없이도 소액의 지불을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많이 있다면 그때에는 소매상은 소액의 구매에 대하여 은화만을 받지 않으면 안되며 그리하여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의 수중에 축적되지 않을수 없다.》(데이비드 뷰캐넌 《대브리텐의 조세 및 상업정책에 관한 연구》, 1844년 에딘버러판, 248~249페지)

(83) 청조 호부우시랑 왕무음은 국가지페를 은밀히 태환은행권으로 고치려는 계획안을 천자(함풍)에게 상주하였다.[136] 1854년 4월의 대신심의보고에서 그는 호되게 견책을 받았다. 그가 이때문에 태형을 받았는지는 알수 없다. 심의보고는 최후에 다음과 같이 썼다. 《신 등은 그의 계획안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은 모두가 상인의 리익을 목적으로 하였고 나라에 리익이 되는것은 하나도 없다는것을 발견하였다.》(《중국에 관한 북경주재 로씨야제국 공사관의 저작》[137], K. 아벨박사 및 F. A. 메클렌부르그에 의한 로어로부터의 번역, 1858년 베를린판, 제1권 47페지이하) 금화가 그 류통으로

1파운드, 5파운드 등등과 같은 화폐명칭이 인쇄되여있는 종이쪽지가 국가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류통과정에 투입된다. 그것이 그와 동일한 명칭의 금액을 대신하여 현실적으로 류통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 운동에는 화폐류통 그자체의 법칙이 반영될따름이다. 지폐류통의 특수법칙은 오직 지폐가 금을 대표하는 그 관계로부터만 발생할수 있다. 그리고 이 법칙은 간단히 말하면 지폐의 발행은 지폐에 의하여 상징적으로 대표되는 금(또는 은)이 현실적으로 류통하게 될 량에 국한된다. 류통분야가 흡수할 수 있는 금량은 부단히 변동하여 때로는 일정한 평균수준이상으로 되며 때로는 그 이하로 되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류통수단의 량은 경험적으로 확정할수 있는 일정한 최소한의 이하로 감소하는 일은 결코 없다. 이 최소한의 량이 끊임없이 자기의 구성부분을 변경한다는 사정, 다시말하면 그것을 구성하는 금조각들이 부단히 달라진다는 사정은 물론 이 최소한의 크기에도, 류통분야내부에서의 그 부단한 순환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최소한의 량은 종이쪽지로 만든 상징에 의하여 대치될수 있다. 그렇지만 만약 오늘 전체 류통수로가 그 화폐흡수능력의 최대한도까지 지폐로 충만되여있다면 그것은 래일에는 상품류통에서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범람할수 있을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런 한도도 없어지게 된다.[139] 그러나 지폐가 자기의 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즉 류통할수 있는 같은 명칭의 금화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반적신용붕괴의 위험을 도외시

말미암아 부단히 마멸되는 현상에 관하여는 잉글랜드은행 《총재》의 한사람이 《상원위원회》(은행조례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매년 sovereigns (정치상의 군주라는 의미에서의 소버린이 아니고 파운드의 명칭으로서의 소버린이다.[138]) 의 새로운 한 부류는 너무나 가벼워진다. 어느해에는 완전한 중량을 가지고 류통하던 소버린의 한 부류가 다음해에는 마멸됨으로써 저울대가 기울어질 정도로 중량을 잃어버린다.》(1848년, 《상원위원회》, 제429호)

한다 하더라도 지폐는 상품세계의 내부에서는 역시 다만 상품세계의 내재적법칙에 의하여 규정되는 금량 즉 지폐가 대표할수 있는 금량을 대표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만약 레컨대 종이쪽지의 일정한 량이 명목상으로는 금 2온스를 대표하나 실지로는 금 1온스를 대신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면 사실상 1파운드는 레컨대 이전의 금 $\frac{1}{4}$ 온스 대신에 $\frac{1}{8}$ 온스의 화폐명칭으로 될것이다. 그 결과는 가격척도로서의 금의 기능에 변동이 일어난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1파운드의 가격으로 표현되였던 동일한 가치가 이제는 2파운드의 가격으로 표현된다.

지폐는 금기호 또는 화폐기호이다. 상품가치에 대한 지폐의 관계는 지폐에 의하여 상징적이나 감각적으로 표현되는 금량에 상품가치가 관념적으로 표현된다는데 불과하다. 가치량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모든 상품량과 다름이 없는 금량을 대표하는 한에 있어서만 지폐는 가치기호로 된다.(84)

끝으로 그러면 어째서 금은 그자신의 아무런 가치도 없는 기호에 의하여 교체될수 있는가 하는것이 문제로 된다. 그러나 이미 본바와 같이 금이 이러한것에 의하여 교체될수 있는것은 오직 금이 주화로서의 또는 류통수단으로서의 자기의 기능에 있어서 고립화 또는 독립화되는 한

---

(84) 제2판 주: 화폐문제에 대한 가장 훌륭한 저술가까지도 화폐의 각종 기능을 얼마나 애매하게 리해하고있는가는 레컨대 풀러튼의 다음과 같은 문구가 보여준다. 《우리의 국내교환을 문제로 하는 한 보통 금화 및 은화에 의하여 수행되는 화폐의 일체 기능은 법률로써 제정된 인위적인 또 관습적인 가치만을 가지는 불환지폐의 류통에 의하여 동일하게 효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나의 생각같아서는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종류의 가치는 지폐의 발행액이 적당한 한계내에 유지되기만 한다면 내재적가치의 모든 목적에 완전히 적합할수 있을것이며 가치기준까지도 불필요한것으로 만들것이다.》(풀러튼 《통화조절론》, 1845년 런던 제2판, 21페지) 보는바와 같이 화폐상품이 류통에서 단순한 가치기호로써 교체될수 있다는 리유로 화폐상품은 가치척도로서도 가격기준으로서도 필요없다는것이다!

에 있어서뿐이다.① 물론 이러한 기능의 독립화는 마멸된 주화가 계속 류통되는 사실에서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개개의 금화가 그렇게 되는것은 아니다. 금조각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류통되고있는 동안에만 단순한 주화 또는 류통수단으로 되는것이다. 그러나 개개의 금화에는 적용될수 없는것이 지폐에 의하여 교체될수 있는 최소량의 금에는 적용된다. 이 최소량의 금은 항상 류통분야에 머물러있으며 부단히 류통수단으로서 기능하며 또 그렇기때문에 다만 이 기능의 담당자로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그의 운동은 상품의 변태 W—G—W의 대립적인 과정들의 부단한 호상변환을 표현하는데 지나지 않으며 이 변태에서는 상품의 가치모습이 일시 상품에 대립하였다가 즉시로 다시 사라져 없어지군 한다. 여기서 상품의 교환가치의 독립적표현은 일시적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즉시로 다시 다른 상품에 의하여 교체된다. 그러므로 화폐가 한손에서 다른 손으로 부단히 옮아가는 과정에서는 화폐의 순전히 상징적인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를테면 화폐의 기능상의 존재가 화폐의 물질적존재를 흡수하여버리는셈이다. 상품가격의 순간적인 객관적반영으로서는 화폐는 그 자체의 기호로서 기능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그것은 단순한 기호에 의하여 교체될수 있다.(85) 그러나 화폐의 기호는 그자

(85) 금과 은이 주화로서 기능하거나 또는 다만 류통수단으로서만 기능하는한에 있어서는 그것이 자기자신의 기호로 된다는 사실로부터 니컬레스 배어보운은 정부가 《화폐의 가치를 인상하는》 권리를, 다시말하면 례컨대 이때까지 그로슈라고 칭하여온 어떤 량의 은을 이를테면 탈레르라고 칭하는 더 큰 량의 은의 명칭으로 부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탈레르 대신에 그로슈를 반환하는 권리를 끌어냈다. 《화폐는 자주 세는 까닭에 마멸되여 차츰 더 가볍게 된다.…상업에서 사람들이 고려하는것은 은의 량이 아니라 화폐의 명칭과 통용력이다.…금속쪼각을 화폐로 만드는것은 국가의 권력이다.》(N. 배어보운 《더 가벼운 새 화폐를 주조할데 관한 론술. 화폐가치를 높일데 관한 로크씨의 고찰에 대한 대답》, 29~30, 25페지)

① 이 책 147~149페지를 보라. —편집자

체의 객관적인 사회적유효성을 필요로 하며 종이로 만든 상징은 이 유효성을 강제통용에 의하여 획득한다. 이러한 국가적강제는 다만 소여 사회의 경계내에서만 또는 국내류통분야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화폐는 오직 여기서만 류통수단으로서의 기능속에 또는 주화로서의 기능속에 완전히 용해되며 따라서 지폐라는 형식으로서 자기의 금속적실체로부터 외적으로 분리되여 순전히 기능적인 존재형식을 얻게 된다.

3. 화 폐

가치척도로서 기능하며 또 그때문에 자체로나 또는 대리물을 통하여 류통수단으로서 기능하는 상품은 화폐이다. 그러므로 금(또는 은)은 화폐이다. 금이 화폐로서 기능하는것은 한편으로는 그 금체(또는 은체)대로 따라서 화폐상품으로서 나타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 다시말하면 가치척도에 있어서처럼 순전히 관념적인것으로도 아니고 또 류통수단에서처럼 대리자에 의하여 대리될수 있는것으로도 아닌 그런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금의 기능이ㅡ금이 이 기능을 금자체로 수행하든지 혹은 대리자를 통하여 수행하든지를 막론하고ㅡ단순한 사용가치로서의 다른 모든 상품에 대립하여 금을 유일한 가치모습으로서 또는 교환가치의 유일한 적당한 정재로서 고정시키는 경우이다.

(a) 축장화폐의 형성

두 대립적인 상품변태의 련속적인 순환 또는 판매와 구

매와의 끊임없는 전환은 화폐의 쉴새없는 류통에서 또는 류통의 영구운동기구로서의 화폐기능에서 나타난다. 상품의 변태계렬이 중단되여 판매가 그에 계속되는 구매에 의하여 보충되지 못하게 되자마자 화폐는 부동화되거나 봐기배르가 말한바와 같이 가동적인것으로부터 부동적인것[140]에로, 주화로부터 화폐로 전화한다.

상품류통 그자체의 최초의 발전과 함께 제1변태의 산물인 상품의 전화된 모습 또는 상품의 금번데기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과 열망이 발전한다.(86) 상품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품형태를 화폐형태로 바꾸기 위하여 판매된다. 이러한 형태변환은 물질변환에서의 단순한 매개로부터 자기목적으로 된다. 상품의 외화된 모습은 그것이 상품의 절대적으로 양도될수 있는 모습으로서 또는 오직 순간적인 화폐형태로서 기능하는데 장애에 부닥친다. 이리하여 화폐는 축장화폐로 화석화되며 상품판매자는 화폐축장자로 된다.

상품류통의 초기에는 사용가치의 여분만이 화폐로 전화한다. 그리하여 금과 은은 그자체로서 여분 또는 부의 사회적표현으로 된다. 전통적인 자급자족적생산방식에 적응하여 욕망의 범위가 확고히 고정되여있는 민족들간에는 이러한 화폐축장의 소박한 형태가 영구화된다. 아시아인 특히 인도인들의 경우가 그러하다. 상품가격은 일국에 존재하는 금 또는 은의 량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망상하는 밴덜린트는 어째서 인도의 상품이 그처럼 눅은가고 스스로 묻는다. 그는 대답하기를, 인도인은 화폐를 매장하기때문이라고 한다. 그의 말에

---

(86) 《화폐로서의 부는…화폐로 전화된 생산물로서의 부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매르씨에 드 라 리비에르 《정치사회의 자연적 및 본질적 질서》, 573페지) 《생산물형태의 가치는 오직 자기의 형태를 변경하였을뿐이다.》 (우와 같은 책, 486페지)

의하면 1602년부터 1734년에 이르는 동안에 인도인은 1억 5,000만파운드의 은을 매장하였는데 이것은 본래는 아메리카로부터 유럽으로 이송되여온것이였다.(87) 1856년부터 1866년에 이르는 동안 즉 10년간에 영국은 그전에 오스트랄리아의 금과 교환하여 얻은 1억 2,000만파운드의 은을 인도와 중국에 수출하였다.(중국에 수출된 은은 그 대부분이 다시 인도로 흘러갔다.)

상품생산이 일층 발전함에 따라 매개 상품생산자는 물건의 신경[141]인 일종의 《사회적담보물》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88)[142] 그의 욕망은 부단히 갱신되여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상품을 부단히 구매하게 하는데 그자신의 상품의 생산과 판매는 시간이 걸려야 하며 또 우연성에 의존한다. 판매함이 없이 구매하기 위해서는 그는 먼저 구매함이 없이 판매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만약 그것이 일반적으로 실행된다면 자체모순인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귀금속은 그 산지에서는 다른 상품들과 직접 교환된다. 여기에서는 구매(금 또는 은 소유자측의)없는 판매(상품소유자측의)가 진행된다.(89) 그리고 뒤따르는 구매를 수반하지 않는 후일의 판매는 모든 상품소유자들간에서의 귀금속의 재분배를 매개할 뿐이다. 그리하여 교역의 모든 점들에서 각종 규모의 금과 은의 저장이 일어난다. 교환가치로서의 상품 또는 상품으로서의 교환가치를 보존할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남과 동시에

---

(87) 《바로 이와 같은 조치에 의하여 그들은 그들의 모든 재화와 제품을 그처럼 낮은 가격수준에 두었다.》(밴덜린트 《화폐만능론》, 95~96페지)

(88) 《화폐는 일종의 담보물이다.》(존 벨러즈 《빈민, 공업, 상업, 식민 및 패덕에 관한 론술》, 1699년 런던판, 13페지)

(89) 엄밀한 의미에서의 구매는 상품의 전화된 형태로서의 즉 판매의 산물로서의 금 혹은 은을 전제로 한다.

황금욕이 생겨난다. 상품류통의 확대와 함께 화폐—언제든지 출동할수 있는 부의 절대적인 사회적형태—의 힘이 장성한다.

《황금은 놀라운 물건이다! 그것을 가진자는 그가 원하는 모든 물건의 주인으로 된다. 황금은 심지어 령혼을 천당에 가게 할수도 있다.》(꼴룸보의 져메이커로부터의 편지, 1503년.)

화폐의 외관에 의해서는 무엇이 화폐로 전화되였는가를 알수 없으므로 상품이든 상품이 아니든 모든것이 화폐로 전화된다. 모든것이 매매의 대상으로 된다. 류통은 거대한 사회적도가니로 되며 모든것이 거기에 들어갔다가 화폐적결정으로 되여 다시 나온다. 이 련금술에는 성자의 뼈조차도 대항할수 없다. 하물며 그보다는 연약한, 사람들의 상업상 거래에서 제외되여있는 성물들이야 말할것도 없다.(90) 화폐에서는 상품의 온갖 질척차이가 없어지는것과 마찬가지로 화폐자체도 급진적평균주의자로서 온갖 차이를 없애버린다.(91) 그러

---

(90) 가장 기독교적인 프랑스왕 앙리3세는 수도원 등지의 성물을 략탈하여 그것을 팔아 은으로 만들었다. 포케아인에 의한 델포의 사원의 보물략탈이 희랍력사에서 어떠한 역활을 놀았는가 하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143] 다 아는바와 같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원은 상품의 신의 거소로 되여있었다. 사원은 《신성한 은행》이였다. 탁월한 상업민족인 페니키아인은 화폐를 모든 물건의 외화된 모습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므로 사랑의 녀신의 축제일에 외래인에게 몸을 바친 처녀들이 보수로 받은 돈을 이 녀신에게 헌납한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91) 《황금! 누른색으로 번쩍이는 귀중한 황금!
이만큼만 있으면
검은것도 희게, 미운것도 곱게,
그른것도 옳게, 천한것도 귀하게,
늙은것도 젊게, 겁쟁이도 용감하게
만들수 있구말구.
…신들이여! 이것은 웬일인가?
이 물건은 당신들의
제관이든 하인이든
모두다 끌어갈수 있으며,
아직은 살수 있는 병자의 머리밑에서
베개를 빼가기도 한다…
이 황색의 노예, 이놈은

나 화폐는 그자체가 상품이며 누구든지 사적소유물로 할수 있는 외계의 물건이다. 그리하여 사회적권력이 사적개인의 사적권력으로 된다. 그러므로 고대사회는 화폐를, 그 사회의 경제적 및 도덕적 질서의 파괴자로서 규탄하였다.(92) 벌써 그 유년시대에 땅속에서 플루토의 머리털을 잡아끌어낸(93) 현대사회는 황금의 성배[144]를 자기의 가장 독특한 생활원칙의 찬란한 화신으로서 환영하고있다.

사용가치로서의 상품은 어떤 특수한 욕망을 충족시키며 물질적부의 하나의 특수한 요소를 이룬다. 그러나 상품의 가치는 물질적부의 모든 요소에 대한 그 상품의 인력의 정도를 측정하며 따라서 그 상품소유자의 사회적부를 측정한다. 미개한 단순한 상품소유자에게 있어서 또 심지어 서유럽의 농민에게 있어서 가치는 가치형태로부터 분리될수 없으며 따라

신앙을 만들었다 부시며
저주받은자에게 축복을 주며
문둥병자앞에서 절하게 한다.
도적도 원로의 자리에 앉혀
칭호와 궤배와 영예를 준다.
이제는 다 산 과부를
시집가게 하는자도 이것.
…에익, 이 망할놈의 물건,
인류 공동의 매음부야》
(쉐익스피어《아테네인 티몬의 생애》)

(92) 《세상에 돈같이
간악한것은 다시 없다.
돈때문에 도시는 멸망하며
사람도 집에서 쫓겨난다.
금전은 순결한 심정을 타락시키며
렴치없는 행위와
간악한 생각과 배신을
사람에게 가르친다.》
(소포클레스《안티고네》)

(93) 《탐욕은 플루토 그자신을 땅속에서 머리털을 잡아끌어내려고 한다.》(아테나이오스《학자들의 향연》).

서 금저장과 은저장의 증가는 가치의 증가로 된다. 물론 화폐의 가치는 그자체의 가치변동의 결과로나 또는 상품가치의 변동의 결과로 변동한다. 그러나 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 가치변동의 전에나 후에나 의연히 200온스의 금은 100온스의 금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지며 300온스의 금은 200온스의 금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지는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물건의 천연적금속형태는 의연히 모든 상품의 일반적등가형태이며 모든 인간로동의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화신이라는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축장화폐형성의 충동은 그 본성에 있어서 한도를 모른다. 질적으로 또는 형태상으로 화폐는 제한이 없는것이다. 다시말하면 물질적부의 일반적대표자이다. 그것은 화폐가 직접 어떠한 상품으로도 전화될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매개의 현실적인 화폐액은 량적으로 제한되여있고 따라서 또 제한된 효력을 가진 구매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화폐의 이러한 량적제한성과 질적무제한성간의 모순은 화폐축장자를 부단히 축적의 씨쉬포스식 로동에 내몬다. 그는 새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새 국경에 부딪치는데 지나지 않는 세계정복자와 비슷하다.

금을 화폐로서 따라서 화폐축장의 요소로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이 류통하는것을 또는 구매수단으로서 향락품으로 되여버리는것을 막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화폐축장자는 자기의 육체적쾌락을 금물신에 희생시킨다. 그는 진심으로 금욕의 복음을 받든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는 오직 상품의 형태로 류통에 투입한것만을 류통으로부터 화폐의 형태로 끌어낼수 있을뿐이다. 그는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많이 판매할수 있다, 그러므로 근면과 절약과 린색은 그의 주되는 도덕으로 되며 많이 판매하고 적게 구매하는것이 그

의 정치경제학의 전부이다.(94)

축장화폐의 직접적형태와 아울러 그 심미적형태 즉 금, 은 제품의 소유가 진행된다. 이러한 소유는 자산계급사회의 부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한다. 《부자로 되거나 또는 부자로 보이게 하자.》(디드로)[145]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금은의 화폐적기능과는 관계없이 부단히 확대되는 금은시장이 형성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사회적폭풍우시대에 흘러나오는 화폐의 잠재적인 공급원천이 형성된다.

축장화폐의 형성은 금속류통의 경제에서는 각이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의 첫째의 기능은 금은주화의 류통조건으로부터 생긴다. 이미 본바와 같이 상품류통의 규모, 가격 및 속도가 부단히 변동함에 따라 화폐의 류통총량은 부단히 증감한다.① 그러므로 화폐의 류통총량은 축소하거나 팽창할수 있어야 한다. 어떤 때에는 화폐가 주화로서 끌려들어가야 하며 어떤 때에는 주화가 화폐로서 밀려나와야 한다. 현실적으로 류통하는 화폐총량이 항상 류통분야의 포화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일국내에 존재하는 금은량이 사실상 주화의 기능을 수행하고있는 금은량보다 더 많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화폐의 축장화폐형태에 의하여 실현된다. 축장화폐의 저수지는 동시에 류통하고있는 화폐가 흘러나가고 흘러들어오는 수로로 되며 따라서 류통하고있는 화폐는 결코 그 류통수로에서 범람하지 않는다.(95)

---

(94) 《모든 상품의 판매자의 수를 될수록 늘이고 구매자의 수를 될수록 줄이는것은 정치경제학의 모든 방책의 근본문제이다.》(베리 《정치경제학에 관한 고찰》, 52~53페지)

(95) 《한 나라가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액의 금속화폐가 필요하나 그 액수는 그때그때의 사정의 요구에 따라 혹은 많아지기도 하고 혹은 적어지기도 하면서 변동

① 이 책 138~146페지를 보라. 一편집자

(b) 지불수단

이상에서 고찰한 상품류통의 직접적형태에서는 같은 크기의 가치량이 항상 이중으로 존재하였다. 즉 한극에는 상품이 존재하였고 반대극에는 화폐가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상품소유자는 현존하는 서로 등가되는 물건의 대표자로서 접촉한데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상품류통의 발전과 더불어 상품의 양도가 상품가격의 실현과 시간적으로 분리되는 그러한 관계들이 발전한다. 여기에서는 이 관계들중의 가장 단순한 것만을 지적하면 충분할것이다. 어떤 종류의 상품은 그 생산에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하며 다른 종류의 상품은 비교적 짧은 시간이 필요하다. 또 각이한 상품의 생산은 각이한 계절과 결부되여있다. 어떤 상품은 생산지가 바로 상품의 시장소재지이나 다른 상품은 멀리 떨어진 시장에 려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어떤 상품소유자는 다른 상품소유자가 구매자로서 등장하기전에 판매자로서 등장할수 있다. 같은 인물들간에 같은 거래가 부단히 반복될 때에는 상품의 판매조건은 그 생산조건에 의하여 규제된다. 다른 한편 어떤 종

하는것이다.…화폐의 이러한 간만은 정치가들의 협력이 없이 스스로 조절된다.…량편의 드레박이 교대교대로 작용한다. 즉 화폐가 부족하게 되면 금덩이가 화폐로 주조되고 금덩이가 부족하게 되면 화폐가 녹여진다.》(D. 노스 《상업에 관한 론술》〔추기〕, 3페지) 오래동안 동인도회사[146]의 직원이였던 죤 스튜어트 밀은 인도에서는 아직까지도 온제장식품이 직접 축장화폐로서 기능하고있다는것을 확인하고있다. 《온제장식품은 리자률이 높아지면 끌리여나와 주조되고 리자률이 떨어지면 이전모습으로 되돌아간다.》(죤 스튜어트 밀의 증언, 1857년 《은행법에 관한 보고》 제2084호 및 2101호) 인도에서의 금은의 수출입에 관한 1864년의 의회문서[147]에 의하면 1863년에는 금은의 수출에 비하여 수입은 19,367,764파운드나 초과하였다. 1864년까지의 최근 8년간에는 귀금속의 수출에 비하여 수입은 109,652,917파운드나 초과하였다. 현세기에 인도에서는 200,000,000파운드 이상이 화폐로 주조되였다.

류의 상품 레컨대 가옥의 리용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판매된다. 구매자는 기한이 끝난후에야 비로소 현실적으로 그 상품의 사용가치를 받는다. 그러므로 그는 그 상품의 대가를 지불하기전에 그 상품을 사는것이다. 한편의 상품소유자는 현존하는 상품을 판매하는데 다른편의 상품소유자는 화폐의 단순한 대표자로서 또는 장래의 화폐의 대표자로서 구매한다. 판매자는 채권자로 되며 구매자는 채무자로 된다. 이 경우에는 상품의 변태 또는 상품의 가치형태의 발전이 달라지기때문에 화폐도 또한 하나의 다른 기능을 획득한다. 화폐는 지불수단으로 된다.(96)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자격이 여기에서는 단순한 상품류통으로부터 발생한다. 그 상품류통의 형태의 변화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이 두 새로운 도장을 찍는다. 따라서 그것은 처음에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그리고 동일한 류통당사자가 번갈아 노는 배역이다. 그렇지만 이 대립은 처음부터 그리 기분좋은것은 아니며 그것은 더 굳게 결정화할수 있는것이다.(97) 그러나 이 두 배역은 상품류통과 관계없이 등장할수도 있다. 레컨대 고대세계의 계급투쟁은 주로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투쟁의 형식으로 벌어졌다. 로마에서는 이 투쟁이 평민채무자들의 몰락으로써 끝났고 이 채무자들은 노예로 되여버렸다. 중세기에는 이 투쟁이 봉건

---

(96) 루테르는 구매수단으로서의 화페와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페를 구별하고있다. 《고리대로 인해 너는 나에게 이중의 손해를 끼치고있다. 나는 여기서는 지불할수 없고 저기서는 구매할수 없다.》(마르틴 루테르, 《목사제씨에게, 고리대를 반대하여 설교하라》, 1540년 위텐베르그판.)

(97) 18세기초엽의 영국상인들간에서의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이 영국에서는 다른 어떤 인간사회에도 또 세계의 어떤 다른 나라에도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그러한 잔인한 정신이 상인들간에 지배하고있다.》(《신용 및 파산법에 관한 론술》, 1707년 런던판, 2페지)

채무자들의 몰락으로써 끝났고 그들은 자기의 정치적권력을 자기의 경제적토대와 함께 상실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 화폐형태는ㅡ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하나의 화폐관계의 형태를 취한다ㅡ일층 더 깊은 근원을 가지고있는 경제적생활조건의 적대관계를 반영할뿐이다.

상품류통분야로 되돌아가자. 상품과 화폐라는 등가물이 판매과정의 량극에 동시에 나타나는 일은 없어졌다. 이제는 화폐는 첫째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결정에서 가치척도로서 기능한다.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그 상품의 가격은 구매자의 채무를 즉 그가 정한 기일에 지불해야 할 화폐액을 측정한다. 화폐는 둘째로, 관념적인 구매수단으로서 기능한다. 화폐는 비록 구매자의 화폐지불의 약속으로만 존재하지만 그것은 상품의 이전을 일으킨다. 지불기일이 되였을 때에 비로서 지불수단은 현실적으로 류통에 들어간다. 다시말하면 구매자의 손에서 판매자의 손으로 옮아간다. 류통수단이 축장화폐로 전화한것은 류통과정이 제1단계에서 중단된 결과였다. 즉 상품의 전화된 모습이 류통으로부터 끌려나온 결과였다. 지불수단은 류통에 들어가기는 하나 그러나 그것은 상품이 이미 류통에서 나온후이다. 화폐는 이제는 과정을 매개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교환가치의 절대적존재로서 또는 일반적상품으로서 이 과정을 독립적으로 결말짓는다. 판매자가 상품을 화폐로 전화시킨것은 화폐로써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이며 화폐축장자가 상품을 화폐로 전화시킨것은 상품을 화폐형태로 보존하기 위해서이며 채무를 진 구매자가 상품을 화폐로 전화시킨것은 지불할수 있기 위해서이다. 만약 그가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의 재산은 강제판매를 당할것이다. 그리하여 상품의 가치모습 즉 화폐는 이제는 류통과정 그자체

의 제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필연성으로 말미암아 판매의 목적자체로 된다.

구매자는 그가 상품을 화폐로 전화시키기전에 화폐를 상품에로 전화시킨다. 다시말하면 그는 상품의 제1변태에 앞서서 제2변태를 수행한다. 판매자의 상품은 류통하나 그 상품의 가격은 오직 사법상 화폐청구권으로서만 실현된다. 그것은 화폐로 전화되기전에 사용가치로 전화된다. 그 상품의 제1변태는 후일에 가서야 비로소 수행된다.(98)

류통과정의 일정한 기간마다 지불기간이 된 채무는 상품들의—그 판매에 의하여 이러한 채무가 발생한다—가격총액을 대표한다. 이러한 가격총액의 실현에 필요한 화폐총량은 우선 지불수단의 류통속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류통속도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정에 의하여 제약된다. 첫째로는 A는 자기의 채무자 B로부터 화폐를 받아서 그것을 다시 자기의 채권자 C에게 지불하는 등등과 같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관계의 련쇄이며 둘째로는 각이한 지불기한간의 시간의 길이이다. 뒤에 뒤를 이어 계속되는 지불의 련쇄 또는 후일에 수행되는 제1변태의 련쇄는 이전에 고찰한 변태계렬의 뒤엉킨 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① 류통수단의 류통에는 비단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련관이 표현되여있을뿐만아니라 이

(98) 제2판 주: 어째서 내가 본문에서 이것과 반대되는 형태를 고려에 넣지 않았는가 하는것은 1859년에 간행된 나의 저작으로부터의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보면 알수 있다. 《반대로 G—W 과정에서는 화폐는 화폐의 사용가치가 실현되기전에 또는 상품이 양도되기전에 현실적구매수단으로서 양도될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상품의 가격이 실현될수 있다. 이러한것은 례컨대 선불이라는 일상적인 형태로 수행되고있다. 또는 영국정부가 인도의 농민으로부터 아편을 구매하는 형태로도 수행되고있다.…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화페는 우리가 이미 알고있는 구매수단이라는 형태로서 작용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물론 자본도 역시 화페형태로 선대된다.…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단순한 류통의 시야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는다.》(《정치경제학비판》, 1859년 베를린판, 119~120페지[148])

① 이 책 141~143페지를 보라. —편집자

련관자체가 화폐류통에서만 또 화폐류통과 더불어 발생한다. 이와 반대로 지불수단의 운동은 그 이전에 벌써 형성된 사회적련관을 표현한다.

많은 판매가 동시적으로 병행하여 진행되는 사실은 류통속도로써 주화량을 보충할 가능성을 제한한다. 반대로 이러한 사실은 지불수단의 절약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된다. 지불이 한 장소에 집중됨에 따라 그것을 상쇄하기 위한 독특한 시설과 방법이 자연발생적으로 발전한다. 례컨대 중세기 리옹에서의 환치같은것이 그것이다. A의 B에 대한, B의 C에 대한, C의 A에 대한 등등의 채권은 대조하기만 하면 일정한 금액까지는 정량과 부량으로서 상쇄될수 있다. 그리하여 오직 채무차액만이 청산되면 그뿐이다. 지불이 많이 집중되면 될수록 그만큼 차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며 이에 따라 류통중의 지불수단의 량도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은 하나의 직접적인 모순을 내포하고있다. 여러 지불이 상쇄되는 한에 있어서는 화폐는 다만 관념적으로만 계산화폐 또는 가치척도로서 기능할뿐이다. 현실적지불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한에 있어서는 화폐는 류통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물질변환의 오직 순간적인 매개적형태로서가 아니라 사회적로동의 개별적화신으로서, 교환가치의 독립적정재로서, 절대적상품으로서 등장한다. 이러한 모순은 생산공황 및 상업공황중의 화폐공황(99)이라고 불리우는 순간에 폭발한다. 화폐공황은 련속적인 지불의 련쇄

---

(99) 본문에서 매개의 일반적 생산공황 및 상업공황의 특수한 단계로서 규정한 화폐공황은, 역시 화폐공황이라고 불리우기는 하나 그러나 독립적으로 나타날수 있으며 산업과 상업에는 다만 반작용을 할뿐인 특수한 종류의 공황과 구별해야 한다. 이 후자에서는 화폐자본이 그 운동의 중심으로 되며 따라서 은행, 거래소, 금융계가 그 직접적인 령역으로 되는 그러한 공황이다. (제3판에 대한 랍스의 주)

와 그 상쇄의 인위적제도가 충분히 발달한 곳에서만 일어난다. 이 기구의 전반적교란이 일어날 때 이 교란을 산생시킨 원인이 무엇이든지간에 화폐는 계산화폐라는 순전히 관념적인 모습으로부터 돌연히 또 직접 경화로 전화한다. 그것은 보통상품으로써는 대신할수 없게 된다. 상품의 사용가치는 무가치한것으로 되며 상품의 가치는 그자체의 가치형태앞에서는 사라지고만다. 금방 어제까지도 자산자는 호경기에 도취하여 개화를 자부하고 화폐는 공허한 환영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단언하며 상품만이 화폐라고 하였던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화폐만이 상품이다! 라고 웨치는 소리가 세계시장에서 들려온다. 사슴이 시원한 물을 갈망하듯이 자산자의 령혼은 유일한 부인화폐를 갈망한다.(100) 공황때에는 상품과 그 가치모습인 화폐와의 대립은 절대적모순에까지 발전한다. 그러므로 화폐의 현상형태는 여기서 문제로 되지 않는다. 지불을 금으로 하든지 은행권과 같은 신용화폐로 하든지 화폐기근은 의연히 변함없다.(101)

---

(100) 《신용주의로부터 중금주의에로의 이와 같은 돌연한 전화는 실제적공황에 리론적공포를 첨가한다. 그리하여 류통당사자들은 그들자신의 제 관계의 통찰할수 없는 비밀앞에서 벌벌 떤다.》 (맑스 《정치경제학비판》, 1859년 베를린판, 126페지[149]) 《빈민에게 일거리가 없는것은 부자들이 식량과 의복의 생산에 필요한 토지와 로동력을 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가지고있으나 빈민을 고용할 화폐를 가지고있지 못하기때문이다. 그런데 '국가의 참다운 부는 바로 이 토지와 로동력이지 결코 화폐가 아니다.》 (죤 벨레즈 《산업전문학교창설제안》, 1696년 런던판, 3~4페지)

(101) 이와 같은 순간을 《상업의 벗》들이 어떻게 리용하는가를 보면 아래와 같다. 《어느때에 (1839년) 어떤 욕심많은 로은행가 (씨티에 사는) 는 그의 서재에서 자기앞에 있는 책상뚜껑을 열고 자기 친구에게 은행권뭉치를 보여주고나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기에 60만파운드가 있는데 이것은 금융핍박을 조성시키기 위하여 걷어두었던것이요. 오늘 3시이후에는 전부 시장에 방출할 예정이요 하고.》 ((H. 로이) 《환자시세의 리론. 1844년의 은행법》, 1864년 런던판, 81페지) 반어용신문인 《관찰자》'는 1864년 4월 24일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 《은행권의 결핍을 조성하기 위하여 취해진 방책에 관하여 대단히 기괴한 풍설이 떠돌고있다.…그런 종류의 간책이 취해졌으리라고 생각하기는 극히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우에 말한 풍

이제 우리가 주어진 기간내에 류통하는 화폐의 총액을 고찰한다면 이 총액은 류통수단 및 지불수단의 류통속도가 주어진 경우에는 실현되여야 할 상품가격총액에다 기한이 된 지불총액을 가한 다음 상쇄되는 지불들을 감하고 끝으로 동일한 화폐쪼각이 때로는 류통수단으로서 또 때로는 지불수단으로서 번갈아 기능하는 류통회수를 감한것과 같다. 례컨대 농민이 그의 곡물을 2파운드를 받고 판다면 이 금액은 류통수단으로 쓰이는것이다. 농민은 이 2파운드로 이전에 직조업자가 그에게 공급하여준 아마포값을 지불기일이 되여서 지불한다. 이때에는 이 2파운드는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한다. 다음에 직조업자는 성경책을 현금으로 산다. 그리하여 이 금액은 다시 류통수단으로서 기능한다, 등등. 그러므로 가격과 화폐류통의 속도와 지불의 절약이 주어진것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기간의 례컨대 1일간의 류통하는 화폐량과 류통하는 상품량과는 벌써 일치하지 않는다. 이미 오래전에 류통에서 물러나온 상품을 대표하는 화폐가 류통한다. 또 그 화폐등가물이 장래에 가서야 비로소 나타날 상품이 류통한다. 다른 한편 매일 계약이 체결되는 지불과 같은 날자에 기한이 되는 지불과는 전혀 약분할수 없는 량이다.(102)

설이 널리 퍼지고있는만큼 사실 그것에 언급할 필요가 있다.》

(102) 《어떤 1일간에 체결되는 구매 또는 계약의 액수는 바로 그날에 류통하는 화폐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것이며 대다수 경우에만 또는 가까운 후일에야 류통에 들어올 화폐량에 대한 각종 잡다한 수형으로 변할것이다.…오늘 발행된 수형 또는 오늘 제공된 신용은 그수에 있어서나 총액에 있어서나 또는 기한에 있어서나 래일 또는 모레 발행될 수형 또는 제공된 신용들과 류사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 오히려 오늘 발행된 수형이나 제공된 신용들중 많은것은 전혀 일정하지 않은 이전 날자에 체결된 허다한 채무들과 일치할것이다. 례컨대 12개월 만기, 6개월 만기, 3개월 만기, 1개월 만기의 수형들이 가끔 서로 합치되여 같은 일정한 날자를 기한으로 하는 채무액을 팽창시킨다.》(《통화리론의 론평. 스코틀랜드인민에게 보내는 편지》, 잉글랜드의 한 은행가의 저작, 1845년 에딘버러판, 29~30페지의 여러 개소)

신용화폐는 판매된 상품에 대한 채무증서 그자체가 채권의 이전을 위하여 다시 류통하는데 의하여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으로부터 직접 발생한다. 다른 한편 신용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도 확대된다.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는 특유한 존재형태를 취하고 이 형태에 의하여 대규모상업거래의 분야에 거처를 잡는다. 그 반면에 금화와 은화는 주로 소매상업의 분야로 밀려나간다.(103)

상품생산이 일정한 수준과 범위에 도달하면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은 상품류통령역을 벗어난다. 화폐는 계약상의 일반적상품으로 된다.(104) 지대, 조세 등등은 현물납부로부터 화폐지불로 전화한다. 이 전화가 생산과정의 총적 상태에 의하여 얼마나 제약되는가 하는것은 례컨대 일체 조세를 화폐로 징수하려던 로마제국의 시도가 두번이나 실패하였다는 사실이 증명하여준다. 봐기배르, 보방장군 등이 그처

---

(103) 본래의 상업거래에서 현금이 얼마나 적게 사용되는가 하는 실례로서 여기에 런던의 가장 큰 상회중의 하나(모리손—딜론상회)의 1년간 화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일람표를 든다. 1856년도의 이 상회의 거래액은 수백만파운드에 달하였으나 여기서는 100만파운드 기준으로 축소하였다.

수 입	(단위: 파운드)	지 출	(단위: 파운드)
은행가 및 상인의 기한부수형	533,596	기한부 수형	302,674
일람불은행 행표 등	357,715	런던 각 은행에 대한 행표	663,672
지방은행권	9,627	잉글랜드은행권	22,743
잉글랜드은행권	68,554	금화	9,427
금화	28,089	은화 및 동화	1,484
은화 및 동화	1,486		
우편환자	933		
합계	1,000,000파운드	합계	1,000,000파운드

(《은행법특별위원회의 보고》, 1858년 7월, 71페지)

(104) 《상업거래의 성격은 이와 같이 상품과 상품과의 교환으로부터 즉 상품을 주고받고하는것으로부터 판매와 지불로 변화되였기때문에 이제는 모든 거래는…화폐가격에 의해 결정된다.》((D. 더포우) 《공공신용에 관한 론술》, 1710년 런던 제3판, 8페지)

럼 유력하게 규탄한 루이14세 통치하의 프랑스농민의 극심한 빈궁의 원인은 비단 조세가 과중한데만 있은것이 아니라 현물조세가 화폐조세로 바뀐데도 있었다.(105) 다른 한편 아시아에서는 동시에 국가조세의 주요한 요소인 지대의 현물형태가 자연관계와 같이 불변하게 재생산되는 생산관계에 기초하고있는데 이러한 지불형태가 반작용을 통하여 낡은 생산형태를 유지한다. 이것은 토이기제국이 유지되는 비밀의 하나이다. 만약 유럽이 일본에 강요한 대외무역이 현물지대의 화폐지대에로의 전화를 초래한다면 일본의 모범적농업은 종말을 고하게 될것이다. 이 농업의 협애한 경제적존재조건도 없어질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일정한 일반적지불기한이 확립된다. 이러한 일반적지불기한은 재생산의 다른 순환들을 무시한다면 부분적으로는 계절의 교체와 결부된 생산의 자연조건에 기초를 두고있다. 이 지불기한은 직접 상품류통에 기인하지 않는 지불 례컨대 조세, 지대 등등도 규제한다. 전국에 산재하고있는 이러한 지불들을 위하여 1년중의 며칠동안에 요구되는 화폐량은 지불수단의 절약에 주기적인 그러나 완전히 표면적인 혼란을 일으킨다.(106) 지불수단의 류통속도에 관한 법칙으로

---

(105) 《화폐는 만물의 사형집행자로 되였다.》 재정기술은 《이 치명적인 추출물을 얻기 위하여 놀랄만큼 방대한 량의 재화와 상품을 증류시키는 증류기이다》. 《화폐는 전체 인류에게 선전포고를 한다.》 (부아길베르《부, 화폐 및 조세의 성질에 관한 연구》, 대르 편찬, 《재정경제학자들》, 1843년 빠리판, 제1권 413, 419 417, 418페지)

(106) 1826년의 의회조사위원회에서 크레이그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824년의 성령강림제에 에딘버러에서 은행권에 대한 막대한 수요가 일어난 결과 11시경에는 단 한장의 은행권도 우리의 수중에 없었다. 우리는 은행권을 빌리려고 차례차례로 여러 은행에 사람을 보냈으나 조금도 입수할수 없었고 다수의 거래는 종이쪽지로써 처리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후 3시경에는 벌써 전체 은행권은 그것을 발행한 은행에 되돌아왔다. 그것은 다만 손에서 손에로 인도되였을뿐이다.》 스코틀랜드에서의 은행권의 실제적평균류통액은 300만파운드미만이지만 그러나 1년중의 각 지불기일에는 은행가의 수중에 있는 도합 약 700만파운드에 달하는 은행권이 모두 동원된다. 이 경우에 은행권

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모든 주기적지불에 요구되는 지불수단의 량은 그 지불의 유래가 무엇이든지간에 지불기간의 길이에 정비례한다.(107)[150]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가 발전하면 지불기한에 채무를 갚기 위하여 화폐축적이 필요하게 된다. 자산계급사회의 발전과 함께 독립적인 치부형태로서의 축장화폐형성은 소멸되지만 한편 지불수단의 준비금의 형태로서는 축장화폐형성은 장성한다.

(c) 세계화폐

화폐는 국내류통분야를 넘어설 때에는 그것이 이 분야에서 가지고있던 가격기준, 주화, 보조화폐, 가치기호 등의 지방적형태를 다시 벗어버리고 귀금속의 원래의 덩어리형태로 되돌아간다. 세계무역에서는 상품은 자기의 가치를 보편적으

은 단 하나의 특수기능만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수행하자마자 그것을 발행한 은행에 도로 흘러들어간다. (죤 풀러튼 《통화조절론》, 1845년 런던 제2판, 86페지 주) 리해를 돕기 위하여 한가지 보충할것은 풀러튼의 저작이 발간된 그 당시의 스코틀랜드에서는 예금을 찾을 때에 행표가 아니고 오직 은행권만을 내주었다는 사실이다.

(107) 《1년간에 4,000만의 지불이 수행되지 않으면 안된다면 과연 이 600만 (금화) 이 무역에 요구되는 모든 회전과 류통을 위하여 충분하겠는가?》 라는 물음에 대하여 페티는 늘 그러한것처럼 재치있게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왜냐 하면 지불은 4,000만이지만 만약 례컨대 매 토요일에 돈을 받고 또 지불하는 가난한 수공업자 및 로동자들간에서 보는바와 같이 회전이 1주일이라는 짧은 주기로 실현된다면 100만의 $\frac{40}{52}$으로도 4,000만의 지불을 할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 나라의 지대지불과 조세징수의 관습에 따라 회전이 4분기의 주기로 실현된다면 1,000이 필요하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일반적으로 지불이 1주일과 13주일간에서 여러가지 주기로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100만의 $\frac{40}{52}$에, 1,000만을 가한 다음 그 절반을 취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고것은 550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550만만 가지면 충분할것이다.》 (윌리엄 페티 《아일랜드의 정치적해부. 1672년》, 1691년 런던판, 13~14페지[151])

로 전개한다. 그러므로 거기에서는 또한 상품의 독립적인 가치모습도 세계화폐로서 상품에 대립한다. 세계시장에서 비로소 화폐는 그 자연적형태가 동시에 추상적인간로동의 직접적, 사회적 실현형태인 그러한 상품으로서 전면적으로 기능한다. 화폐의 정재방식이 화폐의 개념에 상응한것으로 된다.

국내류통분야에서는 오직 하나의 상품만이 가치척도로, 따라서 화폐로 쓰인다. 세계시장에서는 두개의 가치척도가 즉 금과 은이 지배한다.(108)

---

(108) 그러므로 국가은행으로 하여금 그 나라의 내부에서 화폐로 기능하고있는 귀금속만을 축장하게 하는 온갖 립법은 불합리한것이다. 례컨대 잉글랜드은행자체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조성한 《친절한 장해》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금과 은의 상대적 가치의 변동이 심하였던 력사적대시기들에 관해서는 칼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 136페지이하를 보라.[152]—제2판에 대한 보충적 주:로버트 필경은 그가 제정한 1844년은행법[153]에서 잉글랜드은행에 대하여 은보유가 금보유의 $\frac{1}{4}$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은보유로써 은행권을 발행하는것을 허가함으로써 이 곤난을 모면하려고 하였다. 동시에 은의 가치는 런던시장에서의 은의 시장가격(금에 의한)에 따라 평가하기로 되여있었다. {제4판 주: 우리는 이제 다시 금과 은의 상대적가치의 변동이 심한 시기에 처하고있다. 약 25년전에는 금과 은의 가치비률은 $15\frac{1}{2}$:1이였으나 지금은 그것이 대략 22:1이고 금에 비한 은가치는 아직 계속 떨어지고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이 두 금속의 채취방법에 변혁이 일어났기때문이다. 이전에는 금은 거의 그전부가 금을 함유하고있는 충적지층 즉 금을 함유하고있는 암석의 풍화물의 세광에 의하여 채취되였다. 현재는 이 방법은 벌써 불충분한것으로 되였으며 그것은 금을 함유하고있는 석영광맥 그자체의 정련—벌써 고대인에게 잘 알려져있었으나(디오도로스《력사문고》, 제3권, 제12~14장) 이때까지는 제2차적으로만 실천되고있던 방법—에 자리를 내주고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단 미국의 록키산맥서부에서 새로운 큰 은광이 발견되였을뿐만아니라 이 은광과 메히꼬은광은 철도에 의하여 개발되여 근대적기계 및 연료의 공급이 용이하게 되였고 이로 인하여 은을 대규모로 또 더 적은 비용으로 채취할수 있게 되였다. 그러나 이 두 금속이 광맥속에 존재하는 상태는 판이하다. 금은 대체로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나 그대신 극히 적은 량으로 석영속에 산재할뿐이다. 그러므로 금을 채취하는데는 많은 광석을 분쇄하여 금을 물로 일어내든지 혹은 수은으로 잡든지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100만그람의 석영에서 겨우 1~3그람의 금을 얻어내군 하며 30~60그람의 금이 나오는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은은 순수한 형태로 나타나는 일은 극히 드물지만 그대신 그것은 비교적 용이하게 광맥으로부터 분리시킬수 있는 특수광석속에 있으며 또 이와 같은 광석은 보통 40~90%의 은을 함유하고있다. 혹은 또 그자체가 채취할 가치가 있는 광석 례컨대 동, 연 기타 속에 은이 적으나마 포함되여있다. 벌써 이러한 사실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금을 생산하는 로동은 오히려 증가한 반면에 은을 생산하는 로동은 결정적으로 감소

세계화폐는 일반적지불수단, 일반적구매수단 및 부 일반의 절대적사회물질화로서 기능한다. 국제수지차액을 결제하기 위한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우위를 차지한다. 이로부터 무역차액이라는 중상주의의 구호가 나왔다![109] 여러 국가들간의 물질변환의 종래의 균형이 돌연히 교란되는 때에 금은은 본질적으로 국제적구매수단으로 쓰인다. 끝으로 금은이 부의 절대적사회적물질화로서 쓰이는것은 구매나 지불이 문제로 되지 않고 부를 한 나라로부터 다른 나라로 이전시키는것이 문제로 되는 경우이며 이 이전을 상품형태로 하는것

하였기때문에 은의 가치저락은 극히 당연하다. 이와 같은 가치저락은 만약 은의 가격을 현재에도 인공적수단에 의하여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함이 없었다면 더 격심한 가격저락으로써 표현되였을것이다. 그러나 아메리카의 은광맥은 이제 겨우 그 소부분만이 채굴ㅣ착수되였으며 따라서 은가치는 아직도 오랜 시일에 걸쳐 의연히 저락하리라는것을 완전히 예견할수 있다. 또 이밖에도 일용품과 사치품을 위한 은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것, 은도금제품과 알루미니움 등등이 은에 대용된다는것도 은의 가치저락을 촉진하지 않을수 없다. 이상 말한바에서 명백한바와 같이 국제적인 강제시세가 은의 가치를 종전의 비률인 1:15$\frac{1}{2}$에까지 다시 끌어올리수 있으리라는 복본위주의의 생각은 공상인것이다. 오히려 은은 세계시장에서 그 화폐적성질을 가일층 상실하게 될것이다. — 에프. 에.}

(109) 중상주의는 금과 은에 의한 무역차액의 결제를 세계무역의 목적으로 간주하였지만 그 반대자들도 역시 세계화폐의 기능을 완전히 잘못 리해하였다. 류통수단의 량을 규제하는 법칙의 그릇된 리해가 귀금속의 국제적운동의 그릇된 리해에 그대로 반영되고있을뿐이라는것은 내가 이미 리카도를 실례로 하여 상세하게 론증하였다. (《정치경제학비판》, 1859년 베를린판, 150페지이하[154]) 《무역의 역차는 오직 류통수단의 과잉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것이다.…주화의 수출은 그 값이 눅어지는데 기인하는것으로서 그것은 역차의 결과가 아니라 역차의 원인이다.》[155]라고 하는 리카도의 그릇된 독단은 배어보운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또한 볼수 있다. 《무역차액은(만약 그것이 존재한다고 하면) 한 나라가 화폐를 수출하는 원인으로는 되지 않는다. 반대로 이 화폐의 수출은 각국에서의 귀금속가치의 차이에 기인한다.》(N. 배어보운 《더 가벼운 새 화폐를 주조할데 관한 론술. 화폐가치를 높일데 관한 로크씨의 고찰에 대한 대답》, 59페지) 머칼러크는 《정치경제학문헌. 분류목록》(1845년 런던판)에서 배어보운의 이 예견을 찬양하고있으나 그러나 배어보운에 있어서도 가장 소박한 형태로 나타나있는 《통화원리》[156]의 불합리한 전제들에 관하여는 언급하는것조차 용의주도하게 회피하고있다. 이 목록의 무비판성과 심지어 불성실성은 화폐리론의 력사에 관한 편들에서 절정에 달하고있다. 머칼러크는 여기에서는 그가 《은행계의 공인된 수령》[157]이라고 부르는 오버스턴경(전은행가 로이드)에 대한 추종자로서 꼬리를 내두르고있다.

이 상품시장의 경기형편 또는 소기의 목적자체에 비추어 적당치 않는 경우이다.(110)

매개 나라는 국내류통을 위해서와 마찬가지로 세계시장에서의 류통을 위해서 일정한 액의 준비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축장화폐의 기능은 일부분은 국내류통수단 및 국내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으로부터 발생하며 일부분은 세계화폐로서의 화폐의 기능으로부터 발생한다.(110a) 이 후자의 역할에서는 실제적인 화폐상품인 현실적인 금은이 언제나 요구된다. 그런 까닭에 제임즈 스튜어트는 금은을 그 단순한 지방적인 대리자와 구별하여 명확히 세계화폐로서 특징짓고있다.[158]

금은의 류동은 이중적이다. 한편으로 금은은 그 산지로부터 전 세계시장에 흘러나가 거기서 각이한 정도로 여러 나라의 류통분야에 흡수되여 그 나라들의 국내류통수로에 들어가며 마멸된 금은주화를 보충하며 사치품의 재료를 제공하며 축장화폐로서 응고한다.(111) 이 제1의 운동은 상품에 실현되여있는 나라들의 로동과 귀금속에 실현되여있는 금은생산국

---

(110) 례컨대 원조금을 제공할 경우나 전쟁수행을 위한 또는 은행의 현금지불회복을 위한 차관을 할 등등의 경우에는 가치는 바로 화폐형태를 요구한다.

(110a) 제2판 주: 《금속화폐본위의 나라들에서 화폐축장의 기구가 일반적류통의 이렇다 할 방조없이 국제적채무결제상 모든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수 있다는 증거로서는 프랑스가 일찌기 파괴적인 외적침입의 타격으로부터 겨우 회복하고있던 당시 27개월동안에 걸쳐서 동맹국이 프랑스에 부과한 약 2,000만의 전쟁배상금을 자기의 국내통화에 아무런 이렇다 할 수축 또는 교란도 일으키지 않고 또 자국의 환자시세에 조금도 심한 동요를 일으키지 않고 게다가 그 대부분을 금속화폐로 동맹국에 지불했다는 사실이상으로 더 확실한 증거를 바랄수 없다.》(플러튼《통화조절론》, 141페지) {제4판 주: 이보다도 더 주목할만한 실례는 같은 프랑스가 1871~1873년의 30개월동안에 걸쳐서 그 10배이상이나 되는 거액의 전쟁배상금을 역시 그 대부분을 금속화폐로 용이하게 지불할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에프. 에.}

(111) 《화폐는 도처에서 상품에 의하여 끌리여들어감으로써…화폐에 대한 여러 나라의 수요에 따라 여러 나라에 분배된다.》(르 뜨론《가치, 류통, 공업, 국내외무역의 견지에서의 사회적리익에 관하여》, 916페지) 《끊임없이 금은을 제공하는 광산들은 모든 국가의 수요를 충족시킬 충분한 량을 제공한다.》(J. 밴덜린트《화폐만능론》, 40페지)

들의 로동과의 직접적교환에 의하여 매개된다. 다른 한편 금은은 각이한 나라의 류통분야의 사이를 부단히 왕래한다. 이것은 환자시세의 끊임없는 변동에 따르는 운동이다.(112)

자산계급생산이 발전한 나라에서는 은행저수지에 대량적으로 집적되는, 축장화폐는 은행의 특수한 기능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국한된다.(113) 일정한 례외는 있지만 축장화폐저수지가 그 평균수준이상으로 크게 범람하는것은 상품류통의 정체 또는 상품변태흐름의 중단을 보여주는것이다.(114)

---

(112) 《환자시세는 매주 오르내리는데 1년중 어떤 시기에는 그것이 어떤 국가에 불리하게 등귀하며 또 다른 시기에는 유리하게 등귀한다.》(N. 배어보운 《더 가벼운 새 화폐를 주조할데 관한 론술. 화폐가치를 높일데 관한 로크씨의 고찰에 대한 대답》, 39페지)

(113) 이 각종 기능은 은행권의 태환준비금이라는 기능이 거기에 새로 첨가되자마자 호상 위험한 충돌을 일으킬수 있다.

(114) 《국내상업에 절대 필요한 량이상의 화폐는 죽은 자본이고 대외무역에서 수출되거나 수입되거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화폐를 보유하고있는 나라에 아무런 리득도 주지 않는다.》(죤 벨러즈 《빈민에 관한 론술》, 13페지) 《만약 우리가 너무 많은 주화를 가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그중에서 가장 무거운것을 녹여서 금은제의 화려한 대접과 그릇 또는 기구를 만들든지 혹은 그것이 요구되며 또는 요망되는 곳에 상품으로서 보내든지 혹은 리자가 비싼 곳에 빚으로 주든지 해야 할것이다.》(W. 페티 《화폐문답》, 39페지) 《화폐는 국가라는 육체의 지방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까닭에 그것이 과다하면 가끔 이 육체의 민활성을 방해할것이며 또 과소하면 가끔 그것을 병들게 할것이다.…지방은 근육의 운동을 원활하게 하며 영양이 부족할 때에 그것을 보충하며 우묵한데를 메우며 신체를 아름답게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화폐는 국가의 행동을 민첩하게 하며 국내에 흉작이 있을 때에는 외국으로부터 식량을 가져오며 채무를 갚으며…전체를 아름답게 한다. 하기는 (하고 그는 풍자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한다.) 화폐를 많이 가지고있는 인물들을 주로 더 아름답게 하는것이지만.》(W. 페티 《아일랜드의 정치적해부》, 14~15페지[151])

제 2 편
화폐의 자본에로의 전화

제 4 장

화폐의 자본에로의 전화

1. 자본의 일반적공식

상품류통은 자본의 출발점이다. 상품생산과 발달한 상품류통 즉 상업은 자본이 발생하는 력사적전제를 이룬다. 세계무역과 세계시장은 16세기에 자본의 근대적생활사를 열어놓았다.

만약 상품류통의 물질적내용, 각이한 사용가치의 교환을 제쳐놓고 오직 이 과정에 의하여 산생되는 경제적형태만을 고찰한다면 우리는 화폐가 이 과정의 최후산물이라는것을 발견하게 될것이다. 상품류통의 이 최후의 산물은 자본의 최초의 현상형태이다.

력사적으로 자본은 최초에는 화폐의 형태로, 화폐재산으로서, 상인자본과 고리대자본으로서 어디서나 토지소유와 대립한다.(1) 그러나 화폐를 자본의 최초의 현상형태로서 인식

---

(1) 인신적인 예속관계와 지배관계를 기초로 하는 토지소유의 권력과 화폐의 비인신적인 권력간의 대립은 다음과 같은 두개의 프랑스속담에 명백히 표현된다. 《령주 없는 토지는 없다.》, 《화폐에는 주인이 없다.》

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발생사를 돌이켜보지 않아도 된다. 이 력사는 매일 우리의 눈앞에서 되풀이되고있는것이다. 매개의 새로운 자본은 처음에는 의연히 화폐로서 즉 일정한 과정을 통하여 자본에로 전화할 화폐로서 무대에 즉 상품시장, 로동시장 또는 화폐시장이라는 시장에 등장한다.

화폐로서의 화폐와 자본으로서의 화폐와는 우선 그것들의 류통형태가 같지 않다는것만으로써 구별될뿐이다.

상품류통의 직접적형태는 W-G-W, 상품의 화폐에로의 전화 및 화폐의 상품에로의 재전화, 구매를 위한 판매이다. 그러나 이 형태와 아울러 우리는 그것과는 특별히 구별되는 제2의 형태 G-W-G, 화폐의 상품에로의 전화 및 상품의 화폐에로의 재전화, 판매를 위한 구매를 발견하게 된다. 이 제2의 류통을 그리면서 운동하는 화폐는 자본에로 전화하고 자본으로 되며 그 사명으로 보아 이미 자본인것이다.

이제 류통 G-W-G를 더 자세히 고찰하기로 하자. 이 류통은 단순한 상품류통과 마찬가지로 대립적인 두 단계를 통과한다. 제1단계 G-W, 구매에 있어서는 화폐가 상품에로 전화한다. 제2단계 W-G, 판매에 있어서는 상품이 화폐로 재전화한다. 이 두 단계의 통일은 화폐를 상품과 교환하고 같은 그 상품을 다시 화폐와 교환한다는 즉 팔기 위하여 상품을 산다는 총운동이다. 또는 구매와 판매라는 형식상의 구별을 도외시한다면 화폐로 상품을 사며 그 상품으로 화폐를 산다[2]는 총운동이다. 이 전체 과정이 끝난 다음에 생기는 결과는 화폐와 화폐와의 교환, G-G이다. 만약 내가 100파운드로 2,000폰드의 면화를 사고 이 2,000폰드의 면화를 다시

(2) 《사람들은 화폐로 상품을 사며 또 상품으로 화폐를 산다.》 (매르씨에드 라 리비에르 《정치사회의 자연적 및 본질적 질서》, 543페지)

110파운드로 판다면 나는 결국 100파운드를 110파운드와 교환한것이며 화폐를 화폐와 교환한것으로 된다.

아주 분명한 일이지만 만일 류통과정 G-W-G가 우회적인 행로를 거쳐서 어떤 화폐적가치를 동일한 화폐가치와 교환한다면, 례컨대 100파운드를 100파운드와 교환한다면 그 류통과정은 아주 어리석은것이며 무내용한것이다. 이보다는 차라리 그 100파운드를 류통의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고 그것을 움켜쥐고있는 화폐축장자의 방법이 훨씬 더 간단하며 더 확실한것이다. 다른 한편 상인이 100파운드로 산 면화를 다시 110파운드로 팔든지 혹은 그것을 100파운드나 경우에 따라서는 50파운드로라도 팔든지 어차피 그의 화폐는 하나의 독특하고 특이한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은 단순한 상품류통 례컨대 농민이 곡물을 팔고 받은 화폐로 의복을 사는 경우의 운동과는 아주 다르다. 그러므로 우선 두 순환 G-W-G와 W-G-W의 형태상의 구별의 특징을 밝히는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동시에 이 형태상 구별의 배후에 숨어있는 내용상의 구별도 밝혀질것이다.

우선 두 형태에 공통적인것을 보기로 하자.

이 두 순환은 모두 동일한 두 대립적인 단계 W-G, 판매와 G-W, 구매로 나뉜다. 이 두 단계의 어느 단계에 있어서나 동일한 두개의 물적요소인 상품과 화폐가 서로 대립하며 동일한 경제적가면을 쓴 두 인물인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대립하고있다. 이 두 순환의 어느것이나 모두 동일한 두 대립적인 단계의 통일이고 이 통일은 어느 경우에나 세 당사자가 등장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그중의 한사람은 팔기만 하며 다른 한사람은 사기만 하며 세번째 사람은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한다.

그러나 이 두 순환 W-G-W와 G-W-G를 처음부터 구별하는것은 동일한 두 대립적인 류통단계의 서로 반대되는 순서이다. 단순한 상품류통은 판매로써 시작되여 구매로써 끝나고 자본으로서의 화폐의 류통은 구매로써 시작되여 판매로써 끝난다. 전자에 있어서는 상품이, 후자에 있어서는 화폐가 운동의 출발점과 종점을 이루고있다. 첫 형태에서는 화폐가, 둘째 형태에서는 상품이 총과정을 매개한다.

류통 W-G-W에 있어서는 화폐가 나중에 사용가치로서 복무하는 상품에로 전화한다. 따라서 화폐는 종국적으로 지출된다. 한편 반대의 형태 G-W-G에 있어서는 구매자가 화폐를 지출하는것은 판매자로서 화폐를 받아들이기 위하여서이다. 그가 상품을 살 때에 화폐를 류통에 투입하는것은 동일한 그 상품을 파는데 의하여 류통으로부터 다시 화폐를 끌어내기 위해서이다. 그는 화폐를 다시 손에 넣으려는 기도를 가지고서만 화폐를 내놓는다. 그러므로 화폐는 오직 선대될 따름이다.(3)

W-G-W형태에 있어서는 동일한 화폐조각이 두번 그 위치를 바꾼다.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화폐를 받아가지고 다른 판매자에게 지불한다. 상품과 교환하여 화폐를 받는것으로써 시작되는 총과정은 상품과 교환하여 화폐를 넘겨주는것으로써 끝난다. G-W-G형태에 있어서는 그 반대이다. 여기서는 동일한 화폐조각이 아니라 동일한 상품이 두번 그 위치를 바꾼다. 구매자는 상품을 판매자의 손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른 구매자의 손에 넘겨준다. 단순한 상품류통에 있

(3) 《어떤 물건을 다시 팔기 위하여 사는 경우에는 거기에 사용된 금액을 선대된 화폐라고 한다. 물건을 다시 파는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는 경우에는 거기에 사용된 금액은 지출되였다고 할수 있다.》(《제임즈 스튜어트저작집》, 그의 아들 제임즈 스튜어트장군 편찬, 1805년 런던판, 제1권, 274페지)

어서는 동일한 화폐조각의 두번의 위치변환이 그 화폐를 한 사람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에로 종국적으로 넘어가게 하지만 여기에서는 동일한 상품의 두번의 위치변환이 화폐를 그 최초의 출발점에 환류시킨다.

화폐의 그 출발점에로의 환류는 상품이 구매된 값보다 비싸게 판매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과는 관계없다. 이 사정은 오직 환류하는 화폐액의 크기에만 영향을 준다. 환류현상은 구매된 상품이 다시 판매되기만 하면 즉 순환 G-W-G가 완전히 이루어지기만 하면 반드시 일어난다. 따라서 이것은 자본으로서의 화폐의 류통과 단순한 화폐로서의 화폐의 류통간의 감각적으로 인정되는 구별이다.

한 상품의 판매에 의하여 화폐가 들어오고 그 화폐가 다른 상품의 구매에 의하여 다시 나가기만 하면 순환 W-G-W는 완전히 끝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화폐가 그 출발점에로 환류한다면 그것은 다만 전체 과정의 갱신 또는 반복에 의하여 일어날따름이다. 만약 내가 1쿼터의 곡물을 3파운드에 팔고 다음에 이 3파운드로 의복을 산다면 이 3파운드는 나에게 있어서는 종국적으로 지출되는것이다. 나는 이제는 이 3파운드와 아무런 관계도 가지지 않는다. 이 3파운드는 의복상인의것이다. 이제 만약 내가 제2차로 1쿼터의 곡물을 판다면 화폐는 나에게로 환류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1차의 거래의 결과가 아니고 다만 그 거래의 반복의 결과일따름이다. 내가 제2차의 거래를 끝내여 새로운 구매를 하기만 한다면 화폐는 다시 나에게서 떠나간다. 따라서 류통 W-G-W에서는 화폐의 지출은 그 환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이와 반대로 G-W-G에서는 화폐의 환류는 화폐의 지출방식 그자체에 의하여 제약된다. 이러한 환류가 없다면 활동이 실

패하였거나 그 과정이 중단되여 아직 완결되지 못한것이다. 왜냐 하면 과정의 제2단계 즉 구매를 보충하며 종결짓는 판매가 실현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순환 W-G-W는 한 상품의 극에서 시작하여 다른 한 상품의 극에서 종결되며 이 후자는 류통에서 나와 소비에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이 순환의 궁극적목적은 소비, 욕망의 충족 한마디로 말하면 사용가치이다. 반대로 순환 G-W-G는 화폐의 극에서 출발하여 나중에 동일한 극에로 되돌아간다. 그러므로 이 순환을 추진시키는 동기와 그것을 규정하는 목적은 교환가치자체이다.

단순한 상품류통에서는 량극은 동일한 경제적형태를 가진다. 량극은 모두 상품이다. 그것들은 또한 동일한 가치량의 상품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질적으로 다른 사용가치 례컨대 곡물과 의복이다. 여기에서는 생산물의 교환 즉 사회적로동이 표현되여있는 각이한 물질의 교환이 운동의 내용으로 된다. 류통 G-W-G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류통은 동의반복적이기때문에 일견 무내용한것 같이 보인다. 량극은 동일한 경제적형태를 가진다. 량극은 모두 화폐이고 따라서 질적으로 다른 사용가치가 아니다. 왜냐 하면 화폐는 바로 상품의 특수한 사용가치가 소멸되여버린 상품의 전화된 모습이기때문이다. 처음에 100파운드를 면화와 교환하고 그다음 이 면화를 다시 100파운드와 교환하는것, 다시말하면 우회적경로를 밟아 화폐를 화폐와 즉 같은것을 같은것과 교환하는것은 목적없는 활동인 동시에 부질없는 활동인것 같이 보인다.(4) 일반적으로 어떤 화폐액은 그 크기에 있어서만 다른

---

(4) 《사람들은 화폐를 화폐와는 교환하지 않는다.》라고 매르씨에 드 라 리비에르는 중상주의자들에게 웨치고있다. (《정치사회의 자연적 및 본질적 질서》, 486페지) 특

화폐액과 구별될수 있다. 그러므로 과정 G-W-G는 그 량극이 모두 화폐인만큼 량극간의 질적차이에 의하여 내용을 가지는것이 아니라 오직 그 량적차이에 의하여서만 내용을 가지는것이다. 종말에 가서는 시초에 류통에 투입된것보다 많은 화폐가 류통으로부터 나온다. 례컨대 100파운드로 산 면화는 100+10파운드 즉 110파운드에 다시 팔린다. 그러므로 이 과정의 완전한 형태는 G-W-G′이다. 여기서 G′는 G+⊿G 즉 최초의 선대된 화폐액+일정한 증가분이다. 이 증가분 즉 최초의 가치를 넘는 초과분을 나는 잉여가치(surplus value)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최초에 선대된 가치는 류통에서 비단 보존될뿐만아니라 자기의 가치량을 변동시켜 잉여가치를 자체에 첨가한다. 바꾸어말하면 자기를 증식한다. 그리고 바로 이 운동이 이 가치를 자본으로 전화시킨다.

물론 W-G-W에 있어서도 량극인 W와 W 례컨대 곡물과 의복이 량적으로 다른 가치량일수 있다. 농민은 자기의

별히 《상업》 및 《투기》를 취급한 어떤 저작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일체 상업이라는것은 각이한 종류의 물건을 교환하는것을 말한다. 그리고 리익 〔상인에게 있어서의?〕 은 바로 이 차이에서 생긴다. 한폰드의 빵을 한폰드의 빵과 교환하면 아무런 리익도 없을것이다.…그러므로 상업은 화폐와 화폐와의 교환에 지나지 않는 도박과 유익한 대조를 이루는것이다.》(Th. 코비트 《개인의 부의 원인과 그 취득방식에 관한 연구. 또는 상업과 투기의 원리에 관한 해설》, 1841년 런던판, 5페지) 코비트는, 비록 그가 G-G 즉 화폐를 화폐와 교환하는것이 비단 상업자본뿐만아니라 일체 자본의 특징적인 류통형태라는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형태가 상업의 한 종류 즉 투기와 도박에 공통하다는것은 인정하고있다. 그러나 그후에 머칼러크가 나타나서 판매를 위한 구매는 모두 투기이고 따라서 투기와 상업과의 구별은 없어진다는것을 발견하고있다. 《어떤 개인이 생산물을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매개의 거래는 사실상 일종의 투기이다.》(머칼러크 《상업과 상용선박해운업의 실용적, 리론적, 력사적 사전》, 1847년 런던판, 1009페지) 암스테르담거래소의 핀다로스인 삔또는 훨씬 더 소박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상업은 하나의 도박이다. 〔이 문구는 로크에게서 차용한것이다.〕 거지를 상대로 해서는 돈을 따낼수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누구든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모든 사람에게서 돈을 몽땅 따냈다면 그는 도박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딴 돈의 대부분을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안될것이다.》(삔또 《류통및신용론》, 1771년 암스테르담판, 231페지)

곡물을 그 가치보다 높게 팔수도 있으며 또는 의복을 그 가치보다 낮게 살수도 있다. 또 그는 의복상인에게 속을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치의 차이는 이 류통형태자체에 대하여서는 전적으로 우연한것이다. 이 류통형태는 그 량극 례컨대 곡물과 의복이 등가물로 되여있다 하더라도 결코 과정 G-W-G처럼 그 의의를 상실하는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량극의 가치가 동일하다는것이 이 류통형태의 정상적진행조건인것이다.

구매를 위한 판매의 반복 또는 갱신은 이 과정자체와 마찬가지로 이 과정밖에 있는 종국적목적 즉 소비 또는 일정한 욕망의 충족에 그 한도와 목표가 있다. 이와 반대로 판매를 위한 구매에서는 시초와 종말이 같은 물건 즉 화폐이며 교환가치이다. 그러므로 벌써 이것으로 해서도 이 운동은 무한한 것으로 된다. 확실히 G가 G+⊿G로 되며 100파운드가 100+10파운드로 된다. 그러나 단지 질적측면에서만 보면 110파운드는 100파운드와 같은 물건 즉 화폐이다. 또 량적측면에서 보아도 110파운드는 100파운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한정된 가치액이다. 만약 이 110파운드가 화폐로서 지출된다면 그것은 자기의 역할을 놀지 않게 될것이다. 그것은 더는 자본으로 되지 않는다. 또 만약 그것을 류통에서 물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축장화폐로 응고되여 설사 세계의 최후의 심판일까지 보존된다 할지라도 동전 한푼 더 붙지 않을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가치증식이 문제로 되면 증식의 욕망은 110파운드의 경우에도 100파운드의 경우와 같게 된다. 왜냐 하면 량자는 모두 교환가치의 한정된 표현이고 따라서 량자는 모두 량적증대에 의하여 절대적부에 접근하여야 할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최초에 선대된 100파운드의 가치는 류통중

에 거기에 첨가된 10파운드의 잉여가치와 한순간 구별되는것은 사실이나 이 구별은 곧 또다시 사라진다. 과정이 끝날 때 한편으로는 100파운드라는 본래의 가치가 나오고 다른편으로는 10파운드라는 잉여가치가 나오는것은 아니다. 나오는것은 110파운드라는 단일한 가치이고 그것은 최초의 100파운드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가치증식과정을 개시하는데 적합한 형태에 있다. 화폐는 운동의 종말에 가서 다시 운동의 시초로서 나타난다.(5) 그러므로 판매를 위한 구매가 수행되는 매개의 개별적순환의 종결은 자연히 하나의 새로운 순환의 시초로 된다. 단순한 상품류통—구매를 위한 판매—은 류통밖에 있는 궁극적목적 즉 사용가치의 취득, 욕망의 충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된다. 이와 반대로 자본으로서의 화폐의 류통은 자기목적인것이다. 왜냐 하면 가치의 증식은 부단히 갱신되는 이 운동의 내부에서만 존재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의 운동에는 한계가 없다.(6)

---

(5) 《자본은…원자본과 리윤 즉 자본의 증식분으로 나뉘여진다. —비록 실지로는 이 리윤을 즉시로 다시 자본에 첨가하여 자본과 함께 회전하게 하는것이지만.》(F. 엥겔스 《정치경제학비판대강》, 아르놀드 루게와 칼 맑스가 편찬한 잡지 《독프년지》, 1844년 빠리판, 99페지에 수록)

(6)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정술을 화식술에 대립시켰다. 그는 가정술로부터 출발한다. 가정술은 생계술인 한에서는 그것은 생활에 필요한 재물과 가정 또는 국가에 유용한 재물을 조달하는데 국한된다. 《진정한 부는 이와 같은 사용가치들로 형성된다. 왜냐 하면 만족스러운 생활에 필요한 이와 같은 종류의 소유물은 그 분량이 무한하지는 않기때문이다. 그러나 생계술에는 정당하게도 화식술이라고 하는 다른 한 종류의것이 있다. 이것에는 부와 소유물의 한계가 없는것 같이 보인다. 상품거래 (《καπηλική》라는 말은 문자그대로는 소매상업을 의미하는것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형태를 취한 리유는 소매상업에서는 사용가치가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고있기때문이다.)는 본래 화식술에 속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이 경우에 있어서 교환은 그들자신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필요한 물건에만 국한되기때문이다.》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설명한다. 그런 까닭에 상품거래의 시초형태는 물물교환이였고 그 확대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화폐가 발생하였다. 화폐의 발명과 더불어 물물교환은 필연적으로 상품거래에로 발전하지 않을수 없었고 또 이 상품거래는 그 본래의 경향과는 반대방향인 화식술에로 즉 돈벌이에로 전화되였다. 화식술이 가정술과 구별되는 점은 《화식술에 있어서는 류통이 부의 원천으로

이 운동의 의식적인 담당자로서 화폐소유자는 자본가로 된다. 그의 인격 또는 더 정확히 말하여 그의 주머니가 화폐의 출발점이며 귀착점이다. 이러한 류통의 객관적내용—가치의 증식—은 그의 주관적목적이고 또 추상적부의 가일층의 점유가 그의 활동의 유일한 추진적동기로 되는 한에 있어서만 그는 자본가로서 또는 인격화된, 의지와 의식이 부여된 자본으로서 기능한다. 그러므로 사용가치를 결코 자본가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간주할수는 없다.(7) 또한 그의 목적은 개개의 리윤획득이 아니라 리윤획득의 끊임없는 운동이다.(8) 이러한 절대적치부의 충동, 이러한 열정적인 가치추구(9)는 자본가와 화폐축장자에게 공통적인것이지만 그러나 화폐축장자는 얼빠진 자본가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자본가는 리성적

된다. 그리고 화식술은 화폐를 중심으로 하는것 같이 보인다. 왜냐 하면 화폐는 이 종류의 교환의 시초이며 종말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 화식술이 추구하는 부도 역시 무한한것이다. 목적을 위한 수단을 추구하는데 그치는 술은 이 목적자체가 수단에 한계를 설정하는 까닭에 무제한한것이 아니지만 그 목적을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최종목적으로 하는 술은 모두다 그 목적에 가일층 접근하려고 시도하는 까닭에 그 추구에는 한계가 없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화식술에서도 그 목표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것이 목표로 하는것은 절대적치부이다. 화식술과는 달리 가정술은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화식술은 화폐의 증식만을 목적으로 하지만 가정술은 화폐 그자체와는 다른것을 목적으로 한다.…서로 교차되여있는 이 두 형태의 혼동으로 하여 어떤 사람들은 화폐를 무한하게 보존, 증식하는것을 경제의 궁극적목적으로 간주하게 되였다.》(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베케르 편찬, 제1편, 제8장 및 제9장의 여러곳.)

(7) 《상품 (여기에서는 사용가치라는 의미이다.) 은 산업자본가의 최종목적이 아니다.…화폐가 그의 최종목적이다.》(Th. 챠머즈 《사회의 도덕적상태 및 도덕적전망과 관련된 정치경제학에 관하여》, 1832년 글라스고 제2판, 165~166페지)

(8) 《상인은 이미 획득한 리윤을 경시하지는 않지만 그의 눈은 항상 장래의 리윤에 돌려진다.》(A. 제노베씨 《시민경제학강의》(1765년판), 꾸스또디 편찬, 《이딸리아정치경제학고전저작가론문집 · 현대편》, 제8권, 139페지에 수록)

(9) 《리윤에 대한 억제할수 없는 정열, 금에 대한 저주할 정도의 갈망이 항상 자본가를 규정한다.》(머칼러크 《정치경제학원리》, 1830년 런던판, 179페지) 이러한 견해는 물론 머칼러크와 그의 일파가 리론적으로 난관에 봉착할 때에 레컨대 과잉생산을 연구할 때에 여전히 자본가를 선량한 시민으로 전화시키는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선량한 시민은 오직 사용가치만을 문제로 하며 오직 구두, 모자, 계란, 면직물 기타 가장 평범한 종류의 사용가치만을 굶주린 승냥이처럼 탐낸다는것이다.

인 화폐축장자이다. 화폐축장자는 화폐를 류통에서 구출해냄으로써(10) 가치의 쉴새없는 증식을 달성하려고 하지만 보다 령리한 자본가는 화폐를 끊임없이 류통에 투입함으로써 그것을 달성한다.(10a)

상품가치가 단순한 류통에서 취하는 독립적인 형태 즉 화폐형태는 다만 상품교환을 매개할뿐이고 운동의 종국적결말에 가서는 소멸된다. 이와 반대로 류통 G—W—G에서는 상품도 화폐도 가치자체의 각이한 존재방식으로서만 기능한다. 즉 화폐는 가치의 일반적존재방식으로서, 상품은 가치의 특수한 이를테면 가장한 존재방식으로서 기능한다.(11) 가치는 이 운동에서 없어지지 않고 부단히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이행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자동적인 주체로 전화된다. 만약 증식하는 가치가 자기 생활의 순환에서 번갈아 취하는 특수한 현상형태들을 고정시킨다면 다음과 같은 설명을 얻게 될것이다. 자본은 화폐이며 자본은 상품이다.(12)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가치는 이 경우에 한 과정의 주체로 되며 이 과정에서 부단히 화폐와 상품으로 형태를 변환하면서 자기자신의 크기를 변동시키며 원가치로서의 자기자신으로부터 잉여가치로서의 자신을 리탈시켜 자기자신을 증식시킨다. 가치가 잉여가치를 자체에 첨가하는 운동은 가치자신의 운동이

---

(10) 《Σωζειυ》 (구출한다) 라는 말은 축재를 의미하는 희랍어에 특유한 표현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어의 《to save》 라는 말은 구출한다는 의미와 축장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있다.

(10a) 《물건은 전진할 때에는 가지지 못하는 무한성을 순환할 때에는 가진다.》 (갈리아니 (《화폐론》, 156페지))

(11) 《자본을 구성하는것은 물질이 아니라 이 물질의 가치이다.》 (J. B. 쎄 《정치경제학개론》, 1817년 빠리 제3판, 제2권, 429페지)

(12) 《생산적목적에 사용된 통화 (!) 는 자본이다.》 (머클라우드 《은행업의 리론과 실천》, 1855년 런던판, 제1권, 제1장, 55페지) 《자본은 상품이다.》 (제임즈 밀 《정치경제학원리》, 1821년 런던판, 74페지)

며 따라서 가치의 증식은 자기증식인것이다. 가치는 그자체가 가치인 까닭에 가치를 낳는다는 신비한 성질을 획득하였다. 가치는 산 새끼를 치거나 또는 적어도 금알을 낳는다.

가치는 화폐형태와 상품형태를 때로는 취하고 때로는 버리며 동시에 이러한 변환속에서 자기를 유지하며 확대하는데 이러한 과정의 지배적주체로서 가치는 무엇보다도먼저 자기자체와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하나의 자립적인 형태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가치는 오직 화폐로서만 이 형태를 가진다. 그런 까닭에 화폐는 온갖 가치증식과정의 출발점과 종결점으로 된다. 그것은 전에는 100파운드였으나 지금은 110파운드이다, 등등. 그러나 화폐 그자체는 여기에서 다만 가치의 한 형태로서 통용될뿐이다. 왜냐 하면 가치는 두 형태를 가지기 때문이다. 화폐는 상품형태를 취함이 없이는 자본으로 될수 없다. 그러므로 화폐는 여기서 축장화폐형성의 경우처럼 상품에 대하여 대항적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온갖 상품은 그것이 아무리 초라하게 보이며 아무리 고약한 냄새를 풍기더라도 믿음과 진실에 있어서는 화폐이며 내부적으로 할례를 받은 유태인이며 또한 화폐를 더 많은 화폐로 만드는 기적적인 수단이라는것을 자본가는 알고있다.

단순한 류통에서는 상품의 가치는 상품의 사용가치에 대립하여 기껏해서 자립적인 화폐형태를 취할뿐이나 여기서는 그것은 운동과정에 있으며 자체운동하는 하나의 실체로서 돌연히 나타난다. 상품과 화폐는 다만 이 실체의 두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제는 가치가 상품관계를 표현할 대신에 이를테면 자기자신에 대하여 사적관계에 들어선다. 신이 아버지신으로서의 자신을 아들신으로서의 자기자신과 구별하듯이 가치도 원가치로서의 자신을 잉여가치로서

의 자기자신과 구별한다. 그러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다 나이가 같고 또 실지는 한몸인것이다. 왜냐 하면 10파운드의 잉여가치에 의해서만 선대된 100파운드는 자본으로 되며 또 그것이 자본으로 되자마자 즉 아들이 생겨나고 아들에 의하여 아버지가 생겨나자마자 량자의 구별은 다시 소멸되여 량자는 110파운드라는 하나의 존재로 되기때문이다.

이리하여 가치는 과정중에 있는 가치, 과정중에 있는 화폐로 되며 또 그러한것으로서 그것은 자본으로 된다. 가치는 류통에서 나왔다가 다시 류통에 들어가며 류통속에서 자신을 유지, 증식하며 더 커져가지고 류통으로부터 되돌아와서 동일한 순환을 항상 또다시 개시한다.(13) G—G′, 화폐를 낳는 화폐—money which begets money,[159]—이것이 자본의 최초의 대변자인 중상주의자들의 입을 통하여 나온 자본의 묘사이다.

팔기 위하여 사는것, 또는 더 완전하게 말하면 더 비싸게 팔기 위하여 사는것, G—W—G′는 오직 자본의 한 종류인 상인자본에만 특유한 형태인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산업자본도 역시 상품에로 전화하였다가 상품의 판매에 의하여 더 많은 화폐로 재전화하는 그러한 화폐이다. 구매와 판매의 중간에서 즉 류통분야의 외부에서 수행되는 행위들은 이러한 운동의 형태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리자부자본에서는 류통 G—W—G′는 단축되여 매개가 없는 결과로서, 말하자면 간결체로서 G—G′ 즉 더 많은 화폐와 같은 화폐, 그 자신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로서 표시된다.

---

(13) 《자본은…부단히 증대되는 가치이다.》 (씨스몽디 《정치경제학의 새 원리》, 제1권, 88~89페지)

그러므로 G-W-G′는 사실상 직접 류통분야에 나타나는 자본의 일반적공식이다.

2. 일반적공식의 모순

화폐가 번데기의 상태를 벗어나 자본으로 성장하는 류통형태는 상품, 가치, 화폐 및 류통자체의 본성에 관한 우에서 전개한 모든 법칙과 모순된다. 이 형태가 단순한 상품류통과 구별되는 점은 판매와 구매라는 동일한 두 대립적과정의 순서가 거꾸로 되여있는데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순전히 형식상의 구별이 이 과정의 본성을 어떻게 그처럼 마술적으로 변화시킬수 있는가?

그뿐만이 아니다. 이 전도된 순서는 서로 거래하는 세 거래자중 오직 한사람에게만 존재한다. 나는 자본가로서는 상품을 A에게서 사고 다음에 그것을 B에게 파나 단순한 상품소유자로서는 상품을 B에게 팔고 다음에 상품을 A에게서 산다. 거래자 A와 B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구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상품의 구매자 또는 판매자로서 등장할뿐이다. 나자신도 그들에 대하여 번번이 단순한 화폐소유자 또는 상품소유자로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로서 대립한다. 그리고 나는 이 두 순서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한사람에게는 다만 구매자로서, 또 다른 한사람에게는 다만 판매자로서 즉 한사람에게는 다만 화폐로서 또 다른 한사람에게는 다만 상품으로서 대립하는것이지 결코 쌍방의 어느 사람에게도 자본 또는 자본가로서 대립하는것이 아니다. 다시말하면 화폐 또는 상품이상의 어떤 물건의 대표자로서, 화폐 또는 상품에 고유

한 작용이외의 작용을 할수 있는것의 대표자로서 대립하는것이 아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A로부터의 구매와 B에게의 판매는 하나의 순서를 이루고있다. 그러나 이 두 행위간의 련관은 다만 나에게 있어서만 존재한다. A는 나와 B와의 거래에는 상관이 없으며 또 B는 나와 A와의 거래에는 상관이 없다. 만약 내가 거래의 순서를 거꾸로 한것이 특별한 공적이라고 그들에게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내가 바로 이 순서를 잘못 보았다는것, 전체 거래는 구매로 시작되여 판매로 끝난것이 아니라 반대로 판매로 시작되여 구매로 끝났다는것을 나에게 증명할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나의 제1행위인 구매는 A의 립장에서는 판매였고 또 나의 제2행위인 판매는 B의 립장에서는 구매였다. A와 B는 이것으로써는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이 순차전체는 쓸데없는것이고 하나의 속임수였다고 언명할것이다. A는 상품을 직접 B에게 팔수 있을것이며 또 B는 그것을 직접 A에게서 살수 있을것이다. 이리하여 전체 거래는 보통 상품류통의 일면적행위로 되여버린다. 즉 A의 립장에서는 단순한 판매로 또 B의 립장에서는 단순한 구매로 되여버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하여도 결코 단순한 상품류통의 분야를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오히려 이 류통분야가 그 성질상 자기 분야에 들어오는 가치의 증식을, 따라서 잉여가치의 형성을 허용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류통과정이 단순한 상품교환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고찰하여보자. 두 상품소유자가 서로 상대방의 상품을 사고 호상간의 화폐청구액의 차액을 지불기일에 결제할 때에 언제나 그런 형태를 취한다. 이 경우에 화폐는 계산화폐로 되여 상품의 가치를 그 가격으로 표현하는데 쓰이나 물적으로 상품

자체에 대립하지는 않는다. 사용가치가 문제인 한에 있어서는 분명히 교환자 쌍방이 모두 리득을 볼수 있다. 쌍방은 모두 자기에게 사용가치로서는 쓸데없는 상품을 양도하고 자기들의 사용에 필요한 상품을 받는다. 그러나 리득은 이것만이 아닐것이다. 포도주를 팔고 곡물을 사는 A는 아마 동일한 로동시간내에 곡물경작자 B가 생산할수 있는것보다 더 많은 포도주를 생산할것이며 또 곡물경작자 B는 동일한 시간내에 포도재배자 A가 생산할수 있는것보다 더 많은 곡물을 생산할것이다. 그리하여 그들 각자가 교환에 의거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포도주와 곡물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보다는 동일한 교환가치로 A는 더 많은 곡물을, B는 더 많은 포도주를 받는다. 따라서 사용가치에 관해서는 《교환은 쌍방에게 리득을 주는 거래이다.》(14)라고 말할수 있다. 교환가치에 있어서는 이와 다르다.

《포도주는 많이 가졌지만 곡물은 조금도 가지지 못한 어떤 사람이 곡물은 많이 가졌지만 포도주는 조금도 가지지 못한 다른 어떤 사람과 거래관계를 맺고 그들간에 50의 가치를 가지는 밀이 50의 가치를 가지는 포도주와 교환된다고 하자. 이 교환은 전자에게 있어서나 후자에게 있어서나 교환가치의 증가가 아니다. 왜냐 하면 그들 각자는 이 거래에 의하여 얻은것과 동일한 가치를 벌써 교환이전에도 소유하고있었기때문이다.》(15)

화폐가 류통수단으로서 상품과 상품사이에 끼여들어 구매행위와 판매행위가 감각적으로 분리된다 하더라도 사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16) 상품의 가치는 류통에 들어가기

---

(14) 《교환은 교환자 쌍방이 언제든지 (!) 리득을 보는 기이한 거래이다.》(데스뛰뜨 드 뜨라씨 《의지와 그 작용에 대하여》, 1826년 빠리판, 68페지) 이 책은 《정치경제학개론》이라는 표제로도 출판되였다.

(15) 매르씨에 드 라 리비에르 《정치사회의 자연적 및 본질적 질서》, 544페지.

(16) 《이 두 가치중 하나가 화폐이든 또는 그 량자가 모두 보통상품이든 그것은 그 자체로서는 전혀 아무 상관도 없다.》(우와 같은 책, 543페지)

전에 그 가격으로 표현되여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류통의 전제이지 그 결과가 아니다.(17)

추상적으로 고찰한다면 즉 단순한 상품류통의 내재적법칙들로부터는 산생되지 않는 사정들을 도외시한다면 단순한 상품류통내부에서 일어나는것은 한 사용가치의 다른 사용가치에 의한 대체외에는 오직 상품의 변태, 상품의 단순한 형태변환뿐이다. 동일한 가치가 즉 동일한 분량의 대상화된 사회적로동이 동일한 상품소유자의 수중에서 처음에는 상품의 모습으로 다음에는 상품이 전화된 화폐의 모습으로 마지막에는 이 화폐가 재전화된 상품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형태변환은 가치량의 어떠한 변동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품가치자체가 당하는 변화는 그 화폐형태의 변화에 국한된다. 이 화폐형태는 처음에는 판매에 제공되는 상품의 가격으로서 다음에는 이미 가격으로 표현되여있던 어떤 화폐액으로서 마지막에는 등가상품의 가격으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형태변환은 5파운드은행권을 소버린금화나 반소버린금화나 실링은화로 바꾸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자체로서는 가치량의 변동을 조금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상품의 류통이 다만 상품가치의 형태변환만을 일으키는 한 상품의 류통은 현상이 순수한 형태로 진행된다면 등가물간의 교환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가치란 무엇인가를 전혀 리해하지 못하는 속류경제학까지도 자기 식으로나마 현상을 순수한 형태에서 고찰하려고 할 때에는 언제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다는것을, 다시말하면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작용은 소멸된다는것을 가정한다. 그러므로 사용가치에 관해서는 교

---

(17) 《계약당사자들이 가치를 결정하는것이 아니다. 가치는 계약체결전에 벌써 확정되여있다.》(르 뜨론 《사회적리익에 관하여》, 906페지)

환자 쌍방이 리득을 볼수 있다 하더라도 교환가치에 있어서는 쌍방이 리득을 볼수 없다. 반대로 여기에서는 《평등이 있는 곳에는 리득이 없다.》(18)고 말해야 할것이다. 물론 상품은 그 가치로부터 배리된 가격으로 팔릴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배리는 상품교환법칙의 위반이다.(19) 상품교환은 그 순수한 형태에서는 등가물간의 교환이고 따라서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단으로는 될수 없다.(20)

그러므로 상품류통을 잉여가치의 원천으로 간주하려는 시도의 배후에는 보통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와의 혼동이 숨어 있다. 례컨대 꽁디야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상품교환에서 동등한 가치가 동등한 가치와 교환된다고 하는것은 옳지 않다. 그 반대이다. 두 계약당사자는 각자가 항상 보다 큰 가치에 대하여 보다 작은 가치를 내준다.…만약 실지로 동등한 가치만을 서로 교환한다면 계약당사자의 어느쪽도 리득을 보지 못할것이다. 그러나 쌍방은 모두 리득을 보며 또는 적어도 리득을 보아야 한다. 왜 그런가? 물건의 가치라는것은 그 물건과 우리들의 욕망과의 관련속에서만 존재하기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 보다 많이 필요되는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다 적게 필요되며 또 그 반대이다.…우리가 자기자신의 소비에 불가결한 물건을 판매에 내놓는 일은 결코 없다.…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쓸데없는 물건을 내놓으려고 한다. 우리는 많이 받고 적게 주기를 원한다.…교환되는 매개 물건들이 가치에 있어서 같은 액의 화폐와 같을 때에는 교환에서 같은 가치에 대하여 같은 가치를 제공하는것이라고 판단하는것은 당연한 일이였

---

(18) 갈리아니 《화폐론》, 꾸스또디 편찬, 《이딸리아정치경제학고전저작가론문집·현대편》, 제4권 244페지에 수록.

(19) 《어떤 외부적사정이 가격을 인하 또는 인상시킬 때에 교환은 일방에 불리하게 된다. 그때에는 평등이 침해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외부적원인에 기인하는것이고 교환자체에 기인하는것은 아니다.》(르 뜨론 《사회적리익에 관하여》, 904페지)

(20) 《교환은 그 성질상 평등에 기초하는 계약이며 동일한 두 가치간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따라서 그것은 치부의 수단이 아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는 받는것만큼 주기 때문이다.》(우와 같은 책, 903~904페지)

다.…그러나 또한 사물의 다른 한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들은 쌍방이 모두 필요한 물건을 얻기 위하여 남은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21)

보는바와 같이 꽁디야끄는 비단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혼동하고있을뿐만아니라 참으로 유치하게도 상품생산이 발달한 사회를, 생산자자신이 자기의 생활수단을 생산하여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남는 초과분 즉 잉여분만을 류통에 투입하는 그러한 상태로 슬쩍 바꾸어놓았다.(22) 그럼에도 불구하고 꽁디야끄의 의론은 가끔 현대경제학자들사이에서 반복되고있는데 상품교환의 발전된 형태인 상업을 잉여가치의 원천이라고 설명하려 할 때에 바로 그러하다. 레컨대 아래와 같이 말하고있다.

《상업은 생산물에 가치를 첨가한다. 왜냐 하면 동일한 생산물이 소비자의 수중에서는 생산자의 수중에서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지기때문이며 따라서 상업은 엄밀히 말하여 생산행위로 보지 않으면 안된다.》(23)

그러나 사람들은 상품에 대하여 이중으로 대가를 지불하는것이 아니다. 즉 한번은 그 사용가치에 대하여 지불하고 또 한번은 그 가치에 대하여 지불하는것이 아니다. 또 만약 상품의 사용가치가 판매자에게보다도 구매자에게 더 유용하다면 상품의 화폐형태는 구매자에게보다도 판매자에게 더 유

---

(21) 꽁디야끄 《상업과 정부》(1776년), 대르 및 몰리나리 편찬, 《정치경제학론문집》, 1847년 빠리판, 267, 291페지에 수록.

(22) 그러므로 르 뜨론은 극히 정당하게도 자기의 벗 꽁디야끄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있다. 《발달한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여분도 없다.》 동시에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써 꽁디야끄를 야유하고있다. 《만약 교환자쌍방이 모두 꼭같이 덜 주고 꼭같이 많이 받는다면 그들 쌍방은 모두 꼭같이 받는것으로 된다.》 꽁디야끄가 교환가치의 본성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있었기때문에 교수 윌헬름 로쉐르씨는 그를 자기자신의 유치한 개념을 론증하는데 가장 적당한 증인으로 삼았던것이다. 로쉐르의 《국민경제학원리》, 1858년, 제3판 (102~103, 190~191페지) 를 보라.

(23) S. Ph. 뉴먼 《정치경제학원리》, 1835년 앤도버 및 뉴욕판, 175페지.

용하다. 그렇지 않으면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겠는가?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말할수 있을것이다. 즉 구매자는 례컨대 상인의 양말을 화폐로 전화시킴으로써 문자그대로 일종의 《생산행위》를 수행하는것이다라고.

만약 교환가치가 같은 상품과 상품이, 또는 교환가치가 같은 상품과 화폐가, 다시말하면 등가물들이 서로 교환된다면 분명히 누구나 류통에 투입하는것 이상의 가치를 류통에서 끌어내지 못한다. 그런 경우에는 잉여가치가 형성되지 못한다. 상품의 류통과정은 그 순수한 형태에서는 등가물간의 교환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과정이 순수한 형태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등가물의 교환을 가정하여보자.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상품시장에서는 다만 상품소유자가 상품소유자에 대립할뿐이며 이 사람들이 상호간에 행사하는 권력은 그들의 상품의 권력에 지나지 않는다. 상품의 물질적차이는 교환의 물질적동기이며 상품소유자들을 서로 상대방에 의존하게 한다. 왜냐 하면 그들중의 누구도 자기자신의 욕망의 대상을 가지고있지 않고 그들 각자는 타인의 욕망의 대상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상품의 사용가치의 이러한 물질적차이외에 상품들간에 또 하나의 구별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상품들의 자연적형태와 그 전화된 형태간의 구별, 상품과 화폐간의 구별뿐이다. 그리하여 상품소유자들은 오직 판매자 즉 상품의 소유자와 구매자 즉 화폐의 소유자로서만 서로 구별된다.

이제 판매자가 어떤 설명할수 없는 특권에 의하여 상품을 그 가치이상으로 례컨대 100의 가치가 있는것을 110으로 즉 가격을 명목상 10% 인상하여 팔수 있게 되였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판매자는 10의 잉여가치를 얻게 된다. 그러나

그는 판매자로 된 다음에 구매자로 된다. 이번에는 어떤 제3의 상품소유자가 판매차로서 그의 앞에 나타나 상품을 10% 비싸게 파는 특권을 행사한다. 우에서 말한 그 사람은 판매자로서는 10을 리득보았으나 구매자로서는 10을 손해본것이다.(24) 실지 모든 사태는 상품소유자전체가 자기들의 상품을 호상간 그 가치보다 10% 비싸게 파는것으로 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상품을 가치대로 판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상품가격의 이와 같은 전반적인 명목적인상은 상품가치가 례컨대 금대신에 은으로 평가되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한다. 상품의 화폐적명칭 즉 상품의 가격은 등귀하겠지만 상품가치들간의 관계는 의연히 변하지 않을것이다.

반대로 구매자가 상품을 그 가치이하로 살 특권을 가지고있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구매자가 다시 판매자로 된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조차 없다. 그는 구매자로 되기전에 판매자였던것이다. 그는 그가 구매자로서 10%의 리득을 얻기전에 벌써 판매자로서 10%를 잃어버렸던것이다.(25) 사태는 역시 종전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잉여가치의 형성, 따라서 화폐의 자본에로의 전화는 판매자가 상품을 가치이상으로 판다는것으로써도 또 구매자가 그것을 가치이하로 산다는것으로써도 설명할수 없다.(26)

---

(24) 《생산물의 명목가치의 인상에 의해서는…판매자는 치부하지 못한다.…왜냐 하면 그가 판매자로서 얻는 그만큼한것을 다시 구매자로서 지출하기때문이다.》(〔J. 그레이〕 《제 국민의 부의 기본원리의 설명》, 1797년 런던판, 66페지)

(25) 《만약 어떤 판매자가 24리브르의 가치를 가진 일정한 분량의 생산물을 18리브르에 팔지 않을수 없다면 그는 이 같은 화폐액을 구매에 사용할 때 마찬가지로 24리브르로 얻는것과 같은 분량의 물건을 18리브르로 얻을것이다.》(르 뜨론 《사회적리익에 관하여》, 897페지)

(26) 《그러므로 어떤 판매자든지 다른 판매자의 상품에 대하여 항상 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상품을 항상 비싼 값으로 팔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 리유로 어떤 소비자든지 그가 파는 물건값을 같은 정도로 낮추지 않고서는 그가 사는 모든 물

이제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제 관련을 슬쩍 밀어넣어 레컨대 토런즈대좌와 더불어 다음과 같이 말해보았댔자 문제는 조금도 간단하게 되지 않는다.

《유효수요는 직접적교환에 의해서든지 또는 간접적교환에 의해서든지간에 상품의 대가로서 자본의 전체 구성부분중 그 상품의 생산에 든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지불하는 소비자의 능력 및 성향(!)에 있다.》(27)

류통에 있어서 생산자와 소비자는 판매자와 구매자로서만 서로 대립한다. 생산자가 획득하는 잉여가치는 소비자가 상품에 대하여 가치이상으로 지불하는데서 발생한다고 주장하는것은 상품소유자가 판매자로서 가치이상으로 팔 특권을 가지고있다는 간단한 명제를 분석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판매자는 상품을 자신이 생산하였거나 그 상품의 생산자를 대표한것이며 마찬가지로 구매자도 그의 화폐로 표현된 상품을 자신이 생산하였거나 그 상품의 생산자를 대표한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대립하는것은 생산자와 생산자이다. 그들을 구별하는것은 일방은 사고 타방은 판다는 사실이다. 상품소유자가 생산자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그 가치이상으로 팔고 소비자라는 이름으로는 상품에 높은 가격을 지불한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일보도 전진시키지 못한다.(28)

그러므로 잉여가치가 명목상의 가격인상에서 또는 상품을 가치이상으로 팔수 있는 판매자의 특권에서 발생한다고 하는 환상을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판매함이 없이

건에 대하여 싼 값을 지불할수 없다.》(매르씨에 드 라 리비애르 《정치사회의 자연적 및 본질적 질서》, 555페지)

(27) R. 토런즈 《부의 생산에 관한 론술》, 1821년 런던판, 349페지.

(28) 《리윤은 소비자가 지불한다는 관념은 확실히 아주 황당하다. 이 소비자란 누구인가?》(G. 램지 《부의 분배에 관한 론술》, 1836년 에딘버러판, 183페지)

오직 구매만 하며 따라서 또 생산함이 없이 오직 소비만 하는 하나의 계급을 가정하는것이다. 이와 같은 계급의 존재는 우리가 이때까지 도달한 립장 즉 단순한 류통의 립장에서는 아직 설명될수 없다. 그러나 우선 그런 계급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와 같은 계급이 부단히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화폐는 교환을 거치지 않고 무상으로 어떤 권원 또는 폭력원에 의하여 상품소유자들로부터 이 계급에게로 부단히 흘러들어가야 할것이다. 이러한 계급에게 상품을 가치이상으로 판다는것은 오직 무상으로 내여준 화폐의 일부분을 속여서 다시 찾아오는것을 의미할따름이다.(29) 례컨대 소아시아의 도시들은 고대로마에 매년 화폐를 공납하였다. 로마는 이 화폐를 가지고 이 도시들에서 상품을 샀는데 그것도 대단히 비싼 값으로 샀다. 소아시아인들은 상업을 통하여 자기의 정복자에게 공납의 일부분을 속여내여 회수함으로써 로마인을 속였다. 그러나 속은자는 역시 소아시아인이였다. 그들의 상품의 대가는 의연히 그들자신의 화폐로 지불하였던것이다. 이러한것은 결코 치부하거나 또는 잉여가치를 형성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매자가 동시에 구매자이며 구매자가 동시에 판매자인 상품교환의 한계내에 머물러있기로 하자. 우리가 유혹당하게 된것은 아마 인물들을 인격화된 범주로서만 고찰하고 개인으로서는 고찰하지 않은데 기인할것이다.

상품소유자 A는 대단히 교활하여 자기의 거래자인 B나

---

(29) 《어떤 사람이 수요의 부족을 느낄 때에 말사스씨는 그에 대하여 어떤 다른 사람에게 그의 상품을 사게 하기 위하여 화폐를 주라고 충고하겠는가?》 이와 같이 리카도학파에 속하는 어떤 사람은 분노하여 말사스에게 질문하였는데 말사스는 그의 제자인 슴퍼 차머즈와 마찬가지로 순전한 구매자계급 또는 순전한 소비자계급을 경제학적으로 찬양하였던것이다. 《최근 말사스씨가 주장하는 수요의 성질과 소비의 필요성에 관한 원리의 연구》, 1821년 런던판, 55페지를 보라.

C에게 속여 파는데 B나 C는 아무리 보복하려고 해도 할수 없다고 하자. A는 40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포도주를 B에게 팔고 그대신에 50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곡물을 얻었다고 하자. A는 자기의 40파운드를 50파운드로 전화시켰으며 적은 화폐를 많은 화폐로 만들었으며 자기의 상품을 자본으로 전화시켰다. 좀더 자세히 보기로 하자. 교환전에는 40파운드의 포도주가 A의 수중에 있었고 50파운드의 곡물이 B의 수중에 있었으며 총가치는 90파운드였다. 교환후에도 총가치는 변함없이 90파운드이다. 류통하고있는 가치는 한푼도 증가되지 않았으나 A와 B간의 그 가치의 분배는 변동되였다. 한편에는 잉여가치로 되는것이 다른편에는 부족가치로 되며 한편에는 플라스로 되는것이 다른편에는 마이나스로 된다. A가 교환이라는 엄폐된 형태를 거치지 않고 B에게서 10파운드를 직접 훔쳐냈다고 하더라도 이와 동일한 변화가 일어날것이다. 류통하고있는 가치의 총액은 그 분배에서의 어떠한 변화에 의해서도 증가될수 없다는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마치 어떤 유태인이 앤녀왕시대의 1파싱동화를 1기니금화를 받고 판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써는 일국내의 귀금속의 총량이 증가하지 않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일국의 자본가계급전체가 자기자신을 속임으로써 돈벌이를 할수는 없다.(30)

이와 같이 아무리 이모저모 따져보아도 결과는 의연히 동일하다. 만약 등가물이 서로 교환된다면 아무런 잉여가치도 생기지 않으며 또 설사 비등가물이 서로 교환된다고 하더

---

(30) 데스뛰뜨 드 뜨라씨는 학사원[160]의 회원이였음에도 불구하고(또는 아마 그의 회원이였던 까닭에)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가지고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산업자본가들은 《모든 물건을 그 생산에 든 비용이상으로 비싸게 파는데 의하여 리윤을 얻는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에게 파는가? 우선 호상간에서이다.》 (데스뛰뜨 드 뜨라씨 《의지와 그 작용에 대하여》, 239페지)

라도 잉여가치는 조금도 생기지 않는다.(31) 류통 또는 상품교환은 아무런 가치도 창조하지 않는다.(32)

이상에서 설명한바에 의하여 우리가 자본의 기본형태 즉 현대사회의 경제조직을 규정하는 그러한 자본의 형태를 분석함에 있어서 왜 자본의 통속적인 말하자면 대홍수이전의 제 형태인 상업자본과 고리대자본을 당분간 전혀 고려에 넣지 않는가 하는것을 리해할수 있을것이다.

본래의 상업자본에서 형태 G-W-G′, 더 비싸게 판매하기 위한 구매가 가장 순수하게 나타난다. 다른 한편 이 상업자본의 전체 운동은 류통분야의 내부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류통 그자체로부터는 화폐의 자본에로의 전화, 잉여가치의 형성을 설명할수 없으므로 등가물이 서로 교환되는 한에서는 상업자본은 존재할수 없는것으로 보이며(33) 따라서 상업자본의 존재는 오직 구매하는 상품생산자와 판매하는 상품생산자

---

(31) 《같은 두 가치간의 교환은 사회에 있는 가치의 총량을 증가시키지도 않으며 감소시키지도 않는다. 같지 않은 가치간의 교환도… 역시 사회의 가치의 총액을 조금도 변동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한사람의 재산에서 빼앗아온것을 다른 사람의 재산에 첨가할뿐이다.》(J. B. 쎄 《정치경제학개론》, 1817년 빠리 제3판, 제2권, 443~444페지) 쎄는 이 명제에서 나오는 결론에 대해서는 물론 조금도 고려함이 없이 이것을 거의 문자 그대로 중농학파들에게서 차용하고있다. 그가 자기자신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망각되여있던 중농학파들의 저작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리용하였는가는 다음의 실례에서 알수 있다. 《생산물은 오직 생산물로써만 구매된다.》(우와 같은 책, 제1권 438페지)라는 쎄씨의 《가장 유명한》 명제는 중농학파의 원문에는 다음과 같이 되여있다. 《생산물은 오직 생산물로써만 지불된다.》(르 뜨론 《사회적리익에 관하여》, 899페지)

(32) 《교환은 생산물에 어떤 가치도 첨부하지 않는다.》(F. 웨일런드 《정치경제학원리》, 1843년 보스톤판, 169페지)

(33) 《불변적인 등가물들의 지배하에서는 상업은 불가능할것이다.》(G. 오브다이크 《정치경제학에 관한 론술》, 1851년 뉴욕판, 66~67페지) 《실제적가치와 교환가치의 구별은 물건의 가치는 상업에서 그 물건에 주어지는 소위 등가물과는 다르다는것, 다시말하면 이 등가물은 등가물이 아니라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있다.》(F. 엥겔스 《정치경제학비판대강》, 아르놀드 루게와 칼 맑스가 편찬한 잡지 《독프년지》, 1844년 빠리판, 95~96페지에 수록)

가 그들사이에 기생적으로 개재하는 상인에게 기만당하는 결과로서만 설명될수 있는듯이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프랭클린은 《전쟁은 략탈이고 상업은 기만이다.》(34)라고 말하고있다. 상업자본의 가치증식을 상품생산자들에 대한 단순한 사기이외의것으로 설명하기 위하여서는 일련의 긴 중간항이 필요하나 그것은 상품류통과 그 단순한 제 요소가 우리의 유일한 전제로 되여있는 여기에서는 아직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상업자본에 대해서 말한것은 고리대자본에는 일층 더 알맞는다. 상업자본에서는 그 량극 즉 시장에 투입되는 화폐와 시장에서 끌려나오는 증가된 화폐는 적어도 구매와 판매에 의하여, 류통운동에 의하여 매개된다. 고리대자본에서는 형태 G-W-G′는 매개가 없는 량극 G-G′로 즉 더 많은 화폐와 교환되는 화폐로 단축된다. 이 형태는 화폐의 본성과 모순되며 따라서 상품교환의 견지에서는 설명할수 없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화식술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 하나는 상업에 속하며 다른 하나는 가정술에 속한다. 후자는 필요한것이며 찬양할 가치가 있는것이나 전자는 류통에 기초를 두고있으며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할것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자연에 립각하지 않고 호상기만에 립각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리대업이 미움을 받는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왜냐 하면 고리대업에서 화폐는 그자체가 리득의 원천으로 되고있으며 그것이 발명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기때문이다. 원래 화폐는 상품교환을 위하여 발생한것이다. 그런데 리자는 화폐로부터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낸다. 리자라는 명칭 (τόκος 리자, 자식) 도 이로부터 나왔다. 자식은 어버이를 닮는다. 그러나 리자는 화폐로부터 나온 화

---

(34) 《벤져민 프랭클린전집》, 스파스 편찬, 제2권, 《국민의 부의 연구하여야 할 몇가지 문제》 (376페지)

페인것만큼 이것은 모든 영리부문중에서 가장 반자연적인것이다.》(35)

우리는 우리의 연구행정에서 리자부자본도 역시 상업자본과 마찬가지로 파생적형태라는것을 알게 될것이며 또 그와 동시에 어째서 이 량자가 력사적으로는 자본의 현대적인 기본형태보다 먼저 출현하였는가를 보게 될것이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잉여가치는 류통에서 생길수 없는만큼 그것이 형성될 때에는, 류통 그자체속에서는 볼수 없는 그 무엇이 반드시 류통의 배후에서 진행되고있을것이다.(36) 그러나 잉여가치는 류통이외의 다른 어떤 곳에서 생길수 있는가? 류통은 상품소유자들의 모든 호상관계①의 총화이다. 류통밖에서는 상품소유자는 오직 자기자신의 상품과만 관계를 맺는다. 상품의 가치에 관해서 말한다면 이 관계는 그의 상품이 일정한 사회적법칙에 따라 측정되는 그 사람자신의 로동의 어떤 분량을 포함한다는 사실에 국한된다. 이 로동의 분량은 그의 상품의 가치량에 의하여 표현되며 또 가치량은 계산화폐에 의하여 표현되는것이므로 이 로동분량을 례컨대 10파운드라는 가격에 의하여 표현된다. 그러나 그의 로동은 그 상품가치에 그 상품자체의 가치를 넘는 초과분을 가한것으로 표현되지는 않는다. 즉 10에 해당함과 동시에 11에도 해당하는 가격으로 표현되지는 않으며 자기자체보다 더 큰 가치로 표현되지도 않는다. 상품소유자는 자기의 로동으로 가치를 창조할수는 있으나 자기를 증식하는 가치를 창조할수

---

(35)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제1책, 제10장 (17페지)

(36) 《리윤은 시장의 보통조건하에서는 교환에 의하여 얻어지는것이 아니다. 만약 그것이 교환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교환이후에도 존재할수 없을것이다.》(램지 《부의 분배에 관한 론술》, 184페지)

---

① 제1판과 제2판에서는 《호상관계》로 되여있고 제3판과 제4판에서는 《상품관계》로 되여있다. —편집자

는 없다. 그는 새로운 로동으로 현존가치에 새로운 가치를 첨부함으로써, 례컨대 가죽으로 장화를 만듦으로써 한 상품의 가치를 증대시킬수는 있다. 동일한 소재는 거기에 더 많은 로동량이 포함되기때문에 이제는 더 많은 가치를 가진다. 그러므로 장화는 가죽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지지만 가죽의 가치는 의연히 전과 같다. 가죽의 가치는 자기를 증식시킨것도 아니며 장화제작중에 잉여가치를 자체에 첨가한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상품생산자는 류통분야의 외부에서 다른 상품소유자들과 접촉함이 없이는 가치를 증식시킬수 없으며 따라서 화폐 또는 상품을 자본으로 전화시킬수 없다.

그러므로 자본은 류통에서 발생할수 없으며 또 류통에서 발생하지 않을수 없다. 그것은 류통에서 발생하지 않으면 안되는 동시에 류통에서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그리하여 이중적결과가 나왔다.

화폐의 자본에로의 전화는 상품교환의 내재적법칙에 기초하여 전개되여야 할것이며 따라서 등가물간의 교환이 당연히 출발점으로 되여야 할것이다.(37) 아직까지는 자본가의 유

---

(37) 이상의 설명으로 독자는 여기서는 다만 상품가격이 상품가치와 동일한 경우에도 자본의 형성은 가능하여야 한다는것을 말하고있을뿐이라는것을 리해할것이다. 자본의 형성은 상품가치로부터의 상품가격의 배리로써는 설명할수 없다. 만약 가격이 사실상 가치로부터 배리된다면 우선 가격을 가치에로 환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말하면 상품교환을 기초로 하는 자본형성의 현상을 순수한 형태로 파악하며 또 그것을 고찰함에 있어서 본래의 과정과는 무관계한 교란적인, 부차적인 사정들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격의 가치로부터의 배리라는 이러한 사정을 우연적인것으로서 무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기는 하나 또 우리는 그러한 환원이 결코 단순한 과학적인 수속만은 아니라는것을 알고있다. 시장가격의 부단한 동요, 그 등귀와 저락은 서로 보상되고 서로 상쇄되여 시장가격의 내적기준으로서의 평균가격에 스스로 환원된다. 이 내적기준은 례컨대 비교적 장기간을 타산하는 매개 기업에서 상인 또는 실업가의 향도성으로 된다. 따라서 상품소유자는 비교적 긴 기간을 전체적으로 고찰한다면 상품들은 실지로 그 평균가격 이하나 이상으로가 아니라 바로 평균가격으로 판매된다는것을 알고있다. 그러므로 만약 리해관계를 초월한 사유가 그들의 관심사로 된다면 그들은 자본형성의 문제를 반드시 다음과 같이 설정해야 할것이다. 가격이 평균가격에 의하여 즉 결국은 상품가치에

층으로서 존재하는데 지나지 않는 우리의 화폐소유자는 상품을 그 가치대로 사며 그 가치대로 팔면서도 과정의 종말에 가서는 그가 투입한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끌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의 나비에로의 성장은 류통분야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안되며 또 류통분야에서 수행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것이 이 문제의 조건이다. 여기가 로두스이다, 여기서 뛰여보라![161]

3. 로동력의 구매와 판매

자본에로 전화해야 할 화폐의 가치변화는 이 화폐자체에서는 일어날수 없다. 왜냐 하면 화폐는 구매수단 및 지불수단으로서는 구매 또는 지불되는 상품의 가격을 실현하는데 지나지 않으며 또 화폐가 그자신의 형태에 그대로 머물러있다면 그것은 가치량이 항상 동일한 화석으로 굳어져버리기때문이다.(38) 또 마찬가지로 류통의 제2행위 즉 상품의 재판매로부터도 이 변화는 생길수 없다. 왜냐 하면 이 행위는 상품을 다만 자연적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 재전화시키는데 지나지 않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변화는 바로 제1행위 G-W에서 구매되는 상품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그러나 그 상품의 가치에서 일어나는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등가물이 교환되며 상품은 그 가치대로 지불되기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변화는

의하여 규제되는 조건하에서 어떻게 자본이 발생할수 있는가? 내가 여기서 《결국은》이라고 말하는 리유는, 평균가격은 A. 스미스, 리카도 등등이 생각하고있던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상품의 가치량과 일치하지는 않기때문이다.①

(38) 《화폐형태에서는…자본은 리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리카도 《정치경제학원리》, 267페지)

① 이 책 184~185페지를 보라. —편집자

다만 그 상품의 사용가치자체에서만, 다시말하면 그 상품의 소비에서만 생길수 있다. 한 상품의 소비에서 가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화폐소유자는 그 사용가치자체가 가치의 원천으로 되는 독특한 성질을 가진 상품, 그 현실적소비자체가 로동의 대상화이며 따라서 가치창조로 되는 상품을 다행히도 류통분야 즉 시장에서 발견하여야만 한다. 그리하여 화폐소유자는 시장에서 이와 같은 특수한 상품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로동능력 또는 로동력이다.

로동력 또는 로동능력이라는것은 인간의 육체 즉 산 사람속에 존재하는 또 그가 그 어떤 사용가치를 생산할 때마다 운동시키는 육체적 및 정신적 능력의 총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화폐소유자가 상품으로서의 로동력을 시장에서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된다. 상품교환자체는 그자체의 본성에서 생기는 의존관계외에는 다른 어떠한 의존관계도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전제밑에서 로동력은 그 소유자가 즉 그것을 자기의 로동력으로 가지고있는 바로 그 사람이 그것을 상품으로서 시장에 내놓거나 또는 판매하는 때에만 또 판매하는 한에서만 상품으로서 시장에 나타날수 있다. 로동력의 소유자가 로동력을 상품으로서 팔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자유로 처분할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자기 로동능력, 자기 일신의 자유로운 소유자로 되여야 한다.(39) 로동력의 소유자와 화폐소유자는 시장에서 서로 만나 대등한 상품소유자로서 호상 관계를 맺는다. 그들간에는 일방이 구매자이고 타방이 판매자라는 점외에는 구별

(39) 우리는 고전적고대사회에 관한 백과사전[162]들에서, 고대세계에서도 《자유로동자와 신용제도가 없었다는것을 제외하면》 자본이 충분히 발전하고있었다고 하는 엉터리없는 말을 볼수 있다, 몸젠씨도 역시 자기의 《로마사》에서 이 점에 관하여 착오를 거듭하고있다.

이 없으며 따라서 쌍방은 법률상 평등한 인격들이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로동력의 소유자가 로동력을 항상 일정한 시간으로만 파는것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만약 그가 로동력을 한꺼번에 몽땅 팔아버린다면 그는 자기자신을 팔아버리는것으로 되며 자유인으로부터 노예로, 상품소유자로부터 상품으로 되기때문이다. 인간으로서의 그는 언제든지 자기 로동력을 자기의 소유물로서 따라서 자기자신의 상품으로서 취급해야 한다. 또 그는 오직 그가 자기의 로동력을 항상 일시적으로, 일정한 기간동안만 구매자의 처분에 맡겨서 소비하게 하는 한에서만, 따라서 로동력을 양도하면서 로동력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40)

화폐소유자가 상품으로서의 로동력을 시장에서 발견하는데 필요한 제2의 기본적조건은, 로동력의 소유자가 자기의 로동이 대상화된 상품을 팔수 없으며 그리하여 그의 산 육체 안에만 존재하는 자기의 로동력자체를 부득이 상품으로서 시장에 내놓지 않을수 없다는것이다.

---

(40) 그러므로 각종 립법은 로동계약기간의 최대한도를 규정하고있다. 자유로동이 진행되고있는 민족들의 경우에는 모든 법전이 계약해제의 예고조건을 규정하고있다. 어떤 나라들에서 특히 메히꼬에서도(미국남북전쟁[8]전에는 메히꼬에서 략탈한 지역에서도 또 꾸자혁명[163]이전에는 사실상 두나이강류역 제 주에서도)노예제도는 소위 채무노예제라는 형태로 엄폐되여 존재하고있었다. 품으로 갚아야 할, 그나마 대대로 물어가야 할 선대형식의 채무로 말미암아 비단 개개의 로동자뿐만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사실상 타인 및 그 가족의 소유로 된다. 후아레스는 채무노예제[164]를 폐지하였다. 소위 황제 막시밀리안은 칙령으로 채무노예제를 다시 실시하였는데 워싱톤의 하원에서 적절하게도 이 칙령은 메히꼬에서 노예제도를 부활시키는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나의 특수한 육체적 및 정신적 기능과 활동능력의…사용을 나는 시간을 한정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수 있다. 왜냐 하면 그와 같은 제한을 붙이면 이 기능과 능력은 나의 총체성과 보편성에 대하여 외적관계를 주기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로동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나의 전체 시간과 나의 생산활동의 전체를 양도한다면 나는 이 생산활동의 실체를, 나의 보편적인 활동과 현실성을, 나의 인격을 타인의 소유로 만드는것으로 될것이다.》(헤겔 《법철학》, 1840년 베를린판, 104페지, 제67절)

누구나 자기의 로동력과는 다른 상품을 팔수 있기 위해서는 물론 그는 생산수단 례컨대 원료, 로동도구 등등을 소유하고있어야 한다. 그는 가죽이 없이는 장화를 만들수 없다. 그는 그밖에 생활수단도 필요로 한다. 누구도 심지어 미래파음악가까지도 미래의 생산물로써는 살아갈수 없으며 그 생산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용가치로써는 살아갈수 없다. 인간은 지구상에 나타난 첫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소비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가 생산을 시작하기전에도 또 생산을 하는 동안에도 소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생산물이 상품으로서 생산된다면 그것은 생산이 끝난 뒤에는 판매되여야 하며 또 생산물이 판매된후에라야만 비로소 생산자의 욕망이 충족될수 있다. 생산에 필요한 시간외에 판매에 필요한 시간이 첨가된다.

따라서 화폐를 자본으로 전화시키기 위해서는 화폐소유자는 상품시장에서 자유로운 로동자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자유롭다는것은 이중적의미를 가진다. 즉 한편으로 로동자는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자기의 로동력을 자기의 상품으로서 자유로 처분할수 있다는 의미와 다른 한편으로 그는 판매할 아무런 다른 상품도 소유하지 못하고 맨주먹뿐이며 자기의 로동력의 실현에 필요한 일체 물건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를 가진다.

어째서 이 자유로운 로동자가 류통분야에서 화폐소유자와 대립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는 로동시장을 상품시장의 특수한 부분으로 간주하는 화폐소유자에게 있어서는 관심사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아직은 우리의 관심사도 아니다. 화폐소유자가 실천적으로 사실로부터 출발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리론적으로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하나만은 분명하다. 자연은 한편에 화폐소유자 또는 상품소유자를 낳고 다른편에 자기의 로동력만의 소유자를 낳는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계는 자연사적관계도 아니며 또한 모든 력사적시대에 공통한 사회적관계도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자체가 선행한 력사적발전의 결과이며 허다한 경제적변혁의 산물이며 수많은 낡은 사회적생산구성체의 멸망의 산물이다.

우에서 고찰한 경제적범주들도 역시 자기의 력사적흔적을 가지고있다. 상품으로서의 생산물의 정재에는 일정한 력사적조건이 포함되여있다. 상품으로 되기 위해서는 생산물은 생산자자신을 위한 직접적생활수단으로서 생산되여서는 안된다. 만약 우리가 더 나아가 어떤 사정밑에서 일체 생산물 또는 적어도 대다수의 생산물이 상품형태를 취하는가를 연구한다면 그것이 오직 하나의 아주 특수한 생산방식 즉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기초우에서만 일어난다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는 상품의 분석의 범위를 훨씬 벗어날것이다. 상품생산과 상품류통은 생산물의 압도적대부분이 직접 자기수요에 충당되고 상품에로 전화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회적생산과정이 그 넓이와 깊이에서 교환가치의 지배를 받기에는 아직도 거리가 먼 그러한 때에도 일어날수 있다. 생산물이 상품으로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회내부의 분업이 발전하여 직접적인 물물교환에서 처음 시작되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와의 분리가 완성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전단계는 력사적으로 극히 각이한 사회경제구성체에 공통한것이다.

화폐를 고찰한다면 그것은 상품교환의 일정한 발전정도를 전제로 한다. 화폐의 각종 특수한 형태인 단순한 상품등

가물, 또는 류통수단, 또는 지불수단, 축장화폐 및 세계화폐는 이런 또는 저런 기능의 작용범위의 차이와 그 상대적우세에 따라 사회적생산과정의 매우 각이한 단계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이 모든 형태가 형성되는데는 상품류통의 비교적 미약한 발전으로써도 충분하다. 그러나 자본은 그렇지 않다. 자본의 력사적존재조건은 결코 상품류통 및 화폐류통과 함께 존재하는것은 아니다. 자본은 오직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의 소유자가 시장에서 자기 로동력의 판매자로서의 자유로운 로동자를 발견하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한다. 그리고 이 하나의 력사적조건만 해도 하나의 세계사를 포괄한다. 그러므로 자본은 처음부터 사회적생산과정의 한 시대를 선포한다.(41)

이제는 특수한 상품-로동력을 더 상세히 고찰하여야 하겠다. 그것은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가치를 가진다.(42) 그 가치는 어떻게 규정되는가?

로동력의 가치는 다른 온갖 상품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이 특수한 물품의 생산에, 따라서 또 그 재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된다. 로동력이 가치인 한에서는 로동력자체는 거기에 대상화되여있는 일정한 분량의 사회적평균로동을 대표할뿐이다. 로동력은 오직 산 개인의 소질로서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로동력의 생산은 산 개인의 생존을 전제로 한다. 이 개인의 생존이 주어져있다면 로동력의 생산이란

---

(41) 그러므로 자본주의시대를 특징짓는것은 로동력이 로동자자신에게 있어서는 그에게 속하는 상품의 형태를 취하며 따라서 그의 로동이 임금로동의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 있다. 다른 한편 이 순간부터 로동생산물의 상품형태가 비로소 일반화된다.

(42) 《인간의 가치는 다른 모든 물건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그의 가격이다. 다시말하면 그것은 그의 힘을 사용하는데 대하여 지불되는 보수이다.》(Th. 호브즈 《레바이아산》, 모울즈워스 편찬, 《토머스 호브즈 영문저작집》, 1839~1844년 런던판, 제3권, 76페지에 수록)

이 개인자신의 재생산 또는 유지이다. 살아있는 개인은 자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량의 생활수단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로동력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은 결국 이 생활수단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에 귀착된다. 다시말하면 로동력의 가치는 로동력소유자의 유지에 필요한 생활수단의 가치이다. 그러나 로동력은 그 발휘에 의해서만 자기를 실현하며 오직 로동에서만 확인된다. 로동력의 확인인 로동에서 인간의 근육, 신경, 뇌수 등등의 일정한 분량이 지출되며 그것은 다시 보충되여야 한다. 이 지출의 증가는 수입의 증가를 조건으로 한다.(43) 로동력의 소유자는 오늘의 로동이 끝나면 래일에도 반드시 전과 동일한 힘과 건강을 가지고 동일한 과정을 반복할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생활수단의 총량은 로동하는 개인을 그의 정상적인 생활형태에서 로동하는 개인으로서 유지하는데 충분하지 않으면 안된다. 식료품, 의복, 난방, 주택 등등과 같은 자연적욕망 그자체는 한 나라의 기후적 및 기타 자연적 특성에 따라 각이하다. 다른 한편 소위 필수적 욕망의 범위는 그 충족의 방식과 아울러 그자체가 하나의 력사적산물이며 따라서 그 대부분이 나라의 문화수준에 의존하는데 특히는 어떠한 조건하에서 따라서 또 어떠한 습관과 생활상 요구를 가지고 자유로운 로동자계급이 형성되였는가 하는데 주로 의존한다.(44) 그러므로 다른 상품과는 달라서 로동력의 가치규정은 어떤 력사적 및 도덕적 요소를 포함한다. 그러나 일정한 나라와 일정한 시대에는 필수적생활수단의 평균적범위는 일정하다.

(43) 그러므로 고대로마의 빌리쿠스는 농업노예의 선두에 선 관리인으로서 《노예보다 일이 힘한탓으로 노예보다 적은 보수를 받았다.》(Th. 몸젠 《로마사》, 1856년판, 810페지)

(44) W. Th. 손런 《과잉인구와 그 해결책》, 1846년 런던판을 참조하라.

로동력의 소유자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화폐의 자본에로의 계속적인 전화가 전제하는대로 그가 시장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로동력의 판매자는 《온갖 산 개체가 생식에 의하여 자기를 영구화하는것처럼》(45) 영구화되여야 한다. 소모와 사망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나가는 로동력은 적어도 같은 수의 새로운 로동력에 의하여 부단히 보충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로동력의 생산에 필요한 생활수단의 총량에는 그러한 보충인원, 다시말하면 로동자의 자녀들의 생활수단이 포함되며 그리하여 이 특수한 상품소유자의 종족은 상품시장에서 영구화된다.(46)

일반적인 인간적본성을 개변시켜 일정한 로동부문에서 기능과 숙련을 획득하여 발전된 특수한 로동력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성 또는 교육이 필요하며 거기에는 또 다다소소의 상품등가물이 필요하다. 로동력의 성격의 복잡성여하에 따라 이 양성비는 각이하다. 따라서 이 수업비는(보통의 로동력에 있어서는 아주 보잘것 없는것이지만) 로동력을 생산하는데 지출되는 가치에 들어간다.

로동력의 가치는 일정한 량의 생활수단의 가치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이 생활수단의 가치의 변동에 따라, 다시말하면 이 생활수단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의 크기의 변동에 따라 변동한다.

생활수단의 일부분 례컨대 식료품, 연료 등은 나날이 새

---

(45) 페티.[165]

(46) 《그것 (로동) 의 자연가격은… 로동자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 로동자로 하여금 시장에서 로동의 동일한 공급을 보장할만한 가족을 부양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나라의 기후와 습관에 따라 필요한 생활수단과 향락수단의 분량으로써 구성된다.》(R. 토런즈 《곡물무역에 관한 론술》, 1815년 런던판, 62페지)여기서는 로동이라는 말이 로동력이라는 말 대신에 쓰이고있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로 소모되는것이므로 나날이 새로 보충되지 않으면 안된다. 의복, 가구 등과 같은 다른 생활수단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소모되며 따라서 비교적 오랜 기간이 경과한후에 보충되면 된다. 어떤 종류의 상품은 매일 구매 또는 지불되여야 하며 어떤 종류의 상품은 매주, 매분기 등등으로 구매 또는 지불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출의 총액은 그것이 례컨대 1년간에 어떻게 분배되든지간에 매일 평균수입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가령 로동력의 생산에 매일 필요한 상품의 총량을 A, 매주 필요한 상품의 총량을 B, 매 4분기에 필요한 상품의 총량을 C 등등이라고 한다면 이 상품들의 매일 평균은 $\frac{365A+52B+4C+등등}{365}$일것이다. 만약 1평균일에 필요한 상품총량에 6시간의 사회적로동이 들어있다고 하면 매일의 로동력에는 반일의 사회적평균로동이 대상화되여있는것으로 된다. 다시말하면 그 로동력이 매일 생산되기 위해서는 반로동일이 필요하다. 로동력이 매일 생산되기 위하여 필요한 이 로동량은 로동력의 일가치 즉 매일 재생산되는 로동력의 가치를 형성한다. 만약 반일분의 사회적평균로동이 3실링 또는 1탈레르의 금량으로 표시된다면 1탈레르는 로동력의 일가치에 해당한 가격이다. 만약 로동력의 소유자가 그 로동력을 매일 1탈레르에 판다면 로동력의 판매가격은 로동력의 가치와 같게 된다. 또 우리의 전제에 의하면 자기의 탈레르를 자본에로 전화시킬것을 갈망하는 화폐소유자는 이 가치를 지불하는것이다.

로동력의 가치의 최후의 한계 또는 최저한계는 로동력의 담당자인 인간이 자기의 생활과정을 갱신할수 있기 위하여 매일 공급받지 않으면 안되는 상품총량의 가치에 의하여, 다

시 말하면 육체적으로 불가결한 생활수단의 가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만약 로동력의 가격이 이 최저한에까지 떨어진다면 그것은 로동력의 가치이하로 떨어지는것이다. 왜냐 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로동력은 위축된 형태로밖에는 유지, 발휘될수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상품의 가치든지 그것은 그 상품을 표준적인 품질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로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다.

사물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이와 같은 로동력의 가치규정을 조잡한것이라고 하여 로씨와 더불어 다음과 같이 한탄하는것은 극히 값싼 감상주의이다.

《생산과정중에 있는 로동의 유지수단을 고려함이 없이 로동능력을 파악하는것은 하나의 환상을 파악하려고 하는것과 같다. 로동이라고 말하는 사람, 로동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동시에 로동자와 생활유지수단, 로동자와 로임을 말하고있는것이다.》(47)

로동능력을 말하는 사람이 결코 로동을 말하는것이 아니라는것은 마치 소화능력을 말하는 사람이 결코 소화를 말하는것이 아닌것과 마찬가지이다. 소화과정에 있어서는 좋은 위장외에 많은것이 필요하다는것을 누구나 다 알고있다. 로동능력을 말하는 사람은 로동능력의 유지에 필요한 생활수단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 생활수단의 가치가 바로 로동능력의 가치에 표현되고있다. 만일 로동능력이 팔리지 않는다면 로동능력은 로동자에게 아무런 소용도 없을것이다. 그뿐만아니라 그는 자기의 로동능력이 그 생산에 일정한 량의 생활수단을 필요로 하였고 또 그 재생산에 생활수단을 부단히 필요로 한다는것을 랭혹한 자연적필연성으로 느낀다. 그때에 로동자는 씨스몽디와 더불어 《로동능력은… 만약 그것이 팔리

(47) 로씨 《정치경제학강의》, 1843년 브류쎌판, 370~371페지.

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다.》(48)는것을 발견하게 된다.

로동력이라는 이 특수한 상품의 독특한 본성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계약이 체결되여도 로동력의 사용가치는 아직 현실적으로 구매자의 수중에로 넘어가지 않는다는것이 당연히 동반된다. 로동력의 가치는 온갖 다른 상품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류통에 들어가기전에 규정되여있었다. 왜냐 하면 로동력의 생산에는 벌써 일정한 량의 사회적로동이 지출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로동력의 사용가치는 후에 일어나는 힘의 발휘에 의하여 비로소 성립된다. 그러므로 힘의 양도와 힘의 현실적인 발휘 즉 사용가치로서의 힘의 정재와는 시간적으로 서로 분리되여있다. 그런데 판매에 의한 사용가치의 형식적양도와 구매자에로의 현실적이전이 시간적으로 서로 분리되여있는 그러한 상품에 있어서는 구매자의 화폐는 보통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한다.(49)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지배하는 모든 나라에서 로동력은 매매계약에서 확정된 기한만큼 기능을 수행한후에 례컨대 매주말에야 비로소 지불을 받는다. 그러므로 로동자는 언제나 로동력의 사용가치를 자본가에게 선대한다. 로동자는 로동력의 가격의 지불을 받기전에 로동력을 구매자의 소비에 맡긴다. 그러므로 로동자는 어디서나 자본가에게 신용을 주고있는것이다. 이 신용이 결코 공허한 망상이 아니라는것은 비단 자본가가 파산하는 경우에 로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50)뿐만아니라 더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일련의 사

---

(48) 씨스몽디 《정치경제학의 새 원리》, 제1권, 114페지.

(49) 《모든 로동은 그것이 끝난 뒤에 지불을 받는다.》(《수요의 성질에 관한 원리의 연구》, 104페지) 《상업신용은 생산의 첫째 창조자인 로동자가 자기의 절약에 의하여 자기 로동의 보수를 1주일, 2주일, 1개월, 3개월 등등의 기한까지 기다릴수 있게 된 그 순간부터 시작된것이 틀림없다.》(Ch. 가닐 《정치경제학의 제 체계에 관하여》, 1821년 빠리 제2판, 제2권, 150페지)

(50) 《로동자는 자기의 근면을 대부한다.》고 슈또르흐는 말하고있다. 그러나 그는

실이 또한 보여준다.(51)

그러나 화폐가 구매수단으로서 기능하는가 또는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하는가 하는것은 상품교환자체의 본성을 변경

교활하게도 다음과 같이 첨부한다. 로동자는 《자기의 임금을 손실당하는외에는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는다.…왜냐 하면 로동자는 물질적인것을 아무것도 들이지 않기때문이다.》(슈또르흐 《정치경제학강의》, 1815년 뻬쩨르부르그판, 제2권, 36~37페지)

(51) 하나의 실례. 런던에는 두 종류의 빵집이 있다. 즉 빵을 가치대로 파는 《제값장사》와 빵을 가치이하로 파는 《눅거리장사》가 그것이다. 후자의 부류에 속하는것이 빵집총수의 $\frac{3}{5}$이상을 차지하고있다. (《빵제조공의 불평》에 관한 정부위원 H. S. 트리먼허어의 《보고》, 1862년 런던판, 32~34페지) 이 눅거리장사들은 거의 례외없이 백반, 비누, 탄산카리, 석회, 다비셔돌가루 및 이와 류사한 맛있고 양분있고 위생적인 성분을 혼합하여 만든 빵을 팔고있다. (우에서 인용한 청서 및 《식료품불순제조에 관한 1855년의 위원회의 보고》, 그리고 또 해슬의사의 《발각된 불순제품》, 1861년 런던 제2판) 존 고든경은 1855년의 위원회석상에서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이와 같은 불순제조로 하여 매일 2폰드의 빵으로 살아가는 빈민들은 이제는 자기의 건강에 대한 유해로운 영향은 고사하고라도 실지로는 이 분량의 4분의 1의 영양물도 받지 못하고있다.》 《로동계급의 많은 부분》이 이러한 불순제조의 사실을 잘 알면서도 역시 백반, 돌가루 등등을 어째서 사가는가 하는 그 리유로서 트리먼허어는 (상술한 보고 48페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는 《빵집 또는 소매점에서 빵을 주는대로 받아오는것은 어찌할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로동주말에 가서야 비로소 임금을 받기때문에 그들도 역시 《그 한주일동안에 그들의 가족이 소비한 빵값을 주말에 가서야 비로소 지불할수 있다.》 또 트리먼허어는 증언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첨가하고있다. 《이러한 혼합물을 넣은 빵이 일부러 이러한 종류의 고객을 대상으로 제조되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잉글랜드의 다수 농업지대에서는 (특히 스코틀랜드에서는) 로임은 2주일에 1회 또 심지에 1개월에 1회 지불된다. 이와 같이 지불의 간격이 긴 까닭에 농업로동자들은 상품을 외상으로 사지 않을수 없다.…그는 비싼 가격을 지불하지 않을수 없으며 또 그는 그에게 외상으로 파는 그 상점에 사실상 얽매여있다. 그리하여 례컨대 임금이 1개월만에 지불되는 윌트셔의 호닝샴에서는 농업로동자들은 다른 곳에서 1스톤당 1실링 10펜스 하는 밀가루에 2실링 4펜스를 지불한다.》 (《공중위생》에 관한 《추밀원의무관》의 《제6차보고》, 1864년판, 264페지) 《페이즐리 및 킬마노크 (서부스코틀랜드) 의 사라사날염공들은 1853년에 동맹파업에 의하여 지불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공장감독관보고, 1853년 10월 31일.》 34페지) 로동자가 자본가에게 주는 신용이 기묘하게 가일층 발전한것을 우리는 영국의 다수 탄광소유자들의 방법에서 볼수 있다. 이 방법에 의하면 월말에 가서야 비로소 임금을 받는 로동자는 그 중간에 자본가로부터 상품형태로 선대를 받는데 이 상품에 대해서 그는 가끔 시장가격이상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물임금제) 《탄광주들에게 있어서는 로동자들에게 1개월에 1회 임금을 지불하고 중간의 매주말에는 현금을 선대하여주는것이 일반적관례로 되여있다. 이 현금선대는 매점 (즉 기업주자신에게 속하는 소매점) 에서 내여준다. 로동자들은 매점의 한 구석에서 그것을 받고 다른 구석에서 곧 그것을 지출한다.》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3차보고》, 1864년 런던판, 38페지, 제192호)

하지는 못한다. 로동력의 가격은 비록 그것이 가옥의 임대가격처럼 후일에 가서야 비로소 실현되는것이라 할지라도 계약에 의하여 확정되여있다. 로동력은 비록 그 대가를 후일에 가서야 지불받는다 할지라도 벌써 판매된것이다. 그러나 이 관계를 순수한 형태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로동력의 소유자가 로동력의 판매와 동시에 언제나 즉시로 계약으로 정해져있는 가격을 받는다고 전제하는것이 편리하다.

이제 우리는 로동력이라는 이 특수한 상품의 소유자에게 화폐소유자가 지불하는 가치가 어떻게 규정되는가를 알았다. 화폐소유자가 교환을 통하여 받는 사용가치는 다만 로동력의 현실적사용에서 즉 로동력의 소비과정에서 비로소 나타난다. 화폐소유자는 원료 등등과 같은 이 과정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상품시장에서 사며 또 그 가격대로 지불한다. 로동력의 소비과정은 동시에 상품의 생산과정이며 잉여가치의 생산과정이다. 로동력의 소비는 온갖 다른 상품의 소비와 마찬가지로 시장밖에서 즉 류통분야밖에서 진행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것이 표면에서 진행되고 또 누구의 눈에나 쉽게 띄우는 이 소란스러운 분야를 떠나 화폐소유자 및 로동력소유자와 함께 《무용자출입금지》라고 입구에 씌여있는 은폐된 생산장소에로 들어가보자! 여기에서 우리는 비단 자본이 어떻게 생산을 하는가 하는것뿐만아니라 자본 그자체가 어떻게 생산되는가 하는것도 알게 될것이다. 화식의 비밀이 드디여 폭로되고야말것이다.

로동력의 매매가 그안에서 진행되는 류통분야 또는 상품교환분야는 사실상 천부인권의 진짜에덴동산이였다.[166] 여기에서 지배하고있는것은 오로지 자유와 평등과 소유와 벤삼[167]이다. 자유! 왜냐 하면 상품 례컨대 로동력의 구매자와 판매

자는 자기들의 자유의사에 의해서만 규정되기때문이다. 그들은 자유로운, 법률상 평등한 사람으로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은 그들의 의사가 거기서 공통적인 법률적표현을 얻는 그러한 최후결과이다. 평등! 왜냐 하면 그들은 오직 상품소유자로서만 서로 관계하며 등가물을 등가물과 교환하기때문이다. 소유! 왜냐 하면 각자는 모두 자기의것만을 마음대로 처분하기때문이다. 벤삼! 왜냐 하면 그들 쌍방은 모두 자기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돌리기때문이다. 그들을 결합시켜 하나의 관계속에 놓는 유일한 힘은 그들의 자기리익, 그들의 개별적리익, 그들의 사적리익의 힘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각자는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그 누구도 타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때문에야말로 그들은 모두 사물의 예정된 조화의 덕택[168]으로 또는 전능한 신의 비호하에 그들 호상간의 리익으로 되며, 공동의 리득으로 되며 전체의 리익으로 되는 사업을 수행하는것이다.

이 단순한 류통분야 또는 상품교환분야로부터 속류자유무역론자들은 자본과 임금로동의 사회에 대한 견해, 개념 및 자기들의 판단의 기준을 끌어내는데 이 분야를 떠나면서 우리 등장인물들의 면모는 이미 얼마간 달라진것을 보게 된다. 이전의 화폐소유자는 자본가로서 선두에서 걸어가며 로동력의 소유자는 그의 로동자로서 그뒤를 따라간다. 전자는 의미심장하게 미소를 띄고 사업에 착수할 열의에 차있다. 후자는 자기자신의 가죽을 시장에서 팔아버리고 이제는 그 가죽이 이기여지는것외에는 기대할 아무것도 없는자로서 고개를 숙이고 주춤주춤 걸어간다.

제 3 편
절대적잉여가치의 생산

제 5 장

로동과정과 가치증식과정

1. 로동과정

로동력의 사용은 로동 그자체이다. 로동력의 구매자는 로동력의 판매자를 로동시킴으로써 로동력을 소비한다. 로동력의 판매자는 로동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로동력으로, 로동자로 된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는 오직 잠세적으로만 로동자였다. 그는 자기의 로동을 상품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로동을 사용가치로, 이러저러한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소용되는 물건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자본가는 로동자로 하여금 어떤 특수한 사용가치, 어떤 일정한 물품을 만들게 한다. 사용가치 또는 재화의 생산은 그것이 자본가를 위하여 또 자본가의 감독밑에서 수행된다고 해서 그 생산의 일반적본성이 달라지는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로동과정은 우선 그 어떤 특정적인 사회형태와도 관계없이 고찰되지 않으면 안된다.

로동은 우선 인간과 자연간의 한 과정 즉 인간이 그자신

의 행위에 의하여 인간과 자연간의 물질대사를 매개하며 규제하며 감독하는 한 과정이다. 인간은 그자신이 하나의 자연력으로서 자연물질에 대립한다. 인간은 자연물질을 자기자신의 생활에 사용할수 있는 형태로 취득하기 위하여 자기의 신체에 속하는 자연력인 팔과 다리, 머리와 손을 운동시킨다. 그는 이 운동을 통하여 외부의 자연에 영향을 주어 이것을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자기자신의 자연을 변화시킨다. 그는 자신의 자연속에 잠자고있는 잠세력을 발현시키며 이 힘의 활동을 자기자신의 통제밑에 둔다. 우리는 여기에서는 로동의 최초의 동물적인 본능적형태를 문제로 삼지 않는다. 로동자가 자기자신의 로동력의 판매자로서 상품시장에 등장하는 상태에 있어서는 인간의 로동이 아직도 그 초보적인 본능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상태는 이미 태고시대의 일인것이다. 우리가 전제로 하는 로동은 인간에게만 속하는 그런 형태의 로동이다. 거미는 직포공이 하는 일과 류사한 일을 하며 꿀벌은 그 벌집의 구조로 많은 인간건축가를 부끄럽게 만든다. 그러나 가장 서투른 건축가라도 가장 훌륭한 꿀벌보다 처음부터 나은 점은 그가 벌집을 밀랍으로 짓기전에 그것을 벌서 자기의 머리속에 짓고있다는 사실이다. 로동과정의 시초에 벌써 로동자의 표상속에 존재하고있던, 즉 관념적으로 존재하고있던 결과는 로동과정의 마지막에 나타난다. 로동자는 자연물의 형태를 변화시킬뿐만아니다. 그는 동시에 자연물에 그의 목적—그가 알고있고 그의 행동의 방식을 법칙으로서 규정하며 그가 자기의 의지를 거기에 종속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그의 목적을 실현한다. 그리고 이러한 종속은 결코 고립적인 행위가 아니다. 로동을 하는 기관의 긴장외에도 주의력으로서 표현되는 합목적적의지가 또한 로동의 전 기간

에 걸쳐 필요하다. 그리고 로동의 내용과 그 방식이 로동자의 흥미를 끌지 못하면 못할수록 따라서 로동자가 로동을 자기자신의 육체적 및 정신적 힘의 활동으로서 즐기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의지는 더욱 필요하다.

로동과정의 단순한 계기는 합목적적활동 또는 로동 그자체와 로동대상과 로동수단이다.

인간에게 본원적으로 식량과 기성적인 생활수단을 공급하여주는 토지(경제학적으로는 물도 여기에 포함된다.)(1)는 인간의 관여없이 인간로동의 일반적대상으로서 존재한다. 로동에 의하여 토지와의 직접적련계로부터 분리된데 불과한 물건들은 모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로동대상이다. 례컨대 물고기의 생활요소인 물로부터 분리시켜 잡아내는 물고기, 원시림에서 베여내는 원목, 광맥에서 채취하는 광석이 그러한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만약 로동대상 그자체가 벌써 과거의 로동에 의하여, 이를테면 려과된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원료라고 부른다. 례컨대 이미 채굴되여 세척과정에 들어가는 광석이 그것이다. 원료는 모두 로동대상이지만 그러나 어떤 로동대상이나 다 원료인것은 아니다. 로동대상은 그것이 이미 로동에 의하여 매개된 변화를 받은 경우에라야 비로소 원료로 된다.

로동수단이란 로동자가 자기와 로동대상사이에 넣으며 이 대상에 대한 그의 능동활동의 전도체로서 리용하는 하나의 물건 또는 물건들의 복합체이다. 로동자는 물건의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속성들을 리용하여 그것을 자기 목적에

(1) 《토지의 천연적산물은 그 량이 적으며 또 인간에게 전혀 의존하지 않는것이다. 그것은 마치 어떤 청년으로 하여금 부지런히 일하여 재산을 모으게 할 목적으로 그 청년에게 적은 금액을 쥐여주는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에 의하여 제공되듯이 보인다.》(제임즈 스튜어트 《정치경제학원리》, 1770년 더블린판, 제1권, 116페지)

따라 다른 물건에 대한 힘의 수단으로서 작용시킨다.(2) 로동자가 직접 점령하는 대상은(로동자자신의 육체적기관이 유일한 로동수단으로 쓰이는 경우인 기성적인 생활수단 례컨대 과실의 채취같은것을 도외시한다면)로동대상이 아니고 로동수단이다. 그리하여 자연물 그자체가 로동자의 능동활동의 기관으로 된다. 로동자는 이 기관을 자기자신의 육체적기관에 첨가함으로써 성경을 어기면서 자기의 자연적인 키를 연장시킨다.[169] 토지는 사람의 본원적인 식량창고이며 또한 그의 본원적인 로동수단창고이다. 토지는 례컨대 로동자가 던지며 문지르며 누르며 베는 등등의 일에 리용하는 돌을 공급한다. 토지는 그자체가 로동수단이기는 하나 그것이 농업에서 로동수단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이밖에 다른 많은 로동수단과 이미 비교적 고도로 발전한 로동력을 전제로 한다.(3) 일반적으로 로동과정은 그것이 얼마간만이라도 발전하였다면 벌써 가공된 로동수단을 필요로 한다. 태고시대의 인간의 동굴속에서 우리는 돌로 만든 도구나 돌로 만든 무기를 발견한다. 인류력사의 시초에는 가공된 돌, 나무, 뼈, 조가비와 아울러 길들인 즉 그자체가 벌써 로동에 의하여 변화된, 사육한 동물이 로동수단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4) 로동수단의 사용과 창조는 비록 맹아적형태에서는 일부 종류의 동물

---

(2) 《리성은 강력하며 또한 그만큼 교활하다. 그 교활성은 대상들로 하여금 그것들 자신의 성질에 따라 서로 작용하고 서로 영향주게 함으로써 자신은 직접 이 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목적만을 달성하는 그러한 매개적활동에 있다.》(헤겔 《백과전서》, 제1부, 《론리학》, 1840년 베를린판, 382페지)

(3) 가닐은 다른 점에서는 보잘것없는 저작 《정치경제학리론》(1815년 빠리판)에서 중농학파들을 반대하여 본래의 농업의 전제로 되는 많은 로동과정을 적절하게 렬거하고있다.

(4) 뛰르고는 《부의 형성과 분배에 관한 고찰》(1766년[170])에서 길들인 동물이 문화의 초기에 있어서 가지는 중요성을 잘 설명하고있다.

에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로동과정에 특유한 특징이다. 그러므로 프랭클린은 인간을 《a toolmaking animal》[171] 즉 도구를 만드는 동물이라고 정의하고있다. 멸망한 동물종속의 신체조직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유골의 구조가 가지는것과 같은 중요성을 로동수단의 유물은 멸망한 경제적사회구성체를 판단하는 경우에 가진다. 경제적시대는 무엇이 생산되는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어떠한 로동수단으로 생산되는가에 의해서 구별된다.(5) 로동수단은 비단 인간로동력발전의 측정기로 될뿐만아니라 로동이 수행되는 사회적관계의 표시기로도 된다. 로동수단가운데서 기계적로동수단(그 총체를 생산의 골격체계 및 근육체계라고 할수 있는)이 로동대상의 용기로 쓰일뿐인 로동수단(그 총체를 일반적으로 생산의 맥관체계라고 할수 있는 레컨대 관, 통, 바구니, 독 등등과 같은)보다는 어떤 사회적생산시대에 대한 훨씬 더 결정적인 징표로 된다. 용기로서의 로동수단은 화학공업에서 비로소 중요한 역할을 논다.(5a)

넓은 의미에서의 로동과정의 수단에는 로동대상에 로동이 작용하는것을 매개하며 따라서 이런 또는 저런 방식으로 그 활동의 전도체로 쓰이는 그러한 물건들이외에 로동과정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대상적조건이 있다. 그것들은 직접적으로는 로동과정에 들어가지 않으나 그것이 없이는 로동과정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거나 또는 불완전하게밖에는 진행되지 못

---

(5) 모든 상품중 본래의 사치품은 각이한 생산시대를 기술학적으로 비교하는데 있어서 가장 의의가 적다.

(5a) 제2판 주: 지금까지의 력사적기술은 물질적생산의 발전 즉 전반 사회생활의 기초, 따라서 또 전반 현실적력사의 기초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선사시대를 소위 력사적이 아닌 자연과학적연구에 립각하여 도구나 무기의 재료에 따라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및 철기시대로 구분하고있다.

한다. 이러한 종류의 일반적인 로동수단은 토지 그자체이다. 왜냐 하면 토지는 로동자에게 설 장소를 제공하며 또 그의 과정에 작업공간을 제공하기때문이다. 이미 로동에 의하여 매개된 이러한 종류의 로동수단은 레컨대 작업용건물, 운하, 도로 등이다.

그리하여 로동과정에서 인간의 활동은 로동수단을 통하여 로동대상에 미리 기도하고있던 변화를 일으킨다. 이 과정은 생산물속에 사라진다. 이 과정의 생산물은 사용가치이며 형태변화에 의하여 인간의 욕망에 적합하게 된 자연물질이다. 로동은 로동대상과 결합되였다. 로동은 대상화되였고 대상은 가공되였다. 로동자측에서는 부정지의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 이제 생산물측에서는 정지된 속성으로 즉 존재의 형태로 나타난다. 로동자는 방적을 하였고 생산물은 방사이다.

만약 전체 과정을 그 결과인 생산물의 립장에서 고찰한다면 로동수단과 로동대상은 생산수단(6)으로 나타나며 로동 그자체는 생산적로동(7)으로 나타난다.

어떤 하나의 사용가치가 생산물의 형태로서 로동과정으로부터 나올 때 그 이전의 로동과정의 생산물인 다른 어떤 사용가치는 생산수단으로서 로동과정에 들어간다. 동일한 사용가치가 이 로동의 생산물로 되는 동시에 저 로동의 생산수단으로도 된다. 그러나 생산물은 비단 로동과정의 결과일뿐만아니라 동시에 로동과정의 조건이기도 하다.

광업, 수렵, 어업 등등(농업은 처음으로 처녀지자체를 개

---

(6) 레컨대 아직 잡히지 않은 물고기를 어업의 생산수단이라고 부르는것은 역설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물고기가 없는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는 기술은 이때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7) 생산적로동에 대한 이와 같은 규정은 단순한 로동과정의 립장에서 얻어낸것으로서 자본주의적생산과정에 대해서는 아주 불충분한것이다.

간하는 한에서)과 같이 그 로동대상이 천연적으로 주어져있는 채취공업을 제외한다면 모든 산업부문이 취급하는 대상은 원료, 다시말하면 로동에 의하여 려과된 로동대상이며 그자체가 벌써 로동생산물이다. 례컨대 농업에서의 종자가 그러하다. 보통 자연의 산물이라고 간주하는 동물과 식물도 실은 비단 전해의 로동의 생산물일뿐만아니라 그 현재의 형태에 있어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인간의 감독하에 인간의 로동을 매개로 하여 계속된 변형의 산물이다. 그리고 특히 로동수단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 대다수는 가장 피상적인 관찰자의 눈에도 과거로동의 흔적을 보여준다.

원료는 생산물의 주되는 실체를 이룰수도 있으며 또는 보조재료로서만 그 생산물의 형성에 참가할수도 있다. 보조재료는 례컨대 석탄이 증기기관에 의하여, 기름이 차륜에 의하여, 건초가 부림말에 의하여 소비되는것과 같이 로동수단에 의하여 소비되든가 혹은 례컨대 염소가 표백하지 않은 아마포에, 석탄이 철에, 물감이 양털에 첨가되는것과 같이 원료에 첨가되여 물질적변화를 일으키든가 혹은 또 례컨대 작업현장의 조명과 난방에 사용되는 재료와 같이 로동 그자체의 수행을 방조하든가 한다. 주요재료와 보조재료간의 구별은 본래의 화학공업에서는 없어진다. 왜냐 하면 화학공업에서 사용되는 원료는 그 어느 하나도 생산물의 실체로서 재현되는 일이 없기때문이다.(8)

매개 물건은 여러가지 속성을 가지고있으며 따라서 여러가지 용도에 사용될수 있으므로 동일한 생산물이 아주 각이

---

(8) 슈또르흐는 본래의 원료를 《matière》라고 부르고 보조재료를 《matériaux》라고 불러서 그것들을 구별한다.[172] 쉐르벌리에는 보조재료를 《matiéres instrumentales》라고 부른다.[173]

한 로동과정의 원료로 쓰일수 있다. 례컨대 곡물은 제분업자, 전분제조업자, 양조업자, 목축업자 등등의 원료로 된다. 그것은 종자로서는 자기자신을 생산하는 원료로 된다. 마찬가지로 석탄은 생산물로서 광업에서 나오며 또 생산수단으로서 광업에 들어간다.

동일한 생산물이 동일한 로동과정에서 로동수단으로서 또 원료로서 쓰일수 있다. 례컨대 가축사양에서 가축은 가공되는 원료인 동시에 비료제조의 수단이기도 하다.

이미 소비를 위하여 완성형태에 있는 생산물이 또다시 어떤 다른 생산물의 원료로 될수 있다. 례컨대 포도가 포도주의 원료로 될 때 그러하다. 혹은 또 로동이 그 생산물을 다시 원료로써만 사용할수 있는 형태로 남겨놓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원료 례컨대 면화, 실, 면사 같은것은 반제품이라고 하는데 중간제품이라고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이러한 최초의 원료는 그자체가 벌써 생산물이기는 하나 아직도 수많은 여러 과정을 통과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이 원료는 완성된 생활수단 또는 완성된 로동수단으로 되여나오는 최후의 로동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과정속에서 항상 변화하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새로 원료로서 기능한다.

상술한바와 같이 어떤 사용가치가 원료로 되는가, 로동수단으로 되는가 또는 생산물로 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로동과정에서의 그 사용가치의 일정한 기능에 의하여, 그것이 로동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위치가 변하는데 따라 그 규정도 변한다.

그러므로 생산물은 생산수단으로서 새로운 로동과정에 들어감으로써 생산물이라는 성격을 잃는다. 그것은 오직 산 로동의 대상적요인으로서 기능할뿐이다. 방적공은 방추를 실

뽑는 수단으로만 간주하며 아마는 실뽑는 대상으로만 간주한다. 물론 방적재료와 방추가 없이는 방적을 할수 없다. 그러므로 방적을 시작할 때에는 이러한 생산물이 존재한다는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과정자체에 있어서는 아마와 방추가 과거로동의 생산물이라는 사실은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것은 마치 영양행위에 있어서는 빵이 농민, 제분업자, 빵제조업자 등등의 과거로동의 생산물이라는 사실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와는 반대로 만약 생산수단이 로동과정에서 과거로동의 생산물이라는 자기의 성격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그 생산수단의 결함에 기인한것이다. 베여지지 않는 칼, 끊어지기만 하는 실 등등으로 말미암아 그 칼을 만든 사람 A와 그 실을 만든 사람 E를 몹시 생각하게 한다. 훌륭한 생산물에는 그 사용속성들이 과거의 로동에 의하여 매개되였다는것이 없어지고만다.

로동과정에 쓰이지 않는 기계는 아무런 쓸모도 없다. 그뿐만아니라 그 기계는 자연적물질대사의 파괴적작용을 받는다. 철은 녹쓸며 나무는 썩는다. 직포에도, 편직에도 리용되지 않는 면사는 못쓰게 된 솜인것이다. 산로동은 이 물건들을 가져다 그것을 죽은 물건으로부터 소생시켜 단지 가능한 사용가치로부터 현실적인 유효한 사용가치로 전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 물건들은 로동의 불길속에 끌려들어가 로동의 육체로서 동화되며 그것들의 개념과 사명에 합치하는 기능을 할 때까지 이 로동과정에서 정기를 얻으면서 이 물건들은 확실히 소비되여 없어지기는 하나 그것은 생활수단으로서 개인적소비에 들어가든지 또는 생산수단으로서 새로운 로동과정에 들어가든지 할수 있는 새로운 사용가치, 새로운 생산물의 형성요소로서 합목적적으로 소비되여버리는것이다.

그리하여 만약 현존하는 생산물이 로동과정의 결과일뿐만아니라 또 로동과정의 존재조건이기도 하다면, 다른 한편에 그 생산물의 로동과정에로의 투입, 따라서 그 생산물의 산로동과의 접촉은 과거로동의 이 생산물을 사용가치로서 유지하며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된다.

로동은 그 물질적요소인 로동대상과 로동수단을 소비하며 그것들을 삼켜버린다. 그러므로 로동은 소비과정이다. 이러한 생산적소비가 개인적소비와 구별되는것은 후자는 생산물을 산 개인의 생활수단으로서 소비하며 전자는 그것을 로동의 생산수단 즉 산 개인의 자기를 나타내는 로동력의 생활수단으로서 소비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개인적소비의 생산물은 소비자자체이며 생산적소비의 결과는 소비자와는 구별되는 생산물이다.

로동은 로동수단과 로동대상 그자체가 이미 생산물인 한에 있어서는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생산물을 소비한다. 바꾸어말하면 생산물의 생산수단으로서 생산물을 소모한다. 그러나 로동과정이 원래는 오직 인간과 인간의 관여없이 존재하는 토지와의 사이에서만 진행되는것과 마찬가지로 로동과정에서는 천연적으로 현존하는 생산수단 즉 자연물질과 인간로동의 결합이 아닌 그러한 생산수단도 또한 의연히 쓰이고있다.

우리가 그 단순한 추상적계기에 대하여 서술한 로동과정①은 사용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합목적적활동이며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연물의 취득이며 인간과 자연간의 물질대사의 일반적조건이며 인간생활의 영원한 자연적조건이며 따라서 그것은 인간생활의 어떠한 형태로부터도 독립되여있을

① 이 책 207~211페지를 보라. 一편집자

뿐만아니라 오히려 인간생활의 모든 사회적형태에 공통한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로동자를 다른 로동자들과의 관계에서 서술할 필요가 없었던것이다. 한편에 인간과 그의 로동, 다른편에 자연과 그 물질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밀의 맛을 보고 그 밀을 누가 가꾸었는가를 알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보아서는 그것이 어떠한 조건하에서 진행되는지, 노예감시인의 잔인한 채찍밑에서인지 또는 자본가의 엄한 눈초리밑에서인지 또는 찐찐나투스가 그의 얼마 안되는 밭뙈기를 경작하는데서 이 과정을 수행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돌로써 야수를 죽이는 미개인이 이 과정을 수행하는지 도무지 알도리가 없다.(9)

우리는 우리 장래의 자본가에게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와 갈라진것은 그가 상품시장에서 로동과정에 필요한 일체 요인 즉 대상적요인 또는 생산수단과 인적요인 또는 로동력을 구매한 뒤였다. 그는 전문가다운 약삭바른 눈초리로 방적업, 제화업 등등과 같은 그의 특수한 기업에 알맞는 생산수단과 로동력을 골라냈다. 그리하여 우리 자본가는 자기가 산 상품인 로동력을 소비하는데 착수한다. 다시말하면 그는 로동력의 담당자인 로동자로 하여금 자기의 로동에 의하여 생산수단을 소비하게 한다. 로동과정의 일반적본성은 로동자가 로동과정을 자기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가를 위해서 수행한다는데 의해서는 물론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장화를

---

(9) 이러한 극히 론리적인 리유에서 토런즈대좌는 미개인의 돌에서 자본의 기원을 발견하고있다. 《미개인이 자기가 추격하는 야수를 향해서 던지는 최초의 돌맹이에서, 그리고 그가 손이 닫지 않는 과실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손에 쥐는 최초의 몽둥이에서 우리는 다른 물품을 획득할 목적을 가진 어떤 물품의 취득을 보며 그리하여 우리는 자본의 기원을 발견한다.》(R. 토런즈 《부의 생산에 관한 론술》, 70~71페지) 영어에서 왜 몽둥이 (stock) 가 자본과 동의어인가 하는것도 아마 이 최초의 몽둥이로부터 설명해야 할것이다.

제조한다든지 실을 뽑는다든지 하는 일정한 방식도 역시 자본가가 끼여들었다고 해서 당장 변할수 없다. 자본가는 우선 그가 시장에서 발견하는 그대로의 로동력을, 따라서 아직 자본가가 없던 시대에 발전한 그대로의 로동을 채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로동이 자본에 종속됨으로 하여 생기는 생산방식 그자체의 변화는 후에 가서야 비로소 일어날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후에 가서야 고찰될것이다.

로동과정은 자본가에 의한 로동력의 소비과정으로서는 두개의 특수한 현상을 보여준다.

로동자는 자본가의 감독밑에서 로동하며 그의 로동은 자본가에게 속한다. 자본가는 로동이 질서정연하게 수행되고 생산수단이 합목적적으로 사용되도록 즉 원료가 랑비되지 않고 로동도구가 소중히 사용되도록, 다시말하면 작업에서 도구가 사용될 때에 그것이 필요정도이상으로는 조금도 파손되지 않도록 감시한다.

둘째로, 생산물은 자본가의 소유물이지 직접적생산자인 로동자의 소유물은 아니다. 자본가는 례컨대 로동력의 일가치를 지불한다. 그리하여 로동력의 사용은 온갖 다른 상품의 사용과 마찬가지로, 례컨대 1일간 샀내온 말의 사용과 마찬가지로 그 1일간은 자본가에게 속한다. 상품의 사용은 상품의 구매자에게 속한다. 그리고 로동력의 소유자는 자기의 로동을 제공함으로써 실지는 그가 판 사용가치를 제공하고있는 것이다. 그가 자본가의 작업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의 로동력의 사용가치 즉 그의 로동력의 사용, 로동은 자본가에게 속한다. 자본가는 로동력을 구매함으로써 로동 그자체를 산 효모로서 역시 그에게 속하는 생산물의 죽은 구성요소들에 합체시켰다. 자본가의 립장에서 본다면 로동과정은 그가

구매한 상품인 로동력소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이 로동력에 생산수단을 첨가함으로써만 로동력을 소비할수 있다. 로동과정은 자본가가 구매한 물건들 호상간의 과정이며 그에 속하는 물건들 호상간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이 과정의 생산물은 마치 그의 포도주 움속에서 발효과정에 있는 생산물이 그에게 속하는것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속한다.(10)

2. 가치증식과정

생산물—자본가의 소유물—은 면사, 장화 등등과 같은 어떤 사용가치이다. 그러나 비록 례컨대 장화가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진보의 기초로 되며 또한 우리의 자본가가 확고한 진보파라 할지라도 그는 장화 그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장화를 제조하는것은 아니다. 상품생산에서는 결코 사용가치 그 자체가 사랑받는 물건은 아니다. 여기서 대체로 사용가치가 생산되는것은 그것이 교환가치의 물질적기초, 그 담당자이기 때문이며 또 오직 그런 한에 있어서이다. 그리고 우리 자본가가 념두에 두는것은 다음과 같은 두 점이다. 첫째로, 그는

---

(10) 《생산물은 그것이 자본으로 전화되기 이전에 취득된다. 이 전화는 생산물을 그와 같은 취득으로부터 떼여내지는 못한다.》(쉐르벌리에 《부와 빈곤》, 1841년 빠리판, 54페지) 《무산자는 그의 로동을 일정한 량의 생활수단을 목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생산물에 대한 어떠한 몫도 완전히 포기하게 된다. 생산물의 취득은 의연히 이전과 같다. 그것은 상술한 계약에 의해서는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다. 생산물은 원료와 생활수단을 제공한 자본가에게 전적으로 속한다. 이것은 취득법칙의 엄격한 귀결이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 법칙의 기본원칙은 매개 로동자가 자기 생산물에 대한 배타적소유권이였다.》(우와 같은 책, 58페지) 제임즈 밀은 《정치경제학원리》, 70~71페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로동자가 로임을 받고 로동하는 경우에는 자본가는 비단 자본〔여기에서는 생산수단을 의미한다.〕의 소유자일뿐만아니라 로동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보통 그런바와 같이 로임의 형태로 지불되는것을 자본이라는 개념에 포함시킨다면 로동을 자본으로부터 분리시켜 말하는것은 불합리하다. 자본이라는 용어는 이 의미에서는 자본과 로동의 량자를 포함하고있다.》

교환가치를 가지는 사용가치 즉 판매하기로 예정되여있는 물품인 상품을 생산하려고 한다. 그리고 둘째로, 그는 생산에 필요한 상품들의 가치총액보다 즉 그가 상품시장에서 자기의 귀중한 화폐를 선대하고 얻은 생산수단과 로동력의 가치총액보다 큰 가치를 가지는 상품을 생산하려고 한다. 그는 사용가치뿐만아니라 상품을 생산하려 하며 사용가치뿐만아니라 가치를 생산하려 하며 가치뿐만아니라 잉여가치를 생산하려 한다.

여기서는 상품생산이 문제로 되는만큼 이때가지 우리가 고찰한것은 사실상 과정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는것은 분명하다. 상품 그자체가 사용가치와 가치의 통일인것과 마찬가지로 상품의 생산과정도 반드시 로동과정과 가치형성과정의 통일이여야 한다.

이제 우리는 생산과정을 가치형성과정으로서 고찰하기로 하자.

상술한바와 같이 매개 상품의 가치가 그 상품의 사용가치에 물질화되여있는 로동의 량에 의하여, 그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로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된다.① 이것은 로동과정의 결과로서 우리 자본가의 수중에 들어간 생산물에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우선 이 생산물에 대상화되여있는 로동이 계산되여야 한다.

이 생산물이 레컨대 면사라고 하자.

면사의 생산에는 우선 원료 레컨대 10폰드의 면화가 필요하였다. 이 면화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여기서 연구할 필요는 없다. 왜냐 하면 자본가는 시장에서 그것을 그 가치대로 레컨대 10실링에 샀기때문이다. 면화의 가격에는 그 생산에 필요한 로동이 이미 일반적사회적로동으로서 표현되여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면화의 가공에 소모된, 방추량이 사용된 다른 모든 로동수단을 대표한다고 가정하고 그것이 2실링의

① 이 책 152페지를 보라. 一편집자

가치를 가진다고 하자. 만약 12실링의 금량이 24로동시간 또는 2로동일의 생산물이라고 한다면 우선 이 면사에는 2로동일이 대상화되여있는것으로 된다.

면화가 그 형태를 변화시켰으며 소비된 방추량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사정때문에 미혹되여서는 안된다. 만약 40폰드의 면사의 가치=40폰드의 면화의 가치+1개의 방추의 가치라고 한다면, 다시말하면 만약 이 등식의 두변을 생산하는데 동일한 로동시간이 필요하다면 일반적가치법칙에 따라 10폰드의 면사는 10폰드의 면화와 $\frac{1}{4}$개 방추의 등가물이다. 이 경우에 동일한 로동시간이 한편에서는 면사라는 사용가치로 표현되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면화와 방추라는 사용가치로 표현된다. 따라서 가치로 보아서는 그것이 면사로서 나타나든지 방추 또는 면화로서 나타나든지 그것은 아무래도 좋다. 방추와 면화가 조용하게 나란히 놓여있지 않고 방적과정에서 결합되고 이 결합이 그 사용형태를 변화시켜 그것들을 면사로 전화시킨다는 사정은 방추와 면화가 단순교환을 통하여 면사라는 등가물로 바뀌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추와 면화의 가치에는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면화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은 면화를 원료로 하는 면사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의 일부분이며 따라서 그것은 면사속에 포함된다. 방추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로동시간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왜냐 하면 방추의 마멸이나 소비가 없이는 면화를 실로 뽑을수 없기때문이다.(11)

그리하여 면사의 가치 즉 면사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시

(11) 《상품생산에 직접 사용된 로동뿐만아니라 그 로동을 돕는 기구, 도구, 건물에 지출된 로동도 역시 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준다.》(리카도 《정치경제학원리》, 1821년 런던 제3판, 제1장, 16페지)

간이 고찰되는 한에 있어서는 면화 그자체와 소모된 방추량을 생산하기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에는 면화와 방추로써 면사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하여야 할 여러가지 특수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분리된 로동과정들은 이를 하나의 동일한 로동과정의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각이한 단계로 간주할수 있다. 면사에 포함되여있는 모든 로동은 과거로동이다. 면사를 형성하는 요소들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은 벌써 오래전에 지나갔고 과거완료형에 속하는데 이에 반하여 최종과정인 방적에 직접 사용된 로동은 현재에 가깝고 현재완료형에 속한다는 사정은 전혀 아무래도 좋은것이다. 만약 한채의 집을 짓는데 일정한 량의 로동 례컨대 30로동일이 필요하다면 이 집에 합체된 로동시간의 총량은 제30일째의 로동일이 제1일의 로동일보다 29일 늦어서야 생산에 들어갔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로동재료와 로동수단에 포함되여있는 로동시간은 전적으로 방적과정의 마지막에 방적의 형태로 첨가된 로동보다 얼마전 단계에서 지출된데 불과한것처럼 간주될수 있다.

그리하여 12실링의 가격으로 표현되는 면화와 방추라는 생산수단의 가치는 면사의 가치 또는 생산물의 가치의 구성부분으로 된다.

그러나 여기서 두 조건이 충족되여야 한다. 첫째로, 면화와 방추는 실지 어떤 사용가치의 생산에 사용되여야 한다. 우리가 든 실례에 있어서는 그것들로 면사가 제조되지 않으면 안된다. 가치에 대하여서는 어떤 사용가치가 가치의 담당자로 되는가 하는것은 아무래도 좋지만 그러나 어쨌든 어떤 사용가치가 가치를 담당해야 한다. 둘째로, 주어진 사회적생산조건하에서 필요한 로동시간만이 지출되였다는것이 전제로

되여있다. 따라서 만약 1폰드의 면사를 뽑아내는데 1폰드의 면화만 필요하다면 1폰드의 면사를 형성하는데는 1폰드의 면화만 소비되여야 한다. 방추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자본가가 망녕이 들어서 철제방추 대신에 금제방추를 사용한다 해도 면사의 가치에는 의연히 사회적으로 필요한 로동만이, 다시말하면 철제방추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만이 들어갈것이다.

이제는 생산수단 즉 면화와 방추가 면사의 가치의 얼마만한 부분을 형성하는가를 알았다. 그 부분은 12실링 즉 2로동일의 물질화와 같다. 이제는 방적공자신의 로동이 면화에 첨가하는 가치부분이 문제로 된다.

우리는 이제 이 로동을 로동과정을 고찰할 때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고찰하여야 한다. 로동과정을 고찰할 때에는 면화를 면사로 전화시키는데 필요한 합목적적활동이 문제로 되였다. 기타 조건이 모두 같다면 로동이 합목적적일수록 면사는 그만큼 더 좋을것이다. 방적공의 로동은 다른 종류의 생산적로동과는 특수하게 구별되는것이였다. 그리고 이 구별은 방적의 특수한 목적, 그 작업의 특수한 방식, 그 생산수단의 특수한 본성, 그 생산물의 특수한 사용가치에 주체적으로도, 객체적으로도 나타났다. 면화와 방추는 방적로동의 생활수단으로는 필요하나 그것들로 강선포를 만들수는 없다. 이와 반대로 방적공의 로동은 그것이 가치를 형성하는 한에 있어서는, 다시말하면 가치의 원천인 한에 있어서는 대포의 강선을 만드는 로동자의 로동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며 또 더 가까운 례로 말하면 면사의 생산수단에 실현되여있는 면화재배자와 방추제조자의 로동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오직 이 동일성때문에 면화재배와 방추제조와 방적은 동일한 총가치

즉 면사의 가치의 단지 량적으로만 서로 구별되는 부분들을 형성할수 있다. 여기에서는 벌써 로동의 질 즉 로동의 속성과 내용이 문제로 되는것이 아니라 오직 로동의 량만이 문제로 된다. 이 량은 쉽게 계산할수 있다. 우리는 방적로동이 단순로동, 사회적평균로동이라고 가정한다. 우리는 이것과 반대되는 가정도 사태를 조금도 변동시키지 않는다는것을 후에 알게 될것이다.①

로동과정에서 로동은 부단히 부정지의 형태로부터 존재의 형태로, 운동의 형태로부터 대상성의 형태로 전환한다. 한시간이 끝날 때 방적운동은 일정한 량의 면사로 표현되며 따라서 일정한 량의 로동 즉 1로동시간이 면화에 대상화된다. 우리가 로동시간 즉 방적공의 생명력의 1시간의 지출이라고 말하는 리유는 방적로동이 여기에서는 그것이 방적이라는 특수한 로동인 한에서가 아니라 로동력의 지출인 한에서만 의의가 있는것이기때문이다.

이제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것은 이 과정이 계속되는 동안에 즉 면화의 면사에로의 전화가 계속되는 동안에 사회적필요로동시간만이 소비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만약 정상적인 즉 평균적인 사회적생산조건밑에서 1로동시간에 a폰드의 면화가 b폰드의 면사로 전화되여야 한다면 12×a폰드의 면화를 12×b폰드의 면사로 전화시키는 그러한 로동일만이 12시간 로동일로서 인정된다. 왜냐 하면 사회적필요로동시간만이 가치를 형성하는 로동시간으로 인정되기때문이다.

로동 그자체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 원료와 생산물도 또한 본래의 로동과정의 립장에서 볼 때와는 전혀 다른 광경을 보여준다. 원료는 이 경우에 오직 일정한 량의 로동의 흡수기로서만 의의를 가진다. 이 흡수에 의하여 원료는 실제

① 이 책 230~231페지를 보라. —편집자

면사로 전화한다. 왜냐 하면 로동력은 방적활동의 형태로써 지출되여 원료에 첨가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그 생산물인 면사는 이제는 면화에 의하여 흡수된 로동의 측정기에 불과하다. 만약 1시간에 $1\frac{2}{3}$폰드의 면화가 실로 뽑힌다면 또는 $1\frac{2}{3}$폰드의 면사로 전화한다면 10폰드의 면사는 흡수된 6로동시간을 표시한다. 경험적으로 확정되는 일정한 량의 생산물은 이제는 오직 일정한 량의 로동 즉 일정한 량의 응고된 로동시간을 표시할뿐이다. 그것은 사회적로동의 1시간분, 2시간분, 1일분의 물질화일따름이다.

로동이 다름아닌 방적로동이고 그 재료가 면화이고 그 생산물이 면사라는 사정은 로동대상 그자체가 벌써 생산물이고 따라서 원료라는 사정과 꼭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아무래도 좋다. 로동자가 방적공장에서가 아니라 탄광에서 일한다면 로동대상인 석탄은 천연적으로 존재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층에서 채굴해낸 일정한 량, 례컨대 1쩬트네르의 석탄은 일정한 량의 흡수된 로동을 대표할것이다.

로동력의 판매에서는 로동력의 일가치가 3실링이고 이 3실링에는 6로동시간이 체현되여있으며 따라서 그만큼한 로동량이 로동자의 1일분 생활수단의 평균량을 생산하는데 필요한것이라고 가정되였다.① 이제 우리의 방적공이 1로동시간에 $1\frac{2}{3}$폰드의 면화를 $1\frac{2}{3}$폰드의 면사로 전화시킨다면(12) 6시간에는 10폰드의 면화를 10폰드의 면사로 전화시킬것이다. 따라서 이 면화는 방적과정이 계속되는 동안에 6로동시간을 흡

(12) 여기의 수자는 전적으로 임의로 가정한것이다.

① 이 책 200~201페지를 보라. ㅡ편집자

수한다. 이 6로동시간은 3실링의 금량으로 표현된다. 그리하여 이 면화에는 방적자체에 의하여 3실링의 가치가 첨가된다.

이제 생산물 즉 10폰드의 면사의 총가치를 조사해보기로 하자. 이 10폰드의 면사에는 $2\frac{1}{2}$의 로동일이 대상화되여있다. 즉 2일의 로동은 면화와 방추량에 포함되여있고 $\frac{1}{2}$일의 로동은 방적과정에 흡수되였다. 그리고 이 로동시간은 15실링의 금량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이 10폰드의 면사의 가치에 해당한 가격은 15실링이고 1폰드의 면사의 가격은 1실링 6펜스로 된다.

우리의 자본가는 깜짝 놀란다. 생산물의 가치는 선대된 자본의 가치와 같다. 선대된 가치는 증식되지 않았고 아무런 잉여가치도 생산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화폐는 자본에로 전화되지 않았다. 10폰드의 면사의 가격은 15실링이다. 그런데 상품시장에서 이 생산물의 형성요소들에, 또는 같은 말이지만 로동과정의 요인들에 지출된것도 15실링이였다. 즉 10실링은 면화에, 2실링은 소모된 방추량에, 그리고 3실링은 로동력에 지출되였다. 면사의 가치가 더 커졌지만 이것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왜냐 하면 면사의 가치는 이전에 면화와 방추와 로동력간에 분배되여있던 가치의 합계에 불과하며 기존가치의 이러한 단순한 합계로부터는 잉여가치가 결코 발생하지 못하기때문이다.(13) 이 모든 가치들이 이제는 한 물

---

(13) 이것은 일체 비농업적로동의 비생산성에 관한 중농학파들의 학설의 기초로 되는 기본명제이고 또 이 명제는 전문적경제학자들에게는 론박할수 없는것이다. 《어떤 한 물건에 다른 많은 물건의 가치를 가하는 〔례컨대 아마포에 직조공의 생활유지비를 가하는〕 이 방법 즉 이를테면 하나의 가치우에 몇개의 가치를 쌓아올리는 이 방법은 그 가치를 그만큼 증대시킨다,…(가한다)는 용어는 로동생산물의 가격이 형성되는 방식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다, 이 가격은 소비되고 가산된 많은 가치의 총액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가한다)는것은 (승한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메르씨에 드라리비

건에 집중되였으나 그것들은 15실링이라는 화폐액이 세개의 상품구매에 의하여 분할되기전에 역시 이 15실링의 화폐액에 집중되여있었던것이다.

이 결과는 그자체로서는 기이한것이 아니다. 1폰드의 면사의 가치는 1실링 6펜스이며 따라서 10폰드의 면사에 대하여서는 우리 자본가는 상품시장에서 15실링을 지불해야 할것이다. 자본가가 시장에서 이미 지어놓은 집을 사든 혹은 자신이 그것을 새로 짓든 그 어느 경우에도 집을 얻는데 지출되는 화폐를 증가시키지는 않을것이다.

속류경제학에 정통하고있는 자본가는 자기가 화폐를 선대하는것은 그것을 더 많은 화폐로 만들려는 의도에서였다고 말할것이다.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길도 선량한 의도로써 포장되여있다[174]고 그도 마찬가지로 생산을 하지 않으면서 돈벌이를 할 의도는 가질수 있은것이다.(14) 그는 위협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다시는 머저리노릇을 안하겠다. 앞으로는 상품을 자기로 제조하지 않고 시장에서 기성품을 사겠다라고. 그러나 만약 그의 자본가형제들이 모두 그렇게 한다면 그는 어떻게 시장에서 상품을 발견할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화폐를 먹을수는 없다. 그는 설교한다. 나의 절욕을 고려하라. 나는 나의 15실링을 허투루 써버릴수도 있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생산적으로 소비하여 면사를 만들어냈다고. 그러나 그 보수로서 그는 후회 대신에 면사를 가지고있는것이다. 그는 결코 이전에 화폐축장자가 한 일을 되풀이해

애르 《정치사회의 자연적 및 본질적 질서》, 《중농학파》, 1846년 빠리판, 제2부, 제1장, 599페지에 수록)

(14) 레컨대 자본가는 1844~1847년간에 자기 자본의 일부분을 생산에서 끌어내여 철도주권의 투기에 탕진하여버렸다. 또 미국남북전쟁[8]시기에 자본가는 리버풀면화거래소에서 투기를 하기 위하여 공장을 폐쇄하고 공장로동자를 거리에 내쫓았다.

서는 안될것이다. 금욕의 설교가 어떤 결과를 얻는가 하는것은 화폐축장자가 우리에게 보여준바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서는 황제도 그 권력을 상실한다.① 그의 금욕의 공적이 어떠하든 그 금욕에 특별히 보상할만한것은 아무것도 없는것이다. 왜냐 하면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생산물의 가치는 오직 이 과정에 투입된 상품가치의 총량과 같을뿐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선행이 선행에 대한 보수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위로하는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할 대신에 자본가는 더 집요하게 주장한다. 면사는 나에게는 필요없다. 나는 그것을 팔기 위하여 생산하였다라고. 그렇다면 그는 그것을 팔면 될것이다! 혹은 더 간단하게 이제부터는 그자신에게 필요한 물건만을 생산하면 될것이다.—이것은 자본가의 가정의사 머칼러크가 벌써 과잉생산이라는 류행병에 대한 특효약으로서 그에게 써준 처방이다.② 그러나 자본가는 더 강경하게 반항한다. 과연 로동자는 아무것도 없는데서 자기의 손만으로 로동생산물을 창조해내며 상품을 생산해내는가? 내가 로동자에게 재료를 주었기때문에 그들이 그것으로써만 또 그것에 자기의 로동을 체현시킬수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사회의 대부분은 그러한 적빈자로써 구성되여있기때문에 나는 나의 생산수단, 나의 면화와 나의 방추로써 사회에 한량없는 봉사를 하였을뿐만아니라 또 내가 생활수단까지도 제공하여준 로동자 그자신에게도 한량없는 봉사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나는 이 봉사에 대한 보수를 받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그러나 로동자는 면화와 방추를 면사로 전화시킴으로써 그를 위하여 대등한 봉사를 하지 않았는가? 그뿐만아니라 여

① 독일속담 —편집자
② 이 책 179페지를 보라. —편집자

기서 문제는 봉사에 있는것이 아니다.(15) 봉사라는것은 상품이든 로동이든 어떤 사용가치의 유용한 작용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16)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것은 교환가치이다. 자본가는 로동자에게 3실링의 가치를 지불하였다. 로동자는 면화에 첨가된 3실링의 가치로써 그에게 정확한 등가물을 반환하였다. 즉 가치에 대하여 가치를 반환하였다. 방금 그처럼 자본을 가지고 뽐내던 우리의 친구는 갑자기 그자신이 사용하는 로동자처럼 겸손한 태도를 취한다. 나자신도 일하지 않았는가? 방적공을 감시하며 감독하는 로동을 하지 않았는가? 나의 이러한 로동도 역시 가치를 형성하지 않았는가라고. 그자신이 사용하고있는 감독과 지배인은 어깨를 으쓱거린다. 그러나 그는 이윽고 쾌활하게 웃으면서 본래 표정으로 돌아간다. 그는 지루한 공담으로 우리를 우롱하였다. 그는 이러한 공담을 위하여서는 한푼도 들이지 않는다. 그는 이러한 허위적인 구실이나 공담은 특히 그것을 위하여 고용하고있는 정치경제학교수에게 일임한다. 그자신은 실제가인만큼 사업의 범위밖에서 말하는것은 반드시 깊이 생각한것이라고는 할수

---

(15) 《뽐내고 단장하고 분식할대로 하라.…그러나 더 많이 또는 더 좋은것 (준것에 비하여) 을 취하는자는 고리대이다. 그런자는 절도나 강도와 마찬가지로 이웃사람에게 봉사하는것이 아니라 해를 끼친다. 봉사나 선행이라고 하는것이 모두가 반드시 이웃사람에 대한 봉사와 선행인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간통하는 남녀는 상호간에 크나큰 봉사와 만족을 주기때문이다. 기사도 방화모살자들에게 그들이 길가에서 략탈하며 나라와 인민들을 해치는것을 방조함으로써 크게 봉사한다. 교황파의 교도들도 전체 사람을 물에 빠뜨려죽이거나 불태워죽이거나 학살하거나 옥사하게 하지는 않고 그래도 사람을 얼마간은 살려두고 추방 혹은 소유물의 박탈만을 한다는것으로써 우리에게 크게 봉사하고 있다. 악마까지도 자기에게 복무하는자에게는 한없이 큰 봉사를 한다.…요컨대 이 세상에는 커다란, 훌륭한, 일상적인 봉사와 선행이 가득차있다.》 (마르틴 루테르 《목사제씨에게, 고리대를 반대하여 설교하라》, 1540년 위텐베르그판)

(16) 나는 이 점에 대하여 《정치경제학비판》, 14페지에서 특히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봉사〉라는 범주가 J. B. 쎄 및 F. 바스띠아와 같은 경제학자들에게 어떠한 〈봉사〉를 해야 할것인가 하는것은 알만한 일이다.》[175]

없으나 사업의 범위내에서 하는 일은 언제나 잘 알고있는것이다.

더 상세히 고찰하여보자. 로동력의 일가치는 3실링이였다. 그것은 로동력 그자체에 반로동일이 대상화되여있기때문이다. 다시말하면 로동력의 생산을 위하여 매일 필요되는 생활수단에 반로동일이 들기때문이다. 그러나 로동력에 이미 들어있는 과거로동과 로동력이 제공할수 있는 산로동은 즉 로동력의 매일의 유지비와 로동력의 매일의 지출은 두개의 전혀 다른 량이다. 전자는 로동력의 교환가치를 규정하며 후자는 로동력의 사용가치를 형성한다. 로동자를 24시간동안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반로동일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결코 로동자가 온종일 로동하는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로동력의 가치와 로동과정에서의 로동력의 가치증식은 두개의 다른 량이다. 이 가치의 차는 자본가가 로동력을 살 때에 념두에 두고있은것이다. 면사 또는 장화를 제조할수 있다는 로동력의 유용한 속성은 하나의 불가결한 조건일따름이였는데 그것은 가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로동이 유용한 형태로 지출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이다. 그러나 결정적인것은 이 상품의 독특한 사용가치 즉 가치의 원천이며 그것도 그자신이 가지고있는것보다 더 많은 가치의 원천이라는 이 상품의 독특한 사용가치였다. 이것이야말로 자본가가 이 상품에 기대하는 독특한 봉사인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자본가는 상품교환의 영원한 법칙에 따라 행동한다. 사실상 로동력의 판매자는 온갖 다른 상품의 판매자와 마찬가지로 로동력의 교환가치를 실현하고 그 사용가치를 양도한다. 그는 후자를 내여주지 않고서는 전자를 받을수 없다. 로동력의 사용가치 즉 로동 그자체는 판매된 기름의 사용가치가 기름장사에게 속하

지 않는것과 마찬가지로 로동력의 판매자에게 속하지 않는다. 화폐소유자는 이미 로동력의 일가치를 지불하였다. 그러므로 로동력의 1일간 사용 즉 1일분 로동은 그에게 속한다. 로동력을 1일간 유지하는데는 반로동일밖에 필요하지 않지만 로동력은 온종일 작용할수 있다는것 즉 로동할수 있다는 사정, 따라서 로동력의 1일간 사용에 의하여 창조되는 가치는 그자신의 1일분 가치의 2배의 크기라는 사정은 구매자에게는 특별한 행운으로 되나 결코 판매자에 대한 부당행위인것은 아니다.

우리의 자본가는 그로 하여금 미소를 금치못하게 하는 이 사정을 미리부터 알고있었다.[176] 그러므로 로동자는 작업장에서 6시간뿐만아니라 12시간의 로동과정에 필요한 생산수단을 발견한다. 만약 10폰드의 면화가 6로동시간을 흡수하여 10폰드의 면사로 전화된다면 20폰드의 면화는 12로동시간을 흡수하여 20폰드의 면사로 전화될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 연장된 로동과정의 생산물을 고찰하여보자. 이 20폰드의 면사에 이제는 5로동일이 대상화되여있다. 4로동일은 소비된 면화량과 방추량에 대상화되였고 1로동일은 방적과정중에 면화에 의하여 흡수되여있다. 그런데 5로동일의 금표현은 30실링 또는 1파운드 10실링이다. 따라서 이것은 이 20폰드의 면사의 가격이다. 1폰드의 면사는 이전과 같이 1실링 6펜스이다. 그러나 로동과정에 투입된 상품들의 가치총액은 27실링이였다. 면사의 가치는 30실링이다. 생산물의 가치는 그 생산에 선대된 가치보다 $\frac{1}{9}$증가하였다. 그리하여 27실링은 30실링으로 전화하였으며 3실링의 잉여가치를 가져왔다. 요술은 드디여 성공하였다. 화폐는 자본으로 전화하였다.

문제의 모든 조건은 해결되였으며 상품교환의 법칙은 조금도 위반되지 않았다. 등가물이 등가물과 교환되였다. 자본가는 구매자로서 매개 상품—면화, 방추, 로동력—에 대하여 그 가치대로 지불하였다. 그다음에 그는 다른 모든 상품구매자가 하는 일을 하였다. 그는 그 상품들의 사용가치를 소비하였다. 로동력의 소비과정은 동시에 상품생산과정으로서 30실링의 가치를 가지는 20폰드의 면사라는 생산물을 생산하였다. 자본가는 이전에는 상품을 샀으나 이제는 시장에 돌아가서 상품을 판다. 그는 면사를 1폰드당 1실링 6펜스에 파는데 이것은 그 가치보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다. 그래도 그는 처음에 류통에 투입한것보다 3실링이나 더 많이 류통에서 끌어낸다. 그의 화폐의 자본에로의 전화라는 이 전체 과정은 류통분야에서 진행되는것이며 또 류통분야에서 진행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류통을 매개로 하여 진행된다. 왜냐 하면 그것은 상품시장에서의 로동력의 구매에 의하여 조건지어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류통에서 진행되는것이 아니다. 왜냐 하면 류통은 생산분야에서 일어나는 가치증식과정을 준비하는데 지나지 않기때문이다. 그리하여 《최선의 세계에서는 만사가 최선의 상태에 있다.》[177]

자본가는 새로운 생산물의 물질적형성자로서 또는 로동과정의 요인으로서 쓰이는 상품으로 화폐를 전화시킴으로써 즉 그 상품들의 죽은 대상성에 산로동력을 합체시킴으로써 가치 즉 대상화된 죽은 과거의 로동을 자본으로, 자기를 증식하는 가치로, 《사랑에 번민하듯》[178] 《일》하기 시작하는 활기띤 괴물로 전화시킨다,

이제 가치형성과정을 가치증식과정과 비교해본다면 가치증식과정은 일정한 점을 넘어서 연장된 가치형성과정에 불과

한것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만약 후자가, 자본에 의하여 지불된 로동력의 가치가 새로운 등가물에 의하여 보상되는 그 점까지 계속될뿐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가치형성과정이다. 만약 가치형성과정이 이 점을 넘어서 계속된다면 그것은 가치증식과정으로 된다.

다음으로 가치형성과정을 로동과정과 비교해본다면 후자는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유용로동으로써 구성되여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여기에서는 운동은 질적측면에서, 그 특수한 방식에서, 목적과 내용의 측면에서 고찰된다. 가치형성과정에서는 이 동일한 로동과정이 오직 량적측면에서만 표현된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것은 로동이 그 작업에 필요한 시간 또는 로동력이 유용하게 지출되는 시간의 길이뿐이다. 여기에서는 로동과정에 들어오는 상품들도 이제는 합목적적으로 작용하는 로동력의, 일정한 기능을 하는 물적요소로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이제는 일정한 량의 대상화된 로동으로서 계산될뿐이다. 로동은 생산수단에 들어있는것이거나 로동력에 의하여 첨가되는것이거나를 막론하고 이제는 시간의 척도에 의해서만 계산된다. 그것은 몇시간분, 며칠분 등등으로 된다.

그러나 로동은 사용가치의 생산에 지출된 시간이 사회적으로 필요한것인 한에서만 계산에 들어간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가 포함된다. 로동력은 반드시 정상적인 조건하에서 기능하여야 한다. 만약 방적기계가 방적업에서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로동수단으로 되여있다면 로동자에게 물레를 주어서는 안된다. 로동자는 정상적품질의 면화 대신에 쉴새없이 끊어지는 부스레기 솜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두 경우에 다 로동자는 1폰드의 면사의 생산에 사회

적으로 필요한 로동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될것인데 이 여분의 시간은 가치 또는 화폐를 형성하지 못할것이다. 그러나 로동의 대상적요인의 정상적성격은 로동자에게 의존하는것이 아니라 자본가에게 의존한다. 또 하나의 조건은 로동력 그자체의 정상적성격이다. 로동력은 그것이 사용되는 부문에서 지배적인 평균정도의 숙련과 기능과 민첩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자본가가 로동시장에서 산것은 정상적품질의 로동력이였다. 이 로동력은 보통의 평균정도의 긴장도로, 사회적으로 보통정도의 강도로 지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대하여 자본가는 로동하지 않고 시간을 랑비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는것과 같은 세심성을 가지고 감시한다. 그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고 로동력을 샀다. 따라서 그는 자기것을 확보하려고 애쓴다. 그는 도적을 맞히려고 하지 않는다. 끝으로—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이 자본가나리는 자기의 독자적인 형법전을 가지고있다—원료와 로동수단의 불합리한 랑비가 있어서는 안된다. 왜냐 하면 랑비된 재료나 로동수단은 불필요하게 지출된 대상화된 로동의 량을 표시하며 따라서 그것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며 가치를 형성하는 생산물에 참가하지 않기때문이다.(17)

---

(17) 이것은 노예제에 기초한 생산을 비싸게 만드는 사정의 하나이다. 여기서는 로동자는 고대인의 적절한 표현에 의하면 오직 말하는 도구로서만, 절반 말하는 도구로서의 동물 및 말못하는 도구로서의 생명없는 로동도구와 구별될수 있다.[179] 그러나 그자신은 동물 및 로동도구를 사용할 때 자기는 그것들과는 같지 않다는것, 자기는 인간이라는 것을 그것들에게 느끼게 한다. 그는 그것들을 학대하며 또 쾌감을 가지고 그것들을 못쓰게 만듦으로써 자기가 그것들과는 다르다는 자존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생산방식에 있어서는 가장 조잡하고 가장 둔중하고 또 그렇기때문에 좀처럼 파손되지 않는 로동도구만을 리용하는것이 경제적원칙이다. 그러므로 메히꼬만연안의 노예제주들에서는 남북전쟁이 시작되기전까지 고대중국식보습이 사용되고있었는데 이러한 보습은 메돼지와 두더지모양으로 땅을 파헤지기는 하나 고랑을 치며 땅을 파뒤집지는 못하였다. J. E. 캐언즈 《노예력》, 1862년 런던판, 46페지이하 참조하라. 옴스테드는 그의 저서 《연해노예제 제 주 기행》 (46~47페지) 에서 특히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나는 이곳에서

이리하여 이전에 상품분석에서 얻은, 사용가치를 창조하는 한에 있어서의 로동과 가치를 창조하는 한에 있어서의 그 동일한 로동간의 구별①은 이제는 생산과정의 각이한 두 측면의 구별로서 나타난다.

로동과정과 가치형성과정과의 통일로서는 생산과정은 상품의 생산과정이다. 로동과정과 가치증식과정과의 통일로서는 생산과정은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이며 상품생산의 자본주의적 형태이다.

이미 말한바와 같이 가치증식과정에 대하여서는 자본가가 취득하는 로동이 단순한 사회적평균로동이든 또는 더 복잡한 로동, 더 높은 비중을 가지는 로동이든 그것은 아무래도 좋다. 사회적평균로동에 비하여 더 고급적이고 더 복잡한 로동으로서 인정되는 로동은, 단순한 로동력에 비하여 더 많은 양성비가 들며 그것을 생산하는데 더 많은 로동시간이 들며 따라서 더 큰 가치를 가지는 그러한 로동력의 발현이다.

사용되고있는 도구들을 보았는데 그것은 리성을 가진 사람인 이상 어느 누구도 임금로동자에게 사용하라고 내여줄수 없는 도구들이였다. 그 도구들이 엄청나게 무겁고 둔하므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도구에 비하면 적어도 10%는 힘이 더 들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는데 의하면 노예들이 도구를 부주의하고 거칠게 다루는 조건하에서는 더 가볍고 정교한 도구를 노예들에게 제공한다 하여도 이보다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의 로동자들에게 늘 주고있고 또 그것을 줌으로써 우리가 리득을 보는 그러한 도구는 버지니아주의 곡식밭에서는, 비록 그 토지가 우리 나라 밭에 비해서 더 연하고 돌이 적기는 하지만 아마 하루동안도 견디지 못할것이다. 그리고 또 나는 어째서 농장에서는 말 대신에 일반적으로 노새가 사용되는가고 물었는데 첫째가는 그리고 분명히 결정적인 리유는 다음과 같은것이였다. 즉 말은 흑인들에게서 항상 학대를 받아 견디여낼수 없다는것이다. 말은 학대를 받으면 인차 절름발이가 되든가 병신이 되는데 노새는 매질에도 견디며 가끔 한두끼 굶겨도 치명적인 해는 입지 않으며 또 설사 좀 대수 거두거나 좀 과도히 부려도 감기 들거나 병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지금 내가 글쓰고있는 이 방의 창문가에 가 서기만 하면 나는 거의 어느때라도 가축을 학대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북방에서라면 어떤 농장주라도 대개는 이러한 마부를 당장 해고시켜버릴것이다.》

---

① 이 책 54~60, 220~221페지를 보라. —편집자

만약 이러한 로동력의 가치가 더 높다면 그것은 더 고급적인 로동으로 발현되며 동일한 시간내에 비교적 더 높은 가치에 대상화된다. 그러나 방적로동과 보석세공로동간의 등급상 구별이 어떻든간에 보석세공로동자가 자기자신의 로동력의 가치를 보상하는데 지나지 않는 로동부분은 그가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추가로동부분과 질적으로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다. 이 두 경우에 잉여가치는 오직 로동의 량적초과에 의해서만, 동일한 로동과정의ㅡ한 경우에 있어서는 면사의 생산과정의,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보석의 생산과정의ㅡ시간적연장에 의해서만 생긴다.(18)

다른 한편 어느 가치형성과정에서나 례컨대 고급로동 1

(18) 고급로동과 단순로동과의 구별, 숙련로동과 미숙련로동간의 구별은 부분적으로는 단순히 환상에 기초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이미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전통적인 관습으로서만 존재하는 그러한 구별에 기초하고있다. 그것은 또 부분적으로는 로동계급중의 어떤 계층이 더욱 고립무원한 상태에 빠짐으로 하여 다른 계층처럼 자기의 로동력에 대하여 그 가치대로 지불할것을 강요할수 없는 사실에 기초하고있다. 이 구별에 있어서는 우연적사정이 대단히 큰 역할을 놀기때문에 이 두 종류의 로동이 위치를 전도하는 경우까지 생겨난다. 례컨대 자본주의적생산이 발달한 나라들에서는 다 그러하지만 로동계급의 체질이 약해지고 비교적 피폐된 곳에서는 근육의 힘이 더 요구되는 거치른 로동이 그보다 퍽 정밀한 로동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더 고급적인 로동으로 되고 이와는 반대로 더 정밀한 로동이 단순한 로동의 등급에로 저락하게 된다. 례컨대 영국에서는 벽돌공의 로동이 릉직직포공의 로동보다 훨씬 더 높은 등급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한편 릉직전모공의 로동은 비록 그것이 많은 육체적긴장을 요구하며 게다가 또 매우 비위생적이라 할지라도 《단순한》 로동으로 간주되고있다. 그리고 또 이른바 《숙련로동》이 국민의 로동가운데서 량적으로 큰 범위를 차지하고있다고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랭의 계산에 의하면 잉글랜드(및 웨일즈)에서 1,100만이상의 사람들이 단순한 로동으로 살아가고있다. 그의 저술 당시의 인구총수 1,800만중에서 100만의 귀족과 150만의 극빈민, 부랑자, 범죄자, 매음부 등을 제외하여야 하며 소금리생활자, 판리, 작가, 예술가, 학교교원 등을 포함한 465만명의 중간계급을 제외하여야 한다. 그는 이 465만을 끌어내기 위하여 은행업자외에 높은 임금을 받는 모든 《공장로동자들》도 중간계급의 로동하는 부분에 포함시키고있다! 벽돌공까지도 《고급로동자》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해서 그에게는 우에서 말한 1,100만이 남게 된것이다. (S. 랭 《국민적빈곤, 그 원인과 구제책》, 1844년 런던판, (49~52페지의 여러곳)) 《먹을것을 얻기 위하여 보통의 로동이외에는 아무것도 제공할것이 없는 큰 계급이 인구의 대다수를 이루고있다.》 (제임즈 밀 《식민지》, 《대브리텐백과사전》 추가판, 1831년판에 수록)

일은 단순로동 x일에 환원되듯이 고급로동은 항상 사회적평균로동에 환원되지 않으면 안된다.(19) 따라서 자본이 사용하는 로동자가 단순한 사회적평균로동을 수행한다고 가정한다면 쓸데없는 환산이 생략되며 분석이 간단하게 될것이다.

---

(19) 《가치척도로서의 로동을 말할 때에는 그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특수한 종류의 로동을 의미한다.…다른 종류의 로동에 대한 그 로동의 비률은 쉽게 확정될수 있다.》 (〔J. 캐저노우브〕 《정치경제학개요》, 1832년 런던판, 22~23페지)

제 6 장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로동과정의 각이한 요인들은 생산물가치의 형성에 각이하게 참가한다.

로동자는 그의 로동의 일정한 내용과 목적과 기술적성격 여하를 막론하고 로동대상에 일정한 량의 로동을 첨가함으로써 로동대상에 새로운 가치를 첨가한다. 다른 한편 우리는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를 다시 생산물의 가치의 구성부분으로서, 례컨대 면화와 방추의 가치를 면사의 가치에서 발견한다. 따라서 생산수단의 가치는 생산물에 이전됨으로써 보존된다. 이러한 이전은 생산수단이 생산물로 전화되는 동안에 즉 로동과정에서 수행된다. 그것은 로동에 의하여 매개된다. 그러면 어떻게 매개되는가?

로동자는 동일한 시간에 이중으로 로동하는것은 아니다. 즉 한번은 자기의 로동으로써 면화에 어떤 가치를 첨가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한번은 면화의 낡은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또는 같은 말이지만 그가 가공하는 면화의 가치와 그가 로동하는데 사용하는 방추의 가치를 생산물인 면사에 이전하기 위하여 로동하는것은 아니다. 그는 다만 새로운 가치를 첨가함으로써 낡은 가치를 보존한다. 그러나 로동대상에 새로운 가치를 첨가하는것과 생산물에 낡은 가치를 보존하는것은, 비록 로동자가 동일한 로동시간에 이중으로 로동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시간에 로동자가 달성하는 두 개의 전혀 다른 결과이므로 그 결과의 이중성은 분명히 그의 로동자체의 이중성으로써만 설명될수 있다. 그의 로동은 동일한 시간내에 한 속성에 의하여서는 가치를 창조해야 하며 다른 한 속성에 의해서는 가치를 보존 또는 이전하여야 한다.

매개 로동자는 어떻게 로동시간을 첨가하며 따라서 또한 가치를 첨가하는가? 언제나 오직 그의 특유한 생산적로동방식의 형태로써만 첨가한다. 방적공은 오직 실을 뽑음으로써만, 직포공은 오직 천을 짬으로써만, 야장은 오직 쇠를 벼림으로써만 로동시간을 첨가한다. 그리고 또 그들이 로동일반을, 따라서 새로운 가치를 첨가하는 합목적적형태를 통하여서만 즉 방적, 직포, 단야를 통하여서만 생산수단인 면화와 방추, 면사와 직포기, 쇠와 모루는 생산물의, 일종 새로운 사용가치의 형성요소로 된다.(20) 생산수단의 사용가치의 낡은 형태는 소멸하나 그것은 오직 새로운 사용가치형태로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가치형성과정을 고찰할 때에 벌써 분명해진바와 같이 어떤 사용가치가 새로운 사용가치의 생산을 위하여 합목적적으로 소비되는 한에서는 그 소비된 사용가치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은 새로운 사용가치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의 일부분을 이루며 따라서 그것은 소비된 생산수단에서 새로운 생산물로 이전되는 로동시간이다. 따라서 로동자가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를 보존하는것 즉 그것을 생산물의 가치구성부분으로서 생산물에 이전하는것은 로동자가 로동일반을 첨가하는데 의하여서가 아니라 이 첨가되는

---

(20) 《로동은 소멸된 창조물 대신에 새로운 창조물을 제공한다.》(《국민정치경제학에 관한 론술》, 1821년 런던판, 13페지)

로동의 특수한 유용적성격에 의하여서이며 그 특수한 생산적 형태에 의하여서이다. 이러한 합목적적생산활동 즉 방적, 직포, 단야로서의 로동은 생산수단과 접촉하기만 하면 생산수단을 소생시켜 그것을 활기띠게 하여 로동과정의 요인으로 전화시키며 그것과 결합하여 생산물로 된다.

만약 로동자의 특수한 생산적로동이 방적이 아니라면 그는 면화를 면사로 전화시키지 못할것이며 따라서 면화와 방추의 가치를 면사에 이전하지 못할것이다. 그러나 같은 그 로동자가 직업을 바꾸어 가구사로 된다 하여도 그는 의연히 1로동일로써 그의 재료에 가치를 첨가할것이다. 따라서 로동자가 자기의 로동에 의하여 가치를 첨가하는것은 그의 로동이 방적로동 또는 가구사의 로동이기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추상적사회적로동일반이기때문이며 또 그가 일정한 가치량을 첨가하는것은 그의 로동이 어떤 특수한 유용적내용을 가지고 있기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일정한 시간 계속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방적공의 로동은 그 추상적일반적속성에 있어서는 즉 인간로동력의 지출로서는 새로운 가치를 면화와 방추의 가치에 첨가하며 또 방적과정으로서의 그 구체적, 특수적, 유용적 속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생산수단의 가치를 생산물에 이전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가치를 생산물에 보존한다. 이로부터 동일한 시간내에 수행되는 로동의 결과의 이중성이 나온다.

로동의 단순한 량적첨가에 의하여 새로운 가치가 첨가되며 첨가되는 로동의 질에 의하여 생산수단의 낡은 가치가 생산물에 보존된다. 로동의 이중적성격의 결과로서 생기는 동일한 로동의 이와 같은 이면적작용은 여러가지 현상들에 명백히 나타난다.

어떤 발명으로 방적공이 이전에는 36시간 걸려 방적하던 것과 같은 량의 면화를 이제는 6시간에 방적할수 있게 되였다고 하자. 그의 로동은 합목적적유용적생산활동으로서는 그 능력이 6배로 증가되였다. 그의 생산물은 이전의 6배로 즉 6폰드가 아니라 36폰드의 면사로 되였다. 그러나 그 36폰드의 면화는 이제는 이전에 6폰드의 면화가 흡수하던것과 같은 량의 로동시간밖에 흡수하지 않는다. 36폰드의 면화에는 이전의 방법에 비하여 새로운 로동이 $\frac{5}{6}$가 적게 첨가되며 따라서 이전에 첨가되던 가치의 $\frac{1}{6}$이 첨가될뿐이다. 다른 한편 이제는 생산물인 36폰드의 면사에는 6배의 면화가 들어있다. 이 6방적시간동안에는 6배의 원료가치가 보존되여 생산물에 이전된다. 비록 같은 량의 원료에는 이전에 비하여 $\frac{5}{6}$가 적게 새로운 가치가 첨가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분리할수 없는 동일한 과정에서 가치를 보존하는 로동의 속성과 가치를 창조하는 로동의 속성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것을 보여준다. 방적작업중에 같은 량의 면화에 들어가는 필요로동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면화에 첨가되는 새로운 가치는 그만큼 더 크며 한편 동일한 로동시간내에 실로 뽑히는 면화의 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물에 보존되는 낡은 가치는 그만큼 더 크다.

반대로 방적로동의 생산성이 변하지 않고 따라서 방적공이 1폰드의 면화를 면사로 전화시키는데 이전과 같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면화자체의 교환가치는 변하여 1폰드의 면화의 가격이 6배로 올랐거나 또는 $\frac{1}{6}$로 내렸다고 가정하자. 어느 경우에나 방적공은 같은 량의 면화에 의연히 동일한 로동시간을, 따라서 동일한 가치를 첨가하며 또 어느

경우에나 그는 동일한 시간내에 의연히 같은 량의 면사를 생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면화에서 면사라는 생산물에 이전하는 가치는 이전에 비하여 한 경우에는 그 $\frac{1}{6}$이며 다른 한 경우에는 그 6배이다. 로동수단이 비싸지거나 또는 싸지더라도 그것이 로동과정에서 의연히 종전과 같은 봉사를 하는 경우에도 사태는 이와 동일하다.

만일 방적과정의 기술적조건이 변하지 않고 그 생산수단의 가치도 역시 변하지 않는다면 방적공은 동일한 로동시간내에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같은 량의 원료와 기계를 종전대로 소비할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가 생산물에 보존하는 가치는 그가 첨가하는 새로운 가치에 정비례한다. 2주일간에는 그는 1주일간에 비하여 2배의 로동을, 따라서 2배의 가치를 첨가하며 또 그와 동시에 2배의 가치를 가지는 2배의 재료를 소비하며 2배의 가치를 가지는 2배의 기계를 소모하며 그리하여 그는 1주일간의 생산물에 보존하는 가치의 2배의 가치를 2주일간의 생산물에 보존한다. 주어진 변함없는 생산조건하에서는 로동자는 더 많은 가치를 첨가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가치를 보존한다. 그러나 그가 더 많은 가치를 보존하는것은 그가 더 많은 가치를 첨가하기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가치를 그자신의 로동에는 의존하지 않는, 변함없는 조건하에서 첨가하기때문이다.

물론 어떤 상대적의미에서는 로동자는 항상 그가 새로운 가치를 첨가하는것과 동일한 비률로 낡은 가치를 보존한다고 말할수 있다. 면화가 1실링에서 2실링으로 오르든지 혹은 6펜스로 내리든지간에 로동자는 면화가치가 어떻게 변동하든지 1시간의 생산물에는 언제나 2시간의 생산물에 들어있는

면화가치의 절반에 해당하는 면화가치만을 보존한다. 그리고 또 만약 로동자자신의 로동의 생산성이 변동하여 그것이 제고되거나 저락되거나 하면, 례컨대 그가 1로동시간에 방적하는 면화는 이전보다 더 많든가 더 적을것이며 이에 따라 1로동시간의 생산물에 보존된 면화의 가치는 더 많든가 더 적을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2로동시간에는 1로동시간에 비하여 2배의 가치를 보존할것이다.

가치는 가치기호에 나타나는 순전히 상징적인 표현을 도외시한다면 오직 어떤 사용가치, 어떤 물건속에만 존재한다. (인간 그자체는 로동력의 단순한 정재로서 고찰하면 하나의 자연대상이고 비록 자기의식을 가진 산 물건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물건이고 로동 그자체는 그 로동력의 물적발현이다.) 그러므로 사용가치가 없어지면 가치도 또한 없어진다. 생산수단은 그 사용가치를 상실함과 동시에 그 가치를 상실하는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생산수단은 로동과정을 통하여 그 사용가치의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는것은, 사실은 오직 생산물에서 다른 사용가치의 모습을 얻기 위한데 불과하기때문이다. 그러나 가치가 어떤 사용가치속에 존재한다는것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떤 사용가치속에 존재하는가 하는것은 상품의 변태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아무래도 좋은것이다. 이로부터 명백한바와 같이 로동과정에서 생산수단이 그 독립적인 사용가치와 함께 그 교환가치도 상실하는 한에서만 비로소 가치가 생산수단에서 생산물로 이행한다. 생산수단은 그것이 생산수단으로서 잃어버리는 가치만을 생산물에 넘겨준다. 그러나 이 점에서는 로동과정의 각이한 물질적요소들의 형편들은 각기 다르다.

기관을 가열하기 위하여 때는 석탄은 흔적없이 사라지며

기계의 축에 바르는 기름 등등도 역시 그러한다. 물감과 기타 보조재료도 사라져 없어지기는 하나 그것들은 생산물의 속성에 나타난다. 원료는 생산물의 실체를 형성하나 그것은 자기의 형태를 변경시킨다. 따라서 원료와 보조재료는 그것들이 사용가치로서 로동과정에 들어갈 때의 독립적인 모습을 상실한다. 본래의 로동수단은 그렇지 않다. 도구, 기계, 공장건물, 용기 등등은 오직 그것들이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여 래일도 어제와 꼭같은 형태로 다시 로동과정에 들어갈수 있는 한에서만 로동과정에서 복무한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동안 즉 로동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생산물과의 관계에서 그 독립적인 모습을 유지하며 죽은 뒤에도 역시 그러한것이다. 기계, 도구, 공장건물 등등의 유골은 그것들의 방조하에서 형성된 생산물과는 별개로 의연히 계속 존재한다. 이제 만약 그와 같은 로동수단이 작업장에 들어간 날부터 폐물창고로 추방되는 날까지 복무한 그 전체 기간을 고찰한다면 사용가치는 이 기간에 로동에 의하여 완전히 소비되고 따라서 그 교환가치는 완전히 생산물에 이전된다는것을 보게 된다. 례컨대 어떤 방직기계가 10년에 수명이 끝났다면 그 총가치는 이 10년간의 로동과정에서 10년간의 생산물에 넘어간것이다. 따라서 로동수단의 생존기간은 그것을 가지고 부단히 반복하는 많은 또는 적은 로동과정을 포함한다. 그리고 로동수단도 인간과 같은 점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매일 24시간씩 죽어간다. 그러나 어느 사람을 보아도 그가 생명의 며칠이나 죽었는지 정확히 알수 없다. 그렇지만 이것은 생명보험회사가 인간의 평균수명으로부터 아주 확실한,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일이지만 아주 유리한 결론을 끌어내는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로동수단도 마찬가지이

다. 어떤 로동수단, 례컨대 어떤 종류의 기계가 평균적으로 얼마동안이나 존속할수 있는가 하는것은 경험으로 알려져있다. 로동수단의 사용가치가 로동과정에서 겨우 6일동안만 유지된다고 가정하자. 그러한 경우에 그 로동수단은 평균적으로 매 로동일당 그 사용가치의 $\frac{1}{6}$을 상실하며 따라서 그 가치의 $\frac{1}{6}$을 그날그날의 생산물에 넘겨준다. 모든 로동수단의 마멸은 례컨대 그 사용가치의 매일의 상실과 이에 따르는 생산물에로의 그 가치의 이전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

이로부터 똑똑히 알수 있는것은 생산수단이 로동과정에서 자기자신의 사용가치의 소멸로 말미암아 상실하는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결코 생산물에 넘겨주지 않는다는것이다. 만약 생산수단이 잃어버릴 아무런 가치도 가지고있지 않다면, 다시 말하면 생산수단 그자체가 인간로동의 생산물이 아니라면 그것은 생산물에 아무런 가치도 넘겨주지 못할것이다. 그것은 교환가치의 형성자로서 복무하지 않고 사용가치의 형성자로서 복무할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의 관계없이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생산수단 즉 토지, 바람, 물, 광맥내의 철, 원시림의 나무 등등은 모두 이러한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앞에는 또 하나의 흥미있는 현상이 나타난다. 례컨대 어떤 기계의 가치가 1,000파운드이고 그것이 1,000일동안에 마멸하여버린다고 하자. 이 경우에 기계가치의 $\frac{1}{1}$이 매일 그 기계로부터 그날그날의 생산물에 넘어간다. 한편 기계는 비록 그 생명력이 점차 감퇴되기는 하나 의연히 그 기계전체가 로동과정에서 부단히 작용한다. 이로

부터 로동과정의 한 요인인 생산수단이 로동과정에는 전체적으로 참가하나 가치증식과정①에는 부분적으로만 참가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로동과정과 가치증식과정①과의 구별은 동일한 생산수단이 동일한 생산과정에서 로동과정의 요소로서는 전체적으로 계산에 들어가나 가치형성요소로서는 부분적으로만 계산에 들어간다는데 의하여 그러한 과정들의 대상적요소들에 반영된다.(21)

다른 한편 이와는 반대로 어떤 생산수단은 로동과정에는 부분적으로만 들어가지만 가치증식과정에는 전체적으로 들어갈수 있다. 가령 면화에서 실을 뽑을 때 115폰드의 면화에서 매일 15폰드가 떨어져 면사로 되지 못하고 오직 솜먼지로만 된다고 가정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15폰드의 손실

---

(21) 여기서는 기계, 건물 등등과 같은 로동수단의 수리는 문제로 되지 않는다. 수리중의 기계는 로동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로동재료로서 기능한다. 즉 그것으로써 작업하는것이 아니라 그 사용가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자체가 가공되는것이다. 우리는 우리 목적에 비추어 그와 같은 수리로동을 언제나 그 로동수단의 생산에 요구되는 로동에 포함되여있는것으로 생각할수 있다. 본문에서 문제로 되는것은 어떠한 의사도 치료할수 없는, 점차로 사망에로 이르게 하는 마멸이며 《때로는 수리할수 없는, 가령 칼이라면 결국 칼수리공이 새 날을 세울 가치가 없다고 말할 정도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종류의 마멸이다.》 본문에서 우리가 본바와 같이 례컨대 기계는 매개의 개별적로동과정에는 전체적으로 참가하나 그와 동시에 진행되는 가치증식과정에는 오직 부분적으로만 참가한다.① 이에 근거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개념의 혼동을 판단할수 있다. 《리카도씨는 양말제조기의 제작에 지출된 기계제작공의 로동의 일부분이》 례컨대 한컬레의 양말의 가치에 포함되여있다고 한다. 《그러나 매 한컬레의 양말을 생산한 총로동에는…기계제작공의 로동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 전체가 포함되여있다. 왜냐 하면 비록 한대의 기계는 여러 컬레를 만든다 할지라도 이것들중 단 한컬레도 기계의 전체 부분의 참가없이는 제조될수 없기때문이다.》 (《정치경제학상의 약간의 용어 특히는 가치, 수요공급과 관련된 론쟁에 대한 고찰》, 1821년 런던판, 54페지) 대단히 자고자대하며 《현인인체 하는》 이 저자의 혼란과 또 따라서 그의 론쟁에서 어떤 적당한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리카도나 그 전후의 어떠한 경제학자도 로동의 두 측면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더우기 가치형성에서의 이 두 측면의 각이한 역할을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그러한 의미에서뿐이다.

---

① 맑스의 수정을 거친 프랑스문판과 엥겔스의 교정을 거친 영문판에서는 가치형성과정으로 되여있다. —편집자

이 정상적인것이라면 즉 그것이 면화가공의 평균적조건하에서 제거할수 없는것이라면 면사의 요소를 형성하지 않는 이 15폰드의 면화의 가치도 면사의 실체를 형성하는 100폰드의 면화의 가치와 꼭 마찬가지로 면사의 가치에 들어간다. 100폰드의 면사를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15폰드의 면화의 사용가치가 솜먼지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면화의 손실은 면사의 하나의 생산조건으로 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면사에 자기의 가치를 넘겨준다. 로동과정의 모든 배설물은 다 그러하다. 적어도 이 배설물이 다시 새로운 생산수단을 형성하지 않으며 따라서 새로운 독립적인 사용가치를 형성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그러하다. 례컨대 만체스터의 대기계제작공장에서는 거대한 기계에 의하여 대패밥모양으로 깍이운 쇠밥더미를 볼수 있는데 이것은 저녁때에는 큰 수레에 실리여 제철소로 이송되고 다음날에는 대량의 철덩이로 되여 다시 공장에 돌아온다.

생산수단은 로동과정에 있는 동안에 그 낡은 사용가치의 모습으로 존재하던 가치를 상실하는 한에 있어서만 생산물의 새로운 모습에 가치를 이전한다. 생산수단이 로동과정에서 상실할수 있는 가치의 최대한은 분명히 그것이 로동과정에 들어갈 당시에 가지고있던 최초의 가치량, 다시말하면 그자체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에 의하여 제한된다. 그러므로 생산수단은 자체가 복무하는 로동과정과는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생산물에 첨가할수는 도저히 없다. 어떤 로동재료, 어떤 기계, 어떤 생산수단이 아무리 유용하다 하더라도 만약 그 가치가 150파운드에, 이를테면 500로동일에 해당하는것이라면 그것은 그자체의 봉사에 의하여 생산되는 총생산물에 결코 150파운드이상을 첨가할수는 없

다. 그것의 가치는 그것이 생산수단으로서 들어가는 그 로동과정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산물로서 나오는 그 로동과정에 의하여 규정된다. 로동과정에서 그것은 오직 사용가치로서, 유용한 속성을 가진 물건으로서 복무할뿐이며 따라서 만약 그것이 로동과정에 들어가기전에 가치를 가지고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생산물에 넘겨주지 못할것이다.(22)

생산적로동이 생산수단을 새로운 생산물의 형성요소로 전화시키는데 의하여 생산수단의 가치에는 하나의 륜회가 생긴다. 생산수단의 가치는 소모된 육체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형성된 육체로 이행한다. 그러나 이 륜회는 말하자면 현실적 로동의 배후에서 일어난다. 로동자는 낡은 가치를 보존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로동을 첨가할수 없으며 따라서 새로운 가

---

(22) 우리는 이로부터 토지, 도구, 가죽 등등의 생산수단이 로동과정에서 그 사용가치에 의하여 제공하는 그 《생산적봉사》에서 잉여가치(리자, 리윤, 지대)를 끌어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J. B. 쎄의 미련함을 알수 있다. 교활한 변호론적외곡을 기회있을 때마다 명백히 기록해놓은 윌헬름 로쉐르씨는 다음과 같이 웨친다. 《J. B. 쎄가 〈정치경제학개론〉, 제1권, 제4장에서 〈일체 비용을 공제한후 착유기에 의하여 조성된 가치는 실상은 착유기 그자체를 제작한 로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새로운 가치이다.〉라고 말한것은 지극히 정당하다.》(《국민경제학원리》, 1858년, 제3판, 82페지 주)라고 말한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착유기에 의하여 제조된 《기름》은 착유기의 제작에 지출된 로동과는 판이한것이다. 그리고 로쉐르씨는 《가치》라는것을 《기름》과 같은 물건으로 리해하고있는데 그것은 《기름》이 가치를 가지기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속에는》 비교적 《대단히 많이》는 아니지만 석유가 존재하는데 그가 다른 개소에서 말하는것도 아마 이 점에 관해서 말하는것 같다. 《그것〔자연!〕은 교환가치를 거의 전혀 만들어내지 않는다.》〔우와 같은 책 79페지〕 로쉐르의 자연과 교환가치와의 관계는 미욱한 처녀와 《아주 자그마한》 아이와의 관계와 같은것이다. 바로 이 《학자》는 이 인용의 기회를 리용하여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리카도학파는 자본까지도 〔저축된 로동〕이라고 하여 로동이라는 개념속에 포괄시키는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졸렬하다. 〔!〕 왜냐 하면 〔!〕 사실 〔!〕 자본의 소유자는 〔!〕 확실히 〔!〕 그것의 〔무엇의?〕 단순한 〔?!〕 생산 〔?〕 및 〔??〕 보존이상의것 〔!〕을 수행했기때문이다. 그는 바로 〔?!?〕 자신의 향락을 억제하였으며 그리하여 그는 그대신에 례컨대 〔!!!〕 리자를 요구하는것이다.》(우와 같은 책, 〔82페지〕, 단순한 《요구》로부터 《가치》를 끌어내는 정치경제학의 이러한 《해부생리학적방법》이야말로 그 얼마나 《능란》한가!

치를 창조할수 없다. 왜냐 하면 그는 로동을 언제나 반드시 일정한 유용한 형태로 첨가해야 하는데 그는 생산물을 새로운 생산물의 생산수단으로 전화시키지 않고서는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생산물의 가치를 새로운 생산물에 이전하지 않고서는 유용한 형태로 첨가할수 없기때문이다. 따라서 가치를 첨가함으로써 가치를 보존한다는것은 작용하고 있는 로동력 즉 산로동의 천성이며 이 천성은 로동자에게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으나 자본가에게는 현존자본가치의 보존이라는 큰 리익을 가져다주는 천성인것이다.(22a) 경기가 좋을 때에는 자본가는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로동의 이 무상의 선물에 주의를 돌리지 않는다. 로동과정의 부득이한 중단 즉 공황은 자본가로 하여금 이것을 통절히 느끼게 한다.(23)

일반적으로 생산수단에서 소모되는것은 그 사용가치이고 이 사용가치의 소비에 의하여 로동은 생산물을 만든다. 생산

(22a) 《농장주가 생산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중에서 인간로동은…농장주가 자기의 자본을 회수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의뢰하는 물건이다. 다른 두 종류의 물건 즉 역축과…달구지, 보습, 삽 등등은 일정한 량의 인간로동이 없이는 아무 쓸모도 없다.》(에드먼드 버크《곡물부족에 관한 의견과 상론, 본래 1795년 11월에 윌리엄 피트각하에게 제출된 보고》, 1800년 런던판, 10페지)

(23) 1862년 11월 26일부 《타임스》지상에는 한 방적공장주의 기사가 실렸는데 그는 방적공장에 800여명의 로동자를 고용하여 매주 평균 150짝의 동인도면화 혹은 약 130짝의 미국면화를 소비하는데 그는 그의 공장에서 매년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소비되는 비용에 대하여 독자들앞에서 탄식하고있다. 그는 이 경비를 6,000파운드로 어림하고 있다. 이 비생산적비용중에는 례컨대 지대, 세금, 보험료 그리고 1년계약으로 고용된 로동자와 지배인, 부기일군, 기사 등의 봉급 등등과 같은, 여기서 우리와는 관계없는 그러한 허다한 항목이 들어있다. 다음으로 그는 때때로 공장을 덥히며 또 증기기관을 이따금 운전하는데 필요한 석탄비 150파운드와 그밖에 또 립시로동으로써 기계를 언제나 돌릴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로동자들에 대한 임금도 이 비생산적비용에 가산하고있다. 끝으로 그는 기계의 손상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여 1,200파운드를 계산하고있는데 그 리유는 《증기기관이 운전을 정지하였다고 해서 기후와 자연의 부식력은 그 작용을 정지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200파운드라는 이 금액은 기계설비가 벌써 대단히 소모된 상태에 있기때문에 낮게 어림한것이라고 언명하고있다.

수단의 가치는 실제상 소비되지 않으며(24) 따라서 또 재생산될수 없다. 그 가치가 보존되지만 그것은 로동과정에서, 가치 그자체에 어떠한 조작이 가하여지기때문이 아니라 자기속에 가치를 조재하게 하던 그 사용가치가 사라지기는 하나 오직 다른 사용가치로 됨으로써만 사라지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생산수단의 가치는 생산물의 가치에 재현되기는 하나 정확히 말하면 재생산되는것은 아니다. 생산되는것은 새로운 가치이며 그속에서 낡은 교환가치가 재현되는것이다.(25)

로동과정의 주체적요인 즉 작용하고있는 로동력에 있어서는 사태가 다르다. 로동이 그 합목적적인 형태에 의하여 생산수단의 가치를 생산물에 이전하며 보존하는 동안에 로동의 운동의 매 순간은 추가적가치 즉 새로운 가치를 형성한다. 로동자가 자기자신의 로동력의 가치에 대한 등가물을 생산하였을 때에, 례컨대 6시간의 로동에 의하여 3실링의 가치를 첨가하였을 때에 생산과정이 중단된다고 가정하자. 이 가

---

(24) 《생산적소비, 거기서는 상품의 소비는 생산과정의 일부분으로 된다.…이러한 경우에는 가치의 소비는 생기지 않는다.》(S. Ph. 뉴먼 《정치경제학원리》, 1835년 앤도버 및 뉴욕판, 296페지)

(25) 아마 20판은 거듭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미국에서 발간된 어떤 입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자본이 재현되는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 자기가치를 생산물에 재현하는 모든 가능한 생산요소를 장황하게 렬거한 다음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있다. 《인간의 생존과 안락에 필요한 각종 식료품, 의복, 주택 등도 역시 변화한다. 그것들은 부단히 소비되며 그 가치는 그것들이 인간의 육체와 정신에 부여하는 새로운 힘에 재현되며 생산과정에 다시 사용되는 새로운 자본을 형성한다.》(F. 웨일런드 《정치경제학원리》, 1843년 보스톤판, 32페지) 기타의 모든 기괴한 점은 문제로 삼지 않더라도 갱신된 힘에 재현되는것은 례컨대 빵의 가격이 아니라 피를 만들어내는 빵의 실체인것이다. 이와 반대로 이 힘의 가치로서 재현되는것은 생활수단이 아니라 생활수단의 가치이다. 동일한 생활수단은 설사 그 가치가 절반으로 감소된다 할지라도 꼭같은 량의 근육, 골격, 등등을, 요컨대 동일한 힘을 생산하지만 그러나 동일한 가치의 힘을 생산하는것은 아니다. 이처럼 《가치》를 《힘》과 바꾸어놓는것, 그리고 또 이 모든 위선적인 애매한 말은 선대된 가치의 단순한 재현으로부터 잉여가치를 끌어내려는 그야말로 소용없는 시도를 엄폐하고있는것이다.

치는 생산물의 가치중 생산수단의 가치에 의하여 생겨난 부분을 넘는 초과부분을 이룬다. 이것은 생산과정내부에서 발생한 유일한 새로운 가치이며 생산물가치중에서 이 과정자체에 의하여 생산된 유일한 부분이다. 물론 이 부분은 로동력을 구매할 때 자본가가 선대하였으며 또 로동자자신이 생활수단에 지출한 그 화폐를 보상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 지출된 3실링에 대한 관계에서 보면 3실링이라는 새로운 가치는 오직 재생산으로 표현될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재생산되였고 생산수단의 가치처럼 외관상으로만 재생산된것이 아니다. 한 가치의 다른 가치에 의한 보상은 이 경우에 새로운 가치창조에 의하여 매개된다.

그러나 이미 서술한바와 같이 로동과정은 로동력의 가치에 대한 단순한 등가물이 재생산되여 로동대상에 첨가되는 점을 넘어서 계속된다.① 로동력의 가치의 등가물을 재생산하는데는 6시간만으로 충분하지만 로동과정은 6시간이 아니라 례컨대 12시간 계속된다. 따라서 로동력의 작용에 의하여 비단 그 자체의 가치가 재생산될뿐만아니라 일정한 초과가치가 생산된다. 이 잉여가치는 생산물가치중 소비된 생산물형성자 즉 생산수단과 로동력의 가치를 넘는 초과분을 이룬다.

로동과정의 각이한 요인들이 생산물가치의 형성에서 노는 각이한 역할을 서술함으로써 사실상 우리는 자본의 각이한 구성부분들이 자본 그자체의 가치증식과정에서 수행한 기능들을 특징지었다. 생산물의 총가치중 생산물의 형성에 참가한 요소들의 가치총액을 넘는 초과분은 최초에 선대된 자본가치를 넘는 가치가 증식된 자본의 초과부분이다. 한편에 있어서의 생산수단과 다른 한편에 있어서의 로동력은 최초의

① 이 책 217~226페지를 보라. —편집자

자본가치가 그 화폐형태를 벗어버리고 로동과정의 요인으로 전화할 때에 취한 각이한 존재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생산수단 즉 원료, 보조재료, 로동수단에로 전화되는 자본부분은 생산과정에서 그 가치량을 변동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불변자본부분 또는 간단히 불변자본이라고 부른다.

이와는 반대로 로동력에로 전화되는 자본부분은 생산과정에서 그 가치를 변동한다. 그것은 자기자체의 등가물과 또 그것을 넘는 초과분인 잉여가치를 재생산하는데 이 잉여가치는 그자체가 변동할수 있으며 크게도, 작게도 될수 있다. 자본의 이 부분은 불변량으로부터 부단히 가변량으로 전화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가변자본부분 또는 간단히 가변자본이라 부른다. 로동과정의 견지에서는 객체적요인과 주체적요인으로서 즉 생산수단과 로동력으로서 구별되는 이 동일한 자본구성부분들이 가치증식과정의 견지에서는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으로서 구별된다.

불변자본이라는 개념은 그 구성부분의 가치의 변동을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 가령 1폰드의 면화가 오늘은 6펜스의 가치를 가지나 래일에는 면화의 흉작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가 1실링으로 오른다고 하자. 계속 가공중에 있는 이전의 면화는 6펜스의 가치로 구매되였으나 이제 그것은 생산물에 1실링의 가치부분을 첨가한다. 그리고 이미 실로 된, 그리고 벌써 면사의 형태로 시장에서 류통하고있을수도 있는 면화도 역시 그 최초의 가치의 2배를 생산물에 첨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변동은 방적과정 그자체에서의 면화의 가치증식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만약 이전의 면화가 아직 로동과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제는 6펜스가

아니라 1실링에 다시 판매될수 있을것이다. 그뿐만아니라 그것이 로동과정을 통과한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러한 결과는 더욱 확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가치변동이 생길 때에는 가장 적게 가공된 형태에 있는 원료를, 다시말하면 직물보다는 오히려 면사를 또 면사보다는 오히려 면화 그자체를 가지고 투기하는것이 투기의 법칙이다. 이 경우에 가치의 변동은 면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것이고 면화가 다시 생산수단으로서, 따라서 불변자본으로서 기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것은 아니다. 상품의 가치는 물론 그 상품에 들어있는 로동의 량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지만 그러나 이 량자체는 사회적으로 규정되는것이다. 만약 그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로동시간이 변화한다면—그리하여 동일한 량의 면화가 례컨대 흉작시에는 풍작시에 비하여 더 많은 로동량을 대표한다면—이에 따라 이전의 상품들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난다. 이전의 상품들은 언제나 오직 그 상품종류의 개별적견본으로서만 인정되는것이며(26) 그 가치는 언제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따라서 또한 언제나 현재의 사회적조건하에서 필요한 로동에 의하여 측정되는것이다.

원료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이미 생산과정에서 쓰이고있는 로동수단 즉 기계설비 등등의 가치도 변동할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들이 생산물에 넘겨주는 그 가치부분도 변동할수 있다. 례컨대 새로운 발명의 결과 동일한 종류의 기계설비가 더 적은 로동을 지출함으로써 재생산된다면 이전의 기계설비는 많건적건 그 가치가 저락할것이며 또 따라서 그에 비례하

(26) 《동일한 종류의 전체 생산물은 본래는 하나의 량을 이룰뿐인데 이 량의 가격은 개별적경우의 특수한 조건과는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결정된다.》 (르뜨론 《사회적리익에 관하여》, 893페지)

여 더 적은 가치를 생산물에 이전할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치변동은 그 기계가 생산수단으로서 기능하는 생산과정의 외부에서 발생한다. 이 생산과정내에서 그 기계는 결코 이 과정과는 관계없이 가지고있는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넘겨줄수는 없다.

생산수단의 가치에 있어서의 변동은 비록 생산수단이 이미 생산과정에 들어간후에 반작용적으로 생긴것이지만 불변자본으로서의 생산수단의 성격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변자본과 가변자본간의 비률의 변동도 이 두 종류의 자본의 기능상, 구별에는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례컨대 이전에 10명의 로동자가 적은 가치밖에 없는 10개의 도구를 가지고 비교적 적은 량의 원료를 가공하고있었는데 로동과정의 기술적조건이 크게 개선되여 이제는 단 1명의 로동자가 한개의 비싼 기계로 100배의 원료를 가공한다고 하자. 이 경우에 불변자본 즉 사용되는 생산수단의 가치량은 많이 증가하지만 로동력에 선대되는 가변자본부분은 많이 감소될것이다. 그러나 이 변동은 불변자본과 가변자본간의 량적관계를, 다시말하면 총자본이 불변적구성부분과 가변적구성부분으로 나뉘는 그 비률을 변화시킬뿐이지 불변자본과 가변자본간의 구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 7 장

잉 여 가 치 률

1. 로동력의 착취도

선대자본 C에 의하여 생산과정에서 생산된 잉여가치 또는 선대자본가치 C의 증식부분은 우선 생산물가치가 생산물의 생산 제 요소들의 가치총액을 넘는 초과부분으로서 나타난다.

자본 C는 두 부분으로 나뉘여진다. 즉 생산수단에 지출된 화폐액 c와 로동력에 지출된 또 하나의 화폐액 v로 나뉘여진다. c는 불변자본에 전화된 가치부분을 나타내며 v는 가변자본에 전화된 가치부분을 나타낸다. 따라서 최초에는 C=c+v, 례컨대 선대자본 500파운드=410파운드+90파운드이다. 생산과정의 종말에 가서는 상품이 나오는데 그 상품의 가치

=c+v+m이다.(m는 잉여가치이다.) 례컨대 410파운드+90파운드+90파운드이다. 최초의 자본 C는 C′로 되였으며 그것은 500파운드에서 590파운드로 되였다. 이 량자간의 차액=m 즉 90파운드의 잉여가치이다. 생산 제 요소들의 가치는 선대자본의 가치와 같기때문에 생산물의 가치중 생산 제 요소들의 가치를 넘는 초과부분은 선대자본의 가치의 증식부분과

같다든가 또는 생산된 잉여가치와 같다든가 하는 주장은 실지는 동의반복이다.

그러나 이 동의반복을 좀더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생산물의 가치와 비교되는것은 그 형성에 소비된 생산 제 요소들의 가치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본바와 같이 사용된 불변자본중 로동수단으로써 구성되는 부분은 그 가치의 일부분만을 생산물에 넘겨주며 나머지 부분은 종전의 존재형태에 존속한다.① 이 후자의 부분은 가치형성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놀지 못하기때문에 여기에서는 그것을 무시하여도 좋다. 그것을 계산에 넣어도 조금도 변동될것은 없다. 가령 c=410파운드는 312파운드의 원료와 44파운드의 보조재료와 과정중에서 마모되는 54파운드의 기계로써 구성되여있고 또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의 가치는 1,054파운드라고 하자. 우리는 기계가 기능함으로써 잃어버리는, 따라서 생산물에 넘겨주는 이 54파운드의 가치만을 생산물가치의 생산에 선대된것으로 계산한다. 만약 우리가 의연히 증기기관 등등과 같이 이전형태대로 존속하는 1,000파운드를 계산에 넣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량편에 즉 선대된 가치와 생산물의 가치에 넣지 않으면 안될것이다.(26a) 그리하여 그것들은 각각 1,500파운드와 1,590파운드로 될것이다. 그 차액 즉 잉여가치는 의연히 90파운드로 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치의 생산에 선대된 불변자본이라고 할 때 그것은, 서술상 전후관계에서 그 반대로 해석되지 않는 한 언제나 생산중 소모된 생산수단의가치만을 의미한다.

(26a) 《만약 우리가 사용되는 고정자본의 가치를 선대자본의 일부분으로 계산한다면 우리는 그 년도말의 그러한 자본의 잔존가치를 년수입의 일부분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말사스 《정치경제학원리》, 1836년 런던 제2판, 269페지)

---

① 이 책 235~241페지를 보라. —편집자

이러한 전제밑에서 C=c+v라는 공식으로 돌아가자. 이공식은 C′=c+v+m으로 되며 또 바로 그렇게 됨으로써 C는 C′로 된다. 우리가 이미 아는바와 같이 불변자본의 가치는 산물에 재현될뿐이다.① 그러므로 과정속에서 현실적으로 새로 생산된 가치생산물은 이 과정에서 얻은 생산물의 가치와는 다르며 따라서 그것은 얼핏 보아서는 c+v+m 또는 410파운드+90파운드+90파운드인듯이 보이나 실지는 그렇지 않고 v+m 또는 90파운드+90파운드이다. 즉 590파운드가 아니라 180파운드이다. 만약 불변자본 c=0이라면, 바꾸어말하면 만약 자본가가 생산된 생산수단이든 원료나 보조재료이든, 로동도구든간에 어느 하나도 사용할 필요가 없고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재료와 로동력만을 사용하는 산업부문이 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생산물에는 불변가치부분이 조금도 이전되지 않을것이다. 즉 우에서 든 례로써 말한다면 생산물가치의 이 요소 즉 우리의 례에서는 410파운드는 없어질것이지만 그러나 90파운드의 잉여가치를 포함한 180파운드의 가치생산물은 그 크기에 있어서, c가 최대의 가치액을 대표하고있었을 때와 꼭 같을것이다. C=o+v=v로 될것이며 가치가 증식한 자본 C′=v+m으로 될것이며 C′-C는 의연히 =m으로 될것이다. 반대로 만약 m=0이라면, 바꾸어말하면 만약 그 가치가 가변자본으로서 선대된 로동력이 오직 그 등가물만을 생산한다면 C=c+v, C′(생산물가치)=c+v+o, 따라서 C=C′로 될것이다. 선대자본은 그 가치가 증식되지 않을것이다.

우리가 사실상 이미 알고있는바와 같이 잉여가치는 오직

① 이 책 234~243페지를 보라. 一편집자

v로 즉 로동력으로 전화된 자본부분에서 일어난 가치변동의 결과라는것, 따라서 v+m=v+⊿v(v 더하기 v의 증가분)이다.① 그러나 현실적인 가치변동과 가치가 변동하는 비률은 자본의 가변적구성부분이 증가함에 따라 선대자본전체도 또한 증가한다는 사정에 의하여 애매하게 된다. 선대자본은 이전에는 500이였던것이 이제는 590으로 된다. 그러므로 과정을 순수한 형태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생산물가치중 불변자본가치가 재현되는데 지나지 않는 부분을 완전히 사상하는것이 필요하다. 다시말하면 불변자본 c=0이라고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변량과 불변량으로 운산하며 불변량이 다만 가감으로 가변량과 련결되는 수학의 법칙을 응용하는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의 곤난은 가변자본의 시초형태로부터 발생한다. 상술한 례에서는 C′=410파운드의 불변자본+90파운드의 가변자본+90파운드의 잉여가치이다. 그러나 90파운드는 주어진 량 따라서 불변량이고 따라서 그것을 가변량으로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overset{v}{\smile}$90파운드 또는 90파운드의 가변자본은 여기에서는 사실은 이 가치가 통과하는 과정의 상징일따름이다. 로동력의 구매에 선대된 자본부분은 일정한 량의 대상화된 로동이며 따라서 그것은 구매된 로동력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불변의 가치량이다. 그러다 생산과정자체에서는 선대된 90파운드 대신에 발현되고있는 로동력이 등장하며 죽은로동 대신에 산로동이, 정지량 대신에 류동량이, 불변량 대신에 가변량이 등장한다. 그 결과는 v의 재생산 더하기 v의 증가분이다. 자본주의적생산의 견지에서 보면 이 전체과정은 로동력에로 전환된, 본래 불변적인 가치의 자기운동

① 이 책 242~243페지를 보라. —편집자

이다. 과정과 그 결과는 다 이 가치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만약 90파운드의 가변자본 또는 자기증식하는 가치라는 공식이 어떤 모순되는것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다만 이 공식이 자본주의적생산에 고유한 모순을 표현하고있을뿐이기때문이다.

불변자본을 0이라고 가정하는것은 얼핏 보면 기이하게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늘 그렇게 하고있다. 례컨대 누구든지 영국의 면방직업의 리윤을 계산하려고 할 때에는 우선 미국, 인도, 애급 등등에 지불된 면화가격을 공제한다. 즉 그는 생산물가치에 재현되는데 지나지 않는 자본가치를 0으로 보는것이다.

물론 잉여가치가 직접 발생하며 또 잉여가치에 의하여 그 가치변동이 표시되는 그 자본부분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률만이 아니라 선대된 총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률도 또한 커다란 경제적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의 제3부[180]에서 이 비률을 상세하게 고찰하려고 한다. 자본의 일부분을 로동력에로 전화시킴으로써 그 가치를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의 다른 한 부분은 생산수단에로 전화되지 않으며 안된다. 가변자본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불변자본이 로동과정의 일정한 기술적성격에 적응하여 적당한 비률로 선대되지 않으면 안된다. 일정한 화학적과정에 증류기와 기타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분석할 때에 증류기 그자체를 무시하는것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는다. 가치창조와 가치변동이 그자체로서 즉 순수하게 고찰되는 한에 있어서는, 생산수단이라는 불변자본의 이물질적인 모습은 오직 류동적인, 가치를 형성하는 힘이 거기에 고정될 물질을 제공할뿐이다. 그러므로 이 물질의 성질은 그것이 면화이든 철이든 상관이 없다. 이 물질의 가치도 또한 중요하지 않다. 이 물질은 오직 생산과정중에 지

출되는 로동량을 흡수하는데 충분한 량만 있으면 된다. 그만큼한 량이 주어져있기만 하면 그 가치가 오르건 내리건 또는 토지나 바다와 같이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않는것이건 가치창조와 가치변동의 과정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27)

그러면 우리는 우선 불변자본부분을 0이라고 가정하자. 따라서 선대자본 c+v는 v로 되며 생산물의 가치 $\overbrace{c+v}+m$은 가치생산물 $\overbrace{v+m}$으로 된다. 가치생산물=180파운드가 주어져 있어 생산과정이 계속되는 전 기간에 걸쳐서 류동하는 로동을 대표한다면 잉여가치=90파운드를 얻기 위해서는 가변자본의 가치=90파운드를 공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수자 90파운드=m은 여기에서는 생산된 잉여가치의 절대량을 표현한다. 잉여가치의 상대량 즉 가변자본가치가 증식된 비률은 분명히 가변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또는 $\frac{m}{v}$으로 표시된다. 상술한 례에서는 그것은 $\frac{90}{90}=100\%$이다. 가변자본의 이와 같은 상대적가치증식 또는 잉여가치의 상대량을 나는 잉여가치률이라고 부른다.(28)

우리가 이미 본바와 같이 로동자는 로동과정의 어떤 한 기간중에는 오직 자기의 로동력의 가치만을 즉 그에게 필요한 생활수단의 가치만을 생산한다.① 그는 사회적분업에 립각하고 있는 제도하에서 생산하기때문에 자기의 생활수단을 직접 생산하는것이 아니라 례컨대 면사와 같은 어떤 특수한 상품의 형태로 그의 생활수단의 가치와 동일한 가치 또는 그가 이

---

(27) 제2판 주: 루크레찌우스는 《무로부터는 유가 창조될수 없다.》[181]고 하였는데 이것은 자명한 일이다. 《가치의 창조》라는것은 로동력의 로동에로의 전화이다. 한편 로동력이라는것은 우선 인간유기체로 전화된 자연물질이다.

(28) 이것은 영국인이 《리윤률》, 《리자률》 등등이라고 하는것과 같은 표현이다.

① 이 책 225페지를 보라. 一편집자

생활수단을 구매하는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생산하는것이다. 그의 로동일중 그가 이러한 가치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은 그의 1일평균생활수단의 가치여하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이 생활수단을 생산하는데 요구되는 1일평균로동시간에 따라서 혹은 크기도 하며 혹은 작기도 하다. 만약 로동자의 하루생활수단의 가치가 평균하여, 대상화된 6로동시간을 대표한다면 로동자는 이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평균 6시간씩 로동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만약 그가 자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자신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로동한다 하더라도 그는 기타 조건이 같다면 자기 로동력의 가치를 생산하기 위하여,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자신의 유지 또는 부단한 재생산에 필요한 생활수단을 얻기 위하여 의연히 하루 평균 그만한 시간을 로동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러나 로동자는 로동력의 일가치 레컨대 3실링을 생산하는 로동일 부분에 있어서는, 자본가가 이미 그에게 지불한[28a] 로동력 가치의 등가물을 생산할뿐이기때문에, 다시말하면 새로 창조된 가치로 선대된 가변자본의 가치를 보상하는데 지나지 않기때문에 이 가치생산은 단순한 재생산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나는 로동일중 이 재생산이 수행되는 부분을 필요로동시간이라고 부르며 이 시간중에 지출되는 로동을 필요로동이라고 부른다.[29] 이것은 로동자에게 있어서 필요한것이다.

독자는 잉여가치법칙을 알기만 한다면 리윤률은 쉽게 리해할수 있다는것을 이 책 제3권에서 알게 될것이다. 이와 순서가 반대인 경우에는 이것도 저것도 리해할수 없다.

(28a) {제3판 주: 저자는 여기에서 보통 사용되고있는 경제학상용어를 사용하고있다. 실지는 자본가가 로동자에게 《선대》하는것이 아니고 로동자가 자본가에게 《선대》하는것이라고 137페지[①]에서 지적된것을 상기하라. —F. E.}

(29) 이때까지 우리는 이 저서에서 《필요로동시간》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어떤

---

① 이 책 202페지를 보라. —편집자

왜냐 하면 그것은 로동자의 로동의 사회적형태와는 관계없이 필요한것이기때문이다. 그것은 자본과 자본세계에 대하여 필요한것이다. 왜냐 하면 로동자의 영속적존재는 자본과 그 세계의 기초로 되여있기때문이다.

로동과정의 둘째 기간, 로동자가 필요로동의 한계를 넘어서 로동하는 기간은 비록 로동자의 로동이 들기는 하나 즉 로동력이 지출되기는 하나 로동자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가치도 형성하지 않는다. 그것은 잉여가치를 형성하는데 잉여가치는 무에서 창조된다는 커다란 매력으로써 자본가를 유혹한다. 나는 로동일의 이 부분을 잉여로동시간이라고 부르며 이 시간중에 지출되는 로동을 잉여로동(surplus labour)이라고 부른다. 가치일반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가치를 단순히 로동시간의 응결로, 단순히 대상화된 로동으로서 파악하는것이 결정적인것과 마찬가지로 잉여가치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단순히 잉여로동시간의 응결로, 단순히 대상화된 잉여로동으로 리해하는것이 결정적이다. 여러 경제적사회구성체들을 례컨대 노예제의 사회와 임금로동의 사회를 구별하는것은 오직 직접적생산자에게서, 로동자에게서 이 잉여로동을 착취하는 그 형태뿐인것이다.(30)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로동시간이라는 의미에서 사용하여왔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 말을 로동력이라는 특수한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이라는 의미에서 사용할것이다. 동일한 술어를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하는것은 불편하지만 어떠한 과학에서도 이것을 완전히 피할수는 없다. 례컨대 고등수학과 초등수학과를 비교해보라.

(30) 윌헬름 투퀴디데스 로쉐르씨[182]는 참으로 고트쉐드[183]적천재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것을 발견하고있다. 즉 잉여가치 또는 잉여생산물의 형성 및 그것과 결부되여있는 축적은 오늘에 있어서는 자본가의 《절약》의 덕분이며 따라서 자본가는 그 대가로서 《례컨대 리자를 요구》하고있다면 그와 반대로 《가장 낮은 문화단계에 있어서는… 약자가 강자에 의하여 절약을 강요당한다.》는것이다. (《국민경제학원리》, 1858년 제3판, 82, 78페지) 절약되는것이 로동인가? 그렇지 않으면 존재하지도 않는 잉여생산물인가? 사실상의 무지와 아울러 가치 및 잉여가치의 량심적인 분석을 두려워하며 반경찰적

가변자본의 가치는 이 자본으로 구매된 로동력의 가치와 같기때문에, 그리고 이 로동력의 가치는 로동일의 필요부분을 규정하나 잉여가치는 로동일의 초과부분에 의하여 규정되기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가변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률은 필요로동에 대한 잉여로동의 비률과 같다. 바꾸어말하면 잉여가치률$\frac{m}{v}=\frac{잉여로동}{필요로동}$이다. 이 두 비률은 동일한 관계를 각이한 형태로 표현한다. 즉 한 경우에 있어서는 대상화된 로동의 형태로,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류동적인 로동의 형태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잉여가치률은 자본에 의한 로동력의 착취도 또는 자본가에 의한 로동자의 착취도의 정확한 표현이다.(30a)

우리의 가정에 의하면 생산물의 가치$=\overset{c}{\frown}410\overset{v}{\frown}$파운드+90파운드+90파운드였고 선대자본=500파운드였다. 잉여가치=90. 선대자본=500이므로 보통의 계산방법에 의하면 잉여가치률(사람들은 이것을 리윤률과 혼동하고있다.)=18%로 될것인데 이것은 캐어리씨 및 기타 조화론자들을 감동시킬만한 낮은 비률이다. 그러나 실지는 잉여가치률은 $\frac{m}{c}$ 또는$\frac{m}{c+v}$이 아니라 $\frac{m}{v}$이며 즉 $\frac{90}{500}$이 아니라 $\frac{90}{90}$=100%이다. 즉 이것은

인 위험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가 두려워하는 변호론적공포심, 이것으로 해서 로쉐르와 그 일파는 현존하는 잉여가치의 취득을 정당화하는데 리용하는 자본가들의 어느 정도 그럴듯해보이는 그 근거가 잉여가치발생의 근거인것 같이 외곡하고있는것이다.

(30a) 제2판 주: 잉여가치률은 로동력의 착취도의 정확한 표현이기는 하나 결코 착취의 절대량의 표현인것은 아니다. 례컨대 만약 필요로동=5시간, 잉여로동=5시간이라면 착취도=100%이다. 이 경우에 착취량은 5시간이다. 그러나 만약 필요로동=6시간, 잉여로동=6시간이라면 100%의 착취도는 의연히 변함없으나, 착취량은 20% 증가되여 5시간에서 6시간으로 된다.

외견상의 착취도의 5배이상이다. 이 경우에 우리는 비록 로동일의 절대량도, 로동과정이 계속되는 기간(일, 주 등등)도, 또 끝으로 90파운드의 가변자본이 동시적으로 움직이는 로동자의 수도 모두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잉여가치률 $\frac{m}{v}$은 그것이 $\frac{\text{잉여로동}}{\text{필요로동}}$으로 전화하는데 의하여 로동일의 두 구성부분간의 비률을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것은 100%이다. 그러므로 로동자는 반날은 자기자신을 위하여 일하였고 나머지 반날은 자본가를 위하여 일한것이다.

그리하여 잉여가치률의 계산방법은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즉 우리는 생산물가치전체를 취하여 그것에 재현될 뿐인 불변자본가치를 0으로 본다. 나머지 가치액은 상품의 형성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새로 생산된 유일한 가치생산물이다. 만약 잉여가치가 주어진것이라면 우리는 이 가치생산물에서 잉여가치를 공제하면 가변자본을 발견하게 된다. 만약 가변자본이 주어진것이고 구하려는것이 잉여가치라면 그 반대로 이 가치생산물에서 가변자본을 공제하면 된다. 만약 잉여가치와 가변자본이 둘 다 주어진것이라면 최후적운산을 하여 가변자본에 대한 잉여가치비률 $\frac{m}{v}$을 계산해내기만 하면 된다.

이 방법은 대단히 간단하기는 하나 몇개의 실례를 들어 독자들로 하여금 이 방법의 기초에 놓여있으며 또 독자들에게는 습관되여있지 않는 견해에 익숙해지게 하는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10,000개의 뮬방추를 가진 방적공장을 례로 들어보자. 이 공장에서는 미국면화에서 32번수의 면사를 뽑으며 매주 방추 1개당 1폰드의 면사를 생산한다고 하자. 솜먼지로

되는것이 6%이다. 그리하여 매주 10,600폰드의 면화가 가공되여 10,000폰드의 면사와 600폰드의 솜먼지로 된다. 1871년 4월에 이 면화의 가격은 1폰드당 $7\frac{3}{4}$펜스였다. 따라서 10,600폰드는 약 342파운드이다. 이 10,000개의 방추는 조방기와 증기기관을 포함하여 방추 1개당 1파운드 즉 10,000파운드의 비용이 든다. 방추의 1년간 마모는 10%=1,000파운드 즉 매주 20파운드이다. 공장건물의 임차료는 300파운드 즉 매주 6파운드이다. 석탄(매시간 1마력당 4폰드, 건물난방용도 계산에 포함하여 100마력(표시기로 표시되는 마력)으로 매주 60시간에 대한것 값은, 매주 11톤, 톤당 8실링 6펜스라 하고 매주 약 $4\frac{1}{2}$파운드이다. 가스에는 매주 1파운드가 들고 기름에는 매주 $4\frac{1}{2}$파운드가 든다. 따라서 전체 보조재료에는 매주 10파운드가 든다. 그리하여 불변적가치부분은 매주 378파운드이다. 로임은 매주 52파운드이다. 면사가격은 1폰드당 $12\frac{1}{4}$펜스 또는 10,000폰드=510파운드이며 따라서 잉여가치는 510−430=80파운드이다. 378파운드의 불변적가치부분은 매주의 가치형성에는 참가하지 않기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0으로 본다. 그리하여 매주의 가치생산물 132파운드(v+m)=52파운드+80파운드가 남는다. 따라서 잉여가치률=$\frac{80}{52}=153\frac{11}{13}$%이다. 10시간 평균로동일인 경우에는 필요로동=$3\frac{31}{33}$시간, 잉여로동=$6\frac{2}{33}$시간이다.(31)

---

(31) 제2판 주: 제1판에서 인용된 1860년의 한 방적공장의 실례에는 약간의 사실상의 오유가 있었다. 본문에 인용된 완전히 정확한 자료는 만체스터의 어떤 공장주가 나에게 제공한것이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것은 영국에서는 구마력은 실린더의 직경에 의하여 계산되

제이커브는 1815년도에 밀가격은 1쿼터당 80실링이고 1에이커당 평균수확은 22부쉘이고 따라서 1에이커당 수익은 11파운드가 된다는 가정밑에서 다음과 같은 계산[185]을 하였는데 이것은 여러 항목을 미리 상쇄한것이기때문에 극히 불완전하기는 하나 우리의 목적에는 충분하다.

1에이커당 가치생산

종자(밀)……1파운드 9실링	10분의1세, 지방세, 국세 ……1파운드 1실링
비료……2파운드 10실링	지대……1파운드 8실링
로임……3파운드 10실링	차지농업가의 리윤 및 리자 ……1파운드 2실링
합계……7파운드 9실링	합계……3파운드 11실링

여기에서(우리는 항상 생산물의 가격=생산물의 가치라고 가정한다.) 잉여가치는 리윤, 리자, 10분의1세 등등의 각종 항목으로 나뉘여진다. 이 항목들은 우리에게는 아무래도 좋다. 그것들을 합하면 3파운드 11실링이라는 하나의 잉여가치가 나온다. 종자대금 및 비료대금인 3파운드 19실링을 우리는 불변자본부분으로서 0으로 본다. 그러면 선대된 가변자본 3파운드 10실링이 남으며 그대신에 3파운드 10실링+3파운드 11실링이라는 새 가치가 생산된다. 따라서 $\frac{m}{v}=\frac{\text{3파운드 11실링}}{\text{3파운드 10실링}}$이고 그것은 100%이상이다. 로동자는 자기로동일의 절반이상을 잉여가치의 생산에 돌리고있는데 이 잉여가치는 각종 구실밑에 여러 사람들사이에 분배되는것이다.(31a)

고있었으나 신마력은 표시기가 표시하는 실지힘에 의하여 계산되고있다는 사실이다.[184]

(31a) 여기에 인용된 계산은 오직 례증으로서만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우리는 가격=가치라고 가정하고있는것이다. 제3권에 가서 우리는 이러한 등치가 평균가격에 대해서까지도 그렇게 간단하게는 성립되지 않는다는것을 보게 될것이다.[186]

2. 생산물의 비률적부분들에서의 생산물가치의 표현

이제 우리는 자본가가 어떻게 화폐를 자본화하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그 실례에 되돌아가기로 하자. 그의 방적공의 필요로동은 6시간이고 잉여로동도 6시간이며 따라서 로동력의 착취도는 100%이다.①

12시간로동일의 생산물은 30실링의 가치를 가지는 20폰드의 면사이다. 이 면사의 가치의 적어도 $\frac{8}{10}$(24실링)은 소비된 생산수단(20실링의 가치를 가지는 20폰드의 면화, 4실링의 가치를 가지는 방추 등등)의 재현에 지나지 않는 가치로써 형성되여있다. 즉 불변자본으로 구성되여있다. 나머지 $\frac{2}{10}$는 방적과정의 진행중에 발생한 6실링의 새로운 가치인데 그중 절반은 선대된 로동력의 일가치 즉 가변자본을 보상하며 또 절반은 3실링의 잉여가치를 형성한다. 따라서 이 20폰드의 면사의 총가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text{면사의 가치 } 30\text{실링} = \overbrace{24\text{실링}}^{c} + \overbrace{3\text{실링}}^{v} + \overbrace{3\text{실링}}^{m}$$

이 총가치는 20폰드의 면사라는 총생산물로써 표현되여 있기때문에 가치의 각이한 구성요소들도 또한 생산물의 비률적부분들로써 표현될수 있을것이다.

만약 30실링이라는 면사의 가치가 20폰드의 면사에 있다면 이 가치의 $\frac{8}{10}$ 즉 그 불변부분인 24실링은 생산물의

① 이 책 225~227페지를 보라. —편집자

$\frac{8}{10}$에, 다시말하면 16폰드의 면사에 있을것이다. 그중 $13\frac{1}{3}$폰드는 원료의 가치 즉 방적된 면화의 가치 20실링을 대표하며 $2\frac{2}{3}$ 폰드는 소비된 보조재료와 로동수단인 방추 등등의 가치 4실링을 대표한다.

그리하여 $13\frac{1}{3}$폰드의 면사는 20폰드의 면사라는 총생산물을 만드는데 소비된 면화전체를 즉 총생산물의 원료를 대표하며 그 이상은 아무것도 대표하지 않는다. 비록 그속에는 $13\frac{1}{3}$실링의 가치를 가지는 $13\frac{1}{3}$폰드의 면화밖에 들어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에 첨가된 $6\frac{2}{3}$실링의 가치는 나머지 $6\frac{2}{3}$폰드의 면사에 소비된 면화의 등가물을 이룬다. 그것은 마치 이 $6\frac{2}{3}$폰드의 면사에는 면화가 조금도 들어있지 않고 총생산물에 사용된 면화는 전부 $13\frac{1}{3}$폰드의 면사에 들어있는것 같다. 그러나 그 반면에 이 $13\frac{1}{3}$폰드의 면사에는 이제는 소비된 보조재료 및 로동수단의 가치나 방적과정에서 창조된 새로운 가치는 단 한 원자도 포함되여있지 않다.

그와 마찬가지로 불변자본의 나머지(=4실링)가 들어있는, 그다음 $2\frac{2}{3}$폰드의 면사는 20폰드의 면사라는 총생산물에 소비된 보조재료와 로동수단의 가치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대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산물의 $\frac{8}{10}$ 즉 16폰드의 면사는 그것을 물체적으로, 사용가치로서, 면사로서 고찰할 때에는 비록 생산물의 다른 부분들과 꼭 마찬가지로 방적로동의 창조물이지만

그러나 상술한바와 같은 면에서 보면 거기에는 방적로동 즉 방적과정자체에 흡수된 로동은 조금도 포함되여있지 않다. 이것은 마치 방적작업이 없이 면사로 전화된것 같으며 마치 면사라는 그 모습은 순전한 기만인것 같다. 사실 자본가가 그것을 24실링에 팔고 이 24실링으로 다시 그의 생산수단을 산다면 이 16폰드의 면사는 면화, 방추, 석탄 등등의 변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 명백하게 된다.

반대로 생산물의 나머지 $\frac{2}{10}$ 즉 4폰드의 면사는 이제는 12시간의 방적과정에서 생산된 6실링이라는 새로운 가치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대표하지 않는다. 거기에 들어있는, 소비된 원료와 로동수단의 가치는 벌써 거기에서 뽑혀나와 첫 16폰드의 면사에 합해졌다. 20폰드의 면사에 구현된 방적로동은 생산물의 $\frac{2}{10}$에 집중되여있다. 그것은 마치 방적공이 4폰드의 면사를 공기에서 뽑아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인간로동의 협력없이 천연적으로 존재하며 따라서 생산물에 아무런 가치도 첨가하지 않는 그러한 면화나 방추로 만들어낸것 같다.

이와 같이 매일의 방적과정의 전체 가치생산물이 4폰드의 면사로 되여 존재하는데 그중 절반은 소비된 로동력의 가치를 보상하는 가치만을, 다시말하면 3실링이라는 가변자본만을 대표하며 나머지 2폰드의 면사는 3실링이라는 잉여가치만을 대표한다.

방적공의 12로동시간은 6실링에 대상화되기때문에 30실링이라는 면사의 가치에는 60로동시간이 대상화되여있다. 그것은 20폰드의 면사속에 존재하는데 이 20폰드의 면사중 $\frac{8}{10}$

즉 16폰드는 방적과정이전의 48로동시간의 물질화, 다시말하면 면사의 생산수단에 대상화되여있는 로동의 물질화이고 또 $\frac{2}{10}$ 즉 4폰드는 방적과정자체에 지출된 12로동시간의 물질화이다.

면사의 가치는 면사의 생산중에 창조된 새로운 가치에, 면사의 생산수단속에 이전부터 존재하고있던 가치를 가한 총액①과 같다는것은 우리가 이미 본바이다. 이제 우리는 생산물가치의 기능상 또는 개념상의 각이한 구성부분들이 생산물 그 자체의 비률적부분들로 어떻게 표현될수 있는가를 보았다.

생산물—생산과정의 결과—은 생산수단에 들어있는 로동 또는 불변자본부분만을 표현하는 어떤 량의 생산물과 생산과정내에서 첨가된 필요로동 또는 가변자본부분만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어떤 량의 생산물과 끝으로 바로 이 과정내에서 첨가된 잉여로동 또는 잉여가치만을 표현하는 어떤 량의 생산물로 분해된다. 이러한 분할은 후에 그것을 복잡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적용할 때에 알수 있는바와 같이 간단하면서도 중요한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총생산물을 12시간로동일의 완성된 결과로서 고찰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총생산물의 산생과정에서도 그것을 고찰할수 있는데 역시 부분적생산물들을 기능상 서로 다른 생산물부분들로서 표현할수 있다.

방적공은 12시간에 20폰드의 면사를 생산하므로 1시간에는 $1\frac{2}{3}$폰드를 생산하며 8시간에는 $13\frac{1}{3}$폰드를, 다시말하면 전 로동일동안에 실로 뽑히는 면화의 총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생산물을 생산한다. 바로 그와 같이 그다음 1시간 36분의

① 이 책 232~234페지를 보라. —편집자

부분생산물은 $2\frac{2}{3}$폰드의 면사이고 따라서 그것은 12로동시간 동안에 소모된 로동수단의 가치를 표현한다. 마찬가지로 방적공은 그다음의 1시간 12분에는 2폰드의 면사=3실링을 생산하는데 이것은 그가 필요로동의 6시간내에 창조하는 전체 가치생산물과 같은 생산물가치이다. 끝으로 그는 마지막 $\frac{6}{5}$시간에 역시 2폰드의 면사를 생산하는데 그 가치는 그의 반일분잉여로동에 의하여 생산된 잉여가치와 같은것이다. 이 계산방식은 영국의 공장주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것이며 그는 례컨대 로동일의 첫 8시간 또는 $\frac{2}{3}$로동일에는 자기의 면화를 회수한다, 등등이라고 말할것이다. 우리는 이 공식이 정당하다는것 즉 이 공식은 사실에 있어서는 최초의 공식을, 생산물부분들이 완성형태로 나란히 놓여있는 공간으로부터 그것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시간으로 번역한데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알고있다. 그러나 이 공식은 또한 극히 야만적인 관념들을 수반할수도 있는데 특히 실제적으로 가치증식과정에 관심을 가지면서 리론적으로는 그것을 곡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하다. 례컨대 다음과 같이 생각할수도 있을것이다. 즉 우리의 방적공은 자기 로동일의 첫 8시간으로는 면화의 가치를 생산 또는 보상하며 그다음의 1시간 36분으로는 소모된 로동수단의 가치를 생산 또는 보상하며 또 그다음 1시간 12분으로는 로임의 가치를 생산 또는 보상하며 오직 그 유명한 《마지막 1시간》 만을 공장주를 위한 잉여가치의 생산에 바친다고. 그리하여 방적공은 이중의 기적을 나타내야 하는데 첫째로는 그는 면화, 방추, 증기기관, 석탄, 기름 등등을, 그가 이것들을 가지고 실을 뽑고있는 그 순간에 생

산해야 하며 둘째로는 주어진 강도의 1로동일로써 그는 그러한 로동일을 다섯개나 만들어내여야 한다. 그리하여 례컨대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료와 로동수단의 생산에는 $\frac{24}{6}$ 즉 4개의 12시간로동일이 필요하며 그것들을 면사로 만드는데는 또 1개의 12시간로동일이 필요한것이다. 략탈의 탐욕이 이와 같은 기적을 믿으며 또 이 기적을 론증하려는 공론적아첨쟁이는 얼마든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력사적으로 유명한 다음과 같은 실례가 잘 말해주고있다.

3. 씨니어의 《마지막 1시간》

1836년의 어느날 아침 경제학적식견과 아름다운 문체로써 소문난, 이를테면 영국경제학자중의 클라우렌인 내쏘우 W. 씨니어는 옥스포드에서 만체스터로 불려갔다. 그것은 옥스포드에서는 정치경제학을 가르쳤으나 만체스터에서는 그것을 배우기 위하여서였다. 공장주들은 얼마전에 공포된 공장법[187]과 또 그 이상의 요구를 들고나온 10시간로동일운동을 반대하는 투사로서 그를 선발한것이였다. 공장주들은 그들이 보통 가지고있는 실무적인 명민성으로 이 교수는 《아직 상당히 세련되여야 되겠다.》고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를 만체스터로 불러냈던것이다. 이 교수는 그가 만체스터에서 공장주들에게서 받은 강의를 윤색하여 《면방직업에 미치는 공장법의 영향에 관한 편지》(1837년 런던판)이라는 소책자를 써냈다. 이 소책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유익한 구절을 읽을수 있다.

《현행법하에서는 18세미만의 사람들이 일하고있는 어떠한 공장도

매일 $11\frac{1}{2}$시간이상을 즉 첫 5일간은 12시간이상, 토요일에는 9시간이상을 작업할수 없다. 다음의 분석 (!) 은 그러한 공장에서 순리윤전체가 마지막 1시간내에 나온다는것을 보여준다. 공장주는 100,000파운드를 투하하되 80,000파운드는 공장건물과 기계에, 20,000파운드는 원료와 로임에 투하한다고 하자. 자본의 회전을 년 1회, 총리윤을 15%라고 가정하면 이 공장의 1년간의 상품매상고는 115,000파운드가 되여야 할것이다.…1로동일에 들어있는 23개의 $\frac{1}{2}$로동시간의 하나하나는 이 115,000파운드의 $\frac{5}{115}$ 또는 $\frac{1}{23}$을 생산한다. 115,000파운드의 총액을 구성하는 이 $\frac{23}{23}$중의 $\frac{20}{23}$은 즉 115,000파운드중의 100,000파운드는 단순히 자본을 보상하는데 지나지 않고 $\frac{1}{23}$ 즉 총리윤 (!) 15,000파운드중의 5,000파운드는 공장과 기계의 마모를 보상한다. 나머지 $\frac{2}{23}$ 즉 매일의 마지막 두 $\frac{1}{2}$시간이 10%의 순리윤을 생산한다. 그러므로 만약 가격이 변동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이 공장이 $11\frac{1}{2}$시간이 아니라 13시간을 작업할수 있게 된다면 류동자본을 약 2,600파운드 추가함으로써 순리윤은 2배이상으로 될것이다. 반대로 만약 로동시간이 하루에 1시간씩 단축된다면 순리윤은 없어질것이며 또 만약 $1\frac{1}{2}$시간씩 단축된다면 총리윤까지도 없어질것이다.》(32)

(32) 씨니어 《면방직업에 미치는 공장법의 영향에 관한 편지》, 1837년 런던판, 12~13페지.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좋은 약간의 기묘한 점들, 례컨대 마치 공장주들이 마모된 기계 등등의 보상을 즉 자본의 어떤 구성부분의 보상을 총리윤에나 혹은 순리윤(총리익에나 혹은 청정리윤)에 가산하는듯이 주장하는것 같은것은 문제로 삼지 않는다. 우리는 또 든 수자가 정확한것인가 또는 거짓인가도 역시 문제로 삼지 않는다. 그것이 소위 《분석》이상의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는것은 레너드 호너가 《씨니어씨에게 보내는 편지》(1837년 런던판)에서 증명한바이다. 레너드 호너는 1833년의 공장조사위원회의 한사람이였고 1859년까지는 공장감독관—실지로는 공장검열관—이였으며 영국로동계급에게 불멸의 공적을 남긴 사람이다. 그는 자기의 전 생애를 통하여 비단 격분한 공장주들을 상대로 투쟁하였을뿐만아니라 또한 공장내 《일손》의 로동

그런데 이 교수는 이런것을 《분석》이라고 하고있다! 만약 그가, 로동자들은 1일중의 대부분을 건물, 기계, 면화, 석탄 등등의 가치의 생산에, 따라서 그것들의 재생산에 또는 보상에 들인다는 공장주들의 한탄을 믿는다면 온갖 분석이 다 쓸데없을것이다. 그는 다만 다음과 같이 답변할수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만약 당신들이 $11\frac{1}{2}$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을 일시킨다면 기타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면화, 기계 등등의 매일의 소모는 $1\frac{1}{2}$시간분만큼 감소될것이다. 따라서 당신들은 손실을 보는 그만큼 리득을 볼것이다. 앞으로는 당신들의 로동자들을 선대된 자본가치의 재생산 또는 보상을 위하여 $1\frac{1}{2}$시간 적게 랑비하게 될것이다라고. 또 만약 씨니어가 공장주들의 말을 그대로는 믿지 않고 전문가로서 특별한 분석

시간수를 세는것보다 하원에서의 공장주들의 《투표수》를 세는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 대신들을 상대로 투쟁하였다.

주(32)에 대한 보충: 씨니어의 서술은 그 내용상의 허위는 고사하고라도 아주 혼란된것이다. 그가 본래 말하고저 한것은 다음과 같은것이였다. 공장주는 로동자를 매일 $11\frac{1}{2}$시간 또는 $\frac{23}{2}$시간 일시킨다. 1개의 로동일과 마찬가지로 1년간의 로동도 $11\frac{1}{2}$시간 또는 $\frac{23}{2}$시간으로써(이 시간수에 1년간의 로동일수를 승한것) 구성된다. 이러한 가정밑에서는 $\frac{23}{2}$로동시간은 1년간에는 115,000파운드의 생산물을 생산하며 $\frac{1}{2}$로동시간은 $\frac{1}{23}$×115,000파운드를 생산하며 또 $\frac{20}{2}$로동시간 $\frac{20}{23}$×115,000파운드=100,000파운드를 생산한다. 다시말하면 그것은 오직 선대된 자본을 보상할뿐이다. 남은것은 $\frac{3}{2}$로동시간인데 이것은 $\frac{3}{23}$×115,000파운드=15,000파운드 즉 총리윤을 생산한다. 이 $\frac{3}{2}$로동시간중 $\frac{1}{2}$로동시간은 $\frac{1}{23}$×115,000파운드=5,000파운드를 생산한다. 다시말하면 그것은 공장의 마모를 보상할뿐이다. 마지막 두개의 $\frac{1}{2}$로동시간 즉 마지막 1로동시간은 $\frac{2}{23}$×115,000파운드=10,000파운드 즉 순리윤을 생산한다. 본문에서 씨니어는 생산물의 마지막 $\frac{2}{23}$를 로동일자체의 각 부분으로 전화시키고있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면 그는 우선 공장주 제씨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했어야 할것이다. 즉 오직 로동일의 길이에 대한 순리윤의 관계에 관한 문제에서는 기계와 공장건물, 원료와 로동을 뒤섞어놓지 말고 아무쪼록 공장건물, 기계, 원료 등등에 포함되여있는 불변자본을 한쪽에 놓고 로임에 선대된 자본을 다른쪽에 놓아달라고 요청했어야 할것이다. 그때 만약 어쩌다가 공장주들의 계산에 의하여 로동자는 $\frac{2}{2}$로동시간에 또는 1로동시간에 임금을 재생산 또는 보상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우리의 분석가는 다음과 같이 계속했어야 할것이다.

당신들의 말에 의하면 로동자는 마지막 두번째 1시간에 자기의 로임을 생산하고 마지막 1시간에 당신들의 잉여가치 또는 순리윤을 생산한다. 그는 동일한 시간내에는 동일한 가치를 생산하기때문에 마지막 두번째 1시간의 생산물은 마지막 1시간의 생산물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또 로동자는 그가 로동을 지출하는 한에 있어서만 가치를 생산하며 또 그의 로동의 량은 그의 로동시간에 의하여 측정된다. 이 로동시간은 당신들의 말에 의하면 하루에 $11\frac{1}{2}$시간으로 되여있다. 이 $11\frac{1}{2}$시간의 일부분을 그는 자기의 로임의 생산 또는 보상에 사용하며 다른 일부분을 당신들의 순리윤의 생산에 사용한다. 그는 1로동일동안에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들의 말에 의하면 그의 임금과 그에 의하여 제공되는 잉여가치는 같은 크기의 가치인 까닭에 그는 분명히 자기의 로임을 $5\frac{3}{4}$시간에 생산하며 당신들의 순리윤을 나머지 $5\frac{3}{4}$

시간에 생산한다. 그리고 2시간의 생산물인 면사의 가치는 그의 로임에 당신들의 순리윤을 가한 가치량과 같기때문에 이 면사의 가치는 반드시 $11\frac{1}{2}$로동시간에 의하여 측정되여야 한다. 즉 마지막 두번째 1시간의 생산물은 $5\frac{3}{4}$로동시간에 의하여 측정되여야 하며 마지막 1시간의 생산물도 또한 그것에 의하여 측정되여야 한다. 우리는 이제 아주 신중한 주의를 요하는 점에 도달하였다. 그러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 두번째 1로동시간도 최초의 1로동시간과 마찬가지로 보통의 1로동시간이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다면 방적공은 대체 어떻게 $5\frac{3}{4}$로동시간을 대표하는 면사의 가치를 1로동시간에 생산할수 있는가? 실지에 있어서 그는 결코 그와 같은 기적을 낳지 못한다. 그가 1로동시간에 생산하는 사용가치는 일정한 량의 면사이다. 이 면사의 가치는 $5\frac{3}{4}$로동시간으로 측정된다. 그중 $4\frac{3}{4}$로동시간은 매시간 소모되는 생산수단에 즉 면화, 기계 등등에 방적공의 협력없이 이미 포함되여있었던것이고 그중 $\frac{4}{4}$ 또는 1시간을 방적공자신에 의하여 첨가된것이다. 이와 같이 그의 로임은 $5\frac{3}{4}$시간에 생산되며 또 1방적시간의 면사생산물도 또한 마찬가지로 $5\frac{3}{4}$로동시간을 포함하고있기때문에 그의 $5\frac{3}{4}$방적시간의 가치생산물이 1방적시간의 생산물가치와 동일하다는것은 결코 마술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들이 방적공은 면화, 기계 등등의 가치를 재생산 또는 《보상》하는데 그의 로동일의 단 한순간이라도 지출한

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인것이다. 그의 로동이 면화와 방추로써 면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에 의하여 즉 그가 방적을 한다는 사실에 의하여 면화와 방추의 가치는 스스로 면사에 넘어가는것이다. 이것은 그의 로동의 질에 기인하는것이고 그 량에 기인하는것은 아니다. 그가 1시간에 면사에 이전하는 면화의 가치 등등은 $\frac{1}{2}$시간에 이전하는것보다 더 많은것은 물론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직 그가 1시간에 면화에서 실을 뽑는것이 $\frac{1}{2}$시간에 뽑는것보다 더 많다는데 기인할뿐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다음과 같은것을 리해할수 있을것이다. 로동자가 마지막 두번째 1시간에 자기 로임의 가치를 생산하고 마지막 1시간에 순리윤을 생산한다는 당신들의 주장은 그의 로동일중의 2시간 면사생산물에는, 그 2시간이 앞에 있는것이든 뒤에 있는것이든간에 $11\frac{1}{2}$로동시간이 즉 그의 전 로동일과 꼭같은 시간이 체화되여있다는것을 의미할뿐이다. 그리고 또 로동자가 전반의 $5\frac{3}{4}$시간에는 자기의 로임을 생산하고 후반의 $5\frac{3}{4}$시간에는 당신들의 순리윤을 생산한다고 하는 주장은 당신들이 전반의 $5\frac{3}{4}$시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불하나 후반의 $5\frac{3}{4}$시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불하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할뿐이다. 내가 여기서 로동력에 대한 보수라고 말하지 않고 로동에 대한 보수라고 말하는것은 다만 당신들의 통용어로써 이야기하려 하기때문이다. 이제 만약 당신들이 보수를 지불하는 로동시간과 지불하지 않는 로동시간과의 비률을 본다면 당신들은 그것이 반날 대 반날 보수의 비률 즉 100%라

는것을 발견할것인데 이것은 물론 대단히 높은 백분률이다. 또 만약 당신들이 당신들의 《일손》 들을 $11\frac{1}{2}$시간이 아니라 13 시간 일하도록 강요하며 당신들이 하는 식으로 이 여분의 $1\frac{1}{2}$ 시간을 순전한 잉여로동에 합친다면 잉여로동은 $5\frac{3}{4}$시간에서 $7\frac{1}{4}$ 시간으로 증가할것이며 또 이에 따라 잉여가치률은 100%에서 $126\frac{2}{23}$%로 증가하리라는것도 또한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만약 당신들이 $1\frac{1}{2}$시간의 추가에 의하여 잉여가치률이 100%에서 200%로, 또 심지어 200%이상으로 증가하리라고 즉 그것이 《2배이상으로 되리라》고 기대한다면 당신들은 너무나 사려없는 락관주의자이다. 다른 한편—인간의 마음이 이상한것이며 특히 인간이 돈지갑에 마음을 빼앗기고있을 때 더욱 그런것이다—만약 당신들이, 로동일을 $11\frac{1}{2}$시간에서 $10\frac{1}{2}$시간으로 단축하면 당신들의 순리윤이 모두 날아가버리지 않을가 걱정한다면 당신들은 너무나 우울한 비관주의자이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잉여로동이 $5\frac{3}{4}$시간에서 $4\frac{3}{4}$시간으로 감소될것이지만 그래도 그것은 의연히 $82\frac{14}{23}$%라는 상당히 높은 잉여가치률이다. 그러나 당신들의 숙명적인 《마지막 1시간》이라는것은—당신들은 이에 대하여 천년기설의 신자[188]들이 세계의 종말에 대하여 이야기한것보다 더 많은 신화를 꾸며내였지만—《순전한 헛소리》이다. 그 1시간을 잃어버린다 해도 당신들의 《순리윤》은 없어지지 않을것이며 또 당신들이 고역시키고있는 소년소녀들의 《령

혼의 순결》도 없어지지 않을것이다.(32a)

당신들의 《마지막 1시간》의 종소리가 울릴 때에 이 옥스포드의 교수를 회상하라. 그러면 저 좋은 세상에서 다시 만

(32a) 씨니어가 공장주들의 순리윤과 영국면방직업의 존재와 세계시장에서의 영국의 지위가 《마지막 1로동시간》에 달려있다는것을 론증하였다면 앤드루유어박사는 다음과 같은것을 론증하였다.[189] 즉 만약 아동들과 18세미만의 미성년들을 옹근 12시간동안 공장구내에 따뜻하고 깨끗한 도덕적분위기속에 가두어두지 않고 그들을 《1시간》 더 빨리 랭혹하고 타락한 외부세계에 몰아낸다면 라태와 악습에 의하여 그들의 령혼을 구제할수 없게 되리라는것이다. 1848년이래로 공장감독관들은 반년마다 1차씩 발행하는 자기들의 《보고》 가운데서 《마지막》《숙명적인 1시간》을 가지고 공장주들을 끊임없이 야유하여왔다. 그 일례로 하우얼씨는 1855년 5월 31일부 자기의 공장감독관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만약 다음과 같은 교묘한 계산 (그는 씨니어를 인용하고있다.) 이 정당한것이라면 련합왕국내의 모든 면방직공장은 1850년이래 손실을 보면서 조업해온것으로 된다.》 (《공장감독관보고. 1855년 4월 30일까지의 반년간》, 19페지) 1848년에 10시간로동법안[190]이 의회에서 통과되였을 때에 도세트군과 서머세트군과의 사이에 산재한 농촌의 아마방적공장주들은 약간의 정규로동자들에게 그 법안을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일이 있는데 이 청원서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자식들의 부모인 우리들 청원자는, 한가한 시간을 1시간 더 추가한다는것은 우리의 자식들을 타락시키는것이외에 다른 아무런 결과도 가져올수 없다는것을 확신합니다. 왜냐 하면 라태는 모든 악습의 근원이기때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1848년 10월 31일부 공장감독관보고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여있다. 《이러한 유덕하고 인자한 어버이의 어린 자녀들이 로동하고있는 아마방적공장내부의 공기는 원료에서 발산되는 무수한 먼지와 섬유의 가루로 충만되여 방적실내에 10분간만 있어도 매우 불쾌할 지경이다. 왜냐 하면 거기서는 대번에 사람의 귀, 눈, 입, 코에 도저히 피할수 없는 아마먼지가 들어가 가장 심한 고통을 받게 하기때문이다. 게다가 기계의 급속한 회전때문에 로동자체가 게으름없는 주의력, 부단한 숙련과 긴장한 동작을 요구한다. 그리고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옹근 10시간을 그러한 분위기속에서 그러한 작업에 얽매여있는 자신의 아이들에 대하여 〈라태〉라는 말을 쓰도록 부모들에게 강요하는것은 좀 잔인한듯 하다. …이 아이들은 그 부근농촌의 품팔이군보다 더 장시간 로동한다. … 〈라태와 악습〉이라는 등의 무자비한 문구는 전혀 무근거한 허위이며 가장 파렴치한 위선이라고 락인찍어야 할것이다. …약 12년전에 공장주의 〈순리윤〉 전체는 〈마지막 1시간〉의 로동에서 나오며 따라서 로동일을 1시간 단축하는것은 순리윤을 몽땅 없애버리는것이라고 높은 권위의 시인밑에 공연하게 또 아주 장중하게 선언한 그 자신심에 대하여 사회의 일부 사람들은 놀랐다. 그런데 이제 만약 〈마지막 1시간〉의 혜택에 관한 그 독창적인 발견이 그후 훨씬 개량되여 그 혜택은 〈도덕〉과 〈리윤〉을 같은 정도로 포함하고있으며 따라서 아동로동의 길이가 만 10시간으로 단축된다면 아동의 도덕도 아동고용주의 순리윤도 모두 이 최후의 숙명적인 1시간에 달려있는것만큼 아동고용주의 순리윤과 아울러 아동들의 도덕도 또한 날아가버린다는것을 발견한다면 그들은 기필코 자신의 눈을 믿지 않을것이라고 우리는 말한다.》 (《공장감독관보고. 1848년 10월 31일》, 101페지) 같은 이 공장감독관보고는 이어서 이 공장주 제씨의 《도덕》과 《선행》의 표본을 즉 그들이 반항심이 없는

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33]…1836년에 씨니어가 발견한 《마지막 1시간》이라는 신호나팔은 1848년 4월 15일의 런던 《경제학자》지상에서 경제학계 최고권위의 한사람인 제임즈 윌슨에 의하여, 10시간로동법안을 반대하는 론쟁에서 또 한번 울리였다.

4. 잉여생산물

생산물중 잉여가치를 나타내는 부분(제2절②의 례에서는 20폰드의 면사의 $\frac{1}{10}$ 즉 2폰드의 면사)을 우리는 잉여생산물(surplus produce, produitnet)이라고 부른다. 잉여가치률이 자본총액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본

소수의 로동자를 시켜서 그와 같은 종류의 청원서들에 서명하게 하고 그후 그것들을 산업부문전체, 군전체의 청원서라고 칭하면서 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그들이 리용한 간계, 술책, 유혹, 협박, 위조 등등의 표본을 보여주고있다. 소위 경제《과학》의 현상을 보여주는 극히 특징적인 사실로 남아있는것은 씨니어자신도(이 사람은 후일에 그의 명예를 위하여 열심히 공장법을 옹호해나섰다.) 그의 최초의 반대자와 그후의 반대자들도 모두 그 《독창적인 발견》의 허위적결론을 폭로할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다만 사실과 경험에 호소하였다. 그 리유와 원인은 의연히 비밀로 남아있었다.

(33) 그렇지만 이 교수는 자기의 만체스터려행에서 다소의 소득은 얻었다! 《공장법에 관한 편지》에서는 순리윤전체가 즉 《리윤》과 《리자》와 심지어 《그 이상의 무엇》까지도 모두 로동자의 로동시간중 보수가 지불되지 않는 그 1시간에 의존하는것으로 되여있다! 이보다 1년전에 그가 옥스포드 대학생들과 유식한 속물들을 위하여 저술한 《정치경제학개요》에서 그는, 가치가 로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리카도의 견해를 반대하여 리윤은 자본가의 로동에서, 리자는 자본가의 금욕, 그의 《Abstinenz》(《절욕》)에서 발생한다는것을 《발견》하였던것이다. 이 속임수자체는 낡은것이지만 《절욕》이라는 말은 새로운것이다. 로쉐르씨가, 그것을 독일어로 《Enthaltung》(《절제》)[①]라고 번역한것은 옳다. 그러나 그의 동포들인 위르트, 슐께, 미헬 등등과 같은 라틴어에 그리 정통하지 못한자들은 그것을 《Entsagung》(《금욕》)이라고 승려냄새가 나는 말로 번역하였다.

---

① 이 책 240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이 책 255~258페지를 보라. —편집자

의 가변적구성부분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률에 의해서 규정되는것과 마찬가지로 잉여생산물의 수준도 총생산물중 전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잉여생산물의 비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필요로동을 나타내는 생산물부분에 대한 잉여생산물의 비률에 의해서 규정된다. 잉여가치의 생산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규정적목적인것과 마찬가지로 부의 정도도 생산물의 절대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잉여생산물의 상대량에 의하여 측정된다.(34)

필요로동과 잉여로동과의 합계 즉 로동자가 그 로동력의 보상가치를 생산하는 시간과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시간의 합계가 로동자의 로동시간의 절대량—로동일(workingday)을 형성한다.

---

(34) 《매년 2,000파운드의 리윤을 내는 20,000파운드의 자본을 소유하는 어떤 개인에게는 그의 자본이 100명의 로동자를 고용하든 1,000명의 로동자를 고용하든, 또 생산된 상품이 10,000파운드에 판매되든 20,000파운드에 판매되든 그것은, 그의 리윤이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2,000파운드이하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아무래도 좋은것이다. 한 나라의 실제적리익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만약 한 나라의 실제적순소득, 그 나라의 지대와 리윤이 의연히 동일하기만 하다면 이 나라가 1,000만의 주민으로 구성되든 혹은 1,200만의 주민으로 구성되든 그것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리카도 《정치경제학원리》, 1821년 런던 제3판, 416페지) 리카도보다 훨씬 이전에 잉여생산물의 팡신자인 아서 영—그는 대체로 공담가적무비판적저술가이며 공적에 반비례하여 명성이 높은 사람이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고대로마식으로 독립적소농민들에 의하여 분할되여있는 토지가 아무리 잘 경작된들 그러한 토지를 가지고있는 주들이 현대의 왕국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것은 그자체로서는 아무런 의의도 없는 단순히 인간을 번식시키는 유일한 목적이외에 다른 무슨 목적이 있겠는가?》(아서 영 《정치산수》, 1774년 런던판, 47페지)

주 (34)에 대한 보충: 기묘하게도 《순수소득을…로동계급에게 유리한것으로 설명하려는 심한 경향이 있다.…그러나 그것이 순수한것이기때문에 유리한것은 아니라는것은 분명하다》. (토머스 홉킨즈 《지대에 대하여》, 1828년 런던판, 126페지)

제 8 장

로 동 일

1. 로동일의 한계

우리는 로동력이 그 가치대로 매매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였다. 로동력의 가치는 다른 온갖 상품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로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된다. 따라서 만약 로동자가 매일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생활수단을 생산하는데 6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는 자기의 로동력을 매일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또는 그것을 판매할 때에 받은 가치를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6시간씩 로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 그의 로동일의 필요부분은 6시간이고 따라서 기타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주어진 량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써는 로동일 그자체의 량은 아직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선 a——————b가 필요로동시간의 지속 또는 길이, 이를테면 6시간을 표시한다고 가정하자. 로동이 ab를 넘어서 1시간, 3시간 또는 6시간 등등이 연장됨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개의 각이한 선을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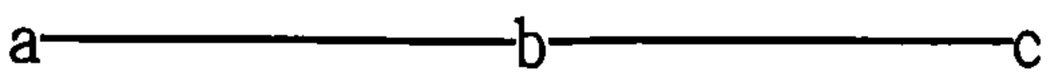
로동일 Ⅰ



로동일 Ⅱ



로동일 Ⅲ



이 세 선은 각각 7시간, 9시간, 12시간으로 되는 세개의 각이한 로동일을 표시한다. 연장선 bc는 잉여로동의 길이를 표시한다. 로동일=ab+bc, 즉 ac이므로 그것은 가변량 bc와 함께 변화한다. ab는 주어져있는것이므로 ab에 대한 bc의 비률은 항상 측정될수 있다. 그것은 로동일Ⅰ에 있어서는 ab의 $\frac{1}{6}$이고, 로동일Ⅱ에 있어서는 $\frac{3}{6}$이고 로동일Ⅲ에 있어서는 $\frac{6}{6}$이다. 또 $\frac{\text{잉여로동시간}}{\text{필요로동시간}}$이라는 비률은 잉여가치률을 규정하는 만큼 이 선들의 비률이 알려져있다면 잉여가치률은 알아낼수 있다. 잉여가치률은 상술한 세개의 각이한 로동일에서 각각 $16\frac{2}{3}$%, 50%, 100%이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잉여가치률만으로는 로동일의 길이를 알아낼수 없다. 잉여가치률이 례컨대 100%라 하더라도 로동일은 8시간, 10시간, 12시간 등등으로 될수 있다. 이 잉여가치률은 로동일의 두 구성부분인 필요로동과 잉여로동의 크기가 같다는것은 보여주지만 그 각개 부분이 얼마나 큰가 하는것은 보여주지 않는다.

그리하여 로동일은 불변량이 아니라 가변량이다. 로동일의 두 부분중 한부분이 로동자자체의 지속적인 재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은 사실이지만 로동일의 전체 길이는 잉여로동의 길이 또는 계속시간에 따라 변동한다. 그러므로 로동일은 규정될수 있는것이지만 그자체로서는 규정되여있는것이 아니다.(35)

이와 같이 로동일은 고정량이 아니라 류동량이기는 하지만 한편 그것은 일정한 한계내에서만 변동할수 있다. 그러나

---

(35) 《로동일-이것은 미정량으로서 길수도 있고 짧을수도 있다.》((존 커닝햄) 《산업 및 상업에 관한 론술, 조세에 관한 고찰을 포함》, 1770년 런던판, 73페지)

로동일의 최소한의 한계는 규정할수 없다. 연장선 bc 또는 잉여로동=0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한계 즉 로동일중 로동자가 자기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로동해야 할 바로 그 부분이 남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기초우에서는 필요로동은 항상 로동자의 로동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것만큼 로동일은 결코 이와 같은 최소한의 한계에까지 단축될수는 없다. 그대신 로동일에는 하나의 최대한의 한계가 있다. 로동일은 일정한 한계이상으로는 연장될수는 없다. 이 최대한의 한계는 두가지에 의하여 규정된다. 첫째로, 로동력의 육체적한계에 의하여 규정된다. 인간은 24시간으로 되는 1자연일동안에는 다만 일정한 량의 생명력밖에 지출할수 없다. 그것은 말이 매일 8시간씩밖에 일할수 없는것과 같이 로동력은 매일 일정한 시간 쉬고 잠자지 않으면 안되며 인간은 또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며 세수와 목욕을 하며 의복을 입는 등등 다른 육체적욕망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로동일의 연장은 이러한 순수한 육체적인 한계이외에 또한 도덕적인 한계에 부닥친다. 즉 로동자는 정신적 및 사회적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간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욕망의 범위와 량은 일반적문화수준에 따라 규정된다. 그러므로 로동일의 변화는 육체적 및 사회적 한계내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이 두 한계는 모두 극히 큰 신축성이 있으며 변동의 여지가 극히 크다. 례컨대 우리는 8시간, 10시간, 12시간, 14시간, 16시간, 18시간의 로동일 즉 그 길이가 극히 각이한 로동일을 볼수 있다.

자본가는 로동력을 일가치로 구매하였다. 1로동일내에서의 로동력의 사용가치는 자본가에게 속한다. 그러므로 자본가는 로동자를 하루동안 자기를 위하여 일시킬수 있는 권리

를 얻었다. 그런데 1로동일이란 무엇인가?(36) 그것은 여하튼 자연적인 1일간보다는 짧다. 얼마나 짧은가? 자본가는 이 극한에 대하여 즉 로동일의 필연적인 한계에 대하여 자기자신의 견해를 가진다. 자본가로서는 그는 인격화된 자본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령혼은 자본의 령혼이다. 그런데 자본은 유일한 생활본능을 가지고있다. 즉 자기를 증식하며 잉여가치를 창조하며 자기의 불변부분인 생산수단으로써 되도록 많은 량의 잉여로동을 흡수하려는 본능을 가지고있다.(37) 자본은 죽은로동이며 이 로동은 흡혈귀처럼 오직 산로동을 흡수하는 때에라야만 활기를 띠며 또 산로동을 많이 흡수하면 할수록 일층 더 활기를 띠는것이다. 로동자가 로동하는 시간은 자본가가 자신이 구매한 로동력을 소비하는 시간이다.(38) 만약 로동자가 자유로 처분할수 있는 시간을 자기자신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는 자본가의것을 훔치는것으로 된다.(39)

자본가는 이와 같이 상품교환의 법칙을 근거로 내세운다. 그는 다른 온갖 구매자와 마찬가지로 자기 상품의 사용가치에서 되도록 많은 리익을 얻어내려고 애쓴다. 그러나 이

---

(36) 이 질문은 로버트 필경이 버밍감상업회의소에 제출한 《1파운드란 무엇인가?》라는 유명한 질문보다 무한히 더 중요하다. 이 후자의 질문은 필이 버밍감의 《소실링파》[191]와 마찬가지로 화폐의 성질을 잘 리해하지 못한탓으로만 제출될수 있었던것이다.

(37) 《자본가의 임무는 지출된 자본을 가지고 되도록 많은 량의 로동을 짜내는데 있다.》(J. G. 꾸르쎌-스뇌이) 《공업, 상업, 농업, 기업의 리론과 실천개론》, 1857년 빠리 제2판, 62페지)

(38) 《하루에 1로동시간씩을 잃어버리는것은 상업국가에 대하여 막대한 손실로 된다.》《이 왕국의 로동빈민들간에서 특히 제조공업의 하층민들간에서 사치품이 대단히 많이 소비되고있다. 여기서 그들은 자기들의 시간까지도 소비하고있는데 이것은 모든 종류의 랑비중에서 가장 치명적소비이다.》((죤 커닝햄) 《산업 및 상업에 관한 론술》, 1770년 런던판, 47, 153페지)

(39) 《만약 자유로운 로동자가 일순간이라도 휴식하면 근심스레 그를 감시하고있는 탐욕적인 경제는, 로동자가 자기의것을 절도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다.》(N. 랭개 《민법리론》, 1767년 런던판, 제2권, 466~467) 페지)

때까지 생산과정의 질풍노도속에서 입을 다물고있던 로동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온다.

내가 너에게 판 상품은 그것을 사용하면 가치가, 그나마 그 자체의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가 창조된다는 점에서 다른 보통 상품들과는 다르다. 네가 그것을 산 리유도 여기에 있었던것이다. 너에게 자본의 가치증식으로 나타나는것이 나에게는 로동력의 과도한 지출로 된다. 너와 나는 시장에서 상품교환의 법칙이라는 오직 하나의 법칙만을 안다. 그리고 상품의 소비는 상품을 양도하는 판매자에게 속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들이는 구매자에게 속한다. 그러므로 나의 그날그날의 로동력의 사용은 너에게 속한다. 그러나 나는 그날그날 그것을 팔아 얻은 돈으로 매일 그것을 재생산하여 또다시 팔수 있어야 한다. 년령 등등에 기인하는 자연적소모를 도외시한다면 나는 래일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상태의 힘과 건강과 원기를 가지고 로동할수 있게 되여야 한다. 너는 나에게 부단히 《절약》과 《절제》의 복음을 설교한다. 좋다! 나는 분별있고 검박한 주인처럼 나의 유일한 재산인 로동력을 아껴쓰며 로동력의 온갖 불합리한 랑비를 삼가하려고 한다. 나는 로동력의 정상적인 지속과 건전한 발전에 배치되지 않을 정도로만 매일 그것을 사용하고 운동시키고 로동에로 전화시킬것이다. 너는 로동일의 무제한한 연장에 의하여 하루동안에 내가 사흘에 회복할수 있는것보다 더 많은 량의 나의 로동력을 써버릴수도 있다. 이와 같이 하여 네가 로동에서 리득을 보는것을 나는 로동의 실체에서 잃어버린다. 나의 로동력을 사용하는것과 그것을 략탈하는것은 전혀 다른것이다. 만약 평균적인 로동자가 합리적인 로동기준하에서 살수 있는 평균기간이 30년이라면 네가 나에게 매일 지불하는 나

의 로동력의 가치는 그 총가치의 $\frac{1}{365\times30}$ 즉 $\frac{1}{10,950}$이다. 그러나 만약 네가 나의 로동력을 10년간 소비해버린다면 너는 매일 나에게 그 총가치의 $\frac{1}{3,650}$이 아니라 $\frac{1}{10,950}$을, 다시말하면 그 일가치의 겨우 $\frac{1}{3}$만을 지불하는것이며 따라서 너는 매일 나의 상품의 가치의 $\frac{2}{3}$를 훔치는것이다. 너는 3일분의 로동력을 사용하면서도 나에게 1일분로동력의 대가를 지불한다. 이것은 우리들의 계약에 위반되며 또 상품교환의 법칙에 위반된다. 그러므로 나는 정상적인 길이의 로동일을 요구한다. 그러나 나는 너의 동정에 호소하지 않고 이를 요구한다. 왜냐 하면 금전문제에서는 인정이란 있을수 없기때문이다.[192] 너는 모범적인 시민일는지도 모르며 동물학대방지협회 회원일는지도 모르며 또 겸하여 덕망이 높다는 평판을 받는 사람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네가 나와의 관계에서 대표하고있는 물건의 가슴속에는 고동치는 심장이 없다. 그속에서 무엇인가 고동치는것 같이 보인다면 그것은 오직 내자신의 심장의 고동일뿐이다. 나는 다른 모든 판매자와 마찬가지로 나의 상품의 가치를 요구하기때문에 정상적인 로동일[193]을 요구한다.(40)

보는바와 같이 극히 신축성있는 로동일의 한계를 도외시한다면 상품교환 그자체의 본성으로부터는 로동일의 아무런 한계도, 따라서 또 잉여로동의 아무런 한계도 생기지 않는다.

---

(40) 로동일을 9시간으로 단축할것을 요구한 1860~1861년의 런던건축로동자들의 대파업때에 그 파업위원회는 본문에서 말한 우리 로동자의 항변과 거의 일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성명서는 《건축기업가》들중에서도 가장 탐욕적인 M. 피토경이라는 사람이 《덕망이 높다는 평판》을 받고있는 사실을 풍자적으로 지적하고있다. (바로 이 피토는 1867년이후에 슈트로우스베르그와 더불어 몰락해버렸다!)

자본가가 로동일을 될수록 연장하여 가능하다면 1로동일을 2로동일로 만들려고 할 때에는 그는 구매자로서의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것이다. 다른 한편 판매된 상품의 특수한 본성은 구매자가 이 상품을 소비하는데 대한 한계를 포함하고있으며 로동자가 로동일을 일정한 표준적인 길이로 제한하려고 할 때에는 그는 판매자로서의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일종의 이률배반이 일어나고있다. 즉 쌍방이 모두 동일한 정도로 상품교환법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그러한 권리와 권리가 서로 대립하고있다. 동등한 권리와 권리가 서로 맞서고있을 때는 힘이 결정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적생산의 력사에서 로동일의 정상화는 로동일의 한계를 위한 투쟁, 다시말하면 총자본가 즉 자본가계급과 총로동자 즉 로동자계급간의 투쟁으로서 나타난다.

2. 잉여로동에 대한 탐욕. 공장주와 령주

자본이 잉여로동을 발명한것은 아니다. 사회의 일부분 사람이 생산수단을 독점하고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로동자는 자유로운 로동자이건 자유롭지 못한 로동자이건 자기자신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로동시간에다 여분의 로동시간을 첨가하여 생산수단의 소유자를 위한 생활수단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된다.(41) 그것은 이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아테네의 귀족이건 에트루리아의 신정자이건 로마의 시민이건 노르만디의 령주이건 미국의 노예소유자이건 왈라키아의 령주이건, 현대의

---

(41) 《로동하는 사람들은…사실상 자기자신을 부양하는 동시에 부자라고 하는 년금생활자도 또한 부양하고있는것이다.》 (에드먼드 버크 《곡물부족에 관한 의견과 상론》, 1800년 런던판, 2~3페지)

지주 또는 자본가이건 다 마찬가지이다.(42) 그렇지만 어떤 경제적사회구성체에서 우위를 차지하는것이 생산물의 교환가치가 아니라 그 사용가치인 경우에는 잉여로동은 욕망의 범위(그것은 좁을수도 있고 넓을수도 있다.)에 의하여 제한되며 생산 그자체의 성격으로부터는 잉여로동에 대한 무제한한 욕망은 발생하지 않는다는것은 명백하다. 고대에도 교환가치를 그 독립적인 화폐형태로 획득하는것이 문제로 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즉 금은의 생산에서는 과도로동이 놀랄만한 정동에 달하였다. 여기서는 죽도록 일시키는 강제로동이 과도로동의 공인된 형태로 되여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씨칠리아의 디오도로스의 글을 읽기만 해도 알수 있다.(43) 그러나 이것은 고대세계에서는 례외적인 일이다. 그러나 생산을 아직도 노예로동, 부역로동 등등의 비교적 낮은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민족들이 세계시장에 즉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지배하고있으며 자기의 생산물을 외국에 판매하는것이 주요한 관심사로 되여있는 세계시장에 끌리여들어가자 노예제도, 농노제도 등등의 미개한 화대우에 과도로동이라는 문명한 학대가 첨가된다. 그러므로 미국남부주들의 흑인의 로동은 생산의 목적이 주로 직접적인 자기 수요의 충족이였던 때에는 적당

---

(42) 니부르는 자기의 저서 《로마사》에서 극히 소박하게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있다. 《에트루리아의 건축물은 그 페허만으로써도 우리를 경탄케 한다. 이러한 건출물이 작은 (!) 국가들에 있다는것은 노예주와 노예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을수 없게 한다는 것은 엄폐할수 없는 사실이다.》 씨스몽디는 훨씬 더 심각하게 《브류쎌의 레스》는 고용주와 임금로동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말하였다.

(43) 《우리는 자기 몸을 깨끗이 하지도 못하고 가리우지도 못하는 이 불행한 사람들 (애급, 에티오피아 및 아랍사이의 금광에서 일하고있는 사람들) 을 보고는 그들의 비참한 운명을 탄식하지 않을수 없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는 병자, 허약자, 로인, 연약한 부녀자에 대해서도 추호의 고려도 용서도 없기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채찍에 견디지 못하여 죽음이 그들을 고통과 궁핍을 끝나게 할 때까지 로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디오도로스(씨칠리아의) 《력사문고》, 제3권, 제13장 (258~260페지))

한 가부장적성격을 유지하고있었으나 면화의 수출이 이 주들의 사활적관심사로 됨에 따라 때로는 흑인의 생명이 7년간의 로동에 의하여 소모되여버릴 정도의 과도로동이 타산적인 계산제도의 요인으로 되였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것은 벌써 유용한 생산물의 일정한 량을 흑인에게서 짜내는것이 아니였다. 이제는 잉여가치 그자체의 생산이 문제로 되였다. 례컨대 두나이 제 공국에서 보는 부역로동에서도 사태는 마찬가지였다.

두나이 제 공국에서의 잉여로동에 대한 탐욕을 영국의 공장에서의 잉여로동에 대한 탐욕과 비교하는것은 특히 흥미있는 일이다. 왜냐 하면 부역로동하에서의 잉여로동은 하나의 독립적인 감각적으로 지각할수 있는 형태를 취하기때문이다.

로동일이 필요로동 6시간과 잉여로동 6시간으로 구성되여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자유로운 로동자는 자본가에게 매주 6×6 즉 36시간의 잉여로동을 제공한다. 이것은 마치 그가 1주일에 3일간은 자기자신을 위하여 로동하고 3일간은 자본가를 위하여 무상으로 로동하는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로동시간의 분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잉여로동과 필요로동은 서로 융합되여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동일한 관계를 례컨대 로동자가 매 1분간에 30초는 자기자신을 위하여 로동하고 30초는 자본가를 위하여 로동한다는 등등의 형태로도 표현할수 있다. 부역로동에 있어서는 사태가 이와 다르다. 례컨대 왈라키아의 농민이 자기 생존의 유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필요로동은 령주를 위하여 수행하는 그의 잉여로동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여있다. 그는 필요로동은 자기자신의 밭에서 수행하고 잉여로동은 령주의 농장에서 수행한다. 그러므로 로동시간의 이 두 부분은 독립적으로 병행하여 존재한다. 잉여로동은 부역로동의 형태에서는 필요로동

과 명확히 분리되여있다. 현상형태에서의 이와 같은 구별이 잉여로동과 필요로동간의 량적비률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것은 분명하다. 1주일에 3일간의 잉여로동은 이 로동의 명칭이 부역로동이든 임금로동이든간에 의연히 로동자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등가물도 형성하지 않는 3일간의 로동인것이다. 그러나 잉여로동에 대한 탐욕은 자본가의 경우에는 로동일을 무제한 연장하려는 갈망으로 나타나며 령주의 경우에는 더 간단하게 부역일수에 대한 직접적인 추구로 나타난다.(44)

두나이 제 공국에서 부역로동은 현물지대 및 농노제도의 기타 부속물과 결합되여있었지만 그러나 지배계급에 대한 주되는 공납은 의연히 부역로동이였다. 부역로동이 존재한 곳에서는 부역로동이 농노제도에서 발생하는 일은 드물고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농노제도가 부역로동에서 발생하는것이 보통이였다.(44a) 로므니아 제 주의 형편도 이러하였다. 그곳의 원래의 생산방식은 공동체적소유에 기초를 둔것이였으나 그 공동체적소유는 슬라브적 또는 특히 인도적 형태와는 다른것이였다. 토지의 일부분은 자유로운 사적소유로서 공동체의

---

(44) 다음에 말하는것은 크림전쟁후에 일어난 혁명[163]이전에 조성되였던 로므니아 제 주의 형편에 관한것이다.

(44a) {제3판 주: 이것은 독일, 특히 엘베강동쪽 프로씨아에 대해서도 또한 적용된다. 15세기 독일농민은 비록 거의 도처에서 생산물과 로동으로써 일정한 공납을 바칠 의무를 지고있었지만 기타 관계에 있어서는 적어도 사실상으로는 자유로왔다. 브란덴부르그, 폼메른, 쉴레지엔 및 동부프로씨아에서의 독일의 주민들은 법률상으로도 자유인으로 인정되여있었다. 농민전쟁에서의 귀족의 승리는 이러한 사태에 종말을 지었다. 비단 남부독일의 정복된 농민이 다시 농노로 되였을뿐만아니라 벌써 16세기중엽부터는 동부프로씨아, 브란덴부르그, 폼메른 및 쉴레지엔의 자유농민들이 또 그후 또 얼마 안되여 쉴레스위히-홀슈타인의 자유농민까지도 농노로 전락되여버렸다. (마우레르 《독일의 부역농장, 농가 및 농가제도의 력사》, (1863년 에를랑겐판) 제4권 (522~523, 530페지). 마이첸 《1866년이전판도의 프로씨아국의 토지와 농업관계》. 한센 《쉴레스위히-홀슈타인공국의 농노제》) —F. E.}

성원들이 독립적으로 경작하였고 다른 일부분—공유지—은 그들이 공동으로 경작하였다. 이 공동로동의 생산물은 일부분은 흉작 및 기타의 재난에 대한 예비기금으로 쓰이였고 일부분은 전쟁과 종교에 대한 비용 및 기타 공동체의 지출에 충당할 목적을 가지는 공금으로 쓰이였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군사관계나 종교관계의 높은 지위를 차지한자들이 공유재산과 함께 공유지에서의 로동까지도 침탈하였다. 공유지에서의 자유농민들의 로동은 공유지의 강점자들에 대한 부역로동으로 되였다. 이와 함께 농노제관계가 발전하였다. 그러나 세계를 해방하는 로씨야가 농노제를 폐지한다는 구실밑에 농노제를 법제화하기까지는 그것은 오직 사실상으로 발전하였을뿐이고 법률상으로 발전한것은 아니였다. 로씨야의 장군 끼셀료브는 1831년에 부역로동법전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령주들자신의 지시에 의한것이였다. 이리하여 로씨야는 일거에 두나이 제 공국의 귀인들을 정복하는 동시에 유럽전체의 자유주의적천치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조직규정》[194]이라고 불리우는 이 부역로동법전에 의하면 왈라키아의 매 농민은 상세히 렬거된 허다한 현물공납이외에 소위 토지소유자를 위하여 1) 12로동일의 일반로동, 2) 1일의 경작로동, 3) 1일의 목재운반작업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있었다. 이상의 총계는 1년에 14일이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에 대한 깊은 리해에 의하여 1로동일이 그 보통의 의미로는 해석되지 않고 1일분의 평균적생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일로 해석되고있다. 그런데 그 1일분의 평균적생산물은 교활하게도 어떠한 장수라도 24시간내에는 도저히 해낼수 없는 그러한 량으로 규정되여있었다. 그러므로 《조직규정》 그자체가 진짜로씨야식 풍자의 로골적인 말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있다. 즉 12일로동일이란 36일간의 손로동생산물로 리해해야 할것이고 경작로동 1일분이란 3일분을 의미하며 목재운반 1일분도 역시 그 3배를 의미한다는것이다. 그리하여 도합 42부역일이 된다. 그러나 이 우에 또 소위 《요바기》(《Jobagie》) 즉 특별한 생산상 필요에 따라 령주에게 제공되는 로동봉사가 첨가된다. 매개 농촌은 그 인구수에 비례하여 매년 이런 《요바기》를 위하여 일정한 수의 인원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추가적인 부역로동은 왈라키아의 농민 매인당 14일로 되여있다. 그리하여 매년 규정된 부역로동은 56로동일에 달한다. 그런데 왈라키아에서 1년간의 농사일수는 기후가 불순하기때문에 210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중에서 일요일과 명절날로 하여 40일, 나쁜 날씨로 하여 평균 30일, 도합 70일이 떨어져나간다. 나머지는 140로동일이다. 필요로동에 대한 부역로동의 비률 $\frac{56}{8}$ 즉 $66\frac{2}{3}$%는 영국의 농업로동자 또는 공장로동자의 로동을 규제하는 잉여가치률에 비하여 훨씬 작은 잉여가치률을 표시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로 규정된 부역로동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또 그 정신에 있어서 영국의 공장립법보다 더 《자유주의적》인 《조직규정》은 그자체의 규정을 용이하게 회피할수 있게 되여있었다. 이 법은 12일을 56일로 만들고 또 그 56부역일의 매개의 명목상 1일간작업을 그다음날에 보충하지 않을수 없도록 규정하고있다. 례컨대 하루동안에 제초해야 할 땅이 실지에 있어서는 그 2배의 시간이 들 정도의 많은 면적으로 되여있는데 특히 옥수수밭의 제초가 그러하다. 법정의 1일분로동은 약간의 농업로동에 대하여는 5월에 그 하루가 시작되여 10월에 끝나는것으로 해석할수 있는것도 있

다. 몰다비야지방에 대해서는 규정이 더 가혹하다. 승리에 도취한 한 령주는 다음과 같이 웨쳤다.

《〈조직규정〉에 규정된 12부역일은 1년에 365일이다!》(45)

만약 두나이 제 공국의 《조직규정》이 잉여로동에 대한 탐욕의 적극적표현이며 그 매개 조항은 이 탐욕을 합법화한 것이라면 영국의 공장법은 이 동일한 탐욕의 소극적표현이다. 영국의 공장법은 국가에 의하여, 그나마 자본가와 지주가 지배하는 국가에 의하여 로동일을 강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로동력의 무제한한 착취에 대한 자본의 갈망을 억제하는것이다. 날이 갈수록 더 위협적으로 장성하는 로동운동은 제쳐놓고도 공장로동을 강제로 제한하는것은 영국의 경지에 분화석거름을 내지 않을수 없는것과 같은 필연성을 가지고있었다. 즉 한 경우에는 땅을 메마르게 한 맹목적인 략탈욕이 다른 경우에는 국가의 생명력의 근원을 파괴하였다. 영국에서의 주기적인 전염병과 독일, 프랑스 병사들의 평균키가 작아진 것이 다같이 이 사실을 똑똑히 말하여준다.(46)

---

(45) 더 상세한것은 E. 른뇨의 저서 《두나이 제 공국의 정치사회사》, 1855년 빠리판 〔305페지이하〕에서 볼수 있다.

(46) 《일반적으로 어떤 유기체의 평균키가 커진다는것은 어느 정도까지 그 유기체가 번영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만약 자연적 또는 사회적 조건이 인간의 번영을 침해할 때에는 사람의 키는 작아진다. 징병제도가 존재하고있는 모든 유럽나라들에서 그 제도의 실시이래 성인남자의 평균키와 그리고 일반적으로 병역에 복무할수 있는 그 조건이 저하되였다. 혁명(1789년)이전에 프랑스보병의 키의 최저한도는 165센치메터였는데 1818년(3월 10일의 법률)에서는 157센치메터였고 1832년 3월 21일의 법률에 의하면 156센치메터였다. 프랑스에서는 키의 부족과 육체적결함으로 말미암아 평균해서 징모자의 반수이상이 불합격으로 인정되고있다. 작쎈에서는 병사들의 최저신장표준이 1780년에는 178센치메터였는데 지금은 155센치메터로 되여있다. 현재 프로씨아에서는 157센치메터이다. 1862년 5월 9일부 〈바이에른신문〉에 게재된 마이에르박사의 보고에 의하면 9년간의 평균을 볼 때 프로씨아에서 1,000명의 징모자중 716명의 병역불합격자가 나왔는데 그중 317명은 키가 작기때문이며 그리고 399명은 체질이 허약하기때문이라는것을 알수 있다.…베를린에서는 1858년에 보충병인원에 대한 규정상 할당수를 다 채울수가 없어서 156명의 결원이 생겼다.》(J. V. 리비히 《농업과 생리학에의 화학의 응용》, 1862

현재(1867년) 실시되고있는 1850년의 공장법[195]은 주일평균로동일을 10시간으로 규정하고있다. 즉 1주일의 처음 5일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12시간인데 이 시간중에서 법률상 반시간은 아침식사에, 한시간은 점심식사에 배정되므로 나머지 로동시간은 $10\frac{1}{2}$시간이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의 8시간인데 그중에서 반시간은 아침식사에 배정된다. 남는것은 60로동시간인데 1주일의 처음 5일간은 $10\frac{1}{2}$시간이고 주말 즉 토요일은 $7\frac{1}{2}$시간이다.(47)[196] 이 법률의 집행을 감시할 목적으로 내무대신직속의 공장감독관들이 임명되여있으며 그들의 보고는 반년에 한번씩 의회가 공포하기로 되여있다. 그리하여 이 보고는 잉여로동에 대한 자본가들의 탐욕에 관한 공식적통계자료를 부단히 제공한다.

이제 우리는 잠간 공장감독관들의 말을 들어보기로 하자.(48)

기만적인 공장주는 아침 6시 되기 15분전에—때로는 더 일찌기,

년, 제7판, 제1권, 117~118페지)

(47) 1850년공장법의 력사는 이 장의 뒤부분에서 서술된다. ①

(48) 영국의 대공업의 초창기부터 1845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관해서는 나는 몇몇 군데에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이 기간에 관하여는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저서 《영국로동계급의 형편》(1845년 라이프찌히판)을 참고하기 바란다. 엥겔스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본질을 얼마나 심오하게 리해하고있었는가는 1845년이후에 발간된 공장감독관의 보고, 광산감독관의 보고 등등이 보여준다. 또 그가 로동계급의 실정을 얼마나 놀랄만큼 상세하게 묘사하였는가는 그의 저서를 그보다 18~20년후에 발간된 아동로동조사위원회(1863~1867년)의 공식보고와 대강 대비해보아도 알수 있다. 이 보고에는 바로 1862년까지 공장법이 아직 실시되지 않았고 또 부분적으로는 현재까지 아직 실시되고있지 않는 그러한 공업부문들이 취급되고있다. 따라서 이 부문들에서는 엥겔스가 묘사한 상태에 외부로부터 아무런 본질적인 변경도 가하여지지 않았다. 내가 드는 실례는 주로 1848년이후 자유무역시대의 실례이다. 즉 과학적으로는 파우헤르처럼[197] 보잘것없으면서도 허장성세를 일삼는 자유무역행상인들이 독일사람들에게 꿈같은 이야기를 많이 한 그 락원시대의 실례이다. —여기에서 영국이 큰 역할을 노는것은 이 나라가 자본주의적생산의 전형적대표이며 또 이 나라만이 지금 취급되고있는 문제에 관한 공식적이며 계속적인 통계를 가지고있는 유일한 나라이기때문이다.

---

① 이 책 338~341페지를 보라. —편집자

때로는 더 늦게ㅡ작업을 시작하여 오후 6시 지나 15분후에ㅡ때로는 더 일찌기, 때로는 더 늦게ㅡ끝마친다. 또 그는 명목상 아침식사에 배정된 반시간의 처음과 마지막에서 5분씩을 떼여내며 점심식사에 배정된 한 시간의 처음과 마지막에서 10분씩 떼여낸다. 토요일에는 오후 2시 지나 15분후에ㅡ때로는 더 일찌기, 때로는 더 늦게ㅡ작업을 끝낸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과 같은 리득을 본다.

오전 6시이전……	15분	
오후 6시이후……	15분	
아침식사때……	10분	5일간총계: 300분
점심식사때……	20분	
	60분	

토요일

오전 6시이전……	15분	
아침식사때……	10분	1주간의 총계: 340분
오후 2시이후……	15분	

즉 1주일당 5시간 40분에 50로동주간(명절 또는 림시휴업의 2주일을 공제한)을 승하면 27로동일이 된다.》(49)

《만약 로동일이 표준적계속시간을 넘어서 매일 5분씩 연장된다면 이것은 1년간에는 $2\frac{1}{2}$로동일로 될것이다.》(50) 《이곳저곳에서 틈을 타서 조금식 떼여냄으로써 얻어지는 매일 한시간의 추가시간은 1년의 12개월을 13개월로 만든다.》(51)

공황기간에는 생산이 중단되여 오직 《짧은 시간》만, 1주일에 오직 몇날만 작업하는데 이 공황도 물론 로동일의 연장에 대한 욕망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 영업의 규모가 축소되면 될수록 그 영업에서 나오는 리윤은 더 커야 한다. 작업할수 있는 시간이 적게 되면 될수록 잉여로동시간

---

(49) 《공장단속법. 하원의 지시에 의하여 1859년 8월 9일에 인쇄》에 수록된 《공장감독관 L. 호너씨의 제안》, 4~5페지.

(50) 《공장감독관보고, 1856년 10월까지의 반년간》, 35페지.

(51) 《공장감독관보고. 1858년 4월 30일》, 9~10페지.

은 더 길어야 한다. 그리하여 1857~1858년의 공황기에 관하여 공장감독관들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있다.

《그처럼 경기가 나쁜 때에 과도로동이 있을수 있다는것은 모순인 듯 보이지만 불경기상태는 파렴치한 사람들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충동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추가리윤을 확보한다…》 레너드 호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나의 관할지구의 122개의 공장은 완전히 폐업하였고 143개의 공장은 조업을 중지하고있으며 다른 모든 공장도 조업을 단축하고있는 바로 그때에 법정시간이상의 과도로동이 계속되고있다.》(52) 하우얼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비록 대다수의 공장에서는 불경기로 말미암아 조업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 할지라도 나는 로동자들이 법률에 의하여 그들에게 보장된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침해당하여 매일 $\frac{1}{2}$시간 내지 $\frac{3}{4}$시간을 떼우고있다는 신소를 이전과 같은 수만큼 받았다.》(53)

이와 동일한 현상은 1861년부터 1865년까지의 처참한 면화공황시기에도 적은 규모에서이지만 반복되였다.(54)

《만약 우리가 식사시간중이거나 혹은 기타의 위법적인 시간에 작업하고있는 로동자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가끔 다음과 같은 변명을 듣게 된다. 즉 로동자들은 아무리 해도 공장을 떠나가려고 하지 않기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로동 〔기계의 소제 등등〕 을 중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제가 필요하다. 특히 토요일 오후에는 더 그러하다, 운운. 그러나 만약 〈일손〉 들이 기계의 운전이 정지된후에도 공장에 머물러있다면 그 리유는 다만 그들에게 오전 6시와 오후 6시와의 사이에는 즉 법정로동시간내에는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한 여가를 주지 않았기때문이다.》(55)

---

(52) 《공장감독관보고. 1858년 4월 30일》, 10페지.

(53) 우와 같은 보고, 25페지,

(54) 《공장감독관보고. 1861년 4월 30일까지의 반년간》. 부록 제2호를 보라. 《공장감독관보고. 1862년 10월 31일》, 7, 52, 53페지. 법령위반건수는 1863년 후반기에 다시 증가하고있다. 《공장감독관보고. 1863년 10월 31일까지의 반년간》, 7페지를 참조하라.

(55) 《공장감독관보고. 1860년 10월 31일》, 23페지, 재판정에서의 공장주들의 진술

《법정시간을 넘는 과도로동에서 얻는 추가리윤은 많은 공장주들에게 도저히 저항할수 없는 너무나 큰 유혹인것 같이 보인다. 그들은 요행 발각되지 않을것을 기대하며 또 발각되는 경우라도 벌금액과 재판비용이 얼마 되지 않기때문에 결국 그 차액은 역시 그들의 리익으로 될것이라고 타산하고있다.》(56) 《추가적시간이 1일간에 수행되는 사소한 절도행위의 집적에 의하여 얻어지는 경우에는°감독관은 그들의 위법행위를 증명함에 있어서 거의 극복할수 없는 곤난에 봉착한다.》(57)

자본이 로동자의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에서 훔쳐내는 이 《좀도적질》을 공장감독관들은 《분도적》(58), 《분훔치기》(59)라고 하며 혹은 로동자들의 술어에 따라 《식사시간 뜯어먹기》(60)라고도 한다.

에 의하면 그들의 공장로동자가 얼마나 열광적으로 공장로동의 온갖 중단을 반대하는가 하는것은 다음과 같은 기묘한 사실이 이것을 실증한다. 즉 1836년 6월초에 듀즈버리(요크셔)의 치안판사는 배틀리부근의 8대공장소유자들이 공장법을 위반하였다는 고발을 받았다. 그 제씨들중 일부는 12세 내지 15세의 소년 5명을 금요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토요일 오후 4시까지 식사시간과 한밤중의 한시간의 수면시간이외에는 조금도 휴식을 주지 않고 고역을 시켰다고 고소되였다. 그런데 이 아동들은 소위 《누더기굴》이라고 불리우는 좁은 방에서 30시간을 쉴새없이 일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 방에서는 모직누더기를 찢는 작업을 하며 그안의 공기는 성인로동자라도 계속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워 폐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먼지와 털부스러기 등등으로 가득차있었다! 피고인 제씨들은 퀘이커교도로서 선서를 하기에는 너무나 신중한 종교인들이였던만큼 선서는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확언하였다: 즉 그들은 크나큰 자비심을 베풀어 이 불쌍한 아동들에게 4시간의 수면을 허가하려 하였으나 이 고집스러운 아이들은 아무리해도 자려고 하지 않았다는것이다! 이 퀘이커교도 제씨들은 20파운드의 벌금형판결을 받았다. 드라이덴은 일찌기 이러한 퀘이커교도들을 예상하였다.

《신성한체 뽐내는 여우,
선서는 두려워도 악마같이
거짓말한다.
참회자마냥 상냥한 눈길로,
죄지을 심산이라도
먼저 기도야 드려야지!》[198]

(56) 《공장감독관보고. 1856년 10월 31일》, 34페지.
(57) 우와 같은 보고. 35페지.
(58) 우와 같은 보고. 48페지.
(59) 우와 같은 보고. 48페지.
(60) 우와 같은 보고. 48페지.

우리가 보는바와 같이 이러한 분위기속에서는 잉여로동에 의한 잉여가치의 형성은 아무런 비밀도 아닌것이다.

《어떤 훌륭한 공장주가 나에게 말하였다. 만약 당신이 내가 로동자들을 매일 10분씩만 규정시간이상으로 일시키는것을 허가하여준다면 당신은 나의 주머니속에 매년 1,000파운드를 집어넣어주는셈으로 된다.》(61) 《시간의 원자는 리윤의 요소이다.》(62)

이 점에 있어서 옹근 하루동안 일하는 로동자를 《전일공》이라고 하며 하루에 6시간이상 일하는것이 허가되여있지 않는 13세미만의 아동을 《반일공》이라고 하는것은 이상으로 더 특징적인것은 없다.(63) 이 경우에 로동자는 인격화된 로동시간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일체 개인적차이는 《전일공》과 《반일공》간의 차이[199]에 귀착된다.

3. 착취의 법적제한이 없는 영국의 제 산업부문

이때까지 우리가 로동일의 연장에 대한 충동, 잉여로동에 대한 실로 승냥이와 같은 탐욕을 관찰하여온 분야는 영국의 한 자산계급적경제학자가 말한바와 같이 아메리카인디안에 대한 에스빠냐인들의 잔인성에 못지 않은 무제한한 폭행(64)으로 말미암아 드디여 립법적통제의 사슬로써 자본을

(61) 《공장감독관보고. 1856년 10월 31일》, 48페지.

(62) 《공장감독관보고. 1860년 4월 30일》, 56페지.

(63) 이 표현은 공장내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장보고서에서도 공인된 공민권을 가지고있다.

(64) 《공장주들의 탐욕, 리윤추구에서의 그들의 잔인성은 에스빠냐인들이 황금을 추구하여 아메리카를 정복할 때 나타낸 잔인성에 결코 못지 않다.》(죤 웨이드 《중간계급과 로동계급의 력사》, 1835년 런던 제3판, 114페지) 일종의 정치경제학개론인 이 책의 리론적부분에는 그 당시로 보아서는 례컨대 상업공황에 관한 견해와 같은 약간의 독창적인것이 있다. 이 책의 력사적부분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모든 이든경의 《빈민의 상태》(1797년 런던판)으로부터의 파렴치한 표절이다.

얽매지 않을수 없었던 그러한 분야였다. 이제 우리는 로동력의 착취가 현재도 아직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고있거나 혹은 아주 최근까지도 구속을 받고있지 않던 약간의 생산부문에 시선을 돌려보자.

《군치안판사 브루톤씨는 1860년 1월 14일 노팅감시의 공회당에서 개최된 한 집회의 의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이 도시 주민중 레스제조에 종사하고있는 사람들사이에는 다른 문명세계에서도 들어보지도 못할 정도의 궁핍과 고난이 지배하고있다.…9세부터 10세까지의 아동들이 겨우 먹고살기 위하여 새벽 2, 3, 4시에 그들의 불결한 잠자리에서 끌리여나와 밤 10, 11, 12시까지 로동을 강요당하고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팔다리는 여위고 몸은 위축되며 얼굴은 멍해져서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목석같이 마비된다. 우리는 맬리트씨와 기타 공장주들이 등단하여 이런 토론에 항의한것을 기이하게 생각하지 않는다.…이러한 제도는 몬타쥬 발피목사가 서술한바와 같이 무제한한 노예제도이며 사회적, 육체적, 도덕적 및 지적 면에서의 노예제도이다.… 성인남자들의 로동시간을 1일 18시간으로 제한해달라고 청원할 목적으로 군중집회를 열고있는 도시가 있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할것인가!…우리는 버지니아와 캐롤라이나의 면화재배자들을 대단히 비난하고있다. 그러나 그들의 흑인매매, 채찍의 위혁, 인육매매가 자본가의 리익을 위한 면사포와 칼라 제조에서 날마다 수행되고있는 이 완만한 인간살륙에 비해서 더 흉악한것이라고 말할수 있는가?》(65)

스태포드셔의 도기제조업은 최근 22년간에 세번이나 의회의 조사대상으로 되였다. 조사의 결과는 1841년에 아동로동조사위원회에 제출된 스크리벤씨의 보고와 추밀원[200] 의무관의 지시에 의하여 공포된 1860년의 그린하우의사의 보고(《공중위생. 제3차보고》, 제1부분, 102~113페지)와 그리고 끝으로 1863년 6월 15일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1차보고》중의 1863년도의 런지씨의 보고에 씌여져있다.[201] 나의

(65) 1860년 1월 17일부 런던 《매일전신》.

과업을 위해서는 착취당한 그 아동들자신의 약간의 증언을 1860년 및 1863년의 보고에서 인용하면 충분하다. 우리는 이 아동들의 형편으로 미루어보아 성인들 특히 처녀들과 부인들의 형편은 가히 짐작할수 있는데 그들이 종사하는 부문과 면방적업과 같은 부문을 비교해볼 때 후자는 훨씬 기분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직업이라고 할수 있는것이다.(66)

아홉살되는 윌리엄 우드는 《그가 만 7세 10개월 되던 때에 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처음부터 《모형나르기》(즉 모형에 든 제품을 건조실에 운반해가고 다음에 빈 모형만 가지고 돌아오는 일)일을 하였다. 그는 평일에는 매일 아침 6시에 와서 저녁 9시쯤에 일을 끝마치군 하였다. 《나는 평일에는 매일 저녁 9시까지 일합니다. 실례로 나는 최근 7, 8주동안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일곱살난 아동이 15시간로동을 하는것이다! 12세의 소년 J. 머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나는 모형을 운반하며 록로를 돌립니다. 나는 아침 6시에 오며 새벽 4시에 올 때도 있습니다. 나는 어제밤 밤을 새워 오늘 아침 6시까지 일하였습니다. 나는 그제께 밤부터 자지 못했습니다. 어제밤은 나와 함께 8, 9명의 다른 소년들도 밤을 새워 일하였습니다. 1명을 제외하고는 오늘아침에도 죄다 왔습니다. 나는 1주일에 3실링 6펜스(1탈레르 5그로쉔)를 받고있습니다. 밤을 새워 일해도, 이상은 받지 못합니다. 먼저주일에 나는 이를 밤을 새워 일하였습니다.》

10세의 소년 퍼니호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나의 점심시간은 언제나 옹근 한시간이 되지 못합니다. 반시간뿐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번번이 그렇습니다.》(67)

---

(66) 엥겔스 《영국로동계급의 형편》, 249~251페지를 참조하라.[202]

(67)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1차보고. 1863년》, 증언, 16, 18~19페지.

그린하우의사는 스토크-온-트렌트, 울스탄톤의 도기제조업지방사람들의 수명이 대단히 짧다고 언명하였다. 스토크지방에서는 20세이상 성인남자인구의 36.6%, 울스탄톤에서는 그 30.4%만 도기제조업에 종사하고있을뿐인데 스토크지방에서는 이 년령의 성인남자중 폐병으로 인한 사망자총수의 반수이상이 도기공이고 울스탄톤지방에서는 약 $\frac{2}{5}$가 도기공이다. 헨리의 개업의사 부스로이드의사는 다음과 같이 언명하고있다.

《도기공들은 대대로 젊세대에 비하여 체소하고 허약하다.》

다른 한 의사 맥벤씨도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내가 25년젠에 도기공들을 생대로 개업을 한이래 이 계급의 현저한 퇴화는 신장과 체중에 점점 준데서 나타나고있다.》

이상의 증언들은 1860년의 그린하우의사의 보고(68)에서 차용한것이다.

1863년 조사위원회 위원의 보고에는 다음과 같은것이 있다. 북부 스테포드셔병원의 의사장 J. T. 알레지의사는 아래와 같이 말하고있다.

《도기공은 남녀를 막론하고 하나의 계급으로서—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퇴화한 주민을 대표하고있다. 그들은 보통 키가 작으며 체질이 나쁘며 흉부가 기형으로 되여있다. 그들은 빨리 늙고 수명이 짧다. 또 그들은 저둔하며 피기가 없고 체질이 허약하여 만성소화불량, 간장병, 신장병, 풍습증에 잘 걸린다. 그러나 그들이 주로 걸리는 병은 폐염, 폐결핵, 기관지염, 천식과 같은 가슴병이다. 천식의 한 종류로서 그들에게만 특유한것이 있는데 그것은 도기공의 천식 또는 도기공의 폐병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있다. 선과 뼈와 또는 신체의 기타 부분을 침범하는 선병은 도기공의 $\frac{2}{3}$이상이 걸리고있는 병이다. 이 지방 주민의 신체가 아

(68) 《공중위생, 제3차보고》, 102, 104~105페지.

적 떠 씸한 정도로 퇴화하지 않은것은 오로지 련결농촌지방으로부터의 인원보충과 더 건강한 주민층과의 결혼의 덕택이라고 할것이다.》

얼마전까지 이 병원의 외과의사였던 찰즈 파손즈씨는 조사위원회 위원인 랜지에게 준 한통의 편지에 특히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내가 말할수 있는것은 통계자료를 근거로 한것이 아니고 오직 개인적관찰에 근거를 둔것이지만 나는 이 불쌍한 아동들의 건강이 그들의 부모와 고용주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희생물로 제공된것을 보고 분개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는것을 단언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바입니다.》

그는 도기공의 병의 원인들을 렬거하였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인은 《너무 긴 로동시간》이라는 결론을 내리고있다. 이 위원회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전 세계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그처럼 뛰여난 지위를 차지하고있는 이 제조업의 금후로는 그 거대한 성공에 로동자들의 로동과 기능에 의하여 그러한 대성과를 거두고있는것이다—육체적 퇴화와 각종 신체적고통과 조기사망이 수반한다는 슈치스러운 현상을 더는 용인하지 말아야 할것이다.》(69)

영국의 도기업에 관하여 여기서 말한것은 스코틀랜드의 도기업에도 적용된다.(70)

성냥제조업은 1833년이래 즉 린을 나무개비에 붙이는 방법이 발명된 때부터 시작된것이다. 그것은 1845년이래 잉글랜드에서 급속히 발전하였고 런던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부터 시작되여 특히 맨체스터, 버밍감, 리버풀, 브리스톨, 노리치, 뉴캐슬, 글라스고에로 확대되여갔다. 그렇게 됨에 따라 급속히 구금이 만연되였는데 1845년에 벨써 윈의 한 의사는 이 증세를 성냥제조공들의 직업병이라고 하였다. 로동자

(69) 《아동로동조사위원회. 1863년》, 24, 22페지와 XI페지.
(70) 우와 같은 보고, XLVII페지.

의 반수는 13세미만의 아동과 18세미만의 미성년이다. 이 제조업은 건강에 해롭고 작업이 불쾌한탓으로 아주 평판이 나쁘며 그 결과 오직 로동계급의 가장 령락한 부분, 굶주리는 과부 등등만이 그들의 아동들, 《누더기를 입고 굶어죽어가고 의지가지할데 없고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 아동들》(71)을 이 제조업에 보내고있다. 위원 화이트가 1863년에 심문한 증인들중에서 270명은 18세미만, 40명은 10세미만이였고 10명은 겨우 8세, 5명은 겨우 6세였다. 로동일은 12시간으로부터 14시간 또는 15시간이나 되였고 야간로동이 진행되며 식사는 그 시간이 불규칙할뿐만아니라 대다수 경우에 린독이 가득찬 작업장에서 하였다. 만약 단떼가 이 제조업의 광경을 보았더라면 그가 상상한 지옥의 가장 처참한 광경도 이것을 따를수 없다는것을 발견하였을것이다.

도배지공장에서 비교적 조잡한 종류의 도배지는 기계로 인쇄되고 비교적 정밀한것은 손으로 인쇄된다. 이 공장에서 생산이 가장 활기를 띠는 때는 10월초부터 이듬해 4월말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중 작업은 가끔 거의 중단없이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나 또는 더 늦게 밤중까지 계속된다.

J. 리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지난 겨울 (1862년) 에 19명의 소녀중 6명이 과도로동으로 말미암아 병이 나서 출근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졸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향하여 큰소리로 욕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W. 더피는 말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피로로 인하여 눈을 뜨지 못하였습니다. 실은 우리들자신도 이럴때가 많았습니다.》 J. 라이트본은 말하였습니다. 《나는 13살입니다.…지난 겨울에 우리들은 저녁 9시까지 일했고 재작년겨울에는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나는 상한

(71) 《아동로동조사위원회. 1863년》, LIV페지.

발이 아파서 거의 매일저녁 울며 지냈습니다.》 G. 애스프덴은 말하였습니다. 《나의 이 아기가 7세되던 때에 나는 매일 이 아이를 등에 업고 눈길을 왕복하였으며 이 아이는 보통 16시간씩 일했습니다!…이 애가 기계곁에 서있는 동안에 나는 무릎을 꿇고 그 애에게 음식을 먹여준적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애는 기계에서 떠나도 안되고 기계를 멈추어도 안되였기 때문입니다.》 만체스터의 한 공장의 업무집행사원인 스미스는 말하였습니다. 《우리들 (그가 말하는것은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는 《일손들》이다.) 은 식사 때문에 중단되는 일이 없이 일하고있으며 그리하여 $10\frac{1}{2}$시간이라는 1일분로동은 대체로 오후 4시반에 끝나고 그후 시간은 죄다 규정외로동으로 됩니다.(72)》 (이 스미스씨자신은 $10\frac{1}{2}$시간동안에 과연 한번도 식사를 하지 않는가?) 우리들 (스미스 그자신을 의미한다.) 은 오후 6시이전에 끝마치는 일은 드물므로 (그가 말하는것은 《우리들》의 로동력이라는 기계의 소비를 끝마친다는것이다.) 그 결과 우리들 (또다시 크리스피누스[203]를 의미한다.) 은 실은 1년 내내 규정외로동을 하고있는것입니다.…아동과 성년자 (아이들과 18세미만의 미성년자들을 합하여 152명, 성년자 140명) 는 꼭같이 최근 18개월동안에 평균해서 아무리 적더라도 1주일에 7일 5시간을 즉 $78\frac{1}{2}$시간을 일하였습니다. 금년 (1863년) 5월 2일까지의 6주간에는 평균이 더 높아져서 1주일에 8일 즉 84시간이였습니다!》

《나》라고 할 대신에 《우리들》①이라고 하는 군주식으

(72)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잉여로동시간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 계씨들은 $10\frac{1}{2}$시간로동을 표준로동일, 따라서 표준적인 잉여로동도 포함되여있는 로동으로 간주하고있다. 이 표준로동일이 끝난후에는 《규정외시간》이 시작되며 이에 대해서는 약간 더 많은 보수를 지불한다. 다음기회에 우리가 보겠지만 소위 표준일중의 로동력의 사용은 보수가 가치이하로 지불되는것이며 따라서 《규정외시간》이라는것은 더 많은 《잉여로동》을 짜내기 위한 자본가의 술책이외의 아무것도 아닌것이다. 그리고 또 이 사실은 설사 《표준일》동안에 사용되는 로동력이 현실적으로 가치대로 지불되는 경우일지라도 다를것이 없다.

① 유럽의 일부 나라에서 군주는 공식장소에서 《나》라고 할 대신에 《우리들》이라고 하였다. -편집자

로 존칭의 복수를 사용하기 좋아하는 바로 이 스미스씨가 미소를 띄우고 《기계로동은 헐한것이다.》라고 첨부한다. 그런데 목판인쇄를 채용하는 공장주들은 《손로동은 기계로동보다 건강에 더 좋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장주 제씨는 《적어도 식사시간중에는 기계운전을 정지할것》이라는 제안에 대하여 분격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한다. 버로(랜던시대)의 어떤 도배지공장 지배인 오틀리씨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의 로동시간을 허가하는 법률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좋은것이지만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정한 공장법의 로동시간은 우리(!)에게는 적합하지 않다.…우리는 점심식사시간에 기계운전을 정지한다.(얼마나 관대한 일인가!) 이 운전정지는 종이와 물감에는 이렇다 할만한 손실을 주지 않는다.》 그는 동정하듯 부언한다. 《그러나 나는 이에 따르는 손실이 마음에 들지 않을것이라는것은 잘 알수 있다.》

위원회의 보고는 솔직하게도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있다. 약간의 《유력한 회사》들은 시간 즉 타인의 로동을 점유하는 시간을 잃어버릴가봐, 또 그렇게 함으로써 《리윤을 잃어버릴》가봐 근심하고있는데 이것은 13세미만의 아동과 18세미만의 소년들로 하여금 12~16시간 동안에 점심식사시간을 《잃어버리게》 해도 좋다는, 또는 그들에게 대하여 마치 증기기관에 석탄과 물을, 양털에 비누물을, 차륜에 기름을 주는 등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산과정 그자체가 진행되는 동안에 로동수단의 단순한 보조재료로서 점심식사를 주어도 좋다는 《충분한 리유》로는 되지 못한다.(73)

영국의 어느 한 산업부문도 빵제조업이상으로(최근에 금

(73) 《아동로동조사위원회. 1863년》. 증언, 123~125, 140페지와 LXIV페지.

방 시작하고있는 기계에 의한 빵제조는 도외시한다.) 고대생산방식, 심지어 로마제국시대 시인의 작품에서나 볼수 있는 전기독교적생산방식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있는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자본은 처음에는 그것이 정복하는 로동과정의 기술적성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자본은 처음에는 로동과정을 발견하는 그대로 채용한다.①

믿기 어려울 정도의 빵의 불순제조 특히 런던에서의 그 불순제조가 《식료품의 불순제조에 관한》 하원위원회(1855~1856년)와 해슬의사의 저서 《발각된 불순제품》에 의하여 처음으로 폭로되였다.(74) 이러한 폭로의 결과 1860년 8월 6일의 《음식물불순제조방지를 위한》 법률이 나왔는데 이것은 불순품의 매매에 의하여 《정직한 돈벌이를 할것》을 기도하는 매개 자유무역론자에 대해서는 물론 가장 자애로운 배려를 돌리고있기때문에 조금도 효과가 없는 법률이였다.(75) 위원회 그자체는 자유무역이란 본질상 불순품의 또는 영국인들의 재치있는 표현에 의하면 《궤변품》의 거래를 의미한다는 확신을 상당히 솔직하게 표명하였다. 사실상 이러한 종류의 《궤변》은 프로타고라스[205]이상으로 흑을 백으로, 백을 흑으로 만들줄 알며 또 엘레아학파[206]이상으로 모든 실재를 가상에 지나지 않는것으로 목전에서 증시할줄 알고있는

(74) 가루로 되였거나 혹은 소금을 섞은 백반이 《빵가루》라는 독특한 명칭을 가진 정상적인 상품으로 되여있다.[204]

(75) 그을음이 탄소의 극히 집중적인 형태이며 자본주의적굴뚝청소인에 영국의 차지농업가에게 판매하는 비료로 되여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1862년에 어떤 소송사건에서 영국의 《배심원》은 판매자가 구매자 모르게 90%의 먼지와 모래를 섞은 그을음이 《상업상》 의미의 《진정한》 그을음인가 그렇지 않으면 《법률상》 의미의 《위조된》 그을음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상업의 벗들》은 이것에 《진정한》 상업상 그을음이라고 판결하였다. 그리하여 원고인 차지농업가는 패소하였을뿐만아니라 소송비용까지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① 이 책 216~217페지를 보라. —편집자

것이다.(76)

어쨌든 위원회는 공중으로 하여금 《그날그날의 빵》에 주의를 돌리도록 하였으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빵제조업에 주의를 돌리도록 하였다. 그와 동시에 공개집회와 의회에 보내는 청원서에서 과도로동 등등에 대한 런던의 빵제조공들의 노호가 터져나왔다. 이 노호는 자못 절박한것이였기때문에 우에서 여러번 언급한 1863년의 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였던 H. S. 트리먼히어씨가 칙명조사위원으로 임명되였다. 그의 보고(77)는 증인의 증언과 함께 공중을—그들의 심장이 아니라 그들의 위를—자극하였다. 성경에 정통한 영국사람은, 신의 은총으로 선발된 자본가나 지주나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을 제쳐놓고는 어느 누구나 다 이마에 땀을 흘리며 자기의 빵을 벌어먹어야 할 운명이라는것은 물론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백반과 모래와 기타 그리 기분나쁘지 않은 광물성혼합물은 고사하고라도 고름, 거미줄, 죽은 바퀴, 썩은 독일제효모 등과 혼합된 일정한 량의 사람의 땀이 섞여있는 빵을 매일 먹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은 알지 못했던것이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자유》로왔던 빵제조업은, 그 신성한 《자유무역》에 대해서 일체 고려함이 없이 국가감독관의 감시하에 놓이게 되였고(1863년 의회회기끝에) 그리고 그 의회의

---

(76) 프랑스의 화학자 슈발리에는 상품의 《위조》를 취급한 론문에서 그가 검사한 600여종의 제품중 그 대다수가 10, 20, 30종의 각이한 위조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부언하기를 자기는 모든 방법을 다 알지도 못하며 또 자기가 알고있는 방법을 모조리 렬거하는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사탕에는 6종의 위조방법이, 감람유에는 9종, 빠다에는 10종, 소금에는 12종, 우유에는 19종, 빵에는 20종, 소주에는 23종, 밀가루에는 24종, 쵸콜레트에는 28종, 포도주에는 30종, 커피에는 32종 등등의 위조방법이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인자하신 주님까지도 이러한 운명을 면치 못했던것이다. 루아르 드 까르 《성물의 위조에 관하여》, 1856년 빠리판을 보라.

(77) 《빵제조공의 불평과 관련하여 녀왕페하의 내무대신에게 보낸 보고》 1862년 런던판 및 《제2차보고》, 1863년 런던판.

법령에 의하여 18세미만의 빵제조공의 로동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아침 5시어간에는 금지되였다. 이 마지막 법령조항은, 그처럼 옛풍습이 농후한 이 영업부문의 과도로동에 대하여 여실히 말해주고있다.

《런던의 빵제조공의 로동은 보통 밤 11시에 시작된다. 이 시간에 그는 반죽을 한다. 이 일은 몹시 힘드는 과정인데 한가마분의 빵 분량과 품질에 따라 30분 내지 45분 계속된다. 이것이 끝난 다음 그는 반죽판—이것은 동시에 가루통의 뚜껑으로도 쓰인다—우에 누워서 하나의 밀가루포대를 베고 또 다른 하나의 밀가루포대를 몸에 덮고 몇시간 잔다. 다음 그뒤를 이어 5시간에 걸친 신속하고 쉴새없는 로동이 즉 반죽을 이기며 한덩이씩 갈라내며 빵틀에 넣으며 그것을 가마에 앉히며 가마에서 집어내는 등등의 로동이 시작된다. 빵굽는 방의 온도는 75~90도[①]에 달하며 그리고 작은 빵굽는 방의 온도는 그보다 더 높다. 각가지 빵을 만드는 일이 끝나면 빵배달이 시작된다. 그리고 날품팔이 로동자의 대부분은 우에서 말한 어려운 야간로동이 끝난후에 낮에는 빵을 광주리에 담든지 혹은 손수레에 싣고 집집에 날라다주며 또 때로는 빵굽는 방에서 다른 작업도 한다. 이 로동은 계절과 영업의 규모여하에 따라 오후 1시와 6시사이에 끝나며 직공들의 다른 한 부분은 밤늦도록 빵굽는 방에서 작업을 한다.》(78) 《이른바 런던의 사교계절에 웨스트엔드에서 〈제값〉으로 매매되는 고급빵을 제조하는 로동자들은 통례로 밤 11시에 작업을 시작하여 대체로 1, 2회 극히 짧은 휴식을 할뿐이고 다음날아침 8시까지 빵을 굽게 된다. 다음에 그들은 4시, 5시, 6시까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7시까지도 계속 빵을 배달하거나 빵굽는 방에서 비스케트도 굽는다. 작업이 끝난 뒤에 그들은 6시간밖에, 종종 5시간, 4시간밖에 자지 못한다. 금요일에는 언제나 더 일찌기, 례컨대 저녁 10시에 작업을 시작하여 빵제조이든 빵배달이든간에 중단없이 다음날인 토요일저녁 8시까지 그리고 대다수 경우에는 일요일새벽 4시

(78) 《빵제조공의 불평과 관련하여 녀왕페하의 내무대신에게 보낸 보고》, 1862년 런던판 및 《제1차보고》, VI~VII페지.

① 여기서는 화씨온도를 말하는데 섭씨 23.8~32도에 해당한다. —편집자

매주 5시까지 계속한다.. 빵을 《제값》으로 판매하는 고급빵집에서도 역시 월요일에 4시간 매주 5시간동안 다음날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눅거리빵집》에서 일하는 빵제조공들—이 부류의 빵집수는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런던의 전체 빵집의 $\frac{3}{4}$이상에 달한다—의 로동시간은 이보다 더 길지만 그들의 로동은 거의 전적으로 빵굽는 방안에 국한되여있다. 왜냐 하면 그들의 고용주는 조그마한 소매점에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가게에서만 판매하기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빵집에서는 주말에 가서는…즉 목요일부터는 작업이 밤 10시부터 시작되여 중간에 약간의 휴식이 있을뿐 토요일 밤늦게까지 계속된다.》(79)

《눅거리빵집주인》에 대하여 말한다면 《직공들의 부지불로동이 그들의 경쟁의 기초로 된다.》(80)는것이 자산계급적립장에서도 리해되고있다. 그리하여 《제값빵집주인》은 자기 경쟁자인 《눅거리빵집》을 타인로동의 도적이며 불순품제조자라고 조사위원회에 고발하고있다.

《그들은 오직 공중을 기만함으로써만 또 그들의 로동자들에게 겨우 12시간분의 임금을 지불하고는 18시간일을 시켜 착취하는데 의하여 성공하고있다..》(81)

빵불순제조와 눅거리빵을 판매하는 빵집부류의 형성은 영국에서 18세기초엽이래 즉 영업의 동맹조합적성격이 해체되고 자본가가 제분업자나 밀가루상인으로서 명목상의 빵집주인의 배후에 나타나게 되자 발전한것이다.(82) 이와 더불어

---

(79) 《빵제조공의 불평과 관련하여 녀왕페하의 내무대신에게 보낸 보고》, 1862년 런던판 및 《제1차보고》, LXXII페지.

(80) 죠지 리드 《빵제조업의 력사》, 1848년 런던판, 16페지.

(81) 《보고(제1차), 증언부분》. 《제값빵집주인》 치즈만의 증언, 108페지.

(82) 죠지 리드 《빵제조업의 력사》. 17세기말엽과 18세기초엽에 각종 직업에 침입하고있던 중개상에 대하여 《공적불법방해자》라고 당국자들에게 고발당하고있었다. 례컨대 써머세트군의 4분기치안판사법정의 대배심단[207]은 하나의 《신고》를 하원에 제출하였는데 그가운데는 특히 다음과 같은 말이 들어있다. 《블랙웰홀의 이 중개상들은 공적불법방해자들이고 직포업에 해를 끼치는만큼 마땅히 방해자로서 제거되여야 할것이다.》(《유리 영국의 양모업소송사건》, 1685년 런던판, 7페지.)

자본주의적생산에 대한 기초, 로동일의 무제한한 연장과 야간로동에 대한 기초가 이루어졌는데 야간로동은 지어 런던에서도 1824년이후 비로소 본격적으로 그 지반을 확립하였다.(83)

상술한바에 의하여 우리는 어째서 위원회의 보고에서 빵제공을 명이 짧은 로동자의 부류에 소속시키는가를 리해할수 있다. 그들은 모든 부류의 로동계급에 특징적인 현상으로 되여있는 조기사망을 다행히 면한다 해도 42세까지 연명하는것은 극히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제조업에는 언제나 후보로동자가 넘치고있다. 런던에 이 《로동력》을 공급하는 원천지는 스코틀랜드, 잉글랜드의 서부농업지대 및 독일이다.

1858~1860년에 아일랜드의 빵제조공들은 야간로동과 일요로동을 반대하는 운동을 위한 일련의 대집회를 자기들의 비용으로 조직하였다. 공중은 례컨대 1860년 더블린에서 열린 5월집회에서 본바와 같이 아일랜드인에 특유한 열정을 발휘하여 그들편에 가담하였다. 웩스포드, 킬켄니, 클론멜, 워터포드 등등에서는 이 운동에 의하여 주간이외의 로동을 금지하는 제도가 사실상 성과있게 실현되였다.

《임금로동자들의 고통이 온갖 척도를 초월하고있는 리메리크에서는 이 운동은 빵집주인들 특히는 빵제조업과 제분업을 겸하는자들의 반항에 봉착하여 실패로 돌아갔다. 리메리크의 실례는 에니스군 및 테페레리군에서의 퇴각을 가져왔다. 공중의 분격이 가장 심하게 표현된 코크군에서는 고용주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행사하여 로동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이 운동을 좌절시켰다. 더블린에서는 고용주들이 가장 단호하게 저항하였고 운동의 선두에 서있던 로동자들을 박해함으로써 기타 로동자들로 하여금 양보하여 야간로동과 일요로동에 동의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84)

---

(83) 《빵제조공의 불평과 관련하여 녀왕페하의 내무대신에게 보낸 보고. 제Ⅲ차보고》, Ⅷ페지.

(84) 《1861년의 아일랜드 빵제조업조사위원회의 보고》.

아일랜드에서 손톱까지 무장하고있은 영국정부의 위원회도 더블린, 리메리크, 코크 등등의 완고한 빵집주인들에게 애원하는 어조로 다음과 같이 항의하였다.

《본 위원회는, 로동시간은 자연법칙에 의하여 제한되여있으며 이 자연법칙의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이 없을수 없다고 생각한다. 고용주들은 해고한다고 위협함으로써 자기의 로동자들에게 종교적신념의 위반과 국법에 대한 침범과 여론의 무시 (이 모든것은 일요로동과 관련된것이다.) 를 강요하고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본과 로동간의 불화의 씨를 뿌리며 종교, 도덕 및 사회질서에 대하여 위험한 실례를 제공하고있다.…본 위원회는 로동일을 12시간이상으로 연장하는것은 로동자의 가정생활과 개인생활의 횡령적침해로 되며 또 그것은 한 남자의 가정생활을 방해하고 자식, 형제, 남편, 아버지로서의 그의 가족적의무의 리행을 방해하는것으로써 도덕적인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12시간이상의 로동은 로동자의 건강을 파괴하는 경향을 가지며 일찍 늙고 일찍 죽게 하며 또 그렇게 됨으로써 로동자의 가족에 불행을 가져오는바 로동자의 가족은 세대주의 보호와 조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빼앗기게 되는것이다.》(85)

우리는 이상에서 아일랜드의 사정을 알았다. 해협의 건너편쪽인 스코틀랜드에서는 농사일에 종사하는 농업로동자들이 자기들은 사나운 기후를 무릅쓰고 또 일요일에 4시간의 규정외로동까지 하면서(안식일[208]을 엄수하는 이 나라에서!) 13~14시간의 로동을 한다는데 대해서 분격하고있는데(86) 이때

(85) 《1861년의 아일랜드 빵제조업조사위원회의 보고》.

(86) 1866년 1월 5일에 글라스고부근의 래쓰웨이드에서 농업로동자들이 군중대회를 가졌다. (1866년 1월 13일부 《로동자의 변호사》를 보라.) 1865년말이래 농업로동자들이 최초로 스코틀랜드에서 로동조합을 결성하는것은 하나의 력사적사건이다. 잉글랜드에서 가장 압박받고있는 농업지대의 하나인 버밍감셔의 임금로동자들이 1867년 3월에 주임금을 9~10실링에서 12실링까지 인상시키기 위한 일대 동맹파업을 단행하였다.— (상술한것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영국의 농업무산계급의 운동[209]은 1830년이후의 그 강력한 시위운동들이 진압당한 이래, 그리고 또 특히 새로운 빈민구제법이 실시된 이래 완전히 좌절되고있었으나 60년대에 다시 시작되였고 1872년에는 드디여 획기적인것으로 되였다.[210] 나는 제2권에서 다시 이 문제[211]를 취급하는 동시에 1867년이후에 발간된 영국

런던의 대배심단앞에는 3명의 철도로동자—려객차장, 기관사, 신호수—가 서있었다. 큰 철도사고가 수백명의 려객을 저세상으로 보냈던것이다. 철도로동자들의 태만이 불상사의 원인이였다. 그들이 배심원앞에서 이구동성으로 말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0~12년전에는 그들은 하루에 오직 8시간만 로동하였다. 그런데 최근 5~6년동안에는 로동시간이 14시간, 18시간, 20시간까지 늘어났고 또 유람계절과 같이 특히 려객이 몰릴 때에는 로동이 가끔 중단없이 40~50시간 계속된다. 그들 철도로동자도 보통인간이지 신화에 나오는 거인이 아니다. 일정한 한계에 도달하면 그들의 로동력은 작용하지 않게 된다. 그들은 마비상태에 빠진다. 그들의 머리는 사유하기를 중지하며 그들의 눈은 보는것을 중지한다. 그러다 극히 《존경할만한 영국의 배심원》은 이 공술에 대하여 《살인죄》로 배심재판에 회부한다는 판결로써 대답하고 그 온화한 첨부서에서 철도관계의 대자본가 제씨가 금후로는 필요한 수의 《로동력》을 구입함에 있어서는 좀더 돈을 아끼지 말며 구입한 로동력을 착취함에 있어서는 《좀더 절제적으로》 또는 《좀더 금욕적으로》, 《좀더 검약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경건한 념원을 표명하였다.(87)

농업로동자의 형편에 관한 청서[11]에 대해서도 언급하려 한다. 제3판에 대한 보충적주.)

(87) 1866년 1월 20일부 《레이놀즈신문》을 보라. 이 주간신문은 그후 매호에 걸쳐서 《무시무시한 숙명적인 사고》, 《참혹한 비극》 등등의 《세인들의 이목을 끄는 표제》밑에 허다한 새로운 철도사고들을 보도하고있다. 북부스테포드셔철도의 어떤 로동자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기관사와 화부의 주의가 일순간이라도 늦추어지는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있다. 그런데 매우 사나운 날씨에 중단도 휴식도 없이 로동시간을 무제한하게 연장하니 왜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매일같이 볼수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어보자. 지난 월요일에 한 화부는 아침 일찍부터 그날 일을 시작하여 14시간 50분을 하고서야 일을 끝마쳤다. 그는 차 한잔도 마실사이 없이 또다시 작업에 불리여나왔다. 그리하여 그는 29시간 15분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하였다. 그의 1주일간작업의 나머지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여있다. 수

각종 직업과 년령과 성별의 로동자들의 극히 잡다한 군중이 오디쎄이의 뒤를 따르는 학살당한자들의 령혼보다도 더 집요하게 우리의 뒤를 따른다. 그리고 그들이 옆구리에 청서를 끼고있지 않아도 그들의 외모를 한번 보면 그들의 과도로동을 충분히 짐작할수 있다. 이러한 잡다한 군중들속에서 우리는 이제 부인복제조공과 야장이라는 두 부류의 인물을 들어보자. 이 량자간의 현저한 대조는 자본앞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실증해준다.

1863년 6월의 마지막주간에 런던의 모든 일간신문은 《순전히 과도로동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제인들의 이목을 끄는》 표제를 붙인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것은 대단히 명성이 높은 어떤 궁정용부인복제조소에서 일하고있던 당년 20세의 메어리 안 웨클리라는 녀공의 사망에 관한것이였는데 이 녀공은 엘리즈라는 얌전한 이름의 귀부인에게 착취당하고있었던것이다. 가끔 사람의 입에 오르고있던 낡은 이야기의 진상이 이제 새로 밝혀진것이다.(88) 여기서 일하는 소녀들은 하루에 평균 $16\frac{1}{2}$시간씩을, 그리고 사교계절에는 가끔 30시간을 휴식없이 로동하였으며 그우에 그들의 《로동력》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면 때때로 세리주, 보르도포도주 또는 커피를 공급함으로써 기운을 내게 하였다.

요일 15시간, 목요일 15시간 35분, 금요일 $14\frac{1}{2}$시간, 토요일 14시간 10분 즉 1주일간의 총계는 88시간 30분이다. 예만하면 그가 도합 계유 6로동일분의 임금을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는가 하는것은 생생하기 여렵지 않다. 이 새롭은 새로 일을 시작한 새롭이므로 1로동일이란 대체 얼마인가고 물었다. 그것은 13시간, 다시말하면 1주일에 78시간이라는것이 그에 대한 대답이였다. 그렇다면 나머지 10시간 30분에 대한 보수는 어찌되였는가? 장황한 언쟁끝에 그는 10펜스(10그로쉔 은화만큼도 못되는)의 보수를 더 받았다.(1866년 2월 4일부 《레어놀즈신문》)

(88) F. 엥겔스 《영국로동계급의 형편》, 253~254페이지를 참조하라.[202]

때때로 새교계절에였다. 금빵 외국에서 수입해온 웨일즈왕세자삐[11]를 축하하는 무도회에서 사용할 귀부인들의 호화로운 의복을 급히 만들어내야만 하였다. 메어리 앤 웨클레는 60명의 다른 소녀들과 함께, 30명씩 배치된 그레고 필요한 용적의 공기의 $\frac{1}{3}$도 들어있지 않는 좁은 방에서 중단없이 26$\frac{1}{2}$시간 일하였다. 그레고 밤에는 침실을 여기저기 판장으로 막은 숨이 막힐듯한 소굴속에서 한 침대에 두명씩 누웠겠다.(89) 그런데 이것은 런던의 부인복제조소중에서 좋은편에 속하는것이였다. 메어리 앤 웨클레는 금요일에 뻥들어 일요일에 죽였다. 그런데 엘리즈뷰인이 대단히 놀란것은 이 소녀

(89) 보건국의 군무의사 리처비박사는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성인에게 필요한 공기의 최소한은 침실에 있어서는 300립방피트이고 살림방에 있어서는 500립방피트이여야 한다.》 런던의 어떤 병원의 의사장 리처드슨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부인복제조녀공, 의복재봉녀공, 보통의재봉녀공 등 각종 재봉녀공들은 과도로동과 공기부족과 영양부족 또는 소화불량이라는 삼중의 재난을 겪고있다. 대체로 보아 어떤 종류의 로동은 어느 경우에나 남자보다 녀자에게 더 적합하다. 그러나 이 직업의 폐단은 그것에 특히 습도에서 약 26명의 자본가들에게 독점되여있고 이 자본가들은 자본에서 생기는 권력을 리용함으로써 로동에서 절약을 짜낸다.(즉 로동력을 랑비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한다는 의미이다.)》는데 있다. 자본가의 이런 권력은 이 녀공계급전체가 느끼고있는바이다. 만약 어떤 녀자재봉사가 비록 일부 고객이라도 획득하는데 성공한다면 경쟁은 그로 하여금 이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에서 죽도록 일하지 않을수 없게 하며 또 그 녀재봉사는 필연적으로 자기의 조수녀공들에게 동일한 과도로동을 시키지 않을수 없다. 만약 그 녀재봉사의 영업이 실패하든가 혹은 그가 독립적으로 해낼수 없게 된다면 그 녀재봉사는 일은 더 할하지 않더라도 그대신 빨리는 더 보장되는 다른 전방에 고용살이로 들어갈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 녀자는 일종의 순수노예로 전락하여 사회의 물결에 따라 이곳저곳으로 쫓겨다니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그러하여 그 녀재봉사는 어떤 때에는 자기 집 조그마한 방구석에서 아사상태 또는 그에 가까운 상태에 있게 되기도 하며 또 다른 어떤 때에는 또다시 질식할 지경의 공기속에서, 그리고 신선한 공기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설사 좋은 음식물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도저히 소화할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서 1주야에 15시간, 16시간 때로는 18시간씩 일하게 되기도 한다. 다름아닌 바로 공기가 나쁜데서 오는 병인 폐결핵은 이러한 희생자들에 의하여 존재하고있는것이다.》(리처드슨박사 《로동과 과도로동》, 1863년 7월 18일부 《사회과학평론》에 게재)

⑪ 알렉산드라를 말한다. —편집자

가 손에 잡았던 최후의 무도복을 완성하지 못한채로 죽은것이였다. 너무나 늦게 이 소녀의 림종에 불리여온 의사 키즈씨는 검시배심원앞에서 다음과 같이 수식없는 말로 증언하였다.

《메어리 안 워클리가 죽은것은 너무나 붐비는 작업실에서 장시간 로동하였기때문이며 또 공기류통이 나쁜 너무나 좁은 침실에서 잤기때문이다.》

검시배심원은 이 의사에게 례절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의 증언에 대답하여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사망자는 중풍으로 죽었다. 그러나 이 녀자의 사망이 너무나 붐비는 작업실에서의 과도로동 등등에 의하여 촉진된것이 아닌가 의심할 만한 리유도 있기는 하다.》

자유무역론자 코브던과 브라이트의 기관지인 《새별》은 다음과 같이 웨쳤다. 《우리의 백색노예는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고역에 시달리다가 지쳐서 소리도 못내고 죽는다.》 (90)

---

(90) 1863년 6월 23일부 《새별》 지를 보라. 《타임스》 지는 미국의 노예주들을 변호하기 위하여 브라이트 등을 공격하는데 이 사건을 리용하였다. 이 신문은 이렇게 말하고있다. 《우리들은 대부분이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즉 우리가 우리자신의 젊은 녀성들을 채찍소리대신에 기아의 고통으로써 위협하면서 죽을때까지 일시키고있는 동안은, 노예주로서 출생하였지만 적어도 자기의 노예를 잘 먹이며 또 자기의 노예를 오직 적당하게 일시키고있는 그러한 가족들에게 포화와 총검으로써 위협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 (《타임스》, 1863년 7월 2일) 토리당의 신문 《기발》은 동일한 론법으로 뉴만 흡목사를 비난하였다. 《그는 노예주들을 교회에서 파문시키고있으나 그는 런던의 역마차의 마차몰이와 차장 등등을 개 한마리를 기를만큼한 임금으로 하루에 16시간씩이나 일시키는 점잖은 사람들과 더불어 기도를 드리고있는것이다.》 끝으로 예언자인 토마스 칼라일씨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에 관해서 나는 이미 1850년에 다음과 같이 쓴 일이 있다. 《천재는 없어지고 숭배만이 남았다.》[212] 그는 한 짤막한 우화에서 현대사의 유일한 대사변인 미국남북전쟁[8]을 다음과 같은것에 귀착시키고있다. 즉 북방의 페테르는 전력을 다하여 남방의 파울의 두개골을 깨치려고 하는데 그 리유는 북방의 페테르는 자기 로동자를 《일공》으로 고용하지만 남방의 파울은 《일생동안》 고용하기때문이다. (《맹아중의 미국일리아스》, 1863년 8월호 《맥밀란잡지》에 게재) 그리하여 토리당이 도시의 임금로동자에 대해서—농촌의 임금로동자에 대해서는 결코 아니다!—표시한 하염없는 동정의 물거품은 드디여 꺼지고말았다. 그 핵심은 노예제도이다!

《죽을 때까지 로동하는것은 비단 부인복제조소에서뿐만아니라 수천개의 작업장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 영업이 잘되는 모든 곳에서 일상적인 일로 되여있다.…이제 우리는 야장의 실례를 들어보자. 만약 우리가 시인의 말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야장이상으로 더 원기왕성하고 더 명랑유쾌한 인간은 없을것이다. 그는 아침 일찌기 일어나서 태양보다도 먼저 불꽃을 튀긴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먹으며 잘 마시며 잘 잔다. 순전히 육체적으로만 고찰할 때 로동을 알맞춤하게 하기만 한다면 야장은 실로 인간의 최상의 상태중의 하나에 있는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뒤를 따라 도시에 가서 그의 강력한 두어깨에 부과되는 로동의 부담과 그리고 우리 나라의 사망률표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를 보기로 하자. 매럴러본 (런던의 가장 큰 구역중의 하나) 에서는 야장의 사망률이 매년 $\frac{31}{1,000}$로 되여있는데 이것은 영국성인남자의 평균사망률을 $\frac{11}{1,000}$이나 초과하고있다. 인류의 거의 본능적기능으로 되어있으며 그 자체로 보아서는 비난할 아무것도 없는 이 직업은 단지 과도로동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파괴자로 된다. 그는 매일 얼마만큼 마치질을 할수 있으며 얼마만큼 걸음을 걸을수 있으며 얼마만큼 호흡운동을 할수 있으며 얼마만큼 로동을 할수 있으며 그리고 평균적으로 례컨대 50년은 연명할 수 있다. 그가 매일 얼마만큼 더 많은 마치질을 하며 얼마만큼 더 많은 걸음을 걸으며 얼마만큼 더 자주 호흡하도록 강요당하며 그리하여 이 모든것이 그의 생명력의 지출을 매일 $\frac{1}{4}$ 더 증가시킨다고 하자. 그가 이것을 시험하여본다면 결과는 그가 국한된 기간에 실지로 $\frac{1}{4}$더 많은 일을 하는 대신에 죽는 년령은 50세가 아니라 37세로 될것이다.》 (91)

4. 주간로동과 야간로동. 교대제

불변자본 즉 생산수단은 가치증식과정의 견지에서 본다면 오직 로동을 흡수하기 위해서만 그리고 로동의 매 한방울

(91) 리처드슨박사의 《로동과 과도로동》, 1863년 7월 18일부 《사회과학평론》에 게재.

과 함께 그것에 삐례하는 량의 잉여로동을 흡수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생산수단이 이렇게 하지 않는 한 그 단순한 존재는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소극적인 손실이다. 왜냐 하면 생산수단은 그것이 사용되지 않고있는 동안은 쓸데없는 선대자본을 대표하기때문이다. 그리고 이 손실은 중단되였던 생산을 회복하자면 추가적지출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손실로 된다. 로동일을 자연일의 한계를 넘어 야간에까지 연장하는것은 오직 완화제로서 작용할뿐이며 로동이라는 샘물에 대한 흡혈귀의 욕망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뿐이다. 그러므로 로동을 1주야 24시간전체에 걸쳐서 점유하려는것이 자본주의적생산의 내재적충동이다. 그러나 동일한 로동력을 밤낮으로 련속 착취하는것은 육체적으로 불가능하기때문에 이 육체적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주간에 떡어치우는 로동력과 야간에 떡어치우는 로동력과를 교대할 필요가 있다. 이 교대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는데 례컨대 로동자전원의 일부분이 어떤 주일에는 주간로동만 하고 다른 주일에는 야간로동만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될수 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이와 같은 교대제, 이와 같은 륜번제는 극히 왕성한 기세로 장성하고있던 영국면방직업의 청소년시기에 우세를 차지하고있으며 현재에는 특히 뽀스크바주의 면방적공장에서 성행되고있다. 이와 같은 24시간제생산과정은 아직까지 《자유로운》 때브리텐의 많은 산업부문에 특히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의 용광로, 단야공장, 압연공장 및 기타 금속가공공장에 현재도 하나의 제도로서 존재하고있다. 이러한데서는 로동과정은 비단 6일간의 매 평일에 24시간 계속될뿐만아니라 매대수 경우에는 일요일의 24시간까지도 포함하고있다. 로동자는 남자와 녀자, 성인과 아동으로써 구성

되여있다. 아동과 소년의 년령은 8세부터(약간의 경우에는 6세부터) 18세까지의 모든 년령이 다 있다.(92) 약간의 부문들에서는 소녀와 부인도 야간에 남자종업원과 함께 로동하고있다.(93)

야간로동의 일반적인 해로운 영향은 고사하고라도(94) 24시간에 걸쳐 중단없이 계속되는 생산과정은 명목상의 로동일의 한계를 넘을수 있는 극히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례컨대 우에서 말한 극히 긴장된 로동을 필요로 하는 산업부문들에서는[11] 매개 로동자의 공인된 로동일은 대체로 주야를 불문하고 12시간으로 되여있다. 그러나 이 한계를 넘는 과도로

---

(92)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3차보고》, 1864년 런던판, Ⅳ, Ⅴ, Ⅶ, Ⅷ페지.

(93) 《스태포드셔와 남부웨일즈에서는 소녀들과 부인들이 비단 주간뿐만아니라 야간에도 탄갱속과 콕스적치장에서 일하고있다.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이와 같은 현상이 누구나 다 아는 엄중한 폐해를 가져온다는것이 자주 지적되였다. 이 녀성들은 남성들과 같이 일하며 거의 남성과 구별되지 않는 의복을 입고있으며 먼지와 그을음을 뒤집어쓰고있다. 그들의 비녀성적인 직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존심은 사라지고 따라서 그들의 품성이 타락할 위험에 직면하고있다.》(《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3차보고》, 194호, XXVI페지. 《제4차보고》(1865년), 제61호, XIII페지를 참조하라.) 유리공장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94) 아동에게 야간로동을 시키는 한 제강소 공장주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밤에 일하는 소년들이 낮에는 잘수도 없고 휴식다운 휴식을 할수도 없어서 다음날 하루종일 어리저리 돌아다니게 되는것은 당연한것으로 생각된다.》(《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4차보고》, 제63호, XIII페지) 한 의사는 신체의 유지와 발육에 있어서 태양광선이 주요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대하여 특히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광선은 또한 신체의 조직에 직접 작용하여 이 조직을 견고하게 하고 탄력있게 한다. 정상적량의 광선이 공급되지 않으면 동물의 근육은 연약하게 되여 탄력이 없어지며 신경력은 자극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그 긴장력이 없어지며 발육과정에 있는 모든것은 그 성숙에 저장을 받게 된다. …아동에 관하여 말한다면 풍부한 일광이 부단히 들어오며 1일중 일정한 시간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는것이 건강에 특히 필요하다. 광선은 음식물에 량호한 조형적혈액으로 되는것을 촉진하며 새로 형성된 섬유조직을 강인하게 한다. 광선은 또한 시각기관에 대한 자극물로 됨으로써 각종 뇌기능을 보다 강력하게 활동시킨다.》 유리는 이상 구절을 우스터 《종합병원》의 의사장 W. 스트레인저씨의 《건강》에 관한 저서(1864년)[218]에서 인용하였는데 그는 조사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인 하이트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나는 이전에 랭커셔에서 야간로동이 공장의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몇몇 고용주들의 상투적인 주장과는 반대로 어린이들의 건강은 야간로동에 의하여 끝 나빠진다고 결정적으로 단언하는 바입니다.》(《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4차보고》, 제284호, 55페지) 도대체 어린것에 정말 론의의 대상으로 된다는 그 사실은 자본주의적생산에 자본가와 그 가신들의 《뇌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가장 잘 실증하여준다.

---

⑪ 이 책 282~297페지를 보라. —편집자

동은 많은 경우에 영국의 공식보고서의 말로 한다면 《참으로 소름이 끼칠 정도》(95)이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증언에 진술된바와 같은, 9~12세의 아동들이 수행하는 로동량을 생각하여볼 때에 어떠한 인간적심정도 부모와 고용주의 이와 같은 권력람용은 이 이상 더 용허될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수 없다.》(96)

《일반적으로 아동을 주야교대로 일시키는 방법은 영업이 활기를 띠는 때나 보통으로 진행되는 때나를 막론하고 로동일을 극도로 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로동일의 이와 같은 연장이 많은 경우에 비단 잔혹할뿐만아니라 그야말로 믿을수 없을 정도이다. 일을 끝낸자와 교대해야 할 소년들이 이런 또는 저런 리유로 결근하는 경우가 없을수 없다. 그런 때에는 출근하여 자기의 로동일을 끝마친 아동중 1명 내지 수명이 그 부족을 보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제도는 벌써 모두에게 잘 알려져있기때문에 어떤 압연공장지배인은, 결근아동의 자리를 어떻게 메우는가고 내가 질문한데 대하여 〈그것은 아마 당신도 나와 마찬가지로 잘 알고있을터인데요.〉라고 대답하고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우에서 말한 사실을 승인하였다.》(97)

《명목상의 로동일이 아침 6시부터 저녁 5시 반까지 계속되는 어떤 압연공장에서 일하는 한 소년은 매주 나흘밤을 적어도 다음날저녁 8시 반까지 일하였다.…그리고 이것이 6개월간 계속되였다.》《다른 한 소년은 9세때에는 가끔 12시간로동 3교대분을 계속 일하였고 10세때에는 이틀낮 이틀밤을 계속하여 일하였다.》《당년 10세의 또 한 소년은 1주일에 사흘밤은 계속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고 나머지 밤은 저녁 9시까지 일하였다.》《당년 13세의 또 한 소년은 웅근 1주일동안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 일하였고 또 때로는 3교대분, 례컨대 월요일아침부터 화요일밤까지의 분을 계속하여 일한적도 있었다.》

---

(95)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4차보고》, 제57호, XII페지.
(96) 우와 같은 보고 제58호, XII페지.
(97) 우와 같은 보고 제58호 XII페지.

《당년 12세의 또 한 소년은 스테이블리에 있는 어떤 주철공장에서 2주일동안이나 계속하여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였다. 그는 이제는 그렇게 계속할수 없게 되였다.》 아홉살나는 죠지 올린즈워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지난 금요일에 여기에 왔습니다. 다음날 우리들은 새벽 3시에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새도록 여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5마일 되는 곳에 삽니다. 나는 가죽앞치마를 밑에 깔고 조그만 쟈케트를 덮고 마루우에서 잤습니다. 그후 이틀은 아침 6시에 왔습니다. 정말 여기는 더운 곳입니다! 여기 오기전에도 나는 웅근 1년간 용광로에서 일했습니다. 그것은 농촌에 있는 대단히 큰 공장이였습니다. 거기서도 토요일에는 새벽 3시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집이 가까왔기때문에 적어도 집에 돌아가서 잘수는 있었습니다. 다른 날에는 나는 아침 6시에 일을 시작하여 저녁 6시 혹은 7시에 끝마치군 했습니다.》 등등.(98)

---

(98)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4차보고》 (1865년 제58호) XIII페지. 이러한 《로동력》의 교육정도는 조사위원회 위원의 한사람과의 다음과 같은 문답에 나타나있는 정도의것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제레마이아 헤인즈, 12세: 《…4의 4배는 8이지요. 그러나 4가 4개면 16입니다.…왕이라는것은 모든 돈과 금을 가진 사람이지요. 우리 나라에도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녀왕이고 이름은 알렉산드라공주라고 합니다. 그 녀자는 녀왕의 아들에게 시집갔다고 합니다. 공주는 남자입니다.》 W. 터너, 12세: 《나는 영국에서 살고있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때까지 그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있었습니다.》 죤 모리스, 14세: 《나는 하느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말과, 한사람만 남고 모든 사람이 물에 빠져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한사람은 조그마한 새였다고 하더군요.》 윌리엄 스미스, 15세: 《하느님이 사나이를 만들었고 사나이가 녀자를 만들었습니다.》 에드워드 테일러, 15세: 《나는 런던에 대해서는 조금도 모릅니다.》 헨리 매슈만 17세: 《몇번 교회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설교에서는 무슨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밖에 다른 이름들도 나옵니다만 무엇이라고 부르던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는 살해된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죽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무엇인지 다른 점은 있었는데 그것은 그는 어딘가 신앙심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때문입니다.》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4차보고》 (1865년), 제74호, XV페지) 《악마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가 어디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쁜놈이였습니다.》 《이 소녀(10세)는 God (하느님) 를 Dog (개) 라고 썼으며 녀왕의 이름①을 알지 못하였다.》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5차보고》, 1866년, 55페지, 제278호)우에서 말한 금속공장에서와 같은 제도는 유리공장과 제지공장에도 성행되고있다. 기계로 종이를 제조하는 제지공장에서는 누더기를 선별하는 공정을 제외하고는 전체 공정에서 야간로동이 례사로 되여있다. 어떤 경우에는 교대제를 실시함으로써 야간로동이 중단없이 1주일전체를 통하여, 보통은 일요

① 빅토리아를 말한다. —편집자

이제 우리는 자본 그자체가 이 24시간제를 어떻게 생각하고있는가 들어보자. 자본은 물론 이 제도의 극단적형태, 로동일의 《잔인하고 믿을수 없는》 정도의 연장을 위한 이 제도의 람용에 대해서는 모르는척한다. 자본은 오직 이 제도의 《정상적》 형태에 대하여서만 말한다.

제강공장주 네일러와 비커즈의 회사는 종업원 600명 내지 700명중에서 겨우 10%만이 18세미만이고 또 그중에서도 겨우 20명만이 야간교대반에서 일하고있는데 이 공장주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아이들은 고온에 고통을 당하는 일은 전혀 없다. 온도는 아마 86~90도[①]는 될것이다.…단야직장과 압연직장에서는 직공들이 주야교대로 일하고있으나 이에 반하여 기타의 모든 작업장에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에 이르는 주간작업만이 실시되고있다. 단야직장에서는 12시부터 12시까지 일한다. 야간의 직공들은 주간로동과 야간로동을 교대하지 않고 항상 야간로동만 한다.…우리들은 주간로동과 야간로동이 건강에

일밤부터 다음 토요일밤 12시까지 그냥 계속된다. 주간교대반의 로동자들은 매주 5일간은 12시간씩, 1일간은 18시간 로동하며 야간교대반의 로동자들은 닷새밤은 12시간씩, 하루밤은 6시간 로동한다. 다른 경우에는 매 교대반은 하루건너 1일교대로 24시간씩 일한다. 그중의 한 교대반은 2시간을 채우기 위하여 월요일에 6시간, 토요일에 18시간 일한다. 또 다른 경우에는 그 중간의 제도가 실시되고있는데 이 제도에서는 제지기계에서 일하는 전체 로동자는 1주일간 매일 15~16시간씩 일한다. 조사위원회 위원인 로드는 이렇게 말한다. 이 제도는 12시간 교대제와 24시간 교대제의 각종 폐해를 다 가지고있는것 같다고. 이와 같은 야간로동의 제도하에 13세미만의 아동들과 18세미만의 소년과 부인들이 일하고있다. 12시간제도하에서도 그들은 가끔 교대자의 결근을 메우기 위하여 두 교대 즉 24시간을 일해야 한다. 증인들의 증언은 소년소녀들이 흔히 시간외로동을 하여 24시간 심지어 36시간까지 련속 로동해야 하는 일이 아주 빈번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유리에 광택을 내는 《련속적이고 단조로운 공정》에서 우리는 12세의 소녀들이 《식사때문에 한시간씩 두차례, 기껏해야 세차례 쉬는것 이외에는 아무런 정규적인 휴식 또는 작업중단이 없이》 하루에 14시간씩을 웅근 한달동안 일하는것을 볼수 있다. 정규적인 야간로동이 완전히 폐지된 약간의 공장들에서는 시간외로동이 놀랄만한 정도에 이르고있으며 또 《그것은 가끔 가장 불결하고 가장 덥고 가장 단조로운 공정에서 수행되고있다.》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4차보고》, 1865년, XXXVIII, XXXIX페지.)

---

① 여기서는 화씨온도를 말하는데 섭씨 30~32도에 해당한다. —편집자

(공장주인 네일러-비커즈의 건강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마 직공들은 휴식시간이 달라질 때보다 같은 시간에 휴식할 때에 더 잘 잘것이다.…약 20명의 18세미만 소년들이 야간교대반에 속하여 일하고있다.…18세미만 소년들의 야간로동 없이는 우리 일은 잘되여갈수 없다. 우리가 반대하는것은 생산비의 증가이다. 기능로동자와 각 부서의 책임자들을 구하는 일은 용이하지 않으나 소년들은 얼마든지 얻어올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있는 소년들의 비률이 비교적 적다는 사실을 념두에 둔다면 야간로동의 제한은 우리로 보아서는 물론 중요한 의의도, 리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다.》(99)

제강-제철공장인 죤 부라운 회사는 3,000명의 성년남자와 소년을 사용하고있으며 그리고 일부 제강-제철작업의 중로동에서 《주야교대》가 실시되고있는데 이 회사 J. 엘리스씨가 언명하는바에 의하면 제강공장의 곤난한 작업에서 성년공 2명에 소년공 1명 내지 2명의 비률로 되여있다고 한다. 이 회사에는 18세미만의 소년이 500명 있고 그중 약 $\frac{1}{3}$ 즉 170명은 13세미만이다. 제안된 법률개정에 관하여 엘리스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18세미만의 직공을 1주야에 12시간이상 일시키는것을 금지한다고 해도 그것은 크게 반대할 일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12세이상의 소년을 야간로동에서 면제시킬수 있다고 규정하는 선을 그을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고용하고있는 소년공들의 야간로동을 금지하는 그러한 법률을 승인하기보다는 차라리 13세미만 혹은 심지어 15세미만 소년의 고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승인하는편이 나을것이다. 주간교대반에서 일하는 소년들은 순번을 바꿔 야간교대반에서도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 하면 성년남자들이 쉬지 않고 밤일만 할수는 없기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건강이 파괴될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1주일 건너로 하는 야간로동은 유해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와는 반대로 네일러-비커즈회사는 자

(99)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4차보고》, 1865년, 제79호, XVI페지.

기 기업의 리익을 위하여, 련속적인 야간로동보다도 바로 주기적으로 교대하는 야간로동이 아마 더 유해할것이라고 생각하였던것이다.) 우리는 주야교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낮일만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건강하다는것을 알고있다.…우리가 18세미만 소년들의 야간로동의 금지를 반대하는것은 그것이 지출을 증가시키기때문인데 이 점이 바로 유일한 리유이다. (얼마나 로골적이고 후안무치한가!) 우리는 이와 같은 지출의 증대는 영업의 성과적인 경영을 고려하면서 당연히 지불할 수 있는 부담능력을 초과하는것이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완곡적인 표현인가!) 여기서는 로동은 얼마 안되므로 그와 같은 규체하에서는 더 부족하게 될것이다. (즉 엘리스-브라운회사는 로동력의 가치를 완전히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치명적난관에 봉착하게 될것이다.)》(100)

캄멜회사의 《거인》 제강-제철공장은 상술한 존 부라운 회사의 규모와 같은 큰 규모로 경영되는 공장이다. 그 회사의 전무취체역은 정부위원인 화이트에게 자기의 증언을 문서로 낸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후에 수정하도록 그에게 다시 반환된 문서를 그대로 깔아버리는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화이트씨는 기억력이 좋았다. 그는, 아동과 소년의 야간로동금지는 이 거인회사로 보아서는 《불가능한 일이며 그것은 그들의 공장을 폐쇄하는것과 다름이 없다.》는것을 매우 잘 기억하고있다. 비록 그들의 공장에서 18세미만의 소년은 6%를 조금 초과할 뿐이고 13세미만의 소년은 겨우 1%에 지나지 않지만!(101)

애터클리프의 제강, 압연, 단야 공장 산더손형제회사의 E. F. 산더손씨는 동일한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명하고있다.

《18세미만 소년들의 야간로동을 금지하면 막대한 곤난이 발생할 것이다. 주되는 곤난은 소년의 로동을 성년의 로동으로 바꿀 때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비용의 증가이다. 나는 이것이 얼마가량이나 될는지는 말할수 없으나 그것은 아마 공장주가 강철가격을 인상할수 있을

(100)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4차보고》, 제80호, XVI, XVII페지.
(101)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4차보고》, 1865년, 제82호, XVII페지.

정도로 많지는 않을것이고 따라서 손실은 공장주의 부담으로 될것이다. 왜냐하면 성인로동자들은 (이들은 얼마나 고집스러운 사람들인가!) 물론 그 손실을 부담하기를 거절할것이기때문이다.》

산더손씨는 자신이 아동들에게 얼마를 지불하고있는가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마 그것은 매주 1인당 4 내지 5실링일것이다.…소년로동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런것이지 《특수적으로》도 언제나 그런것은 아니다.) 소년들의 힘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작업들이고 따라서 그러한 일에서는 성인로동자들의 더 큰 힘은 손실을 메꿀만한 리득을 내지 못할것이다. 또 혹은 그것이 리로운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대단히 무거운 금속을 처리해야 하는 그리 많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일것이다. 성인로동자들도 또한 소년공을 자기 부하로 쓰지 못하게 되면 좋아하지 않을것이다. 왜냐 하면 성년공은 소년공보다 말을 잘 듣지 않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소년공들은 일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로동을 시작해야 한다. 소년들의 로동을 주간로동에만 국한시킨다면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을 줄것이다.》

그러면 어째서 그런가? 어째서 소년들은 자기들의 일을 낮에는 배울수 없겠는가? 당신의 리유는 무엇인가?

《그렇다 한다면 1주일간 교대로 1주일동안은 낮에만, 그리고 다른 1주일동안은 밤에만 일하는 성인로동자들은, 야간로동을 하는 동안은 자기 교대반의 소년공들과 분리되여 그들에게서 얻어낼수 있는 리득의 절반을 잃어버리게 되기때문이다. 즉 그들이 소년들에게 주는 지도는 소년들의 임금의 일부로 계산되며 따라서 이것은 성인로동자들에게 소년들의 로동을 비교적 렴가로 얻을 가능성을 주는것이다. 그리하여 소년공의 야간로동을 금지하면 매개 성인로동자들은 자기의 리득의 절반을 잃어버리게 될것이다.》

바꾸어말하면 산더손회사는 성인로동자들의 로임의 일부분을 소년들의 야간로동으로써 지불할 대신에 자기자신의 주머니에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산더손회사의 리윤은 이 경우에 약간 감소될것인데 바로 이 사실이 산더손회사로 보아서는 어째서 소년들이 자기들의 일을 낮에는 배울수 없

는가 하는데 대한 훌륭한 리유로 되는것이다.(102) 그뿐만아니라 정규적인 야간로동은 지금 소년들과 교대되는 성인들에게 전적으로 전가될것이다. 그러나 성인들은 이것을 감당해내지 못할것이다. 요컨대 곤난은 극히 커서 결국 야간로동이 아마도 완전히 폐지되는데까지 이르게 될것이다. E. F. 산더손은 이렇게 말하고있다. 《강철생산 그자체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렇게 된다고 해도 별로 차이가 생기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산더손회사는 강철생산이외에도 해야 할 일이 많다. 강철생산—이것은 리윤획득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용광로, 압연공장 등등과 건물, 기계, 철, 석탄 등등은 자신을 강철로 전화시키는 일이외에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그것들은 잉여로동을 흡수하기 위하여 존재하며 또 그것들은 물론 24시간동안에는 12시간동안에 흡수하는것보다 더 많은 잉여로동을 흡수한다. 사실상 그것들은 응근 1주야동안의 일정한 수의 직공의 로동시간에 대한 청구권을 하느님과 법률에 의하여 산더손회사에 부여한다. 로동을 흡수하는 기능이 중단되자 그것들은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며 따라서 산더손회사에 대해서는 순전한 손실로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매우 비싼 기계들을 시간의 절반동안을 놀려두기때문에 손실이 생길것이다. 또 현재의 제도하에서 우리가 생산할수 있는 생산량을 내기 위해서는 건물의 규모와 기계의 수를 2배로 늘이지 않으면 안될것이며 이것은 지출을 2배로 증가시킬것이다.》

그러나 다른 자본가들은 주간작업만을 하게 되여있고 그리하여 그들의 건물, 기계, 원료가 야간에는 《놀고》 있는데

---

(102) 《반성이 많고 리유를 따지는 현대에 있어서, 모든 사물에 대해서 심지어 가장 나쁘고 가장 무리한데 대해서까지 그럴듯한 리유를 붙일줄 모르는 인간은 별써 그리 고명하지 못하다고 해야 할것이다. 세상에서 부패한 모든것은 상당한 리유로 인해서 부패하게 된것이다.》 (헤겔 《백과전서》, 제1부, 《론리학》, 1840년 배를린판, 249페지.)

어째서 이 산더손회사만이 류달리 특권을 요구하고있는가? E. F. 산더손은 산더손회사의 이름으로 이렇게 대답한다.

《확실히 기계가 노는탓으로 생기는 이러한 손실을 주간작업만 하는 모든 공장이 당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용광로를 사용하고있는것이 특별한 손실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될것이다. 만약 용광로의 불을 끄지 않는다면 연료가 랑비될것이고 (현재 랑비되고있는 로동자들의 생명 대신에) 또 만약 용광로의 불을 끈다면 다시 불을 살리여 필요한 열을 얻는데 시간이 손실된다. (한편 심지어 8세밖에 안되는 아동들의 수면시간의 손실은 산더손가족에게는 로동시간의 리득으로 되는것이다.) 그리고 용광로 그자체도 온도의 변화로 말미암아 상할것이다. (그런데 같은 이 용광로는 주간로동과 야간로동의 교대로 인해서는 조금도 상하지 않는다.)》(103)

---

(103)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4차보고》, 1865년, 제85호, XVII페지. 아동들의 《규칙적식사시간》은 그것이 로에서 방사되는 일정한 량의 열의 《순수한 손실》 또는 《랑비》를 가져올것이기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는 유리공장주 제씨의 이와 류사한 상냥한 고려에 대하여 조사위원 화이트는 유어, 씨니어 등등 및 독일에 있는 그들의 가련한 아류인 로쉐르 등등과는 전혀 달리 화폐를 지출함에 있어서의 자본가들의 《절제》나 《금욕》이나 《검약》에, 또는 인간생명을 지출함에 있어서의 그들의 티무르적 《랑비》에 감동됨이 없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규칙적식사시간이 보장되는 결과 약간한 열량이 현재의 정도이상으로 랑비될수는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랑비는 화폐가치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유리공장에서 일하는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이 기분좋게 식사를 하며 먹는것을 소화할짬을 가지지 못하기때문에 현재 우리 왕국에서 생기는 생명력의 랑비와는 도저히 비교할수 없다.》(같은 보고, XLV페지) 그런데 이것은 《진보의 해》인 1865년의 일이다.[214] 물건을 들어올리며 운반할 때의 힘의 지출은 고사하고라도, 병과 납유리를 제조하는 유리공장에서 아동들은 쉬지 않고 작업하면서 6시간동안에 15~20(영국)마일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로동은 가끔 14~15시간 계속된다! 많은 유리공장들에서는 모스크바의 방적공장들에서와 같은 6시간 교대제가 일반적이다①. 《1주일간의 로동기간동안에 가장 길게 중단없이 계속되는 휴식시간은 6시간이다. 그러나 이가운데 공장에 왕복하는 시간과 세수하며 옷을 입으며 식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간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실지로는 극히 짧은 휴식시간이 남을뿐이다. 그처럼 더운 공기속에서 그처럼 힘든 일을 하는 아동들에게 수면은 절대로 필요한것인데 아동들은 이 수면을 회생시키지 않고서는 유희하며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시간을 조금도 얻지 못한다.…이 짧은 수면까지도 밤에는 아이들자신이 늦잠을 자지 않으려고 마음을 놓지 못하기때문에 중단되며 낮에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으로 해서 잠이 깨기때문에 중단된다.》 화이트씨가 사실을 든데 의하면 어떤 소년이 36시간동안 계속 일한 경우도 있고 12세되는 소년들이 밤 2시까지 일한후 아침 5시까지는 공장에서 자고(세시간동안!) 련달아 또 낮일에 착수하는 경우도 있

① 이 책 297페지를 보라. —편집자

5. 표준로동일획득을 위한 투쟁. 14세기중엽에서 17세기말엽까지의 로동일연장에 관한 강제법

《1로동일이란 무엇인가?》 그 일가치를 지불하고 사는 로동력을 자본이 소비할수 있는 시간은 얼마동안인가? 로동일은 로동력 그자체의 재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이상으로 얼마나 더 연장할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자본은 우에서 본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로동일이란 일주야의 웅근 24시간에서 로동력이 다시 봉사를 되풀이하는데 절대로 필요한 약간의 휴식시간을 공제한것이다라고. 우선 자명한것은, 로동자는 자기의 전 생애에 걸쳐서 로동력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며 따라서 그가 자유로 처리할수 있는 모든 시간은 자연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로동시간이고 따라서 그것은 전적으로 자본의 자기증식을 위한것이라는 사실이다. 인간적교양, 정신적 발전, 사회적기능의 수행, 사교, 육체적 및 정신적 생명력의 자유로운 활동 등에 필요한 시간과 심지어 일요일의 안식시간까지도ㅡ안식일[208]을 준수하는 이 나라에서일지라도(104)ㅡ그야

다! 일반보고서의 작성자인 트리먼허어와 터프넬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소년, 소녀, 부인들이 주간 또는 야간의 교대근무시간중에 수행하는 로동의 량은 실로 엄청난것이다.》 (같은 보고, XLIII 및 XLIV페지) 한편 《아주 금욕적인》 유리공업자본가는 아마 밤늦게 포도주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영국사람이 노예로 되는 일은 결코, 결코 없을것이다!》[215]라고 바보모양으로 중얼거리면서 구락부에서 집으로 돌아갈것이다.

(104) 례컨대 아직까지도 영국의 어떤 농촌에서는 로동자가 자기 집앞의 정원에서 일하는것이 안식일을 모독하는것이라고 해서 금고형의 처벌을 받는 일이 있다. 바로 같은 그 로동자가 일요일에 금속공장이나 제지공장이나 혹은 유리공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그것이 비록 종교적동기에서 나온것이라 할지라도 계약위반이라는 리유로 처벌을 받는다. 정교교도들의 의회도 안식일의 모독이 자본의 《가치증식과정》 내부에서 발생된 경우에는 모르는척한다. 뭍고기와 가금 등속을 파는 런던의 상점들에서 일하는 일용로동자들이 일요로동의 페지를 요구한 진정서(1863년 8월)를 보면 그들의 로동은 평일의 6일간은 매일 평균 15시간씩이고 일요일에는 8~10시간이라고 씌여있다. 한편 우리가 이

말로 순전한 공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은 자기의 무제한한 맹목적충동으로 말미암아 즉 잉여로동에 대한 승냥이와 같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로동일의 도덕적최대한도뿐만아니라 순 육체적최대한도까지도 돌파한다. 자본은 신체의 성장, 발육 및 건강유지에 필요한 시간을 강탈한다. 자본은 신선한 공기와 일광을 리용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략탈한다. 자본은 식사시간을 깎아내며 할수만 있으면 식사시간을 생산과정 그 자체에 합체시키며 그리하여 마치 보이라에 석탄을 공급하며 기계에 기름을 공급하듯이 단순한 생산수단으로서의 로동자에게 식사를 공급한다. 자본은 생명력의 집적, 회복, 갱신에 필요한 수면을 기진맥진한 유기체가 소생되는데 없어서는 안될 정도의 무감각상태로 시간을 압축한다. 이 경우에 로동력의 정상적인 유지가 로동일의 한도를 규정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로동력의 가급적 많은 일상적지출(그 지출이 아무리 병적이고 강제적이고 고통스러운것이라 할지라도)이 로동자의 휴식시간의 한도를 규정한다. 자본은 로동력의 수명을 문제로 하지 않는다. 자본이 관심을 가지는것은 오로지 1로동일내에 류동시킬 수 있는 로동력의 최대한뿐이다. 자본은 로동력의 수명을 단축시킴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것은 마치 탐욕적인 농업가가 토지의 비옥도를 략탈함으로써 수확을 높이는것과 같다.

그리하여 본질적으로 잉여가치의 생산이고 잉여로동의 흡수인 자본주의적생산은 로동일의 연장에 의하여 인간로동력의 정상적인 도덕적 및 육체적 발달조건과 활동조건을 탈

진정서에서 알수 있는것은 억세터회당[216]에 집합하는 귀족적위선자들의 까다로운 식도락이 《일요로동》을 장려하고있다는 사실이다. 《육체적쾌락의 탐구》에 그처럼 여념이 없는 이 《성자》들은 제3자의 과도로동과 빈궁과 기아를 보통으로 여기는 참을성을 통하여 자기들의 기독교적정신을 실증하고있다. 그들(로동자들)을 잘 먹이는것은 지극히 해로운것이다.

취할수 있는 인간로동력의 위축을 생산할뿐이 아니다. 그것은 로동력 그자체의 너무나 이른 소모와 사멸을 생산한다.(105) 그것은 로동자의 생존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어떤 주어진 기한내에 있어서의 로동자의 생산시간을 연장한다.

그런데 로동력의 가치는 로동자의 재생산 또는 로동계급의 번식에 필요한 생품의 가치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자본이 자기 증식에 대한 그 무제한한 충동에서 필연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로동일의 반자연적연장이 개개의 로동자의 생존기간을, 따라서 그들의 로동력의 지속기간을 단축시킨다면 소모된 로동력의 더 신속한 보충에 필요하게 될것이며 따라서 로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비용은 더 많아져야 할것이다. 그것은 마치 매일 재생산되여야 할 기계의 가치부분이 기계가 더 빨리 소모되면 될수록 더 큰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자본은 자기자신의 리해관계에 의하여 어떤 표준로동일의 확립을 요구하는듯이 보인다.

노예소유자가 로동자를 사는것은 말을 사는것과 다름이 없다. 그가 노예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자본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으며 이 잃어버린 자본은 노예시장에서의 새로운 지출에 의하여 보충되여야 한다. 그러나

《죠지아주의 논과 미씨씨피주의 소택지가 인체에 아무리 치명적인 파괴적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여기에서의 인간생명의 랑비는 그것에 버지니아주와 켄터키주의 풍부한 흑인사육장에서 보충을 받지 못할 정도로 큰것은 아니다. 노예를 유지하는것이 노예소유자의 리익에 합치되는 한에 있어서는 경제적타산이 노예를 인간적으로 취급할데 대한 일종의 보장으로 될수도 있으나 노예무역이 실시됨에 따라 경제적타산은 그와는 반대로 극도의 노예학대의 원인으로 된다. 왜냐 하면 노예를 외국의 흑인사육장에서 수입하여 보충할수 있게 되자 노예의 생명의 지속은 그의

(105) 《유리는 유리의 이전 보고서들에서 시간외로동이…확실히 인간로동력의 너무나 이른 소모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말한, 경험있는 여러 공장주들의 공술을 계재하였다.》(《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4차보고》, 1862년, 제64호, XIIII페지)

생존중의 생산성보다 덜 중요하게 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예수입국에서의 노예경제의 규칙은 인간가축에서 될수록 짧은 시간내에 될수록 많은 로동을 짜내는것이 가장 효과적인 경제라는것이다.. 넬레윤에 흔히 농장의 총자본과 같게 되는 바로 그 열대재배에서는 흑인의 생명이 극히 무자비하게 희생당하고있다.. 이 몇세기이래 옛말과 같은 재부의 요람지인 서인도의 농업은 수백만의 애프리카인종을 삼켜버렸다.. 오늘날 꾸바에서는 그 수입이 수백만을 헤아리며 그 농장주는 군주나 다름없지만 노예계급은 대부분이 비단 극히 나쁜 음식물과 가장 힘들고 쉴새없는 고역으로 인해서뿐만아니라 과도한 로동과 수면 및 휴식의 부족에서 오는 서서한 쇠약으로 인해서 해마다 적잖이 쓰러지고있다.. 》(106)

이름은 다르지만 이것은 바로 그때를 두고 하는 말이다![5] 노예무역을 로동시장으로 바꾸어놓고 켄터키, 버지니아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의 농업지방과 아일랜드로 또 아프리카를 독일로 바꾸어놓으라!! 우리는 이미 과도로동이 어떻게 런던의 빵제조공들을 감소시켰는가를 보았다⑪..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던의 로동시장은 빵제조업에서 죽기를 각오한 독일인들과 기타 지원자들로써 언제나 넘쳐있다.. 도기제조업은 우리가 본바와 같이 로동자들의 수명이 가장 짧은 산업부문의 하나이다②.. 그러나 이때문에 도기공들이 부족한가? 현대적도기생산의 발명자이고 보통로동자출신인 죠우싸이어 웨지우드는 1785년 하원에서 언명하기를, 이 제조업에 종사하고있는 로동자가 도합 1만 5,000명 내지 2만명이라고 하였다.(107) 그런데 1861년에는 대브리텐에서 이 공업에 종사하는 도시중심지들의 인구만도 10만 1,302명이였다..

《면방적업은 이미 90년간 존재해여왔다.. ---영국종족의 3대에 해

(106) 캐연즈《노예력》,, 1862년 런던판,, 110~111페지..
(107) 죤 웨드《트렌트강반 스토크시》,, 1843년 런던판,, 42페지..

⑪ 이 책 288~292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이 책 283~285페지를 보라.. -편집자

당하는 기간에 그것은 면방직로동자들의 9대를 삼켜버렸다.》(108)

물론 열병적호경기의 개별적시기에는 로동시장에 로동력이 대단히 부족하였다. 례컨대 1834년에 그러하였다. 그러나 그때에 공장주 제씨는 빈민구제법위원회에 농업지방의 《과잉인구》를 북부로 보낼것을 제의하였고 《공장주들은 그것을 흡수하고 소비할것이다.》라고 설명하였던것이다.(109) 이것은 그들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빈민구제법위원회의 동의하에 만체스터에 사무소를 두었다. 농업로동자들의 명부가 작성되여 이 주선인들에게 송달되였다. 공장주들은 사무소로 달려가서 그들에게 합당한 사람을 선택하였고 전 가족을 잉글랜드의 남부로부터 이송하였다. 이 인간화물은 짐짝모양으로 꼬리표가 달려 운하로 또 짐마차로 실려갔다. 그중에는 걸어온 사람도 약간 있었는데 그들의 대다수는 길을 잘못 들어 헤매였고 반아사상태에서 공장지대를 방황하였다. 이러한것이 발전하여 틀림없는 하나의 무역부문을 이루게 되였다. 하원은 이것을 거의 믿지 않을것이다. 이와 같은 정규적인 무역이, 이와 같은 인육매매가 끊임없이 계속되여왔고 이 사람들은 마치 흑인들이 미국남부 제 주의 면화재배업자에게 판매되는것과 꼭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만체스터의 주선인들에 의하여 만체스터의 공장주들에게 판매되였다.…1860년은 면방직업이 절정에 달한 해였다.…또 일손이 부족하게 되였다. 공장주들은 또다시 인육주선인에게로 찾아갔다. 그리고 이 주선인들은 도세트의 사구지대와 데본의 고지들과 웰트의 평원을 모조리 훑었다. 그러나 과잉인구는 벌써 다 먹히우고 더는 없었다.》

신문 《베리수호자》는 통탄하여 말하기를, 영국-프랑스 통상조약의 체결후에는 1만명의 추가적로동자가 흡수될수 있을것이고 또 얼마 오래지 않아 또 3만~4만명이 더 필요하게

---

(108) 1863년 4월 27일 하원에서 한 페런드의 연설.

(109) 《공장주들은 그것을 흡수할것이며 소비할것이다. 바로 이렇게 면방직업공장주들은 말했던것이다.》(우와 같은 연설)

될것이라고 하였다. 인육거래의 주선인들과 보조주선인들이 1860년에 거의 아무런 성과도 없이 농업지방을 찾아다닌후에 《공장주의 한 대표자는 빈민구제국 장관 빌러즈씨에게 빈민아동과 고아들을 빈민구제원에서 공장으로 공급하는것을 다시 허가하여줄것을 청원하였다.》(110)

(110) 1863년 4월 27일에 하원에서 한 페런드의 연설. 빌러즈씨는 매우 큰 호의를 가지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으로는 공장주들의 간청을 거부하지 않을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그러나 공장주 제씨는 지방의 빈민구제당국의 친절한 알선에 의하여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공장감독관 A. 레드그레이브씨는 다음과 같이 확언하였다. 고아와 빈민아동을 《법률상》 도제로 간주하는 제도는 물론 일찌기 《스코틀랜드의 농업지방으로부터 랭카셔와 체셔에 데려온 소녀들과 젊은 부녀들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람용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번에는 《전과 같은 폐해를 수반하지 않았다》. (이 《폐해》에 대해서는 엥겔스의 저서 《영국로동계급의 형편》을 참조하라.) 이 《제도》에서는 공장주가 빈민구제원당국과 일정한 기간에 걸치는 계약을 체결한다. 공장주는 아동들에게 의식주를 공급하며 또 그들에게 소액의 보조금을 준다. 레드그레이브씨의 아래와 같은 말은 이상하게 들리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에 특히 더 그러하다. 영국의 면방직업의 번영기중에서도 1860년은 류례가 없는 번영의 해였고 그해에 로임이 비상히 높은 수준에 올라갔다. 그해에 로임이 높았던것은 한편으로는 로동에 대한 비상한 수요가 아일랜드의 인구감소 및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농업지방으로부터 오스트랄리아와 아메리카에로의 류례없는 이민과 때를 같이하여 일어났기때문이며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수요가, 생명력이 파괴된 결과에 또 인육상인들이 벌써 리용할만한 과잉인구를 다 처리하여버린 결과에 생겨난 잉글랜드의 약간의 농업지방에서의 인구의 실제적감소와 때를 같이하여 발생하였기때문이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레드그레이브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그렇다 해도 이와 같은 종류의 로동 (빈민구제원아동의 로동) 은 오직 다른 어떠한 로동도 발견할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되는것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비싼 로동이기때문이다. 13세의 소년공의 보통로임은 1주일에 약 4실링이다. 그러나 50명내지 100명의 이와 같은 소년공에게 의식주를 공급하며 의료보조와 적당한 감독을 보장하여주며 그우에 또 그들에게 소액이나마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1주일 1인당 4실링으로는 부족하다.》 (《공장감독관보고. 1860년 4월 30일》, 27페지) 공장주가 50명 내지 100명의 소년들을 합숙생활을 시키며 같이 먹이고 감독하는데도 매인당 4실링으로써 할수 없는데 로동자자신이 자기의 아이가 받아오는 4실링의 임금으로써 그 아이에게 이 모든것을 어떻게 보상하여줄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언급하는것을 레드그레이브씨는 망각하고있다. 본문의 서술에서 잘못된 결론을 끌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또 한가지 지적해둘것이 있다. 즉 영국의 면방직업은 그것이 로동시간의 규제 등을 포함한 1850년의 공장법[195]이 적용되게 된 이래 영국의 모범적인 공업으로 간주되여야 하는것이다. 영국의 면방직업로동자는 대륙에 있는 같은 운명의 로동자들에 비하여 어느 점에서 보나 나은 처지에 있는것이다. 《프로씨아의 공장로동자는 영국에 있는 그들의 경쟁자에 비하여 1주일에 적어도 10시간은 더 로동한다. 그리고 그가 자택에서 자기자신의 직조기를 가지고 일할 때에는 그의 추가적로동시간의 이러한 한계도 없어진다.》 (《공장감독관보고. 1855년 10월 31일》, 103페지) 상술한 공장감독관 레드

일반적으로 경험은 과잉인구 즉 당면한 자본의 가치증식욕에 비한 과잉인구가 어느 정도 부단히 존재하는 사실을 자본가에게 보여준다. 물론 이 과잉인구란 발육이 잘 안되고 수명이 짧고 신속히 교체되는, 말하자면 아직 익기도전에 뜯기우는 그러한 인간세대들로 형성되여있는것이다.(111) 다른 한편 경험은 리해력있는 관찰자에게 력사적견지에서 볼 때 바로 어제 탄생하였을뿐인 자본주의적생산이 얼마나 급속하게, 얼마나 심각하게 인민의 생명력의 근원을 엄습하였는가를 보여주며 어떻게 공업인구의 쇠퇴가 오직 농촌으로부터 자연발생적인 생명요소들을 부단히 흡수하는데 의해서만 완화되고있는가를 보여주며 그리고 어떻게 농촌로동자들까지도 그들이 신선한 공기를 마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간에는 가장 강한 개체만이 살아남을수 있는 자연도태의 원칙이 전능적으로 지배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쇠퇴하기 시작하고있는가를 보여준다.(112) 자본은 자기 주위에 있는 로

그레이브는 1851년의 산업박람회후에 대륙에 특히 프랑스와 프로씨아에 려행하여 이 나라들의 공장상황을 조사한 일이 있다. 그는 프로씨아의 공장로동자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그들은 그들이 습관되여있으며 만족하고있는 간소한 식사와 사소한 안락을 얻을만한 로동임금을 받는다.…그들은 영국경쟁자에 비하면 생활은 더 나쁘고 일은 더 고되다.》(《공장감독관보고. 1853년 10월 31일》, 85페지)

(111) 《과도로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놀랄만큼 빨리 죽는다. 그러나 사망하는 사람들의 자리는 곧 다시 메꿔지며 등장인물의 빈번한 교체는 무대우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영국과 미국》, 1833년 런던판, 제1권, 55페지. 저자는 E. G. 웨익필드)

(112) 《공중위생. 추밀원 의무관의 제6차보고. 1863년》을 보라. 이것은 1864년에 런던에서 발간되였다. 이 보고서는 특히 농업로동자를 취급하고있다. 《세상사람들은 싸덜런드주를 아주 개량된 주라고 일러왔다. 그러나 최근의 조사는 일찌기 아름다운 남자와 씩씩한 병사로써 명성이 높았던 이러한 지방들에서도 주민은 여위고 위축된 인종으로 퇴화하여버렸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가장 건강에 좋은, 언덕바지에 있는 해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의 얼굴빛은 런던의 어떤 뒤골목의 더러운 분위기속에서만 볼수 있는 그러한 시들고 창백한 얼굴빛이다.》(손턴 《과잉인구와 그 해결책》, 1846년 런던판, 74~75페지) 그들은 실지로 글라스고의 골목길과 빈민굴에서 갈보, 도적들과 한데 뒤섞여 우글거리고있는 3만명의 《용감한 스코틀랜드고지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동자세대의 고난을 부인할만한 《훌륭한 리유》를 가지고있기때문에 인류는 장차 퇴화할것이라든가 인류의 사멸은 결국 면치 못할것이라든가 하는 예상에 의해서는 그 실천적활동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것은 지구가 태양우에 떨어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때문에 그것이 영향을 받지 않는것과 같다. 어떠한 주식투기에 있어서도 누구나 언제든지 한번은 폭풍우가 오리라는것을 알고있지만 누구나 자기자신은 황금의 비를 모아서 그것을 안전한 장소에 옮겨놓은뒤에 폭풍우가 이웃사람의 머리우에 쏟아질것을 바라고있는것이다. 내가 죽은후에는 대홍수가 일든말든 내 알바 아니다.[217] 이것이 모든 자본가와 모든 자본주의적국가의 구호이다. 그러므로 자본은 사회가 강요하지 않는 한 로동자의 건강과 수명에 대해서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다.(113) 육체적 및 정신적 위축, 요절, 과도로동의 고통 등에 관한 불평에 대하여 자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이러한 고통이 우리의 쾌락(리윤)을 증가시켜주는데 어째서 그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겠는가고[218].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또한 개별적자본가의 선의나 악의에 의존하는것이 아니다. 자유경쟁하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법칙들은 개별적자본가에 대해서 외부적인 강제적법칙으로서 작용한다.(114)

---

(113) 《주민의 건강은 국민적자본의 극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자본가들에게는 이 보물을 보존하며 존중하려는 의향이 전혀 없다는것을 우리는 유감이지만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공장주들은 하는수없이 로동자들의 건강에 주의를 돌리게 되는것이다.》(《타임스》, 1861년 11월 5일) 《웨스트라이딩의 남자들은 전 인류를 위한 직물제조자로 되였다.…로동민중의 건강은 희생되였다. 그대로 몇세대 지나간다면 전 종족이 퇴화하여버릴 지경이였다. 그러나 드디여 반작용이 일어났다. 아동의 로동시간은 제한되였다.…》(《중앙등기국 국장의 제22차 년차보고》, 1861년)

(114) 그러므로 우리는 례컨대 1863년초에 스태포드셔에 대규모도기제조소를 소유하고있는 26개 회사—그중에는 J. 웨지우드부자회사도 있다—가 한 청원서에서 《국가의 강권적간섭에 관하여》 청원하고있는것을 본다. 《다른 자본가들과의 경쟁》 때문에 그

표준로동일의 제정은 자본가와 로동자간의 수세기에 걸친 투쟁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 투쟁의 력사는 서로 대립하는 두 조류를 보여준다. 례컨대 현대의 영국의 공장립법과 14세기에서 18세기중엽에 이르기까지의 영국의 로동법규들을 비교하여보라.(115) 현대의 공장법은 로동일을 강제적으로 단축시키고있으나 이전의 로동법규들은 로동일을 강제적으로 연장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자본이 금방 발생하였을뿐이고 따라서 충분한 량의 잉여로동을 흡수할 권리를 비단 경제관계의 힘에 의해서뿐만아니라 아직은 국가권력의 방조에 의해서도 확보하는 맹아상태에 있는 자본의 요구는, 자본이 그 성년기에 속으로는 두덜거리면서도 마지못해 하는 양보와 대비하여본다면 극히 제한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발전의 결과 《자유로운》 로동자가 그의 일상적 생활수단의 가격을 받고 자기의 능동적인 생활시간전체를, 자기의 로동능력자체를 팔아넘기는데 이를테면 한접시의 불콩료리를 받고 자기의 장자상속권을 팔어넘기는[219]데 자발적

들은 아동의 로동시간 및 기타에 대하여 어떠한 《자원적》인 제한도 할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술한 폐해를 아무리 유감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장주들 상호간의 어떤 협정에 의하여 방지하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할것이다.…이 모든 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강제법이 필요하다는 확신에 도달하였다.》(《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1차 보고》, 1863년, 322페지)

주 (114)에 대한 보충: 최근의 사건은 일층 주목할만한 실례를 제공하였다. 열병적 호경기시기에 면화가격의 등귀는 블랙번의 면직물공장소유자들로 하여금 그들 호상간의 협정에 의하여 자기 공장들에서의 로동시간을 일정한 기간 단축하게 하였다. 이러한 기간은 11월말(1871년)경에 이르러 끝났다. 이때에 방적과 직조를 겸하고있는 더 부유한 공장주들은 이 협정에 의한 생산의 감소를 리용하여 자기자신의 영업을 확장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소기업주들의 희생으로 하여 더 많은 리윤을 짜냈다. 그와 같은 난관에 직면한 소기업주들은 드디여 공장로동자들에게 9시간로동을 위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것을 호소하였으며 또 이를 위하여 그들에게 기부금을 줄것을 약속하였다!

(115) 이러한 로동법규는 프랑스, 화란 등등에도 동시에 존재하고있었다. 영국에서는 그것이 생산관계로 말미암아 효력을 잃어버린지 훨씬 후인 1813년에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페지되였다.

으로 동의하기까지에는 즉 사회적으로 강제당하기까지에는 수세기가 필요하였던것이다. 그러므로 14세기중엽에서 17세기말까지의 기간에 자본이 국가권력으로 성년로동자들에게 강요하려고 한 로동일의 연장이 19세기 후반기에 아동들의 피를 자본으로 전화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이곳저곳에서 설정한 로동시간의 한계와 대체로 일치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례컨대 최근까지 북아메리카공화국의 가장 자유로운 주였던 매사추세츠주에서는 12세미만의 아동들에 대한 로동의 국가적제한이 지금 선포되였는데 그것은 이미 17세기중엽에 영국에서 혈기왕성한 수공업자들과 튼튼한 농촌품팔이군들과 장사같은 야장들에게 적용한 표준로동일이였던것이다.(116)

최초의 로동법규(에드워드3세 제23년인 1349년)를 발포한 직접적인 구실(구실이지 원인은 아니다. 왜냐 하면 이와 같은 종류의 립법은 그 구실이 없어진 뒤에도 수세기에 걸쳐서 존속하고있기때문이다.)은 당시 창궐한 대흑사병[220]이였는데, 이 병으로 말미암아 인구가 얼마나 격감되였던지 토리당의 한 저술가는 말하기를 《로동자들은 적당한 가격으로 (즉 고용주에게 적당한 량의 잉여로동을 남겨줄만한 가격으로) 고용할수 없다는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로 되였다.》(117)라고 하

(116) 《12세미만의 아동은 어떠한 공업시설에서나 하루에 10시간이상 작업하는것을 금한다.》(《매사추세츠일반법규》, 제60장, 제3절. 이 법령들은 1836~1858년에 발포된 것이다.) 《일체 면방직공장, 양모공장, 견직물공장, 제지공장, 유리공장, 아마포공장과 제철소, 놋쇠제조소에서 1주야 10시간동안에 수행되는 로동이 법정 1일분로동으로 간주된다. 또 앞으로 어떤 공장을 막론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미성년자를 하루에 10시간이상 혹은 1주일에 60시간이상 붙들어 일시키거나 강제로 일시키지 못하며 또 10세미만의 미성년자를 이 주내의 어떠한 공장에서도 로동자로서 채용하지 못한다.》(《뉴저지주. 로동시간제한법령》, 제1~2절. 1851년 3월 18일의 법률) 《어떤 공업기업소에서나 12~15세의 미성년자를 1주야 11시간이상 일시키는것과 또한 오전 5시이전과 오후 7시 반이후에 일시키는것을 금지한다.》(《로드아일랜드주의 개정법령》, 제139장, 제23절, 1857년 7월 1일)

(117) (J. B. 바일즈) 《자유무역의 궤변》, 1850년 런던 제7판, 205페지. 바로 이 토리당

였다. 그리하여 법률은 로동일의 한계와 아울러 적당한 로임을 강제적으로 지시하게 되였던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것은 로동일의 한계에 관한 조항뿐인데 이것은 1496년(헨리7세 치하)의 법령에서도 반복되였다. 이 법령에 의하면 그당시 모든 수공업자와 농업로동자의 로동일은 3월부터 9월까지는 아침 5시부터 저녁 7~8시까지로 되여있었고 —그러나 그렇게 실시되지는 못하였다.— 식사시간은 아침식사에 한시간, 점심에 $1\frac{1}{2}$시간, 또 오후 중간휴식의 간식에 $\frac{1}{2}$시간 즉 현행공장법에 규정되여있는것의 2배로 되여있었다.(118) 겨울에는 아침 5시부터 어두울 때까지 일해야 하였고 중간휴식시간은 마찬가지였다. 《일용로동자나 주간고용로동자나를 막론하고》 모든 로동자에게 적용된 1562년의 일리저버스의 법령은 로동일의 길이는 변경하지 않고 중간휴식시간을 여름에는 $2\frac{1}{2}$시간으로 겨울에는 2시간으로 제한하려 하였다. 점심시간은 한시간에 그치고 《$\frac{1}{2}$시간의 오침》을 5월중순부터 8월중순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허가할것으로 되여있었다. 결근할 때에는 한시간당 1펜스씩을 임금에서 공제하

원은 또한 다음과 같은것도 인정하고있다. 《로임을 로동자에게는 불리하며 고용주에게는 유리하게 규제한 의회의 법령들은 464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존속하여왔다. 그동안 인구는 증가하였다. 이제는 이 법규들이 쓸데없고 귀찮은것으로 되였다.》 (《우와 같은 책, 206페지》)

(118) 이 법률에 관하여 J. 웨이드는 다음과 같이 옳게 말하고있다. 《1496년의 법률을 보면 식사비가 수공업자에 있어서는 그 소득의 $\frac{1}{3}$, 농업로동자에 있어서는 그 소득의 $\frac{1}{2}$에 해당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는데 이것은 그당시 로동자들의 독립성의 정도가 현재에 비하여 높았다는것을 보여준다. 현재는 농업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로동자들의 식사비가 그들의 임금의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있다.》 (J. 웨이드 《중간계급과 로동계급의 력사》, (23), 25페지) 이 차이를 현재와 그 당시의 식료품과 의류와의 가격비률에 귀착시키려는 견해는 주로 플리트우드의 저작 《물가년표》 (1707년 런던 제1판 및 1745년 런던 제2판)를 얼핏 보기만 하여도 론박된다.

기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실지 형편은 법률에 규정된것보다 로동자에게 훨씬 더 유리하였다. 정치경제학의 아버지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통계학의 창시자인 W. 페티는 17세기 최후의 3분의 1기에 발간된 한 저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로동자 (그 당시에는 실지는 농업로동자) 는 하루에 10시간씩 로동하고 1주일에 20차례의 식사를 즉 평일에는 하루에 세차례, 일요일에는 두차례 식사를 한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명백하여진다. 즉 만약 로동자들이 금요일저녁에는 단식하고 점심식사에는 현재 그들이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의 2시간을 소비하는것을 한시간 반으로 한다면 따라서 만약 그들이 $\frac{1}{2}$ 더 일하고 $\frac{1}{2}$ 덜 소비한다면 이것만으로도 우에서 말한 세금의 $\frac{1}{1}$이 징수될수 있을것이다.》(119)

앤드루 유어박사가 1833년의 12시간로동일법안을 가리켜 암흑시대에로의 후퇴라고 규탄한것은 정당하지 않았는가? 물론 이러한 법령들에 서술되였고 또 페티가 언급한 규정들이 도제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17세기말엽에 아동로동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것은 다음과 같은 원성에서도 추측될수 있다.

《우리 영국소년들은 도제로 될 때까지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제로 된후에도 완전한 수공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그들에게 긴 세월—7년—이 요구되는것이다.》

이에 반하여 독일은 아이들이 요람시대부터 적어도 《얼마간은 일에 대한 훈련을 받는다.》는것으로 찬양받고있다.(120)

---

(119) W. 페티 《아일랜드의 정치적해부. 1672년》, 1691년판, 10페지[151]

(120) 《기계제공업장려의 필요성에 관한 론술》, 1690년 런던판, 13페지. 영국의 력사를 위그당과 자산계급의 리익에 합치하도록 위조한 머콜리는 다음과 같이 열변을 토하고있다. 《아이들을 너무 어려서부터 일시키는 관습이 17세기에 매우 성행하고있었는데 그것은 당시의 공업형편으로 보아서는 거의 믿을수 없을 정도였다. 양모공업의 중심지인 노리지에서는 6세의 어린애가 로동능력있는것으로 간주되였다. 그당시의 여러가지 저술가들—그들중에는 마음이 극히 착하다고 해서 존경을 받은 사람도 많이 있었다.—은 이 도시에서는 소년소녀들만도 그들자신의 생활비를 1년간에 12,000파운드나 초과하는 재부를 창조한다는 사실을 〈무한한 기쁨〉을 가지고 서술하였다. 우리는 과거의 력

대공업시대에 이르기까지 18세기의 대부분에 걸쳐 영국의 자본은 로동력의 1주일가치를 지불함으로써 로동자들의 1주일전체를 점유하는데에는 아직 성공하지 못하였다. 다만 농업로동자만은 례외였다. 로동자가 4일분의 임금을 받고 웅근 1주일을 살아갈수 있었다는 사정은 로동자들이 나머지 이틀도 자본가를 위하여 일해야 한다는 충분한 리유로는 그들에게 생각되지 않았다. 영국경제학자들중 자본에 복무하는 일파는 로동자들의 그와 같은 고집을 통렬하게 규탄하였고 다른 일파는 로동자들을 옹호하였다. 레컨대 포슬스웨이트ㅡ그의 상업사전은 머칼러크 및 머그레거의 같은 종류의 저서가 현재 호평을 받고있는것과 마찬가지로 그당시 호평을 받고있었다ㅡ와 우에서 인용한 《산업 및 상업에 관한 론술》의 저자①간의 론쟁을 들어보기로 하자.(121)

사를 더 세밀하게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의 시대가 새로운 사회적페단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견해에 찬동할수 없다는 리유를 더 많이 발견한다. 새로운것은 이러한 페단을 발견하는 치성과 그것을 퇴치하는 인도주의이다.》(《영국력사》, 제1권, 417페지) 머콜리는 더 나아가 17세기의 《마음이 극히 착한》 상업의 벗들이 화란의 어떤 빈민구제원에서는 네살먹은 어린아이를 일시켰다는 사실을 《무한한 기쁨》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사실, 그리고 또 《실천에 적용된 선행》의 이와 같은 실례는 A. 스미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머콜리류의 인도주의자들의 모든 저술에서 찾아볼수 있다는 사실을 말할수도 있었을것이다. 수공업과 구별되는 공장제수공업이 출현함과 동시에 아동들에 대한 착취의 징후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착취는 이전부터 어느 정도 농민들사이에 있었으며 또 농민들에게 건 멍에가 무거울수록 일층 더 심하여졌다. 자본의 경향은 명백하나 그러한 사실들자체는 쌍두아의 출현과 같이 아직은 례외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래의 예감에 가득찬 《상업의 벗들》은 동시대사람 및 후세사람들을 위하여 이러한 사실들을 《무한한 기쁨》을 가지고 특히 주목할만한 또 경탄할만한것으로 묘사하였으며 또 그것들을 모방하도록 권고하였던것이다. 이 스코틀랜드출신의 아첨군이며 말재주군인 머콜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시기 우리가 듣는것은 퇴보뿐이고 보는것은 진보뿐이다.》 얼마나 훌륭한 눈과 특히는 얼마나 훌륭한 귀를 가지고있는가!

(121) 로동자를 비난한 사람들중에서 가장 골을 내는자는 본문에서 말한 《산업 및 상업에 관한 론술》(1770년 런던판)의 익명저자①이다. 벌써 그 이전에도 그는 자기의 저서 《조세에 관한 고찰》(1765년 런던판)에서 동일한 견해를 발표한 일이 있다. 통계학의

---

① 죤 커닝햄을 가리킨다. ㅡ편집자

포슬스웨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만약 로동자(industrious poor)가 5일간에 1주일간의 생활에 충분하리만한 임금을 받을수 있다면 그는 응근 6일간 일하려 하지 않을것이라는 말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을수 있는 진부한 말인데 나는 이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이 간략한 서술을 끝마칠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수공업자들과 공장제수공업로동자들로 하여금 1주일에 6일동안 쉬지 않고 로동하지 않을수 없게 하기 위해서는 세금 또는 다른 어떤 수단으로써 생활필수품가격까지도 비싸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있다. 실레이지만 나는 이 왕국의 로동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노예상태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이런 위대한 정치가와는 의견을 달리한다. 그들은 〈놀지 않고 일만 하면 바보가 된다.〉는 격언을 망각하고있다. 이때까지 영국의 상품에 일반적 신용과 명성을 보장하여준 영국수공업자들과 공장제수공업로동자들의 총명과 기교는 영국사람들이 자랑하는바가 아닌가?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그렇게 되였는가? 아마도 성격이 쾌활한 우리의 로동대중이 그들의 특유한 방식으로 휴식과 오락을 할줄 아는 그 사정이외의 아무것도 아닐것이다. 만약 그들이 1주일간의 6일전체를 통하여 동일한 작업을 부단히 반복하면서 응근 한해를 계속하여 일하도록 강요당한다면 이것은 그들의 능력을 무디게 하며 활기있고 재주있는 그들을 우둔한 바보로 만들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의 로동자들은 그와 같은 영원한 노예상태의 결과로서 자기의 명성을 유지할대신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는가?…우리는 그처럼 혹사당하고있는 동물들에게서 그 무슨 기능을 기대할수 있겠는가?…그들중 많은 사람은 프랑스사람이 5일이나 6일동안에 할만한 일을 4일동안에 해치운다. 그러나 만약 영국사람들이 영원한 고역로동자로 되여야 한다면 그들은 프랑스사람들보다 더 퇴화할 위험성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우리 인민이 전쟁에서

형언할수 없는 다변가인 펄로우니어스-아서 영도 이 파에 속한다. 로동자의 옹호자중에서 탁월한 사람들은 《화폐만능론》(1734년 런던판)에서의 제이커브 밴덜린트 《식량의 현 가격이 높은 원인에 대한 고찰》(1767년 런던판)에서의 신학박사 너새니얼 포스터목사, 그리고 프라이스박사, 또 그리고 특히 《상공업대사전》의 부록 및 《대브리텐의 상업리익의 해명과 개선》(1759년 런던 제2판)에서의 포슬스웨이트이다. 사실 그자체는 같은 시대의 수많은 다른 저술가들에 의하여 특히는 죠우싸이어 타커에 의하여 확인된바이다.

용감하다는 명성을 누리고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한편으로는 그들이 먹는 영국의 좋은 불고기와 푸딩의 덕택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보다 못지 않게 우리의 립헌적인 자유정신의 덕택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의 수공업자들과 공장제수공업로동자들의 총명과 정력과 기교는 그들이 자기의 특유한 방식으로 휴식과 오락을 하는 자유의 덕택이 아니라고 하는가? 나는 그들이 다시는 이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을것과 또 로동에서의 그들의 기능과 아울러 그들의 용기의 원천으로 되는 그들의 좋은 생활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는바이다!》(122)

이에 대하여 《산업 및 상업에 관한 론술》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만약 주일의 일곱째 날을 휴식일로 하는것이 하느님의 제도라고 인정된다면 주일의 나머지 날이 로동에 (자본에라는 뜻인데 이것은 우리가 아래서 곧 알게 된다.) 속한다는것을 말하고있으며 이와 같은 하느님의 명령[221]을 강제로 집행하는것을 가혹하다고 할수 없다.…인류는 대체로 날 때부터 안일과 라태의 경향을 가지고있다는데 대해서는 불행하게도 우리의 공장제수공업서민들의 행동에서 경험하게 되며 그들은 생활수단의 가격이 비싸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 1주일에 4일 이상을 일하지 않는다.…이제 1부쉘의 밀이 로동자의 생활수단전체를 대표하며 그 가격이 5실링이라 하고 로동자는 자기의 로동에 의하여 하루에 1실링을 번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 그는 1주일에 5일간만 일하면 된다. 그리고 만약 1부쉘의 밀이 4실링이라면 4일간만 일하면 된다.…그런데 이 왕국에서는 로임이 생활수단의 가격에 비하여 훨신 높은 까닭에 4일동안 로동하는 공장제수공업로동자는 주일의 나머지 날을 놀고 지낼수 있을만한 돈의 여유를 가진다.…내가 우에서 말한바에 의하여 1주 6일간의 적당한 로동은 결코 노예상태가 아니라는것이 십분 분명히 되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의 농업로동자들은 1주 6일간 로동하고있으며 또 그들은 어느모로 보든지 로동자(labouring poor)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123) 화란사람들은 공장제수공업에서

---

(122) 포슬스웨이트 《상공업대사전》의 《제1서론》, XIV페지.

(123) 〔죤 커닝햄〕의 《산업 및 상업에 관한 론술》. 벌써 1770년에 영국농업로동자들의 《행복》이 무엇에 있었는가는 저자자신이 이 책의 96페지에서 이야기하고있다. 《그들의 로동력은 언제나 극도의 긴장상태에 있었다. 그들은 현재 생활하는것보다 더 나쁘게 생활할수도 없으며 더 고되게 일할수도 없다.》

도`이와 같은 6일간로동을 실시하고있으며 또한 대단히 행복스러운 민족으로 보인다. 프랑스사람들도 많은 휴일이 중간에 끼이지 않는 한에서는 그렇게 하고있다.(124)…그러나 우리 나라 서민들의 머리에는 영국인으로서의 타고난 권리에 의하여 그들이 다른 어떤 유럽나라 (그곳의 로동자민중) 보다도 더 많은 자유와 독립을 향유할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고정관념이 깊이 뿌리박혀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은 그것이 우리 나라 병사들을 용감하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얼마간 유용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장제수공업로동자들은 이 사상에 적게 감염되면 될수록 그들자신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 더 좋을것이다. 로동자는 결코 자기가 자기의 웃사람으로부터 독립되여있다는 의식을 가져서는 안된다.…우리 나라같이 아마 전체 인구의 $\frac{7}{8}$이 재산을 거의 소유하지 못했거나 혹은 전혀 소유하지 못하고있는 그러한 상업국에서 민중의 용기를 돋우어주는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다.(125)…우리 나라의 공업빈민들이 지금 그들이 4일간에 받고있는것과 같은 임금을 받고 달갑게 6일간 로동하게 될 때까지는 구제가 완전한것으로는 되지 못할것이다.(126)》

이 목적을 위하여 또 그리고 《라태와 방탕과 자유에 관한 랑만적인 환상의 근절》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빈민구제세의 감소, 근면정신의 고무 및 공장제수공업에서의 로동가격의 인하를 위하여》 자본에 충실한 우리의 에카르트는 공공자선사업에 의뢰하는 로동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극빈민들을 《리상적인 빈민구제원》에 가두자는 확실한 방책을 제안하고있다. 《그와 같은 빈민구제원은 반드시 하나의 공포의 집으로 되여야 한다.》(127) 이 《공포의 집》, 《리상적인 빈민구

---

(124) 신교는 그것이 거의 모든 전통적인 휴일을 로동일로 전화시킨다는 리유만으로도 자본의 발생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다.

(125) 〔죤 커닝햄〕의 《산업 및 상업에 관한 론술》 15, 41, 96~97, 55~57페지.

(126) 우와 같은 책, 69페지. 제이커브 밴덜린트는 벌써 1734년에 로동자의 라태에 대한 자본가들의 불평의 비밀은 단순히 그들이 동일한 임금을 주고 4로동일 대신에 6로동일을 요구한데 있다는것을 해명했다.

(127) 우와 같은 책, 242~243페지. 《그와 같은 리상적인 빈민구제원은 반드시 하나의 〈공포의 집〉으로 돼야 하며 그것을 풍부한 음식물과 따뜻하고 말쑥한 의복이 공급되며 일은 극히 적게 시키는 빈민들의 피난처로 돼서는 안된다.》

제원》에서는 《적당한 식사시간까지 포함시켜》 로동은 《하루에 14시간씩 계속되여야 하며 그리하여 옹근 12시간이 로동시간으로 되여야 한다.》(128)

1770년의 《리상적인 빈민구제원》 즉 공포의 집에서 로동일은 12시간이였다! 그후 63년을 지나 1833년에 영국의 의회가 4개의 공업①부문에서 13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의 로동일을 옹근 12시간으로 단축시켰을 때 영국공업의 최후의 심판의 날이 시작된듯이 생각되였다! 1852년에 루이 보나빠르트가 자산계급들사이에서 지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법정로동일을 침범하려 하였을 때 프랑스의 로동민중은 이구동성으로 다음과 같이 웨쳤던것이다. 《로동일을 12시간으로 단축시킨 법률, 이것은 공화국의 립법에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재보이다!》(129) 쮜리히에서는 10세이상의 아동의 로동이 12시간으로 제한되였으며 아르가우에서는 1862년에 13세부터 16세까지의 아동의 로동시간은 $12\frac{1}{2}$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되였으며 오지리에서는 1860년에 14세부터 16세까지의 아동을 위하여 로동시간이 역시 12시간으로 단축되였다.(130)

---

(128) 〔존 커닝햄〕의 《산업 및 상업에 관한 론술》, 〔260페지〕.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있다. 《프랑스인은 우리의 열광적인 자유사상을 비웃고있다.》(〔존 커닝햄〕의 《산업 및 상업에 관한 론술》 78페지)

(129) 《그들이 하루에 12시간이상 일하는것을 특히 반대한 리유는 그러한 로동일을 제한한 법률이 공화국의 립법에서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재보라는데 있다.》(《공장감독관보고. 1855년 10월 31일》, 80페지) 1850년 9월 5일의 프랑스의 12시간로동법은 1848년 3월 2일의 림시정부포고의 자산계급화판으로서 차별없이 모든 작업장에 적용된다, 이 법이 발포되기전에는 프랑스에서의 로동일은 제한이 없었다. 공장들에서 로동일은 14~15시간 혹은 그 이상 계속되고있었다. 블랑끼씨의 저작 《1848년의 프랑스로동계급에 대하여》를 보라. 혁명가인 블랑끼씨가 아니라 경제학자인 이 블랑끼씨는 정부로부터 로동자의 실태조사를 위임받았던것이다.

(130) 벨지끄는 로동일의 규제에 있어서도 자산계급적모범국으로 되여있다. 브류쎌주재 영국전권공사 하우어드 더 웰던경은 1862년 5월 12일부로 외무성에 다음과 같이

---

① 이 책 321페지를 보라. —편집자

《1770년이래의 진보》가 어떤가 보라고 머콜리는 《기쁨에 넘쳐》 소리칠것이다![①]

1770년에 자본의 혼이 아직 꿈에서만 그리고있던 극빈민의 《공포의 집》은 그후 몇해를 지나서는 공장제수공업로동자 자신들을 위한 거대한 《빈민구제원》으로서 나타났다. 그것을 공장이라고 칭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리상이 현실앞에서 빛을 잃게 되였다.

6. 표준로동을 위한 투쟁. 법률에 의한 로동시간의 강제적제한. 1833~1864년의 영국의 공장립법

자본이 로동일을 그 표준적인 최대한에까지 연장하고 또 그다음에는 이 한계를 넘어 12시간이라는 자연일의 한계에까지 연장하는데는(131) 수세기가 걸렸다. 그러나 18세기 최후

보고하였다. 《대신 로지에는 나에게 말하기를, 아동로동은 현재 일반법에 의해서나 또 지방적법규에 의해서나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있으며 정부는 최근 3년간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이 문제에 관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려고 생각하였으나 그때마다 로동의 완전자유의 원칙과 모순되는 립법에 대한 방심하지 않는 불안이 극복될수 없는 장애로 되였다고 하였다!》

(131) 《어떤 계급의 사람들이 매일 12시간씩 고역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은 확실히 통탄할 일이다. 만약 12시간에 식사시간과 작업장에 왕복하는 시간을 가한다면 그것은 실지로 1주야 24시간중 14시간에 달한다. …건강문제는 고사하고라도 도덕적견지로 보아서 로동계급의 시간을, 13세라는 어린 때부터 그리고 (자유로운) 산업부문에서는 심지어 그보다도 훨씬 더 어린 때부터 중단없이 그처럼 완전히 흡수하여버리는것은 극도로 유해하고 무서운 폐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공중도덕을 위하여, 건전한 주민을 길러내기 위하여, 또 인민대중에게 생활을 합리적으로 향락할수 있도록 보장하여주기 위하여 전체 영업부문에서 휴식과 여가를 위하여 매개 로동일의 일부분을 남겨두어야 한다는것을 강경히 주장하지 않을수 없다.》(레너드 호너 《공장감독관보고. 1841년 12월 31일》)

① 이 책 315페지를 보라.—편집자

의 3분의 1기에 대공업이 탄생한 이후에는 이 령역에서 모든 한계를 돌파하는 눈사태와 같은 돌진이 일어났다. 관습과 자연, 년령과 성별, 낮과 밤의 한계는 죄다 분쇄되였다. 낡은 법규①들에서는 농민처럼 단순한 낮과 밤에 관한 개념까지도 극히 애매하여졌고 그 결과 어떤 영국재판관은 1860년에 낮이란 무엇이며 밤이란 무엇인가 하는것을 《판결상 유효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참으로 탈무드적인 명민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이다.(132) 자본은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 자기의 승리를 축하하였다.

생산의 소음에 멍해졌던 로동계급이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자 곧 이 계급의 반항이 시작되였다. 우선 대공업의 발생지인 영국에서 그러하였다. 그러나 30년간에 로동계급이 쟁취한 양보란 순전히 명목적인것에 지나지 않았다. 영국의회는 1802~1833년간에 5개의 로동법[222]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의회는 교활하게도 이 법률들의 강제적실시와 필요한 관원 등등에 대한 경비는 한푼도 비준하지 않았다.(133) 그 법률들은 죽은 조문에 지나지 않았다.

《1833년의 법률[187]이전에는 아동과 소년들이 온밤이든 온낮이든 또

---

(132) 《군사계 재판장 J. H. 오트웨이의 판결. 안트림주 벨파스트 1월개정기, 1860년》 을 보라.

(133) 자산자왕인 루이 필리프의 통치에 극히 특징적인것은 그 치하에 발포된 1841년 3월 22일의 유일한 공장법이 한번도 실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또 이 법률은 아동로동에만 관계되는것이였다. 그것은 8~12세의 아동로동을 8시간으로, 12~16세의 아동로동을 12시간 등등으로 제정한것이였지만 거기에는 허다한 례외적규정이 있어서 8세의 아동에게도 야간로동을 허용하였다. 이 법률의 적용에 대한 감시와 그 집행에 대한 강제는 한마리의 쥐까지도 경찰의 단속하에 있는 이 나라에서 《상업의 벗들》의 선의에 맡겨져있었다. 겨우 1853년부터야 단지 노르주에만 1명의 유급정부감독관이 존재한다. 프랑스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이보다 못하지 않게 특징적인것은, 모든 생활분야를 법망에다 포함시키는 프랑스의 법률공장에서 오직 이 루이 필리프의 법률만이 1848년혁명에 이르기까지의 유일한 공장법이였다는것이다.

① 이 책 313~314페지를 보라. —편집자

는 온낮 온밤이든 시키는대로 로동하지 않을수 없었다는것이 사실이다.》(134)

면방직공장, 모방직공장, 아마방직공장 및 견방직공장을 포괄하는 1833년의 공장법부터 비로소 현대적산업에서 표준로동일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833년부터 1864년에 이르는 영국공장립법의 력사이상으로 자본의 정신을 더 잘 특징짓는 것은 없다!

1833년의 법률이 언명하는데 의하면 공장의 보통로동일은 아침 5시 반에 시작되여 저녁 8시 반에 끝나야 하며 이 15시간의 한계내에서는 소년(즉 13세부터 18세까지의 사람)의 로동을 1일중 어느 시간에 사용해도 합리적이다. 다만 이때 특별히 규정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소년을 하루에 12시간이상 일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이 반드시 준수되여야 한다. 이 법률 제6절에는 《그 로동시간이 제한되여있는 매개인에게는 1일중에 적어도 $1\frac{1}{2}$시간의 식사시간을 허여할것》이라고 규정되여있다. 9세미만의 아동을 사용하는 것은 아래서 말하는 례외적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였고 9세 내지 13세의 아동의 로동은 하루에 8시간으로 제한되였다. 야간로동 즉 이 법률에 의하면 저녁 8시 반부터 아침 5시 반까지의 로동은 9세부터 18세까지의 모든 소년에게 금지되였다.

립법자들은 성인로동력을 흡수하는 자본의 자유 즉 그들이 말하는 소위 《로동의 자유》를 침해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기때문에 그들은 공장법에서 이와 같은 무서운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의 독특한 제도까지 고안해냈

---

(134) 《공장감독관보고. 1860년 4월 30일》, 50페지.

다. 1833년 6월 28일에 개최된 위원회 중앙위원회 제1차보고서에는 이렇게 지적되여있다.

《현재의 공장제도는 하나의 큰 폐해를 내포하고있는데 그것은 아동로동을 필연코 성인로동일의 최대한에까지 연장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성인로동을 제한하지 않고—성인로동을 제한하면 지금 제거하려고 생각하는 폐해이상으로 더 큰 폐해가 발생할것이다—이 폐해를 제거하는 유일한 수단은 아동의 2교대제를 채용하는 안이라고 생각된다.》[223]

그리하여 이 《안》은 《리레제도》(《System of Relays》, 영어나 프랑스어에서 Relay라는 말은 각 역참에서 역말을 교체하는것을 말한다.)라는 명칭하에 례컨대 아침 5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는 9세부터 13세까지의 아동들로 된 한 교대반이 일하고 오후 1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는 다른 교대반이 일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시되였다.

공장주 제씨는 최근 22년동안에 발포된 아동로동에 관한 모든 법률을 가장 파렴치하게 무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수로서 그들이 이번에 삼키게 될 알약은 금칠한것이였다. 의회는 결정하기를, 1834년 3월 1일이후에는 11세미만의 아동이, 그리고 1835년 3월 1일이후에는 12세미만의 아동이, 또 그리고 1836년 3월 1일이후에는 13세미만의 아동이 공장에서 8시간이상 로동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자본》에 대하여 매우 관대한 이 《자유주의》는, 패어의사, A. 칼라일경, B. 브로디경, C. 벨경, 가스리씨 등등 요컨대 런던의 가장 탁월한 내과의사와 외과의사들이 하원에서 한 증언에서 《위험은 지체하는데 있다!》[224]라고 언명했던만큼 더 칭찬할만한것이였다. 패어의사는 이 문제에 관하여 좀더 신랄하게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어떤 형태에서 발생하는것이든 요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립법이 동일하게 필요하며 이 방법 (공장적방법) 은 확실히 요사를 야기시키는 가장 가혹한 방법의 하나로 인정되여야 한다.》(135)

《개혁된》 의회는 공장주 제씨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정으로부터 출발하여 13세미만의 아동들을 아직도 몇해동안 1주 72시간의 공장로동이라는 지옥속에 얽매두면서도 한편 농장주들에 대해서는 자유를 한방울씩 나누어준 노예해방령[226]에 의하여 그들이 흑인노예를 1주 45시간이상 강제로동시키는것을 처음부터 금지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자본은 조금도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해동안 계속되는 요란스러운 선동을 개시하였다. 그것은 주로 아동이라는 명칭하에 그 로동이 8시간에 제한되였고 또 일정한 의무교육을 받기로 된 부류의 아동들의 년령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되였다. 자본주의적인 인류학에 의하면 아동기는 10세에 또는 기껏해서 11세에 끝난다는것이였다. 공장법의 완전실시의 기한, 불길한 해 1836년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공장주폭도들은 더욱 미칠듯이 날뛰였다. 확실히 이들은 정부를 위협하는데 성공하여 정부는 1835년에 아동기의 한계를 13세로부터 12세로 낮출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때 외부로부터의 압력의 위협이 몹시 커졌다. 하원은 용기를 잃었다. 하원은 13세의 아동들을 1일 8시간이상 자본의 쟈거노트수레바퀴밑에[227] 던지는것을 거부하였으며 그리하여 1833년의 법률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게 되였다. 그것은 1844년 6월까지 변경되지 않았다.

---

(135) 《Legislation is equally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of death, in any form in which it can be prematurely inflicted, and certainly this must be viewed as a most cruel mode of inflicting it.》 [225]

이 법률이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다음에는 완전히 공장로동을 규제하고있던 10년동안 공장감독관의 공식보고에는 이 법률을 실시할수 없다는 불평으로 충만되여있었다. 1833년의 법률에 의하면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의 15시간내에서는 매개 《소년》과 매개 《아동》의 12시간로동 또는 8시간로동의 시작과 중단과 종결에 대한 시간결정은 자본가 제씨에게 일임되였으며 또한 각이한 사람들에게 각이한 식사시간을 지정하는것도 역시 그들의 재량에 일임된만큼 자본가 제씨는 그후 곧 새로운 《리레제도》①를 발명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로동자라는 역말은 고정된 역참에서 교체되는것이 아니라 항상 변하는 역참에서 부단히 서로 교체되도록 되여있다. 우리는 후에 다시 이 제도의 훌륭한 점에 대하여 말하게 될것이므로 여기에서는 그것을 더 상세하게 취급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제도가 공장법전체를 비단 그 정신뿐만아니라 조문 그자체까지도 폐기하여버렸다는것은 얼핏 보아도 명백하다. 매개 아동들과 매개 소년들에게 대한 이 복잡한 기장제도하에서 공장감독관들이 어떻게 공장주들로 하여금 법정로동시간과 법정식사시간을 준수하도록 강요할수 있겠는가? 대부분의 공장들에서 얼마 오래지 않아 종전의 잔인한 불법행위가 또다시 성행하였으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내무대신과의 한 회견(1844년)석상에서 공장감독관들은 새로 고안된 리레제도하에서는 어떠한 통제도 모두 불가능하다는것을 론증하였다.(136) 그러나 그동안에 사태는 매우 달라졌다. 공장로동자들은 특히 1838년이래 헌장[228]을 그들의 정치적선거구호로 삼은것과 마찬가지로 10시간로동법안[190]

(136) 《공장감독관보고. 1849년 10월 31일》, 6페지.

① 이 책 331~338페지를 보라. 一편집자

을 자기들의 경제적선거구호로 삼았다. 1833년의 법률에 따라 공장경영을 규제하고있던 일부 공장주들까지도 극히 철면피하기때문에 또는 지방사정이 비교적 유리하기때문에 법률을 위반한 《불성실한 형제들》의 비도덕적인 《경쟁》에 관하여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밖에 개별적공장주들이 아무리 예로부터의 강탈욕을 마음대로 채우려고 하여도 공장주계급의 대변자들과 정치적지도자들은 로동자들에 대한 태도와 언사를 고쳐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그들은 곡물법의 폐지를 위한 투쟁을 개시하였고 그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로동자들의 원조가 필요하였던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비단 빵덩어리를 2배 더 크게 할것을 약속하였을뿐만아니라[229] 자유무역의 천년왕국[230]에서 10시간로동법안도 채택할것을 약속하였다.(137) 따라서 1833년의 법률을 실현하려는데 지나지 않은 그 조치들에 대하여 그들은 더구나 반대하여나서지 못하게 되였다.① 마지막으로 토리당은 신성불가침한 자기의 리익인 지대에 위협이 미치자 자기 적의 《비렬한 술책》(138)에 대하여 박애적인 노성을 질렀다.

이리하여 1844년 6월 6일의 추가적공장법은 성립되였다. 그것은 1844년 10월 1일부터 실시되였다. 그것은 18세이상의 부녀라는 새로운 범주에 속하는 로동자를 법률의 피보호자의 부류에 넣었다. 부녀들은 모든 점에서 소년들과 동등하게 취급되였다. 그들의 로동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되였고 그들의 야간로동은 금지되였다, 등등. 이와 같이 법률은 처음부터

---

(137) 《공장감독관보고. 1848년 10월 31일》, 98페지.

(138) 레너드 호너는 심지어 공식적으로 《비렬한 술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공장감독관보고. 1859년 10월 31일》, 7페지)

---

① 이 책 321~322페지를 보라.—편집자

성년자의 로동도 역시 직접적인 공식적통제하에 두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1844~1845년의 공장보고서에는 풍자적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되여있다.

《성인부녀들이 그 권리를 이와 같이 침해당했다고 불평을 말해온 경우를 우리는 한건도 알지 못한다.》(139)

13세미만의 아동의 로동은 1일 $6\frac{1}{2}$시간으로, 그리고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7시간으로 단축되였다.(140)

허위적 《리레제도》의 람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률은 특히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세칙을 제정하였다.

《아동 및 소년의 로동일은 아동 또는 소년중 단 한사람이라도 아침에 공장에서 로동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만약 레컨대 A는 아침 8시에, B는 10시에 로동을 시작한다 해도 B의 로동일은 A의 로동일과 꼭같은 시간에 끝나지 않으면 안된다. 로동일의 개시는 공적인 시계 레컨대 근처의 철도시계에 의하여 결정되여야 하며 공장의 종은 이것과 맞추어야 한다. 공장주는 로동일의 개시와 종결과 휴계를 표시하는 시간표를 큰 활자로 인쇄하여 공장구내에 게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전의 로동일을 12시전에 시작한 아동들은 오후 1시이후에 다시 일시킬수 없다. 따라서 오휴교대반은 오전교대반과는 다른 아동들로 구성되여야 한다. 점심식사에 배정되는 $1\frac{1}{2}$시간은 모든 피보호로동자에게 같은 시간에 주어야 하며 그중 적어도 한시간은 오후 3시전에 주어야 한다. 아동 또는 소년은 적어도 반시간의 식사를 위한

---

(139) 《공장감독관보고. 1844년 9월 30일》, 15페지

(140) 이 법률은 아동들이 매일 로동하지 않고 다만 하루 건너 로동하는 경우에만 그들을 하루에 10시간 사용하는것을 허가하고있다. 대체로 이 조항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다.

중간휴식을 주지 않고 오후 1시전에 5시간이상 일시켜서는 안된다. 아동, 소년 또는 부녀들은 어떠한 식사시간에나 그 어떤 로동과정이 진행되고있는 공장작업실내부에 머물러있어서는 안된다, 등등.

우리가 이미 본바와 같이 로동의 시간과 한계와 휴계를 그와 같이 군대식으로 균일하게 종소리에 맞추어서 규제하는 이 세밀한 규정들은 결코 의회가 고안해낸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현대적생산방식의 자연법칙으로서 현존하는 제 관계로부터 점차적으로 발전하였다. 이 규정들의 정식화, 공식적승인 및 국가에 의한 선포는 장구한 계급투쟁의 결과였다. 이러한 규정들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의 하나는 실천상 성인남성공장로동자의 로동일도 동일한 제한을 받게 되였다는 사실인데, 그렇게 된것은 대다수의 생산과정에서 아동, 소년 및 부녀의 협조가 필요하였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체로 보아서 1844~1847년기간에 12시간로동일은 공장립법의 제약을 받는 모든 산업부문에서 전반적으로 한결같이 실시되고있었다.

그러나 공장주들은 이와 같은 《진보》도 그것을 보상하는 《퇴보》없이는 용인하지 않았다. 그들의 간청에 따라 하원은 하느님과 법률에 의하여 자본에 바쳐야 할 《공장아동의 추가적공급》을 보장할 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아동의 최저년령을 9세로부터 8세로 인하하였다.(141)

1846~1847년은 영국경제사에서 하나의 시기를 이룬다. 곡물법[23]이 폐지되였고 면화와 기타 원료에 대한 수입세가 폐지되였고 자유무역이 립법의 향도성으로 선포되였다! 간단

---

(141) 《그들의 로동시간의 단축은 사용되는 (아동의) 수를 증가시킬것이므로 8세부터 9세까지의 아동의 추가적공급은 증대된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것이라고 생각되였다.》 (《공장감독관보고. 1844년 9월 30일》, 13페지)

히 말하면 천년왕국이 시작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이 년간에 헌장운동과 10시간로동일을 위한 운동이 그 절정에 달하였다. 이 운동들은 복수심에 불타는 토리당에서 동맹자를 발견하였다. 브라이트와 콥덴을 선두로 하는 식언적자유무역군의 발광적인 반항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오래동안 추구하여온 그 10시간로동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였다.

1847년 6월 8일의 신공장법은 1847년 7월 1일부터 《소년》(13세부터 18세까지의) 및 녀성로동자전체의 로동일을 우선 11시간으로 단축할것과 그리고 1848년 5월 1일부터 그것을 최종적으로 10시간으로 제한할것을 제정하였다. 기타 모든 점에서는 이 법률은 1833년법률과 1844년법률에 대한 수정증보에 지나지 않았다.

자본은 이 법률이 1848년 5월 1일부터 완전히 실시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전초전을 기도하였다. 그나마 소위 경험을 통하여 지혜가 늘어난 로동자들자신이 자기자신의 사업을 다시 파괴하는것을 도와야 하는것으로 되여있었다. 시기는 교묘하게 선택되였다.

《1846년~1847년의 무서운 공황의 결과 다수 공장은 조업을 단축하였고 기타 공장은 조업을 완전히 중지한 까닭에 공장로동자들은 심한 고통을 받고있었다는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까닭에 많은 수의 로동자가 매우 궁핍한 상태에 처하게 되였고 많은 사람이 빚을 지게 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과거에 당한 손실을 메꾸며 행여나 채무도 반환하며 혹은 자기들의 가구를 전당포에서 찾아내며 혹은 팔아치운 살림도구를 다시 사들이며 혹은 자신과 가족이 새옷을 입도록 하기 위하여 더 긴 로동시간을 좋다고 할것은 십분 확신성있게 단정할수 있었다.》(142)

공장주 제씨는 임금을 일반적으로 10% 인하함으로써 이

(142) 《공장감독관보고. 1848년 10월 31일》, 16페지.

러한 사정의 자연적효과를 높이려고 하였다. 이것은 말하자면 새로운 자유무역시대의 개시를 축하하는것이였다. 다음으로 로동일이 11시간으로 단축되자 뒤이어 임금은 또다시 $8\frac{1}{3}$%가 인하되였고 그후 로동일이 최종적으로 10시간으로 단축되자 그 2배가 인하되였다. 그러므로 사정이 허락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임금이 적어도 25% 인하되였다.(143) 이처럼 유리하게 준비한 기회를 리용하여 로동자들간에서 1847년법률의 폐지를 위한 선동이 개시되였다. 사기, 유혹, 협박 등 모든 수단을 다 써보았지만 모든것은 허사였다. 로동자들이 《이 법률에 의하여 자기들에게 가해진 압박》에 대하여 고소한 반타스의 청원서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 청원자들자신이 구두심문시에 말한바와 같이 그들의 서명은 강제에 못이겨 한것이였다. 《그들은 압박받고있으나 그 압박은 공장법에 의한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한것이였다.》(144) 그러나 공장주들은 로동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희망하는대로 말하게 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을 때 그들자신이 신문과 의회에서 로동자의 이름으로 더한층 떠들어댔다. 그들은 비난하기를, 공장감독관들이란 불행한 로동자들을 세계개량에 관한 망상의 참혹한 희생물로 만든 국민공회 의원들[231]과 같은자들이라고 하였다. 이 책략도 또한 성공하지 못하였다. 공장감독

(143) 《한주일에 10실링을 받고있던 사람들이 10%의 일반적임금인하를 구실로 1실링을 빼앗기고 다음으로 로동시간의 단축을 구실로 또한번 1실링 6펜스를 빼앗기여 도합 2실링 6펜스를 빼앗기였는데 그래도 대다수는 10시간로동법안을 견결히 찬성하고있다는것을 나는 발견하였다.》(《공장감독관보고. 1848년 10월 31일》, 16페지)

(144) 《나는 청원서에 서명하면서 그와 동시에 내가 서명하는것은 잘못이라는것을 말했습니다.—그러면 어째서 당신은 서명하였습니까?—거절하는 경우에는 공장에서 쫓겨날것이기때문입니다.—청원자는 사실 〈압박받는다〉는것을 느끼고있었으나 그러나 그 압박감은 결코 공장법에 의한것이 아니였다.》(우와 같은 보고, 102페지)

관 레너드 호너는 몸소 또 자기 부하인 보조감독관들을 통하여 랭카셔의 공장들에서 많은 증인심문을 진행하였다. 심문을 받은 로동자중 약 70%가 10시간로동일을 찬성하고 그보다 훨씬 작은 비률이 11시간 로동일을 찬성하고 전혀 보잘것없는 소수가 종전의 12시간 로동일을 찬성한다고 언명하였다.(145)

다른 하나의 《호의적인》 책략은 성인남성로동자들을 12~15시간 일시켜놓고 후에 이 사실을, 무산계급의 내심으로부터의 념원의 가장 훌륭한 표현이라고 언명하는것이였다. 그러나 《무자비한》 공장감독관 레너드 호너가 또다시 어느 사이에 나타났다. 《시간외로동》을 하는 로동자들의 대다수가 언명한바에 의하면

《그들은 차라리 임금을 조금 받고 10시간씩 일하는편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전혀 선택권이 없는것이다. 그들중에는 많은자가 실업을 당하고있으며 많은 방직공들이 단순한 실잇는자로서 로동하지 않을수 없게 되여있는만큼 그들이 로동시간의 연장을 거부한다면 그들의 자리는 즉시로 다른 사람들이 차지할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나선 문제는 더 장시간 로동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해고당하든가 그 어느쪽이다.》(146)

자본의 전초전은 실패로 끝나고 10시간로동법은 1848년 5월 1일에 실시되였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헌장파가 실패하였고 그 지도자들은 감옥에 구금되고 그 조직은 해체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영국로동계급의 자신심을 동요시켰다.[232]

---

(145) 《공장감독관보고. 1848년 10월 31일》, 17페지. 호너씨의 관할구에서는 이와 같이 181개의 공장에서 10,270명의 성인남성로동자가 심문을 받았다. 그들의 증언은 1848년 10월까지의 반년간의 공장감독관보고의 부록에 실려있다. 이 증인심문은 다른 점에서도 역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있다.

(146) 《공장감독관보고. 1848년 10월 31일》의 《부록》에 게재된 레너드 호너 자신이 수집한 증언 제69, 70, 71, 72, 92, 93호 및 보조감독관인 A. 가 수집한 증언 제51, 52, 58, 59, 62, 70호를 보라. 공장주중에도 사실 그대로 진술한자가 한사람 있었다. 우와 같은 보고 제14호 및 제265호를 보라.

그후 얼마 오래지 않아 빠리의 6월폭동과 그 피비린내나는 진압[233]은 유럽대륙에서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재산과 종교와 가족과 사회의 구원이라는 하나의 공동구호밑에 지배계급의 모든 분파들 즉 지주와 자본가, 거래소승냥이와 소매상인, 보호무역론자와 자유무역론자, 정부와 반대당, 승려와 무신론자, 젊은 갈보와 늙은 녀승을 한데 뭉치게 하였다! 로동계급은 도처에서 법률의 보호에서 배제되였으며 종문에서 추방을 당했으며 《협의자단속법》[234]의 단속을 받았다. 이와 같이 되여 공장주 제씨는 사양할 필요가 조금도 없게 되였다. 그들은 비단 10시간로동법을 반대할뿐만아니라 1833년이래 로동력의 《자유로운》 착취를 약간이라도 억제하려고 시도한 모든 립법을 반대하여 공공연한 반란을 일으켰다. 그것은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반란》[8]의 축소판으로서 2년이상에 걸쳐 파렴치한 폭행과 테로적광란으로써 감행되였는데 반란을 일으킨 자본가는 자기 로동자들의 생명이외에는 아무것도 위험에 빠지게 한것이 없었던만큼 이 방법은 극히 값싼것이였다.

그후에 일어난 일을 리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1833년, 1844년 및 1847년의 공장법들은 그 하나가 다른것에 수정을 가하지 않는 한 그 세개가 모두 법률상 효력을 보존하고있다는것, 그것들은 어느것이나 18세이상의 남성로동자의 로동일을 제한하지 않고있다는것, 그리고 1833년이래 의연히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8시반까지 15시간이 법정《일》이며 그 한계내에서만 소년과 부녀의 12시간로동(처음에는)과 10시간로동(후에는)이 법률에 규정된 조건하에서 수행되게 되여있었다는것 등이다.①

공장주들은 이곳저곳에서 자기들이 사용하고있던 소년과

① 이 책 321~322, 325, 327페지를 보라. —편집자

녀성로동자의 일부를, 어떤 경우에는 그 절반을 해고하기 시작하였고 그대신 거의 없어지고있던 성인남성로동자의 야간로동을 회복하였다. 그들은 10시간로동법밑에서는 그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웨쳤다!(147)

제2보는 식사를 위한 법정휴식시간에 대한것이였다. 공장감독관들의 말을 들어보자.

《로동일을 10시간으로 제한한 때부터 공장주들은 비록 아직은 실제로 자기들의 의견을 철저히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례컨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작업할 경우에 아침 9시전에 한시간과 저녁 7시후에 반시간, 도합 $1\frac{1}{2}$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제공하기만 하면 법률의 규정을 충분히 리행하는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일부 경우에 그들은 현재 점심식사에 반시간 또는 웅근 한시간을 주고있으나 그와 동시에 그들은 상술한 $1\frac{1}{2}$시간의 어떠한 부분일지라도 그것을 10시간로동일에 포함시킬 의무는 전혀 없다고 완강하게 주장하고있다.》(148)

그리하여 공장주 제씨의 주장에 의하면 식사시간에 관한 1844년법률의 세밀한 규정①은 로동자들에게 공장에 출근하기전과 공장에서 퇴근한후에, 다시말하면 자택에서 식사하는것을 허가한것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다! 그리고 또 어째서 로동자들은 아침 9시이전에 점심식사를 해서는 안되는가? 그렇지만 국왕의 법률가들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즉 법으로 규정된 식사시간은

《반드시 현실적로동일의 중간휴식에 제공되여야 하며 또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중단없이 10시간 련속적으로 일시키는것은 위법이다》.(149)

---

(147) 《공장감독관보고. 1848년 10월 31일》, 133~134페지.
(148) 《공장감독관보고. 1848년 4월 30일》, 47페지.
(149) 《공장감독관보고. 1848년 10월 31일》, 130페지.

① 이 책 326페지를 보라. —편집자

이 유쾌한 시위운동이 있은후 자본은 반란에 대한 준비로 1844년의 법률조문에 합치되는, 따라서 합법적인 조치를 강구하였다.

1844년의 법률은 물론 낮 12시이전에 일을 한 8~13세의 아동을 오후 1시이후에 다시 일시키는것을 금지하였다.[①]그러나 이 법률은 낮 12시 또는 그 이후에 로동을 시작한 아동들의 $6\frac{1}{2}$시간의 로동을 조금도 규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8세의 아동들은 낮 12시에 로동을 시작한다면 12시부터 1시까지에 한시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에 2시간, 5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에 $3\frac{1}{2}$시간을 즉 모두해서 법정의 $6\frac{1}{2}$시간을 일시킬수 있는것이다! 혹은 또 그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 아동로동의 사용을 저녁 8시 반까지 일하는 성인남성로동자들의 로동에 배합시키기 위해서는 공장주들은 아동들에게 오후 2시이전에는 일거리를 주지 않기만 하면 되였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그들을 저녁 8시 반까지 중단없이 공장내에 역류할 수 있었던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계를 1주야에 10시간이상 돌리려는 공장주들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영국에서는 8~13세의 남녀아동들을, 소년들과 부녀들이 모두 공장에서 퇴근한후에 오직 성인남자와만 함께 저녁 8시 반까지 일시키는 관습이 수립되여있는데 이것은 지금 명백히 인정되고있는 사실이다.》(150)

로동자들과 공장감독관들은 위생상 및 도덕상의 리유로 항의하였다. 그러나 자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내가 하는 일에 부당한것은 없다!

나는 재판을 요구한다.

(150) 《공장감독관보고. 1848년 10월 31일》, 142페지.

① 이 책 326페지를 보라. —편집자

나는 증서대로 위약금을 요구한다!》[235]

사실상 1850년 7월 26일 하원에 제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모든 항의에도 불구하고 1850년 7월 15일에는 257개의 공장에서 3,742명의 아동이 《관습》에 복종하고있었다.(151) 그것뿐이 아니다! 자본의 살쾡이같은 눈은 1844년의 법률이 적어도 30분간의 휴식시간 없이는 오전중의 5시간로동을 허가하지 않으나 오후로동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자본은 8세의 아동로동자를 비단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쉴새없이 고역시킬뿐만아니라 굶기기까지 하는 쾌락을 요구하였으며 또 달성하였다!

《그렇다, 그의 가슴이다.

증서에 그렇게 씌여있다!》(152)[235]

자본가들은 1844년의 법률이 아동로동을 규제하는 한에서는 그 법률의 조문을 그처럼 샤일로크식으로 고집하였으나 그것은 오직 그 법률이 《소년과 부녀》의 로동을 규제하는 한에서는 그것을 반대하는 공공연한 반란을 준비하기 위한것에 불과하였다. 우리는 《허위적리레제도》의 폐지가 이 법률의 주요목적이며 주요내용이라는것을 기억하고있다.① 공장주들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성명으로써 그들의 반란을 개시

(151) 《공장감독관보고, 1850년 10월 31일》, 5~6페지.

(152) 자본의 본성은 발전하지 못한 형태에서나 발전된 형태에서나 여전히 꼭같다. 미국남북전쟁이 시작되기 얼마전에 노예소유자들의 세력이 뉴멕시코의 령토에 강요한 법전에는 자본가가 로동자의 로동력을 산 이상 로동자는 《그의 (자본가의) 화폐이다.》라는 말이 씌여있다. 이와 동일한 견해가 로마의 귀족들간에도 류행되였다. 귀족이 평민채무자에게 선대한 대부분 화폐는 생활수단을 통하여 채무자의 피와 살로 되였다. 따라서 이 《피와 살》은 《그들의 화폐》였던것이다. 샤일로크적인 10동표[236]의 법률의 유래는 이러하다! 귀족채권자들이 때때로 티베르강의 저편에서 채무자의 고기로 만든 료리를 차리고 축연을 베풀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 랭개의 가설[237]은 그리스도의 성찬에 관한 다우메르의 가설[238]과 마찬가지로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① 이 책 325페지를 보라.—편집자

하였다. 즉 1844년의 법률에는 15시간이라는 공장일중에서 임의의 짧은 시간을 떼내여 임의로 소년과 부녀의 로동력을 사용하는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이것은

《로동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여있던 동안은 비교적 해롭지 않았다. 그러나 10시간로동법하에서는 그것은 참을수 없이 불공정한것이다》.(153)

그러므로 그들은 법률조문을 무시하고 자력으로써 구제도를 다시 실시할것이라고 극히 랭정하게 감독관들에게 통고하였다.(154) 이것은 나쁜 조언을 받고있는 로동자들자신의 리익이 된다는것인데 그것은

《로동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할수 있을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10시간로동법하에서 대브리텐의 산업패권을 유지하는 유일하게 가능한 방책이다.》(155) 《리레제도하에서는 법률위반을 적발하는것이 다소 곤난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어쨌단 말인가? 공장감독관들과 보조감독관들의 수고를 좀 덜기 위하여 이 나라의 크나큰 공업적리익을 제2차적인것으로 간주해야 한단 말인가?》(156)

이러한 모든 핑계는 물론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였다. 공장감독관들은 법적으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얼마 오래지 않아서 내무대신 죠지 그레이경에게는 공장주들의 청원서가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1848년 8월 5일부 통문명령에서 다음과 같이 공장감독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소년과 부녀를 10시간이상 일시키려는 목적으로 리레제도를 람용하는 사실이 확정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법률조문의 위반이라고 고발하지 말것.》

이 일이 있은후 공장감독관 J. 스튜어트는 15시간의 공

---

(153) 《공장감독관보고. 1848년 10월 31일》, 133페지.

(154) 레컨대 자선가 애쉬워스는 레너드 호너에게 보낸 퀘이커교도적인 불유쾌한 서한가운데서 그렇게 언명하였던것이다. (《공장감독관보고. 1849년 4월》, 4페지)

(155) 《공장감독관보고. 1848년 10월 31일》, 138페지.

(156) 우와 같은 보고, 140페지.

장일범위내에서의 소위 교대제도를 스코틀랜드전체에 허가하였고 그 결과 그곳에서는 오래지 않아 이 제도가 옛날모양으로 다시 성행하게 되였다. 이와는 달리 잉글랜드의 공장감독관들은 대신에게는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독재권이 없다는것을 성명하고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반란자들에 대한 고발을 계속하였다.

그렇지만 재판소 즉 군치안판사(157)가 무죄판결을 내린다면 아무리 재판소에 불러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러한 법정들에서는 공장주 제씨가 자기자신을 재판하였다. 실례를 들어보자. 커쇼ㅡ리드회사의 방적업자 에스크리지라는 자는 자기 공장에서 실시할 리레제도의 계획표를 자기 지방의 공장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 그것이 거절된후 그는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다. 수개월을 지나 같은 방적업자이고, 프라이디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에스크리지의 친척인 로빈슨이라는자가 에스크리지가 고안한것과 동일한 리레제도를 채용하였다는 리유로 고발되여 스톡포트시 바러구의 치안판사앞에 불려나왔다. 4명의 판사가 출석하였는데 그중 3명은 방적업자이고 수석판사는 틀림없는 바로 그 에스크리지였다. 에스크리지는 로빈슨의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이제 로빈슨에게 합법적인것은 에스크리지에게도 정당하다는것을 선언하였다. 그는 법률상 유효한 자기자신의 판결에 립각하여 즉시로 이 제도를 자기자신의 공장에서도 실시하였다.(158) 물론 이 법정의 구성자체부터가 공공연한 법률위반이였

---

(157) 이 《군치안판사》 즉 W. 코비트가 말하는바의 소위 《위대한 무급관리》는 각 군의 유지들중에서 나오는 일종의 무급군치안판사이다. 사실상 그들은 지배계급들의 세습재판소[239]를 구성하고있다.

(158) 《공장감독관보고. 1849년 4월 30일》, 21~22페지. 류사한 실례에 관해서는 같은 보고, 4~5페지를 참조하라.

다.(159) 공장감독관 하우엘은 이렇게 웨친다.

《이와 같은 종류의 재판연극은 그 교정수단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둘중의 하나이다. 즉 그러한 모든 경우에…법률을 이러한 판결에 적응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판결을 법률에 합치시키는 그러한, 결함이 적은 재판소가 재판을 하게 하든지 해야 할것이다. 유급판사가 절실히 요망된다!》(160)

국왕의 법률가들은 1848년법률에 대한 공장주들의 해석을 부당한것으로 선포하였으나 사회의 구제자들은 자기의 목적을 버리려 하지 않았다. 레너드 호너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있다.

《나는 7개의 각이한 재판관할구에서 10건을 기소하여 법률을 집행하게 하려 하였으나 오직 한건에 한해서만 치안판사의 지지를 받았다.…그후 나는 법률위반이라고 해서 이 이상 더 고발해도 쓸데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법률중 로동시간의 통일을 위하여 제정된 그 부분은…랭카셔에서는 벌써 실시되지 않고있다. 그나마 또 나와 나의 보조관들은 모두 소위 리레제도가 실시되고있는 공장들에서 소년과 부녀를 10시간이상 일시키지 않는다고 확증할 아무런 수단도 가지고있지 못하다.…1849년 4월말에 나의 관할구내에서는 벌써 114개의 공장이 이 방법에 의하여 작업하였고 그 수는 최근에 와서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장들은 지금은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13\frac{1}{2}$시간 작업하고있으며 약간의 경우에는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 15시간 작업하고있다.》(161)

이와 같은 리레제도하에서는 어떠한 감독제도도 과도로 동이 광범히 보급되는것을 방지할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단

---

(159) 쫀 호브하우스경의 공장법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져있는 윌리엄 4세 제1~2년의 법률, 제39장, 제10절에 의하여 방적공장 혹은 직물공장의 소유자 또는 그러한 소유자의 부자, 형제는 누구든지 공장법에 관계되는 사건에서는 치안판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였다.

(160) 《공장감독관보고. 1849년 4월 30일》 (22페지).

(161) 우와 같은 보고, 5페지.

언한 65명의 공장주와 29명의 공장감독의 명단을 레너드 호너는 벌써 1848년 12월에 가지고있었다.(162) 동일한 아동들과 소년들을 어떤 때에는 방적작업실에서 직조작업실 등등으로 보내며 어떤 때에는 15시간동안에 한 공장으로부터 다른 공장으로 보내군 하였다.(163) 다음과 같은 제도를 어떻게 통제할수 있겠는가,

《그 제도는 교대라는 말을 람용하여 로동자들을 화투장을 뒤섞듯이 무한히 다양하게 섞어놓고 각 개인들의 로동시간과 휴식시간을 매일 변동시켜 동일한 작업반에 속하는 로동자의 전원이 결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작업하지 않게 하고있는것이다!》(164)

그러나 현실적인 과도로동은 전혀 도외시하더라도 이 소위 리레제도는 푸리에의 우습강스러운 《단시간로동》[240]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그러한 자본의 환상의 산물이다. 단 한가지 차이점은 여기에서는 로동의 인력이 자본의 인력에로 전화되여있다는 점이다. 훌륭한 신문이 《적당한 주의와 방법으로 완성할수 있는것》의 모범이라고 찬양한 공장주들의 이 계획안을 보기로 하자. 로동자들은 흔히 12~15개의 부류에 나뉘여있었고 이러한 부류의 구성부분도 부단히 교체되였다. 15시간동안의 공장일이 계속되는 동안 자본은 로동자를 때로는 30분, 때로는 한시간씩 끌어들였다가는 또다시 밀어내여 10시간로동일이 끝날 때까지 그를 내놓지 않으면서 분산적인 얼마 안되는 시간씩 로동자들을 이리저리로 몰아댔다. 극장 무대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인물이 각이한 막의 각이한 장면에 번갈아 등장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배우가 연극이 계속되는 동안은 무대에 속하는것과 마찬가지

(162) 《공장감독관보고. 1849년 10월 31일》, 6페지.
(163) 《공장감독관보고. 1849년 4월 30일》, 21페지.
(164) 《공장감독관보고. 1848년 10월 31일》, 95페지.

로 이제 로동자들은 공장에 출근퇴근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계산에 넣지 않고도 15시간동안 공장에 속하였다. 그러므로 휴식시간은 강요된 무위의 시간으로 되였으며 그것은 소년로동자들을 술집으로 몰아갔고 젊은녀공들을 갈보집으로 몰아갔다. 자본가가 로동자들을 증가시키지 않고 자기의 기계를 12시간 내지 15시간 돌리기 위하여 날마다 생각해낸 모든 새로운 고안은 로동자로 하여금 자기의 점심식사를 어떤 틈을 타서 삽시간에 삼켜버리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10시간로동일운동당시에 공장주들은 로동자무뢰한들이 10시간로동에 대하여 12시간분의 로임을 받으려고 청원하는것이라고 웨쳤다. 지금 그들은 메달을 뒤집어놓았다. 그들은 로동력을 12시간 내지 15시간동안 마음대로 사용하고 10시간분의 로임을 지불하였다![165] 이것이 문제의 요점이였고 이것이 10시간로동법에 대한 공장주들의 해석이였다! 이자들이 다름아닌 인류애에 넘친 감격적인 자유무역론자들이였는데 그들은 곡물법반대운동당시 10년간 곡물의 자유수입하에서는 영국산업의 자력들로써 자본가들을 부유하게 하는데 10시간로동이면 충분하다는것을 일전일리까지 계산하여 로동자들에게 보여주었던것이다.[166]

2년간에 걸친 자본의 반란은 드디여 영국의 4대최고재판소의 하나인 재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최후의 승리를 획득하였는데 이 재판소는 1850년 2월 8일에 제기된 한 소송사

---

(165) 《공장감독관보고. 1849년 4월 30일》, 6페지를 보라. 그리고 《공장감독관보고. 1848년 10월 31일》에 게재된 공장감독관 하우얼과 쏜더즈의 《리레제도》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보라. 또 1849년 봄에 애쉬톤 및 그 근방의 승려들이 녀왕①에게 제출한 이 제도를 반대하는 청원서를 보라.

(166) 레컨대 R. H. 그레그의 《공장문제와 10시간로동법안》, 1837년판을 참조하라.

① 빅토리어를 말한다. 一편집자

건에서 공장주들은 1844년법률의 취지에 어긋나게 행동한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 법률자체가 이 법률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부 문구를 포함하고있다는 판결을 내리였다. 《이 판결로써 10시간로동법은 폐지되였다.》(167) 이때까지는 소년과 녀성 로동자에 대하여 리레제도를 적용하는것을 꺼리고 있던 다수의 공장주들도 이제는 두손으로 리레제도를 끌어안았다.(168)

그러나 자본의 이러한 외견상의 결정적승리에 뒤이어 즉시로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 이때까지 로동자들이 해온 반항은 매일같이 꾸준히 반복하는것이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아직은 소극적인것이였다. 이제는 그들이 랭카셔와 요크셔에서 위협적인 집회를 열고 목소리를 높여 항의하였다. 즉 소위 10시간로동법은 단순한 사기이며 의회적기만이며 그것은 실지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항의하였다. 공장감독관들은 계급적적대가 믿을수 없을 정도의 긴장상태에 도달하고있다는것을 정부에 강경하게 경고하였다. 일부 공장주들까지도 다음과 같이 불평을 말하였다.

《치안판사들의 모순된 판결로 말미암아 극히 비정상적인 무정부적상태가 퍼지게 되였다. 요크셔와 랭카셔의 법률이 서로 다르며 같은 랭카셔에도 어떤 교구의 법률은 그 린접교구의 법률과 다르다. 대도시의 공장주는 법망을 피할수 있으나 작은 지방의 공장주는 리레제도에 필요한, 그리고 더우기 로동자들을 한 공장에서 다른 공장으로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인원을 발견할수 없다.…》

그런데 로동력의 착취에서의 평등—이것은 자본의 첫째

---

(167) F. 엥겔스 《영국의 10시간로동법안》. (내가 편찬한 《신라인신문. 정치경제학평론》, 1850년 4월호, 13페지[241]에 게재되여있다.) 같은 이 《고등》 재판소는 미국남북전쟁때에도 해적선의 무장을 금지한 법률을 그 정반대로 전도시키는 애매한 문구를 발견하였다.

(168) 《공장감독관보고. 1850년 4월 30일》.

가는 인권인것이다.

이와 같은 정세하에서 공장주와 로동자간에는 타협이 성립되였고 그것은 1850년 8월 5일의 새로운 추가적인 공장법[195]으로서 의회의 비준을 받았다. 《소년과 부녀》의 로동일은 1주일간의 첫 5일간은 10시간에서 $10\frac{1}{2}$시간으로 연장되였고 토요일에는 $7\frac{1}{2}$시간으로 제한되였다. 로동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사이에 수행되여야 하되(169) 식사를 위한 $1\frac{1}{2}$시간의 휴식을 두어야 하며 이 식사시간은 동일한 시간에, 그나마 1844년의 규정에 따라서 주어야 한다, 등등. 이것으로써 리레제도는 영영 폐지되였다.(170) 아동로동에 대해서는 1844년의 법률이 그대로 유효하였다.

어떤 부류에 속하는 공장주들은 이번에도 이전과 같이 무산계급아동에 대한 특수한 령주권을 확보하였다. 그것은 견직물공장주들이였다. 1833년에 그들은 위협적으로 다음과 같이 웨쳤던것이다. 《만약 온갖 년령의 아동들을 하루 10시간씩 일시키는 자유를 빼앗긴다면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공장은 멎게 될것이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충분한 수의 11세이상 아동을 살수 없다는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희망하는 특권을 강탈하였다. 이러한 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것이 후일의 조사에서 판명되였다.(171)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상우에 앉히여주지 않으면 일할수 없을만한 어린 아동

---

(169) 겨울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의 사이로 바꾸어도 된다.

(170) 《현행법 (1850년) 은 하나의 타협으로서 이에 의하여 로동자는 로동시간에서 제한을 받고있는 사람들의 로동이 같은 시간에 시작되고 같은 시간에 끝나게 하는 리익을 얻은 대신에 10시간로동법의 은혜를 포기하였다.》 (《공장감독관보고. 1852년 4월 30일》, 14페지)

(171) 《공장감독관보고. 1844년 9월 30일》, 13페지.

들의 피로써 그들은 계속 10년간이나 하루에 10시간씩 명주실을 뽑아냈던것이다.(172) 1844년의 법률은 비록 그들에게서 11세미만의 아동을 하루에 $6\frac{1}{2}$시간이상 일시키는 《자유》를 《박탈》하였지만 그대신 이 법률은 그들에게 11세 내지 13세의 아동을 하루에 10시간씩 일시키는 특권을 보장하여주었으며 또 다른 공장아동들에게는 적용되는 취학의무를 면제하여주었다.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것이 구실로 되였다.

《직물이 섬세하기때문에 손가락이 부드러워야 하며 이것은 오직 어려서부터 공장에 들어와야 보장될수 있다.》(173)

남부로씨야에서 유각가축이 가죽과 지방때문에 도살되는것과 마찬가지로 아동들은 부드러운 손가락때문에 도살되였다. 드디여 1850년에는 1844년에 허여된 특권이 실꼬는 부문과 실감는 부문에만 남아있게 되였다. 그러나 자기의 《자유》를 박탈당한 자본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이 부문들에서는 11세 내지 13세의 아동의 로동시간이 10시간에서 $10\frac{1}{2}$시간으로 연장되였다. 그 구실은 《견직물공장의 로동은 다른 공장의 로동보다 헐하며 또 건강에 덜 유해하다.》(174)는것이다. 후에 이르러 정부의 의학적조사에 의하면 사실은 그와 반대이다. 즉

《견직물생산지방의 평균사망률은 극히 높고 주민중 녀성들의 사망률은 심지어 랭카셔의 면방직업지방보다도 더 높다.》(175)

---

(172) 《공장감독관보고. 1844년 9월 30일》, 13페지.

(173) 《공장감독관보고. 1846년 10월 31일》, 20페지.

(174) 《공장감독관보고. 1861년 10월 31일》, 26페지.

(175) 우와 같은 보고, 27페지. 일반적으로 공장법의 적용을 받는 로동자주민의 육체적상태는 현저하게 개선되였다. 의사들의 모든 증언은 이 점에서 일치하며 또 각이한 시기의 나자신의 관찰도 나로 하여금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년기의 아동의 비상히 높은 사망률은 고사하고라도 그린하우의사의 공식보고는 공장지방의 건강상태가 《정상적인 건강상태에 있는 농업지방》보다 나쁘다는것을 보여주

반년마다 반복되는 공장감독관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행위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있다.(176)

1850년의 법률은 《소년과 부녀》를 위하여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의 15시간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12시간으로 변경시킨데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 법률은 아동들에 대해서는 달라진것이 없으며 비록 아동들의 총로동시간은 $6\frac{1}{2}$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할지라도 의연히 12시간이 시작되기전 $\frac{1}{2}$시간과 그 시간이 끝난후 $2\frac{1}{2}$시간은 의연히 아동을 리용할수 있었던것이다. 이 법률이 심의될 때에 공장감독관들은 이와 같은 례외의 파렴치한 람용에 관한 통계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소용이 없었다. 경기가 좋은 해에는 아동들을 보조로 붙이면서 성인로동자의 로동일을 다시 15시간까지 연장하려는 의도가 배후에 숨어있

고 있다. 그 증거로 나는 특히 1861년의 그의 보고중의 다음표를 인용한다.

공업에 종사하고있는 성년남자의 백분률	남자 10만명중 폐병 사망자수	지 방 명	녀자 10만명중 폐병 사망자수	공업에 종사하고있는 성년녀자의 백분률	녀자의 직업종류
14.9	598	위 간	644	18.0	면
42.6	708	블랙번	734	34.9	면
37.3	547	헬리팩스	564	20.4	털 실
41.9	611	브랫포드	603	30.0	털 실
31.0	691	매클즈필드	804	26.0	명 주
14.9	588	리 크	705	17.2	명 주
36.6	721	스토크-온-트렌트	665	19.3	도자기
30.4	726	울스탄톤	727	13.9	도자기
—	305	8개의 건강한 농업지방	340	—	

(176) 주지하는바와 같이 영국의 《자유무역론자》들은 견방직공업을 위한 보호관세률 마지못해 단념하였던것이다. 이제는 프랑스로부터의 수입을 막기 위한 보호률 대신하는것은 영국의 공장아동들의 무보호상태이다.

었던것이다. 그후 3년간의 경험은 그러한 시도가 성인남성로동자들의 반항에 부닥쳐 실패하지 않을수 없었다는것을 보여주었다.(177) 그러므로 1850년의 법률에는 드디여 1853년에 이르러 《아침에는 소년과 부녀의 로동이 시작되기전에 그리고 저녁에는 이들의 로동이 끝난후에 아동로동을 사용하는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보충되였다. 이때로부터 1850년의 공장법은 소수의 례외를 제외하고는 그것이 적용되는 산업부문들에서 일체 로동자들의 로동일을 규제하게 되였다.(178) 최초의 공장법이 발포된 이래 이때까지 반세기가 경과하였다.(179)

립법은 1845년의 《날염공장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자기본래의 범위를 벗어났다. 자본이 이 새로운 《탈선행위》를 용인할 때의 그 불만은 이 법률의 모든 구절에서 엿볼수 있다! 이 법률은 8~13세의 아동과 부녀의 로동일을 식사를 위한 아무런 법정휴식시간도 없이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의 16시간으로 제한하고있다. 그것은 13세이상의 남성로동자를 주야를 통하여 마음대로 로동시키는것을 허용하고있

---

(177) 《공장감독관보고. 1853년 4월 30일》, 30페지.

(178) 영국면방직업이 가장 번영한 해인 1859년과 1860년에 약간의 공장주들은 초과시간에 대한 높은 로임이라는 미끼로 성년남자방적공 등등으로 하여금 로동일의 연장에 찬동하게 하려고 시도하였다. 손으로 움직이는 뮬방적기와 자동방적기에서 일하는 방적공들은 자기들의 고용주에게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시도에 종말을 짓게 하였는데 이 의견서에는 특히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생활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되여있다. 그리고 우리가 1주일에 다른 로동자들보다 거의 2일 (20시간) 이나 더 오래 공장에 얽매여있는 이상 우리는 자기들이 이 나라의 노예와 같다는것을 느끼게 되며 또 우리자신과 우리의 후손에게 육체적 및 도덕적으로 해독을 주는 그러한 제도를 우리자신이 영구화하고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량심상 가책을 느낀다.…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부터 $1\frac{1}{2}$시간의 법정휴식시간의 공제도 포함하고 6시부터 6시까지, 1주일간 60시간이상은 1분도 더 로동하지 않겠다는것을 귀하에게 정중히 통고하는바이다.》(《공장감독관보고. 1860년 4월 30일》, 30페지)

(179) 어떻게 이 법률의 어구를 리용하여 이 법률을 파괴하는가에 관하여는 의회보고인 《공장단속법》(1859년 8월 9일)과 거기에 들어있는 레너드 호너의 《감독관들이 현재 성행하고있는 비법적작업을 방지할수 있도록 공장법을 개정하기 위한 제안》을 참조하라.

다.(180) 그것은 의회의 팔삭둥이인것이다.(181)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현대적생산방식의 특수한 산물인 대공업부문들에서 승리함으로써 이미 승리를 달성하였다. 1853~1860년의 대공업부문들의 놀라운 발전과 그에 따르는 공장로동자들의 육체적 및 정신적 부활은 장님들의 눈에도 보일만한것이였다. 반세기동안의 국내전쟁에 의하여 한걸음한걸음 로동일의 법률적 제한과 규제를 강요당하게 된 공장주들 자신이 이 공업부문들과 아직도 《자유로운》 착취분야들간의 대조를 자랑삼아 지적하였다.(182) 《정치경제학》의 위선자들은 새삼스럽게 로동일의 법적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그들의 《과학》의 새로운 특징적인 성과라고 선포하였다.(183) 쉽게 리해할수 있는 일이지만 대공장주들이 불가피한것에 순종하지 않을수 없어서 그에 순응하게 된후에는 자본의 저항력은 점차 약화되였고 이에 반하여 로동계급의 공격력은, 직접적으로는 리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사회층들속에서 로동계급의 동맹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강화되였다. 1860년 이래 비교적 급속히 발전한것은 이에 유래하는것이다.

염색공장과 표백공장(184)에는 1860년에, 레스공장과 양

(180) 《지난 반년간 (1857년) 나의 관할구에서는 8세 및 그 이상의 아동들이 사실상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혹사당하고있었다.》 (《공장감독관보고. 1857년 10월 31일》, 39페지)

(181) 《날염공장법은 교육에 관한 규정으로 보나 로동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보나 모두 실패로 인정되고있다.》 (《공장감독관보고. 1862년 10월 31일》, 52페지)

(182) 레컨대 1863년 3월 24일 신문 《타임스》에 보낸 편지에서 E. 포터가 그러한 견해를 표명하고있다. 《타임스》는 그에게 10시간로동법을 반대하는 공장주들의 반란을 상기시키고있다.①

(183) 특히 투크의 《물가사》의 공저자이며 출판자인 W. 뉴마치씨가 그러한 견해를 표명하였다. 여론에 대하여 비겁한 양보를 하는것이 과연 과학적진보이겠는가?

(184) 1860년에 발포된 표백공장과 염색공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로동일

① 이 책 662~665페지를 보라. —편집자

말공장에는 1861년에 각각 1850년공장법이 적용되게 되였다. 《아동로동조사위원회》의 제1차보고(1863년)의 결과 일체 도자기제조업(비단 도자기업뿐만아니라), 성냥제조업, 뢰관제조업, 탄약제조업, 도배지공장, 면비로도제조업 그리고 《완성작업》이라는 명칭하에 총괄되여있는 허다한 과정들이 역시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되였다. 1863년에는 《야외표백업》(185)과 빵제조업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였는데 이

은 1861년 8월 1일부터 우선 12시간으로 단축하였다가 1862년 8월 1일부터 종국적으로 10시간으로 즉 평일에는 $10\frac{1}{2}$시간으로, 토요일에는 $7\frac{1}{2}$시간으로 단축되기로 되여있다.

그러나 상서롭지 못한 해 1862년이 도래하였을 때 이전 연극이 되풀이되였다. 공장주 제씨는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소년과 부녀의 12시간로동을 금후 1년만 더 허가해달라고 요청하였다.…《지금의 영업상태하에서 (면화기근시에) 만약 로동자들에게 하루 12시간씩 로동하고 가급적 많은 로임을 받도록 허가해준다면 그것은 로동자들에게 대단히 유리할것이다.…이 취지에서 작성된 법률안을 하원에 제출하는데는 이미 성공하였던것이다. 그것이 부결된것은 스코틀랜드의 표백공장로동자들의 선동의 결과였다. (《공장감독관보고. 1862년 10월 31일》, 14~15페지)로동자들의 이름으로 말하는체 하다가 바로 그 로동자들에게 이처럼 반격을 당한 자본은, 1860년의 법률도 《로동보호》를 위한 일체 의회법률과 마찬가지로 의미가 애매한 문구로 씌여있었으므로 《다림질공》과 《완성공》은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구실을 찾을수 있다는것을 법률가의 안경의 도움으로 발견하였다. 언제나 자본의 충실한 노복인 영국의 사법권은 《민사재판소》를 통하여 법률의 이와 같은 곡해를 승인하였다. 《그것은 로동자사이에 큰 불만을 일으켰는데 어구의 정의가 불충분하다는 구실밑에 립법의 명백한 의도를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것은 유감천만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공장감독관보고. 1862년 10월 31일》, 18페지)

(185) 《야외표백업자》들은 자기들이 부녀에게 야간로동을 시키고있지 않다는 허위적인 성명에 의하여 1860년의 표백공장법의 적용을 면제받고있었다. 이 거짓은 공장감독관들에 의하여 폭로되였고 한편 의회도 또한 로동자들의 진정서에 의하여 《야외표백》은 향기롭고 서늘한 잔디밭우에서 진행되는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게 되였다. 이 야외표백업에서는 화씨 90~100도의 건조실이 사용되고있으며 거기에서는 주로 소녀들이 일하고 있다. 《랭각》이라는 술어까지 사용되고있는데 이것은 때때로 건조실에서 밖으로 나가 바람을 쏘이는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건조실에는 15명의 소녀가 있고 온도는 보통아마포의 경우에는 80~90도이고 고급아마포의 경우에는 100도 또는 그 이상이다. 복판에 밀폐식난로를 놓은 약 10피트평방의 조그만 방에서 12명의 소녀가 다림질을 하며 또 천을 개는 일을 한다 (고급아마포 등등을). 소녀들은 무섭게 달아있는 난로를 삥 둘러싸고 서있으며 난로의 열은 다림질공들이 다리고있는 아마포를 삽시간에 마르게 한다. 이 녀공들에게는 시간수가 제한되여있지 않다. 일감이 많을 때에는 그들은 여러날을 계속하여 밤 9시 또는 12시까지 일한다.》 (《공장감독관보고. 1862년 10월 31일》, 56페지) 한 의사는 다음과 같이 언명한다. 《바람을 쏘이기 위한 특별한 시간이 있는것은 아니다. 그

법에 의하여 전자는 특이 아동, 소년 및 부녀의 야간로동(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을 금지당하였고 후자는 저녁 9시와 아침 5시사이에 18세미만의 빵제조공의 로동을 리용하는것을 금지당하였다.① 후에 이르러 상기 위원회는 농업과 광산업과 운수업을 제외한 영국의 일체 중요산업부문들로부터 《자유》를 박탈하려는 위협적인 제안을 내놓았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는 후에 론하려 한다.(185a)②

7. 표준로동일획득을 위한 투쟁. 영국의 공장립법이 다른 나라에 미친 반작용

러나 온도가 너무 높아 견디기 어렵게 되거나 혹은 녀공들이 손이 땀으로 더러워질 때에는 그들에게 몇분동안 밖에 나가는것을 허가해준다.…이 녀공들의 질병을 취급하여온 나의 경험은 나로 하여금 그들의 건강상태가 방적녀공들의 건강상태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한다. (그런데 자본은 의회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그들을 뤼벤스식으로 원기왕성한 건강체로 묘사하였다!) 그들에게서 흔히 보게 되는 병은 폐병, 기관지염, 자궁병, 악성히스테리, 풍습이다. 이 병들이 발생하게 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원인은 그들의 작업실의 공기가 지나치게 더운것과 그들의 겨울에 집에 돌아갈 때에 축축한 찬 공기로부터 그들을 보호할만한 따뜻한 의복이 그들에게 없기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공장감독관보고. 1862년 10월 31일》, 56~57페지) 그후에야 락천적인 《야외표백업자》들로부터 얻어낸 1863년의 법률에 관하여 공장감독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이 법률은 비록 외견상 그가 보호하는것 같이 되여있는 로동보호를 로동자에게 보호하여주지 못할뿐만아니라…그것은 또 아동 및 부녀가 저녁 8시이후에 작업하는 현장이 발각되였을 때에 비로소 로동의 보호가 시작되도록 작성되였으며 그나마 그런 경우에 있어서까지도 그것이 규정한 증명방법에 애매한것이 많이 있어서 법률위반자는 처벌을 받는 일이 거의 없다.》(우와 같은 보고, 52페지) 《이 법률은 인도적 및 교육적 목적을 추구하는 법률로서는 완전히 실패한것이다. 그것은 년령에 대한 제한도 없고 남녀의 차별도 없고 또 표백공장부근의 가족의 사회적관습에도 주의를 돌리지 않고 부녀와 아동에게 하루에 14시간씩—식사시간은 형편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또 아마 그보다 더 장시간 로동하는것을 허용하고있는데—이 경우에는 허용이라기보다는 강제이다—이것을 인도적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공장감독관보고. 1863년 4월 30일》, 40페지)

(185a) 제2판 주: 내가 이 글을 쓴 1866년이래 또다시 반동이 시작되였다.

① 이 책 289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이 책 565~566페지를 보라.—편집자

독자는 로동이 자본에 예속하는데 의하여 발생하는 생산방식 그자체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잉여가치의 생산 또는 잉여로동의 착취가 자본주의적생산의 독특한 내용과 목적을 이룬다는것을 기억할것이다.① 독자는 또 우리가 이때까지 전개하여온 견지에서는 오직 독립적인 따라서 법률상 성년인 로동자만 이 상품판매자로서 자본가와 계약을 맺는다는것을 기억할것이다.② 그러므로 만약 우리의 력사적개관에서 주요한 역할을 노는것이 한편으로는 현대산업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육체상 및 법률상 미성년자의 로동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전자는 오직 로동착취의 특수한 분야로서 인정되며 후자는 오직 이 로동착취의 특히 뚜렷한 실례로서 인정되고있었을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앞으로의 서술을 미리 예상하지 않고 단순히 력사적사실의 련관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을수 있다.

첫째, 로동일을 무제한으로 또 무자비하게 연장하려는 자본의 충동은 우선 수력과 증기와 기계에 의하여 맨처음 혁명이 일어난 산업부문들에서 즉 현대적생산방식의 최초의 창조물인 면화, 양모, 아마, 잠견 방적업과 직조업에서 우선 충족된다. 물질적생산방식의 변와와 이에 상응하는 생산자들의 사회적관계의 변화(186)는 처음에는 로동일의 무제한한 연장을 가져오며 다음에는 반대로 휴식시간을 포함하는 로동일을 법률로 제한하며 규정하며 균일화하는 사회적통제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19세기 전반기에는 립법에 의한 이러한 통제는 다만 례외적인것으로 나타났다.(187) 그러나 이 통제가 새로

(186) 《이 두 계급 (자본가와 로동자) 의 각자의 행동은 그들이 처해있는 호상관계의 결과였다.》 (《공장감독관보고. 1848년 10월 31일》, 113페지)

(187) 《제한을 받은 각종 업종은 증기력 또는 수력을 사용하는 직물제조와 이러저

① 이 책 216~218, 265~270, 305~307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이 책 195~197페지를 보라. —편집자

운 생산방식의 최초의 령역을 다 정복하자마자 비록 다른 많은 생산부문이 본래의 공장제도를 취하였을뿐만아니라 도기제조소, 유리공장 등등과 같은 다소간 시대에 뒤떨어진 경영방식을 가지고있는 공장제수공업과 또 빵제조업 같은 구식수공업과 끝으로 못제조업 등등과 같은 분산적인 소위 가내로동(188)까지도 벌써 오래전부터 공장과 마찬가지 정도로 자본주의적착취하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발견되였다. 그러므로 립법은 점차적으로 자기의 례외적인 성격을 버리지 않을수 없게 되였고 또는 영국에서와 같이 립법이 로마의 결의법처럼 행동하는 곳에서는 로동이 수행되고있는 모든 가옥을 공장이라고 선포하지 않을수 없었다.(189)

둘째, 약간의 생산부문에서의 로동일통제의 력사와 다른 생산부문에서 지금도 계속되고있는 이 통제를 위한 투쟁은 고립된 로동자 즉 자기 로동력의 《자유로운》 판매자로서의 로동자는 자본주의적생산의 일정한 성숙단계에서는 무저항적으로 굴복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표준로동일의 창조는 장기간에 걸쳐 자본가계급과 로동자계급간에서 다다소소로 은연중에 진행된 내란의 산물인것이다. 이 투쟁은 현대산업의 범위에서 개시되는만큼 그것은 우선 현대산업의 모국인 영국에서 벌어진다.(190) 영국의 공장로동자들은

러한 관련을 가지고있었다. 어떤 기업이 공장감독을 받을수 있기 위해서는 두개의 조건이 필요하였다. 그것은 즉 증기력 또는 수력의 사용과 일정한 종류의 섬유의 가공이였다.》(《공장감독관보고. 1864년 10월 31일》, 8페지)

(188) 이 소위 가내공업의 상태에 관하여는 아동로동조사위원회의 최근의 보고에 극히 많은 자료가 있다.

(189) 《최근 의회 (1864년) 의 법률들은…그 습관이 각이한 각양각색의 업종을 포괄하고있다. 기계를 움직이기 위한 기계력의 사용은 벌써 종전과 같이 법률상 공장으로 간주하는데 필요한 조건으로 되지 않는다.》(《공장감독관보고. 1864년 10월 31일》, 8페지)

(190) 대륙의 자유주의락원인 벨지끄는 이 운동의 흔적도 보여주지 않는다. 벨지끄

비단 영국의 로동자계급뿐만아니라 현대로동자계급일반의 투사였으며 마찬가지로 그들의 리론가들도 자본의 리론에 대한 최초의 도전자들이였다.(191) 그러므로 공장철학자 유어는 《로동의 완전한 자유》를 위하여 당당하게 싸우는 자본에 대항해서 영국로동계급은 겨우 《공장법이라는 노예제도》를 자기의 기치로 삼았다는 사실을 그들의 씻을수 없는 치욕이라고 비난하고있다.(192)

프랑스는 영국을 뒤따라 절뚝거리며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다. 12시간로동법(193)이 탄생하기 위하여는 2월혁명[242]이

에서는 탄광과 광산에서까지 각종 년령의 남녀로동자들은 시간의 장단과 시기의 여하를 가리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게 소비된다. 거기서는 종업원 매 1,000명당 733명은 남자, 83명은 녀자, 135명은 16세미만의 소년, 49명은 16세미만의 소녀이다. 용광로 등등에서는 매 1,000명당 668명이 남자, 149명이 녀자, 98명이 16세미만의 소년, 85명이 16세미만의 소녀이다. 그런데다가 성숙 또는 미성숙 로동력에 대한 혹심한 착취에 비하여 지불되는 로임은 극히 적으며 1일 평균 남자는 2실링 8펜스, 녀자는 1실링 8펜스, 소년은 1실링 $2\frac{1}{2}$펜스이다. 그러나 그대신 벨지끄가 1863년에 수출한 석탄, 철 등등의 량과 가치는 1850년에 비하여 거의 2배로 되였다.

(191) 로버트 오엔이 현세기의 첫 10년이 지나서 얼마 안되여 로동일제한의 필요성을 비단 리론적으로 주장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뉴라나크의 자기공장에서 10시간로동일을 실제로 실시하였을 때 세인은 고가 주장한 《생산적로동과 아동교육과의 결합》을 조소하며 또는 그가 창설한 로동자의 협동조합적기업을 조소한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것을 공산주의적공상이라고 조소하였던것이다. 현시기에 와서는 첫째 공상은 공장법으로 되였고 둘째 공상은 전체 《공장법》에서의 공식적문구로 나타나있고 셋째 공상은 반동적기만의 엄호물로까지 되고있다.

(192) 유어 《공상철학》(프랑스어번역판), 1836년 빠리판, 제2권, 39~40, 67~77페지 및 기타.

(193) 《1855년의 빠리국제통계회의》의 보고에는 특히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공장과 작업장에서의 매일의 로동의 계속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프랑스의 법률은 이 로동을 일정한 고정적인 시간 (즉 기간) 의 범위내에 국한하지 않으며 오직 아동로동에 대해서만 오전 5시부터 밤 9시까지의 기간을 규정하고있을뿐이다. 그러므로 일부 공장주는 이 치명적인 침묵이 그들에게 주는 권리를 리용하여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날마다 중단없이 일을 시키고있다. 그들은 이렇게 하기 위하여 로동자를 2교대로 사용하고있는데 그중 어느 반도 12시간이상을 작업장에서 지내지는 않으나 공장의 작업은 주야로 계속된다. 법률은 준수되고있으나 인도도 준수되고있는가?》《야간로동이 인간유기체에 주는 파괴적영향》이외에 《어둑컴컴한 하나의 동일한 작업장내에서 남녀가 밤에 함께 일하는데로부터 생겨나는 파멸적인 영향》도 역시 강조되고있다.

필요하였는데 그 법률도 영국의 원형에 비하여 결함이 퍽 많은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혁명적방법은 역시 자기의 특유한 우점을 나타내고있다. 프랑스의 혁명적방법은 일거에 전체 작업장과 공장에 대하여 차별없이 로동일의 동일한 한계를 부과하고있는데 이에 비하여 영국의 립법은 혹은 이런 점 혹은 저런 점에서 사태의 압력에 굴복하는것이고 또 새로운 재판상 분규를 꾸며내기 쉬운것이다.(194) 다른 한편 영국에서는 오직 아동과 소년과 부녀를 위해서만 쟁취되였으며 또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일반적권리로서 요구되기 시작한 그것을 프랑스의 법률은 원칙으로서 선포하고있다.(195)

북아메리카합중국에서는 노예제도가 공화국의 일부분을 병신으로 만들고있던 때에는 온갖 독립적인 로동운동은 마비상태에 있었다. 백인의 로동은 흑인의 로동이 치욕적락인을 찍히우고있는 곳에서는 도저히 해방될수 없다. 그러나 노예제도의 죽음으로부터 즉시로 새로운 젊은 생명이 싹텄다. 남북전쟁[8]의 첫 성과는 8시간로동일을 위한 운동이였는데 이 운동은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뉴잉글랜드에서 캘리포니아까지 특별렬차의 쾌속도로 퍼져나갔다. 볼티모에서 열린 전

---

(194) 《레컨대 나의 관할구에서는 동일한 공장건물에서 동일한 공장주가 표백업자와 염색업자로서는 〈표백공장및염색공장법〉의 적용을 받으며 날염업자로서는 〈날염공장법〉의 적용을 받으며 완성업자로서는 〈공장법〉의 적용을 받는다…》(《공장감독관보고. 1861년 10월 31일》, 20페지에 실린 베이커씨의 보고) 이 법률들의 각이한 규정과 그로부터 생기는 분규를 렬거한후에 베이커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공장소유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법률을 회피할 생각을 가진다면 이 세개의 의회적법률의 집행을 보장하는것이 얼마나 곤난하겠는가 하는것은 알만하다.》(《1855년의 빠리국제통계회의》, 21페지) 그대신 이것은 아마 법률가 제씨에게 소송사건을 보장할것이다.

(195) 그리하여 드디여 공장감독관들은 과감하게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항의(로동시간의 법률적제한을 반대하는 자본의 항의)는 로동의 권리라는 대원칙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안된다.…설사 로동자가 기진맥진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로동자의 로동에 대하여 행사하는 고용주의 권리가 중지되고 로동자의 시간이 자기자신의것으로 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는것이다.》(《공장감독관보고. 1862년 10월 31일》, 54페지)

국로동자대회[243](1866년 8월)는 다음과 같이 성명하고있다.

《이 나라의 로동을 자본주의적노예제도로부터 해방시키는데 필요한 현재의 최대의 급선무는 아메리카련방의 전체 주에서 표준로동일을 8시간으로 하는 법률을 반포하는것이다. 우리는 이 영예로운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할것을 결의하였다.》(196)

이와 때를 같이하여(1866년 9월초)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로동자대회》는 런던의 총무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로동일의 제한은, 그것없이는 로동자의 해방을 위한 앞으로의 모든 노력이 좌절되지 않을수 없는 그러한 예비조건이다.…우리는 법적으로 로동일을 8시간으로 제한할것을 제안한다.》[244]

이와 같이 대서양의 량쪽에 걸쳐서 생산관계 그자체로부터 본능적으로 장성한 로동운동은 영국의 공장감독관 R. J. 쏜더즈의 다음과 같은 말이 정당함을 확증하여준다.

《만약 미리 로동일을 제한하지 않으며 또 제정된 로동일의 한계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면 사회개혁을 위한 이 이상의 방책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그 성공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가질수 없다.》(197)

우리의 로동자는 생산과정에 들어갈 때와는 다르게 되여 생산과정에서 나오게 된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장에서는 그는 《로동력》이라는 상품의 소유자로서 다른 상품의 소유자와 대립하였으며 상품소유자가 상품소유자와

---

(196) 《우리들 던커크의 로동자들은, 현제도하에서 요구되는 로동시간의 길이는 너무 길어서 로동자에게 휴식과 발전을 위한 시간을 남겨주지 않으며 도리여 로동자를 노예제도보다 별로 나을것이 없는 예속상태에까지 끌어내린다는것을 언명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8시간이 1로동일로서 충분하며 또 그것이 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과 유력한 공간인 신문이 우리에게 방조를 줄것을 호소하며…누구든지 이 방조를 거부하는자는 모두 로동의 개량과 로동의 권리에 대한 원쑤로 간주할것이라는것을 결의한다.》(뉴욕주 던커크로동자의 결의, 1866년)

(197) 《공장감독관보고. 1848년 10월 31일》, 112페지.

대립하였다. 그가 자본가에게 자기의 로동력을 팔 때에 맺은 계약은 그가 자기자신을 자유로 처분한다는것을 이를테면 흰 종이에 검은 글자를 써놓은것과 같이 똑똑히 증명한것이였다. 거래가 끝나면 그는 《결코 자유로운 행위자가 아니였다》는것, 그가 자기의 로동력을 자유롭게 판매하는 시간은 그가 그것을 판매하도록 강요당하고있는 시간이라는것(198), 사실상 그의 흡수자는 《한점의 살, 한오리의 힘줄, 한방울의 피라도 아직 착취할수만 있다면》(199) 그를 놓아주지 않는다는것이 폭로된다. 로동자들은 자기들을 괴롭히는 뱀[246]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하여 단결하여 계급으로서, 하나의 국법을 즉 자본과의 자유의사적계약에 의하여 자신과 그 동족을 팔아서 죽음과 노예상태로 떨어뜨리는것을 그들자신이 저지하는 강력한 사회적방지수단을 탈취하여야 한다.(200) 《양보할수 없는 인권》의 화려한 목록[248] 대신에 《드디여 로동자가 판매하는 시간이 어느때에 끝나는가, 그자신에 속하는 시각이 어느때에 시작되는가 하는것을 분명하게 하

---

(198) 《이밖에도 이러한 궤계 (레컨대 1848~1850년의 자본의 술책) 는 그처럼 빈번히 제기되는 다음과 같은 주장의 부당성을 론박할 여지없이 증명하였다. 그 주장이란 마치 로동자들은 보호가 필요없고 로동자들은 그들의 유일한 재산인 그들의 두손의 로동과 그들의 이마의 땀을 그야말로 자유롭게 처분할수 있는 행위자라는것이다.》(《공장감독관보고. 1850년 4월 30일》, 45페지) 《만약 이런 말을 쓸수 있다면 자유로운 로동은 자유로운 나라에서까지도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이라는 강력한 팔뚝이 필요한것이다.》(《공장감독관보고. 1864년 10월 31일》, 34페지) 《식사시간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형편에서 1주야에 14시간씩…로동하는것을 허용하는것, 이것은 강제하는것과 같은것이지만…》(《공장감독관보고. 1863년 4월 30일》, 40페지)

(199) 프리드리히 엥겔스 《영국의 10시간로동법안》, 내가 편집한 《신라인신문. 정치경제평론》, 1850년 4월호, 5페지[245]에 실려있다.

(200) 10시간로동법안은 그 적용을 받는 산업부문들에서 《로동자들을 완전한 퇴화로부터 구제하였으며 그들의 건강상태를 보호하였다.》(《공장감독관보고. 1859년 10월 31일》, 47페지) 《자본 (공장에서의) 은 작업에 종사하는 로동자들의 건강과 도덕에 해독을 끼치지 않고서는 기계를 제한된 시간이상에 걸쳐 운전시킬수 없다. 그런데 로동자들은 자기자신을 방위할수 없다.》(우와 같은 보고, 8페지)

는》 (201)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로동일의 소박한 대헌장[247]이 등장한다. 이 얼마나 큰 변화인가![249]

(201) 《그보다도 더 큰 리익은 로동자자신의 시간과 그의 고용주의 시간사이에 드디여 명백한 한계가 그어졌다는 점에 있다. 로동자는 이제는 언제 자기가 판매하는 시간이 끝나고 언제부터 자기자신의 시간이 시작되는가를 알고있으며 또 그는 이것을 미리부터 정확히 알고있음으로써 자기자신의 시간을 자기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미리 배정할수 있게 된다.》 (《공장감독관보고. 1859년 10월 31일》, 52페지) 《그것 (공장법)은 로동자들을 자기자신의 시간의 주인으로 만듦으로써 그들을 정치적권력의 장악에로 향하게 하는 도덕적힘을 그들에게 부여하였다.》 (우와 같은 보고, 47페지) 공장감독관들은 조심스러운 풍자와 극히 신중한 표현으로 현재의 10시간로동법안은 자본의 단순한 화신으로서의 자본가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잔인성으로부터 자본가까지도 어느 정도 해방하여 그에게 약간의 《교양》을 위한 시간을 주었다는것을 암시하고있다. 이전에는 《고용주는 돈벌이이외의 다른 일을 위한 어떠한 시간도 가져본적이 없고 로동자는 로동이외의 다른 일을 위한 어떠한 시간도 가져본적이 없었던것이다.》 (우와 같은 보고, 48페지)

제 9 장

잉여가치률과 잉여가치총량

이 장에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로동력의 가치를, 따라서 로동력의 재생산 또는 유지에 필요한 로동일부분을 주어진 불변량이라고 가정한다.

이와 같이 전제하면 한 로동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자본가에게 제공하는 잉여가치의 총량도 잉여가치률과 동시에 주어진것으로 된다. 례컨대 필요로동이 하루에 6시간이고 그것이 3실링=1탈레르의 금량으로 표현된다면 1탈레르는 1로동력의 일가치 또는 1로동력을 사는데 선대된 자본가치이다. 더 나아가 만약 잉여가치률을 100%라고 한다면 이 1탈레르의 가변자본은 1탈레르의 잉여가치량을 생산할것이다. 바꾸어말하면 로동자는 매일 6시간의 잉여로동량을 제공할것이다.

그러나 가변자본은 자본가가 동시에 사용하는 로동력전체의 총가치의 화폐적표현이다. 그러므로 가변자본의 가치는 1로동력의 평균가치에 사용되는 로동력의 수를 승한것과 같다. 따라서 로동력의 가치가 주어진 경우에 가변자본의 량은 동시적으로 사용되는 로동자수에 정비례한다. 그리하여 만약 1로동력의 일가치=1탈레르라고 한다면 매일 100로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는 100탈레르의 자본을, 매일 n로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는 n탈레르의 자본을 선대해야 할것이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만약 1탈레르의 가변자본 즉 1로동

력의 일가치가 매일 1탈레르의 잉여가치를 생산한다면 100탈레르의 가변자본은 매일 100탈레르의 잉여가치를 생산할것이며 n탈레르의 가변자본은 매일 1탈레르×n의 잉여가치를 생산할것이다. 따라서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량은 한 로동자의 1로동일이 제공하는 잉여가치에 사용되는 로동자의 수를 승한것과 같다. 그러나 더 나아가 한 로동자가 생산하는 잉여가치량은 로동력의 가치가 주어진 경우에는 잉여가치률에 의하여 규정되기때문에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1의 법칙이 나온다. 즉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은 선대된 가변자본의 량에 잉여가치률을 승한것과 같다. 바꾸어말하면 이것은 동일한 자본가에게 동시적으로 착취당하는 로동력의 총수와 개별적로동력의 착취도와의 복비에 의하여 규정된다.①

그러므로 만약 잉여가치량을 M으로, 한 로동자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제공하는 잉여가치를 m으로, 1로동력의 구매에 매일 선대되는 가변자본을 v로, 가변자본의 총액을 V로, 평균적로동력의 가치를 k로, 그 착취도를 $\frac{a'}{a}$ ($\frac{\text{잉여로동}}{\text{필요로동}}$)로, 그리고 사용되는 로동자의 수를 n으로 각각 표시한다면 다음과 같은 공식을 얻는다.

$$M = \begin{cases} \frac{m}{v} \times v \\ k \times \frac{a'}{a} \times n \end{cases}$$

한 평균적로동력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것뿐만아니라 한 자본가가 사용하는 로동자들이 평균적로동자로 환원되여

① 저자가 직접 교열한 프랑스문판에는 이 공식의 둘째 부분이 다음과 같이 되여있다. 《바꾸어말하면 그것은 1로동력의 가치에 그 로동력의 착취도를 승하고 또 동시에 착취당하는 로동력의 총수를 승한것과 같다.》. 一편집자

있다는것도 계속 전제로 하고있다.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증가가 착취당하는 로동자수의 증가에 비례하지 않는 례외적인 경우가 있으나 그런 경우에는 로동력의 가치도 또한 변하지 않는것으로 머물러있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정한 량의 잉여가치가 생산될 때에 어떤 한 요인의 감소는 다른 요인의 증대에 의하여 보상될수 있다. 가변자본이 감소하나 그와 동시에 잉여가치률이 동일한 비률로 높아진다면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총량은 의연히 변동하지 않을것이다. 앞에서 가정한것과 같이 자본가가 매일 100명의 로동자를 착취하기 위해서는 100탈레르를 선대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 만약 잉여가치률이 50%라고 한다면 이 100탈레르의 가변자본은 50탈레르의, 또는 100×3로동시간의 잉여가치를 제공할것이다. 만약 잉여가치률이 2배로 된다면 즉 로동일이 6시간에서 9시간으로가 아니라 6시간에서 12시간으로 연장된다면 절반으로 감소된 가변자본 50탈레르가 마찬가지로 50탈레르의, 또는 50×6로동시간의 잉여가치를 가져올것이다. 따라서 가변자본의 감소는 로동력의 착취도가 그에 비례하여 증가함으로써 보상될수 있으며 또는 고용되는 로동자수의 감소는 로동일이 그에 비례하여 연장됨으로써 보상될수 있다. 그러므로 일정한 한계내에서는 자본이 착취할수 있는 로동의 공급은 로동자의 공급에는 의존하지 않게 된다.(202) 반대로 잉여가치률의 감소는 만약 가변자본의 량 또는 취업 로동자총수가 그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면 생산되는 잉여가치

---

(202) 이 기본법칙이 속류경제학진영에 속하는 제씨들에게는 알려져있지 않는 모양이다. 전도된 아르키메데스인 그들은 로동의 시장가격이 수요공급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사실에서 세계를 일변시키기 위한것이 아니라 세계를 정지시키기 위한 지점을 발견하였다고 믿고있다.[250]

의 총량을 변동시키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잉여가치률의 증대 또는 로동일의 연장에 의한 로동자총수 또는 가변자본의 보상은 뛰여넘을수 없는 한계가 있다. 로동력의 가치가 어떻든지간에, 로동자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로동시간이 2시간이 되든 혹은 10시간이 되든간에, 한 로동자가 매일 생산할수 있는 총가치는 24로동시간이 대상화되여있는 가치보다는 항상 적은것이며 만약 이 대상화된 24로동시간의 화폐적표현이 12실링 또는 4탈레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항상 12실링 또는 4탈레르보다 적은것이다. 로동력자체를 재생산하기 위하여 또는 로동력을 사는데 선대된 자본가치를 보상하기 위하여 매일 6로동시간이 요구된다고 우리는 앞에서 가정하였는데 이 가정에 의하면 500명의 로동자를 100%의 잉여가치률로써 또는 12시간로동일로써 사용하는 500탈레르의 가변자본은 매일 500탈레르의 또는 6×500로동시간의 잉여가치를 생산한다. 매일 100명의 로동자를 200%의 잉여가치률로써 또는 18시간로동일로써 사용하는 100탈레르의 자본은 겨우 200탈레르의 또는 12×100로동시간의 잉여가치량을 생산할뿐이다. 그리고 이 자본의 총가치생산물 즉 선대된 가변자본의 등가물 플라스 잉여가치는 어느날에나 총액 400탈레르에 또는 24×100로동시간에 달할수는 결코 없다. 본래 항상 24시간보다는 적은 평균로동일의 절대적한계는 잉여가치률의 증대에 의하여 가변자본의 감소를 보상하는 절대적한계, 또는 로동력의 착취도의 제고에 의하여 피착취로동자총수의 감소를 보상하는 절대적한계를 이루고있다. 극히 명백한 이러한 제2의 법칙은 아래에서 전개하게 될 자본의 경향 즉 자본이 움직이는 로동자총수를, 또는 로동력으로 전화되는 자본의 가변적구성부분을 될수 있는대로 축소시키려

는 자본의 경향—이것은 될수 있는대로 많은 잉여가치총량을 생산하려는 자본의 다른 경향과 모순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많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중요한것이다. 반대로 만약 사용되는 로동력의 총량 또는 가변자본의 량이 증대하기는 하나 그 증대가 잉여가치률의 감소에 비례하지 않는다면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총량은 감소될것이다.

제3의 법칙은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총량이 잉여가치률과 선대된 가변자본량이라는 두 요인에 의하여 규정된다는데로부터 생긴다. 만약 잉여가치률 또는 로동력착취도와 로동력의 가치 또는 필요로동시간의 길이가 주어진것이라면 가변자본이 크면 클수록 생산되는 가치량과 잉여가치량이 더 커질것은 자명하다. 만약 로동일의 한계와 그 필요부분의 한계가 주어진것이라면 한 자본가가 생산하는 가치와 잉여가치의 량은 오로지 그가 움직이는 로동량에 의존할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가 움직이는 로동량은 상기한 가정하에서는 그가 착취하는 로동력의 량 또는 로동자의 수에 의존하며 이 수는 또 그가 선대한 가변자본의 량에 의하여 규정된다. 따라서 잉여가치률이 주어진것이고 또 로동력의 가치가 주어진것이라면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총량은 선대된 가변자본의 량에 정비례한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자본가가 자기의 자본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있다는것을 알고있다. 한 부분을 그는 생산수단에 지출한다. 이것은 그의 자본의 불변부분이다. 다른 한 부분을 그는 산로동력으로 전화시킨다. 이 부분은 그의 가변자본을 형성한다. 동일한 생산방식의 기초우에서도 생산부문이 다르면 자본의 불변부분과 가변부분에로의 분할도 달라진다. 동일한 생산부문에서는 이 비률은 생산과정의 기술적기초와 사회적결합이 달라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소

여의 자본이 어떻게 불변부분과 가변부분으로 분할되든지간에, 전자와 후자와의 비가 1:2이든 1:10이든 혹은 1:x이든간에 우에서 확정된 법칙은 그러한것에 의해서는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 하면 상술한 분석에 의하면 불변자본의 가치는 비록 생산물의 가치에 재현된다 할지라도 새로 형성된 가치생산물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① 1,000명의 방적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00명의 방적공을 사용하기 위한것보다 더 많은 원료, 방추 등등이 요구되는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추가적인 생산수단의 가치는 그것이 등귀하든 저락하든 혹은 불변이든간에 또는 크든 작든간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이러한 생산수단을 움직이는 로동력의 가치증식 과정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우에서 확인된 법칙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즉 각이한 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가치량과 잉여가치량은 로동력의 가치가 주어진 것이며 로동력착취의 정도가 같다면 이 자본의 가변부분의 량에, 다시말하면 산로동력에 전화된 그 부분의 량에 정비례한다.

이 법칙은 현상의 외관에 기초한 모든 경험과 분명히 모순된다.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사용되는 총자본의 백분비구성을 계산해보아 상대적으로 많은 불변자본과 적은 가변자본을 사용하는 방적업자는 상대적으로 많은 가변자본과 적은 불변자본을 운영하는 빵제조업자보다 더 적은 리윤 즉 잉여가치를 짜내는것은 아니다. 이 외견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중간항이 필요한데 그것은 마치 초등대수학의 립장에서는 $\frac{0}{0}$이 하나의 실수를 표시할수 있다는것을 리해하기 위하여 많은 중간항이 필요한것과 마찬가지이다.

---

① 이 책 232~244페지를 보라. 一편집자

고전경제학은 비록 이 법칙을 결코 정식화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본능적으로 이 법칙을 견지하고있다. 왜냐 하면 이 법칙은 일반가치법칙의 필연적인 귀결이기때문이다. 고전경제학은 이 법칙을 억지추상에 의하여 현상의 모순으로부터 구원해내려고 시도한다. 리카도학파[72]가 어떻게 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는가 하는것은 후에(203) 보게 될것이다. 《사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252] 속류경제학은 여기서도 다른 모든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상의 법칙[253]을 무시하고 현상의 외관에 매달린다. 속류경제학은 스삐노자와는 반대로 《무식은 충분한 론거가 된다》[254]고 믿고있는것이다.

사회의 총자본에 의하여 날마다 사용되는 로동은 하나의 단일한 로동일로 간주할수 있다. 만약 례컨대 로동자의 수가 100만이고 한 로동자의 평균로동일이 10시간이라고 하면 사회적로동일은 1,000만시간으로 된다. 이 로동일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에는—그 한계를 설정하는것이 육체적조건이든 혹은 사회적조건이든간에—잉여가치의 량은 오직 로동자수 즉 로동자인구의 증가에 의해서만 증가될수 있다. 이 경우에 인구의 증가는 사회총자본에 의한 잉여가치생산의 수학적한계로 된다. 반대로 인구의 수량이 주어진 경우에 이 한계는 로동일의 가능한 연장에 의하여 규정된다.(204) 다음장에서 우리는 이 법칙이 오직 우리가 이때까지 고찰하여온 잉여가치형태에만 적용된다는것을 보게 될것이다.

잉여가치의 생산에 관한 이때까지의 고찰에서 다음과 같

---

(203) 더 상세한것은 제4부를 보라[251].

(204) 《사회의 로동 즉 경제적시간은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있다. 례컨대 100만명이 하루에 각각 10시간씩 로동하여 합계 1,000만시간 로동하는것과 같다.…자본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 온갖 소여시간에 이 한계는 사용되는 경제적시간의 현실적길이의 범위안에 있다.》(《국민정치경제학에 관한 론술》, 1821년 런던판, 47~49페지)

은 사실이 명백하게 된다. 즉 온갖 임의의 화폐액 또는 가치액이 자본으로 전화될수는 없고 반대로 개별적인 화폐소유자 또는 상품소유자의 수중에 일정한 최소한의 화폐 또는 교환가치가 있는것이 이 전화를 위한 전제로 된다. 가변자본의 최소한이란 잉여가치의 획득을 위하여 1년간을 통해서 날마다 소모되는 1로동력의 비용가격이다. 이 로동자가 자기자신의 생산수단을 가지고있으며 또 로동자로서 생활하는데 만족한다면 그에게는 그의 생활수단의 재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만으로, 이를테면 하루에 8시간만으로 충분할것이다. 따라서 그가 필요로 하는 생산수단도 역시 8로동시간분의것이면 충분할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이 로동자로 하여금 이 8시간이외에 이를테면 4시간의 잉여로동을 하게 하는 자본가는 추가적생산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적화폐액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밑에서 그는 매일 취득하는 잉여가치로써 로동자와 같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다시말하면 자기의 필요한 욕망을 충족시킬수 있기 위해서도 벌써 두사람의 로동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 그의 생산의 목적은 단순한 생활유지이고 부의 증가는 아닐것이지만 자본주의적생산하에서는 부의 증가가 전제로 되여있다. 그가 보통로동자보다 다만 2배 낫게 생활하며 또 생산된 잉여가치의 절반을 자본으로 재전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는 로동자의 수와 함께 선대자본의 최소한을 8배로 증가시키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물론 그는 자기의 로동자와 마찬가지로 직접 생산과정에 참가할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는 때에는 그는 자본가와 로동자사이에 있는 중간인물인 《소장주》에 불과할것이다. 자본주의적생산의 일정한 수준은 자본가가 자본가로서 즉 인격화한 자본으로서 기능하는 전체 시간을 타인의 로동의 취득과 그 감독을 위하여 또

이 로동의 생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사용할수 있게 되는것을 조건으로 한다.(205) 중세기의 동업조합제도는 매개 장주가 사용할수 있는 로동자총수의 최대한을 극히 적은 수에 제한함으로써 수공업적장주가 자본가로 전화하는것을 강압적으로 저지하려 하였다. 화폐소유자 또는 상품소유자는 생산에 선대된 최소한의 금액이 중세기의 이 최대한을 훨씬 초과하게 되는 그때에라야만 비로소 현실적으로 자본가로 전화한다. 여기에서도 자연과학에서와 마찬가지로 헤겔이 자기의 《론리학》[255]에서 발견한 법칙 즉 단순한 량적변화가 일정한 점에서 질적인 구별로 전화한다는 법칙의 정당성이 실증된다.(205a)

---

(205) 《차지농업가는 자기자신의 로동에 의거할수 없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는 손해를 볼것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전체 일에 대한 전반적감시이다. 그는 탈곡자를 감시해야 할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탈곡되지 않은 곡물에 대하여 지불되는 로임이 그의 손실로 될것이다. 또 그는 풀을 베는 사람이나 수확을 하는 사람 등등을 감시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는 항상 자기의 농장구내를 순시해야 할것이며 구내에 조금이라도 등한히 된 일이 없도록 보살펴야 할것이다. 만약 그가 어떤 한 장소에만 있게 된다면 등한히 되는 일이 생겨날것이다.》 (〔j. 아바스너트〕 《식량의 현가격과 농장규모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 차지농장주의 저작, 1773년 런던판, 12페지) 이 저작은 대단히 흥미있다. 우리는 이 저작에서 《자본주의적차지농업가》 또는 저자가 로골적으로 명명하는 《상인적차지농업가》의 발생사를 연구할수 있으며 이 차지농업가들이 생계유지가 주요문제로 되여있는 《소농장주》에 대비하는 그의 자체찬양을 들을수 있다. 《자본가계급은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철저하게 손로동의 필요성으로부터 해방된다.》 (리처드 죠운즈목사의 《국민정치경제학교과서》, 1852년 허트포드판, 제3강, 39페지)

(205a) 현대화학에 응용되고있으며 로랑과 제라르에 의하여 처음 과학적으로 전개된 분자설은 다름아닌 바로 이 법칙에 기초하고있는것이다. 〔제3판에 대한 보충: 화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막연한 이 주를 해석하기 위하여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한다. 저자가 여기에서 말하는것은 1843년에 C. 제라르가 처음으로 《동족렬》이라고 명명한 탄수화물에 관한것인데 그 매개 계렬은 자기자신의 대수적구조식을 가지고있다. 례컨대 파라핀계렬은 C_nH_{2n+2}이고, 표준알콜계렬은 $C_nH_{2n+2}O$이고, 표준지방산계렬은 $C_nH_{2n}O_2$ 등등이다. 상술한 례에서 분자식에 CH_2를 단순히 량적으로 추가하면 그때마다 질적으로 각이한 물체가 형성된다. 이 중요한 사실을 확정함에 있어서(맑스의 과대한 평가를 받은) 로랑과 제라르의 기여에 관하여는 코프의 《화학의 발전》, 1873년 뮨헨판, 709, 716페지와 쇼를렘메르의 《유기화학의 발생과 발전》, 1879년 런던판, 54페지를 참조하라. —F. E.〕

개별적인 화폐소유자 또는 상품소유자가 고치를 뚫고 나와 하나의 자본가로 되기 위하여 마음대로 처리할수 있어야 할 가치액의 최소한은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단계가 다름에 따라 다르며 또 일정한 발전단계에서도 생산분야가 다르면 그 생산분야의 특수한 기술적조건에 따라 다르다. 일정한 생산부문들은 자본주의적생산의 초기에 벌써 그 당시 아직 개별적인 개인의 수중에는 없는 그러한 최소한의 자본을 필요로 한다. 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꼴베르시대의 프랑스와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독일 제 방에서와 같이 개인들에게 국가적보조금을 지출하는 원인으로 되며 다른편으로는 일정한 공업부문과 상업부문의 경영에 대한 법률상 독점권을 가지는 회사(206)—현대적 주식회사의 선구자—가 설립되는 원인으로 된다.

우리는 자본가와 임금로동자와의 관계가 생산과정의 진행중에서 받은 변화의 상세한 점은 일일이 취급하지 않으며 따라서 자본 그자체의 더 나아간 규정도 취급하지 않으려 한다. 다만 여기서는 몇가지 요점만을 강조하는데 그치려 한다.

생산과정의 내부에서는 자본은 발전하여 로동에 대한, 다시말하면 발현되고있는 로동력 또는 로동자 그자체에 대한 지휘권에까지 발전하였다.① 인격화된 자본인 자본가는 로동자가 자기의 일을 질서있게 또 상당한 강도로 수행하도록 감시한다.

다음으로 자본은 로동계급으로 하여금 그 계급자신의 좁은 범위의 생활상 욕망이 요구하는것보다 더 많은 로동을 수행하게 하는 강제적관계에까지 발전하였다. 그리고 타인의

---

(206) 이런 종류의 시설을 마르틴 루테르는 《독점회사》[256]라고 한다.

① 이 책 216~217페지를 보라. —편집자

근면의 제조자로서, 잉여로동의 착취자 및 로동력의 착취자로서 자본은 그 정력과 무절제와 효과에 있어서 직접적인 강제로동에 기초하는 종전의 모든 생산체제를 릉가한다.

자본은 우선 력사적으로 주어진 기술적조건을 가지고 로동을 자기에게 종속시킨다. 따라서 자본은 직접적으로는 생산방식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고찰하여온 형태에서의 잉여가치의 생산 즉 로동일의 단순한 연장에 의한 잉여가치의 생산은 생산방식 그자체에서의 어떠한 변화와도 관계없이 나타났다. 그것은 구식빵제조업에서도 신식면방직업에 못지 않게 효과가 있었다.

생산과정을 로동과정의 견지에서 고찰한다면① 로동자는 자본으로서의 생산수단과 관계한것이 아니라 그의 목적에 맞는 생산활동의 단순한 수단 및 재료로서의 생산수단과 관계한것이다. 례컨대 가죽공장에서 로동자는 가죽을 그의 단순한 로동대상으로 취급한다. 그는 자본가의 가죽을 이기는것은 아니다. 생산과정을 가치증식과정의 견지에서 고찰할 때에는② 사정이 달라진다. 생산수단은 즉시로 타인의 로동을 흡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화한다. 이제는 벌써 로동자가 생산수단을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생산수단이 로동자를 사용한다. 로동자가 생산수단을 가지의 생산활동의 물질적요소로서 소비하는것이 아니라 생산수단이 로동자를 생산수단자신의 생활과정의 효모로서 소비한다. 그리고 자본의 생활과정은 자기자신을 증식하는 가치로서의 자본의 운동에 지나지 않는다. 야간에 휴식하여 산로동을 조금도 흡수하지 않는 용광로와 작업용건물은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는 《순수한 손실》③인

① 이 책 207~208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이 책 226~228페지를 보라. —편집자
③ 이 책.302~304페지를 보라. —편집자

것이다. 그러므로 용광로와 작업용건물은 로동력에 대한 《야간로동을 요구할 청구권》을 만들어낸다. 생산과정의 대상적 요인으로의 즉 생산수단으로의 화폐의 단순한 전화가 생산수단을 타인의 로동 및 잉여로동에 대한 법적권원과 강제적권원으로 전화시킨다. 끝으로 다음의 실례는 자본주의적생산에 특유하며 또 그것을 특징짓는 이와 같은 전도가, 심지어 죽은로동과 산로동간의, 가치와 가치창조력간의 관계의 전도가 어떻게 자본가들의 두뇌에 반영되는가를 보여준다. 1848～1850년의 영국공장주들의 반란시기에 《페이즐리의 아마—면화방적공장(서부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력사가 길고 가장 명성있는 회사의 하나인 칼라일부자회사이다. 이 회사는 1752년이래 존속하고있으며 대대로 동일한 가족이 경영하고있다.)의 사장》인 매우 유식한 신사가 1849년 4월 25일부 《글라스고매일우편》에 《리레제도》라는 제목으로 서한(207)을 기고하였는데 거기에는 아주 괴이하게 소박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이제 로동시간을 12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단축하는데서 생겨나는 폐해를 고찰하여보기로 하자.…그것은 공장주의 기대와 재산에 대한 가장 중대한 손상이라는 점에 〈귀착〉된다. 만약 그가〔즉 그의 〈일손들〉이〕 과거에는 12시간 작업하였는데 장차는 10시간으로 제한된다면 그의 공장의 기계 또는 방추의 매 12개가 10개로 축소될것이며 또 만약 그가 자기의 공장을 팔려고 한다 해도 그것들은 10개로밖에 평가되지 않을것이며 따라서 전국의 매개 공장은 자기 가치의 6분의 1을 잃어버리게 될것이다.》(208)

---

(207) 《공장감독관보고. 1849년 4월 30일》, 59페지.

(208) 우와 같은 보고, 60페지. 그자신이 스코틀랜드인이고 잉글랜드의 공장감독관들과는 반대로 전적으로 자본가적사고방식에 사로잡힌 공장감독관 스튜어트는 그가 자기의 보고에 수록한 이 서한이 《리레제도를 사용하고있는 어떤 공장주가 쓴것으로서 특히 이 제도에 대한 편견과 의혹을 제거할것을 목적으로 한 가장 유익한 통신이다.》라고 명백히 말하고있다.

서부스코틀랜드의 이 세습적인 자본두뇌에서는, 방추 등등의 생산수단의 가치와 자기증식을 하는 즉 타인의 무상로동의 일정한 량을 매일 흡수하는 생산수단의 자본적속성과는 불가분적으로 융합되여있는데 이로 하여 칼라일회사 사장은 그의 공장이 판매될 때 비단 방추의 가치에 대해서뿐만아니라 또 방추의 가치증식에 대해서도 대가를 받으며 또한 비단 방추에 들어있는 그리고 같은 종류의 방추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에 대해서뿐만아니라 방추로써 매일 페이즐리의 건장한 서부스코틀랜드인들에게서 짜내는 그 잉여로동에 대해서까지도 대가를 받는것으로 망상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는 로동일을 2시간 단축하면 매 12대의 방적기계의 판매가격이 매 10대의 판매가격에로 축소된다고 생각하는것이다!

제 4 편
상대적잉여가치의 생산

제 10 장

상대적잉여가치의 개념

자본이 지불한 로동력가치의 등가물을 생산하는데 그치는 로동일부분을 우리는 이때까지 불변량으로 간주하여왔는데 그것은 주어진 생산조건하에서 그때의 사회의 경제적발전단계에서는 사실상 불변량인것이다. 로동자는 이러한 필요로동시간의 한계를 넘어서 2시간, 3시간, 4시간, 6시간 등등을 더 일할수 있다. 이 것을 얼마나 연장하는가에 따라 잉여가치률과 로동일의 길이가 결정된다. 필요로동시간은 불변이라 할지라도 이와는 반대로 로동일전체는 가변적인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떤 로동일의 전체 길이와 또한 필요로동과 잉여로동에로의 그 분할이 주어졌다고 가정하자. 례컨대 선 ac 즉 a————·b——c가 12시간로동일을 표시하며 ab부분은 10시간의 필요로동을, bc부분은 2시간의 잉여로동을 표시한다고 하자. 이제 ac를 더는 연장하지 않고 또는 ac의 이 이상의 연장과는 전혀 관계없이 어떻게 하면 잉여가치의 생산을 증대할수 있겠는가? 다시말해서 어떻게 하면 잉여로동을 연장할수 있겠는가?

로동일 ac의 한계는 주어져있지만 bc는 그 종점 c(그것은 동시에 로동일 ac의 종점이다.)를 넘어서 연장되지 않더라도 그 출발점 b를 반대방향인 a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연장될수 있을상싶다. 가령 a————————b′—b——c에서 b′——b는 bc의 절반 즉 1로동시간과 같다고 하자. 이제 만약 12시간 로동일 ac에 있어서 점 b를 b′로 이동한다면 bc는 b′c로 연장되여 로동일은 종전대로 12시간이지만 잉여로동은 그 절반이 증대하여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될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잉여로동이 bc에서 b′c로,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장되는것은 분명히 동시에 필요로동이 ab에서 ab′로, 10시간에서 9시간으로 단축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잉여로동의 연장에는 필요로동의 단축이 상응하게 된다. 즉 로동자가 이때까지 사실상 자기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고있던 로동시간의 일부분이 자본가를 위하여 지출되는 로동시간으로 전화하게 된다. 이에 있어서 변동되는것은 로동일의 길이가 아니라 로동일의 필요로동과 잉여로동에로의 분할일것이다.

다른 한편 만약 로동일의 길이와 로동력의 가치가 주어져있다면 잉여로동의 크기 그자체도 주어져있는것으로 될것은 명백하다. 로동력의 가치 즉 로동력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은 로동력의 가치의 재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을 규정한다. 만약 1로동시간이 반실링 또는 6펜스의 금량으로 표시된다면 또 만약 로동력의 일가치가 5실링이라면 로동자는 자본이 그에게 지불한 자기 로동력의 일가치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시말하면 그가 필요로 하는 1일분 생활수단의 가치의 등가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하루에 10시간씩 로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생활수단의 가치와 함께 그의 로동력의

가치가 주어져있으며(1) 그의 로동력의 가치와 함께 그의 필요로동시간의 길이가 주어져있다. 그리고 잉여로동의 크기는 1로동일전체에서 필요로동시간을 공제함으로써 얻게 된다. 12시간에서 10시간을 공제하면 2시간이 남는데 이런 조건하에서 어떻게 잉여로동을 2시간이상으로 연장시킬수 있겠는가는 아직 알수 없다. 물론 자본가는 로동자에게 5실링이 아니라 4실링 6펜스만을, 혹은 이보다도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할수도 있다. 이 4실링 6펜스의 가치를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9로동시간이면 충분할것이며 따라서 이제는 12시간로동일중에서 2시간이 아니라 3시간이 잉여로동의 몫으로 될것이며 그리하여 잉여가치 그자체도 1실링에서 1실링 6펜스로 증가될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오직 로동자의 임금을 그의 로동력의 가치이하로 인하함으로써만 달성될수 있을것이다. 로동자는 그가 9시간동안에 생산하는 4실링 6펜스를 가지고는 이전보다 10분의 1 적은 량의 생활수단을 얻게 되며 이로 말미암아 그의 로동력의 축소된 재생산이 일어날수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에 잉여로동은 그 정상적한계를 벗어남으로써만 연장될수 있으며 잉여로동의 령역은 필요로동시간의 령역을 란폭하게 침범함으로써만 확대될수

---

(1) 1일분 평균임금의 가치는 로동자가 《생활하며 로동하며 번식하는데》 필요한것에 의하여 규정된다. (윌리엄 페티 《아일랜드의 정치적해부》, 1672년판, 64페지) 《로동의 가격은 항상 생활수단의 가격으로 구성된다.》 《만약…로동자가 받는 임금이 그들중 많은 사람이 흔히 숙명적으로 가지고있는 그러한 가족을 그의 로동자로서의 낮은 신분과 지위에 상응하게 부양할 가능성을 주지 않는다면》 그는 적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것이다. (J. 밴덜린트 《화폐만능론》, 15페지) 《손과 근로외에는 아무것도 가진것이 없는 단순한 로동자는 자기 로동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대가밖에 받지 못한다.…어떤 부문의 로동에서나 로동자의 임금은 그가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절대로 필요한것에 국한되여야 하며 또 실지로 그렇게 되여있다.》 (뛰르고 《부의 형성과 분배에 관한 고찰》, 대르 편찬 《저작집》, 제1권, 10페지) 《생활수단의 가격은 사실에 있어서 로동의 생산비이다.》 (말사스 《지대의 본성과 장성 및 지대를 규제하는 원리에 관한 연구》, 1815년 런던판, 48페지 주)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비록 로임의 현실적인 운동에서 중대한 역할을 논다 할지라도 여기에서는 배제되여야 할것이다. 왜냐 하면 우리는 모든 상품이ㅡ따라서 로동력도 또한ㅡ완전한 가치대로 매매된다고 전제하였기때문이다. 이것이 전제로 되여있는 이상 로동력의 생산 또는 로동력가치의 재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은 로동자의 임금이 그 로동력의 가치이하로 저락됨으로써 감소될수 없으며 오직 로동력의 가치 그 자체가 저락됨으로써만 감소될수 있다. 로동일의 길이가 주어져있는 경우에 잉여로동의 연장은 필요로동시간의 단축에서 일어나는것이지 그 반대로 필요로동시간의 단축이 잉여로동의 연장에서 일어나는것은 아니다. 우리가 든 례에서는 필요로동시간이 $\frac{1}{10}$ 즉 10시간에서 9시간으로 축소되기 위해서는, 따라서 잉여로동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동력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frac{1}{10}$ 저락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로동력의 가치가 10분의 1 저락한다는것은 또한 이전에는 10시간에 생산되던것과 동일한 량의 생활수단이 이제는 9시간에 생산된다는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런데 이것은 로동생산력을 제고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가령 례컨대 어떤 제화공이 소여의 로동수단을 가지고 12시간 로동일에 한컬레의 장화를 만들수 있다고 하자. 그가 이것과 동일한 시간에 두컬레의 장화를 만들수 있기 위해서는 그의 로동생산력이 2배로 제고되여야 한다. 그리고 그의 로동생산력은 그의 로동수단이나 그의 로동방법에 또는 동시적으로 량쪽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2배로 제고될수 없다. 따라서 그의 로동의 생산조건에 즉 그의 생산방식에, 따라서 또한 로동과정 그자체에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여기서 로동

생산력의 제고라는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로동시간을 단축하며 그리하여 더 적은 량의 로동이 더 많은 량의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획득하게 하는, 로동과정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2) 그러므로 지금까지 고찰하여온 형태의 잉여가치의 생산을 연구할 때에는 생산방식을 어떤 주어진것으로 가정하였지만 필요로동의 잉여로동에로의 전화에 의한 잉여가치의 생산을 리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력사적으로 계승된 형태 또는 현존형태의 로동과정을 장악하고 오직 그 지속시간을 연장하는것만으로는 절대로 불충분하다. 로동생산력을 제고하며 로동생산력의 제고에 의하여 로동력의 가치를 저락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 로동력가치의 재생산에 필요한 로동일부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로동과정의 기술적 및 사회적 제 조건을 따라서 또 생산방식 그자체를 변혁하여야 한다.

로동일의 연장에 의하여 생산되는 잉여가치를 나는 절대적잉여가치라고 부른다. 한편 필요로동시간이 단축되며 이에 상응하여 로동일의 두 구성부분의 량적비률이 변화하는데서 생기는 잉여가치를 나는 상대적잉여가치라고 부른다.

로동력의 가치를 저락시키가 위해서는, 고 로동력의 가치를 규정하는 생산물 다시말하면 일상적생활수단의 범위에 속하든가 또는 그것을 대신할수 있는 생산물이 생산되는 산업부문들의 생산력을 제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상품

---

(2) 《수공업이 개량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상품이 이전보다 더 적은 수의 사람에 의하여 또는(같은 말이지만) 이전보다 더 짧은 시간에 완성될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발견되였다는것을 의미할따름이다.》 (갈리아니 《화폐론》, 《이딸리아정치경제학고전저작가론문집·현대편》, 1803년 밀라노판, 158~159페지에 게재) 《생산비의 절약은 생산에 사용되는 로동량의 절약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씨스몽디 《정치경제학개론》, 제1권, 22페지)

의 가치는 그 상품에 최종형태를 부여하는 로동의 량에 의하여 규정될뿐만아니라 이 상품의 생산수단들에 들어있는 로동의 량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례컨대 장화의 가치는 비단 제화공의 로동에 의하여 규정될뿐만아니라 가죽, 밀랍, 실 등등의 가치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그러므로 필요한 생활수단의 생산을 위한 불변자본의 물질적요소 즉 로동수단과 로동재료를 제공하는 산업부문들에서 생산력이 제고되며 그에 상응하여 상품의 가격이 저하하는 결과로서도 로동력의 가치가 저하된다. 이와 반면에 필요한 생활수단을 제공하지도 않으며 그 생산을 위한 생산수단을 제공하지도 않는 생산부문들에서는 생산력이 제고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로동력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가격이 저하된 상품이 로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키는것은 물론 그 상품이 로동력의 재생산에서 차지하는 비률에 따라서만 저하시킨다. 례컨대 내의는 하나의 필요한 생활수단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허다한 생활수단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이 상품의 가격의 저하는 내의에 대한 로동자의 지출을 감소시킬뿐이다. 그러나 생활수단의 총량은 특수한 산업부문들의 다양한 생산물인 각종 상품으로 구성되며 그러한 매개 상품의 가치는 항상 로동력의 가치의 해당 부분을 형성한다. 로동력의 가치는 로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의 감소에 따라 저하되며 이러한 로동시간전체의 단축은 상술한 특수생산부문들 전체에서 단축된 로동시간의 총계와 같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일반적결과를, 그것이 매매 개별적경우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직접적인 목적인것 같이 취급한다. 어떤 한 자본가가 로동생산력의 제고로써 례컨대 내의의 가격을 저하시킬 때 결코 그는 필연적으로 로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키며 또 따라서 그만큼 필요로동시간을 단축시킬것을 목적으로 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이 결과에 기여하는 그만큼 일반적잉여가치률의 인상에 기여하는것이다.(3) 자본의 일반적이며 필연적인 경향을 이 경향의 현상형태와 구별하여야 한다.

자본주의적생산의 내재적법칙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본의 외적운동에 표현되며 경쟁의 강제적법칙으로 작용하며 그리하여 개별적자본가들의 의식에 추진적동기로서 도달하는가 하는것은 여기서 고찰할바가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음의 한 점만은 명백하다. 즉 경쟁의 과학적분석은 자본의 내적본성이 리해된후에라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천체의 외관상 운동이, 직접 감각으로는 지각할수 없는 그 실제적운동을 아는자에게만 리해될수 있는것과 꼭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상대적잉여가치의 생산을 리해하기 위하여 또 이미 얻은 결과들에만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것을 지적하여둘 필요가 있다.

만약 1로동시간이 6펜스 즉 $\frac{1}{2}$실링의 금량으로 표현된다면 12시간로동일 하루에는 6실링의 가치가 생산될것이다. 일정한 로동생산력하에서 이 12로동시간에 12개의 상품이 생산된다고 하자. 이 상품의 매 1개의 소비되는 생산수단 즉 원료 등등의 가치가 6펜스라고 하자. 이러한 사정하에서 매 개 상품은 1실링이 된다. 즉 6펜스는 생산수단의 가치이고 6펜스는 이 상품이 가공될 때에 새로 첨가된 가치이다. 이제

---

(3) 《공장주가 기계의 개량에 의하여 생산물을 배로 증가시킬 때…그가 리득을 얻는것은(결국) 그가 이로 말미암아 로동자에게 더 헐값으로 피복을 제공할수 있으며…따라서 이제는 총수익의 더 적은 부분이 로동자의 몫으로 되는 그 한에 있어서만이다.》 (램지 《부의 분배에 관한 론술》, 1821년 에딘버러판, 168~169페지)

어떤 자본가가 로동생산력을 2배로 제고하는데 성공하여 12시간로동일 하루에 이 종류의 상품을 12개가 아니라 24개 생산하게 되였다고 가정하자. 만약 생산수단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매개 상품의 가치는 이제는 9펜스로 떨어질것이다. 즉 생산수단의 가치가 6펜스이고 최후의 로동에 의하여 새로 첨가된 가치가 3펜스일것이다. 생산력이 2배로 되였음에도 불구하고 1로동일은 지금도 전과 같이 6실링의 새 가치만을 창조한다. 다만 이 새 가치가 이제는 2배의 생산물에 분배될뿐이다. 그러므로 매개 개별적생산물에는 이러한 총가치의 $\frac{1}{12}$이 아니라 다만 $\frac{1}{24}$이 즉 6펜스가 아니라 3펜스가 차례진다. 또는 결국 같은 말이지만 생산수단이 생산물로 전화할 때 그 생산수단에 이제는 매개 상품당 전과 같이 옹근 한 로동시간이 아니라 반 로동시간만이 첨가된다. 이 상품의 개별적가치는 이제는 그 사회적가치보다 낮다. 즉 이 상품에는 평균적인 사회적조건하에서 생산된 같은 종류의 대다수 제품보다 적은 로동시간이 들었다. 이 상품 1개는 평균 1실링이다. 즉 2시간의 사회적로동을 대표한다. 변화된 생산방식하에서는 그것은 9펜스에 지나지 않는다. 즉 거기에는 다만 $1\frac{1}{2}$로동시간이 들어있을뿐이다. 그러나 상품의 현실적가치는 그의 개별적가치가 아니라 그의 사회적가치이다. 다시 말하면 상품의 현실적가치는 생산자가 개개의 경우에 그 상품의 생산에 실제로 들이는 로동시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로동시간에 의하여 측정된다. 그러므로 만약 새 방법을 채용하는 자본가가 자기의 상품을 1실링이라는 사회적가치로 판다면 그는 그 상품을 그 개별적가치보다 3펜스 더 비싸게 팔며 따라서 3펜스의 초과

잉여가치를 실현한다. 다른 한편 그에게 있어서는 12시간로동일이 이제는 종전의 12개 대신에 24개의 상품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1로동일분의 생산물을 팔기 위해서 그는 2배의 판로를 또는 2배의 큰 시장을 필요로 한다. 기타 조건이 같다면 그의 상품은 오직 그 가격을 인하함으로써만 더 큰 시장을 쟁취할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가는 그 상품을 그 개별적가치보다는 비싸게 그러나 그 사회적가치보다는 싸게 례컨대 1개당 10펜스로 팔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매 1개의 상품에서 1펜스의 초과잉여가치를 짜낸다. 그에게 있어서 잉여가치의 이러한 증대는 그의 상품이 필요한 생활수단의 범위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그것이 로동력의 일반적가치의 경정적요소로서 참여하든 안하든 그것과는 관계없이 일어난다. 따라서 마지막에 든 사정과는 관계없이 매개 자본가에게는 로동생산력을 제고함으로써 상품가치를 싸게 하려는 동기가 존재한다.

그러나 심지어 이 경우에 있어서도 잉여가치생산의 증대는 필요로동시간의 단축과 그에 상응하는 잉여로동의 연장에서 발생한다.[3a] 이제 필요로동시간이 10시간 즉 로동력의 일가치가 5실링이고 잉여로동이 2시간, 따라서 매일 생산되는 잉여가치가 1실링이라고 하자. 그러나 우리의 자본가는 이제는 24개의 상품을 생산하여 그것을 1개당 10펜스에 즉 전부를 20실링에 판다. 생산수단의 가치는 12실링이기때문에

(3a) 《어떤 사람이 얻는 리윤은 그가 타인의 로동생산물을 지배한다는 사실에 의존하는것이 아니라 그가 로동 그자체를 지배한다는 사실에 의존한다. 만약 그가 그의 로동자의 임금에는 변동이 없는데 자기의 상품을 더 비싸게 팔수 있다면 그가 리익을 볼것은 분명하다.…그때에는 그가 생산하는 물건의 보다 적은 부분으로도 이 로동을 하게 하는데 충분할것이며 따라서 더 많은 부분이 자기자신을 위하여 남게 된다.》 (〔J. 캐저노우브〕 《정치경제학개요》, 1832년 런던판, 49~50페지)

$14\frac{2}{5}$개의 상품은 오직 선대된 불변자본의 가치를 보상할뿐이다. 12시간로동일은 나머지 $9\frac{3}{5}$개의 상품으로 표현된다. 로동력의 가격=5실링이기때문에 6개의 생산물에는 필요로동시간이 표현되며 $3\frac{3}{5}$개의 생산물에는 잉여로동이 표현된다. 필요로동과 잉여로동과의 비례는 사회적평균조건하에서는 5:1이던것이 이제는 다만 5:3으로 된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도 이와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 12시간로동일의 생산물의 가치는 20실링이다. 그중 12실링은 다만 재현되는데 지나지 않는 생산수단의 가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8실링이 1로동일을 대표하는 가치의 화폐적표현으로서 남는다. 이 화폐적표현은 동일한 종류의 사회적평균로동의 화폐적표현보다 더 크다. 왜냐 하면 사회적평균로동의 12시간은 다만 6실링으로만 표현되기때문이다. 례외적으로 높은 생산력을 가지는 로동은 몇곱한 로동으로서 작용한다. 다시말하면 같은 시간내에 같은 종류의 사회적평균로동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한다. 그러나 우리의 자본가는 로동력의 일가치에 대하여는 지금도 종전대로 5실링만 지불한다. 따라서 로동자는 이제는 이 가치를 재생산하는데 종전의 10시간이 아니라 $7\frac{1}{2}$시간이 필요할뿐이다. 그러므로 그의 잉여로동은 $2\frac{1}{2}$시간이 증가하며 그가 생산하는 잉여가치는 1실링에서 3실링으로 증가한다. 그리하여 개량된 생산방식을 채용하는 자본가는 다른 동업자본가보다 로동일의 더 큰 부분을 잉여로동으로서 취득한다. 그는 자본이 상대적잉여가치의 생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는 일을 개별적으로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새로운 생산방식이

일반화되고 그리하여 더 싸게 생산되는 상품의 개별적가치와 사회적가치간의 차이가 제거되면 이 초과잉여가치도 없어진다. 로동시간에 의한 가치규정의 법칙 즉 새로운 방법을 채용하는 자본가에게는 그가 자기의 상품을 그 사회적가치보다 눅게 팔지 않으면 안된다는 형태로 느껴지는 바로 이 법칙이 경쟁의 강제적법칙으로서 이 자본가의 경쟁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산방식을 채용하지 않을수 없게 한다.(4) 이리하여 로동생산력의 제고가 필요한 생활수단의 생산부문에 보급될 때 즉 필요한 생활수단의 범위에 속하여 로동력의 가치의 요소를 구성하는 상품들을 값싸게 하는 때에만 비로소 일반적잉여가치률이 이 전 과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상품의 가치는 로동생산력에 반비례한다. 로동력의 가치도 역시 그러하다. 왜냐 하면 로동력의 가치는 상품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되기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상대적잉여가치는 로동생산력에 정비례한다. 그것은 생산력의 제고에 따라 제고되며 그 저하에 따라 저하된다. 12시간의 사회적평균로동일 하루는 화폐가치가 불변이라면 항상 6실링이라는 동일한 가치의 생산물을 생산하며 그것은 이 가치총액이 어떻게 로동력가치의 등가물과 잉여가치로 분할되는가 하는것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만약 생산력이 제고된 결과 매일의 생활수단의 가치, 따라서 로동력의 일가치가 5실링에서 3실링으로 떨어진다면 잉여가치는 1실링에서 3실링으로 증가할것이

---

(4) 《만약 나의 이웃사람이 더 적은 로동량으로 더 많이 생산하여 싸게 팔수 있다면 나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싸게 팔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이렇게 하면 더 적은 일손의 로동을 가지고, 따라서 더 싸게 생산할수 있게 하는 온갖 기술, 방법 또는 기계는 다른 사람들도 그와 동일한 기술, 방법 또는 기계를 리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과 류사한 어떤 발명을 할 일종의 강제와 경쟁을 일으키며 드디여 모든 사람이 동일한 립장에 처하게 되여 누구나 자기의 이웃사람보다 더 싸게 팔수 없게 된다.》 ((헨리 마틴) 의 《동인도무역의 영국에 대한 리익》, 1720년 런던판, 67페지)

다. 로동력의 가치를 재생산하는데 이전에는 10시간로동이 필요하였는데 이제는 다만 6로동시간만 필요하다. 4로동시간이 해방되여 잉여로동의 령역에 병합될수 있다. 그러므로 상품을 눅게 하며 또 상품을 눅게 함으로써 로동자자신을 눅게 하기 위하여 로동생산력을 제고하려고 하는것은 자본의 내재적인 충동과 부단한 경향인것이다.(5)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가에게 있어서 상품의 절대적가치 그자체는 관심사가 아니다. 자본가가 관심을 가지는것은 오직 상품에 들어있는 그리고 상품을 팔 때에 실현되는 잉여가치뿐이다. 잉여가치의 실현은 그자체가 선대된 가치의 보상을 포함한다. 상대적잉여가치는 로동생산력의 발전에 정비례하여 증가하는데 상품의 가치는 로동생산력의 발전에 반비례하여 감소하기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하나의 동일한 과정이 상품을 싸게 만드는 동시에 상품에 들어있는 잉여가치를 증대시키기때문에 교환가치의 생산만을 념두에 두는 자본가가 왜 상품의 교환가치를 부단히 저락시키려고 노력하는가 하는 수수께끼는 바로 이것으로써 해명되는것이다. 이 사실이 정치경제학창시자의 한사람인 께내가 자기의 론적들을 괴롭혔으며 그리고 이 론적들이 그에게 답변을 주지 못한 하나의 모순이다. 께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업생산물의 제조에 있어서 생산에 해를 끼치지 않고 비용 또

(5) 《로동자의 지출이 감소되는 바로 그 정도로(만약 그와 동시에 산업에 대한 모든 제한이 철폐된다면) 그의 임금도 저하될것이다.》(《곡물수출장려금의 페지에 관하여》, 1753년 런던판, 7페지) 《산업의 리익은 곡물과 일체 식료품이 될수록 더 싸게 되기를 요구한다. 왜냐 하면 그것들이 비싸게 되면 로동도 역시 비싸게 되지 않을수 없기때문이다.…산업이 제한을 받고있지 않는 모든 나라에서 식료품가격은 로동의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수 없다. 로동의 가격은 생활필수품이 싸게 될 때에 언제나 저락한다.》(우와 같은 책, 3페지) 《임금은 생산력이 증가하는것과 동일한 비률로 저하한다. 기계가 생활필수품을 싸게 만드는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로동자도 또한 싸게 만든다.》(《경쟁과 협동의 공과에 관한 현상론문》, 1834년 런던판, 27페지)

는 비싼 로동을 더 많이 절약하면 할수록 이 절약은 생산물의 가격을 저락시키기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당신들은 인정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제조자들의 로동에서 나오는 부의 생산은 그들의 생산물의 교환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있다고 생각하고있는것이다.》(6)

이와 같이 자본주의적생산에 있어서 로동생산력의 발전에 의하여 얻어지는 로동의 절약은(7) 결코 로동일의 단축을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일정한 량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로동시간을 단축하는것을 목적으로 할뿐이다. 로동자가 자기의 로동생산력을 제고시킨 결과 1시간동안에 가령 종전의 10배의 상품을 생산하게 되며 따라서 이 상품의 매 1개에 이전의 $\frac{1}{10}$밖에 안되는 로동시간을 들인다 해도 이것은, 현재도 그로 하여금 전과 같이 하루에 12시간 로동하게 하여 12시간동안에 종전에 생산하던 120개가 아니라 1,200개를 생산하도록 하는것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그의 로동일은 심지어 연장되기까지 하여 그가 이제는 14시간동안에 1,400개를 생산하는 등등으로 될수도 있다. 그러므로 머칼러크, 유어, 씨니어 및 기타 이와 같은 모든 류파에 속하는 경제학자들의 저서를 보면 어떤 페지에는 생산력의 발전이 필요로동시간을 단축시키기때문에 로동자는 자본이 생산력을 발전시킨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씌여있고 다음페지에는 로동자는 하루 10시

(6) 께내 《상업 및 수공업자의 로동에 관한 대화》, 188, 189페지.

(7) 《이 투기자들은 그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로동자의 로동을 그처럼 절약한다.》(J. N. 비도 《대생산도구로 말미암아 공업기술과 상업에서 발생하는 독점에 관하여》, 1828년 빠리판, 13페지) 《기업주는 항상 전력을 다하여 시간과 로동을 절약하려고 할것이다.》(《두걸드 스튜어드저작집》, W. 해밀턴 편찬, 1855년 에딘버러판, 제8권, 《정치경제학강의》, 318페지) 《그들 (자본가들) 의 관심사는 그들이 사용하는 로동자의 생산력을 될수록 크게 만드는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주의력은 거의 전적으로 이 생산력을 제고시키는데 집중된다.》(R. 죠운즈 《국민정치경제학교과서》, 제3권, 〔39페지〕)

간이 아니라 앞으로는 15시간 로동함으로써 이 감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씌여있다. 자본주의적생산하에서 로동생산력의 발전은 로동자가 자기자신을 위하여 로동해야 할 로동일부분을 단축하며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로동자가 자본가를 위하여 무상으로 로동할수 있는 로동일의 나머지부분을 연장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품가치를 저락시킴이 없이 이러한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달성할수 있는가 하는것은 우리가 다음에 고찰하려고 하는 상대적잉여가치의 여러가지 특수한 생산방법들을 고찰할 때에 보게 될것이다.

제 11 장

협 업

우리가 이미 본바와 같이 사실상 자본주의적생산은 동일한 개별적자본이 동시적으로 다수의 로동자를 고용하며 따라서 로동과정이 그 범위를 확대하여 생산물을 대량적으로 공급하게 되는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된다.① 다수의 로동자가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또는 같은 로동장소에서라고 해도 좋다.) 같은 종류의 상품생산을 위하여 같은 자본가의 지휘밑에서 일한다는것은 력사적으로나 개념적으로나 자본주의적생산의 출발점으로 된다. 생산방식 그자체에 대하여 말한다면 례컨대 초기의 공장제수공업은 같은 자본으로 동시적으로 고용하는 로동자의 수가 더 많다는것외에는 동업조합적수공업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동업조합 장주의 작업장이 확대되였을뿐이다.

그러므로 구별은 처음에는 단지 량적인것이다. 우리가 이미 본바와 같이 일정한 자본이 생산하는 잉여가치총량은 한 로동자가 제공하는 잉여가치에 동시적으로 고용된 로동자의 총수를 승한것과 같다.② 이 로동자의 수는 그자체로서는 잉여가치률 또는 로동력의 착취도를 조금도 변동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상품가치일반의 생산에 대해서 말한다면 로동과정의 모든 질적변화는 관계없는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가치

① 이 책 356~358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이 책 352페지를 보라. —편집자

의 성질에서 나오는것이다. 만일 12시간로동일 하루가 6실링에 대상화된다면 그러한 로동일의 1,200일은 6실링×1,200에 대상화될것이다. 한 경우에는 12×1,200로동시간이 생산물에 구현되며 다른 경우에는 12로동시간이 생산물에 구현된다. 가치의 생산에 있어서 다수는 언제나 개별적단위의 합계로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가치생산의 견지에서 볼 때에는 1,200명의 로동자가 각기 개별적으로 생산하든 또는 그들이 동일한 자본의 지휘밑에 통합되여 생산하든 그것은 아무런 차이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지만 일정한 한계내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생긴다. 가치에 대상화된 로동은 사회적인 평균적질의 로동이다. 다시말하면 그것은 평균적로동력의 발현이다. 그러나 평균량은 언제나 같은 종류의 많은 각이한 개별적량의 평균으로서만 존재한다. 매개 산업부문에서 페테르라든지 파울이라든지 하는 개별적로동자는 많건적건 평균적로동자와는 배리가 있다. 수학에서 《오차》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개별적배리는 많은 수의 로동자를 모으기만 하면 상쇄되여 없어진다. 유명한 궤변가이며 아첨쟁이인 에드먼드 버크는 차지농업가로서의 자기의 실제경험에 근거하여 심지어 다음과 같은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5명의 머슴으로 구성되는 《그러한 작은 집단》에서도 벌써 로동에서의 모든 개인적차이가 없어지며 따라서 임의의 성인 영국머슴 5명만 함께 모아놓으면 그들은 동일한 시간내에 다른 임의의 5명의 영국머슴이 하는 일과 꼭같은 일을 한다는것이다.(8) 어쨌든 동시적으로 고용되는 많은 로

(8) 《한사람의 로동의 가치와 다른 어떤 사람의 로동의 가치에는 힘과 숙련과 열성의 차이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어떤 임의의 5명은 전체로서는, 내가 우에서 말한 년령에 속하는 다른 어떠한 5명과 같은 량의 로동을 제공한다는것을 나는 나의 주밀한 관찰에 근거하여 확신하는바이다. 이것은 이 5명중 1명은

동자의 총로동일을 로동자의 수로 제하면 그자체가 사회적평균로동의 1일분인것은 명백하다. 한사람의 로동일이 례컨대 12시간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동시적으로 고용되는 12명의 로동자의 로동일은 144시간이라는 총로동일을 이룬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이 12명의 각자의 로동은 많건적건 사회적평균로동과는 차이가 있을것이며 따라서 개개인은 동일한 일을 하는데 얼마간 많거나 혹은 얼마간 적은 시간을 들일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개인의 로동일은 144시간이라는 총로동일의 $\frac{1}{12}$로서 사회적인 평균적질을 가진다. 그러나 12명의 로동자를 고용하는 자본가에게는 로동일은 12명전체의 총로동일로서만 존재한다. 매개 개별적로동자의 로동일은 총로동일의 해당한 부분으로서만 존재하며 그것은 이들 12명이 함께 일하는 경우이건 또는 그들의 로동의 련계가 다만 그들이 동일한 자본가를 위하여 일한다는 점뿐인 경우이건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다. 이와 반대로 만약 이 12명의 로동자중 2명씩이 한사람의 소경영주에게 고용된다면 매개 경영주가 동일한 가치량을 생산한다는것은, 따라서 일반적잉여가치률을 실현한다는것은 우연적인 일일것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개인적배리가 나타날것이다. 만약 로동자가 어떤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것보다 현저하게 많은 시간을 들인다면 즉 그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로동시간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로동시간 또는 평균적인 로동시간과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면

훌륭한 일군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갖추고있으며 다른 1명은 서투른 일군이며 다른 3명은 혹은 전자에 가깝거나 혹은 후자에 가까운 중등일군일것이라는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5명이라는 그와 같은 소집단속에서도 벌써 5명의 인간이 만들수 있는 모든것의 완전한 총량을 발견하게 될것이다.》(E. 버크 《곡물부족에 관한 의견과 상론》, 15~16페지) 또 께뜰래의 평균적개인에 관한 론의를 참조하라.[257]

그의 로동은 평균적로동으로서 인정될수 없으며 그의 로동력은 평균적로동력으로서 인정될수 없을것이다. 그러한 로동력은 혹은 전혀 팔리지 않든가 혹은 로동력의 평균가치이하로만 팔리게 되든가 할것이다. 그러므로 로동능력의 일정한 최저한이 전제로 되여있으며 또 우리가 후에 보게 되는바와 같이 자본주의적생산은 이 최저한을 측정하는 방법을 찾아내는것이다.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저한은—비록 다른 한편으로 로동력에 대하여 그 평균가치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할지라도—평균으로부터 배리된다. 그러므로 6명의 소경영주중에서 어떤자는 일반적잉여가치률보다 많은 잉여가치를 뽑아내며 어떤자는 그보다 적은 잉여가치를 뽑아낸다. 이 차이는 전사회적으로는 상쇄되지만 개별적경영주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가치중식의 법칙은 개별적생산자에게 대해서는 오직 그가 자본가로서 생산하며 다수의 로동자를 동시에 사용하며 따라서 처음부터 사회적평균로동을 운동시키는 경우에라야만 비로소 완전히 실현된다.(9)

로동방식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라도 많은 로동자의 동시적사용은 로동과정의 물질적조건에 혁명을 일으킨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건물이나 원료 등을 위한 창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또는 번갈아 사용하는 용기, 기구, 장치 등 한마디로 말하여 생산수단의 일부분이 이제는 로동과정에서 공동적으로 소비되게 된다. 한편으로 상품의 교환가치, 따라서 또

(9) 교수 로쉐르씨는 교수부인에게 2일간 고용된 한 침모가 교수부인이 같은 하루에 교용한 두명의 침모보다 더 많은 로동을 제공하는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말한다.[258] 이 교수는 아동실에서나 주요인물인 자본가가 없는 곳에서는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을 관찰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① 이 책 633~639페지를 보라. —편집자

생산수단의 교환가치는 그 사용가치의 리용도를 아무리 높인다 해도 조금도 증가되는것이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공동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수단의 규모는 커진다. 20명의 직포공이 20대의 직조기를 가지고 일하는 방은 독립적인 1명의 직포공이 2명의 도제를 데리고 일하는 방보다는 넓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로동자 20명을 수용하는 한채의 작업장을 건축하는데는 로동자 2명씩을 수용하는 10개의 작업장을 건축하는데 드는것보다 적은 로동이 들며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대량적으로 집중되고 공동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수단의 가치는 이 생산수단의 규모와 그 유용효과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는 않는다. 공동으로 사용되는 생산수단은 개개의 생산물에 자기가치의 보다 적은 구성부분을 이전하는데 그 리유는 부분적으로는 이 생산수단이 넘겨주는 총가치가 동시에 더 많은 량의 생산물에 분배되기때문이며 부분적으로는 이 생산수단이 분산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수단에 비하여 비록 절대적으로는 더 큰 가치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 작용범위로 보아서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가치를 가지고 생산과정에 들어가기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불변자본의 가치구성부분은 저하하며 따라서 이 가치부분의 크기에 비례하여 상품의 총가치도 역시 저하한다. 그 결과는 마치 그 상품의 생산수단이 더 싸게 생산되는것처럼 된다. 생산수단의 사용에서의 이러한 절약은 오직 로동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비하기때문에만 생겨난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수단은 고립적인 독립적로동자 또는 소경영주의 분산적이고 상대적으로 비싼 생산수단과는 달라 많은 사람이 공간적으로 집합될뿐이고 협동적으로 로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회적로동의 조건 또는 로동의 사회적조건으로서의 이러한 성격을 획득한다. 로동수단의

일부분은 로동과정 그자체가 아직 사회적성격을 획득하기전에 벌써 이러한 사회적성격을 획득한다.

생산수단의 절약은 일반적으로 두가지 견지에서 고찰해야 한다. 첫째로는 그것이 상품을 싸게 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로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한에 있어서이다. 둘째로는 그것이 선대총자본에 대한 즉 자본의 불변적구성부분과 가변적구성부분의 가치총액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률을 변동시키는 한에 있어서이다. 후자에 관해서는 이 저작의 제3부 제1편[259]에서 비로소 고찰하게 될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언급해야 할 많은 문제까지도 서술의 련관을 위하여 그리로 미루려 한다. 분석의 진행상 연구대상을 이렇게 분할하는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분할은 동시에 자본주의적생산의 정신에도 합치한다. 자본주의적생산하에서는 로동조건이 어떤 독립적인것으로서 로동자에게 대립하기때문에 그 절약도 또한 로동자와는 조금도 상관이 없는, 따라서 로동자의 개인적생산능률을 제고시키는 방법과는 분리된 특수한 조작으로서 표현된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생산과정에 또는 서로 다르지만 호상 련관된 생산과정에 계획적으로 함께 참가하는 로동형태를 협업이라고 한다.(10)

기병 1개 중대의 공격력 또는 보병 1개 련대의 방어력이 개별적인 기병이나 보병이 발휘할수 있는 공격력이나 방어력의 총계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것과 마찬가지로 개별적로동자들의 힘의 기계적총계는 많은 사람이 동시적으로 동일한 불가분적인 작업(레컨대 무거운 짐을 들어올린다든가

---

(10) 《Concours de forces》 (《힘의 협동》).(데스뛰뜨 드 뜨라씨 《의지와 그 작용에 대하여》, 80페지)

권양기를 돌린다든가 도로에서 장애물을 치운다든가 하는 등)에서 협력하는 경우에 발휘되는 사회적력량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11) 이러한 경우에 결합로동이 달성하는 효과는 개개인의 로동에 의해서는 결코 달성될수 없거나 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이거나 또는 극히 작은 규모에서만 달성할 수 있을것이다. 이 경우에 문제는 비단 협업에 의하여 개인의 생산력이 제고된다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그자체가 집단적힘인 하나의 새로운 생산력이 창조된다는데 있다.(11a)

다수의 힘이 하나의 총체적인 힘으로 융합되는데서 생겨나는 새로운 력량은 그만두고라도 대다수의 생산적로동에 있어서 다만 사회적접촉만으로도 벌써 경쟁심과 활기의 특수한 자극을 일으켜 그것이 매개 사람들의 개인적작업능력을 높인다. 그 결과 12명이 144시간이라는 공동적인 1로동일에 제공하는 총생산물은 12시간씩 제각기 일하는 12명의 고립적인 로동자들 또는 12일동안 계속하여 일하는 1명의 로동자가 제공하는것보다 훨씬 더 많다.(12) 이것은 인간이 그 본성

---

(11) 《그 이상 더 세분할수 없을 정도로 간단하나 다수 로동자들의 협력없이는 수행될수 없는 그러한 작업이 많이 있다. 례컨대 큰 통나무를 달구지에 들어올리는 일…요컨대 많은 사람이 하나의 불가분적인 동일한 작업에서 동시적으로 호상 협조함이 없이는 수행될수 없는 온갖 일이 그러하다.》 (E. G. 웨익필드 《식민방법에 관한 견해》, 1849년 런던판, 168페지)

(11a) 《무게가 한톤이 되는 짐을 들어올리는 일은 한사람으로써는 전혀 불가능하며 열사람이면 전력을 다하여야 겨우 가능하지만 백사람이면 매개인이 손가락 하나만을 움직여도 할수 있다.》 (죤 벨러즈 《산업전문학교창설제안》, 1696년 런던판, 21페지)

(12) 《이 경우에 〔10명의 차지농업가가 각각 30에이커의 경지에 사용하는것과 같은 수의 로동자를 1명의 차지농업가가 300에이커의 경지에 사용하는 경우에〕 또한 많은 농업로동자들이 공동으로 작업하는데서 생겨나는 리익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가가 아니면 용이하게 리해하지 못할것이다. 1대4의 비률이 3대12의 비률과 같다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그러나 실천에서는 이 명제가 들어맞지 않는다. 수확기라든가 또는 기타 긴급을 요하는 많은 작업들에서 많은 로동자를 한데 결합시킨다면 일은 더 잘, 더 신속하게 수행된다. 례컨대 수확로동에서 달구지군 2명, 짐싣는 사람 2명, 던지는 사람 2명, 갈퀴질하는 사람 2명 그리고 곡초더미 또는 곡간에서 일하는 몇명의 사람들은 각이한 농장들

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것처럼 정치적동물(13)은 아닐지라도 하여간 사회적동물이라는데 기인한다.

비록 많은 사람이 같은 시간에 공동으로 동일한 또는 같은 종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매개인의 개인적로동은 총로동의 일부분으로서 로동과정자체의 각이한 단계를 대표할수 있다. 이때 로동대상은 협업의 결과 이러한 단계들을 더 빨리 통과하게 된다. 례컨대 만약 12명의 벽돌공이 벽돌을 발판밑에서 꼭대기까지 올리기 위하여 순차적인 렬을 짓는다면 그들 매개인은 동일한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개별적작업은 하나의 공동적인 작업의 련속적인 부문을 즉 매개 벽돌이 로동과정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는 특수한 단계를 이룬다. 그리하여 벽돌은 전체 로동자의 24개의 손을 통과함으로써 발판을 오리내리는 매개 개별적로동자의 2개의 손을 거칠 때보다 더 빨리 운반된다.(14) 로동대상은 동일한 공간을 더 짧은 시간에 통과한다. 다른 한편 례컨대 한 건물의 건설에 여러 방면으로부터 동시에 착수하는 경우에도 비록 협업하는 일군들이 이때 같은 로동 또는 같은 종류의 로동을 한

에 분산하여 소집단으로 되여서 일하는 같은 수의 로동자들의 2배의 일을 할것이다.》(〔J. 아바스너트〕《식량의 현가격과 농장규모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 차지농업가의 저작, 1773년 런던판, 7~8페지)

(13)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그 엄밀한 의미에서는 인간은 그 본성에 있어서 도시의 시민[260]이라는것이다.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동물이라고 한 프랭클린의 정의가 미국사회에 특징적인것과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정의는 고전적고대에 역시 특징적인것이다.

(14)《이밖에도 이와 같은 부분적분업은 모든 로동자가 하나의 동일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일어날수 있다는것을 인정해야 할것이다. 례컨대 벽돌을 손에서 손을 거쳐 높은 발판까지 나르는 벽돌공들은 모두가 동일한 작업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사이에는 일종의 분업이 존재하는데 그 분업은 그들이 각기 벽돌을 일정한 거리만 옮겨놓으며 그들 전체가 공동으로 벽돌을 지정된 장소에 옮겨놓으면 그들 각자가 벽돌을 단독으로 높은 발판까지 운반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옮겨놓게 되는데서 표현된다.》(F. 스까르베크《사회적부의 리론》, 1839년 빠리 제2판, 제1권, 97~98페지)

다 할지라도 로동의 결합이 일어난다. 결합된 로동자 또는 총체적로동자는 앞뒤에 눈과 팔을 가지고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전면성을 가지고있기때문에 144시간이라는 결합로동일은 로동대상을 공간적으로 다방면으로부터 동시적으로 가공한다. 그렇게 되면 그 144시간의 결합로동일은 어떤 로동대상에 한 방면으로부터 착수하는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 고립된 12명의 로동자의 12시간로동일보다 총생산물을 더 신속하게 완성한다. 여기서는 공간적으로 서로 다른 생산물부분이 동시적으로 성숙된다.

우리는 서로 보충하는 많은 로동자가 같은 일 또는 같은 종류의 일을 한다는것을 강조하였는데 그것은 공동로동의 이와 같은 가장 단순한 형태는 협업의 가장 발전된 형태에서도 역시 중대한 역할을 놀기때문이다. 로동과정이 복잡하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룬다는 사실만으로도 각이한 로동자들간에 각이한 작업을 배정할수 있게 하며 따라서 그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수 있게 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총생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을 단축할수 있게 한다.(15)

많은 생산부문들에는 결정적순간이 있다. 즉 로동과정 그자체의 성질에 의하여 규정되며 그동안에 반드시 일정한 로동성과를 달성하여야 할 그런 시기가 있다. 례컨대 한떼의 양의 털을 깎는다든가 혹은 몇모르겐 밭의 곡물을 베서 거두어들여야 할 때 생산물의 량과 질은 이 작업이 일정한 시간

---

(15) 《만약 어떤 복잡한 로동을 해야 한다면 각종 작업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사람은 이 일을 하고 저 사람은 저 일을 하여 모두가 함께 한사람의 노력으로써는 도저히 실현할수 없는 그러한 결과의 달성을 촉진한다. 한사람은 노를 저을 때에 한사람은 키를 잡고 세번째 사람은 그물을 던지든가 또는 작살로 고기를 찌르든가 한다. 그리하여 고기잡이는 그러한 협력이 없이는 달성할수 없는 그런 성과를 얻는다.》 (데스뛰뜨 드 뜨라씨 《의지와 그 작용에 대하여》, 78페지)

에 시작되여 일정한 시간에 끝나는가 끝나지 못하는가에 의하여 좌우된다. 이러한 경우에 로동과정이 차지하여야 할 기간은 레컨대 청어잡이의 경우와 같이 미리 정해져있다. 한 개인은 1주야동안에 레컨대 12시간의 1로동일밖에 마련해낼 수 없지만 그러나 레컨대 100사람의 협업은 12시간의 1로동일을 1,200시간의 1로동일로 확대시킨다. 짧은 로동시간은 결정적순간에 작업장소에 투입되는 로동량의 크기에 의하여 보상된다. 이 경우에 제때에 성과를 거두는가 못거두는가 하는것은 많은 결합로동일을 동시에 적용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있으며 유용효과의 크기는 로동자수의 다소에 달려있다. 그러나 이 로동자의 수는 고립적으로 작업하면서 그와 동일한 시간내에 그와 동일한 규모의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로동자의 수보다 언제나 적다.(16) 이와 같은 협업이 결여하기때문에 미국의 서부에서는 매년 많은 곡물이 못쓰게 되며 또 영국의 통치로 인하여 옛공동체가 파괴된 동인도지역에서는 매년 다량의 면화가 못쓰게 되는것이다.(17)

협업은 한편으로는 로동의 공간적범위를 확대할수 있게 하며 또 그렇기때문에 어떤 로동과정들에서는 로동대상의 공간적인 관련에 의하여서도 벌써 협업이 필요하게 된다. 레컨

(16) 《그것 〔농업로동〕 을 결정적순간에 수행한다면 더욱 큰 결과를 보게 된다.》 (〔J. 아바스너트〕 《식량의 현가격과 농장규모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7페지) 《농업에서는 시간이라는 요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없다.》 (리비히 《농업의 리론과 실천》, 1856년판, 23페지)

(17) 《아마 중국과 영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의 다른 어떠한 나라보다도 더 많이 로동을 수출하고있는 나라에서 거의 있으리라고는 생각할수 없는 그러한 불행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면화의 수확에 필요한 충분한 수의 일손을 얻을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다량의 면화를 수확하지 못하고 내버려두며 또 기타 부분은 면화가 이미 땅에 떨어져서 변색되고 또 부분적으로는 썩어버린후에 땅에서 주어들인다. 그리하여 재배업자는 적당한 시기에 일손이 부족한탓으로 영국에서 그처럼 애타게 기다리는 그 수확물의 많은 부분을 사실상 잃어버리지 않을수 없다.》 (《벵갈통보, 격월, 해외정보적요》, 1861년 7월 22일)

대 배수, 제방, 관개와 운하굴착, 도로건설, 철도부설 등등의 경우에 그러하다. 다른 한편 협업은 생산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생산령역을 공간적으로 축소할수 있게 한다. 이처럼 로동의 작용범위는 확대되면서 동시에 로동의 공간적범위가 축소되는것은 비생산적비용(faux frais)을 많이 절약하게 하는데 이러한 축소는 많은 로동자의 집중과 각종 로동과정의 근접, 생산수단의 집중에서 생겨난다.(18)

개별적인 개인적로동일의 동일한 크기의 합계에 비하여 결합로동일은 더 많은 사용가치를 생산하며 따라서 어떤 유용효과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로동시간을 감소시킨다. 일정한 경우에 결합로동일이 생산력의 이와 같은 제고를 가져오는것이 어떻게 달성되든간에 즉 그것이 로동의 기계적힘이 제고되기때문이든지 또는 로동의 공간적인 작용범위가 확대되기때문이든지 또는 생산의 공간적범위가 생산의 규모에 비하여 축소되기때문이든지 또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량의 로동이 짧은 기간내에 적용되기때문이든지 또는 개인의 경쟁심이 자극되고 그들의 활기가 왕성하게 되기때문이든지 또는 많은 사람이 하는 같은 종류의 작업에 련속성과 다면성의 락인이 찍히기때문이든지 또는 각이한 작업이 동시적으로 수행되기때문이든지 또는 생산수단이 그 공동적사용에 의하여 절약되기때문이든지 또는 개인의 로동이 사회적평균로동의 성격을 띠게 되기때문이든지 어떤 경우에나 결합로동일의 특수한 생산

---

(18) 《경작의 진보에 따라 이전에는 500에이커의 토지에 분산적으로 사용되고있던 모든 자본과 로동이 그리고 아마 그 이상 되는것이 이제는 100에이커의 토지의 일층 집약적인 경작에 집중된다.》 비록 《사용되는 자본과 로동의 량에 비해서 공간은 축소되였지만 생산의 범위는 이전에는 매개 개별적인 독립적생산자가 차지하고 경작할 때의 생산범위에 비해서 확대되였다.》 (R. 죠운즈 《부의 분배에 관한 론술》, 《지대에 관하여》, 1831년 런던판, 190~191, 199~200페지)

력은 로동의 사회적생산력 또는 사회적로동의 생산력인것이다. 이 생산력은 협업 그자체로부터 생긴다. 다른 로동자들과의 계획적인 공동합작에서 로동자는 그의 개인적한계를 벗어나 그의 종속적능력을 발휘한다.(19)

대체로 로동자들은 함께 모이지 않고서는 직접적으로 협력할수 없으며 따라서 그들이 일정한 장소로 집결하는것이 그들의 협업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임금로동자는 동일한 자본, 동일한 자본가가 그들을 동시에 고용하지 않는다면 즉 그들의 로동력을 동시에 사지 않는다면 협업을 할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로동력들자체가 생산과정에서 통합되기전에 이러한 로동력의 총가치 즉 로동자들의 1일분, 1주일분 등등의 임금총액이 이미 자본가의 주머니에 통합되여있어야 한다. 300명 로동자의 보수를 다만 하루분이라도 단번에 지불하기 위하여서는 소수로동자의 보수를 1주일에 한번씩 1년간에 지불하는것보다 더 많은 자본지출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협업로동자의 수 또는 협업의 규모는 우선 개별적자본가가 로동력의 구매에 지출할수 있는 자본의 크기에, 다시말하면 매개 개별적자본가가 다수 로동자의 생활수단을 지배하는 정도여하에 의존한다.

그리고 불변자본의 경우도 가변자본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례컨대 원료에 대한 지출은 300명의 로동자를 고용하는 1명의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각각 10명의 로동자를 고용하는 30명의 자본가 매사람의 지출의 30배가 된다. 공동적으

---

(19) 《개개의 인간의 힘은 보잘것없으나 이 보잘것없는 힘의 결합은 이 부분적인 힘의 총계보다 더 큰 전체적인 힘을 산생한다. 그리하여 단순히 힘을 결합하기만 해도 시간을 단축시킬수 있으며 이 힘들의 작용범위를 확대할수 있다.》 (P. 베리 《정치경제학에 관한 고찰》에 가한 G. R. 까를리의 주, 《이딸리아정치경제학고전저작가론문집 · 현대편》, 제15권, 196페지에 수록)

로 리용되는 로동수단의 량은 그 가치량에 있어서나 그 물질량에 있어서나 고용로동자수와 같은 정도로는 증가하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현저하게 증가한다. 그리하여 개별적자본가들의 수중에로의 생산수단의 대량적집적은 임금로동자들의 협업을 위한 물질적조건이며 협업의 범위 또는 생산의 규모는 생산수단의 이러한 집적의 정도에 의존한다.

처음에는 동시적으로 착취당하는 로동자의 수 따라서 그들이 생산하는 잉여가치량이 고용주자신을 육체로동에서 해방하며 소경영주를 자본가로 전화시켜 형식상 자본관계를 성립시키는데 충분한 정도의것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개별적자본의 일정한 최소한의 액이 필요하였다.① 이제는 자본의 이 최소한의 액은 다수의 분산된, 서로 독립한 개인적로동과정들이 하나의 결합된 사회적로동과정에로 전화되는데 필요한 물질적조건으로 표현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초에는 로동에 대한 자본의 지휘도 로동자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가를 위해서, 따라서 자본가의 지배하에서 로동②한다는 사실의 형식적결과에 지나지 않았다. 많은 임금로동자의 협업이 발전함에 따라 자본의 지휘는 로동과정 그자체의 수행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되며 현실적인 생산조건으로 된다. 생산장소에서의 자본가의 명령은 이제는 전투마당에서의 장군의 명령과 마찬가지로 없어서는 안되는것이다.

비교적 대규모적인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또는 공동적인 온갖 로동은 많건적건 하나의 지휘를 필요로 하는데 이 지휘에 의하여 개별적활동의 조화가 매개되며 생산유기체의 독립

① 이 책 357~385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이 책 359페지를 보라. 편집자

적기관들의 운동과는 구별되는 전체 생산유기체의 운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반적기능이 수행되는것이다. 바이올린독주자는 자신이 자신을 지휘하나 교향악은 지휘자를 필요로 한다. 이 지휘나 감독이나 매개라는 기능은 자본에 예속된 로동이 협업로동으로 되자마자 자본의 기능으로 된다. 그러나 자본의 특수기능으로서의 지휘의 기능은 특수한 성격을 가지게 된다.

우선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의 추진적동기로 되며 규정적 목적으로 되는것은 자본의 될수 있는대로 많은 자기증식(20), 다시말하면 될수 있는대로 많은 잉여가치의 생산, 따라서 자본가에 의한 로동력의 될수 있는대로 많은 착취이다. 동시적으로 고용되는 로동자수의 증가와 더불어 그들의 반항도 커지며 그에 따라 이 반항을 진압하기 위한 자본의 압박도 필연적으로 커진다. 자본가의 지휘는 비단 사회적로동과정의 본성 그자체로부터 발생하여 이 과정에 속하는 특수한 기능일뿐만아니라 그와 동시에 이 사회적로동과정의 착취의 기능이며 따라서 착취자와 그의 착취의 원료간의 불가피한 적대관계로 말미암아 필요하게 된다.① 또 그리고 타인의 소유물로서 임금로동자와 대립하는 생산수단의 규모가 증대하는데 따라 그것을 합목적적으로 사용하도록 통제할 필요도 증대한다.(21) 그리고 또 임금로동자들의 협업은 자본이 이

(20) 《리윤은…기업의 유일한 목적이다.》 (J. 밴덜린트 《화폐만능론》, 11페지)

(21) 영국속물들의 신문인 《방관자》는 1866년 5월 26일호에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있다. 만체스터철선제조회사에서 자본가와 로동자간의 일종의 공동출자제도가 창설된 이후의 《첫결과는 재료의 랑비가 갑자기 감소된 사실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다른 모든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자기자신의 재산을 랑비할 리유가 없다는것을 리해하였기때문이다. 그런데 재료의 랑비는 아마 가망없는 채권에 다음가는 공업상 손실의 최대의 원천일것이다.》 이 신문은 로치데일협동조합의 실험[261]의 근본적결함으로서 다음과 같은것을 밝

① 이 책 873~874페지를 보라. 一편집자

로동자들을 동시적으로 사용하는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로동자들의 기능들의 련관과 생산적집합체로서의 그들의 통일은 그들자신의 외부에 즉 그들을 집합시키며 그들을 련결시키는 자본속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로동의 련관은 관념적으로는 자본가의 계획으로서 그들과 대립하며 실천적으로는 자본가의 권위로서, 그들의 활동을 자기의 목적에 종속시키는 타인의 의지의 권력으로서 그들과 대립한다.

그리하여 자본가의 지휘는 그 내용으로 보아서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있는데 그것은 그가 지휘하는 생산과정자체가 한편으로는 생산물의 생산을 위한 사회적로동과정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의 가치증식과정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기때문이다. 자본가의 지휘는 그 형식으로 보아서는 전제적이다. 대규모적인 협업이 발전함에 따라 이 전제도 자기의 특유한 형태들을 발전시킨다. 자본가는 그의 자본이 본래의 자본주의적 생산을 개시할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크기에 도달하자마자 우선 육체로동에서 해방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본가는 이제는 개별적로동자들과 로동자집단들에 대한 직접적이며 계속적인 감시의 기능도 특수한 부류의 임금로동자들에게 넘겨준다. 군대가 군관과 하사관을 필요로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자본의 지휘하에 공동로동에 통합된 로동자대중에게도 로동과정에 자본의 이름으로 지휘하는 산업 군관(지배인)과 하사관(감시자)이 필요하다. 감독이라는 로동이 그들의 전문기능으로 고정된다. 정치경제학자는 독립적농민 또는 독립적 수공업자의 생산방식을 노예제도에 기초하는 식민농장경영과

히고있다. 《그 실험은 로동자들의 조합이 상점, 공장 및 거의 모든 형태의 산업을 능히 성과적으로 관리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으며 또 로동자들자신의 형편을 비상히 개선하였다. 그러나 (!) 그것은 자본가에게는 이렇다 할만한 자리를 전혀 남겨놓지 않았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비교할 때에는 이 감독로동을 생산상의 비생산적비용에 넣는다.(21a) 이와 반대로 그들이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을 고찰할 때에는 공동적로동과정의 성질자체에서 나오는 지휘의 기능과 이 과정의 자본주의적인 따라서 적대적인 성격에서 나오는 지휘의 기능을 동일시한다.(22) 자본가는 그가 산업의 지휘자이기때문에 자본가인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가 자본가이기때문에 산업의 사령관으로 된다. 봉건시대에 전쟁과 재판에서의 최고권력이 토지소유의 속성이였던것과 마찬가지로 산업상의 최고권력은 자본의 속성으로 된다.(22a)

로동자가 자기 로동력의 판매자로서 자본가와 거래를 하는 동안은 자기 로동력의 소유자이지만 그러나 그는 오직 그가 소유하고있는것만을 즉 오직 자기의 개인적인 단독적인 로동력만을 팔수 있다. 이 관계는 자본가가 단 하나의 로동력이 아니라 100명의 로동력을 사며 또는 단 한사람의 로동자가 아니라 서로 독립하여있는 100명의 로동자와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이로 말미암아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자본가는 이 100명의 로동자를 협업시키지 않고서도 그들을 사용할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가는 100명의 독립적로동력의 가치를 지불하는것이지 100명의 결합로동력의 대가를 지불

(21a) 캐언즈교수는 《로동에 대한 감독》을 미국 남부 주들에서의 노예제적생산의 주요특징으로서 설명한후 다음과 같이 계속하여 말한다. 《자기 토지의 생산물전체를 자신이 취득하는 자작농 (북부의) 은 로동에 대한 다른 자극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감독이라는것이 전혀 불필요하다.》 (캐언즈 《노예력》, 48~49페지)

(22) 일반적으로 각이한 생산방식의 특징적인 사회적특성을 통찰하는데 탁월한 제임즈 스튜어트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대제조업기업이 개인경영을 파괴하는 리유는 대제조업기업이 노예로동의 단순성에 가까이 접근하기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정치경제학원리》, 1767년 런던판, 제1권, 167~168페지)

(22a) 그러므로 오귀스뜨 꽁뜨 및 그의 학파는 그들이 자본가나으리들의 영원한 필요성을 실증한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봉건령주나으리들의 영원한 필요성을 능히 실증할수 있었을것이다.[262]

하는것이 아니다. 로동자들은 독립적인 사람들로서는 동일한 자본과 일정한 관계를 맺었지만 그들 호상간에는 관계를 맺지 않은 개별적사람들이다. 그들의 협업은 로동과정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그러나 로동과정내부에서는 로동자들은 벌써 자기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 과정에 들어온후부터는 자본의 일부분으로 되여버렸다. 호상 협업하는자로서는 또는 하나의 활동하는 유기체의 성원으로서는 그들자신이 자본의 특수한 존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로동자가 사회적인 로동자로서 발휘하는 생산력은 자본의 생산력이다. 로동의 사회적생산력은 로동자들이 일정한 조건밑에 놓여지자마자 무상으로 발휘된다. 그리고 자본은 로동자들을 바로 이러한 조건밑에 놓는것이다. 로동의 사회적생산력은 자본에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로동자의 로동자체가 자본에 속하기전에는 로동자가 발휘하지 못하기때문에 그것은 본래 자본이 가지고있는 생산력으로서, 자본에 내재하는 생산력으로서 나타난다.

단순협업의 거대한 효과는 고대 아시아인, 애급인, 에트루리아인 등등의 거창한 건축물[263]들에서 볼수 있다.

《지나간 시대에 이 아시아국가들은 행정상 및 군사상 지출을 하고도 생활수단의 얼마간의 잉여분을 소유하고있었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호화스러운 건축물과 유용한 건축공사에 사용할수 있었다. 거의 모든 비농업인구의 손과 팔이 그들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또 우에서 말한 잉여물에 대한 유일한 지배권이 군주와 승려들에게 속해있었기때문에 그들은 국내의 도처에 있는 거대한 기념물들을 건설할수 있는 수단들을 가질수 있었다.…거대한 조각상과 거창한 중량물을 운반한다는것이 벌써 경탄할 일이였는데 그런것들을 움직일 때에 거의 전적으로 인간로동만이 가장 헤프게 사용되였던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로동자들과 그들의 노력의 집중만으로 충분하였다. 례컨대 산호초형성

과정에 있어서 매개 침전물은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가소로운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깊은 물속에서 거대한 산호초가 솟아올라 섬과 륙지를 형성하는것이다. 아시아의 왕국의 비농업로동자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육체적힘외에는 공사에 제공할 아무것도 거의 가지고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수가 그들의 힘이였다. 그리고 이 대중을 지휘하는 권력이 상술한 거대한 공사들을 수행할수 있게 하였다. 로동자들을 먹여살릴만한 수입이 한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의 수중에 집중되여있었기때문에 그러한 사업이 가능하였던것이다.》(23)

아시아와 애급의 왕들과 에트루리아의 신관 등등의 이러한 권력은 현대사회에서는 자본가에게 넘어갔다. 여기서 자본가가 개별적자본가로서 등장하든 혹은 주식회사[264]에서 보는 바와같이 결합된 자본가로서 등장하든 그것은 아무래도 좋다.

우리가 인류문화의 초기단계에서 즉 수렵민족들(23a)간에서나 또는 인도의 공동체농업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은 로동과정에서 지배적지위를 차지하는 협업은 한편으로는 생산조건의 공동소유에 기초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개별적인 꿀벌이 아직 벌둥지와 떨어져있지 않듯이 개개인이 자기를 씨족 또는 공동체와 련결시키는 태줄을 아직 끊지 못하고있다는 사정에 기초하고있다. 이 두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 협업은 자본주의적협업과 구별된다. 고대세계와 중세기와 현대 식민지에서 간혹 적용되는 대규모의 협업은 직접적인 지배와 예속의 관계에, 대체로는 노예제도에 기초를 두고있다. 이와 반대로 자본주의적협업형태는 처음부터 자기의 로동력을 자

---

(23) R. 죠운즈 《국민정치경제학교과서》, 77~78페지. 런던 및 기타 유럽의 수도들에 있는 고대 아씨리아, 애급 등등의 수집품은 우리를 이러한 협업적로동과정의 목격자로 되게 한다.

(23a) 랭개는 자기의 《민법리론》에서 수렵을 협업의 최초의 형태라고 말하고있으며 또 인간사냥(전쟁)을 수렵의 최초의 형태의 하나라고 말하고있는데 그것은 아마 부당한 말이 아닐것이다.

본에 파는 자유로운 임금로동자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협업형태는 력사적으로는 농민경영과 독립적수공업생산에(이것이 동업조합적형태를 가지든 안가지든간에) 대립하여 발전한다.(24) 자본주의적협업은 이것들과 대비할 때 협업의 특수한 력사적형태로서 나타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업 그자체가 자본주의적생산과정에 특유한 그리고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의 특성을 이루는 력사적형태로서 나타난다.

협업에 의하여 발휘되는 로동의 사회적생산력이 자본의 생산력으로 나타나듯이 협업 그자체도 분산적인 독립적로동자 또는 소경영주의 생산과정에 대립하는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의 독특한 형태로서 나타난다. 이것은 현실적로동과정이 자본에 종속된 결과 거기에서 일어나는 첫번째 변화이다. 이 변화는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다. 이 변화의 전제 즉 동일한 로동과정에서 비교적 많은 임금로동자를 동시에 사용하는것이 자본주의적생산의 출발점으로 된다. 이 출발점은 자본의 존재 그자체와 동시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로동과정의 사회적과정에로의 전화를 위한 력사적필연성이라면 다른 한편으로 로동과정의 이러한 사회적형태는 자본이 로동과정의 생산력을 제고함으로써 로동과정을 더 유리하게 착취하는데 리용하는 방법인것이다.

지금까지 고찰하여온 단순한 모습에서는 협업은 비교적 대규모적인 생산과는 일치하지만 그러나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어떤 특수한 발전시기의 고정적인 특수한 형태는 결코 아

---

(24) 소농민경영과 독립적인 수공업생산은 부분적으로는 봉건적생산방식의 토대를 형성하며 부분적으로는 봉건적생산방식이 해체된후에 자본주의적생산과 병행하여 나타난다. 동시에 그것들은 맨처음의 동양적공유제가 벌써 해체되였으나 노예제도가 아직 본격적으로 생산을 지배하지 못하고있던 때에는 고전적공동체[265]의 전성기의 경제적기초를 이룬다.

니다. 그것이 대략 그와 비슷한것으로서 나타나는것은 기껏해서 아직 수공업적인 초기공장제수공업(25)에서이며 또 어떤 종류의 대농업에서이다. 그 대농업은 공장제수공업시기에 상응하는것이며 오직 동시적으로 사용되는 로동자의 수와 집적된 생산수단의 규모에 의해서만 농민경영과 본질적으로 구별될뿐인것이다. 자본이 큰 규모로 운영되기는 하나 분업과 기계가 아직 중요한 역할을 놀지 못하는 생산부문에서는 단순협업이 언제나 지배적인 형태이다.

협업의 단순한 모습 그자체는 더 발전된 협업형태들과 병존하는 그 특수형태로서 나타나기는 하지만 협업은 의연히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기본형태이다.

---

(25) 《동일한 일에 많은 사람의 기능과 근면과 경쟁심을 결합시키는것이 이 일을 진척시키는 방식이 아닌가? 그리고 영국은 과연 이 방식에 의하지 않고서 양모공업을 그처럼 고도로 완성시킬수 있었겠는가?》 (바클리 《질문자》, 1750년 런던판, 56페지, 제521절)

제 12 장

분업과 공장제수공업

1. 공장제수공업의 이중적기원

분업에 기초한 협업은 공장제수공업에서 전형적인 모습을 취한다. 이 협업이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의 특징적형태로서 우세하게 된것은 대략 16세기중엽으로부터 18세기의 마지막 3분의 1기까지의 계속되는 본래의 공장제수공업시기이다.

공장제수공업은 두가지 방식으로 발생한다.

첫째 방식은 생산물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그 손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는 여러가지 종류의 독립적인 수공업로동자들이 동일한 자본가의 지휘하에서 하나의 작업장내에 통합되는 경우이다. 례컨대 마차는 전에는 수레목수, 마구사, 재봉사, 철물공, 놋쇠공, 록로사, 레스제조공, 유리공, 화공, 칠공, 도금공 등등 허다한 독립적수공업자들의 로동의 총생산물이였다. 마차공장제수공업은 이 각종 수공업자전체를 하나의 작업장에 집중하여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 서로 협력하면서 동시에 일하게 한다. 마차제작이 끝나기전에는 마차에 도금할수 없는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여러대의 마차가 동시에 제작된다면 그 일부가 생산과정의 앞단계를 통과하고있을 때에 다른 부분은 부단히 도금될수 있다. 이 한도내에서는 우리는 아직 기성형태의 인적 및 물적 재료를 사용하는

단순협업의 지반우에 머물러있는것이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마차제작에만 종사하는 재봉사, 철물공, 놋쇠공 등등은 점차로 자기들의 종전의 수공업을 그 전체적범위에서 수행하는 습관을 잃어버리게 되는 동시에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까지도 잃어버린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일면적인 활동이 이제는 이러한 협소한 활동범위를 위하여서는 가장 합목적적인 형태를 취하게 된다. 본래 마차공장제수공업은 독립적수공업들의 결합체로서 나타났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마차생산을 각종 특수작업에로 분할하여 그 매개 작업은 한 로동자의 전문적기능으로 되며 작업전체는 이와 같은 부분로동자들의 련합체에 의하여 수행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직물공장제수공업과 기타 많은 공장제수공업도 같은 자본의 지휘하에 각종 수공업들이 결합됨으로써 발생하였다.(26)

그러나 공장제수공업은 이것과는 반대의 길을 통해서도 발생한다. 같은 작업 또는 같은 종류의 작업을 수행하는 례컨대 종이라든가 활자라든가 바늘이라든가를 만드는 많은 수공업자들이 한 자본에 의하여 동시적으로 한 작업장에 고용

---

(26) 공장제수공업의 이와 같은 형성방식의 일층 현대적인 실례를 보여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인용한다. 리옹과 님에서의 견방적공업과 견직공업은 《완전히 가부장적성격을 띤다. 이 공업부문은 많은 녀성과 아동을 고용하고있으나 그들의 체력을 손상시키거나 그들의 건강에 해독을 주는 일이 없다. 로동자들은 이전대로 드롬강, 바르강, 이제르강, 보클류즈강의 아름다운 계곡에 있으면서 누에를 치며 고치에서 실을 뽑는다. 이 생산은 결코 진정한 공장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 더 면밀히 고찰할 때에는…분업의 원칙이 여기에서는 독특한 성격을 띠고있다. 거기에는 권사공, 연사공, 염색공, 풀먹이공 그리고 직포공이 있기는 하나 그들은 동일한 작업장에 집중되여있지 않으며 또 동일한 경영주에 종속되여있지 않다. 그들은 모두가 독립적으로 일하고있다.》(A. 블랑끼 《산업경제학교정》, A. 블래즈 편찬, 1838~1839년 빠리판, 79페지) 블랑끼가 이 책을 쓴 이후 이 각종 독립로동자들의 일부분은 공장에 집중되였다. {제4판 주: 그런데 맑스가 이것을 쓴 이후 이 공장들에서는 동력직조기가 채용되여 급속하게 수직기를 구축하고있다. 크레펠드의 견방직공업도 역시 같은것을 체험하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F. E.}

된다. 이것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협업이다. 이 매개 수공업자들은(아마 한두 도제와 더불어) 하나의 완전한 상품을 만들며 따라서 그 상품의 제조에 필요한 각종 작업을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그는 여기서 계속하여 자기의 종전의 수공업적 방식으로 로동한다. 그렇지만 외부적사정은 즉시로 한 장소에로의 로동자들의 집중과 그들의 동시적로동을 다른 방식으로 리용하게 된다. 례컨대 일정한 기일내에 더 많은 량의 완성상품을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러하다. 그때문에 로동이 분할된다. 동일한 수공업자에게 각이한 여러 작업을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하게 할 대신에 작업들은 서로 분리되고 고립화되고 공간적으로 병립되여 그 매개 작업이 서로 다른 수공업자에게 할당되며 그리하여 모든 작업이 협업하는 로동자들에 의하여 동시적으로 수행된다. 이와 같은 우연적인 분할은 반복되고 그 특유한 우점을 나타내며 점차 체계적인 분업으로 고착된다. 상품은 여러가지 작업을 수행하는 한 독립적수공업자의 개인적생산물로부터 각자가 오직 같은 한가지 부분적작업만을 끊임없이 수행하는 수공업자들 련합체의 사회적생산물로 된다. 독일의 동업조합적제지업자들에게서는 일련의 순차적작업으로서 서로 융합된 동일한 작업들이 화란의 제지수공업공장에서는 많은 협업로동자들이 동시적으로 수행하는 부분적작업으로 독립화되였다. 뉘른베르그의 동업조합적제침업자는 영국의 제침수공업공장의 기본요소로 된다. 그러나 뉘른베르그의 제침수공업자는 아마 20종이나 되는 일련의 작업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수행하는데 영국의 제침수공업공장에서는 20명의 제침수공업자가 각기 20종의 작업중 한가지[266]만을 수행하면서 동시적으로 작업한다. 이러한 작업들은 경험에 기초하여 일층 더 세분화되고 고립

화되여 개별적로동자들의 전문적기능으로 독립화된다.

이와 같이 공장제수공업의 발생방식, 수공업으로부터의 그의 발생은 이중적이였다. 한편으로 그것은 각이한 종류의 독립적수공업의 결합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이러한 수공업은 비독립화되고 일면화되여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동일한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서로 보충하는 부분적작업으로 될수밖에 없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공장제수공업은 같은 종류의 수공업자들의 협업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것은 이 개인수공업을 각종 특수작업으로 분해하며 이 매개 작업은 고립화되고 독립화되여 매개 작업이 한 특수로동자의 전문적기능으로 된다. 그러므로 공장제수공업은 한편으로는 생산과정에 분업을 도입하거나 혹은 분업을 일층 발전시키며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이전에는 서로 독립되여있던 여러가지 수공업들을 결합시킨다. 그러나 그 특수한 출발점이 어떻든지간에 그 최종적모습은 같은것이다. 즉 사람을 그 기관으로 하는 하나의 생산기구이다.

공장제수공업내부의 분업을 옳게 리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포착하는것이 중요하다. 우선 생산과정을 그 특수단계들로 분해하는것은 이 경우에 수공업적활동이 각종 부분작업으로 분해하는것과 완전히 일치된다. 그러한 작업이 복잡한것이든 간단한것이든간에 그 작업은 여전히 수공업적이며 따라서 매개 로동자가 자기의 도구를 사용할 때에 있어서의 힘과 숙련과 속도와 정확성에 의존한다. 수공업이 의연히 그 기초로 되여있다. 이 협애한 기술적기초는 생산과정의 진정한 과학적분해를 배제한다. 왜냐 하면 생산물이 통과하는 매개 부분과정은 수공업적부분로동으로서 수행되여야 하기때문이다. 바로 이와 같이 수공업적숙련이 의연히 생산

과정의 기초로 되여있기때문에 매개 로동자는 오로지 하나의 부분적기능에만 적합하게 되며 또 그의 로동력은 전 생애에 걸쳐 이 부분적기능의 기관으로 전화된다. 마지막으로 이 분업은 하나의 특수한 종류의 협업이며 그것이 가지는 많은 우점은 협업의 일반적본질에서 나오는것이지 협업의 이러한 특수형태에서 나오는것은 아니다.

2. 부분로동자와 그의 도구

더 세밀하게 관찰하여보면 우선 다음과 같은것이 명백하게 된다. 즉 일생동안 같은 하나의 단순한 작업에만 종사하는 로동자는 그의 신체전체를 그러한 작업을 위한 자동적인 일면적기관으로 전화시키며 따라서 그 작업에는 많은 작업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수공업자보다 적은 시간을 들인다. 그런데 공장제수공업의 산기구를 이루고있는 결합된 전체 로동자는 전적으로 그와 같은 일면적인 부분로동자로 구성되여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독립적수공업에 비하여 보다 적은 시간에 보다 많은것이 생산된다. 다시말하면 로동생산력이 제고된다.(27) 부분로동이 한사람의 전문적기능으로 독립화되면 그 부분로동의 방법도 역시 개선된다. 국한된 동일한 동작을 부단히 반복하며 이 국한된 작업에 주의를 집중하기때문에 어떻게 하면 힘을 가장 적게 들이고 소기의 효과를 얻을수 있는가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런데 로동자의 각이한 세대들이 동시적으로 함께 생활하며 또 동일한 수공

(27) 《일이 번잡한 공장제수공업에서 로동이 분할되여 각이한 부분로동자들에게 할당되면 될수록 그 로동은 시간과 로동을 더 적게 들이면서 더 빨리, 더 잘 수행된다.》 ((헨리 마틴) 의 《동인도무역의 리익》, 1720년 런던판, 71페지)

업공장내에서 함께 일하기때문에 이렇게 획득한 기술상의 비결은 공고화되고 축적되며 또 대대로 급속히 전승된다.(28)

공장제수공업은 사회에 존재하고있는 직업의 자연발생적 분화를 작업장내부에서 재생산하며 또 그것을 체계적으로 극도에까지 발전시킴으로써 실제로 부분로동자들의 숙련을 낳는다. 다른 한편으로 공장제수공업이 부분로동을 한사람의 일생동안의 직업으로 전화시키는것은 직업을 상속시켜 그것을 세습신분으로 고정시키거나 또는ㅡ일정한 력사적조건으로 말미암아 세습신분제도와 모순되는 개인의 변이성을 낳는 경우에는ㅡ동업조합으로 고착시키는 종전사회의 경향에 상응하는것이다. 세습신분과 동업조합은 례컨대 동식물의 종과 아종에로의 분화를 규제하는 법칙과 같은 자연법칙에서 발생한다. 여기에서 다른 점이라면 다만 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르면 신분의 세습성과 동업조합의 배타성은 사회적법칙으로서 선포된다는것뿐이다.(29)

《다카에서 생산되는 모스린은 그 섬세한 점에서 또 코로만델에서 생산되는 화포 및 기타의 직물은 그 색갈이 곱고 질기다는 점에서 이때가지 비할바없는것으로 되여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자본과 기계와 분업이 없이 생산되며 또 그 생산에는 유럽의 제조업에

---

(28) 《쉬운 로동은 전승된 기능이다.》 (Th. 호지스킨 《통속정치경제학》, 48페지)

(29) 《기예도 역시…애급에서 상당한 정도로 완성되였다. 왜냐 하면 오직 이 나라에서만 수공업자들은 다른 시민계급들의 일에 관여하는것을 절대로 금지당하였고 그들은 법률에 의하여 그들의 일족이 세습하기로 되여있는 직업에만 종사하지 않으면 안되였기때문이다.…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있어서는 수공업자들이 자기의 주의를 너무나 많은 일에 분산시키고있는것을 본다.…그들은 때로는 경작을 해보기도 하며 때로는 장사일에 참여해보기도 하며 때로는 동시에 두가지 내지 세가지 기술에 종사하기도 한다. 자유국가에서는 그들은 보통 민중집회에 참석한다.…이와는 반대로 애급에서는 국가의 일에 간섭하거나 또는 동시에 몇가지의 기예에 종사하는 수공업자는 누구든지 엄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의 직업에 열중하는것을 방해할수 있는것은 하나도 없다.…그밖에 선조들로부터 허다한 규칙을 계승한 그들은 또 새로운 개선을 발견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씨칠리아의 디오도로스 《력사문고》, 제1권, 제74장)

그처럼 많은 리익을 제공하여주는 방법들중 그 어느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다. 거기서 직포공은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직물을 제조하며 때로는 각재를 조잡하게 맞춘 가장 간단한 구조의 직기에서 일하는 단독적인 개인들이다. 그 직기에는 심지어 날실을 감아두는 장치조차 없으며 따라서 직기는 언제나 그 전체 길이대로 늘여놓아야 한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불편하게 크므로 생산자의 오두막집방안에는 놓을수 없다. 그러므로 생산자는 날씨가 나쁠 때마다 일을 중지하게 되더라도 부득이 밖에서 일을 해야 한다.》(30)

이 인도인들에게 거미와도 같은 숙련을 가져다주는것은 다만 대대로 축적되여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전해지는 특별한 기능뿐이다. 그래도 대다수 공장제수공업로동자에 비해서는 그와 같은 인도인직포공은 대단히 복잡한 로동을 한다.

한 제품을 생산할 때 각종 부분적과정을 혼자서 차례차례로 수행하는 수공업자는 때로는 장소를 바꾸어야 하며 때로는 도구를 바꾸어야 한다.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에로의 이행은 그의 로동과정을 중단시키며 그의 로동일의 중간에 이를테면 간극을 만든다. 만약 그가 옹근 하루동안 련속적으로 하나의 동일한 작업을 한다면 이러한 간극은 축소되든가 또는 그의 작업변경이 감소됨에 따라 소멸된다. 로동생산성의 제고는 이 경우에 일정한 시간내의 로동력지출의 증대 즉 로동강도의 증가에 기인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로동력의 비생산적소비의 감소에 기인한다. 즉 정지로부터 운동에로 이행할 때마다 필요한 힘의 여분의 지출은 한번 달성된 표준속도의 지속이 오래 계속되는데 의하여 보상되는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단조로운 로동의 련속은 정력의 긴장과 앙양을 약화

---

(30) 《영령인도에 관한 력사적기술적보고,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휴 마리, 제임즈 윌슨 등등의 저작, 1832년 에딘버러판, 제2권, 449~450페지. 인도의 직기는 직립식이다. 다시말하면 직기우에 날실을 수직으로 늘여놓는다.

시키는데 그것은 정력은 활동자체의 변환에 의하여 회복되고 자극되기때문이다.

로동생산성은 로동자의 숙련에 의존할뿐만아니라 그의 도구의 완전성에도 의존한다. 같은 종류의 도구 례컨대 베는 도구, 구멍을 뚫는 도구, 찌르는 도구, 두드리는 도구 등이 각이한 로동과정에서 사용되며 또 한편으로 같은 로동과정에서 같은 도구가 각이한 작업에 쓰인다. 그런데 그러한 로동과정의 각이한 작업이 서로 분리되여 그 매개의 부분적작업이 부분로동자의 수중에서 가장 적합한 따라서 전문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자 이전에는 여러가지 목적에 사용되던 도구들이 변화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도구의 이와 같은 형태변화의 방향은 형태가 변하지 않은 도구를 리용함으로써 부닥치게 되는 특수한 곤난들을 체험하는데서 명백해진다. 공장제수공업의 특징은 로동도구의 분화와 전문화인데 이러한 로동도구의 분화로 말미암아 같은 종류의 도구가 그 특수용도별로 특수한 고정적형태를 취하게 되며 로동도구의 전문화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매개 특수도구가 오직 전문적부분로동자의 수중에서만 그 작용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게 된다. 버밍감에서만도 약 300종에 달하는 각종 마치들이 생산되고있는데 그 매개 종류가 특수한 생산과정에 쓰일뿐만아니라 가끔 여러가지 마치들이 동일한 과정의 각이한 작업에 쓰인다. 공장제수공업시대는 로동도구를 부분로동자들의 전문적인 특수기능에 적응시킴으로써 그것을 간단하게 하며 개량하며 다양하게 한다.(31)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시대는 동시에 다수

(31) 다윈은 동식물의 자연적기관에 관하여 그의 획기적인 저작 《종의 기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동일한 한 기관이 각이한 작용을 수행하는 경우에 기관의 가변성의 원인은 아마 이 경우에 자연도태가 형태의 매개의 미세한 차이를 보존 또는 억압하는것이 한 기관이 오직 일정한 특수목적에만 쓰이는 경우만큼 면밀하지 못하다는

의 간단한 도구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기계의 물질적조건의 하나를 창조한다.

부분로동자와 그의 도구는 공장제수공업의 단순한 요소들을 이룬다. 이제 우리는 공장제수공업의 전모를 보기로 하자.

3. 공장제수공업의 두 기본형태 —이종적공장제수공업과 유기적공장제수공업

공장제수공업의 구성에는 두가지 기본형태가 있는데 이 량자는 때로는 서로 엉키여있지만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두 종류이며 또 특히 공장제수공업이 후에 기계제대공업에로 전화할 때에는 전혀 다른 역할을 논다. 이 이중성은 제품자체의 본성에서 생긴다. 제품은 독립적인 부분생산물들의 순전히 기계적인 조합에 의하여 만들어지든가 그렇지 않으면 호상 련관된 일련의 과정 및 조작들에 의하여 그 완성된 모습이 이루어지든가 한다.

례를 들면 기관차는 5,000개이상의 독립적부분품으로써 구성된다. 그러나 그것은 대공업의 산물이므로 본래의 공장제수공업의 첫째 종류의 실례로 인정될수는 없다. 그러나 시계는 그 훌륭한 실례로 된다. 윌리엄 페티도 시계의 례를 들어 공장제수공업적분업을 설명하였다.[267] 시계는 뉘른베르그의 한 수공업자의 개인적제품[268]으로부터 다음에 든것과 같은

점에 있을는지 모른다. 례컨대 여러가지 물건을 베는데 쓰이는 칼은 대체로 거의 같은 형태를 보존할수 있으나 이와 반대로 어떤 한가지 용도에만 쓰이는 도구는 다른 용도에 사용될 때에는 그 형태도 달라지지 않으면 안된다.》

무수한 부분로동자들의 사회적생산물로 전화되였다. 조제품제조공, 시계태엽제조공, 문자판제조공, 유사제조공, 보석공, 시계석제품제조공, 시계바늘제조공, 시계케스제조공, 나사못제조공, 도금공 그리고 이에 부속되는 다수의 세분공으로서는 례컨대 치차제조공(이것은 또 놋쇠치차공과 강철치차공으로 구분된다.), 시계틀제조공, 트는 장치와 바늘회전장치 제조공, 련동장치완성공(치차를 축에 고정시키며 보석의 모를 가는 일 등등을 한다.), 추축제조공, 조립공(각종 치차와 나사들을 제자리에 맞추어놓는 일을 한다.), 태엽바퀴완성공(바퀴에 이발을 지으며 구멍을 적당한 크기로 뚫으며 조정륜과 제역륜을 고착시킨다.), 정동장치제조공, 실린더정동장치인 경우에는 실린더제조공, 정동륜제조공, 평형륜제조공, 완급침(시계의 진행속도를 조절하는 장치)제조공, 정동기제조공(본래의 정동장치제조공), 다음에는 태엽통완성공(태엽통과 제역장치의 조립을 완성한다.), 강철연마공, 치차연마공, 나사못연마공, 문자기입공, 에나멜공(구리에 에나멜칠을 한다.), 룡두제조공(시계케스의 룡두고리만을 만든다.), 접철완성공(시계케스의 접철에 놋쇠축을 꼽는 등등의 일을 한다.), 뚜껑용수철장치공(뚜껑이 열리게 하는 용수철을 시계케스에 붙인다.), 조각공, 부조공, 시계케스연마공 등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계전체를 조립하여 시계가 돌아가도록 하는 완성공. 시계부분품들의 극소부분만이 여러 사람의 손을 통과하며 이 모든 분산된 사지[125]는 그것들을 최종적으로 하나의 기계전체로 결합시키는 한사람의 손에 비로소 집합된다. 완성생산물의 그 다종다양한 구성부분들에 대한 이와 같은 외부적인 관계는 이 시계생산의 경우에 기타의 류사한 제품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작업장내에서의 부분로동자들의 결합을 우연

적인것으로 만든다. 부분로동들은 그것대로 개별적인 독립적 수공업으로서 수행될수 있는데 이것은 와트주와 뇌샤뗄주에서 볼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레컨대 제네바에는 대규모의 시계수공업공장이 있다. 즉 여기에서는 한 자본의 지휘하에 부분로동자들의 직접적인 협업이 실시되고있다. 이 후자의 경우에도 문자판과 태엽과 시계케스가 수공업공장자체내에서 제작되는 일은 드물다. 여기에서는 결합된 공장제수공업적생산은 례외적인 경우에만 유리하다. 왜냐 하면 자택에서 일하려고 하는 로동자들간의 경쟁이 극히 치렬하며 많은 이종적과정에로의 생산의 세분은 공동의 로동수단의 사용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고있으며 또 분산적으로 생산하는 조건하에서는 자본가는 작업용건물 등등에 대한 비용을 절약할수 있기때문이다.(32) 그러나 자택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한 자본가(공장주)를 위해서 일하는 이 부분로동자들의 지위는 자기 자신의 고객을 위해서 일하는 독립수공업자의 지위와는 전혀 다른것이다.(33)

공장제수공업의 둘째 종류, 공장제수공업의 완성된 형태

---

(32) 제네바에서 1854년에 8만개의 시계가 생산되였으나 이것은 뇌샤뗄주의 시계생산의 5분의 1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나의 시계제조소로 볼수 있는 쇼드폰만 해도 시계의 년생산량이 제네바의 2배나 된다. 1850년부터 1861년까지에 제네바는 72만개의 시계를 제조하였다. 《상공업 등에 관한 영국 대사관 및 공사관서기관 보고》, 1863년, 제6호중의 《시계업에 관한 제네바로부터의 보고》를 보라. 조립만 하면 되는 제품의 생산이 호상의존관계가 없는 여러 과정들로 나뉘여져있다는 그자체가 벌써 그와 같은 수공업공장의 대공업의 기계제생산에로의 전화를 극도로 저애하고있지만 시계의 경우에는 이밖에도 또 두개의 다른 장애가 첨부된다, 그것은 즉 시계의 구성요소들이 미소하고 섬세한것 그리고 시계가 사치품으로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것이다. 레컨대 런던의 최고급시계제조소에서는 1년간에 같은 모양의 시계가 한타스 제조되는 일이 거의 없다. 기계를 성과적으로 사용하고있는 바체론-콘스탄틴시계공장은 크기와 모양에 있어서 기껏해야 3~4종의 시계를 공급하고있을뿐이다.

(33) 시계제조라는 이 이종적공장제수공업의 이와 같은 전형적인 실례에서 우리는 우에서 말한 수공업적활동의 분해로부터 발생하는 로동도구의 분화와 전문화를 극히 면밀하게 연구할수 있다.

는 서로 관련되여있는 발전단계들 즉 순차적인 일련의 과정들을 통과하는 제품을 생산한다. 례컨대 제침수공업공장에서 철사는 72개 심지어는 92개의 특수한 부분로동자의 손을 통과한다.

그러한 공장제수공업은 원래 분산되여있던 수공업들을 결합하는 한에 있어서는 제품의 특수적생산단계들간의 공간적거리를 단축시킨다. 제품이 한 단계로부터 다른 단계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단축되며 따라서 이 이행을 매개하는 로동도 단축된다.(34) 그리하여 수공업에 비하면 로동생산력이 더 커지는데 이러한 로동생산력의 제고는 공장제수공업의 일반적인 협업적성격에서 생긴다. 다른 한편으로 공장제수공업에 특유한 분업의 원칙은 각이한 생산단계들을 고립화시키는데 이 생산단계들은 그와 같은 수의 수공업적성격을 띤 부분로동으로서 서로 독립화한다. 고립화된 기능들간의 련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데는 한손으로부터 다른 손에로의, 한 과정으로부터 다른 과정에로의 제품의 부단한 이전이 필요하게 된다. 대공업의 견지에서 볼 때 이 사정은 특징적이고 비용이 드는, 또 공장제수공업의 원칙자체에 내재하는 국한성이다.(35)

일정한 량의 원료 례컨대 제지수공업공장에서의 누데기 혹은 제침수공업공장에서의 철사의 일정한 량을 고찰한다면 그것은 최종적모습으로 완성될 때까지 각이한 부분로동자들의 손을 거쳐 시간상 순차적인 여러 생산단계들을 통과한다.

---

(34) 《사람들이 그처럼 밀집하여 일하는 곳에서는 운반은 필연적으로 적어질수밖에 없다.》 (〔헨리 마틴〕 《동인도무역의 리익》, 106페지)

(35) 《손로동을 사용함으로 하여 생기는 공장제수공업의 각이한 단계의 분립은 생산비를 비상히 높인다. 이 손실은 주로 한 과정에서 다른 과정에로 운반하는데서 생기는 것이다.》 (《각국의 산업》, 1855년 런던판, 제2부, 200페지.)

한편 작업장을 하나의 총체적기구로 본다면 원료는 생산의 모든 단계에 동시적으로 존재한다. 부분로동자들의 결합으로써 구성된 전체 로동자들은 도구를 쥔 그 무수한 손의 일부분으로는 철사를 펴며 그와 동시에 다른 손과 도구로서는 이 철사를 곧게 만들며 또 다른 손과 도구로서는 그것을 끊으며 끝을 뾰족하게 하는 등등의 일을 한다. 각이한 단계적과정이 시간적계기로부터 공간적병립으로 변하였다. 그러므로 같은 시간내에 더 많은 완성품이 공급된다.(36) 비록 이 동시성은 총과정의 일반적협업형태에서 생겨나는것이기는 하지만 공장제수공업은 비단 협업의 기성적인 조건들을 발견할뿐만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수공업적활동을 분해함으로써 협업의 조건들을 창조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공장제수공업은 오직 같은 로동자들을 동일한 세부작업에 고정시킴으로써만 로동과정의 이러한 사회적조직을 달성한다.

매개 부분로동자의 부분생산물은 동시에 동일한 제품의 하나의 특수한 발전단계에 지나지 않으므로 한 로동자는 다른 로동자에게 또는 한 로동자집단은 다른 로동자집단에 원료를 공급하는것이다. 한 로동자의 로동의 결과는 다른 로동자의 로동의 출발점으로 된다. 그리하여 이 경우에 한 로동자는 다른 로동자에게 직접 일거리를 주고있다. 매개 부분과정에서 예상한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로동시간은 경험에 의하여 확정되며 그리하여 공장제수공업의 총기구는 일정한

---

(36) 《그것 (분업) 은 또한 한가지 일을 각이한 부분작업으로 분할하여 그 부분작업을 모두 동시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한다.…단독적개인이라면 하나씩 순차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될 각이한 로동과정전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례컨대 이전에 다만 바늘 한개만을 끊으며 또는 뾰족하게 하던것과 같은 시간내에 많은 완성된 바늘을 생산하는것이 가능하게 된다.》 (두걸스 스튜어드 《정치경제학강의》, 319페지)

로동시간내에 일정한 결과가 달성되여야 한다는 전제에 기초를 두고있다. 오직 이 전제하에서만 호상 보충적인 각종 로동과정은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병렬하여 중단없이 수행될수 있다. 로동과 로동간의, 따라서 로동자와 로동자간의 이와 같은 직접적인 호상 의존관계가 매개 로동자로 하여금 자기 기능수행에서 오직 필요로동시간만을 사용하지 않을수 없게 하며 따라서 독립적수공업에서와는 또 지어 단순협업에서와도 전혀 다른 그러한 로동의 련속성, 일률성, 규칙성, 질서(37) 특히 로동의 강도가 형성된다는것은 명백하다. 어떤 상품에는 그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로동시간만이 지출되여야 하는데 이것은 상품생산일반에서 경쟁의 외부적 강제로서 나타난다. 왜냐 하면 피상적으로 말한다면 매개 생산자는 누구든지 자기의 상품을 시장가격으로 팔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이다. 그런데 공장제수공업에서는 일정한 로동시간내에 일정한 량의 생산물을 제공한다는것이 생산과정 그자체의 기술적법칙으로 된다.(38)

그러나 각이한 작업은 같지 않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같은 시간내에 같지 않은 량의 부분생산물을 생산한다. 그러므로 같은 로동자가 날마다 항상 같은 작업만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면 각이한 작업에는 각이한 비례수의 로동자가 사용되여야 한다. 례컨대 활자주조업에서 주자공은 한시간에 활자 2,000개를 주조하며 절단공은 4,000개를 끊으며 연마

---

(37) 《공장제수공업에서 일하는 일군들의 종류가 다양하면 할수록…매개 작업은 보다 질서정연하게 규칙적으로 진행되며 동일한 작업이 더 적은 시간에 수행되며 로동은 더 적게 든다.》 (〔헨리 마틴〕 《동인도무역의 리익》, 68페지)

(38) 그렇기는 하나 공장제수공업적생산은 많은 부문에서 이러한 결과를 오직 불완전하게 달성하고있을뿐이다. 왜냐 하면 공장제수공업적생산은 생산과정의 일반적인 화학적 및 물리학적 제 조건을 정확히는 통제할수 없기때문이다.

공은 8,000개를 연마한다면 1명의 연마공을 고용하면 4명의 주자공과 2명의 절단공을 고용하여야 한다.[269] 여기서 같은 종류의 작업을 하는 많은 사람의 로동이 동시에 사용된다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협업원칙이 재현된다. 그러나 이 원칙은 이제는 일정한 유기적관계로 표현된다. 그리하여 공장제수공업적분업은 비단 사회적총로동자의 질적으로 다른 기관들을 단순화, 다양화할뿐만아니라 이 기관들의 량적규모간의, 다시 말하면 이 매개 전문적기능을 수행하는 로동자들의 상대수 또는 로동자집단의 상대적크기간의 고정된 수학적비률도 설정한다. 공장제수공업적분업은 사회적로동과정의 질적구성과 아울러 그 량적규칙과 비례까지도 발전시킨다.

일정한 생산규모를 위하여 각종 부분로동자집단들간의 가장 합리적인 비례수가 경험에 의하여 확정된다면 생산규모는 오직 매개 특수한 로동자집단을 배수로 증가함으로써만 확대할수 있다.(39) 그밖에 어떤 일은 그 규모의 대소여하에 관계없이 동일한 개인이 마찬가지로 수행할수 있다는 점이다. 례컨대 감독이라는 로동이나 부분생산물을 한 생산단계에서 다른 생산단계에로 운반하는 로동 등이 그러한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능을 독립화하거나 특수한 로동자에게 나누어주는것은 사용로동자수를 증가하는 때에라야만 비로소 유리하나 그러한 증가는 즉시로 모든 집단에서 비례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

(39) 《만약 경험에 의하여 매개 수공업공장의 생산물의 특수한 성질에 따라 생산을 부분작업으로 분할하는데 어떤 방식이 가장 유리한가 또는 매개 작업에 요구되는 로동자수는 얼마인가 하는것을 알았다면 이 수자의 정확한 배수를 사용하지 않는 일체 기업은 생산에 더 많을 비용을 들이게 될것이다.…이것은 공업기업소들이 대규모로 확대되는 원인의 하나이다.》 (Ch. 배비지 《기계와 공장의 절약에 관하여》, 1832년 런던판, 제21장, 172~173페지)

매개 집단 즉 동일한 부분적기능을 수행하는 일정한 수의 로동자들은 동질적요소들로 구성되며 총기구의 한 특수기관을 이룬다. 그러나 일부 수공업공장들에서는 매개 집단 그 자체가 하나의 조직된 로동체이고 총기구는 이러한 기본적생산유기체의 반복 또는 배가에 의하여 형성된다. 유리병제조 수공업공장을 실례로 들어보자. 그것은 본질적으로 각이한 세 단계로 나뉘여져있다. 첫째는 준비단계인데 유리원료를 배합하며 모래와 석회 등등을 혼합하며 이 혼합물을 류동적인 유리액으로 용해시킨다.(40) 이 첫단계에서는 각종 부분로동자들이 작업에 종사하는데 그것은 마지막 단계—건조로에서 유리병을 꺼내며 품종별로 분류하며 포장하는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두 단계의 중간에 본래의 유리병생산 즉 류동적인 유리액의 가공이 진행된다. 유리로의 같은 아구리 옆에서 한 집단이 작업하고있다. 영국에서는 이 집단을 《화구》라고 부르고있다. 이 집단은 1명의 병제조공 또는 완성공, 1명의 부는 로동자, 1명의 수집공, 1명의 쌓는 로동자 또는 연마공, 1명의 운반공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5명의 부분로동자들은 단일한 로동체의 5개의 특수기관으로 되여있는데 이 로동체는 오직 통일체로서만 즉 오직 다섯사람의 직접적 협업에 의해서만 일할수 있다. 만일 5개의 부분으로 되는 구성체는 그중의 하나가 없어도 그것은 마비되고만다. 그러나 하나의 유리로에는 몇개의 아구리 례컨대 영국에서는 4개 내지 6개가 있는데 그 매개 아구리에는 액체상태의 유리가 들어있는 토제도가니가 달려있고 이 매개 도가니에서 다같이 5명의 전문로동자로 구성된 전속로동자집단이 일한다. 매개

(40) 영국에서는 용해로는 유리제품의 가공에 사용되는 유리로와는 분리되여있으나 벨지끄에서는 동일한 로가 이 두 과정에 사용되고있다.

개별적집단의 편성은 여기서는 직접 분업에 기초하고있으나 같은 종류의 여러 집단을 련결시키는것은 생산수단의 하나를 즉 이 경우에 있어서는 유리로를 공동소비에 의하여 일층 경제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단순협업이다. 4~6개의 로동자집단을 가지는 한개의 그와 같은 유리로는 하나의 유리작업장을 이루고있으며 유리수공업공장은 몇개의 이러한 작업장과 준비적 및 최종적 생산수단을 위한 설비 및 로동자를 포괄하고 있다.

끝으로 공장제수공업은 그 일부가 각종 수공업의 결합에서 발생하는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각이한 공장제수공업의 결합에로 발전할수도 있다. 례컨대 영국의 큰 유리공장은 토제도가니를 자체가 제조하고있는데 그 리유는 생산물의 품질이 주로 이 도가니의 질에 달려있기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공장제수공업이 생산물을 생산하는 공장제수공업과 결합되여있다. 반대로 생산물을 생산하는 공장제수공업은 그 생산물자체를 다시 원료로 쓰든가 또는 후에 그것을 자기의 생산물과 결합시키는 다른 공장제수공업과 결합될수도 있다. 례컨대 납유리공장제수공업은 유리연마업 및 놋쇠주조업(여러가지 유리제품에 금속을 박아넣는 일을 한다.)과 결합되는 일이 있다. 이 경우에 결합된 각종 공장제수공업은 하나의 총체적공장제수공업의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분리된 부문들을 형성하며 또 그와 동시에 그 매개가 자기자신의 분업을 가진 서로 독립된 생산과정을 형성하고있다. 결합된 공장제수공업은 몇가지 우점을 가지고있으나 그것은 그 자체에 기초하여서는 진정한 기술적통일을 달성하지 못한다. 이러한 통일은 공장제수공업이 기계제생산에로 전화될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상품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의 단축을 곧 자기의 의식적 원칙으로 선포하는 공장제수공업시대(41)는 기계의 사용도 여기저기서 발전시킨다. 많은 사람과 많은 힘의 지출이 요구되는 약간의 간단한 초보적과정에서 특히 그러하다. 례컨대 제지수공업공장에서는 누데기를 분쇄하는 일이 곧 제지용분쇄기에 의하여 수행되게 되였고 야금업에서는 광석을 분쇄하는 일이 곧 쇄광기에 의하여 수행되게 되였다.(42)[270] 모든 기계의 기본적인 형태는 일찌기 로마제국으로부터 전해오는 물방아이다.(43)[271] 수공업시대는 또한 라침판, 화약, 인쇄술 및 자동시계와 같은 위대한 발명을 남겼다. 그렇지만 대체로 기계는 애담스미스가 지적한바와 같이 분업에 비해서 부차적역할을 놀고있는것이다.(44) 17세기에 여기저기서 기계를 응용한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것은 그 당시의 대수학자들에게 현대적력학의 창조를 위한 실제적인 거점과 자극을 주었기때문이다.

공장제수공업시대의 독특한 기계는 의연히 많은 부분로

---

(41) 이것은 특히 W. 페티, 죤 벨러즈, 앤드루 애런턴의 저작들에서, 《동인도무역의 리익》에서, J. 밴덜린트의 저작에서 추측할수 있다.

(42) 16세기말엽에도 아직 프랑스에서는 광석을 분쇄하며 세광하는데 손절구와 채가 사용되고있었다.

(43) 기계발전의 전체 력사는 제분기의 력사에서 찾아볼수 있다. 영어로는 지금도 공장을 mill (제분소) 이라고 부른다. 19세기의 첫 수십년간에 씌여진 기술학에 관한 독일의 저서들을 보면 역시 Mühle (제분기) 라는 용어는 비단 자연력을 동력으로 하는 모든 기계를 가리킬뿐만아니라 기계적장치를 응용하는 모든 수공업공장도 가리킨다.

(44) 독자는 장차 이 책의 제4부[12]에서 더 상세하게 보게 되겠지만 A. 스미스는 분업에 관하여 단 하나의 새로운 명제도 내놓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를 공장제수공업시대의 대표적정치경제학자로서 특징짓는것은 그가 분업을 특히 강조하였기때문이다. 그가 기계는 종속적역할을 놀뿐이라고 한것은 대공업의 초기에는 로더데일의 반박을 받았고 대공업이 더 발전된 후시기에는 유어의 반박을 받았다. 그밖에 또 A. 스미스는 공장제수공업의 부분로동자들자신이 거대한 역할을 논 도구의 분화를 기계의 발명과 혼동하고있다. 기계의 발명에서 역할을 논것은 공장제수공업의 로동자들이 아니라 학자, 수공업자, 지어는 농민(이를테면 브린들리) 등등이였다.[272]

동자들의 결합으로 구성된 총체적로동자 그자체이다. 한 상품의 생산자가 순차적으로 수행하며 그의 로동과정에서 하나의 전체에 융합되는 여러가지 작업들은 상품생산자에게 여러가지를 요구한다. 그는 한 작업에서는 더 많은 힘을, 다른 작업에서는 더 많은 숙련을, 제3의 작업에서는 더 많은 주의력 등등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동일한 한 개인이 이러한 여러 자질을 같은 정도로 소유하지는 못한다. 각종 작업이 분리되며 독립화되며 고립화된후에 로동자들은 그들의 특장에 따라 구분되며 분류되며 편성된다. 그리하여 만약 로동자들의 타고난 특수성이 분업이 자라나는 지반으로 된다면 공장제수공업은 그것이 한번 도입된후에는 원래 오직 일면적인 특수기능에만 적합한 로동력을 발전시킨다. 이제는 총로동자는 같은 정도로 능숙한 모든 생산적자질을 구비하게 되며 그와 동시에 특수로동자 또는 로동자의 특수집단으로 개별화된 자기의 매개 기관을 오로지 그의 독특한 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함으로써 그 생산적자질을 가장 경제적으로 지출한다.(45) 부분로동자의 일면성과 심지어는 그 단점까지도 그가 총로동자의 한 기관으로서는 그의 장점으로 된다.(46) 일면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관습은 부분로동자로 하여금 본능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작용하는 한 기관으로 되게 하며 그리고 총기구의 련관은 그로 하여금 기계의 일부분과 같은 규칙성을 가지고 작용하지 않을수 없게 한다.(47)

---

(45) 《각각 다른 정도의 숙련과 힘이 요구되는 다수의 각이한 작업에로 일을 분할함으로써 공장주는 매개 작업에 적합한 량의 힘과 숙련을 정확히 구매할수 있다. 한편 일전체를 한사람의 로동자가 수행해야 한다면 동일한 개인이 극히 섬세한 작업도 할수 있는 충분한 숙련과 극히 어려운 작업도 감당할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어야 할것이다.》 (Ch. 배비지 《기계와 공장의 절약에 관하여》, 제19장)

(46) 례컨대 일면적인 근육의 발달, 골격의 완곡 등등.

(47) 어떤 유리수공업공장의 총지배인 W. 마샬씨는 어떻게 하면 소년로동자들간에

총로동자의 각종 기능에는 간단한것과 복잡한것, 저급적인것과 고급적인것이 있을수 있기때문에 그 기관들인 개별적로동력은 극히 각이한 정도의 교육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극히 각이한 가치를 가진다. 그러므로 공장제수공업은 로동력의 등급제도—이에 임금의 등급이 대응한다—를 발전시킨다. 만약 한편으로는 개별적로동자가 한가지 일면적인 기능에 적응되고 일평생 그 기능에 결박된다면 다른편으로는 그와 같은 정도로 각종 작업이 선천적 및 후천적 능력들의 이러한 등급제도에 적응하게 된다.(48) 그러나 어떠한 생산과정도 누구나 할수 있는 일정한 간단한 조작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그러한 조작도 이제는 더 내용이 풍부한 활동계기들과의 류동적인 관련을 끊어버리고 하나의 전문적인 기능으로서 고정된다.

그러므로 공장제수공업은 그것이 점령하는 매개 수공업에 있어서도 수공업적생산조직이 엄격히 배제하여온 소위 미숙련로동자라는 한 부류를 만들어낸다. 공장제수공업은 전반로동능력을 희생으로 하여 일면화된 전문을 숙달에까지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온갖 발전의 결여를 하나의 전문에로 전화

근면성이 유지되겠는가라는 조사위원회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극히 적절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그들은 자기의 일에서 도저히 태만할수 없습니다. 그들은 한번 일을 시작하면 계속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들은 기계의 부분품과 꼭같습니다.》(《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4차보고》, 1865년, 247페지)

(48) 유어박사는 대공업에 대한 찬양에서 공장제수공업에 특유한 성격을 자기처럼 론쟁적흥미를 가지지 않았던 이전의 경제학자들보다 또 심지어 당대의 경제학자 레컨대 배비지—그는 수학자 및 기계학자로서는 유어를 릉가하지만 대공업을 사실상 공장제수공업의 관점에서만 고찰하고있다—보다도 더 예민하게 포착하고있다. 유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매개 특수작업에 대한 로동자들의 적응은 분업의 본질을 이룬다.》 다른 한편 그는 이 분업을 《각종 개인적능력에 대한 로동의 적응》이라고 하며 끝으로 전체 공장제수공업제도를 《숙련의 정도에 의한 등급제도》로서 《숙련의 각이한 정도에 의한 분업》 등등으로서 특징짓고있다. (유어 《공장철학》, 19~23페지의 여러 개소)

시킨다. 등급제적단계들과 아울러 숙련공과 미숙련공에로의 로동자의 간단한 구분이 나타난다. 미숙련공을 위해서는 수업비가 전혀 불필요하며 숙련공을 위해서는 그 기능의 간단화로 하여 수공업자에 비하여 수업비가 적어진다. 이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모두 로동력의 가치가 떨어진다.(49) 그 례외가 있게 되는것은 로동과정의 분해에 의하여 수공업적경영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거나 혹은 같은 정도로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포괄적기능들이 생겨나는 경우뿐이다. 수업비의 소실 또는 감소로 하여 생기는 로동력의 상대적인 가치저하는 직접적으로 자본의 보다 큰 증식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로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는 모든것은 잉여로동의 령역을 확대하기때문이다.

4. 공장제수공업내부에서의 분업과 사회내부에서의 분업

우리는 우선 공장제수공업의 기원을 고찰하였고 다음에 그 간단한 요소들인 부분로동자와 그 도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장제수공업의 총기구를 고찰하였다. 이제는 공장제수공업적분업과 모든 상품생산의 일반적기초인 사회적분업간의 관계를 간단히 언급하려 한다.

로동 그자체만을 념두에 둔다면 사회적생산을 농업, 공업 등등과 같은 큰 부문으로 분류하는것은 일반적분업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생산부문을 종과 아종으로 구분하는것은 특수적분업이라고 부르며 한 작업장내부의 분업은 개별적분업이

(49) 《매개 수공업자는…한가지 일만을 함으로써 자기를 완성할수 있게 되므로…더욱 값싼 로동자로 된다.》 (유어 《공장철학》, 19페지)

라고 부를수 있다.(50)

사회내부에서의 분업과 그에 대응하여 개인이 특수한 직업범위로 국한되는것은 공장제수공업내부에서의 분업과 마찬가지로 두개의 상반되는 출발점에서 발전한다. 가족내부[50a]에서 그리고 가일층 발전함에 따라 씨족의 내부에서 성과 년령의 차이로 말미암아 즉 순전히 생리학적기초우에서 자연적 분업이 발생하며 그것은 공동체의 확대, 인구의 증가 또 특히 각이한 씨족간의 충돌과 한 씨족의 다른 씨족에 의한 정복과 더불어 그 분업의 재료를 확대한다. 다른 한편으로 앞에서 이미 서술한바와 같이① 생산물의 교환은 각이한 가족들과 씨족들과 공동체들이 호상 접촉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왜냐 하면 문화의 초기에는 독립자로서 상대하는것은 개인들이 아니라 가족, 씨족 등등이기때문이다. 각이한 공동체들은 그 자연환경속에서 각이한 생산수단과 각이한 생활수단을 발견한다. 그러므로 그 공동체들의 생산방식과 생활양식과 생산물은 서로 다르다. 바로 이 자연발생적차이때문에 공동체

---

(50) 《분업에는 다종다양한 직업의 세분으로부터 시작하여 수공업공장에서 보는바와 같이 하나의 동일한 생산물의 생산을 많은 로동자가 분담하는 분업까지 있다.》(슈또르흐 《정치경제학강의》, 빠리판, 제1권, 173페지) 《우리는 일정한 정도의 문명에 도달한 나라에서 세 종류의 분업을 볼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분업이라고 부르는 첫째 종류는 생산자를 농민, 제조업자, 상인으로 분할하는데 이들은 국민적로동의 3개의 주요부문에 상응한다. 특수적분업이라고 부를수 있는 둘째 종류는 각 로동부문의 많은 종으로의 분할이다.…끝으로 작업분할 또는 본래의 의미의 분업이라고 할수 있는 셋째 종류의 분업은 개별적수공업 또는 직업의 내부에서 일어나며…대다수의 수공업공장과 작업장에서 볼수 있다.》(스까르베크 《사회적부의 리론》, 1840년 빠리 제2판, 제1권, 84, 85페지)

(50a) {제3판 주: 인류의 원시상태에 관한 그후의 극히 근본적인 연구에 의하여 저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본래는 가족이 씨족으로 발전한것이 아니라 반대로 씨족이 혈연관계에 기초한 인류사회형성의 본원적인 자연발생적형태였다. 그리하여 여러가지 가족형태는 후일에 씨족동맹이 해체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비로소 발전하였다.[273] —F. E.}

① 이 책 106~107페지를 보라. —편집자

가 호상 접촉할 때 생산물의 호상교환을 일으키며 따라서 이 생산물들이 점차 상품으로의 전화를 일으킨다. 교환은 생산령역들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산령역들을 관련시키며 그것들을 사회적총생산의 많건적건 호상의존하는 부문들로 만드는것이다. 이 경우에 사회적분업은 본래 다르지만 서로 의존하지 않는 생산령역들간의 교환에 의하여 발생한다. 생리적분업이 출발점으로 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련결된 전체의 특수한 기관들은 서로 분렬되고 분해되고ㅡ이 분해과정에 주요한 충동을 주는것은 다른공동체와의 상품교환이다ㅡ독립화되며 드디여 각종 로동들간의 련결은 상품으로서의 생산물의 교환을 통하여서만 유지되는 데까지 이른다. 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래 독립적이였던것이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며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원래 비독립적이였던것이 독립성을 얻게 된다.

발전되고 또 상품교환에 의하여 매개되는 온갖 분업의 기초는 도시와 농촌과의 분리이다.(51) 사회의 전체 경제사는 이 대립의 운동에 요약된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 이상 더 상세하게 언급하려 하지 않는다.

공장제수공업내부의 분업에 대해서는 동시적으로 고용되는 로동자의 일정한 수가 물질적전제로 되는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내부의 분업에 대해서는 인구의 수효와 그 밀도가 물질적전제로 된다. 이 경우에 인구의 밀도는 동일한 작업장에서

---

(51) 제임즈 스튜어트경은 이 점을 가장 잘 설명하였다. 《제 국민의 부》보다 10년이나 먼저 출판된 그의 저작이 현재 얼마나 알려져있지 않는가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알수 있다. 즉 《인구》에 관한 말사스의 저작의 초판은 만약 그 순전히 연설적인 부분을 도외시한다면 승려 월리스 및 타운젠드에게서 일부 표절한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적으로 스튜어트에게서 표절한것인데 이 사실조차도 말사스의 숭배자들은 알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의 인간의 밀집을 대체한다.(52) 그러나 이 인구의 밀도라는 것은 상대적인것이다. 인구는 비교적 희박하나 발전된 교통수단을 가지고있는 나라는 인구는 더 많으나 교통수단이 발전하지 못한 나라에 비하여 인구밀도가 더 높은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례컨대 미국북부 제 주는 인도에 비하여 인구밀도가 더 높다.(53)

상품생산과 상품류통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일반적전제이므로 공장제수공업적분업은 사회내부의 분업이 이미 일정한 발전정도로 성숙할것을 요구한다. 반대로 공장제수공업적분업은 사회적분업에 반작용하여 그것을 일층 발전시키며 세분화한다. 로동도구의 분화에 따라 이 도구를 생산하는 생산부문들도 가일층 분화된다.(54) 이때까지 본업과 부업이라는 형태로 다른 산업부문과 련결되여있었고 또 동일한 생산자에 의하여 경영되여온 산업부문에 공장제수공업적생산이 보급될 때에는 즉시로 분리와 호상간의 독립화가 일어난다. 어떤 상품의 특수생산단계가 공장제수공업적으로 경영되게 되면 그 상품의 여러 생산단계는 독립적산업으로 된다.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제품이 부분생산물들이 순전히 기계적으로 결합되여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있는 경우에는 그 여러 부분

---

(52) 《사회적교제를 위해서나 또 로동생산물을 증가시키는 힘의 결합을 위해서나 일정한 인구밀도가 요구된다.》 (제임즈 밀 《정치경제학원리》, 1821년 런던판, 50페지)
《로동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사회의 생산력은 로동자수의 증가에 그들간의 분업의 효과를 승한 복비례로 증가한다.》 (Th. 호지스킨 《통속정치경제학》, 120페지)

(53) 1861년이래 동인도의 원래 인구가 조밀한 몇몇 지방에서 면화에 대한 수요가 증대한 결과[274] 면화생산이 쌀생산을 희생으로 하여 확장되였다. 그때문에 국부적인 기근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교통수단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자연적련락의 결여로 말미암아 한 지방의 쌀생산부족을 다른 지방으로부터의 공급으로써 보충할수 없었기때문이다.

(54) 그리하여 례컨대 직조용 북의 제조가 17세기에 벌써 화란의 하나의 특수한 공업부문으로 되였다.

로동은 또 특수한 수공업①으로 독립화될수 있다. 공장제수공업내부에서 분업을 더 완전히 진행하기 위하여 동일한 생산부문은 그 원료가 다름에 따라 또는 동일한 원료가 취할수 있는 형태가 다름에 따라 각이한 공장제수공업으로, 때로는 전혀 새로운 공장제수공업으로 분렬된다. 그리하여 벌써 18세기 전반에 프랑스 한나라에서만도 100여종의 각양각색의 견직물이 생산되였고 또 레컨대 아비뇽에서는 《매개 도제는 한 종류의 생산에만 종사할것이고 여러가지 직물의 제조방법을 동시에 배우지 말것》이라고 규정한 법률이 있었다.[275] 특수한 생산부문을 국내의 특수한 지역에 고착시키는 지역적분업은 모든 특수성을 리용하는 공장제수공업적경영에 의하여 새로운 자극을 받는다.(55) 공장제수공업시대에 사회내부의 분업에 풍부한 재료를 제공하는것은 세계시장의 확장과 식민제도인데 이것들은 공장제수공업시대의 일반적존재조건에 속하는것이다. 분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경제적령역과 아울러 사회의 다른 모든 령역을 포괄하는가, 또 어떻게 어디서나 전업과 전문의 형성과 인간의 세분을 위한 기초를 닦고있는가 하는것은 여기서는 더 상세하게 론증할바가 아니다. 그리하여 A. 스미스의 스승인 A. 퍼거슨은 벌써 《우리는 노예들만의 국민이 되였다. 우리에게는 자유인이 없다!》고 웨쳤던것이다.(56)

---

(55) 《영국의 양모공장제수공업은 일정한 지방들에 전속된 여러 부분 혹은 부문으로 분할되여 이 지방들에서는 그 부문만 전적으로 또는 주로 제조하고있지 않는가? 레컨대 섬세한 라사는 서머셋셔에서, 거치른 라사는 욕셔에서, 폭이 넓은 라사는 엑세터에서, 견직물은 서드베리에서, 축면사는 노리지에서, 면모교직은 켄달에서, 모포는 휘트니에서 생산되는 등등과 같다!》(바클리 《질문자》, 1750년, (56페지) 제520절)

(56) A. 퍼거슨 《시민사회사》, 1767년 에딘버러판, 제4분책, 제2부분, 285페지.

① 이 책 396~398페지를 보라. —편집자

사회내부의 분업과 작업장내부의 분업간에는 많은 류사점과 련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량자간에는 비단 정도상 차이뿐만아니라 본질상 구별이 있다. 내부적련관이 각종 생산부문을 포괄하는 경우에 량자간의 류사성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례컨대 목축업자는 모피를 생산하며 제혁업자는 그것을 가죽으로 전화시키며 제화업자는 가죽을 구두로 전화시킨다. 이 경우에 각자는 다만 단계생산물을 생산하며 그리고 마지막의 완성된 형태는 이 특수로동의 결합생산물이다. 그밖에 또 목축업자와 제혁업자와 제화업자에게 생산수단을 제공하는 각종 로동부문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A. 스미스처럼 이러한 사회적분업은 오직 주관적으로만 즉 관찰자의 립장에서만 공장제수공업적분업과 구별된다고 생각할수도 있다. 관찰자는 공장제수공업에서는 공간적으로 통합된 각종 부분로동을 한눈에 다 볼수 있지만 사회적분업에서는 부분로동이 광대한 면적에 분산되여있기때문에 또 그 매개 특수부문의 종업원의 수가 많기때문에 이 관련이 애매하게 된다.(57) 그런데 목축업자와 제혁업자와 제화업자의 독립된 로동들간에 련계를 지어주는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의 생산물이 상품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정이다. 한편 공장제수공업

(57) A.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본래의 공장제수공업에서 분업이 더 현저해보이는것은 《각이한 로동부문의 매개 부문에 종사하고있는 로동자들은 흔히 동일한 작업장안에 모을수 있고 따라서 관찰자는 그들을 한눈으로 단번에 볼수 있기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주민대중의 큰 욕망을 충족시키는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대공장제수공업 (!) 들에서는 매개 개별적로동부문이 극히 많은 로동자를 사용하고있기때문에 그돌전체를 동일한 작업장에 모으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분업은 그처럼 일목료연하지는 않다.》 (A. 스미스 《제 국민의 부》, 제1편, 제1장) 같은 장에 있는 《번영하는 문명국의 가장 평범한 수공업자 또는 일용로동자의 재산을 관찰하라…》 라는 말로써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보통로동자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무수한 각종 생산부문이 협력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묘사하고있는 유명한 개소는 거의 문자 그대로 B. 맨데빌이 그의 저서 《꿀벌이야기 또는 사적죄악은 공적리익》 에 붙인 주에서 베껴온것이다.(주가 붙지 않은 초판은 1705년에 출판되였고 주가 붙은것은 1714년에 출판되였다.)

적분업을 특징짓는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기서 부분로동자가 상품을 생산하는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58) 부분로동자들의 공동생산물이 비로소 상품으로 된다.(58a) 사회내부의 분업은 각이한 로동부문의 생산물의 매매에 의하여 매개되는데 공장제수공업내의 부분로동들간의 련관은 각이한 로동력이 동일한 자본가에게 판매되여 결합로동력으로서 사용되는데 의하여 매개된다. 공장제수공업적분업은 한 자본가의 수중에로의 생산수단의 집중을 전제로 하며 사회적분업은 서로 독립한 많은 상품생산자에로의 생산수단의 분산을 전제로 한다. 공장제수공업에서는 비례수 또는 비례관계의 철칙이 일정한 수의 로동자들을 일정한 기능하에 포섭하는데 한편 상품생산자와 그 생산수단이 각이한 사회적로동부문에 나뉘여지는 그 분배에서는 우연과 자의가 제멋대로 작용한다. 확실히 여러가지 생산령역들이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왜

(58) 《여기에는 우리가 개인의 로동에 대한 자연적보수라고 말할수 있는것은 벌써 아무것도 없다. 매개 로동자는 오직 전체의 한 부분만을 생산하며 또 매개 부분은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가치도 유용성도 가지지 못하므로 여기에는 로동자가 손에 쥐고 이것은 나의 생산물이다, 이것은 내가 가지겠다고 말할수 있는것이 하나도 없다.》(《자본의 요구에 대한 로동의 옹호》, 1825년 런던판, 25페지) 이 탁월한 저술의 저자는 우에서 이미 인용한 Th. 호지스킨이다.

(58a) 제2판 주: 미국인은 사회적분업과 공장제수공업적분업간의 이 차이를 실제적 례증으로 증명하였다. 남북전쟁[6]당시 워싱톤에서 새로 생각해낸 세금의 하나는 《전체공업생산물》에 부과된 6%의 소비세였다. 그러나 여기서 공업생산물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온다. 립법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어떤 물건이 생산되였다는것은 《그것이 만들어진 경우》(When it is made)이고 그것이 만들어졌다는것은 판매를 위하여 준비된 경우이다. 이제 많은 실례가운데서 그 하나를 들어보자. 뉴욕과 필라델피아의 수공업공장은 이전에는 우산을 그 모든 부속품과 함께 《만들고있었다》. 그러나 우산은 전혀 이질적인 구성부분들의 합성물이므로 이 구성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서로 독립된 그리고 각이한 장소에서 경영되는 생산부문들의 제품으로 되였다. 이제는 이러한 부문들의 부분생산물은 독립적상품으로서 우산수공업공장에 들어오게 되였고 우산수공업공장은 이 각이한 구성부분들을 하나의 전체로 조립할뿐이다. 미국인은 이러한 종류의 제품을 집합품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세금의 집합점으로서의 이러한 상품에 특히 알맞는 명칭이였다. 그리하여 우산은 처음에는 그 각 요소의 가격에 대한 6%의 소비세를 《집합》시키며 다음에는 또 그 총가격에 대한 6%의 소비세를 《집합》시키게 되였다.

냐 하면 한편으로는 매개 상품생산자는 어떤 사용가치를 생산하여 어떤 특수한 사회적욕망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 욕망의 범위는 량적으로 각이하며 하나의 내재적뉴대가 여러가지 욕망량을 련결시켜 하나의 자연발생적체계를 이루고있기때문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가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전체 로동시간중 얼마만큼한 시간을 매개의 특수한 상품의 생산에 지출할수 있는가 하는것을 상품의 가치법칙이 결정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생산령역들이 균형을 유지하려는 이 부단한 경향은 다만 이 균형의 부단한 파괴에 대한 반작용에 지나지 않는다. 작업장내부의 분업에서는 미리부터 또 계획적으로 준수되는 규칙이 사회내부의 분업에서는 내재적인 무언의 자연적필연성으로서 오직 사후에만 작용한다. 이 자연적필연성은 시장가격의 청우계적변동의 형태로만 지각될수 있으며 상품생산자들의 무규률적자의를 극복한다. 공장제수공업적분업은 자본가에게 속하는, 총기구의 단순한 손발을 이루는 사람들에 대한 자본가의 무조건적권위를 전제로 한다. 사회적분업은 경쟁이라는 권위외에는 즉 상품생산자들 호상간의 리해관계의 압박이 그들에게 가하는 강제외에는 다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독립적상품생산자들을 서로 대립시킨다. 이것은 마치 동물계에 있어서 모든자를 반대하는 모든자의 싸움[276]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종의 생존조건으로 되여있는것과 같다. 그러므로 자산계급적의식 즉 공장제수공업적분업, 로동자를 일평생 세부작업에 얽매여두는것, 자본의 권력에 대한 부분로동자의 무조건적예속 등을 로동생산력을 제고시키는 로동조직이라고 찬양하는 바로 그 자산계급적의식이 그와 마찬가지로 소리높이 사회적생산과정의 온갖 의식적인 사회적통제와 조절을 개별적자본가

의 불가침의 소유권과 자유와 자률적《독창성》에 대한 침해라고 비난하는것이다. 공장제도의 열광적인 변호자들이 사회적로동의 전반적조직에 대해서 그러한 조직은 사회전체를 공장으로 전화시킬것이라는 말외에는 더 반박할 말을 발견하지 못하고있는것은 매우 특징적이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사회에서는 사회적분업의 무정부상태와 공장제수공업적분업의 전제제도가 호상 제약하고있다면 그와는 반대로 직업의 특수화가 자연발생적으로 발전하며 다음에 고정되고 마지막에는 법률에 의하여 공고화되는 보다 이전의 사회형태들은 한편으로는 사회적로동의 계획적인 또 권위적인 조직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작업장내부의 분업을 전혀 배제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오직 협소한 규모로만 또는 오직 여기저기서만 또 우연적으로만 발전시킨다.(59)

례컨대 부분적으로 지금까지도 존속하고있는 원시적이며 소규모적인 인도공동체[61]는 토지의 공유와 농업, 수공업의 직접적인 결합과 고정된 분업에 기초하고있으며 이 분업은 새로운 공동체를 창설할 때에는 기성적인 계획과 설계도로 된다. 그러한 매개 공동체는 자급자족적인 생산전일체를 형성하고있으며 그 생산령역은 100에이커로부터 수천에이커에 달하기까지 여러가지이다. 생산물의 대부분은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자체의 직접적인 수요를 위하여 생산되며 따라서 생산 그자체는 상품교환에 의하여 매개되는 전체 인도사

---

(59)《우리는 일반적규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할수 있다. 즉 권위가 사회내부의 분업을 지배하는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작업장내부의 분업은 더 많이 발전하며 또한 한 사람의 권위에 더 많이 복종하게 된다라고. 이리하여 분업의 면에서 볼 때 작업장내의 권위와 사회의 권위는 호상 반비례한다.》(칼 맑스 《철학의 빈곤》, 130~131페지[277])

회의 분업에는 의존하지 않는다. 오직 생산물의 과잉부분만이 상품으로 전화될뿐이며 그것도 일부분은 국가의 수중에서만 비로소 상품으로 전화되며 이 국가의 수중에는 태고시대로부터 일정한 량의 생산물이 현물지대로서 흘러들어간다. 인도의 각 지방에는 각이한 형태의 공동체가 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공동체에서는 토지를 공동으로 경작하며 생산물을 그 성원들에게 분배하며 한편 매개 가족은 가내부업으로서 방적, 직포 등등에 종사한다. 같은 종류의 로동에 종사하는 이러한 대중과 아울러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재판관과 경찰관과 징세리를 겸하는 공동체《수장》, 농경에 관한 계산을 하며 이에 관계되는 모든것을 기장하며 등록하는 부기원, 범죄자를 추궁하며 외래려행자를 보호하여 그를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에로 안내하여주는 제3의 공무원, 린접공동체에 대하여 자기 공동체의 경계를 경비하는 경계관리인, 공동저수지에서 관개용수를 분배하는 물감시인, 종교적행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브라민, 모래우에서 공동체의 아동들에게 글쓰기와 글읽기를 가르치는 교원, 점성사로서 파종, 수확의 시기 및 여러가지 농업로동의 적시여부를 알리는 사력브라민, 모든 농구를 제조수선하는 야장과 목수, 온 마을에서 쓰는 그릇을 제조하는 도기제조공, 리발사, 의복을 세탁하는 세탁공, 은세공사, 경우에 따라서 어떤 공동체에서는 은세공사 대신에 있고 또 어떤 공동체에서는 교원 대신에 있는 시인. 이 10여명의 사람들은 공동체전체의 비용으로 생활한다. 만약 인구가 증가되면 미개간지에 구공동체의 본을 따라 새 공동체가 창설된다. 공동체의 기구는 계획적분업을 보여주고 있으나 공장제수공업적분업은 있을수 없다. 왜냐 하면 야장, 목수 등등을 위한 시장은 변화가 없고 촌락의 크기에 따라

야장, 도기제조공 등등은 1명이 아니면 기껏해서 2~3명이 있기때문이다.(60) 공동체의 분업을 규제하는 법칙은 여기서는 자연법칙의 불가침적권위를 가지고 작용한다. 한편 야장 등등과 같은 매개 수공업자는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서 그러나 독립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작업장내에서는 어떠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전문에 속하는 모든 작업을 수행한다. 부단히 동일한 형태로 재생산되며 간혹 파괴되여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명칭으로 재건되는(61) 이러한 자급자족적인 공동체라는 간단한 생산기구는 아시아국가들의 부단한 흥망 및 왕조의 쉴새없는 교체와는 그처럼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있는 아시아사회의 불변성의 비밀을 해명하는 열쇠를 제공한다. 이 사회의 경제적기본요소들의 구조는 정치적 상공에서 일어나는 폭풍우에 의해서는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미 우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동업조합규칙①은 1명의 동업조합장주가 사용할수 있는 장공의 수를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장주가 자본가로 전화하는것을 계획적으로 저지하였다. 또 마찬가지로 장주는 오로지 자기가 장주로 되고있는 수공

(60) 륙군 중좌 마크 윌크스 《인도남부의 력사적개관》, 1810~1817년 런던판, 제1권, 118, 120페지. 인도공동체의 각종 형태의 적절한 비교대조는 죠지 캠블의 《현대인도》, 1852년 런던판에서 볼수 있다.[278]

(61) 《이러한 간단한 형태로…이 나라 주민은 태고시대부터 생활하여왔다. 부락들의 경계가 변동된 일은 드물다. 또 비록 부락 그자체는 때로 전쟁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전염병에 의하여 령락되며 심지어 황폐화되는 일까지 있었지만 그것들은 다시 동일한 명칭, 동일한 경계, 동일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또 심지어 동일한 가족들로써 부활되여 수세기동안에 걸쳐 존속되였다. 나라의 멸망이나 분할에 대해서 주민들은 거의 걱정하지 않는다. 촌락이 온전한대로 남아있기만 하면 그것이 어떤 권력의 수중에 넘어가든지 어떤 군주에게 맡겨지든지 그런것은 그들에게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 촌락의 내부적경제는 의연히 변함없다.》(전 쟈바 부총독 Th. 스탬포드 래플즈 《쟈바의 력사》, 1817년 런던판, 제1권, 285페지)

① 이 책 357, 394페지를 보라. 一편집자

업에서만 장공들을 사용할수 있었다. 동업조합은 그것에 대립하는 유일한 자유로운 자본형태인 상인자본의 온갖 침해를 질투심을 가지고 물리쳤다. 상인은 온갖 상품을 살수 있었으나 다만 상품으로서의 로동만은 살수 없었다. 상인에게는 오직 수공업생산물의 수매자로서의 역할만이 허용되여있었다. 외부적사정에 의하여 분업이 가일층 세분될 때에는 기존동업조합이 아종들로 분렬되거나 혹은 낡은것과 아울러 새로운 동업조합이 창설되거나 하였지만 하나의 동일한 작업장내에 각이한 수공업이 통합되는 일은 결코 없었다. 그러므로 비록 동업조합적조직에 의한 직업들의 특수화, 고립화, 발전이 공장제수공업시대의 물질적존재조건으로 되기는 하였지만 동업조합적조직은 공장제수공업적분업을 배제하고있었다. 대체로 로동자와 그의 생산수단은 마치 달팽이와 달팽이집처럼 긴밀하게 유착되여있었고 따라서 공장제수공업의 첫째 기초 즉 로동자에 대립하는 자본으로서의 생산수단의 독립화가 없었다.

사회전체내부에서의 분업은 그것이 상품교환을 매개로 하여 수행되든지 또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수행되든지간에 극히 다종다양한 경제적사회구성체에서 볼수 있지만 공장제수공업적분업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완전히 특수한 창조물인 것이다.

5. 공장제수공업의 자본주의적성격

비교적 많은 로동자가 동일한 자본의 지휘하에 있다는것은 협업일반의 자연발생적출발점으로 되는 동시에 공장제수

공업의 자연발생적출발점으로도 된다. 반대로 공장제수공업적분업에서는 사용로동자수를 증가하는것이 기술상 필요하게 된다. 이제는 한 개별적자본가가 사용해야 할 로동자수의 최저한은 현존분업에 의하여 규정되여있다. 다른 한편 한층 더 발전한 분업의 리익은 로동자수를 일층 증가시킴으로써만 얻어지며 이러한 증가는 오직 배수를 거듭하는데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그러나 자본의 가변적부분과 더불어 그 불변적부분도 증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건물, 로 등의 공동적생산조건의 규모가 확대되여야 할뿐만아니라 특히 로동자수보다 훨씬 더 급속하게 원료가 증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로동량에 의하여 소비되는 원료의 량은 분업으로 하여 로동생산력이 제고되는데 비례하여 증가한다. 그리하여 개별적자본가에게 필요한 자본의 최소액이 더욱더 증가되여가는것 즉 사회적 생활수단과 생산수단이 더욱더 많이 자본에로 전화되여가는것은 공장제수공업의 기술적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법칙이다.(62)

기능하는 로동체는 단순협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장제수공업에서도 자본의 존재형태이다. 많은 개별적인 부분로동자들로써 구성되는 사회적생산기구는 자본가에게 속한다. 그러므로 각종 로동의 결합에서 생기는 생산력은 자본의 생산력으로서 나타난다. 본래의 공장제수공업은 비단 종전에 독립

---

(62) 《수공업의 세분에 필요한 자본이 (이것은 그에 필요한 생활수단과 생산수단이라고 말해야 할것이다.) 사회에 현존하는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이밖에 이러한 자본이 대규모생산을 하기에 충분할만큼 많이 기업가들의 수중에 축적되는것이 필요하다.…분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동일한 수의 로동자를 고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도구, 원료 등등의 형태로 더욱 많은 자본지출이 필요하게 된다.》(슈또르흐 《정치경제학강의》, 빠리판, 제1권, 250, 251페지) 《생산도구의 집중과 분업은 정치분야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사적리익의 분리가 불가분적인것과 마찬가지로 호상 불가분적이다.》(칼 맑스 《철학의 빈곤》, 1847년 빠리판, 134페지[277])

적이였던 로동자를 자본의 지휘와 규률에 복종시킬뿐만아니라 그외에 로동자자신들간에 등급제적분류를 만들어낸다. 단순협업은 개별적사람들의 로동방식을 대체로는 변경시키지 않지만 공장제수공업은 그것을 철저히 변혁하며 개인적로동력을 완전히 장악한다. 공장제수공업은 로동자를 기형물로 만든다. 그것은 로동자의 다양한 생산상 취미와 소질을 억압하여 로동자의 일면적인 기능만을 인위적으로 배양하기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라플라타연안 제 주[279]에서 모피와 지방을 얻기 위하여 짐승을 도살하는것과 마찬가지이다. 비단 개별적인 부분로동이 각이한 개인들에게 분배될뿐만아니라 개인그자체가 분할되여 일정한 부분로동의 자동장치로 전화된다.(63) 그리하여 메네니우스 아그리파의 우화,[280] 즉 인간을 그자신의 신체의 한 단편에 불과하다고 하는 엉터리없는 우화가 현실로 된다.(64) 처음에는 로동자가 상품생산을 위한 물질적수단을 가지지 못하기때문에 자기의 로동력을 자본에 판매한다면 이제는 그의 개인적로동력자체는 그것이 자본에 판매되지 않으면 리용될수 없는것으로 되여버린다. 로동력은 오직 판매된후에 자본가의 작업장내에서 비로소 존재하는 련관속에서만 기능할수 있다. 공장제수공업로동자는 그 자연적 본성에 따라 독립적으로 어떤 물건을 만들수 없게 되였으므로 자본가의 작업장의 부속물로서만 생산활동을 진행한다.(65) 예호바의 선민의 이마우에는 그가 예호바의 소유물[78]

---

(63) 두걸드 스튜어드는 공장제수공업로동자를 《부분작업에 사용되는…산자동장치》라고 불렀다. (두걸드 스튜어드 《정치경제학강의》, 318페지)

(64) 산호의 매개 개체는 실지로 전체 집단의 위장으로 되여있다. 그러나 그것은 로마의 귀족과 같이 영양물을 빼앗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체 집단에 공급하여준다.

(65) 《한 수공업전체에 숙달한 로동자는 어디로 가나 일할수 있고 생활수단을 얻을수 있다. 그렇지 못한 로동자 (공장제수공업로동자) 는 하나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아서 자기의 동료들과 떨어져서는 아무 능력도 독립성도 없게 되며 따라서 사람들이 그에게

이라는것이 씌여져있는것과 마찬가지로 분업은 공장제수공업 로동자에게 자본의 소유물이라는 락인을 찍는다.

소규모에서이기는 하지만 독립적인 농민 또는 수공업자가 발휘하는 지식과 판단력과 의지는—미개인이 모두 전쟁기술을 개인의 지능으로서 사용하는것과 마찬가지로—여기서는 다만 작업장전체를 위해서만 필요할뿐이다. 생산의 지능이 한 방면에서 그 규모가 확대되는것은 다른 여러 방면에서 그것이 완전히 소멸하기때문이다. 부분로동자들이 잃어버리는 그것은 그들에게 대립하여 자본에 집중된다.(66) 물질적생산과정의 지능이 로동자들에게 타인의 소유물로서 또 그들을 지배하는 힘으로서 대립하게 되는것은 공장제수공업적분업의 산물이다. 이 분리과정은 자본가가 개개의 로동자에 대하여 사회적로동체의 통일과 의지를 대표하는 단순협업에서 시작된다. 이 과정은 로동자를 부분로동자로 전화시켜 그를 불구자로 만드는 공장제수공업에서 가일층 발전한다. 이 과정은 과학을 독립적인 생산능력으로서 로동으로부터 분리시켜 자본에 복무하지 않을수 없게 하는 대공업에서 완성된다.(67)

공장제수공업에서는 총로동자의, 따라서 또 자본의 사회적생산력의 풍부화는 로동자의 개인적생산력의 빈약을 조건으로 한다.

《무지는 미신의 어머니인 동시에 또 공업의 어머니이다. 사고력과

강요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법칙에 따를수밖에 없다.》(슈또르흐 《정치경제학강의》, 1815년 페제르부르그판, 제1권, 204페지)

(66) A. 퍼거슨 《시민사회사》, 제4분책, 제2부분, 281페지: 《한사람은 다른 사람이 잃는것을 얻었다.》

(67) 《지식을 소유한 사람과 생산적로동자와는 완전히 절연되여 지식은 로동자의 수중에서 그를 위하여 그의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수단으로 되지 않고 거의 어디서나 로동자에 대립하고있다.…지식은 로동으로부터 분리될수 있으며 또 로동에 적대할수 있는 도구로 된다.》(W. 톰프슨 《부의 분배원리의 연구》, 1824년 런던판, 274페지)

상상력은 과오를 범하기 쉽다. 그러나 손과 발을 움직이는 습관은 사고력에도 상상력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장제수공업이 가장 번영하는것은 정신생활이 가장 억압되고 그 결과 작업장이 인간을 부분품으로 하는 기계로 간주할수 있는 그러한 경우이다.》(68)

사실 18세기중엽에 일부 수공업공장에서는 단순한 그러나 공장의 비밀로 되여있는 작업에 반백치를 사용했던것이다.(69)

A.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대다수 사람들의 지력은 필연적으로 그들의 일상적인 활동으로부터 발달한다. 일생동안을 약간의 단순한 작업을 하는것으로 지내는 사람은…자기의 지력을 사용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그는 일반적으로 인간으로서는 가장 우둔하고 무지한 존재로 된다.》

스미스는 부분로동자의 우둔성을 묘사한 뒤에 다음과 같이 계속한다.

《그의 판에 박은듯한 단조로운 생활은 자연히 그의 정신상 용기를 떨군다.…그것은 지어 그의 육체의 정력까지도 약화시키며 그로 하여금 그가 습관되여있는 부분작업외의 어떤 일에서도 활기있게 계속적으로 자기 힘을 사용할수 없게 한다. 그의 특수한 직업에서의 숙련은 이와 같이 그의 지적, 사회적 및 전투적 능력을 희생으로 하여 얻어진 것이다. 그러나 매개의 산업이 발전된 문명사회에서 로동빈민 즉 인민의 다수는 불가피적으로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된다.》(70)

---

(68) A. 퍼거슨 《시민사회사》, 제4분책, 제2부분, 280페지.

(69) J. D. 타키트 《로동인구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의 력사》, 1846년 런던판, 제1권, 148페지)

(70) A. 스미스 《제 국민의 부》, 제5편, 제1장, 〔제3절〕, 제2호. 분업의 유해한 결과를 론술한 A. 퍼거슨의 제자로서 A. 스미스는 이 점에 관해서는 아주 명백하게 리해하고있었다. 전문 분업을 찬양하고있는 그의 저서의 서두에서는 그는 다만 지나가는김에 잠간 분업이 사회적불평등의 원천으로 된다는것을 지적하고있다. 그는 국가수입을 취급한 제5편에 가서야 비로소 퍼거슨의 리론을 그대로 되풀이하고있다. 나는 이미 《철학의 빈곤》에서 퍼거슨, A. 스미스, 르몽떼, 쌔간의 분업비판상의 력사적련계에 관하여 필요한것을 말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한 나는 처음으로 공장제수공업적분업을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특수형태로 서술하였다. (칼 맑스 《철학의 빈곤》, 1847년 빠리판, 122페지이하[277])

A. 스미스는 분업으로 하여 인민대중이 완전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극히 작은 범위에서이기는 하지만 국가에 의한 국민교육을 실시할것을 권고하고있다. 그의 저서의 프랑스문번역자이며 주석자인 G. 가르니에ㅡ이 사람은 프랑스제1제국하에서 당연한 일이지만 원로원 의원으로까지 되였다ㅡ는 이것을 철저히 반대한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국민교육은 분업의 기본법칙과 모순되며 국민교육을 실시하면 《우리의 사회제도전체를 파멸시키게 될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모든 다른 분업들과 마찬가지로 손로동과 두뇌로동간의 분업도(71) 사회 〔그는 이 용어를 정당하게도 자본, 토지소유 및 그것들에 속하는 국가의 의미로 사용하고있다.〕 가 부유하여지는데 따라 더욱 명료하고 결정적인것으로 된다. 온갖 다른 분업과 마찬가지로 이 분업도 과거의 진보의 결과이며 또 장래의 진보의 원인으로 된다.…그렇다면 과연 정부는 이 분업에 대항하여 그 자연적인 진행을 억제해야 할것인가? 과연 정부는 분할과 분리를 지향하는 이 두 부류의 로동을 혼합하며 뒤섞어놓기 위한 시도에 국가수입의 일부를 지출해야 할것인가?》(72)

어떤 정신적 및 육체적 불구화는 전체 사회내부의 분업의 경우에도 불가분적인것이다. 그러나 공장제수공업시대는 로동부문들의 이러한 사회적분할을 훨씬 더 심화시키므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장제수공업에 고유한 분업만이 비로소 개인을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장악하므로 역시 공장제수공업시대만이 처음으로 산업병리학에 재료와 자극을 제공한다.(73)

---

(71) 퍼거슨은 이미 《시민사회사》, 281페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사유자체까지도 이 분업의 시대에는 특수한 직업으로 될수 있다.》

(72) G. 가르니에의 번역본, 제5권, 4~5페지.

(73) 파두아의 림상의학교수 라마찌니는 1700년에 자기의 저서 《수공업자들의 질병에 관한 론술》을 발표하였다. 그것은 그후 1777년에 프랑스문으로 번역되였고 또

《한사람을 분할한다는것은 만약 그가 마땅히 사형선고를 받을만하다면 사형에 처하고 만약 그가 사형선고를 받기에 마땅치 않다면 암살한다는것이다. 로동의 세분은 인민의 암살이다.》(74)

분업에 립각하는 협업 즉 공장제수공업은 시초에는 자연발생적형성물인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일정한 견고성을 획득하고 충분히 광범하게 보급되자마자 그것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의식적인, 계획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형태로 된다. 본래의 공장제수공업의 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공장제수공업의 독특한 분업이 처음에는 경험적으로 이를테면 당사자들의 배후에서 적당한 형태를 획득하는데 후에는 동업조합적수공업과 마찬가지로 한번 발견된 형태를 전통적으로 고수하려 하며 개별적경우에는 그것을 수세기에 걸쳐서 고수하기까지 하는것이다. 이 형태가 변화한다면 그것은 부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변화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로동도구의 혁명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적공장제수공업—나는 여기서 기계사용에 기초하는 대공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례컨대 피복공장제수공업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것이 발생하는 대도시에서 《시인의 분산된 사지》[125]를 기성형태로 발견하여 이 분산된 사지를 주어모으기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분업의 원칙이 아주 명백하기때문에 단순히 수공업

1841년에는 《의학백과사전. 제7부. 고전저자편》에 다시 수록되였다. 대공업시대에 로동자의 직업병종류는 물론 늘어갈뿐이였다. A. L. 퐁뜨래박사의 저서 《대도시일반 특히 리옹시의 로동자의 육체적 및 정신적 위생》, 1858년 빠리판 및 〔로하취의 저서〕 《각종 신분, 년령 및 성에 특유한 질병》, 전6권, 1840년 울름판을 참조하라. 1854년에는 기예협회[281]가 산업병리학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임명하였다. 이 위원회에 의하여 수집된 문헌목록은 《트위케남 경제박물관의 목록》에 들어있다. 공식적인 《공중위생보고》도 극히 중요하다. 또 의학박사 에두아르드 라이히의 《인류의 퇴화에 관하여》 1868년 에를랑겐판도 참조하라.

(74) D. 어커트 《상용어》, 1855년 런던판, 119페지. 헤겔은 분업에 관하여 극히 이단적인 견해를 가지고있었다. 《교양있는 인간이라 함은 무엇보다도 남이 하는 모든것을 할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해야 할것이다.》[282]라고 그는 자기의 《법철학》에서 말하고있다.

적생산의 각종 작업들을(례컨대 제본업에서와 같이) 특수한 로동자들에게 떼여맡기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매개 기능에 필요한 일군의 비례수를 발견하는데 1주일의 경험도 요구되지 않는다.(75)

공장제수공업적분업은 수공업적활동의 분해, 로동도구의 전문화, 부분로동자의 형성, 하나의 총기구로의 부분로동자들의 편성 및 결합에 의하여 사회적생산과정의 질적분할과 량적비례성 즉 사회적로동의 일정한 조직을 창조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인 로동생산력을 발전시킨다. 공장제수공업적분업은 사회적생산과정의 독특한 자본주의적 형태로서—그것은 당시의 기초우에서는 자본주의적형태로서 밖에는 발전할수 없다—상대적잉여가치를 생산하는 하나의 특수한 방법 또는 로동자를 희생으로 하여 보통 사회적부, 《제 국민의 부》 등등으로 불리는 자본의 자기증식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특수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공장제수공업적분업은 사회적로동생산력을 로동자를 위해서 발전시키지 않고 자본가를 위해서 발전시킬뿐만아니라 각개 로동자를 불구화하는데 의하여 그것을 발전시킨다. 공장제수공업적분업은 로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의 새로운 조건을 조성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한편으로는 사회의 경제적형성과정의 력사적 진보로 되며 필연적발전계기로 나타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문명하고 세련된 착취의 방법으로 나타난다.

공장제수공업시대에 비로소 독립적인 과학으로 된 정치

---

(75) 분업에서 개별적자본가가 선험적인 발명의 천재를 발휘한다는 소박한 신앙은 례컨대 로쉐르씨와 같은 독일인 교수들가운데만 아직 남아있다. 로쉐르씨는 분업이 자본가의 유피테르적두뇌에서 완성되여나오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자본가에게 《각종 로임》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263] 그러나 분업이 적용되는 규모가 돈주머니의 대소에 의존하는것이지 천재의 정도에 의존하는것은 아니다.

경제학은 사회적분업일반을 오직 공장제수공업적분업의 관점에서만 고찰한다.(76) 다시말하면 같은 량의 로동으로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 따라서 상품가격을 싸게 하며 자본의 축적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고찰한다. 이렇게 량과 교환가치를 강조하는것과는 정반대로 고전적고대의 저술가들은 오로지 질과 사용가치에만 주의를 돌린다.(77) 사회적생산부문들이 구분되여있기때문에 상품은 더 좋게 제조되며 사람들의 각이한 소질과 재능은 적당한 활동분야를 선택할수 있게 되는데(78) 활동분야가 국한되여있지 않고는 어떠한 부문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달성할수 없다.(79) 그리하여

---

(76) 페티와 《동인도무역의 리익》의 닉명 저자 (헨리 마틴) 등등과 같은 더 오랜 저술가들은 A. 스미스보다 더 명확하게 공장제수공업적분업의 자본주의적성격을 지적하고있다.

(77) 현대의 저술가들중에서도 18세기의 몇몇 사람 례컨대 벡까리아와 제임즈 해리스는 례외로 되여있다. 그들은 분업문제에서 거의 전적으로 고대인의 말을 되풀이하고 있을뿐이다. 벡까리아는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누구든지 자신의 경험에 의하여 알고있다싶이 손과 리지를 항상 동일한 종류의 로동이나 생산물에 사용한다면 각자가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자신이 제조하는 경우보다 더 쉽게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할것이다.…그리하여 인간은 공동적리익과 개인적리익을 위하여 각이한 계급들과 각이한 신분들로 나뉜다.》(체자레 벡까리아 《사회경제원리》, 꾸스또디 편찬, 현대편, 제11권, 28페지) 제임즈 해리스—후일의 맘즈버리백작이고 뻬께르부르그 주재대사시대에 관한 《일기》로 유명하다—는 자기의 저서 《행복에 관한 대화》. 1741년 런던판[284](후에 《세 론문》, 1772년 런던판, 제3판에 재수록되였다.)의 한 주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사회의 자연성에 관한 모든 론증 (즉 《직업의 분할》에 기초한 론증) 은 플라톤의 〈국가〉 제2부에서 따온것이다.》

(78) 례컨대 《오디쎄이》 제14장 제228행에는 《사람은 같지 않다. 어떤자는 이런 일을 좋아하고 어떤자는 저런 일을 좋아한다.》라는 구절이 있고 또 쎅스투스 엠피리쿠스의 저서에서 아르킬로코스는 《어떤 일은 이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어떤 일은 저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285]고 말하고있다.

(79) 《그는 많은 일을 할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을 하나 다 잘하지 못하였다.》[286] —아테네인은 스파르타인에 대하여 상품생산자로서의 자기의 우월성을 느끼고있었다. 그리유는 스파르타인들은 전쟁때에 사람을 지배할수 있어도 화폐는 지배할수 없었기때문이다. 례컨대 투퀴디데스는 페리클레스로 하여금 펠로폰네소스전쟁에로 아테네인을 고무하는 연설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하였다. 《자급자족적경제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화폐보다는 자기의 몸으로 싸우려 하고있다.》(투퀴디데스 《펠로폰네소스전쟁

생산물도 생산자도 분업에 의하여 개선된다는것이다. 만약 그들이 때로 생산물량의 증가에 언급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용가치가 더 풍부하게 되는것을 념두에 둔데 지나지 않는다. 교환가치, 상품의 저렴화에는 일언반구도 언급되여있지 않다. 사용가치의 관점은 분업을 사회의 신분상 구분의 기초로 간주하는 플라톤에 있어서나(80) 또 그 특징적인 시민계급의 본능을 가지고 이미 작업장내부분업의 원칙을 잘 리해하고있던 크세노폰(81) 에 있어서나 다 지배적이다. 플라톤의

사》, 제1부, 제14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인들의 리상은 의연히 물질적생산에 있어서까지도 분업에 대립하는 자급자족이였던것이다. 즉 《분업으로부터는 복리가 나오지만 자급자족으로부터는 독립성도 나온다.》 는것이였다. 여기서 고려하여야 할것은 30명의 폭군이 몰락하던 시기[287]에 있어서까지도 토지를 소유하고있지 않은 아테네인은 5,000명에도 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80) 플라톤은 공동체내부의 분업을 개인의 욕망의 다양성과 자질의 일면성으로부터 끌어낸다. 그의 주요한 명제는 로동자가 일에 적응해야 할것이지 일이 로동자에게 적응해서는 안된다는것이다. 그런데 로동자가 한꺼번에 여러 직업에 종사하는 때에는 즉 직업들중 하나를 부업으로서 수행하는 때에는 일이 로동자에게 적응하지 않을수 없다는것이다. 《왜냐 하면 일이 생산자의 여가를 기다려서는 안될것이며 오히려 생산자가 자기의 일을 경솔하게 할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이다.—이것은 당연하다—한사람이 자기의 천연적인 자질에 적합한 한가지 일만을 적당한 시기에 다른 모든 일로부터 해방되여 수행할 때에 모든 물건은 더 쉽게, 더 좋게, 더 많이 생산되지 않는가?》 (《국가》, 제2판, 제2편, 바이테르, 오렐리 편찬…) 이와 류사한 견해를 투퀴디데스의 저서 《펠로폰네소스전쟁사》 제1부, 제142편에서 볼수 있다. 《항해술은 다른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술이다. 그것을 부차적으로 부업으로서 수행할수 없다. 오히려 반대로 다른 어떠한 일도 그것과 함께 부업으로서 할수 없다.》[288] 플라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만약 일이 일군을 기다리게 된다면 자주 생산상의 결정적인 순간을 놓쳐버리게 될것이며 생산물은 못쓰게 될것이다. 《일을 위한 적당한 시기가 상실된다.》 전체 로동자를 위하여 일정한 식사시간을 제정한 공장법의 조항을 반대하는 영국표백업자들의 항의에서 바로 이 플라톤적견해를 보게 된다. 그들의 영업은 로동자들에게 순응시킬수 없다. 왜냐 하면 《건조, 세척, 표백, 다림질, 윤내기, 염색의 각종 작업에서 그 어느 하나도 손상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예정된 순간에 중지될수 없기때문이다.…전체 로동자를 위하여 동일한 식사시간을 강제하는것은 때로는 귀중한 재물을 불완전작업으로 말미암아 손상시킬 위험성을 내포한다》. 정말 플라톤주의는 도처에 숨어있다!

(81) 크세노폰은 말하기를 페르샤왕의 식탁에서 음식물을 받는것은 비단 영광스러울뿐만아니라 이 음식물이 다른것보다 더 맛있기때문에 유쾌하다. 《그리고 이것은 기이한 일이 아니다. 왜냐 하면 대도시들에서는 다른 모든 기술이 특히 완성되여있는것과 마

공화국[290]에서 분업이 국가의 구성원리로 되여있는 한에 있어서는 이 국가는 애급신분제도의 아테네적리상화에 지나지 않는다. 애급은 플라톤의 동시대인인 다른 저술가들 례컨대 이소크라테스(82)에게 있어서도 산업국의 모범이였고 또 로마제국시대의 회랍인들에게 있어서조차 이러한 모범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있었다.(83)

본래의 공장제수공업적시대 즉 공장제수공업이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지배적인 형태로 되여있는 시대에 있어서는 공장제수공업에 내재하는 경향의 완전한 실현은 여러가지 장애에 부딪치게 된다. 비록 공장제수공업은 이미 본바와 같이 로동자의 등급제적구별과 아울러 그들의 숙련로동자와 미숙

찬가지로 왕의 음식물도 그 품질이 무비의것이기때문이다. 소도시에서는 동일한 사람이 침대도 문짝도 보습도 책상도 만든다. 그는 이밖에 가끔 집도 짓는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생활유지에 충분할만한 주문을 받기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처럼 여러가지 일을 하는 한사람이 모든것을 다 잘할수는 도저히 없다. 그러나 매개 일군이 많은 구매자를 발견하는 대도시에서는 그는 단 하나의 수공업으로도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수 있다. 심지어 하나의 수공업을 전체에 걸쳐서 알 필요까지 없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은 남자용구두만을 만들며 다른 사람은 녀자용구두만을 만든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구두를 꿰매는 일만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은 구두가죽을 재단하는 일만으로 살아간다. 또 어떤 사람은 의복을 재단하는 일만을 하고 다른 사람은 헝겊조각들을 꿰매는 일만을 한다. 가장 간단한 일을 하는자가 그 일을 가장 완전하게 할것은 필연적이다. 료리술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크세노폰 《시로페디아》, 제8권, 제2장)[289] 크세노폰은 분업의 규모가 시장의 범위에 의존한다는것을 벌써 알고있었지만 이 경우에 오로지 사용가치의 소기의 질에만 주의를 돌리고있다.

(82) 《그 (부씨리스) 는 모든 사람을 각기 특수한 신분에 나누어…동일한 사람은 항상 동일한 일에 종사할것을 명령하였다. 왜냐 하면 그는 자주 자기의 직업을 변경하는 자는 어떠한 직업에도 정통하지 못하나 늘 동일한 일에만 종사하는자는 그 일을 가장 완전하게 수행한다는것을 잘 알고있었기때문이다. 또 사실 기예와 수공업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 분야에서 그들은 거장이 미숙한 일군을 통가하는 정도이상으로 자기 경쟁자들을 통가하고있었으며 그리고 군주제 및 국가제도의 수호를 위한 시설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 문제를 취급한 가장 유명한 철학자들이 애급의 국가제도를 다른 어떤것보다도 찬양하였을 정도로 그것이 탁월하다는것을 우리는 보게 될것이다.》(이소크라테스 《부씨리스》, 제7, 8장)

(83) 씨칠리아의 디오도로스 《력사문고》를 참조하라.

련로동자에로의 간단한 구분을 만들어내기는 하지만① 미숙련로동자의 수는 숙련로동자의 압도적인 우세로 말미암아 의연히 극히 제한되여있다. 비록 공장제수공업은 여러가지 특수작업을 공장제수공업의 산로동기관의 성숙과 힘과 발달의 각이한 정도에 적응시키며 따라서 부녀와 아동에 대한 생산적 착취를 촉진하기는 하지만 이 경향은 대체로 관습과 남성로동자의 반항을 받게 되여 좌절당한다. 비록 수공업적활동의 분해는 로동자의 양성비를 저하시키고 또 따라서 로동자의 가치를 감소시키기는 하지만 비교적 곤난한 세부로동들에서는 의연히 긴 수업기간이 필요하며 수업이 쓸데없게 된 곳에서도 그것은 로동자들에 의하여 극력 보존된다. 레컨대 영국에서 7년간의 수업기간을 규정한 《도제법》은 공장제수공업시대의 말기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였고 대공업에 의해서 비로소 폐지되였다는것을 우리는 알고있다. 수공업적숙련은 의연히 공장제수공업의 기초이며 공장제수공업에서 기능하는 총기구는 로동자 그자체로부터 독립한 객관적인 골격을 가지고있지 못하기때문에 자본은 부단히 로동자의 불복종행위와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잘아는 유어는 다음과 같이 웨친다.

《인간의 본성의 약점이 대단히 커서 로동자는 숙련되면 될수록 일층 자의적으로 되여 그를 다루기 더욱 어렵게 되며 따라서 로동자는 제멋대로 행동하여 총체기구에 심대한 손해를 끼친다.》(84)

그러므로 공장제수공업시대전체를 통하여 로동자의 무규률성에 대한 불평이 그치지 않는다.(85) 또 그 당시의 저술가

(84) 유어 《공장철학》, 20페지.

(85) 이 말은 프랑스보다는 영국에 대하여, 또 화란보다는 프랑스에 대하여 훨씬 더 적당하다.

① 이 책 405~406페지를 보라. —편집자

들의 증언이 없다 하더라도 16세기부터 대공업시대에 이르기까지에 자본은 공장제수공업로동자들의 리용할수 있는 로동시간전체를 자기의것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공장제수공업은 수명이 짧으며 로동자가 왔다갔다하는데 따라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에로 그 소재지를 바꾸었다는 사실만 해도 만권의 서책이상으로 많은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어떻게 해서든지 질서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재삼 인용한 《산업 및 상업에 관한 론술》의 저자는 1770년에 이와 같이 호소하였다. 《질서》, 이것은 또 66년을 지나 앤드루 유어박사의 입을 통하여 말하고있는 것이다. 《분업이라는 번쇄철학적독단》을 기초로 하는 공장제수공업에는 《질서》가 없었으나 이제 《아크라이트가 질서를 창조하였다.》라고.①

그와 동시에 공장제수공업은 사회적생산의 전체를 포괄할수도 없었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변혁할수도 없었다. 공장제수공업은 도시수공업과 농촌가내공업의 광범한 기초우에선 경제적예술품이였다. 공장제수공업자신의 협애한 기술적기초는 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르러서는 그자체가 만들어낸 생산상 요구와 모순되게 되였다.

공장제수공업의 가장 완성된 모습의 하나는 로동도구 그자체를 생산하며 특히 당시에 이미 적용되고있던 복잡한 기계장치를 생산하기 위한 작업장이였다. 유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그와 같은 작업장은 각종 정도의 분업의 광경을 보여주었다. 송곳, 끌, 선반은 각각 그 숙련정도에 따라 어떤 등급에 속하는 자기자신의 로동자를 가지고있었다.》[291]

① 이 책 488페지를 보라. —편집자

공장제수공업적분업의 이와 같은 산물이 이번에는 기계를 생산하였다. 기계는 사회적생산의 규제원칙으로서의 수공업적활동을 폐기한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로동자를 일정한 부분적기능에 일생동안 얽매여두는 기술적기초가 제거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원칙이 그때까지 아직 자본의 지배에 가하고있던 제한도 없어진다.

제 13 장

기계와 대공업

1. 기계의 발전

죤 스튜어트 밀은 그의 저서 《정치경제학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지금까지 이룩된 모든 기계발명이 그 누구의 매일의 로고를 덜어주고있는지 어떤지는 의문이다.》(86)

그러나 이러한것은 결코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의 목적인것이 아니다. 기계는 로동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다른 모든 방법과 마찬가지로 상품을 값싸게 만들며 로동일중 로동자가 자기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을 줄이고 자본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로동일의 다른 부분을 연장해야 하는것이다. 기계는 잉여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다.

생산방식의 변혁은 공장제수공업에서는 로동력을 출발점으로 하고 대공업에서는 로동수단을 출발점으로 한다. 그러므로 우선 로동수단은 어떻게 도구로부터 기계로 전화되는가 또는 기계는 무엇에 의하여 수공업적도구와 구별되는가 하는것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것은 오직 큰 일반적인 특징만인데 그것은 사회사의 시대들이 지구

(86) 밀은 《다른 사람의 로동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 누구의》라고 말했어야 할것이다. 그것은 기계가 점잖은 게으름뱅이의 수를 대단히 증가시켰다는것은 다를 여지가 없기때문이다.

사의 시대들과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엄밀한 계선에 의하여 서로 구분되지는 않기때문이다.

수학자와 기계학자는—약간의 영국의 경제학자들도 그런 말을 반복하고있지만—도구는 간단한 기계이고 기계는 복잡한 도구라고 말하고있다. 그들은 그것들사이의 본질적인 구별을 보지 못하고있으며 심지어 지레, 사면, 라선, 쐐기 등등과 같은 간단한 기계적힘도 기계라고 부르고있다.(87) 실제로 어떠한 기계도 그 변장과 조합이 어떻든간에 그러한 간단한 힘으로 구성되여있는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적견지에서는 그러한 설명은 아무 소용도 없다. 왜냐 하면 그 설명에는 력사적요소가 없기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도구에 있어서는 인간이 원동력이며 기계에 있어서는 동물, 물, 바람 등등과 같은 인간력과는 다른 자연력이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도구와 기계와의 차이를 찾으려 하는 사람도 있다.(88) 이에 의하면 각이한 여러 생산시대에 사용된 소가 끄는 쟁기는 기계일것이며 반면에 단 한사람의 로동자의 손으로 운전되여 1분간에 9만 6,000개의 코를 짜내는 클라우쎈식회전직기는 단순한 도구일것이다.[293] 그뿐만아니라 동일한 직포기라도 손으로 운전된다면 도구일것이며 증기로 운전된다면 기계일것이다. 동물의 힘을 리용하는것은 인류의 가장 오랜 발명의 하나이므로 사실 기계적생산이 수공업적생산보다 앞선것으로 될것이다. 죤 와이어트가 1735년에 자기의 방적기계를 세상에 내놓

(87) 레컨대 하튼의 《수학교정》 을 보라.[292]

(88)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또한 도구와 기계간에 명확한 계선을 그을수 있다. 즉 삽, 마치, 끌 등등과 그리고 아무리 정교하게 되였다 하더라도 인간이 원동력으로 되는 지레대장치와 라선장치…이러한것들은 모두 도구라는 개념에 속하는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동물이 원동력으로 되는 쟁기와 바람 등등의 힘으로 돌아가는 제분기는 기계의 부류에 넣어야 할것이다.》 (윌헬름 슐쯔 《생산의 운동》, 1843년 쮜리히판, 38페지) 이것은 약간의 점에서는 칭찬할만한 저서이다.

고 그것으로써 18세기의 산업혁명을 알리였을 때 그는 인간 대신에 나귀가 이 기계를 운전한다고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할은 나귀의것으로 되였다. 그의 설명서에는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방적하기 위한》 기계라고 씌여있었다.(89)

모든 발달한 기계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세 부분 즉 원동기, 전동기구, 도구기 또는 작업기로 이루어진다. 원동기는 전체기구의 동력으로서 작용한다. 그중에는 증기기관, 열기관[295], 전자기기관과 같이 자기자신이 동력을 만들어내는것도 있으며 또는 수차가 떨어지는 물로부터 받으며 풍차가 바람으로부터 받는것과 같이 어떤 외부의 기존자연력으로부터 원동력을 받는것도 있다. 전동기구는 평형바퀴, 운전축, 톱이바퀴, 와륜, 축, 로프, 피대, 작은톱이바퀴 및 각양각색의 전동장치로 이루어진것인데 그것은 운동을 조절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동의 형태를 변화시키며 (례컨대 수직운동을 원운

---

(89) 이미 와이어트이전에도 극히 불완전한것일망정 방적기가—아마도 최초에는 이딸리아에서—사용되고있었다. 만일 비판적인 공업기술학발전사가 있다면 그것은 18세기의 발명이 그 어떤것임을 막론하고 일개인에 속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것을 증명하여줄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와 같은 저술은 아직 없다. 다윈은 자연기술의 력사에 즉 동식물의 생활에서 생산도구의 역할을 노는 동식물의 기관들의 형성에 주의를 돌리였다. 사회적인간의 생산적기관의 형성의 력사 즉 특수한 매개 사회조직의 물질적기초의 형성의 력사에도 그와 동일한 주의를 돌릴만한 가치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은 더 용이하게 저술할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비꼬가 말하고있는바와 같이 인간의 력사는 우리가 만들었지만 자연의 력사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량자는 구별되기때문이다. 공업기술학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능동적인 관계, 인간생활의 직접적인 생산과정을 밝혀주는 동시에 인간의 사회적생활관계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관념들의 직접적인 생산과정을 밝혀준다. 이 물질적기초를 사상하고있는 모든 종교사도 무비판적이다. 사실 분석에 의하여 종교적환상의 속세의 핵심을 발견하는것은, 이와는 반대로 그때그때의 현실적 생활관계로부터 그것들의 천상의 형태를 전개하는것보다는 훨씬 더 쉬운 일이다. 후자의 방법은 유일하게 유물론적인 방법이며 따라서 유일하게 과학적인 방법이다. 력사적과정을 배제하는 추상적자연과학적유물론[294] 의 결함은 그 대변자들이 일단 그들의 전문령역밖으로 나왔을 때의 그들의 추상적이며 관념론적인 관념에서 곧 드러난다.

동으로 전화시킨다.) 운동을 도구기에 분배하며 전달한다. 기구의 이 두 부분은 오직 도구기에 운동을 전달하기 위하여서만 존재하며 이에 의하여 도구기는 로동대상을 포착하여 그것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 변화시키는것이다. 기계의 이 부분 즉 도구기는 18세기의 산업혁명의 출발점이다. 현재에도 수공업적생산 또는 공장제수공업적생산이 기계적생산으로 이행할 때에는 언제나 이 도구기가 출발점으로 된다.

이제 만약 우리가 도구기 또는 본래의 작업기를 좀더 자세히 고찰하면 그것은, 대체로 형태는 대단히 달라졌다 하더라도 대체로 수공업자와 공장제수공업로동자가 사용하던것과 꼭같은 장치와 도구가 재현된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는 인간의 도구가 아니라 기계장치의 도구 또는 기계적도구이다. 력직기에서와 같이(90) 기계전체가 이전의 수공업적도구의 다소간 변경된 기계적재판인것도 있으며 방적기에서의 방추, 양말직조기에서의 바늘, 제재기에서의 톱, 절삭기에서의 칼 등등과 같이 작업기의 동체에 장치되여 작용하는 기관들처럼 이미 이전부터 알고있는것들도 있다. 이 도구들과 작업기의 본래의 동체의 구별은 심지어 그것들의 출생에서 표현된다. 즉 도구들은 지금도 그 대부분이 수공업적방식 또는 공장제수공업적방식으로 생산되여 그후에야 기계에 의하여 생산된 작업기의 동체에 장치되는것이다.(91) 그리하여 도구기는 적당한 운동을 전달받은후에 종전에 로동자가 그와 류사한 도구들을

---

(90) 특히 력직기의 시초의 형태에서 얼핏 보아도 구식직기를 알수 있다. 력직기는 그 근대적형태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켰다.[296]

(91) 대략 1850년이래 비로소 영국에서는 작업기용도구의 더욱더 많은 부분이 기계를 제작하는 공장주에 의해서는 아닐지라도 기계에 의하여 제작되고있다. 그러한 기계용도구의 제작을 위한 기계는 레컨대 자동실감개제작기, 솥에 털을 박는 기계, 북제작기, 뮬방추 및 스로슬방추 제작기이다.[297]

가지고 수행한것과 같은 작업을 자기의 도구로 수행하는 하나의 기구이다. 그 동력이 인간에게서 오는가 또는 기계에서 오는가 하는것은 문제의 본질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못한다. 본래의 도구가 인간으로부터 하나의 기구로 옮아간후에는 단순한 도구 대신에 기계가 나타난다. 기계와 도구와의 구별은 인간자신이 아직도 의연히 원동력인 경우일지라도 곧 눈에 뜨인다. 인간이 동시에 사용할수 있는 도구의 수는 그의 자연적인 생산도구 즉 인간자신의 육체적기관의 수에 의하여 제한된다. 독일에서는 처음에 한 방적공에게 두대의 물레를 돌리게 하려고 즉 동시에 량손과 량발로 작업시켜보려고 하였다.[298] 그것은 너무나 과도한 긴장이 요구되였다. 그후에 두개의 방추를 가진 발로 움직이는 물레가 발명되였으나 동시에 두오리의 실을 뽑을수 있는 능숙한 방적공은 머리를 들 가진 사람만치나 드물었다. 이와는 달리 젠니방적기[299]는 처음부터 12~18개의 방추로써 방적하며 양말직조기는 단번에 수천의 바늘을 가지고 뜬다, 등등. 이와 같이 동일한 작업기가 동시에 사용하는 도구의 수는 처음부터 로동자의 수공업도구가 받고있는 그러한 유기체적제한으로부터 해방되여있다.

많은 수공업도구들에서는 단순한 원동력으로서의 인간과 고유한 의미에서의 작업을 하는 로동자로서의 인간과의 구별은 감각적으로 뚜렷이 나타난다. 례컨대 물레에서 발은 원동력으로서만 작용하는데 한편 방추에 붙어서 작업하는 손은 실을 잡아뽑든가 꼬든가 하는 본래의 방적작업을 한다. 산업혁명은 우선 수공업적도구의 바로 이 후자의 부분을 포착한다. 그리고 원동력이라는 순전히 기계적인 역할은, 눈으로 기계를 감시하며 손으로 기계의 착오를 시정하는 새로운 로동과 아울러 초기에는 아직 인간이 담당한다. 이와는 반대로

례컨대 연자망자루를 돌리든가(92), 뽐프질을 한다든가, 풀무질을 한다든가, 절구질을 한다든가 하는 등등의 경우와 같이 처음부터 인간이 단순한 원동력으로서만 작용하는 그러한 도구는 제일 먼저 원동력으로서의 동물과 물과 바람(93)을 사용하게 한다. 이러한 도구들은 부분적으로는 공장제수공업시기에, 분산적으로는 벌써 그보다 훨씬 전에 기계로 발전하고있었으나 그것은 생산방식을 변혁하지는 않는다. 그런것들은 그 수공업적형태에서도 벌써 기계라는것이 대공업시기에 명백하게 나타난다. 례컨대 화란사람들이 1836~1837년에 할렘호의 물을 뽑아내기 위하여 사용한 뽐프는 보통뽐프의 원리에 의하여 제작된것인데 다른 점이라면 다만 그 피스톤을 운동시킨것이 인간의 손이 아니고 거대한 증기기관이였다는 점이다.[304] 야장이 사용하는 극히 불완전한 보통풀무를 영국에서는 아직도 때때로 단순히 그 손잡이를 증기기관에 련결시킴으로써 기계적풀무로 만든다. 17세기말엽 공장제수공업시기에 발명되여 18세기 80년대초까지 존속한 증기기관(94)

---

(92) 애급인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있다. 《마당질하는 소의 입에 꾸레미를 씌우지 말라.》[300] 이와는 반대로 게르만의 기독교적박애가들은 망질을 위한 동력으로 사용한 자기의 농노의 목에 커다란 나무원판을 메워 그가 가루를 손으로 집어서 입에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301]

(93) 한편으로는 힘차게 내려가는 물이 모자라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아도는 물을 뽑아버려야 하기때문에 화란인들은 바람을 동력으로 사용하지 않을수 없었다. 풍차 그 자체는 화란인이 독일에서 가져온것이다.[302] 독일에서는 풍차의 발명이 귀족과 승려와 황제간에 기묘한 론쟁을 일으켰는데 그 리유인즉 대체 바람이 그들 삼자중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가 하는것때문이였다. 독일에는 공기가 예속을 초래한다는 말이 있는데 바람은 화란을 자유롭게 하였다. 화란에서 바람이 예속시킨것은 화란사람들이 아니고 화란사람들을 위한 토지였다. 1836년에 이르러서도 화란에서는 나라의 3분의 2가 다시 습지로 돌아가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6,000마력에 달하는 12,000개의 풍차를 사용하였다.[303]

(94) 이 증기기관은 단동식증기기관이라고 하는 워트의 최초의 증기기관에 의하여 이미 현저하게 개량되였으나 이 형태로서는 의연히 물과 염수를 빨아올리는 단순한 기계에 지나지 않았다.[305]

조차 아무런 산업혁명도 일으키지 못하였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바로 도구기의 창조가 증기기관의 혁명을 필연적으로 만들었다. 인간이 도구를 가지고 로동대상에 작용할 대신에 단순히 원동력으로서 도구기에 작용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원동력의 담당자가 인간의 근육이라는 사실은 벌써 우연적인 것으로 되며 바람, 물, 증기 등등이 그것을 대신하게 된다. 이것은 물론 그러한 교체가 원래 인간적원동력만을 타산하고 만들어진 기구에 커다란 기술적변화를 종종 일으키는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현재 재봉기, 빵제조기 등등과 같이 이제부터 자체의 길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되는 모든 기계는 만약 그 용도로 보아 처음부터 그 소규모적응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인간적원동력과 순기계적원동력에 동시에 맞도록 설계된다.

산업혁명의 출발점인 기계는 단 한개의 도구만을 운전하는 로동자를 하나의 기구로 대체하는데 이 기구는 많은 같은 도구 또는 같은 종류의 도구로써 동시에 작업하며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간에 단일한 원동력에 의하여 운전된다.(95) 이것은 기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 기계적생산의 단순한 요소일뿐이다.

작업기의 규모의 확대 및 동시에 작업하는 그 도구수의 증대는 보다 큰 원동기구를 요구하며 이 기구는 그 자체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하여—인간이 균일하고 련속적으로 운동하는 도구로서는 극히 불완전하다는것을 도외시하더라도—인간적원동력보다는 더 강력한 원동력을 요구한다. 인간이 이미 단순한 원동력으로서만 작용하며 따라서 그의 도구 대신에 도구기가 나왔다고 가정하면 이제는 자연력이 원동력으로

(95) 《하나의 원동기에 의하여 움직이는 이러한 모든 간단한 공구들을 결합한것이 기계를 이룬다.》 (배비지 《기계와 공장의 절약에 관하여》 (136페지))

서도 인간을 대신할수 있다. 공장제수공업시기로부터 전하여 온 모든 대동력중에서 마력이 가장 나쁜것이였는데 그 리유의 하나는 말이 자기자신의 두뇌를 가지고있기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말은 비용이 많이 들며 또 오직 제한된 범위에서만 공장에서 사용할수 있기때문이다.(96)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대공업의 유년기에 매우 빈번히 사용되였는데 이것은 당시의 농업가들의 불평뿐만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기계력을 마력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보존되고있다는 사실에서도 알수 있다. 바람은 너무나 일정하지 않으며 통제할수 없는것이였다. 뿐만아니라 대공업의 발생지인 영국에서는 수력의 사용이 이미 공장제수공업시기에 성행하였다. 이미 17세기에 두개의 회전석, 따라서 또 두개의 매돌을 한개의 수차로써 돌리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전동기구의 규모의 증대는 이제는 충분치 못한 수력과 충돌하게 되였으며 이것은 마찰방법을 일층 정밀하게 연구하도록 촉진한 사정의 하나이다. 또 마찬가

---

(96) 1859년 12월에 죤 C. 모튼은 기예협회[281]석상에서 《농업에 리용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하였다. 이 보고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토지를 평평하게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온갖 개량은 순전히 기계적인 힘을 제공하기 위한 증기기관의 응용을 가능하게 한다.…꾸불꾸불한 생울타리와 기타 장애물들이 균일한 동작을 불가능하게 하는 곳에서는 말의 힘이 요구된다. 이러한 장애물들은 날이 갈수록 없어지고 있다. 비교적 의지의 발휘가 많이 요구되고 육체력이 적게 요구되는 작업들에서는 매 순간마다 인간의 정신에 의하여 향도되는 힘인 인간력만이 사용될수 있다.》 그다음 모튼씨는 증기력과 마력과 인간력을 증기기관에 통용되고있는 측정단위로 환산하여 즉 1분간에 33,000폰드의 무게를 1푸트 끌어올리는 힘으로 환산하여 1증기마력의 비용을 매시간당 증기기관의 경우에는 3펜스, 말의 경우에는 $5\frac{1}{2}$펜스로 계산하고있다. 또 말은 그 건강을 충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8시간이상 부릴수 없다. 토지의 경작에 증기력을 사용하면 1년을 통하여 매 7마리의 말중 적어도 3마리는 절약할수 있는데 증기기관에 대한 1년간의 비용은 절약된 말에 대한 3 내지 4개월간—말은 실제로는 이 기간만 사용된다—의 비용보다 크지 않다. 끝으로 증기력이 사용될수 있는 농사일에서 증기력은 마력에 비하여 작물의 질을 개량한다. 증기기관이 하는 일을 하려면 1시간당 도합 15실링의 임금으로 66명의 로동자를 사용해야 할것이며 말이 하는 일을 하려면 1시간당 도합 8실링의 임금으로 32명의 로동자를 사용해야 할것이다.

지로 매돌채를 밀었다당겼다해서 운전하던 제분기에 있어서 원동력의 작용이 불규칙적이라는 사정이 그후 대공업에서 거대한 역할을 놀게 된 평형바퀴(97)의 리론과 응용을 가져왔다. 이와 같이 공장제수공업시기는 대공업의 최초의 과학적 및 기술적 요소들을 발전시켰다. 아크라이트의 스로슬방적기는 처음부터 수력으로 운전되였다. 그러나 수력을 주되는 원동력으로 사용하는데도 각종 곤난한 사정이 있었다. 수력은 임의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릴수 없었고 물의 부족을 보충할수도 없었으며 그것은 때로는 고갈되기도 하였고 또 주로는 순전히 지방적제약성을 띠고있었다.(98) 워트가 제2의 증기기관 즉 소위 복동식증기기관을 발명한 다음에야 비로소 다음과 같은 원동기가 발견되였다. 그것은 석탄과 물을 소비하여 그 자체가 원동력을 생산하며 또 그 힘이 완전히 인간의 통제를 받으며 가동적인 동시에 그 자체가 이동의 수단이며 수차와 같이 농촌에서 사용되지 않고 도시에서 사용되며 또 수차와 같이 생산을 농촌에 분산시키지 않고 도시에 집중시킬수 있으며(99) 그 기술적응용에 있어서 보편적이며 그 소재지의 지방적사정들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 일이 비교적 적은 원동기였다. 워트의 위대한 천재는 그가 1784년 4월에 얻은 특허권의 설명에 나타나있는데 거기에는 그의 증기기관이 어떤

---

(97) 파울하베트, 1625년. 드 꼬식, 1688년.[306]

(98) 현대의 타빈의 발명은 수력의 공업적리용을 종래의 허다한 제한에서 해방하였다.[307]

(99) 《직물공장제수공업의 초기에 공장의 위치는 수차를 돌리는데 충분한 락차가 있는 강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결정되였다. 그리고 비록 수차의 채용이 가내공업제도의 해체의 단서로 되였다 하더라도 이 차들은 필연적으로 강가에 또 흔히 서로 상당한 거리를 두고 배치되게 되였으므로 그것은 도시적체계의 일부라기보다는 오히려 농촌적체계의 일부를 이루고있었다. 그리하여 수력 대신에 증기력이 도입됨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공장들은 증기의 생산에 필요한 석탄과 물을 충분히 얻을수 있는 도시와 지방에 집중되였다. 증기기관은 공업도시의 어머니이다.》(A. 레드그레이브 《공장감독관보고. 1860년 4월 30일》, 36페지)

특수한 목적을 위한 발명으로서가 아니라 대공업의 보편적원동기로서 서술되여있다. 그는 이 설명서에서 응용에 대하여 말하고있는데 그중 어떤것은 레컨대 증기마치같은것은 반세기이상을 지나서야 도입되였던것이다.[308] 그렇지만 그는 증기기관을 항해에 응용할수 있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의심을 품고있었다. 그의 계승자들은 포울턴-워트회사는 1851년 런던공업박람회에 대양기선용의 거대한 증기기관을 내놓았다.

도구가 인간유기체의 도구로부터 기계적장치의 도구 즉 도구기의 도구로 전화된 후에야 원동기도 비로소 인력의 제한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독립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였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상에서 본 개개의 도구기는 기계적생산의 단순한 하나의 요소로 떨어진다. 이제는 현재의 원동기가 많은 작업기를 동시에 운전할수 있게 되였다. 동시적으로 운전되는 작업기의 수가 증대함에 따라 원동기도 크게 되며 또 그와 아울러 전동기구도 하나의 거대한 장치로 된다.

이제는 많은 같은 종류의 기계의 협업과 기계체계라는 두가지를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제품전체가 동일한 작업기에 의하여 제작된다. 즉 이러한 작업기는 여러가지 작업들을 수행하는데 이 작업들은 한 수공업자가 자기의 도구를 가지고 레컨대 한 직포공이 자기의 직조기를 가지고 수행하였거나 여러 수공업자가 독립적으로 또는 동일한 수공업공장의 한 성원으로서 각종 도구들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수행하였던것이다.(100) 레

---

(100) 공장제수공업적분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직포로동은 간단한 수공업적로동이 아니라 복잡한 수공업적로동이였다. 따라서 력직기는 극히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였다. 현대적기계가 최초에 정복한 작업은 공장제수공업적분업에 의하여 간단하게 된 작업들인듯이 생각하는것은 전적으로 잘못이다. 방적로동과 직포로동은 공장제수공업시기에 새로운 종류들로 분화되였으며 그것들의 도구는 개량되였고 또 변화되였으나 로동과

컨대 현대의 편지봉투수공업공장에서는 한 로동자는 접지칼을 가지고 종이를 접고 다른 한 로동자는 풀칠을 하고 제3의 로동자는 꽃무늬가 찍힐 봉투뚜껑을 접고 제4의 로동자는 꽃무늬를 찍는 등등의 일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매개 부분작업을 할 때마다 매개 봉투는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제는 단 한대의 봉투제조기가 단번에 이 모든 작업들을 하여 한시간에 3,000매 또는 그 이상의 봉투를 만든다.[309] 1862년의 런던공업박람회에 출품된 한 대의 미국제종이봉지제조기는 종이를 자르고 풀칠을 하고 접어서 1분간에 300개를 만든다.[310] 공장제수공업내부에서는 분할되여 순차로 수행되는 전체 과정이 이 경우에는 각종 도구의 결합에 의하여 작용하는 한개의 작업기에 의하여 완수된다. 이제 이와 같은 작업기가 복잡한 수공업적도구의 기계적재생에 지나지 않든 또는 공장제수공업에 의하여 특수화된 간단한 각종 도구의 결합이든 그것에는 관계없이 공장에서는, 다시말하면 기계적생산에 기초한 작업장에서는 언제나 단순협업이 다시 나타나는데 그것도 우선은(로동자는 여기에서는 도외시한다.) 동시적으로 함께 작용하는 같은 종류의 작업기의 공간적집합으로서 다시 나타난다. 례컨대 직조공장은 같은 작업용건물안에 나란히 놓여있는 많은 력직기로써 구성되며 재봉공장은 나란히 놓여있는 많은 재봉기로써 구성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술상 통일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같은 종류의 작업기가 공통적인 원동기의 심장의 고동이 전동기를 통하여 동시에 또 균등하게 충동을 받으며 또한 전동기구도 이러한 작업기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공통적이기때문

정 그 자체는 조금도 분할되지 않고 의연히 수공업적이였다. 기계의 출발점으로 되는것은 로동이 아니라 로동수단이다.

이다. 그것은 매개 도구기로 갈라져나가고있는것은 전동기구의 특수한 곁가지에 불과하기때문이다. 많은 도구가 한개의 작업기의 기관들을 형성하고있는것과 꼭 마찬가지로 이제는 많은 작업기가 동일한 원동기구의 같은 종류의 기관들을 형성하고있을따름이다.

그러나 본래의 기계체계는 로동대상이 서로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단계적과정을 통과하고 이러한 단계적과정이 호상 보충하는 일련의 도구기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라야만 비로소 개개의 독립한 기계 대신에 등장한다. 이 경우에는 공장제수공업에 특유한 분업에 기초한 협업이 다시 나타난다. 그런데 이제는 이 협업이 부분적작업기들의 결합으로서 나타난다. 각이한 부분로동자들의 특수한 도구들 례컨대 양모수공업공장에서 털트기공, 털빗기공, 털일으키기공, 털실잣기공 등등의 특수한 도구들은 이제는 전문화된 작업기의 도구로 전화되는데 그 매개의 작업기는 결합된 도구기구의 체계에서의 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한개의 특수한 기관으로 된다. 기계체계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그러한 부문들에서는 대체로 공장제수공업 그 자체가 생산과정의 분할과 그 조직의 자연적기초를 기계체계에 제공한다.(101) 그러나 공장제수공

(101) 대공업시대이전에는 양모공장제수공업이 영국의 지배적공장제수공업이였다. 그러므로 18세기 전반기에는 양모공장제수공업에서 수많은 실험들이 실시되였다. 모방직업에서 얻은 경험은 기계적가공에 그리 힘든 준비과정이 필요없는 면방직업에 리용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후에는 오히려 기계제모방직업이 기계제면방직업에 기초하여 발전하였다. 모방직공장제수공업의 개별적요소들 례컨대 털빗기같은것은 최근 수십년내에 비로소 공장체계에 포함되였다. 《털빗기과정에의 기계력의 적용은… 〈털빗는 기계〉 특히 리스터식털빗는 기계가 도입된 후에 광범히 보급되였으며…그 결과 극히 많은 사람들이 실업하게 되였다는것은 의심할바없다. 양털은 이전에는 손으로, 대개 소모업자의 집에서 빗질하였던것이다. 현재 양털은 보통 공장에서 빗으며 아직도 손으로 빗은 양털을 낫게 여기는 약간의 특수한 종류의 작업을 제외하고는 손로동은 페지되였다. 손으로 털빗는 많은 로동자가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었으나 그러나 그들의 생산물은 기계의 생산물에 비하여 극히 적은만큼 털빗기공의 대다수는 일자리가 없어졌다.》 (《공장감독관보고.

업생산과 기계생산간에는 처음부터 곧 본질적인 구별이 나타난다. 공장제수공업에서는 로동자들은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들의 손도구를 가지고 특수한 매개 부분과정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로동자가 과정에 적응하지만 그러나 과정도 또한 미리부터 로동자에게 적합하게 되여있다. 이러한 주관적인 분업원칙은 기계적생산에서는 없어진다. 여기에서는 총과정은 객관적으로, 그 자체로서 고찰되며 그것을 구성하는 제단계로 분해되며 매개의 부분과정을 수행하는것과 각이한 부분과정들을 결합하는 문제는 력학이나 화학 등의 기술적응용에 의하여 해결된다.(102) 물론 이 경우에도 역시 리론적구상은 축적된 대량적인 실제경험에 의하여 완성되여야 한다. 매개 부분기계는 바로 그다음 기계에 원료를 공급하는데 그것들은 모두 동시에 돌아가므로 생산물은 련속적으로 그 형성과정의 각이한 단계에 있으며 또한 련속적으로 한 생산단계로부터 다른 생산단계로 이행한다. 공장제수공업에서의 부분로동자들의 직접적협업이 특수한 로동자집단들간에 일정한 비률수를 조성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조직된 기계체계에서도 한 부분기계들이 다른 부분기계들에 부단히 일감을 주기 위해서는 그것들의 수, 규모, 속도 등간의 일정한 비률이 이루어진다. 이제는 종류가 서로 다른 개별적작업기들과 그 집단들의 조직된 한개의 체계인 결합된 작업기는, 그것이 수행하는 총과정이 련속적이면 련속적일수록 즉 그 과정의 첫단계로부터 마지막단계에로의 원료의 이행이 중단되는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따라서 원료가 인간의 손에 의해서가

1856년 10월 31일》, 16페지)

(102) 《따라서 공장제도의 원칙은…수공업자들간에 로동을 분할하거나 또는 등급매길 대신에 로동과정을 그 기본구성부분들로 구분하는데 있다.》(유어 《공장철학》, 20페지)

아니라 기구자체에 의해서 생산의 한 단계로부터 다른 단계로 나가면 나갈수록 더욱 완전한것으로 된다. 공장제수공업에서는 각종 특수과정들의 분립화가 분업 그 자체에서 나오는 원칙이라면 이와는 반대로 발달한 공장에서는 각종 특수과정들의 련속이 지배한다.

기계의 체계는 직조업에서와 같이 같은 종류의 작업기들의 단순한 협업에 기초하든 또는 방적업에서와 같이 다른 종류의 작업기들의 결합에 기초하든간에 그것이 한 자동적인 원동기에 의하여 운전되면 그 자체로서 하나의 큰 자동장치를 이루게 된다. 비록 개별적도구기는 그것이 례컨대 자동식물방적기가 도입되기전에 물방적기의 시동을 위하여 필요한 운동과 같이 또 아직도 가는실방적기에서는 필요한 운동과 같이 어떤 운동을 하는데 아직도 로동자를 필요로 하든가 또는 선반활대가 자동장치로 되기전의 기계제작에서와 같이 기계의 일정한 부분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구와 마찬가지로 로동자에 의하여 조종되지 않으면 안되든가 하지만 여하튼 체계전체는 례컨대 증기기관에 의하여 운전될수 있다. 작업기가 원료의 가공에 필요한 일체 운동을 인간의 협력없이 수행하며 오직 인간의 보조만을 필요로 하게 되면 기계의 자동체계가 이루어진것이다. 그러나 이 기계체계는 세부에 있어서 부단히 개량될수 있다. 례컨대 실이 단 한올만 끊어져도 방적기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장치와, 북속에 있는 실꾸리에서 씨실이 없어지자마자 개량식증기직조기를 정지시키는 자동정지기와 같은것은 전적으로 현대의 발명인것이다. 생산의 련속성과 아울러 자동식원리가 응용된 실례로 될수 있는것은 현대적제지공장이다. 종이생산에서는 일반적으로 각이한 생산수단에 기초를 두는 각이한 생산방식들의 차이와 그리고 이 생산방식들

과 사회적생산관계와의 련관을 상세히 유익하게 연구할수 있는데 그것은 이 부문에서 이전의 독일의 제지업은 수공업적생산의 전형을 보여주고 17세기의 화란과 18세기의 프랑스는 본래의 공장제수공업의 전형을 보여주고 현대의 영국은 자동적생산의 전형을 보여주며 또 중국과 인도에는 지금도 이 공업의 두개의 각이한 고대아시아적형태가 존재하고있기때문이다.

오직 전동기구의 매개에 의하여 하나의 중앙자동장치로부터 운동을 받는 작업기들의 조직된 체계가 기계적생산의 가장 발전된 모습이다. 여기에서는 개별적인 기계대신에 하나의 기계적괴물이 등장하는데 그 동체는 공장건물전체를 차지하며 그 마술같은 힘은 처음에는 그 거대한 팔다리들의 장중하고 절도있는 운동에 의하여 엄폐되지만 드디여 그 무수한 본래의 작업기관들의 열광적선회무로 폭발한다.

뮬방적기, 증기기관 등등은 그것들의 생산을 전업으로 하는 로동자가 있기전에 이미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재봉사가 있기전에 인간은 옷을 입고있었던것과 같다. 그러나 보깡쏭, 아크라이트, 워트 등등의 발명들은 오직 이 발명가들이 공장제수공업시기에 이미 준비된 상당한 수의 숙련된 기계로동자를 발견하였기때문에 비로소 실현될수 있었던것이다. 이러한 로동자들의 일부분은 각종 직업의 독립적수공업자들로써 구성되여있으며 다른 일부분은 상술한바와 같이 분업이 특히 엄격하게 지배하고있던 수공업공장에서 련합되였던것이다.① 더욱더 많은것이 발명되고 또 새로 발명된 기계에 대한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한편으로는 다양한 독립적부분에로의 기계제작의 분화가 다른 한편으로는 기계제작공장제수공업내부에서의 분업이 더욱더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① 이 책 396~403페지를 보라. —편집자

공장제수공업에서 대공업의 직접적인 기술적기초를 본다. 공장제수공업은 기계를 생산하였는데 그 기계의 도움에 의하여 대공업은 그것이 최초에 점령한 생산부문들에서 수공업생산과 공장제수공업생산을 배제하였던것이다. 이와 같이 기계적 생산은 그 생산에 적합하지 않은 물질적기초우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것이다. 일정한 발전단계에 도달하였을 때 기계적생산은 처음에 기성형태로 발견하였으며 다음에는 낡은 형태에서 가일층 완성된 이 기초를 뒤집어엎고 그 자체의 생산방식에 상응하는 새로운 기초를 창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매개 기계가 오직 인간에 의해서만 운전되는 동안은 의연히 왜소하였고 또 기계체계가 기존원동력—동물, 바람, 또 지어는 물—대신에 증기기관이 나타나기전에는 자유롭게 발전할수 없었던것과 마찬가지로 대공업도 또한 그것에 특징적인 생산수단인 기계 그 자체가 자기의 존재를 개인적인 힘과 개인적인 숙련에 의존하고있던 동안은, 다시말하면 수공업공장내부에서는 부분로동자가 또는 수공업공장밖에서는 수공업자가 그들의 왜소한 도구를 조종하던 발달한 근육과 예민한 시력과 능란한 손에 의존하고있던 동안은 충분한 발전이 불가능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발생한 기계가 비싸다는 사정—이 사정은 의식적동기로서 자본을 지배한다—을 도외시하더라도 이미 기계로 생산하는 공업부문의 확대와 기계의 새로운 생산부문에로의 침투는, 그 직업의 반예술적본성때문에 비약적으로가 아니라 오지 점차적으로만 증가할수 있는 그러한 로동자부류의 장성에 전적으로 의존하고있었다. 그러나 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르러서는 대공업은 그 수공업적 및 공장제수공업적 토대와 기술적으로도 충돌하게 된다. 원동기와 전동기구와 도구기의 규모가 확대된다는것, 도구기가

처음에 그 구조를 지배하고있던 수공업적인 원형을 벗어나 기계로서의 그 임무에 의하여서만 규정되는 자유로운 모습을 취함에 따라 도구기의 구성부분들이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되며 더 엄밀한 규칙성을 가지게 된다는것, 자동적체계가 완성되여 가공하기 어려운 재료 례컨대 나무를 대신하는 철의 사용이 더욱 불가피하게 된다는것(103)—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이 모든 과제들의 해결은 어디서나 인적제한과 부딪치게 되는데 이 제한은 공장제수공업에서 결합된 로동자군에 의하여 어느 정도까지는 타파되였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타파되지 못하였던것이다. 례컨대 현대적인쇄기와 현대적중기직조기와 현대적털빗기 기계와 같은 기계들은 공장제수공업에서는 제작될수 없었다.

어떤 한 공업부문에서 일어난 생산방식의 변혁은 다른 부문의 생산방식의 변혁을 일으킨다. 이것이 우선 적용되는것은 사회적분업으로 말미암아 분립되여있기때문에 각기 독립적인 상품을 생산하기는 하나 그러면서도 총과정의 여러 단계로서 서로 긴밀히 련관되여있는 그러한 공업부문이다. 례컨대 기계방적업은 기계직조업을 필요로 하였으며 또 이 량자는 함께 표백업, 날염업, 염색업에서의 기계적, 화학적 혁명을 필요로 하였다. 이와 같이 다른 한편으로는 면방적업에서의

---

(103) 력직기는 그 최초의 형태가 주로 나무로 되여있으나 개량된 현대적인것은 주로 철로 되여있다.[311] 생산수단의 낡은 형태가 처음에 그 새로운 형태를 어떻게 지배하는가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현대적중기직조기와 구식직조기를, 주물공장의 현대적인 송풍장치와 보통풀무를 본딴 최초의 둔중한 기계적풀무를 극히 대략적으로 비교해보아도 알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현대의 기관차가 발명되기전에 시험해본 첫 기관차를 보면 이 점을 더 뚜렷하게 알수 있는데 그 기관차는 실로 두개의 발을 가지고있었고 말모양으로 번갈아 옮렸다내렸다했던것이다. 기계학이 일층 발전하고 실천적경험이 쌓아진후에야 비로소 기계의 형태는 완전히 기계학적원리에 의하여 규정되며 따라서 현재 발전하여 기계로 되는 그 도구의 전통적체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

혁명은 면섬유를 목화씨와 분리하는 조면기의 발명을 일으켰으며 그리하여 현재 필요한 대규모적인 면화생산은 이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되였다.(104) 그러나 특히 공업 및 농업의 생산방식에서의 혁명은 사회적생산과정의 일반적인 조건들 즉 교통수단과 운수수단에서의 혁명을 필요로 하였다. 가내적부업을 가진 소농업과 도시수공업을 푸리에의 표현을 빌어 말한다면 그 《추축》[312]으로 한 사회의 교통수단과 운수수단은 확대된 사회적분업과 로동수단 및 로동자의 집중과 식민지시장을 가진 공장제수공업시기의 생산상의 요구를 도저히 더는 충족시킬수 없었으며 따라서 사실상 변혁된것과 다름없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공장제수공업시기로부터 물려받은 운수수단과 교통수단은 열병적인 생산속도와 거대한 규모와, 생산의 한 분야로부터 다른 분야에로의 다량의 자본 및 로동자들의 부단한 투입과, 새로 창조된 세계시장적련계를 가진 대공업으로서는 참을수 없는 질곡으로 급속히 전화되였다. 그러므로 교통기관과 운수기관은 돛배건조에서의 완전한 변혁은 고사하고라도 하천기선, 철도, 해양기선 및 전신 등의 체계에 의하여 점차 대공업의 생산방식에 적응하게 되였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단조, 용접, 절단, 천공, 주조해야 할 엄청나게 많은 량의 철은 공장제수공업적기계제작의 힘으로써는 도저히 만들어낼수 없었던 그러한 거대한 기계들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대공업은 그 특징적생산수단인 기계 그 자체를 장악하며 기계로써 기계를 생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리하

---

(104) 미국인인 일라이 위트니에 의하여 발명된 조면기는 최근시기에 이르기까지 18세기의 다른 어떤 기계보다도 본질적인 변화가 거의 없었다. 최근 수십년(1867년이전)간에야 비로소 다른 미국인인 뉴욕주 올바니출신인 에머리씨가 간단하고 효과적인 개량을 가함으로써 위트니식기계를 낡은것으로 만들었다.[310]

여 비로소 대공업은 자기에게 적합한 기술적기초를 창조하였으며 자기자신의 두발로 서게 되였다. 19세기의 첫 수십년간에 기계적생산의 장성에 따라 사실상 기계는 점차로 도구기의 제작을 장악하게 되였다. 그렇지만 대규모적인 철도건설과 해양기선의 항행으로 말미암아 원동기제작에 사용되는 거대한 기계들이 나타나게 된것은 겨우 최근 십년간의 일이다.

기계에 의한 기계의 생산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생산조건은 충분한 원동력을 낼수 있으며 또 그와 동시에 인간이 완전히 통제할수 있는 원동기였다. 그러한 원동기는 증기기관의 형태로 이미 존재하고있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선, 평면, 원, 원통, 원추, 구와 같은 기계의 개별적인 부분들에 필요한 정밀한 기하학적인 형태를 기계로 생산하는것이 문제였다. 이 문제는 19세기의 첫 10년대에 헨리 모즐리가 선반활대를 발명함으로써 해결되였는데 이것은 곧 자동적기구로 전화되였으며 그리고 처음에는 선반용으로 예정되였던것이 그후 변경된 형태로 선반으로부터 다른 공작기계들로 옮겨졌다.[313] 이 기계적장치로 바뀌는것은 어떤 특수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손자체인데 이전에 손은 절삭공구 등등의 끝을 레컨대 철과 같은 로동재료에 가져가며 그우에 맞추며 또 방향을 잡음으로써 일정한 형태를 만들어낸다. 이리하여 기계의 개별적부분들의 기하학적형태를

《가장 숙련된 로동자가 아무리 경험을 쌓았다 하더라도 손으로는 도저히 따를수 없을 정도로 용이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생산》(105)

---

(105) 《각국의 산업》, 1855년 런던판, 제2부, 239페지. 이 저서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이 선반부속물은 간단하여 얼핏 보아서는 중요하지 않은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기계사용의 개량과 보급에 대한 그 영향은 워트가 증기기관 그자체에 가한 개량의 영향에 못지 않다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것의 도입은

할수 있게 되였다.

이제 만약 우리가 기계제작에 사용되는 기계중 본래의 도구기를 형성하고있는 그 부분을 고찰하면 그것은 다만 규모가 대단히 커진 수공업적도구에 불과하다는것을 알수 있다. 례컨대 볼반의 도구기부분은 증기기관이 움직이는 거대한 송곳인데 이것이 없다면 대형증기기관 및 수압기의 원통은 생산하지 못할것이다. 기계선반은 보통의 발틀선반의 거대한 재생물이며 평삭반은 목수가 목재를 가공하는데 쓰는것과 동일한 도구를 가지고 철을 가공하는 철제목수이며 런던의 조선소에서 합판을 베는 도구는 거대한 면도칼이며 재봉가위가 천을 베듯이 철을 베는 기계가위의 도구는 거창한 가위이며 그리고 증기망치는 보통의 망치대가리—그러나 뢰신도 휘두를수 없을만한 그러한 무게를 가진 망치대가리—를 가지고 작업한다.(106)[314] 례컨대 네이즈미스가 발명한 증기망치의 하나는 6톤이상의 무게가 있으며 7푸트의 높이에서 중량 36톤의 모루우에 수직으로 떨어진다. 그것은 화강암을 가루로 만드는것쯤은 어린애장난이며 또 련속 가볍게 두드림으로써 연한 목재에 못을 박는 일도 그에 못지 않게 할수 있다.(107)[316]

로동수단은 기계의 형태에서 인간력 대신에 자연력을 리용하며 경험적숙련 대신에 자연과학의 의식적응용에 의뢰할것을 요구하는 물질적존재형태를 취한다. 공장제수공업에서

즉시로 온갖 기계의 개량과 그 가격의 저하를 가져왔으며 또 새로운 발명과 개량을 자극하였다.》

(106) 런던에서 기선의 외륜축을 단조하는데 사용되는 이러한 기계의 하나는《뢰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16\frac{1}{2}$톤의 중량을 가진 축을 대장이 편자를 단조하듯이 용이하게 단조한다.[315]

(107) 소규모로도 사용될수 있는 목재가공기들은 대부분이 미국인의 발명이다.

는 사회적로동과정의 조직은 순전히 주관적이며 또 부분로동자들의 결합인데 기계체계에서는 대공업은 전적으로 객관적인 생산유기체—이것은 로동자에게는 이미 존재하는 물질적생산조건으로 나타난다—를 가진다. 단순한 협업에서와 또 분업에 의하여 전문화된 협업에서도 사회화된 로동자가 개별화된 로동자를 몰아내는것은 아직도 어느 정도 우연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기계는 후에 말하게 될 약간의 례외를 제외하고는 오직 직접 사회화된 로동 또는 공동로동에 의하여서만 기능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로동과정의 협업적성격은 로동수단자체의 성질에 의하여 규정되는 기술적필연으로 된다.

2. 기계로부터 생산물에로의 가치이전

이미 본바와 같이 협업과 분업으로부터 생기는 생산력은 자본에 대해서는 한푼도 비용이 드는것이 아니다.① 그것은 사회적로동의 자연력이다. 생산과정에 리용되는 증기, 물 등과 같은 자연력에도 역시 한푼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호흡하기 위하여 폐가 필요하듯이 자연력을 생산적으로 소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손의 창조물》이 필요하다.[317] 물의 원동력을 리용하기 위해서는 수차가 필요하며 증기의 탄력을 리용하기 위해서는 증기기관이 필요하다. 과학에서도 사정은 자연력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전류의 작용범위내에서의 자침의 편차법칙이라든가 또는 주위에 전류가 통하면 철에서 자기가 발생하는 법칙 등은 한번 발견한후에는 한푼도

① 이 책 375~382, 386~387, 393~396, 405~406, 417~418, 422페지를 보라. —편집자

비용이 들지 않는다.(108) 그러나 이 법칙들을 전신 등등에 리용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비용이 들며 복잡한 장치가 필요하다. 도구는 이미 본바와 같이 기계에 의하여 구축당하지 않는다. 도구는 인간유기체의 왜소한것으로부터 발전하여 그 규모에 있어서나 수에 있어서나 인간이 창조한 기구의 도구로 된다.① 자본은 이제는 로동자를 손도구로써 일을 시키는것이 아니라 자기의 도구를 자기로 조종하는 기계로써 일을 시킨다. 따라서 대공업이 거대한 자연력과 자연과학을 생산과정에 병합함으로써 로동생산성을 비상히 제고시키는것이 틀림없다는것은 얼핏 보아도 분명하지만 이러한 생산력의 제고는 다른면에서의 로동지출의 증대에 의하여 얻어지는것이 아니라는것은 결코 그처럼 분명하지 않다. 불변자본의 모든 다른 구성부분과 마찬가지로 기계는 아무런 가치도 창조하지 않으나 기계는 그것으로 생산되는 생산물에 자기자체의 가치를 이전한다. 기계가 가치를 가지며 따라서 생산물에 가치를 이전하는 한에 있어서 기계는 생산물의 가치의 한 구성부분을 이룬다. 기계는 생산물을 값싸게 하는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가치에 비례하여 생산물을 비싸게 한다. 그리고 대공업에 특징적인 로동수단인 기계와 발전된 기계체계가 수공업적생산과 공장제수공업적생산의 로동수단에 비하여 비교도 안되리만큼 더 큰 가치를 가진다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108) 과학은 일반적으로 자본가에게 《한푼도》 비용이 들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은 자본가가 과학을 리용하는것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는다. 자본은 그것이 타인의 로동을 점유하는것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과학을 점유한다. 그러나 과학이나 물질적부에 대한 《자본주의적》 점유와 《개인적》 점유는 전혀 별개의것이다. 유어바사자신은 기계를 리용하는 그의 친애하는 공장주들이 기계학을 전혀 모르는데 대하여 한탄하였으며 또 리비히는 영국의 화학공장주들이 화학분야에서 놀랄만큼 무식하다는것을 이야기하고있다.

① 이 책 429~432페지를 보라. —편집자

우선 말해야 할것은 기계는 로동과정에는 언제나 전체적으로 참가하지만 가치증식과정에는 언제나 부분적으로만 참가한다는 사실이다. 기계는 그것이 마모되는 결과 평균적으로 상실하는 가치이상으로는 결코 생산물에 가치를 첨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계의 가치와 주기적으로 기계에서 생산물로 이전되는 가치부분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생기는것이다. 가치형성요소로서의 기계와 생산물형성요소로서의 기계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동일한 기계가 동일한 로동과정에서 반복하여 쓰이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차이는 더욱 크다. 물론 이미 본바와 같이 본래의 로동수단 또는 생산도구는 어떠한것이든지 모두 로동과정에는 언제나 전체적으로 참가하고 가치증식과정에는 언제나 그 매일의 평균적마모에 비례하여 부분적으로만 참가할뿐이다.① 그러나 사용과 마모간의 이러한 차이는 기계에서는 도구에서보다 훨씬 더 크다. 왜냐 하면 기계는 보다 오래 견딜수 있는 재료로 제작되여있으므로 수명이 더 길며 또 그 사용은 엄격히 과학적법칙에 의하여 규제되므로 그 구성부분의 마모와 그 소비수단의 지출을 더 많이 절약할수 있게 하며 끝으로 기계의 생산적작용범위는 도구의 생산적작용범위에 비하여 비교도 안되리만큼 넓기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기계와 도구의 매일의 평균적비용 즉 그것들의 매일의 평균적마모와 그리고 기름, 석탄 등과 같은 보조재료의 소비에 의하여 생산물에 첨가되는 가치구성부분을 무시한다면 그것들은 인간로동을 가함이 없이 존재하는 자연력과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작용하는것이다. 기계의 생산적작용범위가 도구의 그것에 비하여 크면 클수록 기계의 무상봉사의 범위도 도구의 그것에 비하여 그만큼 더 크다. 대공업에서 비로소 인간은 자

① 이 책 237~238페지를 보라. ㅡ편집자

기의 과거의 로동, 이미 대상화된 로동의 생산물을 대규모적으로 자연력과 같이 무상으로 작용시키는것을 배운다.(109)

협업과 공장제수공업을 고찰할 때에 본바와 같이 일정한 일반적생산조건들 례컨대 건물 등등이 공동적으로 소비될 때 개별적로동자들이 분산된 생산조건들을 소비하는데 비하여 절약되며 따라서 생산물을 보다 값싸게 한다.① 기계생산의 경우에는 한개의 작업기의 동체가 거기에 달린 많은 도구에 의하여 공동적으로 소비될뿐만아니라 동일한 원동기가 전동기구의 일부와 함께 많은 작업기에 의하여 공동적으로 소비된다.

기계의 가치와 기계가 매일 자기 생산물에 이전하는 가치부분간의 차액이 주어진것이라면 이 가치부분이 생산물을 비싸게 하는 정도는 우선 생산물의 량에 말하자면 생산물의 면적에 의하여 결정된다. 블랙번출신의 베인즈씨는 1857년에 발표된 한 강의에서 다음과 같은 계산을 하고있다.

《현실적인 한 기계마력은(109a) 준비장치가 달려있는 자동식뮬방

---

(109) 리카도는 가끔 기계의 이러한 작용에 비상한 주의를 돌린 결과—하긴 그는 이것을 로동과정과 가치증식과정간의 일반적차이와 마찬가지로 거의 설명하지는 못하였지만—기계가 생산물에 이전하는 가치구성부분을 때로는 망각하고 기계를 자연력과 완전히 혼동하고있다. 그리하여 례컨대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애담 스미스는 자연력과 기계가 우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봉사를 어디서나 과소평가하지는 않으나 그는 그것들이 상품에 첨가하는 가치의 성질을 아주 옳게 구별하고있다.…그것들은 이러한 일을 무상으로 수행하는 까닭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방조는 교환가치에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는다.》(리카도 《정치경제학 및 조세의 원리》, 336, 337페지) 리카도의 지적은 기계가 《리윤》의 일부를 이루는 가치를 창조하는 《봉사》를 한다고 지껄이는 J. B. 쎄에 대해서는 물론 정당하다.[318]

(109a) {제3판 주: 1 《마력》은 1분간 33,000푸트폰드의 힘, 다시말하면 1분간에에 33,000폰드의 물건을 1푸트의 높이로 또는 1폰드의 물건을 33,000푸트의 높이로 올리는 힘과 같다. 본문에서 말한 마력은 이것을 의미한다.② 그러나 일상적인 상업상용어에서는 또 이 저서의 일부 인용문중에서는 동일한 기계의 《공칭》마력, 《상업》마력 또는 《지시》마력이 구별되여있다. 구마력 또는 공칭마력은 전적으로 피스톤의 충정과 실린더의 직경에 의하여 계산되며 증기압력과 피스톤속도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이것

① 이 책 376~378, 401~403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이 책 433페지를 보라. —편집자

추 450개 또는 스로슬방추 200개 또는 날실을 고르게 하고 거기에 풀물을 먹이는 등등의 장치가 달려있는 40인치폭직포기 15대를 움직이게 한다.》[319]

증기마력의 하루비용과 그것에 의하여 운전되는 기계의 마모는 첫째 경우에는 450개의 뮬방추의 하루의 생산물에 분배되며 둘째 경우에는 200개의 스로슬방추의 하루의 생산물에 분배되며 셋째 경우에는 15대의 직포기의 하루의 생산물에 분배되므로 그 결과 1온스의 방사 또는 1엘레의 직물에는 극히 적은 가치부분이 이전될뿐이다. 우에서 례로 든 증기망치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② 증기망치의 하루의 마모, 석탄의 소비 등등은 증기망치가 매일 두들기는 엄청나게 많은 량의 철에 분배되는 까닭에 그 매 쩬트네르의 철에는 극히 적은 가치부분만이 배당될것이나 만약 이 거인 같은 도구를 가지고 작은 못을 박는다면 거기에 배당되는 가치부분은 대단히 커질것이다.

작업기의 작용범위 즉 작업기의 도구수가 주어진것일 때 또는 힘이 문제인 경우에는 작업기의 규모가 주어진것일때 생산물의 량은 작업기가 작업하는 속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례컨대 방추가 회전하는 속도 또는 1분간에 증기망치가 내리

온 사실상 다음과 같은것을 의미한다. 즉 어떤 증기기관이 포울턴 및 워트의 시대에서와 같은 미약한 증기압력과 느린 피스톤속도로 운전될 때 례컨대 50마력을 가진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마지막 두 요인은 그후에 비상히 강화되었다. 기계에 의하여 현재 현실적으로 제공되는 기계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증기의 압력을 표시하는 지시기가 발명되었다. 피스톤의 속도를 확정하는것은 용이하다. 그리하여 《지시》마력 또는 《상업》마력이라는 측정단위는 실린더의 직경과 피스톤의 충정과 피스톤의 속도와 증기의 압력이 동시에 고려되는 한편 그 기계가 1분간에 33,000푸트폰드의 몇배나 되는 힘을 현실적으로 제공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수학적공식이다. 그러므로 1공칭 마력은 현실에 있어서는 3배, 4배 지어는 5배의 지시마력 또는 현실적마력을 제공할수 있다. 이 주는 후에 나오는 인용문들을 설명하기 위한것이다.① —F. E.)

① 이 책 477~478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이 책 433페지를 보라. —편집자

치는 회수에 의하여 결정될것이다. 거대한 증기망치가운데는 1분간에 70번을 내리치는것도 많으며 방추를 단조하는데 작은 증기망치를 사용하는, 특허를 받은 라이더식단조기는 1분간에 700번을 내리친다.[320]

기계의 가치가 생산물에 이전되는 비률이 주어진것이라면 이 가치부분의 크기는 기계자체의 가치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110) 기계자체에 포함되여있는 로동이 적으면 적을수록 기계가 생산물에 첨가하는 가치는 적다. 기계가 생산물에 이전하는 가치가 적으면 적을수록 기계는 더욱 생산적이며 기계의 봉사는 더욱 자연력의 봉사에 가까운것으로 된다. 그런데 기계에 의한 기계의 생산은 기계의 규모와 작용에 비하여 그 가치를 감소시킨다.

수공업적으로 또는 공장제수공업적으로 생산된 상품의 가격과 기계에 의하여 생산된 같은 상품의 가격과를 비교분석한다면 일반적으로 기계생산물에서는 로동수단에서 넘어오는 가치구성부분이 상대적으로 증가되지만 절대적으로는 감소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시말하면 이 가치부분의 절대적인 크기는 감소되지만 그러나 례컨대 1폰드의 방사라는 생산물의 총가치에 비하면 그 크기는 증대된다.(111)

---

(110) 자본주의적관념에 사로잡힌 독자는 기계가 자기의 자본가치에 비례하여 생산물에 첨가하는《리자》에 관해서는 여기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있다고 말할것이다. 그러나 기계는 불변자본의 모든 다른 구성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지 않기때문에 《리자》라는 명칭하에 아무런 새로운 가치도 첨가할수 없다는것은 쉽게 리해할수 있다. 더 나아가 잉여가치의 생산이 문제로 되고있는 여기에서 《리자》라는 명칭하에 잉여가치의 어떠한 부분도 미리 전제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얼핏 보아도 황당하며 가치형성의 법칙들과 모순되는 자본주의적계산방식에 관해서는 이 저술의 제3권에서[180] 설명될것이다.

(111) 기계에 의하여 첨가되는 이 가치구성부분은 기계가 말을—일반적으로 물질의 변형을 위한 기계로서가 아니라 원동력으로서만 리용되는 역축을—구축하는 경우에는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감소한다. 부대적으로 말하거니와 데까르뜨는 그가 동물을 단순한 기계라

어떤 기계의 생산에 그 기계의 사용에 의하여 절약되는 것과 동일한 량의 로동이 든다면 그것은 다만 로동을 옮겨놓는데 지나지 않는다는것 즉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의 총량은 감소되지 않는다는것, 또는 로동생산력은 높아지지 않는다는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기계에 드는 로동과 기계가 절약하는 로동간의 차액 또는 기계의 생산성의 정도는 명백히 기계자체의 가치와 그것이 대신하는 도구의 가치간의 차액에 의하여서는 결정되지 않는다. 기계의 로동비용, 따라서 기계에 의하여 생산물에 첨가되는 가치부분이 로동자가 자신의 도구로써 로동대상에 첨가하는 가치보다 적을 때에는 이 차액은 계속 존재한다. 그러므로 기계의 생산성은 기계가 인간 로동력을 대신하는 정도에 따라 측정된다. 베인즈씨의 계산에 의하면 1증기마력으로써 운전되는 450개의 물방추와 그 준비장치는 $2\frac{1}{2}$명의 로동자를 필요로 하며(112) 매개의 자동식물

고 정의할 때[321] 사물을 중세기와는 다른 공장제수공업시기의 안목으로 보고있는데 중세기에는 동물을 인간의 조수로 간주하였다. 후일에 폰 할레르씨도 그의 《국가학의 부흥》에서 역시 그렇게 간주하였다.[322] 데까르뜨가 베이컨과 마찬가지로 생산방식의 변화와 인간에 의한 자연의 실제적지배를 사유방법의 변화의 결과로 본것은[323] 그의 저서 《방법론》이 보여주는 바인데 이 저서에는 특히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생활상 대단히 유용한 지식에 도달할수 (그에 의하여 철학에 도입된 방법을 리용하여) 있으며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변철학 대신에 실천적철학을 발견할수 있는데 이 철학의 도움으로 우리는 불, 물, 공기, 별 및 기타 우리 주위의 모든 물체의 힘과 작용을 우리가 수공업자들의 각종 직업을 아는것과 같이 알므로써 바로 그와 같이 그것들을 모든 적합한 용도에 리용하며 그리함으로써 자연의 주인 및 지배자로 될수 있을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생활의 완성을 촉진할수 있을것이다》. 다들리 노스경의 《상업에 관한 론술》(1691년) 서문에는 정치경제학에 적용된 데까르뜨의 방법은 화폐, 상품 등에 관한 고대신화와 미신적관념들로부터 정치경제학을 해방하기 시작하였다고 씌여있다. 대체로 초기의 영국경제학자들은 베이컨 및 호브즈의 철학에 찬동하였는데 그후에는 로크가 주로 영국, 프랑스 및 이딸리아 정치경제학의 《철학자》로 되였다.

(112) 에쎈상업회의소의 년차보고(1863년 10월)에 의하면 크루프주강공장은 161개의 용광로, 소성로, 침탄로, 32대의 증기기관(1800년에 만체스터에서 사용되던 증기기관의 총수는 대략 이만하였다.) 및 14대의 증기망치ㅡ도합 1,236마력에 해당하는ㅡ, 49개의 단조로, 203대의 도구기 및 약 2,400명의 로동자에 의하여 1862년에 1,300만폰드

방추는 10시간로동일에 13온스의 방사(중등번수의)를 생산하며 그리하여 $2\frac{1}{2}$명의 로동자에 의하여 1주간에 $365\frac{5}{8}$폰드의 방사를 생산하는것으로 된다. 따라서 약 366폰드의 면화는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솜찌끼를 무시한다.) 그것을 방사로 만드는데 불과 150로동시간 또는 15개의 10시간로동일을 흡수하는데 한편 물레로써는 수방적공이 13온스의 방사를 60시간에 생산한다면 동일한 량의 면화는 2,700개의 10시간로동일 또는 27,000로동시간을 흡수하는것으로 될것이다.(113) 종래의 목판날염법 즉 손에 의한 날염법이 기계에 의한 날염에 의하여 구축된 곳에서는 단 한대의 기계가 1명의 성인남성로동자 또는 소년공의 협조하에 한시간동안에 이전에는 200명의 성인로동자가 하던것과 같은 량의 4색날염직을 날염한다.[324](114) 일라이 위트니가 1793년에 조면기를 발명하기전에는 1폰드의 면화에서 씨를 뽑는데 평균 1로동일이 걸렸다. 그의 발명의 덕택으로 1명의 흑인녀자가 하루에 100폰드의 면화를 분리할수 있게 되였으며 그 이후 조면기의 생산능률은 더 현저하게 제고되였다.[325] 1폰드의 면섬유는 이전에는 그 생산비가 50센트였는데 그후에는 더 많은 리윤을 붙이고도 즉 더 많은 부지불로동을 포함하고도 10센트로 판매되였다. 인도에서는 면화섬유에서 씨를 제거하기 위하여 츄르카라는 반기계적인 도구가 사용되고있는데 이것으로써 1명의 남자와 1명의 녀자가 하루에 28폰드를 분리시킨다. 수년전에

의 주강을 생산하였다. 이 경우에는 1마력당 로동자는 2명도 되지 않는다.

(113) 배비지의 계산에 의하면 쟈바에서는 방적로동만에 의하여 면화의 가치는 거의 117%나 증대하였다. 당시(1832년) 영국에서는 가는실방적업에서 기계와 로동에 의하여 면화에 첨가되는 총가치는 원료가치의 약 33%에 달하였다. (《기계와 공장의 절약에 관하여》, 165~166페지)

(114) 그밖에 기계날염에서는 염료도 절약된다.

포브즈박사가 발명한 츄르카로써는 1명의 남자와 1명의 소년이 하루에 250폰드를 분리하는데 소, 증기, 또는 물이 원동력으로 리용되는 경우에는 장입공으로서 수명의 소년과 소녀가 요구될뿐이다.[326] 소가 움직이는 기계 16대는 하루에, 이전에는 750명이 평균 하루에 하던 작업을 한다.(115)

이미 말한바와 같이 증기쟁기의 증기기관은 1시간에 3펜스 즉 $\frac{1}{4}$실링의 비용으로, 66명이 매 시간 15실링의 비용으로 수행하는 작업을 한다.① 그릇된 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시 이 실례로 돌아가자. 즉 이 15실링은 결코 66명의 로동자가 한시간동안에 첨가하는 로동의 표현이 아니다. 필요로동에 대한 잉여로동의 비률이 100%였다면 이 66명의 로동자들은 매 시간에 30실링의 가치를—비록 그들자신의 등가 즉 15실링의 임금에 표현되고있는것은 33시간에 불과하지만—생산한것이다. 그리하여 만약 어떤 기계가 그것에 의하여 구축된 150명의 로동자들의 년임금 례컨대 3,000파운드와 같은 비용이 든다고 가정한다면 이 3,000파운드는 결코 이 150명의 로동자에 의하여 제공되여 로동대상에 첨가된 로동의 화폐적표현이 아니라 다만 그들의 년로동중 그들자신을 위하여 로임으로 표현되는 부분의 화폐적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3,000파운드라는 기계의 화폐가치는 기계의 생산에 지출된 전체 로동을—이 로동이 어떤 비률로 로동자의 로임과 자본가의 잉여가치를 형성하든간에—표현한다. 따라서 기계에는 비록 그것이 대신하는 로동력과 같

(115) 생산물에 관하여 인도총독부에 보고를 제출한 워트슨의사가 1860년 4월 17일에 기예협회에서[281] 읽은 론문을 참조하라.[327]

① 이 책 433페지를 보라. —편집자

은 비용이 들더라도 기계에 대상화된 로동은 언제나 기계가 대신하는 산로동보다 훨씬 적다.(116)

기계를 다만 생산물을 싸게 하는 수단으로만 본다면 기계를 사용하는 한계는 기계자체의 생산에 드는 로동이 기계의 사용에 의하여 대체되는 로동보다 적어야 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자본에 대해서는 이 한계가 더 좁다. 자본은 사용하는 로동을 지불하는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로동력의 가치를 지불하므로 자본에 대해서 기계사용은 기계의 가치와 기계가 대신하는 로동력의 가치간의 차액에 의하여 한계가 주어진다. 필요로동과 잉여로동으로의 로동일의 분할은 나라에 따라 다르며 또 같은 나라에서도 시기에 따라 다르든가 또는 같은 시기에도 생산부문에 따라 다르며 또한 로동자의 현실적임금은 때로는 그의 로동력의 가치이하로 떨어지며 때로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므로 기계가격과 기계가 대신하는 로동력의 가격간의 차액은—기계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량과 기계가 대신하는 로동총량간의 차액에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심히 변동할수 있다.(116a) 그러나 자본가자신에게 있어서 상품의 생산비를 규정하며 경쟁의 강제적법칙을 통하여 그에게 영향을 주는것은 오직 전자의 차액뿐이다. 오늘날 영국에서 발명되는 기계가 북아메리카에서만 사용되는데 그것은 16세기와 17세기에 독일에서 발명된 기계가 화란에서만 사용되였으며 또 18세기의 프랑스의 많은 발명이 영국에서만 리용된것과 같다. 오래전부터 발전한 나라들에서는 기계자체가 약간의 생산부

---

(116) 《이 말못하는 일군 (기계) 은 그것이 완전히 동일한 화폐가치를 가질 때에도 언제나 그것이 대신하는 로동보다 훨씬 더 적은 로동의 생산물이다.》 (리카도 《정치경제학 및 조세의 원리》, 40페지)

(116a) 제2판 주: 그러므로 공산주의사회에서는 기계는 자산계급사회에서와는 전혀 다른 작용범위를 가질것이다.

문들에서 사용됨으로써 다른 부문들에서의 로동과잉(리카도가 말하는 redundancy of labour)을 일으키며 그 결과 후자의 부문들에서는 로동력의 가치이하로의 로임의 저락이 기계의 사용을 방해하며 자본—자본의 리득은 본래 사용되는 로동일반의 감소가 아니라 보수를 지불하는 로동의 감소로부터 발생한다—의 립장에서는 기계의 사용을 쓸데없게 혼히는 불가능하게 한다. 영국의 양모방직공업의 일부 부문들에서는 아동로동이 최근 수년간에 급격히 감소되였으며 곳에 따라서는 거의 구축되였다. 왜 이렇게 되였는가? 공장법의 강제로 말미암아 아동들의 2교대제가 도입되여 번갈아 한반은 6시간 작업하고 다른 반은 4시간 작업하거나 또는 두반이 각각 5시간씩만 작업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부모들은 반일공을 이전에 전일공을 팔 때보다 더 싸게는 팔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리유로 반일공들은 기계로 대체되였다.(117) 광산에서 녀성로동과 아동(10세미만의)로동이 금지되기전에는[328] 자본은 탄광과 기타 광산들에서 벌거벗은 부인들과 소녀들을 왕왕 남자들과 함께 일시키는것을 그의 도덕법전 특히는 그의 원대장과 합치되는것으로 인정하였기때문에 자본은 이것이 금지된 이후에야 비로소 기계를 사용하였다. 미국인들은 돌분쇄기를 발명하였다. 영국인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있는데 그 리유인즉 이 로동을 하는 《불쌍한 사람들》(《wretch》라는

---

(117) 《고용주들은 필요없이는 13세미만 아동들의 2교대를 유지하려 하지 않을것이다.…사실 어떤 부류의 공장주들 즉 털실방적업자들은 지금 13세미만의 아동 즉 반일공을 별로 사용하지 않고있다. 그들은 아동들 (즉 13세미만의 아동들) 의 로동을 전폐하는 각종 개량된 새 기계들을 도입하였다. 아동들의 수의 이러한 감소의 례증으로서 한개의 로동과정을 든다면 거기에서는 현존하는 기계의 계사기라는 장치를 붙인 결과 매개 기계의 특성에 따라 6명 또는 4명의 반일공이 수행하던 로동이 1명의 소년 (13세이상) 에 의하여 수행될수 있다.…반일제는 계사기의 발명을》 자극하였다.(《공장감독관 보고. 1858년 10월 31일》 (42~43페지))

것은 영국정치경제학이 농업로동자들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술어이다.)은 그들의 로동의 극히 적은 부분에 대하여서만 보수를 받기때문에 기계는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생산을 더 비싸게 한다는것이다.(118) 영국에서는 운하에서 배를 끄는 등등의 일에 때때로 말 대신에 아직도 녀성들을 사용하는데(119) 그것은 말과 기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로동은 수학적으로 주어진 량이지만 그와는 반대로 과잉인구중의 녀성들을 먹여살리는데 필요한 로동은 얼마든지 낮출수 있기때문이다. 바로 이때문에 기계의 나라인 영국에서 다른 나라보다도 더 파렴치하게 너절한 일에 인력을 랑비하고있는것이다.

3. 기계적생산이 로동자에게 미치는 직접적영향

이미 본바와 같이 대공업의 출발점으로 되는것은 로동수단의 혁명이며① 변혁된 로동수단은 공장의 조직된 기계체계내에서 가장 발달된 형태를 취한다. 그러면 이 객관적유기체에 인간재료가 어떻게 합체되는가를 고찰하기전에 이 혁명이 로동자자신에게 미치는 약간의 일반적영향을 고찰하기로 하자.

(a) 자본에 의한 보조로동력의 취득.
녀성로동과 아동로동

기계는 그것이 근육의 힘을 필요없게 만드는 한에 있어

(118) 《기계는…로동 (그가 말하는것은 임금이다.) 이 등귀하기전에는 사용되지 않는 일이 흔히 있다.》 (리카도 《정치경제학 및 조세의 원리》, 479페지)

(119) 《에딘버러사회과학회의의 보고. 1863년 10월》 을 보라.

① 이 책 426페지 및 이하 몇페지를 보라. —편집자

서는 근육의 힘이 없는 또는 육체적발달은 아직 미숙하지만 사지는 비교적 민첩한 로동자를 사용하는 수단으로 된다. 그렇기때문에 녀성로동과 아동로동은 기계의 자본주의적사용의 첫표어였다! 로동과 로동자를 대신하는 이 강력한 수단은 즉시로 남녀로소의 구별없이 로동자가족의 전체 성원을 자본의 직접적지배하에 편입함으로써 임금로동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되였다. 자본가를 위한 강제로동은 비단 아동의 유희시간뿐만아니라 관습적인 한계내에서 가족자체의 필요를 위한 가정내의 자유로동시간까지도 박탈하였다.(120)

로동력의 가치는 개별적성인로동자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로동시간뿐만아니라 로동자가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로동시간에 의하여서도 규정된다.① 기계는 로동자가족의 전체 성원들을 로동시장에 투입함으로써 남자의 로동력의 가치를 그의 전체 가족성원들에게 분할한다. 그러므로 기계는 남자의 로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킨다. 례컨대 4개의 로동력으로 나누어진 가족을 구입하려면 종전에 가장의 한 로동력을 구입할 때보다 아마도 비용이 더 들것이지만 그대신 1로동일이 4로동일로 되며 또 그들의 로동력의 가격은 4로동일의 잉여로동이

---

(120) 미국의 남북전쟁[8]이 야기한 면화공황시에 에드워드 스미스의사는 영국정부에 의하여, 면방직업로동자들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랭카셔, 체셔 등지에 파견되였다. 그의 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공황은 그것이 로동자들을 공장의 환경에서 몰아냈다는 사실은 도외시하더라도 위생상으로 여러가지 다른 리익이 있다. 로동녀성들은 이제는 그들의 어린이들에게 곳프리강장제[329](일종의 아편제)로써 해독을 줄것 없이 그들에게 젖을 먹이기에 필요한 여가를 가지게 되였다. 그들은 료리법을 배울 시간을 얻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료리술은 그들이 아무것도 먹을것이 없을 때에 배웠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자본이 자기증식을 위하여 소비에 필요한 가정로동을 얼마나 박탈하였는가를 알수 있다. 또한 이 공황은 특별한 학교들에서 로동자의 딸들에게 재봉을 배우도록 하는데 리용되였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위하여 방적하는 로동소녀들에게 재봉을 배우도록 하는데 미국의 혁명과 세계공황이 필요한것이다!

① 이 책 198~200페지를 보라. —편집자

1로동일의 잉여로동을 초과하는데 비례하여 저락한다. 한 가족이 생활하기 위하여 이제는 4명이 자본을 위하여 로동을 제공할뿐만아니라 잉여로동도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기계는 처음부터 인간적착취재료 즉 자본의 고유한 착취분야(121)를 확대함과 동시에 착취도도 높인다.

기계는 또 자본관계의 형식적표현인 로동자와 자본가간의 계약을 근본적으로 변혁한다. 상품교환의 기초우에서는 자본가와 로동자가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독립적상품소유자로서 즉 일방은 화폐와 생산수단의 소유자로서, 타방은 로동력의 소유자로서 대립한다는것이 첫전제였다.① 그러나 지금 자본은 미성년자 또는 반성년자를 구매한다. 종전에는 로동자는 형식상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그가 마음대로 하던 자기자신의 로동력을 판매하였다. 이제는 그는 처자를 판매한다. 그는 노예상인이 된다.(122) 아동로동에 대한 수요는 형식상으로도 미국의 신문

---

(121) 《남성로동의 녀성로동에 의한 교체 특히 성인로동의 아동로동에 의한 교체가 강화됨에 따라 로동자의 수가 대단히 증가하였다. 주임금을 6실링 내지 8실링을 받는 13세의 소녀 3명은 주임금 18실링 내지 45실링을 받는 성인 1명을 대신하였다.》(Th. 드 퀸씨 《정치경제학의 론리》, 1844년 런던판, 147페지 주) 레컨대 어린이를 돌보며 그들에게 젖을 먹이는 등등의 약간의 가족적기능을 전혀 없애버릴수는 없으므로 자본에 의하여 압수당한 어머니는 다소간 어떤 대리인을 고용하지 않을수 없다. 레컨대 재봉, 수선 등등 가족의 소비에 필요한 로동은 기성품의 구입으로써 메꾸지 않을수 없다. 그리하여 가정로동의 지출의 감소에 따라 화폐지출이 증가된다. 따라서 로동자가족의 생산비는 증가하며 이에 따라 수입의 증가는 상쇄된다. 게다가 또 생활수단의 리용과 준비에 있어서 절약과 합목적성이 불가능하게 된다. 공인된 정치경제학이 비밀에 붙이고 있는 이 사실들에 관하여는 공장감독관들의 보고와 아동로동조사위원회의 《보고》와 또 특히 《공중위생에 관한 보고》 등에서 풍부한 자료를 찾아볼수 있다.

(122) 영국의 공장들에서의 녀성로동과 아동로동의 제한은 성인남성로동자들이 자본으로부터 전취한것이라는② 이 중대한 사실과는 대조적으로 아동로동조사위원회의 최근의 보고들에서는 아직도 아동매매에 종사하는, 로동하는 부모들의 참으로 혐오스러우며 그야말로 노예상인적인 경향을 볼수 있다. 그러나 그 《보고》들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자본주의적위선자들은 그들자신에 의하여 조성되였으며 영원화되였으며 또 리용되

---

① 이 책 195페지를 보라. 一편집자

② 이 책 340페지를 보라. 一편집자

광고에 잘 나오는바와 같은 흑인노예에 대한 수요를 왕왕 상기시킨다. 례컨대 영국의 한 공장감독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나의 관구의 가장 중요한 한 공업도시에서 발행되는 지방신문지상의 다음과 같은 광고가 나의 주의를 끌었다. 광고에는 이렇게 씌여있다. 13세로 인정될수 있는 년령이상의 소년 12명 내지 20명을 구함. 임금은 주 4실링. 등록처는…》(123)

《13세로 인정될수 있는》이라는 문구는 공장법에 의하여 13세미만의 아동은 6시간만 로동할수 있다는것과 관련이 있다. 년령은 증명자격이 있는 의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공장주는 13세가 되여보이는 소년들을 구하는것이다. 최근 20년간의 영국통계에서 공장주들이 고용한 13세미만의 아동들의 수가 루차 급격히 감소된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공장감독관들자신의 진술에 의하면 대부분 증명자격있는 의사들의 소행에 기인하는데 그들은 자본가들의 착취욕과 부모들의 소상인적요구에 맞도록 아동들의 년령을 고친것이다. 베스날그린이라는 런던의 악명높은 한 지구에서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아침에 공개시장이 열리는데 여기서는 9세이상의 남녀아동들이 런던의 견직공장들에 자신을 임대한다. 《보통조건들은 주 1실링 8펜스(이것은 부모들의것이 된다)와 그리고 나자신의것이 되는 2펜스와 차가 있다.》 계약은 다만 1주일을 기한으로 체결된다. 이 시장이 열릴 때의 광경과 그곳

고있는 이 야수성—다른 경우에는 이것을 그들은 《로동의 자유》라고 부르고있다—을 비난하고있다. 《아동로동은…심지어 아동들이 자기자신의 그날그날의 빵을 버는데도 방조로 되여야 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과도한 고된 일을 견디여낼 힘도 없으며 그들의 장래생활을 지도해줄 교육도 받지 않았으므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짓밟힌 상태에 빠져있다. 유태력사가는 티투스에 의한 예루살렘의 파괴에 관하여 지적할 때 무정한 한 모친이 억제할수 없는 기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자신의 자식을 회생시켰으니 이 도시가 그렇게도 무참히 파괴된것은 괴이한 일이 아니였다고 말하였다.》(《공공경제개론》, 1833년 칼라일판, 66페지)

(123) A. 레드그레이브. 《공장감독관보고. 1858년 10월 31일》, 40~41페지.

의 말씨는 참으로 혐오스럽다.(124) 녀성들이 《빈민구제원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임의의 구매자에게 주 2실링 6펜스로 임대하는》 일이 지금도 영국에서는 실시되고있다.(125) 법으로 금지되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적어도 2,000명에 달하는 소년들이 아직도 자기 부모들에 의하여 산 굴뚝소제 기계로서 (그들을 대신할 유효한 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된다.(126) 기계에 의하여 야기된, 로동력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법률관계에서의 혁명은 전체 거래로 하여금 자유로운 인간들사이의 계약이라는 외관조차 상실케함으로써 그후에 영국의회가 공장사무에 국가적으로 간섭하는 법적리유를 주었다. 공장법이 종래에는 그 구속을 받지 않던 공업부문들에서 아동로동을 6시간으로 제한할 때마다 언제나 공장주들의 다음과 같은 불평이 새롭게 들려온다. 그것은 즉 일부 부모들은 이제는 제한을 받게 된 공업부문에서 아동들을 빼내여 《로동의 자유》가 아직 지배하고있는 즉 13세미만의 아동들이 성인들과 같이 로동하지 않을수 없는 그리하여 그들을 보다 비싸게 팔수 있는 공업부문에 판매한다는 불평이다. 그러나 자본은 타고난 평등파이므로, 다시말하여 자본은 모든 생산분야에서 로동의 착취조건의 평등을 자체의 천부인권으로서 요구하므로 한 공업부문에서의 아동로동의 법적제한은 다른 공업부문에서의 그것의 제한의 원인으로 된다.

우리는 이미 우에서 기계가 처음에는 기계를 기초로 하여 발생하는 공장들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다음에는 나머지 모든 공업부문에서는 간접적으로 아동들과 소년, 소녀들 및

(124)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5차보고》, 1866년 런던판, 81페지, 제31호. 〔제4판 주: 베스날그린의 견직업은 현재 거의 절멸되였다. —F. E.〕

(125)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3차보고》, 1864년 런던판, 53페지, 제15호.

(126)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5차보고》, 22페지, 제137호.

로동녀성들을 자본의 착취하에 내맡겨 그들을 육체적으로 유린한다는것을 지적하였다.①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유년기의 로동자아동들의 사망률이 대단히 높다는 한점만을 말하려 한다. 잉글랜드의 호적관구중 16개 구에서는 1세미만의 아동 100,000명에 대하여 년평균 사망자수가 9,085명(한개 구에서는 불과 7,047명)에 불과한데 24개 구에서는 10,000명이상 11,000명이하이며 39개 구에서는 11,000명이상, 12,000명이하, 48개 구에서는 12,000명이상, 13,000명이하, 22개 구에서는 20,000명이상, 25개 구에서는 21,000명이상, 17개 구에서는 22,000명이상, 11개 구에서는 23,000명이상, 후, 울버햄프톤, 애쉬톤언더라인 및 프레스톤에서는 24,000명이상, 노팅감, 스톡포트 및 브랫포트에서는 25,000명이상, 위스비치에서는 26,001명, 만체스터에서는 26,125명이다.(127) 1861년의 정부의 의료조사에서 증명된바와 같이 이와 같이 사망률이 높은 원인은 지방적조건을 제외하면 주로 모친의 가정외취업과 이로부터 나오는 아동에 대한 등한과 학대 례컨대 부적당한 음식, 영양부족, 아편제의 급여 등등이며 이밖에도 모친이 반천성적으로 자녀를 멀리한 결과 고의적으로 굶기는것과 유독물을 급여하는것 등이 원인으로 되고있다.(128) 이와 반대로 《녀성취업이 가장 적은》 농업지구들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다.》(129) 그런데 1861년의 조사위원회는 북해연안의 약간의

(127) 《공중위생에 관한 제6차보고》, 1864년 런던판, 34페지.

(128) 《그것 (1861년의 조사) 은…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었다. 즉 상술한 정형하에서 모친이 공장에서 로동하는 관계로 아동을 돌보지 않고 등한히 하는 탓으로 아동들은 사망하게 된다. 그런데 모친은 보통 자식들이 사망해도 슬퍼하지 않을뿐만아니라 때로는…지어 자식들이 사망하도록 직접적인 수단을 취할 정도로 자식들에 대한 자연적감정을 상실하고있다.》 (우와 같은 보고)

(129) 우와 같은 보고, 1864년 런던판, 454페지.

① 이 책 297~304페지를 보라. —편집자

순 농업지구들에서 1세미만 아동들의 사망률은 가장 악명높은 공장지구를 거의 따라가고있다는 예상치 않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쥴리언 한터의사에게 이 현상에 대한 실지조사를 위임하였다. 그의 보고는 《공중위생에 관한 제6차보고》에 수록되여있다.(130) 당시까지는 학질과 저습지대에 특유한 기타 질병들이 많은 아동들의 생명을 빼앗아갔다고 추측되였었다. 조사는 정반대의 결론을 보여주었다. 즉

《바로 학질을 소멸한것과 동일한 원인, 다시말하면 겨울에는 습지였으며 여름에는 보잘것없는 목장이였던 토지를 비옥한 곡식밭으로 전화시킨것이 유아들의 비상히 높은 사망률을 낳게 하였다.》(131)

한터의사가 그 지구들에서 의견을 청취한 70명의 개업의사의 의견은 이점에서 《놀랄만큼 일치》하였다. 즉 토지경작에서의 혁명과 더불어 공업제도가 도입되였다.

《소녀 및 소년들과 함께 대를 이루고 로동하는, 결혼한 녀성들은 약간의 돈을 벌기 위하여 대전체를 고용하는 (도급인) 이라고 하는 한사람에 의하여 차지농업가의 지배밑에 넘어가게 된다. 이 대는 왕왕 그들의 촌락에서 수마일이나 떨어진 지방으로 이동하는 수가 있다. 그러므로 아침저녁으로 촌길에서 그들을 만날수 있는데 녀성들은 짧은 스카트와 거기에 맞는 저고리를 입고 장화를 신고 때로는 바지를 입고 있으며 보기에는 대단히 힘세고 건강한듯하나 버릇된 방탕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여있으며 또 이런 활동적이며 독립적인 생활방식에 대한 그들의 애착이 집에서 시들고있는 그들의 자녀들에 미치는 유해로운 결과에 대하여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다.》(132)

공장지구들의 모든 현상들이 여기에서 재현되고있으며 은폐된 유아살해와 아동들에 대한 아편제급여의 현상은 더욱

---

(130) 《공중위생에 관한 제6차보고》, 1864년 런던판, 454~462페지. 헨리 쥴리언 한터의사의 《잉글랜드의 일부 농촌지구들에서의 과도한 유아사망에 관한 보고》.

(131) 우와 같은 보고, 35, 455~456페지.

(132) 우와 같은 보고, 456페지.

심하게 재현되고있다.(133)

영국추밀원[200]의 의무관이며 《공중위생》에 관한 보고의 책임편집자인 싸이먼의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나는 그것에 의하여 조성된 해악을 잘 알고있으므로 성인녀성들이 모든 공업에 사용되는것을 내가 혐오의 감정을 가지고 보게 되는것은 어찌할수 없는 일이다.》(134)

공장감독관 R. 베이커는 한 공식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부르짖고있다.

《만약 가족을 가지고있는 모든 결혼한 녀성들이 어떠한 공장에서든지 로동하는것을 금지한다면 이는 사실상 영국의 공업지구들을 위하여 다행일것이다.》(135)

녀성로동과 아동로동에 대한 자본주의적착취로부터 생기는 정신적타락은 F. 엥겔스의 저작 《영국로동계급의 형편》[161]에서와 기타 저술가들에 의하여 남김없이 서술되였으므로 나는 여기에서 다만 그것을 지적하는데 그치려 한다. 그런데 미성년자들을 잉여가치생산의 단순한 기계로 전화시킴으로써 인위적으로 조성된 지적황폐는 정신의 발전능력과 정신의 자연적비옥도자체를 파멸시키지 않고 그것을 휴경상태에 두는 자연적무지와는 완전히 구별되는데 이러한 지적황폐는 결국 지어는 영국의회로 하여금 공장법의 적용을 받는 전체 공업들에서 초등교육을 14세미만의 아동들을 《생산적》으로 사

---

(133) 영국에서는 공장지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업지구들에서도 성인남녀로동자들의 아편소비량이 날마다 증가하고있다. 《아편제의 판매를 촉진하는것은…일부 기업심있는 도매상인들의 큰 목적이다. 약장사들은 아편제를 가장 잘 팔리는 상품으로 간주하고있다.》(《공중위생에 관한 제6차보고》, 1864년 런던판, 459페지) 아편제를 먹은 유아들은 《주름살이 잡혀서 꼬마로인같거나 여위여서 원숭이와 같이 보인다》.(《공중위생에 관한 제6차보고》, 460페지) 여기서 인도와 중국이 어떻게 영국에 보복하고있는가를 보게 된다.

(134) 우와 같은 보고, 37페지.

(135) 《공장감독관보고. 1862년 10월 31일》, 59페지. 이 공장감독관은 전에는 의사였다.

용하는 법정조건으로 선포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자본주의적생산의 본성은 공장법의 이른바 교육조항을 소홀히 작성한 점에서도, 행정적기구가 없기때문에 이 의무교육이 대부분 의연히 유명무실한것이라는 점에서도, 이 교육법에 대한 공장주들의 반대자체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그들의 간계, 술책들에서도 극히 뚜렷이 드러나고있다.

《오직 립법기관이 비난을 받아야 한다. 왜냐 하면 립법기관은 아동교육을 표면상으로는 관심하는체하면서 이 구두상의 목적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하나도 포함하지 않은 기만적법률을 발포하였기때문이다. 이 법률은 아동들을 매일 일정한 시간 (3시간) 학교라고 불리우는 네 벽안에 가두어두어야 할것과 아동들의 고용주는 이에 관하여 매주 남교원 또는 녀교원으로서 자기 이름을 서명하는 사람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는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규정하지 않고있다.》(136)

1844년의 개정공장법이 발포되기까지는 남교원이나 녀교원이 十자로써 서명을 대신한 수업증명서가 드물지 않았는데 그것은 교원자신이 글을 쓸줄 몰랐기때문이다.

《이러한 수업증명서를 발부하는 한 학교를 방문하였을 때 나는 교원의 무지에 너무나 놀라서 그에게 물었다. 〈저, 실례이지만 당신은 글을 아십니까?〉 나의 물음에 대하여 그는 〈네, 조금은〉 이라고 대답하고 변명을 하려는듯이 〈하여튼 나는 나의 학생들보다야 낫지요.〉 하고 한마디 덧붙였다.》

1844년의 법률이 작성되고있을 때 공장감독관들은 학교라고 하는 곳들—여기에서 발부하는 증명서를 그들은 법률상 완전히 유효한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였다—의 수치스러운 상태를 고발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달성한것은 다음과 같은것들뿐이였다. 즉 1844년 이후는

《수업증명서의 수자는 교원이 직접 기입하여야 하며 또한 교원은 자

---

(136) 레너드 호너 《공장감독관보고. 1857년, 4월 30일》, 17페지.

기 성명을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137)

스코틀랜드의 공장감독관 죤 킨케이드경은 이와 비슷한 공무상 경험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있다.

《우리가 방문한 첫 학교는 엔 킬린이라는 부인이 경영하고있었다. 내가 그에게 이름의 철자를 물었을 때 그는 당장에 실수를 하였다. 즉 그는 철자를 C로써 시작하였으나 즉시에 시정하면서 자기 이름은 K로써 시작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수업증명서의 그의 서명을 보고 나는 그가 여러가지로 철자를 다르게 쓰고있는것을 알았으며 한편으로는 그의 필적으로 보아 그가 가르칠 능력이 없다는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자신도 자기가 명부를 작성할줄 모른다는것을 인정하였다.…또 다른 한 학교에서는 교실이 길이가 15푸트, 너비가 10푸트였으며 이 방에 75명의 아동이 있었는데 그들은 무엇인지 알수도 없는것을 지껄이고있었다.》(138) 《그러나 아동들이 수업증명서는 얻으나 교육은 받지 못하는것은 상술한 비참한 굴에만 있는 일이 아니다. 유능한 교원이 있는 많은 학교들에서도 그의 노력이 거의 수포로 돌아가는데 그것은 세살난 어린애로부터 각층 년령의 아동들이 혼잡을 이루고있기 때문이다. 교원의 생계도 극히 비참하다. 그의 생계는 한 장소에 집어넣을수 있는 최대한의 아동들에게서 받는 푼전에 달려있다. 게다가 학교비품들은 극히 빈약하며 서적과 기타 교재도 부족하며 숨막힐듯한 구역질나는 공기는 불쌍한 아동들자신을 더 맥빠지게 한다. 내가 가본 많은 학교들에서는 전체 아동들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었다. 그래도 이것을 수업이라고 증명하고있으며 공식통계보고에는 이러한 아동들이 교육을 받은것으로 되여있다.》(139)

스코틀랜드에서는 공장주들이 수업의무가 있는 아동들을 될수 있는대로 배제하려 한다.

《이것은 교육조항들에 대한 공장주들의 대단한 증오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140)

---

(137) 레너드 호너 《공장감독관보고. 1855년, 10월 31일》, 18~19페지.
(138) 죤 킨케이드경 《공장감독관보고. 1858년 10월 31일》, 31~32페지.
(139) 레너드 호너 《공장감독관보고. 1857년, 4월 30일》, 17~18페지.
(140) 죤 킨케이드경 《공장감독관보고. 1856년 10월 31일》, 66페지.

이것은 독특한 공장법의 취체를 받는 면직물 등 날염공장에서 놀랄만큼 기괴하게 나타난다.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아동들은 그러한 날염공장에 고용되기전에 그가 고용되는 첫날 이전의 6개월간에 적어도 30일간 그리고 150시간이상을 수업하지 않으면 안된다. 날염공장에서의 그의 고용이 계속되는 동안 그는 매 6개월마다 역시 30일간 그리고 150시간 수업하지 않으면 안된다.…수업은 아침 8시와 오후 6시사이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루에 $2\frac{1}{2}$시간이하의 또는 5시간이상의 수업은 150시간의 일부로 계산되여서는 안된다. 보통의 사정하에서 아동들은 30일간 오전 오후로 매일 5시간씩 수업하고 그 30일이 경과하여 150시간이라는 법정총시간수에 달하면 즉 그들자신의 말대로 하면 수업증이 다되였을 때 그들은 날염공장에 돌아와서 새 수업시간이 시작될 때가지 여기에 머물러 6개월간 일하며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수업증이 또다시 다될 때까지 거기에 머문다.…규정된 150시간을 수업한 다수 아동들이 6개월간 날염공장에서의 일을 마치고 학교에 돌아오면 처음에 수업을 시작하던 때와 꼭같은 상태에 있다.…그들이 그전의 수업에서 배운것을 죄다 잊어버리게 되는것은 물론이다. 다른 날염공장들에서는 수업이 전적으로 공장의 상업상 요구에 의존하고있다. 소요시간수는 매 6개월에 매번 3시간 내지 5시간씩 아마도 6개월에 걸쳐 틈틈이 수업시킴으로써 채워진다. 례컨대 하루는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수업하고 다음날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수업하며 그리고 아동은 다시 며칠동안 보이지 않다가 돌연히 다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에 나타난다. 그리고 3, 4일간 계속하여 또는 1주일이나 등교하다가 그다음에는 다시 3주일간이나 또는 온 1개월간이나 자취를 감추며 그다음에는 그의 고용주가 그 아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날 몇시간 나오며 이와 같이 하여 아동은 150시간이 다 되였다고 할 때까지 학교에서 공장으로, 공장에서 학교로 밀리우며 시달리게 된다.》 (141)

---

(141) A. 레드그레이브 《공장감독관보고. 1857년, 10월 31일》, 41~43페지. 본래의 공장법(본문의 맨 마지막에 언급한 날염공장법이 아니다.)이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되고있는 영국의 공업부문들에서는 근년에 와서 교육조항들에 대한 장애가 어느 정도 극복되게 되였다. 공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장들에서는 조사위원 화이트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있는 유리공장주 J. 게디스의 견해가 아직도 매우 지배적이다. 《내가 목

기계는 드디여 압도적인 다수의 아동과 녀성들을 결합된 로동인원에 첨가함으로써 성인남성로동자가 공장제수공업에서 자본의 전제를 반대하여 진행하고있던 반항을 좌절시킨다.(142)

(b) 로동일의 연장

기계가 로동생산성을 제고하는 즉 상품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을 단축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라면 자본의 담당자로서의 기계는 무엇보다도 기계가 직접 정복한 공업에서 로동일을 모든 자연적한계를 넘어서 연장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된다. 기계는 한편으로는 자본으로 하여금 자체의 이러한 부단한 경향을 임의로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새로운 조건들을 창조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의 로동에 대한 자본의 탐욕을 격화하는 새로운 동기를 창조한다.

우선 기계에서는 로동수단의 운동과 활동이 로동자로부터 독립하게 된다. 로동수단 그 자체는 만약 그것이 자체의 조수인 인간의 일정한 자연적제한 즉 인간의 육체적허약과 그 자의에 부닥치지 않는다면 부단히 생산을 계속하게 될 공업적인 영구운동기구로 된다. 그러므로 로동수단은 자본으로서는—그리고 자본으로서는 자동장치는 자본가에게서 의식과

격한바에는 최근년간에 로동계급의 일부가 받고있는 보다 많은 교육은 유해하다. 그것은 로동자들을 너무 독립적으로 만들기때문에 위험하다.》(《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4차보고》, 1865년 런던판, 253페지)

(142) 《공장주 E. 씨가 나에게 말한바에 의하면 그는 자기의 력직기에 오로지 녀성들만을 사용하고있다. 그는 결혼한 녀성 특히 집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녀성들을 환영한다. 그들은 결혼하지 않은 녀성들보다 훨씬 더 주의깊고 온순하며 또 필요한 생활수단을 얻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 바치지 않을수 없다. 이리하여 미덕이, 녀성에게 특유한 미덕이 그들의 화근으로 된다. 이리하여 그들의 본성중의 덕성과 온순한 모든것이 그들을 예속시키는 수단과 그들의 고통의 근원으로 된다.》(《10시간 공장법안. 3월 15일의 애쉴리경의 연설》, 1844년 런던판, 20페지.)

의지를 획득한다—반항적이기는 하나 신축성있는 인간의 자연적제한을 최소한의 저항으로 누르려는 충동에 의하여 활기를 띤다.(143) 그뿐만아니라 이 저항은 또 기계에 의한 로동이 외관상으로 용이하다는 사정과 녀성과 아동들이 비교적 잘 순종한다는 사정에 의하여 감소된다.(144)

이미 본바와 같이 기계의 생산성은 기계로부터 제품에 이전되는 가치의 구성부분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기계가 기능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계에 의하여 첨가되는 가치가 분배되는 생산물량은 더욱 많아지며 그리하여 기계가 개개의 상품에 첨가하는 가치부분은 더욱 적어진다. 그러나 기계의 활동적인 생존기간은 분명히 로동일의 길이 즉 매일의 로동과정의 계속시간에 로동과정이 반복되는 일수를 승한것에 의하여 규정된다.

기계의 마멸은 결코 그 리용시간에 정확히 수학적으로 일치되는것은 아니다. 또 그렇게 일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7\frac{1}{2}$년동안 매일 16시간씩 사용되는 기계는 15년동안 매일 8

---

(143) 《비싼 기계가 보편적으로 도입된이래 인간의 천성은 그의 평균적힘을 훨씬 넘는 로동을 강요당하고있다.》 (로버트 오엔 《산업제도의 영향의 고찰》, 1817년 런던 제2판 (16페지))

(144) 사물의 최초의 경험적현상형태를 그것의 원인으로 보기를 즐겨하는 영국인들은 자본이 공장제도의 초기에 빈민구제원과 고아원에서 수행한 아동들에 대한 대대적인 헤로데스적략탈[330]—이것에 의하여 자본은 전혀 의사를 갖지 않은 인간재료를 삼켜버렸다—을 왕왕 공장에서의 장시간로동의 원인이라고 들고있다. 레컨대 자신이 영국의 공장주인 필덴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장시간로동은 국내 각지에서 많은 무의무탁한 아동들이 공급됨으로써 고용주들이 로동자들에 의존하지 않게 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초래되였다는것과 고용주들이 이와 같이 하여 획득한 불쌍한 아동들의 도움으로 장시간로동을 일단 관습으로 만든 다음에는 그것을 이웃사람들에게 보다 용이하게 강요할수 있었다는것은 명백하다.》 (J. 필덴 《공장제도의 저주》, 1836년 런던판, 11페지) 녀성로동에 관하여서는 공장감독관 쏜더즈가 1844년의 공장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녀성로동자들중에는 다만 수일을 제외하고는 수주일간을 계속하여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2시간도 못되는 식사시간은 있으나—로동하는 부인들이 있으며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매주 5일간은 24시간중 출퇴근과 취침을 위하여 6시간밖에 남지 않는다.》

시간밖에 사용되지 않는 동일한 기계와 동일한 크기의 생산기간을 포괄하며 또 동일한 가치를 총생산물에 첨가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는 후자의 경우보다 기계의 가치가 2배나 빨리 재생산될것이며 또 자본가는 이 기계에 의하여 후자의 경우에 15년간 흡수하는것과 같은 량의 잉여로동을 $7\frac{1}{2}$년동안에 흡수할것이다.

기계의 물질적마멸은 이중적이다. 하나는 개개의 화폐가 류통에 의하여 마멸되듯이 기계를 사용하는데로부터 생기며 또 하나는 쓰지 않는 칼이 칼집에서 녹쓸듯이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데로부터 생긴다. 이 후자는 자연력에 의한 기계의 마멸이다. 첫째 종류의 마멸은 많거나 적거나 기계의 사용에 정비례하며 둘째 종류의 마멸은 어느 정도까지 기계의 사용에 반비례한다.(145)

그러나 기계는 물질적마멸외에 이른바 도덕적마멸도 받는다. 같은 구조의 기계가 보다 값싸게 재생산될수 있거나 또는 이 기계와 함께 더 우수한 기계가 경쟁자로서 나타나게 되면 그에 따라 기계는 교환가치를 상실한다.(146) 이 두 경우에 기계가 아무리 아직 새것이며 생명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치는 이미 사실상 그 기계자체에 대상화된 로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그 기계자체의 재생산 또는 보다 우수한 기계의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로동시간에 의하여

---

(145) 《사용하지 않는데로부터 금속성기구의 미묘한 운동부분이 손상을 입게 된다.》 (유어 《공장철학》, 281페지)

(146) 이미 앞에서① 언급한 《만체스터의 방적업자》 (《타임스》, 1862년 11월 26일부)는 기계의 비용에 다음과 같은것을 넣고있다. 《그것 (즉 《기계의 마멸을 위한 공제》) 은 또 기계가 아주 못쓰게 닳아빠지기전에 새롭고 보다 우수한 구조를 가진 다른 기계와 교체되는 결과 부단히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것이다.》

---

① 이 책 240~241페지를 보라. —편집자

규정된다. 그러므로 그 기계는 많게나 적게나 가치가 떨어진다. 기계의 총가치가 재생산되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도덕적마멸의 위험은 적어지며 또 로동일이 길면 길수록 재생산되는 기간은 짧아진다. 기계가 어떤 생산부문에 처음으로 도입되면 그것을 보다 값싸게 재생산(147)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과 여러가지 개량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데 이러한 개량은 기계의 개개의 부분들 또는 장치들뿐만아니라 전체 구조를 포괄한다. 그러므로 기계가 생존하는 초기에 로동일을 연장하려는 이 특수한 동기는 가장 강하게 작용한다.(148)

기타의 조건이 변함없고 또 로동일이 일정한 경우 2배의 수의 로동자를 착취하기 위하여서는 기계와 건물에 투하되는 불변자본부분과 원료, 보조재료 등등에 투하되는 불변자본부분도 2배로 증가시켜야 한다. 기계와 건물에 투하된 자본부분이 변함이 없어도 로동일의 연장에 따라 생산규모는 확대된다.(149) 이로 말미암아 잉여가치가 증가될뿐만아니라 잉여가치의 착취에 필요한 지출이 감소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다른 경우에도 로동일이 연장되면 언제나 일정한 정도로 일어나

---

(147) 《새로 발명된 기계의 첫 한개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둘째것을 만드는데 드는것보다 5배나 많다고 대체로 계산되고있다.》 (배비지 《기계와 공장의 절약에 관하여》, 211~212페지)

(148) 《수년래 그물천제조에서는 중요한 수많은 개량이 실시된 결과 최초의 원가가 1,200파운드인 잘 보관된 기계가 수년후에는 60파운드로 판매되였다.…개량이 이와 같이 급속하게 진행된 결과 기계들이 미완성인채 기계제조업자의 수중에 남게 되였는데 그것은 기계가 보다 성과적인 발명들에 의하여 이미 낡아버렸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물천직조업자들은 최초의 로동시간인 8시간을 2교대 24시간으로 연장하였다.(우와 같은 책, 233페지)

(149) 《만약 건물과 기계에 대한 추가적지출을 하지 않고 원료의 추가량이 가공될 수 있다면…시장의 간만과 그리고 수요가 부단히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조건에서 공장주가 고정자본을 증대시키지 않고 추가적류동자본을 사용할수 있는 기회가 부단히 나타나리라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R. 토런즈 《임금과 련합에 관한 론술》, 1834년 런던판, 64페지)

지만 그러나 이 경우에는 보다 결정적인 중요성을 띠게 된다. 왜냐 하면 로동수단으로 전화되는 자본부분이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더 중요하기때문이다.(150) 즉 기계적생산의 발전은 자본중 부단히 증대하는 한 구성부분을 자본이 한편으로는 가치증식을 계속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산로동과의 접촉을 중단하자마자 즉시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에 구속되게 된다. 영국의 면방직업의 거두인 애쉬워스씨는 내쏘우 W. 씨니어교수를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있다.

《만약 한 농부가 그의 삽을 내버려둔다면 그는 그동안에 18펜스의 자본을 쓸모없이 만들것이다. 만약 우리의 사람들 (즉 공장로동자들) 중의 한사람이 공장을 떠난다면 그는 100,000파운드[331]나 든 자본을 쓸모없이 만들것이다.》(151)

생각해보라! 100,000파운드나 되는 자본을 비록 일순간이나마 《쓸모없이》 만드는것이다! 만약 우리 사람들중 한 사람이라도 아무때나 공장을 떠난다면 그것은 실로 일대 사변이다! 씨니어가 애쉬워스의 가르침을 받아 잘 알고있는바와 같이 기계의 규모의 부단한 확대는 부단히 증대하는 로동일의 연장을 《바람직한》 것으로 만든다.(152)

기계가 상대적잉여가치를 생산하는것은 기계가 로동력의

---

(150) 본문에서 언급한 사정은 여기에서 다만 완전을 기하기 위하여 언급한것이다. 그것은 리윤률 즉 선대총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률은 제3권[180]에서 비로소 취급할것이기때문이다.

(151) 씨니어 《공장법에 관한 편지》, 1837년 런던판, 14페지.

(152) 《류동자본에 비한 고정자본의 비률이 큰것은…장시간로동을 바람직한것으로 만든다.》 기계 등등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로동시간연장에 대한 동기가 증대하는데 그것은 고정자본의 큰 비률을 유리한것으로 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기때문이다.》 (씨니어 《공장법에 관한 편지》, 1837년 런던판, 11~14페지) 《한 공장이 그 로동시간이 길든짧든간에 불변적인 각종 지출들 례컨대 건물임대료, 지방세와 국세, 화재보험료, 각종 고정로동자들의 로임, 기계의 마멸과 관련한 비용 및 기타 일련의 지출이 있게 되는데 리윤에 대한 이러한 지출의 비률은 생산규모가 증대하면 할수록 감소하게 된다.》 (《공장감독관보고. 1862년 10월 31일》, 19페지)

가치를 직접 저락시키고 또 로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상품을 값싸게 하여 간접적으로 로동력을 값싸게 하기때문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기계가 처음에 여기저기서 채용될 때에는 기계소유자가 사용하는 로동을 몇배로 강화된 로동으로 전화시키는 한편 기계생산물의 사회적가치를 개별적가치이상으로 제고시켜 자본가로 하여금 일생산물의 보다 적은 가치부분으로써 로동력의 일가치를 보상할수 있게 하기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기계적생산이 아직 독점으로 되여있는 이 과도기에는 리윤이 특히 높으며 자본가는 이 《첫 사랑의 시기》[332]를 될수 있는대로 로동일을 연장함으로써 철저히 리용하려고 한다. 많은 리윤은 더 많은 리윤에 대한 탐욕을 불러일으킨다.

기계가 동일한 생산부문에 보급됨에 따라 기계생산물의 사회적가치는 그 개별적가치로 저하하며 그리하여 잉여가치는 자본가가 기계로 교체한 로동력에 의하여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본가가 그 기계에 붙여서 일하게 하는 로동력에서 발생한다는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한다. 잉여가치는 자본의 가변부분에서만 발생하며 또 이미 본바와 같이 잉여가치량은 두개의 요인 즉 잉여가치률과 그리고 동시에 고용되는 로동자수에 의하여 규정된다.① 로동일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에는 잉여가치률은 로동일이 필요로동과 잉여로동으로 분할되는 비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리고 동시에 고용되는 로동자수는 가변자본부분의 불변자본부분에 대한 비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면 기계적생산이 로동생산력의 제고에 의하여 필요로동을 희생으로 하여 잉여로동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기계적생산은 그 자본이 고용하는 로동자수를 감소시킴으로써만 이러한 결과를 얻는다는것은 명백하다. 기계적생산

① 이 책 351~355페지를 보라. —편집자

은 자본중 종전에 가변적이였던 일부분 즉 산로동력으로 전화되였던 일부분을 기계로 즉 잉여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불변자본으로 전화한다. 그러나 례컨대 2명의 로동자에게서는 24명의 로동자에게서 짜내는만큼한 잉여가치를 짜낼수는 없다. 24명의 로동자는 그 매개인이 매 12시간의 로동에서 1시간의 잉여로동을 제공하기만 하여도 그들은 도합 24시간의 잉여로동을 제공하는데 한편 2명의 로동자의 총로동은 24시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잉여가치의 생산을 위한 기계사용에는 하나의 내재적모순이 있는데 그것은 기계가 일정한 량의 자본에 의하여 제공되는 잉여가치의 두 요인중 한개의 요인인 잉여가치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서는 다른 요인인 로동자수를 감소시키는수밖에 없다는것때문이다. 이 내재적모순은 기계가 한 공업부문에 보급됨에 따라 기계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의 가치가 같은 종류의 모든 상품의 규제적인 사회적가치로 되기만 하면 곧 나타나는것이다. 그리고 자본이 의식하지 못하는 이 모순은(153) 또다시 자본으로 하여금 착취당하는 로동자수의 상대적감소를 상대적잉여로동의 증가에 의해서뿐만아니라 절대적잉여로동의 증가에 의해서도 보상하기 위하여 로동일을 극도로 연장하게 한다.

그리하여 기계의 자본주의적사용은 한편으로 로동일의 무제한한 연장에 대한 강력한 새 동기를 조성하고 또 로동방식자체와 사회적로동체의 성격을 변혁하여 이러한 경향에 대한 저항을 좌절시키며 또 다른 한편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로동계급중 이전에 자본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던 층들을 자본

---

(153) 어째서 이러한 내재적모순이 개별적자본가에게 그리고 또 자본가적관념에 사로잡힌 정치경제학자들에게 의식되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제3권의 첫 몇편에서 보게 될 것이다.

에 복종시킴으로써 또 부분적으로는 기계에 의하여 구축된 로동자들을 유리시킴으로써 자본이 지시하는 법칙에 복종하지 않을수 없는 과잉로동인구(154)를 산생한다. 기계는 로동일의 온갖 도덕적 및 자연적 제한을 없애버린다는 근대산업사에서의 주목할만한 현상이 여기에서 나온다. 또 로동시간의 단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로동자와 그의 가족의 모든 생활시간을 자본의 가치증식에 리용할수 있는 로동시간으로 전화시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된다는 경제적 역설이 이로부터 나온다. 고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환상하였다.

《만약 다이달로스의 작품이 스스로 움직이고 또는 헤파이스토스의 삼각대가 저절로 신성한 일을 한것처럼 매개 도구가 명령에 의하여서나 또는 지어 자기의 예상에 의하여 그것이 해야 할 일을 수행할수 있다면 또 만약 북이 저절로 천을 짠다면 장주에게 조수가 필요없을것이며 주인에게 노예가 필요하지 않을것이다.》(155)

찌쩨로시대의 희랍시인 안티파트로스는 곡물을 찧는 수차 즉 모든 생산적기계의 최초형태인 이 수차의 발명을 녀노예의 해방자이며 황금시대의 재건자라고 찬송하였다!(156)

---

(154) 리카도의 위대한 공적의 하나는 그가 기계를 다만 상품의 생산수단으로만 본것이 아니라 《과잉인구》의 생산수단으로도 보았다는 점에 있다.

(155) F. 비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1842년 베를린판, 제2권, 408페지.

(156) 나는 다음에 이 시의 슈룹베르그역을 인용하려 하는데 그것은 이 시가 앞에서 인용한 분업에 관한 서술과① 꼭 마찬가지로 고대의 견해와 현대의 견해와의 대립을 특징짓고있기때문이다.

《방아찧는 아가씨여, 일손을 놓고 고요히 잠들라
새벽을 알리는 수탉이야 울든말든!
녀신이 처녀의 일을 녀정들에게 맡기니
녀정들은 몸도 가볍게 바퀴우에 뛰여오르네.
축은 흔들리고 바퀴는 돌아가며
무거운 망돌도 빙빙 돌아가네.
우리도 조상들처럼 살아가자

① 이 책 418~426페지를 보라. —편집자

《이교도들이여! 오, 이 이교도들이여!》 총명한 바스띠아와 그 이전의 더 총명한 머칼러크가 발견한바와 같이 그들은 정치경제학과 기독교에 관하여서는 아무것도 몰랐던것이다. 레컨대 그들은 기계가 로동일을 연장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는것을 몰랐다. 아마도 그들은 한사람의 노예상태를 다른 사람의 완전한 인간적발전을 위한 수단이라고 정당화하였을것이다. 그러나 거칠고 교양이 부족한 일부 벼락부자들을 《우수한 방적업자》, 《대규모순대제조업자》, 《유력한 구두약장사》로 만들기 위하여 대중의 노예화를 설교하기에는 그들에게 특유한 기독교적감각이 없었다.

(c) 로동의 강화

자본의 수중에 있는 기계가 조성하는 로동일의 무제한한 연장은 우리가 이미 본바와 같이 나중에는 그 생명의 근원이 위협을 당하게 된 사회의 반작용을 초래하며 그리하여 법적으로 제한된 표준로동일을 초래한다.① 이 표준로동일에 기초하여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현상 즉 로동의 강화라는 현상이 결정적중요성을 가지게 된다.② 절대적잉여가치의 분석에서는 우선 로동의 외연적크기가 문제로 되였으며 로동의 강도는 주어진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이제 우리는 외연적크기가 어떻게 내포적크기 또는 강도로 전환하는가를 고찰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계가 진보하고 기계로동자라는 특수한 계급의 경험이

일을 그만두고 녀신이 보내준 선물을 즐기면서》
(《희랍시선》, 크리스티안 슈툽베르그백작 역, 1782년 함부르그판, (제312페지))

① 이 책 345페지를 보라. 一편집자
② 이 책 395페지를 보라. 一편집자

축적됨에 따라 로동의 속도, 따라서 로동의 강도가 자연발생적으로 증대한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례컨대 영국에서는 반세기동안에 로동일의 연장이 공장로동의 강도의 증대와 병행하여 진행되고있다. 그러나 일시적인 발작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규칙적으로 균등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로동에 있어서는 명백히 로동일의 연장과 로동의 강도가 서로 배제하며 그리하여 로동일의 연장은 오직 로동강도의 저하와 량립하며 또 반대로 로동강도의 제고는 오직 로동일의 단축과 량립하는 하나의 교차점이 나타날것이다. 점차 증대하는 로동계급의 반항이 국가로 하여금 로동시간을 강제적으로 단축하고 우선 본래의 공장에서 표준로동일을 규정하지 않을수 없게 하자 즉 로동일의 연장에 의한 잉여가치의 생산의 증가가 단연 불가능하게 된 그 순간부터 자본은 전력을 다하여 또 완전히 의식적으로 기계체계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상대적잉여가치를 생산하는데 몰두하였다. 그와 동시에 상대적잉여가치의 성격에 변화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상대적잉여가치의 생산방법은 로동생산력의 제고에 의하여 로동자가 동일한 로동지출로써 동일한 시간내에 더 많이 생산할수 있게 하는데 있다. 동일한 로동시간은 총생산물에 여전히 동일한 가치를 첨가한다. 그러나 물론 변함없는 이 교환가치는 이제는 보다 많은 사용가치로 표현되며 따라서 개개의 상품의 가치는 저하한다. 그러나 생산력의 발전과 생산조건의 절약에 큰 자극을 주는 강제적인 로동일의 단축이, 동시에 또 같은 시간내의 로동지출의 증대, 보다 큰 로동력의 긴장, 로동시간의 간격의 조밀한 충전 즉 로동의 응축을 단축된 로동일의 범위내에서만 달성될수 있는 정도까지 로동자들에게 강요하게 되면 사태는 달라진다. 주어진 시간내에 보다 많은 로동이 압축된것은 이제는 실제대로

즉 보다 많은 로동량으로서 계산된다. 《외연적크기》로서의 로동시간의 척도외에 이제는 로동시간의 밀도의 척도가 나타난다.(157) 10시간로동일중의 밀도가 보다 큰 1시간에는 이제는 12시간로동일중의 밀도가 보다 작은 1시간과 동일한 로동 또는 그보다 더 많은 로동 즉 지출된 로동력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밀도가 보다 큰 1시간의 생산물은 밀도가 보다 작은 $1\frac{1}{5}$ 시간의 생산물과 동일한 또는 그보다 많은 가치를 갖는다. 로동생산력의 증대에 의한 상대적잉여가치의 증대를 도외시하더라도 이제는 례컨대 $6\frac{2}{3}$시간의 필요로동에 대한 $3\frac{1}{3}$시간의 잉여로동은 종전에 8시간의 필요로동에 대한 4시간의 잉여로동이 제공하던것과 동일한 가치량을 자본가에게 제공한다.

그러면 로동이 어떻게 강화되는가?

로동일단축의 첫효과는 로동력의 작용능력이 로동력의 그 작용시간에 반비례한다는 자명한 법칙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어떤 한계내에서는 힘발휘의 지속에서 잃는 손실은 힘발휘정도에 의하여 보상된다. 그런데 로동자가 현실적으로 보다 많은 로동력을 지출하는것을 자본은 지불방법에 의하여 보장한다.(158) 기계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거나 또는 다만 미미한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공장제수공업 례컨대 도기제조업에서는 공장법의 실시에 의하여 로동일의 단순한 단축이 로동의 규

---

(157) 물론 생산부문이 다르면 일반적으로 로동강도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이미 A. 스미스가 말한바와 같이 부분적으로는 각종 로동에 고유한 부차적사정들에 의하여 상쇄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러한 차이가 가치척도로서의 로동시간에 영향을 주는것은 내포적크기와 외연적크기가 동일한 로동량의 대립적이며 호상배재적인 표현인 한에 있어서뿐이다.

(158) 특히 도급제임금에 의하여. 도급제임금의 형태는 제6편에서 고찰할것이다.①

① 이 책 633~639페지를 보라. 一편집자

칙성, 균등성, 질서, 계속성 및 효능을 놀랄만큼 높인다는것이 증명되였다.(159) 그러나 본래의 공장에서도 이러한 효과를 거둘수 있겠는가 하는것은 의문이였는데 그것은 여기에서는 로동자가 기계의 계속적이며 균등적인 운동에 종속됨으로써 오래전부터 극히 엄격한 규률이 수립되여있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1844년에 로동일을 12시간이하로 단축시킬 문제가 토의되였을 때 공장주들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그들의 감독들은 각 작업장에서 로동자들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감시하였다.》느니 《로동자들의 경각성과 주의력의 정도를 더 높일 여지는 거의 없다.》느니 기계의 속도 등등과 같은 기타의 모든 조건이 변함없다고 전제하면 《잘 경영되고있는 공장들에서 로동자들의 주의력의 제고 등등에 의하여 무엇이든 현저한 성과를 기대하는것은 무의미할것이다.》(160)느니 뭐니 하였다.

이 주장은 실험들에 의하여 부정되였다. R. 가드너씨는 1844년 4월 20일이래 프레스톤에 있는 그의 두개의 대공장에서 하루에 12시간로동을 그만두고 11시간로동을 실시하였다. 약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같은 량의 생산물이 같은 액의 비용으로 얻어졌으며 또 전체 로동자들은 종전에 12시간에 벌던것과 동액의 로임을 11시간에 벌었다.》(161)

나는 여기에서 방적실과 소면실에서의 실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왜냐 하면 이런 실험은 기계속도의 증가(2%의)와 결부되여있기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극히 다종다양한, 가볍고 무늬있는 신류행품까지도 짜고있던 직포실에서는 객관적생산조건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 결과는 다음

---

(159) 《공장감독관보고. 1865년 10월 31일》 을 보라.

(160) 《공장감독관보고. 1844년과 그리고 1845년 4월 30일까지의 한분기간에 걸친 보고》, 20~21페지.

(161) 우와 같은 보고, 19페지. 도급제임금은 그대로 있었으므로 주임금액은 생산량에 의하여 결정되였다.

과 같았다.

《1844년 1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12시간로동일에서 매개 로동자의 주평균임금은 10실링 $1\frac{1}{2}$펜스였으며 1844년 4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는 11시간로동일에서 주평균임금이 10실링 $3\frac{1}{2}$펜스였다.》(162)

이 경우에 11시간에 생산한것이 종전에 12시간에 생산하던것보다 더 많은데 이것은 전적으로 로동자들이 꾸준히 보다 큰 힘을 지출하고 시간을 절약한데서 이루어진것이다. 로동자들은 같은 임금을 받았으며 또 1시간의 자유시간을 얻었는데 자본가는 종전과 동일한 량의 생산물을 얻었으며 또 1시간분의 석탄, 가스 등의 지출을 절약하였다. 호록스-잭손 회사의 공장들에서도 류사한 실험이 실시되여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다.(163)

로동일의 단축은 처음에는 로동을 응축시키기 위한 주체적조건 즉 주어진 시간에 보다 많은 힘을 류동시킬수 있는 로동자의 능력을 창조하는데 이러한 로동일의 단축이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자 자본의 수중에 있는 기계도 동일한 시간내에 보다 많은 로동을 짜내기 위한 객체적인, 체계적으로 리용되는 수단으로 된다. 이것은 두가지 방식 즉 기계속도의 증대와 동일한 로동자가 맡아보는 기계수의 증대 즉 그의 작업범위의 확대에 의하여 달성된다. 기계구조의 개량은 한편으로는 로동

---

(162) 《공장감독관보고. 1844년과 그리고 1845년 4월 30일까지의 한분기간에 걸친 보고》, 20페지.

(163) 우와 같은 보고, 21페지. 상술한 실험들에서는 정신적요소가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로동자들은 공장감독관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는 보다 활기있게 일합니다. 우리는 항상 저녁에 전보다 일찌기 집에 돌아갈수 있다는 희망을 마음속에 간직하고있습니다. 또 가장 어린 견습공으로부터 가장 나이먹은 로동자에 이르기까지 활기있고 유쾌한 정신이 전 공장에 가득차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서로 방조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곳)

자들에게 보다 큰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개량이 그자체로서 로동의 강화를 수반하는데 그것은 로동일의 제한이 자본가로 하여금 생산비를 가장 엄격히 절약하지 않을수 없게 하기때문이다. 증기기관의 개량은 피스톤의 1분간의 운동회수를 증가시키는 한편 원동력의 보다 큰 절약에 의하여ㅡ석탄은 동일한 량 또는 보다 적은 량을 소비하면서도ㅡ동일한 원동기로써 범위가 보다 큰 규모의 기구를 운전할수 있게 한다. 전동장치의 개량은 마찰을 감소시키며 대소회전축의 직경과 중량을 부단히 최저한으로 감소시키는데 이것은 구식기계에 비한 현대적기계의 명백한 우점이다. 끝으로 작업기의 개량은 그 속도를 증대시키며 효능을 확대하면서도 현대적증기직기에서와 같이 그 동체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방적기에서와 같이 동체와 함께 그것이 사용하는 도구들의 규모와 수를 증대시키거나 또는 50년대중엽에 자동식뮬방적기에서 방추의 속도가 $\frac{1}{5}$ 높아졌던바와 같이 눈에 띄지 않는 세부적변경들에 의하여 이 도구들의 가동성을 증가시킨다.

로동일을 12시간으로 단축시킨것은 영국에서는 1832년이였다. 이미 1836년에 어떤 영국공장주는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종전에 비하여 공장에서의 로동은 기계속도의 현저한 증가가 로동자에게 주의력과 활동성의 강화를 요구하기때문에 대단히 증가하였다.》(164)

현재의 샤프쯔버리백작인 애쉴리경은 1844년에 하원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에 의하여 립증된 진술을 하였다.

《공장의 제 공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로동은 이러한 작업들을 도입하던 당시에 비하여 현재는 그 3배나 된다. 기계는 의심할바없이 수백만사람들의 힘줄과 근육을 대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그러나 기계는

---

(164) 존 필덴 《공장제도의 저주》, 1836년 런던판, 32페지.

또 기계의 무서운 운동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로동을 놀랄만큼 증대시켰다.…1815년에 12시간동안에 두대의 뮬방적기를 돌보는 로동에는 40번수 방사의 방적에서 8마일의 거리의 보행이 포함되였다. 1832년에는 동일한 번수의 방적에서 12시간동안에 두대의 방적기사이를 래왕하는 거리는 20마일이였는데 그 이상되는 일도 빈번하였다. 1825년에 방적공은 12시간동안에 매개 뮬방적기에 820회 실을 걸어야 하였으며 따라서 12시간동안에 도합 1,640회나 되였다. 1832년에 방적공은 12시간로동일동안에 매개 뮬방적기에 2,200회 도합 4,400회, 1844년에는 매개 뮬방적기에 2,400회 도합 4,800회 실을 걸어야 하였으며 때로는 더욱 많은 로동량이 요구된다.…여기에 나는 1842년의 문서를 가지고있는데 그것이 증명하는바에 의하면 로동이 루진적으로 증가하는것은 래왕거리가 증대하기때문일뿐만아니라 직공수는 비례적으로 감소하는데 생산되는 상품의 량은 증가하기때문이며 또 다음으로 로동이 보다 더 많이 요구되는 나쁜 면화가 빈번히 방적되기때문이다.…소면실에서도 로동이 역시 현저히 증가하였다. 종전에 두사람이 담당하던 로동을 지금은 한사람이 수행한다.…직포실에서는 대부분이 녀성인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있는데 여기서는 기계의 속도가 증대된 결과 최근 수년간에 로동이 웅근 10%나 증가하였다. 1838년에 매주 방적된 다발수는 18,000개였는데 1843년에는 그것이 21,000개에 이르렀다. 1819년에 증기직기에 있어서 북치기회수는 60회였는데 1842년에는 그것이 140회에 달하였는바 이 사실은 로동의 거대한 증가를 말하는것이다.》(165)

12시간로동법의 지배하에 이미 1844년에 달성된 이와 같은 주목할만한 로동강도에 비추어보면 이 방향으로 가일층 발전한다는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로동시간을 가일층 감소시킨다는것은 생산을 감소시키는것과 같다는 영국공장주들의 언명이 당시에는 그럴듯하다고 생각되였다. 그들의 리유가 일견 그럴듯하였다는것은 그들의 게으름없는 검열관인 공장감독관 레너드 호너의 다음과 같은 당시의 언명에 의하여 가

---

(165) 애쉴리경의 《10시간공장법안. 1844년 3월 15일 금요일 하원에서의 연설》, 1844년 런던판, 6~9페지의 이곳저곳.

장 훌륭히 증명된다.

《생산량은 주로 기계속도에 의하여 규제되므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어기지 않는 한 기계를 최고속도로 운전하는것이 공장주의 리익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그 조건이란 기계의 지나친 급속한 파손의 방지, 제품의 품질의 유지, 로동자가 계속적으로 지탱할수 있는것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고 기계운전에 따라가는 그의 능력이다. 공장주는 조급한 나머지 지나치게 운전속도를 높이는 수가 왕왕 있다. 그런 경우에는 파손과 불량품이 빠른 속도에서 나오는 리익을 상쇄하고도 남으므로 공장주는 기계의 속도를 완화하지 않을수 없다. 활동적이며 명철한 공장주는 도달할수 있는 최대한도를 틀림없이 발견하므로 12시간에 생산하는 것을 11시간에 생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나는 이르렀다. 나는 도급제임금을 받는 로동자는 그가 이미 동일한 로동강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수 있는 한의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였다.》(166)

그러므로 호너는 가드너 등등의 실험에도 불구하고 로동일을 12시간이하로 더 단축한다면 생산량이 감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167) 당시 그가 아직 기계와 인간로동력ㅡ로동일의 강제적단축으로 말미암아 량자가 다같이 극도로 긴장되는ㅡ의 신축성을 얼마나 리해하지 못하고있었는가 하는 증거로 그는 1845년의 자기의 의심을 자신이 10년후에 인용하고있다.

그러면 이제는 영국의 면, 양모, 견 및 아마 공장에 10시간로동법이 실시된 이후시기 즉 1847년이후시기로 넘어가자.

《방추의 속도는 1분간에 스로슬방적기에서는 500회전, 뮬방적기에서는 1,000회전 증가하였다. 즉 1839년에 1분간 4,500회전이였던 스로슬방추의 속도는 현재 (1862년) 에 5,000회전에 달하고있으며 1분간에 5,000회전이였던 뮬방추의 속도는 현재는 6,000회전에 달하고있는데 이

---

(166) 《공장감독관보고. 1845년 4월 30일》, 20페지.

(167) 우와 같은 보고, 22페지.

는 전자에 있어서는 $\frac{1}{10}$, 후자에 있어서는 $\frac{1}{6}$의 속도증가로 된다.》(168)

만체스터근방 패트릭로프트의 유명한 토목기사 제임즈 네이즈미스는 1852년에 레너드 호너에게 보낸 편지에서 1848~1852년에 이루어진 증기기관의 개량들을 설명하였다. 공식적공장통계에서는 증기마력이 계속 1828년의 그것의 효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므로(169) 그 마력은 공칭마력에 불과하며 다만 현실적마력의 지표로밖에 쓰일수 없다는것을 지적한후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동일한 중량의 증기기관(왕왕 현대적개량이 가해진데 불과한 동일한 기관)이 이전보다 일을 평균 50% 더 많이 한다는것 그리고 많은 경우에 속도가 1분간 220푸트로 제한되고있던 시기에 50마력을 내던 동일한 증기기관들이 현재에는 석탄을 적게 소비하면서도 100마력이상을 내고있다는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동일한 공칭마력을 가진 현대적증기기관은 그 구조의 개량과 보이라의 용적의 축소 등등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큰 힘으로 운전된다.…그러므로 공칭마력과의 비례에 있어서는 이전과 동일한 수의 직공이 사용되고있다고 하더라도 작업기와의 비례에 있어서는 보다 소수의 직공이 사용되고있다.》(170)

1850년에 련합왕국의 공장들에서는 25,638,716개의 방추와 301,445대의 직기를 운전하기 위하여 134,217의 공칭마력을 사용하였다. 1856년에는 방추와 직기 수는 각각 33,503,580개와 369,205대였다. 만약 소요마력이 1850년과 같다면 1856

---

(168) 《공장감독관보고. 1862년 10월 31일》, 62페지.

(169) 이런 정형은 1862년의 《의회보고》이래 변경되였다. 이 보고에서는 이미 현대적증기기관 및 수차의 현실적증기마력이 공칭마력 대신에 나오고있다. (352페지 주(109a)①를 보라.) 또 연사방추도 이제는 본래의 방추와 혼동되여있지 않다. (1839년, 1850년, 1856년의 《보고》들에는 혼동되여있었다.) 다음으로 양모방직공장에서는 《기모기》의 수가 렬거되였으며 황마공장과 대마공장을 일방으로 하고 아마공장을 타방으로 하는 이들 량자간에 구별이 생겼으며 끝으로 양말제조업이 처음으로 보고에 올랐다.

(170) 《공장감독관보고. 1856년 10월 31일》, 14, 20페지.

---

① 이 책 446페지를 보라. —편집자

년에는 175,000마력이 필요하였을것이다. 그러나 공식보고에 의하면 그것은 불과 161,435마력이였다. 즉 1850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것보다 10,000마력이상이 적었다.(171)

《1856년의 최근의 보고 (공식통계) 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들은 공장제도가 매우 급속히 보급되고있다는것, 기계와 대비하여 직공수는 감소되였다는것, 중기기관은 힘의 절약과 기타 방법에 의하여 보다 많은 중량의 기계들을 운전한다는것, 또 작업기의 개량과 제조방법의 변경, 기계속도의 증대 및 기타 많은 원인들의 결과 제품량이 증대되고있다는것이다.》(172) 《각종 기계들을 크게 개량한 결과 기계의 생산력이 대단히 제고되였다. 로동일의 단축이…이러한 개량을 추동하였다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개량과 로동자의 긴장도의 강화는 단축된 (2시간 즉 $\frac{1}{6}$이 단축됨) 로동일에 적어도 이전의 보다 긴 로동일에 생산된 량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결과를 가져왔다.》(173)

로동력의 착취가 더 강화됨에 따라 공장주들의 부가 어떻게 증가하였는가 하는것은 영국의 면방직 등등 공장의 년평균증가수가 1838년부터 1850년까지는 32개인데 1850년부터 1856년까지는 86개로 되였다는 한가지 사실로써도 충분히 증명된다.[333]

10시간로동일의 지배하에서 1848~1856년의 8년간의 영국공업의 진보는 거대한것이였으나 그후 1856~1862년의 6년간의 진보는 그것을 훨씬 릉가하였다. 레컨대 견직공장들의 방추수가 1856년에 1,093,799개였던것이 1862년에는 1,388,544개로 되였으며 직기수는 1856년에 9,260대였던것이 1862년에는 10,709대로 되였다. 이와 반대로 로동자수는

---

(171) 《공장감독관보고. 1856년 10월 31일》, 14~15페지.

(172) 우와 같은 보고, 20페지.

(173) 우와 같은 보고, 10페지. 《공장감독관보고. 1860년 4월 30일》, 30페지이하를 참조하라.

1856년에 56,137명이던것이 1862년에는 52,429명으로 되였다. 이와 같이 방추수는 26.9%, 직기수는 15.6% 증가하였는데 그와 동시에 로동자수는 7% 감소하였다. 1850년에 소모사공장들에서 사용된 방추는 875,830개, 1856년에 1,324,549개(51.2% 증가)로 되였으며 1862년에는 1,289,172개(2.7% 감소)로 되였다. 그러나 연사방추가 1856년의 계산에는 포함되여있으나 1862년의 계산에는 포함되여있지 않으므로 그것을 빼버린다면 방추수는 1856년이래 거의 변함없었다. 이와 반대로 방추와 직기의 속도는 1850년이래 많은 경우에 2배로 되였다. 소모사공장들의 중기직기수는 1850년에 32,617대, 1856년에 38,956대, 1862년에 43,048대였다. 이 공장들의 종업원수는 1850년에 79,737명, 1856년에 87,794명, 1862년에는 86,063명이였으나 그중 14세미만의 아동은 1850년에 9,956명, 1856년에 11,228명, 1862년에 13,178명이였다. 그리하여 1862년에는 1856년에 비하여 직기수가 대단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된 로동자총수는 감소하였으며 착취당하는 아동들의 수는 증대하였다.(174)

1863년 4월 27일 국회의원 페런드는 하원에서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나는 랭카셔와 체셔의 16개 지구 로동자대표들의 위임에 의하여 말하지만 그들이 나에게 말하는바에 의하면 기계개량의 결과로 공장들에서의 로동은 부단히 증가되고있다. 이전에는 1명의 로동자가 조수를 데리고 2대의 직기를 맡아보고있었으나 현재는 1명의 로동자가 조수없이 3대를 맡아보고있으며 지어는 4대까지 맡아보는 일이 드물지 않다. 우에서 든 사실에서 명백한바와 같이 12시간로동이 현재는 10로동시간이하로 압축되고있다. 그러므로 공장로동자들의 로고가 최근년간에

(174) 《공장감독관보고. 1862년 10월 31일》, 100, 103, 129~130페지.

얼마나 더 심해졌는가 하는것은 자명한 일이다.》(175)

그러므로 비록 공장감독관들은 1844년과 1850년의 공장법들의 좋은 결과들을 꾸준하게 또 완전히 정당하게 찬양하고있지만 그들은 로동일의 단축이 이미 로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따라서 로동력자체를 파괴하는 그러한 로동강도를 초래하였다는것을 인정하고있다.

《대다수의 면방직공장, 소모사공장, 견직공장들에서는 최근년간에 운전속도가 비상히 촉진된 기계를 맡아보는 로동이 극도의 긴장상태를 필요로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이 폐병사망률의 증가(그린하우의사는 최근 자기의 경탄할만한 보고에서 이 점을 지적하였다.)의 한 원인으로 된것 같다.》(176)

로동일의 연장이 법률에 의하여 영원히 금지되자 로동강도를 부단히 높이는것으로써 이것을 보상하며 또 기계의 모든 개량을 로동력흡수의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만들려는 자본의 경향은 얼마 안가서 또다시 로동시간의 새로운 단축이 불가피하게 되는 한개의 전환점에 도달하지 않을수 없다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177) 한편 1848년부터 현재까지 즉 10시간로동일의 시기에 영국공업의 질풍과 같은 발전은 1833~1847년시기 즉 12시간로동일의 시기를 릉가하고있는

---

(175) 현대식증기직기를 사용하면 현재 1명의 직포공이 2대의 직기로 60시간 1주일간에 일정한 길이와 폭을 가진 일정한 종류의 직물 26필을 생산하는데 구식증기직기로써는 4필밖에 생산할수 없었다. 이러한 직물 1필의 직포비는 이미 1850년대초에 2실링 9펜스로부터 $5\frac{1}{8}$펜스로 감소되였다.[334]

제2판에 대한 보충: 《30년전 (1841년) 에는 3명의 조수를 데리고 일하는 면사방적공은 300~324개의 방추를 가진 2대의 물방적기를 맡아보면 되였다. 현재 (1871년 말) 그는 5명의 조수를 데리고 방추의 수가 2,200개에 달하는 방적기를 맡아보지 않으면 안되며 그리고 1841년에 생산한것의 적어도 7배나 되는 방사를 생산한다.》(공장감독관 앨렉잔더 레드그레이브, 1872년 1월 5일 《기예협회잡지》에 게재)

(176) 《공장감독관보고. 1861년 10월 31일》, 25~26페지.

(177) 현재(1867년) 랭카셔에서는 공장로동자들간에 8시간로동일을 위한 선전이 시작되였다.

데 그 정도는 공장제도 실시이래의 첫 반세기 즉 무제한한 로동일의 시기를 릉가한 정도보다 더 크다.(178)

(178) 다음의 약간의 수자들은 1848년이래의 련합왕국에서의 고유한 의미의 《공장》의 진보를 특징짓고있다.

	수 출 량			
	1948년	1851년	1860년	1865년
면방직공장				
면사(폰드)	135,831,162	143,966,106	197,343,655	103,751,455
재봉사(폰드)		4,392,176	6,297,554	4,648,611
면직물(야드)	1,091,373,930	1,543,161,789	2,776,218,427	2,015,237,851
아마및대마공장				
방사(폰드)	11,722,182	18,841,326	31,210,612	36,777,334
직물(야드)	88,901,519	129,106,753	143,996,773	247,012,329
견공장				
경사, 비사, 방사(폰드)	194,815	462,513	897,402	812,589
직물(야드)		1,181,455①	1,307,293①	2,869,837
양모방직공장				
모사및소모사(폰드)		14,670,880	27,533,968	31,669,267
직물(야드)		151,231,153	190,371,537	278,837,418
	수 출 액 (파운드)			
면방직공장				
방 사	5,927,831	6,634,026	9,870,875	10,351,049
직 물	16,753,369	23,454,810	42,141,505	46,903,796
아마및대마공장				
면 사	493,449	951,426	1,801,272	2,505,497
면직물	2,802,789	4,107,396	4,804,803	9,155,358
견공장				
경사, 연사, 방사	77,789	196,380	826,107	768,064
직 물		1,130,398	1,587,303	1,409,221
양모방직공장				
모사및소모사	776,975	1,484,544	3,843,450	5,424,047
직 물	5,733,828	8,377,183	12,156,998	20,102,259

① 폰드. 一편집자

4. 공 장

우리는 이 장의 서두에서 공장의 체구인 조직된 기계체계를 고찰하였다.① 그다음에 우리는 기계가 어떻게 녀성로동과 아동로동의 점유에 의하여 자본의 인간적착취재료를 증가시키는가,② 기계가 어떻게 로동일의 무제한한 연장에 의하여 로동자의 전체 생활시간을 빼앗는가, 또 끝으로 더욱더 거대하게 증가하는 생산물을 갈수록 더욱 짧은 시간에 생산할수 있게 하는 기계의 발전이 어떻게 매 순간에 더 많은 로동을 류동시키기 위한 즉 로동력을 더 집약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체계적수단으로 되는가를 보았다. 그러면 이제는 공장을 전체로서 그리고 또 가장 완성된 모습에서 고찰하기로 하자.

자동공장의 핀다로스인 유어박사는 그러한 공장을 한편으로는

《중심력(원동기)에 의하여 부단히 작용하는 생산적기계체계를 능숙하고 근면하게 감시하는 각종 부류의 성년 및 미성년 로동자들의 협업》

이라고 묘사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청서 《련합왕국통계적요》, 1861년과 1866년 런던판, 제8호와 제13호를 보라.)

랭카셔에서는 공장수가 1839년과 1850년간에 불과 4% 증가하였는데 1850년과 1856년간에는 19%, 1856년과 1862년간에는 33%가 증가하였으며 한편 이 두개를 합한 11년간에 종업원수는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상대적으로는 감소하였다. 《공장감독관보고. 1862년 10월 31일》, 63페지를 참조하라. 랭카셔에서는 면방직공장이 우세하다. 그런데 면장직공장들이 방사와 직물생산에서 일반적으로 얼마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는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아일랜드에서의 이러한 종류의 공장총수의 45.2%, 방추총수의 83.3%, 증기직기총수의 81.4%, 이러한것을 움직이는 증기마력총수의 72.6%, 종업원총수의 58.2%가 면방직공장에 속한다는것으로써 알수 있다.(우와 같은 보고, 62, 63페지)

---

① 이 책 429, 435~436페지를 보라. 一편집자

② 이 책 453~454페지를 보라. 一편집자

《동일한 물건을 생산하기 위하여 부단히 일치하게 작용하며 또 그 모두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한개의 원동력에 종속되여있는 무수한 기계적 및 자기의식적기관들로써 구성되는 방대한 자동장치》라고 묘사하였다.

이 두 표현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전자에 있어서는 결합된 총로동자 또는 사회적로동체가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주체로 나타나고 기계적자동장치는 객체로 나타나고있는데 후자에 있어서는 자동장치자체가 주체이며 로동자들은 의식있는 기관으로서 자동장치의 의식없는 기관들과 병렬되여 이 후자와 더불어 중심원동력에 종속되여있다. 첫째 표현은 기계의 각종 가능한 대규모적응용에 적용되나 둘째 표현은 기계의 자본주의적응용을, 따라서 근대적공장제도를 특징짓는다. 그렇기때문에 유어는 운동의 출발점인 중심기계를 자동기〔Automat〕로서뿐만아니라 전제군주〔Autokrat〕로서 즐겨 묘사하였던것이다.

《이러한 대작업장들에서는 인자한 증기의 힘이 그 주위에 무수한 신하를 모으고있다.》(179)

로동도구와 함께 그것을 조종하는 기교도 또한 로동자에게서 기계로 옮아간다. 도구의 작업능력이 인간로동력의 개인적제한으로부터 해방된다. 이리하여 공장제수공업의 분업이 기초하고있는 기술적토대는 없어진다. 그러므로 공장제수공업을 특징짓는 전문로동자들의 등급제 대신에 자동공장에서는 기계의 조수들이 하여야 할 각종 작업의 균등화 또는 수평화의 경향이 나타나며(180) 부분로동자들간의 인위적구별 대신에 주로 년령과 성의 자연적구별이 나타난다.

---

(179) 유어 《공장철학》, 18페지.

(180) 우와 같은 책, 20페지. 칼 맑스 《철학의 빈곤》, 140, 141페지를 참조하라.[335]

자동공장에서 분업이 다시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선 전문화된 기계들에 로동자들을 분배하는것이며, 공장의 각 부문에 로동자군—그러나 조직된 조를 이루지는 않는 군—을 분배하는것인데 거기에서 그들은 병렬된 같은 종류의 작업기에 붙어서 작업하며 따라서 그들사이에는 단순협업이 있을따름이다. 여기에서는 공장제수공업의 조직된 조 대신에 주요로동자와 수명의 조수와의 련계가 나타난다. 본질적인 구별은 실지로 작업기에 붙어 일하는 로동자들(여기에는 원동기의 감시 또는 원동기에 급탄하는 약간의 로동자들도 속한다.)과 기계로동자들의 단순한 조수들(거의 전적으로 아동들인)과의 구별에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피더《feeders》(단순히 기계에 로동재료만을 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조수에 포함된다. 이 주요부류외에 모든 기계를 검사하며 그것을 부단히 수리하는 많지 않은 인원들이 레컨대 기사, 기계공, 소목 등등이 있다. 이들은 일부는 과학적소양이 있으며 일부는 수공업적기예가 있는 고급로동자층으로서 공장로동자들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다만 공장로동자들과 함께 있을따름이다.(181) 이러한 분업은 순전히 기술적인것이다.

기계를 가지고 하는 모든 작업에서 로동자는 자동기의 균일적이고 련속적인 운동에 자기자신의 동작을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배워야 한다. 총기계자체가 다양하고 동시에 작용하는 결합된 기계들의 체계를 이루고있는만큼 총기계

---

(181) 영국의 공장립법은 본문 마지막에 언급된 로동자들을 명백히 공장로동자가 아니라 하여 공장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있다. 그런데 한편 의회가 공포한 《보고에는 역시 명백히 기사, 기계공 등등뿐만아니라 공장지배인, 점원, 련락원, 창고관리원, 포장공 등등 간단히 말하면 고장주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공장로동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있는데 이것은 특히 통계상 기만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한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이외에도 아주 상세히 증명할수 있을것이다.》

에 립각한 협업도 또한 각종 로동자군을 각종 기계에 분배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기계적생산에서는 이 분배를 공장제수공업식으로 고정시켜 동일한 로동자를 동일한 기능에 계속 결박할 필요가 없게 된다.(182) 공장의 전 운동은 로동자로부터 출발하는것이 아니라 기계로부터 출발하는만큼 여기에서는 로동과정을 중단함이 없이 부단히 인원을 교체할수 있다. 이에 대한 가장 뚜렷한 증명은 1848~1850년의 영국공장주들의 반란시에 적용된 리레제도①이다. 끝으로 기계를 가지고 하는 작업은 어렸을 때에 빨리 배울수 있으므로 기계로동자로서의 특수한 부류의 로동자를 전문 육성할 필요가 없게 된다.(183) 그런데 공장에서의 단순한 조수들의 작업은 일부는 기계로 교체할수 있으며(184) 일부는 그것이 극히 단순한것이기때문에 이

(182) 유어도 이것을 인정하고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배인이 마음대로》 로동자들을 《한 기계로부터 다른 기계로 옮길수 있다.》고 그는 말하고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의기양양하게 부르짖는다. 《이와 같은 교체는, 로동을 분할하여 한 로동자에게는 핀의 대가리를 제조하는 일을 시키고 다른 로동자에게는 끝을 뾰족하게 하는 일을 시키는 종래의 방식과는 명백히 모순된다》고.[336] 그는 오히려 왜 이 《종래의 방식》이 자동공장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폐기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여야 할것이였다.

(183) 례컨대 미국의 남북전쟁시기와 같이 할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자는 공장로동자를 도로부설 등등과 같은 극히 거치른 일에 례외적으로 사용한다. 1862년이후에 실업당한 면방직로동자들을 위하여 설치한 영국의 《국민작업장》이 1848년의 프랑스의 국민작업장과 구별되는 점은 프랑스에서는 로동자는 국가의 비용으로 비생산로동을 하게 되였는데 영국에서는 자산자의 리익을 위하여 도시생산로동을 그것도 그가 경쟁하지 않을수 없었던 정규적로동자들보다 낮은 임금으로 하게 되였다는 점이다. 《면방직로동자들의 신체는 보건대 의심할 여지없이 좋아졌다. 남성에 관해서 말하는 한…나는 이것은 공공공사를 야외에서 수행하기때문이라고 생각한다.》(여기에서 말하고있는것은 《프레스톤소택지》 배수공사에 종사하였던 프레스톤공장로동자들이다.)(《공장감독관보고. 1863년 10월》, 59페지)

(184) 그 실례를 들면 1844년의 법률이[153] 반포된이래 양모방직공장에서 아동로동대신으로 도입된 각종 기계장치들이다. 공장주 제씨자신의 아동들이 공장의 보조원으로서의 《수업》을 받아야 할 때에라야 기계학의 이 거의 미개척분야는 즉시로 주목할만한 비약을 할것이다. 《자동식뮬방적기는 아마 다른 기계와 마찬가지로 위험한 기계일것이다. 사고를 발생시키는것은 대개 어린아동들인데 그것은 그들이 기계운전중에 바타을

① 이 책 322~337페지를 보라. —편집자

고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급속히 또 부단히 교체할수 있다.

이와 같이 기계가 낡은 분업체계를 기술적으로 전복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분업체계는 처음에는 공장제수공업의 전통으로서 관습적으로 공장에 존속하며 다음에는 자본에 의하여 로동력의 착취수단으로서 더욱 혐오스러운 형태로 재생산되여 고정된다. 이전에는 한 부분도구를 다루는것이 일생에 걸치는 전문이였는데 지금은 한 부분기계에 복무하는것이 일생에 걸치는 전문으로 되였다. 기계는 로동자자신을 유년시기부터 부분기계의 한 부분으로 전화시키는데 람용된다.(185) 그리하여 로동자자신의 재생산에 필요한 비용이 현저히 감소될뿐만아니라 동시에 공장전체에 대한, 따라서 자본가에 대한 로동자의 절망적인 종속이 완성된다. 다른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우리는 사회적생산과정의 발전으로 인한 생산성의 증대와 사회적생산과정의 자본주의적 착취로 인한 생산성의 증대와를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장제수공업과 수공업에서는 로동자가 도구를 자기에게 복무하게 하는데,공장에서는 로동자가 기계에 복무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로동수단의 운동이 로동자로부터 출발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로동자가 로동수단의 운동을 뒤따라가야 한다. 공장제수공업에서는 로동자들이 한 산 기구의 수족으로 되여있다. 공장에서는 죽은 기구가 로동자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며 로동자는 산 부속물로서 죽은 기구에 합체된다.

청소하기 위하여 뮬방적기 아래로 기여들어가기때문이다. 뮬방적기에서 일하는 수많은 로동자가 이러한 위반때문에 〔공장감독관〕에 의하여 고소되여 벌금형을 받았으나 일반적으로 이렇다 할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못하였다. 만약 기계제작자가 자동청소기를 발명하여 이 어린 아동들이 기계밑에 기여들어갈 필요가 없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 보호시책에 좋은 기여로 될것이다.》(《공장감독관보고. 1866년 10월 31일》, 63페지.)

(185) 그러므로 기계를 로동수단의 종합으로서가 아니라 로동자자신을 위한 부분로동의 종합으로서 《상상하는》 쁘루동의 황당한 견해를 정확히 평가할수 있다.[277]

《동일한 기계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는 참을수 없는 단조로운 고역, 이것은 마치 씨쉬포스의 고형과도 같다. 로동의 중하가 바위마냥 지쳐빠진 로동자를 거듭거듭 내리누르는것이다.》(186)

기계로동은 신경계통을 극도로 지치게 하면서 근육의 다면적운동을 억압하며 심신의 모든 자유로운 활동을 몰수한다.(187) 로동의 경감조차 고통의 원천으로 되는데 그것은 기계가 로동자를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이 아니라 그의 로동을 전혀 무내용한것으로 만들기때문이다. 일체 자본주의적생산은 로동과정일뿐만아니라 동시에 자본의 증식과정인만큼 거기에 공통적인것은 로동자가 로동조건을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로동조건이 로동자를 사용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이 전도는 기계의 채용과 함께 비로소 기술적으로 뚜렷한 현실성을 가지게 된다. 로동수단은 그것이 자동장치로 전화함으로써 로동과정자체에서 자본으로서 즉 산로동력을 지배하며 흡수하는 죽은로동으로서 로동자와 대립한다. 생산과정의 지적능력을 손로동에서 분리하며 그것을 로동에 대한 자본의 권력으로 전화시키는것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기계를 기초로 하는 대공업에서 완성된다. 내용이 없게 된, 개별적인 기계로동자의 부분기교는, 기계체계에 체화되여 그 체계와 함께 《주인》의 권력으로 화하고있는 과학과 거대한 자연력과 사회적집단로동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부속물로서 사라진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기계와 기계에 대한 그의

---

(186) F. 엥겔스 《영국로동계급의 형편》, 217페지[337]. 아주 평범한 락관주의적자유무역론자인 몰리나리씨까지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기계의 균일한 운동을 매일 15시간씩 감시하는 일은 같은 시간에 육체력을 긴장시키는 일보다 사람을 훨씬 더 빨리 지치게 한다. 이 감시로동은 너무 장시간에 걸치지만 않는다면 정신에 유익한 훈련으로 될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도한탓으로 하여 심신을 다 파괴한다.》(G. 드 몰리나리 《경제학연구》, 1846년 빠리판 (49페지))

(187) F. 엥겔스 《영국로동계급의 형편》, 216페지[338].

독점이 머리속에 불가분리적으로 엉키여있는 주인은 《일손들》과 충돌이 생기면 경멸적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소리지른다.

《공장로동자들은 자기들의 로동이 사실상 극히 저급한 종류의 숙련로동이라는것, 자기들의 로동처럼 배우기 쉬운 로동은 없으며 또 그 질로 보아 이처럼 나은 지불을 받는 로동은 없다는것, 다른 어떠한 로동도 가장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이처럼 단기간의 훈련으로써 이처럼 신속히 또 많이 얻을수 없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주인의 기계는, 6개월이면 능히 배울수 있으며 또 어떠한 농촌머슴군도 배울수 있는 로동자의 로동과 기능보다 생산에서 사실상 훨씬 중요한 역할을 논다.》(188)

로동수단의 균일한 운동에의 로동자의 기술적예속과 남녀로소의 개개인으로 된 로동체의 독특한 구성은 하나의 병영적규률을 낳는데 이 규률은 완전한 공장제도로 발전되며 또 이미 상술한 감독로동을② 완전히 발전시키며 그와 동시에 육체로동자와 로동감독, 산업병사와 산업하사관으로의 로동자의 구분을 완전히 발전시킨다.

《자동공장에서의 주되는 곤난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불규칙적인 로동관습을 버리게 하고 그들을 대자동장치의 변함없는 규칙성에 일치시키는데 필요한 규률을 보장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자동체계의 요구와 속도에 상응하는 규률법전을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한다는것은 헤라클레스나 할만한 사업이였으며 그것은 아크라이트의 귀중한 업적이였다! 이러한 체계가 완전하게 조직되여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미 성년기에 달한 로동자들사이에서 자동체계를 위한 유용한 조수를 얻는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하다.》(189)

공장법전에서 자본은 그의 로동자들에 대한 전제를 사적

(188) 《방적업주와 제조업주의 방위기금. 위원회의 보고》, 1854년 만체스터판, 17페지. 《주인》들은 그들의 《산》 자동장치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을 때에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하기 시작한다는것을 우리는 차후에 보게 될것이다.①

(189) 유어 《공장철학》, 15페지. 아크라이트의 경력을 아는 사람은 이 천재적리발사의 머리우에 《귀중하다》는 말을 결코 들씌우지 않을것이다. 18세기의 모든 대발

① 이 책 661~665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이 책 383~386페지를 보라. —편집자

법률로 또 독재적으로(일반적으로 자산계급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분권[339]도 없이 또 그보다도 더 좋아하는 대의제도 없이) 정식화하고있는데 이러한 공장법전은 대규모의 협업이 존재하고 로동수단 특히 기계의 공동적사용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필요하게 되는, 로동과정에 대한 사회적규제의 자본주의적만화에 불과하다. 노예감시자의 채찍 대신에 감독의 벌금부가 등장한다. 물론 모든 처벌은 결국 벌금과 임금공제로 규착되며 또 공장의 리쿠르고스들의 립법적총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법률이 위반되는것이 준수되는것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유리하게 되여있다.(190)

명가중 그는 론쟁할 여지없이 타인의 발명의 최대의 절취자이며 또 가장 비렬한자였다.

(190) 《자산계급이 무산계급을 얽매놓은 노예상태는 공장제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온갖 자유가 사라지고만다. 로동자는 새벽 5시 반에 반드시 공장에 나가야 한다. 몇분만 늦게 나가도 벌을 받아야 하며 10분만 지각하면 아침식사가 끝날 때까지 들여놓지 않으며 하루임금의 4분의 1을 떼운다. 그는 명령대로 먹고 마시고 자야 한다.…전제의 종소리는 그를 잠자리에서, 아침과 점심식탁에서 불러낸다. 공장안의 정형은 어떠한가? 거기서 공장주는 절대적인 립법자이다. 그는 마음내키는대로 공장규칙을 공포하며 생각나는대로 자기의 법전을 수정 또는 보충한다. 그가 그 법전에 아무리 황당한 조항을 써넣어도 재판소는 로동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대들은 자원하여 그 계약을 체결한만큼 이제는 그것을 리행할 의무가 있다.…이 로동자들은 아홉살적부터 죽을 때까지 육체상으로나 정신상으로나 채찍밑에서 살아야 하는것이다.》 (F. 엥겔스 《영국로동계급의 형편》, 217페지이하[338]) 《재판소가 선고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는 두가지 실례로써 설명하려 한다. 그 하나는 1866년말 세필드에서 있은 일이다. 한 로동자가 2년간 계약으로 이곳 금속공장에 고용되였다. 공장주와 다툰 결과 그는 공장을 떠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더는 이 공장주를 위하여 일하지 않겠다고 언명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계약위반으로 고소되여 2개월의 금고형의 판결을 받았다.(그런데 공장주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는 다만 민법상의 책임을 지고 벌금을 물 우려가 있을뿐이다.) 2개월의 복역후 공장주는 구계약에 따라 공장으로 돌아오도록 그를 불렀으나 로동자는 거절하였다. 그는 이미 계약위반죄는 갚았다고 말하였다. 공장주는 다시 고소하였으며 재판소는 다시 유죄의 판결을 내렸다. 여기서 다만 판사의 한 사람인 쉬씨가 이것을 법률상 기괴한 일이라고 공공연히 비난하여 이대로 되면 한사람이 동일한 과실 또는 범죄때문에 전 생애를 통하여 몇번이고 되풀이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위대한 무급관리인》①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방의 도그베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런던의 한 최고법정에 의하여 언도되였다. {제4판 주: 이러한 일은 지금은 없어졌다. 지금 영국로동자들은 약간의 경우(레컨대 공공가스공장의 경우)를 제외

① 이 책 334페지를 보라. —편집자

여기서는 다만 공장로동이 수행되는 물질적조건을 지적하는데 그친다. 사시절이 교체되듯이 규칙적으로 산업사상보고를 제공하고있는 밀집한 기계설비속에서의 생명의 위험은 도외시하더라도[190a] 인위적으로 올린 고온, 원료의 찌끼로 가득찬 공기, 고막을 찢는 소음 등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감각기관

하고는 계약위반시에 고용주와 동등하게 민법상 책임을 추궁당할뿐이다. —F. E.} 다른 하나는 1863년 11월말 윌트셔에서 있은 일이다. 웨스트버리 리의 리오워즈 밀에 있는 직조업자 해럽이라는 사람에게 고용된 약 30명의 증기직기녀공들이 파업을 하였는데 그것은 이 해럽이라는자에게는, 아침지각에 대하여 그들의 임금을 공제하는데 2분에 6펜스, 3분에 1실링, 10분에 1실링 6펜스씩 공제하는 쾌적한 습관이 있었기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한시간에 9실링, 1일에 4파운드 10실링이 되는데 그들의 년평균임금은 결코 주 10실링 내지 12실링을 넘지 못하는것이다. 해럽은 또한 공장시간을 알리는 기적을 울리기 위하여 한 소년을 두었는데 그 소년은 자주 아침 6시전에 기적을 울린다. 기적소리가 끝나기전에 녀공들이 와있지 않으면 문은 닫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벌금을 물게 된다. 그리고 공장에는 시계가 하나도 없으므로 불행한 녀공들은 해럽의 사촉을 받는 이 소년 시간지기의 수중에 완전히 장악되여있었다. 《파업》을 개시한 녀공들, 주부들과 소녀들은 시간지기 대신에 시계를 두고 합리적인 벌금률을 실시하면 다시 일터로 나오겠다고 성명하였다. 해럽은 계약위반이라 하여 19명의 부녀와 소녀들을 치안판사앞에 내세웠다. 그들은 방청객들의 떠들썩하는 격분속에 각각 벌금 6펜스와 소송비 2실링 6펜스의 판결을 받았다. 해럽은 군중의 욕설을 들으면서 법정에서 나왔다. —공장주들의 상투적인 징벌방법의 하나는 로동자들이 가공한 제품의 질이 나쁘다고 하면서 그들은 임금을 공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1866년에 영국의 도기제조업지방에서 총파업을 불러일으켰다. 아동로동조사위원회의 보고(1863~1866년)에서는 로동자가 일을 하고 임금을 받기는커녕 벌금규정에 의하여 오히려 그의 《주인》의 채무자가 되는 경우들을 들고있다. 임금을 공제하는 면에서 공장전제군주의 총명을 말해주는 교훈적인 특징들은 최근의 면화공황시에 또한 뚜렷이 드러났다. 공장감독관 R. 베이커는 이렇게 말하고있다. 《최근 나는 한 면방직공장주를 소송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는 이렇게 곤난하고 고통스러운 시기에 자기가 고용한 수명의 〔소년〕〔13세이상〕로동자들로부터 의사의 년령증명서값으로 10펜스씩을 공제하였다. 그런데 공장주자신이 그 증명서에 지불한 비용은 6펜스에 불과하며 또 법률은 3펜스이상 공제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관례는 한푼도 허용하고있지 않다.…또 다른 한 공장주는 법률에 저촉됨이 없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를 위해 일하고있는 불쌍한 아동들이 일을 할만한 년령이라고 의사가 증명하기만 하면 그들에게, 면방적의 기술과 비결을 가르쳐준 료금으로 각각 1실링씩을 부과하였다. 때때로 일어나는 파업들과 현재의 파업 (1863년 6월 다웬에 있는 공장에서 일어난 기계직포공들의 파업을 말함) 과 같은 비상한 현상들을 리해함에 필요한 암류가 있는것이다.》 (《공장감독관보고. 1863년 4월 30일》, 50~51페지) (공장보고에는 언제나 그 공식날자이후의것이 적혀있다.)

(190a) 위험한 기계의 조종에 대한 보호법은 유익한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지금은 20년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고의 원인이 있다. 그것은 즉 기계속도의 증대이다.

이 같은 정도로 손상을 받는다. 공장제도하에서야 비로소 온실에서와 같이 성숙되는 사회적생산수단의 절약은 동시에 자본의 수중에서는 작업시에 있어서의 로동자의 생활조건들의 체계적인 략탈로 된다. 즉 공간, 공기, 광선과 그리고 생명에 위험하며 건강에 해로운 생산과정의 제 조건으로부터 로동자를 보호하는 모든 수단—로동자의 편의시설은 전혀 문제로도 되지 않지만—의 체계적인 략탈로 된다.(191) 푸리에가 공장을

차륜, 로라, 방추 및 직기들이 지금은 증가된 또 부단히 증가되고있는 힘으로써 운전되고있다. 끊어진 실을 이을 때는 손가락을 보다 재게 놀리며 보다 명심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것은 주춤거리거나 부주의하면 손가락이 끊어지기때문이다.…사고의 다수는 로동자들이 일을 재빨리 끝마치려는데 기인한다. 공장주들에게 가장 중요한것은 기계를 중단없이 돌려 실과 직물을 부단히 생산하는것이라는것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1분간이라도 정지하면 그것은 원동력의 손실일뿐만아니라 생산물의 손실로 된다. 그러므로 생산물의 량에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로동감독은 기계를 멈추지 말도록 로동자들을 독촉한다. 또 이것은 중량이나 개수에 따라서 지불을 받는 로동자들에게도 그보다 못하지 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기계운전중에 청소하는것은 대다수의 공장에서 형식상으로는 금지되여있으나 실제는 어데서나 그렇게 하고있다. 이 원인만으로 최근 6개월간에 906건의 사고가 생겼다.…기계청소는 날마다 하지만 토요일에는 대개 대청소를 하게 되여있으며 이것은 대부분 기계의 운전중에 실시된다.…이 작업에 대해서는 보수가 없으며 따라서 로동자들은 될수 있는대로 빨리 청소를 마치려 한다. 그래서 사고수는 다른 날보다 금요일과 특히 토요일에 훨씬 많다. 금요일에는 주의 첫 4일간의 평균 사고수를 약 12% 초과하며 토요일에는 선행 5일간의 평균사고수를 25% 초과한다. 그러나 공장일이 토요일에는 다만 $7\frac{1}{2}$시간인데 다른 날에는 $10\frac{1}{2}$시간이라는것을 계산에 넣으면 초과는 65%이상으로 된다.》(《공장감독관보고. 1866년 10월 31일》, 1867년 런던판, 9, 15~17페지)

(191) 최근 영국공장주들은, 생명에 위험한 기계로부터 《일손들》의 수족을 보호하기 위한 공장법의 조항들을 반대하여 진공하고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제3권 제1편에서[259] 서술할것이다. 여기에서는 공장감독관 레너드 호너의 공식보고중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인용하는것으로 충분할것이다. 《나는 공장주들이 일부 사고들에 대하여는 용서할수 없으리만큼 경솔하게 대한다는것, 례컨대 손가락 하나 잃는것쯤은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것을 들었다. 그러나 로동자의 생활과 전도는 그의 손가락에 크게 달려있으므로 그것을 잃는다는것은 그에게는 극히 엄중한 사건이다. 나는 그러한 경솔한 지껄임을 들을 때 이렇게 물었다. 〈가령 당신에게 한사람의 로동자가 더 필요할 때 두사람이 신청해왔는데 두사람이 다른 점에서는 다같이 적당하나 한사람은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이 없다고 하면 당신은 누구를 택하겠는가?〉 그들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손가락이 구비된 사람이라고 말하였다.…이 공장주 제씨는 그들이 가짜박애주의적립법이라고 부르고있는것에 대하여 그릇된 편견을 가지고있다.》(《공장감독관보고. 1855년 10월 31일》) 이 제씨들은 《분별있는 사람들》이여서 그들이 노예소유자반란[8]에 열중한것은 공연한 일이 아니다!

《완화된 감옥》[340]이라고 부른것이 과연 부당하겠는가?(192)

5. 로동자와 기계와의 투쟁

자본가와 임금로동자간의 투쟁은 자본관계 그자체와 함께 시작된다. 그것은 공장제수공업의 전 시기를 통하여 맹렬하게 전개된다.(193) 그러나 자본의 물질적존재형태인 로동수단자체와의 로동자의 투쟁은 기계가 채용된 때로부터 비로소 시작된다. 로동자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물질적기초로서의 생산수단의 이 일정한 형태에 대하여 반기를 든다.

17세기에 거의 전 구라파가 리봉과 레스를 짜는 기계인 이른바 Bandmühle(Schnurmühle 또는 Mühlenstuhl이라고도 한다.)에 대한 로동자들의 반란을 겪어왔다.(194) 17세기 30년

---

(192) 로동시간의 강제적제한과 기타 규정들이 있는 공장법에 오래동안 복종하여온 공장들에서는 종전의 많은 폐해들이 없어졌다. 기계의 개량자체가 어느 점에서는 《공장건물의 구조의 개량》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로동자들에게 유익하다.(《공장감독관보고. 1863년 10월 31일》, 109페지를 참조하라.)

(193) 죤 호튼 《개량된 농업과 수공업》, 1727년 런던판, 《동인도무역의 리익》, 1720년판, 죤 벨러즈 《산업전문학교창설제안》, 1696년 런던판을 참조하라. 《고용주들과 로동자들은 불행하게도 서로 부단한 전쟁상태에 있다. 고용주의 변함없는 목적은 될수 있는대로 값싼 로동을 얻는데 있다. 그들은 이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술책도 서슴치 않는데 로동자 역시 그만 못지 않게 꾸준히 모든 기회를 리용하여 보다 높은 요구를 고용주들에게 제기하고있다.》《식량의 현가격이 높은 원인에 대한 고찰》, 1767년판, 61~62페지(저자 너새니얼 포스터목사는 전적으로 로동자의 편이다.)

(194) 리봉 및 레스를 짜는 기계는 독일에서 발명되였다. 이딸리아의 승려 란첼롯띠는 1636년에 베니스에서 발간된 한 저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단찌흐출신의 안톤 뮐레르는 약 50년전에 (란첼롯띠가 이 책을 쓴것은 1629년) 그곳에서 단번에 4개내지 6개의 레스를 짜내는 극히 정교한 기계를 보았다. 그런데 시참사회에서는 이 발명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로동자가 거지로 될것을 우려하여 그 발명을 압제하고 발명자를 몰래 교살하든가 물에 던져죽이라고 지시하였다.》[341] 라이덴에서는 이 기계가 1629년에 처음으로 사용되였다. 처음에는 레스짜는 직공들의 폭동이 시참사회를 강제하여 그것을 금지시켰다. 화란국회도 1623년, 1639년 등의 몇개의 법령으로 그 사용을 제한하지 않을수 없었다. 나중에 1661년 12월 15일부 법령으로 일정한 조건하에서 그 사용을 허가하게 되였다. 뵉스호른은 라이덴에서의 리봉 및 레스 짜는 기계의 채용에 관하여 이렇게

대에 한 화란인이 런던부근에 설치한 풍력제재소가 평민의 폭동에 의하여 파괴되였다. 또한 18세기초에 영국에서는 수력제재기가 의회의 지지를 받은 인민의 반항을 간신히 극복하였다. 1758년에 에버리트가 최초의 수력전모기를 만들었을 때 10만의 실업자가 그 기계를 불태워버렸다. 당시까지 털빗기로 동으로써 살아가고있던 5만명의 로동자가 아크라이트의 소모기와 소면기를 반대하여 의회에 청원하였다.[342] 19세기 첫 15년간에 영국의 공장제수공업지방들에서의 대규모적기계파괴(특히는 증기직기의 리용으로 말미암아)는 러다이트운동이란[343] 이름으로 알려지고있는데 이는 씨드머스, 카슬레이 등등의 반쟈꼬벵정부에게 극반동적강압수단을[344] 취할 구실을 주었다. 로동자가 기계와 기계의 자본주의적응용을 구별하고 따라서 그의 공격을 물질적생산수단자체로부터 그 사회적리용형태로 옮길줄 알게 되기까지에는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였다.(195)

공장제수공업내에서 로임때문에 벌어지는 투쟁은 공장제수공업을 전제로 하는것이지 결코 공장제수공업의 존재를 반대하는것은 아니다. 공장제수공업의 설립을 반대하는 투쟁이

말하고있다.(《정치원리》, 1663년판) 《이 도시에서 약 20년전에 어떤 사람이 동일한 시간내에 수명이 짜내는것보다 더 많은 직물을 보다 쉽게 생산할수 있는 직기를 발명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직포공들의 소동과 불만을 야기하였으므로 시참사회는 드디여 이 직기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이 기계는 1676년에 퀼른에서도 금지되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영국에서도 그 기계의 도입은 로동자들의 소동을 야기하였다. 독일에서는 1685년 2월 19일에 칙령으로 이 기계의 사용이 전국적으로 금지되였다. 함부르그에서는 그것이 시참사회의 명령으로 공공연히 소각되였다. 칼6세는 1719년 2월 9일에 1685년의 칙령을 회복하였으며 작센선제후국에서는 1765년에 와서야 비로소 이 기계의 공공연한 사용을 허가하였다. 세상을 그렇게도 떠들석하게 만든 이 기계야말로 사실상 방적기와 직기의 선구자였으며 따라서 18세기의 산업혁명의 선구자였다. 그것은 직조에 전혀 경험이 없는 소년이라도 운전자루만 밀었다당겼다하면 모든 북들과 함께 전체 기계를 돌릴수 있게 되여있다. 그리고 그 기계의 개량된 형태는 단번에 40~50개의 레스를 생산하였다.

(195) 구식공장제수공업에서는 지금도 때때로 기계에 대한 로동자들의 사나운 반항형태가 반복되고있다. 례컨대 1865년 세필드의 연마공들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일어나는 한 그 투쟁을 진행하는것은 동업조합의 장주와 특권도시들이지 임금로동자는 아니다. 그러므로 공장제수공업시기의 저술가들은 대부분 분업을 잠세적으로 로동자들을 대신하는 수단으로 리해하고 현실적으로 로동자들을 구축하는 수단으로 리해하지 않는다. 이 구별은 자명한것이다. 례컨대 영국에서 현재 50만명이 기계로 방적하는 면화를 낡은 물레로 방적하기 위하여서는 1억명의 일손이 필요할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물론 기계가 결코 이 사실상 있어본 일도 없는 1억명을 대신하였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방적기계를 대신하려면 수천만의 로동자가 필요하리라는것을 말할따름이다. 반대로 영국에서 증기직기가 80만의 직포공을 가두에 내쫓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현존기계를 대체하기 위하여 일정한 로동자수가 필요하다는것을 말하는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계에 의하여 대체되였거나 또는 구축된 현존하는 일정한 로동자수를 말하는 것이다. 공장제수공업시기에 수공업적생산은 해체되기는 하였으나 의연히 기초로 되고있었다. 새로운 식민지시장의 수요는 중세기로부터 물려받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도시로동자들로써는 충족될수가 없었으며 동시에 또 본래의 공장제수공업은 봉건제도가 해체됨에 따라 토지에서 추방된 농민들에게 새로운 생산분야를 열어주었다. 그리하여 그때에 작업장들에서의 분업과 협업은 취업로동자들의 생산능률의 제고라는 적극적인 측면을 보다 뚜렷이 나타내였다.(196) 협업과 소수의 수중에의

(196) 제임즈 스투어트경도 기계의 작용을 완전히 이러한 의미로 리해하고있다. 《그러므로 나는 기계를 말하자면 양육할 필요가 없는 로동자의 수를 증대시키는 수단으로 보고있다.(그 능률로 보아)…기계의 작용이 새로운 주민의 작용과 구별되는 점은 무엇인가?》 (《정치경제학원리연구》, 프랑스문번역본, 제1권, 제1편, 제19장) 페티는 훨씬 더 소박하게 기계가 《일부다처제》를 대신하는것이라고 말하고있다. 이 관점은 기껏해야 미국의 몇몇 지방에 적용된다. 반대로 《기계가 개인의 로동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유효하게 사용되는 일은 드물다. 기계의 사용에 의하여 절약될수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기계

로동수단의 결합은 그것이 농업에 응용되면 확실히 농촌주민의 생산방식, 따라서 그들의 생활조건과 취업수단의 거대하며 돌연적이며 강력한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 혁명은 많은 나라에서 대공업시기보다 훨씬 전에 일어났다. 그러나 이 투쟁은 처음에는 자본과 임금로동간에서보다 대토지소유자와 소토지소유자들간에서 진행된다. 한편 로동자들이 양, 말 등등과 같은 로동수단에 의하여 구축되는 한 여기에서는 직접적인 폭력행위가 산업혁명의 첫전제로 된다. 처음에 로동자들이 토지에서 추방되고 그다음에 양이 들어온다.① 그리하여 영국에서와 같은 대규모의 토지략탈이 비로소 대규모농업의 활동무대를 조성한다.(196a) 그러므로 농업에서의 이 변혁은 그 시초에는 오히려 정치혁명의 외관을 띤다.

로동수단은 기계의 형태로 출현하자마자 곧 로동자자신의 경쟁자로 된다.(197) 기계에 의한 자본의 자기증식은 기계에 의하여 생존조건이 파괴당하는 로동자수에 정비례한다. 자본주의적생산의 전 체계는 로동자가 자기의 로동력을 상품으로서 파는데 기초한다. 분업은 로동력을 일면화하여 하나의 부분도구를 조종하는 완전히 특수화한 기능으로 전화시킨다. 도

의 제작에 요구될것이다. 기계는 그것이 대규모적으로 작용할 때 즉 한개의 기계가 수천명의 로동을 방조할수 있을 때에만 참으로 유용하다. 따라서 기계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것은 무직업자가 가장 많은, 인구가 가장 조밀한 곳이다.…기계가 사용되게 되는것은 로동자가 적기때문이 아니라 많은 로동자들을 헐하게 일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피어씨 레이븐스턴 《공채제도와 그 효과에 관한 고찰》, 1824년 런던판, 45페지)

(196a) (제4판 주: 이것은 독일에도 적용된다. 독일에서 대농업이 있는 곳 즉 특히 동부에서는 대농업이 16세기 특히는 1648년이래 류행한 《농지수용》②에 의하여 비로소 가능하게 되였다. —F. E.)

(197) 《기계와 로동은 부단히 경쟁하고있다.》(리카도 《정치경제학 및 조세의 원리》, 479페지)

---

① 이 책 837~841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농지수용》의 원문은 《Bauernlegen》인데 봉건령주가 농민들의 토지를 략탈하고 농민들을 토지로부터 구축한다는 뜻이다. —역자.

구가 기계에 의하여 조종되자 로동력의 사용가치와 더불어 그 교환가치도 없어진다. 로동자는 마치 류통에서 물러난 지폐와 같이 판매될수 없는것으로 된다. 로동계급중 기계에 의하여 이와 같이 과잉인구로 된 부분 즉 자본의 자기증식에 이 이상 직접 필요치 않은 인구로 된 부분은 일방으로는 기계적생산을 반대하는 낡은 수공업적생산과 공장제수공업적생산의 력량차이가 현저한 투쟁에서 파멸되며 타방으로는 보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산업부문에 밀려들어가 로동시장을 범람시키며 그리하여 로동력의 가격을 그 가치이하로 저락시킨다. 구제를 요하는 로동자들의 고통이 《일시적》(《a temporary inconvenience》 (《일시적불편》) 이며 타방으로 기계는 점차적으로만 전체 생산분야를 정복하기때문에 기계의 파괴적작용의 규모와 강도가 완화된다는 사정은 이 로동자들에게 있어서 큰 위안이 아닐수 없다라고들 말한다. 그런데 일방의 위안은 타방의 위안을 상쇄해버린다. 기계는 그것이 어떤 생산분야를 점차적으로 점령할 경우에는 그것과 경쟁하는 로동자층에 만성적빈궁을 가져온다. 이 이행이 급속할 경우에는 기계의 작용은 대규모적이며 급성적이다. 수십년동안 서서히 계속되여오다가 드디여 1838년에야 끝난 영국 수방직공들의 몰락보다 더 처참한 광경은 세계력사상에 없다. 그들중 많은 사람이 굶어죽었으며 또 많은 사람이 장기간 가족들과 같이 하루에 $2\frac{1}{2}$ 펜스로 살아왔다.(198) 이와는 반대로 영국면방직기계는 동인

(198) 1834년 빈민구제법[345]실시이전에 영국에서 수직조와 기계직조사이의 경쟁이 오래 끌게 된것은 최저한도이하로 훨씬 떨어진 임금이 교구구제금으로 보충된 까닭이다. 《목사 터너씨는 1827년에 공업지방인 채셔의 윌름슬로의 교구장이였다. 이민위원회의 질문과 터너씨의 답변은 기계에 대한 손로동의 경쟁이 어떻게 유지되고있는가를 보여준다. 물음: 〈력직기의 사용이 수직기의 사용을 구축하지 않았는가?〉 대답: 〈확실히 그렇다. 만약 수직포공들이 임금인하에 동의할수 없었다면 그들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구축되였

도에 대하여서는 급성적인 영향을 일으켰다. 동인도총독은 1834~1835년에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이 재난이야말로 상업사상에 류례가 없을것이다.. 면방직공들의 해골은 인도의 벌판을 하얗게 만들었다.》

물론 이 직포공들은 자기의 짧은 일생에 리별을 고한것만큼 기계는 그들에게 《일시적인 불편》을 끼쳤을따름이다. 그런데 기계의 《일시적인》 작용은 기계가 새로운 생산분야를 부단히 점령하기때문에 영속적인것이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로동조건과 로동생산물에 로동자로부터 독립화하고 소외되는 모습을 부여하는데 이 모습은 기계의 발전과 함께 완전한 대립으로 발전한다.(199) 그러므로 기계의 출현과 함께 로동수단에 대한 로동자의 광포한 반항이 나타난다.

로동수단이 로동자를 죽인다. 물론 이 직접적대립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것은 새로 도입된 기계가 전통적인 수공업적생산 또는 공장제수공업적생산과 경쟁할 때이다. 그러나 대공업자체내부에서도 기계의 부단한 개량과 자동체계의 발전은 이와 류사한 작용을 한다.

《기계개량의 변함없는 목적은 손로동을 감소시키는것 또는 인적

올것이다.) 물음: (그런데 수직포공은 이에 동의하여 생계유지에 부족한 임금을 받고있는데 그것은 이 부족액을 교구의 기부로써 보충하려고 기대하고있는것이 아닌가?) 대답: (그렇다. 수직기와 력직기사이의 경쟁은 사실상 빈민구제세에 의하여 유지되고있다.) 그리하여 굴욕적인 적빈 또는 국외이주—이것이 직공들이 기계도입에서 얻는 리득인데 이 리득이란 결국 그들을, 존경을 받는 또 어느 정도 독립적인 수공업자의 처지에서 수치스러운 자선빵에 의지하는 비굴한 빈민으로 전락시키는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일시적불편) 이라는것이다.》 (《경쟁과 협동의 공과에 관한 현상론문》, 1834년 런던판, 29페지)

(199) 《나라의 순소득 (그것은 리카도가 같은 개소에서 설명하고있는바와 같이 지주와 자본가들의 소득인데 그들의 재부는 경제학적으로 고찰할 때 대체로 국가의 부와 같다.) 을 증대시키는 원인이 동시에 인구과잉을 조성하며 로동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된다.》 (리카도 《정치경제학 및 조세의 원리》, 469페지) 《모든 기계개량의 변함없는 목적과 경향은 인간로동을 아주 없이 하든가 또는 녀성로동 및 아동로동에 의한 성인남성로동자의 로동의 교체 또는 미숙련로동자에 의한 숙련로동자의 교체로써 로동의 가격을 저하시키는데 있다.》 (유어 (《공장철학》, 23페지))

장치를 철제장치로 교체함으로써 공장의 생산적련쇄의 어떤 고리를 완성하는데 있다.》(200) 《이전에 손으로 움직이던 기계에 증기력과 수력을 응용하는것은 매일과 같이 볼수 있다.…원동력의 절약, 생산물의 개량, 동일한 시간내에서의 생산의 증대 또는 한 아동, 한 녀성, 한 남성 등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의 비교적 사소한 개량은 부단히 진행되고있는데 그것은 일견 그다지 중요한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고있다.》(201) 《어떤 작업에 숙련된 기능과 확실한 손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 작업은 기능이 많은, 종종 규칙을 어기기 쉬운 로동자로부터 될수 있는대로 속히 떼내여 아동으로도 능히 감시할수 있을만큼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특수한 기계장치에 넘겨준다.》(202) 《자동체계하에서는 로동자의 재능은 점점 구축된다.》(203) 《기계의 개량은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기에 필요한 종업성인로동자의 수를 감소시킬뿐만아니라 한 부류의 인간로동을 다른 부류의 인간로동으로 즉 숙련도가 높은자를 숙련도가 낮은자로, 성인을 아동으로, 남성을 녀성으로 교체한다. 이 모든 변화는 임금률의 부단한 변동을 일으킨다.》(204) 《기계는 성인을 끊임없이 공장밖으로 내쫓는다.》(205)

실천적경험의 축적과 기계적수단의 이미 있는 규모와 기술의 부단한 진보에 의한 기계체계의 비상한 탄력성은 단축

---

(200) 《공장감독관보고. 1858년 10월 31일》, 43페지.

(201) 《공장감독관보고. 1856년 10월 31일》, 15페지.

(202) 유어 《공장철학》, 19페지. 《벽돌공장들에서 사용되는 기계의 큰 장점은 그 사용자들로 하여금 전혀 숙련공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데 있다.》(《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5차보고》, 1866년 런던판, 130페지, 제46호)

제2판에 대한 보충: 대북부철도회사의 기계부장 A. 스터로크씨는 기계제작(기관차 등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값비싼 영국인로동자의 사용은 매일 감소되고있다. 생산은 개량된 도구의 사용에 의하여 증가되고있으며 또 이 도구는 보다 저급한 부류의 로동자들에 의하여 조작된다.…이전에는 증기기관의 모든 부분들이 숙련로동에 의하여 생산되지 않을수 없었다. 지금은 동일한 부분들이 그리 숙련되지 않은 로동에 의하여 그러나 우수한 도구로써 생산된다.…내가 도구라고 하는것은 기계제작에 사용되는 기계를 말한다.》(《칙명철도위원회. 증언》, 1867년 런던판, 제17862호와 제17863호)

(203) 우와 같은 책, 20페지.

(204) 우와 같은 책, 321페지.

(205) 우와 같은 책, 23페지.

된 로동일의 압력하에서의 기계체계의 급속한 발전이 보여주었다.① 그렇지만 영국의 면방직업이 절정에 달하였던 1860년에 과연 누가, 그후 3년간의 미국남북전쟁[8]의 자극을 받아 일어난 기계의 비약적개량과 그에 따르는 손로동의 구축을 예견할수 있었겠는가? 이 점에 관하여는 영국공장감독관들의 공식자료중에서 몇개 실례를 들면 충분할것이다. 만체스터의 한 공장주는 이렇게 말하고있다.

《75대의 소면기 대신에 우리는 지금 12대만 사용하고있는데 그것으로 동일한 량의 제품을, 질적으로도 이전만 못지 않은 지어는 더 훌륭한 제품을 생산하고있다.…임금의 절약은 주 10파운드에 달하며 솜찌끼의 절약은 10%에 달한다.》

만체스터의 한 가는실방적공장에서는

《운전속도를 높이고 각종 자동과정을 도입함으로써 한 부문에서는 로동자인수가 $\frac{1}{4}$, 다른 한 부문에서는 $\frac{1}{2}$이상 배제되였는데 한편 제2소면기를 대신한 정소면기는 이전에 소면실에서 일하던 직공들의 수를 대단히 감소시켰다.》

또 한 방적공장에서는 《일손》의 전반적절약을 10%로 계산하고있다. 만체스터의 길모회사 방적업주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새 기계에 의하여 우리 송풍실에서 얻은 일손과 임금의 절약은 $\frac{1}{3}$이 잘되며…권사기실과 련조기실에서는 비용과 일손에 있어서 약 $\frac{1}{3}$이 절약되며 방사실에서는 비용이 약 $\frac{1}{3}$이 절약된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방사는 그것이 직포업주의 손으로 들어가기까지 새 기계의 사용에 의하여 대단히 개량되므로 그들은 낡은 기계방사로 생산하던것보다 더 좋고 또 더 많은 직물을 생산한다.》(206)

(206) 《공장감독관보고. 1863년 10월 31일》, 108페지이하.

① 이 책 476~480페지를 보라. —편집자

공장감독관 A. 레드그레이브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아 지적하고있다.

《생산은 증가되면서 로동자의 수는 급속히 감소되고있다. 최근 양모방직공장들에서는 일손의 새로운 감소가 시작되였는데 그것은 아직도 계속되고있다. 며칠전에 로치데일부근에 사는 어떤 교원이 나에게 말한바에 의하면 녀학교들에서 학생이 많이 감소된것은 공황의 압력에만 기인하는것이 아니라 양모방직공장들에서의 기계의 개량에도 기인하는데 이때문에 대략 70여명의 반일공들이 감소되였다.》(207)

다음표[347]는 미국의 남북전쟁으로 말미암아 영국면방직업에서 일어난 기계개량의 총결과를 보여준다.

공 장 수

	1856년	1861년	1868년
잉글랜드 및 웨일즈	2,046	2,715	2,405
스코틀랜드	152	163	131
아일랜드	12	9	13
련합왕국	2,210	2,887	2,549

증 기 직 기 수

잉글랜드 및 웨일즈	275,590	368,125	344,719
스코틀랜드	21,624	30,110	31,864
아일랜드	1,633	1,757	2,746
련합왕국	298,847	399,992	379,329

(207) 《공장감독관보고. 1863년 10월 31일》, 109페지. 면화공황시기의 기계의 급속한 개량은 영국공장주들로 하여금 미국남북전쟁후 순식간에 그 상품으로 세계시장을 다시 범람시킬수 있게 하였다. 직물은 이미 1866년 하반기에 이르러 거의 팔리지 않게 되였다. 그리하여 중국과 인도에로의 상품위탁판매가 시작되였는데 이것이 물론 《공급과잉》을 일층 심하게 하였다. 1867년초에 공장주들은 그들의 상투적구급책으로서 임금을 5% 인하하였다. 로동자들은 이를 반대하여 유일한 구제책은 로동시간의 단축 즉 매주에 4일간 로동하는것이라고 선언하였다.(이것은 리론상 아주 정당한것이다.) 오랜 항쟁끝에 자칭산업지휘관이란 자들은 부득불 이에 동의하지 않을수 없었다. 약간의 지방들에서는 임금을 5% 인하하고 다른 지방들에서는 인하하지 않았다.[346]

	방 추 수		
잉글랜드 및 웨일즈	25,818,576	28,352,125	30,478,228
스코틀랜드	2,041,129	1,915,398	1,397,546
아일랜드	150,512	119,944	124,240
련합왕국	28,010,217	30,387,467	32,000,014

	종 업 원 수		
잉글랜드 및 웨일즈	341,170	407,598	357,052
스코틀랜드	34,698	41,237	39,809
아일랜드	3,345	2,734	4,203
련합왕국	379,213	451,569	401,064

그리하여 1861년부터 1868년까지에 338개의 면방직공장이 없어졌다. 즉 보다 생산적이며 보다 규모가 큰 기계들이 보다 소수의 자본가들의 수중에 집중되였다. 증기직기수는 20,663대 감소되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 생산물은 증가되였다. 따라서 한대의 개량된 직기는 이제는 구식직기보다 더 많이 생산하게 된것이다. 끝으로 방추수는 1,612,547개 증가되였는데 한편 종업로동자수는 50,505명 감소되였다. 따라서 면화공황에 의한 로동자들의 《일시적》 빈궁은 기계의 급속하고 부단한 진보에 의하여 격화되고 지속되였다.

그러나 기계는 임금로동자를 《과잉》하게 만들 준비가 언제나 되여있는 우세한 경쟁자로서만 작용하는것은 아니다. 자본은 그것을 임금로동자들에게 적대되는 힘으로서 소리높이 또 의식적으로 선언하며 또 그렇게 리용한다. 그것은 자본의 전제를 반대하는 로동자들의 주기적 폭동, 파업 등등을 진압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무기로 된다.(208) 개스켈에 의하

---

(208) 《납유리 및 유리병 제조업에서의 고용주와 로동자와의 관계는 만성적파업이다.》 이때문에 주요작업들이 기계에 의하여 수행되는 압착유리공장제수공업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뉴카슬의 한 회사는 불어서 만드는 납유리를 이전에는 년 350,000폰드 생

면 중기기관은 처음부터 《인력》의 적수[348]이며 그것은 자본가들로 하여금 겨우 발족하기 시작한 공장제도를 위기에 떨어뜨릴수 있는 로동자들의 증대하는 요구를 분쇄할수 있게 하였다.(209) 그리하여 로동자들의 폭동을 진압하는 자본의 무기라는 단 한가지 목적에서 출현한 1830년이래의 많은 발명들에 대하여서는 옹근 한권의 력사를 쓸수 있을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동식물방적기를 상기한다. 그것은 이 방적기가 자동체계의 새시대를 열어놓았기때문이다.(210)①

중기망치의 발명자 네이즈미스는 로동조합조사위원회에서 한 그의 증언에서 1851년 기계로동자들의 장기간에 걸친 대파업의 결과로 그가 도입한 기계의 개량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우리의 현대적기계개량의 특징은 자동식도구기의 도입이다. 이제는 기계로동자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로동하는것이 아니고 기계의 훌륭한 작업을 감시하는것인데 이것은 소년도 누구나 할수 있다. 이제는 오로지 자기의 기능에만 의존하는 로동자부류는 아주 배제되였다. 이전에 나는 기계공 1명에 4명의 소년을 사용하였다. 이 새로운 기계결합의 덕택으로 나는 성인남성로동자의 수를 1,500명에서 750명으로 감소시켰다. 그 결과 나의 리윤은 현저히 증대하였다.》[351]

유어는 날염공장에서 사용되는 한 날염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드디여 자본가들은 과학적구제책에 호소함으로써 이 참을수 없는 노예상태 (즉 그들에게 귀찮은, 로동자와의 계약조건들) 에서 해방

산하였는데 지금은 그대신에 3,000,500폰드의 압착유리를 생산하고있다.(《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4차보고》, 1865년판, 262~263페지)

(209) 개스켈 《영국의 공업인구》, 1833년, 런던판, 34~35페지.[349]

(210) 페어배언씨는 그자신의 기계제작공장에서 일어난 파업의 영향하에 기계제작에서의 기계의 응용에서 약간의 극히 중요한 발명을 하였다.[350]

① 이 책 446~449페지를 보라. 一편집자

되려 하였으며 그리하여 얼마 안가 그들은 그들의 정당한 권리 즉 신체의 다른 부분들을 지배할 두뇌의 권리를 회복하였다.》

그는 파업에 의하여 직접 초래된, 씨실에 풀물을 먹이기 위한 한 발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낡은 분업전선의 뒤에서 자신을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하였던 불평분자들의 일당은 현대적기계전술에 의하여 자기들의 측면이 포위되여 자기들의 방어수단이 무력하게 되였음을 알았다. 그들은 무조건 항복할수밖에 없게 되였다.》

그는 자동식물방적기의 발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그것은 로동계급내에 질서를 회복할 사명을 지닌것이였다.…이 발명은 이미 우리가 전개한 학설 즉 자본은 과학을 자기에게 복무하게 함으로써 언제나 반역적인 로동자들로 하여금 순종하기 않을수 없게 한다는것을 확증한다.》(211)

유어의 저작은 1835년 즉 공장제도의 발전이 아직 비교적 미약하던 시기에 나온것이지만 그것은 그 저작의 솔직한 키니크주의[96]때문에만이 아니라 그가 자본의 두뇌의 엉터리없는 모순을 입밖에 내고있는 그 소박성때문에도 의연히 공장정신의 고전적표현으로 되고있다. 그는 례컨대 자본은 그가 고용한 과학의 방조로 《언제나 반역적인 로동자들로 하여금 순종하지 않을수 없게 한다.》는 《학설》을 전개한후에

《기계물리학이 부유한 자본가들의 전제에 복무하며 빈궁한 계급들의 억압수단으로 된다고 어떤 방면으로부터 비난당한》데 대하여 분개하고있다.

그는 기계의 급속한 발전이 로동자들에게 얼마나 유리한가를 장황하게 설교한후에 로동자들에게 그들의 반항, 파업

---

(211) 유어 《공장철학》, 367~370페지.

등등이 기계의 발전을 촉진시킨다고 경고하고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있다.

《그와 같은 란폭한 반항은 인간의 가장 천시할 근시안적성격 즉 인간을 자기자신의 교형리로 되게 하는 그러한 근시안적성격을 표시한다.》

몇페지앞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로동자들의 그릇된 견해에 기인한 격렬한 충돌과 중단이 없었더라면 공장제도는 훨씬 더 빨리 발전하였을것이며 모든 관계자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였을것이다.》

다음에 그는 다시 부르짖었다.

《대브리텐의 공장지대의 주민에게 다행하게도 기계개량은 점차적으로만 일어났다.》

그는 계속 이렇게 말하고있다.

《기계가 성인들의 일부를 구축하여 그들의 수가 로동에 대한 수요를 룡가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로임을 저하시킨다고 기계를 비난하는것은 부당하다. 사실 기계는 아동로동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며 그리하여 **아동로동**의 임금률을 높인다.》

한편 이 위로자는 아동임금이 낮은것을 변호하여 《그때문에 부모들은 자식들을 너무 어려서부터 공장에 보내는것을 삼가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그의 저서전체가 무제한한 로동일의 변명서에 불과하다. 그리고 립법이 13세의 아동을 하루에 12시간이상 로동시키는것을 금지한다면 그의 자유주의적정신은 이것을 중세기의 가장 암흑한 시대와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공장로동자들에게, 기계에 의하여 《그들의 불멸의 리익에 관하여 깊이 생각할 여가를 만들어주신》 하느님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도록 권고하고있다.(212)

---

(212) 유어 《공장철학》, 368, 7, 370, 280, 321, 322, 281, 475페지.

6. 기계에 의하여 구축되는 로동자들에 관한 보상리론

제임즈 밀, 머칼러크, 토런즈, 씨니어, 죤 스튜어트 밀 등등과 같은 많은 자산계급적경제학자들은 로동자들을 구축하는 모든 기계들이 항상 그와 동시에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와 같은 수의 로동자들을 취업시킬만한 자본을 유리시킨다고 주장한다.(213)

한 자본가가 례컨대 도배지수공업공장에서 100명의 로동자를 고용하는데 매개 로동자가 년 30파운드를 받는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자본가가 1년간에 지출하는 가변자본은 3,000파운드가 된다. 이 자본가가 50명의 로동자를 해고하고 나머지 50명을 사용하여 그가 1,500파운드로 사들인 기계를 조종하게 한다고 하자. 간단히 하기 위하여 우리는 건물, 석탄 등등은 도외시한다. 또 매년 소비되는 원료에는 이전대로 3,000파운드가 든다고 가정하자.(214) 이 변태에 의하여 얼마만한 자본이 《유리》 되겠는가? 낡은 경영방식하에서는 지출총액 6,000파운드가 절반은 불변자본, 절반은 가변자본으로 되여있었다. 이제는 그것이 4,500파운드의 불변자본(원료에 3,000파운드, 기계에 1,500파운드)과 1,500파운드의 가변자본으로 되여있다. 자본의 가변부분 즉 산로동력으로 전화된 부분은 이제는 총자본의 절반이 아니라 다만 $\frac{1}{4}$이다. 여기에

---

(213) 리카도는 처음에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있었으나 후에 그의 특징으로 되는 과학적공정성과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써 이러한 견해를 포기하였다. 《정치경제학 및 조세의 원리》, 제31장 《기계에 관하여》 를 보라.

(214) 주의: 나는 우에서 든 경제학자들과 꼭같은 방식으로 례를 들고있다.

서는 자본의 유리가 생기는것이 아니라 이제는 로동력과 교환되지 않는 형태에서의 자본의 구속이 즉 가변자본의 불변자본으로의 전화가 생긴다. 이제는 이 6,000파운드의 자본은 다른 조건들이 변함없다면 50명이상의 로동자를 고용할수 없다. 기계가 개량될 때마다 자본이 고용하는 로동자는 적어진다. 만약 새로 도입되는 기계에 드는 비용이 그 기계에 의하여 구축되는 로동력과 로동도구의 가치총액보다 적다면 례컨대 1,500파운드가 아니라 다만 1,000파운드라면 1,000파운드의 가변자본이 불변자본으로 전화 또는 구속되고 500파운드의 자본이 유리될것이다. 년임금이 이전과 같다고 가정하면 50명의 로동자가 해고되였을 때 이 자본은 약 16명의 로동자를 고용할만한 기금으로 된다. 기실은 이 로동자수는 16명보다 훨씬 적다. 왜냐하면 이 500파운드가 자본으로 전화하기 위하여서는 그 일부가 불변자본으로 전화되여야 하며 따라서 일부분만을 로동력으로 전화시킬수 있기때문이다.

그리고 또 새로운 기계의 제작에 많은 수의 기계공을 취업시킨다고 가정하자. 그래도 그것이 가두에 내쫓긴 도배지제조공들에 대한 보상으로 될수 있겠는가? 기계제작에 사용되는 로동자는 아무리 많아도 새 기계사용으로 말미암아 쫓겨나는 로동자보다 적다. 전에는 해고된 도배지제조공들의 임금만을 대표하던 1,500파운드의 금액은 이제 와서는 기계의 형태로 1) 기계제작에 필요한 생산수단의 가치, 2) 기계를 제작하는 기계공들의 임금, 3) 그들의 《주인》에게 돌아가는 잉여가치를 대표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기계는 한번 제작된후에는 그것이 사멸할 때까지 갱신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추가적인 기계공들이 계속 취업할수 있기 위해서는 도배지공장주들은 련속적으로 기계에 의하여 로동자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실 상술한 변호론자들도 이러한 자본의 유리를 말하고 있는것은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것은 유리된 로동자들의 생활수단이다. 례컨대 우에서 든 경우에서 기계는 50명의 로동자들을 유리시킴으로써 그들을 《자유로 리용할수 있게》 만들뿐만아니라 동시에 그들과 1,500파운드 가치의 생활수단과의 련계도 단절하고 그리하여 이 생활수단을 《유리》시킨다는것을 부정할수 없다. 그리하여 기계가 로동자를 생활수단으로부터 유리시킨다는 단순하고 또 조금도 신기하지 않은 사실이 경제학자들의 말로 표현될 때에는 기계가 로동자를 위한 생활수단을 유리시킨다든가 또는 기계가 생활수단을 로동자를 사용하기 위한 자본으로 전화시킨다든가 하는것으로 된다. 요컨대 이 모든것은 표현방식에 달렸다. 흉도 말로 가리워진다.[352]

이 리론에 의하면 1,500파운드의 가치의 생활수단은 50명의 해고된 도배지제조공의 로동에 의하여 증식된 자본이였다. 따라서 이 자본은 50명의 사람이 해고되자마자 할 일이 없어지며 또 이 50명의 로동자에 의하여 다시 생산적으로 소비될수 있는 새로운 《투자시장》이 발견될 때까지는 안정할수 없다. 그리하여 자본과 로동자는 조만간 다시 결합되여 그때에 보상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계에 의하여 쫓겨나는 로동자들의 고통은 이 세상의 부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인것이다.

1,500파운드의 생활수단은 해고된 로동자들에게 결코 자본으로서 대립하지 않았다. 자본으로서 그들에게 대립하였던것은 지금 기계로 전화된 1,500파운드였다. 더 세밀히 고찰하여본다면 이 1,500파운드는 해고된 50명의 로동자들에 의하여 1년간에 생산된 도배지의 일부분만을 대표하였으며 그

들은 이것을 현물형태로가 아니라 화폐형태로 자기들의 고용주로부터 임금으로서 받았던것이다. 그들은 1,500파운드로 전화된 이 도배지로 동일한 금액의 생활수단을 구매하였다. 그러므로 이 생활수단은 그들에 대하여 자본으로서 존재한것이 아니라 상품으로서 존재하였으며 그들자신은 이 상품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로동자가 아니라 구매자였다. 기계가 그들을 구매수단에서 《유리》시킨 사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매자로부터 비구매자로 전화된다. 그렇기때문에 이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였다. 그저 이럴뿐이다. 만약 수요의 이러한 감소가 어떤 다른 방면으로부터의 수요의 증대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는다면 그 수요가 감소된 상품의 시장가격은 떨어진다. 만약 이것이 비교적 오래 그리고 광범히 계속된다면 그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로동자들의 해고가 발생한다. 이전에 필요생활수단을 생산하고있던 자본의 일부가 이제는 다른 형태로 재생산될것이다. 시장가격이 떨어지고 자본이 이동하는 동안에 필요생활수단의 생산에 종사하던 로동자들도 또한 그 임금의 약간의 부분으로부터 《유리》될것이다. 그리하여 변호론자 제씨는 기계가 로동자들을 생활수단에서 유리시킴으로써 동시에 이 생활수단을, 로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한 자본으로 전화시킨다는것을 증명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들의 훌륭한 수요공급의 법칙으로써 기계는 그것이 도입되는 생산부문에서뿐만아니라 그것이 도입되지 않는 생산부문들에서도 로동자들을 가두에 내던진다는것을 증명하고있는것이다.

경제학적락관주의에 의하여 외곡된 현실적사태는 다음과 같다. 기계에 의하여 구축되는 로동자들은 작업장에서 로동시장으로 내쫓기며 거기에서 자본이 마음대로 착취할수 있는

로동력의 수를 증가시킨다. 여기에서 로동계급에 대한 보상으로 묘사되고있는 기계의 이러한 작용은 사실상 로동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채찍으로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7편에서 보게 될것이다.① 여기에서는 다만 다음과 같은것만을 지적해 두기로 한다. 물론 한 산업부문에서 내쫓긴 로동자들은 어떤 다른 부문에서 일자리를 얻을수도 있다. 그들이 일자리를 발견하고 그리하여 그들과 함께 유리된 생활수단과 그들과의 련계가 다시 회복된다면 이것은 투자할 곳을 찾고있는 새로운 추가자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것이지 이미 이전에 기능하였고 현재는 기계로 전화된 자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그렇다 해도 그들의 전도는 얼마나 암담한가! 분업으로 말미암아 불구자로 된 이 가련한 사람들은 자기의 이전 로동범위를 나서면 거의 가치가 없으므로 그들은 약간의 좀 낮은, 언제나 사람이 넘어나고있으며 임금이 적은 로동부문에서만 채용될수 있다.(215) 또 매개 산업부문은 매년 새로운 사람들의 흐름을 흡수하는데 이 흐름이 그 부문에 규clr적인 보충과 장성에 필요한 인원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일정한 산업부문에 취업하고있던 로동자들의 일부를 기계가 유리시키면 보충인원들도 새로 재분배되여 다른 로동부문에 흡수되는데 최초의 희생자들은 그 대부분이 과도기에 령락하고 멸망한다.

---

(215) 이 점에 관하여 리카도학파의 한사람은 J. B. 쎄의 어리석은 말을 반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분업이 발달하면 로동자들의 기능은 그들이 기능을 배운 그 특수부문에서만 응용될수 있다. 로동자자신이 일종의 기계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은 원래 자체의 수준을 찾아내는 경향이 있다고 앵무새처럼 지껄여댔자 아무 소용도 없다. 주위를 살펴보면 우리는 사물이 오래동안 그 수준을 찾아내지 못하며 또 찾아낸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과정의 초기보다 낮아졌다는것을 보게 된다.》(《수요의 성질…에 관한 원리의 연구》, 1821년, 런던판, 72페지)

---

① 이 책 735~736페지를 보라. —편집자

기계 그자체는 로동자를 생활수단에서 《유리》시키는데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것은 조금도 의심할바없다. 기계는 그것이 점령하는 부문에서 생산물을 값싸게 하고 또 증가시키지만 다른 산업부문들에서 생산되는 생활수단의 량은 처음에는 변화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년생산물중 비로동자들이 랑비하는 거대한 부분을 도외시한다면 기계도입후에도 도입전과 마찬가지로 사회에는 배제된 로동자들을 위한 생활수단이 동일한 량으로 또는 더 많은 량으로 존재한다. 바로 여기에 경제학적변호론의 요점이 있다! 기계의 자본주의적응용과 분리시킬수 없는 모순과 적대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그것들은 기계자체로부터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기계의 자본주의적응용으로부터 발생하는것이기때문이다! 기계는 그자체로서 보면 로동시간을 단축시키는데 자본주의적으로 응용되면 로동일을 연장시키며 그자체로서는 로동을 헐하게 하는데 자본주의적으로 응용되면 로동강도를 제고하며 그자체로서는 자연력에 대한 인간의 승리인데 자본주의적으로 응용되면 인간을 자연력의 노예로 만들며 그자체로서는 생산자의 부를 증대시키는데 자본주의적으로 응용되면 생산자를 극빈자로 만드는 등등 때문에 자산계급적경제학자는 간단히 다음과 같이 언명한다. 기계를 그자체로서 고찰하면 이 명백한 모든 모순들은 평범한 현실의 외관에 지나지 않으며 또 이 모순들은 그자체로서는 따라서 리론상으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이 더할나위없이 명백히 증명된다고. 그리하여 그들은 이 이상 골을 더 쓰는것을 애석하게 생각할뿐만아니라 그들의 반대자가 어리석게도 기계의 자본주의적응용을 반대하여 싸우는것이 아니라 기계자체를 반대하여 싸우는것이라고 질책한다.

물론 기계의 자본주의적웅용에 일시적인 불편도 생긴다는것을 자산계급적경제학자는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면이 없는 메달이 어디 있는가! 그들에게는 기계의 자본주의적리용이외의 다른 리용이란 있을수 없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기계에 의한 로동자의 혹사는 로동자에 의한 기계의 혹사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기계의 자본주의적웅용의 진상을 폭로하는자는 기계의 웅용을 일반적으로 원하지 않는자이며 사회적진보의 적이다!(216) 이것은 유명한 살인범 빌 싸익스론법 꼭 그대로이다.

《배심원 제씨여, 물론 행상인들의 목은 잘리여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죄가 아니라 칼의 죄입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불편때문에 과연 우리는 칼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생각해보십시오! 칼이 없다면 농업과 수공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외과수술에서 치료에 도움을 주며 해부학자의 수중에서는 지식을 주고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즐거운 연회에서는 훌륭한 조수가 아닙니까? 칼을 폐지한다는것은 우리를 야만의 심연으로 떨어뜨리는것입니다.》(216a)

기계는 그것이 도입되는 로동부문들에서는 필연적으로 로동자들을 내쫓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른 로동부문들에서는 취업을 증가시킬수 있다. 그러나 이 작용은 소위 보상리론과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 온갖 기계생산물 례컨대 1엘레의 기계직물은 그것에 의하여 구축된 같은 종류의 수공생산물보

---

(216) 이러한 자고자대하는 천치의 능수는 특히 머칼러크이다. 례컨대 그는 여덟살먹은 어린애처럼 천진한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로동자의 기능을 더욱더 발전시켜 그가 이전과 동일하거나 또는 더 적은 로동량으로써 더욱더 많은 상품량을 생산할수 있게 되는것이 유익하다면 이러한 결과를 달성하는데 그를 가장 효과적으로 돕는 기계의 원조를 리용하는것도 역시 유익하지 않을수 없다.》(머칼러크 《정치경제학원리》, 1830년 런던판, 182페지)

(216a) 《방적기계의 발명자는 인도를 훼멸시켰는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래도 좋은 일이다.》(A. 띠에르 《재산에 관하여》〔275페지〕, 띠에르씨는 여기서 방적기계를 력직기와 혼동하고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래도 좋은 일이다.》

다 값싸기때문에 다음과 같은 절대적인 법칙이 나온다. 만약 기계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의 총량이 기계와 교체된 수공업적 또는 공장제수공업적제품의 총량과 같다면 사용되는 로동총량은 감소된다. 로동수단자체 즉 기계, 석탄 등등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의 증가는 기계의 사용에 의하여 초래되는 로동보다 적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다면 기계생산물은 수공생산물과 값이 동일하거나 지어는 더 비쌀것이다. 그러나 감소된 수의 로동자들이 생산한 기계제품의 총량은 구축된 수공업제품의 총량과 같은대로 있는것이 아니라 사실상으로는 오히려 훨씬 더 많아진다. 40만엘레의 기계직물이 10만엘레의 수공직물보다 더 적은 로동자들에 의하여 생산된다고 가정하자. 4배의 생산물에는 4배의 원료가 들어있다. 따라서 원료의 생산은 4배로 증대되지 않으면 안된다. 소비된 로동수단 례컨대 건물, 석탄, 기계 등등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추가적로동이 증대될수 있는 한계는 생산물의 량과 같은 수의 로동자에 의하여 생산될수 있는 수공생산물의 량간의 차이에 따라 변화한다.

이리하여 한 산업부문에서 기계적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우선 이 부문에 생산수단을 공급하는 부문들의 생산이 증대된다. 이로 말미암아 취업로동자의 수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가 하는것은 로동일의 길이와 로동강도가 주어진 경우에는 사용되는 자본의 구성 즉 그 불변적부분과 가변적부분간의 비률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비률은 또한 기계가 그 산업부문을 이미 점령한 정도나 또는 점령하고있는 정도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진다. 탄광과 광산에서 일하지 않을수 없는 운명에 처한 로동자들의 수는 영국에서 기계체계가 발전함에 따라 대단히 장성하였다.—물론 이 장성이 최근 수십년간에 새로운

기계들이 광업에 사용됨으로써 완만하게 되고있기는 하다.(217) 기계와 함께 새 종류의 로동자들 즉 기계의 생산자들이 나타난다. 우리는 기계적생산이 이 생산부문자체를 더욱더 대규모로 점령하고있는것을 이미 알고있다.(218)① 또한 원료에 관하여 말한다면(219) 례컨대 면방적업의 질풍같은 발전은 미국에서 면화재배를 대대적으로 촉진하였고 그와 함께 아프리카의 노예무역을 대대적으로 촉진하였을뿐만아니라 흑인사육을 이른바 경계노예 제 주의 주요한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아무 의심할바 없다. 1790년에 미국에서 제1차노예인구조사가 진행될 때에 노예의 수는 697,000명이였는데 1861년에는 벌써 약 400만에 달하였다.[354] 한편 기계제양모공장의 번영은 경지를 더욱더 양목장으로 전화시키는 동시에 농업로동자들의 대량적인 추방과 그들의 《과잉화》를 초래하였다는것도 또한 못지 않게 확실하다.② 아일랜드에서는 1845년이래 거의 절반 감소된 그 인구를 아일랜드의 대지주와 잉글랜드의 양모방직공장주 제씨의 요구에 정확하게 적합한 정도까지 더한층 감소시키는 과정이 오늘날에도 아직 진행되고있다.

---

(217) 1861년의 인구조사[353](1863년 런던판, 제Ⅱ권)에 의하면 일글랜드 및 웨일즈의 탄광에서 일하는 로동자수는 246,613명이였는데 그중 73,546명은 20세미만이고 173,067명은 20세이상이였다. 전자들중에는 5세 내지 10세가 835명, 10세 내지 15세가 30,701명, 15세 내지 19세가 42,010명이였다. 철, 동, 연, 석 및 기타 모든 광산들에서의 취업자수는 319,222명이였다.

(218) 1861년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기계의 생산에 종사한 인원은 60,807명이였는데 이 수자에는 그 사무원 등등과 또한 이 부문의 모든 대리인 및 상업종사자들도 포함되여있다. 이와는 반대로 재봉기 등등과 같은 소기계의 생산자 및 방추 등등과 같은 작업기용도구들의 생산자는 제외되여있다. 기사의 총수는 3,329명이였다.

(219) 철은 가장 중요한 원료의 하나인만큼 여기에서 지적해둔다면 1861년에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제철공은 125,771명이였는데 그중 123,430명은 남성이고 2,341명은 녀성이였다. 남성중 20세미만은 30,810명이였고 20세이상은 92,620명이였다.

---

① 이 책 441~442페지를 보라. 一편집자

② 이 책 832~841페지를 보라. 一편집자

만약 기계가, 로동대상이 그 최종적형태를 취하기까지에 통과하여야 할 초기단계 또는 중간적단계들을 점령한다면 기계제품이 가공되는, 아직 수공업적이거나 또는 공장제수공업적인 방식으로 경영되는 로동부문들에서는 로동재료와 함께 로동에 대한 수요가 증대한다. 례컨대 기계방적업이 방사를 아주 값싸게 또 풍부하게 제공하였기때문에 수직포공들은 최초에는 지출을 조금도 증대시키지 않으면서 충분한 시간을 리용하여 작업할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수입은 증대되였다.(220) 그때문에 로동자들은 면방직업에로 몰려들었는데 그 결과 례컨대 영국에서 젠니방적기, 스로슬방적기 및 뮬방적기로 말미암아 탄생한 80만명의 면방직공들은 다시 증기방직기로 말미암아 파멸하고말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계에 의하여 생산되는 옷감이 풍부하게 됨에 따라 남녀재봉공, 바느질녀공 등등의 수도 재봉기가 나타날 때까지 증가한다.

기계적생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로동자를 가지고 제공하는 원료, 반제품, 작업도구 등등의 량의 증대에 대응하여 이러한 원료, 반제품들의 가공이 무수한 아동들로 세분되며 그리하여 사회적생산부문이 더욱더 다양해진다. 기계적생산은 공장제수공업과는 비교도 안되리만큼 사회적분업을 촉진하는데 그것은 기계에 의하여 점령된 산업부문들의 생산력이 비교도 안되리만큼 높은 정도로 증대되기때문이다.

기계채용의 직접적결과는 기계가 잉여가치와 또 동시에 잉여가치를 표시하는 생산물량을 증대시키며 따라서 자본가계급과 그에 달려있는자들이 소비하는 물자와 함께 이 사회

---

(220) 《4명의 성인(면방직공)과 실감기를 하는 아동 2명을 가진 한 가족이 지난 세기말과 현세기초에 하루 10시간로동으로 매주 4파운드를 받았으며 일이 대단히 바쁠 때에는 더 많이 받을수 있었다.…이전에는 그들은 항상 방사의 공급부족으로 곤난을 겪고있었다.》(개스켈 《영국의 공업인구》, 24~26페지)

충자체를 증가시키는데 있다. 그들의 부의 장성과 필요생활수단생산에 필요한 로동자수의 부단한 상대적감소는 새로운 사치욕과 함께 그것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수단들을 산생한다. 사회적생산물의 더욱 큰 부분이 잉여생산물로 전화되며 잉여생산물의 더욱 큰 부분이 더욱더 섬세하고 다양한 형태로 재생산되고 소비된다. 다시말하면 사치품생산이 증대한다.(221) 생산물의 섬세성과 다양성은 대공업에 의하여 창조되는 새로운 세계시장관계에서도 생긴다. 더 많은 외국산기호품이 국내생산물과 교환될뿐만아니라 또한 더 많은 외국산원료, 재료, 반제품 등등이 생산수단으로서 국내산업에 들어온다. 이러한 세계시장 제 관계의 발전에 따라 운수업에서 로동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며 또한 운수업이 많은 새로운 아종들로 갈라진다.(222)

로동자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데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이 증대하는것은 운하, 선거, 차굴, 교량 등등과 같이 그 생산물이 비교적 먼 장래에야 성과를 가져오는 생산부문들에서의 로동의 확장을 촉진한다. 직접 기계적생산에 기초하든가 또는 그것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산업상 변혁에 기초하여 아주 새로운 생산부문들, 따라서 새로운 로동분야들이 형성된다. 그러나 그것들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발전한 나라들에서도 그다지 큰것은 아니다. 그 생산분야의 취업로동자수는 새로 생긴, 가장 거치른 손로동에 대한 수요와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현재 이러한 종류의 주요한 산업부문

---

(221) F. 엥겔스는 《영국로동계급의 형편》[1]에서 바로 이 사치품생산자의 대부분이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것을 지적하고있다. 이에 관한 새로운 례증들이 아동로동조사위원회의 보고에 많이 있다.

(222) 1861년에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상선승무원은 94,665명이였다.

으로 볼수 있는것은 가스제조업, 전신업, 사진업, 항해업 및 철도업이다. 1861년의 조사(잉글랜드 및 웨일즈에서의)에 의하면 가스공업(가스제조소, 기계장치의 생산, 가스회사의 사무소 등등)의 취업자는 15,211명이며[355] 전신업에서는 2,399명이며 사진업에서는 2,366명이며 항해업에서는 3,570명이며 철도업에서는 70,599명인데[356] 그중 약 28,000명은 비교적 고정되여있는 《미숙련》 토공, 관리인원 및 상업인원이다. 따라서 이 5개의 새로운 산업부문들의 종업원총수는 94,145명이다.

마지막으로 대공업분야에서의 생산력의 비상한 제고는 실제로 다른 모든 생산부문들에서의 로동력착취의 내포적 및 외연적 장성을 수반하는데 그것은 로동계급의 더욱더 많은 부분을 비생산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주며 그리하여 특히 종, 하녀, 하인 등등과 같은 《종복계급이라는 명칭하에 옛날의 가내노예를 더욱더 대량적으로 재생산할수 있게 한다. 1861년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총인구는 20,066,224명이였는데 그중 남자가 9,776,259명이였고 녀자는 10,289,965명이였다. 이 수에서 늙었거나 어려서 로동하기 부적당한자들, 모든 《비생산적》인 부녀 , 소년, 소녀, 아동들, 다음에는 관리, 목사, 법률가, 군인 등등과 같은 《의식형태적》 신분들, 그다음에는 지대, 리자 등등의 형태로 타인의 로동을 소비하는것을 전업으로 삼는 모든자들, 마지막으로 극빈민, 류랑자, 범죄자 등등을 제외한다면 각종 년령의 남녀 약 800만이 남는데 여기에는 생산, 상업, 금융 등등에서 이러저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자본가들도 포함되여있다. 이 800만중에서 다음의 각 부류에 다음과 같은 인수가 속한다.

농업로동자(가축사양인 및 차지농업가들의

집에서 사는 머슴과 하녀 포함)……1,098,216명
면, 양모, 소모사, 아마, 대마, 견, 황마 공장 및
기계제 양말, 레스 제조업의 전체 취업자……642,607명(223)[357]
탄광 및 광산의 전체 취업자……565,835명
모든 야금공장(용광로, 압연공장 등등) 및
각종 금속수공업공장의 취업자……396,998(224)[359]
종복계급……1,208,648명(225)

전체 섬유공장들의 취업자와 탄광 및 광산 취업자를 합하면 1,208,442명이 되며 전자와 모든 야금공장 및 금속수공업공장의 취업자를 합하면 총수는 1,039,605명이 되는데 어느 경우에나 다 현대의 가내노예들의 수보다 적다. 기계의 지본주의적응용의 결과는 얼마나 휘황한가!

7. 기계적생산의 발전에 따르는 로동자의 배척과 흡인. 면방직업에서의 공황

분별있는 정치경제학대표자들은 누구나 다 기계의 새로운 채용이 우선 기계의 경쟁대상으로 되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수공업과 공장제수공업의 로동자들에게 온역과 같이 작용한다는것을 인정한다. 그들은 거의 전부가 공장로동자들의 노예적처지를 개탄한다. 그런데 그들이 내놓은 으뜸패는 무

---

(223) 이중 13세이상의 남자는 177,596명에 불과하다.[358]

(224) 이중 녀자는 30,501명이다.

(225) 이중 남자는 137,447명이다. 개인들의 집에서 봉사하지 않는 일체 인원은 이 1,208,648명의 수자에서 제외되고있다.

제2판 주: 1861년에서 1870년까지 남성종복의 수는 거의 배로 되여 267,671명에 달하였다. 1847년에 수렵장지기(귀족의 수렵장을 위한)는 2,694명이였는데 1869년에는 4,921명이 되였다. 런던의 소시민가정들에서 부리는 젊은 하녀들을 항간에서 소노에 (《little slaveys》)라고 부른다.

엇인가? 기계의 도입기 및 발전기의 모든 공포 다음에는 기계는 로동노예의 수를 종국적으로 감소시키는것이 아니라 결국은 증가시킨다는것이다! 사실 이미 기계적생산에 기초한 공장조차 일정한 성장기가 지나간 다음에는 즉 길든짧든간에 《과도기》가 지나간 다음에는 그것이 시초에 가두에 내던진 것보다 더 많은 수의 로동자들을 고역시키게 된다는 혐오스러운 정리,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영원한 자연필연성을 믿고 있는 모든 《박애가》들에게까지도 혐오스러운 정리를 내놓고 정치경제학은 환성을 올린다!(226)

사실 몇몇 실례에서 례컨대 영국의 소모사공장과 견공장의 실례들에서 보여준바와 같이 일정한 발전정도에서는 공업부문들의 비상한 확대는 취업로동자수의 상대적감소뿐만아니라 절대적감소까지도 동반할수 있다.① 1860년에 의회의 명령으로 련합왕국의 전체 공장에 대한 특별조사가 실시되였었는데 당시 랭카셔, 체셔 및 요크셔의 공장지구들중에는 공장감독관 R. 베이커의 관할밑에 있는 공장이 652개였다. 그가

---

(226) 이와는 반대로 가닐은 기계적생산의 궁극적결과는 로동노예수의 절대적감소라고 인정한다. 그런데 그 수가 증대한 《점잖은 사람들》은 바로 이들을 희생으로 하여 생활해나가며 자기의 유명한 《완성될수 있는 완성능력》을 발전시킨다는것이다.[360] 가닐은 생산의 운동을 거의 리해하고있지 못하지만 적어도 기계의 채용이 취업로동자들을 구제하여야 할 극빈민으로 만들며 또한 기계의 발전이 그 기계에 의하여 격멸된것보다 더 많은 로동노예를 산생시킨다면 기계란 매우 불길한 물건이라는것을 느끼고있다. 그자신의 관점이 어리석다는것은 다음과 같은 그자신의 말이 가장 잘 표현하고있다. 《생산하고 소비할 운명을 지닌 계급들은 감소되고 로동을 관리하며 전체 주민에게 방조와 위안과 교육을 주는 계급들은 증가되며…그리고 그들은 로동지출의 감소, 생산물의 풍부 및 소비품의 낮은 가격 등에서 나오는 모든 재부를 점유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인류는 천재의 최고의 창조물에까지 자기를 끌어올리며 종교의 신비로운 심오한 지경에 도달하며 구제주의 도덕 (그것은 〈모든 재부를 점유하는것〉 등등임) 적준칙을 세우며 자유 (〈생산할 운명을 지닌 계급들〉 을 위한 자유?) 와 권력, 순종과 정의, 의무와 인간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들을 제정한다.》 이 잠꼬대는 Ch. 가닐씨의 《정치경제학의 제 체계에 관하여》, 1821년 빠리 제2판, 제1권, 224페지에 서술되여있는데 212페지를 참조하라.

① 이 책 478~479페지를 보라. 一편집자

운데 570개 공장은 증기직기 85,622대, 방추(연사방추를 제외하고) 6,819,146개, 증기기관 27,439마력, 수차 1,390마력, 취업자 94,119명을 가지고있었다. 그런데 1865년에는 동일한 공장들이 직기 95,163대, 방추 7,025,031개, 증기기관 28,925마력, 수차 1,445마력, 취업자 88,913명을 가지고있었다. 따라서 1860년부터 1865년까지의 기간에 이 공장들에서 증기직기는 11%, 방추는 3%, 증기마력은 5% 장성하였는데 그와 동시에 취업자수는 5.5% 감소하였다.(227) 1856년부터 1862년까지의 기간에 영국의 양모방직업이 현저하게 발전하였으나 취업로동자의 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것은 새로 채용된 기계들이 그 이전시기의 로동을 얼마나 많이 구축하였는가를 보여준다.》(228)

경험한 사실들에 의하면 공장로동자수가 증가한 경우에도 이 증가는 흔히 외관적인것에 불과하다. 즉 그 증가는 이미 기계적생산에 기초하고있는 공장의 확대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부속부문들의 점차적합병에 의하여 일어난것이다. 례컨대 1838~1856년기간에 력직기수와 그에 종사하는 공장로동자수의 증가는(영국의), 면방직공장에서는 전적으로 이 부문 기업소들의 확대에 의하여 일어난것인데 다른 공장들에서는

---

(227) 《공장감독관보고. 1865년 10월 31일》, 58페지이하 각 페지. 그러나 동시에 더 많은 수의 로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물질적기초도 구비되여있었다. 즉 11,625대의 증기직기, 628,576개의 방추, 2,695마력의 증기기관과 수차를 가진 110개의 새 공장들이 창설되였다.(우와 같은 곳)

(228) 《공장감독관보고. 1862년 10월 31일》, 79페지.

제2판에 대한 보충: 1871년 12월말에 공장감독관 A. 레드그레이브는 브랫포드에서 진술한 신기계학회에서의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얼마전부터 나의 주의를 끈것은 모방직공장들의 면모가 대단히 변한 사실이다. 이전에는 거기에 부녀들과 아동들로 꽉 차있었는데 지금은 기계가 모든 일을 하는것 같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 한 공장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전 제도하에서 나는 63명을 고용했는데 개량된 기계를 채용한후에는 직공수를 33명으로 줄였으며 또 최근에는 새로운 큰 변화로 말미암아 33명을 13명으로 줄일수 있게 되였다.〉》

이전에는 사람의 근육의 힘에 의하여 운전되던 모전직기, 리봉직기, 아마직기 등등에 증기력이 응용되기 시작한데서 일어난것이다.(229) 그리하여 이 공장로동자수의 증대는 취업로동자총수의 감소의 표현에 불과하였다. 끝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금속공장을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나 공장종업원중 대부분은 소년로동자(18세미만의), 부녀 및 아동들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나 누구나 알수 있는바와 같이 기계에 의하여 실지 구축되거나 또는 잠세적으로 교체될수 있는 로동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종류의 공장수의 증가 또는 이미 존재하는 공장들의 규모의 확대에 표현되는 기계적생산자체의 장성에 따라 공장로동자의 수는 결국 쫓겨난 공장제수공업로동자 또는 수공업자들의 수보다 더 많을수 있다. 례컨대 매주 사용되는 500파운드의 자본이 이전 생산방식하에서는 $\frac{2}{5}$가 불변적구성부분이고 $\frac{3}{5}$이 가변적구성부분이라고 하자. 즉 200파운드는 생산수단에 투하되고 300파운드는 로동력에ㅡ말하자면 로동자 1명당 1파운드씩ㅡ투하된다고 하자. 기계적생산의 발생과 함께 총자본의 구성은 변화한다. 이제는 이것이 례컨대 $\frac{4}{5}$의 불변자본과 $\frac{1}{5}$의 가변자본으로 나뉜다. 다시말하면 로동력에는 100파운드가 투하될뿐이다. 따라서 이전에 취업하고있던 로동자들의 $\frac{2}{3}$가 해고된다. 만약 그 공장생산이 확대되여 기타 생산조건이 변함없는데 사용된 총자본이 500파운드에서 1,500파운드로 증대된다면 이제는 산업혁명이전

(229) 《공장감독관보고. 1856년 10월 31일》, 16페지.[361]

과 동일한 300명의 로동자가 취업하게 될것이다. 만약 사용되는 자본이 더 커져서 2,000파운드로 된다면 400명의 로동자가 즉 이전 생산방식하에서보다 $\frac{1}{3}$ 더 많이 취업하게 될것이다. 취업로동자수는 절대적으로는 100명이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는 즉 선대된 총자본에 비하여서는 800명이 감소하였다. 왜냐 하면 이전 생산방식하에서는 2,000파운드의 자본이 400명이 아니라 1,200명의 로동자를 취업시켰을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로동자수의 상대적감소는 그 절대적증가와 량립할수 있다. 우리는 우에서 총자본은 증대하지만 생산조건이 변하지 않기때문에 자본의 구성은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있는바와 같이 사실에 있어서는 기계적생산이 발전할 때마다 기계, 원료 등등으로 구성되는 불변자본부분이 증대하고 로동력에 사용되는 가변자본부분은 감소한다. 또 동시에 우리가 알고있는바와 같이 다른 어떤 생산방식하에서도 그처럼 개량이 부단한 현상으로는 되지 않으며 따라서 총자본의 구성이 그처럼 변하지는 않는다.① 그런데 이 부단한 변화도 또한 부단히 휴식기에 의하여 또 주어진 기술적기초우에서의 순전한 량적확대에 의하여 중단된다. 그러므로 취업로동자의 수는 증가한다. 그리하여 레컨대 련합왕국의 면, 양모, 소모사, 아마 및 견 등 방직공장들에서의 로동자총수는 1835년에 354,684명에 불과하였는데 1861년에는 증기직기가 사용하는 직포공(8세이상의 극히 다양한 년령의 남녀)의 수만도 230,654명에 달하였다.[362] 물론 이 증대도 만약 1838년에 이미 잉글랜드에 면직물수직포공들과 그들과 함께 일하는 가족들을 합하여 80만명이나 있

① 이 책 449~453, 467~470, 476~480페지를 보라. —편집자

었다는것을 고려한다면(230) 그다지 대단한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세아와 구라파대륙의 구축된 수직포공들에 대하여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있다.

이 점에 관하여 우리는 약간의 설명을 더 하여야겠는데 그것도 우리의 리론적서술자체가 아직 취급하지 않은 순전히 사실적인 측면에 부분적으로 언급하려 한다.

기계적생산이 한 산업부문에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수공업 또는 공장제수공업을 희생으로 하여 확장되는 동안은 그 성공이 확실한데 이것은 례컨대 격발총으로 무장한 군대가 활로 무장한 군대를 상대하여 싸울 때 그 승리가 확실한것과 마찬가지이다. 기계가 처음으로 그 작용범위를 전취하는 그 첫시기는 기계의 도움으로 생산되는 비상히 높은 리윤으로 하여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리윤자체는 자본의 가속도적축적의 원천으로 될뿐만아니라 부단히 새로 형성되고 새로운 투자장소를 찾고있는 사회적추가자본의 현저한 부분을 이 유리한 형편에 있는 생산분야로 끌어들인다. 질풍노도의 첫시기의 특별한 리득은 기계가 새로 채용되는 생산부문들에서 부단히 거듭 나타난다. 그러나 공장제도가 어느 범위까지 보급되고 일정한 성숙정도에 도달할 때 특히 공장제도에 고유한 기술적기초인 기계자체가 또한 기계에 의하여 생산되기 시작할 때, 석탄과 철의 채취 및 금속가공과 운수업에서 혁명이 수행될 때, 요컨대 대공업에 상응하는 일반적생산조건이 확립될 때, 그때에 이 생산방식은 탄력성을 즉 돌발적이

---

(230) 《수직포공들 (면직 및 면혼방직) 의 고난은 칙명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비록 그들의 곤궁이 인정되고 동정을 사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형편의 개선 (!) 은 우연과 시세의 변환에 맡겨졌다. 그리하여 이 고통이 지금 (20년후에!) 거의 제거되였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아마 틀림없이 오늘날의 증기직기의 대단한 보급에 의하여 촉진된것이라고 생각된다.》 (《공장감독관보고. 1856년 10월 31일》 , 15페지.)

며 비약적인 확대능력을 획득하며 다만 원료와 판매시장만이 이에 대하여 제한한다. 한편 기계는 레컨대 조면기가 면화의 생산을 증대시킨것처럼 원료의 량의 증대를 직접 초래한다.(231) 다른 한편 기계생산물의 가격이 싼것과 운수교통기관에서의 변혁은 외국시장을 전복하기 위한 무기로 된다. 기계적생산은 외국시장에서 수공업적생산물을 파멸시킴으로써 이 시장을 강제적으로 자기의 원료생산지로 만든다. 그리하여 레컨대 동인도는 대브리텐을 위하여 면화, 양모, 대마, 황마, 쪽 등을 생산하도록 강요당하였다.(232) 대공업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로동자들의 부단한 《과잉화》는 국외이주와 외국의 식민지화를 촉진하는데 이러한 외국은 레컨대 오스트랄리아가 양모생산지로 전화되듯이 종주국을 위한 원료생산지로 전화된다.(233) 기계적생산의 주요한 중심지에 대응하는 새로

---

(231) 기계가 원료의 생산에 영향을 주는 다른 방법들은 제3권에서[180] 서술할것이다.

(232)

동인도에서 대브리텐에로의 면화수출

1846년	34,540,143폰드
1860년	204,141,168폰드
1865년	445,947,600폰드

동인도에서 대브리텐에로의 양모수출

1846년	4,570,581폰드
1860년	20,214,173폰드
1865년	17,105,617폰드

(233)

카입타운에서 대브리텐에로의 양모수출

1846년	2,958,457폰드
1860년	16,574,345폰드
1865년	29,920,623폰드

오스트랄리아에서 대브리텐에로의 양모수출

1846년	21,789,346폰드
1860년	59,166,616폰드
1865년	109,734,261폰드

운 국제적분업이 조성되며 이에 따라 지구의 어떤 부분은 공업을 주로 하는 생산지역인 지구의 다른 부분을 위한 농업을 주로 하는 생산지역으로 전화된다. 이러한 혁명은 농업에서의 변혁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여기서는 더 상세히 론하지 않기로 한다.(234)

1867년 2월 18일에 영국하원은 글래드스턴씨의 제의에 따라 1831년부터 1866년까지의 기간에 각종 식량 즉 알곡과 밀가루에 대한 련합왕국의 수출입정형통계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아래에 이 통계자료의 개괄적내용을 인용한다. 밀가루는 쿼터단위의 알곡으로 환산되여있다.[363] (620 페지의 도표를 보라.)

---

(234) 미국의 경제적발전자체가 구라파 특히 영국의 대공업의 산물이였다. 그의 오늘의 모습에서는(1866년) 미국은 아직 구라파의 식민지로 보아야 한다. {제4판 주: 그때로부터 미국은 세계에서 두번째가는 공업국으로 발전하였다. 그렇지만 그 식민지적성격이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 —F. E.}

미국에서 대브리텐에로의 면화수출(단위 폰드)

1846년	401,949,393
1852년	765,630,544
1859년	961,707,264
1860년	1,115,890,608

미국에서 대브리텐에로의 곡물수출(단위 헌드레드웨이트)

	1850년	1862년
밀	16,202,312	41,033,503
보리	3,669,653	6,624,800
귀밀	3,174,801	4,426,994
호밀	388,749	7,108
밀가루	,3,819,440	7,207,113
메밀	1,054	19,571
옥수수	5,473,161	11,694,818
Bere 또는 Bigg(보리의 일종)	2,039	7,675
완두	811,620	1,024,722
두류	1,822,972	2,037,137
합계	35,365,801	74,083,441

매 5년과 1866년

	1831–1835	1836–1840	1841–1845	1846–1850	1851–1855	1856–1860	1861–1865	1866
년평균수입 (쿼터)	1,096,373	2,389,729	2,843,865	8,776,552	8,345,237	10,913,612	15,009,871	16,457,340
년평균수출 (쿼터)	225,263	251,770	139,056	155,461	307,491	341,150	302,754	216,218
년평균수입 초 과	871,110	2,137,959	2,704,809	8,621,091	8,037,746	10,572,462	14,707,117	16,241,122
매시기 년평균 인구	24,621,107	25,929,507	27,262,569	27,797,598	27,572,923	28,391,544	29,381,760	29,935,404
국내생산을 초과하는 인구 1인당 년평균 곡물 소비량 (쿼터)	0.036	0.082	0.099	0.310	0.291	0.372	0.501	0.543

공장제도의 거대한 비약적인 확장력과 세계시장에 대한 그 의존성은 필연적으로 열병적인 생산과 그에 따르는 시장의 범람을 일으키며 시장이 수축하면 마비상태가 나타난다. 산업의 생활은 중등정도의 활기, 번영, 과잉생산, 공황, 정체의 제 시기의 순차적계렬로 전화된다. 기계적생산하에서의 로동자의 취업과 따라서 생활형편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산업순환의 이러한 주기적교체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정상적인 현상으로 된다. 번영기를 제외하고는 자본가들사이에 시장에서의 자기의 몫을 위한 극히 맹렬한 투쟁이 벌어진다. 시장에서의 그들의 몫은 생산물이 얼마나 값싼가에 정비례한다. 이때문에 로동력과 교체되는 개량된 기계와 새로운 생산방법들을 사용하려는 경쟁이 일어나는외에 어느 순환에서나 임금을 로동력의 가치보다 낮게 강제적으로 인하함으로써 상품을 값싸게 하려고 애쓰는 시각이 나타난다.(235)

---

(235) 1866년 7월 레스터의 제화공장주들에게 《동맹휴업》으로 하여 가두에 쫓겨난 로동자들이 《영국로동조합》에 보내는 호소문에는 특히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약 20년전에 레스터의 제화업에서는 실로 꿰매지 않고 못을 치는 방법이 채용됨으로써 변혁이 일어났다. 당시에는 괜찮게 임금을 벌수 있었다. 얼마 안가 이 재로운 영업은 대단히 확장되였다. 여러 회사들간에 가장 훌륭한 상품을 생산하려는 맹렬한 경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곧 얼마후에 악성경쟁이 시작되였다. 즉 시장에서 서로 남보다 값싸게 팔려는 경쟁이 벌어졌다. 그 해로운 결과는 곧 임금인하로 나타났으며 로동의 가격은 급속히 떨어져 많은 회사들은 이제는 최초의 임금의 절반밖에 지불하지 않고있다. 그러나 비록 임금은 더욱더 떨어지고있지만 임금률에 변경이 있을 때마다 리윤은 증대하는것 같다.》 —산업의 불경기시기까지도 리용하여 공장주들은 과도하게 임금을 인하함으로써 즉 로동자의 필요생활수단을 직접 절취함으로써 거액의 리윤을 얻는다. 한가지 례를 들어보자. 코벤트리에서의 견직업공황에 관한 실례이다. 《공장주와 로동자들에게서 받은 보고에 의하면 의심할바없이 임금이 외국생산자들의 경쟁과 기타 사정들로 말미암아 불가피하였던것보다 더 심하게 인하되였다. 대다수의 직포공들은 30% 내지 40% 인하된 임금을 받고 일하고있다. 직포공은 리봉 한개에 5년전에는 6 또는 7실링을 받았는데 지금은 겨우 3실링 3펜스 내지 3실링 6펜스를 받으며 전에는 4실링 내지 4실링 3펜스를 지불하던 다른 로동에 대하여 지금은 다만 2실링 내지 2실링 3펜스를 지불한다. 임금은 수요를 자극하기 위하여 필요한것보다 더 많이 인하되였다. 사실 많은 종류의 리봉에 있어서 임금인하는 상품가격의 어떠한 인하도 동반하지 않았다.》(F. D. 론지위원의 보고, 《아동로동조사위원회. 1866년 제5차보고》, 114페지, 제1호에 게재)

따라서 공장로동자수의 증대는 공장에 투하되는 총자본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급속하게 증대하는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사업순환의 만조기와 간조기중에서만 일어난다. 그뿐만아니라 그것은 로동자들을 잠세적으로 대신하거나 또는 그들을 실제로 구축하는 기술적진보에 의하여 부단히 중단된다. 기계적생산에서의 이러한 질적변화는 로동자들을 공장에서 부단히 내쫓으며 또는 새로 들어오려는 보충인원들에 대하여 공장문을 닫아버리는데 한편 공장의 단순한 량적확장은 내쫓긴 로동자들외에 새로운 보충인원들을 삼켜버린다. 그리하여 로동자들은 부단히 배척되였다가는 흡인되며 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는데 이 경우에 징모되는 로동자들의 성별, 년령 및 숙련정도는 부단히 변화한다.

공장로동자의 운명은 영국면방직업의 운명을 개략으로 보기만 하면 가장 명백하게 알수 있다.

1770년부터 1815년까지의 기간에 면방직공업은 5년간 부진 또는 정체 상태에 있었다. 최초의 45년간 영국의 공장주들은 기계와 세계시장을 독점하고있었다. 1815년부터 1821년까지는 부진. 1822년과 1823년은 번영. 1824년은 결사금지법[364]의 폐지, 공장들의 전반적대확장. 1825년은 공황.[365] 1826년은 면방직로동자들의 대궁핍과 폭동. 1827년은 약간의 호전. 1828년은 증기직기수와 수출의 대증가. 1829년은 수출 특히 인도에로의 수출이 그전 어느해보다도 더 증가. 1830년은 시장의 공급과잉과 대궁핍. 1831년부터 1833년까지는 계속되는 부진. 동부아세아(인도와 중국)에 대한 동인도회사무역독점권의 취소. 1834년은 공장과 기계의 대증가, 일손의 부족. 새로운 빈민구제법이 농촌로동자들의 공장지방에로의 이주를 촉진. 농업지구들에서의 아동들의 일소. 백인노예매매.

1835년은 대번영. 동시에 면직물수직공들의 아사. 1836년은 대번영. 1837년과 1838년은 부진상태와 공황. 1839년은 회복. 1840년은 심한 불경기, 폭동, 군대의 간섭. 1841년과 1842년은 공장로동자들의 무서운 고통. 1842년은 공장주들이 곡물법의 폐지를 강요하기 위하여 로동자들을 공장에서 해고. 로동자들은 수천명씩 요크셔로 밀려갔는데 군대에 의하여 도로 쫓겨왔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랭카스터에서 재판에 회부. 1843년은 심한 궁핍. 1844년은 회복. 1845년은 대번영. 1846년은 처음에는 지속적인 호경기, 다음에는 반동의 징후. 곡물법의 폐지. 1847년은 공황. 《큰빵》[229]의 축하로 임금의 10% 내지 그 이상의 전반적인하. 1848년은 지속적인 부진. 만체스터가 군대의 경호하에 처함. 1849년은 회복. 1850년은 번영. 1851년은 상품가격의 저락, 낮은 임금, 빈번한 파업. 1852년은 호전이 시작됨. 파업이 계속 일어남, 외국로동자들을 수입하겠다고 공장주들이 위협함. 1853년은 수출상승. 프레스톤에서의 8개월간의 파업과 대궁핍. 1854년은 번영, 시장의 공급과잉. 1855년은 미국, 카나다, 동부아시아시장들로부터 파산에 관한 보도가 쇄도. 1856년은 대번영. 1857년은 공황. 1858년은 호전. 1859년은 대번영, 공장의 증가. 1860년은 영국면방직업이 절정에 도달. 인도, 오스트랄리아 및 기타 시장들은 상품이 과잉하여 1863년에는 체화를 전부 흡수하지 못할 정도였음. 프랑스와의 통상조약체결.[366] 공장과 기계의 격증. 1861년은 호경기가 얼마간 계속되고 그후 반동, 미국의 남북전쟁[8], 면화기근. 1862년부터 1863년까지는 완전히 붕괴.

면화기근의 력사는 너무나 특징적이므로 이에 대하여 잠간 서술하지 않을수 없다. 1860~1861년 기간의 세계시장의 형편을 간단히 지적하여도 알수 있는바와 같이 면화기근은 공

장주들이 바라던 때에 바로 닥쳐왔으며 부분적으로는 그들에게 유리하였다. 이 사실은 만체스터상업회의소보고에서 인정되였으며 의회에서 파머스턴 및 다비에 의하여 선언되였으며 제반 사건들에 의하여 확증되였다.(236) 물론 1861년에는 련합왕국의 면방직공장 2,887개중에는 많은 소공장들이 있었다. 공장감독관 A. 레드그레이브의 관할구역에는 상술한 2,887개 공장중에서 2,109개의 공장이 속하고있는데 그의 보고에 의하면 이 2,109개 공장중 392개 즉 19%는 불과 10증기마력미만을 사용하며 345개 즉 16%는 10 내지 20마력미만을 사용하며 1,372개 공장은 20마력이상을 사용하였다.(237) 소공장들의 대다수는 직물공장이였으며 1858년이래의 번영기에 대부분은 투기업자들—그들중 어떤자는 실을, 어떤자는 기계를, 또 어떤자는 건물을 제공하였다—에 의하여 창설된것으로 이전의 감독들과 기타 자금이 없는자들에 의하여 경영되였다. 이 소공장주들은 대부분 몰락하였다. 그들은 면화기근때문에 방지된 상업공황에 의하여서도 동일한 운명에 빠졌을것이다. 그들은 공장주총수의 $\frac{1}{3}$을 차지하고있었으나 그들의 공장에 흡수된 자본은 면방직업에 투하된 자본의 비교도 안되리만큼 적은 부분이였다. 마비의 규모에 관하여 말한다면 믿을만한 추산에 의하면 1862년 10월에 60.3%의 방추와 58%의 직기가 멎었다. 이 수자들은 면방직업전체에 대한것이며 물론 지방에 따라 심한 차이가 있었다. 극히 적은 공장들만이 완전한 시간(주에 60시간)을 다 조업하였으며 나머지 공장주들은 작업을 중단하는 일이 많았다. 완전한 시간을 보통도급임금으로 일한

---

(236) 《공장감독관보고. 1862년 10월 31일》, 30페지를 참조하라.
(237) 《공장감독관보고. 1863년 10월 31일》, 18~19페지.

얼마 안되는 로동자들에 있어서도 좋은 면화가 나쁜 면화로ㅡ시아일랜드면화가 애급면화로(가는실방적에 있어서), 아메리카면화와 애급면화가 수라트면화로(동인도), 또 순수한 면화가 솜씨끼와 수라트면화의 혼합물로ㅡ교체된 결과 주임금이 감소되지 않을수 없었다. 수라트면화의 섬유가 짧은것, 그것이 불결한것, 실이 잘 끊어지는것, 날실에 풀을 먹이는데 곡물대용으로 여러가지 무거운 재료를 쓰는것 등등, 이 모든것이 기계의 속도 또한 한 직포공이 관리할수 있는 직기수를 감소시켰으며 기계의 작업상 결함을 시정하는데 필요한 로동을 증대시켰으며 그리하여 생산물량과 함께 도급임금을 저하시켰다. 수라트면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로동자가 완전한 시간을 작업하는 경우에도 그의 손실은 20%, 30% 또는 그 이상에 달하였다. 그러나 대다수 공장주들은 도급임금률을 5%, 7.5% 내지 10%나 인하하였다. 그러므로 1주일에 불과 3일, 3.5일, 4일씩 또는 하루에 불과 6시간씩 일하는 로동자들의 형편은 알만하다. 1863년의 정형은 비교적 좋았으나 직포공, 방적공 등등의 주임금은 3실링 4펜스, 3실링 10펜스, 4실링 6펜스, 5실링 1펜스 등등이였다.(238) 이렇게 심히 고통스러운 형편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인하를 위한 공장주들의 발명정신은 조금도 감퇴되지 않았다. 면화가 나쁘거나 기계가 좋지 않은 등등으로 제품에 흠이 있을 때 이에 대한 벌금으로서도 임금이 삭감되였다. 공장주가 로동자의 오막살이의 소유자일 경우에는 그는 명목임금에서 공제하여 집세를 받아냈다. 공장감독관 A. 레드그레이브의 설명에 의하면 자동물방적기의 당번들(그들은 각각 두대의 자동물방적기를 맡아보고있었다.)은

《옹근 14일간의 로동을 끝내면 8실링 11펜스를 벌었는데 이 금액중

(238) 《공장감독관보고. 1863년 10월 31일》, 41~45, 51~52페지.

에서 집세가 공제되였다. 그런데 공장주는 그 반액을 선물로 다시 로동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그들은 6실링 11펜스를 가지고 돌아갔다. 직포공들의 최저주임금은 1862년말경에 2실링 6펜스였다.》(239)

집세는 로동자들이 짧은 시간밖에 작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흔히 임금에서 공제되였다.(240) 랭카셔의 일부 지방들에서 일종의 기아병이 발생한것도 놀랄것은 없다! 그러나 가장 특징적이였던것은 생산과정의 혁명이 로동자를 희생으로 하여 수행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해부학자들이 개구리로써 하는 실험과 같이 전적으로 무가치한 생물체로써 하는 실험이였다. 공장감독관 레드그레이브는 이렇게 말하고있다.

《나는 많은 공장의 로동자들의 실지수입을 렬거하였지만 그들이 매주 이 금액을 받고있다고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로동자들의 형편은 공장주들의 부단한 실험으로 말미암아 극히 불안정하다.…그들의 수입은 혼합면화의 질에 따라 증감된다. 그것은 때로는 이전수입과 15%의 차가 있게 되면 1~2주일후에는 50~60%나 떨어진다.》(241)

이 실험은 로동자들의 생활수단을 희생으로 하여서만 실시된것이 아니다. 로동자들은 그들의 5관을 전부 희생하여서만 그것을 갚을수 있었다.

《면화의 짐을 푸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말들을 하고있다. 참을수 없는 악취때문에 구역질이 난다.…혼면실, 조소실, 소면실에서 먼지와 오물이 날리여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의 구멍들을 자극하며 그리하여 기침을 나게 하며 호흡을 하기 힘들게 한다. 섬유가 짧기때문에 풀칠할 때 다량의 각종 물질 즉 이전에 쓰던 밀가루 대신에 여러가지 대용품들이 첨가된다. 그때문에 직포공들의 구토와 소화불량이 생긴다. 먼지로 말미암아 기관지염과 후두염이 퍼지고 있으며 또한 수라트면에 포함되여있는 오물이 피부를 자극하기때문에

---

(239) 《공장감독관보고. 1863년 10월 31일》, 41~42페지.
(240) 우와 같은 보고, 57페지.
(241) 우와 같은 보고, 50~51페지.

피부병도 류행되고있다.》

한편 밀가루 대신에 쓰는 대용품들은 그것이 실의 무게를 증가시키기때문에 공장주 제씨의 포르투나트우스의 돈주머니로 되였다. 이 대용품에 의하여 《15폰드의 원료가 직물로 된후에는 20폰드의 무게를 가지게 되였다.》(242) 1864년 4월 30일의 공장감독관보고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이 산업은 지금 이 수단을 실로 수치스러울 정도로 리용하고있다. 믿을만한 사람에게서 나는 8폰드의 천이 $5\frac{1}{4}$폰드의 면화와 $2\frac{3}{4}$폰드의 풀로 제조된다는것을 알았다. 다른 $5\frac{1}{4}$폰드의 천에는 2폰드의 풀이 포함되여있다. 이것은 수출용의 보통샤쯔지였다. 다른 종류의 천에는 때로 50%의 풀이 첨부되였으며 그리하여 공장주들은 천을 그것에 명목상 포함되여있는 실값보다 싸게 팔면서 돈벌이를 하고있다고 자랑할 수 있을것이며 또 실지 자랑하고있다.》(243)

그러나 로동자들은 다만 공장에서는 공장주들의 실험과 공장밖에서는 도시당국의 실험으로 말미암아 즉 임금인하, 실업, 궁핍과 구제, 상하량원의원들의 찬사에 의하여 고생하였을뿐만이 아니다.

《면화기근으로 하여 실업한 불행한 녀성들은 사회의 버림을 받는 자로 되였으며 또 그렇게 되고있다.…지금 도시의 젊은 매춘부수는 최근 25년간에 그 어느때보다도 더 많아졌다.》(244)

그리하여 영국면방직업의 제1시기의 45년간 즉 1770년부터 1815년까지는 공황과 정체는 다만 5년간뿐이였는데 그러나 이 기간은 영국면방직업의 세계독점의 시기였다. 제2시기의 48년간 즉 1815년부터 1863년까지는 부진과 정체 시기가

---

(242) 《공장감독관보고. 1863년 10월 31일》, 62~63페지.

(243) 《공장감독관보고. 1864년 4월 30일》, 27페지.

(244) 《공장감독관보고. 1865년 10월 31일》, 61~62페지가운데 인용된, 볼톤경찰서장 해리스의 편지중에서.

28년간이나 되고 회복과 번영 시기는 다만 20년간에 지나지 않았다. 1815년부터 1830년까지는 구라파대륙 및 미국과의 영국의 경쟁이 시작되였다. 1833년이래 《인종의 파괴》에 의한 아시아시장들의 확장이 강행되고있다.[367] 곡물법의 폐지이래 1846년부터 1863년까지에 중간정도의 활기와 번영 시기는 8년간이였는데 부진과 정체 시기는 9년간이였다. 면방직업에 종사하는 성인남성로동자들의 상태가 번영기때에도 어떠하였는가 하는것은 아래에 첨부한 주에서 알수 있다.(245)

8. 대공업으로 인한 공장제수공업, 수공업, 가내로동의 혁명

(a)수공업과 분업에 기초한 협업의 폐절

(245) 1863년 봄, 이민협회의 설립을 위한 면방직업로동자들의 호소문에는 특히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현재 공장로동자들의 대대적인 이민이 절대로 필요하다는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소수밖에 없을것이다. 부단한 이민이 언제나 필요하며 이민없이는 평상시에 우리의 처지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는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보여준다. 1814년에 수출된 면제품의 공식적가치(이것은 량적지표에 불과하다.)는 17,665,378파운드였으며 그 현실적인 시장가치는 20,070,824파운드였다. 1858년에는 수출된 면제품의 공식적가치는 182,221,681파운드이고 그 현실적시장가치는 불과 43,001,322파운드였다. 그러므로 량은 10배 증가되여도 대가는 두배 좀 넘을뿐이였다. 일반적으로 나라에 대하여 특히는 공장로동자들에 대하여 극히 해로운 이러한 결과는 여러가지 원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하였다. 가장 뚜렷한 원인의 하나는 로동의 부단한 과잉인데 그것은 파멸을 면하기 위하여 시장을 부단히 확장할 필요가 있는 이 산업부문에 불가결한것이다. 우리의 면방직공장들은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상업의 주기적인 정체가 죽음과도 같이 피할수 없는데 이 정체에 의하여 우리의 면방직공장들이 휴업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발명정신은 정지하지 않는다. 최근 25년간에 가장 적게 평가하여도 600만명이 이 나라를 떠났지만 그러나 최고의 번영기에도 생산물을 값싸게 할 목적으로 로동을 부단히 구축하기때문에 수많은 성인남자들이 어떤 조건의 어떤 일도 찾지 못하는 형편이다.》(《공장감독관보고. 1863년 4월 30일》, 51~52페지) 면방직업의 대재난시에 공장주 제씨가 어떻게 별별 수단을 다하여, 지어 국가권력의 힘을 빌어서까지도 공장로동자들의 이민을 방해하려고 하였는가는 이후의 한장에서 보게 될것이다.①

① 이 책 662~665, 730페지를 보라. 一편집자

우리는 기계가 수공업에 기초한 협업과 수공업적분업에 기초한 공장제수공업을 어떻게 폐절하는가를 보았다.① 첫째 종류의 실례는 수확기인데 이것은 가을하는 사람들의 협업을 대체한다. 둘째 종류의 적절한 실례는 바늘제조기이다. 애담 스미스의 말에 의하면 그의 시대에 남자 10명이 분업에 의하여 하루에 48,000개의 바늘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는 단 한대의 기계가 11시간의 1로동일에 145,000개를 만든다. 1명의 부녀 또는 소녀가 평균 그러한 기계 4대를 감시하며 따라서 그 기계로 하루에 60만개까지 또는 주에 300만개 이상을 생산한다.(246) 단 한대의 작업기가 협업 또는 공장제수공업을 대체할 때 그 작업기자체가 이번에는 수공업적생산의 기초로 될수 있다. 그러나 기계에 기초한 수공업적생산의 이 재생은 공장제생산에로의 이행에 불과한데 이 공장제생산은 기계운전에 있어서 인간의 근육이 기계적 원동력(증기 또는 물)으로 교체되자마자 언제나 나타나는것이 보통이다. 소생산도 버밍감의 일부 공장제수공업에서와 같이 증기를 임차함으로써 또 직조업의 일부 부문 등에서와 같이 소형의 열기관[295]을 사용함으로써 기계원동력과 간혹 그리고 일시적으로 결부될수는 있다.(247) 코벤트리의 견직업에서 《오막살이공장》의 실험이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였다. 4각형으로 나란히 세운 오막살이의 중앙에 증기기관을 놓기 위한 이른바 기관실이 설치되고 이 증기기관이 회전축에 의하여 오막살이안에 있는 직기들과 련결된다. 어느 경우

(246)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3차보고》, 1864년판, 108페지, 제447호

(247) 미국에서는 기계에 기초한 수공업의 그러한 재생은 빈번하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공장제생산에로의 불가피한 이행에서 이 나라는 구라파에 비하여, 지어는 영국에 비해서도 집적이 실로 비약적으로 급속히 진행될것이다.

① 이 책 426, 435~443, 486페지를 보라. —편집자

에나 증기의 임차료는 례컨대 1직기당 $2\frac{1}{2}$실링이였다. 이 증기료금은 직기가 회전하였든 안하였든간에 주마다 지불하였다. 매개 오막살이에는 2 내지 6대의 직기가 있었는데 어떤것은 로동자의것이였고 어떤것은 외상으로 산것이였고 어떤것은 임차한것이였다. 오막살이공장과 본래의 공장간의 투쟁은 12년이상 계속되였다. 그것은 300개의 오막살이공장의 완전한 파산으로써 끝났다.(248) 과정의 성질상 처음부터 대규모생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최근 수십년간에 새로 등장한 공업부문들 례컨대 봉투제조업, 강철펜제조업 등등과 같은 부문들은 공장제생산에로의 단기간의 과도단계로서 우선 수공업적생산 그다음에 공장제수공업적생산을 통과하는것이 통례이다. 이러한 변태는, 제품의 공장제수공업적생산이 일련의 순차적과정들로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관련이 없는 수많은 과정들로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극히 곤난하게 진행된다. 이것은 례컨대 강철펜공장에 대하여서는 극히 큰 장애로 되였다. 그러나 약 15년전에 서로 관련이 없는 6개의 과정들을 단번에 수행하는 자동장치가 발명되였다. 1820년에 수공업은 최초의 강철펜 12다스를 7파운드 4실링으로 제공하였으며 공장제수공업은 그것을 1830년에 8실링으로 그리고 공장은 그것을 현재 2~6펜스로 도매상에게 제공한다.(249)[368]

---

(248) 《공장감독관보고. 1865년 10월 31일》, 64페지를 참조하라.

(249) 질러트씨는 버밍감에 최초의 대규모의 강철펜제조소를 세웠다. 그 제조소는 1851년에 벌써 1억 8,000만개의 펜을 생산하였으며 년 120톤의 강철판을 소비하였다. 련합왕국에서 이 공업부문을 독점하고있는 버밍감은 현재 강철펜을 년 수십억개 생산한다. 종업원수는 1861년의 조사에 의하면 1,428명으로 그중 녀공이 1,268명이였으며 제일 어린 나이는 5살밖에 안되였다.

(b) 공장제수공업과 가내로동에 대한 공장제도의 반작용

공장제도의 발전과 이에 수반하는 농업의 변혁에 따라 다른 모든 사업부문에서의 생산규모가 확대될뿐만아니라 또한 그 성격도 변화한다. 생산과정을 그 구성단계들로 분해하며 또 그 결과 발생하는 문제들을 기계학, 화학 등등 요컨대 자연과학의 응용에 의하여 해결한다는 기계적생산의 원칙은 어디서나 결정적의의를 가지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기계는 공장제수공업에 침입하여 때로는 이 부분과정, 때로는 저 부분과정을 점령한다. 이리하여 낡은 분업에 기초한 공장제수공업조직의 견고한 결정은 용해되며 부단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 점을 도외시하고라도 전체 로동자 즉 결합된 로동인원의 구성은 근본적으로 변혁된다. 공장제수공업시기와는 반대로 분업계획은 이제는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서나 녀성로동, 각종 년령의 아동로동, 미숙련로동자의 로동, 간단히 말하여 영국인들이 그 특징을 포착하여 《값싼 로동》이라고 부르는 그런 로동의 사용에 기초한다. 이 점은 대규모로 결합된 생산에만(그것이 기계를 사용하든 안하든간에)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또한 이른바 가내공업에도(로동자가 자기의 집에서 하든 또는 소작업장에서 하든간에) 적용된다. 이른바 이 현대적가내공업은 독립적인 도시수공업, 자립적인 농민경영 특히는 로동자가족의 가옥을 전제로 하는 구식가내공업과는 명칭외에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 그것은 이제는 공장, 수공업공장 또는 상점의 외업부문으로 되였다. 자본은 공장

로동자들, 수공업공장로동자들, 수공업자들을 대량적으로 공간적으로 집중시키는 한편 그들을 직접 지휘하는외에 대도시와 농촌에 산재하는 가내로동자대오를 보이지 않는 실에 의하여 동원한다. 례컨대 아일랜드의 런던 데리에 있는 틸리회사의 내의공장은 1,000명의 공장로동자와 농촌에 산재한 9,000명의 가내로동자를 사용하고있다.(250)

값싸고 미숙한 로동력의 착취는 본래의 공장에서보다 현대적공장제수공업에서 더한층 파렴치한데 그것은 공장의 기술적기초 즉 기계에 의한 근력의 교체 및 로동의 경감 등은 현대공장제수공업에는 대부분 없으며 또 현대공장제수공업에서는 녀자의 유기체 또는 미성년자의 연약한 유기체를 유독물 등등의 영향에 극히 파렴치하게 내맡기고있기때문이다. 이런 착취는 또 소위 가내로동에서 공장제수공업에서보다 더한층 파렴치하다. 그것은 로동자들의 반항능력이 그들의 분산때문에 감소되며 수많은 도적놈과 같은 기생자들이 본래의 고용주와 로동자사이에 개입하며 가내로동이 어디서나 같은 생산부문의 기계적생산 또는 적어도 공장제수공업생산과 경쟁하며 빈궁이 로동자들에게서 가장 필요한 로동조건들—공간, 광선, 환기 등등—을 탈취하며 취업의 불규칙성이 증대하며 끝으로 대공업과 대농업에 의하여 《과잉》하게 된 인구의 이 마지막 피난처에서는 로동자들간의 경쟁이 필연적으로 극도에 달하기때문이다. 기계적생산에 의하여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실현되는 생산수단의 절약은 동시에 처음부터 로동력의 가장 무자비한 랑비이고 로동에 필요한 정상적조건들의 략탈인데 이것은 이제는 한 산업부문에서 사회적로동생산력

---

(250)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2차보고》, 1864년판, LXVIII페지, 제415호.

과 결합된 로동과정의 기술적기초가 적게 발전하면 할수록 이러한 적대적이며 살인적인 측면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낸다.

(c) 현대적공장제수공업

그러면 몇개 실례로써 상술한 원칙들을 설명하여보자. 로동일에 관한 장에서 독자들은 사실상 이미 많은 례증들을 알고있다. 버밍감과 그 부근의 금속수공업공장에서는 대부분 극히 힘든 작업에 3만명의 아동 및 소년, 소녀들과 함께 1만명의 녀성들을 사용하고있다. 그들은 여기에서 건강에 해로운 황동주조소, 단추제조소, 에나멜공장, 도금공장 및 옻칠하는 공장에서 일한다.(251) 런던의 각종 신문 및 서적 인쇄소들은 그곳에서 일하는 성년과 미성년의 과도한 로동때문에 《도살장》이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얻었다.(251a) 제본소들에서도 로동은 과도한데 여기에서의 희생자는 특히 부녀, 소녀 및 아동들이다. 바줄공장들에서 일하는 미성년의 로동은 과중하며 제염소, 양초공장과 기타 화학공장들에서는 야간로동을 하며 기계적로동력이 사용되지 않는 견직공장들에서는 직기를 돌리는데 소년들이 살인적으로 사용되고있다.(252) 가장 수치스럽고 더러우며 또 임금이 가장 낮은 로동의 하나이면서 주로 어린 소녀들과 부녀들이 사용되고있는것은 넝마고르기이다. 우리가 알다싶이 대브리텐은 그자체의 무수한 넝마는 고사하

---

(251) 현재 세필드에서는 아동이 지어는 줄갈기에까지도 사용되고있다.

(215a)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5차보고》, 1866년판, 3페지 제24호, 6페지 제55, 56호, 7페지 제59, 60호.

(252) 우와 같은 보고, 114~115페지, 제6~7호. 조사위원회 위원이 정당하게 지적하고있는바와 같이 다른 곳에서는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지만 여기서는 소년들이 문자그대로 기계를 대신하고있다.

고라도 전 세계의 넝마거래의 중심지로 되고있다. 일본, 멀고도 먼 남미제국과 카나리아제도에서 넝마가 흘러들어온다. 그러나 그 주요공급원천은 독일, 프랑스, 로씨야, 이딸리아, 애급, 토이기, 벨지끄 및 화란이다. 넝마는 비료, 털부스러기(침구용), 재생양모의 제조와 제지원료로 사용된다. 넝마고르기 녀공들은 천연두 기타 전염병을 전파하는 매개의 역할을 놀며 그들자신이 그 첫 희생자이다.(253) 과도한 로동, 힘들고 부적당한 로동 그리고 아주 어릴 때부터 착취를 받는 로동자들이 이 면에서 당하고있는 유린의 전형적례로서는 광산과 탄광외에 기와와 벽돌 제조소를 들수 있는데 영국의 이 제조소들에서는 새로 발명된 기계들이 아직 간혹 사용되고있을뿐이다.(1866년에) 5월부터 9월까지는 아침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로동이 계속되고 또 옥외건조를 할 때는 왕왕 아침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계속된다. 아침 5시부터 저녁 7시까지의 로동일은 《단축된》《적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남녀아동들은 6살부터 또 지어는 4살부터 사용된다. 그들은 성년들과 같은 시간수를 일하며 그 이상 일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로동은 고되며 여름철 더위로 더 지친다. 레컨대 모즐리에 있는 어떤 벽돌제조소에서는 24살의 처녀 혼자서 진흙을 운반하며 벽돌을 쌓는 두명의 어린 소녀들을 조수로 하여 하루에 2,000매의 벽돌을 만들었다. 이 소녀들은 깊이 30푸트나 되는 구덩이의 미끄러운 비탈을 따라 하루에 10톤이나 되는 진흙을 끌어올리여 그것을 210푸트나 되는 거리를 운반하였다.

《아동으로서 도덕적으로 심한 타락없이 벽돌제조소의 련옥을 통과하기는 불가능하다.…그들이 철도 들기전부터 귀에 익히게 되는 상스러운 말

---

(253) 넝마거래에 관한 보고와 《공중위생. 제8차보고》, 1866년 런던판, 부록 196~208페지에 있는 많은 례증을 보라.

들과 그들이 무지하고 미개한채 그속에서 자라는 음란하고 무례하며 무치한 습관들로 해서 그들은 그후 평생 무법하고 불량하며 방탕하게 된다.… 타락의 무서운 한개 원천으로 되는것은 거주방식이다. 매개 조형공 (이는 본래 숙련공이며 로동자소조의 두목이다.) 은 그의 오막살이에서 7명의 자기 반원을 재우고 먹인다. 그의 가족이든 아니든 성년 남자, 처녀, 총각이 모두 그의 오막살이에서 잔다. 여기에는 대개 방이 둘 례외적으로는 셋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마루바닥에서 자며 환기가 나쁘다. 그들은 하루동안의 고된 로동으로 몸이 너무 피곤하기때문에 위생이니 청결이니 례절이니 하는 그 어떠한 규칙도 지키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다. 이러한 오막살이의 다수는 무질서, 불결 그리고 먼지의 진짜표본이다.…이런 종류의 로동에 어린 소녀들을 고용하는 제도의 가장 큰 죄악은 그들을 통례로 어려서부터 늙어죽을 때까지 방탕한 부랑배로 만들어버린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녀자라는것을 자연에 의하여 알게 되기전에 란포하고 입버릇이 나쁜 사내아이가 된다. 그들은 더러운 누더기조각이나 걸치고 넙적다리를 내놓고 머리와 얼굴은 흙투성이가 되며 단정이나 수치감같은것은 모두 멸시해 버린다. 그들은 식사시간에 네활개를 펴고 풀밭에 드러눕든가 또는 옆에 있는 강에서 목욕하는 사내아이들을 훔쳐본다. 고된 하루일을 마치면 그들은 비교적 좋은 옷을 갈아입고 사내들과 함께 술집으로 간다.》

이 계급전체가 어렸을 때부터 무서운 술고래가 되는것은 극히 당연하다.

《가장 나쁜것은 벽돌공들이 자포자기하는것이다. 그들중 비교적 나은 축의 어떤자가 사우스올필드의 한 목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사님, 당신이 벽돌공을 감화시키려는것은 악마를 감화시키려는것과 같습니다!》(254)

현대적공장제수공업(여기서는 본래의 공장이외의 대규모의 모든 작업장을 의미한다.)에서의 로동조건들의 자본주의적절약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공중위생에 관한 제4차(1861년) 및 제6차(1864년) 보고에 극히 풍부한 공식자료가 있다. 작업장 특히 런던의 인쇄업자 및 재봉업자의 작업

(254)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5차보고》, 1866판, XVI~XVIII페지 제86~97호, 130~133페지 제39~71호, 또 《제3차보고》, 1864년판, 48, 56페지를 참조하라.

장들에 대한 묘사는 우리 소설가들의 환상도 도저히 따를수 없다. 로동자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영향은 자명한 일이다. 추밀원[200]의 최고 의무관이였으며 《공중위생에 관한 보고》의 편찬관인 싸이먼의사는 특히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나의 제4차보고 (1861년) 에서 내가 말한바와 같이 로동자들이 자기들의 제1차적위생권 즉 고용주가 어떠한 작업을 그들에게 시키든 간에 로동은 고용주의 책임이 미치는 한 일체 피할수 있는 비위생적상태로부터 해방되여야 한다는 권리를 주장하기는 실제상 불가능하다. 내가 지적한바와 같이 로동자들은 이 위생상 권리를 자력으로 실현할수 없을 때 위생경찰당국의 유효한 방조도 받을수 없다.…무수한 남녀로동자들의 생명이 그들의 단순한 취업에서 오는 무한한 육체적고통때문에 현재 쓸데없이 유린을 당하며 단축되고있다.》(255)

건강상태에 미치는 작업장의 영향의 례증으로 싸이먼의사는 다음과 같은 사망통계표를 들고있다.(256)

각 산업부문에 고용된 각 년령의 종업자수	건강에 관하여 비교된 산업부문들	각 산업부문 년령별 10만명당 사망수		
		25~35세	35~45세	45~55세
958,265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농업	743	805	1,145
남 22,301 녀 12,377	런던의 재봉업	958	1,262	2,093
13,803	런던의 인쇄업	894	1,747	2,367

(255) 《공중위생. 제6차보고》, 1864년 런던판, 29, 31페지.

(256) 우와 같은 보고, 30페지. 싸이먼의사의 지적에 의하면 런던의 25~35세의 재봉공과 인쇄공의 사망률은 실제상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크다. 왜냐 하면 그들의 런던고용주들은 농촌으로부터 30세미만의 많은 청년들을 《도제》와 《견습공》(즉 수공업을 배우려는 사람)으로 받고있기때문이다. 그들은 조사시에 런던인으로 간주되여 런던의 사망률계산의 기초로 되는 인구수를 증가시키지만 그에 비례하여 런던의 사망자수를 증대시키지는 않는다. 왜냐 하면 그들중 대부분은 특히 중병인 경우에는 농촌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우와 같은 곳)

(d) 현대적가내로동

이제는 이른바 가내로동을 보려고 한다. 대공업을 배경으로 하여 실시되는 자본의 이 착취분야와 그 착취의 놀라운 상태를 다소라도 알려면 레컨대 잉글랜드의 일부 벽촌에서 경영되는, 보기에는 아주 목가적인 못제조업을 보면 될것이다.(257) 여기에서는 레스공업과 밀짚세공업중에서 아직 전혀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있거나 또는 기계적생산 및 공장제수공업적생산과 전혀 경쟁하고있지 않는 부문에서 몇개 실례를 들면 충분할것이다.

잉글랜드에서 레스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은 15만명인데 그중 1861년의 공장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약 1만명이다. 나머지 14만명의 압도적다수는 부녀와 남녀소년 및 아동들이다. 그러나 남자는 극히 적다. 이 《값싼》 착취재료의 건강상태는 노팅감의 빈민진료소 의사 트루만의 다음과 같은 통계에서 알수 있다. 환자인 686명의 레스제조녀직공(그 대부분이 17세 내지 24세)중 폐병환자의 비률은 다음과 같았다.(258)

1852년	45명중	1명	1857년	13명중	1명
1853년	28명중	1명	1858년	15명중	1명
1854년	17명중	1명	1859년	9명중	1명
1855년	18명중	1명	1860년	8명중	1명
1856년	15명중	1명	1861년	8명중	1명

극히 락관적인 진보론자들과 또한 거짓말 잘하는 독일의

---

(257) 여기서 말하는것은 기계적방법으로 절단하여 만드는 못이 아니라 쇠망치로 두드려서 만드는 못이다.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3차보고》, XI, XIX페지 제125~130호, 52페지 제11호, 113~114페지 제487호, 137페지 제674호를 보라.

(258)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2차보고》, XXII페지, 제166호.

자유무역론행상인들은 이와 같은 폐병률의 증가에 매우 만족해할것이다.

1861년의 공장법은 기계에 의하여 생산되는 본래의 레스제조업을 규제하는데 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레스제조업에 기계를 채용하였다. 우리가 여기에서 간단히 고찰하는 부문(그것도 물론 수공업공장, 상점 등등에 집중되여있는 로동자가 아니라 다만 소위 가내로동자만을 고찰한다.)은 다음의 두 부문이다. 1) 레스완성(기계적방법으로 제조되는 레스의 마지막 완성인데 이것은 다시 수많은 소부문들을 포함한다, 2) 레스뜨기.

레스완성은 소위 《주부의 집》에서나 또는 홀몸으로 혹은 자기의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부인들의 자택에서 가내로동형태로 진행된다. 《주부의 집》을 가지고있는 부인들자신이 빈궁하다. 작업장은 그들의 자택의 일부이다. 그들은 공장주, 상점소유주 등등의 주문을 받으며 그들의 방의 크기와 해당 공업부문에서의 수요의 변동에 따라 적당한 수의 부녀, 소녀, 어린 아동들을 고용한다. 취업녀공들의 수는 어떤 작업장에서는 20명 내지 40명, 어떤 작업장에서는 10명 내지 20명이다. 로동을 시작하는 아동의 평균최저년령은 6세이지만 5세미만의 경우도 많다. 로동시간은 보통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중간에 $1\frac{1}{2}$시간 식사시간이 있는데 이 식사는 불규칙적이며 왕왕 악취가 심한 동굴같은 작업장에서 하게 된다. 경기가 좋은 때는 로동은 왕왕 아침 8시(때로는 6시)부터 밤 10시, 11시 또는 12시까지 계속된다. 영국의 병영에서는 병사 1명당 규정된 공간이 500~600립방푸트이며 군대병원에서는 1,200립방푸트이다. 그런데 이 동굴같은 작업장

에서는 매인당 67~100립방푸트이다. 한편 가스등불은 공기 속의 산소를 삼켜버린다. 레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들은 흔히 겨울에도 바닥이 돌이나 벽돌로 되여있어도 신을 벗어야 한다.

《노팅감에서는 아마도 12평방푸트이상이 안되는 적은 한 방에 15명 내지 20명의 아동들이 몰켜 24시간중 15시간을 로동하는데 로동 그자체가 무미건조하고 단조로운탓으로 피로를 느끼게 하며 거기에다 상상조차 할수 없는 비위생적상태하에서 로동이 진행되고있는것을 왕왕 보게 된다.…아주 어린 아동들조차 놀랄만큼 긴장된 주의력과 속도로써 일을 하며 거의 잠시도 손가락을 쉬거나 천천히 움직이는 일이 없다. 그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아도 그들은 일순간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일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로동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긴막대기》는 아동들을 몰아대는 자극제로서 더욱 많이 《주부》에게 복무한다.

《아동들은 점차 피로해진다. 단조롭고 눈을 상하며 몸자세를 바꿀수 없기때문에 기진맥진해지는 그러한 일에 오래동안 얽매여있다가 로동이 끝날무렵이면 그들은 참새떼같이 수선거린다. 이것은 그야말로 진짜노예로동이다.》(259)

부녀들이 그들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즉 현대적의 미로서는 세방에서, 흔히는 다락방에서 로동하는 경우에는 사태는 말할수없이 더 나쁘다. 이러한 종류의 로동은 노팅감 주변 80마일의 지역에서 볼수 있다. 상점에서 일하는 아동은 저녁 9시나 10시에 퇴근할 때 종종 한뭉치의 레스를 더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집에서 완성한다. 자본주의적위선가는 그의 고용노복의 입을 빌어, 물론 《이것은 어머니의 몫이다.》라는 달콤한 말을 던진다. 그러나 그는 가엾은 아동이 역시 자지 않고 앉아서 어머니를 도와야 한다는것을 너무나 잘 알

(259)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2차보고》, 1864년판, XVIII, XIX, XX, XXI페지.

고있는것이다.(260)

레스공업은 주로 잉글랜드의 두 농업지대에 분포되여있다. 그중의 하나는 데본셔 남해연안을 따라 20~30마일에 뻗치는 지대와 북데본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호니톤레스지대이고 또 하나는 버킹감, 벳포드, 노샘프톤 등 군들의 대부분이고 옥스포드셔와 헌팅돈셔의 린접지방들을 포함하는 지방이다. 일반적으로 농업일용로동자의 오막살이가 동시에 작업장으로도 된다. 일부 수공업공장소유주는 이러한 가내로동자를 3,000명이상 사용하고있는데 그들은 주로 아동과 소년들이며 그것도 녀성들뿐이다. 레스완성과 관련하여 서술한 여러가지 정형이 다시금 여기서 되풀이된다. 차이는 《주부의 집》 대신에 가난한 부인들이 자기의 오막살이에서 운영하는 소위 《레스학교》가 등장하는데 불과하다. 이 학교에서 5세부터 때로는 더 어릴 때부터 12~15세에 이르기까지 아동들이 일하게 되는데 처음 1년간은 가장 어린 아동이 4~8시간, 그후는 아침 6시부터 저녁 8~10시까지 로동한다.

《통레로 방은 작은 오막살이의 보통방이며 바람을 막기 위하여 굴뚝도 막아놓았으며 그안에 있는 사람들은 겨울에도 흔히 그들자신의 체온으로만 보온한다. 다른 경우에는 소위 교실이 작은 헛간 비슷하며 난로를 놓을 자리도 없다.…이 굴속같은 방에 사람이 빼곡 들어차서 공기는 숨막힐 정도이다. 거기에다 하수도, 변소 그리고 작은 오막살이주변에 늘 널려있는 부패한 물건과 기타 오물이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있다.》

공간에 관하여 말한다면

《어떤 레스학교에서는 18명의 소녀와 1명의 녀선생이 있는데 매인당 33립방푸트이며 악취에 견딜수 없는 다른 어떤 학교에는 18명

---

(260)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2차보고》, 1864년판, XXI, XXII페지.

이 있는데 매인당 $24\frac{1}{2}$립방푸트이다. 이 산업에는 2~$2\frac{1}{2}$세의 아동들도 고용되고있다.》(261)

버킹감과 벳포드의 농업군들에서 레스뜨기가 없는 곳에서는 밀짚세공업이 시작된다. 이것은 하트포드셔의 대부분과 에쎅스의 서부 및 북부에 퍼지고있다. 1861년에 밀짚세공과 밀짚모자제조에 48,043명이 종사하고있었는데 그중 3,815명이 각이한 년령의 남성이며 나머지는 녀성인데 그것도 20세 미만이 14,913명, 그중 약 7,000명이 아동들이였다.[369] 여기에서는 레스학교 대신에 《밀짚세공학교》가 등장한다. 여기에서는 아동들이 보통 4세부터, 때로는 3세와 4세어간의 시기부터 밀짚세공을 배우기 시작한다. 교육이란 물론 아무것도 받는것이 없다. 아동들자신도 굶주린 그들의 어머니에게서 받은, 하루에 보통 30야드가 되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작업에만 매여있게 되는 이 흡혈시설과 구별하여 초등학교를 《자연학교》라고 부르고있다. 이 어머니들은 또 종종 집에서도 밤 10시, 11시, 12시까지 그들을 일시킨다. 밀짚은 그들의 손가락을 베거나 입을 상하게 하는데 그것은 침으로 계속 밀짚을 눅눅하게 추기기때문이다. 밸러드의사가 종합한 런던 의무관들의 전반적의견에 의하면 300립방푸트가 침실이나 작업실에서의 매인당 최소한도의 공간이다. 그런데 밀짚세공학교에서는 레스학교보다 공간은 더 배좁으며 매인당 $12\frac{2}{3}$, 17, $18\frac{1}{2}$립방푸트이며 고작해서 22립방푸트미만이다.

조사위원인 화이트는 이렇게 말하고있다.

《이 수자중에서 가장 적은 수자는 아동을 3립방푸트의 상자에 넣었을 때 차지하는 공간의 반보다도 적은것이다.》

---

(261)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2차보고》, 1864년판, XXIX, XXX페지.

이것이 12세 또는 14세까지의 아동들이 누리고있는 생활이다. 가난에 쪼들리고 타락한 부모들은 될수 있는대로 아이들에게서 더 많을것을 짜내려고 생각할뿐이다.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를 랭대하며 부모를 버리는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교양을 받은 추민들이 무지와 악습에 젖게 되는것은 결코 기이한 일이 아니다.…그들의 도덕은 극도로 타락하였다.…많은 녀성이 사생아를 가지고있으며 그것도 다수는 범죄통계학에 정통한 사람도 놀랄만큼 미성숙한 나이에 낳는다.》(262)

그리하여 이러한 모범가정들의 조국은 구라파의 모범적 기독교국가이다라고 기독교문제에 권위있는 몽딸랑베르백작은 말하고있다.

임금은 상술한 두 산업부문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잘것없는데(밀짚세공학교 아동들의 례외적인 최고임금은 3실링이다.) 그나마 특히 레스생산지방들에서 광범히 실시되고있는 현물임금제도에 의하여 그 명목액이하로 훨씬 인하된다.(263)

(e) 현대적공장제수공업 및 현대적가내로동의 대공업에로의 이행. 이러한 생산방식에의 공장법의 적용에 의한 이 혁명의 촉진

녀성로동력과 미성년로동력의 순전한 람용, 일체 정상적인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의 순전한 강탈, 과도한 로동과 야간로동의 순전한 잔인성에 의한 로동력의 저렴화는 결국 그 이상 넘을수 없는 어떤 자연적한계에 부딪친다. 이와 함께 이

---

(262)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2차보고》, 1864년판, XXXIX, XL, XLI페지.
(263)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1차보고》, 1863년판, 185페지.

에 기초한 상품의 저렴화와 자본주의적착취일반이 또한 이 한계에 부딪친다. 마침내 이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그렇게 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기계가 채용되며 분산된 가내로동이(또 공장제수공업도) 공장제생산으로 급속히 전화하게 되는 시기가 닥쳐온다.

이 운동의 가장 훌륭한 실례를 제공하는것은 《의복》의 생산이다. 아동로동조사위원회의 분류에 의하면 이 공업부문은 밀짚모 및 부인모 제조업자, 캡제조업자, 재단업자, 부인장신구제조업, 부인복제조업(264), 내의제조업자와 재봉업자, 코르세트제조업자, 장갑제조업자, 제화업자 및 그밖에 넥타이, 카라 등등의 제조업자와 같은 많은 소부문들을 포괄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이 공업부문에 종사하고있는 녀직공은 1861년에 586,298명이였으며 그중 적어도 115,242명은 20세미만이며 16,560명은 15세미만이였다. 련합왕국에서 이 녀직공들의 수는 750,334명이였다.(1861년에)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당시에 모자, 구두, 장갑 제조업과 재단업에 종사한 남직공의 수는 437,969명이였는데 그중 14,964명은 15세미만, 89,285명은 15세 내지 20세, 333,117명은 20세이상이였다. 이 보고에는 여기에 속하는 많은 소부문들은 들어있지 않다.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수자만을 취하더라도 잉글랜드와 웨일즈만으로 1861년 조사에 의하면 그 총수는 1,024,267명인데 이것은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고있는 수와 대략 같다. 우리는 기계가 무엇때문에 그렇게도 엄청난 생산물량을 요술과 같이 만들어내며 그렇게도 방대한 로동자군을 《유

---

(264) 부인장신구제조업은 본래는 머리장식물만 제조하는데 부인용 외투와 짧은 외투를 제조하기도 한다. dressmakers (부인복제조공) 는 독일의 putzmacherinnen과 같은 것이다.

리》 시키는것을 촉진하는가를 이제야 알게 된다.

《의복》의 생산은 수공업공장(분산된 사지[125]가 이미 기성의것으로 되여있는 그러한 분업을 그자체내에서 재생산한데 불과하다.)에 의하여 진행되며 비교적 작은 수공업장주들(그들은 이전과 같이 개인적소비를 위하여 일하는것이 아니라 수공업공장과 상점을 위하여 일하며 그리하여 종종 전체 도시와 지방이 례컨대 제화업 등등과 같은 부문에 전문적으로 종사하게 된다.)에 의하여 진행되며 끝으로 소위 가내로동자들(그들은 수공업공장, 상점 및 지어는 비교적 작은 장주들의 외업부를 이룬다.)에 의하여 진행되는데 이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265) 다량의 로동재료, 원료, 반제품 등등은 대공업이 제공하며 저렴한 인간재료(자비와 련민에 맡겨진)는 대공업과 대농업에 의하여 《유리된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이 분야의 수공업공장이 발생하게 된것은 주로 수요의 모든 변동에 순응할수 있도록 준비된 로동자대군을 자기 수중에 가지려는 자본가의 욕망때문이다.(266) 그런데 이 수공업공장은 자기와 나란히 분산된 수공업적생산과 가내생산을 자기의 광범한 기초로서 오래 존속시켜왔다. 이 로동부문에서 잉여가치가 대량적으로 생산되며 또 동시에 생산물이 더욱더 싸게 되는것은 주로 입에 겨우 풀칠이나 할만한, 인간으로서는 더 할수 없는 최대한의 로동시간과 결부된 최저한의 로임의 덕택이였으며 또 지금도 그 덕택이다. 상품으로

---

(265) 영국의 부인장신구제조업과 부인복제조업은 대부분은 고용주의 건물에서 진행되는데 부분적으로는 그곳에서 기식하는 고용녀직공에 의하여, 부분적으로는 밖에서 다니는 일용녀직공에 의하여 진행된다.

(266) 조사위원 화이트는 거의 전부가 녀성인 1,000명 내지 1,200명을 고용하고있는 어떤 군복제조수공업공장과 근 반수가 아동과 소년 등등인 1,300명의 로동자가 있는 어떤 제화수공업공장을 방문하였다.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2차보고.》, XLVII페지, 제319호.)

전화된 인간의 땀과 피가 값싼것—이것이 바로 판매시장을 특히 영국적인 관습과 기호가 지배하는 영국의 식민지시장을 부단히 확대하였으며 또 매일같이 확대하고있는것이다. 드디여 전환점이 왔다. 낡은 방법의 기초 즉 체계적으로 발전된 분업을 많건적건 수반한 로동자재료의 잔인한 착취만으로써는 장성하는 시장과 더욱 급속히 장성하는 자본가들간의 경쟁에 이미 불충분하게 되였다. 기계의 시대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였다. 부인복제조업, 재단업, 제화업, 재봉업, 모자제조업 등등과 같은 이 생산분야의 무수한 모든 부문을 한결같이 점령하였으며 결정적으로 혁명적인 역할을 논 기계는 재봉기이다.

로동자들에 대한 재봉기의 직접적영향은 대공업시기에 새로운 생산부문들을 처음으로 정복하는 모든 기계들의 영향과 거의 같다. 아주 나어린 아동들은 배제된다. 기계로동자의 임금은 다수가 《가난한 사람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에 속하는 가내로동자의 임금에 비하면 높다. 기계의 경쟁의 대상으로 된, 비교적 좋은 처지에 있던 수공업자들의 임금은 저락한다. 새로운 기계로동자들은 전적으로 소녀와 젊은 부녀들이다. 그들은 기계력의 도움을 받아 힘든 작업에서의 남성로동의 독점을 조절하며 쉬운 작업령역에서 늙은 녀성과 어린 아동들을 대량적으로 구축한다. 격렬한 경쟁은 가장 약한 손로동자들을 격멸한다. 최근 10년간 런던의 굶어죽는 사람수의 엄청난 증가는 기계재봉업의 확장과 병행하고있다.(267) 재봉기에서 일하는 새로운 녀직공들은 기계의 무게, 크기 및

---

(267) 레컨대 1864년 2월 26일의 중앙등기소 소장[370]의 사망주보에 의하면 굶어죽은 사건이 5건이다. 같은 날 신문 《타임스》는 그밖의 굶어죽은 사건 1건을 보도하고있다. 한주일에 6명이 아사의 희생자로 되였다!

특성에 따라 재봉기를 손과 발로 또는 손만으로 앉든가 서서 움직이는데 이들은 많은 로동력을 지출하여야 한다. 그들의 로동시간은 대체로 구제도에서보다는 짧다 하더라도 그들의 작업은 그 과정이 계속되는 시간이 길기때문에 건강에 해롭다. 구두, 코르세트, 모자 등등을 제조함에 있어서 본래 빼곡한 배좁은 작업장에 재봉기가 설치되는만큼 그것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증대시킨다. 조사위원 로드는 이렇게 말한다.

《30~40명의 기계로동자가 함께 일하고있는, 천정이 낮은 작업장에 들어설 때의 기분은 참을수 없는것이다.…그 열기는 실로 무섭다. 물론 그 열의 일부는 다리미를 달구기 위한 가스로때문이다.…그러한 작업장에서는 소위 적당한 로동시간 즉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로동시간이 실시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정해놓고 3~4명이 졸도한다.》(268)

사회적생산방식의 변혁, 생산수단의 변화의 필연적산물은 과도형태의 착잡한 혼돈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과도형태는 재봉기가 이러저러한 공업부문을 이미 점령한 그 범위의 크기, 그 시간의 길이에 따라 변화하며 또 로동자의 그 당시 형편에 따라, 공장제수공업생산, 수공업생산 또는 가내생산중 어느것이 우세하였는가에 따라, 작업장의 임차료(269) 등등에 따라 변화한다. 례컨대 로동이 대개 주로 단순한 협업에 의하여 이미 조직되여있는 부인복제조업에서는 재봉기는 최초에 공장제수공업생산의 한 새로운 요인에 불과하다. 재단업, 내의제조업, 제화업 등등에서는 모든 형태들이 뒤엉켜있다.

(268)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2차보고》, 1864년판, LXVII페지 제406~409호, 84페지 제124호, LXXIII페지 제441호, 68페지 제6호, 84페지 제126호, 78페지 제85호, 76페지 제69호, LXXII페지 제438호.

(269) 《작업장의 임차료는 종국적으로 이 점을 결정하는 요소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작은 고용주들과 가족들에게 일을 나누어주는 낡은 제도는 수도에서 가장 오래 유지되였고 또 가장 빨리 회복되였다.》(우와 같은 보고, 83페지, 제123호) 마지막 구절은 제화업에만 해당된다.

여기에는 본래의 공장제생산이 있다면 저기에는 중간고용주가 우두머리자본가로부터 원료를 받아 《세방》이나 《다락방》에서 재봉기의 주위에 10~15명 또는 그 이상의 임금로동자들을 집결시킨다. 마지막으로 기계가 아직 조직적체계를 이루지 않고 소규모로 사용될 때에 일반적으로 모든 기계에서 그러하듯이 수공업자 또는 가내로동자는 자신의 가족이나 고용해들인 소수의 로동자와 함께 그자신의 재봉기를 리용한다.(270) 사실 현재 영국에서는 자본가가 많은 재봉기를 자기의 건물에 집중시키고 기계생산물을 가내로동자대군에게 나누어 더 가공시키는 제도가 성행되고있다.(271) 그러나 과도적 형태들이 비록 착잡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래의 공장제생산에로의 전화의 경향은 감추지 못한다. 이 경향을 조장시키는 것은 첫째로는 재봉기자체의 성질이며 재봉기의 다종다양한 용도는 이전에 분산된 여러 생산부문들을 같은 건물과 같은 자본의 지휘하에 통합하도록 추동한다. 다음으로는 예비적인 바느질과 기타 약간의 작업도 기계가 있는 곳에서 하는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사정이며 끝으로 자신의 기계를 가지고 생산하는 수공업자 및 가내로동자들의 불가피한 수탈이다. 그들은 부분적으로는 이미 현재 이러한 운명에 빠졌다. 재봉기에 투하되는 자본량의 부단한 증대는(272) 생산을 자극하며 시장의 정체를 초래하는바 이 정체는 가내로동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재봉기를 팔아버리지 않을수 없게 한다. 재봉기자체의 과잉생산은 그것의 판로가 막힌 생산자들로 하여금 기계

---

(270) 로동자의 형편이 극빈민의 형편과 거의 다른것이 없는 장갑제조업 등등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다.

(271)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2차보고》, 1864년판, 83페이지, 제122호.

(272) 레스터에서만 하여도 도매용으로 생산하는 장화 및 단화 제조업에 사용된 재봉기는 1864년에 이미 800대였다.

를 한주일씩 임대하지 않을수 없게 하며 그리하여 소기계소유자들에게 치명적인 경쟁을 일으키게 한다.(273) 기계구조의 부단한 변화와 부단한 가격저락은 낡은 기계의 가치를 부단히 저하시키며 그 결과 대자본가들만이 그것을 헐값으로 대량적으로 사들이여 유리하게 리용할수 있다. 끝으로 증기기관에 의한 인간의 교체는 류사한 모든 변혁과정에서와 같이 여기에서도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증기력의 응용은 처음에는 기계의 진동, 속도조절의 곤난성, 보다 가벼운 기계들의 급속한 파손 등등과 같은 순전히 기술적인 장애에 봉착하나 이것들은 모두 곧 경험이 그것을 극복하도록 가르칠수 있는것들이다.(274) 한편으로는 비교적 큰 수공업공장에서의 수많은 작업기의 집적이 증기력의 응용을 자극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증기와 인간근육과의 경쟁이 대공장에서의 로동자와 작업기의 집적을 촉진한다. 그리하여 례컨대 영국에서의 의복생산①의 방대한 분야들이 대부분의 다른 생산과 마찬가지로 공장제수공업, 수공업, 가내로동으로부터 공장제생산에로의 변혁을 겪고있는데 이미 이렇게 이행하기전에 상술한 모든 형태들은 대공업의 영향하에 완전히 변형되고 해체되고 불구화되였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공장제도의 적극적인 발전적요인을 보여주지 못하고 다만 공장제도의 모든 기괴한 측면만을 재생산하였으며 또 지어는 그것을 릉가하기까지 하였다.(275)

(273)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2차보고》, 1864년판, 84페지, 제124호.

(274) 례컨대 런던의 피믈리코에 있는 륙군피복공장, 런던 데리에 있는 틸리-헨더손의 내의공장, 1,200명의 《일손》을 사용하는 리머리크에 있는 터이트피복공장에서 그러하였다.

(275) 《공장제도에로의 경향》(《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2차보고》, 1864년판, LXVII페지). 《이 산업전체가 현재 과도상태에 있으며 레스업, 직조업 등등에서 일어난 것과 동일한 변화가 일어나고있다.》(우와 같은 보고, LXVII페지, 제405호) 《하나의 완

① 이 책 542페지를 보라. -편집자

자연발생적으로 수행되는 이 산업혁명은 녀성, 소년 및 아동들이 로동하고있는 모든 공업부문에 공장법의 적용이 확대됨으로써 인위적으로 촉진된다. 로동일의 길이, 휴식시간, 작업개시시간과 끝나는 시간 등에 관한 강제적규제, 아동의 교대제도, 일정한 년령미만의 일체 아동의 사용금지 등등은 한편으로는 기계의 사용을 증대시키며(276) 원동력으로서의 근육을 증기로 교체할것을(277) 강요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에서 잃은것을 공간에서 얻기 위하여 로, 건물 등등 공동으로 리용되는 생산수단의 확장이 진행된다. 한마디로 말하여 생산수단의 가일층의 집적과 그에 상응하는 로동자들의 가일층의 집결이 나타난다. 공장법의 위협을 받는 모든 공장제수공업이 열렬히 되풀이하고있는 주요반대론은 실제는 생산을 종전의 규모로 계속하려면 보다 큰 투자가 필요하다는것이다. 그러나 공장제수공업과 가내로동의 중간형태와 그리고 가내로동자체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로동일 및 아동로동의 제한과 더불어 지반을 상실하고만다. 값싼 로동력의 무제한한 착취는 그것들의 경쟁능력의 유일한 기초를 이루고있는것이다.

공장제생산의 주요조건은 특히 그것이 로동일의 규제를

전한 혁명》.(우와 같은 보고, XLVI페지, 제318호) 1840년의 아동로동조사위원회 당시에는 양말제조업은 아직 손로동이였다. 1846년이래 각종 기계가 채용되였으며 그것이 현재는 증기에 의하여 운전된다. 영국의 양말제조업에 종사하는 각종 년령(3세부터)의 남녀로동자의 총수는 1862년에 약 12만명이였다. 1862년 2월 11일의 의회보고서[371]에 의하면 그중 다만 4,063명만이 공장법의 적용하에 있었다.

(276) 레컨대 도기제조업에 관하여는 《글라스고의 브리텐도기제조소》를 가지고있는 코크란회사의 보고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우리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비숙련로동에 의하여 조종되는 기계의 사용을 강화하게 되는바 우리는 종래의 방법에 의하는것보다도 더 많은 생산물을 생산할수 있다고 매일같이 확신을 갖게 된다.》(《공장감독관보고, 1865년 10월 31일》, 13페지) 《공장법의 작용은 기계의 가일층의 채용을 촉진하는것이다.》(우와 같은 보고, 13~14페지)

(277) 레컨대 도기제조업에 공장법이 실시된후 수동록로 대신에 원동력록로가 많이 증가되였다.

받게 된 때부터는 결과가 정상적으로 보장되여야 한다는것 즉 주어진 시간에 일정한 량의 상품이 생산되여야 하며 또는 소기의 유용효과가 달성되여야 한다는것이다. 또 규정된 로동일중 법정휴식은 생산과정에 있는 제품에 손상을 줌이 없이 작업을 돌연적 및 주기적으로 중단시킬것을 전제로 한다. 물론 결과의 이러한 보장성과 작업정지의 가능성은 순전한 기계적생산부문에서는 례컨대 도기제조업, 표백업, 염색업, 빵제조업, 대부분의 금속가공업에서와 같이 화학적 및 물리적 과정이 일정한 역할을 노는 부문에서 보다 용이하게 달성될수 있다. 무제한한 로동일, 야간로동 및 인간력의 자유로운 랑비 등 구습이 의연히 존재하는 곳에서는 모든 자연발생적 장애가 곧 생산의 영원한 《자연적제한》으로 간주된다. 어떤 독약이 해충을 근절하는것도 공장법이 이러한 《자연적제한》을 근절하는것보다는 확실하지 못할것이다. 도기제조업에 종사하는 나으리들보다 더 소리높이 《불가능》하다고 웨친 사람은 없었다. 1864년에 공장법이 그들에게 강제되자 16개월후에는 벌써 불가능하다는 말이 죄다 없어졌다. 공장법에 의하여 초래된

《도기제조용 진흙을 증발에 의하지 않고 압력에 의하여 만드는 개량방법, 굽지 않은 제품을 말리기 위한 로의 새로운 구조 등등은 도기제조술에서 매우 중대한 사변들이며 이것들은 전세기에는 볼수 없었던 도기제조술의 진보를 의미한다.…로의 온도가 현저히 저하되고 석탄소비가 현저히 감소되였으며 제품은 보다 빨리 구워진다.》(278)

모든 예언에도 불구하고 도기의 생산비는 오르지 않고 생산량은 증가하여 1864년 12월부터 1865년 12월까지의 12개월간의 수출가치는 과거 3년간의 평균수출가치보다 138,628

(278) 《공장감독관보고. 1865년 10월 31일》, 96, 127페지.

파운드나 초과하였다. 성냥제조에 있어서는 소년들이 점심밥을 먹는 동안에도 성냥개비를 뜨거운 린혼합액속에 적시며 거기에서 올라오는 독한 증기가 그들의 얼굴에 부딪치는것이 자연법칙으로 간주되였다. 공장법(1864년)은 시간을 절약하는 방도로 독한 증기가 로동자에게 부딪칠수 없게 하는 《침지기》를 사용하게 하였다.(279) 또 레스공장제수공업중에서 공장법의 적용을 아직 받지 않는 부문들에서는 각종 레스재료들을 말리는데 필요한 시간이 각이하여 3분으로부터 1시간 또 그 이상차이가 있기때문에 여기에서는 점심시간을 규칙있게 할수 없다고 지금도 주장하고있다. 이에 대하여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위원은 이렇게 대답한다.

《사정은 도배지인쇄업에서와 같다. 이 부문의 주요공장주들중 몇몇 사람은 사용되는 재료의 성질이 다르고 재료가 통과하는 과정이 다르기때문에 점심시간때문에 작업을 갑자기 정지하면 반드시 큰 손해를 본다고 격렬히 주장하였다.…그들은 공장법확장조례 (1864년) 제6절 제6조에 의하여 이 조례가 발표된 날부터 18개월의 유예기간을 승인받고 이 기간이 경과한후에는 공장법이 규정한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280)

이 법률이 의회의 비준을 받기가 무섭게 공장주 제씨들은 벌써 다음과 같은것을 발견하였다.

《우리가 공장법실시에서 예기하였던 폐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생산이 조금이라도 저해된것을 볼수 없다. 사실 우리는 같은 시간에 보다 많은것을 생산한다.》(281)

그리하여 영국의회는(그의 독창성을 아마도 누구나 비난

---

(279) 성냥공장에 이러저러한 기계가 채용됨으로써 그 공장의 한 부문에서 230명의 청년들이 14세 내지 17세의 32명의 소년, 소녀들로 교체되였다. 로동자의 이러한 절약이 1865년에는 증기력의 응용에 의하여 더욱 촉진되였다.

(280)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2차보고》, 1864년판, IX페지, 제50호.

(281) 《공장감독관보고. 1865년 10월 31일》, 22페지.

할 사람은 없을것이다.) 경험에 의하여 로동일의 제한과 규제에 대한 소위 생산상의 자연적장애를 하나의 강제법에 의하여 간단히 일소할수 있다는 견해에 도달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어떤 공업부문에 공장법이 실시될 때에는 6개월에서 18개월까지의 기간이 제정되는데 이 기간에 공장주가 해야 할 일은 기술적장애를 제거하는것이다. 《불가능이라고? 그런 어리석은 말은 결코 나에게 하지도 말라!》라는 미라보의 말은 특히 현대적공업기술학에 적용된다. 그러나 공장법이 그와 같이 공장제수공업생산의 공장제생산에로의 전화에 필요한 물질적요소들을 온실에서처럼 성숙시킨다면 한편 그것은 자본투하의 증대의 필요에 의하여 소장주들의 몰락과 자본의 집적을 촉진한다.(282)

순전히 기술적인 또 기술적으로 제거할수 있는 장애를 도외시하여도 로동일의 규제는 로동자들자신의 불규칙적습관과 충돌한다. 특히 도급제임금이 지배적으로 실시되는 곳에서 또 하루나 1주일간에 있어서의 시간의 허비를 그후의 과도로동이나 야간로동으로 메울수 있는 곳에서 그러한데 이것은 성인로동자를 야수화하며 그의 년소한 동료와 녀성동료들을 파멸시키는 방법이다.(283) 로동력지출에서의 이러한 무규칙성

---

(282) 《필요한 개량은…다수의 낡은 수공업공장에서는 현재의 많은 소유자들의 힘에 겨운 자본투하 없이는 채용될수 없다.…공장법의 실시는 필연적으로 일시적혼란을 수반한다. 이 혼란의 규모는 제거해야 할 폐해의 크기에 정비례한다.》(《공장감독관보고. 1865년 10월 31일》, 96, 97페지)

(283) 레컨대 용광로에서는 《주말에 가서 일반적으로 작업시간이 훨씬 연장되는데 그것은 로동자들이 월요일에는 놀고 또 때로는 화요일의 일부나 또는 그 전부까지 노는 그들의 관습때문이다.》(《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3차보고》, VI페지) 《소장주들은 일반적으로 로동시간이 극히 불규칙적이다. 그들은 2일이나 3일은 허송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메우려고 불철주야 일한다.…그들은 자기 아이들을(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언제나 일시킨다.》(우와 같은 보고, VII페지) 《작업착수에서 볼수 있는 규칙성의 결여는 작업시간의 연장에 의하여 이를 메울수 있다는 가능성과 관습에 의하여 조장된다.》(우와 같은 보고, XVIII페지) 《버밍감에서의 막대한 시간의 손실…시간의 일부는 허송하며 나머

은 단조로운 고된 일에서 오는 권태에 대한 자연발생적인 조포한 반응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생산자체의 무정부성에 기인하는것인데 이 생산의 무정부성은 또 로동력에 대한 자본의 무제한한 착취를 전제로 한다. 산업순환의 일반적인 주기적변동과 매개 생산부문에서의 특수한 시장변동과 더불어 등장하게 되는것은 항행에 유리한 시절의 주기성에 근거하거나 또는 류행에 근거한 소위 계절과 그리고 최단기간내에 수응해야 할 큰 주문의 돌발성이다. 이 돌발적인 단기주문의 관습은 철도와 전신이 보급되면 될수록 더 일반적인것으로 된다. 레컨대 런던의 한 공장주는 이렇게 말하고있다.

《전국에 철도체계가 확대됨으로써 단기주문의 관습이 크게 조장되였는데 이제는 구매자들이 2주일에 한번씩 글라스고, 만체스터 및 에딘버러에서 우리가 상품을 제공하는 시티의 상점으로 도매로 사기 위하여 찾아온다. 그들은 종래의 관습대로 창고에서 물건을 사는것이 아니라 우리가 즉시로 응해야 할 주문을 한다. 수년전에는 우리는 언제나 다음계절의 수요를 위하여 한가한 때에 미리 일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음계절에 무엇이 수요될지 아무도 예언하지 못한다.》 (284)

아직 공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장과 수공업공장에서는 소위 계절의 시기에는 돌발적주문에 의해서는 주기적으로 혹심한 과도로동이 지배한다. 공장, 수공업공장 및 상점의 외업부인 가내로동분야는 본래 극히 불규칙적이며 원료와 주문에서 완전히 자본가의 자의에 의존하는데 여기서 자본가는 건물, 기계 등등의 리용에는 조금도 고려를 돌리지 않고 다만 로동자의 생명을 대가로 하여 모험을 하는것이다. 이 분

지는 노예와 같이 일한다.》 (우와 같은 보고, XI페지)

(284)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4차보고》, XXXII페지. 《철도체계의 확장은 돌발적 주문의 이 관습을 몹시 촉진하였으며 그리하여 로동자들이 분주하게 되고 식사시간을 소홀히 하게 되고 작업시간을 연장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들 한다.》 (우와 같은 보고, XXXI페지)

야에서는 이와 같이 하여 자본가에 봉사하기에 항상 준비된 산업예비군이 계통적으로 부단히 육성되며 이들은 1년중 어떤 때에는 극히 비인간적인 고역으로 말미암아 유린을 당하다가도 어떤 때에는 작업이 없어서 룸펜의 처지에 떨어진다. 아동로동조사위원회의 보고는 이렇게 말하고있다.

《고용주들은 가내로동의 상습적인 불규칙성을 리용하여 시급한 로동이 필요한 때에는 밤 11시, 12시, 2시까지 아니 혼이 말하듯이 언제까지라도 가내로동을 연장시키는데》 그나마 이것도 《악취로 졸도할 지경인》 장소에서 그렇게 한다. 《아마도 당신들은 문앞에까지 가서 문을 열기만 해도 더 들어갈 생각이 나지 않을것이다.》(285)

심문을 받은 증인의 한사람인 제화공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고용주들은 괴상한 사람이다. 그들은 소년을 반년간은 죽도록 혹사하고 나머지 반년간은 거의 일이 없어 놀게 하더라도 그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있다.》(286)

기술적장애와 마찬가지로 이 소위 《영업관습》(《usages which have grown with the growth of trade》)도 관계자본가들은 생산의 《자연적제한》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또 주장하고있는데 이것은 면방직업귀족들이 공장법①에 의하여 처음 위협을 받았을 때 즐겨 부르짖던 말이다. 그들의 산업이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세계시장에, 따라서 또 항해에 의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경험은 그들의 거짓을 실증하였다. 그때부터 영국의 공장감독관들은 《영업상의 장애》라는것을 공허한 구실로 취급하고있다.(287) 사실 아동로동조사위원회의 철저

(285)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4차보고》, XXXV페지, 제235호와 제237호.

(286) 우와 같은 보고, 127페지, 제56호.

(287) 《해상수송을 요하는 주문에 제때에 수응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상업상 손실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것은 1832년 및 1833년에 공장주들이 즐겨 한 론거였다고 생각된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하여 주장할수 있는것은 증기가 모든 거리를 절반으로 단축하고

① 1833년의 공장법을 말한다. 이 책 321~325페지를 보라. 一편집자

하고 성실한 조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증명하고있다. 즉 일부 산업에서는 로동일의 규제에 의하여서만 이미 사용하고 있는 로동량을 년중 더 고르게 분배할수 있었을것이며(288) 이 규제는 살인적이며 무내용하며 또 대공업체계에는 맞지 않는 변덕스러운 류행에 대한 최초의 합리적인 구속이며(289) 대양항행과 교통수단일반의 발전은 계절로동의 본래의 기술적기초를 제거하였으며(290) 통제할 도리가 없다고하는 기타의 모든 사정들도 건물의 확장, 기계의 추가, 동시에 사용되는 로동자수의 증가에 의하여(291) 또 이 모든 변화의 도매상체계에 대한 반작용(292)에 의하여 제거된다. 그러나 자본은

새로운 교통조정을 확립하기전의 시기와 같은 그러한 힘은 이미 못가질것이다. 그 당시에도 이 론의는 실제로 시험해보면 근거없은것이였는데 이제 와서는 전혀 성립될수 없는것일것이다.》(《공장감독관보고. 1862년 10월 31일》, 54~55페지)

(288)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3차보고》, XVIII페지, 제118호.

(289) 죤 벨러즈는 1699년에 이미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있다. 《류행의 변화는 빈민을 증가시킨다. 이에는 두가지 큰 폐단이 있다. 즉 1) 직물상과 직포장주들은 봄이 와서 그때 류행되는것이 무엇인가를 알기전에는 장공을 고용하기 위하여 그들의 자본을 감히 투하하려 하지 않으므로 겨울에는 일부족으로 장공들이 비참한 상태에 빠진다는것, 2) 봄에는 장공들이 부족되므로 직포장주들은 3개월 또는 반년동안 나라의 상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수의 도제를 인입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농촌에서 일군을 끌어가며 농업은 일손을 잃게 되고 도시는 거지투성이로 되며 또 구걸을 수치로 아는 많은 사람이 겨울에는 굶어죽는다.》(《빈민, 공업, 상업, 식민지 및 패덕에 관한 론술》, 9페지)

(290)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5차보고》, 171페지, 제34호.

(291) 레컨대 브랫포드의 수출상들의 증언중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분명히 소년들을 상점에서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 또는 7시 반이상으로 더 오래 일을 시킬 필요가 없다. 이것은 전적으로 추가지출 및 추가일손의 문제이다. 일부 고용주들이 그렇게 탐욕적이 아니라면 소년들은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할 필요는 없었을것이다. 추가기계 한대의 비용은 불과 16~18파운드이다.…모든 애로는 설비와 장소의 부족에서 온다.》(우와 같은 보고, 171페지, 제35, 36, 38호)

(292) 우와 같은 보고. 로동일의 강제적단속을 공장주에 대하여는 로동자를 옹호하는 수단으로 보며 도매상업에 대하여는 공장주자신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보는 런던의 한 공장주의 증언이 있다. 《우리 영업에서의 중압은 수출업자들이 조성하는바 그들은 레컨대 범선으로 상품을 발송하여 일정한 계절이 시작될 때 목적지에 도착케 하며 동시에 범선과 기선간의 운임의 차액을 착복하려 하든가 또는 그들이 경쟁자들보다 먼저 외국시장에 나타나려고 두개 기선중 빠른편을 택하든가 한다.》(81페지, 제32호)

그의 대변자들의 입을 빌어 거듭 인용하고있는바와 같이 로동일을 강제적으로 단속하는 《의회의 일반적법령의 압력하에서만(293) 그러한 변혁에 동의한다.》

9. 공장립법(보건 및 교육 조항). 영국에서의 그의 일반화

공장립법, 생산과정의 자연발생적모습에 대한 사회의 최초의 의식적이며 계획적인 이 반작용은 우리가 이미 본바와 같이 면사, 자동식뮬방적기 및 전신과 마찬가지로 대공업의 필연적인 산물이다.① 우리는 영국에서의 공장립법의 일반화에 대하여 말하기전에 로동일의 시간수에 관계없는 그 일부 조항에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보건조항은 자본가가 쉽게 그것을 회피할수 있도록 꾸며진것임은 더 말할것도 없거니와 그 내용이 극히 빈약하여 사실상 벽에 흰칠을 하라든가 기타 약간의 청결대책, 환기 및 위험한 기계에 대한 보호규정들에 국한되여있다. 우리는 제3권[180]에서 공장주들이 자기 《일손》들의 사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얼마 되지 않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여있는 조항을 반대하여 얼마나 미친듯이 싸우는가 하는것을 다시 보게 될것이다. 여기에서도 또한 적대적리해관계를 가진 사회에서는 매개인이 그 자신의 리익을 추구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촉진한다는 자유무역론의 신조가 빛나게 실증된다.② 한가지 실례

(293) 한 공장주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의회의 일반적법률의 압력하에서 생산확대의 희생을 대가로 회피할수 있을것이다.》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5차보고》, X페지, 제38호)

① 이 책 276~278, 320~344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이 책 204~205페지를 보라. —편집자

만 들어도 충분할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지난 20년간 아일랜드에서는 아마공업과 그에 따르는 타마공장이 대단히 증가하였다. 거기에는 1864년에 타마공장이 약 1,800개에 달하였다. 가을과 겨울에는 주로 부근 소작인들의 자녀들과 처들인 소년들과 부인들—기계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전야작업에서 떠나서 타마공장의 압연기에 아마를 먹이는 일을 한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사고는 그 량과 정도에 있어서 기계의 력사상 그 류례가 전혀 없다. 킬디난(코크근방)에 있는 단 하나의 타마공장에서만도 1852년부터 1856년까지에 사망이 6건, 불구자로 되는 중상이 60건이였는데 그 모두가 수실링의 비용이면 되는 극히 간단한 장치로 방지할수 있는것들이였다. 다운패트리크에 있는 공장의 증명의사 W. 화이트는 1865년 12월 16일의 공식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언명하고있다.

《타마공장에서의 사고는 가장 무서운 종류의것이다. 많은 경우에 사지의 하나가 동체에서 떨어져나간다. 죽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련한 불구자로 되여 일생 고생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부상의 일반적인 결과이다. 국내에 공장이 증가됨에 따라 물론 이 무서운 결과도 확대될것이다. 나는 타마공장들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감독에 의하여 신체와 생명의 큰 희생이 방지될것이라고 확신한다.》(294)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 대하여는 극히 간단한 청결보건설비도 국가의 강제법에 의거해야 하는데 이 사실보다 더 명백히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을 특징지을수 있는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1864년의 공장법은 도기제조업에서 200개이상의 작업장에서 흰칠을 하게 하고 청소하게 하였는데 그전에는 20년간이나 또는 심지어 전적으로 그러한 일이 절제되여왔다. (이것이 자본의《절욕》이다!)

(294)《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5차보고》, XV페지, 제72호이하.

이러한 작업장에는 27,878명의 로동자가 고용되여 지금까지 과도한 주간작업과 그리고 종종 있게 되는 야간작업시에 극히 유해한 공기를 마셔왔다. 이로 말미암아 다른 면에서는 비교적 무해한 이 작업도 질병과 죽음의 온상으로 되였다. 공장법은 통풍시설을 대단히 증가시켰다.》(295)

동시에 공장법의 이 부분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그 본질로 보아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어떠한 합리적개량도 배제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이미 루차 지적한바와 같이 영국의 의사들은 최저한도로 1인당 500립방푸트의 공간이 차례져야만 지속적으로 작업할수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언명하고있다.① 좋다! 그런데 공장법이 그 모든 강제규정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소작업장의 공장화를 촉진시키며 따라서 간접적으로 소자본가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대자본가에게 독점을 보장하고있는 이상 만약 작업장에서 매 로동자당 필요공간을 법률로 강제한다면 이는 수천의 소자본가를 일거에 직접 수탈하는것으로 될것이다! 그것은 대자본이나 소자본이나 할것없이 다같이 로동력의 《자유로운》 구매와 소비에 의하여 자본이 자기증식을 한다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근본에 대하여 타격을 주는것으로 될것이다. 따라서 공장립법은 이 500립방푸트의 공간앞에서는 숨이 막힌다. 보건기관, 공업조사위원회, 공장감독관들은 500립방푸트는 필요한것이지만 그것을 자본에 강제할수는 없다고 재삼 반복하여 말하고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실지는 로동자의 폐결핵과 기타 폐병들이 자본의 한개 존재조건이라고 선언하는것이다.(296)

---

(295) 《공장감독관보고. 1865년 10월 31일》, 127페지.

(296) 경험을 통하여 알려진바에 의하면 중등으로 건강한 한사람이 보통 호흡할 때마다 소비하는 공기는 약 25립방인치이며 1분간의 호흡은 약 20회이다. 따라서 24시간내

① 이 책 295페지를 보라. —편집자

공장법의 교육조항들은 전체적으로 빈약한것이지만 그러나 초등교육을 로동의 강제적조건으로 선언하였다.(297) 이 조항들의 성과는 학업 및 체육의 육체적로동과의 결합(298) 따라서 육체로동의 학업 및 체육과의 결합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립증하였다. 공장감독관들은 학교선생의 증언에서 공장아동들의 수업시간은 비록 정규적주간학생들의 절반에 불과하나 배우는것은 같거나 때로는 더 많다는것을 곧 발견하였다.

《사정은 간단하다. 학교에 반나절만 나가는 학생들은 언제나 정신이 맑으며 또 거의 언제나 수업을 받아들일수 있으며 또 받아들이려고 한다. 반로반학의 제도에서는 로동과 학업중 어느 하나가 끝나면 다른것은 휴식과 청신제로 되며 따라서 이 제도는 량자중 어느 하나가 중단없이 계속되는 제도보다 아동에게 훨씬 적합하다. 아침 일찍부터 학교에 앉아있는—특히 날씨가 더운 때—소년은 로동을 끝마치고 생기있고 맑은 정신으로 오는 소년과 도저히 경쟁할수 없다.》(299)

이러한 론증은 1863년 에딘버러에서의 사회학회의석상

의 한사람의 공기소비량은 약 72만립방인치 즉 416립방푸트이다. 그러나 주지하는바와 같이 한번 들여마신 공기는 자연의 대작업장에서 정화되기전에는 호흡과정에 더는 봉사할수 없다. 왈렌틴과 브룬너의 실험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은 한시간에 약 1,300립방인치의 탄산가스를 뱉는것이다. 이것은 24시간에 약 8온스의 고체탄소가 페로부터 배출되는 것과 같은것이다. 《매개인에게 적어도 800립방푸트는 해당되여야 한다.》(헉슬리)

(297) 영국의 공장법에 의하면 부모는 14세미만의 아동에게 초등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고서는 《감독을 받는》 공장에 보낼수 없다. 공장주는 이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공장교육은 강제적이며 또 그것은 로동의 한개 조건이다.》(《공장감독관보고. 1865년 10월 31일》, 111페지)

(298) 공장아동과 빈민학교아동의 강제교육과 체육(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군사훈련도 있다.)을 결합시킨 극히 유익한 성과에 대해서는 《전국사회과학촉진협회》 제7년차 회의에서 한 N. W. 씨니어의 연설(《의사보고》, 1863년 런던판, 63, 64페지에 게재)과 1865년 10월 31일의 공장감독관보고, 118~120, 126페지이하를 참조하라.

(299) 《공장감독관보고. 1865년 10월 31일》, 118~119페지. 천진한 어떤 견직공장주는 아동로동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에게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유능한 로동자를 생산하는 진정한 비결은 어렸을 때부터 로동과 학업을 결합시키는데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물론 로동은 너무 격렬한것이여서도 안되며 싫증을 주는것이거나 건강에 해로운것이여서도 안된다. 학업의 기분조절을 위하여 나는 내자식들에게도 로동과 유희를 하게 하려고 생각한다.》(《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5차보고》, 82페지, 제36호.)

에서 한 씨니어의 연설에서도 볼수 있다. 그는 연설에서 또 무엇보다도 상류 및 중류 계급의 아동들의 일면적이며 비생산적인 장시간의 수업이 선생의 로동을 쓸데없이 증가시키며 《동시에 아동들의 시간, 건강 및 정력을 무익하게 랑비시킬 뿐만아니라 절대적으로 유해하게 랑비시킨다.》(300)고 지적하고있다. 로버트 오엔의 저서를 연구하면 상세히 알수 있는 바와 같이 미래의 교육의 맹아가 공장제도에서 발생하였다. 미래의 교육은 일정한 년령이상의 모든 아동을 위하여 생산적로동을 학업 및 체육과 결합시키는것으로서 그것은 비단 사회적생산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일뿐만아니라 전면적으로 발전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가 이미 본바와 같이 대공업은 한 사람을 어떤 한개 부분작업에 일생동안 고착시키는 공장제수공업적분업을 기술적으로 폐절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대공업의 자본주의형태는 그 분업을 더욱 괴이하게 재생산한다. 즉 이 분업은 본래의 공장에서는 로동자가 부분기계의 의식있는 부속물로 전화됨으로써 재생산되며 기타 모든 곳에서는 부분적으로는 기계와 기계로동을 간혹 사용함으로써(301), 부분적으로는 분업

(300) 《전국사회과학촉진협회》 제7년차회의에서 한 씨니어의 연설은 《의사보고》, 66페지에 게재되였다. 대공업이 일정한 발전단계에 도달하여 물질적생산방식과 사회적생산관계에 변혁이 일어나면 두뇌에도 변혁이 일어난다는것은 1863년의 N. W. 씨니어의 연설과 1833년의 공장법을 반대하는 그의 공격연설과를 비교하든가 또는 상술한 회의의 견해와 잉글랜드의 일부 농촌지방에서는 빈궁한 부모들이 여전히 굶어죽을가 두려워서 자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있다는 사실과를 비교하면 뚜렷이 알수 있다.① 레컨대 스넬씨는 서머셋셔의 관례로서 가난한 사람이 교구의 구제를 요청할 때에는 그의 아이들을 퇴학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보고하고있다. 펠탐의 목사 올라스톤씨도 또한 어떤 가족들이 《그들의 아동들을 학교에 보내고있기때문에》 일체 구제를 단호히 거절당한 사실을 말하고있다!

(301) 인력으로 움직이는 수공업적기계가 기계원동력을 전제로 하는 발달된 기계와 직접 혹은 간접으로 경쟁하는 경우에 기계를 움직이는 로동자에게 큰 변화가 일어난다.

① 이 책 258~265페지를 보라. —편집자

의 새로운 기초로서 부녀로동, 아동로동 및 비숙련로동을 도입함으로써 재생산된다.① 공장제수공업적분업과 대공업의 본질간의 모순은 강력하게 표현된다. 례컨대 그것은 무엇보다도 현대적공장과 수공업공장에 고용된 아동들의 대부분이 극히 어릴 때부터 가장 단순한 작업에 결박되여 다년간 착취를 당하면서도 후에 그들은 같은 수공업공장이나 공장에서만이라도 쓸수 있는 그 어떤 유용한 작업도 배우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무서운 사실에서 나타난다. 례컨대 영국의 인쇄업에서는 종전에는 낡은 공장제수공업 및 수공업제도에 상응하여 도제들이 보다 단순한 작업에서 보다 복잡한 작업으로 이행하는것이 통례였다. 그들은 일정한 수업과정을 거친 다음 완전한 인쇄공으로 되였다. 읽고 쓸수 있다는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인쇄업수공업자가 되는 하나의 필요조건이였다. 그러나 인쇄기가 나타나면서 이 모든것은 달라졌다. 기계는 두 종류의 로동자를 사용한다. 하나는 기계를 감시하는 성인로동자이고 다른 하나는 대개 11～17세의 소년로동자들인데 그들이 하는 일은 오로지 인쇄용지를 기계에 집어넣든 인쇄된 종이를 기계에서 빼내는것이다. 그들은 특히 런던에서는 1주일에 수일간은 휴식없이 14, 15, 16시간이나 이 고역에 종사하며 때로는 식사시간과 수면시간으로 불과 두시간을 가

시초에 증기기관이 이러한 로동자를 대신하였는데 이제는 로동자가 증기기관을 대신하여야 한다. 그때문에 그의 로동력의 긴장과 지출은 무서울 정도로 극도에 달하는데 이러한 고역을 당하는 미성년들에게 특히 그러하다! 례컨대 조사위원 런지가 코벤트리와 그 근방에서 10세 내지 15세의 소년들을 리봉직기의 운전에 사용하고있는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보다도 어린 아동들이 보다 작은 직기를 운전해야 하였다는데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것은 매우 힘든 로동이다. 소년은 증기력의 단순한 대용물이다.》(《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5차보고》, 1866년판, 114페지, 제6호) 공식보고에서 말하고있는 《이 노예제도》의 살인적결과에 관하여는 같은 페지와 그 아래페지들을 보라.

① 이 책 429～431, 483～488페지를 보라. —편집자

질뿐 련속 36시간이나 일하는 일도 있다!(302) 그들의 대부분은 글을 모르며 또 그들은 통례로 아주 막되고 비정상적인 인간들어다.

《그들이 작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등의 지적교육도 필요하지 않다. 그들에게는 기능을 배울 기회가 적으며 또 판단력을 요하는 기회는 더욱 적다. 그들의 임금은 소년으로서는 어느 정도 높지만 그들이 성장하는데 비례하여 높아지지 않으며 또 대다수는 수입이 더 좋고 더 책임적인 기계감시공의 지위에 올라갈수는 없다. 왜냐 하면 매개 기계에는 감시공은 불과 1명이 붑는데 소년들은 종종 4명이나 붑기때문이다.》(303)

그들은 아동로동에 적당한 년령을 넘기만 하면 즉 적어도 17세가 되기만 하면 인쇄업에서 해고된다. 그들은 범죄의 보충병이 된다. 그들에게 그 어떤 다른 직업을 주려는 약간의 시도가 있었지만 그들의 무지, 조포, 육체적 및 정신적 퇴폐때문에 실패하였다.

작업장내부의 공장제수공업적분업에 관하여 언급한 이 모든것은 사회내부의 분업에도 적용된다. 수공업과 공장제수공업이 사회적생산의 전반적기초를 이루는 한 생산자가 어떤 한 생산부문에 전속하며 그의 직업의 원래의 다양성이 파괴되는것은(304) 발전의 필연적요인으로 된다. 이러한 기초우에서 특수한 각 생산부문은 자체에 상응하는 기술적형태를 경

---

(302)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5차보고》, 1866년판, 3페지, 제24호.

(303) 우와 같은 보고, 7페지, 제59, 60호.

(304) 《스코틀랜드고지의 일부 지방에서는…통계보고에 의하면 많은 양사양인과 오막살이빈농들이 그 처자들과 함께 그자신이 이긴 가죽으로 그자신이 만든 구두를 신었으며 그자신의 손외에는 아무의 손도 닿지 않은 즉 그자신이 벤 양털과 또는 그자신이 재배한 아마로써 만든 의복을 입고다니였다. 의복을 만드는데 필요한 물품중 송곳, 바늘, 골무 및 직포에 사용되는 극소부분의 철제도구외에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염료도 역시 녀성들의 손으로 나무와 판목, 풀에서 채취하였다.》(《두걸드 스튜어드저작집》, 해밀턴판, 제8권, 327~328페지)

험적으로 발견하며 그것을 서서히 완성하며 일정한 성숙정도에 달하면 바로 그것을 급속히 고정시킨다. 상업이 제공하는 새로운 로동재료에 의해서뿐만아니라 로동도구의 점차적변화에 의해서도 변화가 때때로 일어난다. 그러나 로동도구도 경험적으로 그것에 적합한 형태가 일단 발견되면 고정되는데 그것은 로동도구가 흔히 한세대의 수중에서 다른 세대의 수중에로 수천년동안 전해지는것으로써 알수 있다. 18세기에 와서도 각종 특수한 수공업이 오직 경험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통달한 사람들만이 체득할수 있는 mysteries(mystéres)(비결)(305)라고 불리여진것은 특징적이다. 대공업은 사람들자신의 사회적생산과정을 사람들앞에서 은폐하였으며 또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각종 생산부문들을 부문 호상간에 있어서뿐만아니라 각 부문에 통달한 사람들에게까지 수수께끼로 만든 그 장막을 찢어버렸다. 우선 사람의 손을 일체 고려함이 없이 각 생산과정자체를 각개 구성요소들로 분해하는 대공업의 원칙은 새로운 현대적과학인 공업기술학을 낳았다. 착잡하고 일견 내부적련관이 없는듯한 고정된 사회적생산과정의 형태들은 의식적, 계획적이며 소기의 효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화된 자연과학의 응용부문들로 분해되였다. 공업기술학은 또한 인체의 모든 생산적활동이 사용되는 도구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취하게 되는 그러한 소수의 주요 기본운동형태들을 발견하였는데 이것은 마치 기계가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단순한 기계적힘의 부

---

(305) 에띠엔느 발로의 유명한 저작 《수공업의 도서》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것이 지적되여있다. 즉 장공이 장주로 승직할 때에는 그는 《동료를 형제와 같이 사랑하며 그들을 도와주며 직업상의 비밀을 임의로 루설하지 말며 전체 조합의 리익을 위해서라 할지라도 고객에게 자기자신의 상품을 권할 목적으로 타인의 제품의 결함에 주의를 환기시키지 말것》을 맹세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단한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기계학이 잘못 보지 않는 것과 류사하다. 현대적공업은 결코 어떤 생산과정의 기존형태를 종국적인것으로 보지도 않으며 취급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종전의 모든 생산방식의 기술적기초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이였는데 현대적공업의 기술적기초는 혁명적이다.(306) 현대적공업은 기계, 화학적과정 및 기타 방법들에 의하여 생산의 기술적기초 그리고 그것과 함께 로동자의 기능, 로동과정의 사회적결합들을 부단히 변혁한다. 따라서 그것은 사회내부의 분업도 또한 부단히 변혁하며 또 많은 자본과 로동자대중을 한 생산부문에서 다른 생산부문에로 부단히 이동시킨다. 그러므로 대공업의 본성은 로동의 전환, 기능의 류동, 로동자의 전면적인 가동성을 필연적인것으로 만든다. 한편 그것은 고정화된 전문을 가진 낡은 분업을 자본주의적형태로 재생산한다. 우리가 본바와 같이 이 절대적모순은 로동자의 생활상태의 모든 안착, 확고성, 확실성을 폐절한다. 또 부단히 로동자의 수중에서 로동수단과 함께 생활수단을 박탈하며(307) 로동자의 부분기능과 함께 그자신을 남아돌아가는 존재로 만들 위험이 있다. 우리가 본바와 같이 이 모순은 로동

---

(306) 《자산계급은 생산도구의 변혁을 그에 따라 생산관계 나아가서 사회관계전체의 변혁을 부단히 단행하지 않고서는 생존할수 없다. 이와 반대로 종전의 모든 산업계급의 첫째가는 생존조건은 낡은 생산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있었다. 생산에서의 끊임없는 변혁, 모든 사회관계의 부단한 동요, 항구적인 불안정과 변동으로써 자산계급시대는 이전의 모든 시대와 구별된다. 굳어지고 녹쓴 일체 관계는 거기에 따르는 수세기에 걸쳐서 신성화된 관념 및 견해와 함께 해체되고 새로 발생하는 모든 관계는 그것이 미처 고정되기도전에 벌써 낡은것으로 되고만다. 모든 신분제적인, 고정된것들은 없어지고 모든 신성한것들은 모독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드디여 자기들의 생활상태와 자기들의 호상관계를 랭정한 눈으로 관찰할수밖에 없게 된다.》 (F. 엥겔스, K. 맑스 《공산당선언》, 1848년 런던판, 5페지[372])

(307) 《그대 내 쌀주머니를 빼앗아갈진대, 그대는 내 목숨을 빼앗는것이로다.》 (쉐익스피어)[373]

계급을 끊임없이 희생시키며 로동력을 한없이 랑비하며 사회적무정부상태와 관련된 황폐화를 초래하면서 폭발된다.① 이것은 부정적측면이다. 그런데 만약 로동의 전환이 이제는 극복할수 없는 자연법칙으로서만 또 도처에서 장애물에 부딪치는 자연법칙의 맹목적인 파괴력으로서만 자기의 길을 개척한다면(308) 한편 대공업은 또 자체의 파국을 통하여 로동의 전환을, 따라서 또 로동자의 가능한 최대의 다면성을 사회적생산의 일반적법칙으로 인정하며 각종 관계를 이 법칙의 정상적인 실현에 순응시키는것을 하나의 사활적문제로 만든다. 대공업은 자본의 변화하는 착취욕을 위하여 예비로 보유하여 마음대로 리용할수 있는 수많은 비참한 로동자인구대신에 변화하는 로동수요를 위한 인간의 절대적인 리용가능성을 가져오는것 다시말하면 하나의 사회적부분기능의 담장자에 불과한 부분개인 대신에 즉 여러가지 사회적기능을 자기의 여러가지 활동방식으로서 번갈아 수행하는 전면적으로 발달한 개인을 가져오는것을 하나의 사활적문제로 만든다. 대공업에 기초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발전한 이 변혁과정의 한 계기는 공학학교와 농학학교이며 또 하나의 다른 계기는 직업학교인데 여기에서는 로동자의 자녀들이 공업기술학과 각종 생산도구의 실제사용법에 관한 약간의 교육을 받는다. 자본에게서

(308) 프랑스의 한 로동자는 샌프란시스코로부터 귀국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나는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실지로 한바와 같은 모든 로동을 내가 할수 있으리라고는 일찌기 생각한 일이 없었다. 나는 인쇄업외에는 내가 아무 소용이 없는 인간이라고 확신하고있었다.…그런데 내의를 바꾸어입기보다도 더 쉽게 직업을 바꾸는 이 모험자들의 세계의 한가운데 일단 들어서자—나의 충성을 믿으라—나도 역시 남과 같이 하게 되었다. 광산일이 그렇게 수입이 많지 않다는것을 알고 나는 그것을 버리고 도시로 가서 인쇄공, 지붕잇기, 연공 등등을 해보았다. 어떠한 로동도 할수 있다는 나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나는 내가 연체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것을 느끼게 되였다.》(A. 꼬르봉 《직업교육에 관하여》, 제2판, 50페지)

① 이 책 492~528페지를 보라. —편집자

쟁취한 최초의 빈약한 양보로서의 공장립법은 공장로동을 다만 초등교육과 결합시키는데 불과하지만 로동계급이 불가피적으로 정권을 장악하였을 때에는 리론과 실천이 병행하는 기술교육도 또한 로동자학교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동시에 또 자본주의적생산형태와 그에 상응하는 로동자의 경제적관계가 그러한 변혁의 효모이며 또 그 변혁의 목적인 낡은 분업의 폐절과 직접적으로 모순되게 된다는것도 역시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일정한 력사적생산형태의 제 모순의 발전은 그 생산형태의 분해와 재조직의 유일한 력사적인 길이다. 《제화공이여, 자기의 본분을 지키라!》[374] 라는 수공업적현명성의 이 《절정》은 시계제조공 워트가 증기기관을, 리발사 아크라이트가 날직기를, 보석공 풀턴이 기선을 발명한 순간부터 그야말로 어리석은것으로 되여버렸다.(309)

공장립법이 공장, 공장제수공업 등에서의 로동을 규제하는 한 이것은 시초에는 자본의 착취권에 대한 간섭으로 나타날따름이다. 이와는 반대로 소위 가내로동(310)에 대한 모든

---

(309) 정치경제학사에서 그야말로 비범한 인물인 죤 벨러즈는 이미 17세기말에 사회의 량극에—비록 대립되는 방향에서이기는 하지만—비대와 쇠약을 낳는 현재의 교육과 분업이 반드시 폐절되리라는것을 극히 명료하게 리해하고있었다. 그는 적절하게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안일한 공부는 안일성을 배우는것보다 조금도 낫지 않다.…육체로동은 본래 하느님이 정하신바이다.…로동이 신체의 건강에 필요한것은 식사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것과 같다. 왜냐 하면 안일에 의하여 면하는 고통은 이번에는 병으로 나타날것이기때문이다.…로동은 생명의 등불에 기름을 부어주며 사상은 그것에 불을 붙인다.…우매한 아동로동은 (이 말은 바제도우파와 그들의 현대적아류들에 대한 예감적인 반박이다.) 아동들의 정신을 우매하게 한다.》(《모든 유용한 수공업과 농업의 산업전문학교창설제안》, 1696년 런던판, 12, 14, 16, 18페지)

(310) 가내로동이 대부분 비교적 작은 작업장들에서도 실시된다는것은 우리가 이미 레스수공업공장 및 밑짚세공업에서 보았는데① 이것은 특히 세필드, 버밍감 등등의 금속수공업공장에서 더 상세히 증명할수 있는것이다.

---

① 이 책 536~540페지를 보라. —편집자

규제는 애당초부터 부권(현대적용어로 말하면 친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로서 나타난다. 그리하여 마음이 상냥한 영국 의회는 이러한 규제조치를 취하는데 대하여 오래동안 망설이는체 하였다. 그러나 사실의 힘은 드디여 대공업은 낡은 가족제도의 경제적기초 및 그에 상응하는 가족로동과 함께 낡은 가족관계 그자체도 파괴한다는것을 강제로 시인하게 하였다. 아동의 권리가 선언되지 않을수 없었다. 1866년의 아동로동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불행하게도 남녀아동을 어느 누구보다도 그 부모들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것이 모든 증언에 의하여 명백하다.》 일반적으로는 아동로동을, 특수적으로는 가내로동을 무제한하게 착취하는 제도는 《부모가 어리고 연약한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의적이며 유해한 권력을 아무런 구속도 통제도 없이 행사함으로써 유지된다.…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매주 얼마간의 임금을 얻기 위한 순전한 기계로 만들 절대권을 가져서는 안된다.…아동과 소년들은 그들의 체력을 조속히 파괴하며 그들의 도덕적 및 지적 수준을 저하시키는 친권람용에 대하여 립법의 보호를 얻을 권리가 있다.》(311)

그러나 자본에 의한 미숙한 로동력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착취를 산생한것은 친권의 람용이 아니다. 그와 반대로 자본주의적착취방식이야말로 친권에 상응하는 경제적기초의 폐절에 의하여 친권을 람용하게 한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체제하에서의 낡은 가족제도의 해체가 아무리 무섭고 또 혐오스로운것이라 할지라도 대공업은 가족의 범위밖에서 즉 사회적으로 조직된 생산과정에서 부녀, 남녀소년과 아동들에게 결정적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가족과 량성관계의 보다 높은 형태를 위한 새로운 경제적기초를 창조한다. 기독교게르만적가족형태

---

(311)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5차보고》, XXV페지, 제162호 및 《제2차보고》, XXXVIII페지 제285, 289호, XXV, XXVI페지 제191호.

를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것은 고대로마적 또는 고대희랍적 또는 동양적형태—그런데 이 형태들은 호상 련관되여 력사적 발전계렬을 형성한다—를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것임은 물론이다. 또한 각이한 년령의 남녀들로 이루어진 결합된 로동인원의 구성은 그것이 자연발생적인 야만적인 자본주의적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즉 생산과정이 로동자를 위하여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로동자가 생산과정을 위하여 존재하는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파멸과 예속의 화근으로 되지만 그러나 적당한 조건하에서는 이와 반대로 인류발전의 원천으로 변하지 않을수 없으리라는것도 명백하다.(312)

공장법이 기계제생산의 최초의 모습인 방적업과 직조업을 위한 례외적법률로부터 전체 사회적생산에 적용되는 일반적법률로 전화할 필연성은 우리가 이미 본바와 같이 대공업의 력사적발전행정에서 생기는데① 이 대공업을 배경으로 하여 공장제수공업, 수공업 및 가내로동의 예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은 완전히 변혁되며 공장제수공업은 부단히 공장으로, 수공업은 부단히 공장제수공업으로 전화하며 끝으로 수공업 및 가내로동의 분야들은 상대적으로 놀랄만큼 짧은 시간에 고난의 동굴로 변하여 그곳에서 자본주의적착취가 그 흉악무도성을 자유로이 발휘하게 되였다. 결국은 두개의 사정이 결정적역할을 논다. 그 하나는 부단히 반복되는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자본은 그것이 사회적령역의 몇개 지점에서만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될 때에는 다른 지점들에서는 더욱더 무제한한 보상을 받는다는 사정이며(313) 또 다른 하나는 자본가자신이 경쟁조

(312) 《공장로동은 가내로동만큼이나 아니 아마도 그 이상으로 정결하고 훌륭하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공장감독관보고. 1865년 10월 31일》 , 129페지)

(313) 우와 같은 보고, 27, 32페지.

① 이 책 529~553페지를 보라. —편집자

건의 평등 즉 로동착취의 평등한 제한을 요구하고있다는 사정이다.(314) 이 점에 관하여 두개의 통절한 한탄을 들어보자. 쿡슬리씨(브리스톨에 있는 못, 사슬 등등의 제조업자들)는 자기의 기업소에서 자발적으로 공장조례를 실시하였다.

《부근 기업소들에는 낡은 불규칙적인 제도가 아직 존속되고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그의 소년공들이 저녁 6시이후 다른 공장에 가서 로동을 계속할 유혹을 받게 되는 폐단에 봉착하지 않을수 없다. 회사는 물론 다음과 같이 언명한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불공정하며 또 손실이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리익이 전적으로 우리것이여야 할 그 소년의 힘의 일부가 그때문에 소모되기때문이다.〉》(315)

심프손씨(런던의 종이봉지 및 종이상자 제조업자)는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언명한다.

《그는 공장법의 실시를 위한 청원이라면 무엇에든지 서명할 용의가 있다. 어쨌든 그는 그의 작업장의 문을 닫은후에 다른 사람들이 로동자들에게 더 오래 작업을 시키여 그의 주문을 탈취하지나 않을가 하는 생각에 언제나 밤잠을 못 이룰 지경이다.》(316)

아동로동조사위원회는 개괄하여 이렇게 말한다.

《비교적 큰 기업주의 공장은 단속을 받는데 같은 생산부문의 소작업장은 로동시간의 법적제한을 조금도 받지 않는다는것은 비교적 큰 기업주들에게 불공정한것이다. 로동시간을 제한하는 면에서 비교적 작은 작업장을 례외로 한다면 경쟁조건이 불평등한것으로 되는 이 불공정을 제외하고도 비교적 큰 공장주들은 소년로동 및 녀성로동의 공급이 공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작업장으로 쏠린다는 점에서도 불리하게 된다. 끝으로 이것은 비교적 작은 작업장의 증가에 자극을 줄것인바 이 비교적 작은 작업장은 인민의 건강, 복리, 교육 및 전반적처지개선에 거의 례외없이 조금도 유익하지 않은것이다.》(317)

---

(314) 이에 대하여는 《공장감독관보고》에 많은 례증이 있다.

(315)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5차보고》, X페지, 제35호.

(316) 우와 같은 보고, IX페지, 제28호.

(317) 우와 같은 보고, XXV페지, 제165~167호. 소생산에 비한 대생산의 우월성에 관하여는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3차보고》, 13페지 제144호, 25페지 제121호, 26페

아동로동조사위원회는 그 최종보고에서 140만이상의 아동, 소년 및 부녀들(그중 약 반수는 소생산과 가내로동의 착취를 당하고있다.)에게 공장법을 적용하라고 제의하고있다.(318) 위원회는 이렇게 말하고있다.

《의회가 우리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그러한 립법은 그 립법의 직접적대상인 년소자들과 허약자들에 대해서뿐만아니라 또한 직접적으로 (녀성) 또는 간접적으로 (남성) 그 적용범위에 들어가게 될 더욱 많은 성인로동자에 대해서도 극히 유익한 영향을 줄것이다. 그것은 그들에게 규칙적이고 단축된 로동시간을 강요할것이다. 그것은 그들자신의 복지와 나라의 복지가 극히 많이 의존하고있는 체력의 예비를 절약하고 축적할것이다. 그것은 유년기의 과도로동이 자라고있는 세대들의 체질을 파괴하며 그들을 일찍 늙게 하는것을 방지할것이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적어도 13세미만의 아동에게는 초등교육의 기회를 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믿기 어려운 정도의 무지상태를 종식시킬것이다. 이런 상태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보고에 아주 충실히 묘사되여 있는데 그것을 비통한 감정과 심심한 국민적굴욕감 없이는 볼수가 없다.》(319)

토리당내각은 1867년 2월 5일의 왕의 연설을 통하여, 산업조사위원회의 제안(319a)을 《법안》으로 작성하였다고 발

지 제125호, 27페지 제140호 등등을 참조하라.

(318) 공장법이 적용되여야 할 공업부문은 다음과 같다. 레스공장제수공업, 양말제조업, 밀짚세공업, 각종 의류공장제수공업, 조화업, 구두, 모자 및 장갑 제조업, 재봉업, 제철소로부터 바늘제조 등등에 이르는 모든 금속공장, 제지공장, 유리공장제수공업, 담배공장제수공업, 고무제조업, 끈(직조용)제조업, 융단수직업, 우산및양산공장제수공업, 방추및실토리제조업, 인쇄업, 제본업, 문방구제조업(이에는 또한 종이상자, 카드, 색종이 등등의 제조도 속한다.), 바줄제조업, 마노장식품공장제수공업, 벽돌공장, 수견직업, 견직리봉제조업, 제염업, 양초제조업, 세멘트공장, 사탕정제업, 비스케트제조업, 각종 목공업 및 기타 각종 잡공업.

(319)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5차보고》, XXV페지, 제169호.

(319a) 공장법확장조례는 1867년 8월 12일에 통과되였다. 그 적용대상은 모든 금속주물공장, 금속단조공장 및 기계제작공장을 포함하는 금속가공공장제수공업들과 또 유리, 종이, 구타페르카고무, 탄성고무, 담배 등 공장제수공업, 인쇄업, 제본업 및 50명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모든 작업장들이다.—1867년 8월 17일에 통과된 로동시간규제법은 소작업장들과 소위 가내로동을 규제하고있다.—나는 제2권에서 이 법률들과 1872년의 신광업법 등등에 관하여 다시 언급할것이다.[375]

표하였다. 이에는 20년간에 걸린 새로운 무가치생체실험이 필요하였던것이다. 1840년에 이미 아동로동을 조사하기 위한 의회위원회가 임명되여있었다. 1842년의 그 위원회의 보고는 N. W. 씨니어의 말에 의하면

《자본가들과 부모들의 탐욕, 리기 및 잔인, 아동들과 소년들의 곤궁, 타락 및 파멸을 묘사하여 지금까지 세인들이 보지 못한 가장 무서운 광경을 펼쳐놓았다.…이 보고는 지난 시기의 참상을 그린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유감이지만 우리는 이 참상이 현재도 이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혹심하게 계속되고있다는것을 보고에서 본다. 2년전에 하드위크가 발간한 소책자에는 1842년에 비난을 받은 폐단은 오늘날에 (1863년) 와서도 여전히 극심하다고 씌여있다.…이 보고는 (1842년) 20년간이나 사람들의 관심밖에 있었는데 그동안에 소위 도덕이라든가 학교교육, 종교 또는 자연적가족애라든가 하는것을 조금도 알지 못하고 자란 아동들이 벌써 현세대의 부모로 되게 되였다.》(320)

그사이에 사회형편은 변하였다. 의회는 한때 아동로동조사위원회의 1842년의 요구를 거절한것처럼 이 위원회의 1863년의 요구를 감히 거절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이미 1864년에 위원회가 처음으로 그 보고의 일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도기공업(도기제조업을 포함), 도배지, 성냥, 탄약 및 뢰관제조업, 비로도털깎기 등이 섬유공업에 적용되고있던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되였다. 1867년 2월 5일 왕의 연설을 통하여 당시의 토리당내각은 1866년에 자기 사업을 끝마친 아동로동조사위원회의 최종제안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안을 발표하였다.

1867년 8월 15일에는 공장법확장조례가 그리고 8월 21일에는 작업장규제법이 왕의 비준을 받았는데 전자는 대기업

(320) 씨니어 《사회과학회의》, 55페지 및 이하 몇페지.

소를, 후자는 소기업소를 단속한다.

공장법확장조례에 의하여 공장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용광로, 제철소, 제동소, 주물공장, 기계제작공장, 금속가공공장, 구타페르카고무공장, 제지공장, 유리공장, 담배공장과 인쇄업 및 제본업이며 그리고 50명이상의 인원이 동시에 년중 적어도 100일간 고용되는 이러한 종류의 모든 공업작업장들이다.

이 법률이 포괄하는 범위가 얼마나 확장되고있는가를 리해하기 위하여 이 법률에 규정되여있는 일부 정의를 들어보자.

《**수공업**이라 함은 (이 법률에서) 판매하기 위한 어떤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일부를 제조, 변경, 장식, 수리 또는 완성하기 위하여 직업적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또는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일체 손로동을 말한다.》

《**작업장**이라 함은 아동, 소년로동자 또는 부녀가 〈수공업〉에 종사하며 또 그러한 아동, 소년 또는 부녀를 고용하고있는 사람이 출입과 감독의 권리를 가지고있는 실내 또는 실외의 일체 방 또는 장소를 말한다.》

《**종업**이라 함은 임금을 받든 안받든 장주 또는 아래에서 상세히 규정되여있는 부모중 어느 한사람의 밑에서 어떤 〈수공업〉에 종사하는것을 말한다.》

《**부모**라 함은 아버지, 어머니, 후견인 또는 기타…아동 또는 소년로동자를 후견 또는 감독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7조는 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동, 소년로동자, 부녀를 고용한데 대해서는 비단 작업장의 소유주(부모중의 한사람이든 아니든)에 대해서뿐만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한다는것을 규정하고있다.

《아동, 소년로동자 또는 부녀를 후견하든가 또는 그 로동으로부터 직접적리익을 얻는 사람들과 부모.》

대공장들에 적용되는 공장법확장조례는 많은 수치스러운 례외 규정과 그리고 자본가들과의 비겁한 타협으로 말미암아

공장법보다도 많이 후퇴하였다.

작업장규제법의 매개 세목은 본래 빈약한것인데 그나마도 그 실시를 위임받은 도시 및 지방당국들의 수중에서 하나의 지상공문으로 되고말았다. 의회가 1871년에 이 실시권을 그들에게서 회수하여 공장감독관에게 넘겨준 결과 그들의 감독범위는 일거에 10만이상의 작업장으로, 벽돌공장만 하더라도 300개이상으로 늘었다. 그런데 공장감독인원은 그렇지 않아도 종전에 극히 부족하였는데 각별히 신중하게도 불과 8명의 보조감독관이 증가되였을따름이다.(321)

그리하여 1867년의 영국립법에서 주목되는것은 한편으로는 지배계급의 의회가 자본주의적착취의 지나침을 반대하여 그처럼 비상하고 광범한 조치를 원칙적으로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이며 또 한편으로는 의회가 그후 이 조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불철저하고 본의가 아니고 성의가 없는 태도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1862년의 조사위원회는 또한 광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제안하였다. 이 산업이 다른 모든 산업과 다른 점은 여기에서는 토지소유자와 산업자본가의 리해가 서로 일치한데 있다. 전에는 이 량자의 리해의 대립이 공장립법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대립이 없다는것이 광산립법에서의 지연과 간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된다.

1840년의 조사위원회는 무시무시하고 분격을 자아내는 진상을 폭로하여 전 구라파를 떠들썩하게 하였기때문에 의회는 량심상의 가책을 모면하기 위하여 1842년의 광업법을 통

(321) 공장감독인원은 2명의 감독관, 2명의 보조감독관 및 41명의 부감독관으로 구성되여있었다. 1871년에 8명의 부감독관이 더 임명되였다. 1871~1872년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서 공장법실시에 든 총비용은 법위반에 대한 소송의 재판비용을 포함하여 불과 25,347파운드였다.

과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그 법률은 부녀와 10세미만의 아동의 지하로동을 금지하는데 그치였다.

그후 1860년에 광산감독법이 나왔는데 그것에 의하면 광산들은 전임관리들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또 10세 내지 12세의 아동들은 그들이 학교의 증명서를 가지고있지 않거나 또는 일정한 시간수를 수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할수 없다. 이 법률은 임명된 감독관의 수가 가소로울만큼 적은것, 그들의 권한이 보잘것없는것, 또 앞으로 상세히 설명하게 될 기타 원인들에 의하여 완전히 하나의 지상공문으로 되고말았다.

광산에 관한 최근의 청서[11]의 하나는 《광산특별위원회 보고. 증언 첨부. 1866년 7월 23일》 이다. 그것은 하원의원들로 구성된,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할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작품으로서 두터운 이절판의 책인바 보고자체는 불과 다섯줄밖에 안되며 위원회로서는 아무 할 말이 없으며 더 많은 증인들을 심문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것이 그 내용이다.

증인심문의 방법은 영국법정에서의 반대심문을 상기시킨다. 즉 영국의 법정에서는 변호사가 뻔뻔스럽게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질문을 마구 들이댐으로써 증인을 얼떨떨하게 만들어놓고 그의 말을 외곡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변호사가 의회의 조사위원자신들이며 그중에는 광산소유자들과 채광업자들도 있다. 그리고 증인들은 광산로동자들이며 대개는 탄광로동자들이다. 이 광대극이 자본의 정신을 너무나 특징적으로 보여주고있으므로 여기에서 약간 발취하여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 고찰의 편리를 위하여 나는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분류하겠다. 그리고 영국의 청서에서의 질문과 답변들에는 다 번호가 붙어있으며 여기에 인용하고있는 증언을 한 증인은 탄광로동자들이라는것을 지적하여둔다.

1. 광산에서의 10세이상 아동들의 종업. 로동은 광산까지의 왕복시간을 포함하여 보통 14시간 내지 15시간 계속되며 례외적으로는 더 장시간 새벽 3, 4, 5시로부터 저녁 4, 5시까지 계속된다. (제6, 452, 83호) 성년로동자는 2교대로 즉 8시간씩 로동한다. 그러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아동들에게는 그러한 교대가 없다.(제80, 203, 204호) 어린 아동들은 주로 광산의 여러 구역의 통풍문을 열었다닫았다 하는 일에 사용되며 보다 나먹은 아동들은 보다 힘든 작업 례컨대 석탄운반 등등에 사용된다.(제122호, 739, 740, 1717호) 장시간의 지하로동은 18세 또는 22세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며 그후부터야 진짜광산로동에로 이행하게 된다.(제161호) 오늘 아동들과 소년들은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더 심하게 혹사되고있다.(1663~1667호) 광산로동자들은 거의 일치하게 14세미만의 아동들의 광산로동을 금지하는 의회조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브루스씨(그자신이 채광업자이다.)는 이렇게 질문한다.

《이 요구는 부모의 빈궁정도에 의존하는것이 아닌가?》 다음으로 브루스씨가 묻는다. 《아버지가 죽거나 불구자가 되였을 때 가족에게서 이 수입원천을 빼앗는것은 잔인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보편적인 법규를 적용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당신들은 14세미만의 아동들의 지하로동을 어떤 경우에나 금지하기를 원하는가?》 대답: 《어떤 경우에나 다 원한다.》(제107~110호) 브루스: 《광산에서 14세미만의 아동들의 로동을 금지하면 부모들은 아동들을 공장방면으로 보내게 되지 않을가?—대개는 그렇지 않다.》(제174호) 로동자: 《통풍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것은 쉬운 일 같지만 실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들은 그냥 바람을 맞아야 할뿐만아니라 마치 컴컴한 감방과 같은 곳에 그냥 갇혀있어야 한다.》 자산자인 브루스: 《소년은 등불이 있으면 문지기를 하면서 책을 읽을수 있지 않는가?—첫째로, 그는 양초를 사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리고 책을 보는것은 허용되지도 않는다. 그는 일에 전심할 책임을 지고있는만큼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는 갱내에서 책을 보는 소년을 본 일이 없다.》(제139~160호)

2. 교육. 광산로동자들은 공장에서와 같이 광산에서도 아동들의 강제교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들은 1860년의 법률중 10~12세의 아동들을 사용할 때는 학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조항은 순전히 허황한것이라고 언명하고있다. 자본주의적예심판사들의 《고심참담한》 심문은 이 경우에는 참으로 가소롭다.

《법률은 고용주를 단속하는데 더 필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부모를 단속하는데 더 필요한가?—쌍방을 단속하는데 다 필요하다.》(제115호) 《일방을 단속하는데보다 타방을 단속하는데 더 필요한가?—무어라 대답해야 할지?》(제116호) 《학교의 수업에 맞추어 로동시간을 조절하려는 어떤 요구를 고용주가 보여주었는가?—그런 일이 없다.》(제137호) 《광산로동자들의 교육이 앞으로 나아지겠는가?—그들은 일반적으로 더 악화되여가고있다. 그들은 악습에 물들어 음주, 도박 등등에 빠져 아주 타락하고있다.》(제211호) 《왜 아이들을 야학교에 보내지 않는가?—대다수의 탄광지방에는 야학교가 전혀 없다. 그러나 주요한것은 아이들이 장시간의 과도로동으로 너무나 지쳐서 눈을 뜰수가 없는것이다.》 이 자산자는 결론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당신은 교육을 반대하는가?—절대로 그런것이 아니다. 그러나…》(제454호) 《1860년 법률은 광산소유자 등등이 10세 내지 12세의 아동을 고용할 때에는 학교의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는가?—법률상으로는 그렇게 규정되여있지만 고용주들이 실행하지 않는다.》(제441~443호) 《당신이 보기에는 이 법률조항이 일반적으로 실행되지 않고있다는것인가?—전혀 실행되고있지 않다.》(제444호) 《광산로동자들은 교육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있는가?—절대다수가 가지고있다.》(제717호) 《그들은 이 법률의 시행을 열망하는가?—절대다수가 열망한다.》(제718호)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 시행을 강요하지 않는가?—다수 로동자는 학교의 증명서 없는 소년들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할것을 바

라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그는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된다.》(제720호) 《누가 주목을 하는가?—그의 고용주이다.》(제721호) 《그래도 당신은 고용주가 법률을 준수하는 사람을 박해한다고야 생각하지 않겠지?—고용주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제722호) 《왜 로동자들은 그러한 아동을 사용하는것을 거절하지 않는가?—그것은 로동자들의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제723호) 《당신은 의회의 간섭을 요구하는가?—광산로동자들의 아이들의 교육에 유익한 일을 하자면 의회법률에 의하여 교육을 강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제1634호) 《이것은 대브리텐의 전체 로동자들의 아이들에 대해서 하는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광산로동자들에 한해서만 하는 말인가?—나는 광산로동자들을 대표해서 여기 와 말한다.》(제1636호) 《왜 광산로동자의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과 구별하는가?—그들은 하나의 례외이기때문이다.》(제1638호) 《어떤 점에서인가?—육체적면에서 그러하다.》(제1639호) 《어째서 그들에게는 다른 부류의 아이들보다 교육이 더 귀중하다고 할수 있는가?—그들에게 교육이 더 귀중하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산에서의 과도로동때문에 주간학교와 일요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 적다.》(제1640호) 《이런 종류의 문제를 절대적으로 볼수 없지 않는가?》(제1644호) 《광산지방에는 학교가 충분히 있는가?—부족하다.》(제1646호) 《국가가 모든 아동을 학교에 보낼것을 요구한다 치더라도 그 많은 아동을 전부 수용할 학교가 어디 있겠는가?—그렇게 해야 할 사태가 되기만 하면 학교는 자연히 나오게 될것이라고 나는 믿는다.》(제1647호) 《아이들뿐만아니라 성인광산로동자들까지도 그 대다수는 글을 쓸줄도 모르고 읽을줄도 모르고있다.》(제705, 726호)

3. 녀성로동. 녀성로동자들은 벌써 1842년이래 지하로동에는 사용되지 않지만 지상에서 석탄 등등의 적재작업, 운하와 철도화차까지 탄통을 운반하는 작업, 선탄작업 등등에 사용된다. 녀성로동자들의 사용은 최근 3～4년간에 대단히 증가하였다.(제1727호) 그들은 대개 12세로부터 50세, 60세까지의, 광산로동자들의 안해나 딸 및 과부들이다.(제647,

1779, 1781호)

《광산로동자들은 광산에서의 녀성들의 종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그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반대한다.》(제648호) 《왜?—그들은 그것이 녀성을 타락시킨다고 생각한다.(제649호)…녀성들은 남복을 입는다. 많은 경우에 수치심이 다 없어진다. 담배피우는 부녀들도 많다. 로동은 갱내와 다름없이 더럽다. 그들중에는 결혼한 부인들도 많은데 그들은 자기의 가정직책을 다하지 못한다.》(제651~654호, 701호) 《과부들이 그만한 수입(매주 8~10실링)을 얻을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가?—그에 대하여는 나는 무어라 말할수 없다.》(제709호) 《그런데도 당신은 (랭혹한자!) 그들의 이 생계의 원천을 빼앗으려고 결심하는가?—바로 그렇다.》(제710호) 《그러한 기분은 어디서 나오는가?—우리 광산로동자들은 녀성을 대단히 존중하기때문에 그들이 탄광에 얽매여있는것을 차마 볼수 없다.…이 로동은 대부분 대단히 힘들다. 이 소녀들의 다수는 하루에 석탄을 10톤씩이나 들어올려야 한다.》(제1715, 1717호) 《당신은 광산에서 일하는 녀성로동자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녀성로동자들보다 더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가?—불량자의 비률이 공장처녀들보다 더 높다.》(제1732호) 《그러나 당신은 공장에서의 도덕상태에도 만족하는것은 아니지 않는가?—만족하는것은 아니다.》(제1733호) 《그러면 당신은 공장에서도 녀성로동을 금지할 것을 바라는가?—아니다. 나는 그것은 바라지 않는다.》(제1734호) 《왜 바라지 않는가?—공장로동은 녀성에게 비교적 치욕스럽지 않고 또 알맞기때문이다.》(제1735호) 《그러나 공장로동도 녀성들의 도덕에 해로운것이 아닌가?—아니다. 광산에서처럼은 심하지 않다. 그러나 나는 도덕상의 리유에서뿐만이 아니라 육체적 및 사회적 리유에서도 그렇다고 본다. 처녀들의 사회적타락은 비참하며 극단적이다. 이러한 처녀들이 광산로동자들의 안해로 되면 남편은 이 타락때문에 매우 고통을 받을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가정을 떠나 술집으로 달려가게 될것이다.》(제1736호) 《그러나 제철소에서 일하는 녀성들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수 있지 않는가?—나는 다른 생산부문들에 관하여는 말할수 없다.》(제1737호) 《그러면 제철소에서 일하는 녀성과 광산에서 일하는 녀성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그런 문제는 생각해본 일이 없

다.》(제1740호) 《당신은 이 두 부류간에 어떤 차이를 발견할수 있는가?—나는 이 점에 대하여 아무것도 자신있게 말할수 없으나 집집마다 다녀보았기에 우리 지방의 추잡스러운 일들을 알고있다.》(제1741호) 《당신은 녀성로동이 녀성을 타락시키는 곳에서는 어데서나 그것을 폐지하기를 열망하고있는가?—그렇다.…아동들의 가장 좋은 감정은 다만 어머니의 교육에 의하여서만 생긴다.》(제1750호) 《그러면 농업에 종사하는 녀성들도 그러한가?—농업로동은 두 계절에 한하지만 이곳 녀성들은 네 계절을 통하여 언제나 일을 계속한다. 그들은 흔히 온몸을 땀으로 적셔가면서 밤에 낮을 이어 일하며 그들의 몸은 약해지고 건강은 파괴된다.》(제1751호) 《당신은 이 문제 (즉 녀성로동의 문제) 를 전반적으로 연구하였는가?—나는 내 주위를 관찰해온데 의하여 이것만은 말할수 있다. 즉 탄광에서의 녀성로동에 비할만한 로동은 아무데도 없다는것만은 말할수 있다.(제1753호) 이것은 남자들의 일이며 그것도 힘센 남자들이 할 일이다.》 《광산로동자들중의 훌륭한 부류, 향상심이 있어서 사람답게 되려고 하는 부류도 그 안해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도리여 그들때문에 타락한다.》 (제1793, 1794, 1808호)

자산자들은 더 이것저것 질문을 들이대여 드디여 과부, 가난한 가속 등등에 대하여 그가 《동정》하게 된 비밀을 발로시킨다.

《탄광주들은 신사들을 감독으로 임명하는데 이 신사들이 주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모든것을 될수 있는대로 경제적으로 하는 방침을 쓰므로 이 고용된 처녀들은 남자면 하루에 2실링 6펜스를 받을 일을 한 경우에도 1실링 내지 1실링 6펜스를 받는다.》(제1816호)

4. 검시배심원.

《당신들 지방의 검시배심원의 조사에 관해서인데 로동자들은 사고가 있을 때 재판절차에 만족하고있는가?—아니다. 만족하고있지 않다.》(제360호) 《왜 만족하고있지 않는가?—특히 광산일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배심원으로 되기때문이다. 로동자들은 증인으로서밖에는 소환되지 않는다. 대체로 부근의 소매상들이 배심원으로 초청되는데 그들은 그들의 고객인 광산주의 영향하에 있으며 증

인들의 기술용어도 전혀 모르고있다. 우리는 배심원의 일부를 광산로동자로 구성할것을 요구한다. 판결은 보통 증언과 모순된다.》(제361~375호) 《그럼 배심원들이 공정하지 못하다는것인가?—그렇다.》(제378호) 《로동자들이면 공정한 배심원으로 될수 있겠는가?—나는 로동자들이 불공정하리라는 근거를 모르겠다. 그들은 실정을 잘 알고있다.》(제379호) 《그러나 그들은 로동자들의 편을 들어 부당하게 가혹한 판결을 내리려 하지 않겠는가?—아니, 그러지 않을것이라고 나는 생각된다.》(제380호)

5. 부정한 도량형 등등. 로동자들은 2주간지불 대신에 1주간지불을, 운탄통의 용량에 의한 계산 대신에 중량에 의한 계산을, 부정한 도량형 등등의 사용의 방지를 요망하고있다.

《운탄통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기만한다면 로동자는 14일전에 예고하고 광산을 떠날수 있지 않는가?—그러나 다른 곳에 가도 마찬가지 형편이다.》(제1071호) 《그러나 그는 부정행위가 있는 그곳을 떠날수 있지 않는가?—부정은 어디서나 다 마찬가지이다.》(제1072호) 《그러나 그는 가는곳마다 14일전에 예고하고 떠날수 있지 않는가?—있다.》(제1073호)

이 문제는 이만해두자!

6. 광산감독. 로동자들은 가스폭발에 의한 사고로써만 고통을 받는것이 아니다.

《갱내의 통풍이 나쁜데 대해서는 우리는 불만이 많다. 그것은 그 때문에 로동자들은 거의 숨을 쉴수 없으며 그때문에 아무런 일도 할수 없기때문이다. 례컨대 바로 요사이 내가 일하고있는 광산의 막장에서는 나쁜 공기때문에 많은 로동자들이 몇주일이나 앓게 되였다. 주요갱도들은 대개 통풍이 충분하지만 바로 우리가 일하고있는 곳은 그렇지 않다. 통풍에 관하여 감독관에게 불평을 말하는 로동자가 있으면 그는 해고되고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여 다른데 가도 일자리를 구할수 없게 된다. 1860년의 광산감독법은 한장의 파지에 불과하다. 감독관의 수는 너무나 적다. 그들은 아마도 7년에 한번이나 형식적인 순찰을 하나마나 할것 같다. 우리 감독관은 아주 무능한 70세의 로인인데 그가 130

여개의 탄광을 감독한다. 우리는 더 많은 감독관과 함께 부감독관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제234호이하) 《그러면 정부는 로동자들의 보고가 없어도 당신들이 요구하는 모든것을 감독관이 처리할수 있게 많은 감독관을 두어야 한단 말인가?—그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들이 직접 탄갱에 와서 보고를 받아야 할것이다.》(제280호) 《당신은 그렇게 되면 통풍 등등에 대한 책임 (!) 이 광산주로부터 정부관원에게로 전가될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감독관들의 책임은 현행법률들을 준수하게 하는데 있다.》(제285호) 《당신이 말하는 부감독관이란 현재의 감독관들보다도 봉급이 적고 자격이 낮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인가?—당신들이 보다 나은 사람들을 보낼수 있다면 나는 결코 자격이 낮은 사람들을 원하지 않는다.》(제294호) 《당신들이 요구하는것은 더 많은 수의 감독관인가 그렇지 않으면 감독관보다 낮은 급의 사람들인가?—우리에게 필요한것은 직접 광산을 뛰여돌아다니며 사리에 구애되지 않는 사람들이다.》(제295호) 《당신들의 소원이 실현되여 보다 낮은 부류의 감독관들이 파견된다면 그들의 숙련부족으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겠는가?—그럴수 없다. 적당한 인물을 파견하는것이 정부의 일이다.》(제297호)

이러한 류의 심문은 드디여 조사위원회 위원장자신에게도 너무나 어리석게 생각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참견을 한다.

《당신들이 바라는것은 탄갱을 직접 시찰하고 그 시찰한것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로 하여금 자기의 보다 높은 학식을 응용할수 있게 하는 실제적인물인것이다.》(제531호) 《이 낡은 탄갱들에 모두 통풍시설을 하자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는가?—그렇다. 비용은 더 들것이나 인명이 보호될것이다.》

한 탄광로동자가 1860년의 법률 제17조에 대하여 항의한다.

《현재 탄광의 어떤 탄갱이 일할수 없는 상태에 있는것을 발견할 경우에는 탄광감독관은 그것을 탄광주와 내무대신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후 20일간의 유예기간이 탄광주에게 허여되는데 이 20일

간이 경과하면 그는 내무대신에게 보고서를 내여 그에게 5명의 광산기사를 추천해야 하는데 대신은 그중에서 중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탄광주는 사실상 자기자신의 중재인을 지정하는것으로 된다고 우리는 인정한다.》(제581호)

그자신이 광산주인 자산자심문관은 말한다.

《이것은 순전히 사변적인 항의이다.》(제586호) 《그렇다면 당신들은 광산기사들의 성실성을 너무나 낮게 평가하고있는것이 아닌가?—나는 그러한 방법이 극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는 말이다.》(제588호) 《광산기사들은 공정한 품성을 가지고있느니만큼 당신들이 념려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것이 아닌가?—나는 이 사람들의 개인적품성에 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려 한다. 나는 그들이 많은 경우에 극히 불공정하게 행동하며 사람의 생명이 좌우되는 문제에서는 그와 같은 권력을 그들에게서 박탈해야 한다고 확신한다.》(제589호)

이 자산자는 뻔뻔스럽게도 이렇게 질문한다.

《당신은 가스폭발이 탄광주들에게도 손해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끝으로 또 질문한다.

《당신들 로동자는 정부의 조력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리익을 자기로 수호할수 없는가?—없다.》(제1042호)

1865년에 대브리텐에는 3,217개의 탄광과 12명의 감독관이 있었다. 요크셔의 한 탄광주(신문 《타임스》, 1867년 1월 26일)자신의 계산에 의하면 감독관들은 그들의 시간을 전부 잡아먹는 순전한 관청사무를 제외하고 매개 광산을 10년에 한번밖에 순찰할수 없다. 최근 몇해동안에(특히 1866년과 1867년에) 사고가 그 건수에 있어서나 규모에 있어서(때로는 희생자수가 200~300명에 달한다.) 더욱더 증가하고있는것은 하등 기이한 일이 아니다. 이것이 《자유로운》 자본주의적생산의 아름다운 점이다!

여하간 1872년의 법률은 비록 결함이 많기는 하지만 광

산에서 일하고있는 아동들의 로동시간을 규제하며 또 채광업자와 광산주에게 어느 정도 소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는 최초의 법률이다.

농업에서의 아동, 소년 및 부녀들의 로동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1867년 칙명위원회는 약간의 극히 중요한 보고를 공포하였다. 공장립법의 원칙들을 좀 수정한 형태로 농업에 적용하려는 약간의 시도가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그 모두가 완전히 실패하였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고저 하는것은 이 원칙들을 전반적으로 적용하려는것이 이제는 항거할수 없는 추세로 되고있다는 점이다.

로동계급의 육체적 및 정신적 보호수단으로서의 공장립법의 일반화가 불가피한것으로 되였다면 한편 이 일반화는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소규모의 분산된 로동과정이 큰 사회적규모의 결합된 로동과정으로 전화되는것을 일반화하고 촉진하며 따라서 자본의 집적과 공장제도의 유일적지배도 일반화하고 촉진한다. 공장립법의 일반화는 자본의 지배를 아직도 부분적으로 은폐하고있는 일체 낡은 형태들과 과도적형태들을 분쇄하고 그대신 자본의 직접적이고 로골적인 지배를 가져온다. 그리하여 그것은 이 지배에 대한 직접적인 투쟁도 일반화한다. 그것은 개별적작업장들에 균등성, 규칙성, 질서 및 절약을 강요하는 한편 로동일의 제한과 규제가 기술에 주는 강력한 자극으로 말미암아 전반 자본주의적생산의 무정부성과 재난을 증대시키며 로동강도를 증대시키며 기계와 로동자와의 경쟁을 증대시킨다. 그것은 소생산분야 및 가내로동분야와 함께 《과잉인구》의 마지막 피난처를 파괴하며 따라서 또 전체 사회기구의 종래의 안전변을 파괴한다. 그것은 생산과정의 물질적조건 및 그 사회적결합을 성숙시키는 동시

에 생산과정의 자본주의적형태의 모순과 적대를 성숙시키며 따라서 동시에 새 사회의 형성요소와 낡은 사회의 변혁계기를 성숙시킨다.(322)

---

(322) 로버트 오엔은 협동조합적공장 및 협동조합적상점의 창시자이지만 그러나 그는 우에서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이러한 고립적인 변혁계기들의 의의에 관하여 그의 추종자들이 가졌던것과 같은 환상①은 결코 가지고있지 않았다. 그는 실제로 그의 실험에서 공장제도로부터 출발하였을뿐만아니라 리론상으로도 공장제도를 사회혁명의 출발점이라고 하였다.[376] 라이덴대학 정치경제학 교수 비쎄링씨는 속되기 짝이 없는 속류경제학을 가장 적당한 형태로 서술하고있는 그의 《국민경제실무수첩》(1860~1862년)에서 대공업을 반대하고 수공업생산을 한사코 옹호하고있는데 그때에 그는 무엇인가 그러한 것을 예감하고있는듯하다.— {제4판 주: 서로 모순되는 공장법, 공장법확장조례 및 작업장법에 의하여 영국의 립법이 초래한 《새로운 소송상 분규》(264페지②)는 드디여 참을수 없게 되였으며 그리하여 1878년 공장 및 작업장법[377]에 있어서 관계립법전체의 단일법전화가 되였다. 영국의 이 현행산업법전에 대한 상세한 비판은 물론 여기에서는 할수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지적에 그치려 한다. 이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방직공장. 여기에서는 거의 전부가 이전과 같다. 즉 허용된 로동시간은 10세이상의 아동에 대하여는 매일 $5\frac{1}{2}$시간 또는 6시간, 6시간인 경우에는 토요일은 휴식이다. 소년들과 부녀들은 5일간은 10시간, 토요일은 최고 $6\frac{1}{2}$시간. —2) 비방직공장. 이 공장들에 대한 규정은 이전보다는 방직공장들에 대한 규정에 많이 접근하였으나 아직도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례외가 일부 남아있으며 또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내무대신의 특별허가에 의하여 더 확장될수 있는것이다. —3) 작업장. 작업장에 대한 규정은 대략 이전의 법률에 규정된것과 같다. 아동, 소년로동자 또는 부녀들이 고용되고있는 한, 작업장들은 비방직공장들과 거의 같이 취급되고있으나 그 세목에 있어서는 많이 완화되여있다.— 4) 아동 또는 소년 로동자들은 없고 18세이상의 남녀들만 고용하고있는 작업장. 이 부류에 대하여는 더욱 완화되여있다. —5) 자택에서 가족성원들만 일하고있는 가내작업장. 이 부류에 대한 규정은 더욱 신축성이 있으며 동시에 감독관은 살림방을 겸하고있는 작업실에는 대신 또는 판사의 특별허가 없이는 들어갈수 없다는 제한이 있으며 끝으로 가족내에서의 밀짚세공업, 레스편직업 및 장갑제조업은 무제한으로 방임되고있다. 이 법률은 이러한 결함들은 있지만 1877년 3월 23일의 스위스련방공장법과 더불어 의연히 이 방면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법률이다. 이 법률을 상술한 스위스련방공장법과 비교하는것은 특히 흥미있는 일인데 그것은 이렇게 비교함으로써 립법상의 두 방법 즉 영국적인, 《력사적인》, 사건이 생길 때마다 처리해가는 방법과 대륙적인, 프랑스혁명의 전통에 립각한, 보다 개괄적인 방법의 일장일단을 아주 똑똑히 알수 있기때문이다. 유감이지만 영국의 이 법전은 감독관의 수가 부족하기때문에 그것을 작업장에 적용할 경우에는 아직도 대부분 지상공문에 지나지 않는다. —F. E.}

---

① 이 책 346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이 책 347페지를 보라. —편집자

10. 대공업과 농업

대공업이 농업과 농업생산당사자들의 사회적관계에 일으키는 혁명은 후에 설명하려 한다. 여기에서는 먼저 그 약간의 결론들을 간단히 지적하면 충분할것이다. 농업에서의 기계사용은 그것이 공장로동자들에게 주고있는것과 같은 육체적인 손해를 줄 념려는 거의 없지만(323) 그것은 후에 상세히 보게 되는바와 같이 농업에서 로동자들의 《과잉화》에 보다 강하게 작용하며 또 아무런 반항도 받지 않는다.① 레컨대 케임브리지군과 서포크군에서는 최근 20년동안에 경지면적은 대단히 확장되였지만 같은 기간에 농촌인구는 상대적으로뿐만아니라 절대적으로도 감소되였다. 북아메리카합중국에서는 농업기계가 아직은 잠세적으로만 로동자를 대신하고있다. 즉 그것은 생산자들로 하여금 보다 큰 지면을 경작할수 있게 하나 현실적으로 종업로동자들을 구축하고있지는 않다. 1861년에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농업기계의 제작에 참가한 인원수는 1,034명인데 증기기관 및 작업기에 붙어 일한 농업로동자수는 불과 1,205명이였다.

대공업이 낡은 사회의 보루인 《농민》을 없애버리고 그 대신에 임금로동자로 바꾸어놓는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농업분야에서 가장 혁명적인 작용을 한다. 그리하여 사회적변혁의 요구와 사회적대립은 농촌에서도 도시에서와 같게 된다.

(323) 영국의 농업에서 사용되고있는 기계에 관한 상술한 서술은 W. 함바사의 《영국의 농구와 농업기계》(1856년 제2판)에서 볼수 있다. 함씨는 영국농업의 발전행정에 관한 서술에서는 레옹스 드 라베론뉴씨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고있다.[378] {제4판 주: 이 저작은 지금은 물론 때가 지났다. —F. E.}

① 이 책 774~802페지를 보라. —편집자

낡고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경영 대신에 과학의 의식적이며 공업기술학적인 응용이 나타난다. 유치하고 미발달한 농업과 공장제수공업을 서로 얽어매고있던 이 량자의 원시가족적뉴대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 의하여 완전히 끊어진다. 그러나 동시에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은 새로운 보다 높은 종합 즉 농업과 공업의 서로 대립하여 발전한 형태에 기초한 량자의 련합의 물질적전제를 조성한다. 자본주의적생산은 대중심지로 집결되는 도시인구가 점점 우세를 차지함과 함께 한편으로는 사회의 력사적원동력을 축적하며 또 한편으로는 인간과 토지간의 물질변환을 교란한다. 즉 인간이 의식수단으로서 소비한 토지성분들의 토지에로의 복귀를 장애하며 따라서 토지비옥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영원한 자연조건을 파괴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도시로동자의 육체적건강과 농촌로동자의 정신생활을 다같이 파괴한다.(324) 그러나 자본주의적생산은 그 물질변환의 순전히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상태를 파괴함과 동시에 물질변환으로 하여금 사회적생산을 규제하는 법칙으로서 또 인간의 충분한 발전에 적합한 형태로서 체계적으로 확립되지 않을수 없게 한다. 농업에서도 공장제수공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생산과정의 자본주의적전화는 동시에 생산자들의 순난사로 나타나며 로동수단은 동시에 로동자의 예속화수단, 착취수단, 빈궁화수단으로 나타나며 로동과정의 사회적결합은 로동자의 개인적인 활기, 자유 및 독립에 대한 조직적압박으로 나타난다. 농촌로동자들의 넓은 지역으로의 분산은

---

(324) 《당신들은 인민을 조야한 농민과 나약한 난쟁이의 두 적대진영으로 분할한다. 하느님맙시사! 농업적리해와 상업적리해로 분할된 민족이 이 기괴하고 부자연한 분할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때문에 스스로 건전한 민족이라고 부르며 스스로 개화, 문명된 민족이라고 부른다.》 (데이비드 어커트 《상용어》, 119페지) 이 구절은 현대를 비판하고 지적할줄은 아나 리해할줄은 모르는 그러한 비판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표시한다.

동시에 그들의 반항력을 파괴하는데 도시로동자들의 집중은 그들의 반항력을 강화한다. 도시공업에서와 마찬가지로 현대적농업에서도 로동생산력의 제고와 류동화의 증대는 로동력 자체의 파괴와 병약화에 의하여 얻어진다. 또 자본주의적농업의 진보는 그 어느것이나 로동자를 략탈하는 기술의 진보일뿐만아니라 동시에 토지를 략탈하는 기술의 진보이며 일정한 기간에 토지의 비옥도를 제고하는 진보는 그 어느것이나 이 비옥도의 항구적원천을 파괴하는 진보이다. 한 나라가 례컨대 북아메리카합중국과 같은 나라가 그 발전의 배경으로서의 대공업으로부터 출발하면 할수록 이러한 파괴과정은 더욱 더 급속하다.(325) 따라서 자본주의적생산은 오직 모든 부의

(325) 리비히 《농업과 생리학에의 화학의 응용》, 1862년 제7판 특히는 제1권의 《농업자연법칙 서론》을 참조하라. 자연과학적관점에서 현대적농업의 부정적측면을 천명한것은 리비히의 불멸의 공적의 하나이다. 농업사에 관한 그의 력사적서술도 심한 오유가 없는것은 아니지만 몇가지 뛰여난 견해가 들어왔다. 유감스러운것은 그가 다음과 같이 고려없이 말하고있는것이다. 《땅을 잘 바수어 부드럽게 하고 자주 갈아엎으면 유공성토양내부의 환기는 촉진되며 공기의 작용을 받게 되는 토양의 표면은 증대되며 갱신된다. 그러나 쉽게 리해할수 있는바와 같이 수확의 증가는 경지에 지출된 로동에 비례할수는 없으며 도리여 수확은 훨씬 적은 비률로 증가한다.》 리비히는 이렇게 부언한다. 《이 법칙은 J. S. 밀에 의하여 처음으로 그의 〈정치경제학원리〉 제1권 17페지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있다. 〈토지의 생산물은 기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종업로동자의 증가에 대하여 체감적비률로 증가한다는것은 농업의 일반적법칙이다. (밀씨는 리카도학파의 법칙을 그릇된 공식으로 반복하고있는것이다. 왜냐 하면 종업로동자의 감소가 영국에서는 언제나 농업의 진보와 병행하고있으며 따라서 영국을 위하여 또 영국에서 발견된 그 법칙이 적어도 영국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기때문이다.)〉 이것은 매우 기묘한것이다. 왜냐 하면 밀은 이 법칙의 근거를 알지 못했기때문이다.》 (리비히 《농업과 생리학에의 화학의 응용》 제1권 143페지 및 주) 리비히는 《로동》이란 용어를 정치경제학에서 리해되고있는것과는 다른 어떤것으로 리해하고있는데 그 그릇된 해석은 도외시하더라도 여하간 《매우 기묘한것》은 J. S. 밀씨를 이 리론의 최초의 제창자라고 하는 그것이다. 기실 이 리론은 A. 스미스시대에 제임즈 앤더슨에 의하여 처음으로 발표되였고 그후 19세기초엽에 이르기까지 각종 저술[379]에서 반복된것이다. 1815년에 표절의 대가인 말사스(그의 인구론전체가 파렴치한 표절이다.)가 이 리론을 자기의것으로 만들었으며[380] 웨스트가 같은 시대에 앤더슨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이 리론을 전개하였다.[381] 1817년에 리카도가 그것을 일반적가치론과 관련시켰으며[382] 그때부터 이 리론은 리카도의 이름으로 세계에 알려졌다. 1820년에는 제임즈 밀(J. S. 밀의 아버지)이 이 리론을 속류화하

원천인 토지와 로동자를 동시에 파괴함으로써만 사회적생산 과정의 기술과 결합을 발전시킨다.

였으며[383] 마지막으로 특히 J. S. 밀씨가 이 리론을 이미 케케묵은 학파적교조로서 반복하였던것이다. J. S. 밀이 여하간 《기묘한》 권위를 얻게 된것은 거의 전적으로 이와 비슷한 오해의 덕택임은 부인할수 없다.

제 5 편
절대적 및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 14 장

절대적 및 상대적 잉여가치

로동과정은 우선 그 력사적형태와는 관계없이 인간과 자연간의 과정으로서 추상적으로 고찰되였다.(제5장을 보라①.) 거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였다. 《만약 로동과정전체를 그 결과의 립장에서 고찰한다면 로동수단과 로동대상은 생산수단으로 나타나며 로동 그자체는 생산적로동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주 (7) 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충되였다. 《생산적로동에 대한 이와 같은 규정은 단순한 로동과정의 립장에서 얻어낸것으로서 자본주의적생산과정에 대해서는 아주 불충분한것이다.》 이것이 여기서는 더 상세히 전개된다.

로동과정이 순전히 개인적인 과정인 한 동일한 로동자가 후에 가서 분리될 모든 기능을 한몸에 지닌다. 그는 자기의 생활목적을 위하여 자연물을 개인적으로 취득함에 있어서 자기자신을 통제한다. 후에 가서는 그가 통제를 받는다. 개별적 인간은 그자신의 두뇌의 통제밑에서 그자신의 근육을 활동시

① 이 책 207~217페지를 보라. -편집자

키지 않고서는 자연에 대하여 작용할수 없다. 자연적신체에는 머리와 손이 한 유기체에 속하듯이 로동과정에서는 머리의 로동과 손의 로동이 통합된다. 후에는 그것들이 분리되여 적대적대립에까지 이르게 된다. 대체로 생산물은 개인적생산자의 직접적생산물로부터 사회적생산물로, 총로동자의 공동적생산물로 즉 그 성원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로동대상에 작용하는 그러한 결합된 로동인원의 공동적생산물로 전화된다. 그러므로 로동과정 그자체의 협업적성격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생산적로동과 그 담당자인 생산적로동자의 개념도 확대된다. 생산적으로 로동하기 위하여 이제는 직접 자기의 손을 댈 필요는 없으며 총로동자의 한 기관이 되여 그 부속적기능의 어느 하나를 수행하기만 하면 된다. 우에서 말한 생산적로동의 본원적규정은 물질적생산의 성질자체에서 얻어낸것인데 이 규정은 전체로서 본 총로동자에게는 항상 정확하다. 그러나 그것은 개별적으로 본 총로동자의 매개 성원에게는 벌써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생산적로동의 개념은 좁아진다. 자본주의적생산은 상품생산일뿐만아니라 본질적으로 잉여가치의 생산이다. 로동자는 자신을 위하여 생산하는것이 아니라 자본을 위하여 생산한다. 그러므로 그가 무엇을 생산한다는것만으로는 벌써 불충분한것이다. 그는 잉여가치를 생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가를 위하여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로동자 또는 자본의 자기증식에 복무하는 로동자만이 생산적로동자이다. 물질적생산분야밖의 례를 들어도 좋다면 례컨대 학교 교원은 그가 아동들의 두뇌를 훈련시킬뿐만아니라 또한 기업가의 치부를 위하여 헌신하는 경우에야 그는 생산적로동자이다. 기업가가 자기의 자본을 순대공장에 투하하지 않고

교육공장에 투하하였다는것은 이 관계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생산적로동자의 개념은 비단 활동과 그 유용적효과간의 관계, 로동자와 로동생산물간의 관계를 포함할 뿐만아니라 또한 로동자를 자본증식의 직접적수단으로 만드는 특수한 사회적인 력사적으로 발생한 생산관계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생산적로동자라는것은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이다. 리론의 력사를 취급하는 이 저서의 제4권에서 고전정치경제학이 본래부터 잉여가치의 생산을 생산적로동자의 결정적성격으로 삼았다는것을 상세히 보게 될것이다.[384] 그러므로 고전정치경제학이 잉여가치의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그 생산적로동자의 정의도 변한다. 례컨대 중농학파는 농업로동만이 잉여가치를 가져오기때문에 농업로동만이 생산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농학파에게 있어서는 잉여가치는 오직 지대의 형태로만 존재한다.

로동자가 자기의 로동력의 가치의 등가물만을 생산하는 그 점을 넘어서 로동일이 연장되는것 그리고 이 잉여로동이 자본에 의하여 취득되는것—이것은 절대적잉여가치의 생산이다. 절대적잉여가치의 생산은 자본주의체계의 일반적기초를 이루며 상대적잉여가치생산의 출발점을 이룬다. 상대적잉여가치의 생산에서는 로동일은 처음부터 두개의 부분 즉 필요로동과 잉여로동으로 나뉘여져있다. 잉여로동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로임의 등가물을 더 짧은 시간에 생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필요로동이 단축된다. 절대적잉여가치의 생산은 로동일의 길이와만 관련된다. 상대적잉여가치의 생산은 로동의 기술적과정과 사회적구성을 철저히 변혁한다.

그러므로 상대적잉여가치의 생산은 특수한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을 전제로 하는데 이 생산방식은 그의 방법, 수단 및

조건 그자체와 함께 처음에는 자본에의 로동의 형식적예속에 기초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여 발전한다. 이러한 형식적인 예속 대신에 자본에의 로동의 실제적예속이 나타난다.

잉여로동을 직접 강제에 의하여 생산자에게서 짜내지도 않으며 또한 자본에의 생산자의 형식적예속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그러한 중간형태들에 대하여서는 다만 그것을 간단히 지적해두는것만으로 충분할것이다. 이러한 형태들에서는 자본은 아직 로동과정을 직접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전통적인 옛 생산방식으로 수공업 또는 농업에 종사하는 독립적생산자들 곁에 고리대금업자 또는 상인이 나타나며 이러한 생산자들을 기생충처럼 빨아먹는 고리대자본 또는 상업자본이 나타난다. 사회에서 이러한 착취형태가 우세하면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은 배제된다. 그러나 물론 다른편으로 이 착취형태는 중세기말에서와 같이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로의 과도를 이룰수 있다. 끝으로 현대적가내로동의 실례가 보여주는바와 같이① 어떤 중간형태들은 비록 전혀 변화된 형태에서이기는 하지만 대공업의 지반우에서도 여기저기서 재생산된다.

절대적잉여가치의 생산을 위해서는 자본에의 로동의 형식적예속이면 충분하지만, 례컨대 이전에는 자기자신을 위하여 또는 동업조합장주의 장공으로서 로동한 수공업자가 이제는 자본가의 직접적지배하에 있는 임금로동자로 되기만 하면 충분하지만 다른 한편 상대적잉여가치의 생산방법은 이미 본바와 같이 동시에 절대적잉여가치의 생산방법이기도 하였다. 실로 로동일의 무제한한 연장은② 대공업의 독특한 산물이였다. 대체로 특수적인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은 그것이 어떤 생

① 이 책 536~540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이 책 463~470페지를 보라. —편집자

산부문 전체를 정복하자마자, 더우기 모든 결정적생산부문들을 정복하자마자 더는 상대적잉여가치생산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되지 않는다. 그때에는 그것은 생산과정의 일반적인,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형태로 된다. 그것이 이제 와서 상대적잉여가치생산의 특수한 방법으로서 작용하는것은 첫째로, 이전에는 다만 형식적으로만 자본에 종속되였던 산업부문들을 정복하는 한에 있어서이며 따라서 그것이 점점 더 보급되는 한에 있어서이다. 둘째로, 그 지배하에 들어온 산업부문들이 생산방법의 변화에 의하여 부단히 변혁되는 한에 있어서이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절대적잉여가치와 상대적잉여가치간의 구별은 대체로 환상적인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잉여가치는 절대적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로동자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로동시간을 넘는 로동일의 절대적연장을 전제로 하기때문이다. 절대적잉여가치는 상대적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필요로동시간을 로동일의 일부분으로 제한할수 있게 하는 그러한 로동생산성의 발전을 전제로 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잉여가치의 운동에 주의를 돌린다면 이 외관상의 동일성은 소멸된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일단 확립되여 전반적생산방식으로 되기만 하면 대체로 잉여가치률의 제고가 문제로 되는 한 절대적잉여가치와 상대적잉여가치간의 구별은 언제나 느껴지게 된다. 로동력이 그 가치대로 지불된다고 전제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하게 된다. 즉 로동의 생산력 및 그 정상적강도가 주어진 경우에는 잉여가치률은 로동일의 절대적연장에 의하여서만 제고될수 있다. 다른 한편 로동일의 한계가 주어진 경우에는 잉여가치률은 로동일의 두 구성부문 즉 필요로동과 잉여로동의 상대적크기의 변동에 의하여서만 제고될수 있는데 그 변동은 또 임금이 로동

력의 가치이하로 저락되여서는 안된다고 하면 로동생산성 또는 로동강도의 변동을 전제로 한다.

만약 로동자가 그의 전체 시간을 자기자신과 자기가족의 유지에 필요한 생활수단의 생산에 지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 그에게는 제3자를 위하여 무상으로 로동할 시간은 조금도 남지 않는다. 그리하여 일정한 정도의 로동생산성이 없다면 로동자에게는 이렇게 처분할수 있는 시간이 조금도 없으며 이러한 여분의 시간이 없이는 잉여로동도 있을수 없으며 따라서 자본가도 있을수 없으며 또한 노예소유자도, 봉건귀족도 한마디로 말하여 어떠한 대유산자계급도 있을수 없다.(1)

그리하여 잉여가치의 자연적기초에 관하여 말할수 있으나 그것은 어떤 사람이 그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로동을 자기자신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것을 방해하는 어떠한 절대적인 자연적장애도 없다는 극히 일반적인 의미에서만 그렇게 말할수 있는것인데 그것은 례컨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기를 음식물로서 소비하는것을 방해하는 절대적인 자연적장애가 없는것과 마찬가지이다.(1a) 신비로운 관념을 이러한 자연발생적인 로동생산성에 결부시키는 일이 가끔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된다. 인간이 자기의 로동에 의하여 최초의 동물상태를 벗어나게 된 때에만 그리하여 그의 로동자체가 이미 일정한 정도로 사회화되여있는 때에만 어떤 사람의 잉여로동이 다른 사람의 생존조건으로 되는 그러한 관계가 나타난

---

(1) 《특수계급으로서의 자본가적기업주의 존재 그자체가 벌써 로동생산성에 의존하고있다.》(램지 《부의 분배에 관한 론술》, 206페지) 《만약 매개인의 로동이 그자신의 음식물을 생산할수 있을뿐이라면 재산이란 존재할수 없을것이다.》(레이븐스틴 《공채제도와 그 효과에 관한 고찰》, 14페지)

(1a) 최근의 계산에 의하면 지구상의 이미 탐사된 지역들에만도 적어도 400만의 식인종이 아직 살고있다.

다. 문화의 초기에는 이미 취득한 로동생산력은 매우 낮으나 욕망도 또한 매우 낮다. 그런데 욕망은 그 충족수단과 함께 발전하며 또 그 충족수단에 의존하여 발전하는것이다. 또 이 문화의 초기에는 다른 사람의 로동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회부분의 비률은 직접적생산자의 수에 비하면 문제도 안되리만큼 적다. 이 부분은 사회적로동생산력의 장성과 함께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장성한다.(2) 그리고 또 자본관계는 장구한 발전과정의 산물인 경제적지반우에서 발생한다. 자본관계의 출발의 기초로 되고있는 현존로동생산성은 자연의 선물이 아니라 수천 세기를 포괄하는 력사의 선물이다.

사회적생산의 모습이 발전하였는가 하지 않았는가에는 관계없이 로동생산성은 언제나 자연조건과 관련되여있다. 이 자연조건은 모두 인종 등등과 같은 인간자체의 자연과 인간을 둘러싼 자연에 환원시킬수 있다. 외부적자연조건은 경제적으로는 2대부류로 나뉘여진다. 즉 비옥한 토지, 물고기가 풍부한 하해 등등과 같은 생활수단으로서의 자연부원과 세차게 쏟아지는 폭포, 항행할수 있는 하천, 삼림, 금속, 석탄 등등과 같은 로동수단으로서의 자연부원으로 나뉘여진다. 문화의 초기에는 첫째 종류의 자연부원이 결정적의의를 가지며 보다 높은 발전단계에서는 둘째 종류의 자연부원이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례컨대 영국과 인도를 비교하든가 또는 고대세계에서는 아테네와 코린트를 흑해연안지방과 비교하여보라.

절대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자연적욕망의 수효가 적으면 적을수록, 토지의 자연적비옥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후조건이

---

(2) 《아메리카의 미개한 인디안들사이에서는 거의 모든것이 로동하는자의것이며 생산물중 100분의 99는 로동의 몫으로 될것이다. 영국에서는 로동자의 몫으로 되는것은 아마 $\frac{2}{3}$도 안될것이다.》 (《동인도무역의 영국에 대한 리익》, 72~73페지)

보다 유리하면 할수록 생산자의 유지와 재생산에 필요한 로동시간은 그만큼 적어진다. 따라서 생산자가 자기자신을 위하여 진행하는 로동이외에 타인을 위하여 진행하는 여분의 로동은 그만큼 커질수 있다. 례컨대 이미 디오도로스는 고대애급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그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얼마나 적은 로력과 비용을 들이는가 하는것은 전혀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닥치는대로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준다. 그들은 불에 구울수 있으면 파피루스의 아래부분을 먹이기도 하고 진펄지대의 식물의 뿌리와 대를 생으로 또는 찌거나 구워 먹이기도 한다. 기후가 대단히 온화하기때문에 많은 아이들은 신발도 신지 않고 옷도 입지 않고 다닌다. 그러므로 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의 부모는 대체로 20드라크마이상은 들이지 않는다. 애급에서 그렇게도 인구가 많으며 따라서 또 그렇게도 많은 대건조물들이 건설될수 있었다는것은 주로 이것으로써 설명할수 있다.》(3)

그러나 고대애급의 대건조물이 생겨날수 있은것은 애급의 인구가 많은것보다도 오히려 인구의 많은 부분을 자유로 리용할수 있었기때문이다. 개개의 로동자는 그 필요로동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많은 잉여로동을 제공할수 있으며 그와 마찬가지로 로동자인구중 필요생활수단의 생산에 필요한 부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다른 일에 리용할수 있는 부분은 그만큼 크다.

일단 자본주의적생산이 전제로 되여있으면 다른 조건이 변함없고 로동일의 길이가 일정한 경우에는 잉여로동의 크기는 로동의 자연조건 특히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나 결코 반대로 가장 비옥한 토지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장성에 가장 적합한 토지로 될수는 없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를 전제로 한다. 너무나 풍

(3) 디오도로스 《력사문고》, 제1권, 제80장.

요한 자연은 《어린애를 끄는 줄에 매여 걸음마를 익히게 하듯 인간을 자기 손에서 놓지 않는다》.[385] 이와 같은 자연은 인간자체의 발전을 자연적필연성으로 만들지 않는다.(4) 자본의 조국은 식물이 무성한 열대가 아니라 온대이다. 사회적분업의 자연적기초를 이루며 인간이 처하고있는 자연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인간을 자극하여 인간자체의 욕망, 능력, 로동수단 및 로동방식을 다양하게 하는것은 토지의 절대적비옥도가 아니라 토지의 차별이며 토지의 자연적산물의 다양성이다. 자연력을 사회적으로 제어할 필요성, 그것을 경제적으로 리용할 필요성, 그것을 대규모적인 인력공사에 의해 점유하거나 순종시킬 필요성은 산업의 력사에서 결정적역할을 논다. 례컨대 애급(5), 롬바르디아, 화란 등지에서의 치수공사를 들 수 있다. 또는 인도, 페르샤 등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는 인공운하에 의한 관개가 토지에 불가결한 물을 공급할뿐만아니라 동시에 흙탕물과 함께 광물성비료를 산에서 운반하

---

(4) 《전자 〔자연의 부〕는 가장 풍부하고 가장 리로운것이므로 그것은 인간을 경솔하고 거만하게 만들며 아무 절제도 모르게 만든다. 그런데 후자는 주의심, 학문, 기예 및 정치재능을 강요한다.》(《대외무역에 의한 영국의 재부. 또는 우리의 대외무역의 차액은 우리 재부의 법칙이다.》, 런던상인 토머스 만이 집필. 그의 아들 죤 만이 사회의 복리를 위하여 이 책을 출판함. 1669년 런던판, 181~182페지) 《생각컨대 한 민족에게 있어서 생활수단과 식량 생산이 대부분 천연적으로 이루어지며 기후조건이 의복과 집에 대하여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거나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땅에 살게 된다는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그 반대의 극단의 경우도 있을수 있다. 로동을 투하하여도 생산할수 없는 토지는 로동을 조금도 투하하지 않아도 풍부히 생산하는 토지와 꼭 마찬가지로 나쁘다.》(〔N. 포스터〕 《식량의 현가격이 높은 원인에 대한 고찰》, 1767년 런던판, 10페지)

(5) 나일강의 물이 불었다줄었다 하는 주기를 계산할 필요성은 애급의 천문학을 낳았고 또 그와 함께 농업의 지도자인 승려신분의 지배를 낳았다. 《2지점은 1년중에 나일강의 물이 붇기 시작하는 시점으로서 애급인들은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그것을 관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이 회귀년은 그들이 농사작업을 조절하기 위하여 확정하지 않으면 안되는것이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회귀를 표시하여주는 징조를 하늘에서 찾지 않으면 안되였다.》(뀌비에 《지구표면의 변천에 관한 론술》, 웨페르 편찬, 1863년 빠리판, 141페지)

여온다. 아랍인의 지배하에 있었던 에스빠냐 및 씨칠리아에서의 산업번영의 비밀은 관개에 있었다.(6)

유리한 자연조건은 항상 잉여로동, 따라서 잉여가치 또는 잉여생산물의 가능성을 제공할따름이며 결코 그 현실성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로동의 자연적조건이 다르면 동일한 로동량에 의하여 충족되는 욕망의 량이 나라가 다름에 따라 다르며(7) 따라서 기타의 조건이 류사한 경우에 필요로동시간이 서로 다르다. 잉여로동에 대하여는 자연조건은 다만 자연적한계로서만 즉 타인을 위한 로동이 시작될수 있는 시점을 확정함으로써만 작용할따름이다. 이 자연적한계는 산업이 전진함에 따라 후퇴한다. 로동자가 자기 생존을 위하여 로동할 허가를 잉여로동을 지불함으로써만 살수 있는 서구라파사회에서는 잉여생산물을 제공하는것이 마치도 인간로동에 고유한 성질인듯한 착각을 일으키기 쉽다.(8) 그러나 레컨대 사고야자나무가 숲속에 야생하고있는 아시아군도의 동부제도들의 주민을 들어보자.

《주민들은 사고야자나무에 구멍을 뚫고 속이 익었다는것을 확인하면 나무줄기를 찍어넘어뜨려 여러 토막을 내고 속을 긁어내여 물을 타서

---

(6) 호상 관련이 없는 인도의 소생산유기체들을 지배하는 국가권력의 물질적기초의 하나는 관개의 조절이였다. 인도를 지배한 회교도들은 그들의 후계자인 영국인들보다 이것을 더 잘 알고있었다. 우리는 벵갈주의 오리싸지방에서 100만이상의 인도인의 생명을 빼앗은 1866년의 기근을 상기하면 충분할것이다.

(7) 《두 나라에서 같은 량의 생활필수품을 똑같이 풍부하게 같은 량의 로동으로써 제공할수는 없다. 인간의 욕망은 그들이 살고있는 지방의 기후가 추운가 더운가에 따라 증감한다. 따라서 각이한 나라의 주민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업의 정도는 동일할수 없으며 그 차이의 정도는 춥고 더운 정도에 의하여 확정하는수밖에 없다. 이로부터 우리는 일정한 수의 주민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로동량은 기후가 추운 지방에서 가장 많으며 기후가 더운 지방에서 가장 적다는 일반적결론을 내릴수 있다. 왜냐 하면 추운 지방에서는 사람들은 보다 많은 의복이 필요할뿐만아니라 토지를 더 많이 경작할 필요가 있기때문이다.》 (《자연적리자를을 지배하는 제 원인에 관한 론술》, 1750년 런던판, 59페지) 이 획기적 익명저서의 필자는 죠우지프 매씨이다. 흄은 바로 이 저서에서 자기의 리자론을 도출해냈다.

(8) 《모든 로동은 (시민의 권리이며 의무라고도 생각되지만) 잉여분을 남기지 않으면 안된다.》 (쁘루동[386])

거르면 그것은 훌륭히 사용할수 있는 사고농마가 된다. 한 나무에서 농마가 대개 300폰드가 나는데 500~600폰드까지 날수 있다. 그리하여 거기에서는 마치 우리가 나무를 하러 숲속으로 가듯이 빵을 채벌하기 위하여 숲속으로 간다.》(9)

이와 같은 동부아시아의 빵채벌자가 그의 모든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매주 12로동시간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유리한 자연조건이 그에게 직접 많은 한가한 시간을 주고있다. 그가 이 시간을 자기자신을 위하여 생산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여러가지 력사적사정이 필요하며 그가 이 시간을 타인을 위한 잉여로동으로 지출하기 위하여는 외부적강제가 필요하다. 만약 거기에 자본주의적생산이 도입된다면 이 성실한 사람은 자기자신을 위한 1로동일의 생산물을 얻기 위해서는 아마 매주 6로동일을 로동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가 왜 이제 와서는 매주 6일씩 로동하게 되는가 또는 왜 5일간의 잉여로동을 제공하게 되는가 하는것은 자연의 유리한 조건으로써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으로써는 다만 왜 그의 필요로동시간이 매주 1일로 제한되는가가 설명될뿐이다. 그러나 여하튼 그의 잉여생산물은 인간로동의 어떤 선천적인 신비로운 속성으로부터는 나올수 없다.

력사적으로 발전한 사회적로동생산력과 마찬가지로 자연에 의하여 제약된 로동생산력도 로동이 합체되여있는 자본의 생산력으로 나타난다.—

리카도는 결코 잉여가치의 원천에 관하여 관심을 돌려본 일이 없다. 그는 잉여가치를, 그에게 사회적생산의 자연적형태로 보이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 고유한것으로서 취급하고 있다. 그가 로동의 생산성에 언급하는 경우에 거기서 그가

---

(9) F. 샤유 《토지, 식물 및 인간》 1854년 라이프찌히 제2판, 148페지.

찾고있는것은 잉여가치의 존재의 원인이 아니라 다만 잉여가치의 크기를 규정하는 원인일뿐이다. 그런데 그의 학파는 로동생산력이 리윤(잉여가치라고 읽을것.)발생의 원인이라고 소리높이 선언하였다. 어떻든간에 이것은 중상주의자들에 비하면 진보였다. 왜냐 하면 중상주의자들은 생산물가격이 그 생산비를 넘는 초과분을 교환에서 즉 생산물을 그 가치보다 비싸게 판매하는데서 끌어내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리카도 학파[72]도 문제를 회피하였을따름이고 해결하지는 못하였다.[387] 사실 이 자산계급적경제학자들은 잉여가치의 원천에 관한 절실한 문제를 너무 깊이 탐구하는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정확한 본능을 가지고있었다. 그러나 리카도보다 50년후에 죤 스튜어트 밀씨는 리카도를 최초에 비속화한자들의 보잘것없는 둔사를 서투르게 반복하면서도 자기가 중상주의자들보다 우월하다는것을 위엄있게 확언하고있는데 이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할수 있겠는가?

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리윤의 원인은 로동이 그 유지에 필요한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데 있다.》

여기까지는 다만 낡은 이야기의 되풀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밀은 여기에 자기의것을 첨가하고저 한다.

《또는 바꾸어말하면 자본이 리윤을 가져오는 리유는 식료품, 의복, 원료 및 로동수단이 그것들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간보다 더 장시간 존재한다는데 있다.》

여기에서 밀은 로동시간의 지속을 그 생산물의 존재시간의 지속과 혼동하고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생산물이 하루밖에 지속되지 않는 빵제조업자는 결코 생산물이 20년 또는 그 이상이나 지속되는 기계제조업자와 같은 리윤을 자기의

임금로동자에게서 끌어낼수는 없을것이다. 하기는 만약 새둥지가 그것을 트는데 필요한 시간보다 더 오래 존재하지 않는다면 새들은 둥지없이 지울밖에 없다는것은 틀림없을것이다.

이 기본진리를 확립하자 밀은 중상주의자들에 대한 자기의 우월성을 다음과 같이 확립한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는 리윤이 교환이라는 우연한 사실에서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로동생산력에서 발생하며 한 나라의 총리윤은 교환이 진행되든 안되든간에 언제나 로동생산력에 의하여 규정된다는것을 알수 있다. 만약 직업상 구분이 없다면 구매도 판매도 없을것이지만 리윤은 그래도 존재할것이다.》

이리하여 여기서는 자본주의적생산의 일반적조건인 교환, 매매는 순전히 우연한것에 불과하며 로동력의 매매 없이도 리윤은 존재한다!

그는 계속하여 말한다.

《만약 한 나라의 전체 로동자가 그들의 임금총액보다 20% 더 많이 생산한다면 상품가격이 어떻든간에 리윤은 20%로 될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아주 기묘한 동의반복이다. 왜냐 하면 로동자가 자기의 자본가를 위하여 20%의 잉여가치를 생산한다면 리윤은 로동자의 임금총액에 대하여 20:100으로 될것은 자명한 일이기때문이다. 다른 한편 리윤이 《20%로 될것이다.》라는것은 완전히 틀렸다. 리윤은 선대자본총액에 대하여 계산되는것이므로 리윤은 보다 적을수밖에 없다. 례를 들어 자본가가 500파운드를 선대하였는데 그중 400파운드는 생산수단으로, 100파운드는 임금으로 선대하였다고 하자. 잉여가치률이 우에서 가정한것처럼 20%라고 하면 리윤률은 20%가 아니라 20:500 즉 4%일것이다.

다음에는 사회적생산의 각이한 력사적형태들을 밀이 어떻게 취급하고있는가를 보여주는 훌륭한 표본이 나온다.

《나는 어디서나 소수의 례외를 제외하고는 지배적인 현재의 사태를 전제로 한다. 그것은 즉 자본가는 로동자에 대한 지불도 포함한 전체 비용을 선대한다는것이다.》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다만 례외적으로만 지배적인 사태를 어디서나 본다는것은 기이한 착각이다! 그러나 계속하여 좀 더 보기로 하자. 밀은 솔직하게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있다. 《자본가가 그렇게 한다는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것은 아니다.》[388] 그와는 반대이다.

《로동자는 만일 그동안 그의 생존에 필요한 자금을 가지고있다면 로동이 전부 끝날 때가지 자기의 전체 임금액의 지불을 기다릴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는 어느 정도까지는 자본을 기업에 투하하고 그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의 일부를 제공하는 자본가일것이다.》

같은 론법으로 밀은 다음과 같이 말할수도 있을것이다. 즉 생활수단뿐만아니라 로동수단도 자기자신에게 선대하는 로동자는 실지는 그자신의 임금로동자이라고. 또는 주인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다만 자기자신을 위하여 로역을 하는 미국의 농민은 그자신의 노예이라고.

밀은 이와 같이 자본주의적생산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조차 그것은 항상 존재할것이라는것을 아주 명료하게 론증하고나서 이번에는 자본주의적생산이 존재하고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을 아주 시종일관 증명한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에도 〔즉 자본가가 임금로동자에게 그의 생활수단전체를 선대하는 경우에도〕 로동자를 같은 관점에서 〔즉 자본가로서〕 고찰할수 있다. 왜냐 하면 그는 자기의 로동을 시장가격이하로 〔!〕 제공함으로써 그 차액을 〔?〕 자기의 기업주에게 선대하는것으로 볼수 있기때문이다.…》[9a]

(9a) J. 스튜어트 밀 《정치경제학원리》, 1868년 런던판, 252~253페지의 이곳 저곳. — 〔우의 각 구절들은 《자본론》 프랑스문판에 의하여 번역한것이다. —F. E.〕

실지에 있어서는 로동자는 자기의 로동을 1주일 등등의 기간으로 자본가에게 무상으로 선대하고 주말 등등에 가서 그 로동의 시장가격을 받는다. 밀에 의하면 이것이 로동자를 자본가로 만든다는것이다! 평지에서는 흙더미도 작은 산으로 보인다. 오늘날의 자산계급의 천박성을 그들의 《대사상가》의 수준으로써 측정해봄이 좋을것이다.

제 15 장

로동력의 가격과 잉여 가치의 량적변동

로동력의 가치는 평균로동자의 습관적으로 필요한 생활수단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러한 생활수단의 형태는 비록 변동할수 있으나 그 량은 일정한 사회의 일정한 시대에는 일정하며 따라서 불변량으로 볼수 있다. 변동하는것은 다만 이 량의 가치뿐이다. 이밖에 두개의 요인이 로동력의 가치규정에 참가한다. 일방으로는 생산방식에 따라 변하는 로동력의 육성비이며 타방으로는 로동력의 자연적차이 즉 남성인가 녀성인가, 성년인가 미성년인가 하는 차이이다. 이러한 각이한 로동력의 사용은 역시 생산방식에 의하여 제약되는데 이 사용은 로동자가족의 재생산비와 성년남성로동자의 가치에서의 큰 차이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 두 요인은 아래의 연구에서는 제외한다.(9b)

우리는 다음과 같은것을 전제로 한다. 1) 상품은 그 가치대로 판매된다. 2) 로동력의 가격은 때로는 그 가치보다 높을수는 있어도 결코 그 가치보다 낮아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전제하면 로동력의 가격과 잉여가치의 상대량은

(9b) 281페지①에서 고찰된 경우도 여기서는 물론 제외되고있다. {제3판 주. — F. E.}

① 이 책 368~369페지를 보라. —편집자

다음과 같은 세가지 사정에 의하여 규정된다는것을 보게 된다. 1) 로동일의 길이 또는 로동의 외연량, 2) 정상적로동강도 또는 로동의 내포량 즉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로동량이 지출되게 된다는것, 3) 끝으로 로동생산력 즉 생산조건의 발전정도에 따라 같은 량의 로동이 같은 시간에 보다 많은 또는 보다 적은 량의 생산물을 제공한다는것①. 이 세가지 요인중의 하나가 변하지 않고 둘이 변하거나 또는 둘이 변하지 않고 하나가 변하거나 또는 끝으로 세가지가 다 동시에 변할 경우에 극히 각이한 조합이 있을수 있다는것은 명백하다. 이 조합은 각이한 요인들이 동시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변동의 크기 및 방향이 각이할수 있다는 사정에 의하여 더욱 다양하게 된다. 아래에서는 가장 주요한 조합에 대해서만 서술하기로 한다.

I. 로동일의 길이와 로동강도가 변하지 않고(주어진것이고) 로동의 생산력이 변하는 경우

이 전제하에서는 로동력의 가치와 잉여가치는 세 법칙에 의하여 규정된다.

첫째로, 로동생산성이, 또 그에 따라 생산물의 량이, 따라서 개개의 상품가격이 어떻게 변동한다 하더라도 주어진 길이의 로동일은 언제나 같은 가치생산물로 표현된다.

12시간로동일의 가치생산물이 례컨대 6실링이다. 비록 로동생산력의 변동에 따라 생산된 사용가치의 량이 변동하고 그리하여 6실링의 가치가 보다 많은 또는 보다 적은 량의 상

① 이 책 363~373페지를 보라. —편집자

품에 분배된다 하더라도.

둘째로, 로동력의 가치와 잉여가치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변동한다. 로동생산력의 변동 즉 그 제고 또는 저하는 로동력의 가치에는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며 잉여가치에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12시간로동일의 가치생산물은 하나의 불변량, 례컨대 6실링이다. 이 불변량은 잉여가치와 로동력의 가치(로동자가 등가로써 보상하는것이다.)와의 합계와 같다. 하나의 불변량의 두 부분중에서 일방이 감소되지 않으면 타방이 증가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잉여가치가 3실링에서 2실링으로 내리지 않고서는 로동력의 가치는 3실링에서 4실링으로 오를수 없으며 반대로 로동력의 가치가 3실링에서 2실링으로 내리지 않고서는 잉여가치는 3실링에서 4실링으로 오를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로동력의 가치이든 또는 잉여가치이든 그 절대량은 그것들의 상대량 또는 비례량의 동시적변동이 없이는 변동할수 없다. 로동력의 가치와 잉여가치가 동시에 제고되거나 동시에 저하될수는 없다.

다음으로 로동생산력이 제고되지 않고서는 로동력의 가치는 저하될수 없으며 따라서 잉여가치는 제고될수 없다. 례컨대 우에서 든 례에서 로동생산력이 제고되여 종전에 6시간 들여 생산하던것과 같은 량의 생활수단을 4시간에 생산할수 있게 되지 않고서는 로동력의 가치는 3실링에서 2실링으로 내릴수 없다. 반대로 로동생산력이 저하되여 종전에는 6시간이면 생산하던것과 같은 량의 생활수단을 생산하는데 8시간을 들이게 되지 않고서는 로동력의 가치는 3실링에서 4실링으로 오를수 없다. 이로부터 로동생산성의 제고는 로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따라서 잉여가치를 제고시키며 반대로 로

동생산성의 저하는 로동력의 가치를 제고시키고 잉여가치를 저하시킨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법칙을 정식화할 때에 리카도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사정을 간과하였는데 그것은 비록 잉여가치량 또는 잉여로동량의 변동이 로동력의 가치량 또는 필요로동량의 상반되는 변동을 조건으로 하고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결코 이로부터 이 두 량들이 같은 비률로 변동한다고는 말할수 없다는 점이다. 량자는 동일한 크기로 증가 또는 감소된다. 그러나 가치생산물 또는 로동일의 각 부분이 증가 또는 감소되는 비률은 로동생산력의 변동 이전에 있었던 최초의 분할에 의존하는것이다. 로동력의 가치가 4실링 또는 필요로동시간이 8시간이고 잉여가치가 2실링 또는 잉여로동이 4시간이던것이 로동생산력이 제고된 결과 로동력의 가치가 3실링으로 또는 필요로동이 6시간으로 저하되면 잉여가치는 3실링으로 또는 잉여로동은 6시간으로 증가한다. 일방에서 증가되고 타방에서 감소되는것은 2시간 또는 1실링이라는 같은 량이다. 그러나 량적변동의 비률은 쌍방에 있어서 다르다. 로동력의 가치는 4실링에서 3실링으로, 따라서 $\frac{1}{4}$ 즉 25% 저하되는데 잉여가치는 2실링에서 3실링으로, 따라서 $\frac{1}{2}$ 즉 50% 제고된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로동생산력의 일정한 변동에 의하여 생기는 잉여가치가 증가 또는 감소되는 비률은 로동일중 잉여가치로 표시되는 부분이 시초에 작으면 작을수록 크고 시초에 크면 클수록 작게 된다.

셋째로, 잉여가치의 증가 또는 감소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로동력가치의 감소 또는 증가의 결과이며 결코 그 원인인

것은 아니다.(10)

로동일은 불변량이며 불변의 가치량으로 표시되므로 또 잉여가치량의 매개 변동에는 로동력가치량의 상반되는 변동이 상응하므로 그리고 또 로동력의 가치는 오직 로동생산력의 변동에 따라서 변동할수 있을뿐이므로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는 분명히 잉여가치량의 매개 변동은 로동력가치량의 상반되는 변동에서 생긴다는 결론이 나온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로동력가치와 잉여가치의 절대량의 변동은 이 량자의 상대량의 변동이 없이는 있을수 없다는것을 보았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 량자의 상대량의 변동은 로동력가치의 절대량의 변동이 없이는 있을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제3의 법칙에 의하면 잉여가치량의 변동은 로동생산력의 변동에 기인하는 로동력가치의 변동을 전제로 한다. 잉여가치량의 변동의 한계는 로동력가치의 새로운 한계에 의하여 규정되여있다. 그러나 제 사정이 이 법칙의 작용을 허용하는 조건하에서도 중간적변동들이 있을수 있다. 례컨대 로동생산력이 제고되여 로동력의 가치가 4실링에서 3실링으로 또는 필요로동시간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저하된다 하더라도 로동력의 가격은 다만 3실링 8펜스, 3실링 6펜스, 3실링 2펜스 등등으로 저락될수 있으며 따라서 잉여가치는 다만 3실링 4

---

(10) 이 제3법칙에다 머칼러크는, 자본가가 종전에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세금을 폐지한다면 로동력의 가치가 저하되지 않고도 잉여가치는 제고될수 있다고 엉터리없이 추가하고있다. 이와 같은 세금의 폐지는 산업자본가가 직접 로동자에게서 짜내는 잉여가치량에는 절대로 아무런 변동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것은 그 산업자본가가 잉여가치를 자기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비률 또는 그것을 제3자사이에 분배하여야 할 비률만을 변동시킬따름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로동력의 가치와 잉여가치와의 비률에는 아무런 변동도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머칼러크의 례외는 법칙에 대한 그의 몰리해를 증명하여 줄따름이다. 그가 리카도를 비속화할 때에는 J. B. 쎄가 A. 스미스를 비속화할 때처럼 그렇게 자주 불행에 빠지고있다.

펜스, 3실링 6펜스, 3실링 10펜스 등등으로 제고될수 있다. 3실링을 최저한계로 하는 저하의 정도는 자본의 압력과 로동자들의 반항과의 상대적무게에 의하여 결정된다.

로동력의 가치는 일정한 량의 생활수단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된다. 로동생산력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는것은 이 생활수단의 가치이고 그것의 량이 아니다. 이 량자체는 로동력생산력이 제고되면 로동력의 가격과 잉여가치와의 량적관계에는 아무 변동이 없이 로동자와 자본가에 대하여 동시에 또 동일한 비률로 증가할수 있다. 만약 로동력의 시초가치가 3실링이고 필요로동시간이 6시간이며 잉여가치도 또한 3실링이고 잉여로동도 또한 6시간이라면 로동생산력이 2배로 된다 하더라도 로동일의 분할이 그대로라면 로동력의 가격과 잉여가치는 변동되지 않을것이다. 다만 그것들은 각각 량은 2배로 되였으나 가격은 그만큼 싸게 된 사용가치로 표시될따름일것이다. 비록 로동력의 가격은 변동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로동력의 가치이상으로 올라간것이다. 로동력의 가격이 내려가기는 하는데 그러나 로동력의 새로운 가치에 의하여 규정되는 $1\frac{1}{2}$실링이라는 최저한계까지가 아니라 2실링 10펜스, 2실링 6펜스 등등으로 내린다면 이 내린 가격도 역시 증가된 생활수단의 량을 대표할것이다. 그리하여 로동력의 가격은 로동생산력이 제고되면 로동자의 생활수단의 량의 동시적이며 계속적인 증가를 수반하면서 부단히 저락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로동력의 가치는 상대적으로는 즉 잉여가치에 비하여서는 부단히 내릴것이며 따라서 로동자의 생활형편과 자본가의 생활형편과의 간격은 더욱 벌어질것이다.(11)

---

(11) 《산업의 생산성에 변동이 일어나서 일정한 량의 로동과 자본으로써 생산되

리카도는 처음으로 상술한 세가지 법칙을 엄밀히 정식화하였다. 그의 서술상결함은 다음과 같다. 1) 이 법칙들이 적용되는 특수조건들을 그는 자본주의적생산의 자명하며 일반적이며 유일한 조건들로 보고있다. 그는 로동일의 길이나 로동강도의 변동을 모르며 그리하여 그에게 있어서는 로동생산성이 자연히 유일한 가변적인 요인으로 된다. 2) 리카도는 다른 경제학자들과 같이 결코 잉여가치를 그자체로서는 즉 리윤, 지대 등등과 같은 그 특수한 형태들과 독립하여서는 연구한 일이 없다. 바로 이때문에 그의 이 분석은 훨씬 더 심한 오유를 범하고있다. 따라서 그는 잉여가치률에 관한 제 법칙을 리윤률에 관한 제 법칙과 직접 혼동하고있다.[389] 우에서 말한바와 같이 리윤률은 선대총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률이고 잉여가치률은 오직 이 자본의 가변부분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률이다. 500파운드의 자본(C)이 도합 400파운드의 원료, 로동수단 등등(c)과 100파운드의 로임(v)으로 나뉘여지며 또 잉여가치(m)는 100파운드라고 하자. 그러면 잉여가치률은 $\frac{m}{v}=\frac{100파운드}{100파운드}=100\%$이다. 그러나 리윤률은 $\frac{m}{C}=\frac{100파운드}{500파운드}=20\%$이다. 그밖에 리윤률은 잉여가치률에는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는 사정들에 의하여 좌우될수 있다는것도 명백하다. 나는 후에 본서 제3권에서 동일한 잉여가치률이 극히 각이한 리윤률로 표현될수 있으며 또한 일정한 사정하에서는 각이한 잉여가치률이 동일한 리윤률로 표현될수 있다

는 생산물이 많아지든가 적어지든가 하면 임금이 차지하는 비률은 그것이 대표하는 생산물량이 그대로인 경우에도 현저히 변동될수 있으며 또는 임금의 비률이 그대로인 경우에도 생산물량은 변동될수 있다.》(〔J. 캐저노우브〕《정치경제학개요》, 67페지)

는것을 설명할것이다.[390]

Ⅱ. 로동일과 로동생산력이 변하지 않고 로동강도가 변하는 경우

로동강도의 증대는 같은 시간내의 로동지출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강도가 보다 높은 로동일은 강도가 보다 낮은 같은 시간수의 로동일에 비하여 보다 많은 생산물에 구현된다. 물론 로동생산력이 제고되면 같은 로동일도 더 많은 생산물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후자의 경우에는 개개의 생산물에는 이전보다 적은 로동이 지출되기때문에 그 가치는 저하되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생산물에 이전과 같은 량의 로동이 지출되기때문에 그 가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다. 이 경우에는 생산물가격이 저락하지 않아도 생산물의 량은 증대한다. 생산물의 량과 더불어 그 가격총액도 증대하는데 생산력이 제고되는 경우에는 같은 가치총액이 다만 증대된 생산물량에 표현될따름이다. 그리하여 강도가 보다 높은 로동일은 로동시간수가 변하지 않은 경우에 보다 많은 가치생산물에 구현되며 따라서 화폐가치가 그대로이라면 보다 많은 화폐에 구현된다. 이 로동일의 가치생산물은 그 강도가 사회적 표준정도로부터 배리되는 정도에 따라 변동한다. 그리하여 같은 로동일이 이제는 이전과 같이 불변적인 가치생산물로서가 아니라 가변적인 가치생산물로서 표현된다. 례컨대 보통강도의 12시간로동일은 6실링으로 표현되는데 강도가 보다 높은 12시간로동일은 7실링, 8실링 등등으로 표현된다. 1로동일의 가치생산물이 례컨대 6실링에서 8실링으로 변동한다

면 이 가치생산물의 두 부분인 로동력의 가격과 잉여가치는 동일한 정도로이든 각이한 정도로이든간에 동시에 증대할수 있다는것은 명백하다. 만약 가치생산물이 6실링에서 8실링으로 제고된다면 로동력의 가격과 잉여가치는 동시에 3실링에서 4실링으로 증대될수 있다. 이 경우에 로동력의 가격증대는 반드시 그 가격이 그 가치를 초과하여 오르는것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반대로 로동력가격의 로동력가치이하로의 저하①를 수반할수도 있다. 이러한 일은 로동력의 가격증대가 로동력의 촉진된 소모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나 생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일시적례외는 있지만 로동생산성의 변동이 로동력가치량의 변동, 따라서 잉여가치량의 변동을 초래하는것은 해당 산업부문의 생산물이 로동자의 일상적소비로 들어가는 경우에 있어서만이다.② 여기에서는 이러한 제한은 없어진다. 로동량이 외연적으로 변동하든 내포적으로 변동하든간에 그 량적변동에는 로동의 가치생산물의 량의 변동이 그 가치를 나타내는 물품의 성질에 관계없이 대응한다.

로동강도가 모든 산업부문에서 동시에 또 같은 정도로 높아지면 이 새로 높아진 강도는 보통의 사회적표준수준으로 될것이며 따라서 더는 외연량으로 인정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각이한 나라의 평균로동강도는 각이할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각이한 나라의 로동일에 대한 가치법칙의 적용을 수정할것이다. 한 나라의 강도가 보다 높은 로동일은 다른 나라의 강도가 보다 낮은 로동일에 비하여 보다 큰 화

① 이 말은 독일문 제1판에 근거하여 번역한것이다. 제2~4판에는 로동력가치의 저락이라고 되여있다. —편집자

② 이 책 364~368페지를 보라. —편집자

폐액으로 표현된다.(12)

Ⅲ. 로동생산력과 로동강도가 변하지 않고 로동일이 변하는 경우

로동일은 두개의 방향으로 변동할수 있다. 그것은 단축되거나 연장될수 있다.

1. 주어진 조건하에서 즉 로동생산력 및 로동강도가 변하지 않는 경우에 로동일의 단축은 로동력의 가치를, 따라서 필요로동시간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잉여로동을 축소시키며 잉여가치를 감소시킨다. 잉여가치의 절대량이 감소됨에 따라 그 상대량도 즉 로동력의 불변한 가치량에 대한 잉여가치량의 비률도 감소된다. 자본가는 로동력의 가격을 그 가치이하로 저하시키는데 의하여서만 손실을 면할수 있을것이다.

로동일의 단축을 반대하는 종래의 모든 상투어는 이러한 현상이 여기에서 전제로 하고있는 조건하에서 일어난다고 가정하고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와 반대이다. 즉 로동생산성과 로동강도의 변동이 로동일의 단축에 선행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곧 뒤따라 일어난다.(13)

2. 로동일의 연장. 필요로동시간을 6시간 또는 로동력의

---

(12)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영국의 공장주는 일정한 시간내에 외국의 공장주에 비하여 훨씬 많은 로동량을 얻을수 있다. 그것은 영국에서의 매주 60시간의 로동일과 외국에서의 72시간 내지 80시간의 로동일과의 차이를 상쇄할수 있게 할것이다.》(《공장감독관보고. 1855년 10월 31일》, 65페지) 대륙의 공장들에서 로동일을 보다 많이 법적으로 단축하는것은 대륙의 로동시간과 영국의 로동시간사이의 이 차이를 축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것이다.

(13) 《10시간로동법의 실시에 의하여 드러나게 된바와 같은…보충하는 사정들이 있다.》(《공장감독관보고. 1848년 10월 31일》, 7페지)

가치를 3실링이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잉여로동을 6시간, 잉여가치를 3실링이라고 하자. 그러면 전체 로동일은 12시간이 되며 그것은 6실링이라는 가치생산물로 표현된다. 로동일이 2시간 연장되고 로동력의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잉여가치의 절대량과 더불어 그 상대량도 증대한다. 로동력의 가치량은 절대적으로는 변동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는 저하된다. 제Ⅰ절에서 전제한 조건하에서는 로동력가치의 상대량은 그 절대량의 변동이 없이는 변동될수 없었다. 여기에서는 반대로 로동력가치의 상대량의 변동은 잉여가치의 절대량의 변동의 결과이다.

로동일이 표현되는 가치생산물은 로동일의 연장에 따라 증대하므로 로동력의 가격과 잉여가치는 같은 량으로나 또는 같지 않은 량으로나 동시에 증대할수 있다. 이 동시적인 증대는 다음과 같은 두 경우에 가능하다. 그것은 즉 로동일이 절대적으로 연장되는 경우와 이러한 연장이 없이 로동강도가 증대되는 경우이다.

로동일이 연장됨에 따라 로동력의 가격은 비록 그것이 명목상 변하지 않거나 지어는 제고되더라도 로동력의 가치보다 낮게 저하할수 있다. 로동력의 일가치는 우리가 상기하게 되는바와 같이 그 정상적인 평균지속시간에 또는 로동자의 정상적인 수명에 근거하여 평가되며 생명체가 적당하고 정상적이며 인간본성에 적합하게 운동으로 전화하는데 근거하여 평가된다.(14) 로동일의 연장과 불가분적인 로동력소모의 증대는 일정한 점까지는 보수의 증가에 의하여 보상될수 있다. 이

(14) 《24시간동안에 사람이 지출한 로동량은 인체내에서 일어난 화학적 제 변화를 검사함으로써 대체적으로 추정할수 있을것이다. 그것은 물질의 전화된 형태들이 그것에 선행하는 운동력의 지출을 나타내기때문이다.》(그로우브《물리적힘들의 상호관계》(308~309페지))

점을 넘어서면 소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며 그와 동시에 로동력의 모든 정상적인 재생산조건과 활동조건들이 파괴된다. 로동력의 가격과 그 착취도는 더는 서로 통약할수 있는 량으로 되지 않는다.

Ⅳ. 로동의 지속시간, 생산력 및 강도가 동시에 변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분명히 다수의 조합이 있을수 있다. 어느 두개의 요인이 변하고 다른 하나의 요인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고 세개의 요인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다. 그것들은 동일한 정도로 또는 각이한 정도로 변화할수 있고 동일한 방향으로 또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변화할수 있으며 따라서 이 변화가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상쇄될수 있다. 그러나 있을수 있는 모든 경우들은 Ⅰ, Ⅱ, Ⅲ절에서 한 해명에 의하여 쉽게 분석할수 있다. 있을수 있는 임의의 조합의 결과는 차례차례로 어느 한 요인을 변하는것으로, 다른 두 요인은 우선 변하지 않는것으로 취급함으로써 발견할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다만 두개의 중요한 경우에 관해서만 간단히 지적하려 한다.

1. 로동생산력이 저하하고 동시에 로동일이 연장되는 경우.

우리가 여기에서 로동의 생산력저하라고 말하는것은 그 생산물이 로동력의 가치를 규정하는 로동부문들을 두고 말하는데 례컨대 토지비옥도의 저락과 그에 따르는 토지생산물의 등귀의 결과로 하여 로동생산력이 저하되는 경우이다. 로동일은 12시간이고 그 가치생산물은 6실링이며 그중 절반은

로동력의 가치를 보상하며 나머지 절반은 잉여가치를 형성한다고 하자. 따라서 로동일은 6시간의 필요로동과 6시간의 잉여로동으로 나뉘여진다. 토지생산물의 등귀로 하여 로동력의 가치가 3실링에서 4실링으로, 따라서 필요로동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증가한다고 하자. 로동일의 길이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라면 잉여로동은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잉여가치는 3실링에서 2실링으로 감소된다. 만약 로동일이 2시간 연장되여 12시간에서 14시간으로 된다면 의연히 잉여로동은 6시간, 잉여가치는 3실링이다. 그러나 필요로동에 의하여 측정되는 로동력의 가치에 비하면 잉여가치량은 감소되고있다. 만약 로동일이 4시간 연장되여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된다면 잉여가치와 로동력의 가치간의 비률, 잉여로동과 필요로동시간의 비률은 변하지 않지만 잉여가치의 절대량은 3실링에서 4실링으로, 잉여로동의 절대량은 6시간에서 8시간으로 즉 $\frac{1}{3}$ 또는 $33\frac{1}{3}\%$ 증대한다. 그리하여 로동생산력이 저하되고 동시에 로동일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잉여가치의 상대량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량은 변하지 않을수 있으며 그 절대량은 증대하는데 상대량은 변하지 않을수 있으며 또 일정한 정도로 로동일이 연장됨에 따라 잉여가치의 상대량과 절대량이 동시에 증대할수도 있다.

1799년부터 1815년에 이르는 기간에 영국에서 생활수단의 가격이 등귀한 결과는 생활수단으로 표현된 현실적로임이 저락하였지만 명목적임금인상이 일어났다. 이로부터 웨스트와 리카도는 농업로동의 생산성의 저하는 잉여가치률의 저하를 초래하였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그들의 환상속에만 존재하고있던 이 가정을 임금, 리윤 및 지대의 상대적량적관

계에 대한 중요한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았다.[391] 그러나 로동강도의 제고와 로동시간의 강제적연장으로 인하여 잉여가치도 당시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증대하였던것이다. 이 시기야말로 로동일의 무제한한 연장이 시민권을 획득한 시기이며(15) 일방으로는 자본의, 타방으로는 극빈민의 급속한 증가로 특징적인 시기였다.(16)

2. 로동강도와 로동생산력이 증대하는 동시에 로동일이 단축되는 경우.

로동생산력의 제고와 로동강도의 증대는 한면에서 보면 같은 작용을 한다. 량자는 모두 각 기간에 생산되는 생산물 총량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량자는 모두 로동자가 로동일중

(15) 《곡물과 로동이 완전히 병행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것들이 분리될수 없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증언 (즉 1814~1815년의 의회조사위원회에서의 증언) 에서 지적된바와 같은 임금의 저락을 초래하는 물가등귀의 시기에 로동계급에 의하여 수행된 비상한 노력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러한 노력은 개인에 있어서는 가장 찬양할 일이며 또한 확실히 자본의 증대를 촉진하는것이다. 그러나 인도주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와 같은 노력이 변함없이 그대로 지속되는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을것이다. 그것은 일시적구제책으로서는 가장 찬양할만하다. 그러나 그것이 부단히 수행된다면 그로 말미암아 일국의 인구가 극도의 식량핍박에 이르기까지 증가하였을 때에 발생하는것과 류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될것이다.》 (말사스 《지대의 본성과 장성에 관한 연구》, 1815년 런던판, 48~49페지, 주) 리카도 및 기타가 극히 명백한 사실을 보면서도 로동일의 불변량을 그들의 일체 연구의 기초로 삼았는데 말사스가 그의 소책자의 다른 개소에서도 직접 언급하고있는 로동일의 연장을 강조하고있는것은 그에게 있어서 확실히 명예이다. 그러나 말사TM는 보수적리해관계에 사로잡혀있었기때문에 기계의 비상한 발전과 녀성로동과 아동로동의 착취를 동시에 수반하는 로동일의 무제한한 연장이, 로동계급의 현저한 부분을 《과잉》으로 만들지 않을수 없었다는것을 볼수 없었다. 특히 전쟁에 의한 수요와 영국의 세계시장독점이 끝났을 때 그러하였다. 이 《과잉인구》를 자본주의적생산의 력사적인 자연법칙들에 의해서만 설명하지 않고 자연의 영원한 법칙에 의하여 설명하는것은 물론 훨씬 더 편리하였던것이며 또한 말사스가 참으로 송려답게 우상화한 지배계급의 리익에도 더 적합하였던것이다.

(16) 《전쟁중 자본증가의 주요원인의 하나는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수가 많은 로동계급의 보다 큰 로력과 그리고 아마도 보다 큰 궁핍에 있었다. 궁핍상태에 의하여 보다 많은 녀성과 아동들이 힘든 일에 종사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으며 또한 종래의 로동자는 동일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의 시간의 보다 많은 부분을 생산증가에 바치지 않을수 없었다.》 ((죠지 로베르슨) 《정치경제학론문집. 현시의 국민적빈곤의 주요원인을 설명함.》, 1830년 런던판, 248~249페지)

자기의 생활수단 또는 그 등가물의 생산에 필요한 부분을 단축시킨다. 로동일의 절대적최소한계는 일반적으로 로동일의 이 필요하지만 수축될수 있는 구성부분에 의하여 형성된다. 전체 로동일이 그러한 한계에까지 수축된다면 잉여로동은 없어질것인데 그러한 일은 자본의 제도하에서는 있을수 없다. 자본주의적생산형태가 폐절되면 로동일은 필요로동에 국한될 수 있다. 그러나 필요로동은 기타의 조건들이 변함없다면 그 범위를 확대할것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로동자의 생활조건이 보다 부유하게 될것이며 그의 생활상 요구가 증대될것이기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의 잉여로동의 일부분이 필요로동으로 즉 사회적 예비기금과 축적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로동에 들어가게 될것이기때문이다.

로동생산력이 증대되면 될수록 로동일은 더욱더 단축될 수 있으며 로동일이 단축되면 될수록 로동강도는 더욱더 증대될수 있다. 사회적으로 보면 로동의 생산성은 또한 로동의 절약에 따라서도 증대한다. 로동의 절약에는 생산수단의 절약뿐만아니라 또한 일체 무용한 로동의 제거도 포함된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은 매개의 기업소에서는 절약을 강요하지만 그러나 그 무정부적경쟁체계는 사회적생산수단과 로동력의 최대의 랑비를 초래하며 또한 현재는 불가결한것이지만 그자체로서는 불필요한 수많은 기능들을 발생시킨다.

로동강도와 로동생산력이 일정할 때에는 로동이 사회의 모든 로동능력있는 성원들간에 보다 균등하게 분배되여있으면 있을수록 또한 한 사회층이 로동의 자연적필요성을 자신들로부터 다른 사회층에 전가시킬 가능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사회적로동일중 물질적생산에 필요한 부분은 보다 적게 되며 따라서 개인의 자유로운 정신적 및 사회적 활동을 위하여 얻

는 시간은 더욱 많아질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로동일단축의 절대적한계는 로동의 보편화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어떤 한 계급의 자유로운 시간은 대중의 전체 생활시간이 로동시간으로 전화되는데 의하여 조성되는것이다.

제 16 장

잉여가치률의 여러가지 공식

이미 본바와 같이 잉여가치률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하여 표시된다.①

$$\text{I.}\quad \frac{\text{잉여가치}}{\text{가변자본}}\left(\frac{m}{v}\right)=\frac{\text{잉여가치}}{\text{로동력의 가치}}=\frac{\text{잉여로동}}{\text{필요로동}}$$

첫 두 공식이 가치와 가치간의 비률로 표시하고있는것을 제3의 공식은 이 가치들이 생산되는 시간과 시간간의 비률로 표시하고있다. 호상 대체되는 이 공식들은 개념적으로 엄밀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전정치경제학에서 이 공식들이 사실상으로 이미 작성되여있지만 의식적으로 작성된것은 아니라는것을 찾아볼수 있다. 우리는 고전정치경제학에서 다음과 같은 파생적공식들을 보게 된다.

$$\text{II.}\quad \frac{\text{잉여로동}^{②}}{\text{로동일}}=\frac{\text{잉여가치}}{\text{생산물가치}}=\frac{\text{잉여생산물}}{\text{총생산물}}$$

여기에서는 하나의 같은 비률이 번갈아 로동시간의 형태로, 로동시간이 구현되여있는 가치의 형태로, 이 가치가 존재하는 생산물의 형태로 표현되고있다. 물론 생산물의 가치라고 하는것은 단지 로동일의 가치생산물을 의미하며 생산물가치

---

① 이 책 251~252페지를 보라. 一편집자

② 맑스는 그가 교열한 프랑스문판에서 이 첫공식을 괄호안에 넣고 《그 리유는 잉여로동의 개념이 자산계급적정치경제학에서는 명료하게 표현되지 않았기때문이다.》 라고 지적하였다. 一편집자

의 불변부분은 제외되고있다.

이 모든 공식들에서 로동의 현실적착취도 또는 잉여가치률은 틀리게 표현되고있다. 로동일이 12시간이라고 하자. 다른 모든 가정들은 앞에서 든 례와 같다면① 이 경우에 현실적인 로동착취도는 다음과 같은 비률로 표시된다.

$$\frac{\text{6시간의 잉여로동}}{\text{6시간의 필요로동}}=\frac{\text{3실링의 잉여가치}}{\text{3실링의 가변자본}}=100\%$$

그런데 공식 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frac{\text{6시간의 잉여로동}}{\text{12시간의 로동일}}=\frac{\text{3실링의 잉여가치}}{\text{6실링의 가치생산물}}=50\%$$

이 파생적공식들은 사실상 로동일 또는 그 가치생산물이 자본가와 로동자간에 분배되는 비률을 표시한다. 그러므로 만약 이 공식들이 자본의 자기증식정도의 직접적표현으로 될 수 있다면 잉여로동 또는 잉여가치가 결코 100%에는 달할 수 없다는 그릇된 법칙이 옳은것으로 인정되게 된다.(17) 잉

(17) 레컨대 로드베르투스의 《폰 키르흐만에게 보내는 세번째 편지. 리카도의 지대론에 대한 반박 및 신지대론의 론증》, 1851년 베를린판을 보라. 나는 후에 다시 이 저서에 론급하겠지만 이 저서는 그 그릇된 지대론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적생산의 본질을 옳게 간파하고있다.[392]— {제3판에 대한 보충: 여기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맑스는 그의 선행자들에게서 현실적진보와 새로운 정당한 사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언제나 그들에게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었다. 그런데 맑스의 이상의 평가는 그후 루돌프 마이에르에게 보내는 로드베르투스의 편지들이 공포됨으로써 어느 정도 삭감되였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즉 《자본을 로동으로부터뿐만아니라 그자신으로부터 구제하지 않으면 안되는바, 이와 같은 구제는 사실상 기업가인 자본가의 활동을 자본의 소유권이 그에게 맡기고있는 국민경제적 또는 국가경제적 기능으로 간주하며 그의 리윤을 봉급의 한 형태로 간주할 때 가장 잘 실시된다. 왜냐 하면 우리는 아직 다른 사회적조직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봉급은 조절할수도 있으며 또 임금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이 탈취할 때에는 그것을 인하할수도 있다. 이리하여 사회에 대한 맑스의 침입—나는 그의 저서를 이렇게 부르고저 한다—도 방지되여야 한다.…일반적으로 맑스의 저서는 자본에 관한 연구라기보다는 오히려 현대의 자본형태에 대한 공격이며 그는 이 자본형태를 자본개념 그 자체와 혼동하고있으므로 이로부터 그의 모든 오유가 나오고있다.》(《로드베르투스—야게쪼브박사의 편지와 사회정치론문집》, 루돌프 마이에르박사 편찬, 1881년 베를린판,

① 이 책 249~253페지를 보라. —편집자

여로동은 언제나 로동일의 일부분을 이룰뿐이며 또 잉여가치는 언제나 가치생산물의 일부분을 이룰뿐이기때문에 필연적으로 잉여로동은 언제나 전체 로동일보다 적으며 또 잉여가치는 언제나 가치생산물보다 적다. 그런데 그것들이 $\frac{100}{100}$이라는 비률이 되려면 그것들은 같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잉여로동이 전체 로동일을 흡수하려면(여기에서 가리키는것은 1로동주, 1로동년 등등의 평균일이다.) 필요로동이 령으로까지 감소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러나 필요로동이 소멸되면 잉여로동도 소멸된다. 왜냐 하면 후자는 전자의 한개 함수에 불과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frac{\text{잉여로동}}{\text{로동일}}=\frac{\text{잉여가치}}{\text{가치생산물}}$라는 이 비률은 결코 $\frac{100}{100}$이라는 한계에 도달할수 없으며 $\frac{100+X}{100}$로 높아질수는 더욱 없다. 그러나 잉여가치률 또는 현실적인 로동착취도에 있어서는 완전히 이에 도달할수 있다. 례컨대 L. 드 라배른뉴씨의 계산에 의하면 영국의 농업로동자는 생산물(18) 또는 그 가치의 $\frac{1}{4}$만을 받는데 자본가(차지농업가)는 그 $\frac{3}{4}$을 받고있다. 이 획득물이 추후에 자본가와 토지소유자 등등간에서 다시 어떻게 분배되는가 하는것은 별문제이다. 이 례에 의하면 영국농업로동자의 잉여로동은 그의 필요로동에 대하여 3:1의 비례를 이루고있으며 착취의 백분률은 300%이다.

제1권, 111페지, 로드베르투스의 제48서한)—이와 같은 관념적인 판에 박힌 문구속에 로드베르투스의 《사회적서한》의 실로 대담한 돌격은 매몰되고말았다. —F. E.)

(18) 물론 이 계산에서는 생산물중 불변자본의 지출을 보상할따름인 부분은 제외되고있다. —영국에 대한 맹목적숭배자인 L. 드 라배른뉴씨는 이 비률을 과대평가한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소평가하고있다.

로동일을 불변량으로 간주하는 고전학파의 방법은 공식 Ⅱ의 적용에 의하여 확립되였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는 잉여로동은 언제나 일정한 크기의 로동일과 비교되기때문이다. 가치생산물의 분배만을 주목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가치생산물에 이미 구현되여있는 로동일은 언제나 일정한 한계를 가진 로동일이다.

잉여가치와 로동력의 가치를 가치생산물의 두 부분들로 표현하는 방법—여하튼 그것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 그자체에서 생기는 표현방식으로서 그 의의는 후에 해명될것이다—은 자본관계의 독특한 성격을 즉 가변자본과 산로동력과의 교환, 그에 상응하는 로동자의 생산물로부터의 배제를 은폐한다. 그대신에 나타나는것은 로동자와 자본가가 생산물의 형성에 각자가 참가한 몫에 따라 생산물을 분배하는 협동적관계인듯한 그릇된 외관이다.(19)

그런데 공식Ⅱ는 언제나 공식 Ⅰ에로 재전화될수 있다. 례컨대 $\frac{\text{6시간의 잉여로동}}{\text{12시간의 로동일}}$이면 필요로동시간은 12시간의 로동일에서 6시간의 잉여로동을 감한것이며 따라서 다음과 같이 된다.

$$\frac{\text{6시간의 잉여로동}}{\text{6시간의 필요로동}} = \frac{100}{100}$$

내가 이미 앞에서 미리 언급한 제3의 공식은① 다음과 같다.

---

(19)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의 모든 발전된 형태들은 협업형태이므로 물론 그 형태들에 고유한 적대적성격을 사상하고 그것들을 자유로운 협동적형태로 묘사하는것처럼 쉬운 일은 없다. 례컨대 A. 드 라보르드백작은 《사회의 모든 령역에 리로운 협동정신에 대하여》(1818년 빠리판 (제130~131페지))에서 그렇게 하였다.[393] 미국사람인 H. 케어리는 때로는 노예제도의 제 관계에 대하여서까지 이 재간을 부려 동일한 효과를 거두고있다.

---

① 이 책 251~252페지를 보라. —편집자

III. $\frac{\text{잉여가치}}{\text{로동력의 가치}}=\frac{\text{잉여로동}}{\text{필요로동}}=\frac{\text{부지불로동}}{\text{지불로동}}$

$\frac{\text{부지불로동}}{\text{지불로동}}$이라는 공식은 자본가가 로동에 대하여 지불하는것이고 로동력에 대하여 지불하는것이 아닌듯한 오해를 일으킬수 있으나 이와 같은 오해는 이미 설명한바에 의하여 제거되였다. $\frac{\text{부지불로동}}{\text{지불로동}}$은 다만 $\frac{\text{잉여로동}}{\text{필요로동}}$에 대한 통속적표현에 불과하다.① 자본가는 로동력의 가치 또는 이로부터 배리되는 로동력의 가격을 지불하고 그대신 산로동력자체에 대한 지배권을 얻는다. 자본가에 의한 이 로동력의 리용은 두 기간으로 나뉘여진다. 한 기간에는 로동자는 그의 로동력의 가치에 해당한 가치만을, 따라서 등가물만을 생산한다. 이와 같이 하여 자본가는 선대한 로동력의 가격 대신에 동일한 가격의 생산물을 받는다. 이것은 마치 자본가가 기성의 생산물을 시장에서 구입한것과 같다. 이와는 반대로 잉여로동의 기간에는 로동력의 리용은 자본가를 위한 가치를 형성하는데 자본가는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20) 이 경우에 그는 로동력의 리용을 무상으로 획득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잉여로동을 부지불로동이라고 부를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은 A. 스미스가 말하고있는바와 같이 로동에 대한 지배권[394]으로만 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본질적으

(20) 중농학파들은 비록 잉여가치의 비밀을 알지는 못하였지만 적어도 그들은 잉여가치가 《그 (부의 소유자) 가 사지는 않았는데 팔게 되는, 독립적이며 자유로 처분할 수 있는 부》라는것만은 명백히 알고있다.(뛰르고 《부의 형성과 분배에 관한 고찰》, 11페지)

① 이 책 194~204페지를 보라. ㅡ편집자

로 부지불로동에 대한 지배권이다. 모든 잉여가치는 그것이 후에 리윤, 리자, 지대 등등의 어떠한 특수한 형태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실체로 보아 부지불로동시간의 물질화이다. 자본의 자기증식의 비밀은 일정한 량의 타인의 부지불로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권에 귀결된다.

제 6 편
로 임

제 17 장

로동력의 가치 또는 가격의 로임에로의 전화

자산계급사회의 표면에서는 로동자의 로임은 로동의 가격으로서, 일정한 량의 로동에 지불되는 일정한 량의 화폐로서 나타난다. 여기서는 로동의 가치가 운운되며 그 화폐적표현이 로동의 필요가격 또는 자연가격이라고 불리우고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로동의 시장가격 즉 그 필요가격의 아래우로 진동하는 가격이 운운되고있다.

그런데 상품의 가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상품의 생산에 지출된 사회적로동의 대상적인 형태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품의 가치량을 무엇으로써 측정하는가? 상품에 포함되여있는 로동량에 의하여 측정한다. 그러면 례컨대 12시간로동일의 가치는 무엇에 의해서 규정되는가? 12시간으로 되여있는 로동일에 포함되여있는 12로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것은 무의미한 동의반복이다.(21)

---

(21) 《리카도는 가치는 생산에 사용된 로동의 량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그의 학설을 일견해서 전복할 우려가 있는 하나의 난점을 대단히 재치있게 회피하고있다. 만약 이 원

로동이 상품으로서 시장에서 팔리려면 팔리기전에 반드시 존재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러나 로동자가 자기의 로동에 독립적존재를 부여할수 있다면 그가 파는것은 상품이지 로동이 아닐것이다.(22)①

그러나 이러한 모순은 도외시하고라도 화폐 즉 대상화된 로동과 산로동의 직접적교환은 바로 자본주의적생산의 기초우에서 자유로이 전개되는 가치법칙을 폐절하든가 또는 바로 임금로동에 립각하고있는 자본주의적생산자체를 폐절할것이다. 례컨대 12시간로동일이 6실링의 화폐가치로 표시된다고 하자. 우선 등가물들이 교환된다고 하면 로동자는 12시간로동의 대가로 6실링을 받을것이다. 그의 로동의 가격은 그의 생산물의 가격과 같을것이다. 이 경우에 그는 자기 로동의 구매자를 위하여 잉여가치를 생산하지 않을것이며 이 6실링은 자본으로 전화되지 않을것이며 그와 함께 자본주의적생산의 기초가 소멸될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기초우에서 로동자는 자기 로동을 파는것이며 바로 이 기초우에서 그의 로동은 임금로동으로 되는것이다. 다음에 로동자가 12시간로동의 대

칙을 엄격히 고수한다면 로동의 가치는 로동의 생산에 사용된 로동량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은 확실히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리카도씨는 교묘하게 말을 돌리여 로동의 가치는 임금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량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다. 즉 그자신의 말대로 하면 로동의 가치는 임금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량—그가 의미하는것은 로동자에게 지불되는 화폐 또는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량이다—에 의하여 평가되여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천의 가치가 그 생산에 지출된 로동량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천과 교환되는 은의 생산에 지출된 로동량에 의하여 평가된다고 말하는것과 같다.》((S. 배일리) 《가치의 성질, 척도 및 원인에 관한 비판적론술》, 50~51페지)

(22) 《당신들이 로동을 상품이라고 부르더라도 그것은 처음에 교환하기 위하여 생산되고 그다음에 시장으로 가지고가서 그때 시장에 있는 다른 상품들과 적당한 량으로 교환되여야 하는 상품과는 다르다. 로동은 그것을 시장에 가지고 오는 순간에 창조된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로동은 그것이 창조되기전에 시장에 가지고오게 된다.》(《정치경제학상의 약간의 용어론쟁에 대한 고찰》, 75~76페지)

---

① 이 책 194~204페지를 보라. —편집자

가로 6실링보다 적게 즉 12시간로동보다 적게 받는다고 하자. 그러면 12시간로동이 10시간, 6시간 등등의 로동과 교환된다. 같지 않은 량들을 등치시키는것은 가치의 규정을 폐절할뿐만이 아니다. 자기자신을 폐절하는 이러한 모순은 도대체 법칙으로서 표명하거나 정식화할수 없다.(23)

보다 많은 량의 로동과 보다 적은 량의 로동과의 교환을, 한편에는 대상화된 로동, 다른편에는 산로동이라는 형태상의 차이에서 끌어내려는 기도는 아무런 소용도 없을것이다.(24) 이것은 더구나 상품의 가치가 상품에 실지로 대상화된 로동량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그 생산에 필요한 산로동량에 의하여 규정되는만큼 더욱 어처구니없는것이다. 상품이 6로동시간을 표시한다고 하자. 만약 3시간에 그 상품을 생산할수 있게 하는 발명이 이루어진다면 이미 생산된 상품의 가치도 절반으로 저하될것이다. 이제는 이 상품은 이전의 6시간 대신에 3시간의 사회적필요로동만을 표시한다. 그리하여 상품의 가치량은 로동의 대상형태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로동량에 의하여 규정된다.

상품시장에서 화폐소유자에게 직접 대립하는것은 실지는 로동이 아니라 로동자이다. 로동자가 판매하는것은 그의 로동력이다. 그의 로동이 현실적으로 시작되면 그것은 벌써 로

---

(23) 《로동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로동생산물인 자본을 다른 상품으로 본다면, 그리고 이 두 상품의 가치가 같은 로동량에 의하여 규정된다면 일정한 량의 로동은…그것과 같은 량의 로동에 의하여 생산된 자본량과 교환될것이다. 과거로동이…그것과 같은 량의 현재로동과 교환될것이다. 그러나 로동의 가치는 다른 상품과의 관계에서 같은 로동량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다.》 (E. G. 웨익필드 편찬, A. 스미스의 《제 국민의 부》 에 가한 주, 1835년 런던판, 제1권, 230~231페지)

(24) 《이미 완성된 로동과 앞으로 완성될 로동이 교환될 때마다 후자 (자본가) 가 전자 (로동자) 보다 더 많은 가치를 받게 된다는것 ((사회계약[395]) 의 또 하나의 변종이다.) 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씨몽드(즉 씨스몽디) 《상업적부에 관하여》, 1803년 제네바판, 제1권, 37페지)

동자의것이 아니며 따라서 로동자에 의하여 더는 팔릴수 없다. 로동은 가치의 실체이며 또 내재적척도이지만 그자체는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25)

《로동의 가치》라는 표현에서는 가치의 개념이 완전히 소멸될뿐만아니라 그 반대물로 전화한다. 이것은 례컨대 토지의 가치와 같이 가상적표현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상적표현은 생산관계자체에서 발생한다. 그것은 본질적관계의 현상형태를 나타내는 범주이다. 현상에서는 사물이 흔히 거꾸로 표시된다는것은 정치경제학을 제외하고는 모든 과학에서 대체로 인정되고있다.(26)

고전정치경제학은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비판도 없이 《로동의 가격》이라는 범주를 차용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 가격이 무엇에 의하여 규정되는가 하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고전정치경제학은 수요공급관계의 변동은 로동의 가격에 대

---

(25) 《가치의 유일한 척도인 로동은…모든 부의 창조자이지만 상품은 아니다.》(Th. 호지스킨 《통속정치경제학》, 186페지)

(26) 이와 반대로 그러한 표현을 단순한 시적파격이라고 설명하려는 기도는 분석상의 무능을 보여줄뿐이다. 《로동이 가치를 가지고있다고 하는것은 로동자체가 상품인 한에 있어서가 아니라 로동에 잠재적으로 포함되여있다고 생각되는 가치를 념두에 두기때문이다. 로동의 가치란…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이다.》라는 쁘루동의 말에 대하여 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여둔다. 《로동이라는 상품속에서, 이 놀랄만한 현실속에서 그는 문법적 생략밖에는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로동이라는 상품에 기초를 두고있는 현대의 전 사회는 금후에는 어떤 종류의 시적파격에, 비유적인 표현에 기초를 두게 된다. 만일 사회가 사회를 난처하게 하고 있는 〈모든 불편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사회는 다만 듣기 싫은 표현을 제거하고 말을 고치기만 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는 다만 과학원에 요청하여 과학원사전의 새판을 내게 하면 된다.》(칼 맑스 《철학의 빈곤》, 34~35페지[396]) 물론 가치를 전혀 아무것도 아닌것으로 리해한다면 더욱 편리할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 범주에 아무것이나 다 제멋대로 집어넣을수 있다. 례컨대 J. B. 쎄가 그렇게 하고있다. 《가치》란 무엇인가? 대답: 《한 물건의 값이 되는 그것이다.》 《가격》이란 무엇인다? 대답: 《한 물건의 가치가 화폐로 표현된것이다.》 그런데 왜 《토지의 로동이…가치를 가지는가? 사람들이 그것에 일정한 가격을 부여하기때문이다.》 그리하여 가치란 물건의 값이 되는 그것이며 토지가 《가치》를 가지는것은 그 가치를 《화폐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쨌든 사물의 《어째서》와 《무엇때문에》의 문제를 리해하는 대단히 간단한 방법이다.

하여서도 다른 모든 상품의 가격에 대하여서와 마찬가지로 이 가격의 변동외에는 즉 시장가격이 일정한 량의 상하로 진동한다는것외에는 아무것도 설명할수 없다는것을 곧 인정하였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면 기타의 조건들이 같을 때에는 가격의 진동은 없어진다. 그러나 그때에는 수요와 공급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게 된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에는 로동의 가격은 수요공급관계에 상관없이 규정되는 로동의 가격 즉 로동의 자연가격이다. 그리하여 이 가격이 본래 분석되여야 할 대상이라는것을 발견하게 되였다. 또는 시장가격의 꽤 긴 기간 례컨대 1년을 고찰할 때 그 상하로의 배리가 서로 상쇄되여 어떤 중등의 평균량으로, 하나의 불변량으로 된다는것을 발견하였다. 이 평균량은 물론 이자체로부터의 호상 상쇄되는 배리와는 달리 규정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로동의 우연적인 시장가격들을 지배하며 규제하는 가격 즉 로동의 《필요가격》(중농학파) 또는 《자연가격》(애담 스미스[397])은 다른 상품들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다만 화폐로 표현된 로동의 가치일따름이다. 이와 같이 하여 정치경제학은 로동의 우연적인 가격들을 통하여 로동의 가치에 도달하려고 하였다. 이 가치는 다른 상품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후에 생산비에 의하여 규정되게 되였다. 그런데 로동자의 생산비 즉 로동자자신을 생산 또는 재생산하기 위한 비용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가 정치경제학에서 무의식중에 최초의 문제를 대체하였다. 왜냐 하면 정치경제학은 로동 그자체의 생산비를 문제로 취급할 때에 제자리에서 맴돌기만 하면서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경제학이 로동의 가치라고 부르고있는것은 사실은 로동력의 가치이며 이 로동력은 로동자의 체내에 존재하며 마치도 기계가 그것이 수행

하는 작업과 다르듯이 그자체의 기능인 로동과는 다른것이다. 사람들은 로동의 시장가격과 그 소위 가치간의 차이라든가 리윤률에 대한, 그리고 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가치에 대한 이 가치의 관계라든가 하는 등등에 열중한 나머지 분석의 진행이 로동의 시장가격으로부터 그 가상적가치에 이르게 되였을뿐만아니라 이 로동의 가치자체를 이번에는 로동력의 가치에 귀착시켜버렸다는것을 결코 발견하지 못하였다. 고전정치경제학은 자기자신의 분석의 이러한 성과들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것과 또 문제로 되고있는 가치관계의 최종적인 적합한 표현으로서의 《로동의 가치》, 《로동의 자연가격》 등등의 범주를 무비판적으로 채용하였기때문에 우리가 후에 보는 바와 같이 해결할수 없는 혼란과 모순에 빠져버렸으며 그와 동시에 그것은 원칙적으로 현상의 외관만을 인정하는 속류경제학의 천박성을 위한 튼튼한 작전근거지를 제공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우선 로동력의 가치와 가격이 로임이라는 그의 전화된 형태로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보기로 하자.

우리가 아는바와 같이 로동력의 일가치는 로동자의 일정한 수명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며 이 수명에는 로동일의 어떤 일정한 길이가 대응한다①. 관습적인 1로동일이 12시간이고 로동력의 일가치는 3실링이며 이것은 6로동시간을 나타내는 가치의 화폐적표현이라고 하자. 로동자가 3실링을 받는다면 그는 12시간동안 기능하는 자신의 로동력의 가치를 받는것이다. 이제 로동력의 이러한 일가치가 1로동일의 가치로서 표현된다면 12시간로동은 3실링의 가치를 가진다는 공식이 나온다. 이와 같이 로동력의 가치가 로동의 가치를 규정하며 또는 화폐로 표현하면 로동의 필요가격을 규정한다. 반

① 이 책 198~201페지를 보라. —편집자

대로 만약 로동력의 가격이 그 가치로부터 배리된다면 로동의 가격도 역시 그 소위 가치로부터 배리되는것이다.

로동의 가치는 로동력의 가치를 의미하는 불합리한 표현에 지나지 않으므로 로동의 가치가 로동의 가치생산물보다 언제나 작지 않을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왜냐 하면 자본가는 항상 로동력이 그자체의 가치의 재생산에 필요한것보다 더 오래 기능하도록 하기때문이다. 우에서 든 례에서는 12시간동안 기능하는 로동력의 가치는 3실링인데 이것은 그 가치의 재생산에 로동력이 6시간 기능하여야 하는 가치이다. 그런데 로동력의 가치생산물은 6실링이다. 왜냐 하면 로동력은 사실상 12시간 기능하였으며 로동력의 가치생산물은 로동력자체의 가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기능하는 시간의 길이에 의해서 규정되기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6실링의 가치를 창조하는 로동이 3실링의 가치를 가진다는, 얼핏 보아도 어처구니없는 결과에 도달한다.(27)

또 우리가 알다싶이 로동일의 지불되는 부분 즉 6시간로동을 표시하는 3실링의 가치는 지불되지 않는 6시간도 포함하는 전체 12시간로동일의 가치 또는 가격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로임형태는 로동일이 필요로동과 잉여로동으로 또 지불로동과 부지불로동으로 분할되는 모든 흔적을 소멸하는것이다. 전체 로동이 지불로동으로 나타난다. 부역로동에 있어서는 부역민이 자기자신을 위하여 하는 로동과 그가 령주를 위하여 하는 강제로동과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명확

---

(27) 《정치경제학비판》, 40페지를 참조하라.[398] 거기서 나는 자본을 고찰할 때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여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즉 《다만 로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되는 교환가치에 기초한 생산이 어떻게 하여 로동의 교환가치가 그 생산물의 교환가치보다 작다는 결과를 가져오는가?》

히 감각적으로 구별된다. 노예로동에 있어서는 로동일중 노예가 자기자신의 생활수단의 가치만을 보상하며 그리하여 사실상 그가 자기자신을 위하여 로동하는 부분까지도 주인을 위한 로동으로 나타난다. 그의 전체 로동은 부지불로동으로 나타난다.(28) 이와 반대로 임금로동에 있어서는 잉여로동 또는 부지불로동까지도 지불로동으로 나타난다. 노예로동에 있어서는 노예가 자기자신을 위하여 로동하는것을 소유관계가 가리우고 임금로동에 있어서는 임금로동자가 무상으로 로동하는것을 화폐관계가 가리운다.

그러므로 로동력의 가치와 가격이 임금의 형태로 즉 로동자체의 가치 및 가격의 형태로 전화되는것이 결정적의의를 가진다는것을 알수 있다. 현실적관계를 가리우며 그와 정반대되는 관계를 표시하는 이 현상형태는 로동자와 자본가의 모든 법률관념,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모든 기만성, 이 생산방식에서 나오는 모든 자유환상, 속류경제학의 모든 변호론적공담 등의 기초로 되고있다.

임금의 비밀을 폭로하는데 세계사는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이와 반대로 이 현상형태의 필연성, 존재리유를 리해하기보다 더 쉬운것은 없다.

자본과 로동간의 교환은 최초에는 모든 다른 상품의 매매와 꼭같은 형태로 우리 지각에 나타난다. 구매자는 일정한 화폐액을 주며 판매자는 화폐와는 다른 물품을 준다. 법적의식은 이 경우에 기껏해야 법적으로 등치되는 공식들 즉 《네

---

(28) 우둔하다고 말할수 있을 정도로 소박한 런던의 자유무역주의자들의 기관지인 《새별》은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사람으로서 가능한 모든 도덕적격분을 가지고 《남부동맹 제 주》[8]에서는 흑인들이 전혀 무상으로 로동한다고 루차 단언하였다. 그러한 흑인의 하루비용과 례컨대 런던동부에서의 자유로동자의 하루비용을 대비하였더라면 좋았을것이다.

가 주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준다, 네가 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준다, 네가 주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한다, 네가 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한다.》에서 표현되는 물질적차이를 인식할뿐이다[399].

또 교환가치와 사용가치는 그것들자체로서는 약분될수 없는 량이므로 《로동의 가치》, 《로동의 가격》이라는 표현은 례컨대 《면화의 가치》, 《면화의 가격》이라는 표현보다 더 불합리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에다 또 로동자는 그가 자기로동을 제공한후에야 지불을 받는다는 사정이 첨가된다. 그런데 화폐는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제공된 물품의 가치, 또는 가격을,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공된 로동의 가치 또는 가격을 추후에 실현시킨다. 마지막으로 로동자가 자본가에게 제공하는 《사용가치》는 사실에 있어서는 그의 로동력이 아니라 로동력의 기능 즉 재봉로동, 제화로동, 방적로동 등등의 일정한 유용로동이다. 이 동일한 로동이 다른 한편으로는 가치형성의 일반적요소로서 로동을 다른 모든 상품과 구별케 하는 속성을 가지고있는데 이 사정을 보통의식으로는 인식할수 없다.

례컨대 12시간로동의 대가로 6시간로동의 가치생산물 즉 3실링을 받는 로동자의 립장에서 본다면 그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12시간로동이 다만 3실링의 구매수단일따름이다. 그의 로동력의 가치는 그의 일상생활수단의 가치의 변동에 따라 3실링에서 4실링으로 변동할수 있으며 또는 3실링에서 2실링으로 변동할수 있다. 또한 그의 로동력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은 수요공급관계의 변동에 의하여 3실링에서 4실링으로 제고되거나 또는 2실링으로 저락될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로동자는 언제나 12로동시간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그가 받는 등가물의 크기의 모든 변동이 그에게는 필연적으로 그의 12로동시간의 가치 또는 가격의 변동으로서 나타난다. 이 사정은 로동일을 불변량으로 본 A. 스미스(29)로 하여금 이와 반대로, 생활수단의 가치가 변동하고 따라서 또 같은 로동일이 로동자에게 보다 많은 또는 보다 적은 량의 화폐로 표시된다 하더라도 로동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그릇된 주장을 하게 하였다.

다른 한편 자본가를 보자. 그는 될수록 적은 량의 화폐로써 될수록 많은 로동을 얻으려 한다. 그러므로 실지로 그의 관심사로 되는것은 다만 로동력의 가격과 로동력의 기능에 의하여 창조되는 가치간의 차이뿐이다 . 그런데 그는 모든 상품을 될수록 싸게 사려고 애쓰며 또 언제나 자신의 리윤의 원천을 가치보다 늦게 구매하고 가치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단순한 사기로써 설명한다. 따라서 그는 만약 로동의 가치와 같은 물건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그리하여 그가 이 가치를 현실적으로 지불한다면 어떤 자본도 존재할수 없으며 그의 화폐는 자본으로 전화될수 없으리라는것을 도저히 리해하지 못한다.

그밖에 또 로임의 현실적운동은 로동력의 가치가 지불되는것이 아니라 그 기능 즉 로동자체의 가치가 지불된다는 것을 증명하는것 같은 현상들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 현상들을 두개의 큰 부류에 귀착시킬수 있다. 첫째로는 로동일의 길이의 변동에 따르는 로임의 변동이다. 그렇다면 기계를 1주일간 빌리면 하루 빌리는것보다 비용이 더 들기때문에 지불되는것은 기계의 가치가 아니라 그 작업의 가치라고 결론지을수도 있을것이다. 둘째로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

---

(29) A. 스미스는 도급제임금을 론하는 기회에 우연적으로 로동일의 변동에 대하여 암시하고있을따름이다.

는 각이한 로동자들의 로임의 개인적차이이다. 이러한 개인적차이는 노예로동제도하에서도 찾아볼수 있는데 거기서는 어떠한 환상의 여지도 없으며 로동력자체가 아무런 분식도 없이 아주 공공연하게 판매된다. 다만 차이는, 임금로동제도하에서는 로동력이 로동자자신에 의하여 판매되는데 노예제도하에서는 제3자에 의하여 판매되므로 평균이상의 로동력에서 나오는 리득과 평균이하의 로동력에서 나오는 손실이 노예제도하에서는 노예소유자의것으로 되고 임금로동제도하에서는 로동자자신의것으로 된다는 점뿐이다.

하여튼 《로동의 가치 및 가격》 또는 《로임》이라는 현상형태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본질적관계 즉 로동력의 가치 및 가격과 구별되며 이러한 현상형태에 대하여서는 모든 현상형태와 그 배후에 숨어있는것에 대하여 말할수 있는것과 같은것을 말할수 있다고 한것은 이러한 현상형태에도 타당하다. 현상형태는 보통의 사유형태로서 직접 자연발생적으로 재생산되나 그 배후에 숨어있는것은 과학에 의하여서만 비로소 발견될수 있다①. 고전정치경제학은 사물의 진상에 접근하고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의식적으로 정식화하지 못하고있다. 고전정치경제학은 그 자산계급적외피를 벗어던지지 않는 한 그렇게 할수가 없는것이다.

① 이 책 356페지를 보라. —편집자

제 18 장

시 간 제 임 금

로임 그자체는 또 대단히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소재적측면에만 크게 관심하기때문에 모든 형태상 차이들을 등한시하는 경제학개요들에서는 아무것도 알수 없다. 그렇지만 이 모든 형태에 대한 서술은 임금로동에 관한 전문적리론에 속하는것이며[400] 따라서 이 저작의 과업이 아니다. 그러나 두개의 지배적인 기본형태만은 여기에서 간단히 설명하려 한다.

우리가 상기할수 있는바와 같이 로동력은 항상 일정한 시간에 한하여 판매된다①. 따라서 로동력의 일가치, 주가치 등등이 직접 표현되는 전화된 형태는 《시간제임금》의 형태 즉 일임금 등등이다.

그러면 우선 지적해야 할것은 제15장에서 서술한, 로동력의 가격과 잉여가치의 량적변동에 관한 법칙들은 단지 형태를 변화시키기만 하면 임금의 법칙으로 전화된다는 점이다②. 그와 마찬가지로 로동력의 교환가치와 그것이 전화되는 생활수단의 량간의 차이는 이제는 명목임금과 실질임금간의 차이로서 나타난다. 본질적형태에 관하여 서술한 모든것을 그 현상형태에서 반복하는것은 쓸데없는 일일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제임금의 몇가지 특징을 설명하는데 그치려 한다.

---

① 이 책 201~202, 216~217, 226~227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이 책 593~606페지를 보라. —편집자

로동자가 자기의 일로동, 주로동 등등의 대가로 받는 화폐액(30)은 그의 명목임금액을 즉 가치에 의하여 평가되는 로임액을 이룬다. 그러나 분명히 로동일의 길이에 따라 즉 매일 그가 제공하는 로동량에 따라 동일한 일임금, 주임금 등등이 매우 각이한 로동의 가격 즉 같은 량의 로동에 대한 극히 각이한 화폐액을 표시할수 있다.(31) 그리하여 시간제 임금에 있어서는 또다시 일임금, 주임금 등등의 임금의 총액과 로동의 가격과를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이 가격 즉 주어진 량의 로동의 화폐가치는 어떻게 나오는가? 로동의 평균가격은 로동력의 평균적일가치를 평균적인 로동일의 시간수로 제하면 나온다. 례컨대 로동력의 일가치는 3실링 즉 6로동시간의 가치생산물이고 로동일은 12시간이라고 하면 그때에는 1로동시간의 가격$=\frac{3실링}{12}=3$펜스이다. 이와 같이 하여 얻는 1로동시간의 가격은 로동의 가격의 척도단위로 된다.

이로부터 로동의 가격이 부단히 저락하더라도 일임금, 주임금 등등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례컨대 보통의 로동일이 10시간이고 로동력의 일가치가 3실링이라면 1로동시간의 가격은 $3\frac{3}{5}$펜스인데 이 가격은 만약 로동일이 12시간으로 연장되면 3펜스로 저락하고 만일 로동일이 15시간으로 연장되면 $2\frac{2}{5}$펜스로 저락한다. 그럼에도 불

---

(30) 화폐자체의 가치는 여기에서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것으로 전제한다.

(31) 《로동의 가격이란 일정한 량의 로동량에 대하여 지불되는 금액이다.》(에드워드 웨스트경 《곡물가격과 로임》, 1826년 런던판, 67페지) 웨스트는 정치경제학사상 획기적인 닉명저서 《토지에 대한 자본의 적용에 관한 론술. 옥스포드대학의 한 연구원의 저서》(1815년 런던판)의 저자이다.

구하고 일임금 또는 주임금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반대로 로동의 가격이 변하지 않든가 지어 저락하더라도 일임금 또는 주임금은 증대할수 있다. 례컨대 로동일이 10시간이고 로동력의 일가치가 3실링이라면 1로동시간의 가격은 $3\frac{3}{5}$펜스이다. 로동량이 늘어난 결과 로동자가 동일한 로동가격으로 12시간 로동한다면 그의 일임금은 이제는 로동의 가격에는 변화가 없어도 3실링 $7\frac{1}{5}$펜스로 증대한다. 로동의 외연량이 아니라 내포량이 증대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것이다.(32) 그러므로 명목적 일임금 또는 주임금의 제고는 본래의 또는 저락한 로동의 가격을 동반할수 있다. 이와 같은것은 가장이 제공하는 로동량이 가족의 다른 성원들의 로동에 의하여 증가되는 경우에는 로동자가족의 수입에도 적용된다. 그리하여 명목적인 일임금 또는 주임금을 감소시킴이 없이 로동가격을 저락시키는 방법들이 존재한다.(33)

---

(32) 《로임은 로동의 가격과 수행되는 로동량에 의하여 결정된다.…로임의 증가는 반드시 로동의 가격의 증대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로동시간이 연장되고 또 긴장도가 높아지면 로임은 현저히 증가되여도 로동의 가격은 계속 동일할수 있다.》(에드워드 웨스트경 《곡물가격과 로임》, 1826년 런던판, 67~68, 112페지) 그런데 웨스트는 《로동의 가격》이 어떻게 규정되는가 하는 주되는 문제를 평범한, 판에 박힌 문구로써 처리하고있다.

(33) 18세기 산업자산계급의 가장 열광적인 대변자이며 우리가 종종 인용한 《산업 및 상업에 관한 론술》의 저자는, 비록 그가 문제를 극히 혼란되게 서술하고는 있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차리고있다. 즉 《식량 및 기타 필수품의 가격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은 로동의 량이고 로동의 가격 (그는 이 말로써 명목적인 일임금 또는 주임금을 말하고있다.) 이 아니다. 필수품의 가격을 훨씬 인하하면 물론 그에 비례하여 로동의 량이 감소될것이다.…공장주들은 로동의 가격을 그 명목액과는 상관없이 제고 또는 저락시키는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다는것을 알고있다.》((J. 컨닝햄) 《산업 및 상업에 관한 론술》, 48페지 및 61페지) N. W. 씨니어는 자기의 저서 《임금률에 관한 세 강의》(1830년 런던판)중에서 웨스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의 저술을 차용하고있는데 거기에서 특히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로동자는 주로 임금액에 관심을 가지고있다.》(15페지) 그리하여 로동자가 주로 관심을 돌리는것은 그가 받는것 즉 명목임금액이지 그가 주는것 즉 로동량이 아니라는것이다!

일반적법칙은 다음과 같다. 즉 일로동, 주로동 등등의 량이 주어져있다면 일임금 또는 주임금은 로동의 가격에 의하여 규정되며 로동의 가격 그자체는 로동력의 가치의 변동에 따라 또는 로동력의 가격이 로동력의 그 가치로부터 배리되는데 따라 변동한다. 그와는 반대로 로동의 가격이 주어져있다면 일임금 또는 주임금은 일로동량이나 주로동량에 의하여 결정된다.

시간제임금의 도량단위인 1로동시간의 가격은 로동력의 일가치를 보통의 로동일의 시간수로 제한것이다. 가령 1로동일은 12시간, 로동력의 일가치는 3실링 즉 6로동시간의 가치생산물이라고 가정하자.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1로동시간의 가격은 3펜스이며 그 가치생산물은 6펜스이다. 만일 이제 로동자가 하루에 12시간이하를(또는 1주일에 6일이하를) 례컨대 6시간 또는 8시간만을 일하게 된다면 그는 이 로동가격하에서는 다만 2실링 또는 $1\frac{1}{2}$실링의 일임금을 받는다.(34) 우리가 전제한바에 의하면 로동자는 그의 로동력의 가치에 상응하는 일임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하루에 평균 6시간 일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 동일한 전제에 의하면 그는 자기자신을 위하여 매개 로동시간의 절반만을 소비하고 다른 절반은 자본가를 위하여 일하는 까닭에 그가 12시간이하로 일하는 경우에 6시간의 가치생산물을 벌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앞에서

---

(34) 이러한 비상적인 취업부족의 영향은 로동일의 일반적이고 강제적인 법적단축의 영향과는 전혀 다르다. 전자는 로동일의 절대적길이와는 아무 관계도 없으며 또 15시간로동일하에서나 6시간로동일하에서나 마찬가지로 일어날수 있다. 로동의 정상적가격은 첫째 경우에는 로동자가 하루에 평균 15시간 일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계산되며 둘째 경우에는 평균로동일이 6시간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첫째 경우에는 로동자가 하루에 $7\frac{1}{2}$시간만을 일하고 둘째 경우에는 3시간만을 일하게 된다면 결과는 동일하다.

우리는 과도로동의 파괴적결과를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취업부족으로부터 발생하는 로동자의 고통의 근원을 볼수 있다.

만약 시간제임금이 자본가가 일임금 또는 주임금을 지불할 의무를 지니지 않고 다만 로동자들을 그가 일시키고싶은 로동시간에 대한 지불만을 할 의무를 지는 방식으로 확정된다면 자본가는 로동자의 로동시간을 처음에 시간제임금 즉 로동가격의 도량단위의 기초로 된 시간보다 적게 로동자를 일시킬수 있다. 이 도량단위는 $\frac{\text{로동력의 일가치}}{\text{주어진 시간수의 로동일}}$라는 비률에 의하여 규정되여있으므로 로동일이 자체속에 일정한 시간수를 포함하지 않게 되자마자 이 도량단위가 모든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불로동과 부지불로동간의 련계가 없어진다. 이제는 자본가는 로동자의 생존유지에 필요한 로동시간을 허용함이 없이 로동자로부터 일정한 량의 잉여로동을 짜낼수 있다. 그는 취업의 온갖 규칙성을 파괴하고 다만 자신의 편리, 자의 및 일시적리익에 따라 극도의 과도로동과 상대적 또는 완전한 실업을 번갈아 교체시킬수 있다. 그는 《로동의 정상적가격》을 지불한다는 구실하에 로동자에게 어떠한 해당한 보상도 없이 로동일을 비정상적으로 연장할수 있다. 그러므로 런던의 건축로동자들은 이와 같은 시간제임금을 강요하려는 자본가들의 기도를 반대하여 완전히 합리적인 폭동(1860년)을 일으켰던것이다. 로동일의 법적제한은 물론 그것이 기계의 경쟁, 사용하는 로동자들의 질적변화, 부분적 및 전반적 공황으로부터 발생하는 로동자의 취업부족에 종말을 고하게 하는것은 아니지만 상술한 바와 같은 부당한짓은 종말을 고하게 한다.

일임금 또는 주임금이 증대되는 조건하에서 로동의 가격

은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변하지 않을수 있으며 또 지어는 그 정상적수준이하로 저락할수도 있다. 이것은 로동의 가격 또는 1로동시간의 가격이 변하지 않고 로동일이 보통길이이상으로 연장될 때 언제나 일어난다. 만약 $\frac{\text{로동력의 일가치}}{\text{로동일}}$라는 분수에서 분모가 증대하면 분자는 더 빨리 증대한다. 로동력의 가치는 로동력의 기능시간의 증대에 따라 그 소모가 증대하기때문에 증대하며 또 그 기능시간의 증가보다도 더 빠른 비률로 증대한다. 그렇기때문에 로동시간에 대한 법적제한이 없이 시간제임금이 지배하고있는 많은 산업부문들에서는 로동일을 일정한 점까지만, 례컨대 10시간이 끝나는 때까지만 정상적인것 (《normal working day》 (《표준로동일》), 《the day's work》 (《하루작업》), 《the regular hours of work》 (《정규적로동시간》))으로 간주하는 관습이 자연발생적으로 수립되였다. 이 한계를 넘는 로동시간은 시간외로 되며 1시간을 도량단위로 하여 특별지불을 받으나 그 비률은 종종 가소로울 정도로 작은것이다.(35) 이 경우에 표준로동일은 현실적로동일의 일부분으로서 존재하는데 현실적로동일이 흔히 1년을 통하여 표준로동일보다도 길다.(36) 일

(35) 《시간외로동에 대한 지불비률은 (레스제조업에서는) 대단히 적은것이여서 시간당 $\frac{1}{2}$펜스 등등이므로 그것은 시간외로동이 로동자의 건강과 생명력에 끼치는 막대한 해독과 무서운 대조를 이룬다.…또한 그렇게 해서 번 얼마 안되는 여분의 임금은 왕왕 추가적인 음식물에 소비되지 않을수 없다.》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2차보고》, XVI페지, 제117호)

(36) 례컨대 얼마전에 공장법이 실시되기전까지 도배지인쇄업에서 그러하였다. 《우리는 식사를 위한 휴식도 없이 일하므로 10시간 반의 하루의 작업은 오후 4시 반에 끝나며 그후의 작업은 모두 시간외로동이다. 그것이 오후 6시전에 끝나는 일은 드물기때문에 우리는 실제로는 1년 내내 시간외로동을 한다.》 (스미스씨의 증언,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1차보고》, 125페지에 게재.)

정한 표준한계를 넘는 로동일의 연장에 따르는 로동의 가격의 증대는 영국의 여러 산업부문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고있다. 즉 여기에서는 로동자가 일반적으로 충분한 로임을 벌려고 한다면 소위 표준시간내의 로동의 가격이 낮음으로 하여 특별지불을 받는 시간의 로동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되여있다.(37) 로동일의 법적제한은 이러한 유쾌한 일에 종말을 고하게 된다.(38)

어떤 산업부문에서 로동일이 길면 길수록 로임은 더 낮다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39) 공장감독관 A. 레드그레이브는 이것을 1839년에서 1859년까지의 20년간의 비교관찰에

(37) 례컨대 스코틀랜드의 표백업에서 그러하다. 《스코틀랜드의 일부 지방들에서 이 산업은 〔1862년의 공장법실시이전에〕 시간외로동제도에 의하여 경영되였다. 즉 10시간이 표준로동일로 되여있었다. 이 시간에 대하여 로동자는 1실링 2펜스를 받았다. 그러나 여기에 매일 3내지 4시간의 시간외로동이 첨가되였고 이에 대하여는 한시간에 3펜스씩 지불되였다. 이 제도때문에 표준시간만을 일하는 로동자는 주에 8실링이상을 벌수 없었다. 시간외로동을 하지 않고는 그의 임금은 부족하였다.》(《공장감독관보고. 1863년 4월 30일》, 10페지) 《시간외로동에 대한 특별지불은 로동자들에게는 항거할수 없는 유혹이다.》(《공장감독관보고. 1848년 4월 30일》, 5페지) 런던 시티의 제본업은 14내지 15세의 소녀들을 대단히 많이 고용하고있는데 그것도 일정한 로동시간이 규정되여있는 견습계약하에 사용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매달 마지막주에는 10, 11, 12시까지 지어는 오전 1시까지 성년남성로동자들과 함께 막 뒤섞여서 작업한다. 《주인들은 특별지불과 저녁을 잘 먹을수 있는 돈으로써 그들을 유혹한다.》 그들은 그 저녁을 근처의 술집에서 먹는다. 그렇게 하여 이 《영원한 청춘들》 사이에서 생기는 크나큰 방탕(《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5차보고》, 44페지, 제191호)은 그들이 다른 책들과 함께 많은 성경책과 종교서적들을 제본한다는것으로써 보상된다.

(38) 《공장감독관보고. 1863년 4월 30일》, 5페지를 보라. 런던의 건축로동자들이 1860년의 대파업과 공장폐쇄 당시 다음과 같은 두개 조건하에서만 시간제임금을 접수하겠다고 성명한것은 사태를 완전히 정확하게 평가한것이였다. 1) 1로동시간의 가격과 함께 9시간 또는 10시간의 표준로동일을 각각 확정할것과 10시간로동일의 한시간에 대한 가격은 9시간로동일의 한시간에 대한 가격보다 더 높아야 할것, 2) 표준로동일을 초과하는 매시간은 시간외로 계산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지불을 할것.

(39) 《또 긴 로동일이 통례로 되여있는 곳에서는 임금이 낮은것도 또한 통례이라는것은 대단히 주목할 사실이다.》(《공장감독관보고. 1863년 10월 31일》, 9페지) 《하찮은 생존수단을 얻는 로동이 대개 과도하게 길다.》(《공중위생. 제6차보고. 1863년》, 15페지)

의하여 설명하고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10시간로동법의 적용을 받는 공장들에서는 로임이 제고되였는데 하루에 14시간 내지 15시간 작업하는 공장들에서는 로임이 저하되였다.(40)

《로동의 가격이 주어진 경우에 일임금 또는 주임금은 제공된 로동의 량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법칙으로부터 우선 로동의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로동자가 가련한 평균임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로동량이 더욱 커야 한다는 즉 로동일이 더욱 길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경우에는 로동의 가격이 낮은것이 로동시간을 연장하도록 자극하는 작용을 한다.(41)

그러나 반대로 로동시간의 연장은 로동가격의 저하를 가져오며 따라서 일임금 또는 주임금의 저하를 가져온다.

로동의 가격은 $\frac{\text{로동력의 일가치}}{\text{주어진 시간수의 로동일}}$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이 사실로부터 만일 어떠한 보상도 없다면 로동일의 연장만으로도 로동가격을 저하시킨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자본가로 하여금 로동일을 오래 연장할수 있게 하는 그 동일한 사정이 자본가로 하여금 로동의 가격을 명목상으로 저하시켜 결국은 증대된 로동시간의 총가격 즉 일임금 또는 주임금이 저하되게 하는것을 처음에는 가능하게 하며 나중에는 강제한다. 여기에서는 두개의 사정만을 지적하면 충분하다.

(40) 《공장감독관보고. 1860년 4월 30일》, 31~32페지.

(41) 레컨대 영국의 못생산수공업로동자들은 로동의 가격이 낮기때문에 아주 가련한 주임금을 벌기 위하여 하루에 15시간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11펜스 또는 1실링을 벌기 위하여 매일 긴긴 시간 고역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나마 이 금액중에는 $2\frac{1}{2}$ 내지 3펜스는 도구소모비, 연료비, 파철비로 공제된다.》(《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3차보고》, 136페지, 제671호.) 녀성들은 동일한 로동시간에 겨우 5실링의 주임금을 번다.(우와 같은 보고, 137페지, 제674호)

만약 한사람이 한사람 반 또는 두사람 몫의 일을 수행하면 시장에 있는 로동력의 공급은 변하지 않더라도 로동의 공급은 증가된다. 그리하여 로동자들간의 경쟁이 자본가로 하여금 로동가격을 저하시킬수 있게 하며 저락되는 로동가격은 이번에는 그로 하여금 로동시간을 더욱 연장할수 있게 한다.(42) 그러나 얼마 안가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즉 사회적평균수준을 초과하는 부지불로동량을 지배할수 있는 힘은 자본가자신들간의 경쟁의 수단으로 된다. 상품가격의 일부분은 로동의 가격으로 이루어진다. 로동의 가격중 지불되지 않는 부분은 상품가격에 들어가지 않을수도 있다. 그것은 상품구매자에게 선사할수 있다. 이러한것이 경쟁의 압력하에 일어나는 제1보이다. 그 경쟁에 의하여 강요되는 제2보는 로동일의 연장에 의하여 조성되는 비정상적인 잉여가치의 적어도 일부분을 역시 상품판매가격에서 제외하는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품판매가격이 형성되는데 그것은 처음에는 드문드문 발생하고 그다음에는 점차 고정되여 최초에 그것을 발생시킨 가련한 로임과 과도한 로동시간의 고정적인 기초로 된다. 경쟁의 분석은 여기에서는 우리의 과업이 아니므로 이 운동을 지적하는데 그치려 한다[401]. 그렇지만 잠간 자본가자신의 말을 들어보자.

《버밍감에서는 경영주들간의 경쟁이 대단히 심하기때문에 우리들중의 많은 사람은 고용주로서 평소에라면 창피라고 할만한짓을 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하고서도 돈은 더 벌지 못한다. 다만 공중

---

(42) 레컨대 어떤 공장로동자가 통례로 되여있는 장시간로동을 거절한다면 《그는 즉시로, 얼마든지 장시간로동을 할 용의를 가진 어떤 다른자에 의하여 교체될것이며 그리하여 실업하게 될것이다.》(《공장감독관보고. 1848년 10월 31일.》, 증언, 39페지, 제58호) 《만약 한사람이 두사람 몫의 작업을 수행하면…로동의 추가공급이 로동의 가격을 저하시키는 결과…리윤률은 보통 제고될것이다.》(씨니어 《임금률에 관한 세 강의》, 1830년, 런던판, 15페지)

이 리득을 볼뿐이다.》(43)

우리의 기억에 의하면 런던의 빵제조업자는 두 부류가 있는데 그 한 부류는 빵을 제값대로 팔고 또 한 부류는 정상가격보다 눅게 판다①. 《제값대로 파는》 자들은 그들의 경쟁자들을 의회조사위원회앞에서 다음과 같이 비난한다.

《그들은 첫째로는 공중을 기만함으로써 (상품을 위조하여), 둘째로는 그들의 직공들에게 12시간임금을 주고 18시간로동을 짜냄으로써만 존재한다.…로동자들의 부지불로동은 경쟁전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였다.…빵제조업자들간의 경쟁은 야간로동의 폐지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다. 밀가루가격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는 원가보다 눅게 빵을 파는 자는 그의 직공들에게서 더 많은 로동을 짜냄으로써 자기의 손실을 보상한다. 나는 나의 직공들에게서 다만 12시간로동을 짜내는데 나의 옆집사람은 18시간 또는 20시간을 짜내면 물론 그는 판매가격에서 나를 격파할것이다. 만약 로동자들이 시간외로동에 대한 지불을 요구할수 있다면 이러한 방식은 곧 종말을 고하게 될것이다.…눅거리로 파는자들에게 고용된 로동자들의 다수는 외국인들, 아동들 등인데 이들은 대개 주는대로 어떤 로임이든 받을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44)

이러한 비탄은 자본가의 두뇌에는 생산관계의 외관밖에 반영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는 점에서 흥미가 있다. 자본가는 정상적인 로동가격도 일정한 량의 부지불로동을 포함하고있으며 바로 이 부지불로동이 그의 리윤의 정상적인 원천이라는것을 모른다. 잉여로동시간이라는 범주는 그에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잉여로동시간은 자본가가 일

(43)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3차보고》, 증언, 66페지, 제22호.

(44) 《빵제조공의 불평과 관련하여 녀왕폐하의 내무대신에게 보낸 보고》, 1862년 런던판, LII페지 및 같은 보고, 증언, 제479호, 제359호, 제27호. 그런데 제값대로 파는 자들도 우리가 우에서 지적하였고 또 그들의 변호자 밴네트자신이 인정하고있는바와 같이 그들의 로동자들을 《저녁 11시 또는 그보다도 일찍 작업에 착수하게 하며 흔히는 다음날 저녁 7시까지 계속하게 하고있다.》(《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3차보고》, 22페지)②

① 이 책 203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이 책 289~290페지를 보라. —편집자

임금에 포함되여 지불된다고 생각하고있는 표준로동일속에 포함되여있기때문이다. 그러나 그에게도 시간외로동 즉 보통의 로동가격에 상응하는 한계를 넘는 로동일의 연장은 존재한다. 그는 눅거리로 파는 그의 경쟁자들에 대하여 이 시간외로동에 대한 특별지불을 하라고까지 고집한다. 그러나 그는 이 특별지불이 보통로동시간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부지불로동을 포함한다는것을 역시 모른다. 례컨대 12시로동일의 1시간가격은 $\frac{1}{2}$로동시간의 가치생산물인 3펜스인데 시간외의 1시간로동의 가격은 $\frac{2}{3}$로동시간의 가치생산물인 4펜스라고 하자. 그러면 자본가는 첫째 경우에는 1로동시간의 절반을 무상으로 취득하며 둘째 경우에는 그 3분의 1을 무상으로 취득한다.

제 19 장

도 급 제 임 금

도급제임금은 시간제임금의 전화된 형태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시간제임금이 로동력의 가치 또는 가격의 전화된 형태인것과 마찬가지이다.

도급제임금에 있어서는 얼핏 보아서는 로동자가 파는 사용가치는 그의 로동력의 기능인 산로동이 아니라 이미 생산물에 대상화된 로동인듯이 보이며 또 이 로동의 가격은 시간제임금에서와 같이 $\frac{\text{로동력의 일가치}}{\text{주어진 시간수의 로동일}}$라는 분수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생산자의 작업능력에 의하여 규정되는듯이 보인다.(45)

이 외관에 대한 확신은 우선 로임의 두 형태가 동일한 산업부문에 동시에 병존한다는 사실에 의하여서도 이미 대단히 흔들리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례컨대

《런던의 식자공들은 보통 도급제임금을 받고 일한다. 시간제임금

---

(45) 《도급제로동제도는 로동자의 력사에 있어서 한 시기를 표시한다. 그것은 자본가의 의향에 의존하는 단순한 날품팔이군과 멀지 않은 장래에 자기 한몸으로 수공업자와 자본가를 겸할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있는 협동조합적직공과의 중간에 놓여있다. 도급제로동자는 그들이 기업가의 자본에 의하여 일할 때에도 사실상 자기자신의 주인이다.》 (죤 워츠 《로동조합과 파업. 기계와 협동조합》, 1865년 만체스터판, 52~53페지) 내가 이 저작을 인용하는것은 그것이 오래전에 썩어버린 온갖 변호적인 문구들로 가득차 있기때문이다. 다름없는 이 워츠씨는 이전에는 오엔주의자로서 행세하였으며 또 1842년에는 또 하나의 다른 소책자 《정치경제학자들의 사실과 허구》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재산은 강탈이라고 단언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이다.

은 그들에게는 례외적이다. 그와는 반대로 지방의 식자공들에게는 시간제임금이 보통이며 도급제임금은 례외적이다. 런던항의 조선공들은 도급제임금을 받고있는데 영국의 다른 모든 항구들에서는 시간제임금을 받고있다.》(46)

런던의 같은 마구제조소들에서 같은 로동에 대하여 프랑스인들에게는 흔히 도급제임금이 지불되며 영국인들에게는 시간제임금이 지불된다. 도급제임금이 일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본래의 공장들에서도 어떤 로동기능은 기술적리유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계산방법을 쓸수 없으며 따라서 시간제임금으로 지불된다.(47) 그러나 임금지불의 형태상 차이는 비록 한 형태가 다른 형태보다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에 보다 유리하다 하더라도 로임의 본질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보통의 로동일은 12시간인데 그중 6시간은 지불되고 6시간은 지불되지 않는다고 하자. 1로동일의 가치생산물은 6실링이고 따라서 1로동시간의 가치생산물은 6펜스라고 하자. 또 평균정도의 강도와 기능을 가지고 일하며 따라서 어떤 물품의 생산에 사실상 사회적필요로동시간만을 소비하는 로동자가 12시간동안에 불련속제품을 24개, 또는 한 련속제품의

---

(46) T. J. 단닝 《로동조합과 파업》, 1860년 런던판, 22페지.

(47) 이 두 로임형태가 동시에 병존하는것이 공장주들의 사기행위에 얼마나 편리한가 하는 전형적실례는 다음과 같다. 《어떤 공장은 400명을 고용하고있는데 그 반수는 도급제로 일하며 그리하여 장시간 작업하는것에 직접적관심을 가진다. 나머지 200명은 일급으로 지불되는데 다른 로동자들과 같이 장시간 작업하여도 자기들의 시간외로동에 대하여 조금도 더 받지 못한다.…이 200명의 하루 반시간로동은 1명의 50시간로동 또는 1명의 1주간로동의 $\frac{5}{6}$와 같으며 고용주에게 확실한 리득으로 된다.》(《공장감독관보고. 1860년 10월 31일》, 9페지) 《시간외로동이 아직도 광범히 성행하고있으며 그것도 대다수 경우에는 적발되여 처벌을 받을 념려가 없도록 법률자체가 보장하고있다. 이전의 많은 보고들에서 나는…도급제로 일하지 않고 주임금을 받는 모든 로동자들이 얼마나 부당한 손해를 받고있는가 하는것을 지적하였다.》(레너드 호너 《공장감독관보고. 1859년 4월 30일》, 8~9페지)

계량할수 있는 부분을 24개 제공한다는것을 경험이 보여주었다고 하자. 그리하여 이 24개의 가치는 거기에 포함되여있는 불변자본부분을 공제하면 6실링이며 매개의 가치는 3펜스이다. 로동자는 한개당 $1\frac{1}{2}$펜스를 받으며 따라서 12시간동안에 3실링을 번다. 시간제임금하에서 로동자가 6시간은 자기를 위하여, 6시간은 자본가를 위하여 일한다고 가정하든 또는 그가 매시간중 절반은 자기를 위하여, 다른 절반은 자본가를 위하여 일한다고 가정하든 마찬가지인것처럼 이 경우에도 매 한개에 대하여 절반은 지불되고 절반은 지불되지 않는다고 말하든 또는 12개의 가격은 로동력의 가치를 보상할 뿐이고 다른 12개에는 잉여가치가 구현되고있다고 말하든 마찬가지이다.

도급제임금형태는 시간제임금형태와 마찬가지로 불합리하다. 례컨대 두개의 상품은 거기에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를 공제하면 1로동시간의 생산물로서는 6펜스의 가치가 있는데 로동자는 그에 대하여 3펜스의 가격을 받는다. 도급제임금은 사실상 직접적으로는 가치관계를 조금도 표현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상품 한개의 가치가 거기에 구현된 로동시간에 의하여 측정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로동자가 지출한 로동이 그가 생산한 개수에 의하여 측정된다. 시간제임금에서는 로동은 직접 지속시간에 의하여 측정되는데 도급제임금에서는 로동은 일정한 지속시간의 로동이 응결된 생산물의 량에 의하여 측정된다.(48) 로동시간자체의 가격은 결국 일로동의 가치=로동력의 일가치라는 등식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

(48) 《임금은 두가지 방법에 의하여 측정될수 있다. 즉 로동의 지속시간에 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로동의 생산물에 의하여 측정될수 있다.》(《정치경제학원리개요》, 1796년 빠리판, 32페지) 이 익명저서의 저자는 G. 가르니에이다.

러므로 도급제임금은 시간제임금의 변형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도급제임금의 특징을 좀 더 상세히 고찰하여보자.

이 경우에는 로동의 질이 제품자체에 의하여 좌우되며 각개의 가격이 완전히 지불되기 위하여서는 제품은 평균적인 품질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 면에서 보면 도급제임금은 임금삭감과 자본주의적사기의 가장 풍부한 원천으로 된다.

도급제임금은 자본가들에게 로동강도를 측정하는 가장 명확한 척도를 제공한다. 오직 사전에 확정되여있고 경험적으로 고정되여있는 상품량에 구현되는 로동시간만이 사회적 필요로동시간으로 인정되며 또 그러한것으로서 지불된다. 따라서 런던의 비교적 큰 재봉공장들에서는 생산되는 일정한 제품 례컨대 한개의 조끼 등등이 한시간 또는 반시간 등등이라고 불리우며 그 한시간이 6펜스로 지불된다. 실천에 의하여 한시간의 평균적생산물이 얼마라는것이 알려져있다. 류행복이나 의복수리 등등에 있어서 어떤 일정한 제품이 한시간이냐 아니냐에 관하여 고용주와 로동자간에 분쟁이 일어나나 이 경우에도 결국에는 경험이 결정한다. 런던의 가구제조소 등등에서도 류사한 사정이 있다. 만약 로동자가 평균적작업능력을 가지지 못하며 따라서 하루일의 일정한 최소한을 제공하지 못하면 그는 해고된다.(49)

이 경우에 로동의 질과 강도가 로임의 형태자체에 의하

---

(49) 《일정한 중량의 면화가 그에게 (방적공에게) 공급되면 그는 일정한 시간후에는 그대신에 일정한 정도로 가느다란 일정한 중량의 연사 또는 방사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리하여 그가 반환하는 전부에 대하여 1폰드당 얼마로 지불을 받는다. 만약 그의 제품의 질이 나쁘면 그는 벌금을 물어야 하며 만약 제품의 량이 일정한 시간에 끝내도록 제정된 최소량보다 적으면 그는 해고되고 더 유능한 일군이 고용된다.》 (유어 《공장철학》, 1835년 런던판, 316~317페지)

여 통제되므로 이 형태는 로동감독의 대부분을 불필요한것으로 되게 한다. 그러므로 도급제임금의 형태는 우에서 서술한 현대적가내로동의 기초를 이루며① 또한 계층제적으로 편성된 착취와 억압의 제도의 기초를 이룬다. 이 제도에는 두 기본 형태가 있다. 도급제임금은 한편으로 자본가와 임금로동자사이에서의 기생자들의 개입 즉 청부의 전대(subletting of labour)를 더 용이하게 한다. 중개자들의 리득은 전적으로 자본가가 지불하는 로동가격과 이 가격중에서 중개자가 실지 로동자에게 넘겨주는 부분과의 차액에서 나온다.(50) 영국에서는 이 제도를 《sweating-system》(고한제도)이라고 특징지어 부르고있다. 도급제임금은 다른 한편으로 자본가로 하여금 주요로동자(공장제수공업에서는 조장, 탄광에서는 채탄공 등등, 공장에서는 본래의 기계공)와 한개당 얼마라는 계약을 체결할수 있게 하는데 그 가격으로 주요로동자자신이 자기의 보조로동자들을 징모하고 임금을 지불할수 있는 가능성을 얻는다. 자본에 의한 로동자의 착취가 여기에서는 로동자에 의한 로동자의 착취를 매개로 하여 실현된다.(51)

도급제임금이 실시되면 물론 로동자가 그의 로동력을 될수 있는대로 집약적으로 긴장시키는것이 그의 개인적리익으로 되지만 그로 말미암아 자본가는 로동의 표준강도를 쉽게

(50) 《작업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며 그 사람마다 한몫씩 리윤을 얻게 되고 마지막 사람만이 그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녀성로동자의 손에 들어오는 지불이 형편없이 가련한것으로 된다.》(《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2차보고》, LXX페지, 제424호)

(51) 변호론자 워츠까지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만약 한사람이 자기자신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의 동료들의 과도로동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일이 없게 되고 어떤 일에 고용된 모든 로동자들이 각기 그 능력에 따라 계약당사자들이 된다면 이것은 도급제임금제도의 일대 개선으로 될것이다.》 이 제도의 비렬성에 관하여서는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3차보고》, 66페지 제22호, 11페지 제124호, XI페지, 제13호, 제53호, 제59호 등등을 참조하라.

① 이 책 536~540페지를 보라. —편집자

제고할수 있는것이다.(51a) 마찬가지로 로동일을 연장하는것도 역시 로동자의 개인적리익으로 된다. 왜냐 하면 그에 따라 그의 일임금 또는 주임금이 제고되기때문이다.(52) 그와 함께 시간제임금을 고찰할 때에 말한것과 같은 반작용이 일어난다①. 로동일의 연장은 도급제임금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자체가 로동가격의 저락을 포함한다는것은 도외시하더라도 그러하다.

시간제임금하에서는 약간의 례외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같은 기능에 대하여 같은 임금이 지불되는데① 도급제임금하에서는 로동시간의 가격은 물론 일정한 생산물량에 의하여 측정되지만 일임금 또는 주임금은 로동자들의 개인적차이 즉 어떤자는 일정한 시간에 최소한의 생산물을, 다른자는 평균량을, 제3자는 평균량이상을 제공한다는 개인적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하여 이 경우에 로동자의 실지수입은 개별적

(51a) 이 자연발생적인 결과가 인위적으로 조장되는 일이 많다. 례컨대 런던의 기계제조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술책을 쓰는것이 관례로 되고있다. 《자본가는 특별한 체력과 기능을 가진 한 로동자를 일정한 수의 로동자들의 두목으로 선출한다. 자본가는 보통 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동료들이 그 두목을 본받아 최대의 힘을 다하여 일하도록 추동하기 위하여 그자신의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이 두목에게 4분기마다 또는 기타 기간으로 추가지불을 한다.…이것은 더 주석을 붙이지 않아도 자본가들이 〈로동조합이 로동과 탁월한 기교와 로동력의 발휘를 제한한다.〉는 불평을 설명하여준다.》(T. J. 단닝 《로동조합과 파업》, 1860년 런던판, 22~23페지) 저자자신이 로동자이며 로동조합의 비서인만큼 그의 말은 과장이라고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례컨대 J. Ch. 모튼의 《높이 평가할만한》 농업백과사전의 《로동자》라는 항목을 읽어보라. 거기에서는 이 방법이 검열된 우수한것으로서 차지농업가들에게 추천되고있다.

(52)《도급제임금을 받는 모든자들은…법적한도이상으로 로동일을 연장하는것으로서 리익을 얻는다. 시간외 로동을 하려는 이러한 용의는 특히 녀성 직포공과 권사공들사이에서 흔히 볼수 있다.》(《공장감독관보고. 1858년 4월 30일》, 9페지) 《자본가에게 매우 유리한 이 도급제임금제도는…젊은 도기제조공들이 도급제이기는 하나 낮은 임금으로써 고용되면서 4~5년동안 심한 과도로동을 하도록 그들을 직접 자극한다. 이것이 도기제조공들의 육체적퇴화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이다.》(《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1차보고》, XIII페지)

---

① 이 책 626~630페지를 보라. 一편집자

로동자들의 기능, 체력, 정력, 인내성 등등이 다름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긴다.(53) 물론 이것은 결코 자본과 임금로동간의 일반적관계를 변동시키는것은 아니다. 첫째로, 작업장전체로서는 개인적차이는 상쇄되며 그리하여 전체 작업장은 일정한 로동시간에 평균량의 생산물을 제공하며 지불된 총임금은 그 생산부문의 평균임금으로 될것이다. 둘째로, 임금과 잉여가치의 비률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개별적로동자가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잉여가치량은 그의 개인적임금에 상응하기때문이다. 그런데 도급제임금은 개성에 보다 큰 활동여지를 제공함으로써 일방으로는 로동자들의 개성, 따라서 자유의 정신, 독립성 및 자제력을 발전시키며 타방으로는 그들 호상간의 경쟁을 발전시키는 경향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도급제임금은 개인적로임을 평균수준이상으로 제고시키는 동시에 이 수준자체를 저하시키는 경향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일정한 도급제임금이 장기간의 전통에 의하여 고정되였으며 그리하여 그것을 저하시키기 극히 곤난한 곳에서는 고용주들은 때로는 도급제임금을 강제로 시간제임금으로 전화시키는 방법을 취하였다. 례컨대 1860년에 코벤트리의 리봉제조공들의 대파업은 이때문에 일어났다.(54) 마지막으로 도급제임금은

(53) 《어떠한 생산부문에서 임금이 한개당 얼마씩 도급으로 지불되면…임금액은 서로 극히 현저하게 다를수 있다.…그러나 일급로동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생산부문의 평균적로동자들에 대한 기준임금으로서 고용주와 로동자 쌍방이 승인한…균일한 수준이 존재한다.》 (T. J. 단닝 《로동조합과 파업》, 1860년 런던판, 17페지)

(54) 《수공업장공들의 로동은 혹은 일수에 의해서 혹은 개수에 의해서 규제된다.… 장주들은 각개 작업에서 로동자들이 하루에 얼마나 일을 할수 있다는것을 대략 알고있으며 따라서 흔히 장공들이 한 일에 비례하여 그들에게 지불한다. 그리하여 이 장공들은 별로 더 감독을 하지 않아도 그들자신의 리익을 위하여 그들이 할수 있는 한 많이 일한다》 (깡띠용 《상업일반의 성질에 관한 시론》, 1756년 암스테르담판, 185, 202페지. 초판은 1755년에 나왔다.) 그리하여 께내, 제임즈 스튜어트경 및 A. 스미스는 깡띠용에게서 취한바가 많은데 깡띠용은 여기서 도급제임금을 시간제임금의 단순히 변형된 형태로 서술하고있다. 깡띠용의 저서의 프랑스문판은 표제에 그것이 영문판에서 번역된것으

상술한 시간제도의 주요한 한개 지주이다.(55)

이상에서 말한 모든것으로부터 도급제임금은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가장 적합한 로임형태라는것을 알수 있다. 도급제임금은 결코 그 어떤 새로운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제임금과 함께 특히 14세기의 프랑스와 영국의 로동법령에 공식적으로 규정되여있다. 그러나 그것은 본래의 공장제수공업시기에 비로소 비교적 광범한 활동무대를 얻게 되였다. 대산업의 질풍노도시기 특히 1797~1815년시기에 도급제임금은 로동시간의 연장과 임금인하를 위한 공간으로 리용되였다. 우리는 이 시기의 로임변동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자료를 청서들 즉 《곡물법과 관계된 청원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보고 및 증언》(1813~1814년 의회회기) 및 《곡물의 생장, 무역 및 소비상태에 관한 상원위원회 보고 및 모든 관계법규》(1814~1815년 회기)에서 볼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반자꼬벵전쟁[403]개시이래 로동가격이 부단히 저하된데 대한 문건상 증거를 찾아볼수 있다. 례컨대 방직업에서 도급제임금은 로동일이 많이 연장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임금은 이전보다 낮게 되였다.

로 지적하고있다. 그러나 영문판 《산업, 상업, 화페, 금은, 은행 및 외국환시세의 분석》(런던 시티의 상인 고 필리프 깡띠용 저)은 프랑스문판보다 후에(1759년) 나왔을뿐만아니라 그 내용으로 보아도 의심할바없이 그후에 개작된것이다. 그리하여 례컨대 프랑스문판에서는 아직 흄에 대하여 언급되여있지 않는데 영문판에서는 반대로 페티가 이미 거의 나오고있지 않다. 영문판은 리론적으로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으나 그대신 영국의 상업, 귀금속 거래 등등에 관한, 프랑스문판에는 없는 각종 특수한 자료가 있다. 그러므로 영문판의 표제에 있는, 이 저술은 《이미 작고한 극히 재능있는 한 신사의 수고에서 주로 취하였으며 운운》이라는 말은 당시 극히 류행하던 순전한 허구인것 같지는 않다.[402]

(55) 《우리는 어떤 작업장들에서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로동자들이 고용되여있는것을 흔히 보지 않았는가? 로동자들은 흔히 어떠한 예견되지도 않는, 때로는 상상할수만 있는 작업을 바라보고 고용되고있다. 로동자들이 도급제임금을 받기때문에 주인은 아무런 위험도 없다. 왜냐 하며 이 경우에 시간의 손실로부터 생기는 모든 손해는 전적으로, 일없이 있는 로동자들의 부담으로 되기때문이다.》(H. 그레과르 《브류쎌의 경죄재판소에서의 인쇄공》, 1865년 브류쎌판, 9페지)

《현재의 직포공의 실제적수입은 이전보다 훨씬 적다. 직포공은 이전에는 보통로동자들보다 매우 우월하였는데 이제는 그 차이가 거의 완전히 없어졌다. 사실상 숙련로동과 보통로동간의 임금의 차이가 지금은 이전의 어느 시기보다 훨씬 적다.》(56)

도급제임금으로 인한 로동강도의 제고와 로동시간의 연장에서 농촌무산계급이 거의 리득을 보지 못하였다는것은 대지주들과 차지농업가들의 편에 서있는 당파적인 저술에서 취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여준다.

《농사일의 대부분은 일임금 또는 도급제임금으로 고용되고있는 사람들이 하고있다. 그들의 주임금은 대략 12실링이다. 그리하여 한 로동자가 도급제임금하에서는 로동에 대한 자극을 더 받으므로 주임금하에서보다 1실링 또는 2실링 더 번다고 생각할수 있으나 그의 총수입을 계산하면 이 더 번것은 년중 어떤 시기에 일이 없음으로 하여 생기는 손실에 의하여 상쇄된다.…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이 로동자들의 임금은 필요한 생활수단의 가격에 대하여 일정한 비례관계가 있으며 그리하여 아이 둘을 가진 사람은 교구의 구제를 받지 않고도 자기 가족을 부양할수 있다는것을 발견할것이다.》(57)

당시 말사스는 의회가 발표한 사실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도급제임금의 실시가 광범히 보급되는것을 불만스럽게 보고있다는것을 고백한다. 하루에 12～14시간 또는 그보다도 더 긴 시간 힘든 로동을 하는것은 사실 어떤 사람에게나 너무 과대하다.》(58)

공장법의 적용을 받는 작업장들에서는 자본은 로동일을 다만 내포적으로만 확대할수 있기때문에 도급제임금이 통례로 되여있다.(59)

---

(56) 《대브리텐의 상업정책론》, 1815년 런던판, 48페지.
(57) 《곡물법에 대하여》, 1815년 런던판, 34페지.
(58) 말사스 《지대의 본성과 장성에 관한 연구》, 1815년 런던판 (49페지 주).
(59) 《도급제임금을 받는 로동자들이 아마 전체 로동자의 $\frac{4}{5}$를 차지할것이다.》(《공장감독관보고. 1858년 4월 30일》, 9페지)

로동의 생산성의 변동에 따라 동일한 생산물량이 표시하는 로동시간도 달라진다. 따라서 도급제임금도 또한 변동한다. 왜냐 하면 그것은 일정한 로동시간의 가격의 표현이기때문이다. 상술한 례①에서는 24개의 생산물이 12시간동안에 생산되였고 12시간의 가치생산물은 6실링이였으며 로동력의 일가치는 3실링, 1로동시간의 가격은 3펜스 그리고 한개당 임금은 $1\frac{1}{2}$펜스였다. 한개속에는 $\frac{1}{2}$로동시간이 흡수되여있었다. 이제 만약 례컨대 로동의 생산성이 2배로 된 결과 동일한 로동일이 24개가 아니라 48개의 생산물을 제공하게 된다면, 그리고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도급제임금은 $1\frac{1}{2}$펜스에서 $\frac{3}{4}$펜스로 저락할것이다. 왜냐 하면 이제는 매개 생산물이 $\frac{1}{2}$로동시간이 아니라 다만 $\frac{1}{4}$로동시간을 표시할따름이기때문이다. $24\times1\frac{1}{2}$펜스=3실링, 그리고 역시 $48\times\frac{3}{4}$펜스=3실링이다. 바꾸어말하면 도급제임금은 같은 시간내에 생산되는 생산물의 개수가 증가하는것과 같은 비률로(60), 따

(60)《그의 방적기의 생산력은 정확히 측정되며 그것을 리용하여 수행된 로동에 대한 지불은 비록 같은 비률로써는 아니지만 방적기의 생산력이 장성하는데 따라 감소된다.》(유어 《공장철학》, 317페지) 마지막의 변호론적문구는 유어자신이 그후의 서술에서 취소하고있다. 그는 례컨대 뮬방적기를 길게 하면 이렇게 길게 하는 그자체로 말미암아 추가적 로동이 발생한다는것을 인정하고있다. 따라서 로동은 로동생산성의 장성과 같은 정도로 감소되는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증대에 의하여 기계의 생산력은 $\frac{1}{5}$ 제고된다. 만일 실지로 그렇게 되면 방적공은 이제는 수행한 로동에 대하여 그가 종전과 동일한 비률로는 지불을 받지는 못할것이지만 그러나 그 비률이 $\frac{1}{5}$ 감소되는것은 아니기때문에 이 개량에 의하여 소여의 어떤 로동시간수에 대하여도 화폐수입은 증대될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우에서 말한것은 일정한 수정을 요한다.…방적공은 자기의 추가수입 6펜스에서 미성년조수들에게 얼마간 더 지불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성인로동자들의 일부분의 구축이 동반된다.》(우와 같은 책, 320~321페지)는 이 사실은 결코 로임의 증가경향을 설명할수 없다.

① 이 책 634~635페지를 보라. —편집자

라서 같은 한개에 지출되는 로동시간이 감소되는것과 같은 비률로 저하한다. 여기서 도급제임금의 이러한 변동은 순전히 명목적인것이지만 그것은 자본가와 로동자간의 부단한 투쟁을 불러일으킨다. 왜냐 하면 자본가가 로동가격을 실제로 인하하기 위한 구실로 이것을 리용하기때문이든가 또는 로동생산력의 제고가 로동강도의 제고를 수반하기때문이든가 또는 로동자가 그에게 지불되는것은 마치도 그의 생산물이고 그의 로동력이 아닌듯한 도급제임금의 외관을 진실이라고 믿고 그리하여 상품판매가격의 해당한 인하가 없는 임금인하에 반항하기때문이다.

《로동자들은 원료의 가격과 제품의 가격을 자세히 주시하며 그리하여 그들의 고용주들의 리윤을 정확하게 계산할수 있다.》(61)

자본이 그러한 요구를 임금로동의 성질에 대한 크게 그릇된 생각이라고 배격하는것은 당연하다.(62) 자본은 산업의 진보에 과세하려는 이러한 주제넘는 시도에 대하여 분노를 퍼붓고 로동생산성은 로동자에게는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단호하게 언명한다.(63)

---

(61) H. 포씨트 《영국로동자의 경제형편》, 1865년 케임브리지 및 런던판, 178~179페지.

(62) 1861년 10월 26일부 런던의 신문 《기발》에는 죤 브라이트회사의 소송사건 보도가 게재되였다. 죤 브라이트회사가 로치데일 치안판사에게 《융단직조로동조합의 대표자들을 공갈한데 대하여 고소하였다. 브라이트회사의 주주들은 이전에 160야드의 융단을 생산하는데 필요하였던것과 같은 시간과 로동 (!) 으로써 240야드의 융단을 제조할수 있는 새 기계를 채용하였다. 로동자들은 그들의 기업가가 기계개량에 자본을 투한한 덕택으로 얻게 되는 리윤의 분배를 요구할 하등의 권리가 없다. 따라서 브라이트회사는 야드당 임금을 $1\frac{1}{2}$펜스에서 1펜스로 인하할것을 제안하였는데 그래도 같은 로동에 대한 로동자의 수입은 종전과 꼭 같게 된다. 그러나 명목상으로는 인하하였으며 로동자들은 이에 대하여 사전에 받아야 할 예고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있다.》

(63) 《로동조합들은 일정한 로임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계개량에서 나오는 리윤의 한몫을 얻어내려고 한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들은 로동이 단축되고있다는 리유로 높은 임금을 요구한다.…다시말하면 그들은 산업의 개량에 과세하려고 애쓰고있는것이다.》(《직업동맹에 관하여》, 1834년 런던 신판, 42페지)

제 20 장

로임의 국민적차이

제15장에서 취급한 여러가지 조합들은 로동력의 가치의 절대량 또는 상대량(즉 잉여가치와 비교한 량)의 변동을 일으킬수 있는것이였는데 다른 한편 로동력의 가격이 실현되는 생활수단의 량은 이 가격의 변동과는 관계없거나(64) 또는 그와는 다른 여러가지 운동을 할수 있었다. 우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로동력의 가치 또는 가격을 단순히 로임이라는 통속적 형태로 번역하는것만으로 그 모든 법칙들은 로임운동의 법칙들로 전화된다.① 이 운동의 내부에서 변동하는 조합으로서 나타나는것이 각이한 나라들에 있어서는 국민적로임의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차이로서 나타날수 있다. 그러므로 제 국민의 로임을 비교할 때에는 로동력의 가치량의 변동을 규정하는 모든 계기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즉 자연적원인, 그리고 력사적으로 발전한 일차적생활필수품의 가격과 범위, 로동자의 양성비, 녀성로동과 아동로동의 역할, 로동의 생산성, 로동의 외연량 및 내포량 등이다. 극히 표면적인 비교를 위해서도 우선 각이한 나라의 동일한 산업에서의 평균일임금을 같은 길이의 로동일로 환원하는것이 필요하다. 이와

---

(64) 《임금으로 보다 싼 물품을 보다 많이 사기때문에 임금 (여기에서는 그 화폐적 표현이 문제로 되고있다.) 이 올랐다고 말하는것은 정확하지 않다.》 (데이비드 류캐넌이 그가 편찬한 A. 스미스의 《제 국민의 부》에 첨가한 주, 1814년판, 제1권, 417페지)

① 이 책 623페지를 보라. —편집자

같이 일임금을 조정한 다음 시간제임금을 도급제임금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도급제임금만이 로동의 생산성에 대하여서나 로동의 내포량에 대하여 척도로 되기때문이다.

매개 나라에는 일정한 중등의 로동강도가 있는데 이보다 낮은 강도의 로동은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따라서 정상적질의 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 나라에서는 로동시간의 단순한 길이에 의한 가치의 척도를 변경시키는것은 오직 국민적평균보다 높은 강도뿐이다. 개별적 나라들을 그 구성부분으로 하는 세계시장에서는 사태가 다르다. 로동의 중등강도는 나라에 따라서 다르다. 그것은 이 나라에서는 높고 저 나라에서는 낮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민적평균은 하나의 층계를 이루는데 이 층계의 도량단위는 전 세계적 로동의 평균단위이다. 따라서 강도가 보다 높은 국민로동은 강도가 보다 낮은 국민로동에 비하여 같은 시간에 보다 많은 가치를 생산하며 이 가치는 보다 많은 화폐로 표현된다.

그러나 가치법칙은 그것이 국제적범위에서 적용되는 경우에는 또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여서도 많이 수정된다. 즉 세계시장에서는 보다 생산적인 국민적로동도 그보다 생산적인 국가가 경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상품의 판매가격을 그 가치까지 저하하지 않을수 없게 강요당하지 않는 한 역시 강도가 보다 큰 국민적로동으로서 간주된다는 사정에 의하여 수정된다.

한 나라의 국민적로동의 강도와 생산성은 그 나라의 자본주의적생산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만큼 국제적수준이상으로 제고된다.(64a) 따라서 각이한 나라들에서 같은 로동시간에

(64a) 우리는 로동의 생산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정들이 개별적산업부문들에서 이 법칙을 변형시킬수 있는가 하는것은 다른 곳에서 연구할것이다.

생산되는 같은 상품의 각이한 량은 서로 다른 국제적가치를 가지는데 그 가치는 각이한 가격으로 즉 국제적가치의 차이에 따라 다른 화폐액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화폐의 상대적가치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더 발전한 국가에 있어서는 그것이 덜 발전한 국가에 있어서보다 더 작을것이다. 따라서 명목로임 즉 화폐로 표현된 로동력의 등가도 전자의 국가에 있어서는 후자의 국가에 있어서보다 더 높으리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현실적임금도 즉 로동자가 자유로 처분할수 있는 생활수단도 역시 그러하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각이한 나라들에서의 화폐가치의 이러한 상대적 차이를 도외시하더라도 흔히 볼수 있는바와 같이 일임금, 주임금 등등은 전자의 국가에서는 후자의 국가에서보다 더 높지만 상대적인 로동가격 즉 잉여가치 및 생산물가치에 비한 로동가격은 후자의 국가에서 전자의 국가에서보다 더 높은것이다.(65)

1833년의 공장조사위원회 위원인 카우엘은 방적업을 세밀히 조사한후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

(65) 제임즈 앤더슨은 A. 스미스와의 론쟁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있다. 《또한 지적해야 할것은 토지의 생산물 특히는 곡물이 싼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로동의 외관상의 가격이 보다 낮은것이 보통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 경우에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보통 더 높다. 왜냐 하면 로동자에게 매일 주는 임금은 비록 로동의 외관상 가격이기는 하지만 로동의 실질가격을 이루는것은 아니기때문이다. 실질가격은 수행된 일정한 량의 로동이 고용주로 하여금 실지로 들이게 하는 비용인것이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곡물과 기타 생활수단의 가격은 가난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보다 보통 훨씬 낮지만 로동은 거의 모든 경우에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보다 눅다.…1일에 얼마로 평가되는 로동은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보다 훨씬 눅다.…그러나 개수로 계산되는 로동은 일반적으로 잉글랜드가 보다 눅다.》(제임즈 앤더슨 《민족적기업정신의 고무대책에 관한 고찰》, 1777년 에딘버러판, 350~351페지)—반대로 낮은 임금은 이번에는 로동을 비싸게 만든다. 《로동은 아일랜드가 잉글랜드보다 비싸다.…왜냐 하면 임금이 그만큼 낮기때문이다.》(《칙명철도위원회보고》, 1867년판, 제2074호)

《영국에서는 임금이 대륙에서보다 로동자에 대하여서는 더 높을는지 모르지만 공장주에 대하여서는 사실상 보다 낮다.》(유어 《공장철학》, 314페지)

영국의 공장감독관 앨렉잔더 레드그레이브는 1866년 10월 31일의 공장보고에서 대륙 각국들과의 비교통계에 의하여 대륙에서의 로동은 임금이 보다 낮고 로동시간이 훨씬 긴데도 불구하고 생산물에 비하여서는 영국보다 비싸다는것을 지적하고있다. 올덴부르그의 한 면방직공장의 영국인지배인이 말한바에 의하면 거기에서는 로동시간이 토요일도 포함하여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계속되며 그동안에 그곳 로동자들이 영국인 감독들의 감시하에서 제공하는 생산물량은 10시간로동에 영국로동자들이 제공하는 량만큼 되지 못하며 독일인감독들의 감시하에서는 훨씬 더 작다. 임금은 영국에서보다 훨씬 더 낮고 많은 경우에 50%나 낮지만 로동자수는 기계설비에 비한 비률로 보면 훨씬 더 많고 약간의 부문들에서는 5:3의 비률로 되여있다고 한다. 레드그레이브씨는 로씨야의 면방직공장들에 관한 아주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고있다. 이 자료는 바로 최근까지 거기서 일하던 영국인지배인이 그에게 제공한것이다. 온갖 비행으로 충만되여있는 이 로씨야의 땅우에서는 영국공장제도의 유년기에 볼수 있었던 그 옛날의 전률할 일들이 지금 전성기에 있다. 관리인은 물론 영국인이다. 왜냐 하면 토착로씨야인자본가는 공장사무를 모르기때문이다. 과도로동, 불철주야의 작업, 로동자들에 대한 보잘것없는 지불에도 불구하고 로씨야의 제품은 외국제품의 수입금지에 의하여서만 겨우 유지되고있다. 마지막으로 나는 또 구라파 여러 나라들에서의 한 공장당 및 방적공 1명당 평균 방추수를 비교한 레드그레이브씨의 비교표를 들려고

한다. 레드그레이브씨자신이 지적하고있는바에 의하면 이 수자는 그가 수년전에 수집한것인데 그 이후 영국공장들의 규모와 매개 로동자당 방추수는 증대되였다. 그러나 그는 렬거한 대륙의 나라들에서도 같은 정도의 진보가 있으며 따라서 수자표는 의연히 비교를 위한 가치를 가지고있을것이라고 생각하고있다.

한 공장당 평균방추수

잉글랜드……12,600
스위스……8,000
오지리……7,000
작센……4,500
벨지끄……4,000
프랑스……1,500
프로씨아……1,500

로동자 1인당 평균방추수

프랑스……14
로씨야……28
프로씨아……37
바이에른……46
오지리……49
벨지끄……50
작센……50
독일 소국가들……55
스위스……55
대브리텐……74

레드그레이브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이 비교는 다른 사정들을 제외하고 특히 다음과 같은 리유에서도 대브리텐에 불리하다. 즉 거기에서는 기계직조와 방적을 결합하고있

는 공장들이 극히 많은데, 이 계산에서는 직기를 운전하는 로동자들이 한명도 제외되고있지 않을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외국공장들은 대개 다만 방적만을 한다. 만약 같은것을 서로 엄밀히 비교할수 있다면 나는 나의 관할구역에서 단 한명의 남성로동자가 2명의 녀성보조로동자를 데리고 2,200개의 방추를 가진 물방적기를 돌보며 매일 길이로 400마일이 되는 220폰드의 방사를 생산하는 면방적공장을 허다히 들수 있을 것이다.》(《공장감독관보고. 1866년 10월 31일》, 31~37페지의 이곳저곳)

다 아는바와 같이 동구라파에서와 아세아에서 영국회사들은 철도부설의 청부를 맡고있으며 토착민들과 함께 일정한 수의 영국인로동자들을 사용하고있다. 그리하여 실제적필요성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로동강도에서의 국민적차이를 고려하지 않을수 없었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조금도 손실을 주지 않았다. 그들의 경험이 보여주는바에 의하면 비록 임금의 높이는 많건적건 평균적로동강도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상대적 로동가격(생산물에 비한 가격)은 보통 정반대방향으로 변동한다.

H. 캐어리는 자기의 최초의 경제학적저술의 하나인 《임금률시론》(66)에서 각이한 국민적임금이 국민적로동일의 생산성의 정도에 정비례한다는것을 증명하고 이 국제적대비로부터 출발하여 임금은 일반적으로 로동생산성에 비례하여 오르내린다는 결론을 끌어내려 하고있다. 캐어리가 비록 언제나 그렇듯이 무비판적으로 또 피상적으로 주어모은 통계자료를 뒤죽박죽 라렬하지 않고 자기의 전제들을 증명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이 엉터리없다는것은 잉여가치의 생산에 관한 우리의 전체 분석이 증명하고있다. 가장 훌륭한것은 현

(66) 《임금률시론. 전 세계 로동자인구의 형편에서 차이가 나게 된 원인의 검토 첨부》, 1835년 필라델피아판.

실적으로 사태가 리론대로 되고있다고 그가 주장하지 않는것이다. 바로 국가의 간섭이 이 자연적인 경제적관계를 그릇되게 하였다는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적로임은 그중 세금의 형태로 국가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로동자자신의 수중으로 들어가는것처럼 계산되지 않으면 안된다. 캐어리씨는 더 나아가 이 《국가적비용》도 또한 자본주의발전의 《자연적 성과》가 아닌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였어야 할것이 아닌가? 이러한 론의는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꼭 알맞는것이다. 즉 우선 자본주의적생산관계는 자연과 리성의 영원한 법칙이며 이 법칙의 자유롭고 조화로운 작용을 교란하는것은 다만 국가적간섭이라고 선언하고 그다음에 세계시장에 대한 영국의 악마와 같은 영향이(즉 보기에는 자본주의생산의 자연법칙에서 나오는것 같지 않은 영향이) 국가적간섭을 필요하게 한다는것 즉 《자연과 리성의 법칙》의 국가에 의한 보호, 다시말하면 보호관세제도를 필요하게 한다는것을 발견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알맞는다. 그는 더 나아가 현존하는 사회적 대립과 모순들을 정식화하고있는 리카도 등등의 정리가 현실적경제운동의 관념적산물인것이 아니라 반대로 영국과 기타 지방들의 자본주의적생산의 현실적대립이 리카도 등등의 리론의 결과이라는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 고유한 미와 조화를 파괴하는것은 결국 상업이라는것을 발견하였다. 이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는 아마도 자본주의적생산의 유일한 폐해는 자본 그자체라는 것을 발견할것이다. 그렇게도 놀라울만큼 무비판적이며 가짜학식을 가진 인물만이 그의 보호무역론적이단에도 불구하고 바스띠아라든가 기타 모든 현대자유무역론적락관주의자들의 조화로운 지혜의 비밀의 원천으로 될만하였다.

제 7 편
자본의 축적과정

어떤 화폐액이 생산수단과 로동력으로 전화하는것은 자본으로서 기능하여야 할 가치량이 수행하는 첫 운동이다. 이 운동은 시장에서 즉 류통분야에서 진행된다. 이 운동의 둘째 단계인 생산과정은 생산수단이 상품으로 전화한 때에 끝나며 이 상품의 가치는 그 구성부분의 가치를 초과한다. 즉 최초에 선대된 자본에 잉여가치를 가한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 상품은 다시 류통분야에 투입되여야 한다. 그것을 팔며 그 가치를 화폐로 실현하며 이 화폐를 다시 자본으로 전화시키며 이러한 같은 행정을 부단히 되풀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같은 계기적단계들을 부단히 통과하는 순환은 자본의 류통을 이룬다.

축적의 첫째 조건은 자본가가 자기의 상품을 팔며 또 그렇게 하여 얻은 화폐의 대부분을 자본으로 재전화하는것이다. 아래에서는 자본이 그 류통과정을 정상적으로 통과한다고 전제한다. 이 과정의 상세한 분석은 제2권에서 하게 된다.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즉 로동자에게서 직접 부지불로동을 짜내여 그것을 상품에 고정시키는 자본가는 잉여가치의 최초의 취득자이기는 하나 결코 그 최후의 소유자는 아니다. 그는 이어서 그것을 사회적생산전체에서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는 자본가들이나 토지소유자 등등과 나누어야 한다. 따라서 잉여가치는 각이한 부분들로 분할된다. 이 각이한 부분들은 각이한 부류의 사람들의 수중으로 들어가며 리윤, 리자,

상업리윤, 지대 등등의 각이한, 호상 독립한 형태를 취한다. 잉여가치의 이 전화된 형태들은 제3권[180]에서 비로소 취급하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한편 여기에서 우리는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가가 그것을 그 가치대로 판다고 가정하며 그가 상품시장으로 돌아가는것 즉 류통분야에서 자본이 취하게 되는 새 형태들도, 이 형태들에 포함되여있는 재생산의 구체적조건들도 여기서는 고찰하지 않기로 한다. 다른 한편 우리는 자본주의적 생산자를 전체 잉여가치의 소유자로 간주한다. 또는 바꾸어 말하면 획득물의 분배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로 간주한다. 요컨대 우리는 우선 축적을 추상적으로 즉 단순히 직접적생산과정의 한 계기로서 고찰한다.

그런데 축적이 진행되는 한 자본가는 생산된 상품을 판매하고 이 판매에서 얻은 화폐를 다시 자본으로 전화하는데 성공한것이다. 또 잉여가치의 각이한 부분으로의 분할은 결코 잉여가치의 성질이나 또 잉여가치를 축적의 요소로 되게 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변경하는것은 아니다. 잉여가치가 자본주의적생산자자신이 가지게 되는 부분과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하는 부분으로 분할되는 그 비률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경우에 잉여가치는 우선 그 자본주의적생산자가 취득한다. 따라서 축적과정을 설명할 때 우리가 전제로 하고있는것은 축적의 현실적과정에서도 전제되고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잉여가치의 분할과 류통의 매개적운동은 축적과정의 단순한 기본형태를 애매하게 한다, 그러므로 축적과정을 순수한 형태에서 분석하기 위하여는 그 기구의 내부적작용을 가리우는 모든 현상들을 잠시 무시할 필요가 있다.

제 21 장

단 순 재 생 산

생산과정은 그 사회적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련속적이여야 한다. 바꾸어말하면 주기적으로 같은 단계를 계속부단히 통과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는 소비를 멈출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생산도 멈출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어떠한 사회적 생산과정도 그것을 부단한 련관에서 또 갱신의 끊임없는 흐름에서 고찰할 때에는 그것은 동시에 재생산과정이다.

생산의 조건은 동시에 재생산의 조건이다. 어떠한 사회나 그 생산물의 일정한 부분을 부단히 생산수단으로 즉 새로운 생산의 요소로 재전화하지 않고서는 부단히 생산 즉 재생산을 할수 없다. 기타 조건이 같다면 사회는 례컨대 1년이라는 기간에 소비된 생산수단 즉 로동수단, 원료 및 보조재료를 같은 량의 새로운 물건에 의하여 현물로 보상하는 경우에만 자기의 부를 같은 규모에서 재생산하거나 또는 유지할수 있으며 이 새로운 물건들은 년생산물량에서 떨어져나와 다시 생산과정에 들어간다. 이리하여 일정한 량의 년생산물은 생산을 위한것이다. 본래 생산적소비에 돌려지기로 된 이 부분은 대부분이 그 자체로서 개인적소비를 배제하는 현물형태로서 존재한다.

생산이 자본주의적형태를 취한다면 재생산도 그러한 형태를 취한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하에서는 로동과정은 다만

가치증식과정을 위한 수단으로 나타날뿐이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재생산도 또한 다만 선대된 가치를 자본으로서 즉 자기증식하는 가치로서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나타날뿐이다. 어떤 사람이 자본가로서의 경제적역할을 담당하게 되는것은 다만 그의 화폐가 부단히 자본으로서 기능하기때문인것이다. 례컨대 100파운드의 선대된 화폐액이 금년에 자본으로 전화되여 20파운드의 잉여가치를 생산하였다면 그것은 래년에도 그리고 그후에도 동일한 활동을 반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가치의 주기적증가분 즉 과정진행중의 자본의 주기적열매로서는 잉여가치는 자본에서 생기는 수입 (Revenue①) 이라는 형태를 취한다.(1)

만약 이 수입이 자본가에게 소비기금으로서만 복무한다면 즉 주기적으로 얻어진것이 주기적으로 소비된다면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단순재생산이다. 이 단순재생산은 같은 규모에서의 생산과정의 단순한 반복이기는 하지만 이 단순한 반복 또는 련속성은 이 과정에 어떤 새로운 성격들을 부여한다. 또는 오히려 그것을 단순한 개별적과정인것 같이 보이는 외관상의 성격을 해소한다.

생산과정은 일정한 시간에 한하여 로동력을 구매하는것으로 시작되며 이 출발점은 로동의 판매기간이 끝나고 따라서 일정한 생산기간 례컨대 주, 월 등등이 지나가면 부단히 갱신된다. 그러나 로동자는 그의 로동력이 작용하여 자체의

(1) 《타인의 로동생산물을 소비하는 부자들은 이것을 교환행위 (상품의 구매) 에 의하여서만 얻는다. 따라서 그들의 예비금은 얼마 안가서 고갈되지 않을수 없는것 같이 보인다.…그러나 이러한 사회제도하에서 부는 타인의 로동에 의하여 재생산될수 있는 힘을 얻고있다.…부는 로동과 마찬가지로 또 로동에 의하여, 부자를 더 가난하게 만들지 않고도 매년 소비할수 있는 열매를 해마다 가져다준다. 이 열매가 자본에서 생기는 수입이다.》 (씨스몽디 《정치경제학의 새 원리》, 제1권, 81~82페지)

① 이 책 682페지를 보라. —편집자

가치와 잉여가치를 상품에 실현한후에 비로소 지불을 받는다. 따라서 로동자는 우리가 당분간 자본가의 소비기금으로서만 보는 잉여가치를 생산하고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지불의 기금인 가변자본까지도 그것이 로임의 형태로 그에게 환류하기전에 생산하고있는것이며 또 그는 이 기금을 부단히 재생산하는 한에서만 고용된다. 임금을 생산물자체의 일부분으로 보는, 제16장에 든 경제학자들의 공식 Ⅱ는 이로부터 나오는것이다.(2) 로동자자신에 의하여 부단히 재생산되는 생산물의 일부분, 그것이 임금의 형태로 그에게 부단히 환류한다. 물론 자본가는 이 상품가치를 화폐로 로동자에게 지불한다. 그러나 이 화폐는 로동생산물의 전화된 형태에 불과하다. 로동자가 생산수단의 일부를 생산물로 전화시키고있을 때에 그의 이전의 생산물의 일부가 화폐로 재전화한다. 지난 주간 또는 지난 반년간의 로동자의 로동에 의하여 그의 오늘의 로동 또는 금후 반년간의 로동이 지불을 받는것이다. 화폐형태에 의하여 조성되는 환각은 개별적자본가와 개별적 로동자 대신에 자본가계급과 로동자계급을 고찰하기만 하면 곧 사라지고만다. 자본가계급은 로동자계급이 생산하고 자본가계급이 취득한 생산물의 일부분을 받을데 대한 지도증권을 화폐형태로서 부단히 로동자계급에게 교부한다. 이 지도증권을 로동자들도 역시 규칙적으로 자본가계급에게 반환하고 그 대신 자기자신의 생산물중에서 자기에게 지불되여야 할 부분을 받는다. 생산물의 상품형태와 상품의 화폐형태가 이 거래를 변장시킨다.

---

(2) 《임금이나 리윤은 사실상 다같이 완성생산물의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G. 램지 《부의 분배에 관한 론술》, 142페지) 《생산물중 임금형태로 로동자에게 지불되는 몫》 (J. 밀 《정치경제학원리》, 파리조 번역, 1823년 파리판, 33~34페지)

따라서 가변자본이란 로동자가 그의 생활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데 필요한것으로서 어떠한 사회적생산체계하에서도 언제나 자기로서 생산하고 재생산하지 않으면 안되는 생활수단기금 또는 로동기금의 하나의 특수한 력사적현상형태에 불과하다. 로동기금이 로동자의 로동에 대한 지불수단의 형태로 부단히 그의 수중으로 들어가는것은 로동자자신의 생산물이 자본의 형태로 부단히 그에게서 떠나가기때문이다. 그러나 로동기금의 이 현상형태는 로동자에게는 로동자자신의 대상화된 로동이 자본가에 의하여 선대된다는 사실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못한다.(3) 부역농민을 례로 들어보자. 그는 례컨대 자신의 생산수단을 가지고 자신의 경작지에서 1주 3일간 일하고 나머지 3일간은 령주의 토지에서 부역로동을 한다. 그는 부단히 자기자신의 로동기금을 재생산하지만 이 로동기금은 결코 그에 대하여 제3자가 그의 로동의 대가로 선대한 지불수단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 그대신 또 그의 부지불강제로동은 결코 자발적인 지불로동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령주가 부역농민의 경지, 역축, 종자, 한마디로 말하여 생산수단을 자기것으로 만든다면 그때부터는 부역농민은 자기의 로동력을 령주에게 팔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다. 그런데 다른 조건이 같다면 그는 지금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1주에 6일 즉 자신을 위하여 3일, 지금은 고용주로 된 과거의 령주를 위하여 3일 일하게 될것이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는 생산수단을 생산수단으로서 소비하며 생산수단의 가치를 생산물로 이전할것이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금

---

(3) 《로동자들에게 임금을 선대하기 위하여 자본이 사용될 때 그것은 로동의 유지를 위한 기금에 첨가하는것은 조금도 없다.》 (캐저노우브 편찬, 말사스의 《정치경제학에서의 정의들》 에 대한 편자의 주. 1853년 런던판, 22페지)

도 생산물의 일정한 부분은 재생산에 들어갈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부역로동이 임금로동의 형태를 취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농민자신에 의하여 생산되며 재생산되는 로동기금도 또한 과거의 령주가 농민에게 선대하는 자본의 형태를 취한다. 자산계급적경제학자의 협소한 두뇌는 현상형태와 그 형태에 나타나는것과를 구별할 능력이 없으므로 그는 현재에 와서도 로동기금은 전 지구상에서 오직 례외적으로만 자본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대하여 눈을 감고 있다.(4)

여하간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을 그 부단한 갱신의 흐름에서 고찰하기만 하면 가변자본은 확실히 자본가자신의 기금중에서 선대되는 가치라는 의의를 상실하고만다.(4a) 그러나 이 과정은 어디서이건 또 어느때이건 개시되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까지 취해온 관점에서 보면 자본가는 언제인가 타인의 부지불로동에 의존하지 않는 그 어떤 시초축적에 의하여 화폐의 소유자로 되였으며 그리하여 로동력의 구매자로서 시장에 나타날수 있었다는 사실이 있음직한 일로 보인다. 그런데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의 단순한 련속 즉 단순재생산이 벌써 자본의 가변부분뿐만아니라 총자본에도 관계되는 다른 기묘한 변화들을 일으킨다.

1,000파운드의 자본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례컨대 매년 창조되는 잉여가치가 200파운드라고 하고 또 이 잉여가치가

---

(4) 《로동자들의 생활수단은 지구표면의 4분의 1이하의 지역에서 로동자들에게 선대된다.》 (리처드 죠운즈 《국민정치경제학교과서》, 1852년 허트포드판, 36페지)

(4a) 《고용주는 manufacturer (즉 공장제수공업로동자) 의 임금을 선대하지만 로동자는 사실상 고용주에게 조금도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다. 왜냐 하면 이 임금의 가치는 보통 로동자의 로동이 첨가된 대상의 증대된 가치중에 리윤과 함께 보존되기때문이다.》 (A. 스미스 《국민의 부》, 제2편, 제3장, 355페지)

매년 모조리 소비된다고 하면 이 과정이 5년동안 반복된후에는 소비된 잉여가치액은 5×200 즉 1,000파운드로 되여 최초에 선대된 자본가치와 같게 된다는것은 명백하다. 년잉여가치가 부분적으로만 례컨대 절반씩만 소비된다고 하면 생산과정이 10년동안 반복된후에는 같은 결과가 얻어질것이다. 그것은 10×100=1,000이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선대된 자본가치를 매년 소비되는 잉여가치로 제하면 최초에 선대된 자본이 자본가에 의하여 소비되는, 따라서 소멸하는 년수 또는 재생산하는 기간수가 나온다. 자본가가 자기는 타인의 부지불로동의 생산물 즉 잉여가치만을 소비하고 최초의 자본가치는 그대로 보존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사실을 변경시킬수는 없다. 일정한 년수가 경과하면 그가 취득한 자본가치는 그 동일한 년간에 등가없이 그가 취득한 잉여가치액과 같게 되며 그가 소비한 가치액은 최초의 자본가치와 같게 된다. 그의 수중에 있는 자본은 그 크기가 변하지 않고있으며 또 이 자본의 일부 즉 건물, 기계 등등은 그가 기업에 착수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있었다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로 되고있는것은 자본의 가치이고 자본의 물질적구성부분이 아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의 가치와 같은 액의 채무를 짐으로써 그 재산을 탕진하였다면 그의 전 재산은 바로 그의 채무총액을 대표할따름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본가가 자기의 선대자본의 등가를 소비하였다면 이 자본의 가치는 다만 그가 무상으로 취득한 잉여가치총액을 대표할따름이며 거기에는 구자본가치의 한 원자도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대체 축적이라는것을 전혀 도외시하여도 생산과정의 단순한 련속 또는 단순재생산이 벌써 길건짧건간에

일정한 기간후에는 불가피적으로 모든 자본을 축적된 자본으로 또는 자본화된 잉여가치로 전화시킨다. 자본은 그것이 생산과정에 들어섰을 때에는 그 사용자자신이 자기로 번 재산이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조만간에 어떠한 등가도 없이 취득한 가치로, 타인의 부지불로동의 화폐형태 또는 다른 형태의 물질화로 된다.

우리가 제4장에서 본바와 같이 화폐를 자본으로 전화시키기 위해서는 상품생산과 상품류통의 존재만으로써는 불충분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한편에는 가치 또는 화폐의 소유자, 다른편에는 가치를 창조하는 실체의 소유자가, 한편에는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의 소유자, 다른편에는 로동력만의 소유자가 서로 구매자와 판매자로 대립하는것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로동생산물과 로동 그자체의 분리, 객관적로동조건과 주관적로동력과의 분리가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의 실제적인 기초이며 출발점이였다.

그런데 최초에는 출발점에 불과하였던것이 후에는 과정의 단순한 련속에 의하여, 단순재생산에 의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의 특유한 결과로서 계속부단히 산생되며 영구화된다. 한편으로는 생산과정은 물질적부를 자본으로, 자본가를 위한 가치증식수단과 향락수단으로 부단히 전화시킨다. 다른편으로는 로동자는 그가 생산과정으로 들어갈 때와 같은 형태로 즉 부의 인적원천이기는 하나 이 부를 자기자신을 위하여 실현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박탈당한 형태로 그 과정에서 부단히 나온다. 로동자자신의 로동은 그가 과정에 들어가기전에 그에게서 소외되고 자본가의것으로 되며 그리하여 자본의 구성에 포함되기때문에 과정에서 이 로동은 부단히 타인의 생산물에 대상화된다. 생산과정은 동시에 자본가가 로동력을

소비하는 과정이기때문에 로동자의 생산물은 부단히 상품으로뿐만아니라 자본으로 즉 가치를 창조하는 힘을 빨아들이는 가치로, 인신을 구매하는 생활수단으로, 생산자를 사용하는 생산수단으로 전화한다.(5) 그리하여 로동자자신은 부단히 객관적부를 자본으로서 즉 그와 소외되고 그를 지배하며 착취하는 힘으로서 생산하며 자본가도 역시 부단히 로동력을 주관적인, 그자신을 대상화하고 실현하는 수단으로부터 분리된, 추상적인, 로동자의 육체에만 존재하는 부의 원천으로서 생산한다. 즉 간단히 말하면 로동자를 임금로동자로서 생산한다.(6) 로동자의 이 부단한 재생산 또는 영구화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불가결의 조건이다.

로동자의 소비에는 두 종류가 있다. 생산자체에서는 그는 자기의 로동에 의하여 생산수단을 소비하여 그것을 선대자본의 가치보다 큰 가치의 생산물로 전화시킨다. 이것은 그의 생산적소비이다. 이것은 동시에 로동력을 산 자본가가 로동자의 로동력을 소비하는것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 로동자는 그의 로동력의 대가로 자기에게 지불된 화폐를 생활수단의 획득에 지출한다. 이것은 그의 개인적소비이다. 따라서 로동자의 생산적소비와 개인적소비는 서로 전혀 다른것이다. 첫 소비에서는 그는 자본의 동력으로서 행동하며 자본가의것

---

(5) 《여기에 생산적소비의 특히 주목할만한 속성이 있다. 생산적으로 소비되는것은 자본이고 그것은 소비됨으로써 자본으로 된다.》 (제임즈 밀 《정치경제학원리》, 242페지) 그러나 J. 밀은 이 《특히 주목할만한 속성》이 무엇인가는 해명하지 못하였다.

(6) 《물론 공장제수공업의 개시가 많은 빈민들에게 직업을 주고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빈민들은 여전히 빈궁을 면치 못하고있으며 게다가 공장제수공업의 존속은 더 많은 빈민을 만들고있다.》 (《양모수출제한의 리유》, 1677년 런던판, 19페지) 《차지농업가들이 빈민의 생활을 유지한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엉터리없는것이다. 실은 빈민들은 빈궁속에서 살고있다.》 (《최근의 빈민구제세증가의 리유 또는 로동가격과 식량가격의 비교고찰》, 1777년 런던판, 31페지)

으로 되여있다. 그러나 둘째 소비에서는 그는 자기자신의것이며 생산과정밖에서 여러가지 생활기능을 수행한다. 첫 소비의 결과는 자본가의 생활이고 둘째 소비의 결과는 로동자 자신의 생활이다.

《로동일》 등을 고찰할 때에 그때그때 보여준바와 같이 로동자가 흔히 자기의 개인적소비를 생산과정의 순전히 부대적인 일로 전화시키지 않을수 없는것이다.① 이 경우에 로동자는 다만 자기의 로동력의 운전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만 생활수단을 소비하는것인데 이것은 증기기관이 석탄과 물을 소비하고 차륜이 기계기름을 소비하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때에는 그의 소비수단은 오직 생산수단의 소비수단에 불과하며 그의 개인적소비는 직접 생산적소비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적생산과정에 있어서 본질적이 아닌 람용으로 나타난다.(7)

개별적자본가나 개별적로동자가 아니라 자본가계급과 로동자계급을, 상품의 개별적인 생산과정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을 그 흐름에서와 그 사회적규모에서 고찰하면 사태는 달라진다. 자본가는 자기 자본의 일부분을 로동력으로 전화시킴으로써 자기의 총자본을 증식시킨다. 그는 일거량득이다. 그는 로동자에게서 받는것에서뿐만아니라 로동자에게 주는것에서도 리득을 얻는다. 로동력과 교환하여 양도된 자본은 생활수단으로 전화되며 그 생활수단의 소비는 현존로동자들의 근육, 신경, 골격, 뇌수의 재생산과 그리고 새로운 로동자들의 생산에 복무한다. 따라서 절대 필요한 한계내에서의

(7) 로씨는 그가 만약 정말 《생산적소비》의 비밀을 알았더라면 이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항변하지는 않았을것이다.

① 이 책 277~287, 304~308페지를 보라. —편집자

로동계급의 개인적소비는 로동력과의 교환으로 자본이 양도한 생활수단이 자본이 새로 착취할수 있는 로동력으로 재전화하는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자본가에게 제일 불가결한 생산수단인 로동자자체의 생산이며 재생산이다. 그리하여 로동자의 개인적소비는 그것이 작업장, 공장 등등의 내부에서 진행되는가 외부에서 진행되는가, 로동과정내부에서 진행되는가 외부에서 진행되는가 하는것에는 관계없이 자본의 생산, 및 재생산의 한 계기로서 이것은 마치 기계의 청소가 로동과정의 진행중에 실시되는가 또는 로동과정의 일정한 중간휴식중에 실시되는가 하는것에는 관계없이 생산과 재생산의 한 계기인것과 같다. 로동자가 자기의 개인적소비를 자본가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기자신을 위하여 한다고 하여 사태가 달라지는것은 결코 아니다. 역축의 소비도 역축자체가 먹는 것을 향락한다고 하여 생산과정의 필요한 계기가 아니라고 말할수 없다. 로동자계급의 부단한 유지와 재생산은 언제나 자본의 재생산의 조건이다. 이 조건의 충족을 자본가는 안심하고 로동자들자신에게, 그들의 자체유지와 생식의 본능에 맡길수 있다. 자본가가 고려를 돌리는것은 다만 로동자들의 개인적소비를 될수 있는 한 극히 필요한 범위내에 국한시키는것뿐이다. 이 점에 있어서 자본가는 로동자들로 하여금 영양분이 적은 음식물 대신에 영양분이 많은 음식물을 강제로 먹지 않을수 없게 하는 남아메리카식 란폭성과는 천양지차가 있는것이다.(8)

---

(8) 《남아메리카의 광산로동자들이 매일 하는 로동(이것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힘든 로동일것이다.)은 450푸트나 되는 지하로부터 180~200폰드나 되는 광석을 어깨에 메고 지상으로 올라오는것인데 그들은 빵과 콩만으로 살아간다. 그들은 오히려 빵만을 먹으려 하겠지만 그들의 주인은 빵만으로써는 그들이 그렇게 힘든 일을 할수 없다는것을 알고 로동자들을 우마와 같이 취급하여 그들에게 강제로 콩을 먹이고있는것이다. 콩

그러므로 자본가와 그의 사상가인 정치경제학자들은 로동자의 개인적소비중에서 로동자계급의 영구화에 필요한 부분만을 즉 자본에 의한 로동력의 소비를 위하여 로동자가 현실적으로 소비하여야 할 부분만을 생산적소비로 보고 로동자가 그 이상으로 자기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소비하는것은 모두 비생산적소비라고 본다.(9) 만약 자본의 축적이 로임의 등귀를, 따라서 자본에 의한 로동력의 소비의 증대를 가져옴이 없이 로동자의 소비수단의 증대를 초래한다면 추가자본은 비생산적으로 소비된것으로 될것이다.(10) 사실상 로동자의 개인적소비는 빈곤한 개인을 재생산할따름이므로 그것은 로당자자신에 대해서는 비생산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남의 부를 창조하는 힘을 생산하는것이므로 자본가와 국가에 대해서는 생산적이다.(11)

따라서 사회적관점에서 보면 로동계급은 심지어 직접적인 로동과정밖에서까지도 죽은 로동도구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부속물이다. 일정한 한계내에서는 로동자들의 개인적소비까지도 자본의 재생산과정의 한 계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과정은 부단히 로동자들의 로동생산물을 그들의 극에서 대립되는 자본의 극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자기 의식이 있는 이 생

은 빵보다 린산칼슘이 훨씬 더 많다.》(리비히 《농업과 생리학에의 화학의 응용》, 1862년, 제7판, 제1권, 194페지, 주)

(9) 제임즈 밀 《정치경제학원리》, 238페지이하.

(10) 《만약 로동의 가격이 자본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로동을 사용할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다면 자본의 그와 같은 증가분은 비생산적으로 소비되는것이라고 나는 말할것이다.》(리카도 《정치경제학 및 조세의 원리》, 1821년 런던 제3판, 163페지)

(11) 《자본가가 재생산의 목적으로 부를 소비 또는 파괴하는것 (그는 생산수단의 소비를 념두에 두고있다.) 만이 본래의 의미에서의 유일한 생산적소비이다.…로동자는… 그를 고용하는 사람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생산적소비자이지만 그자신에 대해서는 엄밀히 말하면 생산적소비자가 아니다.》(말사스 《정치경제학에서의 정의들》, 1853년 런던판, 30페지)

산도구들이 달아나지 못하게 한다. 로동자들의 개인적소비는 한편으로는 그들의 유지와 재생산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활수단을 소멸시킴으로써 그들이 로동시장에 부단히 다시 나타나지 않을수 없게 한다. 로아의 노예는 쇠사슬로 얽매여있지만 임금로동자는 보이지 않는 실로 그 소유자에게 얽매여있다. 그가 독립하여있다는 외관은 개개의 고용주들이 부단히 바뀐다는것과 그리고 계약이라는 법적의제[54]가 있다는것에 의하여 유지된다.

이전에 자본은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자유로운 로동자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강제법에 의하여 행사하였다. 례컨대 1815년까지에는 영국의 기계제작로동자들의 국외이주가 중형으로써 금지되여있었다.

로동자계급의 재생산에는 또한 한 세대로부터 다른 세대로의 기능의 전달과 축적도 포함된다.(12) 자본가가 어느 정도로 그와 같은 숙련로동자계급의 존재를 그에게 속하는 생산조건중에 포함시키며 또 사실상 이 계급을 자기의 가변자본의 현실적존재로 보는가 하는것은 공황에 의하여 이 계급이 상실될 위험이 생기기 시작할 때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 아는바와 같이 미국의 남북전쟁[8]과 그에 따르는 면화기근때문에 랭카셔와 기타 지방들에서는 많은 면방직업로동자들이 가두로 쫓겨났다.[404] 로동자계급자체내에서와 기타 사회층들로부터도 국가의 원조 또는 국민의 자발적기부에 의하여 《과잉》 로동자들을 영국식민지 또는 미국으로 이주시키라는 웨침소리가 들려왔다. 이때 《타임스》(1863년 3월 24

(12) 《저장되고 미리 준비된다고 말할수 있는 유일한것은 로동자의 기능이다.…숙련로동의 축적과 저장이라는 이 극히 중요한 일은 대부분의 로동자를 두고볼 때 어떠한 자본지출도 없이 달성된다.》(호지스킨 《자본의 요구에 대한 로동의 옹호…》, 12~13페지)

일)는 만체스터상업회의소 전임소장이였던 에드먼드 포터의 편지를 게재하였다. 이 편지는 하원에서 적절하게도 《공장주선언》이라고 불리였다.(13) 이제 우리는 이 편지중에서 로동력에 대한 자본의 소유권을 아주 로골적으로 나타내고있는 특징적인 약간의 개소들을 인용한다.

《면방직업로동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것이다. 그들의 로동의 공급이 너무도 많다.…아마도 그 3분의 1은 감소시켜야 할것이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3분의 2에 대해서는 건전한 수요가 보장될것이다.…여론은 이민을 주장하고있다.…고용주 (즉 면방직업공장주) 는 그의 로동의 공급이 이전되는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이것이 불공평하며 부정당하다고 생각할것이다.…만약 이민이 사회적기금으로 지지된다면 그는 그의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을것이며 또 아마도 항의할 권리가 있을것이다.》

이 포터는 계속하여 이렇게 말하고있다. 그것은 즉 면방직업이 여차여차하게 유익하다는것, 그것은 《의심할바없이 아일랜드로부터, 잉글랜드의 농업지대로부터 인구를 끌어들이였다는것》, 그 규모가 얼마나 거대하다는것, 그것은 1860년에는 영국의 총수출액의 $\frac{5}{13}$를 차지하였다는것,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시장 특히 인도시장의 확대에 의하여 또 충분한 량의 《면화공급을 폰드당 6펜스로》 강제적으로 《수입》됨으로써 수년후에는 다시 증대될것이다. 그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시간이—1년, 2년 아마 3년만 가면—필요한 량을 생산할것이다.…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질문을 제기하고싶다. 이 공업은 유지할 가치가 있는것인가? 이 기계 (산로동기계를 두고 말한다.) 는 정비해둘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내버리려고 생각하는것은 최대의 어리석음이

(13) 《이 편지는 공장주선언이라고 볼수 있다.》 (페런드, 1863년 4월 27일 하원회의에서 한 면화기근에 관한 제안.)

아닌가라고.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로동자는 재산이 아니며 랭카셔와 고용주들의 재산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량자의 힘이다. 그들은 한세대로써는 바꾸어놓을수 없는 지적힘이며 훈련받은 힘이다. 그와는 반대로 기타 기계 즉 로동자들이 사용하는 기계들은 대부분이 12개월내에 유리하게 바꾸어놓을수 있으며 심지어 개량하기까지 할수 있다.(14) 만약 로동력의 국외이주를 장려하거나 또는 허가 (!) 한다면 자본가들은 어떻게 될것인가?》

이 충심으로부터의 부르짖음은 시종장 칼브[405]를 회상케 한다.

《…로동자들의 정수를 떼어낸다면 고정자본은 극도로 감가될것이며 류동자본은 불충분하게 공급되는 렬등로동으로써 투쟁을 감당하지 못할것이다.…로동자들자신이 국외로의 이주를 원한다고 말들 한다. 로동자들이 이렇게 하려는것은 극히 당연하다.…면방직업의 로동력을 빼앗음으로써 또 그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액을 가령 $\frac{1}{3}$ 또는 500만이나 감소함으로써 면방직업을 축소억압한다면 로동자들의 바로 우에 있는 계급인 소매상인들은 어떻게 될것인가? 지대는 어떻게 되며 오두막의 방세는 어떻게 될것인가? 소차지농업가들과 보다 나은 층인 가옥소유자들과 토지소유자들은 어떻게 될것인가? 가장 우수한 공장로동자들을 수출하여 국민의 가장 생산적인 자본과 부의 일부를 감가시킴으로써 국민을 약화시키는 이 안보다도 더 나라의 모든 계급들에 대하여 자살적인 계획이 또 있을수 있겠는가?》 《2년 또는 3년에 걸쳐 500만 내

(14) 독자들이 기억하고있는바와 같이 보통 임금을 인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자본도 전혀 다른 노래를 부른다. 이러한 경우에 《고용주들》은 이구동성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있다.(제4편 주 188, 389페지를 보라.①) 《공장로동자들은 그들의 로동이 사실상 극히 저급한 종류의 숙련로동이라는것, 그들의 로동처럼 배우기 쉬운 로동은 없으며 또 그 질로 보아 이처럼 나은 지불을 받는 로동은 없다는것, 다른 어떠한 로동도 이처럼 단기간의 훈련으로써 이처럼 신속히 또 풍부하게 공급할수는 없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고용주의 기계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12개월이면 개량된것과 유리하게 바꾸어놓을수 있다는는) 6개월이면 능히 배울수 있으며 또 어떠한 농촌머슴군도 배울수 있는 로동자의 로동과 기능 (지금 듣기에는 30년 가지고도 대치될수 없다는) 보다 사실상 훨씬 중요한 역할을 생산사업에서 논다.》

① 이 책 488페지를 보라. —편집자

지 600만에 달하는 공채를 발행할것, 자금지출을 면방직업지방들의 빈민구제당국에 소속된 특별위원의 감독하에 둘것, 구제를 받는 로동자들의 도덕적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강제로동을 제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이 사업을 관리할것을 나는 권고한다.…자기들의 우수한 로동자들을 잃고 대규모적인, 국내를 비게 하는 이민과 주 전체의 자본과 가치의 감가에 의하여 나머지 로동자들사이에는 타락과 불만의 씨를 뿌리는것보다 토지소유자들이나 고용주들에게 더 나쁜것이 있을수 있겠는가?》

면방직업공장주들의 비범한 대표자인 포터는 다같이 자본가에게 속하는 두 종류의 《기계》를 구별하고있다. 즉 그 하나는 그의 공장내부에 있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밤과 일요일에는 공장밖에 있는 오두막에서 살고있는것이다. 전자는 죽은것이고 후자는 산것이다. 죽은것은 매일과 같이 나빠지고 감가될뿐만아니라 부단한 기술진보에 의하여 많은 부분이 낡아져서 수개월이 경과하면 새로운 기계로 교체하는것이 오히려 유익할 정도이다. 그와는 반대로 산기계는 그것이 오래 복무하면 할수록, 수세대에 걸쳐 축적된 기능을 보다 많이 섭취하면 할수록 더욱 개량된다. 《타임스》가 이 대공장주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있다.

《E. 포터씨는 면방직업기업소 주인들의 비상한 그리고 절대적인 중요성을 통감한 나머지 이 계급을 유지하고 그들의 직업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50만의 로동자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거대한 도덕적빈민구제원에 가두어두려 하고있다. 이 공업은 유지할 가치가 있는가라고 포터씨는 질문한다. 물론 유지할 가치가 있다, 모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유지하여야 할것이다라고 우리는 대답한다. 기계를 정비해둘 가치가 있는가라고 포터씨는 다시 질문한다. 여기서는 우리는 대답에 망설인다. 포터씨가 기계라고 하는것은 인간기계를 두고 말하는것이다. 왜냐 하면 그는 기계를 고용주의 절대적재산으로 인정하고싶지 않다고 단언하고있기때문이다. 사실을 말하면 인간기계를 정비해두는것 즉 필요하게 될

때까지 그것을 가두어두고 기름칠하는것을 〈가치가 있는 일〉 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또 불가능하기까지 하다고 인정한다. 인간기계는 아무리 기름칠을 하고 닦는다고 하더라도 쓰지 않으면 녹이 쓰는 속성이 있다. 그뿐만아니라 우리가 이미 본바와 같이 인간기계는 저절로 증기를 뿜고 파렬되여 우리 대도시의 거리들에서 미쳐날뛸수 있다. 포터씨가 말하는바와 같이 로동자들의 재생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수도 있지만 기계기사와 화폐만 가지고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근면하고 억센 일군을 발견할수 있으며 그들에 의하여 못다쓸만큼 수많은 공장감독들을 만들어낼수 있다.…포터씨는 1년, 2년 또는 3년내에 공업의 새로운 활기가 있을것이라고 말하고 로동력의 이주를 장려하지 말것, 지어는 그것을 허가하지 말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있다! 로동자들이 이주를 원하는것은 당연하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그는 국가는 그들의 념원을 무시하고 50만의 로동자와 그들의 가족 70만을 면방직업지방들에 가두어두어야 하며 그 불가피한 결과인 그들의 불만을 폭력으로써 진압하고 구제금을 주어 그들의 생존을 유지할것을 제의하고있는데 이 모든것은 면방직업 공장주들에게 그 어느날 다시 그들이 필요될것이라는 고려에서 나온것이다.…이 〈로동력〉 을 석탄이나 철이나 면화를 취급하듯이 취급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구출하기 위하여 이 섬나라의 강력한 여론이 그 무엇을 하여야 할 때가 왔다.》(15)

《타임스》의 론설은 지혜의 유희에 불과하였다. 《강력한 여론》은 사실상 공장로동자란 공장의 부속동산에 불과하다는 포터씨의 의견과 같았다. 로동자들의 국외이주는 저지되였다.(16) 그들은 면방직업지방들의 《도덕적빈민구제원》

(15) 《타임스》, 1863년 3월 24일.

(16) 의회는 국외이주를 위하여는 한푼의 지출도 가결하지 않고 다만 자치체당국으로 하여금 로동자들을 생사의 계선우에 둘수 있는 권한 즉 정상적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들을 착취할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령들을 발포하였을 따름이다. 그런데 3년후에 우역이 돌았을 때에 의회는 란폭하게도 의회의 관례를 무시하면서까지 백만장자들인 지주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즉시에 수백만의 지출을 가결하였는데 그들의 차지농업가들은 고기값의 등귀로 조금도 손실을 보지 않았던것이다. 1866년 의회가 열리였을 때의 토지소유자들의 짐승과 같은 울부짖음은 인도교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싸발라암소신을 례배할수 있으며 또 유피테르가 아니라 하더라도 황소가 될수 있다는것을 증명하였다.

에 갇히였으며 또 여전히 《랭카셔의 면방직업공장주들의 힘》①을 이루고있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은 그자체의 행정에서 로동력과 로동조건의 분리를 재생산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로동자의 착취조건을 재생산하고 영구화한다. 그것은 부단히 로동자로 하여금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로동력을 팔지 않을수 없게 하며 또 부단히 자본가로 하여금 치부하기 위하여 로동력을 살수 있게 한다.(17) 자본가와 로동자가 구매자와 판매자로서 상품시장에서 대립하는것은 이제는 벌써 우연이 아니다. 과정 그자체가 부단히 로동자를 자기 로동력의 판매자로서 다시 상품시장에 내던지며 또 부단히 그자신의 생산물을 자본가의 구매수단으로 전화시킨다. 실상 로동자는 자본가에게 자기를 팔기전에 이미 자본에 속하고있는것이다. 그의 경제적예속(18)은 그의 자기 판매의 주기적갱신과 개별적고용주의 교체와 로동의 시장가격의 변동에 의하여 매개되

(17) 《로동자는 살기 위하여 생활수단을 요구하였으며 고용주는 리익을 보기 위하여 로동을 요구하였다.》(씨스몽디 《정치경제학의 새 원리》, 빠리판, 제1권, 91페지)

(18) 이 예속의 농민적인 조잡한 형태는 더람군에 존재한다. 이 군은 당지의 조건들로 말미암아 차지농업가들이 농업날품팔이군들에 대한 당연한 소유권을 보장받지 못하고있는 소수의 군가운데의 하나이다. 광업이 농업날품팔이군들에게 선택의 가능성을 주고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차지농업가들이 관례와는 반대로 로동자들의 오두막이 있는 토지만을 차용한다. 오두막의 집세는 로임의 일부분을 이룬다. 이 오두막은 《머슴군의 집》이라고 불리고있다. 이 오두막은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봉건적의무를 수행하는 조건부로 로동자들에게 대여되는데 이 계약은 《bondage》(《예농제》)라고 불리우며 특히 로동자가 외지로 일하러 갈 때에는 그의 딸이나 기타 사람들을 자기 대신으로 일을 시킬 의무를 그에게 지우고있다. 로동자자신은 bondsman 즉 예농이라고 불리운다. 이 관계는 전혀 새로운 측면에서 자본을 위한 소비 또는 생산적소비로서의 로동자의 개인적소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예농의 분뇨까지도 그의 타산적인 주인에 의하여 주인의 부수입으로 가산되고있다는것은 흥미있는 일이다.…차지농업가는 부근일대에 자기자신이 세운것외에는 다른 어떤 변소도 세우는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이 면에서의 자기의 령주권을 추호도 침해당하려 하지 않는다.》(《공중위생. 제7차보고. 1864년》, 188페지)

① 이 책 663페지를 보라. —편집자

는 동시에 은폐된다.(19)

따라서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은 련관속에서 고찰하면 즉 재생산과정으로서는 상품을 생산하고 잉여가치를 생산할뿐만 아니라 자본관계자체를 즉 한편으로는 자본가를, 다른편으로는 임금로동자를 생산하며 재생산한다.(20)

(19) 아동로동 등등에서는 자기판매라는 형식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을 우리는 기억하고있다.①

(20) 《자본은 임금로동을 전제로 하며 임금로동은 자본을 전제로 한다. 그것들은 호상 서로 제약하며 그것들은 호상 서로 발생시킨다. 면방직공장의 로동자는 면직물만을 생산하는가? 아니다, 그는 자본을 생산한다. 그는 그의 로동을 지휘하며 그 로동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데 다시 복무하는 가치를 생산한다.》(칼 맑스 《임금로동과 자본》, 《신라인신문》, 제266호, 1849년 4월 7일) 이 표제하에 《신라인신문》에 발표된 론문은 내가 1847년에 이 제목으로 브류쎌독일인로동자협회[406]에서 한 강연의 한 부분이며 그 게재는 2월혁명에 의하여 중단되였던것이다.

① 이 책 309~310, 452, 455~463페지를 보라. —편집자

제 22 장

잉여가치의 자본으로의 전화

1. 확대된 규모에서의 자본주의적생산과정. 상품생산의 소유법칙의 자본주의적취득법칙으로의 전화

앞에서는 잉여가치가 어떻게 자본에서 나오는가를 고찰하였는데① 이제는 자본이 어떻게 잉여가치에서 나오는가를 고찰하지 않으면 안된다. 잉여가치를 자본으로서 사용하는것 또는 잉여가치를 자본으로 재전화는것을 자본의 축적이라고 한다.(21)

이 과정을 우선 개별적자본가의 립장에서 고찰해보자. 례컨대 어떤 방적업자가 10,000파운드의 자본을, 그중 $\frac{4}{5}$는 면화, 기계 등등에, 나머지 $\frac{1}{5}$은 로임에 선대하였다고 하자. 그가 매년 12,000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240,000폰드의 면사를 생산한다고 하자. 잉여가치률이 100%라고 하면 잉여가치는 40,000폰드의 면사 즉 총생산물의 $\frac{1}{6}$을 이루는 잉여생산

(21) 《자본의 축적은 수입의 일부분을 자본으로서 사용하는것이다.》(말사스 《정치경제학에서의 정의들》, 캐저노우브 편찬, 11페지) 《수입의 자본으로의 전화》(말사스 《정치경제학원리》, 1836년 런던 제2판, 320페지)

① 이 책 182~205, 216~227페지를 보라. —편집자

물 또는 순생산물에 포함되여있는데 이것은 판매에 의하여 실현될 2,000파운드의 가치를 가지고있다. 2,000파운드의 가치액은 2,000파운드의 가치액이다. 이 화폐를 냄새를 맡든 눈으로 보든 그것이 잉여가치라는것은 알수 없다. 어떤 가치가 잉여가치라는 사실은 그 가치가 어떻게 하여 그 소유자의 수중에 들어갔는가를 표시하기는 하지만 가치 또는 화폐의 본성은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그리하여 새로 추가된 2,000파운드라는 이 화폐를 자본으로 전화시키기 위해서는 방적업자는 기타 조건이 같다면 그 $\frac{4}{5}$를 면화 등등의 구매에, 그리고 $\frac{1}{5}$을 새로운 방적공의 구매에 선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방적공은 방적업자가 그들에게 선대한만큼한 가치의 생활수단을 시장에서 발견하게 될것이다. 그렇게 되면 2,000파운드의 이 새로운 자본이 방적공장에서 기능하여 그것이 또한 400파운드의 잉여가치를 가져올것이다.

자본가치는 최초에 화폐형태로 선대되였는데 잉여가치는 그와 반대로 처음부터 이미 총생산물의 일정한 부분의 가치로서 존재한다. 이 총생산물이 판매되여 화폐로 전화된다면 자본가치는 다시 그 최초의 형태를 가지는데 잉여가치는 그 최초의 존재방식을 변경한다. 그러나 이 순간부터 량자 즉 자본가치와 잉여가치는 모두 화폐액으로 되며 그것들의 자본으로의 재전화는 꼭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본가는 이 량자를 모두 상품의 구매에 지출하는데 이 상품은 그로 하여금 자기 생산물의 제조를 새로이, 그것도 이번에는 확대된 규모에서 진행할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그는 그것을 시장에서 발견하여야 한다.

그자신의 면사가 류통하는것은 오직 자기의 년생산물을 시장에 내놓기때문이다. 그것은 다른 모든 자본가들이 각자의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상품들은 시장에 들어오기전에 이미 년생산기금중에 존재하고있었다. 다시 말하면 개별적자본의 총액 즉 사회적총자본이 1년동안에 전화된, 그리고 매개 개별적자본가가 그중의 해당한 한부분만을 소유하고있을뿐인 각종 물건의 총량중에 존재하고있었다. 시장에서의 과정들은 오직 년생산의 이러한 각개 구성부분들의 교환을 실현하고 그것들을 이 사람의 손에서 저 사람의 손으로 옮길따름이다. 그러나 그것은 년총생산을 증대시키거나 생산된 물건의 본성을 변경시킬수는 없다. 따라서 년총생산물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것은 그자체의 구성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지 결코 류통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년생산은 1년동안에 소비되는 자본의 물적구성부분들을 보상할수 있는 모든 대상(사용가치)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을 공제한후에는 순생산물 또는 잉여생산물이 남는데 거기에는 잉여가치가 포함되여있다. 그러면 이 잉여생산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혹은 자본가계급의 수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건들 즉 그들의 소비기금에 속하는 물건들로써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잉여가치는 남김없이 탕진될것이며 따라서 오직 단순재생산만이 진행될것이다.

축적하기 위해서는 잉여생산물의 일부분을 자본으로 전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는한 자본으로 전화시킬수 있는것은 오직 로동과정에서 사용될수 있는 물건들 즉 생산수단과 그리고 로동자의 생활을 유지할수 있는 물건들 즉 생활수단뿐이다. 따라서 년잉여로동의

일부분은 선대된 자본의 보상에 필요한 량을 초과하는 추가적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의 제조에 돌려져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잉여가치가 자본으로 전화될수 있는것은 오직 그 가치가 곧 잉여가치인·잉여생산물이 이미 새로운 자본의 물적 구성부분을 포함하고있기때문이다.(21a)

그런데 이 구성부분들을 실지 자본으로서 기능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자본가계급에게 추가적로동이 필요하다. 만약 이미 사용되고있는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외연적으로나 내포적으로 증가될수 없다면 추가로동력을 구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자본주의적생산의 기구가 벌써 고려를 돌리고있다. 왜냐 하면 이 기구는 로동계급을 로임에 의존하는 계급으로서 재생산하는데 그들의 임금의 보통수준은 이 계급의 유지뿐만아니라 그의 증식도 보장하는데 족하기때문이다. 이러한 각종 년령의 로동자계급에 의하여 매년 자본에 공급되는 추가로동력을 자본은 다만 년생산물중에 이미 포함되여있는 추가적생산수단에 합체시키기만 하면 되는데 이로써 잉여가치의 자본으로의 전화는 완성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축적은 부단히 확대되는 규모에서의 자본의 재생산이다. 단순재생산의 순환은 달라져서 씨스몽디의 표현[407]에 의하면 라선형으로 전화된다.(21b)

(21a) 한 국가로 하여금 사치품을 생산수단이나 생활수단으로 전화시킬수 있게 하며 또 그 반대로도 할수 있게 하는 수출무역은 이 경우에 도외시한다. 부차적사정의 교란을 떠나서 연구대상을 순수한 형태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전체상업세계를 한 국가로 보며 또 자본주의적생산이 도처에 확립되여 모든 산업부문들을 지배하고있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21b) 씨스몽디는 《수입①의 자본으로의 전화》라는 용어에 너무나 만족한 나머지 이 행위의 물질적조건들을 탐구하지 않고있는데 여기에 축적분석에서의 그의 큰 결함이 있다.

---

① 이 책 682페지를 보라. —편집자

이제는 우리의 실례로 다시 돌아가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싸크를 낳고 이싸크는 야코브[408]를 낳고 하는 등등의 옛 이야기와 같다. 10,000파운드의 최초의 자본은 2,000파운드의 잉여가치를 가져오는데 이 잉여가치가 자본화된다. 2,000파운드의 새로운 자본은 400파운드의 잉여가치를 가져오고 이 잉여가치가 또 자본화되여 제2의 추가자본으로 전화되며 이것이 또다시 80파운드의 새로운 잉여가치를 가져온다, 등등.

여기에서는 잉여가치중 자본가자신이 소비하는 부분을 도외시한다. 또한 추가자본이 최초의 자본에 합체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서 분리되여 독립적으로 자기증식을 하는가, 그것을 축적한 같은 자본가가 그것을 사용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다른 자본가의 수중으로 넘어가는가 하는 문제도 역시 아직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다만 잊어서는 안될것은 새로 형성된 자본과 함께 최초의 자본도 계속 자기를 재생산하고 잉여가치를 생산한다는것과 축적된 모든 자본과 그것이 창조하는 추가자본의 관계도 역시 그렇게 말할수 있다는것이다.

최초의 자본은 10,000파운드를 선대함으로써 형성되였다. 그 소유자는 이것을 어디에서 얻었는가? 그것은 그자신의 로동과 그의 선조들의 로동에 의하여 얻었다라고 정치경제학의 대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답변하고있다.(21c) 또 그들의 이러한 가정은 사실 상품생산의 법칙에 부합되는 유일한것으로 보인다.

2,000파운드의 추가자본에 관해서는 사태가 전혀 다르다. 그 발생과정은 우리가 아주 똑똑하게 알고있다. 이것은

(21c) 《그의 자본을 발생케 한 최초의 로동》(씨스몽디 《정치경제학의 새 원리》, 빠리판, 제1권, 109페지.)

자본화된 잉여가치이다. 거기에는 애당초부터 남의 부지불로동에 유래하지 않는 가치란 하나도 포함되여있지 않다. 추가로동력이 합체되는 생산수단과 이 로동력을 유지하는 생활수단은 잉여생산물의 불가결의 구성부분 즉 자본가계급이 로동자계급에게서 매년 탈취하는 공물의 불가결의 구성부분에 불과하다. 자본가계급이 이 공물의 일부분으로 추가로동력을 사들일 경우에는 지어는 완전한 가격으로 사들인다 하더라도 즉 등가물과 등가물을 교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역시 피정복자에게서 략취한 화폐로써 피정복자의 상품을 구매하는 정복자의 낡은 방식인것이다.

만일 추가자본이 그 추가자본자신을 생산한 그 로동자를 고용한다면 이 로동자는 우선 최초의 자본을 계속 가치증식시켜야 하며 또 그의 이전의 로동의 생산물을 그 생산에 들인것보다 더 많은 로동으로써 도로 구입해야 한다. 이것을 자본가계급과 로동자계급간의 거래로서 본다면 이제까지 고용된 로동자의 부지불로동으로써 추가로동자들이 사용된다고 하여도 문제의 본질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자본가는 아마 추가자본을 기계로 전화시켜 이 추가자본의 생산자를 가두에 내쫓고 그대신 몇명의 아동들을 사용하는 일도 있을수 있을것이다. 어쨌든 로동자계급은 자기의 금년의 잉여로동으로써 래년도에 추가로동을 사용할 자본을 창조한것이다.(22) 이것이 소위 《자본으로 자본을 낳는다.》[①]는것이다.

제1의 추가자본 2,000파운드의 축적의 전제로 된것은 자본가가 선대하였고 그의 《최초의 로동》으로 말미암아 그

(22) 《자본이 로동을 사용하기전에 로동이 자본을 창조한다.》(E. G. 웨익필드 《영국과 미국》, 1833년 런던판, 제2권, 110페지)

① 이 책 181페지를 보라. —편집자

에게 속하는 10,000파운드라는 가치액이였다. 한편 제2의 추가자본 400파운드의 전체로 되고있는것은 제1의 추가자본 2,000파운드의 선행된 축적에 불과하며 400파운드는 곧 이 2,000파운드의 자본화된 잉여가치인것이다. 과거의 부지불로동의 소유가 이제는 더욱더 증대되여가는 규모의 산부지불로동의 취득을 위한 유일한 조건이다. 자본가가 이미 축적한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는 보다 더 많이 축적할수 있다.

제1의 추가자본을 이루는 잉여가치가 최초의 자본의 일부분으로 로동력을 구매한 결과인 한—그런데 이 구매는 상품교환의 법칙에 부합되며 또 법률적으로 보면 로동자는 자기자신의 능력을, 화폐 또는 상품의 소유자는 그에게 속하고 있는 가치를 자유롭게 처리하는것을 전제로 할따름이다—또 제2의 추가자본 등등이 다만 제1의 추가자본의 결과이며 따라서 그 최초의 관계의 결과인 한, 그리고 또 매개의 거래가 번번이 상품교환의 법칙에 완전히 부합되게 수행되는 한 즉 자본가는 항상 로동력을 구매하고 로동자는 항상 로동력을 판매하는 한—그 판매가 로동력의 현실적가치에 의한 판매라고 가정할수도 있다—상품생산과 상품류통에 기초한 취득의 법칙 또는 사적소유의 법칙은 이 법칙자체의 내부적인 불가피한 변증법에 의하여 그 직접적대립물로 전화한다는것은 명백하다. 최초의 행위로서 나타난 등가물들간의 교환은 일변하여 다만 외관상의 교환으로만 된다. 왜냐 하면 첫째로, 로동력과 교환된 자본부분자체는 등가물을 줌이 없이 취득한 남의 로동의 생산물의 일부분에 불과한것이며 둘째로, 이 자본부분은 그 생산자인 로동자가 보상하여야 할뿐만아니라 새로운 잉여물을 첨가하여 보상하여야 하기때문이다. 이와 같이 자본가와 로동자간의 교환관계는 류통과정에 속하는 외관

에 불과하며 그 내용자체와는 관계없고 오히려 내용을 신비화할뿐인 단순한 형식으로 될뿐이다. 로동력의 부단한 매매는 형식이다. 그 내용은 자본가가 등가물을 줌이 없이 부단히 취득하는 이미 대상화된 타인의 로동의 일부를 보다 많은 량의 타인의 산로동과 부단히 교환한다는데 있다. 최초에는 소유권은 자기의 로동에 기초한 권리인것 같이 우리앞에 나타났다. 적어도 이러한 가정을 인정하여야 하였다. 왜냐 하면 다만 동등한 권리를 가진 상품소유자들만이 대립하며 남의 상품을 취득하는 수단은 오직 자기자신의 상품을 양도하는것뿐인데 이 자기자신의 상품은 로동에 의해서만 창조될수 있는것이기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소유권이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남의 부지불로동 또는 그 생산물을 취득하는 권리로 나타나며 로동자에게 있어서는 자기자신의 생산물을 취득할수 없는것으로 나타난다. 소유권과 로동의 분리는 외관상 이 량자의 동일성에서 출발한 법칙의 필연적결과로 된다.(23)

그리하여 자본주의적취득방식은 아무리 상품생산의 본래의 법칙들과 모순되는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이 취득방식은 결코 이 법칙들의 위반에서 나오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법칙들의 적용에서 나오는것이다. 자본주의적축적을 종점으로 하는 순차적인 일련의 운동단계들을 간단히 돌이켜보기만 하여도 이것은 다시금 명백하여질것이다.

처음에 우리가 본바와 같이 어떤 가치액의 자본으로의 최초의 전화는 완전히 교환의 법칙에 따라 수행되였다. 계약당사자 일방은 자기의 로동력을 팔고 다른 당사자는 그것을

(23) 남의 로동생산물에 대한 자본가의 소유는 《취득의 법칙의 엄혹한 결과이지만 그 법칙의 기본원칙은 도리여 자기자신의 로동생산물에 대한 매개 로동자의 배타적소유권이였다》.(쉐르벌리에 《부와 빈곤》, 1841년 빠리판, 58페지.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변증법적전화가 옳게 설명되여있지는 않다.)

산다. 전자는 자기 상품의 가치를 받으며 그리하여 그 상품의 사용가치 즉 로동을 후자에게 양도한다. 후자는 이미 그의 소유하에 있는 생산수단을 역시 그의 소유하에 있는 이 로동에 의하여 새로운 생산물로 전화시키는데 이 새로운 생산물도 역시 법률상 그의것이다.

이 생산물의 가치는 첫째로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를 포함한다. 유용로동은 생산수단의 가치를 새로운 생산물에 이전하지 않고서는 이 생산수단을 소비할수 없다. 그런데 로동력이 팔릴수 있는것으로 되려면 그것을 사용하게 될 공업부문에 유용로동을 제공할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생산물의 가치에는 또한 로동력의 가치의 등가와 잉여가치가 포함된다. 이것은 1일, 1주 등등의 일정한 기간 판매된 로동력의 가치가 같은 기간에 이 로동력의 사용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보다 적은 가치를 가지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로동자에게는 그의 로동력의 교환가치가 지불되였고 그리하여 그 사용가치가 양도되였는데 이 점은 다른 모든 매매에서와 마찬가지이다.

로동력이라는 특수한 상품이 로동을 제공하는, 따라서 또 가치를 창조하는 독특한 사용가치를 가지고있다는 사실은 결코 상품생산의 일반적법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로임으로 선대된 가치액이 생산물에 단순히 재현될뿐만아니라 잉여가치가 첨가되여 나타난다면 이것은 결코 판매자를 속이는데서 나오는것이 아니라—판매자는 그의 상품의 가치를 받았다—다만 구매자가 이 상품을 소비하는데서 나올뿐이다.

교환의 법칙은 서로 양도되는 상품들의 교환가치의 동등성만을 요구한다. 이 법칙은 처음부터 상품의 사용가치가 서로 다를것을 필요로 하는것이며 매매가 완전히 종결되고 완

성된 때에 비로소 시작되는 이러한 사용가치의 소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따라서 화폐의 자본으로의 최초의 전화는 상품생산의 경제법칙과 이 법칙에서 나오는 소유권에 가장 정확히 부합되여 수행되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화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1. 생산물은 자본가의것이지 로동자의것이 아니라는것.

2. 이 생산물의 가치에는 선대자본의 가치외에 또 잉여가치가 포함되여있으며 이 잉여가치에 로동자는 로동을 들였으나 자본가는 아무것도 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본가의 합법적소유물로 된다는것.

3. 로동자는 자기의 로동력을 유지하였으므로 구매자를 발견하기만 하면 그것을 다시 팔수 있다는것.

단순재생산은 오직 이 최초의 활동의 주기적반복일따름이다. 그때마다 화폐는 번번이 새로 자본으로 전화된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법칙은 위반되지 않고 반대로 그것이 부단히 작용할 기회를 얻게 될뿐이다.

《련이어 일어나는 많은 교환행위는 최후의 교환을 최초의 교환의 대표자로 만들었을뿐이다.》(씨스몽디 《정치경제학의 새 원리》, 제1권, 70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에서 본바와 같이 단순재생산은 이 최초의 활동을 고립된 과정으로서 고찰하는 한 최초의 활동에 전혀 다른 성격을 부여하기에 충분하다.

《국민소득이 차례지는 사람들사이에서 일방 (로동자들) 은 매년 새로운 로동에 의하여 국민소득에 대한 새로운 분배권을 얻으며 타방 (자본가들) 은 최초의 로동에 의하여 이미 이전에 그것에 대한 영원한 분배권을 얻었다.》(우와 같은 책, 110, 111페지)

다 아는바와 같이 로동의 령역은 장자상속권이 기적을

창조하는 유일한 령역이 아니다.

단순재생산이 확대된 규모의 재생산으로 즉 축적으로 교체되여도 사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전자의 경우에는 자본가는 잉여가치전부를 소비해버리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잉여가치의 일부만을 소비하고 나머지는 화폐로 전화시킴으로써 자기의 시민도덕을 표시한다.

잉여가치는 자본가의 소유물이며 다른 누구에게도 속한 일이 없었다. 자본가가 그것을 생산에 선대한다면 그가 처음에 시장에 나타난 날에 한바와 꼭 마찬가지로 자기자신의 재원에서 선대한다. 그의 재원이 이번에는 그의 로동자들의 부지불로동에서 나오고있다는 사실은 절대로 사태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 로동자 B는 로동자 A가 생산한 잉여가치로써 고용된다면 첫째로, A는 자기 상품의 정당한 가격을 한푼도 에누리없이 전부 받고 이 잉여가치를 제공하였으며 둘째로, 이 거래는 로동자 B에게는 결코 아무 관계가 없다. B가 요구하는것, 또 요구할 권리가 있는것이란 자본가가 그에게 그의 로동력의 가치를 지불하는것이다.

《그래도 량자는 다 리익을 보았다. 왜냐 하면 로동자는 그의 로동이 수행되기전에 (그의 로동이 열매를 맺기전에라고 말해야 할것이다.) 그의 로동의 (다른 로동자의 부지불로동이라고 말해야 할것이다.) 열매가 그에게 선대되였기때문이며 고용주는 이 로동자의 로동이 그의 임금보다도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있었기때문이다. (그의 임금보다도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였기때문이다라고 말해야 할것이다.)》(씨스몽디 《정치경제학의 새 원리》, 제1권, 135페지)

자본주의적생산을 그 갱신의 부단한 흐름에서 고찰하고 또 개별적자본가와 개별적로동자 대신에 그들의 총체 즉 자본가계급과 그에 대립하는 로동자계급을 고찰한다면 사태가 전혀 달라진다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상품생산과는 전혀 무관계한 규준을 적용하는것으로 될것이다.

상품생산에서는 오직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독립하여 대립할뿐이다. 그들간의 상호관계는 그들이 체결한 계약기일이 경과하면 끊어진다. 만약 거래가 다시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전의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새로운 계약에 의한것이며 그 새로운 계약에서 같은 구매자가 같은 판매자와 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우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상품생산 또는 상품생산에 속하는 과정을 상품생산자체의 경제법칙에 따라 판단하려면 매개 교환행위를 그 전후의 교환행위들과의 모든 련관을 떠나서 그자체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매는 다만 개별적개인들간에서만 진행되기때문에 거기에서 전체 사회계급들간의 관계를 찾는것은 허용될수 없다.

현재 기능하고있는 자본이 통과해온 주기적재생산과 그에 선행하는 축적의 계렬이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이 자본은 언제나 자기의 최초의 처녀성을 보존한다. 개별적으로 본 매개 교환행위에서 교환의 법칙이 준수되는 한 취득의 방식은 상품생산에 상응하는 소유권을 조금도 침범함이 없이 철저한 변혁을 일으킬수 있다. 이 동일한 소유권은 생산물이 생산자의것이고 또 생산자는 등가물과 등가물을 교환함으로써 자기 로동에 의해서만 치부를 할수 있는 최초의 시기에 유효한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시기에도 즉 사회적부가 점점 더 큰 정도로 부단히 새로 타인의 부지불로동을 취득할수 있는 지위에 있는자들의 소유로 되는 시기에도 유효한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로동자자신의 로동력을 상품으로서 자유로 팔게 되자 불가피한것으로 된다. 그러나 이 순간부터 비로소 상품생산은 보편화되며 전형적생산형태로 된다. 즉 이

때로부터 비로소 매개 생산물은 처음부터 판매를 위하여 생산되며 생산되는 부전체가 류통을 경유한다. 임금로동이 상품생산의 기초로 되는 때에 비로소 상품생산은 전체 사회에 강요된다. 그러나 그때에 비로소 상품생산은 그 숨어있는 잠재력을 전부 발휘할수 있다. 임금로동의 개입이 상품생산을 불순하게 한다고 말하는것은 상품생산이 불순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발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것과 같다. 상품생산이 그 자체의 내재적법칙에 따라 자본주의적생산으로 발전하면 할수록 그만큼 상품생산의 소유법칙도 역시 자본주의적취득의 법칙으로 변하여간다.(24)

이미 본바와 같이 단순재생산의 경우에도 모든 선대자본은 처음에 어떻게 얻었는가를 불문하고 축적된 자본으로 즉 자본화된 잉여가치로 전화된다.① 그러나 생산의 흐름에 있어서는 최초의 전체 선대자본은 직접 축적된 자본 즉 자본(이것이 그 축적자의 수중에서 기능하든 타인의 수중에서 기능하든간에)으로 재전화된 잉여가치 또는 잉여생산물과 비교하면 아주 보잘것없는(수학적의미에서의 무한소)것이다. 따라서 정치경제학은 일반적으로 자본을 가리켜 《잉여가치의 생산을 위하여 다시 사용될 축적된 부》(25)(전화된 잉여가치 또는 수입)라고 말하며 자본가를 《잉여생산물의 소유자》(26)

---

(24) 그렇기때문에 자본주의적소유에다 상품생산의 영원한 소유법칙을 대립시킴으로써 자본주의적소유를 폐지하려고 하는 쁘루동의 교활성에는 놀라지 않을수 없다!

(25) 《자본은 리윤을 얻기 위하여 사용되는 축적된 부이다.》(말사스 《정치경제학원리》〔262페지〕)《자본은…수입에서 절약된 그리고 리윤을 얻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로써 이루어진다.》(R. 죠운즈 《국민정치경제학교과서》, 1852년 허트포드판, 16페지)

(26) 《잉여생산물 또는 자본의 소유자》(《국민적곤난의 원인과 구제책. 죤 라슬경에게 보내는 편지》, 1821년 런던판〔4페지〕)

---

① 이 책 653~667페지를 보라. —편집자

라고 말한다. 현존하는 자본전체가 축적된 또는 자본화된 리자라고 보는 견해는 동일한 견해를 다른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을따름이다. 왜냐 하면 리자는 잉여가치의 한 부분에 불과하기때문이다.(27)

2.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에 관한 정치경제학상의 그릇된 견해

축적 또는 잉여가치의 자본으로의 재전화에 관한 약간의 더 상세한 규정으로 들어가기전에 고전정치경제학이 내놓은 모호한 관점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자본가가 자기자신의 소비를 위하여 잉여가치의 일부분을 가지고 구매하는 상품은 그의 생산수단이나 가치증식수단으로 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그가 자기의 자연적 및 사회적 욕망의 충족을 위하여 구매하는 로동도 생산적로동이 아니다. 그러한 상품과 로동을 구매하는것으로는 자본가는 잉여가치를 자본으로 전화시키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것을 수입으로서 소비하거나 지출한다. 헤겔이 옳게 말하고있는바와 같이 《지금 있는것을 소비해버리며》[409] 특히 몸종들을 사용하는 사치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는 옛귀족들의 사상과는 반대로 자산계급적경제학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것은 자본의 축적을 시민의 첫째가는 의무라고 선포하며 자기에게 드는 비용보다 많은것을 가져오는 생산적추가로동자들을 고용하는데 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지출할 대신에 자기 수입을

---

(27) 《자본은 저축된 자본의 모든 부분들에 대한 복리에 의하여 막대하게 증대하였으며 따라서 소득의 원천으로 되고있는 세계의 모든 부가 이미 오래전에 자본에 대한 리자로 되고있다.》 (런던 《경제학자》 지, 1851년 7월 19일부)

전부 먹어버려서는 축적할수 없다고 근기있게 설교하는것이였다. 다른 한편 자산계급적경제학은 자본주의적생산을 화폐축장과 혼동하는(28), 따라서 또 축적된 부라는것은 그 현물형태의 파괴 즉 소비에서 제외된, 지어 류통에서 제외된 부라고 간주하는 편견과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기실 화폐를 류통에서 제외하는것은 화폐를 자본으로서 증식시키는것과 정반대이며 화폐축장이라는 의미에서의 상품축적은 아주 어리석은 일일것이다.(28a) 대량의 상품축적은 류통의 정체 또는 과잉생산의 결과이다.(29) 확실히 일반사람들의 관념은 한편으로는 부자들의 소비기금으로서 축적된, 점점 소비되는 부의 형상에서 영향을 받으며 다른편으로는 모든 생산방식에 고유한 현상인 재고형성—이에 관해서는 류통과정을 분석할 때 다시 언급하려 한다—에서 영향을 받고있다.

따라서 고전경제학이 비생산적로동자가 아니라 생산적로동자가 잉여생산물을 소비하는것을 축적과정의 특징적계기로서 강조하고있는 점은 옳은것이다. 그러나 고전경제학의 오유도 여기에서 시작되고있다. A. 스미스는 축적을 단순히 생산적로동자에 의한 잉여생산물의 소비로서 설명하는것, 또는 잉여가치의 자본화를 로동력으로의 잉여가치의 단순한 전화

---

(28) 《오늘날의 어떤 정치경제학자도 저축을 단순한 화폐축장으로 해석할수는 없다. 그리고 이 협애하고 불충분한 방법을 도외시하면 국민의 부와 관련하여 사용될 경우에 저축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경우외에는 그 용법을 생각할수 없다. 즉 저축된것을 다양하게 사용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와 저축으로써 유지되는 각종 로동간의 현실적차이에 기초해서 사용될 경우가 그것이다.》 (말사스 《정치경제학원리》, 1836년 런던 제2판, 38~39페지)

(28a) 례컨대 온갖 종류의 탐욕을 철저히 연구한 발자끄가 그러했는데 그는 늙은 고리대금업자 고브쎄끄가 상품을 축적함으로써 축재하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벌써 로망기에 들어선것으로 묘사하고있다.

(29) 《자본의 축적…교환의 정체…과잉생산》 (Th. 코비트 《개인의 부의 원인과 그 취득방식에 관한 연구》, 104페지)

로서 설명하는것을 류행되게 하였다. 례컨대 리카도의 말을 들어보자.

《한 나라의 모든 생산물은 소비된다는것을 리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어떤 가치를 재생산하는 사람이 소비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가치를 재생산하지 않는 사람이 소비하느냐 하는 이 량자사이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차이가 있다. 우리가 수입이 저축되여 자본과 결합된다고 말할 때 이것은 수입중 자본에 첨가되였다고 하는 부분을 비생산적로동자가 아니라 생산적로동자가 소비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자본이 비소비에 의하여 증대된다고 가정하는것보다 더 큰 오유는 없다.》(30)

리카도와 그후의 모든 사람들도 A. 스미스의 뒤를 따라 《소득중 자본에 첨가되였다고 하는 부분을 생산적로동자가 소비한다.》고 되풀이하고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오유는 없다. 이러한 견해에 의한다면 자본으로 전화되는 잉여가치는 모두다 가변자본으로 될것이다. 그런것이 아니라 잉여가치도 최초에 선대된 가치와 마찬가지로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으로, 생산수단과 로동력으로 분할된다. 로동력은 가변자본이 생산과정에서 존재하는 형태이다. 이 과정에서 로동력자체는 자본가에 의하여 소비된다. 로동력은 자체의 기능—로동—에 의하여 생산수단을 소비한다. 동시에 로동력의 구매에 지출된 화폐는 생활수단으로 전화되는데 이 생활수단은 《생산적로동》이 소비하는것이 아니라 《생산적로동자》가 소비하는것이다. A. 스미스는 근본적으로 그릇된 자기의 분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엉터리없는 결론에 도달하고있다. 즉 매개 개별적자본은 불변적구성부분과 가변적구성부분으로 분할되나 사회적자본은 다만 가변자본으로만 분해된다는것이다. 바꾸어말하면 다만 임금지불에만 지출된다는것이다. 례컨대 라

(30) 리카도 《정치경제학 및 조세의 원리》, 163페지 주.

사공장주가 2,000파운드를 자본으로 전화시킨다고 하자. 그는 이 화폐의 일부분을 직포공의 고용에 지출하고 다른 부분을 털실, 모직기계 등등의 구입에 지출한다. 그런데 그에게 털실과 기계를 판매한 사람도 입수한 화폐의 일부분을 다시 로동에 지불하는 등등으로 결국 2,000파운드전부가 임금의 지불에 지출된다. 또는 2,000파운드가 대표하는 생산물전부를 생산적로동자가 소비한다. 보는바와 같이 이 론거의 전체 받침점은 《이와 같이 하여》라는 말 한마디에 있는데 이 말은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다닌다. 사실 A. 스미스는 바로 연구가 곤난하게 되기 시작한 곳에서 연구를 그만두고있다.(31)

년총생산기금만을 고찰하는 한 년재생산과정은 쉽게 리해할수 있다. 그러나 년생산의 모든 구성부분은 상품시장으로 투입되여야 하는데 곤난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개별적자본의 운동과 개인적수입의 운동은 교차되고 뒤섞이여 전반적 장소변동—사회적부의 류통—에서는 자취를 감추고마는데 이 장소변동이 사람들의 눈을 미혹시키고 우리의 연구에 극히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제기한다. 나는 제2권 제3편[411]에 가서 그 현실적련관을 분석할것이다. 중농학파들이 그들의 《경제표》[412]에서 처음으로 년생산의 형태를 그것이 류통에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표시하려 시도한것은 그들의 커다란 공적이다.(32)

---

(31) 죤 스튜어트 밀씨는 《론리학》[410]이란 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선행자들의 그릇된 분석을 즉 자산계급적시야의 범위내에서조차 순 전문적관점에서 시정해야 할 분석을 어디서나 발견하지 못하고있다. 그는 어디서나 서생다운 교조주의로써 자기 스승들의 사상적혼란을 기록하고있을뿐이다. 여기서도 역시 그러하다. 《자본자체는 결국 전부 임금으로 되며 생산물의 판매에 의하여 보상될 때에도 다시 임금으로 된다.》고 그는 말하고있다.

(32) A. 스미스는 재생산과정에 대한 설명에서는 따라서 또 축적에 대한 설명에서도 많은 점에서 자기의 선행자들 특히 중농학파들에 비하여 전진을 하고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명백히 후퇴하고있다. 본문에서 언급한 그의 착각에는 그가 정치경제학에 남긴 실로 황당한 교리도 관련되여있는데 그것은 상품의 가격이 로임과 리윤(리자)과 지대로

또한 정치경제학이 순생산물중 자본으로 전화되는 부분을 전부 로동자계급이 소비한다는 A. 스미스의 명제를 자본가계급을 위하여 리용하기를 등한히 하지 않았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3. 자본과 수입으로의 잉여가치의 분할. 절욕론

앞장에서는 잉여가치 또는 잉여생산물을 자본가의 개인적소비기금으로서만 고찰하였고① 이 장에서는 이제까지 그것을 축적기금으로서만 고찰하였다. 그러나 잉여가치는 전자만도 아니고 후자만도 아니며 동시에 량자를 겸한것이다. 잉여가치의 일부분은 자본가가 수입(33)으로서 소비하고 다른 부분은 자본으로서 사용한다. 즉 축적한다.

잉여가치의 량이 정해진 경우에는 이 두 부분중의 하나가 크면 클수록 다른 부분은 더욱 작아진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 분할의 비례가 축적의 크기를 규정한다. 그런데 이렇게 분할하는것은 잉여가치의 소유자 즉 자본가이다. 따라

써 즉 다만 로임과 잉여가치로써만 이루어진다는것이다. 이러한 기초로부터 출발하여 적어도 슈또르흐만은 다음과 같이 소박하게 고백하고있다. 즉 《필요가격을 그 가장 단순한 요소들로 분해하는것은 불가능하다.》(슈또르흐 《정치경제학강의》, 1815년 빼쩨르부르그판, 제2권, 141페지 주) 상품가격을 그 가장 단순한 요소들로 분해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니 이 얼마나 훌륭한 경제학인가! 이 점에 관해서는 제2권 제3편과 제3권 제7편에서 보다 상세히 언급할것이다.

(33) 수입 (Revenue) 이라는 용어가 두가지 의미로 사용되고있다는것을 독자는 깨달을것이다. 즉 그것은 첫째로, 잉여가치를 즉 자본에서 주기적으로 나오는 열매를 의미하며 둘째로, 이 열매중에서 자본가가 주기적으로 소비하는 또는 그의 소비기금에 들어가는 부분을 의미한다. 나는 이 두가지 의미를 다 포함시켜 사용하려 한다. 그것은 영국과 프랑스의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부합되기때문이다.

---

① 이 책 653~661페지를 보라. —편집자

서 이 분할은 그의 의사행위이다. 그가 모은 공물중에서 그가 축적하는 부분에 관하여 사람들은 그가 그것을 절약하였다고 말한다. 왜냐 하면 그는 그것을 먹어버린것이 아니기때문이라는것이다. 즉 그는 자본가로서의 자기의 기능, 자기치부의 기능을 수행하고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자본가는 인격화된 자본인 한에 있어서만 력사적가치와 력사적존재권 즉 재치있는 리흐놉스키가 말한바와 같은 《여하한 날자도 없는》[413] 력사적존재권을 가지고있다. 그런 한에 있어서만 그자신의 일시적필연성이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일시적필연성에 포함된다. 그러나 그런 한에 있어서는 또 사용가치와 향락이 아니라 교환가치와 그 증식이 그의 추진적 동기로 된다. 그는 가치증식의 광신자로서 꺼리낌없이 인류를 강요하여 생산을 위한 생산을 하게 하며 따라서 사회적생산력을 발전시키며 또 매개인의 완전하고도 자유로운 발전을 그 기본원칙으로 하는 보다 높은 사회형태의 유일한 현실적 기초로 될수 있는 물질적생산조건들을 창조하게 한다. 자본의 인격화로서만 자본가는 존경을 받는다. 자본가는 그러한 것으로서 화폐축장자와 같이 절대적인 치부욕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화폐축장자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열광이였던것이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사회적기구—여기서 자본가는 한개 동륜에 불과하다—의 작용으로 나타난다. 뿐만아니라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은 공업기업에 투하된 자본의 부단한 장성을 필연적인것으로 만들며 그리고 경쟁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내재적법칙을 외적강제적법칙으로서 매개 자본가에게 강요한다. 경쟁은 자본가로 하여금 자기의 자본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부단히 확대하지 않을수 없게 하는데 그는 루진적축적에 의해서만 자기의 자본을 확대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자본가의 일체 행동은 오직 그를 통하여 의사와 의식을 부여받은 자본의 기능에 불과한것인것만큼 그자신의 사적소비는 그에게는 그의 자본의 축적에 대한 략탈로 된다. 그것은 마치도 이딸리아식부기에서는 자본가의 사적지출의 자본에 대한 그의 부방에 기입되는것과 같다. 축적은 사회적부의 세계의 정복이다. 그것은 착취당하는 인간재료의 량을 확대함과 동시에 자본가의 직접적 및 간접적 지배를 확대한다.(34)

---

(34) 루테르는 비록 부단히 반복하여 나타나기는 하지만 옛모습 그대로의 자본가형태인 고리대금업자를 례로 들어 지배욕을 치부욕의 한 요소로서 대단히 훌륭하게 묘사하고있다. 《이교도는 리성에 의하여 고리대금업자들이 4중의 도적이며 살인자라는 결론에 도달할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는 그들을 숭배하다못해 그들의 돈을 위하여 기도를 드릴 지경이다.…남의 먹을것을 빨아내고 훔치고 략탈하는자는 사람을 굶주리게 하여 멸망케 하는것과 동일한 큰 살인죄(그가 죽일수 있는한)를 범하는것이다. 그런데 고리대금업자는 그런 죄를 범하고도 편안히 안락의자에 앉아있지만 오히려 그를 교수대에 달아놓고 그가 훔친 굴덴화만한 수의 까마귀들이 달라붙어 그를 쪼아먹도록—다만 그만한 수의 까마귀들이 몸을 찢어 한몫씩을 가질만큼 그에게 살이 있기만 하다면—만드는것이 좋을것이다. 그런데 좀도적들이 교수형을 당하고있다.…좀도적들은 발에 족쇄를 차고있는데 큰도적들은 황금과 비단으로 몸을 휘감고있다.…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수전노와 고리대금업자보다 더 큰(악마다음에 가는) 인류의 적은 없다. 그것은 그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하느님이 되려 하기때문이다. 토이기인과 무사와 폭군들도 악인임에 틀림없으나 그들은 그래도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을수 없으며 자기들이 악인이며 적이라는 것을 자인하지 않을수 없다. 그들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동정하기도 하며 또 실제로 동정하지 않을수 없다. 그런데 고리대금업자와 수전노는 그가 할수 있는 한 전 세계를 자기를 위해서 기갈과 비애와 재난으로 하여 멸망케 하려 하며 자기에게, 오직 자기 한 사람에게만 모든것이 있고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에게서 받듯이 자기에게서 받으며 영원히 자기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그는 좋은 의복을 입고 황금고리와 가락지로 몸을 장식하고 입을 씻어 성실하며 경건한 인간으로 보이며 찬양을 받으려 한다.…고리대금업자는 모든것을 집어삼키는 이리와 같은 굉장한 괴물로서 카쿠스나 게뤼온이나 안타이오스보다도 지독하다. 그러나 그는 그렇듯이 꾸며 경건한체하기때문에 그가 자기의 소굴에 뒤걸음으로 끌어들인 황소들이 어데 갔는가를 사람들은 알수가 없다. 그러나 헤라클라스는 황소들과 포로된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절벽과 바위사이에서도 카쿠스를 찾아내여 황소들을 악당으로부터 다시 해방하고야말것이다. 카쿠스라는것은 경건한 고리대금업자로서 도적질하며 강탈하며 모든것을 집어삼키는 악당인것이다. 그래도 그는 나쁜짓이란 한번도 한 일이 없다고 하며 누구도 그것을 찾아낼수 없을것이라고 생각하고있다. 왜냐 하면 그가 뒤걸음질로 자기의 소굴에 끌어들인 황소는 그 발자국으로 보아 밖으로 내보낸것 같이 보이기때문이다. 이와 같이 고리대금업자는 그가 세상에 리익을 주며 황소를 주

그러나 원죄는 도처에서 작용하고있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발전하고 축적과 부가 증대됨에 따라 자본가는 자본의 단순한 화신이 아니게 된다. 그는 자기자신의 아담①에 대하여 《인간의 동정감》[414]을 느끼고 금욕주의에 빠지는것을 고루한 화폐축장자의 편견으로서 조소하도록 교육된다. 고전적인 자본가는 개인적소비를 자기의 직분을 어기는 죄악으로서, 축적의 《절제》로서 락인을 찍는데 현대화한 자본가는 축적을 그의 향락욕의 《금욕》이라고 볼수 있게 되였다. 《오! 그의 가슴에는 서로 떨어지고저 하는 두개의 령혼이 깃들어있다!》[415]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력사적초기—벼락부자가 된 매개 자본가는 이 력사적단계를 개별적으로 통과하고있다—에는 치부욕과 탐욕이 절대적욕망으로서 지배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생산의 진보는 다만 향락의 세계만을 창조한것은 아니다. 그것은 투기와 신용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벼락치부의 무수한 원천을 개발한다. 일정한 발전정도에 이르면 보통의 랑비는 부의 과시인 동시에 또 신용획득의 수단으로서 《불행한》 자본가의 영업상 필요로까지 된다. 사치는 자본의 교제비에 포함된다. 그뿐만아니라 자본가는 화폐축장자에게 있어서처럼 자기의 개인적로동이나 자기의 개인적소비의 절약에 비례하여 부유해지는것이 아니라 그가 남의 로동력을 얼마나 짜내며 또 로동자에게 모든 생활상 쾌락의 억제를 얼마나 강요하는가에 비례하여 부유해진다. 따라서 자본가의 랑비는 방탕한 봉건령주의 랑비가 가지는 솔직한 성격을 가져본적이

는듯이 사람들을 속이려 하지만 실은 황소를 탈취하여 저 혼자서 삼켜버리는것이다.…로상강도와 살인자와 강도를 형거에 찢어죽이며 또 목을 베는 형벌에 처한다면 고리대금업자들은 더우기 형거에 사지를 찢어죽이며…추방하며 저주하며 목을 베야 할것이다.》(마르틴 루테르 《목사제씨에게, 고리대를 반대하여 설교하라》)

① 《아담》은 여기에서는 욕망과 정욕의 뜻도 포함하고있다. —편집쟈

없으며 도리여 그 배후에는 언제나 가장 더러운 탐욕과 가장 소심한 타산이 숨어있지만 그러나 자본가의 랑비는 그의 축적과 더불어, 그리고 결코 일방이 타방을 중단시킬 필요없이 증대한다. 그와 동시에 개별적자본가의 고상한 마음속에서는 축적욕과 향락욕사이에 파우스트적충돌이 전개된다.

1795년에 에이킨의사가 발표한 어떤 저서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만체스터공업은 4기로 구분할수 있다. 제1기에는 공장주들은 자기의 생계를 위하여 부지런히 로동하지 않을수 없었다.》

특히 그들은 자녀들을 도제로서 맡기고 전습을 위하여 다액의 지불을 하지 않을수 없었던—그런데도 도제들은 굶주렸다—부모들에게서 훔쳐서 치부를 하였다. 다른 한편 평균리윤이 낮았기때문에 축적은 대단한 절약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화폐축장자처럼 생활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본리자까지도 결코 소비하지 않았다.

《제2기에는 그들은 약간의 재산을 얻기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종전과 같이 부지런히 로동하였으며》,—왜냐 하면 노예감시자들이 다 알고있는 것처럼 로동을 직접 착취하는데는 로동이 들기때문이다—《또 종전과 같이 검박하게 생활하였다.…제3기에는 사치가 시작되였다. 그리고 영업은 왕국내의 모든 상업도시들로 주문을 받기 위하여 말탄 사람(말을 타고 주문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을 파견함으로써 확대되게 되였다. 1690년 이전에는 공업에서 획득한 자본으로서 3,000 내지 4,000파운드에 달한것은 극히 적었거나 전혀 없었던것 같다. 그러나 대략 이 시기에 또는 그보다 좀 늦어서 공업가들은 이미 화폐를 축적하였고 목조가옥이나 토벽집 대신에 석조가옥을 세우게 되였다.…18세기의 첫 수십년간에는 한핀트의 외국제포도주를 자기 손심들에게 대접한 만체스터의 한 공장주가 모든 이웃사람들에게서 혹평과 비난을 받는 대상으로 되였던것이다.》

기계가 나타나기전에는 공장주들이 저녁에 음식점에 모여서 소비한것이란 6펜스의 오색주 한잔과 1펜스의 담배 한

갑을 넘지 않았다. 1758년—이해는 획기적인 해이다—에 비로소 처음으로 《실지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자신의 마차를 가진 사람을 단 한명!》 볼수 있었다. 18세기의 마지막 30년대인 《제4기는 영업의 확대에 기인하는 대단한 사치와 랑비의 시기이다》.(35) 선량한 에이킨의사가 오늘날 만체스터에서 소생한다면 그는 무엇이라고 말할것인가!

축적하라, 축적하라! 이것이 모세이며 예언자들이다![416] 《근면은 물자를 제공하며 절약이 그것을 축적한다.》(36) 그러므로 절약하라, 절약하라 즉 잉여가치 또는 잉여생산물중 될수 있는대로 많은 부분을 자본으로 재전화하라! 축적을 위한 축적, 생산을 위한 생산, 이 공식으로 고전경제학은 자산계급시기의 력사적사명을 표현하였다. 고전경제학은 부의 출생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에 관해서는 한순간도 그릇되게 생각하지 않았다.(37) 그러나 력사적필연성을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고전경제학에 있어서는 무산자는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기계에 불과하다면 자본가도 역시 이 잉여가치를 추가자본으로 전화시키는 기계에 불과하다. 고전경제학은 자본가의 력사적기능을 가장 신중히 취급하고있다. 자본가의 가슴을 향락욕과 치부욕사이의 불행한 충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현세기 20년대초에 말사스는 다음과 같은 분업을 옹호하였다. 즉 축적이라는 사업은 현실적으로 생산에 종사하는 자본가가 담당하고 랑비라는 사업은 잉여가치의 분배에

(35) 에이킨의사 《만체스터주변 30~40마일의 지방지》, 1795년 런던판 181페지이하.

(36) A. 스미스 《제 국민의 부》, 제2권, 제3장.

(37) J. B. 쎄까지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부자들의 저축은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으로 하여 이루어지는것이다.》[417] 《로마의 무산자는 거의 전적으로 사회에 의거하여 생활하였다.…현대사회는 무산자에 의하여 즉 무산자의 로동보수에서 탈취하는 부분에 의하여 생활한다고 말할수도 있을것이다.》(씨스몽디 《정치경제학개론》, 제1권, 24페지)

참여하는 기타 사람들 즉 토지귀족, 국가와 교회의 수급자 등등이 담당한다는것이 그것이다. 《지출욕과 축적욕을 분리시키는것》(38)은 극히 중요한 일이라고 그는 말하고있다. 이미 오래전에 방탕아가 되고 사교가가 된 자본가 제씨는 부르짖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변자의 하나인 리카도학파의 한사람은 다음과 같이 절규한다. 말사스씨가 고률지대, 고률세금 등등을 설교하고있는것은 비생산적소비자들이 부단히 공업가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이다! 물론 생산, 부단히 확대된 규모에서의 생산—이것이 구호이기는 하나 그러나

《생산은 그러한 방도에 의해서는 촉진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된다. 또한 만일 그들에게 일을 시킨다면 그 성격으로 보아 일을 잘할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일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단지 다른 사람들을 편달하기 위하여 무위도식하게 하는것은 전혀 공정하지 않다.》(39)

그러나 그는 산업자본가의 국에서 기름을 빼냄으로써 산업자본가를 축적에 내모는것은 불공정하다고 보면서도 《로동자를 근면하게 만들기 위하여》 임금을 될수 있는대로 최저한에 국한시키는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있다. 그는 또한 리윤획득의 비밀은 부지불로동의 취득에 있다는것을 조금도 감추지 않고있다.

《로동자들의 수요의 증가라고 하는것은 자기자신의 생산물중에서 자기들은 보다 적은 몫을 차지하고 고용주에게는 보다 큰 몫을 제공하려 하는 그들의 의향을 의미할따름이다. 그리고 이것은 소비〔로동자들의 소비〕의 감소에 의하여 공급과잉〔시장의 공급과잉, 과잉생산〕이 일어난다고 말한다면 공급과잉이란 높은 리윤과 동의어라고 나는 대답할수 있을따름이다.》(40)

---

(38) 말사스 《정치경제학원리》, 325~326페지.

(39) 《최근 말사스씨가 주장하는 수요의 성질과 소비의 필요성에 관한 원리의 연구》, 67페지.

(40) 우와 같은 책, 59페지.

로동자들에게서 탈취한 획득물을 산업자본가와 놀고먹는 토지소유자 등등간에 어떻게 분배하면 축적에 제일 유리하겠는가 하는 학구적쟁론은 7월혁명[418]에 직면하여 잠잠해졌다. 그후 얼마 안가서 도시무산계급은 리옹에서 경종을 울렸으며 농촌무산계급은 영국에서 세찬 불길을 올렸다.[419] 해협의 이편에서는 오엔주의가 류행하였고 저편에서는 쌩-씨몽주의와 푸리에주의가 류행하였다. 속류경제학의 조종이 울려왔다. 만체스터에서 나싸우 W. 씨니어가 자본의 리윤(리자를 포함)은 지불되지 않은 《마지막 열두번째 로동시간》의 생산물①이라는것을 발견한 바로 1년전에 그는 다른 또 하나의 발견을 세상에 발표하였다. 그는 엄숙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생산도구로 간주되는 자본이라는 말 대신에 절욕이라는 말을 사용한다.》(41) 이것이야말로 속류경제학의 《발견》의 가장 훌륭한 견본이다! 속류경제학은 경제학범주를 아첨하는 어구로 바꾸어놓고있다. 이것이 전부이다. 씨니어는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미개인이 활을 만든다면 그는 공업에 종사하는것이지 절욕을 하는것은 아니다.》 이것은 초기의 사회상태하에서 로동수단이 어떻게 그리고 왜 자본가의

(41) 씨니어 《정치경제학기본원리》, 아리바베네 역, 1836년 빠리판, 309페지. 구고전학파의 지지자들로 보면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것이였다. 《씨니어씨는 로동과 자본이라는 표현을 로동과 절욕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놓고있다.…절욕은 단순한 부정이다. 리윤의 원천은 절욕이 아니라 생산적으로 사용되는 자본의 사용이다.》(죤 캐저노우브가 자신이 편찬한 말사스의 《정치경제학에서의 정의들》에 가한 주. 1853년 런던판, 130페지) 반대로 죤 스튜어트 밀씨는 한편으로는 리카도의 리윤리론을 베껴내고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씨니어의 《절욕의 보수》를 받아들이고있다. 그는 모든 변증법의 원천인 헤겔의 《모순》은 모르고있었으나 천박한 모순들에는 친근하다.

제2판에 대한 보충: 인간의 일체 행동은 그의 반대되는 행동의 《절욕》으로 볼수 있다는 단순한 사상이 속류경제학자의 머리속에는 없다. 먹는다는것은 단식의 절욕, 간다는것은 서있다는것의 절욕, 로동은 라태의 절욕, 라태는 로동의 절욕 등등이다. 이 제씨들은 《한정은 부정이다.》[420]라는 스삐노자의 말을 한번 생각해보는것이 좋을것이다.

① 이 책 258~259페지를 보라. —편집자

《절욕》 없이 만들어졌는가 하는것을 설명한다. 《사회가 진보하면 할수록 사회는 더욱더 절욕을 요구한다.》(42) 즉 타인의 로동 및 그 생산물의 취득을 업으로 삼는자들이 더욱더 절욕할것을 요구한다. 로동과정의 모든 조건은 이때로부터 자본가의 그만한 수량의 절욕행위로 전화한다. 곡물은 먹을 수 있을뿐만아니라 종자로서 파종하기도 하는것은 자본가의 절욕이다! 포도주가 일정한 발효시간을 요하는것도 자본가의 절욕이다!(43) 자본가가 《생산도구를 로동자에게 대여 (!) 》 한다면, 다시말하면 중기기관, 면화, 철도, 비료, 역축 등등을 먹어버리지 않고 또는 속류경제학자의 유치한 표현대로 하면 《그것들의 가치》를 사치품 기타의 소비수단으로 탕진하지 않고 그것들을 로동력에 합체시켜 자본으로서 증식시킨다면 자본가는 자기자신의 욕망을 탈취하는것이다.(44) 자본가계급이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게 되는가는 이제까지 속류경제학이 엄밀히 지켜온 비밀이다. 요컨대 세계는 오직 비쉬누신전의 현대적속죄자인 자본가의 자기고행에 의하여서만 생존하고있다는것만으로 충분하다.[227] 축적뿐만아니라 단순히 《자본의 유지를 위해서도 그것을 먹어버리려는 유혹에 대항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45) 그리하

---

(42) 씨니어 《정치경제학기본원리》, 342, 343페지.

(43) 《누구나…추가가치를 얻을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밀이나 포도주 또는 그것들의 등가물을 즉시로 소비하지 않고, 례컨대 밀을 파종하고 일년이나 땅속에 파묻어두거나 또는 포도주를 몇해나 움속에 두지 않을것이다.》(스크루프 《정치경제학원리》, A. 포터 편찬, 1841년 뉴욕판, 133페지[421])

(44) 《자본가가 자기의 생산수단의 가치를 소비품이나 사치품으로 전화함으로써 자기의 소비에 돌리지 않고 그 생산수단을 로동자에게 대여하는것이 곧 절제이다.》(G. 드 몰리나리 《경제학연구》, 36페지) 여기에서 《대여》라는 완곡한 표현은 속류경제학자들의 세련된 수법에 따라, 산업자본가의 착취를 받는 임금로동자와 대부자본가의 화폐를 리용하는 산업자본가자신과를 동일시하기 위하여 사용되고있다.

(45) 꾸르쎌-스뇌이 《공업, 상업, 농업, 기업의 리론과 실천개론 또는 실무편람》,

여 단순한 인간성이 이미 이와 같은 순교와 유혹으로부터 자본가가 해방될것을 분명히 요구하고있다. 그것은 마치도 노예제의 폐지[422]에 의하여 최근 죠지아의 노예소유자가 흑인노예들로부터 채찍으로 털어낸 잉여생산물의 전부를 샴팡술로 마셔버릴것인가 또는 그 일부분을 더 많은 흑인들과 토지로 재전화시킬것인가 하는 고통스러운 진퇴량난의 처지에서 해방된것과 마찬가지이다.

어떠한 각이한 경제적사회구성체에서나 단순재생산뿐만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이 진행된다. 더욱더 많이 생산되고 더욱더 많이 소비되며 따라서 더욱더 많이 생산물이 생산수단으로 전화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로동자의 생산수단, 따라서 그의 생산물 및 그의 생활수단이 아직 자본의 형태로 그와 대립하지 않는 동안은 자본의 축적으로서 나타나지 않으며 따라서 또 자본가의 기능으로서도 나타나지 않는다.(46) 수년전에 세상을 떠난 리처드 죠운즈—헤일리버리의 동인도대학 정치경제학강좌에 있었던 말사스의 후계자—는 이 점을 두개의 큰 사실에 의하여 잘 설명하고있다. 인도인민의 대부분은 자립적경영의 농민이므로, 그들의 생산물, 그들의 로동수단 및 생활수단은 결코 《타인의 수입에서 저축된, 따라서 선행축적과정을 경과한 재원의 형태로는》(47)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영국의

20페지.

(46) 《국민자본의 진보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특수한 부류의 소득은 그 발전단계가 다름에 따라 다르며 따라서 또 제 국가가 처해있는 진보정도여하에 따라 아주 다르다.…리윤은…사회의 초기단계들에서는 임금이나 지대에 비교하면 중요하지 않은 축적의 원천인것이…국민적로동의 힘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발전하였을 때 리윤은 축적의 원천으로서 비교적 중요한것으로 된다.》(리처드 죠운즈 《국민정치경제학교과서》, 16, 20~21페지)

(47) 우와 같은 책, 36페지이하.{제4판 주: 이것은 필경 잘못된것 같다. 이 구절의

지배에 의한 낡은 제도의 해체가 가장 적은 지방들에서는 비농업적로동자들이 직접 대령주들에게 고용되며 이러한 대령주들의 수중에는 농촌의 잉여생산물의 일부분이 공물 또는 지대의 형태로 들어간다. 이 잉여생산물의 일부분은 현물형태로 대령주들이 소비하고 다른 일부분은 로동자들이 령주들을 위한 사치품과 기타 소비수단으로 전화시키며 나머지부분은 자기의 로동도구의 소유자인 로동자들의 임금을 이룬다. 생산과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이 여기에서는 이 기묘한 성자이며 근심에 잠긴 기사①인 《금욕하는》 자본가의 아무런 개재 없이 진행된다.

4. 자본과 수입으로의 잉여가치의 분할비률과는 관계없이 축적의 규모를 규정하는 몇가지 사정. 로동력의 착취도. 로동의 생산력. 사용되는 자본과 소비되는 자본간의 차액의 증대. 선대자본의 크기

잉여가치가 자본과 수입으로 분할되는 비률이 주어져있다고 전제하면 축적되는 자본의 량은 분명히 잉여가치의 절대량에 의하여 결정된다. 80%가 자본화되고 20%가 소비된다고 가정하면 축적되는 자본은 잉여가치의 총액이 3,000파운드이냐, 1,500파운드이냐에 따라 2,400파운드가 되든가 또는 1,200파운드가 될것이다. 그러므로 축적의 크기를 규정하

출처는 아직 찾아내지 못하였다. —F. E.[49]}

① 돈 끼호떼를 말한다. —편집자

는데는 잉여가치량을 규정하는 모든 사정들이 다같이 작용한다. 이 사정들이 축적과 관련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한에서만 그것들을 여기에서 다시한번 총괄하려 한다.

우리가 기억하고있는바와 같이 잉여가치률은 무엇보다도 로동력의 착취도①에 의하여 결정된다. 정치경제학은 이 착취도의 역할을 대단히 중요시하여 왕왕 로동생산력의 제고에 의한 축적의 촉진을 로동자의 착취의 강화에 의한 축적의 촉진과 동일시한다.(48) 잉여가치의 생산에 관한 편들에서 우리는 언제나 로임은 적어도 로동력의 가치와 같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실지의 운동에 있어서는 이 가치이하로의 로임의 강제적인하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놀기때문에 간단히나마 이 문제에 언급하지 않을수 없다. 일정한 한계내에서는 그러한 로임인하는 사실상 로동자의 필요소비기금을 자본의 축적기금으로 전화시키는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로임에는 생산력이 없다. 그것은 하나의 생산력의 가격이다. 로임은 기계의 가격이 기계자체와 함께 상품생산에 기여하지 않는것과 마찬가지로 로동자체와 함께 상품생산에 기여하는것은 아니다. 로동이 구매없이 획득될수 있다면 로임은 불필요할것이다.》(49)

---

(48) 《리카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사회발전의 단계가 다름에 따라 자본의 축적 또는 로동의 사용을 위한 (즉 착취를 위한) 수단의 축적은 보다 빠르든가 또는 늦을수 있는데 그 어느 경우에나 로동생산력에 의존하지 않을수 없다. 로동생산력은 일반적으로 비옥한 토지가 많이 있는 곳에서 가장 크다.〉 여기서 로동생산력이라는 말이 매개 생산물중 그것을 자기의 로동으로써 생산하는 사람들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보잘것없다는것을 의미한다면 리카도의 이 주장은 동의반복이다. 왜냐 하면 나머지 부분은 물론 그것에 의하여—그 소유자가 원한다면—자본이 축적될수 있는 재원이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토지가 가장 비옥한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정치경제학상의 약간의 용어와 관련된 론쟁에 대한 고찰》, 74페지)

(49) J. St. 밀 《정치경제학의 약간의 미해결문제에 관한 론술》, 1844년 런던판, 90, 91페지.

---

① 이 책 352~354페지를 보라. —편집자

그러나 로동자들이 공기를 마시고 살수 있다면 어떤 가격을 주고도 그들을 고용할수 없을것이다. 따라서 로동자의 무상로동이란 수학적의미에서의 극한인바 부단히 접근할수는 있으나 결코 도달할수는 없는것이다. 로동자들을 이와 같은 무의 수준에까지 떨어뜨리는것이 자본의 부단한 경향이다. 내가 종종 인용하고있는 18세기의 저술가인 《산업 및 상업에 관한 론술》의 저자①는 영국의 로임을 프랑스나 화란의 수준에까지 떨어뜨리는것이 영국의 력사적인 중대한 사명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영국자본의 령혼깊이 숨어있는 비밀을 토로하였을따름이다.(50) 특히 그는 순진하게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만일 우리 빈민들〔로동자들을 의미하는 술어〕이 사치스럽게 살려고 한다면…그들의 로동은 물론 값이 비싸게 되지 않을수 없다.… 우리의 제조공업로동자들이 브란데, 진, 차, 사탕, 외국에서 나는 과실, 강한 맥주, 날염직, 코담배, 담배 등등과 같은것들을 소비하게 될 때 그 엄청난 사치품을 생각만 해도 몸서리친다.》(51)

저자는 경건하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다음과 같이 개탄하고있는 노쌤프톤셔의 어떤 공장주의 글을 인용하고있다.

《프랑스에서는 영국에서보다 로동이 3분의 1이나 값싸다. 그것은 프랑스의 빈민들이 심한 로동을 하며 또 먹고입는데서 곤난하게 살아가기때문이다. 그들이 주로 먹는것은 빵, 과실, 야채, 근채, 건어 등이

---

(50)《산업 및 상업에 관한 론술》, 1770년 런던판, 43, 44페지. 1866년 12월과 1867년 1월의 《타임스》지도 그와 비슷하게 영국광산점유자들의 심정을 게재하였는데 거기에는 《고용주》를 위하여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이상의것을 바라지도 않으며 또 받지도 않는 벨지끄광산로동자들의 행복한 상태가 서술되여있었다. 벨지끄로동자들은 많은 고통을 꾹 참고있는데 《타임스》지에서는 모범로동자로서 묘사하고있는것이다! 1867년 2월초에 벨지끄광산로동자들의(마르시엔느에서의) 파업—이 파업은 탄환과 화약에 의하여 탄압되였지만—이 그에 대한 대답이였다.[423]

(51)《산업 및 상업에 관한 론술》, 1770년 런던판, 44, 46페지.

① J. 켄니안을 말한다. —편집자

기때문이다. 그들이 고기를 먹는 일은 아주 드물며 밀값이 비쌀 때에는 빵도 아주 적게 먹는다.》(52) 이 저자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뿐만아니라 그들이 마시는것은 물과 그와 류사한 약한 술이며 따라서 그들은 사실 놀랄만큼 돈을 적게 쓴다.…이렇게 되기는 물론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왜냐 하면 프랑스에도 화란에도 그러한 사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적절하게 증명하고있기때문이다.》(53)

20년후에 미국의 사기군이며 귀족칭호를 받은 미국인 벤져민 톰프슨(별명 람퍼드백작)은 동일한 박애주의의 로선을 발전시켜 신과 인간의 커다란 만족을 가져왔다. 그의 《론문집》은 로동자들의 값비싼 보통주식을 값싼 대용품으로 대신할 각종 료리법으로 가득차있는 료리전서이다. 이 비범한 《철학자》의 특히 성공한 료리법의 하나를 들면 다음과 같다.

《보리 5폰드, 강냉이 5폰드, 3펜스의 청어, 1펜스의 소금, 1펜스의 초, 2펜스의 후추와 남새, 도합 $20\frac{3}{4}$펜스로 64명분의 국을 만들수 있다. 그런데 곡물의 평균가격으로 하면 이 비용은 1명당 $\frac{1}{4}$펜스로 내릴수 있다.》(54)

---

(52) 노셈프톤셔의 이 공장주가 품고있는 심중의 고민을 고려한다면 용서해줄수도 있는 일이지만 여기서 그는 경건한 기만을 하고있는것이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의 제조공업로동자들의 생활을 비교하고있다고 말하면서 우에 인용한 말로써는, 그자신도 후에 고백하고있는바와 같이 프랑스의 농업로동자들의 생활을 서술하고있는것이다!

(53) 《산업 및 상업에 관한 론술》, 1770년 런던판, 70~71페지. 제3판 주: 그때로부터 일어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으로 하여 오늘 우리는 상당한 전진을 하였다. 의원 스테이플턴은 그의 선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만약 중국이 대공업국으로 된다면 나는 구라파의 로동인구가 그 경쟁자들의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서 어떻게 그들과의 투쟁에 견디여낼수 있을는지 모르겠다.》(1873년 9월 3일부 《타임스》)—이제는 벌써 대륙의 로임이 아니라 중국의 로임이 영국자본의 갈망하는 목표로 되고있다.

(54) 벤져민 톰프슨 《정치, 경제, 철학, 론문집》(전 3권) 1796~1802년 런던판, 제1권, 294페지. F. M. 이든경은 자기의 저서 《빈민의 상태 또는 정복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영국근로계급의 력사》에서 빈민구제원 관리자들에게 람퍼드식의 거지국을 극력 권고하고있으며 잉글랜드의 로동자들에게 책망하는 어조로 다음과 같이 훈계하고있다. 《스코틀랜드에는 수개월동안 밀이나 쌀보리나 고기를 맛보지 못하고 다만 물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에 따라 상품의 위조는 톰프슨의 리상을 쓸데없는것으로 만들었다.(55)

18세기말과 19세기 첫 수십년간에 잉들랜드의 차지농업가들과 지주는 농업날품팔이군들에게 로임의 형태로는 생계에 필요한 최저한 이하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교구부조금의 형태로 지불함으로써 절대적최저임금을 강제할수 있었다. 당시 잉글랜드의 도그베리들이 임금률을 《합법적으로》 제정할 때의 웃음거리의 일례는 다음과 같다.

《1795년 시골지주들이 스피냄란드에서의 로임을 제정하고있을 때 그들은 이미 점심을 먹었지만 그들이 로동자들에게 있어서는 점심같은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것은 분명하다.…그들은 8폰드 11온스의 빵 한덩어리 값이 1실링일 때에는 남성 1명의 주임금은 3실링으로 하고 빵 한덩어리 값이 1실링 5펜스에 달할 때까지는 남성 1인당로임을 일정하게 높이기로 결정하였다. 빵값이 그 이상으로 오르면 임금은 빵 한덩어리 값이 2실링에 달할 때까지 비률적으로 대리기로 되였다. 그리고 이 경우에 남성 1명의 음식물을 이전보다 $\frac{1}{5}$ 감소시키기로 하였다.》(56)

대차지농업가이며 치안판사이며 빈민구제원 관리자이며

과 소금을 섞은 귀밀가루와 보리가루를 먹으면서도 대단히 안락하게 살고있는 가족들이 많다.》(우와 같은 책, 제1권, 제2편, 제2장, 503페지) 비슷한 《지시》는 19세기에도 있었다. 례컨대 《잉글랜드의 농업로동자들은 품위가 낮은 곡물의 혼합물을 먹으려 하지 않는다. 교육이 보다 잘된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러한 편견은 없는듯하다.》(의학박사 찰즈 H. 패리 《농업로동자, 소작농, 토지소유자 및 국가의 견지에서 본 현행곡물법의 필요성문제》, 1816년 런던판, 68~69페지) 그런데 이 패리는 잉글랜드의 로동자가 현재(1815년) 이든의 시대(1797)에 비하여 심히 령락했다고 한탄하고있다.

(55) 생활수단의 위조에 관한 최근의 의회조사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의약품들의 위조도 영국에서는 례외가 아니고 상례로 되여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례컨대 런던의 34개소의 약국들에서 산 아편견본 34개를 시험한 결과 31개는 양귀비꼬투리, 밀가루, 고무, 진흙, 모래 등등이 섞여있다는것이 발견되였다. 모르핀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것도 많았다.

(56) G. L. 뉴넘(법정변호사), 《곡물법에 관한 의회량원위원회에서의 증언의 검토》, 1815년 런던판, 20페지 주.

임금조정위원인 A. 벤네트라는자가 1814년에 상원조사위원회앞에서 심문을 받았다.

《로동자의 일로동의 가치와 교구의 구제금간에 그 어떤 비률이 있는가?》 이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그렇다. 매 가족의 매주 수입은 그의 명목임금을 초과하여 일인당 한갤론의 빵(8폰드 11온스)과 3펜스까지 받고있다.…1인당 한갤론의 빵이면 가족의 매개 성원이 1주일동안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한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3펜스는 의복용으로 주는것인데 만약 교구에서 직접 의복을 내줄 경우에는 이 3펜스는 주지 않는다. 이러한 관례는 윌트셔의 서부일대에서만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아마 전국에서 실행되고있는것 같다.》(57)

당시의 어떤 자산계급저술가는 다음과 같이 부르짖고있다.

《그와 같이 차지농업가들은 수년동안이나 동포중의 이 존경할만한 계급을 타락시켜 빈민구제원으로 찾아가지 않을수 없게 강제하고있다.…차지농업가는 로동자들의 가장 필수적인 소비기금의 축적조차도 방해함으로써 자기자신의 수입을 증대시켰다.》(58)

오늘날 로동자의 필요소비기금의 직접적략탈이 잉여가치의 형성에서, 따라서 또한 자본의 축적기금의 형성에서 어떠한 역할을 노는가 하는것은 레컨대 소위 가내로동(제13장 제8절 d①를 참조하라.)에서 이미 보여주었다. 더 상세한 사실들은 이 편에서 앞으로 보게 될것이다.

어느 산업부문에서나 로동수단으로써 이루어지는 불변자본부분은 설비규모에 의하여 규정되는 일정한 수의 로동자들을 사용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57) 《곡물법에 관한 의회량원위원회에서의 증언의 검토》, 19~20페지.

(58) 찰즈 H. 패리 《농업로동자, 소작농, 토지소유자 및 국가의 견지에서 본 현행 곡물법의 필요성 문제》, 77, 69페지. 지주 제씨는 그들이 영국의 이름으로 진행한 반자꼬빙전쟁[403]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 받았을뿐만아니라 막대한 치부를 하였다. 《그들의 지대는 18년간에 2배, 3배, 4배로 되였고 례외적으로는 6배로도 되였다.》 (우와 같은 책, 100~101페지)

① 이 책 536~540페지를 보라. 一편집자

사용하는 로동량에 비례하여 증대되여야 하는것은 아니다. 어떤 공장에서 100명의 로동자가 8시간로동으로 800로동시간을 제공한다고 하자. 만약 자본가가 이 로동시간수를 절반 증대시키려고 하면 그는 50명의 새 로동자를 고용하면 될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그는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뿐만아니라 로동수단을 구입하기 위해서도 새 자본을 선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는 원래의 100명의 로동자를 8시간이 아니라 12시간로동을 시켜도 되는데 그러면 그는 현존로동수단을 가지고서도 충분하며 다만 그 로동수단이 보다 급속히 마멸될따름이다. 그리하여 로동력을 더욱 긴장시킴으로써 획득한 추가로동은 불변자본의 비례적증대 없이 잉여생산물과 잉여가치 즉 축적의 실체를 증대시킬수 있다.

채취공업, 례컨대 광업에서는 원료는 선대자본의 구성부분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로동대상은 과거로동의 생산물이 아니라 자연이 무상으로 제공한것이다. 금속광, 광물, 석탄, 석재 등등이 그러하다. 여기에서는 불변자본은 거의 로동수단으로써만 이루어지며 이 로동수단은 증대된 로동량(례컨대 로동자들의 주야교대제에 의하여)을 아주 훌륭하게 사용할수 있다. 그러나 기타 조건이 같다면 생산물의 량과 가치는 사용된 로동량에 정비례하여 증대한다. 여기에서는 생산의 첫날에서와 같이 본원적인 생산물형성자이며 따라서 또 자본의 소재적요소들의 형성자인 인간과 자연이 협력하는것이다. 로동력은 신축성이 있기때문에 축적의 령역은 불변자본의 사전의 증대 없이도 확대된다.

농업에서는 종자와 비료의 추가분의 선대가 없이는 경지를 확대할수 없다. 그러나 일단 선대되면 토지의 순 기계적인 경작이라도 생산물의 대량증가에 기적적인 작용을 한다.

그리하여 종래와 같은 수의 로동자가 보다 많은 량의 로동을 한다면 로동수단의 새로운 선대가 없이도 토지의 비옥도를 높일수 있다. 이것이 또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직접적작용인데 이 작용은 새 자본의 개입이 없이 축적증대의 직접적원천으로 된다.

끝으로 본래의 공업에서는 로동의 추가지출은 언제나 그에 상응한 원료의 추가지출을 전제로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로동수단의 추가지출을 필요로 하는것은 아니다. 그리고 채취공업과 농업은 가공공업에 그자체의 원료와 그 로동수단의 원료를 제공하므로 채취공업과 농업이 추가적자본보급이 없이 생산하는 추가생산물은 가공공업에도 유리하다.

일반적결론은 다음과 같다. 자본은 부의 두 본원적형성자인 로동력과 토지를 자체에 합체시킴으로써 팽창력을 획득하는데 이 팽창력에 의해서 자본은 외관상 그자체의 크기에 의하여 규정되는 한계를 넘어서 즉 자본이 거기에 존재하는 이미 생산된 생산수단의 가치와 량에 의하여 규정되는 한계를 넘어서 자체의 축적요소들을 확대할수 있다.

자본축적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사회적로동의 생산성의 수준이다.

로동생산력의 증대에 따라 일정한 가치, 따라서 또한 일정한 량의 잉여가치가 표시되는 생산물량도 증대한다. 잉여가치률이 같은 경우에는 또는 그것이 저하되여도 로동생산력의 제고보다 완만하게 저하된다면 잉여생산물량은 증대한다. 그러므로 수입과 추가자본으로의 잉여생산물의 분할비률이 여전할 경우에 자본가의 소비는 축적기금이 감소됨이 없이 증대할수 있다. 축적기금의 상대적크기는 소비기금을 희생으로 하여 증대할수도 있으나 자본가는 상품이 싸게 되므로 이

전과 같은 량의 또는 이전보다 많은 량의 소비수단을 향락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본바와 같이 로동생산성의 제고와 함께 로동자가 값싸게 되며 따라서 또 잉여가치률이 증대한다. 실질로임이 높아지는 경우에도 그러하다.① 실질로임은 결코 로동생산성에 비례하여 증대되지는 않는다. 그리하여 동일한 가변자본가치가 보다 많은 로동력을 움직이며 따라서 보다 많은 로동을 움직인다. 동일한 불변자본가치는 보다 많은 량의 생산수단으로 즉 보다 많은 로동수단, 로동재료, 보조재료로 나타나며 따라서 더 많은 생산물과 가치형성자를, 또는 더 많은 로동을 흡수하는 요소들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추가자본의 가치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감소되는 경우에도 축적은 촉진된다. 재생산의 규모가 물질적으로 확대될뿐만아니라 잉여가치의 생산도 추가자본의 가치보다 급속하게 장성한다.

로동생산력의 발전은 또한 원 자본 또는 이미 생산과정에 있는 자본에 대해서도 반작용을 한다. 기능하고있는 불변자본의 일부분은 기계 등등과 같은 로동수단들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로동수단들은 장기간에 걸쳐서만 소비되며 따라서 재생산되거나 또는 같은 종류의 신품으로 교체된다. 그러나 이 로동수단의 일부분은 매년 사멸한다. 즉 자체의 생산적기능의 종점에 도달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매년 자체의 주기적 재생산단계에 또는 같은 종류의 신품으로의 교체단계에 처한다. 만약 로동생산력이 이 로동수단을 생산하는 부문에서 발전한다면—과학과 기술의 부단한 진보에 따라 로동생산력은 부단히 발전한다—보다 효과적인 또 그 효률로 보아 보다 값싼 기계, 도구, 장치 등이 낡은것을 대신한다. 현존로동수단도

① 이 책 594~598페지를 보라. —편집자

그 세부에서 부단히 변화한다는것을 도외시하더라도 구자본은 보다 생산적인 형태로 재생산된다. 불변자본의 다른 부분 즉 원료와 보조재료는 1년중에 부단히 재생산되며 농업에서 나오는것은 대부분 1년에 한번 재생산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개량된 방법 등등의 채용은 모두 추가자본과 이미 기능하고있는 자본에 거의 동시적으로 작용한다. 화학의 진보는 모두다 유용물질의 수와 이미 알려져있는 물질의 응용을 다양하게 하며 그리하여 자본의 증대에 따라 그 투하분야를 확장할뿐이 아니다. 그것은 동지에 생산과정과 소비과정의 배설물을 재생산과정의 순환에 도로 투입할수 있게 하며 그리하여 미리 자본을 투하함이 없이 새로운 자본소재를 만들어낸다. 다만 로동력의 긴장도를 강화하는것만으로 자연적부의 리용을 증진시키는것과 마찬가지로 과학과 기술은 기능하고있는 자본의 주어진 량에 의존하지 않는 팽창력을 준다. 동시에 이러한 팽창력은 원 자본중 이미 갱신기에 들어간 부분에도 반작용을 한다. 원 자본은 그 낡은 형태의 배후에서 진행된 사회적진보를 무상으로 그 새 형태에 합체한다. 물론 생산력의 이러한 발전에는 지금 기능하고있는 자본의 부분적감가가 동반한다. 이 감가가 경쟁으로 말미암아 통절히 느껴지게 되면 그 주되는 부담은 로동자에게 떨어지며 자본가는 로동자에 대한 착취를 강화함으로써 자기의 손실을 메우려 한다.

로동은 그것이 소비하는 생산수단의 가치를 생산물에 이전한다. 다른 한편 일정한 로동량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는 생산수단의 가치와 량은 로동생산성의 제고에 비례하여 증대한다. 따라서 같은 로동량이 언제나 동일한 량의 새로운 가치를 그 생산물에 첨가할뿐이라 하더라도 그 로동이 생산물에 동시에 이전하는 구자본가치는 로동생산성의 제고에 따라

증대한다.

례를 들어 한 영국인방적공과 한 중국인방적공이 같은 시간수만큼 같은 강도로써 로동한다면 그들은 1주일동안에 동등한 가치를 생산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등성이 있다 하더라도 강력한 자동장치를 가지고 로동하는 영국인의 주생산물의 가치와 물레밖에 가지고있지 않는 중국인의 주생산물의 가치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중국인이 1폰드의 면화를 방적하는것과 같은 시간에 영국인은 수백폰드를 방적한다. 수백배나 큰 액의 구가치가 영국인의 생산물의 가치를 팽창시키는데 그 구가치는 이 생산물에서 새로운 유용한 형태로 유지되며 따라서 새로 자본으로서 기능할수 있는것이다. F. 엥겔스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있는바에 의하면 《1782년에는 그전 3년동안 거두어들였던 〔영국에서〕 양털이 로동자의 부족으로 전부 그냥 쌓여있었는데 마침 새로 발명된 기계가 그 양털을 전부 처리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그냥 쌓여있었을것이다》.(59) 물론 기계의 형태로 대상화된 로동은 직접 단 한사람도 창조하지 않았으나 그것은 소수의 로동자로 하여금 비교적 적은 추가적산로동지출로써 양털을 생산적으로 소비하여 거기에 새로운 가치를 첨가하였을뿐만아니라 털실 등등의 형태로 양털의 구가치를 유지할수 있게 하였다. 또 동시에 그것은 양털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수단과 자극을 주었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면서 구가치를 유지하는것은 산로동의 천성이다. 그러므로 로동은 그 생산수단의 효능, 규모 및 가치의 증대에 따라 즉 그 생산력발전을 수반하는 축적의 증대에 따라, 부단히 팽창하는 자본가치를 부단히 새로

---

(59) 프리드리히 엥겔스 《영국로동계급의 형편》, 20페지.[424]

운 형태로 유지하고 영구화한다.(60) 로동의 이 자연적능력은

(60) 고전경제학은 로동과정과 가치증식과정의 분석이 불완전하였기때문에 재생산의 이 중요한 계기를 제대로 리해한적이 없었다. 례컨대 리카도에게서도 그것을 볼수 있다. 례컨대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생산력이 아무리 변동하더라도 《백만의 인간은 공장에서 언제나 동일한 가치를 생산한다》. 그들의 로동의 외연적 및 내포적 크기가 일정한것이라면 이렇게 말하는것은 옳다. 그러나 그것은 로동생산력이 각이하면 백만의 인간이 매우 각이한 량의 생산수단을 생산물로 전화시키고 그리하여 매우 각이한 가치량을 그들의 생산물에 보존하며 따라서 그들이 매우 각이한 가치의 생산물을 제공한다는것을 결코 방해하지 않는다. 리카도는 약간의 결론들에서 바로 이 점을 간과하고있다. 겸해서 말하거니와 리카도는 이 례로써 J. B. 쎄에게 사용가치(그는 이것을 wealth 즉 물질적부라고 부르고있다.)와 교환가치의 구별을 설명하려고 헛되이 시도하였다. 쎄는 이렇게 대답한다. 《개량된 방법을 응용하여 백만의 인간이 2배, 3배나 많은 부를 생산할수는 있으나 보다 많은 가치는 생산하지 못한다고 리카도씨가 말하고있는 그 난점에 대해서 말한다면 만약 우리가 생산을 일종의 교환으로서 즉 사람들이 생산물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로동과 토지와 자본의 생산적봉사를 제공하는 교환으로 본다면—또 그렇게 보아야 할것이지만 — 이 난점은 곧 풀리게 된다. 바로 이 생산적봉사에 의하여 우리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물을 얻는다.…따라서…생산이라고 불리우는 그 교환에서 우리의 생산적봉사가 가져오는 유용물이 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부는 그만큼 더 많아지고 우리의 생산적봉사는 그만큼 더 많은 가치를 가진다.》(J. B. 쎄 《말사스씨에게 보내는 편지》, 1820년 빠리판, 168, 169페지) 쎄가 설명하고저 하는 《난점》—이것은 쎄에게 존재하는것이지 결코 리카도에게 존재하는것은 아니다—은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 로동생산력의 증대의 결과로 사용가치의 량이 증대하여도 사용가치의 가치는 왜 증대되지 않는가? 해답: 우리가 사용가치를 교환가치라고 부르기만 한다면 이 난점은 해결된다. 교환가치는 이렇게나저렇게나 교환과 관련된 하나의 사물이다. 그러므로 생산을 로동이나 생산수단과 생산물과의 《교환》이라고 부른다면 생산에서 제공되는 사용가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더 많은 교환가치를 우리가 얻는다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바꾸어말하면 1로동일이 양말공장주에게 제공하는 사용가치, 례컨대 양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장주는 그만큼 더 양말부자가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갑자기 다음과 같은 생각이 쎄씨에게 떠오른다. 양말의 《수량의 증대》에 따라 그 《가격》(이것은 물론 교환가치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은 떨어진다. 《그것은 경쟁이 그들(생산자들)로 하여금 생산물을 그 생산에 들인 비용만큼한 값으로 팔지 않을수 없게 하기때문》이라고. 자본가가 자기의 상품을 그 상품에 들인 비용만큼한 가격으로 판다면 리윤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러나 념려할것 없다! 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생산성이 제고되였기때문에 누구나 이제는 이전과 같이 한컬레의 양말이 아니라 두컬레의 양말을 동일한 등가물에 대한 교환으로 받는다고. 그리하여 그가 도달한 결론은 바로 그가 론박하고저 한 리카도의 명제와 동일하다. 이와 같이 맹렬한 사색끝에 그는 의기양양하게 말사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귀하여, 이것이야말로 훌륭히 론증된 학설입니다. 이 학설이 없이는 나는 단언합니다만 정치경제학상의 극히 어려운 문제들 특히 부가 가치를 대표하지만 생산물의 가치가 내릴 때에 국가가 어떻게 더 부유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해명할수 없습니다.》(《말사스씨에게 보내는 편지》, 170페지) 영국의 한 경제학자는 쎄의 《편지》중의 이와 류사한 요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있다. 《이와 같은 일부러 꾸민 수작은 대체로 쎄씨가 자기의 학설이라고 부르기를 즐겨하고있는 그것이며 또 이미 〈구

로동을 합체시키고있는 자본의 자기유지능력으로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로동의 사회적생산력이 자본의 속성으로서 나타나며 또 자본가에 의한 잉여로동의 부단한 점유가 자본의 부단한 자기증식으로서 나타나는것과 꼭같다. 상품가치의 모든 형태가 화폐의 형태로 보이는것과 같이 로동의 모든 힘은 자본의 힘으로 보인다.

자본의 증대에 따라 사용되는 자본과 소비되는 자본간의 차액도 증대된다. 바꾸어말하면 건물, 기계, 배수관, 역축, 각종 장치 등과 같은 로동수단의 가치량과 소재량이 증대하는데 이 로동수단은 길건짧건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부단히 반복되는 생산과정에서 그전체로서 기능하며 일정한 유용효과의 달성에 복무하는데 한편 이 로동수단은 점차적으로만 마멸되고 따라서 그 가치를 다만 부분적으로만 상실하며 그리하여 또한 부분적으로만 생산물로 이전한다. 이 로동수단은 생산물의 형성요소로서 작용하면서 그것에 새로운 가치를 첨가하지 않는만큼 즉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용되면서 부분적으로만 소비되는만큼 상술한바와 같이 그것은 물, 증기, 공기, 전기 등등과 같은 자연력과 동일한 무료봉사를 한다.① 산 로동에 붙잡혀 활기를 띠게 된 과거로동의 이 무료봉사는 축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축적된다.

과거로동은 언제나 자본으로 분장하기때문에 즉 로동자

라파의 많은 지방들에서) 하고있는바와 같이 허트포드에서도 가르치도록 말사스에게 권고하고있는 그것이다. 씨는 이렇게 말한다. (만약 당신이 이 명제들에서 어떤 역설적인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표현하고있는 사물을 고찰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명제들이 당신에게 지극히 단순하고 합리적인것으로 보이리라고 나는 감히 믿습니다.). 의심할 바없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명제는 같은 방법에 의하여 다른 그 무엇으로도 보일수는 있지만 다만 독창적인것이거나 중요한것으로는 결코 보이지 않을것이다.》(《최근 말사스씨가 주장하는 수요의 성질과 소비의 필요성에 관한 원리의 연구》, 110페지)

① 이 책 443~445페지를 보라. 一편집자

A, B, C 등의 로동의 수동태는 비로동자 X의 능동태로 분장하기때문에 자산자와 경제학자들은 과거로동의 공적을 극구 찬양하는것이며 스코틀랜드의 천재 머칼러크는 심지어 과거로동은 특수한 보수(리자, 리윤 등등)를 받아야 한다고까지 인정하고있는것이다.(61) 그리하여 생산수단의 형태로 산로동과정에 참가하는 과거로동의 중요성이 부단히 증대하는것은 그 로동을 과거에 부지불로동으로서 수행한 로동자자신으로부터 소외된 그 모습 즉 자본이라는 모습의 덕분이라는것이다. 자본주의적생산의 실천적당사자들과 그들의 사상적요설가들에 생산수단을 오늘 거기에 붙어있는 그 적대적인 사회적가면과 분리시켜 생각할수 없는것은 노예소유자가 로동자 그자체를 노예로서의 그 성격과 분리시켜 생각할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로동력의 착취도가 일정한 경우에는 잉여가치량은 동시에 착취당하는 로동자수에 의하여 규정되며 이 로동자수는 비록 비률은 변동된다 하더라도 자본의 크기에 상응한다. 련속적축적에 의하여 자본이 증대되면 될수록 소비기금과 축적기금으로 분할되는 가치액도 더 증대된다. 그러므로 자본가는 보다 사치스럽게 살면서 동시에 보다 더 《절욕》할수 있다. 그리하여 나중에 선대자본량에 따라 생산의 규모가 확대되면 될수록 생산의 모든 용수철이 보다 정력적으로 활동한다.

5. 소위 로동기금

(61) 머칼러크는 씨니어가 《절욕의 보수》에 대한 특허①를 얻기 훨씬전에 《과거로동의 보수》에 대한 특허를 얻었다.

① 이 책 264페지를 보라. —편집자

이 연구과정에서 명백한바와 같이 자본은 고정적인 량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부중의 신축성있는 일부분이며 잉여가치가 수입과 추가자본으로 어떻게 분할되는가에 따라 부단히 변동하는 일부분이다.① 또한 우리가 본바와 같이 기능하고있는 자본의 량이 일정한 경우에도 자본이 자체에 합체시킨 로동력, 과학 및 토지(토지라는것은 경제학적관점에서는 인간의 협력없이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로동대상으로 리해하여야 할것이다.)는 자본의 신축성있는 힘을 이루는데 이러한 힘은 이 자본에 일정한 한계내에서는 자본자체의 량에 의존하지 않는 작용범위를 허용한다.② 이에 있어서 우리는 동일한 량의 자본의 작용정도를 매우 다르게 하는 류통과정의 모든 사정은 도외시하였다. 우리는 자본주의적생산의 한계를 전제로 하였으며 사회적생산과정의 순전히 자연발생적모습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현존하는 생산수단과 로동력으로써 직접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더 합리적결합은 도외시하였다. 고전경제학은 이전부터 사회적자본을 고정적인 작용정도를 가진 고정적량으로 간주하기를 즐겨하였다. 그런데 이 편견을 교조로 확립한것은 대속물 제러미 벤삼 즉 19세기의 평범한 자산계급적오성의 무미건조하고 현학적이며 수다스러운 성자이다.(62) 벤삼이 철학자들속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마틴 타퍼가 시인들속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같다. 량자는 다 영국에서만 만들어질수 있었다.(63) 그의 교조에

---

(62) 특히 J. 벤삼 《형벌과 표창에 대한 리론》, Et. 듀몽 편찬, 1826년 빠리 제3판, 제2권, 제4책, 제2장을 참조하라.

(63) 제러미 벤삼은 순전히 영국적인 현상이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판에 박힌 문구를 가지고 그렇게도 굉장하게 떠들어댄 철학자란 우리 나라의 크리스티안 월프까지도 제

① 이 책 682~685페지를 보라. 一편집자

② 이 책 698~699페지를 보라. 一편집자

의하여서는 생산과정의 가장 평범한 현상들, 례컨대 생산과정의 돌발적 팽창과 수축, 아니 축적조차도 전혀 리해할수 없다.(64) 이 교조는 벤삼자신과 그리고 말사스, 제임즈 밀, 머칼러크 등등이 변호적목적으로 특히 자본의 일부인 가변자본 즉 로동력으로 전화될수 있는 자본을 고정적량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리용하였다. 가변자본의 물질적존재 즉 로동자들을 위하여 가변자본이 대표하는 생활수단의 량 또는 소위 로동기금은 자연의 쇠사슬에 얽매인 넘기 어려운 사회적부의 특수부분이라는 날조를 만들어냈다. 사회적부중에서 불변자본으로서 또는 소재적으로 말하면 생산수단으로서 기능하여야 할 부분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물론 일정한 량의 산로동이

외하지 않고 생각하더라도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도 아직 없었다. 공리주의는 벤삼의 발명품이 아니였다. 그는 다만 앨베씨위스와 기타 18세기의 프랑스인들이 재치있게 말한것을 재치없이 재생산하였을따름이다. 례컨대 개에 대하여 무엇이 유용한가를 알고저 한다면 우선 개의 본성을 연구하여야 한다. 이 본성자체는 《공리주의》로써는 구성될수 없다. 우리가 이 공리주의를 인간에 적용하여 인간의 일체 행위, 운동, 제 관계 등등을 공리주의에 따라 판단하려고 하면 우리는 우선 인간의 본성일반을 알아야 하며 그다음에는 매개 시대의 력사적으로 변화되여온 인간의 본성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벤삼은 이러한 문제를 간단히 처리해버린다. 그는 순진하기 그지없이 현대적속물 특히 영국의 속물을 표준적인간으로 생각한다. 이 이상한 표준적인간과 그의 세계에 유용한것은 모두 그자체가 유용한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 척도를 가지고 과거, 현재 및 미래를 잰다. 례컨대 기독교는 《유용한》 것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형법이 법률적으로 유죄로 선포하는 비행들을 종교적으로 금지하기때문이다. 문예평론은 《유해한》 것이다. 왜냐 하면 존경할만한 사람들이 마틴 타퍼의 작품들을 즐기는것을 방해하기때문이다, 등등. 《하루도 붓 안드는 날이 없다.》[425]는것을 좌우명으로 삼고있는 이 용감한 친구는 산더미같은 책을 그러한 허튼소리로써 채웠다. 만약 내가 나의 벗 H. 하이네만한 용기를 가지고있다면 나는 제러미씨를 자산계급적우둔의 천재라고 부를것이다.

(64) 《경제학자들은 너무나 일정한 량의 자본과 일정한 수의 로동자를 한결같은 힘을 가진 그리고 한결같은 강도로써 작용하는 생산도구로 보기를 좋아한다.…상품이 생산의 유일한 요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론증한다. 생산이라는것은 도대체 확대할수 없는것이다. 왜냐 하면 생산의 확대를 위해서는 생활수단, 원료 및 도구들이 미리 증가되여있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이다. 이것은 사실상 생산의 증가는 생산이 미리 증가되지 않고서는 일어날수 없다는것, 다시말하면 어떠한 증가도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같다.》 (S. 베일리 《화폐와 그 가치의 변동》, 58, 70페지) 베일리는 주로 류통과정의 관점에서 이 교조를 비판하고있다.

필요하다. 이 량은 기술적으로 주어져있다. 그러나 이 로동량을 류동화하는데 필요한 로동자수도 일정하지 않으며—왜냐하면 이 수는 개별적로동력에 대한 착취도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기때문이다—이 로동력의 가격도 일정하지 않다. 다만 그 가격의 최저한계, 그것도 대단히 신축성있는 한계가 정해져있을뿐이다. 이 교조의 기초에 놓여있는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한편으로는 로동자는 사회적부를 비로동자들의 소비수단과 생산수단으로 분할함에 있어서 발언권이 없다는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로동자는 례외적으로 운수가 좋은 경우에만 부자의 《수입》을 희생으로 하여 소위 《로동기금》을 확대할수 있을뿐이라는것이다.(65)

로동기금의 자본주의적한도를 그 사회적인 자연적한도로 전화시키는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동의반복으로 되는가는 포씨트교수의 례가 잘 보여준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있다.

《한 나라의 류동자본(66)은 그 나라의 로동기금이다. 따라서 매개 로동자가 받는 평균화폐임금을 계산하려면 간단히 이 자본을 로동자인 구수로 제하기만 하면 된다.》(67)

---

(65) J. St. 밀은 그의 저서 《정치경제학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로동생산물은 오늘날 로동에 반비례하여 분배되고있다. —그 최대부분은 조금도 일하지 않는자들에게, 그다음으로 큰 부분은 거의 명목상으로만 일하는자들에게 분배되고 이리하여 로동이 힘들고 불쾌함에 따라 보수는 점점 적어져서 나중에 가장 힘들고 가장 소모적인 육체로동은 생활필수품을 획득하는것도 확실치 않게 된다.》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말하지만 J. St. 밀과 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낡은 경제학적교조와 그들의 현대적경향과의 모순때문에 책망을 받을만하지만 그들을 속류경제학적변호론자들과 혼동하는것은 전혀 부당할것이다.

(66) 여기에서 독자에게 상기시키고저 하는것은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이라는 두 범주는 내가 처음으로 사용하였다는것이다.① A. 스미스이래의 정치경제학은 이 범주들에 포함되는 규정돌을 류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정자본과 류동자본의 형태상의 차이와 혼동하고있다. 이에 관해서는 제2권, 제2편[426]에서 보다 상세히 언급할것이다.

(67) 케임브리지의 정치경제학교수 H. 포씨트 《영국로동자의 경제형편》, 1865년 런던판, 120페지.

---

① 이 책 232~244페지를 보라. —편집자

그리하여 우리는 우선 현실적으로 지불된 개개의 로임액을 합계하고 그다음에 이 합계가 하느님과 자연이 제정한 《로동기금》의 가치총액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얻은 총액을 로동자수로 제하여 매개 로동자에게 평균 얼마나 지불할수 있는가를 다시 발견한다. 이것은 극히 교활한 수법이다. 그래도 포씨트씨는 거침없이 말을 계속한다.

《영국에서 매년 축적되는 부의 총체는 두개 부분으로 나뉘여진다. 한 부분은 영국자신의 산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다른 한 부분은 다른 나라들에 수출된다.…우리 산업에서 사용되는 부분은 이 나라에서 매년 축적되는 부의 얼마 안되는 부분을 이룬다.》(68)

그리하여 등가없이 영국로동자들에게서 절취하는 매년 증가하는 잉여생산물의 대부분은 영국에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 자본화된다. 그러나 그와 같이 수출된 추가자본과 더불어, 하느님과 벤삼이 발명한 《로동기금》의 일부분도 수출된다.(69)

---

(68) 케임브리지의 정치경제학교수 H. 포씨트 《영국로동자의 경제형편》, 1865년 런던판, 122, 123페지.

(69) 자본뿐만아니라 로동자들도 이민의 형태로 영국으로부터 매년 수출된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외국이주자들의 특유재산[427]을 문제시하지 않는다. 이주자들의 대부분은 로동자가 아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차지농의 자식들이다. 리자를 벌기 위하여 매년 외국으로 보내는 영국의 추가자본과 매년의 축적과의 비률은 매년의 국외이주와 매년의 인구증가와의 비률보다 훨씬 크다.

제 23 장

자본주의적축적의 일반적법칙

1. 자본구성이 변함없는 경우에 축적에 따르는 로동력수요의 증가

이 장에서는 자본의 증대가 로동계급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려 한다. 이 고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본의 구성과 축적과정의 진행중에 일어나는 이 구성의 변화이다.

자본의 구성은 두가지 의미에서 리해할수 있다.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이 구성은 자본이 불변자본 또는 생산수단의 가치와 가변자본 또는 로동력의 가치 즉 임금총액으로 분할되는 비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생산과정에서 기능하는 물질적측면에서 보면 어떤 자본이든 생산수단과 산로동력으로 분할되는데 이 자본구성은 일방으로는 사용되는 생산수단의 량과 타방으로는 이 생산수단의 사용에 필요한 로동량과의 비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나는 전자를 자본의 가치구성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자본의 기술적구성이라고 부른다. 량자간에는 긴밀한 호상관계가 존재한다. 이 호상관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나는 자본의 가치구성이 자본의 기술적구성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 그 기술적구성의 변화를 반영하는 한에 있어서의 자본의 가치구성을 자본의 유기적구성이라고 부른다. 자본의 구성이라고 간단히 말할 때에는 언제나 자본의 유기적구성으로 리해하여야 한다.

일정한 생산부문에 투하된 수많은 개별적자본은 그 구성이 많건적건 서로 다르다. 이러한 자본의 개별적구성의 평균은 우리로 하여금 이 생산부문의 총자본의 구성을 얻게 한다. 끝으로 전체 생산부문의 이 평균구성의 총평균은 우리로 하여금 한 나라의 사회적자본의 구성을 얻게 하는데 아래에서는 결국 이것만을 문제로 삼는다.

자본의 증가에는 그 가변구성부분 즉 로동력으로 전화되는 구성부분의 증대가 포함된다. 추가자본으로 전화되는 잉여가치의 일부분은 언제나 가변자본 또는 추가적로동기금으로 재전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다른 사정들이 변함없고 또 자본의 구성도 변함없다고 가정하자. 즉 일정한 량의 생산수단 또는 불변자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언제나 동일한 량의 로동력이 요구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분명히 로동에 대한 수요와 로동자의 생존기금은 자본의 증대에 비례하여 증대하며 자본의 증대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것은 빨리 증대한다. 자본은 해마다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그 잉여가치의 일부분은 해마다 원자본에 첨가되므로 또 이 증가분자체가 이미 기능하고있는 자본의 규모의 증대에 따라 해마다 증대하므로, 그리고 끝으로 례컨대 새로 발전된 사회적욕망에 의한 새로운 시장의 개척, 새로운 투자령역의 개척 등등과 같은 치부욕에 대한 특별한 자극을 받아 축적의 규모는 다만 자본과 수입으로의 잉여가치 또는 잉여생산물의 분할을 변동시키는것만으로 돌연히 확대될수 있으므로 자본축적의 욕망은 로동력 또는 로동자수의 증가를 릉가하며 로동자들에 대한 수요는 그 공급을 릉가할수 있으며 따라서 로임은 상승할수 있다. 상술한 전제가 변함없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결국 그렇게 될수밖에 없다. 해마다 전년보다 더 많은 로동자가 고용되게 되는

만큼 조만간 축적의 욕망이 보통의 로동공급을 릉가하기 시작하며 따라서 임금상승이 시작되는 때가 오지 않을수 없다. 이에 대한 원성이 영국에서는 15세기 전 기간을 통하여 그리고 18세기 전반기에 들려왔다. 그러나 임금로동자들의 유지와 증식에 어느 정도 유리한 이러한 사정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근본성격을 조금도 변동시키지는 못한다. 단순재생산이 자본관계자체를 즉 일방으로는 자본가를, 타방으로는 임금로동자를 부단히 재생산하는것과 같이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 또는 축적도 자본관계를 확대된 규모에서 재생산한다. 즉 한 극에서는 보다 많은 자본가 또는 보다 큰 자본가를, 다른 극에서는 보다 많은 임금로동자를 재생산한다. 로동력은 가치의 증식수단으로서 부단히 자본에 합체되여야 하며 자본으로부터 떨어져나올수 없으며 또 자본에 대한 그 예속은 오직 그것을 구매하는 개별적자본가의 교체에 의하여 은폐될따름이며 따라서 로동력의 재생산은 사실상 자본자체의 재생산의 한 요인이다. 따라서 자본의 축적은 무산계급의 증가이다.(70)①

고전경제학이 이 명제를 십분 잘 리해하고있어서 상술한 바와 같이 A. 스미스, 리카도 등등은 축적을 그릇되게도 잉

---

(70) 칼 맑스 《임금로동과 자본》. 《대중의 억압받는 정도가 같은 조건하에서는 어떤 나라에 무산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는 그만큼 부유하다.》(꼴랭 《정치경제학. 혁명과 소위 사회주의적공상의 원천》, 1857년 빠리판, 제3권, 331페지) 《무산자》라는것은 경제학적으로 의미하는것은 《자본》을 생산하고 그것을 증식하고 또 빼피르가 부르듯이 《자본씨》의 증식욕에 대하여 쓸모없는것으로 될 때에는 당장에 가두에 내던져지는 임금로동자에 불과하다. 《원시림의 병약한 무산자》라는것은 로쉐르의 기묘한 환상이다. 원시림지대의 거주자는 원시림의 소유자이며 성성이와 마찬가지로 조금도 꺼리낌없이 원시림을 자기의 소유물로 취급한다. 따라서 그는 무산자가 아니다. 그가 원시림을 착취하는것이 아니라 원시림이 그를 착취할 때에만 그는 무산자일것이다. 그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는 현대적무산자와 대비할수 있을뿐만아니라 매독과 련주창을 앓는 《귀인》들과도 대비할만하다. 그러나 윌헬름 로쉐르씨가 원시림이라고 하는것은 필시 그의 고향 뤼네부르그의 황야일것이다.

① 이 책 691~701페지를 보라. 一편집자

여생산물중 자본화되는 부분전체를 생산적로동자가 소비하는 것 또는 그 부분이 추가적임금로동자로 전화하는것과 동일시하기까지 하였다.① 1696년에 이미 죤 벨러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어떤 사람이 10만에이커의 토지와 10만파운드의 화폐와 또한 10만마리의 가축을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한명의 로동자도 가지고있지 않다면 이 부자는 로동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하여 로동자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므로 로동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가 많게 된다.…빈민의 로동은 부자의 풍부한 자원이다.》(71)

버너드 드 맨데빌도 18세기초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재산이 충분히 보호되고있는 곳에서는 빈민없이 생활하기보다 화폐없이 생활하기가 용이할것이다. 빈민이 없다면 사실 누가 로동을 하겠는가?…로동자들은 굶어죽지 않도록 보호되여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저축할만한것을 받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때로 최하층계급중의 누가 비상히 근면하고 배를 줄인 덕택으로 자기가 태여난 환경에서 벗어날 때 아무도 그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사실 검박하게 생활한다는것은 사회의 매개인에게 있어서, 매개 가정에 있어서 가장 현명한 일임은 부인할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빈민이 일없이 지내는 일이 결코 없으며 또 그들이 자기의 수입을 언제나 다 소비하는것은 모든 부유한 민족들의 리익이다.…그날그날의 로동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있는 사람들에게 일하도록 자극을 주는것은 오직 그들의 빈곤뿐이다. 이 빈곤을 완화시키는것은 현명하지만 치료해버리는것은 어리석다. 로동하는 사람을 근면하게 할수 있는 유일한것은 적당한 로임이다. 너무 낮은 로임은 기질에 따라서는 그로 하여금 기운을 잃게 하든가 절망케 하며 너무 많은 로임은 불손하고 라태하게 한다.…이상에서 말한것으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노예가 허용되지 않는 자유로운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확실한 부는 근면한 빈민이 많다는것이다. 그들은 륙해군을 위한 무진장한 공급원천이라는것외에 그들

(71) 죤 벨러즈 《모든 유용한 수공업과 농업의 산업전문학교창설제안》, 1696년 런던판, 2페지.

① 이 책 680~699페지를 보라. —편집자

없이는 어떤 향락도 없을것이며 어떤 나라의 생산물도 리해될수 없을것이다. 사회 (물론 비로동자들로 이루어지고있는) 를 행복하게 하고 인민을 비참한 상태에서도 만족할수 있게 하려면 대다수를 무지하고 가난하게 하여둘 필요가 있다. 지식은 우리에게 념원을 확대하고 배가하는것이며 사람의 념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의 욕망은 보다 쉽게 충족될수 있다.》(72)

정직하며 두뇌가 총명한 맨데빌도 아직 리해하지 못하고 있는것은 축적과정자체의 기구가 자본의 증대에 따라 《근면한 빈민들》 즉 임금로동자의 수도 증가시킨다는 그것이다. 이러한 임금로동자는 부득이 자기의 로동력을, 증가하는 자본의 증대하는 증식력으로 전화시키지 않을수 없으며 또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자본가로서 인격화된 자기자신의 생산물에 대한 자기의 종속관계를 영구화하지 않을수 없다. 이 종속관계에 관하여서 F. M. 이든경은 그의 저서 《빈민의 상태, 또는 영국근로계급의 력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우리 지대에서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로동이 필요한데 그 때문에 적어도 사회의 일부분은 불면불휴로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일부 사람들은 로동하지 않지만 근면의 생산물을 마음대로 지배한다. 그러나 이 소유주들이 그렇게 할수 있는것은 다만 문명과 질서의 덕택이다. 그들은 전적으로 시민제도의 창조물이다.(73) 왜냐 하면 시민제도는 로동의 열매를 로동에 의하지 않고도 취득할수 있다는것을 인정하고있기때문이다. 독립적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재산을 얻은것은 거의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로동의 덕택이고 자기자신의 능력에 의한것이

(72) B. 드 맨데빌(《꿀벌이야기》, 1728년 런던 제5판 주, 212, 213, 328페지) 《절제있는 생활과 부단한 로동은 빈민에 있어서는 물질적행복에 이르는 길이며 (그가 의미하는바는 될수 있는대로 긴 로동일과 될수 있는대로 적은 생활수단이다.) 국가 (즉 지주, 자본가 및 그들의 정치적 고관들과 대리자들) 에 있어서는 부에 이르는 길이다.》 (《산업 및 상업에 관한 론술》, 1770년 런던판, 54페지)

(73) 그렇다면 《시민제도》는 누구의 창조물이냐고 이든은 물어야 할것이다. 그는 법률적환상의 관점에서 법을 물질적생산관계의 산물로 보지 않고 반대로 생산관계를 법의 산물로 보고있다. 랭개는 몽떼스끼외의 환상적인 《법의 정신》을 《법의 정신이란 소유권이다.》[428]라는 한마디로써 전복시켰다.

아닌데 그들의 능력은 결코 다른 사람의 능력보다 나은것은 없다. 부자를 빈민과 구별하는것은 토지와 화폐의 소유가 아니라 로동에 대한 지배권이다.…빈민에게 알맞는것은 비천한 또는 노예적인 상태가 아니라 안락하고 자유로운 종속관계이며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위하여 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영향과 권위이다.…이러한 종속관계는 인간의 본성을 알고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인정하듯이 로동자 자신의 안락을 위하여 필요하다.》(74)

겸해서 말하거니와 F. M. 이든경은 애담 스미스의 제자들중에서 18세기에 의의있는 일을 한 유일한 사람이다.(75)

---

(74) 이든 《빈민의 상태, 또는 영국근로계급의 력사》, 제1권, 제1편, 제1장, 1, 2페지 및 서언 XX페지.

(75) 만약 독자가 1798년에 《인구원리》를 발표한 말사스는 어떠냐고 묻는다면, 이 저서의 최초의 형식은 더포우, 제임즈 스튜어트경, 타운젠드, 프랭클린, 월리스 등등의 저서에서 유치하게, 천박하고 목사가 암송하듯이 표절한것외의 아무것도 아니며 독자적으로 생각해낸 명제는 하나도 없다고 나는 대답할것이다. 이 소책자가 일으킨 큰 소동은 오로지 당파적리해관계에서 나온것이였다. 브리텐왕국내에도 프랑스혁명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들이 있었다. 즉 《인구원리》는 18세기에 점차 작성되여 이어 일대 사회적위기속에서 꽁도르쎄 등등의 학설에 대한 훌륭한 해독제로서 요란스럽게 선전되였는데 영국의 과두정치는 그것을 인류의 장래발전을 원하는 모든 열망에 대한 훌륭한 섬멸자로서 환영하였던것이다. 자기의 성공에 크게 놀란 말사스는 피상적으로 편찬한 자료를 낡은 도식에다 기입하고 새로운것, 그러나 말사스가 발견한것이 아니라 다만 표절한것에 불과한것을 첨가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겸해서 말하거니와 말사스는 영국고교회[9]의 목사였으나 독신의 수도서약을 하고있었다. 이것은 신교적케임브리지대학의 교우로 되는 조건의 하나인것이다. 《기혼자는 교우로 될수 없다. 또 누구이든 결혼하면 즉시로 교우임을 그만두어야 한다.》(《케임브리지대학위원회 보고》 172페지) 이 사정은 말사스가 다른 신교목사들과 구별되는 그의 유리한 점이다. 그것은 다른 신교목사들은 승려독신이라는 천주교적계률을 내던지고 《낳아라, 번식하라》[429]라는 계률을 자기들의 특수한 성서상의 사명으로서 받아들여 필경은 어데서나 실로 상스러울만큼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있으며 동시에 로동자들에게는 《인구원리》를 설교하고있기때문이다. 경제학적으로 표현을 바꾼 인류타락, 아담의 사과, 《긴절한 욕망》, 목사 타운젠드가 명랑하게 말하고있는바와 같이 《쿠피도의 화살을 둔하게 하는 장애물》, 이러한 까다로운 조항들이 신교교회의 대표자 또는 보다 정확하게 말하여 신교교회의 제씨들에게 독점되였으며 또 현재 독점되고있는것은 특징적이다. 독창적이며 재간있는 필자인 베니스의 수도승 오르떼쓰를 제외하고는 인구론자의 설교자의 대다수는 신교목사들이다. 현대적인구론이 남김없이 망라되여있으며 이 제목에 관한 께내와 그의 제자 로미라보사이의 일시적론쟁에서 구상을 얻은[430] 《동물계론》(라이덴, 1767년)의 저자 브루크너, 그다음에 목사 월리스, 목사 타운젠드, 목사 말사스, 그의 제자 대목사 T. 챠머즈가 그러한데 이런 방향에서 저술한 군소 목사저술가들은 더 말한것도 없다. 처음에 정치경제학을 연구한것은 호브즈, 로크, 흄과 같은 철학자들, 토머스모어, 템플, 쉴리, 데 위뜨, 노스, 로, 밴덜린트, 깡띠용, 프랭클린

지금까지 가정한바와 같은, 로동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과 같은 실업가와 정치가들이였고 그리고 특히 리론적으로 정치경제학을 연구하여 최대의 성과를 올린것은 페티, 배어보운, 맨데빌, 께내와 같은 의사들이였다. 18세기중엽에도 당시의 저명한 경제학자 타커목사는 그가 금전문제를 취급한것을 변명하고있다. 그후 즉 《인구원리》가 나옴에 따라 신교목사들의 종말을 고하는 조종이 울렸다. 인구를 부의 기초로 보고 애담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목사들의 상용할수 없는 적이였던 페티는 이 졸렬한 간섭을 예감이라도 하고있은듯이 《변호사들이 굶어죽을 때에 법이 가장 번영하듯이 승려들이 가장 많이 금욕을 할 때에 종교는 가장 번영한다.》고 말하고있다. 그러므로 그는 신교목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즉 그들이 다시는 사도 파울루스를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고 또 독신으로 《금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성직이 흡수할수 있는 이상으로 많은 목사들을 낳지 말라.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12,000의 성직이 있을따름이라면 24,000명의 승려들을 낳는것은 현명하지 않을것이다. 왜냐 하면 12,000명의 무직자는 부단히 생계를 얻으려고 할것이기때문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민간으로 들어가서 12,000의 성직자는 령혼을 독해하고 굶주리게 하며 령혼을 기로에 이끌어 천국으로 갈수 없게 할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설교하는외에 더 쉬운 방법이 있을수 있겠는가?》(페티 《조세공납에 관한 론술》, 1667년 런던판, 57페지) 당시의 신교목사에 대한 애담 스미스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여 특징지어진다. 저서 《법학박사 A. 스미스에게 보내는 편지. 그의 벗 데이비드 흄의 생애, 서거 및 철학에 관하여》(기독교도로 불리우는 어떤 사람의 저작, 1784년 옥스포드 제4판)에서 노리지의 고교회 감독 혼박사는 A. 스미스를 다음과 같은 리유로 질책하고있다. 즉 스미스가 스트란씨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그의 《벗 데이비드 (즉 흄) 를 불멸의것으로 만들려고 하기》때문이며 또 그가 공중에게 《흄이 그의 림종의 자리에서도 루키아노스를 읽고 휘스트를 놀기 즐기였다.》고 말하고있기때문이며 또 심지어는 대담하게도 《나는 흄을 그 생존시에나 그 사후에나 약한 인간성이 허락하는 한에 있어서 완전히 현명하고 덕성이 높은 인간의 리상에 가깝다고 생각하였다.》고 쓰고있기때문이다. 이 감독은 분개하여 이렇게 웨친다. 《종교라고 부르는 모든것에 대하여 화해할수 없는 반감을 가졌었으며 그가 할수만 있다면 종교라는 명칭조차 인간의 기억에서 없애버리기 위하여 모든 신경을 긴장시킨 그러한 인간의 성격과 행실을 완전히 현명하고 덕성이 높다고 우리에게 묘사한다는것은 당신으로서 옳은 일인가?》(우와 같은 책, 8페지)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는 제씨여, 기운을 잃지 말라, 무신론은 오래가지 못한다.》(17페지) 애담 스미스는 《〔그의 저서 〈도덕정조론〉 으로〕 무신론을 전국에 선전하는 무서운 악의를 가지고있다.…박사여, 우리는 당신의 간책을 알고있다! 당신은 잘 생각해냈으나 이번에는 오산하였다. 데이비드 흄의 례로써 당신은 무신론이 기운을 잃은자에 대한 유일한 강심제이며 죽음의 공포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라고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였다.…페허가 된 바빌론을 보고 미소하며 파라오의 횡포한 악행을 축복하라!》(우와 같은 책, 20, 21, 22페지) A. 스미스의 청강자이며 정통파인 한사람은 스미스가 죽은후에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흄에 대한 스미스의 우정은…스미스로 하여금 기독교도가 되는것을 방해하였다.…모든 점에서 그는 흄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그대로 믿었다, 흄이 그에게 달이 록색의 치즈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스미스는 그것을 믿었을것이다. 따라서 그는 또한 하느님도 기적도 없다는 흄의 말을 믿었다.…정치상 원칙에서는 그는 공화주의에 가까왔다.》(제임즈 앤더슨 《꿀벌》, 1791~1793년 에딘버러판, 전 18권, 제3권, 166, 165페지) 목사 T. 챠머즈는 A. 스미스가 순전히 악의에서 신교목사들에 대하여 그들이 주의 포도원에서 축복된 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비생산적로동자》라는 범주를 고안해낸것이 아닌가하고 의심을 품고있다.[431]

축적조건하에서는 자본에 대한 로동자들의 종속관계는 견딜만한 형태, 또는 이든의 말대로 《안락하고 자유로운》 형태를 취하고있다. 그 종속관계는 자본의 증대에 따라 더 강화되지 않고 더 확대될뿐이다. 즉 자본의 착취 및 지배 령역이 자본자체의 크기와 그의 신민들의 수에 따라서 확대될뿐이다. 점점 증대하고 점점 더 많이 추가자본으로 전화되는 로동자자신의 잉여생산물중의 보다 많은 부분이 지불수단의 형태로 그들에게 돌아오는데 그 덕택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향락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복, 가구 등등 자기들의 소비기금을 보다 잘 장만하고 지어는 약간의 화폐준비금도 형성할수 있다. 그러나 입는것과 먹는것이 개선되고 대우가 나아지고 특유재산[427]이 다소간 많아지더라도 노예의 종속관계와 그들에 대한 착취가 폐절되지 않는것과 마찬가지로 임금로동자의 종속관계와 그들에 대한 착취도 폐절되지 않는다. 자본축적의 결과로서 로동의 가격이 올라가는것은 사실상 임금로동자자신이 자신을 위하여 이미 주조해낸 금사슬의 크기와 무게가 사슬의 긴장을 풀리게 한다는것을 의미할따름이다. 이 문제에 대한 론쟁에서는 보통 가장 중요한것이 즉 자본주의적생산의 특징적표식이 간과되여왔다. 로동력은 여기에서는 그 작용 또는 그 생산물에 의하여 구매자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매되는것이 아니다. 구매자의 목적은 그의 자본의 증식이며 그가 지불한것보다 더 많은 로동이 포함되여있는 상품의 생산, 따라서 그에게는 비용이 들지 않았으나 상품판매에 의하여 실현되는 가치부분이 포함되여있는 상품의 생산이다. 잉여가치의 생산 또는 돈벌이가 이 생산방식의 절대적 법칙이다. 로동력은 생산수단을 자본으로서 유지하고 그자체의 가치를 자본으로서 재생산하고 부지불로동으로 추가자본

의 원천을 제공하는 한에서만 판매의 대상으로 될수 있다.(76) 따라서 로동력의 판매조건에는 로동자들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간에 로동력의 부단한 재판매의 필연성과 자본으로서의 부의 부단히 확대되는 재생산이 포함된다. 로임은 이미 본바와 같이 그 성질로 보아 항상 로동자측에서 일정한 량의 부지불로동을 제공하는것을 조건으로 한다.① 로동가격의 저하 등등을 수반하는 로임의 제고를 전혀 도외시한다면 로임의 증대는 가장 좋은 경우에도 로동자가 수행하여야 할 부지불로동의 량적감소를 의미할따름이다. 이 감소는 결코 제도 그자체를 위협하는 정도에까지 도달할수는 없다. 로임률로 인한 폭력적충돌은 도외시하고—그리고 애담 스미스가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432] 이러한 충돌에서는 고용주는 언제나 고용주로 남는다—자본축적의 결과 로동가격이 제고되는것은 다음과 같은 두 경우중 어느 한 경우이다.

첫째 경우는 로동의 가격이 제고되여도 축적의 진행은 방해되지 않기때문에 그것이 계속 제고되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이상한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냐 하면 A. 스미스가 말하고있는바와 같이

《리윤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자본은 증대한다. 지어 자본은 이전보다 더 급속히 증대하기까지 한다.…대자본은 리윤이 적어도 리윤이 큰 소자본보다 일반적으로 급속히 증대한다.》(《제 국민의 부》, 제1권, 189페지)

---

(76) 제2판 주: 《그러나 공업로동자들이나 농업로동자들이나 그 고용의 한계는 동일하다. 그것은 즉 기업주가 그들의 로동생산물에서 리윤을 끌어낼수 있는 가능성이다. 로임률이 높아져서 고용주의 리윤이 평균리윤이하로 떨어진다면 고용주는 로동자들을 고용하는것을 그만두든가 또는 로동자들이 로임의 인하를 인정하는 조건하에서만 그들을 고용한다.》(존 웨이드 《중간계급과 로동자계급의 력사》, 1835년 런던 제3판, 240페지)

① 이 책 617~622페지를 보라. —편집자

이 경우에는 명백히 부지불로동의 감소가 자본지배의 확장을 결코 방해하지 않는다. 둘째 경우는 로동가격이 제고되는 결과 리윤에 대한 자극이 감소되므로 축적이 약화되는 경우이다. 축적은 감소된다. 그러나 그 감소와 더불어 그 감소의 원인 즉 자본과 착취를 받는 로동력간의 불균형이 소멸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의 기구는 그것이 일시적으로 조성한 장애물을 자기로서 제거한다. 로동의 가격은 다시 자본의 증식욕에 상응하는 수준에까지 떨어지는데 이 수준이 이제는 임금제고가 시작되기전에 정상적이라고 생각되던 수준보다 낮은가 높은가 또 같은가 하는것과는 별문제이다. 그리하여 첫째 경우에는 로동력 또는 로동자인구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증가가 늦어지기때문에 자본이 과잉하게 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본이 증대하기때문에 착취할수 있는 로동력이 부족하게 된다. 둘째 경우에는 로동력 또는 로동자인구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증가가 촉진되기때문에 자본이 부족하게 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본이 감소하기때문에 착취할수 있는 로동력 또는 오히려 그 가격이 과잉하게 된다. 바로 자본축적의 이 절대적운동이 착취할수 있는 로동력의 량의 상대적운동으로서 반영되는것이며 따라서 후자자체의 운동에 기인하는것 같이 보인다. 수학적표현을 빈다면 축적의 량은 독립변수이고 임금의 량은 종속변수이며 그 반대가 아니다. 그리하여 산업순환의 공황단계에서는 상품가격의 일반적저락이 상대적화폐가치의 상승으로서 표현되고 번영단계에서는 상품가격의 일반적등귀가 상대적화폐가치의 저락으로서 표현된다. 여기로부터 소위 통화학파[156]는 물가가 높을 때에는 류통하는 화폐가 너무 많고 물가가 낮을 때에는 류통하는 화폐가 너무 적다고 결론한다. 그들의 무지와 사실에 대한 완전한

오인(77)은 상술한 축적현상들을, 첫째 경우에는 임금로동자가 너무 적고 둘째 경우에는 임금로동자가 너무 많다는듯이 해석하고있는 경제학자들과 좋은 대비를 이루고있다.

소위 《자연적인구법칙》의 기초에 놓여있는 자본주의적 생산법칙은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즉 자본, 축적 및 임금률간의 관계는 자본으로 전화된 부지불로동과 추가자본의 운동에 필요한 추가로동간의 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것은 결코 두개의 서로 독립한 량 즉 한편으로는 자본의 량과 다른편으로는 로동자인구수의 관계가 아니라 반대로 결국은 동일한 로동자인구의 부지불로동과 지불로동간의 관계에 불과하다. 만약 로동자계급이 제공하고 자본가계급이 축적하는 부지불로동의 량이 지불로동의 대대적인 추가에 의하지 않고서는 자본으로 전화될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증대한다면 임금은 상승하며 그리고 기타 조건이 같다면 부지불로동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그러나 이 감소는 자본을 길러내는 잉여로동이 더는 정상적인 량으로 제공되지 않게 되는 점에 도달하자마자 반작용이 시작된다. 즉 수입중 보다 적은 부분이 자본화되고 축적이 약화되고 임금의 상승운동은 반격을 받는다. 그리하여 로동가격의 상승은 자본주의제도의 기초를 침해하지 않을뿐만아니라 확대된 규모에서의 그 재생산을 보장하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자연법칙으로 신비화된 자본주의적축적의 법칙은 사실상 자본주의적축적의 본성이 자본주의적관계의 부단한 재생산과 부단히 확대되는 규모에서의 그 재생산을 엄중히 위태롭게 할수 있는 로동의 착취도의 어떠한 저하도 또는 로동가격의 어떠한 상승도 배제

---

(77) 칼 맑스 《정치경제학비판》 165페지이하[433]를 참조하라.

한다는것을 표현할따름이다. 그것은 물질적부가 로동자의 발전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도리여 로동자가 현존가치의 증식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생산방식하에서는 그렇게밖에 될수 없다. 인간은 종교에서는 자기자신의 두뇌의 산물에 지배되지만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생산에서는 인간자신의 손의 산물에 지배된다.(77a)

2. 축적과 그에 수반되는 집적의 진행행정에서의 가변자본부분의 상대적감소

경제학자들자신이 말하는데 의하면 임금을 상승시키는것은 사회적부의 현존규모도 아니고 이미 획득된 자본의 크기도 아니며 오로지 축적의 부단한 장대와 그 증대의 속도이다.(A. 스미스, 《제 국민의 부》, 제1편, 제8장) 이상에서 우리는 이 과정의 한 특수한 단계 즉 자본의 기술적구성이 변함없는 경우에 자본의 증대가 일어나는 단계만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과정은 이 단계를 넘어선다.

자본주의제도의 일반적기초가 일단 주어진다면 축적행정에서 사회적로동생산성의 발전이 축적의 가장 강력한 공간으로 되는 시기가 반드시 나타난다. A. 스미스는 이렇게 말한다.

《임금을 높이는 원인 즉 자본의 증대는 로동의 생산능력을 제고시키고 보다 적은 량의 로동이 보다 많은 량의 생산물을 생산할수 있게 한다.》[434]

(77a) 《그런데 이제 자본자체는 인간로동의 산물에 불과하다는것을 증명한 우리의 최초의 연구로 돌아가면…인간이 자기자신의 산물인 자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에 예속되게 될수 있다는것은 전혀 리해할수 없는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는 확실히 그러하므로 스스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자본의 창조자인 로동자가 어떻게 자본의 지배자로부터 자본의 노예로 될수 있었는가?》(폰 튀넨 《고립된 나라》, 1863년 로스토크판, 제2권, 제2부분, 5, 6페지) 튀넨이 의문을 제기한것은 그의 공적이다. 그런데 그의 해답은 아주 유치하다.

토지의 비옥도 등등과 같은 자연조건을 도외시하면 또 단독적으로 로동하는 생산자들의 기능—그런데 이것은 제품의 량에서 량적으로 실증되기보다 오히려 그 품질에서 질적으로 실증된다—을 도외시하면 로동의 사회적생산도는 한 로동자가 주어진 시간에 로동력의 같은 긴장도로써 생산물에 전화시키는 생산수단의 상대적인 량적규모로 표현된다. 로동자가 기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생산수단의 량은 그의 로동생산성의 증대에 따라 증대한다. 이 경우에 이 생산수단들은 이중의 역할을 한다. 어떤 생산수단의 증대는 로동의 생산성 증대의 결과이며 또 어떤 생산수단의 증대는 그 조건이다. 례컨대 공장제수공업적분업과 기계사용에 따라 동일한 시간에 보다 많은 원료가 가공되고 따라서 보다 많은 량의 원료와 보조재료가 로동과정에 들어간다. 이것은 로동생산성의 증대의 결과이다. 다른 한편 사용되는 기계, 역축, 광물성비료, 배수관 등등의 량은 로동생산성증대의 조건이다. 건물, 용광로, 운수수단 등등에 집적된 생산수단의 량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조건이든 결과이든 생산수단에 합체되는 로동력에 비한 생산수단의 량의 증대는 로동생산성의 증대를 표시한다. 따라서 로동생산성의 증대는 이 로동에 의하여 움직이는 생산수단량에 비한 로동량의 감소에 즉 로동과정의 객관적요인에 비한 그 주관적요인의 량적감소에 나타난다.

자본의 기술적구성의 이러한 변화 즉 생산수단에 생명을 주는 로동력에 비한 생산수단의 량의 증대는 이번에는 자본의 가치구성에 즉 자본가치의 가변적구성부분을 희생으로 하는 불변적구성부분의 증대에 반영된다. 례컨대 한 자본에 대하여 백분률로 계산하면 처음에는 50%가 생산수단에, 50%가 로동력에 투하되였는데 후에 로동의 생산도가 발전하면

80%가 생산수단에, 20%가 로동력에 투하되게 되는 등등이다. 자본의 가변부분에 비하여 불변부분이 날로 더 증대하는 이 법칙은 상품가격의 비교분석에 의하여(우에서 전개된바와 같이①) 매 걸음마다 확증된다. 이것은 동일한 한 나라에 대하여 여러가지 경제적시대를 비교해보아도 그렇고 동일한 경제적시대의 각이한 나라를 비교해보아도 그렇다. 소비되는 생산수단의 가치 즉 불변자본부분만을 대표하는 가격요소의 상대적크기는 축적의 진전에 정비례하고 로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다른 가격요소 즉 가변자본부분을 대표하는 다른 가격요소의 상대적크기는 일반적으로 축적의 진전에 반비례할것이다.

그러나 자본의 불변부분에 비한 가변부분의 감소 또는 자본의 가치구성의 변화는 자본의 소재적구성부분의 구성변화를 다만 근사적으로만 표시할뿐이다. 례컨대 방적업에 투하된 자본가치가 현재는 $\frac{7}{8}$이 불변자본, $\frac{1}{8}$이 가변자본이지만 18세기초에는 $\frac{1}{2}$이 불변자본, $\frac{1}{2}$이 가변자본이였다. 현재 일정한 량의 방적로동이 생산적으로 소비하는 원료, 로동수단 등등의 량은 18세기초에 비하여 수백배나 된다. 그 리유는 간단하다. 로동의 생산성의 증대에 따라 로동이 소비하는 생산수단의 량이 증대할뿐만아니라 그 량에 비하여 그 가치가 저하된다는데 있다. 그리하여 생산수단의 가치는 절대적으로는 증대하지만 그 량에 비례하여서는 증대하지 않는다. 따라서 불변자본과 가변자본간의 차액의 증대는 불변자본이 전화되는 생산수단의 량과 가변자본이 전화되는 로동력의 량간의 차액의 증대보다 훨씬 완만하다. 전자의 차액은 후자의 차액과 함께 증대하지만 그 증대정도는 보다 작다.

① 이 책 701~702페지를 보라. —편집자

또한 축적의 진전이 가변자본부분의 상대량을 감소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가변자본부분의 절대량의 증대를 배제하지 않는다. 가령 어떤 자본가치가 처음에 50%의 불변자본과 50%의 가변자본으로 분할되였는데 그후 80%의 불변자본과 20%의 가변자본으로 분할되였다고 하자. 이 기간에 가령 6,000파운드였던 최초의 자본이 18,000파운드로 증대하였다면 그 가변적구성부분도 $\frac{1}{5}$ 증대하였다. 이전에 그것은 3,000파운드였는데 이제는 3,600파운드이다. 그런데 로동수요를 20% 제고하기 위하여 이전에는 20%의 자본증가로서 충분하였지만 이제는 최초의 자본의 3배가 요구된다.

제4편에서 본바와 같이 사회적로동생산력의 발전은 대규모의 협업을 전제로 하며 이 전제하에서만 로동의 분할 및 결합이 조직될수 있으며 생산수단이 대량적집적에 의하여 절약될수 있으며 이미 물질적본성으로 보아 공동적으로만 사용할수 있는 로동수단 례컨대 기계체계 등등이 나올수 있으며 거대한 자연력이 생산에 복무할수 있게 되며 생산과정이 과학의 기술적응용으로 전화될수 있다.① 상품생산에서는 생산수단이 개인의 소유이며 따라서 손로동자는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자기 경영을 위한 수단이 없기때문에 그의 로동력을 상품으로서 팔든가 하는데 이러한 상품생산의 기초우에서는 상술한 전제는 개별적자본의 증대에 의해서만 또는 사회적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이 자본가의 사적소유로 전화되는데 따라서만 실현된다. 상품생산의 지반우에서는 대규모생산은 자본주의적형태로서만 감당할수 있다. 따라서 개별적상품생산자들의 수중에서의 일

① 이 책 374~389페지를 보라. —편집자

정한 자본축적이 특수적인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전제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공업으로부터 자본주의적생산으로의 이행에 있어서 그러한 축적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으면 안되였다.① 그것은 시초축적이라고 부를수 있다. 왜냐 하면 그것은 특수적인 자본주의적생산의 력사적결과가 아니라 그 력사적기초이기때문이다. 그자체가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여기에서는 아직 연구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출발점을 이룬다는것을 말하면 충분하다. 그런데 이 기초우에서 성장하는 사회적 로동생산력을 제고하는 모든 방법은 동시에 또 잉여가치 또는 잉여생산물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며 이 잉여가치 또는 잉여생산물은 그자체가 또 축적의 형성요소인것이다. 따라서 그 방법들은 동시에 자본이 자본을 생산하는 방법 또는 자본의 축적을 촉진하는 방법들이다. 잉여가치의 자본으로의 련속적인 재전화는 생산과정에 들어가는 자본량의 부단한 증대에서 표현된다. 그 증대는 또 생산규모의 확대의 기초로 되며 그에 수반되는 로동생산력제고의 방법의 기초로 되며 또 잉여가치의 가속적생산의 기초로 된다. 따라서 일정한 정도의 자본축적이 특수적인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조건으로 된다면 후자는 반작용적으로 자본의 가속적축적을 일으킨다. 그리하여 자본축적에 따라 특수적인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발전하고 특수적인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 따라 자본축적이 발전한다. 이 두 경제적요인은 서로 주는 자극에 복비례하여 자본의 기술적구성에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때문에 가변적구성부분은 불변적구성부분에 비하여 점점 더 작아진다.

매개의 자본은 생산수단의 크거나 작은 집적이며 그에 상응하여 크거나 작은 로동자군을 지휘한다. 매개의 축적은

① 이 책 356~358페지를 보라. —편집자

새로운 축적의 수단으로 된다. 그것은 자본으로서 기능하는 부의 량의 증대에 따라 개별적자본가들의 수중에의 부의 집적을 확대하며 그리하여 대규모생산의 기초와 특수적인 자본주의적생산방법의 기초를 확대한다. 사회적자본의 증대는 많은 개별적자본의 증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기타 조건이 모두 변함없다고 가정하면 개별적자본은 또 그것과 더불어 생산수단의 집적은 그것이 사회적총자본중에서 차지하는 몫에 비례하여 증대한다. 동시에 최초의 자본에서 가지가 분리되여 새로운 독립적인 자본으로서 기능하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특히 큰 역할을 하는것은 자본가가족들간의 재산의 분할이다. 그리하여 자본축적에 따라 자본가의 수도 많건적건 늘어간다. 이러한 집적은 축적에 직접 의거하고있으며 또는 오히려 축적과 동일한것인데 그것은 두가지 점에 의하여 특징지어진다. 첫째로, 개별적자본가들의 수중에의 사회적생산수단의 집적이 증대하는것은 기타 조건이 변함없다면 사회적부의 증대정도에 의하여 제한된다. 둘째로, 사회적자본중 매개 특수한 생산분야에 고정된 부분은 독립적인 서로 경쟁하는 상품생산자로서 서로 대립하는 많은 자본가들간에 분할된다. 따라서 축적과 그에 수반되는 집적은 많은 점에 분산될뿐만 아니라 기능하고있는 자본의 증대는 신자본의 형성 및 구자본의 분렬과 교차된다. 그리하여 축적은 한편으로는 생산수단과 로동지휘의 집적의 증대로서 나타나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수의 개별적자본의 호상간의 배척으로서 나타난다.

사회적총자본이 많은 개별적자본으로 이렇게 분렬되며 또는 그 각 부분들이 호상 배척하지만 이에 대하여서는 각 부분의 흡인이 반대로 작용한다. 이것은 벌써 생산수단과 로동지휘의 단순한 축적과 동일한 의미의 집적이 아니다. 이것

은 이미 형성된 각 자본의 집적이며 그 개별적독립성의 소멸이며 자본가에 의한 자본가의 수탈이며 다수의 소자본의 소수의 대자본으로의 전화이다. 이 과정이 첫째 과정과 다른 점은, 이 과정은 다만 이미 존재하며 기능하고있는 자본들의 분배의 변경만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그 작용범위는 사회적 부의 절대적증가나 또는 축적의 절대적한계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곳에서 어떤 사람의 수중에서 자본이 대량적으로 증대하는것은 다른 곳에서 다른 많은 사람의 수중에서 자본이 없어지기때문이다. 이것은 축적 및 집적과 구별되는 본래의 의미에서의 집중이다.

이러한 자본의 집중 또는 자본에 의한 자본의 흡인의 법칙을 여기에서 전개할수는 없다. 간단히 사실을 지적하면 충분할것이다. 경쟁전은 상품을 값싸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상품이 값싼것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로동의 생산성에 의하여 결정되며 로동의 생산성은 또 생산규모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보다 큰 자본은 보다 작은 자본을 타승한다. 그리고 우리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발전에 따라 정상적인 조건하에서 어떤 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개별적자본의 최소량도 늘어난다는것을 상기한다. 그러므로 보다 작은 자본은 대공업이 분산적으로 정복하였을뿐이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정복한 그러한 생산분야로 쏠린다. 여기서 경쟁의 격렬한 정도는 서로 경쟁하는 자본들의 수에 정비례하고 그 량에 반비례한다. 경쟁은 언제나 많은 소자본가의 몰락으로 끝나는데 그들의 자본은 일부분은 승리자의 수중으로 넘어가고 일부분은 파멸한다. 그뿐만아니라 자본주의적생산과 함께 전혀 새로운 힘인 신용제도가 형성된다. 이 신용제도는 처음에는 축적의 보잘것없는 조수로서 은밀히 기여들며 사회의 표면에 많

은 또는 적은 량으로 산재하는 화폐자금을 보이지 않는 실에 의하여 개별적자본가나 결합자본가의 수중으로 끌어들인다. 그러나 얼마 안가 그것은 경쟁전에서 새로운 무서운 무기로 되며 나중에는 자본집중을 위한 거대한 사회적기구로 전화한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축적이 발전함에 따라 그와 같은 정도로 집중의 두개의 가장 강력한 공간인 경쟁과 신용도 발전한다. 이와 더불어 축적의 진전은 집중시킬수 있는 소재 즉 개별적자본을 증가시키며 동시에 자본주의적생산의 확대는 과거의 자본집중이 없이는 실현될수 없는 강대한 산업기업을 위하여 한편으로는 사회적욕망을 조성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적수단을 조성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개별적자본의 호상 흡인력과 집중의 경향은 과거 어느때보다도 강하다. 그러나 비록 집중운동의 상대적넓이와 세기는 이미 달성된 자본주의적부의 량과 경제기구의 우월성에 의하여 어느 정도까지 규정된다 하더라도 집중의 진전은 결코 사회적자본의 실제적인 증대량에 의존하는것은 아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점이 집중을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의 다른 표현에 불과한 집적으로부터 구별한다. 집중은 기존자본의 분배에서의 단순한 변동에 의하여, 사회적자본의 각 구성부분의 단순한 량적조합의 변동에 의하여 생길수 있다. 한곳에서 자본이 어떤 사람의 수중에서 거대한 량으로 증대할수 있는것은 다른 곳에서 자본이 많은 개별적사람들의 수중으로부터 탈취되기때문이다. 어떤 일정한 사업부문에서 거기에 투하된 모든 자본이 유일한 자본으로 융합된다면 집중은 극한에 달할것이다.[77b] 한 사회

(77b) {제4판 주: 최근의 영국과 미국의 《트레스트》들은 적어도 어떤 사업부문의 모든 대기업을 실제적독점권을 가진 하나의 큰 주식회사로 통합하려 함으로써 벌써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가고있다. —F. E.}

내에서 사회적총자본이 유일한 자본가의 수중에, 또는 유일한 자본가회사의 수중에 통합될 때에야 비로소 집중이 이러한 한계에 도달할것이다.

집중은 축적의 사업을 보충해준다. 그것은 그에 의하여 산업자본가들이 그들의 경영규모를 확대할수 있기때문이다. 이 경영규모의 확대가 축적의 결과이든 집중의 결과이든간에, 집중이 합병이라는 강제적방법으로 수행되든—이 경우에는 어떤 자본이 다른 자본들에 대하여 우세한 인력중심이 되여 다른 자본들의 개별적응집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산산이 분산된 파편들을 자기편에 끌어당긴다—이미 형성되였거나 형성과정에 있는 많은 자본들의 융합이 주식회사의 형성이라는 보다 원활한 방법으로 진행되든간에 경제적작용은 언제나 같다. 어디서나 산업기업들의 규모의 확대는 많은 사람들의 총로동을 보다 광범히 조직하기 위한, 그 로동의 물질적추동력을 보다 광범히 발전시키기 위한 즉 분산적이며 관습적으로 진행되는 생산과정을 사회적으로 결합되고 과학적으로 처리되는 생산과정으로 점차 전화시키기 위한 출발점으로 된다.

그러나 축적 즉 원형운동에서 라선형운동으로 이행하는 재생산에 의한 자본의 점차적증가는 사회적자본을 이루는 개별적구성부분들의 량적조합의 변동을 필요로 할따름인 집중에 비하면 극히 완만한 과정이라는것이 명백하다. 축적에 의해서 약간의 개별적자본들이 증대하여 철로부설을 할 때까지 기다릴수밖에 없었다면 세계에는 아직 철도가 없었을것이다. 그러나 집중은 주식회사에 의하여 순식간에 이것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집중은 이와 같이 축적의 작용을 강화하고 촉진함과 동시에 자본의 기술적구성의 변혁을 즉 자본의 가변부분을 희생으로 하여 불변부분을 증대시키는, 따라서 로동에

대한 수요를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변혁을 확대하고 촉진한다.

집중에 의하여 하루밤사이에 결합되는 자본량은 다른 자본량과 마찬가지로(다만 더 급속히) 재생산되고 증대하며 그리하여 사회적축적의 새로운 강력한 공간으로 된다. 따라서 사회적축적의 진전에 관하여 말할 경우에는 거기에는—오늘에는—이미 집중의 작용이 무언중에 포함되여있다.

정상적축적행정에서 형성된 추가자본(제22장 제1절을 보라.)은 주로 새로운 발명과 발견, 일반적으로 산업적개량의 리용을 위한 수단으로 된다. 그러나 구자본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갱신되여 그 탈을 벗고 기술적으로 완성된 모습을 가지고 재생산하는데 이렇게 되면 보다 많은 기계와 원료를 움직이는데 보다 적은 로동으로 충분하게 된다. 이로부터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로동수요의 절대적감소는 두말할것없이 이 갱신과정을 통과하는 자본이 이미 집중운동에 의하여 다량으로 집적되여있으면 있을수록 심하게 된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축적행정에서 형성되는 추가자본은 그 량에 비하여 더욱더 소수의 로동자를 끌어들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기적으로 새로운 구성으로 재생산되는 구자본은 이전에 그것이 고용한 로동자들을 더욱더 많이 구축한다.

3. 상대적과잉인구 또는 산업예비군의 루진적생산

자본의 축적은 최초에는 오직 자본의 량적확대로서만 나타나지만 그것은 우에서 본바와 같이 자본구성의 부단한 질적변화를 수반하여, 자본의 가변적구성부분을 희생으

로 하는 불변적구성부분의 부단한 증대를 수반하여 진행된다.(77c)①

특수적인 자본주의적생산방식, 그에 상응하는 로동생산력의 발전, 그에 의하여 초래되는 자본의 유기적구성의 변화는 축적의 진전 또는 사회적부의 증대와 보조를 맞추는데만 그치지 않는다. 그것들은 비할바없이 급속히 발전한다. 왜냐하면 단순한 축적 또는 총자본의 절대적확대는 총자본의 개별적요소들의 집중을 수반하며 또 추가자본의 기술적변혁은 원 자본의 기술적변혁을 수반하기때문이다. 그리하여 축적의 진전에 따라 불변자본부분과 가변자본부분의 비례는 변동하여 처음에는 1:1이던것이 2:1, 3:1, 4:1, 5:1, 7:1 등등으로 되고 따라서 자본이 커짐에 따라 그 총가치의 $\frac{1}{2}$이 아니라 루진적으로 $\frac{1}{3}$, $\frac{1}{4}$, $\frac{1}{5}$, $\frac{1}{6}$, $\frac{1}{8}$ 등등만이 로동력으로 전화하게 되며 반대로 $\frac{2}{3}$, $\frac{3}{4}$, $\frac{4}{5}$, $\frac{5}{6}$, $\frac{7}{8}$ 등등이 생산수단으로 전화되게 된다. 그리하여 로동에 대한 수요는 총자본의 크기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총자본의 가변적구성부분의 크기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므로 이 수요는 앞에서 가정한바와 같이 총자본의 증대에 비례하여 증대하는것이 아니라 총자본의 증대에 따라 루진적으로 감소한다. 그것은 총자본의 크기에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하며 또 총자본의 증대에 따라 가속적으로, 루진적으로 감소한다. 총자본의 증대에 따라 총자본

(77c) {제3판 주: 맑스의 자가용본에는 여기에 다음과 같은 방주가 기록되여 있다. 《추후의 리용을 위하여 지적해둔다. 즉 확대가 다만 량적이라면 동일한 생산부문의 자본이 크든작든 리윤은 선대자본의 크기에 비례한다. 량적확대가 질적으로 작용하면 그와 동시에 보다 큰 자본의 리윤률이 높아진다.》 —F. E.}

① 이 책 718~719페지를 보라. —편집자

의 가변적구성부분 즉 총자본에 합체되는 로동력도 증가하기는 하지만 그 증대하는 비률은 부단히 작아진다. 축적이 주어진 기술적기초우에서의 생산의 단순한 확대로서 작용하는 중간기간은 단축된다. 일정한 수의 추가로동자수를 흡수하기 위해서 또 구자본도 부단히 형태를 변경하므로 이미 기능하고있는 로동자수를 일시키기 위해서도 점점 속도를 증가하는 총자본의 축적이 필요할뿐만이 아니다. 이 증대하는 축적과 집중은 그자체가 또 자본구성의 새로운 변화 즉 자본의 불변적부분에 비한 가변적부분의 더 가속도적인 새로운 감소의 원천으로 된다. 총자본의 증가에 따라 촉진되며 총자본자체의 증대보다 급속히 촉진되는 그 가변적구성부분의 이 상대적감소는 타방으로는 반대로 가변자본 또는 로동자인구의 고용수단의 증대보다 언제나 급속한, 로동자인구의 절대적증가인듯이 보인다. 오히려 자본주의적축적은 부단히 또 그 능력과 규모에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과잉한 즉 자본의 평균적인 증식욕에 비하여 과잉한, 따라서 여분의 또는 추가적인 로동자인구를 생산한다.

사회적총자본을 보면 그 축적운동이 때로는 주기적변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운동의 계기들이 동시에 각이한 생산분야에 분배되기도 한다. 약간의 분야들에서는 자본구성의 변화가 자본의 절대량의 증가 없이 단순한 집적①의 결과로 일어난다. 다른 분야들에서는 자본의 절대적증대가 그 가변적구성부분 또는 그것이 흡수하는 로동력의 절대적감소와 결부되여있다. 또 약간의 분야들에서는 자본이 때로는 일정한 기술적기초우에서 계속 증대하며 그 증대에 비례하여 추가로동력을 흡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기적구성에 변화가

① 제3판과 엥겔스가 교열한 영문판에는 《집중》으로 되여있다. —편집자

일어나 자본의 가변적구성부분이 축소하기도 한다. 모든 분야에서 가변자본부분의 증대, 따라서 또 취업로동자수의 증가는 언제나 과잉인구의 심한 동요와 일시적인 과잉인구생산과 결합되여있다. 그런데 이 과잉인구의 생산이 이미 취업하고있는 로동자들의 배척이라는 보다 눈에 띄는 형태를 취하든, 추가로동자인구를 보통의 배수구에로 흡수하기 곤난하다는, 그리 눈에 띄지는 않으나 효과는 그에 못지 않은 형태를 취하든 그것은 마찬가지이다.(78) 이미 기능하고있는 사회적 자본량의 증대와 그 증대정도에 따라, 생산규모와 기능하는 로동자수의 확장에 따라, 그들의 로동의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부의 모든 원천의 흐름이 넓어지고 넘쳐나게 됨에 따라 로동자에 대한 자본의 보다 큰 흡수력과 그보다 큰 배척력이 결합되는 규모도 확장되며, 자본의 유기적구성과 자본의 기술적형태의 변화도 더 빨라지며 또 때로는 동시적으로 때로는 서로 교체적으로 이 변화에 휘말려드는 생산분야들의 범

---

(78)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인구조사는 특히 다음과 같은것을 보여주고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전체 인원(토지소유자, 차지농업가, 원예가, 유목자 등등을 포함)—1851년에 2,011,447명, 1861년에 1,924,110명 즉 87,337명 감소. 모방직공장—1851년에 102,714명, 1861년에 79,242명. 견직물공장—1851년에 111,940명, 1861년에 101,678명. 날염공—1851년에 12,098명, 1861년에 12,556명, 사업이 크게 확장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수가 적게 증가된것은 취업로동자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되였음을 의미한다. 모자제조공—1851년에 15,957명, 1861년에 13,814명. 맥고모자 및 채양없는 모자 제조공—1851년에 20,393명, 1861년에 18,176명. 맥아제조공—1851년에 10,566명, 1861년에 10,677명. 양초제조공—1851년에 4,949명, 1861년에 4,686명, 이 인수의 감소는 특히 가스조명의 증가로 인한것이다. 빗제조공—1851년에 2,038명, 1861년에 1,478명. 제재공—1851년에 30,552명, 1861년에 31,647명, 이 인수가 적게 증가된것은 제재기가 급속히 보급된 결과이다. 못제조공—1851년에 26,940명, 1861년에 26,130명, 이 감소는 기계의 경쟁으로 인한것이다. 석 및 동 광산로동자—1851년에 31,360명, 1861년에 32,041명. 반대로 면방직업—1851년에 371,777명, 1861년에 456,646명. 탄광—1851년에 183,389명, 1861년에 246,613명. 《로동자수의 증가는 대체로 1851년이래, 기계가 이때까지 아직 성과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부문들에서 가장 크다.》(《1861년도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인구조사》, 1863년 런던판, 제3권, 36페지)

위도 더 확대된다. 따라서 로동자인구는 그들자신이 자본축적을 생산하는 동시에 그에 따라 점점 더 큰 규모로 그들자신의 상대적과잉화수단도 생산한다.(79) 이것이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 특유한 인구법칙이며 사실상 어느 특수한 력사적생산방식에도 다 그 특수한, 력사적으로 타당한 인구법칙이 있는것이다. 추상적인 인구법칙이란 다만 동식물에 대하여 력사적으로 인간이 간섭하지 않은 한 동식물계에만 존재할뿐이다.

그런데 과잉로동자인구가 축적의 필연적산물 또는 자본주의적기초우에서의 부의 발전의 필연적산물이라면 이번에는 또 이 과잉인구가 자본주의적축적의 공간으로, 지어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존재조건으로 된다. 그것은 자본이 자유로

---

(79) 가변자본의 상대량의 루진적감소의 법칙과 또 그것이 임금로동자계급에 미치는 영향은 고전학파의 약간의 우수한 경제학자들이 파악하였다기보다 오히려 예감하고 있었다. 이 점에서 최대의 공적은 죤 바튼에게 속한다. 하기는 그도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불변자본과 고정자본과를 혼동하며 가변자본과 류동자본과를 혼동하지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로동에 대한 수요는 고정자본의 증가에 의존하는것이 아니라 류동자본의 증가에 의존한다. 이 두 종류의 자본간의 비례가 어느때 어느 환경에서도 동일하다는것이 사실이라면 확실히 취업로동자수는 국가의 부에 비례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가정은 전혀 현실적이 못된다.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보급됨에 따라 고정자본은 류동자본에 비하여 점점 더 큰 몫을 차지하게 된다. 한필의 영국제모슬린생산에 투하된 고정자본액은 같은 한필의 인도제모슬린에 투하된것보다 적어도 백배나, 아마도 천배나 클것이다. 그런데 류동자본의 몫은 백분의 1 또는 천분의 1 정도이다.…년저축총액이 고정자본에 첨가되더라도 로동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을것이다.》(죤 바튼 《사회의 로동자계급의 형편에 영향을 주는 제 사정의 고찰》, 1817년 런던판, 16, 17페지) 《나라의 순수입을 증가시킬수 있는 동일한 원인이 동시에 인구를 과잉화하고 로동자들의 형편을 악화시킬수 있는것이다.》(리카도 《정치경제학 및 조세의 원리》, 469페지)① 자본의 증가에 따라 《(로동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될것이다》.(우와 같은 책, 480페지 주) 《로동의 유지에 충당되는 자본액은 자본총액의 변화에는 관계없이 변화할것이다.…취업자수의 심한 동요와 대빈곤은 자본자체가 보다 풍부하게 됨에 따라 보다 빈번해질수 있을것이다.》(리처드 죠운즈 《정치경제학서론강의》, 1833년 런던판, 52페지) 《(로동에 대한) 수요는…총자본의 축적에 비례하여 증가되지는 않을것이다.…그러므로 재생산에 돌려진 국민자본의 모든 증가가 사회의 진보에 따라 로동자들의 형편에 점점 더 작은 영향을 주게 된다.》(램지 《부의 분배에 관한 론술》, 90~91페지)

---

① 이 책 497페지를 보라. —편집자

리용할수 있는 산업예비군을 형성하는데 이 예비군은 마치도 자본이 자기의 비용으로 양육한것이기나 한것처럼 절대적으로 자본에 예속된다. 이 과잉인구는 현실적인구증가의 한계와는 관계없이 자본의 변화되는 증식욕을 위하여 언제나 착취할수 있는 인간재료를 만들어낸다. 축적과 그에 수반하는 로동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돌발적인 자본의 팽창력이 증대하는데 그것은 지금 기능하고있는 자본의 신축성이 늘어나고 절대적부—자본은 이 부의 신축성있는 한 부분에 불과하다—가 증대하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며 또 비단 신용이 특별한 자극을 받을 때마다 즉시로 이 부의 비상히 큰 부분을 생산을 위하여 추가자본으로서 봉사하게 하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다. 그뿐만아니라 생산과정자체의 기술적조건 즉 기계, 운수수단 등등이 최대의 규모로 가장 급속하게 잉여생산물을 추가적생산수단으로 전화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사회적부중에서 축적의 진전에 따라 팽창하여 추가자본으로 전화될수 있는 큰 량은 시장이 갑자기 확대되는 그러한 구생산부문으로 맹렬하게 밀려들든가 또는 구생산부문들의 발전에 따라 그 필요가 생기는 철도 등등과 같은 재로 개발된 부분으로 밀려든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는 갑자기 그리고 다른 분야의 생산규모를 해침이 없이 결정적지점에 많은 인간을 투하하지 않으면 안된다. 과잉인구가 그것을 제공한다. 현대산업의 특징적인 생활과정 즉 중등의 활기증진, 생산의 고도의 번망, 공황, 정체의 각 시기가 보다 작은 변동에 중단되면서 10년을 1기로 하는 순환을 이루는 형태는 산업예비군 또는 과잉인구의 부단한 형성, 그 많거나 적은 흡수 그리고 그 재형성에 기초하고있다. 산업순환의 국면들의 교체가 이번에는 새로운 과잉인구를 보충하며 또 과잉인구재생산의 가장 정력적인 요인의

하나로 된다.

현대산업의 이 독특한 생활과정은 인류의 과거의 어떤 시대에도 보지 못하던것이며 자본주의적생산의 유년기에도 나타날수 없었다. 그때 자본의 구성은 극히 완만하게만 변화하였다. 따라서 대체로 로동에 대한 수요의 증대는 자본의 축적에 상응하였다. 자본축적의 진전이 현대에 비하면 완만하였지만 그것은 착취할수 있는 로동자인구의 자연적한계에 부닥쳤으며 이 한계는 후에 언급하게 될 강제수단에 의하여서만 제거할수 있었다. 생산규모의 돌연적이며 비약적인 팽창은 생산규모의 돌연적인 축소의 전제이다. 후자는 또 전자를 야기시키지만 그러나 전자는 리용할수 있는 인간재료 없이는, 인구의 절대적증가에 의존하지 않는 로동자의 증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로동자의 이 증가는 로동자들의 일부분을 부단히 《유리》시키는 단순한 과정에 의하여, 생산의 증가에 비하여 취업로동자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조성된다. 따라서 현대공업의 모든 운동형태는 로동자인구의 일부분이 실업자 또는 반실업자로 부단히 전화하는데서 발생한다. 정치경제학의 천박성은 특히 정치경제학이 산업순환의 국면교체의 단순한 징조에 불과한 신용의 팽창과 축소를 그 교체의 원인으로 보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마치도 천체가 일단 일정한 운동에 투입되면 부단히 그 운동을 반복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생산도 일단 팽창과 축소가 교체되는 이 운동에 들어가면 부단히 그 운동을 반복한다. 결과가 이번에는 원인으로 되며 그리하여 자기자체의 조건을 부단히 재생산하는 전 과정의 국면교체가 주기성의 형태를 취한다. 이 주기성이 일단 고정되면 정치경제학까지도 상대적과잉인구 즉 자본의 평균적인 증식욕에 비하여 과잉한 인구의 생산

을 현대산업의 생존조건으로 리해한다.

전에는 옥스포드대학의 정치경제학교수였고 후에는 영국 식민성의 관리였던 H. 메리베일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공황시에 국가가 몇십만의 과잉한 빈민을 국외로 이주시킴으로써 그들을 처리하려고 애쓴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것인가? 로동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자마자 로동의 부족을 느끼게 될것이다. 인간의 재생산이 아무리 빨리 진행된다 하더라도 성인로동자를 보충하기 위하여서는 어쨌든 한세대라는 기간이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 공장주들의 리윤은 주로 수요가 왕성한 호경기를 리용하며 그리하여 수요가 약화되는 시기의 손실을 보상하는 그 힘에 달려있다. 이 힘은 기계와 육체로동에 대한 지휘권에 의하여서만 그들에게 보장된다. 그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리용할수 있는 일손을 발견하여야 하며 시장의 정형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그들의 영업활동을 강화하거나 또는 수축시킬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치렬한 경쟁속에서 이 나라의 부의 기초를 이루는 우세를 유지할수 없을것이다.》(80)

말사스는 그자신의 편협한 견해로 말미암아 과잉인구를 로동자인구의 상대적과잉화로서가 아니라 절대적과도증식으로서 설명하고있지만 이 말사스까지도 그것을 현대산업의 필요물로 인정하고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결혼에 관한 신중한 관습도 만약 그것이 공업과 상업에 주로 의존하고있는 나라의 로동계급사이에서 상당한 정도로 실시된다면 그 나라에 유해로울수 있다.…특수한 수요가 있어서 일어나는 추가로동자가 시장에 공급되는것은 인구의 성질로 보아 16년 또는 18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지만 저축에 의하여 수입이 자본으로 전화하는것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수행될수 있다. 나라는 언제나 로동기금이 흔히 인구보다 급속히 증가하는 형편에 있다.》(81)

---

(80) H. 메리베일 《식민 및 식민지에 관한 강의》, 1841~1842년 런던판, 제1권, 146페지.

(81) 말사스 《정치경제학원리》, 215, 319, 320페지. 이 저서에서 말사스는 드다여 씨스몽디의 도움을 받아 자본주의생산의 미묘한 삼위1체인 과잉생산, 과잉인구, 과잉소비—실로 대단히 미묘한 세 괴물을 발견하고있다. F. 엥겔스의 《국민경제학비판대

정치경제학은 이와 같이 로동자의 상대적과잉인구의 부단한 생산을 자본주의적축적의 하나의 필요물이라고 선언한 다음에 적절하게도 로처녀의 자태를 취하면서 그의 《아름다운 리상》인 자본가의 입에서, 로동자들자신이 창조한 추가자본에 의하여 거리에 내던져진 《과잉자들》에게 하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오게 하고있다.

《우리 공장주들은 그대들의 생존에 필요한 자본을 증대시킴으로써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것을 그대들을 위하여 하고있다. 그러니 그대들은 그대들의 인수를 생존수단에 대응시킴으로써 그외의것을 해야 한다.》(82)

자본주의적생산은 자연적인구증가에 의하여 제공되는, 자유로 리용할수 있는 로동력의 량으로서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적생산은 자기가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하여 이 자연적제한에 구애되지 않는 산업예비군을 요구한다.

이제까지는 우리는 가변자본의 증감이 취업로동자수의 증감에 정확히 대응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가변자본은 그 지휘하에 있는 로동자수가 변함없으며 지어는 감소되더라도 증대하는 경우도 있다. 즉 개별적 로동자가 보다 많은 로동을 제공하고 따라서 그의 로임이 증가하는 경우—로동가격이 변함없든가 지어는 저락되더라도 로동량이 증대하는것보다 완만하게만 저락된다면—가 바로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에 가변자본의 증대는 로동량의 증가의 지표로는 되지만 취업로동자수의 증가의 지표로는 되지 않는다. 매개 자본가의 절대적관심사는 일정한 량의 로동을 보다 적은 수의 로동자에게서 짜내는데 있으며 마찬가지로 값싸게, 지어는 더 값싸게 보다 많은 수의 로동자에게서 짜

강》, 107페지이하[435]를 참조하라.

(82) 해리어트 마티노우 《만체스터의 파업》, 1832년판, 101페지.

내는데 있는것이 아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불변자본의 지출이 류동하는 로동량에 비례하여 증대하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불변자본의 지출이 훨씬 완만하게 증대한다. 생산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동기가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그 힘은 자본의 축적에 따라 증가한다.

이미 본바와 같이 자본주의적생산방식과 로동생산력의 발전—그것은 축적의 원인이기도 하고 그 결과이기도 하다—으로 자본가는 개별적로동력의 외연적 또는 내포적 착취를 증대함으로써 같은 액의 가변자본지출로써 보다 많은 로동을 류동시킬수 있다.① 그리고 또 이미 본바와 같이 자본가는 점점 더 숙련로동자를 미숙련로동자로, 성숙로동력을 미성숙로동력으로, 남성로동력을 녀성로동력으로, 성년로동력을 소년 또는 아동 로동력으로 구축함으로써 같은 자본가치로 보다 많은 로동력을 구매한다.②

그리하여 축적이 진행됨에 따라 한편으로는 보다 많은 가변자본이 보다 많은 로동자를 모집하지 않고도 보다 많은 로동을 류동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량의 가변자본이 같은 량의 로동력으로써 보다 많은 로동을 류동시키며 끝으로 보다 고급적인 로동력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저급적인 로동력을 보다 많이 류동시킨다.

그러므로 상대적과잉인구의 생산 또는 로동자들의 유리는 그렇지 않아도 축적의 진전에 따라 가속화되는 생산과정의 기술적변혁보다 급속히 진행되며 또 기술적변혁에 상응하는 불변자본부분에 비한 가변자본부분의 비례적감소보다 급속히 진행된다. 생산수단은 그 규모와 작용력이 증대함에 따

① 이 책 460~480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이 책 453~463페지를 보라. —편집자

라 로동자들의 취업수단으로 되는 정도가 보다 감소된다면 이 관계자체는 로동생산력이 장성함에 따라 자본이 로동자에 대한 그 수요보다 더 급속하게 그 로동공급을 증대시킨다는 사실에 의하여 다시 변화된다. 로동계급중 취업한 부분의 과도로동은 그의 예비군대렬을 증대시키는데 반대로 이 예비군 대렬의 경쟁이 취업로동자들에게 가하는 압력의 증대는 또 취업로동자들로 하여금 과도로동을 하지 않을수 없게 하며 자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수 없게 한다. 로동계급의 일부분이 그 다른 일부분의 과도로동으로 말미암아 강제적안일의 고통을 당하는것과 또 그 반대로 되는것은 개별적자본가들의 치부의 수단으로 되며(83) 동시에 사회적축적의 진전에 상응하는 규모에서의 산업예비군의 생산을 촉진한다. 이 계기가

(83) 지어는 1863년의 면화기근시에도 블랙번의 면방적공들의 한 소책자에서는 과도로동—이것은 공장법의 덕분으로 물론 성년남성로동자들만 하게 되였지만—에 대해서 맹렬히 비난하고있다. 《이 공장에서는 성년로동자들이 하루에 12시간 내지 13시간 로동할것을 요구하고있는데 한편 자기의 가족을 부양하고 자기 친구들이 과도로동으로 일찍 죽는것을 구제하기 위하여 얼마간이라도 일하고싶어하는 수백명의 로동자들은 안일을 강제당하고있다.》 소책자는 또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우리는 묻고싶다. 이 시간외로동의 관례가 주인들과 〈종복들〉 간의 그래도 참을수 있을만한 관계를 가질수 있게 하는가 어떤가? 과도로동의 희생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강제적안일을 선고받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공평을 느끼고있다. 이 지방에는 로동이 공평하게 분배된다면 모든 사람들을 부분적으로 취업시킬만한 충분한 일감이 있다. 일부 로동자들은 일이 없어 자선에 의하여 연명하고있는데 다른 일부 로동자들에게는 과도로동을 시킬것이 아니라 적어도 현사태가 지속되는 동안은 전반적으로 단시간로동제도를 실시할것을 우리가 고용주들에게 권고하는것은 다만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는것뿐이다.》 (《공장감독관보고. 1863년 10월 31일》, 8페지) 《산업 및 상업에 관한 론술》의 저자①는 언제나와 같은 확실한 자산계급적본능으로써 상대적과잉인구의 취업로동자에 대한 영향을 리해하고있다. 《이 왕국에서의 라태의 다른 또 하나의 원인은 로동자수의 부족이다. 제품에 대한 어떤 비상한 수요로 하여 로동량이 부족하게 될 때마다 로동자들은 그들자신의 중요성을 느끼며 또 그들의 고용주들에게도 그것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이자들의 근성은 아주 타락하였기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 로동자무리는 단합하여 온종일 일하지 않고 빈들거림으로써 주인들을 곤경에 빠뜨리고있다.》 (《산업 및 상업에 관한 론술》, 27, 28페지) 요컨대 이자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한다는것이다.

① J. 켄니안을 말한다. —편집자

상대적과잉인구의 형성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것은 례컨대 영국이다. 영국이 가지고있는 로동《절약》을 위한 기술적수단은 매우 거대하다. 그러나 래일이라도 일반적으로 로동이 합리적인 정도로 제한되고 또 로동계급의 여러층을 위하여 년령과 성별에 상응하게 로동의 등급이 구분되게 된다면 그 경우에는 국민적생산을 오늘의 규모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현존로동자인구로써는 절대로 부족할것이다. 그때에는 《비생산적인》 로동자의 대다수가 《생산적인》 로동자로 전화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대체로 로임의 일반적운동은 오직 산업순환의 국면교체에 상응하는 산업예비군의 팽창과 수축에 의하여 규제되고있을뿐이다. 따라서 이 운동은 로동자인구의 절대다수의 운동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로동계급이 현역군과 예비군으로 분렬되는 비률의 변동에 의하여, 과잉인구의 상대적량의 증감에 의하여 그리고 또 과잉인구가 때로는 흡수되며 때로는 다시 유리되는 정도에 의하여 규정된다. 현대산업에서는 10년을 일기로 하는 순환과 순환의 주기적국면이 있으며 또 이 국면들은 축적이 진전함에 따라 점점 더 급속하게 호상 뒤따라 일어나는 불규칙적동요에 의하여 착잡하게 되는데 로동의 수요와 공급이 자본의 팽창과 수축에 의해서, 따라서 그때그때의 자본의 증식욕에 의해서 규제되는—따라서 로동시장은 때로는 자본이 팽창되기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급과소로 나타나며 때로는 자본이 수축되기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급과잉으로 나타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본의 운동이 인구량의 절대적운동에 의존한다고 하는것은 현대산업에 대해서 실로 훌륭한 법칙일것이다. 그러나 이 법칙은 정치경제학의 교조이다. 이 교조에 의하면 자본축적의 결과 로임이 오른다.

로임의 제고는 로동자인구의 보다 급속한 증가에 박차를 가하는데 이 증가가 계속되여 로동시장이 공급과잉으로 되며 따라서 자본이 로동자공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된다. 그리하여 로임이 내리며 이번에는 사태가 정반대로 나간다. 로임의 저하에 의하여 로동자인구는 점차 감소되며 그리하여 로동자인구에 비하여 자본은 다시 과잉하게 되든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설명하듯이 로임의 저하와 그에 상응하는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의 증대는 다시 축적을 촉진하고 그와 동시에 낮아진 임금이 로동계급의 증가를 억제한다. 그리하여 또다시 로동자공급이 로동수요보다 적게 되고 임금이 오르는 등등의 상태가 조성된다. 이것은 발전된 자본주의적생산에 대하여 얼마나 훌륭한 운동방법인가! 임금상승의 결과 실지 로동능력있는 인구의 그 어떤 실제적인 증가가 생기기 전에, 산업전이 진행되고 전투가 벌어지고 승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안될 기간이 여러번 경과할것이다.

1849년과 1859년사이에 곡물가격의 저락과 동시에 실지로 보면 순전히 명목적인 임금인상이 영국의 농업지대들에서 있었는데 레컨대 윌트셔에서는 주임금이 7실링에서 8실링으로, 도셋셔에서는 7실링 또는 8실링에서 9실링으로 인상되였다, 등등. 이것은 농업과잉인구의 비상한 류출의 결과이며 이 류출은 전쟁[436]을 위한 수요, 철도부설, 공장, 광산 등등의 대확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것이였다. 로임이 낮으면 낮을수록 극히 적은 로임의 상승이라도 백분률로는 그만큼 더 높이 나타난다. 레컨대 주임금이 20실링이던것이 22실링으로 오른다면 10% 오른것으로 되는데 그것이 7실링에 불과하던것이 9실링으로 오르면 $28\frac{4}{7}$% 오른것으로 되며 이것

은 대단한것으로 들린다. 여하튼 차지농업가들은 고함을 쳤고 런던 《경제학자》지까지도 아주 진지하게 기아임금에 관하여 《전반적이며 실질적인 인상》(84)이라고 지껄이였다. 그러면 차지농업가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그들은 교조적인 경제학자들의 두뇌가 생각한바와 같이 그러한 후한 지불로 하여 농업로동자들이 증가하여 그들의 임금이 다시 내리지 않을수 없을 때까지 기다렸는가? 그들은 보다 많은 기계를 채용하였다. 그리하여 로동자들은 순식간에 차지농업가들도 만족할 정도로 또다시 《과잉》하게 되였다. 이제는 이전보다 《더 많은 자본》이 그것도 보다 생산적인 형태로 농업에 투하되였다. 그리하여 로동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뿐만아니라 절대적으로도 감소되였다.

이 경제학적허구는 로임의 일반적운동을 규제하는 법칙 또는 로동계급 즉 총로동력과 사회적총자본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법칙을 로동자인구를 특수한 생산분야들에 분배하는 법칙들과 혼동하고있다. 례컨대 만약 호경기로 하여 일정한 생산분야에서 축적이 특히 활발하고 리윤이 평균리윤보다 높아서 추가자본이 이 분야로 밀려들어오면 물론 로동에 대한 수요와 로임은 올라간다. 보다 높은 로임은 로동자인구의 보다 많은 부분을 호경기에 있는 분야로 끌어들이며 드디여 이 분야는 로동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며 임금은 결국 다시 이전의 평균수준에로 또한 로동력이 너무 많이 밀려든 경우에는 그 수준이하로 떨어진다. 그때에는 이 사업부문으로 로동자들이 흘러들어가는것은 정지될뿐만아니라 흘러나가게까지 된다. 이러한 경우에 경제학자는 《어디에서 또 어떻게》 임금의

(84) 《경제학자》, 1860년 1월 21일.

증대에 따라 로동자수의 절대적증가가 일어나며 로동자수의 절대적증가에 따라 임금이 내려가는가를 본것 같이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가 보고있는것은 하나의 특수한 생산분야의 로동시장의 국부적동요에 불과하며 그가 보고있는것은 자본의 욕망의 변화에 따라 각이한 자본투하분야로 로동자인구가 분배되는 현상에 불과하다.

산업예비군은 정체나 중등의 번영시기에는 현역로동자군에 압박을 가하고 과잉생산이나 발작의 시기에는 현역로동자군의 요구를 억제한다. 따라서 상대적과잉인구는 로동의 수요공급의 법칙이 운동하는 배경이다. 그것은 이 법칙의 작용범위를 자본의 착취욕과 지배욕에 절대적으로 적합한 한계내로 몰아넣는다. 여기서 경제학적변호론의 위업의 하나로 돌아가는것이 적절할것이다. 우리가 기억하고있는바와 같이 새로운 기계의 채용 또는 낡은 기계의 확장에 의하여 가변자본의 일부분이 불변자본으로 전화되는 경우에 자본을 《구속》하며 또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로동자들을 《유리》시키는 이 활동을 경제학적변호론자는 반대로 로동자들을 위하여 자본을 유리시키는것이라고 설명한다.①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변호론자들이 얼마나 파렴치한가를 완전히 평가할수 있다. 유리되는것은 비단 기계에 의하여 직접 구축되는 로동자들뿐만아니라 또한 그들의 보충병도 유리되며 또 사업이 이전의 기초우에서 보통으로 확장될 때에는 규칙적으로 흡수될 추가대도 유리된다. 그들은 이제는 모두가 《유리》되였으며, 따라서 기능하려고 하는 새로운 자본이 모두 그들을 자유로 리용할수 있다. 이 자본에 의하여 흡수되는것이 그들이든 또는 다른 로동자이든간에 기계가 시장에 내던진 로동자들과 동일

① 이 책 504~506페지를 보라. —편집자

한 수의 로동자를 시장에서 끌어내는데 이 자본으로 바로 충분하다면 일반적로동수요에 대한 영향은 령일것이다. 이 자본이 보다 적은 로동자를 고용한다면 과잉로동자수는 증대한다. 만일 그보다 많은 로동자를 고용한다면 고용되는자가 《유리된자》를 넘는 그 초과분만큼 일반적로동수요가 증대할따름이다. 따라서 투자할 곳을 찾고있는 추가자본에 의하여 환기될수 있는 일반적로동수요의 증대는 언제나 기계가 가두에 내던진 로동자들로써 충족되는 그만큼 중화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적생산의 기구는 자본의 절대적증대가 그에 상응하는 일반적로동수요의 여하한 증대도 수반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되여있다. 그런데 변호론자는 이것을 구축된 로동자들이 산업예비군의 대렬로 추방되는 과도기에 당하는 빈궁과 고통과 또 있을수 있는 멸망에 대한 보상이라고 부른다!

로동에 대한 수요는 자본의 증가와 동일한것이 아니며 로동의 공급은 로동계급의 증대와 동일한것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서로 독립한 두개의 힘이 호상 작용하는것이 아니다. 주사위는 야바위이다. 자본이 두개 측면에서 동시에 작용하는것이다. 자본의 축적이 한편으로 로동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킬 때 다른편으로는 그 축적이 로동자의 《유리》에 의하여 로동자의 공급을 증대시키며 동시에 실업자들의 압력은 취업자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로동을 지출하지 않을수 없게 하며 따라서 일정한 정도로 로동의 공급을 로동자의 공급으로부터 독립하게 한다. 이 기초우에서 진행되는 로동의 수요공급의 법칙의 운동은 자본의 전제를 완성한다. 그러므로 로동자들이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들이 타인의 부를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그들의 로동생산력이 제고되면 될수록 그들에게는 자본의 증식수단으로서 기능할 가능성조차 더욱더

믿음성이 없어지는것은 어떻게 된 영문인가 하는 비밀을 그들이 알게 되자, 또 그들이 그들간의 경쟁의 강도는 전적으로 상대적과잉인구의 압력에 의하여 좌우된다는것을 알게 되자, 그렇기때문에 또 그들이 로동조합 등등에 의하여 취업자와 실업자간의 계획적협력을 조직하여 자본주의적생산의 이 자연법칙이 그들의 계급에 조성하는 파멸적결과들을 제거 또는 약화시키려고 하자 자본과 그의 아첨쟁이인 경제학자는 이것을 《영원한》 그리고 소위 《신성한》 수요공급의 법칙의 침해라고 떠들어댄다. 즉 취업자와 실업자간의 련합은 모두다 이 법칙의 《순수한》 작용을 파괴한다. 그런데 다른 한편 콘컨대 식민지들에서 불리한 사정들이 산업예비군의 조성과 그에 따르는 자본가계급에 대한 로동자계급의 절대적예속에 지장을 주자마자, 자본은 그의 범속한 싼쵸 빤싸와 함께 《신성한》 수요공급법칙에 반기를 들고 강제수단으로써 이 작용을 저지시키려고 한다.

4. 상대적과잉인구의 각이한 존재형태. 자본주의적축적의 일반적법칙

상대적과잉인구는 극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매개 로동자는 절반 취업하고있거나 또는 전혀 취업하고있지 않는 기간에는 상대적과잉인구에 속한다. 상대적과잉인구가 때로는 공황기에 급성적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불경기에 만성적으로 나타나는것과 같이 산업순환의 국면교체에 의하여 부여되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큰 형태들을 도외시하면 과잉인구는 언제나 세 형태 즉 류동적형태, 잠재적형태 및 정체적형

태를 가지고있다.

현대산업의 중심—공장, 제조소, 야금공장, 광산 등등에서는 로동자들이 때로는 배척되고 때로는 더 대량적으로 다시 흡인되며 비록 생산규모에 비하면 부단히 감소되는 비률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취업자수는 증대한다. 과잉인구는 이 경우에 류동적형태로 존재한다.

본래의 공장에서나 기계가 사용되거나 또는 적어도 현대적분업이 실시되고있는 대작업장들에서는 아직 소년기를 벗어나지 않은 대량의 남성로동자들이 요구된다. 소년기를 벗어나면 동일한 사업부문에 계속 남아있는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의례히 해고된다. 이들은 류동적과잉인구의 요소중 산업규모의 확대에 따라 증대하는 요소를 이룬다. 그들의 일부분은 국외로 이주하는데 사실은 국외로 나가는 자본을 뒤따라가는데 불과하다. 그 결과의 하나는 녀성인구가 남성인구에 비하여 급속히 증가하는것인데 영국이 그 실례로 된다. 로동자수의 자연적증가가 자본의 축적욕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초과한다는것은 자본의 운동 그자체의 하나의 모순이다. 자본은 년소한 로동자를 보다 많이 요구하며 성인로동자는 보다 적게 요구한다. 이보다도 더 심한 다른 하나의 모순은 분업으로 하여 일정한 생산부문에 얽매여있기때문에 실업하고있는 사람들이 수천명이 있는 바로 그때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비명을 지르는것이다.(85) 그뿐만 아니라 자본이 대단히 급속하게 로동력을 소모하기때문에 중

---

(85) 1866년 하반기에 런던에는 실업자가 8만 내지 9만이 있었는데 그해 하반기에 관한 공장보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수요는 바로 필요한 순간에 언제나 공급을 산생한다고 말하는것은 절대로 옳은것 같지는 않다. 로동에 관하여서는 사태가 그렇지 않다. 왜냐 하면 지난해에 일손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계가 놀고있었기때문이다.》(《공장감독관보고, 1866년 10월 31일》, 81페지)

년의 로동자가 벌써 많건적건 로쇠하게 된다. 그는 과잉자의 대렬로 떨어지든가 또는 높은 등급에서 낮은 등급으로 밀리운다. 바로 대공업의 로동자들의 수명이 가장 짧은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만체스터의 위생관인 리의사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이 도시에서 부유한 계급의 평균수명은 38세인데 로동계급의 평균수명은 17세에 불과하다. 리버풀에서는 전자는 35세, 후자는 15세이다. 따라서 특권계급은 신수가 좋지 못한 그들의 동포에 비하여 2배나 되는 수명을 가지고있는것이다.》(85a)

이러한 정형하에서는 무산계급중의 이 부분의 절대적증가는 그 성원들이 급속히 소멸됨에도 불구하고 그 수는 증대한다는 형태를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로동자세대의 급속한 교체가 요구된다.(이 법칙은 인구중의 기타 계급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회적요구는 대공업로동자들의 생활조건의 필연적결과인 조혼과 로동자자녀에 대한 착취가 로동자자녀생산에 주는 상금에 의하여 충족된다.

자본주의적생산이 농업을 점령하자마자 또는 그것을 점령하는 정도에 따라 농업로동자인구에 대한 수요는 농업에서 기능하는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 절대적으로 감소하는데 여기에서는 비농업적산업에서와는 달리 인구에 대한 이러한 배척이 그보다 큰 흡인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농촌인구의 일부는 부단히 도시무산계급이나 제조업무산계급으로 전화하려고 하며 이 전화에 유리한 조건을 대기하고있다.(여기에서 제조업이란 모든 비농업적산업을 의미한다.)(86) 그리

(85a) 1875년 1월 14일 버밍감위생회의에서 한 당시 그 도시의 시장 (현재(1883년)는 상무대신이다. —F. E.) J. 체임벌린의 개회사.

(86)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1861년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781개소의 도시에 10,960,998명의 주민이 있고 촌락과 농촌교구들에는 주민이 9,105,226명이 있을뿐이다.…1851년에는 580개의 도시가 인구조사에 나타났는데 그 인구는 그 주위의 농촌지방

하여 상대적과잉인구의 이 원천은 끊임없이 흐르고있다. 그러나 도시에로의 그 끊임없는 흐름은 농촌자체에 늘 잠재적 과잉인구가 있다는것을 전제로 하는것이며 이 과잉인구의 수량은 다만 배수구가 특별히 널리 열릴 때에만 눈에 보이게 된다. 그리하여 농촌로동자는 임금의 최저한도로 떨어지고 한다리는 언제나 극빈민의 구렁텅이에 처박고있다.

상대적과잉인구의 제3의 부류, 정체적과잉인구는 현역로동자군의 일부분을 이루고있으나 그 취업은 극히 불규칙적이다. 그러므로 이 정체적과잉인구는 자유로 리용할수 있는 로동력의 무진장한 저수지를 자본에 제공한다. 그들의 생활처지는 로동계급의 정상적평균수준이하로 떨어지며 바로 이 사실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본의 특수한 착취부문의 광대한 기초로 된다. 그들은 로동시간의 최대한과 임금의 최소한으로써 특징지어진다. 그들의 주요형태를 우리는 이미 가내로동이란 절에서 보았다.① 그들은 대공업과 농업의 과잉로동자로부터 부단히 보충되며 또 특히 수공업생산이 공장제수공업생산에 의하여 몰락하는 공업부문이나 또는 공장제수공업생산이 기계적생산에 의하여 몰락하는 공업부문으로부터 부단히 보충된다. 그들의 수량은 축적의 규모나 능력의 증대와 함께 《과잉》로동자의 조성이 진전함에 따라 증대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로동계급중 자기자신을 재생산하고 영구화하는 요소이며 로동계급의 총증가중에서 다른 요소들보다 비교적 큰 몫을 차지하

의 인구와 거의 같았다. 그런데 그후 10년동안에 농촌지방들에서는 인구가 50만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580개의 도시들에서는 인구가 1,554,067명이나 늘어났다. 농촌교구들의 인구증가률은 6.5%인데 도시들의 인구증가률은 17.3%이다. 증가률의 차는 농촌으로부터 도시에로의 이주에 기인하는것이다. 인구의 총증가의 $\frac{3}{4}$은 도시에서 일어나고있다.》(《인구조사》, 제3권, 11~12페지)

① 이 책 536~540페지를 보라.—편집자

는 요소이다. 실제에 있어서 출생수와 사망수뿐만아니라 가족의 절대수도 임금의 수준에 즉 각이한 부류의 로동자들이 처분할수 있는 생활수단의 량에 반비례한다. 자본주의사회의 이 법칙은 미개인이나 지어는 문명화된 이주민들에게는 어처구니없는것으로 들릴것이다. 그것은 개체로서는 무력하며 또 항상 쫓기여다니는 동물종속의 대량적재생산을 련상시킨다.(87)

끝으로 상대적과잉인구의 최하층은 구제대상자인 극빈민의 령역에서 살고있다. 류랑자, 범죄자, 매춘부 등 간단히 말해서 본래의 룸펜무산계급을 도외시하면 이 사회층은 세 부류로 구성되여있다. 제1부류는 로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영국의 구제대상자극빈민통계를 대강 보기만 해도 알수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의 수는 공황때마다 증대하고 경기회복기마다 감소한다. 제2부류는 고아와 극빈민의 자녀들이다. 이들은 산업예비군의 후보이며 례컨대 1860년과 같은 산업의 대번영기에는 그들은 급속히 대량적으로 현역로동자군에 편입된다.① 제3부류는 타락한자, 령락한자, 로동능력이 없는자이다. 이들은 특히 분업으로 인하여 전업할수 없기때문에 몰락한 사람들, 또는 로동자로서의 적정년령을 넘은 사람들, 끝으로 위험한 기계, 광산업, 화학공장 등등의 증가에 따라 그 수가 점점 증가하는 산업희생자들 즉 불구자, 병자, 과부 등등이

---

(87) 《빈곤은 생식에 유리한것 같다.》 (A. 스미스[437]) 멋쟁이이며 재치있는 갈리아니신부의 의견에 의하면 이것은 신의 특히 현명한 섭리이기도 하다. 《신은 가장 유익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출생하도록 섭리하였다.》 (갈리아니 《화폐론》, 제4권, 78페지) 《빈곤은 기아와 전염병의 극한에 이르기까지 인구의 증가를 저지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S. 랭 《국민적빈곤》, 1844년판, 69페지) 랭은 이것을 통계자료로 설명한 다음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만일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안락한 처지에 있게 되면 세계의 인구는 곧 절멸하게 될것이다.》

---

① 이 책 309~312페지를 보라. —편집자

다. 구제대상자 극빈민은 현역로동자군의 상병자수용소이며 산업예비군의 자중[①]이다. 극빈민의 생산은 상대적과잉인구의 생산에 포함되여있으며 그 필연성은 상대적과잉인구의 필연성에 포함되여있으며 극빈민은 상대적과잉인구와 더불어 부의 자본주의적 생산과 발전의 존재조건으로 되여있다. 극빈민은 자본주의적생산의 비생산적비용에 속한다. 그러나 자본은 그 대부분을 자기자신의 어깨에서 로동계급과 하층중간계급의 어깨에 전가할줄을 알고있다.

사회적부, 기능하고있는 자본, 그 증대의 규모와 능력, 따라서 또 무산계급의 절대량과 그의 로동생산력이 크면 클수록 산업예비군도 커진다. 자유로 리용할수 있는 로동력은 자본의 팽창력을 발전시키는 원인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발전한다. 따라서 산업예비군의 상대량은 부의 힘이 증대함에 따라 증대한다. 그런데 이 예비군이 현역로동자군에 비하여 크면 클수록 고정적과잉인구는 더 많아지는데 그들의 빈곤은 그들의 로동고에 반비례한다.[②] 끝으로 로동계급의 적빈층과 산업예비군이 크면 클수록 공식적인 구제대상자 극빈민도 많아진다. **이것은 자본주의적축적의 절대적, 일반적 법칙이다.** 이 법칙은 다른 모든 법칙과 마찬가지로 그 실현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변화되는데 그 사정에 대하여 여기서는 아직 분석할 필요가 없다.

로동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수를 자본의 증식욕에 적응시키라고 설교하는 경제학적현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 수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축적의 기구는 이 수를 자본의 증식욕에 부단히 적응시킨다. 이 적응의 첫말은 상대적과잉

① 《자중》 이란 운수업용어로서 운수도구자체의 무게를 말한다. —편집자
② 맑스가 친히 교열한 프랑스문판에는 《정비례한다》 로 되여있다. —편집자

인구 또는 산업예비군의 조성이고 마지막말은 현역로동자군의 부단히 증대하는 각 층의 빈곤과 구제대상자 극빈민의 자중이다.

점점 증대하는 생산수단량이 사회적로동생산성의 증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적어지는 인력지출로써 운동하게 된다는 법칙—이 법칙은 로동자가 로동수단을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로동수단이 로동자를 사용하는 자본주의적기초우에서는 다음과 같은데서 표현된다. 즉 로동생산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로동자들이 자기들의 취업수단에 가하는 압력이 그만큼 더 크며 따라서 그들의 생존조건 즉 타인의 부의 증대를 위한 또는 자본의 자기증식을 위한 자기 힘의 판매는 그만큼 더 가망이 없게 된다는데서 표현된다. 이리하여 생산적인구의 증가보다 더 빠른 생산수단과 로동생산성의 증대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반대로 로동자인구가 자본의 증식욕보다 언제나 더 빨리 증가한다는것으로 표현된다.

제4편에서 상대적잉여가치의 생산을 분석할 때 본바와 같이 자본주의체계내에서는 사회적로동생산력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방법은 개개의 로동자를 희생으로 하여 실시되며 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은 생산자를 지배하며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화하며 로동자를 불구화하여 부분적인간으로 되게 하며 로동자를 기계의 부속물로 떨어뜨리며 그의 로동의 고통으로 로동의 내용을 없애며 과학이 독립적인 힘으로써 로동과정에 합체되는 정도에 따라 로동과정의 정신적힘을 로동자로부터 소외하며 이러한 수단이 로동자의 로동조건을 악렬하게 만들며 로동과정중에서 로동자를 가장 편협하고 혐오스러운 전제제도에 굴복시키며 로동자의 생활시간을 로동시간으로 전화시키며 로동자의 처자를 자본의 쟈거노

트[227]의 수레바퀴밑에① 내던진다. 그러나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모든 방법은 동시에 축적의 방법이며 반대로 축적의 모든 확대는 또 이 방법을 발전시키는 수단으로 된다. 이로부터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 로동자의 상태는 그가 받는 보수가 어떻든간에, 높든낮든간에 악화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끝으로 상대적과잉인구 또는 산업예비군을 언제나 축적의 규모 및 능력과 균형이 잡히게 하는 법칙은 헤파이스토스의 쐐기가 프로메테우스를 바위에 결박해놓은것보다도 더 단단히 로동자를 자본에 결박해놓는다. 그것은 자본의 축적에 상응하는 빈곤의 축적을 조건짓는다. 따라서 한극에서의 부의 축적은 동시에 대극에서의 즉 자신의 생산물을 자본으로서 생산하는 계급측에서의 빈곤, 로동고, 노예상태, 무지, 조폭 및 도덕적 타락의 축적이다.

자본주의적축적의 이 적대적성격(88)은 각종 형태로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언급되였다. 물론 그들은 이것을, 부분적으로는 류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전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현상들과 혼동하고있기는 하다.

18세기의 위대한 경제학저술가의 한사람인 베니스의 수도승 오르떼쓰는 자본주의적생산의 적대관계를 사회적부의 일반적인 자연법칙으로 보고있다.

---

(88)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다음과 같은것이 더욱더 명백해진다. 즉 자산계급이 그 테두리안에서 행동하는 여러가지 생산관계는 단일한 성격, 단순한 성격을 가지고있는것이 아니라 이중의 성격을 가지고있다는것, 부가 생산되는것과 같은 제 관계의 테두리안에서 빈곤도 또한 생산된다는것, 생산력이 그안에서 발전하는것과 같은 제 관계의 테두리안에서 억압을 낳는 힘도 또한 존재한다는것, 이러한 관계는 다만 그것이 동시에 끊임없이 자산계급의 성원의 부를 파괴하며 부단히 증대하는 무산계급을 낳는데 의하여서만 자산자적부 즉 자산자계급의 부를 생산한다는것이 명백하여진다.》 (칼 맑스 《철학의 빈곤》[89])

---

① 이 책 453~492페지를 보라. —편집자

《경제적선과 경제적악은 한 나라에서 항상 균형을 이룬다. 어떤 사람의 부의 풍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부의 결핍과 같다. 어떤 사람들의 거대한 부는 항상 보다 많은 다른 사람들의 필수품의 절대적략탈을 수반한다. 한 나라의 부는 그 나라의 인구에 상응하며 그 빈궁은 그 부에 상응한다. 어떤 사람들의 근면은 다른 사람들의 라태를 강요한다. 빈곤과 라태는 부자와 근면자의 필연적결과이다.》 등등.(89)

오르떼쓰후 약 10년이 지나 고교회[9]신교목사 타운젠드는 아주 로골적으로 빈곤을 부의 필수적조건이라고 찬미하였다.

《로동의 법률적강제는 너무나 많은 번로와 폭력과 물의를 수반하는데 기아는 평화적이며 조용하며 쉴새없는 압박일뿐만아니라 근면과 로동에 대한 가장 자연적인 동기로서 최대의 긴장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결국 모든것은 로동계급의 기아를 영구화하는데 귀착되며 이 기아는 타운젠드의 견해에 의하면 특히 빈민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인구원리가 배려해주는것이다.

《빈민은 어느 정도 분별이 없으며 (즉 입에다 금숟가락을 물지 않고 세상에 태여날만큼 분별이 없으며), 그리하여 사회에는 가장 천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렬등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람이 항상 있다는것은 하나의 자연법칙처럼 생각된다. 이로 인하여 인류의 행복의 기금은 크게 증대되고 보다 점잖은 사람들은 로고에서 해방되여 지장없이 보다 고상한 직업에 종사할수가 있다, 등등…빈민구제법은 하느님과 자연이 세상에 세운 이 제도의 조화와 미, 균형과 질서를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90)

---

(89) G. 오르떼쓰 《국민경제학》, 전 6권, 1774년판, 꾸스또디 편찬 《이딸리아 정치경제학고전저작가론문집 · 현대편》 제21권, 6, 8, 9, 23, 25 등 페지에 게재. 오르떼쓰는 이 책 32페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인민의 행복에 대하여 무용한 제도를 고안하기보다는 나는 인민이 불행한 원인을 연구하는데 그치려한다.》

(90) 《빈민구제법론》, 인류의 행복을 원하는 사람 (즉 목사 J. 타운젠드씨) 의 저서, 1786년판, 1817년 런던에서 재판, 15, 39, 41페지. 이 《점잖은》 목사의 상술한 저서와 그의 《에스빠냐려행기》로부터 말사스는 왕왕 수페지씩이나 베껴쓰고있는데① 이 타운젠드씨는 그의 교리의 대부분을 J. 스튜어트경에게서 빌려왔으며 그나마 외곡하고있다. 례컨대 스튜어트가 《이 노예제에 있어서는 사람들을 근면하게 하는 (일하지 않는자들을 위하여) 폭력적방법이 있었다.…그때에는 사람들은 타인의 노예였으므로 로동을

① 이 책 711~712페지를 보라. —편집자

베니스의 수도승은 빈곤을 영구화하는 운명속에서 기독교적자선과 독신과 수도원과 자혜원의 존재리유를 발견하였는데 반대로 이 신교목사는 거기서 빈민들에게 하찮은 사회적부조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있는 법률을 비난할 구실을 발견하였다. 슈또르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사회적부의 진전은 유용한 사회계급을 산생한다.…이 계급은 가장 무미건조하고 가장 천하며 가장 싫증이 나는 일들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여 생활상 불쾌하며 예속적인것은 모두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있으며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계급들에게 여가와 정신의 명랑과 전통적인 (훌륭하다!) 품위를 보장해준다.…》(91)

슈또르흐는 이렇게 자문한다. 그렇다면 대중의 빈궁과 타락을 수반하는 자본주의적문명이 야만보다 우월한 점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가 발견하는 대답은 오직 한마디—안전이다! 씨스몽디는 이렇게 말한다.

《공업과 과학의 진보에 의하여 매개 로동자는 매일 자신의 소비에 필요한것보다 훨씬 많은것을 생산할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로동이 부를 생산하지만 만약 그자신이 그것을 소비하게 된다면 그 부는 그를 로동에 적합하지 않게 만들것이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기술의 개량도 공업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향락도 만약 로동자가 하는것처럼 아주 꾸준한 로동으로 그것을 획득하지 않으면 안된다면 사람들 (즉 비로동자들) 은 아마 이러한 모든것들을 단념할것이다.…오늘날에는 노력이 그 보수와 분리되여있다. 동일한 사람이 먼저 일하고 그다음에 휴식하는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일을 하기때문에 다른 사람이 휴식하게 되는것이다.…따라서 로동생산력의 무한한 증대도

(즉 타인을 위한 무상로동을) 강요당하였다. 지금은 사람들은 그들자신의 욕망의 노예이므로 로동을 (즉 일하지 않는자들을 위한 무상로동을) 강요당한다.》[438]고 말할 때 그렇다고 해서 그는 비대한 이 목사와 같이 임금로동자들이 언제나 굶주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있지는 않다. 도리여 그는 그들의 욕망을 증대시키고 동시에 그들의 욕망의 증대로 하여금 《점잖은 사람들》 을 위한 로동에 대한 자극으로 삼으려고 한다.

(91) 슈또르흐 《정치경제학강의》, 1815년 싼크트-뻬쩨르부르그판, 제3권, 223페지.

놀고먹는 부자들의 사치와 향락의 증가외의 다른 어떤 결과도 가져올 수 없다.》(92)

끝으로 랭혈적인 자산계급공론가인 데스뛰뜨 드 뜨라씨는 랭혹하게도 다음과 같이 언명한다.

《빈한한 나라란 인민이 잘사는 나라요, 부유한 나라란 통례로 인민이 가난한 나라이다.》(93)

5. 자본주의적축적의 일반적법칙의 례증

(a) 1846~1866년의 잉글랜드

현대사회의 어느 시기를 보아도 최근 20년간처럼 자본주의적축적의 연구에 적합한 시기는 없다. 이 시기는 마치도 포르투나투스의 돈주머니를 발견한거나 같다. 그런데 모든 나라들중에서 또다시 전형적실례를 제공하고있는것은 잉글랜드이다. 그것은 잉글랜드가 세계시장에서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때문이며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오직 여기에서만 충분히 발전하고있기때문이며 또 끝으로 1846년이래 자유무역이라는 천년왕국[439]의 실현이 속류경제학의 마지막퇴로를 차단하였기때문이다. 생산의 거대한 발전, 게다가 이 20년간의 후반 10년간은 전반 10년간을 훨씬 릉가하고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이미 제4편에서 충분히 언급하였다.①

최근 반세기에 잉글랜드인구의 절대적증가는 대단히 크지만 그 상대적증가 즉 증가률은 계속 감소되고있는데 그것은 공식적인구조사에서 취한 다음의 표가 보여주고있다.

(92) 씨스몽디 《정치경제학의 새 원리》, 제1권, 79, 80, 85페지.
(93) 데스뛰뜨 드 뜨라씨 《의지와 그 작용에 대하여》, 231페지.

① 이 책 478~482페지의 례를 보라. —편집자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인구의 매 10년별 년증가백분률은 다음과 같다.

1811—1821	1.533%
1821—1831	1.446%
1831—1841	1.326%
1841—1851	1.216%
1851—1861	1.141%

다음에는 다른 면에서 부의 증가를 보기로 하자. 여기에서 가장 믿을만한 근거로 되는것은 소득세가 부과되는 리윤, 지대 등등의 변동정형이다. 세금이 부과되는 리윤(차지농업가 기타 약간의 항목의 리윤은 포함되지 않음.)의 증가는 1853~1864년간에 대브리텐에서는 50.47%(년평균 4.58%)였으나(94) 인구의 증가는 같은 기간에 약 12%였다. 세금이 부과되는 지대(가옥, 철도, 광산, 어장 등등의 지대를 포함.)의 증가는 1853~1864년간에 38% 즉 년 $3\frac{5}{11}$%①였는데 그 중에서도 다음 항목들이 가장 급속히 증가하였다.(95)

	1853년에 비한 1864년의 소득증가	년증가
가옥……	38.60%	3.50%
채석장……	84.76%	7.70%
광산……	68.85%	6.26%
제철소……	39.92%	3.63%
어장……	57.37%	5.21%
가스공장……	126.02%	11.45%
철도……	83.29%	7.57%

(94) 《칙명국내세수입위원회 제10차보고》, 1866년 런던판, 38페지.
(95) 우와 같은 책, 같은 페지

① 제1~4판에서는 $3\frac{5}{12}$%이다. —편집자

1853~1864년 기간의 매 4년을 비교해보면 소득의 증가정도가 부단히 증대하고있음을 알수 있다. 레컨대 리윤에서 나오는 소득에서는 이 증가가 1853~1857년에 년 1.73%, 1857~1861년에 년 2.74%, 1861~1864년에 년 9.30%이다. 소득세가 부과된 소득총액은 련합왕국에서 1856년에 307,068,898파운드, 1859년에 328,127,416파운드, 1862년에 351,745,241파운드, 1863년에 359,142,897파운드, 1864년에 362,462,279파운드, 1865년에 385,530,020파운드였다.(96)

자본의 축적은 동시에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수반하였다. 잉글랜드에는 공식적인 농업통계가 없으나(아일랜드에는 있다.) 10개 군은 그것을 자발적으로 제공하였다. 그 통계에 의하면 10개 군에서는 1851년부터 1861년까지에 100에이커 이하의 차지농장은 31,583개로부터 26,567개로 감소되였다. 즉 5,016개의 차지농장이 보다 큰 차지농장에 병합되였다는 결과가 나타났다.(97) 1815~1825년에는 상속세가 부과된 동산으로서 100만파운드이상의것은 1건도 없었는데 1825년부터 1855년까지에는 8건이 있었으며 1855년부터 1859년 6월까지 즉 4년 반 동안에는 4건이 있었다.(98) 그러나 이러한 집중은 1864년과 1865년의 D항(차지농업가 등등을 제외한

---

(96) 이 수자들은 비교를 위하여서는 충분하나 절대적으로 보면 정확하지 않다. 왜냐 하면 아마도 1억파운드의 소득은 매년 《은닉》 될것이기때문이다. 특히 상공업자들이 일관적으로 기만하는데 대한 국내세무위원들의 한탄이 그들의 매개 보고에서 반복되고 있다. 례를 들면 《한 주식회사는 세금이 부과되는 리윤을 6,000파운드라고 신고하였는데 세무관은 그것을 88,000파운드라고 판정하여 결국 이 금액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였다. 다른 또 하나의 회사는 190,000파운드라고 신고하였는데 실제액은 250,000파운드임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칙명국내세수입위원회 제10차보고》, 42페지)

(97) 《인구조사》, 1863년 런던판, 제3권, 29페지. 잉글랜드의 토지의 절반은 150명의 지주가 소유하고있고 스코틀랜드의 토지의 절반은 12명의 지주가 소유하고있다는 죤 브라이트의 주장은 지금까지 반박되지 않았다.

(98) 《칙명국내세수입위원회 제4차보고》, 1860년 런던판, 17페지.

리윤)의 소득세를 간단히 분석하면 가장 잘 추측할수 있다. 미리 지적하여두지만 이 원천에서 오는 소득이 60파운드이상이라야 소득세를 납부한다는 점이다. 이 과세소득은 잉글랜드, 웨일즈 및 스코틀랜드에서 1864년에는 95,844,222파운드, 1865년에는 105,435,787파운드였다.(99) 납세자수는 1864년에는 총인구 23,891,009명중 308,416명, 1865년에는 총인구 24,127,003명중 332,431명이였다. 두해동안의 이 소득의 분배정형에 관하여는 다음의 표가 보여주고있다.

	1864년 4월 5일에 끝나는 년도		1865년 4월 5일에 끝나는 년도	
	리윤소득(파운드)	인 수	리윤소득(파운드)	인 수
총소득	95, 844, 222	308, 416	105, 435, 787	332, 431
그중	57, 028, 290	22, 334	64, 554, 197	24, 075
그중	36, 415, 225	3, 619	42, 535, 576	4, 021
그중	22, 809, 781	822	27, 555, 313	973
그중	8, 744, 762	91	11, 077, 238	107

련합왕국에서 생산된 석탄은 1855년에 61,453,079톤이였고 그 가치는 16,113,267파운드였으며 1864년에는 92,787,873톤이였고 그 가치는 23,197,968파운드였으며, 선철은 1855년에 3,218,154톤이였고 그 가치는 8,045,385파운드였으며 1864년에는 4,767,951톤이였고 그 가치는 11,919,877파운드였다. 련합왕국에서 경영되고있는 철도는 1854년에 연장 8,054마일, 그에 투하된 자본은 286,068,794파운드였으며 1864년에는 연장 12,789마일, 투하자본은 425,719,613파운드였다. 련합왕국의 수출입총액은 1854년에 268,210,145파운드였으며 1865년에는 489,923,285파운드였다. 다음표는

(99) 이것은 순소득 즉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액이 공제된후의 금액이다.

수출액의 변동을 보여주고있다.(100)

1847년	58,842,377파운드
1849년	63,596,052파운드
1856년	115,826,948파운드
1860년	135,842,817파운드
1865년	165,862,402파운드
1866년	188,917,536파운드

이상의 얼마 안되는 자료에 의하여 영국국민중앙등기소 소장[370]이 올린 다음과 같은 환성을 리해할수 있을것이다.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공업과 재부의 진전에는 따라가지 못하였다.》(101)

이제는 이 공업의 직접적인 대표자들 또는 이 부의 생산자들 즉 로동계급을 보기로 하자. 글래드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현재 국민의 소비력이 줄어들고 로동계급의 궁핍과 빈곤이 심해지고있는데 그와 동시에 상층계급의 부는 부단히 축적되고 자본은 부단히 증가하고있다는것은 우리 나라의 사회상태의 가장 우울한 특징의 하나이다.》(102)

제법 감동한듯한 이 대신은 1843년 2월 13일에 하원에서 이상과 같이 말하였다. 20년후인 1863년 4월 16일에 그가 한 예산안연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842년부터 1852년까지에 이 나라의 과세소득은 6% 증가하였다.…1853년부터 1861년까지의 8년간에는 1853년을 기준으로 하면 20% 증가하였다. 사실은 너무나 놀랄만한것이기때문에 거의 믿기 어

---

(100) 현재 즉 1867년 3월에 이미 인도-중국시장은 또다시 영국의 면방직업공장주들의 위탁판매품들로써 완전히 공급과잉이 되고있다. 1866년에 면방직업로동자들의 임금이 5% 인하되기 시작하였고 1867년에는 그와 비슷한 조치의 결과로 프레스튼에서 20,000명의 파업이 있었다. (이것은 바로 뒤이어 일어난 공황의 서곡이였다. —F. E.)

(101) 《인구조사》, 1863년 런던판, 제3권, 11페지.

(102) 1843년 2월 13일 하원에서 한 글래드스틴의 연설.(1843년 2월 14일 《타임스》 2월 13일 《핸사드》)

려울 정도이다.…이 실신할 정도의 재부와 권력의 증대는…전적으로 유산계급에 국한되여있다. 그러나…그러나 그것은 일반 소비품의 값을 싸게 하기때문에 로동자주민에게도 간접적리익을 가져오지 않을수 없다. 부자는 보다 더 부유하게 되였고 가난한 사람은 어쨌든 보다 덜 가난하게 되였다. 나는 빈궁의 극도가 감소되였다고는 감히 말하려 하지 않는다.》 (103)[440]

이 얼마나 룡두사미인가! 만약 로동계급이 의연히 《가난》하며 다만 그들이 유산자계급을 위하여 《실신할 정도의 재부와 권력의 증대》를 창조한 그만큼 《보다 덜 가난》해진데 불과하다면 그들은 상대적으로 이전과 같이 여전히 가난한것이다. 빈곤의 극도가 감소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증대한것이다. 왜냐 하면 부의 극도가 증대하였기때문이다. 생활수단의 값이 싸졌다는데 관하여 말한다면 공식통계, 례컨대 런던고아원의 자료는 1860~1862년의 3년간의 평균을 1851~1853년의 3년간과 비교하면 20% 등귀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다음 3년간 즉 1863~1865년에는 육류, 빠다, 우유, 설탕, 소금, 석탄 기타 많은 필요생활수단이 루진적으로 비싸지고있다.(104) 1864년 4월 7일의 글래드스턴의 다음과 같은 예산연설은 치부의 진전에 대한, 그리고 《빈궁》에 의하여 감퇴된 국민의 행복에 대한 핀다로스적송가이다. 그는 《구제대상자의 극빈상태의 변두리에 있는》 대중에 관하여 그리고 《임금이 오르지 않은》 생산부문들에 관하여 말하고 끝으로 로동계급의 행복을 다음과 같은 말로 개괄하고있다.

---

(103) 1863년 4월 16일 하원에서 한 글래드스턴의 연설. 4월 17일 《새별》.

(104) 청서 《련합왕국의 각종 통계(제6부분)》, 1866년 런던판, 260~273페지 이곳저곳의 공식자료를 보라. 고아원 등등의 통계 대신에 왕가자녀들에 대한 결혼지참금 급여를 설명하고있는 정부간행물의 열변도 증거자료로 될수 있을것이다. 거기에서는 생활수단의 등귀를 결코 망각하고있지 않다.

《인생이란 십중팔구는 단순한 생존투쟁이다.》(105)

포씨트교수는 공적고려에 구속된 글래드스턴과 달라서 로골적으로 다음과 같이 언명하고있다.

《나는 물론 자본의 이 증대 (최근 10년간의) 에 따라 화폐임금이 제고된것을 부인하지 않으나 이 외관상의 리익은 대부분 다시 상실되고마는것이니 그것은 많은 생활필수품의 값이 부단히 비싸지기때문이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이것은 귀금속의 가치저락때문이다.) …부자들은 급속하게 더 부유해지는데 로동계급의 생활에는 조금도 눈에 뜨이는 개선이 없다.…로동자들은 거의다 그들의 채권자인 소매상들의 노예로 되고있다.》(106)

영국의 로동계급이 유산계급들을 위하여 《실신할 정도의 재부와 권력의 증대》를 어떠한 조건하에서 창조하였는가 하는것은 로동일과 기계에 관한 장들에서 천명하였다. 그러나 거기에서 주로 취급된것은 사회적기능을 수행하는 동안의 로동자였다. 축적의 법칙을 완전히 해명하기 위하여서는 작업장 외에서의 로동자의 형편 즉 그들의 음식물과 거주 조건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의 편폭의 제한으로 하여 여기에서는 누구보다도 공업무산계급과 농업로동자들중 제일 낮은 임금을 받는 부분 즉 로동계급의 대다수를 고찰하지 않을수 없다.

---

(105) 1864년 4월 7일 하원에서 한 글래드스턴의 연설. 《핸사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씌여있다. 《또 보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인생이란 대부분의 경우에 생존투쟁에 불과하다.》 1863년과 1864년의 글래드스턴의 예산안연설에서 끊임없이 나타난 심한 모순들을 영국의 한 저술가는 부알로로부터의 다음과 같은 인용문으로써 특징짓고있다.

《여기에 실지로 이런 인간이 있다.
그는 백에서 흑으로 옮아간다.
저녁에 시인한것을 아침에는 비난한다.
다른 모든 사람을 귀찮게 하고 자기도 불편케 하건만
류행이 변하듯 순간마다 기분이 변한다.》[441]
((H. 로이) 《환자시세의 리론》, 1864년 런던판, 135페지)

(106) H. 포씨트 《영국로동자의 경제형편》, 1865년 런던판, 67, 82페지. 로동자들이 소매상에게 더욱 의뢰하게 되는데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로동자들의 취업이 점점 더 동요되고 중단되기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공인된 극빈민들 즉 로동계급중 로동력의 판매라는 생존조건을 상실하고 사회적부조에 의하여 연명하는 부분에 관하여 몇마디 더 말하려 한다. 잉글랜드(107)에 공인된 극빈민수는 1855년에 851,369명, 1856년에 877,767명, 1865년에 971,433명이였다. 면화기근의 결과 이 수는 1863년과 1864년에는 1,079,382명과 1,014,978명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런던에 가장 혹심한 타격을 준 1866년공황으로 말미암아 스코틀랜드왕국보다도 주민이 많은 세계시장의 이 중심지에서 극빈민수는 1866년에는 1865년에 비하여 19.5%, 1864년에 비하여 24.4% 증가하였고 1867년의 첫 몇달동안에는 1866년에 비하여 더욱더 증가되였다. 극빈민통계의 분석에 있어서는 두가지 점에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즉 일방으로는 극빈민수의 증감운동은 산업순환의 주기적국면교체를 반영한다. 타방으로는 자본의 축적과 함께 계급투쟁이, 따라서 또 로동자들의 자각이 발전함에 따라 극빈민의 실제인수의 공식통계는 더욱더 기만적인것으로 된다. 례컨대 최근 2년간 영국의 신문(《타임스》, 《펠-멜신문》 등등)이 그렇게도 크게 떠들던 극빈민취급상의 야만성은 오래전부터의 현상이다. 1844년에 F. 엥겔스는 완전히 같은 만행과 완전히 같은 《선정문학》의 일시적이며 위선적인 부르짖음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442] 그러나 최근 10년간 런던에서의 아사자수의 몸서리치는 증가①는 이 빈민감옥인 빈민구제원(108)의 노예상태에 대한 로동자들의 증오가 더하여졌음

(107) 잉글랜드라고 하면 언제나 웨일즈가 포함되고 대브리텐이라면 잉글랜드, 웨일즈 및 스코틀랜드가 포함되고 련합왕국이라면 상기 세 지방과 아일랜드가 포함된다.

(108) A. 스미스가 workhouse(빈민구제원)이라는 용어를 때로 manufactory(수공업공장)와 같은 의미로 썼다. 례컨대 분업에 관한 장의 서두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① 이 책 543페지를 보라. —편집자

을 무조건적으로 증명한다.

(b). 브리텐공업로동계급중 낮은 임금을 받는 계층

이제는 공업로동계급중 낮은 임금을 받는 계층으로 넘어가자. 1862년 면화기근시에 추밀원[200]은 스미스의사에게 랭카셔와 체셔의 피폐한 면방직업로동자들의 영양상태에 관한 조사를 위임하였다. 그 이전의 다년간에 걸친 관찰에 의하여 이미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고있었다. 즉 《기아병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평균적인 녀성 1명의 1일분 음식물은 최저로 3,900그레인의 탄소와 180그레인의 질소를 포함하여야 하며 평균적인 남성 1명의 1일분 음식물은 최저로 4,300그레인의 탄소와 200그레인의 질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즉 녀성들에게는 2폰드의 질좋은 밀가루빵에 포함되여있는것과 대체로 같은 량의 영양분이 필요하며 남성들에게는 그보다 $\frac{1}{9}$이 더 필요하며 성년 녀성 및 남성에게는 주평균 최저로 28,600그레인의 탄소와 1,330그레인의 질소가 필요하다. 그의 계산은 실천에 의하여 놀랄만큼 확증되였는데 그것은 빈궁으로 말미암아 면방직업로동자들의 소비가 저하된 그 보잘것없는 영양량과 일치하였다. 그들은 1862년 12월에 주 29,211그레인의 탄소와 1,295그레인의 질소를 섭취하고있었던것이다.

1863년에 추밀원은 영국로동계급중 영양이 가장 나쁜

있다. 《각이한 모든 로동부문에 종사하고있는 사람들이 종종 같은 공장(workhouse)에 집중되는 일이 있을수 있다.》[443] 이것은 그의 시대이래의 진보를 독특한 방식으로 설명하고있다.

부분의 빈궁상태에 관한 조사를 명령하였다. 추밀원의 의무관 싸이먼의사는 이 사업에 상술한 스미스의사를 선임하였다. 그의 조사는 일방으로는 농업로동자, 타방으로는 견직공, 녀재봉공, 가죽장갑공, 양말공, 장갑편직공, 제화공을 포괄하고있다. 후자의 부류는 양말공을 제외하면 전적으로 도시로동자들이다. 조사의 원칙으로 된것은 각 부류에서 가장 건강하며 또 비교적 형편이 좋은 가족들을 선택하는것이였다.

조사에서 얻은 총결론은 다음과 같다.

《조사된 도시로동자부류중 질소의 소비량이 그 이하로 되면 기아병이 생기는 절대적최저한을 다소나마 초과하는것은 단 한부류뿐이였다. 두 부류에서는 질소성음식물이나 탄소성음식물이나 할것없이 모두 공급이 부족하고 그중 한 부류에서는 대단히 부족하였다. 조사된 농업가족의 $\frac{1}{5}$이상이 필요량이하의 탄소성음식물을 받고있으며 $\frac{1}{3}$이상이 필요량이하의 질소성음식물을 받고있었으며 세개 주(박셔, 옥스포드셔 및 서머셋셔)에서는 질소성음식물의 최저량에도 달하지 못하는것이 일반적상태였다.》(109)

농업로동자들중에서 련합왕국의 가장 부유한 지역인 잉글랜드의 농업로동자들의 영양상태가 가장 나빴다.(110)[444] 농업로동자들중 일반적으로 영양이 부족한것은 주로 부인과 아동들이였는데 그것은 《남자들은 일을 하기 위하여 먹지 않으면 안되였기》 때문이다. 조사한 도시로동자부류들에서는 영양부족이 더욱 심하였다. 《그들의 음식물은 대단히 나빠서 많은 경우에 참혹하고 건강을 파괴하는 궁핍이 불가피하다.》(111) (이것은 모두 자본가의 《금욕》! 즉 그의 로동자들이 겨우 연명하는데 불가결한 생활수단의 지불에 대한 금욕이다!)

---

(109) 《공중위생. 제6차보고. 1863년》, 1864년 런던판, 13페지.
(110) 우와 같은 보고, 17페지.
(111) 우와 같은 보고, 13페지.

다음의 표는 상술한 순전한 도시로동자부류들의 영양상태와 스미스의사가 가정한 최저영양과 또 면방직업로동자들의 가장 곤난하던 시기의 영양상태와를 대비하고있다.(112)

남 녀 량 성	주평균탄소량 (그레인)	주평균질소량 (그레인)
5개 도시의 산업부문	28,876	1,192
랭카셔의 실업공장로동자	29,211	1,295
랭카셔의 로동자들을 위하여 제의된 최저량(남녀 동수로 계산)	28,600	1,330

조사된 공업로동자부류의 반수 즉 $\frac{6}{15}$은 전혀 맥주를 소비하지 못하였고 28%는 전혀 우유를 소비하지 못하였다. 가족당 류동성식료품의 주평균량은 녀재봉공의 7온스로부터 양말공의 $24\frac{3}{4}$온스에 이르기까지 구구하였다. 전혀 우유를 소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다수는 런던의 녀재봉공들이였다. 빵의 매주 소비량은 녀재봉공의 $7\frac{3}{4}$폰드로부터 제화공의 $11\frac{1}{4}$폰드에 이르기까지 구구하였고 성인의 총평균은 주 9.9폰드였다. 당분(당밀 등등)은 가죽장갑공의 주 4온스로부터 양말공의 11온스에 이르기까지 구구하였으며 모든 부류의 총평균량은 매주 성인 1인당 8온스였다. 빠다(지방 등등)의 매주 총평균량은 성인 1인당 5온스였다. 육류(베콘 등등)의 매주 평균량은 성인 1인당 견직공의 $7\frac{1}{4}$온스로부터 가죽장갑공의 $18\frac{1}{4}$온스에 이르기까지 구구하였으며 각종 부류들의 총평균량은 13.6온스였다. 성인 1인당 매주 식사비의 일반적평균은

(112) 《공중위생. 제6차보고. 1863년》, 1864년 런던판, 부록, 232페지.

다음과 같았다. 견직공은 2실링 $2\frac{1}{2}$펜스, 녀재봉공은 2실링 7펜스, 가죽장갑공은 2실링 $9\frac{1}{2}$펜스, 제화공은 2실링 $7\frac{3}{4}$펜스, 양말공은 2실링 $6\frac{1}{4}$펜스, 매클즈필드의 견직공의 주편균 비용은 불과 1실링 $8\frac{1}{2}$펜스였다. 영양이 가장 나쁜 부류는 녀재봉공, 견직공 및 가죽장갑공이였다.(113)

싸이먼의사는 자기의 일반적위생보고에서 이러한 영양상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많은 경우에 영양부족이 병을 발생시키거나 가중하게 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는것은 빈민들의 의료나 입원환자이든 외래환자이든 병원환자들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누구나 확인할것이다.…그러나 위생적관점에서는 여기에 또 하나 극히 중요한 사정이 첨가된다.…음식물의 결핍은 매우 참아내기 어려운 일이라는것, 그리고 통례로 음식물의 혹심한 부족은 선행하는 다른 결핍들의 뒤를 이어서만 온다는것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영양부족이 위생상의 문제로 되기 훨씬전에, 생리학자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이루는 질소와 탄소의 그레인수의 계산을 생각해내기 훨씬전에 살림은 모든 물질적인 위안을 상실하고만다. 의류와 연료는 음식물보다도 더 결핍하다. 혹한을 충분히 막아낼수 없으며 거주면적은 병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가중하게 할 정도로 좁으며 가구와 기명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청결을 유지하는것조차 돈이 많이 들거나 어려운 일로 된다. 설사 아직도 자존심이 있어 청결을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모든 시도는 기아의 고통을 더하게 하는것이다. 거주하는 곳은 그것을 가장 값싸게 얻을수 있는 그런 곳이다. 즉 위생경찰의 효과가 제일 적고 하수도도 제일 나쁘며 교통도 제일 불편하며 오물도 제일 많으며 급수상태는 아주 나쁘거나 거의 급수되지 않는 구역 그리고 도시라면 일광과 공기가 제일 부족한 그러한 구역들이다. 빈궁이 음식물부족에까지 미치는 경우에 그것은 불피코 이러한 위생상 위험을 당하게 한다. 이러한 해악의 총화가 생명에 무시무시한 위협을

(113) 《공중위생. 제6차보고. 1863년》, 1864년 런던판, 232, 233페지.

주지만 단지 음식물부족 그자체로서만도 이미 무서운것이다.…이러한 빈궁이 무위도식에서 오는 응당한 빈궁이 아니라는것을 상기할 때 특히 비통한 일이다. 이것은 로동자의 빈궁인것이다. 실로 도시로동자들이 얼마 안되는 음식물을 사기 위한 로동은 대개는 한없이 연장된다. 그러나 이러한 로동이 로동자의 생존을 유지할수 있다는것은 극히 제약된 의미에서만 말할수 있다.…대다수의 경우에 이 명목상의 생존유지란 다만 길든짧든간에 구제대상자의 극빈상태에 이르는 우회로일따름이다.》(114)

아주 근면한 로동자층의 기아의 고통과 자본주의적축적에 기초한 부자들의 조야한 또는 세련된 사치적랑비간의 내적련관은 오직 경제법칙을 리해함으로써만 해명된다.거주상태에서는 전혀 다르다. 공정한 관찰자라면 누구나 인정하듯이 생산수단의 집중이 대량적일수록 그에 따라 로동자가 동일한 공간에 더욱더 밀집하게 되며 따라서 자본주의적축적이 빠르면 빠를수록 로동자들의 거주상태는 더 비참하게 된다. 부의 장성에 따르는 도시의 《개량》—불량건물지구의 철거, 은행이나 백화점 등등의 거대한 건물의 건축, 거래상의 왕래와 사치스러운 마차를 위한 도로의 확장, 철도마차의 설치 등등에 의한—은 눈에 환히 보이게 빈민들을 날로 악화되며 날로 비좁아지는 구석으로 급속히 몰아간다. 다른 한편 누구나 다 아는바와 같이 집값은 그 질에 반비례하여 비싸며 또한 빈민이라는 광산은 포토시[445]의 광산이 채굴되였을 때보다도 더 많은 리윤과 더 적은 비용으로써 가옥투기업자들에 의하여 채굴된다. 자본주의적축적, 따라서 자본주의적소유관계일반의 적대적성격(115)은 여기에서는 아주 명백하기때문에 이 문제

---

(114) 《공중위생. 제6차보고. 1863년》, 1864년 런던판, 14, 15페지.

(115) 《로동계급의 거주조건에서처럼 인권이 공공연히 또 철면피하게 소유권의 희생으로 된 곳은 없다. 대도시는 모두가 다 인간의 희생장소이며 해마다 수천명이 탐욕스러운 몰로크를 위하여 도살당하는 제단이다.》(S. 랭 《국민적빈곤》, 1844년판, 150페지)

에 관한 영국의 공식보고까지도 《재산과 그 권리》에 대한 이단자적공격으로 충만되여있을 정도이다. 공업의 발전, 자본의 축적, 도시의 장성 및 《미화》와 더불어 이 해악도 더 커지기때문에 《상류인사》도 용서하지 않는 전염병에 대한 공포만으로 해서도 1847년부터 1864년까지에 10개이상의 위생경찰법률이 의회에서 나오게 되였으며 리버풀, 글라스고 등지의 일부 도시에서는 이에 놀란 자산계급은 그들의 시당국을 통해서 간섭하였다. 그러나 싸이먼의사는 1865년의 자기 보고에서 《일반적으로 말하여 이 해악은 잉글랜드에서 취체를 받고있지 않다.》고 부르짖고있다. 추밀원의 명령에 의하여 1864년에는 농촌로동자의, 1865년에는 도시의 극빈계급의 거주상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였다. 《공중위생》에 관한 제7차 및 제8차 보고에는 쥴리안 한터의사의 탁월한 사업들이 들어있다. 농촌로동자들에 대하여는 나중에 말하기로 하자.① 도시의 거주상태에 대하여 나는 싸이먼의사의 다음과 같은 일반적기술을 먼저 인용하려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나의 공적관점은 순전히 의학적인것이지만 그러나 가장 보통의 인도로도 이 해악의 다른 측면을 무시할수 없게 한다. 이 해악은 심하게 되면 거의 필연적으로 온갖 례절이 부인되고 육체와 육체적기능이 추악하게 뒤섞이며 성기까지 드러내놓게 되니 이것은 실로 인간이라기보다는 야수이다. 이러한 영향을 받는다는것은 타락인바 이 타락은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더 심해진다. 이러한 저주로운 환경하에서 출생한 아동들에 있어서는 그 환경은 무치의 세례나 다름없다. 또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이 다른 점에서, 육체적 및 도덕적 순결을 그 본질로 삼고있는 문명의 분위기를 추구하면서 노력한다는것은 도저히 바랄수 없는 일이다.》(116)

주택이 사람들로 너무 빽빽이 들어차있는 점에서나 지어

(116) 《공중위생. 제8차보고》, 1866년, 런던판, 14페지의 주.

① 이 책 774페지이하를 보라.—편집자

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거처할수 없다는 점에서 첫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런던이다. 한터의사는 이렇게 말하고있다.

《두가지 사정은 의심할바없다. 첫째로, 런던에는 각기 약 10,000여명의 주민을 가진 약 20개의 큰 빈민구가 있는데 그 참상은 잉글랜드의 어느곳에서도 볼수 없으며 또 그것은 거의 전적으로 주택설비가 나쁜 결과이다. 둘째로, 이 빈민구들의 가옥이 사람들로 빽빽이 들어차 있고 찌부러진 상태는 20년전보다도 훨씬 더 심하다.》(117)《런던과 뉴카슬의 많은 지구들에서의 생활은 지옥과 같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118)

그러나 런던에서는 도시의 《개량》이 진행되고 그와 더불어 낡은 거리들과 가옥들의 철거가 진행됨에 따라, 또 이 수도에 공장들과 인구의 류입이 증가함에 따라, 끝으로 또 집세가 도시의 지대와 더불어 등귀함에 따라 로동계급중 비교적 처지가 나은 부분도 소매상들 및 기타 하층중간계급분자들과 함께 이 더러운 주택조건의 저주를 점점 더 받게 된다.

《집세는 엄청나게 비싸서 한칸방이상을 세낼수 있는 로동자는 얼마 안된다.》(119)

런던에서는 무수한 《중개업자》의 손을 거치지 않은 가옥소유란 거의 하나도 없다. 런던의 토지가격은 언제나 그 토지의 년수입보다 비상히 높다. 왜냐 하면 토지의 구매자는 누구나 다 조만간 사정가격(수용시에 배심원이 확정하는 가

---

(117)《공중위생. 제8차보고》, 89페지. 이 빈민구의 아동들에 관하여 한터의사는 이렇게 말하고있다. 《빈민들이 지금과 같이 밀집해서 살기 이전에 아동들이 어떻게 자랐는가 하는것을 우리는 모른다. 지금 아동들은 각층 년령의 주정군, 상스러운 인간들, 싸움패들과 함께 한밤중까지 지냄으로써 이 나라에서는 전례가 없는 조건하에서 위험한 계급으로서의 장래의 실생활을 위한 교양을 받고있는데 이러한 아동들로부터 어떠한 행동을 기대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을 예언하려는 사람은 아마 대담한 예언자일것이다.》(우와 같은 보고, 56페지)

(118) 우와 같은 보고, 62페지.

(119)《센트마틴즈인더필즈의 의무관의 보고. 1865년》.

격)으로 다시 팔아버리려고 타산하든가 또는 부근에 어떤 큰 기업이 있기때문에 가격을 몹시 올려 횡재를 보려는 투기적 목적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그 결과 만기에 가까운 임대계약을 사들이는것이 례사로 되고있다.

《이런 일에 종사하고있는 신사들에게 기대할수 있는것은 그들이 현재하고있는대로 앞으로도 하리라는것 즉 세집거주자들에게서는 될수 있는대로 많이 짜내며 그들의 후계자들에게서는 가옥을 될수 있는대로 헐망한 상태로 넘겨주리라는것이다.》(120)

집세는 매주 지불되므로 이 신사들에게는 하등의 모험도 없다. 시내에 철도가 부설된 결과

《최근 런던의 동부에서는 본래 살던 집에서 쫓겨난 많은 가족들이 어느 토요일저녁에 보잘것없는 보짐을 짊어진채 빈민구제원외에는 어디에도 몸붙일 곳이 없어 방황하고있는것을 볼수 있었다.》(121)

빈민구제원들은 벌써 만원이였으며 의회가 이미 동의한 《개량》도 방금 착수되였을뿐이였다. 로동자들은 그 원래의 집을 헐어버리게 되여 쫓겨나면 자기들의 교구를 버리지 않든가 또는 가장 멀리 간다 해도 그 교구와 가장 가까이 린접한 교구에 이주한다.

《그들은 물론 자기의 작업장에서 될수 있는대로 가까운 곳에 이주하려고 애쓴다. 그 결과 가족은 두칸 대신에 한칸방에 들지 않으면 안된다. 더 높은 집세를 지불하여도 집은 쫓겨난 집보다 더 나쁘게 된다. 스트랜드에 사는 로동자들의 반수는 이제는 작업장까지 2마일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 스트랜드는 그 주요거리가 외래자들에게는 런던의 부에 대한 강한 인상을 주지만 런던에서 인구밀도가 심한 지대의 실례로 될수 있다. 스트랜드의 한 교구에서는 보건관리의

---

(120) 《공중위생. 제8차보고》, 1866년 런던판, 91페지.
(121) 우와 같은 보고, 88페지.

계산에 의하면 그 면적에 템즈강폭의 절반이 포함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이커당 581명이 거주하였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그러하였던것처럼 온갖 위생경찰적조치는 부적당한 가옥을 헐어 로동자들을 한 지구에 쫓아내는것인데 이것은 실지로는 그들을 다른 지구에 더 밀집시키고있을뿐이라는것은 자명하다. 한터의사는 이렇게 말하고있다.

《이 모든 시책은 불합리한것으로서 반드시 중지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과장없이 국민의 의무라고 부를수 있는 이 일 즉 자금이 부족해서 자기로서는 집을 지을수는 없으나 정기적으로 세는 물수있는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하는 이 일에 대하여 사회적동정 (!) 이 반드시 환기되여야 한다.》(122)

얼마나 경탄할만한 자본주의적정의인가! 토지소유자와 집주인과 실업가는 철도부설, 도로의 신설 등등과 같은 《개량》에 의하여 재산이 징용당할 때마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뿐만이아니다. 그밖에 그들은 자기의 강요된 《금욕》에 대하여 하느님과 인간의 법에 의하여 막대한 리윤으로써 위안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로동자들은 처자와 재산과 함께 거리에 내쫓기며 시당국이 그 정리에 각별히 류의하고있는 시구역들로 너무나 큰 떼를 지어 몰려들어가면 위생경찰이 그들을 기소한다!

19세기초 영국에는 인구가 10만이 되는 도시가 런던외에는 하나도 없었다. 5만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도 불과 다섯개뿐이였다. 현재는 5만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가 28개나 있다.

《이 변화의 결과는 도시인구의 대량적증가뿐만이 아니다. 또한 이전의 인구가 조밀한 소도시들이 이제는 사방에 건물이 줄지어서서 어디에서도 신선한 공기란 통할수 없는 중심지로 되였다. 이러한 도시들은 이제는 부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기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버리고 더 재미나는 교외로 이주한다. 그들이 살던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큰

(122) 《공중위생. 제8차보고》, 1866년 런던판, 89페지.

가옥에서 한가족이 한방씩 차지하는데 흔히 가족외에 동거인들을 넣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을 위해서 건축한것도 아니며 또 그들에게 전혀 적합하지도 않은 가옥으로 사람들이 밀려들고있으며 그 환경은 실로 성인에게는 타락적이며 아동에게는 파멸적이다.》(123)

어떤 공업도시나 상업도시에서 자본이 급속히 축적되면 될수록 착취할수 있는 인간재료의 류입도 더욱 급속해지며 되는대로 갑자기 세운 로동자들의 주택은 더욱 나쁘게 된다. 그때문에 생산량이 부단히 증가되는 탄광 및 광산 지방의 중심지로서 뉴카슬어폰타인은 주택지옥이라는 점에서 런던에 다음가는 제2위를 차지하고있다. 그곳에서는 단칸방살이를 하는 사람이 34,000명이상이나 된다. 최근 뉴카슬과 게이쯔헤드에서는 공익상 절대로 유해롭다는 리유로 많은 가옥이 경찰의 명령에 의하여 파괴되였다. 가옥의 신축은 극히 완만하게 진행되는데 사업은 극히 빠르게 발전한다. 그때문에 그 도시는 1865년에 종전의 어느때보다도 인구가 조밀하게 되였다. 빌릴수 있는 방은 거의 하나도 없었다. 뉴카슬열병병원 엠블톤의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티브스가 계속 만연하고있는 원인이 사람들의 과도한 밀집과 그들의 주택의 불결에 있음은 조금도 의심할바없다. 로동자들이 보통 살고있는 가옥은 뒤골목이나 주택울안에 있다. 그 가옥은 일광, 공간, 정결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부족과 비위생의 표본이며 대체로 문명국의 치욕인것이다. 거기에서 밤에는 남녀, 아동 할것없이 뒤섞여잔다. 남성들에 관하여 말한다면 낮교대에서 일하는자와 밤교대에서 일하는자가 끊임없이 서로 교대해서 자기때문에 침대가 식을 사이가 없다. 그 가옥은 급수가 잘 안되고 변소는 더욱 나쁘고 불결하며 환기가 되지 않아 전염병의 온상으로 되고있다.》(124)

그러한 빈민굴도 세는 주 8펜스에서 3실링까지이다. 한

(123) 《공중위생. 제8차보고》, 1866년 런던판, 56페지.
(124) 우와 같은 보고, 149페지.

터의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뉴카슬어폰타인은 우리 동포중의 가장 우수한 종족의 하나가 주택과 거리와 같은 외부적환경에 의하여 종종 야만에 가까운 퇴화상태에까지 떨어지고있는 실례로 된다.》(125)

한 공업도시의 거주상태는 자본과 로동이 이리저리 이동하기때문에 오늘은 참을만한것이라도 래일은 몹시 나쁜것으로 된다. 혹은 드디여 시위생당국이 심한 악폐의 제거에 분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래일이면 누데기를 걸친 아일랜드인이나 령락한 잉글랜드농업로동자들이 메뚜기떼와 같이 무리지어 몰려들어온다. 사람들은 그들을 지하실이나 고간으로 몰아넣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꽤 쓸만하던 로동자가옥을 려인숙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은 30년전쟁당시의 병사들의 사영에서처럼 급속히 교체된다. 실례는 브랫포드이다. 거기에서는 시당국의 속물들이 바로 도시개혁에 종사하고있었다. 1861년에는 그래도 그곳에 아직 빈집이 1,751채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호경기가 와서 그에 대하여는 흑인의 벗이며 온건한 자유주의자인 포스터씨가 최근에 품위있는 개가를 올리고있다. 물론 호경기에는 끊임없이 출렁이는 《예비군》 또는 《상대적과잉인구》의 물결로 인한 범람이 동반되였다. 한터의사가 어떤 보험회사의 대리점에서 입수한 표(126)에 기재된 험오를 일으킬만한 지하실

(125) 《공중위생. 제8차보고》, 1866년 런던판, 50페지.

(126) 브랫포드의 어떤 로동자보험회사 대리점의 표

벌칸거리 제122번	1실	16명
럼리거리 제13번	1실	11명
바워거리 제41번	1실	11명
포틀란드거리 제112번	1실	10명
하디거리 제17번	1실	10명
노스거리 제18번	1실	16명
노스거리 제17번	1실	13명

과 방들은 대개 높은 보수를 받고있는 로동자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보다 좋은 집이 있기만 하다면 즐겨 세내겠다고 말하고있다. 온건한 자유주의자인 국회의원 포스터가 자유무역의 축복과 브랫포드의 소모직물업거두들이 벌고있는 리윤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있을 때 그 로동자들은 그 가족들과 함께 모조리 령락하고 병들고있었다. 브랫포드의 빈민구제의사인 벨의사는 1865년 9월 5일 보고에서 자기의 관구의 열병환자의 무서운 사망률을 거주조건으로 설명하고있다.

《1,500립방피트의 한 지하실에서 10명이 살고있다.…빈센트거리, 그린에어플레이스 및 리즈에서는 223채의 집에서 1,450명이 살고있는데 435개의 침대 및 36개의 변소가 있을뿐이다.…침대라고 해도 그것은 더러운 누데기를 뭉친것이거나 한아름의 대패밥인데 한 침대에 평균 3.3명, 때로는 5~6명이 사용한다. 다수는 침대없이 땅바닥에서 옷을 입은채로 자며 젊은 남녀들이 기혼자이건 미혼자이건 할것없이 한데 쉬여잔다. 이 집이라는것이 대개는 컴컴하고 습기차고 더럽고 냄새

와이머거리 제19번	1실	8명(성인)
죠에트거리 제56번	1실	12명
죠지거리 제150번	1실	3가족
라이플코트 메이리케이트 제11번	1실	11명
마샬거리 제28번	1실	10명
마샬거리 제49번	3실	3가족
죠지거리 제128번	1실	18명
죠지거리 제130번	1실	16명
에드워드거리 제4번	1실	17명
〔죠지거리 제49번	1실	2가족〕
요크거리 제34번	1실	2가족
솔트파이 거리	2실	26명
지 하 실		
리겐트광장	1지하실	8명
에이커거리	1지하실	7명
로버쯔코트 제33번	1지하실	7명
백프래트거리(동대장간으로 리용되고있는 곳)	1지하실	7명
에베니저거리 제27번	1지하실	6명

(《공중위생. 제8차보고》, 1866년 런던판, 111페지)

나며 사람살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는 오막살이라는것을 부언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은 병과 죽음이 나오는 중심이며 또 그러한 종기가 우리 도시의 한가운데서 곪기도록 허용한, 처지가 좋은 사람들사이에서도 희생자를 내고있다.》(127)

주택의 빈곤에서 런던으로부터 헤아려 세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곳은 브리스톨이다.

《구라파의 가장 부유한 도시의 하나인 이 도시는 적빈과 주택참상이 가장 심하다.》(128)

(c) 류랑민

이제는 농촌에서 왔으나 대부분 공업에 종사하고있는 한 주민층을 보기로 하자. 그들은 자본의 경보병으로서 자본은 이들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 때로는 이곳으로 때로는 저곳으로 이동시킨다. 그들은 행군을 하지 않을 때는 《야영을 한다》. 이러한 이동로동은 각종 건축공사와 배수공사, 벽돌제조, 석회굽기, 철도공사 등등에 사용된다. 이 로동자들은 이동하는 전염병종대로서 그들이 진을 치고있는 부근일대에 천연두, 티브스, 코레라, 성홍열 등등을 끌어들인다.(129) 철도부설 등등과 같이 자본을 대량으로 투하하는 기업들에서는 대개 기업주자신이 자기의 군대에게 목조림시숙사 등등을 제공하는데 이 림시 꾸려진 촌락들은 위생설비란 하나도 없으며 지방당국의 취체도 받지 않으므로 청부업자 제씨에게는 매우 유리하다. 왜냐 하면 이들은 로동자들을 산업의 병사로서 또 주택임차인으로서 이중으로 착취하기때문이다. 목조림

(127) 《공중위생. 제8차보고》, 1866년 런던판, 114페지.
(128) 우와 같은 보고, 50페지.
(129) 《공중위생. 제7차보고》, 1865년 런던판, 18페지.

시숙사에 있는 동굴같은 방이 하나인가 둘인가 또는 셋인가에 따라 토공 등등의 거주자는 방세로 주에 2실링, 3실링, 4실링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130) 실례 하나를 들면 충분할것이다. 싸이먼의사의 보고에 의하면 1864년 9월에 내무대신 죠지 그레이경은 세븐옥스교구의 위생경찰위원회 위원장에게서 다음과 같은 신소를 받았다.

《12개월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구에서는 천연두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때보다 조금전에 루이샴으로부터 틴브리지에 이르는 철도건설공사가 시작되였다. 주요공사가 이 도시의 바로 부근에서 진행되였고 전체 공사의 본부가 이 도시에 설치되였다. 그렇기때문에 수많은 로동자들이 여기에서 일하고있다. 그들전부를 오막살이에 넣을수 없으므로 청부업자 제이씨는 도로연변 이곳저곳에 로동자거주용림시숙사를 세우고 로동자들을 살게 하였다. 이 림시숙사들은 환기장치도 없고 하수도도 없으며 게다가 또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차지 않을수 없었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누구나 가족이 많고 또 림시숙사는 각각 방이 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숙인을 받지 않으면 안되였기때문이다. 우리가 받은 의사의 보고에 의하면 그 결과로 이 불행한 사람들은 밤이면 더러운 물구덩이와 바로 창밑에 있는 변소로부터 풍기는 악취를 맡지 않으려고 질식의 고통을 참지 않을수 없었다. 끝으로 본 위원회는 이 림시숙사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던 한 의사에게서 신소를 받았다. 그는 이러한 소위 주택들의 형편에 대하여 아주 비통한 어조로 말하였으며 만약 약간의 위생대책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극히 엄중한 후과가 있으리라고 걱정하였다. 거의 1년전에 우에서 말한 그 제이는 그의 임금로동자들이 전염병에 걸렸을 때 즉시 격리할수 있는 한채의 가옥을 세울것을 약속하였다. 그는 이 약속을 지난 7월말에 되풀이하였으나 그후 천연두가 여러번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두명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속을 리행하기 위한 하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있다. 9월 9일에 켈손의사는 나에게 동일한 림시숙사들에서 천연두가 또 몇번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그곳 형편은 처참하다고 써보냈다. 각하 (내

(130) 《공중위생. 제7차보고》, 1865년 런던판, 165페지.

무대신) 에게 첨가하여 보고할것은 우리 교구에는 소위 전염병집이라는 격리소가 있어서 전염병에 걸린 교구민들이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것이다. 이 격리소가 지금 수개월채 환자들로 계속 만원이다. 한 가족은 다섯아이가 천연두와 열병으로 죽었다. 금년 4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에 천연두로 인한 사망이 10건이상이나 되는데 그중 4건은 전염병의 소굴인 상기 림시숙사에서 생겼다. 병에 걸린 사람의 수를 확정하기는 불가능하다. 왜냐 하면 병이 발생한 가족들은 될수 있는대로 이것을 비밀에 붙이려 하기때문이다.》 (131)

탄광이나 기타 광산의 로동자들은 브리텐무산계급중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부류에 속한다. 그들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임금을 받는가 하는것은 이미 우에서 말하였다.(132) 나는 여기에서 그들의 거주형편을 간단히 보려고 한다. 보통 채광업자는 광산의 소유자이든 임차이든간에 자기 로동자들에게 제공할 일정한 수의 오두막을 짓는다. 로동자들은 오두막과 연료용석탄을 《무료로》 받는다. 즉 이것들은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숙소를 얻지 못하는 일부 로동자들은 그대신 년 4파운드를 받는다. 광산지방은 광산로동자들자신과 그들의 주위에 모여드는 수공업자, 소매상 등등의 많은 인구를 급속하게 인입한다.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그러하듯이 이곳에서도 지대가 높다. 그렇기

---

(131) 《공중위생. 제7차보고》, 1865년 런던판, 18페지 주. 채펠앙르프리스교구련합의 빈민구제관은 중앙등기소 소장[370]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있다. 《더브흡즈에서는 석회버럭의 큰 언덕속에 많은 작은 굴들을 파고있다. 이 굴들은 철도부설에 종사하는 토공 기타 로동자들의 주택으로 되고있다. 굴들은 좁고 습기가 차있으며 하수도도 없고 변소도 없다. 여기에는 굴뚝노릇을 동시에 하는 천정에 난 구멍외에는 어떤 환기시설도 없다. 천연두가 창궐하여 이미 여러건의 사망자 (동굴속에 사는 사람들사이에서) 를 내고있다.》 (우와 같은 보고, 주 2)

(132) 460페지이하 각 페지①에서 인용한 상세한것들은 주로 탄광로동자들에 관한 것들이다. 그보다 더 나쁜 금속광산들에서의 형편에 관하여는 1864년의 치명위원회의 성실한 보고를 참조하라.

① 이 책 568~576페지를 보라. —편집자

때문에 광산기업가는 갱구부근의 될수 있는대로 좁은 대지우에 로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밀어넣기에 꼭 필요할만큼의 오두막을 세우려고 한다. 새 갱이 가까운 곳에 개발되거나 낡은 갱이 다시 채굴되기 시작하면 더욱더 좁아진다. 오두막을 세울 때 오직 한가지 관점만이 결정적의의를 가지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피한것외의 일체 현금지출에 대한 자본가의 《금욕》이다. 쥴리언 한터의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노섬벌란드 및 더람의 탄광들에 매워있는 탄부 기타 로동자의 주택은 아마도 일반적으로 보아 몬머스셔와 류사한 지방을 제외한다면 영국에서 널리 볼수 있는 모든것중에서 가장 나쁘고 가장 비싼 주택일 것이다. 그 형편이 극히 나쁜 점은 한방에 많은 사람들을 집어넣고있는 것, 대지는 좁은데 그우에 많은 가옥들을 세운것, 용수부족과 변소의 결핍, 흔히는 가옥을 첩첩히 세우든가 그것을 여러 층의 다락들로 나누는 (그리하여 여러 오두막이 우아래로 겹겹이 된 계단들을 이룬다.) 것 등에 있다.…기업주는 전체 부락을 주둔시키는것이 아니라 마치도 순전히 야영시키는셈으로 취급하고있다.》(133)

스티븐슨의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나는 지시를 집행하는중에 더람교구련합의 큰 광산부락들을 대개는 방문하였다.…극히 소수를 제외하면 어디에서나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하등의 대책을 취하고있지 않다고 말할수 있다.…전체 탄부들은 임차인 또는 광산소유자에게 12개월간 계약 (《bound》 이라는 말은 bondage(예속)①이란 말과 같이 농노시대에 발생한 표현이다.) 되여있다. 만약 그들이 불만을 보이든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감독의 비위를 거슬리게 하면 감독은 자기의 책에 있는 그들의 이름에다 표식을 해두거나 기록을 해두었다가 신년도계약시에 그들을 해고한다.…어떠한 종류의 현물지급제도②일지라도 인구가 조밀한 이 지방들에서 실시되고있

(133) 《공중위생. 제7차보고》, 1865년 런던판, 180, 182페지.

① 이 책 666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이 책 203페지를 보라. —편집자

는것보다 더 나쁜것은 있을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로동자는 그의 임금의 일부로서 전염병의 환경속에 있는 집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는 어떤 점으로 보든 농노이다. 그의 고용주를 젖혀놓고는 그를 구제할수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을는지 의문스럽다. 그런데 이 고용주는 무엇보다도 그의 수지표에 의해서만 행동한다. 따라서 이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로동자는 또 고용주에게서 물도 공급을 받는다. 물이 좋든나쁘든간에 또 제공되든 정지되든간에 로동자는 그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임금에서 해당한 공제를 당하는것이다.》(134)

자본은 《사회여론》 또는 심지어 위생경찰과 충돌할 경우에는 자기가 로동자의 로동 및 가정생활에 강요한 위험하기도 하고 타락적이기도 한 제 조건을 로동자를 보다 유리하게 착취하는데 필요한것이라고 조금도 거리낌없이 《정당화》한다. 자본이 공장에서 위험한 기계에 대한 보호시설을 금욕하는 경우, 광산 등등에서 환기 및 안전 시설을 금욕하는 경우에도 사태는 그러하다. 이 경우의 광산로동자의 거주에 관해서도 그러하다. 추밀원 의무관 싸이먼의사는 자기의 공식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악렬한 가옥설비를 변명하는 리유들은 광산이 보통 임차방식으로 채굴된다는것, 임차계약기간이 너무 짧아서(탄광에서는 대개 21년) 임차인에게는 기업이 끌어들인 로동자, 수공업자 등등을 위하여 좋은 시설을 갖춘 가옥설비를 제공하는것은 할만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는것, 그자신은 이 점에서 린색하지 않으려 하더라도 지주때문에 수포로 돌아간다는것 등이다. 왜냐 하면 지주는 그의 지하재산을 채굴하는 로동자들을 위한 주택들로 이루어지는 아담하며 또 기분이 좋은 부락을 지상에 설치하는 특권의 대가로 즉시에 비상히 높은 추가지대를 받으려고 하기때문이다. 이 금지가격은 직접적인 금지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조건만 없다면 아담한 주택을 세우려고 할 사람들을 억제하고

---

(134) 《공중위생. 제7차보고》, 1865년 런던판, 515, 517페지.

있다.…나는 이 변명의 가치에 관하여서와 또한 아담한 주택의 건설을 위한 추가지출이 결국은 누구의 부담으로 되는가 즉 지주, 광산임차인, 로동자 또는 사회, 이중의 누구의 부담으로 되는가 하는 문제는 더 상세히 언급하려 하지 않는다.…그러나 첨부한 보고들 (한터, 스티븐슨 등 의사들의 보고) 에서 발로되고있는 그 수치스러운 사실들에 비추어 그것들을 제거할 대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토지소유권이 여기에서는 일대 사회적부정의를 범하도록 리용되고있다. 지주는 광산소유자로서 자기소유지에서의 로동을 위하여 공업부락을 불러오고 그다음에는 지면의 소유자로서 그가 불러들인 로동자들이 생활상 필수적인 적합한 주택을 발견하는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광산임차인 (자본주의적채광업자) 은 이 거래에 반대할 어떠한 금전상 리해관계도 없다. 왜냐 하면 그는 지주의 요구가 과도하다 하더라도 그 결과들은 자기의 부담으로 되지 않는다는것, 그것들을 부담하게 되는 로동자들은 너무나 교육을 받지 못해서 자기들의 위생권리도 모른다는것, 극히 혐오스러운 주택들이나 극히 더러운 음료수도 결코 파업의 동기로 되지 않는다는것을 잘 알고있기때문이다.》 (135)

(d) 로동계급중 최고의 지불을 받는 부분에 미치는 공황의 영향

본래의 농업로동자로 넘어가기전에 공황이 로동계급중 최고의 지불을 받는 부분 즉 로동계급의 귀족에게까지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일례를 들고저 한다. 우리가 기억하고있는바와 같이 1857년에는 매개 산업순환의 종점인 대공황이 있었다. 다음순환기는 1866년에 끝났다. 많은 자본을 통례의 투하분야로부터 화폐시장의 대중심지로 몰아낸 면화기근으로 말미암아 본래의 공장지방들에서 이미 할인되여있었으므로 공황은 이번에는 주로 금융적성격을 띠였던것이다.

(135) 《공중위생. 제7차보고》, 1865년 런던판, 16페지.

1866년 5월에 이 공황이 일어났는데 런던의 어떤 대은행의 파산이 그 신호로 되였으며 그뒤를 이어 수많은 금융투기회사들이 무너졌다. 파국에 봉착한 런던의 대생산부문중의 하나는 철제선박건조업이였다. 이 공업부문의 거두들은 호경기시대에 무제한으로 과잉생산을 하였을뿐만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신용원천은 앞으로도 여전히 계속 풍부하리라고 예상하고 거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무서운 반작용이 닥쳐와서 런던의 기타 공업부문(136)에서도 현재까지 즉 1867년 3월말까지 계속되고있다. 로동자들의 형편을 특징짓기 위하여 1867년초에 재난의 주요중심지를 방문한 《새별》지의 한 통신원의 상세한 보도에서 다음과 같은 개소를 인용하려 한다.

《런던동부에서, 포플라, 밀월, 그리니지, 뎁트포드, 라임하우스 및 캔닝타운지방들에서 적어도 15,000명의 로동자와 그 가족들이 극도의 궁핍상태에 처하고있는데 그중 3,000명이상이 숙련기계공이다. 그들의 저금은 6내지 8개월간 실업한 결과 모조리 없어지고말았다.…나는 빈민구제원(포플라의)의 문까지 들어가는데 큰 고생을 하였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굶주린 군중으로 둘러싸여있었기때문이다. 군중은 빵표를 기다리고있었는데 배포시간이 아직 안된것이였다. 마당은 큰 사각형을 이루고 사방에는 채양이 얹혀있었다. 큰 눈더미들이 마당가운데 있는 포장용돌을 덮고있었다. 여기는 버드나무울타리로써 양우리와 같이 작은 칸들로 구획되여있으며 날씨가 좋으면 사람들이 여기서 일을 한다. 내가 찾아간 날은 그 우리칸들은 눈에 덮여있어서 아무도 그안에 앉을수

(136) 《런던의 빈민의 대량적기아!…최근 수일간 다음과 같은 주목할만한 문구를 쓴 큰 포스터가 런던의 벽들에 나붙었다. 〈살진 소들, 굶주린 사람들! 살진 소들은 그들의 수정궁을 나와 고대광실에 사는 부자들을 살지게 하는데 굶주린 사람들은 비참한 굴속에서 썩어가며 죽어가고있다.〉 이러한 상서롭지 못한 문구를 쓴 포스터는 부단히 새로 나붙는다. 한번 그것들을 찢어버리거나 덧붙여버리자마자 새로운것들이 같은 장소나 또는 역시 눈에 뜨이는 장소에 또 나타난다.…이것은 프랑스인민을 1789년사변에로 준비시킨 상서롭지 못한 전조를 상기시킨다.…영국로동자들이 그 처자들과 함께 기한에 쓰러지고있는 이 순간에 영국의 로동의 산물인 수백만 영국화폐는 로씨야, 에스빠냐, 이딸리아 기타 외국의 기업들에 투하되고있다.》(《레이놀즈신문》, 1867년 1월 20일)

가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처마밑에서 포장용돌을 깨고있었다. 제각기 큰 포장돌우에 앉아서 무거운 망치로 빙설이 덮인 화강암을 자갈로 5부 쉘이 될 때까지 깨고있었다. 그때에야 그의 하루작업은 끝나고 그는 3펜스와 빵표 한장을 받는다. 마당의 다른 한쪽에는 쓰러질듯한 작은 목조오두막이 서있었다. 문을 열어본즉 거기에는 사람들이 가득차있었는데 그들은 서로 기대여 몸을 녹이고있었다. 그들은 삼부스러기를 이기는 작업을 하면서 그들중 누가 제일 적게 먹고 제일 오래 일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론쟁하고있었다. 그것은 참을성이 여기에서는 명예로운 일이였기때문이다. 이 한개의 빈민구제원에서만 7,000명이 부조를 받고있었는데 그중 수백명은 6~7개월전만 해도 이 나라에서 숙련로동의 최고임금을 받고있었다. 만약 저금을 다 써버리고도 아직 무엇이고 전당을 잡힐만한 물건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교구의 부조를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그들의 수효는 2배나 더 늘었을것이다.…빈민구제원을 나와서 나는 대부분 2층가옥이 늘어선 거리를 지나갔는데 포플라에는 이러한 집이 많았다. 나의 안내자는 실업자구제위원회의 위원이였다. 우리가 들어간 첫집은 이미 27주일이나 실업당하고있는 철공의 집이였다. 그때 그는 가족들과 함께 뒤방에 앉아있었다. 방에는 아직 가구가 좀 남아있었고 또 화기도 있었다. 몹시 추운 날이였으므로 어린애들의 맨발이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화기가 필요하였다. 불 맞은편에 놓여있는 대야에는 삼부스러기가 들어있었는데 이것은 부인과 아이들이 빈민구제원에서 받은 빵값을 물기 위하여 이긴것이였다. 주인은 바로 우에서 말한 그 마당 한곳에서 일하고 하루에 빵표 한장과 3펜스를 받았다. 그가 쓴웃음을 지으면서 우리에게 말한바에 의하면 그는 극도로 시장하여 방금 점심을 먹으러 집에 온참이였다. 그의 점심은 기름을 약간 칠한 몇개의 빵쪼각과 우유를 넣지 않은 한잔의 차였다.…우리가 다음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 중년부인이 문을 열어주었는데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조그마한 뒤방으로 우리를 안내하였다. 거기에는 온 가족이 금방 꺼져가는 불을 들여다보면서 잠자코 앉아있었다. 이 사람들의 얼굴과 그 조그마한 방은 내가 다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고싶지 않으리만한 비애와 절망으로 덮여있었다. 부인은 어린애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애들은 26주일이나 조금도 벌이가 없었

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외가 불경기때에 연명이나 할가 생각하여 경기가 좋은 시절에 떼여놓은 돈 20파운드도 몽땅 없어졌습니다. 자 보십시오!〉 라고 거의 웨치다싶이 말하면서 입금과 출금이 모두 제대로 기입되여있는 저금통장을 내보였으므로 우리는 그 적은 재산이 최초의 5실링의 예금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조금씩 불어서 20파운드까지 되였으며 그다음은 몇파운드로부터 몇실링으로 줄기 시작하여 드디여 마지막기장은 통장을 한푼의 값도 없는 흰 종이쪽지로 만들었는가 하는것을 볼수 있었다. 이 가족은 빈민구제원으로부터 하루에 한번 보잘것없는 식사를 공급받는다. 우리가 그다음으로 방문한것은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던 한 아일랜드인의 부인이 거처하는 곳이였다. 그 부인은 영양부족으로 앓고있었는데 옷을 입은채로 한쪼각의 포대기를 걸치고 마트라스우에 누워있었다. 왜냐 하면 침구는 모두 전당포에 가져가서 집에 없었기때문이다. 불행한 두 아이가 그를 간호하고있었는데 보매 도리여 아이들자신이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형편이였다. 19주일간이나 부득이한 무위도식이 그를 이런 처지에까지 이르게 하였는데 그는 가슴저리는 과거사를 이야기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하여 모든 희망을 잃은듯이 신음하였다.…그 집을 나왔을 때 웬 젊은 사람이 우리에게 달려와서 자기 집에 좀 들려서 자기를 위해 무엇이고 해줄수 없겠는가 보아달라는것이였다. 젊은 처, 귀여운 두 어린애들, 한줌의 전당표뭉치, 전혀 아무것도 없는 방—이것이 그가 보여줄수 있었던 전부였다.》

1866년공황의 후과에 대해서 보도한 토리당의 한 신문에서의 다음과 같은 발취를 또 하나 들어보자. 여기에서 언급되고있는 런던의 동부는 이 장의 본문에서 이미 언급한 철제선박건조로동자들의 소재지일뿐만아니라 언제나 최저한도이하의 보수를 받는 소위 《가내로동》의 소재지이기도 하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어제 수도의 한 부분에서 무서운 광경이 벌어졌다. 동부의 수천명실업자들이 흑색의 조기를 들고 대중시위를 한것은 아니지만 인산인해를 이룬 군중은 아주 위압적이였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라. 그들은 기아에 죽어가고있다. 이것은 단순하면서

도 무서운 사실이다. 그 수는 4만명이다.…우리의 눈앞에서, 이 훌륭한 수도의 한 구역에서 미증유의 방대한 부의 축적과 나란히 4만명의 인간이 하는수없이 기아에 쓰러지고있다! 이러한 수천명이 지금 다른 구역으로도 침입하고있다. 항상 반굶주림상태에 있는 그들은 우리 귀에다 자기들의 참상을 고함치며 하늘을 향하여 절규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비참한 주택에 대하여, 일자리를 구할수 없으며 구걸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데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지방빈민구제세납부의무자들이 이번에는 교구측으로부터 요구하는 부담으로 하여 도리여 극빈민이 될 지경에 처하고있다.》(《기발》, 1867년 4월 5일)

영국자본가들사이에서는 벨지끄를 로동자의 락원으로 묘사하는것이 류행으로 되고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는 《로동의 자유》 즉 같은 말이지만 《자본의 자유》가 로동조합의 전제에 의하여서도 또 공장법에 의하여서도 침해당하고있지 않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벨지끄로동자의 《행복》에 대하여 몇마디 말하여야 하겠다. 아마도 벨지끄의 감옥과 자선시설들의 총감독관이며 벨지끄중앙통계위원회 위원이였던 고 뒥뻬씨오씨보다 이 행복의 비밀에 더 정통하고있은 사람은 없을것이다. 그의 로작 《벨지끄로동계급의 가계예산》(1855년 브류쎌판)을 들어보자.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벨지끄의 표준적로동자가족의 년수입지출이 극히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계산되여있으며 그다음에는 그들의 영양상태를 병사, 수병, 수인의 영양상태와 비교하고있다. 그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4명의 아동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6명중 《4명은 년간을 통하여 벌이가 있다》. 《그중에는 병자도 로동불능자도 없으며》 또 《극히 적은 교회비를 제외하면 종교적, 도덕적 및 지적 수요에 대한 지출도 없으며》 또 《저축금고나 양로금고에 대한 납부금도 없으며》 또 《사치품에 대한 지출이나 기타 쓸데없는 지출도 없다.》는것이 전제로 되여있다. 그러나

아버지와 장남은 담배를 피우며 일요일에는 술집에 간다는것이고 그때문에 그들은 매주 옹근 86쌍띰을 지출해야 한다.

《각종 생산부문의 로동자들이 받는 임금을 종합비교하여보면…최고임금의 일평균은 남성 1프랑 56쌍띰, 녀성 89쌍띰, 소년 56쌍띰, 소녀 55쌍띰이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이 가족의 년수입은 가장 많아서 1,068프랑으로 될것이다.…우리는 전형적인것으로 본 그 가계에 있어서 있을수 있는 모든 수입의 총계를 계산하였다. 그러나 만약 어머니도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살림살이를 보살필 사람이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누가 집을 보살피고 누가 아이들을 보아줄것인가? 누가 끼니를 끓이고 빨래를 하고 옷을 꿰맬것인가? 이런 문제가 로동자들앞에 매일같이 제기된다.》

이래서 이 가족의 예산은 다음과 같이 된다.

	하루의 임금액	300로동일의 임금총액
아버지	1.56프랑	468프랑
어머니	0.89프랑	267프랑
아 들	0.56프랑	168프랑
딸	0.55프랑	165프랑
합계		1,068프랑

로동자가 수병, 병사, 수인과 같은 영양을 취한다고 하면 이 가족의 년 지출액과 부족액은 다음과 같이 될것이다.

	지출액	부족액
수병의 식사……	1,828프랑	760프랑
병사의 식사……	1,473프랑	405프랑
수인의 식사……	1,112프랑	44프랑

《여기에서 보는바와 같이 수병이나 병사는 고사하고 수인의 영양조차 취할수 있는 로동자가족이란 소수뿐이다. 1847~1849년에 벨지끄의 수인은 평균하여 하루에 63쌍띰의 비용이 들었는데 로동자의 하루생계비와 비교하면 13쌍띰이나 더 많다. 관리비와 감시비는 수인이 집세를 물지 않음으로써 상쇄된다.…그러나 다수—아니 대다수라고 우리는 말할수 있다—의 로동자가 이보다 더 검박하게 살고있다는것을

어떻게 설명할것인가? 그것은 다만 로동자들만이 그 비결을 알고있는 다음과 같은 응급수단을 취한다는것으로써만 설명된다. 즉 그들은 매일 먹는 량을 줄인다. 밀빵 대신에 호밀빵을 먹는다. 고기를 적게 먹든가 또는 전혀 안먹는다. 빠다와 조미료도 마찬가지이다. 가족들은 한방이나 두방에 몰려산다. 거기에서는 왕왕 짚으로 만든 한 깔개우에서 남자애들과 녀자애들이 같이 잔다. 그들은 의복, 세탁 및 청결에 필요한 돈을 절약한다. 그들은 휴일의 소풍도 단념한다. 간단히 말하면 극히 고통스러운 결핍생활을 하는것이다. 일단 로동자가 이 마지막 한계에 도달하면 생활수단가격의 극히 사소한 인상이라든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든가, 병이 난다든가 하면 그의 빈궁은 증대되고 그는 아주 령락하게 된다. 빚은 쌓이고 돈 꿀 길은 막히고 의복과 극히 필요한 가구는 전당포로 간다. 그리하여 드디여 가족은 빈민명단에 등록을 신청함으로써 만사는 끝난다.》(137)

사실 이 《자본가들의 락원》에서는 필요생활수단가격이 조금만 변동되더라도 사망자수와 범죄건수에 변동이 일어난다!(《〈플란드르인이여 앞으로!〉 협회의 호소문》, 1860년 브류쎌판, 13, 14페지를 보라.) 벨지끄 전국에 93만호의 가정이 있는데 그중 공식통계에 의하면 부유한 가정(선거권자)은 9만호로서 인구는 45만명이며 도시와 농촌의 하층중간계급가정은 39만호로서 인구는 195만명이며 그 대부분이 부단히 무산계급으로 전락하고있다. 끝으로 로동자가정은 45만호로서 그 인구는 225만명이며 그중 전형적가정이 뒥뻬씨오에 의하여 서술된 행복을 누린다. 45만호의 로동자가정중 20만호이상이 빈민명단에 올라있다!

(e) 브리텐의 농업무산계급

(137) 뒥뻬씨오 《벨지끄로동계급의 가계예산》, 1855년 브류쎌판, 151, 154, 155, 156페지.

자본주의적 생산과 축적의 적대적성격은 영국농업(목축업을 포함함.)의 진보와 영국농업로동자의 퇴보에서보다 더 잔인하게 실증되고있는 곳은 없다. 나는 그들의 현재의 형편으로 넘어가기전에 잠시 과거를 돌이켜보려고 한다. 생산방식의 변화의 기초로서의 토지소유관계의 변혁은 훨씬 이전시기에 속하지만 잉글랜드의 현대적농업은 18세기중엽부터 시작된다.

피상적사상가이기는 했지만 정확한 관찰자였던 아서 영이 쓴 1771년의 농촌로동자들에 관한 자료에서 보면 그들은 《잉글랜드의 도시 및 농촌 로동자들의 황금시대인》 15세기는 고사하고 《농촌로동자가 유족하게 살고 또 재부를 축적할수 있었던》(138) 14세기말의 그들의 선행자들과 비교하더라도 극히 보잘것없는 역할을 놀았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먼 과거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 극히 내용이 풍부한 1777년의 한 저술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대차지농업가는 거의 신사의 수준에까지 올라갔는데 가난한 농촌로동자들은 거의 땅바닥에까지 눌리우고있다. 그 불행한 처지는 그들의 오늘의 형편과 40년전의 형편을 비교하면 명백해진다.…토지소유자와 차지농업가는 결탁하여 로동자를 압박한다.》(139)

이어서 저자는 농촌에서 실질임금이 1737년부터 1777년까지 거의 $\frac{1}{4}$ 즉 25%나 저락한것을 상세히 증명하고있다. 같은 시대의 리쳐드 프라이스박사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현대정치는 국민의 상층계급을 비호한다. 그 결과는 조만간 왕국

---

(138) 제임즈 E. Th. 로저즈(옥스포드대학 정치경제학교수) 《영국의 농업과 가격의 력사》, 1866년 옥스포드판, 제1권, 690페지. 힘들여 쓴 이 로작은 현재까지 발간된 최초의 두권에서 아 1259~1400년의 기간만을 포괄하고있을뿐이다. 제2권은 통계자료들뿐이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있는 최초의 믿을만한 그 시기의 가격의 력사이다.[446]

(139) 《최근의 빈민구제세증가의 리유 또는 로동가격과 식량가격의 비교고찰》, 1777년 런던판, 5, 11페지.

전체가 다만 신사들과 거지로, 귀족과 노예로 이루어질것이다.》(140)

그러나 1770~1780년의 영국농촌로동자들의 형편은 그들의 영양 및 거주조건으로 보나 그들의 자존심, 오락 등등의 점으로 보나 그 이후에 다시는 결코 도달하지 못한 리상이다. 밀의 량으로 표시하면 1770~1771년의 농촌로동자들의 평균임금은 90펀트인데 이든의 시대(1797)에는 벌써 65펀트에 불과하고 1808년에는 겨우 60펀트였다.(141)

반쟈꼬벵전쟁[403]—이 기간에 토지귀족, 차지농업가, 공장주, 상인, 은행가, 거래소기사, 군수품공급자 등등은 비상한 치부를 하였다—의 말기의 농촌로동자들의 형편①에 관하여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명목임금은 부분적으로는 은행권의 가치저락의 결과로, 부분적으로는 이와는 관계없는 제1차적생활수단의 가격등귀의 결과로 인상되였다. 그러나 임금의 현실적변동은 여기서 상세히 론할것없이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설명할수 있다. 빈민구제법[345]과 그 행정은 1795년이나 1814년이나 동일하였다. 이 법이 어떻게 농촌에 시행되였는가를 상기하여 보자. 교구는 로동자들이 겨우 연명이나 하는데 필요한 명목액이나 되게 구제금의 형태로 명목임금을 보충하여주었다.② 차지농업가가 지불한 임금과 교구가 보충한 그 부족액과의 비률은 우리에게 두가지를 보여준다. 첫째로,

---

(140) 리처드 프라이스박사 《상속지불에 대한 고찰》, W. 모간 편찬, 1803년 런던 제6판, 제2권, 158페지. 프라이스는 159페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있다. 《지금 1로동일의 명목임금은 1514년보다 약 4배 또는 가장 많아서 5배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곡물가격은 7배, 육류와 의류는 약 15배나 높다. 그러므로 로동가격은 생활비의 증가에 상응하지 않으므로 현재는 아마 종전생활비의 절반도 안될것이다.》

(141) 바른 《사회의 로동자계급의 형편에 영향을 주는 제 사정의 고찰》, 1817년 런던판, 26페지. 18세기말에 대하여는 이든의 《빈민의 상태》를 참조하라.

---

① 이 책 640~641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이 책 694~695페지를 보라. —편집자

임금이 그 최저한도이하로 저락되였으며 둘째로, 농촌로동자가 임금로동자 및 극빈민으로 구성된 정도 또는 그가 그 교구의 농노로 전화된 정도이다. 다른 모든 군의 평균상태를 대표할만한 한군을 택하여보자. 1795년에 노샘프톤셔에서 주평균임금은 7실링 6펜스였고 6명 가족의 년총지출액은 36파운드 12실링 5펜스, 그의 총수입은 29파운드 18실링, 교구가 보충해준 부족액은 6파운드 14실링 5펜스였다. 이 군에서 1814년 주임금은 12실링 2펜스, 5명 가족의 년총지출액은 54파운드 18실링 4펜스, 그의 총수입은 36파운드 2실링, 교구가 보충해준 부족액은 18파운드 6실링① 4펜스였다.(142) 그러므로 1795년에는 부족액이 임금의 $\frac{1}{4}$이하였는데 1814년에는 절반이상이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이든이 일찌기 농촌로동자의 오두막에서 발견한 얼마 안되는 위안조차 1814년에는 없어진 것이 명백하다.(143) 차지농업가가 사양하고있는 모든 동물중에서 말하는 도구인 로동자는 그때로부터 가장 혹사되며 가장 나쁘게 사양되며 또 가장 란폭하게 취급되는것으로 되였다.

이러한 사태는 아직 그대로 계속되였으나 드디여

《1830년의 스윙폭동[209]이 밀난가리에 타오르는 불빛으로써 우리에게 〔즉 지배계급에게〕 빈곤과 험악한 동란적불만이 공업적잉글랜드에서와 같이 농업적잉글랜드의 지하에서도 뭉게뭉게 타오르고있다는것을 폭로하였다.》(144)

당시 쌔들러는 하원에서 농촌로동자를 《백색노예》라고

---

(142) 패리 《농업로동자, 소작농, 토지소유자 및 국가의 견지에서 본 현행곡물법의 필요성문제》, 1816년 런던판, 80페지.

(143) 우와 같은 책, 213페지.

(144) S. 랭 《국민적빈곤》, 1844년판, 62페지.

① 계산을 해보면 16실링이 되는데 패리 저서에는 이렇게 6실리으로 되여있다. —편집자

명명하고 대주교의 한사람은 상원에서 이 명칭을 되풀이하였다. 당시의 가장 저명한 정치경제학자 E. G. 웨익필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남부잉글랜드의 농촌로동자는 노예도 아니고 자유민도 아니다. 그들은 다만 극빈민이다.》(145)

곡물법[23]을 폐지하기 직전시기는 농촌로동자들의 상태에 새로운 빛을 던져주었다. 한편으로 보호법이 현실적곡물생산자들을 거의 보호하지 않는다는것을 립증하는것은 자산계급선동가들의 리익으로 되였다. 다른 한편으로 공업자산계급은 토지귀족들이 공장상태를 비난하는것을 반대하는, 이 골수까지 썩어빠진 몰인정하며 우쭐대는 무위도식자들이 공장로동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베푸는체하는 동정을 반대하는 또 공장립법에 대한 그들의 《외교적열성》을 반대하는 분노로 들끓었다. 두 도적놈이 맞다들어 싸우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영국의 옛속담이 있다. 사실 지배계급의 두 분파사이에서 벌어진 론쟁 즉 그들중 누가 가장 파렴치하게 로동자들을 착취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소란스럽고 격렬한 론쟁은 어느측에서도 진상을 폭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샤프쯔버리백작, 일명 애슐리경은 귀족적, 박애주의적 반공장운동의 선봉[447]이였다. 그렇기때문에 1844년과 1845년에 그는 농업로동자들의 형편에 관한 《조간시사》지의 폭로기사에 애호받는 인물이 되였다. 당시 가장 중요한 자유주의적기관지였던 이 신문은 농촌지방에 자체의 특파원들을 파견하였는데 이들은 일반적기사나 통계로써는 결코 만족하지 않고 조사한 로동자가족들과 그들을 고용한 지주들의 성명을 공포하였다. 다음표(146)는 블랜포드, 윔본 및 풀 근방

---

(145) 《영국과 미국》, 1833년 런던판, 제1권, 47페지.
(146) 런던 《경제학자》, 1845년 3월 29일, 290페지.

의 세 농촌에서 지불된 임금정형을 보여준다. 이 촌락들은 G. 뱅크스씨와 샤프쯔버리백작의 소유지이다. 우리는 이 《저교회파》[448]의 법왕, 이 영국경건파의 두목이 그의 동료 뱅크스와 마찬가지로 로동자들의 형편없는 임금에서 또 집세라는 구실로 상당한 액수를 빼앗고있다는것을 보게 될것이다.

아동수	가족수	성인남자의 주임금	아동의 주임금	가족전체의 주임금	주간 집세	집세를 공제한 주총임금	1인당 주임금
		실링 펜스	실링 펜스	실링 펜스	실링 펜스	실링 펜스	실링 펜스
제1촌							
2	4	8 −	−	8 −	2 −	6 −	1 6
3	5	8 −	−	8 −	1 6	6 6	1 $3\frac{1}{2}$
2	4	8 −	−	8 −	1 −	7 −	1 9
2	4	8 −	−	8 −	1 −	7 −	1 9
6	8	7 −	1 6	10 6	2 −	8 6	1 $\frac{3}{4}$
3	5	7 −	2 −	7 −	1 4	5 8	1 $1\frac{1}{2}$
제2촌							
6	8	7 −	1 6	10 −	1 6	8 6	1 $\frac{3}{4}$
6	8	7 −	1 6	7 −	1 $3\frac{1}{2}$	5 $8\frac{1}{2}$	− $8\frac{1}{2}$
8	10	7 −	−	7 −	1 $3\frac{1}{2}$	5 $8\frac{1}{2}$	− 7
4	6	7 −	−	7 −	1 $6\frac{1}{2}$	5 $5\frac{1}{2}$	− 11
3	5	7 −	−	7 −	1 $6\frac{1}{2}$	5 $5\frac{1}{2}$	1 1
제3촌							
4	6	7 −	−	7 −	1 −	6 −	1 −
3	5	7 −	2 −	11 6	− 10	10 8	2 $1\frac{1}{2}$
0	2	5 −	2 6	5 −	1 −	4 −	2 −

곡물법의 폐지는 영국농업에 일대 충격을 주었다. 극히 큰 규모의 배수공사(147), 가축을 우리에서 기르며 인공목초를 재배하는 새로운 방법, 기계적시비장치의 채용, 점토질토양의 새로운 처리방법, 광물성비료의 사용의 증가, 증기기관 및 기타 각종 새 작업기계의 사용 등등, 일반적으로 보다 집약적인 재배가 이 시기의 특징이다. 왕립농업협회 회장 퓨지씨는 경영비가 새로 채용된 기계에 의하여(상대적인) 거의 절반 줄었다고 주장하고있다. 다른 한편으로 토지의 실질적인 수익이 급속히 증대하였다. 에이커당 투자액의 증대, 따라서 차지농장의 가속적집적이 새로운 방법의 기본조건이였다.(148) 동시에 경작면적은 토끼사양장과 빈약한 목장으로부터 풍성한 곡물밭으로 전화된 동부군들에서의 광대한 토지는 도외시하더라도 1846년부터 1856년까지에 464,119에이커나 확장되였다. 이와 동시에 농업취업자총수는 감소하였다는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있다. 남녀로소 각 년령층의 본래의 농업자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들의 수는 1851년의 1,241,269명으로부터 1861년의 1,163,217명으로 줄었다.(149) 그러므로 영국의 중앙등기소 소장[370]은 정당하

---

(147) 토지귀족들자신은 이 목적을 위한 기금을 물론 의회를 통하여서이지만 국고로부터 극히 낮은 리자로 빌렸는데 차지농업가는 그 2배의 리자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148) 중등차지농업가의 감소는 특히 인구조사의 항목 《차지농업가의 아들, 손자, 형제, 조카, 딸, 손녀, 자매, 조카딸》 ―간단히 말하면 차지농업가가 사용하는 그자신의 가족성원들―에서 찾아볼수 있다. 이 항목에 의하면 1851년에는 216,851명이였는데 1861년에는 176,151명에 불과하였다. 1851년부터 1871년까지 영국에서는 20에이커이하의 차지농장은 900개이상 감소되였고 50~75에이커의 차지농장은 8,253개로부터 6,370개로 감소되였으며 100에이커이하의 기타 모든 차지농장들도 마찬가지였다. 그와 반대로 이 20년간에 대차지농장수는 증가하였다. 즉 300~500에이커의것은 7,771개로부터 8,410개로, 500에이커이상의것은 2,755개로부터 3,914개로, 1,000에이커이상의것은 492개로부터 582개로 증가하였다.

(149) 양사양공의 수는 12,517명으로부터 25,559명으로 증가하였다.

게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있다. 《1801년이래의 차지농업가와 농촌로동자수의 증대는 농업생산물의 증가와 전혀 상응하지 않는다.》(150) 그러나 경지면적의 확대, 경작의 집약화, 토지에 투하되였고 토지의 경작에 돌린 자본의 미증유의 축적, 영국농업사에 류례가 없는 토지생산물의 증대, 토지소유자의 지대의 증대, 자본주의적차지농업가의 재부의 증가와 더불어 농촌로동자인구의 절대적감소가 일어난 최근 시기에는 이 불상응현상이 비할수 없으리만큼 더욱 심하게 되였다. 이 모든것에다가 또한 도시의 판매시장의 부단하고 급속한 확장과 자유무역의 지배를 첨가한다면 농촌로동자가 많은 우여곡절을 거친 다음에 결국은 리론 그대로 엄청난 행복에 도취되였어야 할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될수 있을것이다.

그런데 로져즈교수의 결론에 의하면 오늘날의 잉글랜드의 농촌로동자의 형편은 14세기의 후반기와 15세기의 그 선행자의 형편과는 비교할것도 없고 1770~1780년시기의 그의 선행자의 형편과 비교만 하더라도 비상히 악화되였으며 《그들은 다시 농노로 되였으며》, 그것도 먹을것과 주택이 나쁜 그런 농노로 되였다.(151) 쥴리언 한터의사는 농촌로동자의 주택에 관한 그의 획기적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하인드 (농노제시대의 농업로동자의 명칭) 의 생활비는 그가 겨우 연명할수 있는 최저수준에 고정되여있다.…그의 임금과 주택은 그에게서 끌어내게 될 리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차지농업가

---

(150) 《1861년도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인구조사》, 1863년 런던판, 36페지.

(151) 로져즈 《영국의 농업과 가격의 력사》, 1866년 옥스포드판, 제1권, 693페지. 《농민은 또한 농노로 되여있다.》(우와 같은 책, 10페지) 로져즈씨는 자유주의파[449]에 속하며 코브던과 브라이트의 친우이며 따라서 《과거의 좋은 시절의 찬미자》[450]는 결코 아니였다.

의 계산으로는 완전히 령이다.(152)…그의 생존수단은 언제나 고정된 량으로 취급되고있다.》(153) 《그의 수입의 가일층의 감소에 관해서 말한다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할수 있다. 즉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아무 걱정도 없다고. 그에게는 그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불가결한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는 미래에 대하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차지농업가의 계산의 출발점인 령에 달하고있다. 무엇이 어떻게 되든 행복이나 불행이 그에게는 상관이 없다.》(154)

1863년에 류형과 징역의 처분을 받은 죄수의 음식과 작업조건에 관한 공적조사가 있었다. 그 결과가 두권의 두터운 청서에 서술되여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감옥에 수감되여있는 잉글랜드의 죄수의 식사와 같은 이 나라의 빈민구제원의 극빈민 및 자유로운 농촌로동자의 식사를 면밀히 비교하여보면 전자가 후자의 두 부류중의 어느 부류보다도 더 잘먹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155) 그런데 《징역을 받은자에게 요구하는 로동량은 보통농촌로동자가 수행하는것의 약 절반이다》.(156)[451]

약간의 특징적인 증언을 인용하여보자. 에딘버러감옥의 전옥 죤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있다.

《영국의 죄수의 식사는 보통농촌로동자의 식사보다 훨씬 좋다.》(제5056호) 《스코틀랜드의 보통농촌로동자는 고기같은것을 먹는 일은 극히 드문것이 사실이다.》(제5057호) 《당신은 죄수에게 보통농촌로동자들보다 훨씬 잘먹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 어떤 리유를 아는가?—물론 모른다.》(제3047호) 《당신은 징역수의 식사를 자유로운

---

(152) 《공중위생. 제7차보고》, 1865년 런던판, 242페지. 그러므로 가옥소유자가 로동자의 벌이가 많아졌다는 소문을 듣고 집세를 올리든, 《그 처가 일자리를 얻었다.》는 리유로 차지농업가가 로동자의 임금을 내리든 거기에는 아무런 이상한것이 없다.(우와 같은 보고)

(153) 우와 같은 보고, 135페지.

(154) 우와 같은 보고, 134페지.

(155) 《류형 및 징역형에 관한 법률시행위원회의 보고》, 1863년 런던판, 42페지와 50페지.

(156) 우와 같은 보고, 77페지. 《재판장의 각서》

농촌로동자의 식사와 근사하게 하기 위한 실험을 앞으로 더하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3048호)(157)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여있다. 《농촌로동자는 이렇게 말할수 있을것이다.—나는 고되게 일하고도 배불리 먹지 못한다.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고되게 일하지 않고도 배불리 먹었다. 그래서 나는 석방되여있는것보다 감옥에 있는것이 더 좋다.》(158)

보고 제1권 부록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개괄적인 대조표를 작성할수 있다.

주 영양량(158a)

(단위: 온스)

	질소성분	무질소성분	광물성성분	총 량
포플란드감옥의 죄수	28.95	150.06	4.68	183.69
왕국해군의 수병	29.63	152.91	4.52	187.06
병사	25.55	114.49	3.94	143.98
마차제조로동자	24.53	162.06	4.23	190.82
식자공	21.24	100.83	3.12	125.19
농촌로동자	17.73	118.06	3.29	139.08

국민중의 영양이 제일 좋지 못한 계급의 영양상태에 관한 1863년 의무조사위원회의 일반적조사결과를 독자들은 이미 알고있다.① 그것은 대부분의 농촌로동자가족들의 식사는 《기아병을 방지하기에》 필요한 최저한도이하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콘월, 데본, 서머세트, 윌쯔, 스태포드, 옥스포드, 박스 및 하쯔의 모든 순농업지방에서 그러하다. 스미스의사

(157) 《류형 및 징역형에 관한 법률시행위원회의 보고》, 1863년 런던판, 제2권에 수록된 증언.

(158) 우와 같은 보고, 제1권 부록 280페지.

(158a) 우와 같은 보고, 제1권 부록 274~275페지.

① 이 책 754~757페지를 보라. —편집자

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농촌로동자가 취하는 영양은 평균량이 표시하는것보다는 많다. 왜냐 하면 로동자자신은 로동을 하기 위하여 기타의 가족성원들보다 음식물의 훨씬 많은 부분을 취하지 않을수 없기때문이다. 보다 빈곤한 지방들에서는 육류나 지방은 거의 모두 로동자자신이 차지한다. 많은 경우에 그리고 거의 모든 군들에서 처와 또한 한창 발육하는 년령의 아동들이 취해야 할 영양량 특히 질소분이 부족하다.》(159)

차지농업가들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머슴군과 식모는 영양을 충분히 취하고있다. 그들의 수는 1851년의 288,272명으로부터 1861년의 204,962명으로 감소되였다. 스미스의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녀성의 전간로동은 아무리 유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사정하에서는 가족에게 큰 리익을 준다. 왜냐 하면 그들에게 신발, 의복, 집세 지불을 위한 수입을 얻게 하며 또 그렇게 됨으로써 가족이 좀 잘 먹을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때문이다.》(160)

이 조사의 가장 주목할만한 결과의 하나는 잉글랜드의 농촌로동자가 련합왕국의 기타 지방들의 농촌로동자보다도 훨씬 좋지 못한 나쁜 음식을 먹고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다음의 표가 보여주고있다.

농촌의 평균로동자의 탄소 및 질소분의 주 소비량(161)

---

(159) 《공중위생. 제6차보고. 1863년》, 238, 249, 261, 262페지.

(160) 우와 같은 보고, 262페지.

(161) 우와 같은 보고, 17페지. 잉글랜드의 농촌로동자는 아일랜드의 농촌로동자가 받는 우유량의 불과 $\frac{1}{4}$, 빵량의 불과 $\frac{1}{2}$밖에 받지 못한다. 아일랜드로동자의 영양상태가 더 좋다는데 대하여는 이미 A. 영이 19세기초에 그의 《아일랜드려행기》에서 지적하였다. 리유는 간단하다. 즉 아일랜드의 빈한한 차지농업가도 잉글랜드의 부유한 차지농업가보다 비할바없이 인도적이라는것이다. 웨일즈에 관하여 말한다면 본문에서 인용한 자료는 그 서남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 지방의 모든 의사들은 결핵과 연주창 등등으로 인한 사망률의 심한 증가가 주민의 건강상태의 악화와 관련이 있다는것을 일치하게

(단위: 그레인)

	탄소	질소
잉글랜드	40,673	1,594
웨 일 즈	48,354	2,031
스코틀랜드	48,980	2,348
아일랜드	43,366	2,434

인정하고있으며 또 이 악화는 빈궁때문이라고 모두 말하고있다. 그곳에서는 농촌로동자의 하루생활비는 5펜스로 규정되여있다. 그런데 많은 지방들에서 차지농업가 (그자신이 매우 빈곤한) 는 그보다도 적게 지불한다. 말라빠져서 마호가니같이 굳어졌으며 또 소화시키느라 고생할 필요가 거의 없는 염장한 한쪼각의 고기거나 또는 한점의 지방온 보리가루와 파를 넣어 끓인 량만 많은 국 또는 귀밀가루죽의 양념으로 된다. 그리하여 이런것이 농촌로동자의 그날그날의 점심의 전부이다.…공업의 진전은 여기에서와 같이 기후가 엄혹하고 습기찬 조건하에서 집에서 짠 질긴 라사천이 값싼 면제품에 의하여 밀려났으며 또 진한 음료가 〈이틈만인〉 차에 의하여 밀려나는 결과를 농촌로동자들에게 가져왔다.…농민은 여러 시간 비바람을 맞으며 일을 한후에 오두막으로 돌아와서 토탄불이나 또는 진흙과 석탄가루로 만들었기때문에 때면 탄산가스와 류산가스의 연기가 나는 련탄불을 쪼인다. 오두막의 벽은 진흙과 돌이고 바닥은 오두막을 짓기전 그대로의 땅바닥이며 지붕은 조금도 엮지 않은 흩어진 짚뭉텅이이다. 온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틈새란 틈새는 다 막았으며 그리하여 무서운 악취속에서, 진흙땅바닥우에서, 때로는 한벌밖에 없는 젖은 옷을 입은채로 말리면서 그는 처자들과 저녁을 먹는다. 이러한 오두막에서 밤한때를 지내지 않을수 없었던 산과의사가 쓴것을 보면 그들의 발은 땅바닥의 진흙에 파묻혀있었으며 또 그들은 조금이라도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하여 벽에 구멍을 (어렵지 않은 일이다!) 뚫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수많은 각 계층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먹는것이 부족한 농민들은 밤마다 이러저러한, 건강에 유해로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그 결과 허약한 선병질의 주민이 된다는것을 립증하기에 부족을 느끼지 않을것이다.…카마덴셔와 카디간셔의 교구관리들의 보고도 이러한 상태를 확증하고있다. 설상가상으로 백치병의 류행이라는 더 큰 재난이 첨가된다. 그러면 기후조건에 대하여 몇마디 말하려 한다. 년중 8~9개월간 강한 서남풍이 웨일즈전체를 휩쓸며 그에 동반하여 폭우가 내리는데 이것은 특히 구릉지대의 서쪽 경사면에 쏟아진다. 수목은 엄호물이 있는 장소들에서만 드문드문 볼수 있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수목이 바람으로 흔적도 없이 날아가고 만다. 오두막들은 산기슭에 있으며 종종 골짜기나 돌을 캐낸 곳에 있다. 이 목장들에 살수 있는것은 다만 아주 작은 양들과 재래종의 소들뿐이다.…젊은이들은 글라모간과 만모스의 동부 광산지방으로 간다.…카마덴셔는 광부의 양성소이며 또 그들의 폐인수용소이다.…인구는 겨우 원상을 유지하고있다. 례컨대 카디간셔에서는 다음과 같다.

	1851년	1861년
남성	45,155	44,446
녀성	52,459	52,955
	97,614	97,401》

(《공중위생. 제7차보고. 1864년》, 1865년 런던판, 498~502페지 이곳저곳에 있는 한터의사의 보고)

싸이먼의사는 자기의 공식적위생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한터의사의 보고의 매 페지는 우리 농촌로동자의 주택이 량적으로 부족하며 질적으로 나쁘다는것을 립증하고있다. 다년간 주택상태는 이 점에서 부단히 악화되여왔다. 농촌로동자가 거처를 발견한다는것은 아마도 과거 수세기동안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더 어렵고 또 발견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의 요구와는 엄청나게 거리가 먼것일것이다. 특히 이 재액은 최근 20년 또는 30년간에 급격히 늘고있으며 농촌주민들의 주택사정은 극도로 처참하다. 만약 이들의 로동에 의하여 부유하게 되는자들이 일종의 동정적인 관대성을 가지고 이들을 대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 점에서 농촌주민은 전혀 어찌할 방법이 없다. 농촌로동자가 자신이 경작하는 토지에서 거처할 곳을 찾아내느냐, 또 그것이 인간의 주택일것이냐 또는 돼지우리일것이냐, 또 그곳에 빈곤의 압박을 경감할만한 조그마한 채마전이 붙어있느냐 하는 이 모든것은 그가 해당한 집세를 물 의도 또는 능력에 달린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달려있다. 차지농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거기에 로동자를 위한 일정한 수의 주택이ㅡ사람 살만한 주택은 고사하고ㅡ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법률은 하나도 없다. 법률은 또한 로동자의 로동이 토지에 대해서는 비물이나 해별과 다름없이 필요하지만 토지에 대한 하등의 권리도 그에게 주지 않고있다.…또 하나의 주지의 사정이 로동자의 재난을 더하여준다.…이것은 거주와 빈민구제세부담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하고있는 빈민구제법의 영향이다.(162) 이 법률의 영향으로 각 교구는 금전상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 교구내에 거주하는 농촌로동자의 수를 최저한으로 제한한다. 왜냐 하면 불행하게도 농촌로동은 고역을 하는 로동자와 그의 가족에게 확실하고 영속적인 독립을 보장해주는것이 아니라 다만 우회로가 긴가 짧은가 하는 차이가 있을뿐 대부분은 구제를 받아야 할 극빈의 길이며 이 극빈은 로동자가 병이 나거

(162) 1865년에 이 법률은 약간 개선되였다. 그러나 그러한 미봉책이 아무 도움도 되지 않으리라는것은 얼마 안가 경험이 보여줄것이다.

나 일시 실업하기나 하면 당장 교구의 구제에 의뢰하지 않을수 없을만큼 언제나 가까이 다가오고있으며 따라서 어떤 교구에 농업인구가 정착하면 분명히 그 교구의 빈민구제세가 그만큼 증가하기때문이다.…대지주들(163)은 자기들의 령지에 로동자주택을 세우지 못한다고 결정하기만 하면 당장 빈민들에 대한 그들의 부담이 절반은 면제된다. 〈자기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지주에게 토지경작자들을 외국인과 같이 취급하여 그들을 자기의 령지에서 추방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러한 무조건적토지소유권을 영국의 헌법과 법률이 얼마나 기도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나의 의논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이 추방권은 단순한 리론이 아니다. 그것은 실지 극히 큰 규모로 행사되고있다. 이것이 농촌로동자의 거주조건에 결정적영향을 주고있는 사정의 하나이다.…재액의 규모는 최근의 인구조사에서 판단할수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가옥에 대한 지방적수요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가옥의 파괴가 잉글랜드의 821개의 지방들에서 진행되였다. 그리하여 부득이 비거주자 (즉 자기가 일하는 교구의) 로 된 사람들을 도외시하더라도 1861년에는 1851년에 비하여 $5\frac{1}{3}$%나 많은 인구가 $4\frac{1}{2}$%나 감소된 가옥으로 밀려들게 되였다.…인구감소과정이 종말에 이르면 그 결과는 한 터의사의 말에 의하면 구경거리촌락이 생기며 여기에서는 오두막집이 감소되여 조금밖에 남지 않으며 거기에 살기를 허가받고있는 사람이라고는 목양인, 정원사, 수렵장지기와 같은 그 신분에 상응한 좋은 대우를 인정있는 주인에게서 받는 고정적인 하인들외에는 아무도 없다.(164) 그러나 토지는 경작하여야 하므로 이에 고용되는 로동자들은

(163) 아래에서 론하는것을 리해하기 위하여 부언해둔다. close villages(폐쇄촌락)란 한명 또는 몇명의 대지주가 그 토지소유자로 되고있는 촌락을 말하고 open villages(개방촌락)란 그 토지가 다수의 소유자들에게 속하고있는 촌락을 말한다. 건축투기업자들이 오두막집과 하숙집들을 세울수 있는 곳은 바로 후자이다.

(164) 그러한 구경거리촌락이 보기에는 매우 훌륭한듯하나 예까쩨리나2세가 크림려행시에 본 촌락과 같이 가짜이다. 최근에는 목양인들도 이 구경거리촌락에서 빈번히 추방당한다. 례컨대 하보로시장부근에는 거의 500에이커나 되는 양목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요구되는것은 단 하나의 남성로력이다. 레스터와 노셈프톤의 아름다운 목장인 이 광막한 평야를 횡단하는 긴 보행을 감소하기 위하여 목양인에게 농장내의 오두막을 제공하는것이 상례로 되여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는 숙소비로 주 13실링을 받고 어디든 떨어진 개방촌락에서 숙소를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주의 주택임차인이 아니라 아마도 3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는 개방촌락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이라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즉 폐쇄촌락에서 그들의 오두막이 파괴된후에 이 개방촌락에서 다수의 소가옥소유자들이 그들을 받아들인것이다. 사태가 이러한 결과를 향하여 나가고있는 곳에서는 오두막은 대부분 그 처참한 모습에 의하여 피하지 못할 자체의 운명을 보여주고있다. 이 오두막들은 각이한 자연적붕괴단계에 있다. 지붕이 붙어있는 동안은 로동자는 임차하는것이 허용되는데 그는 그렇게 허용되기만 하면 비록 좋은 주택과 같은 집세를 지불하지 않을수 없더라도 흔히 대단히 기뻐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 돈 한푼 없는 거주자자신이 할수 있는 수리외에는 어떠한 수리도 개량도 없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 집이 전혀 거주할수 없게 될 때에는 이것은 한채의 오두막이 더 파괴되였을뿐이며 그만큼 앞으로의 빈민구제세는 적어질것이라는것을 의미할뿐이다. 이와 같이 대지주들이 그 통제하에 있는 토지에서 주민을 구축함으로써 빈민구제세를 모면할 때 린접한 농촌도시들이나 개방촌락들이 추방된 로동자들을 받아들인다. 린접이라고 내가 말하더라도 이 〈린접〉이란 로동자가 매일 고된 일을 하여야 하는 농장으로부터는 3~4마일이나 떨어져있는 곳이다. 이와 같이 그의 하루의 로동에는, 그날그날의 빵을 벌기 위하여 매일 6 내지 8마일의 보행을 할 필요가 마치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첨가된다. 그들의 처자가 하는 모든 농업로동도 이제는 그와 동일한 곤난한 조건하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거처가 멀어진데서 오는 재액은 이것이 전부인것은 아니다. 개방촌락들에서는 건축투기업자들이 땅쪼각을 사들이여 거기에다가 세상에서 다시는 볼수 없는 가장 초라한 오두막을 될수 있는대로 빈틈없이 세운다. 그리하여 이러한 처참한 가옥들은 비록 광활한 전야에 련이어 있다 할지라도 역시 가장 나쁜 도시주택이 가지고있는 가장 혐상스러운 특징들을 가지고있는데 잉글랜드의 농업로동자들은 바로 그러한 가옥들에 살고있다.(165)…다른 한편 자기가 경작하고있는 토지에서 살고있는

---

(165) 《로동자들의 집 (물론 언제나 사람들로 넘쳐나는 개방촌락의) 은 보통 건축투기업자가 자기의것이라고 칭하는 한쪼각 땅의 맨 끝쪽에 줍지어 빼곡이 세운다. 그러므로 광선과 공기는 정면으로부터밖에 들어올 길이 없다.》 (한터의사의 보고. 《공중위생. 제7차보고. 1864년》, 135페지에 게재) 촌락의 맥주집주인이나 소매상이 동시에 세집주인인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런 경우에 그들은 농촌로동자들에게는 차지농업가에 다음

로동자도 생산적근로의 생활에 합당한 주택을 그곳에서 얻고있다고 결코 생각해서는 안된다. 심지어 제일 훌륭한 농장에서도 로동자들의 오두막은 극히 처참하다. 지주들중에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로동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외양간도 과분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러한 집을 준데 대해서는 될수 있는대로 많은 돈을 짜내는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자들이 있다.(166) 그것이 침실 하나밖에 없으며 로도 없고 변소도 없으며 여는 창문도 없고 물도랑외에는 급수설비도 없으며 또 뜨락도 없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일지라도 이러한 학대에 대하여 로동자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것이다. 그러니 우리 위생경찰법들은 지상공문에 불과하다. 이 법률의 실시는 바로 그러한 움집들을 세놓고있는 집소유자 자신들에게 위임되고있다.…오직 례외적으로만 볼수 있는 좀 찬란한 광경에 현혹되여 영국문명의 오점으로 되여있는 대량적인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된다. 현재의 거주형편이 명백히 참혹함에도 불구하고 권위있는

가는 제2의 주인이다. 로동자는 동시에 그들의 고객이 되여야 한다. 《그는 주 10실링을 받으며 집세로 년 4파운드를 공제하고 얼마 안되는 차, 설탕, 밀가루, 비누, 양초 및 맥주를 소매상이 마음대로 정하는 가격으로 사야 할 의무가 있다.》(한터의사의 보고. 《공중위생. 제7차보고. 1864년》, 132페지) 이 개방촌락들은 사실상 잉글랜드의 농업무산계급의 《류형지》이다. 많은 오두막들은 순전한 하숙집이며 거기에는 부근의 모든 부랑자들이 출입한다. 극히 불결한 조건하에서도 왕왕 참으로 경탄할만큼 결백하고 순결한 품성을 유지해온 농민과 그 가족도 여기에서는 아주 타락하고만다. 물론 상류층의 샤일로크들사이에서는 건축투기업자, 소지주 및 개방촌락에 대하여 위선적으로 눈살을 찌프리는것이 류행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폐쇄촌락과 구경거리촌락》이 《개방촌락》의 발생지이며 또 후자가 없이는 전자가 존재할수 없다는것을 아주 잘 알고있다. 《개방촌락의 소지주들이 아니라면 태부분의 농촌로동자들은 그들이 일하고있는 농장의 나무아래서라도 자지 않을수 없을것이다.》(우와 같은 보고, 135페지) 《개방촌락》과 《폐쇄촌락》 제도는 잉글랜드의 중부전체와 동부전체에서 성행하고있다.

(166) 《세집주인 (차지농업가 또는 지주) 은 그가 주에 10실링씩 지불하는 사람의 로동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치부하고 또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년 4~5파운드를 집세로 탈취한다. 그런데 그 집이란 공개시장에서는 20파운드의 값도 안가는것이지만 〈내집에 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나가라. 나의 로동증명서 없이 어디 다른 거처를 찾아보아라…〉 고 할수 있는 지주의 권력에 의해서만 그 인위적가격을 유지할수 있는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형편을 개선해보려고 철도의 선로로동자가 되거나 채석장으로 가려고 하면 동일한 권력이 당장 이렇게 말한다. 〈이 낮은 임금으로 나를 위하여 일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1주일전에 예고를 하고 나가라, 네게 돼지가 있다면 가지고가라. 그리고 네 채마전의 감자가 얼마에 팔리는가 어디 보자.〉 그러나 그를 내좇지 않는편이 지주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그런 경우에는 지주 (또는 차지농업가) 는 자기에게서 떠나려고 한 징벌로서 집세를 올리는 수단을 택하는 일이 종종 있다.》(우와 같은 보고, 132페지)

관찰자들이 전반적으로 나쁜 주택상태도 그것들의 순전한 수적부족에 비하면 아직 아주 경한 재난이라는 결론에 일치하게 도달하고있는것은 참으로 무서운 사태가 아닐수 없다. 여러해전부터 농촌로동자주택들이 지나치게 비좁은것은 보건에 관하여 걱정하는 사람들뿐만아니라 일반적으로 례절있고 도덕적인 생활을 존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우려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왜냐 하면 농촌지방들에 전염병이 만연하고있는데 관한 보고의 작성자들은 아주 한결같이 판에 박은듯한 표현으로 가옥들이 비좁게 들어선것이 이미 발생한 전염병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전혀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원인이라고 루차 지적하고있기때문이다. 농촌생활이 많은 점에서 건강에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의 만연을 그렇게 심히 촉진하는 주민의 밀집상태가 전염하지 않는 병들의 발생도 조장한다는 사정 역시 루차 지적하고있다. 또 이러한 상태를 비난한 사람들은 기타의 재액에 대해서도입을 다물지 않았다. 그들의 원래의 임무가 보건에만 국한되여있는 경우에도 그들은 흔히 문제의 다른 측면에도 관여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들의 보고는 기혼과 미혼의 남녀성인들이 비좁은 침실에서 뒤섞이여 자는 수가 얼마나 빈번한가에 대하여 지적함으로써 상술한바와 같은 사정에서는 수치와 례절이라는 감정은 가장 횡포하게 유린당하며 또 모든 도덕은 거의 불가피하게 파괴당한다는것을 확신시키지 않을수 없었다.(167)…례컨대 나의 최근보고의 부록중에 있는, 윙(버킹감셔)에서의 열병의 발생에 관한 보고에서 오드의사는 어떻게 한 청년이 윙그레이브로부터 열병을 끌고 윙으로 왔는가에 대하여 말하고있다. 발병의 첫 수일간 그는 9명의 다른 사람들과 한방에서 잤다. 두주일이 지나는 동안에 그들중 몇사람이 전염되였으며 수주일내에 9명중 5명이 열병을 앓고 한명은

---

(167) 《신혼부부는 한방에서 같이 자는 성숙한 형제자매들에게 유익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실례들을 쓸수는 없으나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부인이 큰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죽기까지 한다는 주장을 인정할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있다.》(한터의사의 보고. 《공중위생. 제7차보고. 1864년》, 137페지에 게재) 런던의 최불량구역들에서 다년간 밀정노릇을 한 한 농촌경찰이 자기 촌락의 처녀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나이 젊은 그들의 흑심한 패덕, 방탕 그리고 파렴치에 비할만한것을 나는 나의 전경찰생활기간에 런던의 가장 불량한 구역들에서도 볼수 없었다.…그들은 돼지같이 살고있다. 장성한 아들과 딸들,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한방에서 같이 잔다.》(《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6차보고》, 1867년 런던판, 부록, 77페지, 제155호)

죽었다! 전염병이 돌고있을 때 왕진하기 위하여 윙을 방문한 센트 조지병원 허비의사도 동시에 다음과 같은 동일한 취지의 정형을 나에게 보고해왔다. 〈열병에 걸린 한 젊은 녀인이 밤이 되면 한방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기의 사생아와 자기의 형제들인 두 청년들과 사생아를 하나씩 가진 자기의 두 자매와 도합 10명이 같이 잤다. 수주일전에는 같은 방에서 13명의 아이들이 잤다.》(168)

한터의사는 순 농업지방들에서뿐만아니라 잉글랜드의 전체 군들에서 농촌로동자의 오두막 5,375채를 조사하였다. 이 오두막 5,375채중 2,195채는 침실(흔히 동시에 거실로도 된다.)이 하나밖에 없었다. 2,930채는 침실이 두개씩이고 250채는 침실이 둘이상이였다. 나는 여기에서 12개 군에 대하여 간단히 요점을 말하려 한다.

1. 벳포드셔

레슬링워스: 침실은 길이가 약 12푸트이고 폭이 10푸트인데 이보다 작은것도 많다. 단층집이 종종 판자로써 두개 침실로 나뉘여져있으며 높이 5푸트 6인치의 부엌에 종종 한개의 침대가 놓여있다. 집세는 3파운드. 가옥임차인은 자기로 변소를 지어야 하며 집주인은 웅덩이를 제공할뿐. 한사람이 변소를 지으면 이웃사람들이 모두 리용하는 일이 종종 있다. 리쳐손이란 일가가 거주하는 집은 대단히 훌륭하였다. 그 집의 양회벽은 무릎을 끓고 절을 할 때의 부인복처럼 부풀어 올라있었다. 지붕 한쪽은 불쑥 나오고 다른쪽은 오무라졌으며 그쪽으로는 불행히도 진흙과 나무로 만든, 코끼리 코와 같이 구부러진 굴뚝이 서있었다. 굴뚝이 쓰러지지 않도록 긴 막대기를 받치고있었다. 문과 창은 릉형으로 되여있었다. 방문한 17채의 가옥중에서 하나이상의 침실이 있는 집은 불과

(168) 《공중위생. 제7차보고. 1864년》, 9~14페지의 이곳저곳을 보라.

4채인데 이 4채는 모두 사람들로 붐비고있었다. 침실이 하나밖에 없는 한집에서는 어른 3명, 아이 3명이 살고있었고 또 어떤 집에서는 두 내외와 아이 6명이 살고있었다, 등등.

던톤: 4 내지 5파운드의 높은 집세, 남성들의 주임금은 10실링. 그들은 가족들이 종사하는 밀집세공업에서의 수입으로써 집세를 벌려 하고있다. 집세가 비싸면 비쌀수록 집세를 물기 위하여 같이 일해야 할 사람들의 수는 보다 더 많아진다. 한 침실에서 4명의 아이와 함께 자는 6명의 어른들이 방세로 3파운드 10실링을 지불하고있다. 던톤에서는 외면이 길이 15푸트, 폭 10푸트의 집이 제일 싼데 그 세는 3파운드이다. 조사한 가옥 14채중에서 침실이 두개 있는것은 한집뿐이였다. 부락앞에 약간 떨어져 한채의 가옥이 있는데 거주자는 집바깥벽앞을 변소로 하고있으며 문짝의 아래 9인치는 썩어 없어졌다. 밤에 문을 닫을 때에는 안쪽에서 솜씨있게 몇장의 벽돌을 내밀어서 막고 거적을 친다. 창문의 반쪽은 유리도 창틀도 없다. 여기에 3명의 어른과 5명의 아이가 가구도 없이 비좁게 살고있었다. 던톤은 비글즈웨이드 련합교구의 다른 구역들보다 더 나쁘지는 않다.

2. 박셔

비남: 1864년 6월 한 오두막에 두 내외와 아이 4명이 살고있었다. 딸이 성홍열에 걸려 일자리에서 돌아왔다. 그 딸은 죽었다. 아이 하나가 앓아 또 죽었다. 한터의사가 갔을 때 어머니와 다른 아이가 티브스를 앓고있었다. 아버지와 한 아이는 집밖에서 자고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격리를 보장한다는것이 얼마나 곤난한가 하는것을 알았다. 왜냐 하면 불행한 이 마을의 장마당에는 립추의 여지 없이 사람이 빽빽이 들어찼는데 거기에는 환자가 있는 집의 빨래감들이 세탁하지 않은채 놓여있

었기때문이다. H의 집의 집세는 주 1실링이였는데 두 내외와 6명의 아이가 사용할 침실은 하나였다. 한집은 길이 14푸트 6인치, 폭 7푸트인데 세는 8펜스(주에)였다. 부엌은 높이 6푸트, 침실에는 창문도 로도 없으며 복도로 통하는외에는 문이나 통구도 없고 뜰도 없다. 얼마전에 여기에 한사람이 장성한 딸들과 성장기에 있는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다. 아버지와 아들은 한침대에서 자고 딸들은 복도에서 잤다. 그 가족이 여기서 살고있는 동안에 딸들은 각각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한 딸은 빈민구제원으로 나가서 몸을 풀고 돌아왔다.

3. 버킹감셔

1,000에이커의 토지우에 있는 30채의 오두막에서 약 130~140명이 살고있다. 브래드남교구는 1,000에이커인데 1851년에는 여기에 가옥이 36채, 주민이 남성 84명, 녀성 54명이 있었다. 남녀의 수의 이 불균등은 1861년에는 완화되여 남성 98명, 녀성 87명이였다. 10년간에 남성 14명과 녀성 33명이 늘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가옥수는 한채 줄었다.

윈즐로: 그 대부분은 모양좋게 신축되였다. 보매 가옥에 대한 수요는 큰 모양이다. 왜냐 하면 극히 빈약한 오두막의 세가 주 1실링 내지 1실링 3펜스이기때문이다.

워터-이튼: 여기에서는 지주들이 인구의 증가를 알아차리고 기존가옥의 약 20%를 헐어버렸다. 한 가난한 로동자는 약 4마일이나 되는 작업장에 다니지 않으면 안되였는데, 근방에 오두막을 얻을수 없었느냐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 그들은 나와 같이 가족이 많은 사람을 들이는것을 대단히 경계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윈즐로부근의 팅커즈엔드: 한 침실은 길이 11푸트, 폭 9푸트, 가장 높은데가 6푸트 5인치인데 4명의 어른과 5명의 아이

가 산다. 또 하나의 침실은 길이 11푸트 7인치, 폭 9푸트, 높이 5푸트 10인치인데 6명이 산다. 이 가족의 매인당 공간은 죄수 한사람에게 필요한 공간보다 작다. 어느 집이나 침실 하나밖에 없고 뒤문이 없고 물은 대단히 결핍하다. 집세는 주 1실링 4펜스 내지 2실링. 조사한 16가구중에서 주 10실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단 한명이였다. 상술한 거주조건에서 매인당 공기량은 그가 밤에 4립방푸트의 상자속에 갇혔을 때 그에게 제공되는 공기량과 같다. 그렇지만 낡은 오두막은 자연적통풍구가 있다.

4. 케임브리지셔

갬블링케이는 몇사람의 지주에게 속한다. 이곳은 아무데서나 볼수 있는 만신창이 된 오두막으로 이루어져있다. 많은 사람이 밀집세공업에 종사한다. 죽을듯한 피로상태, 불결에 대한 절망적굴복이 갬블링케이를 지배하고있다. 중심부에서도 눈에 뜨이는 방치현상은 가옥들이 점점 무너지고있는 남북부량단으로 가면 한심한 감을 준다. 부재지주들은 이 빈민굴에서 고혈을 마음대로 짜낸다. 집세도 대단히 비싸다. 침실 하나에 8~9명을 처넣는다. 작은 한 침실에 각각 아이 1~2명씩을 데리고있는 어른 6명이 살고있는 경우가 두개 있었다.

5. 에쎅스

이 군의 많은 교구들에서는 주민의 감소와 오두막의 감소가 병행되고있다. 그러나 22개이상의 교구들에서는 가옥의 파괴가 주민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하였으며 또는 《도시로의 이주》라는 명목하에 도처에서 진행되고있는 주민의 추방을 초래하지 않았다. 면적이 3,443에이커되는 핑그링호교구에는 1851년에 145채의 집이 있었는데 1861년에는 110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주민은 이사가려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주

택조건하에서도 인구가 계속 증가하였다. 램즈덴크레이즈교구에는 1851년에 가옥 61채에 252명이 살고있었으나 1861년에는 49채의 가옥에 262명이나 빼곡하게 들어있었다. 배질돈에서는 1851년에 1,827에이커의 땅우에 있는 35채의 집에 157명이 살고있었으며 10년후에는 27채의 집에서 180명이 살았다. 핑그링호, 사우스팸브리지, 윗포드, 배질돈 및 램즈덴크레이즈 교구들에서는 1851년에 8,449에이커의 땅우에 있는 316채의 집에 1,392명이 살고있었는데 1861년에는 같은 면적우에 있는 249채의 집에 1,473명이 살았다.

6. 히어포드셔

이 작은 군은 잉글랜드의 다른 어느 군보다 《추방정신》 때문에 고통을 더 받았다. 매들리에서는 보통 두개의 침실이 있는 사람이 가득찬 오두막들이 대부분 차지농업가들에게 속하고있다. 이들은 의례히 년 3 내지 4파운드의 집세를 받고있으면서 주임금은 9실링을 지불하고있다!

7. 헌팅돈셔

핫포드교구에서는 1851년에 가옥이 87채 있었는데 그후 얼마 안가서 1,720에이커의 이 작은 교구에서 19채의 오두막이 파괴되였다. 주민은 1831년에 452명, 1851년에 382명,1861년에 341명이였다. 각기 침실 하나씩 있는 14채의 오두막을 조사하였다. 그 한집에는 두 내외, 3명의 장성한 아들, 1명의 장성한 딸, 4명의 아이, 도합 10명이 살고있으며 다른 집에는 3명의 어른과 6명의 아이가 살고있다. 이러한 한방은 하나는 길이가 12푸트 10인치, 폭 12푸트 2인치, 높이 6푸트 9인치였는데 8명이 살고있었다. 방안의 돌출부분까지 계산에 넣어도 평균 매인당 약 130립방푸트였다. 14개의 침실에 34명의 어른과 33명의 아이가 살고있었다. 이 오

두막들에는 뜰이 붙어있는 곳은 드물었으나 많은 거주자들에게는 루드 ($\frac{1}{4}$에이커)당 10 내지 12실링으로 작은 땅뙈기를 빌리는것이 허용되고있었다. 이 분할지들은 가옥에서 멀리 떨어져있으며 가옥에는 변소가 없다. 식구들은 대변을 보러 자기의 분할지로 래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점잖지 못한 말이지만 여기에서 그렇게 하고있는바와 같이 장농서랍에 가득 채우든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 서랍이 차면 그것을 빼서 필요한 곳에 그안의것을 쏟아버린다. 일본에서도 생활조건의 순환은 이보다 정결하게 진행된다.

8. 링컨셔

랭토프트: 이곳 라이트의 집에는 어떤 남자가 그의 처와 장모와 5명의 아이와 함께 살고있다. 집에는 앞쪽으로 부엌과 설것이터가 있고 부엌우에 침실이 있다. 부엌과 침실은 길이 12푸트 2인치, 폭 9푸트 5인치이며 집 전체 면적은 길이 21푸트 3인치, 폭 9푸트 5인치이다. 침실은 다락방이다. 벽은 우로 갈수록 좁아져서 천정에 잇닿아있으며 들창 하나가 정면에 있다. 그는 무엇때문에 여기에서 살고있는가? 뜨락때문인가? 아니다. 뜨락은 너무나 좁다. 집세때문인가? 그것도 아니다. 집세는 비싸서 주에 1실링 3펜스이다. 작업장이 가깝기때문인가? 아니다. 6마일이나 떨어져있으므로 그는 매일 왕복 12마일을 걸어야 한다. 그가 여기에 살고있는것은 이 오두막이 세집이였기때문이며 또 그것이 어디에 있든, 세가 얼마되든, 좋든나쁘든간에 자기 혼자 쓰는 집을 구하려 하였기때문이다. 다음표는 랭토프트교구의 12개 침실, 38명의 어른 및 36명의 아이가 있는 12채의 가옥에 관한 통계자로이다.

랭토프트의 12개 가옥

가옥수	침실수	어른수	아이수	총인원수	가옥수	침실수	어른수	아이수	총인원수
1	1	3	5	8	1	1	3	3	6
1	1	4	3	7	1	1	3	2	5
1	1	4	4	8	1	1	2	0	2
1	1	5	4	9	1	1	2	3	5
1	1	2	2	4	1	1	3	3	6
1	1	5	3	8	1	1	2	4	6

9. 켄트

지프테리아가 발생하였고 또 교구의사가 빈민계급들의 형편에 관한 공식적인 위생조사를 실시한 1859년에는 켄닝톤의 인구는 극도로 과다하였다. 교구의사는 로동이 대량적으로 요구되는 이 지방에서 여러채의 오두막이 파괴되였고 새것은 한채도 세우지 않았다는것을 발견하였다. 한 구역에 새장이라고 불리우는 4채의 집이 있었는데 각각 다음과 같은 크기의 방이 4개 있었다.

부엌……9푸트 5인치×8푸트 11인치×6푸트 6인치
설것이터……8푸트 6인치×4푸트 6인치×6푸트 6인치
침실……8푸트 5인치×5푸트 10인치×6푸트 3인치
침실……8푸트 3인치×8푸트 4인치×6푸트 3인치

10. 노샘프톤셔

브릭스워스, 피쯔포드 및 플루어: 이 촌락들에서는 겨울에는 일자리가 없는 20~30명의 로동자들이 거리에서 방황한다. 차지농업가들은 곡물과 근채류를 재배하는 경지를 항상 충분히 경작하고있지 못한다. 또 지주는 차지로 내주고있는 토지를 두개나 세개로 통합하는것이 좋다는것을 알았다. 이때문에 일자리가 없게 되였다. 밭고랑 저편에서는 경작해

야 할 토지가 있는데 이편에서는 일자리를 잃은 로동자들이 갈망의 눈초리를 토지에 던지고있다. 여름에는 죽을 지경으로 과도한 로동을 하지만 겨울에는 절반 굶주려야 하였으므로 겨울에는 그들이 독특한 사투리로 《the parson and gentlefolks seem frit to death at them》 (168a)이라고 말하고 있는것은 조금도 기이한 일이 아니다.

플루어에서는 극히 작은 침실 하나에서 한쌍의 부부가 4명이나 5명 또는 6명의 아이를 데리고 살고있으며 또는 3명의 어른이 5명의 아이를 데리고 살고있으며 또는 한쌍의 부부가 조부와 성홍열에 걸린 6명의 아이와 같이 살고있는 등등의 폐들이 있다. 침실 2개가 있는 2채의 가옥에는 각각 어른들이 8명과 9명인 두 가족이 살고있다.

11. 윌트셔

스트래톤: 조사한 가옥은 31채인데 그중 8채는 침실이 하나뿐이다. 이 교구의 펜힐에서는 오두막 한채의 집세가 주 1실링 3펜스인데 거기에 4명의 어른과 4명의 아이가 살고있다. 그 집은 벽이 좋을따름이고 거칠게 다듬은 돌을 깐 바닥으로부터 썩은 밀짚지붕에 이르기까지 좋은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12. 우스터셔

가옥파괴는 여기에서는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1851년부터 1861년까지 가옥 1채당 거주인원수는 4.2명에서 4.6명으로 증가하였다.

뱃시: 여기에는 오두막과 채마밭이 많다. 일부 차지농업가들은 말하기를 오두막들은 《빈민들을 끌어오기때문에 몹

(168a) 《목사와 귀족들이 짜고들어 우리를 부려 죽이려는 모양이다.》

시 귀찮다.》라고 한다. 한 신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빈민들은 이로 하여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500채의 오두막을 지어도 빵이 없어지듯 금방 부족하게 될것이며 사실 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더 필요하게 된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집이 거주자들을 낳으며 그들이 자연법칙적으로 《주택》을 압박한다는것이다. 이에 대답하여 한터의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그러나 이 빈민들은 어데서인가 오는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뱃시에는 희사물과 같은 특별한 매력이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들을 이곳으로 내모는것은 그 어떤 불편한 곳으로부터의 배척력임에 틀림없다. 만약 각자가 일자리에 가까운 곳에 오두막과 땅뙈기를 발견할수 있다면 그는 그 손바닥만한 땅뙈기의 값으로 차지농업가가 자기의 차지에 대하여 지불하는것의 2배나 지불하는 뱃시를 선택하여오지는 않을것이다.》

도시에로의 부단한 이주, 차지농장의 집중과 농경지의 목장화 그리고 기계채용 등등에 의한 농촌에서의 부단한 《과잉》인구의 조성, 오두막의 파괴에 의한 농촌주민의 부단한 추방 등은 동시에 진행된다. 한 지역의 인구가 희소하면 희소할수록 그곳의 《상대적과잉인구》는 더 많아지며 이 과잉인구가 취업수단에 가하는 압력도 더 심하여지며 거주수단을 초과하는 농촌인구의 절대적과잉이 더 커지며, 따라서 촌락들에서의 지방적과잉인구와 전염병의 온상인 인구밀집은 더 심하여진다. 산재하는 작은 촌락들과 지방 소도시들에서 인구가 조밀해지는것은 농토로부터의 폭력적인간추방에 상응한다. 농촌로동자들의 생산물의 량은 증가하고 로동자의 수효는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단한 《과잉화》가 그들의 구제를 요하는 극빈상태의 요람으로 되고있다. 그들을 위협하는 극빈상태는 그들을 추방하는 원인으로 되며 그들의

주택난의 주되는 근원으로 되는데 이 주택난은 그들의 최종적반항력을 좌절시키며 그들을 지주(169)와 차지농업가의 순전한 노예로 만들며 그리하여 최저한의 임금이 그들에게는 자연법칙으로 되는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은 부단한 《상대적과잉인구》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인구가 부족하기도 하다. 이것은 인구가 도시와 광산과 철도부설 등등에로 너무 급속히 흘러나가는 그런 고장들에서 국부적현상으로 볼수 있을뿐만아니라 그것은 수확계절이나 봄철과 여름철 할것없이 매우 주도하고 집약적인 잉글랜드농업이 림시로동자를 요구하는 허다한 순간에 어디서나 볼수 있다. 농촌로동자는 농업의 평균적요구에 대하여서는 언제나 과다하며 례외적 또는 일시적요구에 대하여서는 언제나 과소하다.(170) 그러므로 공

(169) 《하인드①의 천부의 직업은 그의 지위에도 위엄을 부여한다. 그는 노예가 아니고 평화의 전사이니 지주는 마땅히 그에게 기혼자에 합당한 주택을 제공할만하다. 왜냐 하면 지주는 국가가 병사에게 요구하는것과 같은 그러한 강제로동을 그에게 요구하기때문이다. 그는 로동에 대하여 병사와 마찬가지로 시장가격을 받지 못한다. 그는 병사와 마찬가지로 년소하며 겨우 자기자신의 직업과 자기자신의 지방밖에 모르는 무식한 때에 붙잡힌다. 그에 대한 조혼과 각종 거주법들의 작용은 병사에 대한 징병 및 군법과 같다.》(한터의사의 보고, 《공중위생. 제7차보고. 1864년》에 게재, 132페지) 때로는 례외적으로 그 어떤 마음약한 지주가 제자신이 만들어낸 황폐에 대하여 애수의 정에 잠기는 일도 있다. 레스터백작은 사람들이 흡캄성의 락성을 축하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기의 령지에 홀로 있는것은 우울한 일이다. 내가 아무리 돌아보아도 내 집외에는 집 하나 보이지 않는다. 나는 거성의 거인이며 나의 이웃사람들을 모두 잡아먹었다.》

(170) 최근 수십년동안에 프랑스에서도 자본주의적생산이 농업을 정복하고 농촌《과잉》인구를 도시에로 구축함에 따라 그와 류사한 현상을 볼수 있다. 여기에서도 역시 《과잉인구》 형성의 근원지에서 주택 기타 조건들의 악화를 보게 된다. 분할지제도가 낳은 독특한 《농촌무산계급》에 관하여는 무엇보다도 전에 인용한 플랭의 《정치경제학》②과 칼 맑스의 《루이 보나빠르트 브류메르 18일》(1869년 함부르그 제2판, 88페지 및 그 뒤 몇페지[452])을 보라. 1846년에 프랑스의 도시인구는 24.42%, 농촌인구는 75.58%였는데 1861년에는 도시인구가 28.86%, 농촌인구가 71.14%였다. 최근 5년간 농촌인구의 백분률의 감소는 더욱 현저하다. 이미 1846년에 뻐애르 뒤뽕은 그의 《로동자의 노래》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① 이 책 781페지를 보라. 一편집자
② 이 책 709페지를 보라. 一편집자

식문건들에는 동일한 지방에서 동시에 로동부족과 로동과잉에 대한 모순되는 하소연이 기록되는것이다. 림시적 또는 국부적 로동부족은 결코 로임인상을 가져오는것이 아니라 다만 녀성들과 아동들을 전간로동에로 내몰며 로동자들의 년령을 부단히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녀성과 아동에 대한 착취가 큰 규모에 달하면 그것은 이번에는 성인남성의 농촌로동자들을 과잉로동자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수단으로 되며 그들의 임금인하의 새로운 수단으로 된다. 잉글랜드의 동부에는 이러한 악순환의 훌륭한 열매인 소위 작업대제도①가 성행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나는 여기에서 몇마디 말하려 한다.(171)

작업대제도는 거의 전적으로 링컨셔, 헌팅돈셔, 케임브리지셔, 노포크, 서포크 및 노팅감셔에서만 실시되고있으며 린접군들인 노샘프톤, 벳포트 및 러틀란드에서는 개별적으로 실시되고있다. 실례로서 링컨셔를 들어보자. 이 군의 상당한 부분은 종전의 소택지였던 새 토지거나 우에서 렬거한 기타 동부군들과 마찬가지로 바다로부터 전취한 새 토지이다. 증기기관은 배수작업에서 기적을 낳았다. 종전에 소택지나 모래땅이였던 곳이 지금은 풍요한 곡창으로 되였으며 거기에서 가장 높은 지대를 받는다. 례컨대 액스홈섬과 트렌트강변의 기타 교구들에서와 같이 인공적으로 개척한 충적층의 토지에 관하여서도 그와 같은것을 말할수 있다. 새로운 차지농장들

《람루한 옷을 걸치고 우리는 산다.
움속에서, 다락방에서, 쓰레기속에서,
부엉이와 도적들과 함께,
어둠을 벗삼아.》

(171) 1867년 3월말에 발표된 아동로동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인 제6차보고는 농업의 작업대제도만을 취급하고있다.

---

① 이 책 459페지를 보라. 一편집자

이 생김에 따라 새 오두막들을 세우기는커녕 낡은 오두막들을 철거하였으며 로동의 공급은 구릉을 따라 구불구불 뻗어있는 큰길가에 산재하는 수마일이나 떨어져있는 개방촌락으로부터 온다. 주민들은 종전에는 오직 지속되는 동기홍수를 피하기 위하여 이 개방촌에 와서 거주하였던것이다. 400~1,000에이커의 차지농장들에 정주하는 로동자들(그들을 여기에서는 정주로동자라고 부른다.)은 말을 리용하여 하는 일상적인 고된 농업로동에 전적으로 종사한다. 매 100에이커(1에이커=40.49아르 또는 1.584프로이센 모르겐)에 평균 한채의 오두막이 해당될가말가 하다. 레컨대 종전의 소택지를 빌리고있는 어떤 차지농업가는 아동로동조사위원회앞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있다.

《나의 차지는 320에이커이상인데 전부 경작지이다. 거기에는 오두막이 없다. 지금 나의 농장에는 한명의 로동자가 살고있을뿐이다. 말부리는 4명의 로동자는 근방에 살고있다. 일손이 많이 드는 쉬운 일은 작업대에게 시키고있다.》(172)

토지는 레컨대 제초작업, 북주기작업, 시비작업, 돌치기작업 등등과 같은 헐한 전간작업을 많이 요구한다. 그것은 개방촌락에 살고있는 작업대 즉 조직된 집단에 의하여 실시된다.

작업대는 10명 내지 40명 또는 50명의 녀성들과 남녀미성년들(13~18세)—소년들은 13세에 달하면 대개는 작업대에서 제외되지만—과 남녀아동들(6~13세)로 구성된다. 우두머리는 작업대 대장인데 그는 언제나 보통농촌로동자로서 대개는 소위 부랑배 즉 방탕하며 란폭한 주정군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기업심과 수완을 가지고있는 자들이다. 그가 작업대를 모집하는데 이 작업대는 차지농업가에게가 아니라 그에

(172)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6차보고》, 증언, 37페지, 제173호.

게 매여서 일한다. 그는 차지농업가와 대개는 도급으로 계약하며 그의 수입은 평균하여 보통농촌로동자들의 수입보다 그다지 많지 않다.(173) 그의 수입은 전적으로 자기의 작업대로부터 최단시간내에 될수 있는대로 많은 로동을 짜낼수 있는 수완여하에 달린다. 차지농업가들은 녀성들이 남성의 독재하에서만 일을 잘한다는것, 그러나 녀성과 아동은 한번 일을 하면—푸리에가 이미 알고있은것처럼—참으로 맹렬히 자기의 생명력을 지출하는데 성년남성로동자는 교활하여 될수 있는 대로 힘을 아끼려 한다는것을 발견하였다. 작업대 대장은 그의 작업대를 한 농장에서 다른 농장으로 끌고다니면서 1년에 6~8개월 일을 시킨다. 그러므로 로동자가족으로서는 아동들에게 드문드문 일을 맡길따름인 개별적차지농업가에게보다는 작업대 대장에게 붙어서 일하는것이 훨씬 유리하고 또 믿음직하다. 이런 사정으로 해서 개방촌락들에서 그의 영향력이 공고한것으로 되는데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대체로 아동들을 고용할수 없을 정도이다. 아동들을 작업대에서 떼여서 개별적으로 빌려주는것이 그의 부업으로 되고있다.

이 제도의 《암흑면》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과로한 로동, 매일 5~6마일 때로는 7마일이나 떨어진 농장으로 래왕하는 엄청난 보행, 그리고 《작업대》의 풍기문란이다. 작업대 대장—일부 지방에서는 《몰이군》이라고 부르고있다.—은 긴 몽둥이를 가지고 다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것은 극히 드물며 가혹한 취급을 하였다는 불평은 거의 없다. 그는 민주주의적 황제이며 또는 하멜른의 쥐잡이군과 비슷하다. 따라서 그는 자기의 신민들간에서 인기가 있어야 하며 그리하여 그의 비

---

(173) 그렇지만 일부 작업대 대장들은 500에이커나 되는 토지를 빌려주는 차지농업가나 많은 가옥의 소유자로 된다.

호하에서 매력있는 집시기풍으로써 그들을 자기에게 끌어당긴다. 란폭한 방종, 유쾌한 장난, 철면피하기 짝이 없는 파렴치가 작업대를 지배한다. 작업대 대장은 보통 선술집에서 술값을 치른 다음에 좌우에서 름름한 두 녀자의 부축을 받아가며 자기대원들의 앞장을 서서 물론 비틀거리면서 집에 돌아간다. 아동들과 청소년들은 뒤에서 떠들썩거리며 조롱하는 노래와 음탕한 노래를 불러댄다. 돌아가는 도중에서 푸리에가 《공개적성교》[453]라고 부르는것이 례사로 벌어진다. 13~14세의 소녀들이 동년배의 사내아이들에 의하여 아이를 배는 일이 빈번하다. 작업대의 보충지인 개방촌락은 소돔과 고모라(174)[454]로 되며 왕국의 나머지 지방의 2배나 되는 사생아를 낳고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은 소녀들이 결혼한 부인으로 되였을 때 도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서는 이미 우에서 지적한바 있다①. 그들의 아이는 아편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 한 작업대의 천생적인 신병으로 된다.

바로 상술한 전형적형태의 작업대는 공공적, 공동적 또는 류동적 작업대라고 한다. 그외에 사적작업대도 있다. 그 구성은 공동적작업대와 같으나 인원수가 보다 적고 또 작업대 대장 지휘하에서 일하는것이 아니라 차지농업가가 더 나은 용도를 찾지 못하는 늙은 머슴군 밑에서 일한다. 여기에서는 집시기풍은 없으나 모든 증언에 의하면 아동에 대한 보수와 취급이 더 나쁘다.

작업대제도는 최근년간에 부단히 확대되고있는데(175) 그

---

(174) 《럿포드의 소녀들이 절반은 작업대에 의하여 망쳤다.》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6차보고》, 부록, 6페지, 제32호)

(175) 《이 제도는 최근년간에 대단히 보급되였다. 일부 지방들에서는 방금 실시되였을뿐이고 오래전부터 실시되고있는 다른 지방들에서는 작업대에 많은 아동들이 끌려

① 이 책 459페지를 보라. 一편집자

것은 물론 작업대 대장의 리익을 위하여 존재하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대차지농업가들(176) 또는 지주들(177)의 치부를 위하여 존재한다. 차지농업가들로서는 그의 로동자인원수를 훨씬 정상적수준이하로 유지하며 그러면서도 모든 림시적작업을 위하여 언제나 림시적일손을 준비하여두며 될수 있는대로 적은 돈으로 될수 있는대로 많은 로동을 짜내며(178) 그리하여 성년남성로동자들을 《과잉한것》으로 만드는 방법보다 더 묘한 방법은 없다. 한편으로는 많든적든간에 농촌사람들의 실업이 인정되고있는데 다른편으로는 남성로동의 부족과 그들의 도시에로의 이동때문에 작업대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되고있는 리유는 이상의 설명에서 리해할수 있을것이다.(179) 링컨셔 등지의 잡초없는 밭과 인간잡초—여기에 자

들어가고있으며 또한 그들의 년령은 점점 낮아지고있다.》(《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6차보고》, 79페지, 제174호)

(176)《소차지농업가들은 작업대로동을 사용하지 않는다.》《그것은 나쁜 토지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에이커당 2파운드 내지 2파운드 10실링의 지대를 얻는 토지에서 사용된다.》(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6차보고》, 17페지 및 14페지)

(177) 이러한 지주의 한사람은 그의 지대가 마음에 흡족한 나머지 조사위원회앞에서 분연히 설명하기를 모든 비난은 제도의 명칭때문에 생기는것이라고 하였다. 《작업대》라고 부르지 말고 《소년공농자조협회》라고 부르면 만사는 다 잘될것이다.

(178)《작업대로동은 다른 어떠한 로동보다도 싸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것이 사용된다.》라고 이전 작업대 대장이였던 한사람은 말하고있다.(《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6차보고》, 17페지, 제14호) 《작업대제도는 차지농업가에게는 결정적으로 가장 값싼것이고 아동들에게는 역시 결정적으로 가장 유해로운것이다.》고 한 차지농업가는 말하고있다.(우와 같은 보고, 16페지, 제3호)

(179)《의심할바없이 작업대의 아동이 현재 하고있는 작업의 많은것을 이전에는 성년남녀들이 하였던것이다. 녀성로동과 아동로동이 사용되고있는 곳들에서는 종전보다 더 많은 성년남성들이 실업하고있다.》(《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6차보고》, 43페지, 제202호) 그러나 다른 한편 그중에도 《다수 농업지방들 특히 곡물생산지방들에서 로력문제는 국외이주의 결과 또 대도시에로의 이주가 철도에 의하여 용이하게 된 결과 엄중한 성격을 띠게 되였으므로 나는 〔이 《나》라고 하는것은 어떤 대지주의 농촌대리인이다.〕 아동로동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우와 같은 보고. 80페지, 제180호) 잉글랜드의 농업지방에서의 로력문제란 기타 문명세계와 달라서 지주와 차지농업가의 문제 즉 부단히 증대하는 농촌인구의 류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농촌에 충분한 《상대적과잉인구》와 따라서 농촌로동자들에 대한 《임금의 최저한》을 영구화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본주의적생산의 대립적량극이 있다.(180)

(f) 아일랜드[455]

이 절의 마감으로서 아일랜드를 간단히 보지 않을수 없다. 우선 여기에서 문제로 되고있는 사실들을 들어보자.

아일랜드의 인구는 1841년에 8,222,664명에 달하였다가 1851년에는 6,623,985명으로 감소되였으며 1861년에는 5,850,309명으로, 1866년에는 5,500,000명으로 즉 거의 1801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인구감소는 흉년인 1846년으로부터 시작되였고 그리하

(180) 내가 전에 인용한바 있는 《공중위생보고》는 아동사망률문제를 취급하면서 작업대제도①에도 언급하고있는데 이 보고는 신문지상에, 따라서 영국의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고말았다. 그와는 반대로 《아동로동조사위원회》의 최근보고는 신문에 대환영을 받는 《인기적》 자료를 제공하였다. 자유주의적신문은 링컨셔에 우글우글하는 점잖은 신사, 숙녀들과 국교회의 목사들 즉 자기들의 독특한 《남양미개인의 도덕개선을 위한 선교사단》을 지구 저편으로 파견한 인물들이 어떻게 그와 같은 제도를 그들의 농장에서, 그들의 목전에서 허용할수 있었는가를 질문하고있는데 한편 상류신문은 오로지 제자식들을 팔아 그러한 노예상태에 빠뜨릴수 있는 농민들의 혹심한 타락에 관하여서만 론의하였다! 그런데 《점잖은이들》이 농민을 속박하는 그 저주로운 상태에서는 농민이 제자식을 잡아먹었다하여도 놀라운 일이 아닐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농민이 대부분 유지하고있는 훌륭한 품성이다. 공적보고들의 작성자들은 작업대제도가 적용되고있는 지방들에서도 부모들은 그 제도를 증오하고있다는것을 지적하고있다. 《우리가 수집한 증언중에서 풍부한 증거를 찾아볼수 있는바와 같이 부모들은 그들이 왕왕 받게 되는 유혹과 압박에 대항할 가능성을 주게 될 강제법이 나온다면 그것에 대하여 많은 경우에 감사를 드릴것이다. 때로는 교구의 관리가, 때로는 고용주가 그들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아동들을 학교 대신에 일터로 보내도록 한다.…시간과 힘의 모든 랑비, 농민과 그 가족들이과도하며 무익한 피로로 말미암아 받는 모든 고통, 부모들이 그 아동들의 도덕적파멸을 오두막이 비좁은 결과라고, 또는 작업대제도의 퇴폐적영향때문이라고 할수 있는 모든 경우들—이 모든것은 근로빈민들의 가슴속에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겠는가 하는것은 우리가 쉽게 리해할만한것이며 또 여기서 더 상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없는것이다. 그들에게 아무 책임도 없으며 또 만약 그들이 할수만 있었다면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것이며 반대하기에는 그들이 무력한 그러한 사정들이 그들의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의 원인임을 그들은 의식하고있는것이다.》(《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6차보고》, XX페지, 제82호; XXIII페지, 제96호)

① 이 책 457~460페지를 보라. —편집자

여 아일랜드는 20년도 못되는 기간에 인구의 $\frac{5}{16}$이상을 잃었다.(181) 그 이민총수는 1851년 5월부터 1865년 7월까지 1,591,487명이였으며 최근 5년간 즉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이민은 500,000명이상이였다. 주택수는 1851~1861년간에 52,990채나 감소되였다. 1851년부터 1861년까지 15~30에이커의 차지농장수는 61,000개나 증가하였으며 30에이커이상의 차지농장수는 109,000개나 증가하였는데 각종 규모의 차지농장총수는 120,000개나 감소되였다. 이 감소는 전적으로 15에이커이하의 차지농장들의 소멸 즉 그것들의 집중에 기인하는것이다.

인구수의 감소는 물론 대체로 생산물량의 감소를 동반하였다.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서는 그 기간에 500,000이상이 이민하였으며 절대적인구수가 330,000이상이나 감소한 1861~1865년의 5개년을 고찰하면 충분하다.(A표를 보라.)

A표 가축 마리수(182)

년도	말		소		
	총 수	감 소	총 수	감 소	증 가
1860	619,811	—	3,606,374	—	—
1861	614,232	5,579	3,471,688	134,686	—
1862	602,894	11,338	3,254,890	216,798	—
1863	579,978	22,916	3,144,231	110,659	—
1864	562,158	17,820	3,262,294	—	118,063
1865	547,867	14,291	3,493,414	—	231,120

---

(181) 아일랜드의 인구: 1801년—5,319,867명, 1811년—6,084,996명, 1821년—6,869,544명, 1831년—7,828,347명, 1841년—8,222,664명.

(182) 더 멀리 소급해올라가면 결과는 더 좋지 않을것이다. 례컨대 양은 1865년에는 3,688,742마리, 1856년에는 3,694,294마리였고 돼지는 1865년에는 1,299,893마리, 1858년에는 1,409,883마리였다.

년도	양			돼지			
	총 수	감 소	증 가	총 수	감 소	증 가	증 가
1860	3,542,080	—	—	1,271,072	—	—	—
1861	3,556,050	—	13,970	1,102,042	169,030	—	—
1862	3,456,132	99,918	—	1,154,324	—	52,282	52,282
1863	3,308,204	147,928	—	1,067,458	86,866	—	—
1864	3,366,941	—	58,737	1,058,480	8,978	—	—
1865	3,688,742	—	321,801	1,299,893	—	241,413	241,413

이 표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말	소	양	대 지
절대적감소	절대적감소	절대적증가	절대적증가
71,944	112,960	146,662	28,821

그러면 이제는 가축과 인간에게 생활수단을 제공하는 농업을 보자. 다음 B표에서는 각 년도의 증감이 그 전년도에 비하여 계산되여있다. 알곡류에 속하는것은 밀, 귀밀, 보리, 호밀, 대두, 완두이며 남새류에 속하는것은 감자, 순무, 근대, 사탕무우, 양배추, 홍당무우, 방풍나물, 등갈퀴 등등이다.

B표 경작지와 초지(즉 목장)의 면적증감

(단위: 에이커)

년도	알곡류	남새류		초지 및 크로바		아 마		농업 및 축산용 토지 총면적	
	감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1861	15,701	36,974	—	47,969	—	—	19,271	81,373	—
1862	72,734	74,785	—	—	6,623	—	2,055	138,841	—
1863	114,719	19,358	—	—	7,724	—	63,922	92,431	—
1864	122,437	2,317	—	—	47,486	—	87,761	—	10,493
1865	72,450	—	25,421	—	68,970	50,159	—	28,218	—
1861~1865	428,041	108,013		—	82,834	—	122,850	330,370	—

1865년에 《초지면적》은 127,470에이커에까지 증가하

였는데 이것은 주로 《미경황무지 및 니탄소택지 면적》이 101,543에이커나 감소되였기때문이다. 1865년을 1864년과 비교하면 알곡수확고의 감소는 246,667쿼터인데 그중 밀이 48,999쿼터, 귀밀이 166,605쿼터, 보리가 29,892쿼터 등등이며 감자의 경지면적은 1865년에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그 수확고는 446,398톤 감소하였다, 등등.(C표를 보라.)

아일랜드의 인구와 농업생산의 변동으로부터 아일랜드의 지주, 대차지농업가 및 공업자본가들의 재산의 변동으로 넘어가자. 그 변동은 소득세의 증감에 반영된다. 다음 D표를 리해하기 위하여 지적할 필요가 있는것은 D항(차지농업가의 리윤을 제외한 리윤)에는 소위 《자유직업적》 리윤 즉 변호사, 의사 등등의 소득이 포함되여있으며 이 표에서 따로 렬거하고있지 않는 C 및 E항들에는 관리, 군관, 국록을 타먹는 무임소관리, 국채소유자 등등의 소득이 포괄되여있다는것이다.

D표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183)

(단위: 파운드)

	1860	1861	1862	1863	1864	1865
A항 지대	12,893,829	13,003,554	13,398,938	13,494,091	13,470,700	13,801,616
B항 차지농업가의 리윤	2,765,387	2,773,644	2,937,899	2,938,923	2,930,874	2,946,072
D항 공업리윤 등등	4,891,652	4,836,203	4,858,800	4,846,497	4,546,147	4,850,199
A~E항 전 항목의 총액	22,962,885	22,998,394	23,597,574	23,658,631	23,236,298	23,930,340

D항에 있어서 1853~1864년간의 년평균소득의 증가는 불과 0.93%인데 대브리텐에서는 같은 기간에 4.58%에 달하

(183) 《최명국내세수입위원회 제10차보고》, 1866년 런던판.

C표 경작지면적 및 에이커당 생산량의 증감과 총생산량의 증감

(1865년과 1864년과의 비교표)(184)　　*단위: 스톤(14폰드)

생산물	경지면적 (에이커)		1865년의 증감		에이커당 생산량		1865년의 증감		총생산량		1865년의 증감	
	1864	1865	+	−	1864	1865	+	−	1864	1865	+	−
					(쩬트네르)	(쩬트네르)	(쩬트네르)	(쩬트네르)	(쿼터)	(쿼터)	(쿼터)	(쿼터)
밀	276,483	266,989	—	9,494	13.3	13.0	—	0.3	875,782	826,783	—	48,999
귀 밀	1,814,886	1,745,228	—	69,658	12.1	12.3	0.2	—	7,826,332	7,659,727	—	166,605
보 리	172,700	177,102	4,402	—	15.9	14.9	—	1.0	761,909	732,017	—	29,892
맥주용 보리 호밀	8,894	10,091	1,197	—	16.4 8.5 (톤)	14.8 10.4 (톤)	— 1.9 (톤)	1.6 — (톤)	15,160 12,680 (톤)	13,989 18,364 (톤)	— 5,684 (톤)	1,171 — (톤)
감 자	1,039,724	1,066,260	26,536	—	4.1	3.6	—	0.5	4,312,388	3,865,990	—	446,398
순 무	337,355	334,212	—	3,143	10.3	9.9	—	0.4	3,467,659	3,301,683	—	165,976
근 대	14,073	14,389	316	—	10.5	13.3	2.8	—	147,284	191,937	44,653	—
양배추	31,821	33,622	1,801	—	9.3	10.4	1.1	—	297,375	350,252	52,877	—
아 마	301,693	251,433	—	50,260	34.2*	25.2*	—	9.0*	64,506	39,561	—	24,945
건 초	1,609,569	1,678,493	68,924	—	1.6	1.8	0.2	—	2,607,153	3,068,707	461,554	—

(184) 분문의 수자는 《아일랜드의 농업통계. 1860년도 매개 군, 매개 주 약간의 농작물재배면적과 가축 마리수 개요》(1860년 더블린판) 및 그후 각 년도의 통계와 《아일랜드의 농업통계. 1866년의 추정평균생산량을 표시하는 표》(1867년 더블린판)를 기초자료로

였다. 다음표는 1864년과 1865년의 리윤(차지농업가의 리윤은 제외함.)의 분배를 표시한다.

E표 아일랜드의 D항리윤소득(60파운드이상)(185)

	1864년		1865년	
	파운드	분배인원수	파운드	분배인원수
년총소득……	4,368,610	17,467	4,669,979	18,081
60파운드이상 100파운드이하의 년소득……	238,726	5,015	222,575	4,703
년총소득중……	1,979,066	11,321	2,028,571	12,184
년총소득잔고……	2,150,818	1,131	2,418,833	1,194
그중……	1,073,906	1,010	1,097,927	1,044
	1,076,912	121	1,320,906	150
	430,535	95	584,458	122
	646,377	26	736,448	28
	262,819	3	274,528	3

발전한 자본주의적생산의 나라이며 주로 공업의 나라인 잉글랜드에서는 아일랜드가 당한바와 같은 인구의 류출은 치명적타격으로 될것이다. 그런데 현재 아일랜드는 넓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잉글랜드와 떨어져있으며 잉글랜드에 곡물과 양모와 가축과 공업상 및 군사상의 신병을 제공하

하여 작작성한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이것은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공식통계이다.

제2판에 대한 추가. 공식통계는 경지면적이 1872년에는 1871년에 비하여 134.915에이커나 감소된것을 보여주고있다. 순무, 근대 등등 남새류의 경지면적은 《증가》 되였다. 다음과 같은 농작물경지면적이 감소하였는데 밀이 16,000에이커, 귀밀이 14,000에이커, 보리와 호밀이 4,000에이커, 감자가 66,632에이커, 아마가 34,667에이커 각각 감소하였다. 목초, 크로바, 살갈퀴, 평지 등의 경지면적은 30,000에이커나 감소하였다. 최근 5년간의 밀경지면적은 다음과 같이 점차 감소하였다. 즉 1868년에 285,000에이커, 1869년에 280,000에이커, 1870년에 259,000에이커, 1871년에 244,000에이커, 1872년에 228,000에이커이다. 1872년에(대략적인 수자) 말은 2,600마리, 소 80,000마리, 양 68,600마리가 증가되였으며 돼지가 236,000마리 감소되였다.

(185) D항의 년총소득이 이 표에서는 앞표와 다른데 이것은 법률상 용허되는 일부 공제가 진행되였기때문이다.

는 잉글랜드의 농업지방에 불과하다.

인구감소의 결과 많은 토지가 묵게 되였으며 농산물은 심히 감소하였고(186) 또 목축용지면적은 확장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목축부문의 생산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기타 부문들에서는 퇴보에 의하여 부단히 중단되여 발전이란 거의 말할만한것이 못되였다. 그러나 인구의 감소와 함께 지대와 차지농업가의 리윤은 계속 증대하였다. 물론 후자의 증대는 전자만큼 경상적인것은 아니였다. 그 리유는 쉽게 리해할수 있다. 한편으로 차지농장들의 집중과 경지의 목장으로의 전화에 따라 총생산물중의 더욱 많은 부분이 잉여생산물로 전화되였다. 잉여생산물이 그 일부분으로 되여있는 총생산물은 감소되였으나 잉여생산물은 증가하였다. 다른 한편 이 잉여생산물의 화폐가치는 그 생산물량보다 더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그것은 잉글랜드에서의 육류, 양모 등등의 시장가격이 최근 20년동안에 특히 최근 10년동안에 등귀하였기때문이다.

타인의 로동을 합치는 방법으로 자체를 증식시키지 않고 생산자자신에게 취업수단과 생존수단으로 복무하는 분산된 생산수단은 자본이 아닌데 그것은 그자체의 생산자가 소비하는 생산물이 상품이 아닌것과 마찬가지이다. 인구의 감소와 함께 농업에 사용되는 생산수단의 량은 감소하였지만 농업에 사용되는 자본의 량은 증가하였다. 그것은 종전에 분산되였던 생산수단의 일부분이 자본으로 전화되였기때문이다.

농업외에 즉 공업과 상업에 사용된 아일랜드의 총자본은

---

(186) 생산물이 상대적으로 에이커당에도 감소되고있다면 잊어서는 안될것은 잉글랜드는 1세기 반동안 토지성분의 단순한 보상수단도 아일랜드의 농민들에게 남겨주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아일랜드의 토지를 수출하였다는것이다.

최근 20년간에 서서히 그리고 부단한 큰 동요를 보이면서 축적되였다. 그러나 이 총자본의 각 구성부분의 집적은 더욱 더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끝으로 이 총자본의 절대적증가는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는 즉 인구의 감소에 비하여서는 그것은 증대하였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의 눈앞에서 대규모로 한 과정이 전개되고있는데 그것은 정통파경제학이 자기의 교조를 확증하기 위하여서는 그보다 더 훌륭한것을 바랄수 없는 과정이다. 그들의 교조에 의하면 빈곤은 절대적과잉인구에서 발생하며 또 인구의 감소에 의하여 균형이 다시 회복된다는것이다. 이것은 말사스주의자들이 그렇게도 찬미한 14세기중엽의 흑사병[220]과는 전혀 다른 한 중요한 실험이다. 겸하여 말하지만 19세기의 생산관계와 그에 상응하는 인구관계에 14세기의 척도를 적용한다는것 그자체가 학교 훈장처럼 소박한것이였는데 이 소박성은 그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간과하였다. 그것은 즉 해협의 이쪽 즉 영국에서는 흑사병과 그에 수반한 인구감소의 뒤를 이어 농촌주민의 해방과 치부가 있었으나 해협의 저쪽 즉 프랑스에서는 보다 심한 예속화와 빈궁이 나타났다는것이다.(186a)

아일랜드의 1846년 기근은 100만이상의 인간을 죽게 하였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빈민들이였다. 그 기근은 이 나라의 부에는 조금도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후 20년간의, 그리고 지금도 부단히 증대되고있는 인구류출은 30년전쟁과는 달라서

(186a) 아일랜드는 《인구원리》의 성지로 간주되고있으므로 T. 쌔들러는 인구에 관한 그의 저작을 발표하기전에 그의 유명한 저서 《아일랜드의 재난과 그 구제책》(1829년 런던 제2판)을 냈는데 이 책에서 그는 각 주의 통계자료 및 각 주의 각 군의 통계자료를 대비하면서 그곳에서 보편적빈곤은 말사스가 말하는것처럼 인구수에 비례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에 반비례한다는것을 증명하고있다.

사람들의 수효와 함께 그들의 생산수단을 감소시키지는 않았다. 아일랜드의 천재는 요술과 같이 빈민들을 그들의 빈곤의 무대로부터 수천마일이나 떨어진 먼곳으로 보내는 전혀 새로운 방법을 발명하였다. 미국으로 간 이민들은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려비로서 매년 얼마씩 집에 송금하고있다. 금년에 이주한 한무리의 사람들은 래년에는 새로운 한무리의 사람들을 끌어간다. 그러므로 이주는 아일랜드에 아무런 비용도 들게 하지 않을뿐만아니라 그 수출업의 가장 수입 많은 한 부분을 이루고있다. 끝으로 이민은 하나의 체계적과정으로서 이 과정은 다만 인구에다 잠시적으로 구멍을 내는것이 아니라 매년 출생에 의하여 보충되는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인구에서 퍼감으로써 절대적인구수준이 매년 저하되는것이다.(186b)

국내에 남아있은 사람들 즉 과잉인구로부터 해방된 아일랜드의 로동자들에게는 대체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가? 상대적과잉인구는 오늘날에도 1864년이전만큼 크다는것, 로임은 역시 매우 낮다는것, 로동고는 증대되였다는것, 농촌에서의 빈궁은 다시 새로운 공황을 폭발시킬 우려가 있다는것—이것이 결과였다. 원인은 매우 간단하다. 농업에서의 혁명이 이민과 보조를 맞추어 진행되였다. 상대적과잉인구의 생산은 인구의 절대적감소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였다. B표를 얼핏 보아도 알수 있는바와 같이 경지의 목장으로의 전화가 아일랜드에서는 잉글랜드에서보다 더욱더 강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잉글랜드에서는 목축업과 더불어 남새재배가 증가하고있으나 아일랜드에서는 그것이 감소되고있다. 종전의 경작지의 큰 부분이 휴경되든가 또는 영원한 초지로 전화되고

(186b) 1851~1874년기간에 국외이주자총수는 2,325,922명에 달하였다.

있는 한편 종전에 리용되지 않고있던 황무지와 니탄소택지의 큰 부분이 목축업의 확대에 리용되고있다. 중소차지농업가들—나는 100에이커를 넘지 않는 토지를 경작하는 모든 차지농업가들을 여기에 포함시킨다—은 아직도 차지농업가총수의 거의 $\frac{8}{10}$을 이루고있다.(186c) 그들은 자본주의적농업생산의 경쟁에 의하여 종전보다 더 강하게 압박을 받으며 따라서 임금로동자계급에게 부단히 신병을 제공한다. 아일랜드의 유일한 대공업인 아마가공업은 비교적 성년남성로동자를 적게 요구하며 그것이 1861～1866년의 면화등귀이래 확장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인구중의 비교적 적은 부분을 사용하였을뿐이다. 다른 모든 대공업과 마찬가지로 아마가공업도 그 자체내부의 부단한 동요로 말미암아 상대적과잉인구를 부단히 생산하며 그것에 의하여 흡수되는 로동자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도 역시 그러하다. 농촌주민의 빈곤은 수많은 내의공장 등등의 기초를 이루고있는데 그 로동자군의 대부분은 농촌에 흩어져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다시 상술한 바와 같은① 낮은 로임과 과도한 로동을 《인구과잉화》의 체계적인 조성수단으로 삼고있는 가내로동체계를 본다. 끝으로 인구감소가 여기에서는 자본주의적생산이 발전한 나라에서와 같이 그렇게 파괴적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기에서도 국내시장에 대한 부단한 반작용없이 진행되지는 않는다. 국외이주에 의하여 조성되는 빈틈은 지방적인 로동수요뿐만아니라 소매상, 수공업자, 일반적으로 소영업자들

(186c) 제2판 주: 머피의 《아일랜드의 공업, 정치 및 사회》(1870년판)중의 한 통계표에 의하면 토지의 94.6%는 100에이커미만의 차지농장들이며 5.4%는 100에이커이상의 차지농장들이다.

① 이 책 536~540페지를 보라. —편집자

의 수입도 감소시킨다. E표에서 60내지 100파운드의 소득이 감소된 원인이 여기에 있다.

아일랜드의 농업날품팔이군들의 형편에 대한 똑똑한 서술은 아일랜드의 빈민구제법감독관들의 보고들(1870년)(186d)에서 볼수 있다. 총검과 공공연한 또는 은연한 계엄상태의 도움으로써만 유지되는 정부의 관리인들인 그들은 잉글랜드에 있는 그들의 동료가 멸시하는 용어상의 조심성에 고려를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정부로 하여금 환상에 잠기는것을 허용하지 않고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농촌의 임금률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 극히 낮지만 그러나 최근 20년간에 50~60%나 제고되였으며 현재는 평균하여 주 6~9실링이나 된다. 그러나 이 외견상의 임금인상의 뒤에는 임금의 실질적인하가 숨어있다. 왜냐 하면 그 인상은 그사이에 일어난 필요생활수단가격의 등귀와 결코 일치하지 않기때문이다. 아일랜드의 한 빈민구제원에 관한 공식보고에서 발취한 다음과 같은 수자는 그 증거로 된다.

일인당 주평균생활비

년	음식물	의 류	합 계
1848년 9월 29일—1849년 9월 29일	1실링 $3\frac{1}{4}$펜스	3펜스	1실링 $6\frac{1}{4}$펜스
1868년 9월 29일—1869년 9월 29일	2실링 $7\frac{1}{4}$펜스	6펜스	3실링 $1\frac{1}{4}$펜스

이와 같이 필요생활수단의 가격은 20년전에 비하여 거의 2배로, 의류가격은 바로 2배로 올랐다.

이와 같은 불균형을 도외시하더라도 화폐로 표시된 임금

(186d) 《아일랜드농업로동자의 임금에 관한 빈민구제법감독관의 보고》, 1870년 더블린판, 또 《농업로동자(아일랜드). 하원의 질문에 대한 대답》(1861년 3월 8일)을 보라.

률을 비교하는것만으로써는 도저히 정확한 결론이 나올수 없다. 기근전에는 농촌의 임금의 대부분이 현물로 지불되였으며 화폐로 지불된것은 극소부분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화폐지불이 통례로 되여있다. 이로부터 이미 실질임금의 변동은 어떻든간에 화폐임금률은 제고되지 않을수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기근전에는 농업날품팔이군들은 한뙈기의 토지나마 가지고 거기에서 감자도 심고 돼지도 먹이고 닭도 쳤다. 오늘에 와서는 그들은 자기의 모든 생활수단을 사지 않을수 없을뿐만아니라 돼지, 닭, 닭알을 팔아서 얻고있던 수입도 상실하였다.》(187)

사실 이전에는 농촌로동자들은 소차지농업가들과 융합되고 있었으며 대개는 대중차지농장들의 일종 후위대에 불과하였으며 이러한 농장들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였다. 1846년의 파국이래 비로소 그들은 순전한 임금로동자계급의 한 부분을 즉 오로지 화폐관계에 의하여서만 고용주와 결부된 특수한 계층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1846년 당시의 그들의 주택형편이 어떠하였는가를 우리는 이미 알고있다. 그 이후 그 형편은 한층 더 악화되였다. 농업날품팔이군의 일부분은 매일과 같이 감소되고는 있지만 그들은 아직 차지농업가의 땅에서 비좁은 오두막에서 살고있는데 오두막의 처참한 꼴이란 우리가 잉글랜드의 농촌지방에서 본 최악의것을 훨씬 릉가한다. 그리고 이것은 얼스터의 일부 지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그러하다. 즉 남부에서는 코크, 리머리크, 킬켄니 등등의 군들에서, 동부에서는 위클로, 웩스포드 등지에서, 중부에서는 킹즈 및 퀸즈 두 군과 더블린 등지에서, 북부에서는 다운, 앤트림, 티론 등지에서, 서부에서는 슬라이고, 로스콤몬, 메이오, 골웨이 등지에서 그러하다. 한 감독관은 다음과 같이

---

(187) 《아일랜드농업로동자의 임금에 관한 빈민구제법감독관의 보고》, 1870년 더블린판, 29, 1페지.

부르짖고있다. 《이것은 종교와 우리나라의 문명에 대한 치욕이다.》 (187a) 날품팔이군들에게 그들의 움집에서의 생활을 견딜만한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인지 태고때부터 주택에 붙어있는 땅뙈기마저 체계적으로 몰수한다.

《지주와 그 관리인들에게 이러한 비인간적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의식은 농업날품팔이군들의 마음속에 그들을 무권리한 인종으로 취급하고 있는자들에 대한 적대와 증오라는 해당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187a)

농업혁명의 제1막은 작업경지에 있는 오두막집들을 대규모적으로 그리고 우로부터의 지령에 따라서 하는것처럼 하여 철거하여버리는것이였다. 그리하여 많은 로동자들은 촌락과 도시들에서 피난처를 구하지 않을수 없었다. 거기에서는 그들을 쓸모없는 폐물처럼 다락방, 움집, 지하실 그리고 가장 나쁜 지구의 구석진 곳에 쓸어넣었다. 민족적편견에 사로잡힌 잉글랜드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가정적단락에 대한 보기 드문 애착과 아무 근심 없는 명랑성과 가정생활의 순결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아일랜드의 수천 가족이 돌연히 죄악의 온실속으로 들어가게 되였다. 남성들은 이제는 부근의 차지농장들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일요로동자로서만 즉 가장 불안정한 임금형태로서만 고용되였다. 게다가

《그들은 이제는 농장에 이르는 먼길을 래왕하지 않을수 없으며 종종 비에 젖기도 하며 다른 곤난들도 겪는데 그 결과는 흔히 몸이 쇠약하여 지고 병들고 따라서 가난에 쪼들리게 된다.》 (187b)

《도시는 농촌지방에서 과잉으로 인정된 로동자들을 매년 수용하여야 하였다.》 (187c) 그런데도 사람들은 《도시들과 농촌도시들에서는 로동자가 남아돌아가는데 농촌에서는 로동자

(187a) 《아일랜드농업로동자의 임금에 관한 빈민구제법감독관의 보고》, 1870년 더블린판, 12페지.

(187b) 우와 같은 보고 25페지.

(187c) 우와 같은 보고, 27페지.

가 부족하다!》[187d]는것을 의아하게 생각하고있다. 실지 이 부족을 느끼는것은 다만 《농번기 즉 봄철과 가을철이고 다른 계절에는 많은 일손들이 놀고있다.》[187e]는것, 《수확이 끝나고 10월부터 봄철까지는 그들은 거의 일이 없다.》[187f]는것, 그들에게 일이 있을 때에도 《종종 며칠씩이나 일이 없든가 각종 작업중단을 당하게 된다.》[187g]는것이다.

농업혁명의 이러한 후과 즉 경지의 목장화, 기계의 채용, 가장 엄격한 로동절약 등등의 이러한 후과는 자기들의 지대를 외국에 가서 소비하지 않고 인정도 많으셔서 아일랜드의 자기령지에서 사는 모범적인 지주들에 의하여 더욱 심해진다. 이 나으리들은 수요공급의 법칙이 조금도 손상을 받지 않도록

《이제는 그들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로동을 자기들의 소차지인들로부터 끌어내고있다. 이리하여 이 소차지인들은 일반적으로 보통의 날품팔이군의 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고 지주를 위하여 고역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파종기나 수확기 같은 긴요한 철에도 자기 밭을 내버려두어야 할 결과를 가져오는 불편과 손실에 대하여서는 더 고려할것도 없다.》[187h]

그리하여 취업의 불안정성과 불규칙성, 작업중단현상의 빈번한 발생과 장기적인 실업, 이러한 상대적과잉인구의 모든 징조들은 아일랜드의 농업무산계급을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으로서 빈민구제법감독관들의 보고들에 나타나고있다. 우리는 잉글랜드의 농촌무산계급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있다는것을 기억하고있다. 그러나 차이점은 공업국인 잉글랜드에서는 산업예비군이 농촌에서 보충되는데, 농업국

(187d) 《아일랜드농업로동자의 임금에 관한 빈민구제법감독관의 보고》, 1870년 더블린판, 26페지.

(187e) 우와 같은 보고, 1페지.

(187f) 우와 같은 보고, 32페지.

(187g) 우와 같은 보고, 25페지.

(187h) 우와 같은 보고, 30페지.

인 아일랜드에서는 농업예비군이 도시에서, 추방된 농촌로동자들의 도피처에서 보충된다는것이다. 잉글랜드에서는 농업에서의 과잉로동자들이 공장로동자로 되는데 아일랜드에서는 도시로 추방된 사람들이 동시에 도시의 임금에 압력을 가하면서도 여전히 농촌로동자인것이며 일자리를 구하여 부단히 농촌으로 돌아온다.

공식보고의 작성자들은 농업날품팔이군들의 물질적형편에 관한 자기들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있다.

《그들은 극도로 검소하게 생활하지만 그들의 임금은 그들과 그 가족들의 식사비와 주택비를 겨우 댈만하다. 의복을 해입자면 그 이상의 수입이 필요하다.…그들의 거주환경은 다른 결핍들과 아울러 이 계급을 특히 티브스와 폐병에 걸리게 하고있다.》 (187i)

그렇다면 보고작성자들의 일치한 증언대로 울적한 불평이 이 계급의 대렬에 침투하고있다는것, 이 계급이 과거를 그리워하며 현재를 증오하며 미래에 절망하며 《선동가들의 해독적영향에 좌우되게 된다.》는것, 그리고 미국으로 이주한다는 단 하나의 생각밖에 없다는것 등은 하등 기이한 일이 아니다. 말사스의 위대한 만병통치약인 인구감소는 록색의 에린①을 복지국가로 전환시킨것이다!

아일랜드의 공업로동자가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하고있는가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한가지 실례를 드는것으로 충분할것이다.

잉글랜드의 공장감독관 로버트 베이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187i) 《아일랜드농업로동자의 임금에 관한 빈민구제법감독관의 보고》, 1870년 더블린판, 21, 13페지.

① 켈트어로서 록색의 섬이라는 뜻이다. 아일랜드의 옛이름이다. 一편집자

《최근 내가 아일랜드의 북부를 시찰하였을 때 아일랜드의 어떤 숙련로동자가 얼마 안되는 수입으로 그 아이들을 교육받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것을 보고 나는 몹시 놀랐다. 나는 그가 말한 그대로 그의 이야기를 전하려 한다. 그가 실지 숙련공이라는것은 그가 만체스터시장으로 보낼 상품을 만드는데 고용되고있다고 말하면 알만할것이다. 존슨: 나는 소정공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합니다. 토요일에는 오후 6시에 일이 끝나고 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3시간을 얻습니다. 나에게는 자식이 다섯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나는 주 10실링 6펜스를 받습니다. 나의 처도 역시 일하는데 주에 5실링을 받습니다. 12살난 맏딸이 집안일을 맡아봅니다. 그 애가 료리사이며 또 유일한 협조자입니다. 그 애가 어린것들을 학교에 보낼 차림을 해줍니다. 나의 안해는 나와 함께 일어나 나와 같이 출근합니다. 우리 집앞을 지나가는 한 소녀가 아침 5시 반에 나를 깨워줍니다. 일터로 가기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12살난 아이가 종일 제 동생들을 보살펴줍니다. 우리는 8시에 조반을 먹습니다. 그때문에 우리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차를 마시는것은 1주일에 한번이며 다른 때는 죽을 먹는데 살수 있는 알곡에 따라 때로는 귀밀죽, 때로는 강낭죽을 먹습니다. 겨울에는 강낭죽에 사탕과 물을 조금 넣습니다. 여름에는 자그마한 마당에서 얼마 안되는 감자를 거두는데 그것을 먹습니다. 그것이 떨어지면 다시 죽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날그날 일요일이건 다른 날이건 언제나 1년 열두달 그렇게 지냅니다. 일을 마치고나면 언제나 밤에 몹시 피로를 느낍니다. 우리는 한쪼각의 고기를 얻어먹을 때도 있으나 그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아이들중 셋이 학교에 다니는데 한 아이에 주 1펜스씩 듭니다. 집세는 주 9펜스입니다. 니탄이나 연료는 2주일에 적어도 1실링 6펜스가 듭니다.》(188)

이것이 아일랜드의 임금이며 이것이 아일랜드의 생활인것이다!

사실 아일랜드의 빈곤은 또다시 영국에서 당면문제로 되였다. 1866년말과 1867년초에 아일랜드의 대지주의 하나인 다퍼린이 《타임스》 지상에서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섰다. 《그

(188) 《공장감독관보고. 1866년 10월 31일》, 96페지.

와 같은 큰 나으리가 얼마나 인간다운가!》[456]

E표에서 본바와 같이 1864년에 총리윤 4,368,610파운드중에서 3명의 부정축재자가 차지한것은 262,819파운드였는데 1865년에는 같은 3명의 대《금욕가》가 총리윤 4,669,979파운드중에서 274,528파운드를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1864년에는 26명의 부정축재자가 646,377파운드를, 1865년에는 28명의 부정축재자가 736,448파운드를, 1864년에는 121명의 부정축재자가 1,076,912파운드를, 1865년에는 150명의 부정축재자가 1,320,906파운드를 차지하였으며 1864년에는 1,131명의 부정축재자가 2,150,818파운드를 즉 년총리윤의 거의 절반을, 1865년에는 1,194명의 부정축재자가 2,418,833파운드를 즉 년총리윤의 절반이상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런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아일랜드에 있는 한줌도 못되는 대지주들이 년전국총지대수입에서 삼켜버리는 몫은 너무도 엄청나므로 현명한 영국정부는 지대분배에 대하여서는 리윤분배에 대한 통계와 같은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않는것이 적절하다고 보고있다. 다퍼린경은 이러한 대지주중의 한사람이다. 지대와 리윤이 어떤 때 《과다》할수 있다든가 또는 그것들의 과다가 인민의 빈곤의 과다와 어떻게든 관련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물론 《불명예》스러우며 또 《불건전》한 생각이다. 그는 사실에 의거한다. 사실이란 아일랜드의 인구수가 감소함에 따라 아일랜드의 지대액이 증대한다는것, 인구의 감소는 지주에게 《유리》하며 따라서 또 토지에도 《유리》하며 따라서 또 토지의 부속물에 불과한 인민에게도 《유리》하다는것이다. 그래서 그는 선언하기를 아일랜드는 아직도 인구과잉이며 이민의 흐름은 아직도 너무 완만하다.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려면 아일랜드는 아직도 적어도 30여만명의 로동자를 방출하

여야 한다고. 거기에다 시인적이기도 한 이 경이 쌍그라도파 즉 자기의 환자가 차도가 없다는것을 발견할 때마다 련속 피를 빼라고 명령하여 드디여 그 환자의 피도 병도 남지 않게 한 그 쌍그라도파의 의사라고 생각하지 말라. 다퍼린경은 약 200만이 아니라 불과 30여만의 새로운 출혈을 요구하고있는데 사실은 200만쯤 내쫓지 않고서는 에린에 천년태평왕국을 세울수는 없다. 그 증거를 제공하는것은 어렵지 않다.

1864년 아일랜드의 차지농장수와 면적

(단위: 에이커)

1		2		3		4	
1에이커이하의 차지농장		1~5에이커의 차지농장		6~15에이커의 차지농장		16~30에이커의 차지농장	
수	면적	수	면적	수	면적	수	면적
48,653	25,394	82,037	288,916	176,368	1,836,310	136,578	3,051,343

5		6		7		8
31~50에이커의 차지농장		51~100에이커의 차지농장		100에이커이상의 차지농장		총 면 적
수	면적	수	면적	수	면적	
71,961	2,906,274	54,247	3,983,880	31,927	8,227,807	20,319,924 (188a)

1851~1861년기간의 집중은 주로 첫 세 부류 즉 1에이커미만으로부터 15에이커까지의 차지농장들을 소멸시켰다. 이러한 농장들은 무엇보다먼저 소멸되지 않을수 없다. 그 결과 307,058호의 차지농업가들이 《과잉》하게 되며 한가족 평균 4명으로 낮추어 계산하더라도 대략 1,228,232명의 가족이 《과잉》하게 된다. 농업혁명이 완수되면 그들중 $\frac{1}{4}$이 다시 흡수될것이라는 극단적가정하에서도 여전히 921,174명은

(188a) 총면적은 니탄소택지와 황무지도 포함한다.

이주하여야 할것이다. 16에이커이상 100에이커미만의 제4, 제5, 제6 세부류는 잉글랜드에서 오래전부터 알려지고있는바와 같이 자본주의적곡물생산에는 너무나 작고 목양에는 더구나 령과 같다. 따라서 상기 가정하에서는 788,358명이 더 이주하여야 하는데 결국 합계 1,709,532명으로 된다. 그런데 식욕은 밥상을 받으면 더 나는 법이므로[457] 대지주의 눈은, 아일랜드가 350만의 인구로써도 아직 가난한 나라이며 이 가난은 인구가 과잉한탓이므로 아일랜드가 잉글랜드를 위한 양목장이며 가축목장이라는 자기의 참다운 사명을 수행할수 있기 위하여서는 그 인구감소는 훨씬 더 진척되여야 한다는 것을 인차 발견할것이다.(188b)

이러한 유리한 방법도 이 세상의 모든 좋은것과 같이 결

(188b) 개별적토지소유자들과 영국의 립법이 농업혁명을 폭력적으로 수행하고 아일랜드의 인구를 지주들에게 유리한 규모로 줄일 목적으로 기근과그에 수반하는 사정들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리용하였는가 하는것을 나는 이 저작 제3권의 토지소유에 관한 편에서 보다 상세히 론증할것이다.[458] 거기에서 나는 또 소차지농업가들과 농촌로동자들의 상태에 언급할것이다. 여기에서는 한가지만 인용하려 한다. 내쏘 W. 씨니어는 그의 유저 《아일랜드에 관한 일지, 담화 및 소론》(전2권, 1868년 런던판, 제2권, 282페지)에서 특히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G박사는 적절하게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있다. 우리는 지주가 승리하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서 빈민구제법을 가지고있다. 또 하나의 도구는 이민이다 라고. 아일랜드의 벗이라면 누구나 전쟁 (지주들과 켈트인의 소차지농업가들간의 전쟁) 이 오래 끄는것을 바랄리가 없을것이며 더구나 전쟁이 차지농업가들의 승리로써 끝나는것을 바랄리가 없을것이다.…그것 (이 전쟁) 이 급속히 끝나면 끝날수록 아일랜드가 급속히 목장의 나라로 되여 그 인구가 목장의 나라에 필요한 정도로 감소되면 될수록 모든 계급들을 위하여 그만큼 더 좋을것이다.》 1815년 영국의 곡물법들은 대브리텐에로 곡물을 자유로 수출하는 독점권을 아일랜드에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인위적으로 곡물생산을 조장하였다. 1846년 곡물법의 폐지와 함께 이 독점권은 갑자기 소멸되였다. 아일랜드경지의 목장으로의 전화, 차지농장들의 집중, 소농민들의 구축을 강력히 전개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모든 사정들은 도외시하고라도 이 한 사실만으로 충분하였다. 1815~1846년시기에 사람들은 아일랜드의 토지가 비옥하다는것을 찬양하고 그 토지는 천연적으로 밀재배에만 적합하다고 몹시 찬양하였는데 이제 와서는 갑자기 영국의 농학자, 경제학자, 정치가들은 그 토지가 목초생산외에는 아무데도 적합하지 않다는것을 발견하였다! 레옹스 드 라배른뉴씨는 해협 저편에서 부산하게 이것을 되풀이하였다. 그러한 어린애같은 수작에는 라배른뉴와 같은 《진지한》 인간만이 넘어갈것이다.

점이 있다. 아일랜드에서의 지대의 축적과 함께 미국에서의 아일랜드인의 축적도 그에 발맞추어 진행된다. 양과 소로 말미암아 구축된 아일랜드인들은 대양 저편에서 피니안회원[459]으로서 일어서고있다. 그리하여 바다의 로녀왕에 대립하여 젊은 거대한 공화국이 점점 더 위협적으로 일어서고있다.

가혹한 운명이 로마인을 괴롭힌다,
동포살륙의 죄행이.[460]

제 24 장

소위 시초축적

1. 시초축적의 비밀

우리는 화폐가 어떻게 자본으로 전화하는가, 자본이 어떻게 잉여가치를 생산하는가, 그리고 잉여가치에서 어떻게 더 많은 자본이 생기는가를 보았다. 그런데 자본의 축적은 잉여가치를 전제로 하며 잉여가치는 자본주의적생산을 전제로 하는데 자본주의적생산은 또한 상품생산자들의 수중에 비교적 대량의 자본과 로동력이 존재하는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이 모든 운동은 악순환속에서 빙빙 돌고있는것 같이 보이는데 이 순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자본주의적 축적에 선행하는 《시초》축적(애담 스미스의 《선행적축적》) 즉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결과가 아니라 그의 출발점인 축적을 가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시초축적이 정치경제학에서 노는 역할은 원죄가 신학에서 노는 역할과 거의 같다. 아담이 사과를 따먹자 그와 동시에 죄가 인류에게 떨어졌다.[461] 그 죄의 기원은 그것을 옛날의 일화로서 이야기함으로써 설명되고있다. 아득한 옛날에 한편에는 근면하고 령리하며 특히는 검약한 특출한 사람이 있었으며 또 한편에는 게으르고 자기의 모든것을 아니 그 이상의것까지도 탕진하여버리는 부랑자가 있었다는것이다. 확

실히 신학상의 원죄에 관한 전설은 인간이 어떻게 하여 스스로 이마에 땀을 흘리고 밥을 먹지 않으면 안될 숙명에 빠지게 되였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여주고있는데 경제학적원죄의 력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인간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였는가를 우리에게 밝혀준다. 그것은 어쨌든간에 전자는 부를 축적하였으며 후자는 결국 자기자신의 가죽이외에는 아무것도 팔것이 없게 된 사태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 원죄로부터 대다수인의 빈궁과 소수인의 부가 시작되였는데 전자는 아무리 로동하여도 여전히 자기자신이외에는 아무것도 팔것이 없으며 후자는 벌써 오래전부터 로동을 하지 않는데도 그 부가 부단히 증대한다. 례컨대 띠애르씨는 소유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지어 정치가다운 엄숙성을 가지고 한때는 그렇게도 재치있던 프랑스인들에게 이와 같은 유치한 이야기를 지리하게 되풀이하고있다. 그러나 일단 소유권문제가 제기될 때에는 아동독본의 관점을 모든 년령층과 모든 발육단계의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정당한 관점으로서 주장하는것이 신성한 의무로 된다.[462] 다 아는바와 같이 현실적력사에서는 정복, 예속, 략탈, 살인, 한마디로 말해서 폭력이 큰 역할을 논다. 그러나 온화한 정치경제학에서는 옛날부터 목가가 지배하였다. 정의와 《로동》은 옛날부터 유일한 치부수단이였다, 물론 《금년》은 항상 례외였지만. 실제에 있어서 시초축적의 방법들은 다른 모든것으로는 될수 있을지언정 결코 목가적인것으로는 될수 없다.

화폐와 상품은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이 그러하듯이 결코 처음부터 자본인것은 아니다. 이것들은 자본으로 전화되는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전화자체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사정하에서만 가능한것이다. 즉 아주 다른 두 종류의 상품소유

자가 대립하고 접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정이다. 그 일방은 화폐, 생산수단 및 생활수단의 소유자로서 그들은 자기가 소유하고있는 가치액을 증식하기 위하여 타인의 로동력을 구매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른 일방은 자유로운 로동자 즉 자기자신의 로동력의 판매자이며 따라서 로동의 판매자이다. 자유로운 로동자란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있다. 즉 그들자신이 노예, 농노 등등과 같이 직접 생산수단에 속하여있지도 않으며, 또한 자작농 등등과 같이 생산수단이 그들에게 속하여있지도 않으며 오히려 그들은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되여있으며 생산수단을 상실하였다는 의미이다. 상품시장의 이와 같은 량극분화와 함께 자본주의적생산의 기본적조건들이 조성된다. 자본관계는 로동자와 로동실현조건의 소유와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 자본주의적생산이 일단 자기발로 서게 되면 그것은 이 분리를 유지할뿐만 아니라 그 분리를 부단히 증대되는 규모에서 재생산한다. 그러므로 자본관계를 창조하는 과정은 로동자를 그의 로동조건에 대한 소유로부터 분리하는 과정 즉 일방으로는 사회적 생활수단과 생산수단을 자본으로 전화시키며 타방으로는 직접적생산자를 임금로동자로 전화시키는 과정이외의 어떤 다른 것일수도 없다. 따라서 소위 시초축적은 생산자와 생산수단의 력사적분리과정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시초적》인것으로 나타나는것은 그것이 자본과 그에 상응하는 생산방식의 전사를 이루기때문이다.

자본주의사회의 경제적구조는 봉건사회의 경제적구조에서 나왔다. 후자의 해체가 전자의 요소들을 해방하였다.

직접적생산자인 로동자는 그가 토지에 결박되지 않고 농노 또는 예농으로 타인에게 예속되지 않게 된후에야 비로소

자기를 자유로 처리할수 있었다. 또한 그가 로동력의 자유로운 판매자로 되여 자기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어느곳으로나 그것을 가지고 갈수 있기 위하여서는 동업조합의 지배에서, 도제와 장공에 관한 동업조합의 규칙에서 그리고 또 구속적인 로동규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리하여 생산자를 임금로동자로 전화시키는 력사적운동은 일방으로는 농노적예속과 동업조합적강제로부터의 그들의 해방으로서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의 자산계급력사가들에게는 다만 이 측면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새로 해방된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생산수단을 박탈당하고 또 낡은 봉건제도가 제공하던 그들의 생존의 일체 보장을 박탈당한후에야 비로소 그들자신의 판매자로 된다. 그리고 그들로부터의 이 수탈의 력사는 피와 불의 문자로써 인류의 년대기에 기록되여있다.

산업자본가라는 이 새로운 주권자는 동업조합의 수공업적장주들뿐만아니라 부의 원천의 소유자인 봉건령주들도 구축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 측면에서 보면 그들의 흥기는 봉건세력과 증오스러운 그의 특권을 타승한 성과로서, 또한 동업조합과 이 동업조합이 생산의 자유로운 발전 및 인간에 의한 인간의 자유로운 착취를 방해하는 그 질곡을 타승한 성과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산업의 기사들은 그들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건들을 리용함으로써만 겸의 기사를 구축할수 있었다. 그들은 로마의 해방민이 한때 자기의 보호자의 주인으로 되기 위하여 취한것과 동일한 비렬한 수단에 의하여 일어선것이다.

임금로동자와 자본가를 산생한 발전의 출발점은 로동자의 예속상태였다. 이 발전행정은 그 예속상태의 형태변화였

으며 봉건적착취의 자본주의적착취에로의 전화였다. 이 전화의 행정을 리해하기 위하여서는 그다지 멀리까지 소급할 필요는 없다. 자본주의적생산의 최초의 맹아는 이미 14세기와 15세기에 지중해연안의 일부 도시들에서 드문드문 볼수 있었지만 그러나 자본주의시대는 16세기부터 비로소 시작된다. 자본주의시대가 출현하는 곳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농노제도가 페지되였고 또 중세기의 절정인 주권도시도 이미 오래전에 시들어버렸다.

시초축적의 력사에서 력사적으로 획기적인것은 형성되고 있는 자본가계급을 위한 공간으로 되는 모든 변혁들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획기적인것은 대량의 인간이 돌연히 그리고 폭력적으로 그들의 생존수단으로부터 분리되여 법률의 보호밖에 놓인 무산자로서 로동시장에 투입되는 계기이다. 농촌생산자인 농민으로부터의 토지수탈은 전체 과정의 기초를 이룬다. 이 수탈의 력사는 나라가 다름에 따라 그 색채가 다르며 또 그 순서가 다르고 력사적시기가 다름에 따라 통과하는 단계가 다르다. 그것이 전형적인 형태를 취하고있는것은 영국에서뿐이며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영국을 례로서 들려고 하는것이다.(189)

2. 농촌주민으로부터의 토지수탈

(189) 자본주의적생산이 가장 일찌기 발전한 이딸리아에서는 농노제관계의 해체도 가장 일찌기 일어났다. 여기에서는 농노는 토지에 대한 어떠한 시효권도 얻기전에 해방되였다. 따라서 농노의 해방은 즉시로 그들을 법률의 보호밖에 놓인 무산자로 전화시켰는데 게다가 이 무산자는 이미 로마시대로부터 내려오는 태부분의 도시들에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여있는 새로운 주인을 발견하였다. 15세기말이래의 세계시장의 혁명[463]이 북부이딸리아의 상업패권을 전복하였을 때 반대방향의 운동이 시작되였다. 즉 도시의 로동자들은 대량적으로 농촌으로 구축되여 거기에서 원예적방식으로 경영하는 소규모경작을 미증유로 륭성시켰다.

영국에서는 농노제도가 14세기말에 사실상 없어졌다. 당시에는 그리고 더우기 15세기에는 인구의 압도적대다수(190)가 그들의 소유권이 어떠한 봉건적간판밑에 은폐되여있었다 할지라도 자유로운 자작농으로 구성되여있었다. 비교적 큰 령주소유지들에서는 종전에 그자신이 농노였던 토지관리인들이 자유로운 차지농업가에 의하여 구축되였다. 농업임금로동자는 일부분은 자기의 여가를 리용하여 대토지소유자의 토지에서 로동한 농민들로 구성되여있었으며 또 일부분은 독립적이며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다수가 아닌 본래의 임금로동자계급으로써 구성되여있었다. 후자도 또한 사실상은 자작농이였는데 왜냐 하면 그들은 임금외에 4에이커 또는 그 이상의 경작지와 오두막을 분여받고있었기때문이다. 그뿐만아니라 그들은 본래의 농민과 함께 공유지를 리용하였으며 거기에서 자기들의 가축을 사양하였고 연료로서 장작과 니탄 등등을 채취하였다.(191) 구라파의 모든 나라들에서 봉건적생

---

(190)《자기 손으로 자기자신의 땅을 경작하면서 부유한 생활에 만족한 소토지소유자들은…당시에는 지금보다 국민중의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있었다.…적어도 16만이 되는 토지소유자들이 그들의 작은 Freehold(자유보유지) (Freehold는 자유로 처분할수 있는 재산임) 를 경작하여 생활하였다. 그들은 가족까지 합하면 총인구의 7분의 1이상에 달할것이 틀림없다. 이 소토지소유자들의 평균수입은…60내지 70파운드로 평가된다. 계산에 의하면 자기자신의 소유지를 경작한자의 수는 타인의 토지의 차지농업가들의 수보다 크다.》(머콜리《영국력사》, 1854년 런던 제10판, 제1권, 333~334페지)—17세기 최후 30여년사이에도 아직 영국인구의 $\frac{4}{5}$는 농민이였다.(우와 같은 책, 413페지)—내가 머콜리를 인용하는것은 그가 력사의 체계적인 위조자로서 이러한 종류의 사실을 될수 있는대로 《베여버리고》 있기때문이다.

(191) 농노까지도 자기의 집에 붙은 령세한 토지의 소유자—비록 공납의 의무가 있는 소유자였지만—였을뿐만아니라 공유지에 대한 공동소유자이기도 하였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곳의 〔쉴레지엔의〕 농민들은 농노이다.》 그러나 이 농노들도 공유지를 소유하고있다. 《아직까지 쉴레지엔인으로 하여금 공유지를 분할하게 하지는 못하였으나 뉴마르크에서는 이 분할이 대성과리에 수행되지 않은 촌락은 없었다.》, (미라보《프리드리히대제치하의 프로이쎈 왕국에 대하여》, 1788년 런던판, 제2권, 125~126페지)

산은 될수 있는대로 많은 가신에게 토지를 분할하는것이 특징적이다. 봉건령주의 권력은 모든 군주의 권력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지대의 량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민의 수에 의하여 규정되는데 이 수는 자작농의 수에 의존하였다.(192) 그러므로 영국의 토지는 비록 노르만인의 정복[464] 후에 거대한 남작령으로 분할되여 그중 어떤것은 그 하나만으로 900개의 구앵글로색손 귀족령을 포괄하는것도 흔히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는 소농민경영이 의연히 전국 각지를 뒤덮고있었으며 다만 여기저기에 비교적 큰 령주토지가 끼여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은 그것과 동시에 나타나 15세기를 특징지은 도시의 번영과 아울러 대법관 포티스큐가 그의 저서 《영국법의 찬미》에서 그렇게도 웅변적으로 묘사하고있는 인민적부를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이 사정은 자본주의적 부의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기초를 창조한 변혁의 서곡은 15세기의 마지막 30여년과 16세기의 첫수십년간에 연주되였다. 제임즈 스튜어트경이 적절하게 말한바와 같이 《도처에 소용도 없이 저택과 성곽에 가득차있던》[465] 봉건적가신단이 해체됨으로써 법률의 보호밖에 놓인 대량의 무산자가 로동시장에 투입되였다. 왕권은 그자체가 자산계급적발전의 산물로서 절대적주권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면서 이 가신단의 해체를 폭력적으로 촉진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 유일한 원인은 아니였다. 오히려 대봉건령주가 왕권과 의회에 가장 완강하게 대항하면서 토지에 대하여 그자신과 동일한 봉건적권리를

(192) 토지소유의 순 봉건적조직과 발전한 소농민경영을 가진 일본은 대개는 자산계급적편견으로 서술된 우리의 모든 력사서적들보다도 구라파의 중세기의 정경을 훨씬 더 잘 묘사해주고있다. 중세기를 희생으로 하여 《자유주의적》 인것으로 되는것은 아주 편리한 일이다.

가지고있던 농민들을 그 토지로부터 구축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의 공유지를 탈취함으로써 비할수 없을만큼 더 많은 무산계급을 조성하였다. 이에 직접적인 원동력을 준것은 영국에서는 특히 플란드르의 양모공장제수공업의 번영과 그에 따르는 양모가격의 등귀였다. 대봉건전쟁[466]들로 말미암아 낡은 봉건귀족은 소멸되고 새로운 귀족이 시대의 아들이였는데 이 시대에 있어서는 화폐가 모든 권력중의 권력이였다. 따라서 경작지의 양목장화는 그들의 구호로 되였다. 해리슨은 그의 저서 《영국의 서술. 홀린세드 년대기의 권두》중에서 소농민에 대한 수탈이 국토를 얼마나 파괴하였는가를 서술하고있다. 《우리의 대략탈자들이 그 무엇을 꺼릴소냐!》 농민의 주택과 로동자의 오두막은 폭력적으로 헐어버렸거나 또는 허물어지게 내버려두었다. 해리슨은 이렇게 말하고있다.

《만약에 매개 기사령지의 현재상태를 과거의 재산목록과 비교하여본다면 무수한 가옥과 소농민경영이 소멸하였다는것, 지금에 와서는 토지가 훨씬 적은 수의 사람을 부양하고있다는것, 몇몇 새로운 도시가 번영하고있지만 많은 도시가 몰락하였다는것 등을 보게 될것이다.…파괴당하여 양목장으로 되였으며 령주의 저택밖에 남지 않은 도시와 촌락들에 관하여서도 나는 다소 말할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옛 년대기의 한탄은 항상 과장되여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생산관계에서의 혁명이 당시 사람들자신에게 준 인상을 정확하게 묘사하고있다. 대법관 포티스큐와 토머스 모어의 저술들을 비교하면 15세기와 16세기간의 차이를 똑똑히 볼수 있다. 손턴이 옳게 말하고있는바와 같이 영국의 로동계급은 어떤 과도적단계도 없이 그의 황금시대로부터 철의 시대로 전락한것이다.

립법은 이 변혁에 당면하여 실색하였다. 립법은 아직

《국민의 부》 즉 자본의 형성과 인민대중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 및 빈궁화가 모든 국책의 극치로 간주되는 그러한 문명 수준에는 서있지 않았다. 베이컨은 자기의 저서 헨리7세 치세사에서 이렇게 말하고있다.

《당시 (1488년) 경작지가 소수의 가축사양공에 의하여 쉽게 관리되는 목장 (양목장 등등) 으로 전화되는데 대한 원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유기계약이나 종신계약이나 1년계약의 차지농장들(자작농의 대부분은 이 1년계약에 의하여 살고있었다.)은 령주직영지로 전화되였다. 이로말미암아 인민은 피폐하였으며 그에 따라 도시, 교회, 10분의 1세도 피폐하였다.…이 폐해를 시정함에 있어서 왕과 당시의 의회의 지혜는 경탄할만 하였다.…그들은 인구를 감소시키는 공유지략탈과 이에 뒤따른 역시 인구를 감소시키는 목장경영에 대처하는 대책들을 취하였다.》

1489년의 헨리7세의 한 조례의 제19장은 적어도 20에이커의 토지를 가지고있는 일체 농민가옥의 파괴를 금지하였다. 헨리8세 제25년의 한 조례는 이 법률을 부활시키고있다. 이 조례는 특히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있다.

《다수의 차지농장과 수많은 가축 특히는 수많은 양이 소수인의 수중에 집중되고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지대는 심히 증대되였으며 경작은 크게 피폐하고 교회와 가옥들은 파괴되였으며 놀랄만큼 많은 인민대중은 자기자신과 가족을 먹여살릴수 없게 되였다.》

그러므로 이 법률은 피폐한 농가의 재건을 명령하고있으며 곡물경작지와 목장지와의 비률을 설정하는 등등의 일을 하고있다. 1533년의 한 조례는 수많은 소유자들이 24,000마리에 달하는 양을 소유하고있는것을 개탄하고 그 소유두수를 2,000마리로 제한하고있다.(193) 인민들의 원성도 헨리7세이래 150년에 걸치는 소차지농업가와 농민의 수탈을 방지하기

---

(193) 토머스 모어는 자기의 저서 《리상향》 에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 괴상한 나라에 관하여 말하고있다.(《리상향》 , 로빈슨 역, 아버 편찬, 1869년 런던판, 41페지)

위한 립법도 다같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그 비밀을 베이컨은 자기도 모르게 우리에게 루설하고있다. 그는 자기의 저서 《수필집, 또는 문명과 도덕에 관한 충언》 제29장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헨리7세의 조례는 일정한 표준의 농장과 농가를 조성한 점에서 즉 신민들로 하여금 충분히 유족하며 노예적이 아닌 상태에서 살게 하며 또 쟁기를 고용자의 수중에가 아니라 그의 소유자의 수중에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비률의 토지를 그 농장과 농가에 보존한 점에서 심원하며 경탄할만한것이다.》 (193a)

그러나 자본주의제도가 요구한것은 이와는 반대로 인민대중의 노예적상태이며 그들자신의 피고용자로의 전화이며 그들의 로동수단의 자본으로의 전화였다. 이 과도기에 립법은 또한 농촌의 임금로동자의 오두막에 최소한 4에이커의 토지를 보장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가 자기의 오두막에 하숙인을 받아들이는것을 금지하였다. 또 1627년 찰즈1세의 통치시에 폰드밀의 로져 크로커라는자는 폰드밀에 있는 그의 령지에 4에이커의 영구부속지가 없는 오두막을 세운탓으로 처

(193a) 베이컨은 자유롭고 유족한 농민과 우수한 보병과의 련관을 설명하고있다. 《유능한 사람들이 근심없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규모의 차지농장을 가지며 왕국의 토지의 큰 부분을 자작농 즉 귀족과 오두막농민(cottagers) 및 예속농과의 중간적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소유로 확보한다는것은 왕국의 권력과 위세를 유지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것이였다.…왜냐 하면 군대의 주력이 보병에 있다는것은…모든 가장 권위있는 군사전문가들의 일치한 견해이기때문이다. 그러나 우수한 보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예적으로나 가난하게 자라난 사람이 아니라 자유롭고 유족하게 자라난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한 국가에서 귀족과 신사들이 지나치게 중요시되는 한편 농촌주민과 경작자들은 그들의 로동자나 예속농에 불과하든가 또는 오두막농민 즉 집있는 거지에 불과하다면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는 아마 우수한 기병은 가질수 있을지 모르나 결코 우수하고 강한 보병은 가질수 없을것이다.…이것은 프랑스와 이딸리아 및 기타 일부 외국에서 볼수 있는데 그 나라들에서는 사실상 모든 주민이 귀족이 아니면 가난한 농민으로 되여있으며…그렇기때문에 그들은 자국의 보병대로 스위스인이나 기타의 고용군대를 사용하지 않을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결국 이 나라는 인민은 많으나 병사는 얼마 안되는것으로 된다.》 (《헨리7세의 치세사. 1719년에 발간된 켄니트의 저서 〈영국〉에서 그대로 재판함》, 1870년 런던판, 308페지)

벌받았으며 또 1638년 찰즈1세의 통치시에 구법령들 특히 4에이커의 토지에 관한 법률의 실시를 강요하기 위한 칙명위원회가 임명되였으며 또 크롬웰은 런던주변 4마일이내에 4에이커의 부속지가 없는 가옥의 건축을 금지하였다. 18세기의 전반에도 농촌로동자의 오두막에 1내지 2에이커의 부속지가 없을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현재는 그의 오두막에 작은 뜰이 붙어있거나 또는 그의 오두막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라도 적은 토지나마 빌릴수 있다면 그는 다행이다. 한터의사는 이렇게 말하고있다.

《지주와 차지농업가는 이 점에서는 서로 손을 잡는다. 오두막에 붙은 수에이커의 토지가 로동자를 너무나 독립되게 만들것이다.》(194)

인민대중에 대한 폭력적수탈과정은 16세기에 종교개혁과 그에 따르는 교회령의 대규모적인 절취에 의하여 무서운 새충격을 받았다. 종교개혁당시 천주교교회는 영국토지의 많은 부분의 봉건적소유자였다. 수도원 등등에 대한 억압은 그곳주민들을 무산계급으로 전화시켰다. 교회령 그자체는 대부분 왕의 탐욕적인 총신들에게 증여하였거나 또는 투기적인 차지농업가와 시민들에게 헐값으로 팔아넘겼는데 이들은 종전의 세습적소작인들을 대량적으로 축출하고 그들의 경지를 통합하여버렸다. 교회의 10분의 1세의 일부분에 대한 가난한 농민들의 소유권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고있었는데 이것이 암암리에 몰수되였다.(195) 엘리자베스녀왕은 영국을 한번 돌

---

(194) 한터의사 《공중위생. 제7차보고. 1864년》, 134페지. — 《분여되는 토지의 량이 〔구법률에 의하여〕 지금에 와서는 로동자들에게 지나치게 많아서 오히려 그들을 소차지농업가로 전화시킬만하다고 보고있다.》(죠지 로버츠 《지난수세기의 잉글랜드남부 제 군 인민의 사회사》, 1856년 런던판, 184페지)

(195) 《교회의 10분의 1세의 일부에 대한 빈민의 권리는 구법령에 의하여 명문으로 규정되여있다.》(타키트 《로동인구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의 력사》, 제2권, 804, 805페지)

아본후 《도처에 극빈민》[467]이라고 웨쳤다. 녀왕통치 제43년에 정부는 드디여 빈민구제세를 실시함으로써 극빈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이 법률의 작성자들은 그 리유를 표명하는것을 수치로 생각하였으며 그렇기때문에 모든 관례를 위반하고 어떠한 서언도 서두에 붙이지 않고 그것을 공포하였다.》(196)

이 법률은 찰즈1세 제16년의 법률 제4호에 의하여 영구적인것으로 선언되였으나 사실상 1834년에 이르러 비로소 보다 엄격한 새로운 형태를 취하게 되였다.(197) 종교개혁의

---

(196) 윌리엄 코비트《신교개혁사》, 제471절.

(197) 신교적《정신》은 특히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볼수 있다. 잉글랜드남부의 일부 토지소유자들과 부유한 차지농업가들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여 일리저버스의 빈민구제법을 어떻게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것인가에 대하여 10개 항목의 질문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당시의 저명한 법률가인 상급법정 변호사 스니그(후에 제임즈1세 치하에서는 판사)의 의견을 물었다. 《그중 제9항의 질문: 우리 교구내의 일부 부유한 차지농업가들은 본 조례 실시상의 모든 혼란을 제거할수 있는 명안을 생각해냈다. 그들은 교구내에 감옥을 설치할것을 제안하고있다. 이 감옥에 감금되기를 바라지 않는 빈민들에 대하여는 누구에게나 구제를 주지 않을것이다. 다음에 만약 본 교구의 빈민을 임차할 의향이 있는자는 그 빈민을 우리에게서 인수하려는 최저가격을 지적한 봉인된 신청서를 일정한 기일에 제출할것이라는 공시를 린근주민들에게 내여야 한다. 이 안의 작성자들은 린근의 군들에는 로동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또 로동하지 않고도 생활할만한 차지농장이나 배를 얻을 재산이나 신용이 없는자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하고있다. 이러한자들은 틀림없이 교구에 대하여 대단히 유리한 신청을 할 생각이 날지도 모른다. 만약 고용주의 보호하에서 빈민이 죽는 경우에도 그 죄는 고용주측에 있게 될것이다. 왜냐 하면 교구는 이 빈민들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것은 현행조례가 이와 같은 종류의 분별있는 대책을 허용하지 않지나 않을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당신이 알아두어야 할것은 이 군과 린접군들의 이여의 모든 자유보유자들도 우리에게 가담해서 하나의 법안 즉 빈민들을 감옥에 감금하며 강제로동을 시키는것을 허용하며 그리하여 감금되는것을 거부하는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어떤 구제도 받을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법안을 제안하도록 자기들의 하원 의원들을 추동할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빈곤한자들이 구제를 요구하는것을 막을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한다.》(R. 블레이키 《고대이래의 정치문헌의 력사》, 1855년 런던판, 제2권, 84, 85페지)—스코틀랜드에서는 농노제의 폐지가 잉글랜드에서보다 수세기 늦어서 실시되였다. 1698년에 있어서도 솔튼의 플레쳐는 스코틀랜드의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스코틀랜드에서 거지수는 20만이상으로 계산되고있다. 원칙상 공화주의자인 내가 제안할수 있는 유일한 구제책은 이전의 농노제의 구상태를 부활시키는것이며 자기의 생계를 독자적으로 보장할 능력이 없는자들을 모두 노예로 만드는것이다.》 또한 이든도 《빈민의 상태》, 제1권, 제1장, 60, 61

이러한 직접적인 영향은 그것의 가장 영속적인 영향은 아니였다. 교회소유는 고대적토지소유관계의 종교적보루로 되여있었다. 이 보루가 무너짐에 따라 그 관계도 더는 유지될수없었다.(198)

17세기의 마지막 수십년까지도 아직 독립적농민층인 자작농은 차지농업가계급보다 다수였다. 그들은 크롬웰의 주력을 이루고있었으며 머콜리의 고백에 의하더라도 주정꾸러기이며 구린내나는 융케르나 그들의 시종군인 농촌목사들—주인의 버림을 받은 《애첩》과 결혼하지 않으면 안되였던—에 비하면 유리한 지위에 있었다. 또 농촌임금로동자들까지도 공유지의 공동소유자였다. 1750년경에는 자작농층은 없어지고(199) 18세기의 마지막 수십년간에는 농민들의 공유지의 최후의 흔적이 사라졌다.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 농업혁명의 순 경제적인 동기는 도외시한다. 우리는 이 혁명의 폭력적공

페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극빈민의 기원은 농민의 자유에 있다. 공장제수공업과 상업은 우리 나라 빈민들의 진정한 량친이다.》 이든과 우에서 인용한 스코틀랜드인인 《원칙상 공화주의자》는 다만 농민을 무산자 또는 극빈민으로 만든것이 농노제의 페지가 아니라 그들의 토지소유의 페지라고 잘못 생각하고있다. —수탈이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 프랑스에서는 잉글랜드의 빈민구제법에 해당하는것은 1566년의 뭍렝의 법령과 1656년의 칙령이다.

(198) 로져즈씨는 당시 신교정통파의 고향이였던 옥스포드대학의 정치경제학교수였지만 그의 《영국의 농업과 가격의 력사》①의 서문에서 종교개혁에 의한 인민대중의 빈민화를 강조하고있다.

(199) 《식료품의 고가에 대하여 T. C. 번버리경에게 보내는 편지》, 서포크의 한 신사의 저작, 1795년 입스위치판, 4페지. 대차지농장제도의 광신적옹호자인 《식량의 현 가격과 농장규모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1773년 런던판)의 저자 (J. 아바스너트) 까지도 그 저서의 139페지에서 이렇게 말하고있다. 《나는 이 나라의 독립을 진실로 유지한 사람들인 자작농을 상실한것을 개탄하여마지않는다.…그리고 그들의 토지가 지금에는 독점자인 지주의 수중에 있으며 그것이 소차지농업가 즉 일이 있을 때마다 곧 불리여가는 예속농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조건으로 차지권을 보유하는 소차지농업가에게 임대되는것을 보게 되는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

① 이 책 775, 781페지를 보라. —편집자

간만을 문제로 한다.

스튜어트왕조의 복고시에 토지소유자들은 략탈을 법률에 의하여 수행하였는데 대륙에서는 어디서나 법률적우회로를 걷지 않고 수행되였다. 그들은 봉건적토지제도를 폐지하였다. 즉 국가에 대한 토지의 공납의무를 벗어버렸으며 농민층과 기타 인민대중에 대한 과세에 의하여 국가에 《보상》하였으며 또한 그들은 봉건적권리밖에 가지고있지 않았던 토지에 대한 근대적사유권을 요구하였으며 끝으로 정주법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은 사정의 변화를 참작한다면 따따르인 보리스 고두노브의 칙명이 로씨야농민에 준것과 동일한 영향을 영국의 노촌로동자들에게 주었다고 말할수 있는것이다.[468]

《명예혁명》[469]은 오렌지공 윌리엄3세(200)와 더불어 지주적 및 자본가적 부정축재자들을 지배자의 지위에 올려놓았다. 그들은 지금까지는 다만 조심스럽게 해오던 국유지의 절취를 거대한 규모로 실행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았다. 국유지는 증여하거나 헐값으로 팔아넘기거나 또는 직접 적략탈에 의하여 사유지에 병합되였다.(201) 이 모든것은 법률적상례를 조금도 고려함이 없이 수행되였다. 이와 같이 사

---

(200) 이 자산계급적영웅의 개인적도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있다. 《1695년에 아일랜드의 광대한 토지가 오크니부인에게 증여된것은 국왕의 총애가 얼마나 지극하였으며 부인의 세력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데 대한 공개된 증거이다.…오크니부인의 귀중한 봉사는 아마도 더러운 입술의 봉사였을것이다.》(대영박물관에 있는 슬로운 수고집중의 제4224호, 이 수고의 표제는 《싸머즈, 핼리팩스, 옥스포드, 서기관 버논 등등으로부터 쉬루즈버리공작에게 보낸 친서에서 볼수 있는 윌리엄왕, 선덜란드 등등의 성격과 행실》로 되여있다. 거기에는 진기한 일이 가득차있다.)

(201) 《일부분은 매도에 의하여, 일부분은 증여에 의하여 왕령을 비법적으로 양도한것은 영국력사에서 수치스러운 한장을 이루는것이며…국가에 대한 일대 사기로 되는것이다.》(F. W. 뉴먼 《정치경제학강의》, 1851년 런던판, 129, 130페지) {오늘의 영국의 대토지소유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소유를 획득하게 되였는가 하는데 대한 상세한 자료는 〔에반즈, N. H.〕 《우리 나라 구귀족》, 고귀한 신분을 가진자의 저서, 1879년 런던판을 보라. —F. E.}

기적방법으로 취득한 국유지는 교회로부터 략탈한 토지—그것이 공화혁명[470]당시에 다시 상실되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와 함께 영국과두지배의 오늘의 귀족령의 기초를 이루고있다.(202) 시민적자본가는 이 조치를 장려하였는데 그것은 특히 토지를 순수한 상품으로 전화하며 농업대경영의 령역을 확대하며 농촌으로부터 법률의 보호밖에 놓인 무산자의 그들에게 대한 공급을 증가시키는 등등을 위하여서였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토지귀족은 새로운 은행거두, 방금 알에서 깐 대금융업자, 그리고 당시 보호관세에 의하여 지지되고있던 대수공업공장주들의 자연적동맹자였다. 영국의 자산계급은 스웨리예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정당하게 자신의 리익을 위하여 행동하였다. 그런데 다른 점은 후자는 오히려 자기의 경제적보루인 농민과 손을 잡고 왕들이 과두지배로부터 왕령을 폭력적으로 탈환하는것을 (1604년이후부터, 그후에는 칼 10세와 칼 11세의 치하에서) 지지하였다.

공유지는 방금 고찰한 국유지와는 판이한것으로서 봉건제도의 외피하에서 존속한 고대게르만적제도였다. 우리가 이미 본바와 같이 공유지에 대한 폭력적략탈은 대개는 경지의 목장화를 수반하면서 15세기말엽에 시작되였으며 16세기에도 계속되였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과정은 개인적 폭행으로서 수행되였으며 이에 대하여 립법은 150년간이나 항쟁하였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8세기의 진보는 법률자체가 이제는 인민의 토지의 략탈도구로 되였다는 점에서 똑똑히 나타났다. 그렇다고 해서 대차지농업가들은 동시에 자기의 독립적인 소소한 사적방법을 포기한것은 아니

---

(202) 레컨대 베드퍼드공작가족—《자유주의의 산새》인 존 라슬경은 이 가족의 후손이다—에 관한 E. 버크의 소책자[471]를 참조하라.

다.(203) 이 략탈의 의회적형태는 《공유지울치기법》, 다시 말하면 지주가 인민의 토지를 사유지로서 자기자신에게 증여하는 법령, 인민수탈의 법령이다. F. M. 이든경은 공유지를 봉건령주 대신에 등장한 대토지소유자의 사유지라고 설명하는 자기의 교활한 변호사적변호론을 스스로가 전복하고있는데 그것은 그자신이 《공유지울치기에 관한 일반적의회조례》를 요구하며 따라서 그것을 사유지로 전화시키기 위하여서는 의회적인 정변이 필요하다는것을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수탈된 빈민에 대한 《손해배상법》을 립법부에 요구하였기때문이다.(204)

독립적자작농 대신에 1년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임차하는 소차지농업가이며 지주의 마음대로 좌우되는 예속적인 집단인 임의차지농업가가 등장하게 되자 특히 공유지의 체계적 절취는 국유지의 략탈과 아울러 18세기에 자본차지농장(205) 또는 상인차지농장(206)이라고 칭한 대규모차지농장의 팽창을 조장하였으며 농촌주민의 무산계급으로의 전화, 공업을 위한 그들의 《유리》를 촉진하였다.

그러나 18세기에는 아직 19세기와 동일한 정도로는 국민적부와 인민적빈궁과의 동일성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당시

---

(203) 《차지농업가들은 오두막농민들이 그들자신외에는 어떠한 집승도 보유하는것을 금지하고있는데 그 구실은 만약 그들이 가축이나 가금을 가지게 된다면 자기들의 곡간에서 사료를 훔치게 될것이라는것이다. 그들은 또한 오두막농민들을 근면하게 하려면 그들을 가난한 상태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있다. 그러나 실제 사실은 차지농업가들이 이와 같이 하여 공유지에 대한 일체 권리를 탈취한다는것이다.》 (《황무지울치기의 후과에 대한 정치적연구》, 1785년 런던판, 75페지)

(204) 이든 《빈민의 상태》 서문 (XVII, XIX페지)

(205) 《Capital farms.》 (《밀가루무역 및 곡물의 높은 가격에 관한 두 편지》. 한 실업가의 저작, 1767년 런던판, 19, 20페지)

(206) 《Merchant-farms.》 (《식량의 현가격이 높은 원인에 대한 고찰》, 1767년 런던판, 111페지, 주) 익명으로 출판된 이 우수한 저서의 필자는 목사 너새니얼 포스터이다.

의 경제문헌에서의 《공유지울치기》에 관한 극히 격렬한 론쟁은 이때문이다. 나의 수중에 있는 방대한 자료[472]중에서의 약간의 개소만을 인용하려 한다. 그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당시의 상태를 특히 생생하게 알수 있기때문이다.

한 격분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햇포드셔의 많은 교구에서는 평균 50~150에이커나 되는 24개의 농장이 3개의 농장으로 합병되였다.》(207) 《노샘프톤셔와 레스터셔에서는 공유지울치기가 대단히 성행하였으며 울치기에 의하여 생긴 새로운 령지들은 대부분 목장으로 되였다. 그 결과 이전에는 1,500에이커나 경작되였던 많은 령지들이 지금은 50에이커도 경작되지 않고있다.…이전의 주택, 곡간, 외양간 등등의 페허》는 이전 주민들이 남겨놓은 유일한 흔적이다. 《많은 곳에서는 100호의 집과 가족들이 불과…8호 내지 10호로 감소되였다.…15년 또는 20년전부터 비로소 울치기가 진행된 대부분의 교구들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울치기전에 토지를 경작한 토지소유자들에 비하면 극히 소수이다. 이전에는 20~30명의 차지농업가와 그리고 동일한 수의 비교적 작은 토지소유자 및 기타 주민들의 수중에 있었던 대령지들이 최근 울치기가 진행되여 4, 5명의 부유한 목축업자에 의하여 략취되는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전자들은 모두 자기의 가족과 또 자기들이 고용하고 먹여살린 다수의 다른 가족과 함께 자기들의 토지에서 축출되였다.》(208)

울치기의 구실하에서 린접한 지주들이 병탄한것에는 휴경지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일정한 지불을 하고 임차하든가 공동으로 경작하는 토지도 흔히 있었다.

《나는 여기에서 개방지와 기경지의 울치기를 말한다. 울치기를 옹호하는 저술가들까지도 울치기가 대차지농장의 독점을 강화하며 생활수단의 가격을 높이며 인구감소를 일으킨다는것을 인정하고있다.…그

---

(207) 토머스 라이트 《소농장의 독점과 관련하여 대중에게 한 간단한 호소》, 1795년판, 2, 3페지.

(208) 목사 애딩턴 《개방지울치기에 대한 찬성과 반대 리유의 연구》, 1772년 런던판, 37~43페지의 이곳저곳.

리고 현재 진행되고있는바와 같은 황무지의 울치기도 빈민으로부터 그의 생활수단의 일부를 략탈하며 그렇지 않아도 원래 지나치게 크던 차지농장을 더욱 크게 만든다.》(209)

프라이스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토지가 소수의 대차지농업가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면 소차지농업가들은 (이전에 이 박사는 이들을 《그들자신이 경작하는 토지의 생산물과 또 공유지에서 키우는 양이나 가금, 돼지 등등에 의하여 그들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고 따라서 생활수단을 살 필요가 거의 없는 많은 소토지소유자 및 소차지농업가》라고 불렀다.) 타인을 위한 로동에 의하여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며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것을 시장에서 사지 않으면 안될 사람으로 된다.…로동에 대한 보다 많은 강제가 실시되기때문에 아마도 더 많은 로동이 수행될것이다.…도시와 수공업공장은 장성할것이다. 왜냐 하면 일터를 구하는 많은 사람이 거기에로 몰려가기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차지농장의 집중이 필연적으로 조성되지 않을수 없는 방식이며 또한 실제로 다년간 우리 왕국에서 그러한 방식이 조성되고있다.》(210)

그는 울치기의 총결과를 다음과 같이 총괄하고있다.

《전체로 보아 하층인민계급의 상태는 거의 모든 점에서 악화되였으며 소토지소유자와 소차지농업가는 날품팔이군과 고용로동자의 처지로 떨어졌으며 동시에 생활유지는 이러한 상태에서 더욱 곤난하게 되였다.》(211)

---

(209) R. 프라이스 박사 《상속지불에 대한 고찰》, W. 모간 편집, 1803년 런던판, 제2권, 155~156페지. 포스터, 애딩턴, 켄트, 프라이스, 제임즈 앤더슨의 저술을 읽고 이것을 머칼러크의 목록 《정치경제학문헌》(1845년 런던판)중의 그의 가련한 아첨적잡담과 비교하여보라.

(210) R. 프라이스 박사 《상속지불에 대한 고찰》, 147, 148페지

(211) 우와 같은 책, 159~160페지. 이것은 고대로마를 상기시킨다. 《부자들은 불분할지의 최대부분을 장악하였다. 그들은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이 토지들을 다시 빼앗기게 되지 않으리라고 믿었으며 그리하여 부근에 있는 빈민들의 땅쪼각들을 합의하에 구입하든가 폭력으로 탈취하였으며 그 결과 지금에 와서는 그들은 개개의 경지가 아니라 광대한 령지를 경작하게 되였다. 여기에서 그들은 노예를 경작과 목축에 사용하였는데 왜냐 하면 자유민은 병역에 복무하게 되므로 그들을 일시킬수 없기때문이다. 노예는 병역에서 면제되여있었기때문에 자유로 번식할수 있으며 많은 자식들을 제공한다는 점

실제로 공유지의 략탈과 이에 수반한 농업혁명은 농업로동자들에게 급격한 영향을 주었기때문에 이든자신의 말에 의하더라도 그들의 임금은 1765~1780년간에 최저한도이하로 떨어졌으며 공적빈민구제금에 의하여 보충되기 시작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그들의 임금은 《겨우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활상수요를 충족시킬따름이였다.》고 하였다.

이제는 잠시 울치기의 옹호자이며 프라이스박사의 반대자인 한사람의 말을 들어보자.

《개방지에서 자기의 로동을 랑비하고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인구가 감소하였다는 결론을 내리는것은 옳지 않다.…만약 소농민들을, 타인을 위하여 로동하지 않으면 안될 사람으로 전화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로동이 생겨난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국민이 (전화된 농민은 물론 이에 속하지 않는다.) 틀림없이 희망할 리익일것이다.… 그들의 결합된 로동이 한개의 차지농장에서 사용된다면 보다 많은 생산물을 얻게 될것이며 그리하여 공장제수공업을 위한 잉여생산물이 조성될것이며 또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국가의 금광의 하나인 공장제수공업의 수는 생산되는 곡물량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될것이다.》(212)

《신성한 소유권》에 대한 가장 파렴치한 모독도, 인격에 대한 가장 란포한 폭행도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기초를

에서 노예를 소유한다는것은 그들에게 또 큰 리익을 주었다. 이리하여 강자가 모든 부를 자기 수중에 집중하였으며 전 국토는 노예로 충만되여있었다. 이딸리아인은 이와는 반대로 빈궁, 조세, 병역으로 시달리여 그 수가 점점 더 감소되고있었다. 평화시기가 도래하였을 때에도 그들은 아무런 활동도 할수 없게 되여있었는데 그것은 부자들이 모든 토지를 가지고있었으며 자유민 대신에 노예를 경지에 사용하고있었기때문이다.》(아피안 《로마의 내전》, 제1부, 제7장) 이 구절은 리찌니우스법[473]이전의 시대에 관한것이다. 로마의 평민의 몰락을 그렇게도 심하게 촉진한 병역복무는 칼대제가 독일자유농민을 급속히 봉건적 예속농과 농노로 전화시킨 주요한 수단이기도 하였다.

(212) (J. 아바스너트) 《식량의 현가격과 농장규모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124, 125, 128~129페지. 경향에 있어서는 반대이지만 이와 류사한 론의는 다른 저자에게서도 볼수 있다. 《로동자들은 그들의 오두막에서 축출되여 일처를 구하여 도시로 내몰린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다 많은 잉여생산물이 나오며 그리하여 자본이 증가한다.》((R. B. 씰리) 《국민의 위험》, 1843년 런던 제2판, XIV페지)

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그것들을 경제학자들은 스토아학파[474]적인 랭정한 심정으로써 고찰하는데 이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있는것은 특히, 경제학자일뿐만아니라 토리당적 경향을 가지고있으며 또한 《박애가》인 F. M. 이든경이다. 15세기의 마지막 30여년부터 18세기말에 이르기까지 인민에 대한 폭력적수탈을 수반한 일련의 허다한 략탈행위, 잔인한 행동, 인민의 고난도 그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쾌적한》 결론을 짓게 하였을따름이다.

《경지와 목장사이에는 적당한 비률이 설정되지 않으면 안되였다. 14세기의 전 기간과 15세기의 대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경지 2, 3에이커 지어는 4에이커에 대하여 목장 1에이커였다. 16세기중엽에는 이 비률이 변동되여 경지 2에이커에 목장 3에이커, 후에는 경지 1에이커에 목장 2에이커, 드디여는 경지 1에이커에 목장 3에이커라는 적당한 비률에 도달하였다.》

19세기에는 물론 농민과 공유지사이의 련관에 대한 기억조차 사라졌다. 근년의 일은 고사하고 1801년부터 1831년까지에 농촌주민에게서 략탈하여 의회를 통하여 지주들로부터 지주들에게 증여된 3,511,770에이커의 공유지에 대하여 농촌주민이 언제 한푼의 배상이라도 받은 일이 있는가?①

끝으로 농민으로부터의 토지의 최후의 대수탈과정은 소위 Clearing of Estates(토지의 청소—사실상은 토지로부터의 인간의 청소)이다. 우에서 본 모든 영국식수탈방법중에서 《청소》가 그 절정인것이다. 전장에서 이미 현대적상태를 본바와 같이 청소될 독립적농민이 더는 없는 오늘날에는 토지로부터의 오두막의 청소까지 실시되기때문에 농업로동자들은 그들이 경작하는 토지에서는 자기가 거주할수 있는 장소를 이미 발견할수 없다. 그런데 고유한 의미에서의 《토지청

① 이 책 774~819페지를 보라. —편집자

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현대적소설문학의 언약의 땅인 스코틀랜드의 고지에서만 알수 있다. 거기에서의 이 과정의 특징은 그것이 체계적인 성격을 가지고있으며 단번에 수행되는 그 규모가 크며(아일랜드에서는 지주들이 수개의 촌락을 일시에 《청소》해버리는데 이르렀는데 스코틀랜드고지에서는 독일의 공국만한 크기의 지면이 일시에 《청소》된다.) 그리고 또 수탈되는 토지소유의 형태가 특수하다는 점이다.

스코틀랜드고지의 켈트인은 씨족들로써 구성되여있으며 매개 씨족은 그들이 정착하는 토지의 소유자였다. 씨족의 대표자인 그의 수장 또는 《대인》은 이 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데 이것은 영국녀왕이 전 국토의 명의상 소유자인 것과 꼭 마찬가지이다. 영국정부가 이 《대인들》간의 내전과 스코틀랜드저지평원에 대한 그들의 부단한 침입을 진압하는데 성공하였을 때 씨족의 수장들은 그들의 종래의 략탈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며 다만 그 형태를 바꾸었을따름이다. 그들은 자기의 권위로써 그들의 명의상 소유권을 사적소유권으로 전화시켰으며 씨족성원들의 반항에 봉착하자 공공연한 폭력으로써 씨족성원들을 토지에서 추방하기로 결심하였다. 뉴먼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동일한 리유로써 영국왕은 능히 그의 신민을 바다속으로 몰아넣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것이다.》(213)

스코틀랜드에서 왕위참망자의 최후반란[475]직후에 개시된 이 혁명의 초기단계에 대하여는 제임즈 스튜어트경과(214) 제

---

(213) F. W. 뉴먼 《정치경제학강의》, 1851년 런던판, 132페지.

(214) 스튜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이 토지의 지대 (그는 그릇되게도 이 지대라는 경제적범주를 씨족수장에게 납부하는 탁스만[476]의 공납에 사용하고있다.) 는 그 토지규모에 비하면 극히 적지만 한 차지농장이 부양하는 인원수에 관하여 말한다면 아마도 스코틀랜드고지의 한쪼각의 토지는 가장 풍요한 지방의 동일한 가치의 토지보다

임즈 앤더슨(215)의 저서에서 찾아볼수 있다. 18세기에는 토지에서 축출된 게일인[477]에게는 게다가 또한 국외로 이주하는 것마저 금지되였는데 그것은 그들을 글라스고 기타의 공장도시들로 몰아넣기 위한것이였다.(216) 19세기에 지배적이였던 방법의 실례로서(217) 여기에서는 싸덜런드공작부인이 실시한 《청소》를 들면 충분하다. 경제학에 조예가 깊은 이 인물은 통치권을 장악하자 곧 경제적근본치료책을 취하여 종전의 류사한 과정으로 말미암아 그 주민수가 이미 15,000명으로 감소되였던 전체 군을 양목장으로 전화시킬것을 결심하였다. 1811년부터 1820년까지에 이 15,000의 주민, 약 3,000호의 가족은 체계적으로 축출되고 소멸되였다. 그들의 모든 촌락은 파괴되고 소각되였으며 모든 경지는 목장으로 전화되였

10배나 더 많은 사람을 부양한다는것을 알게 될것이다.》(제임즈 스튜어트 《정치경제학원리연구》, 1767년 런던판, 제1권, 제16장, 104페지)

(215) 제임즈 앤더슨 《민족적기업정신의 고무대책에 관한 고찰》, 1777년 에딘버러판.

(216) 폭력적으로 수탈당한 사람들은 1860년에 허위적인 약속밑에 카나다로 이송되였다. 그들중의 일부는 산이나 부근 섬에 도주하였다. 그들은 경찰의 추격을 받아 격투끝에 빠져달아났다.

(217) A. 스미스의 저서를 주석한 뷰캐넌은 1814년에 다음과 같이 썼다. 《스코틀랜드고지에서는 낡은 소유상태가 날마다 폭력적으로 변혁되고있다.…지주는 세습차지농업가(이 범주도 또한 여기에서 잘못 사용되고있다.)에 대하여 고려함이 없이 토지를 최고액을 지불하는자에게 제공하며 그리하여 만일 그가 개량자인 경우에는 지주는 곧 새로운 경작체계를 채용한다. 종전에 소농민들로 덮여있던 토지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물량에 비례하여 주민이 살고있었다. 그러나 개량된 경작과 증가된 지대의 새로운 체계하에서는 가급적 적은 비용으로 가급적 많은 생산물을 얻으려고 노력하게 되며 이 목적을 위하여 이제는 무용지물로 된 모든 일군들이 해고된다.…고향에서 추방된 사람들은 공장도시에서 생활방도를 찾는다.…》(데이비드 뷰캐넌, 《A. 스미스의 〈제 국민의 부〉…에 관한 고찰》, 1814년 에딘버러판, 제4권, 144페지) 《스코틀랜드의 귀족들은 마치도 잡초를 뽑아버리듯이 농민가족을 수탈하였으며 또한 인도인이 복수심에 가득차 야수의 소굴을 짓부시듯이 그의 주민과 촌락을 짓부시였다.…인간이 양가죽이나 또는 양다리고기나 지어는 그보다 값없는것들과 교환된다.…몽고인이 중국북부지방에 침입하였을 때 그들의 회의에서 주민을 소탕하고 그들의 토지를 목장으로 만들자는 제의가 있었다. 스코틀랜드고지의 많은 지주들은 이와 같은 제안을 자국에서 자국민에 대하여 실시하였다.》(죠지 엔저 《각국의 인구에 대한 연구》, 1818년 런던판, 215, 216페지)

다. 브리텐병사들이 이것을 집행하기 위하여 파견되였으며 토착민들과 충돌하게 되였다. 자기의 오두막에서 떠나가기를 거부한 로파는 불길속에서 타죽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귀부인은 아득한 옛날부터 씨족의 소유에 속하였던 794,000 에이커의 토지를 자기의것으로 만들었다. 그는 추방된 토착민에게 매호당 2에이커씩 약 6,000에이커의 토지를 연해지구에 배당하였다. 이 6,000에이커의 토지는 종전에는 황무지였으며 소유자에게 아무런 수입도 가져다주지 못하였던것이다. 이 공작부인은 그의 고매한 심정에서 수세기동안 그의 가문을 위하여 피땀을 흘려준 씨족성원들에게 에이커당 평균 2실링 6펜스의 지대로 소작을 주었다. 씨족민들로부터 략탈한 전체 토지를 그는 29개의 대차지양목장으로 분할하였는데 그 매 양목장에는 대개는 잉글랜드인 차지농업가의 머슴군들이 한호씩 거주하였다. 1820년에는 벌써 15,000명의 게일인이 131,000마리의 양으로 교체되였다. 토착민중 해변에 추방된 부분은 어업으로 생활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량서동물로 되여 어떤 영국저술가가 말한바와 같이 반은 륙상에서, 반은 수상에서 생활하였는데 그러나 수륙을 합하더라도 그들의 생활의 절반이 보장되였을뿐이다.(218)

그러나 정직한 게일인들은 씨족의 《대인》에 대하여 산악랑만적숭배를 하여온 대가로서 한층 더 가혹한 봉변을 당

---

(218) 싸덜런드의 현 공작부인이 아메리카공화국의 흑인노예에 대한 자기의 동정을 표시하기 위하여—남북전쟁[8]시기에 이 공작부인은 다른 모든 귀부인들과 함께 이러한 동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잊고있었는데 당시 모든 《고귀한》 영국인들의 심장은 노예소유자들에게 동정을 하였던것이다.—《톰아저씨의 오두막》의 저자, 비쳐—스토우부인을 런던에서 호화롭게 환대하였을 때 나는 《뉴욕연단》지에서 싸덜런드의 노예들의 상태에 대하여 썼다.[476](나의 이 론문의 일부를 케어리는 자기의 저서 《노예무역》, 1853년 필라델피아판, 202~203페지에서 인용하고있다.) 나의 론문은 스코틀랜드의 한 신문에 전재되여 이 신문과 싸덜런드가문에 대한 아첨자들과의 사이에 격렬한 론쟁을 일으켰다.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물고기냄새가 《대인들》의 코에 들어갔다. 그들은 거기에 돈벌이가 있는것을 알아차리고 그 해변을 런던의 대어상들에게 임대하였다. 게일인들은 다시금 추방되였다.(219)

그러나 나중에 양목장의 일부가 이번에는 수렵장으로 재전화되였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잉글랜드에는 참다운 산림은 없다. 귀족들의 수렵장에 있는 사슴은 체질로 보아 가축이나 다름없으며 런던시 참의회 의원들과 같이 살찌고있다. 그러므로 스코틀랜드는 《고귀한 정열》의 마지막 도피장이다. 1848년에 싸머즈는 이렇게 쓰고있다.

《스코틀랜드고지에서는 산림면적이 대단히 확장되였다. 게이크의 이쪽에는 글렌페시의 새 산림이 있으며 저쪽에는 아드베리키의 새 산림이 있다. 같은 방향에는 최근에 창설된 광대한 황무지인 블랙마운트가 있다.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아버딘부근으로부터 오반의 바위산에 이르기까지 지금에는 산림이 길게 이어져있으며 고지의 다른 지방에는 록아케이그, 글렝개리, 글렌모리스톤 등등의 새로운 산림이 있다.…토지의 양목장으로의 전화는…게일인들을 보다 척박한 토지로 몰아냈다. 지금에 와서는 사슴이 양을 대체하기 시작하고 게일인들을 일층 비참한 빈곤에 몰아넣고있다.…사슴수렵림(219a)과 인민은 공존할수 없다. 어느 한쪽이 반드시 자리를 내놓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앞으로의 25년동안에 수렵장이 그 수와 규모에 있어서 과거 25년동안에 증가한 정도로 증가한다면 한사람의 게일인도 그의 향토에 남지 않게 될것이다. 고지의 지주들간의 이러한 운동은 부분적으로는 류행 즉 귀족적인 쾌감,

---

(219) 이 어물거래에 관하여 재미있는 이야기가 데이비드 어커트씨의 《문서집. 신총서》에 있다.—내쏘우 W. 씨니어는 우에서 인용한 유저에서 《싸덜런드셔의 처사를 유사이래 가장 온정있는 〈청소〉의 하나로서》 특징짓고있다(《아일랜드에 관한 일지, 담화 및 소론》, 1868년 런던판 〔282페지〕).

(219a) 스코틀랜드의 《사슴수렵림》에는 한그루의 나무도 없다. 벌거벗은 산에서 양을 몰아내고 그대신에 사슴을 몰아넣고 이것을 《사슴수렵림》이라고 칭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조림이란 말도 안된다!

수렵도락 등등에 기인하고있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그들은 오직 리득에 착안하고 사슴거래를 하는것이다. 왜냐 하면 수렵장으로 된 고지는 많은 경우에 양목장으로 된 동일한 지면보다 비할바없이 더 유리한 것이 사실이기때문이다.…수렵지를 구하는 사람들은 돈주머니가 허용하는대로 값을 낸다.…스코틀랜드의 고지가 겪은 고통은 잉글랜드가 노르만왕들의 정책에 의하여 당한 그것에 못지 않게 혹심한것이였다. 사슴은 더욱 자유로운 놀이터를 얻었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협착한 지역으로 몰리여갔다.…인민의 자유는 하나하나씩 빼앗기였다.…그리고 또 억압은 나날이 증대하여간다. 주민의 청소와 구축은 아메리카나 오스트랄리아의 황야에서 수목과 수풀을 뽑아 없애는것과 꼭 마찬가지로 확고한 원칙으로서, 농업상의 하나의 필요한 조치로서 지주들에 의하여 수행되며 이 처사는 조용히 사무적으로 수행된다.》(220)

---

(220) 로버트 싸머즈 《스코틀랜드고지에서 온 편지. 또는 1847년의 기근》, 1848년 런던판, 12~28페지의 이곳저곳. 이 편지는 처음 《타임즈》지에 게재되였다. 영국의 경제학자들은 물론 1847년의 게일인들의 기근을 그들의 인구과잉으로써 설명하였다. 여하튼 그들은 자기의 식료품을 《압박》하였다는것이다. —《토지청소》 즉 독일에서 말하는 《Bauernlegen》은 30년전쟁후에 독일에서 특히 성행하였으며 1790년에도 작센선제후국에서 농민폭동[479]을 일으켰다. 그것은 주로 독일동부에서 성행하였다. 프로씨아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프리드리히2세가 비로소 농민에게 소유권을 보증하였다. 쉴레지엔을 정복한후 그는 지주들을 강요하여 오두막, 곡간 등등을 재건하게 하였으며 농민의 소유지에 가축과 도구들을 구비하도록 하였다. 그는 그의 군대를 위하여 병사가 필요하였으며 그의 국고를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필요하였다. 그것은 그렇다 하고 프리드리히2세의 재정문란과 전제주의, 관료주의 및 봉건주의의 혼합정부밑에서 농민들이 얼마나 유쾌한 생활을 하였는가 하는것은 그의 열렬한 찬미자인 미라보의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엿볼수 있다. 《아마는 독일북부농민의 주요한 재부의 하나이다. 그러나 인류를 위하여 불행하게도 그것은 빈곤을 방지하는 수단일따름이지 행복에로의 길은 아니다. 농민은 직접세, 부역 각종 강제봉사로 말미암아 파멸당하며 또한 그뿐만아니라 그는 자기가 구입하는 모든 물건에 대하여 간접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그리고 완전한 파멸은 그가 자기의 생산물을 자기가 원하는 장소나 원하는 값으로 팔수 없다는데 있다. 그는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보다 싸게 제공하여주는 상인에게서 사도 안된다. 이 모든 사정으로 말미암아 점차 그는 파멸되며 방적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그는 직접세조차 물수 없을것이다. 방적업은 그의 처자와 남녀하인들 및 그자신의 힘을 리용할수 있게 함으로써 그에게 보조수입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보조수입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활은 얼마나 비참한가! 여름에는 경작과 수확을 위하여 죄수처럼 고되게 일하며 9시에 자고 2시에 일어나 일을 처리한다. 겨울에는 좀 더 휴식하여 체력을 회복하여야 할것이지만 세금을 물기 위하여 생산물을 팔지 않으면 안된다면 그에게는 농량과 종자용 곡물도 부족할것이므로 이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그는 방적하지 않으면 안된다.…그나마 최대의 힘을 다하여야 한다.

교회령의 략탈, 국유지의 사기적양도, 공유지의 절취, 무자비한 테로로써 수행된 봉건적 및 씨족적 소유의 현대적사유로의 략탈적인 전화—이것들은 각각 시초축적의 목가적방법이였다. 이것들은 자본주의적농업을 위한 령역을 점령하였으며 토지를 자본에 합체시켰으며 도시의 산업을 위하여 필

그러므로 겨울에는 농민은 12시나 1시에 자고 새벽 5시나 6시에 일어나든가 또는 9시에 자고 2시에 일어나며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일생동안 매일 그러하다. 이와 같은 과도한 불면과 과도한 로동으로 사람은 상하며 그리하여 농촌에서는 남자나 녀자나 도시에서보다 훨씬 더 일찌기 늙는다.》(미라보 《프리드리히대제치하의 프로이쎈왕국에 대하여》, 제3권, 212페지이하)

제2판에 대한 추가: 1866년 3월, 우에서 인용한 로버트 싸머즈의 저서가 발간된지 18년후에 리언 리바이교수가 기예협회[281]에서 양목장을 수렵장화하는데 관하여 일장의 연설을 하였는데 거기에서 그는 스코틀랜드고지에서의 황폐화의 진전을 설명하고있다. 특히 그는 이렇게 말하고있다. 《인구감소와 토지의 순전한 양목장으로의 전화는 지출이 없이 수입을 얻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였다.…양목장이 사슴수렵림으로 교체되는것이 고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일반적현상이였다. 일찌기 양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하여 인간이 구축된것처럼 야수들에게 양이 구축되고있다.…포파셔의 델후지백작령으로부터 죤 오그로쯔에 이르기까지 한때도 산림지를 떠나지 않고 갈수 있다.…대부분의 지역에는 〔이 산림의〕 여우, 살쾡이, 너구리, 족제비, 산토끼 등등이 살고있다. 최근에는 집토끼, 다람쥐, 쥐도 들어왔다. 극히 비옥하고 광활한 목장으로서 스코틀랜드통계에 나타나던 광대한 지대가 이제 와서는 일체 경작과 개량으로부터 배제되여 전적으로 소수인의 수렵도락—그나마 이것은 1년중 짧은 기간밖에 계속되지 않는다—을 위하여 바쳐지고있다.》

1866년 6월 2일의 런던 《경제학자》 잡지는 이렇게 쓰고있다. 《스코틀랜드의 한 신문은 지난 주에 다른 보도들과 함께 특히 이렇게 전하고있다. 〈싸덜런드셔의 가장 훌륭한 한 양목장에 대해서 현재의 임대계약이 만기로 될 때에는 1년에 1,200파운드의 지대를 제공하겠다는 신청이 최근에 들어왔는데 그 목장은 사슴수렵림으로 전화된다!〉 이것은 한때 노르만정복자가 소위 새 산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36개의 촌락을 파괴한 당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봉건적본능의 표현이다.…스코틀랜드의 가장 비옥한 수개의 지역을 포괄하는 200만에이커의 토지가 황폐될대로 황폐되였다. 글렌틸트의 야초는 퍼스군의 가장 양분있는 풀로 간주되고있었다. 벤올더의 사슴수렵림은 베이드노크의 넓은 지방에서도 가장 좋은 풀밭이였다. 블랙마운트삼림의 일부는 흑면양에 대하여는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우수한 목장이였다. 수렵도락을 위하여 황폐화된 토지의 크기에 관하여서는 그것이 퍼스군전체보다도 훨씬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는 사실로부터 상상할수 있을것이다. 이와 같은 폭력적황폐화에 의하여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생산원천을 잃었는가 하는것은 벤올더의 수렵림이 15,000마리의 양을 기를수 있었다는것과 그리고 그것이 스코틀랜드의 전체 수렵구의 $\frac{1}{30}$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 알수 있을것이다.…이 수렵지는 모두 전혀 비생산적이며…북해의 물속에 잠겨버린것과 마찬가지이다. 립법의 강권은 이러한 인공적인 황무지화 또는 황폐를 응당 없애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요한, 법률의 보호밖에 놓인 무산계급의 공급을 조성하였다.

3. 15세기말이후의 피수탈자에 대한 피비린 립법. 임금인하를 위한 제 법률

봉건적가신단들의 해체에 의하여 또 단속적인 폭력적토지수탈에 의하여 추방된 사람들인, 이 법률의 보호밖에 놓인 무산계급은 그들이 세상에 나타난것과 동일한 속도로 신흥공장제수공업에 의하여 흡수될수는 도저히 없었다. 또한 그들의 관습으로 된 생활궤도에서 갑자기 내몰린 사람들이 그만큼 갑자기 새로운 상태의 규률에 순응할수도 없었다. 그들은 대량적으로 거지, 도적, 류랑자로 되였는데 그중 일부는 자체의 습성으로 그렇게 되였지만 대부분은 사태의 강제로 인하여 그렇게 되였다. 그때문에 15세기말과 16세기전체를 통하여 서구라파전체에서 류랑에 대한 피비린 립법이 실시되였던것이다. 오늘날의 로동계급의 선조들은 우선 그들이 류랑자와 극빈민으로 부득이 전락된 죄로 징벌을 받았다. 립법은 그들을 《자유의사에 의한》 범죄자로 취급하였으며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낡은 관계하에서 계속 로동하느냐 안하느냐 하는것이 그들의 선량한 의사에 달렸다고 보았다.

영국에서 이러한 립법은 헨리7세의 통치시에 시작되였다.

헨리8세, 1530년. 늙고 로동능력이 없는 거지는 거지면허를 받는다. 그와는 반대로 건장한 류랑자는 태형과 구금을 당한다. 그들은 짐차뒤에 결박되여 몸에서 피가 흐르도록 매를 맞고 그다음에 그들의 출생지 또는 그들이 최근 3년간 거주한 곳으로 돌아가서 《로동에 종사하겠다.》는 맹세를 한

다. 얼마나 잔인한 풍자인가! 헨리8세 제27년에는 이 법규를 반복하였는데 거기에 새로 더 보충하여 일층 엄격하게 만들었다. 류랑죄로 재차 체포되면 다시 태형에 처하고 귀를 절반 자르며 세번 체포되면 당자는 중죄범인으로서 또 공동체의 적으로서 사형에 처한다.

에드워드6세. 그의 통치 제1년인 1547년의 한 법규는 로동하는것을 거절하는자는 그를 게으름뱅이라고 고발하는자의 노예로 선고된다고 규정하고있다. 주인은 빵과 물, 멀건 죽과 그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고기부스러기로써 자기의 노예를 부양하여야 한다. 그는 채찍과 쇠사슬로써 노예가 아무리 싫어하는 일이라도 시킬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만약 노예가 도주하여 14일간이 되면 그는 종신노예의 선고를 받으며 그의 이마나 등에 S자①의 락인을 찍히며 만약 그가 세번째 도주하면 나라에 대한 반역자로서 사형을 당한다. 주인은 노예를 모든 동산이나 가축과 꼭 마찬가지로 팔아넘기며 유언으로 물려주며 노예로서 임대할수 있다. 만약 노예들이 무엇이든 주인을 반대하는 기도를 하면 그들은 역시 사형을 당한다. 치안판사는 고소에 근거하여 도주한 노예를 수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도주한 방랑자가 3일간 일없이 돌아다닌것이 판명되면 그는 출생지로 끌려와서 불에 달군 쇠로 가슴에 V자②의 락인을 찍히며 또 거기에서 쇠사슬에 매워 도로작업 및 기타 작업에 사용된다. 자기의 출생지를 기만한 류랑자는 처벌로서 그곳의 주민 또는 단체의 종신노예로 되며 S자의 락인을 찍힌다. 누구나 류랑자의 자녀를 그에게서 빼앗아 도제로서 남자는 24세, 녀자는 20세까지 사용할

① S는 영문 "slave"(《노예》)의 첫번째 자모이다. —편집자

② V는 영문 "vagabond"(《방랑자》)와 "vagrant"(《류랑자》)의 첫번째 자모이다. —편집자

권리가 있다. 만약 그들이 도주하면 상기 년령에 달할 때까지 그들은 장주의 노예로 되여야 하며 장주는 그들을 마음대로 쇠사슬에 붙들어매거나 채찍으로 때리거나 할수 있다. 모든 주인은 자기 노예의 목, 팔 또는 다리에 쇠고리를 채워 용이하게 식별하며 자기의것임을 더욱 확실하게 할수 있다.(221) 이 법규의 마지막부분은 빈민들이 그들에게 음식물을 주고 일을 제공하려는 지방이나 개인에게서 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러한 교구노예는 19세기에 들어와서도 오래동안 방랑인이라는 이름으로 잉글랜드에 보존되고있었다.

엘리자베스, 1572년. 14세이상의 면허없는 거지들은 만약 1년간 그들을 사용하려는자가 없는 경우에는 혹독한 매를 맞고 또 왼편 귀에 락인을 찍힌다. 재범인 경우 18세이상이고 또 2년간 그들을 사용하려는자가 없을 때에는 사형에 처하지만 3범인 경우에는 용서없이 나라에 대한 반역자로서 사형에 처한다. 이와 류사한 법규로서는 엘리자베스 제18년의 법률제3호가 있으며 또 1597년의 법규도 있다.(221a)

---

(221) 《산업 및 상업에 관한 론술》(1770년판)의 저자는 이렇게 지적하고있다. 《에드워드6세의 통치시기에 영국인은 참으로 그 이상 없는 열성을 가지고 공장제수공업을 장려하며 또 빈민들을 일시키는데 힘쓴것 같다. 이것은, 모든 류랑자는 락인을 찍히여야 한다고 규정한 주목할만한 법규가 있었다는것으로도 알수 있다.》(5페지)

(221a) 토머스 모어는 그의 저서 《리상향》(41~42페지)에서 이렇게 말하고있다. 《이리하여 자기 고향의 진짜고질이라고도 할 욕심꾸러기이며 만족할줄 모르는 대식가는 수천에이커의 토지를 자기 수중에 통합하여 나무울타리나 담을 돌려치며 또는 폭력과 옳지 않은 방법으로 본래의 소유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모든것을 팔지 않을수 없게 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그들은 이 소유자들을 이러저러한 수단으로 갖은 방법을 다하여 못살게 굴며 그리하여 이들은 드디여 떠나지 않을수 없게 된다. —이 가난하고 정직하며 불쌍한 사람들! 즉 남자도 녀자도, 남편도, 마누라도, 부모 없는 자식도, 홀어미도, 젖먹이가 달린 불쌍한 어미도 그리고 자산은 적고 식구는 많은 (왜냐 하면 농사일은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였기때문이다.) 모든 세대가 터벅터벅 떠나가게 된다. 즉 낯익고 정든 고향을 등지고 정처없이 떠나간다. 그들의 살림기구는 큰 가치는 없는것이지만 그래도 통털어 팔면 다른 사정하에서라면 얼마간 도움이 될수도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불의에 집밖으로 쫓겨나기때문에 그들은 헐값으로 그것들을 팔아버리지 않을수 없다. 그리고 마

제임즈1세. 방랑하면서 구걸하는자는 부랑자 및 류랑자로 선고된다. 즉결재판소[480]의 치안판사는 그들을 공개적태형에 처하며 초범인 경우에는 6개월, 재범인 경우에는 2년간 투옥시킬 권한을 가진다. 옥중에 있는 동안 그들은 치안판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때마다 또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회수만큼 매를 맞는다.…시정할 가망이 없는 위험한 부랑자는 왼편 어깨에 R자①의 락인을 찍히고 강제로동에 처하며 결식죄로 재차 체포되면 용서없이 사형을 받는다. 18세기초에 이르기까지 유효하였던 이 법규들은 앤녀왕 제12년의 법률 제23호에 의하여 비로소 폐지되였다.

류사한 법률은 프랑스에도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17세기 중엽에 빠리에 소위 류랑자왕국이 창립되였다. 이미 루이16세의 초기에도(1777년 7월 13일부의 칙령) 16세로부터 60세에 이르는 건전한자로서 생활수단과 직업이 없는자는 갈레선을 젓는 형벌에 처한다. 이와 류사한 법령으로서는 1531년

지막 한푼을 써버릴 때까지 방황한 끝에는 도적질을 하고 그리하여 법률에 의하여 교수형을 당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걸을 하러 나서든가 하는외에 그 무슨 다른 도리가 있겠는가? 구걸을 하러 나선다 해도 그들은 건들거리고 일하지 않는다는 리유로 류랑자로서 투옥된다. 그들은 아무리 일을 하려고 원하여도 그들에게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는데 그들은 일하지 않는다는 죄로 고발된다.》 토머스 모어의 말에 의하면 불가피하게 도적으로 된 이 불쌍한 난민들중에서 《72,000명의 대소도적이 헨리8세의 통치시대에 사형당하였다》.(홀린쉐드《영국의 서술》, 제1권, 186페지) 엘리자베스시대에 《류랑자들은 줄을 지어 처형되였다. 그 당시에는 어데서이든 300명 내지 400명이 교수대에 오르지 않은 해는 보통 없었다》.(스트라이프《엘리자베스녀왕성세시의 종교개혁과 국교의 확립 및 기타 영국교회내 각종 사변들의 년대기》, 1725년 제2판, 제2권)이 스트라이프의 말에 의하면 서머셋셔에서는 단 한해에 40명이 사형을 당하였으며 35명이 락인을 찍혔으며 37명이 태형을 받았으며 그리고 183명의 《시정할 가망이 없는 악한》들은 석방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이와 같이 많은 수의 피소자들도 치안판사의 태만과 인민의 어리석은 동정으로 인하여 처벌받아야 할 실제범죄자수의 $\frac{1}{5}$도 되지 않는다.》 그는 보태여 이렇게 말한다. 《잉글랜드의 다른 군들의 형편은 서머셋셔보다 나을것이 없었으며 많은 군들은 그보다 더 나쁘기까지 하였다.》

---

① R은 영문 "rogue"(《부랑자》)의 첫번째 자모이다. 一편집자

10월의 니데를란드에 대한 카를로스5세의 법령, 1649년 6월 25일의 련합주의 고시 등등이 있다.

이와 같이 폭력적으로 토지를 수탈당하고 추방되여 류랑자로 된 농촌주민은 이 기괴한 테로적인 법률에 의하여 채찍과 락인과 고문을 받으면서 임금로동제도에 필요한 훈련을 받았다.

한 극에는 로동조건들이 자본으로서 나타나며 다른 한 극에는 자기자신의 로동력이외에는 아무것도 팔것이 없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것만으로는 그들로하여금 자원적으로 자신을 팔지 않을수 없도록 하기에 불충분하다. 자본주의적생산의 진전에 따라 교육, 전통, 관습에 의하여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요구를 자명한 자연법칙으로 인정하는 로동계급이 발전한다. 발전한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의 조직은 일체 저항을 분쇄하며 상대적과잉인구의 부단한 생산은 로동에 대한 수요공급의 법칙을, 따라서 또 로임을 자본의 증식욕에 상응하는 궤도내에 보존하며 경제적관계의 무언의 강제는 로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지배를 확정한다. 경제외적, 직접적폭력도 물론 의연히 적용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만 례외적이다. 일반적인 정형하에서는 로동자를 《생산의 자연법칙》에 내맡겨둘수 있다. 즉 생산의 조건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것들에 의하여 보장되며 영구화되는 자본에의 종속에 내맡겨둘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생산의 력사적생성기에는 그렇지 않았다. 신흥자산계급은 로임을 《조절》하기 위하여 즉 잉여가치를 짜내는데 적합한 한계내에 제한하기 위하여, 로동일을 연장하여 로동자자신을 정상적인 정도로 종속시켜두기 위하여 국가권력이 필요하며 또한 그것을 리용한다. 이것이 소위 시초축적의 하나의 본질적계기이다.

14세기 후반기에 발생한 임금로동자계급은 당시에는 그리고 그다음세기에는 인민의 극히 보잘것없는 한 부분을 이루고있었으며 그 지위는 농촌의 독립적농민경영과 도시의 동업조합적조직에 의하여 강력한 지지를 받고있었다. 농촌에서나 도시에서나 고용주와 로동자는 사회적으로 호상 접근하고있었다. 자본에의 로동의 종속은 다만 형식적인것에 불과하였다. 즉 생산방식자체는 아직 특별한 자본주의적인 성격을 띠고있지 않았다. 자본의 가변적요소는 그 불변적요소에 비하여 큰 우위를 차지하고있었다. 이때문에 임금로동에 대한 수요는 자본의 축적이 장성할 때마다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임금로동의 공급은 완만하게 뒤따라가는데 불과하였다. 국민생산물의 현저한 부분은 후에는 자본의 축적기금으로 되였지만 그 당시에는 아직 로동자의 소비기금으로 들어갔다.

처음부터 로동자에 대한 착취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그 발전행정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로동자에 적대적이였던, 임금로동에 관한 립법(222)은 영국에서는 1349년의 에드워드3세의 로동자법으로부터 시작된다. 프랑스에서 이에 상응하는 것은 쟝왕의 명의로 반포된 1350년의 칙령이다. 영국의 립법과 프랑스의 립법은 병행하여나가고있으며 내용으로 보아도 동일한것이다. 로동법이 로동일의 연장을 강제하려 한다는데 대해서는 나는 다시 언급하려 하지 않는데 그것은 이미 앞에서(제8장, 제5절①) 론하였기때문이다.

로동자법은 하원의 절실한 요청에 의하여 제정되였다.

---

(222) 《립법이 고용주와 로동자간의 쟁의를 조정하려고 할 때에 그 법률의 고문은 항상 고용주이다.》 라고 A. 스미스는 말하고있다.[481] 《소유—이것이 바로 법률의 정신이다.》 라고 랭개는 말한다.[428]

---

① 이 책 305페지 및 그 뒤 몇페지를 보라. —편집자

한 토리당원은 소박하게도 이렇게 말하고있다.

《전에는 빈민들이 높은 임금을 요구하여 산업과 재부에 위협을 추었다. 지금에 와서는 그들의 임금이 너무나 낮아서 역시 산업과 재부에 위협을 주고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전과는 사정이 다르며 또 아마도 전보다 더 위험할것이다.》(223)

도시와 농촌에 대해서도 도급제로동과 일로동에 대하여서도 법정임금률이 확정되였다. 농촌로동자는 1년계약으로 고용되여야 하며 도시로동자는 《공개시장》에서 고용되여야 한다. 법정임금보다 높이 지불하는것은 금고형으로써 금지되여있는데 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것은 그것을 지불하는것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는다. 례컨대 엘리자베스의 도제법 제18조와 제19조에는 법정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는자는 10일간의 금고형에 처하게 되여있는데 그것을 받는자는 21일간의 금고형에 처하게 되여있다. 1360년의 법령은 이 형벌을 일층 더 엄하게 하였으며 심지어 육체적강제로써 법정임금률로 로동을 짜낼수 있는 권리를 고용주에게 부여하였다. 벽돌공과 목공이 호상 련합하여 맺는 모든 결합, 계약, 서약 등등은 무효로 선포되였다. 로동자들의 련합은 14세기로부터 로동단체금지법[364]이 폐지된 1825년에 이르기까지 중죄로 취급되였다. 1349년의 로동자법 및 그후에 제정된 류사한 법률의 정신은 국가가 로임의 최고한도는 규정하나 결코 최저한도는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백히 나타나고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16세기에는 로동자의 형편은 대단히 악화되였다①. 화폐임금은 인상되였으나 화폐가치의 감소와

(223) (J. B. 바일즈) 《자유무역의 궤변》, 한 변호사의 저작, 1850년 런던판, 206페지. 그는 밉살스럽게도 이렇게 부언하고있다. 《우리는 항상 고용주를 위하여 개입할 준비를 하고있었다. 그러면 피고용자를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일이 없겠는가?》

① 이 책 828~829페지를 보라. —편집자

이에 상응하는 상품가격의 등귀에 비례하여 인상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사실상으로는 임금이 저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인하를 위한 법령들은 《누구나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귀자르기와 그들에 대한 락인과 함께 존속하였다. 엘리자베스 제5년의 도제법 제4장에 의하여 치안판사는 임금의 일정한 수준을 확정하며 또한 계절과 물가에 따라 그것을 변경시킬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였다. 제임즈1세도 이 로동규제를 직포공, 방적공 및 기타 모든 로동자부류에 확대하였으며(224) 죠지2세는 로동자의 련합을 금지하는 법률을 모든 공장제수공업에 확대하였다.

본래의 공장제수공업시기에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은 충분히 강화되였기때문에 임금에 대한 법적규제를 실시하는것은 불가능하고 또 불필요하게 되였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구무기고의 이 무기를 유지하려 하였다. 죠지3세, 제7년의 법령도 런던 및 그 부근의 재봉공에 대하여 국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2실링 $7\frac{1}{2}$펜스이상의 일임금을 지

---

(224) 제임즈1세 첫해의 법령 제6장의 한 조항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어떤 직조업자들은 치안판사의 자격으로서 공적으로 자기자신의 작업장에서 공식적으로 임금률을 지시하였다. 독일에서는 특히 30년전쟁이후에 임금을 억제하기 위한 법령들이 빈번히 발포되였다. 《인구가 희박한 토지에서 종복과 로동자의 부족은 지주들의 큰 두통거리로 되여있었다. 모든 촌락민은 독신남녀에게 방을 빌려주는것이 금지되였으며 이러한 숙박인들은 모두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들이 종복이 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그들이 농민을 위하여 날품팔이로 파종을 하거나 또는 곡물매매를 하는 등 어떤 다른 일에 종사함으로써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투옥되여야 하였다.(《쉴레지엔에 대한 황제의 특권과 법령》, 제1장, 제125조) 가혹한 조건들에 복종하려 하지 않으며 또 법정임금에 만족하려 하지 않는 악질적이고 불손한 무뢰한들에 대한 격심한 불평이 옹근 1세기를 통하여 군주들의 법령속에 부단히 반복되였다. 개별적지주들이 지방행정구역에서 제정한 임금보다 더 지불하는것은 금지되였다. 그렇지만 전쟁후의 하인들의 처지는 백년후의 그것보다 더 좋은 경우가 많았다. 1652년에 쉴레지엔에서는 하인들에게 매주 두차례 고기를 주었는데 현세기에는 같은 쉴레지엔에서 1년에 세차례밖에 그들에게 고기를 주지 않는 지방이 있었다. 임금도 전쟁후가 그후의 수세기간보다 높았다.》(G. 프라이타그)

불하는것을 금지하였다. 또 죠지3세 제13년의 법령 제68장도 견직공에 대한 임금규제를 치안판사의 권한으로 하였다. 1796년에도 아직 임금에 관한 치안판사의 명령이 비농업로동자에게도 적용될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의 두가지 판결이 필요하였다. 또 1799년에도 스코틀랜드광부의 임금은 엘리자베스의 한 법령과 1661년 및 1671년의 스코틀랜드의 두 법률에 의하여 규제된다는것을 한 의회법률은 확인하였다. 이동안에 사정이 얼마나 심하게 변하였는가는 영국하원에서 일어난 전대미문의 한 사건에 의하여 증명되였다. 절대로 초과해서는 안되는 임금의 최고한도에 관한 법률을 400년이상이나 만들어온 이 하원에서 위트브레드는 1796년에 농업날품팔이로동자에 대한 법정의 최저임금을 제안하였다. 피트는 이에 반대하였지만 《빈민의 형편은 참혹하다.》는것을 인정하였다. 드디여 1813년에 임금규제에 관한 법률들이 폐지되였다. 자본가가 자기의 사적립법에 의하여 자기공장을 관리하였으며 또 농촌로동자의 임금을 빈민구제세에 의하여 필요한 최저한도까지 보충한이래 그러한 법률들은 가소로운 변칙이였던것이다. 그러나 계약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만을 허용하고 계약을 위반한 로동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을 허용하는 고용주와 로동자간의 계약, 해약예고기간 등등에 관한 로동법규의 조항들은 오늘에도 완전히 효력을 가지고있다.

련합을 금지하는 가혹한 법률들은 1825년에 무산계급의 위혁적인 태도앞에서 폐지되였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부분적으로 폐지되였을뿐이다. 구법령들의 일부 아름다운 잔재들은 1859년에야 비로소 소멸되였다. 끝으로 1871년 6월 29일의 의회법령은 로동조합을 법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이와 같은 계

급적립법의 최후의 흔적을 제거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자의 다른 의회법령 즉 폭력, 협박, 침해에 관한 형법개정법은 사실상 이전상태를 새로운 형태에서 복구하였다. 이와 같은 의회적요술에 의하여 파업이나 로카우트(공장주들이 동맹하여 자기의 공장들을 동시에 폐쇄하는 파업)의 경우에 로동자들이 취할수 있는 일체 수단에 대하여서는 보통법이 적용되지 않고 특별형법이 적용되게 되였으며 이 특별형법의 해석은 치안판사인 공장주들에게 전적으로 달려있었다. 그보다 2년전에는 동일한 하원과 동일한 글래드스턴씨는 주지의 정직한 방식으로 로동계급을 반대하는 일체 특별형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을 제2독회에 넘기지 않고 오래동안 내버려두었다가 마침내 《대자유당》[482]이 토리당과 련합함으로써 용기를 얻어, 자기를 지배자의 지위에 올라서게 한 바로 그 무산계급을 단호히 배반하였다. 《대자유당》은 이와 같은 배반만으로써는 부족하여, 언제나 지배계급에게 아부하는 영국재판관들로 하여금 이미 낡은 《음모》 단속법[483]을 부활시켜 그것을 로동자의 련합에 적용하게 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영국의회는 다만 본의가 아니면서도 대중의 압력에 못이겨 파업과 로동조합을 금지하는 법률들을 포기하게는 되였지만 그러나 이것은 의회자체가 500년간이나 파렴치한 리기주의로써 로동자를 반대하는 항구적인 자본가조합의 지위를 고수하여온후의 일이다.

프랑스의 자산계급도 혁명의 폭풍우가 시작되자 로동자들이 겨우 금방 전취한 련합의 권리를 그들에게서 다시 탈취하려고 결심하였다. 1791년 6월 14일의 포고에 의하여 그들은 로동자의 일체 련합을 《자유와 인권선언에 대한 침해》이며 이는 500리브르의 벌금과 1년간의 공민권박탈로 처벌

해야 하는것이라고 선언하였다.(225) 자본과 로동간의 투쟁을 국가경찰권으로 자본에 유리한 한계내에 억지로 몰아넣는 이 법률은 여러차례의 모든 혁명과 왕조교체를 겪고도 존속하였다. 테로정부[484]조차도 이것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것은 아주 최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형법전[485]에서 삭제되였다. 이 자산계급적비상위헌행위의 구실보다 더 특징적인것은 아무것도 없다. 보고자 르 샤쁠리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로임이 현재보다 인상되여 이 로임을 받는자가 생활필수품의 결핍으로 말미암은 거의 노예적예속인 절대적예속으로부터 해방되는것은 바랄만한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리해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공동행동을 취함으로써 《거의 노예적예속인 절대적예속》을 완화시켜서는 안된다. 왜냐 하면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이전 장주인 현재의 기업가의 자유》(로동자를 노예상태에 유지하는 자유!)를 침해하기때문이며 또 이전의 동업조합장주의 전제를 반대하는 련합은—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알아맞추어보라!—프랑스헌법에 의하여 폐지된 동업조합의 재건이기때문이다!(226)

4. 자본주의적차지농업가의 발생

우리는 법률의 보호밖에 놓인 무산자의 폭력적발생, 그

(225) 이 법률의 제1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동일한 신분 및 동일한 직업을 가진자들의 온갖 종류의 련합을 금지하는것이 프랑스헌법의 기초의 하나이므로 어떠한 구실 또는 어떠한 형태하에서도 이를 부활시키는것은 금지되여야 한다.》 제4조에는 이렇게 씌여있다. 《동일한 직업, 공예 또는 수공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만일 공동으로 자기의 영업 또는 로동에 종사하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일정한 가격이하로는 종사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호상 협의하거나 또는 협약을 한다면 이러한 협의와 협약은… 헌법위반으로서 또 자유와 인권선언에 대한 침해로서》 즉 구로동자법에서와 같이 국사범으로서 《선고받아야 한다》.(《빠리혁명》, 1791년 빠리판, 제3권, 523페지)

(226) 뷔세 및 루—라배른뉴 《의회사》 제10권, 193~195페지의 이곳저곳.

들을 임금로동자로 전화시킨 류혈적규률, 경찰적방법에 의하여 로동에 대한 착취도를 강화하면서 자본의 축적을 제고시킨 국가의 추악한 행동 등을 고찰하였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것은 자본가는 시초에 어디에서 발생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왜냐 하면 농촌주민의 수탈은 직접적으로는 다만 대토지소유자를 만들어낼뿐이기때문이다. 차지농업가의 발생에 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손으로 더듬어나갈수 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여러 세기동안을 끌어온 완만한 과정이기때문이다. 농노들자신도 또 자유로운 소토지소유자도 극히 각이한 소유관계에 있었으며 그에 따라 또한 극히 각이한 경제적조건하에서 해방되였다.

영국에서는 차지농업가의 최초의 형태는 그자신이 농노였던 토지관리인이였다. 그의 지위는 고대로마의 빌리쿠스[①]의 지위와 류사하나 다만 활동범위가 그보다 좁았을따름이다. 14세기 후반기에 토지관리인은 지주로부터 종자, 가축 및 농구를 공급받는 차지농업가에 의하여 교체되였다. 차지농업가의 처지는 농민의 처지와 그렇게 다를것이 없었다. 그는 다만 보다 많은 임금로동을 착취하였을따름이다. 그는 얼마 안가서 반차지농업가인 분익농으로 되였다. 그는 농업자본의 일부분을 제공하며 지주는 다른 부분을 제공한다. 량자는 계약에 의하여 규정된 비률로 총생산물을 분배한다. 이 형태는 영국에서는 급속히 없어지고 본래의 차지농업가의 형태에 자리를 양보한다. 본래의 차지농업가는 임금로동자를 사용함으로써 자기자신의 자본을 증식하며 잉여생산물의 일부분을 지대로서 화폐 또는 현물로 지주에게 지불한다.

15세기에 독립적농민과 그리고 임금로동에 종사하는 한

① 이 책 199페지를 보라. —편집자

편 자작도 하는 고용농들이 자기들의 로동에 의하여 부유해지고있던 한에서는 차지농업가의 생활형편과 그의 생산분야는 아직 보통이였다. 15세기 마지막 30여년에 시작하여 16세기의 거의 전 기간(마지막 수십년을 제외하고)에 걸쳐 계속된 농업혁명은 농촌주민을 빈궁하게 만든것과 동일한 속도로 차지농업가를 부유하게 만들었다.(227) 공동목장 등을 략취함으로써 차지농업가는 거의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고 그의 가축수를 현저하게 증가시킬수 있었으며 그의 가축은 그의 토지에 쏠 풍부한 비료를 제공하였다.

16세기에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첨가되였다. 당시 차지계약은 장기계약으로 체결되여 왕왕 99년간에 걸치는것도 있었다. 귀금속가치, 따라서 화폐가치의 부단한 저락은 차지농업가를 위하여 황금의 열매를 맺었다. 상술한 다른 모든 사정은 도외시하더라도 이 가치저락은 로임을 저하시켰다①. 로임의 일부분은 차지농업가의 리윤에 첨가되였다. 곡물, 양모, 육류,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 농산물의 가격의 부단한 등귀에 의하여 차지농업가는 가만히 앉아서 자기의 화폐자본을 증가시켰으며 한편으로 그는 지대를 이전의 화폐가치로써 체결된 종전의 계약에 근거하여 지불하게 되였다.(228)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자기의 임금로동자와 지주를

(227) 해리슨은 그의 저서 《영국의 서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차지농업가는 이전에는 4파운드의 지대를 지불하는것도 곤난하였는데 이제 와서는 40, 50, 100파운드를 지불하고있으며 그리고도 차지기간이 끝난후 그들의 수중에 6~7년분의 지대가 남아있지 않으면 사업이 잘 안되는것으로 생각하고있다.》

(228) 16세기에 화폐의 가치저락이 사회의 각이한 계급에게 준 영향에 관하여서는 한 신사인 W. S. 의 저서 《현재 우리 나라 각계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불평에 관한 간단한 고찰》(1581년 런던판)을 보라. 이 저서는 대화체로 되여있기때문에 쉐익스피어가 쓴것으로 오래동안 오인되여왔으며 1751년에 와서도 이 책은 그의 이름으로 나왔다. 이 저서의 저자는 윌리엄 스태퍼드이다. 한 개소에서 기사는 다음과 같이 리치를 따지고있다.

① 이 책 640~641페지를 보라. —편집자

동시에 희생시킴으로 하여 치부하였다. 그러므로 영국에서는 16세기말에 당시로서는 부유한 《자본주의적차지농업가》 계급이 형성되였다는것은 하등 기이한 일이 아니다.(229)

기사: 《나의 이웃인 농부, 상인, 선량한 동공 그리고 또 기타 수공업자들이여, 그대들은 자신의 리익을 수호할줄 알것이다. 왜냐 하면 모든 물건이 전보다 비싸지면 질수록 그대들은 그대들이 다시 파는 상품이나 로력의 가격을 그만큼 올리기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격을 올려팖으로써 우리가 살 때에 받은 손실을 봉창할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란 하나도 없다.》 또 다른 개소에서 기사는 박사에게 묻는다. 《당신은 누구를 념두에 두고 계신가를 알려주시오. 우선 당신의 생각으로는 이 경우에 손해를 보지 않는것은 누구인가요?》 ㅡ박사: 《나의 생각으로는 매매에 의하여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다. 왜냐 하면 그들은 비싸게 사더라도 그만큼 비싸게 팔기때문이다.》 ㅡ기사: 《그리고 당신의 말과 같이 리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ㅡ박사: 《그것은 물론, 자기가 경작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지대를 지불하는 모든 임차인 또는 차지농업가이다. 왜냐 하면 그들은 종전의 가격으로 지불하고 새로운 가격으로 팔기때문에 즉 자기의 차지에 대하여는 극히 값싸게 지불하고 거기에서 나는 모든 물건은 비싸게 팔기때문이다.…》 ㅡ기사: 《그러면 그때에 당신의 말대로 하면 리득을 보는것보다 손해를 더 많이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ㅡ박사: 《그것은 모든 귀족들, 신사들, 기타 고정된 지대 또는 고정된 봉급으로 생활하거나 또는 자기자신이 토지를 경작하지 않든가 또는 상업에 종사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다.》

(229) 프랑스에서는 중세기초에 봉건령주에게 바치는 공납의 관리자였으며 징수자였던 관리인이 얼마 안가서 실업가로 되였으며 강탈과 기만 등등에 의하여 일약 자본가로 되였다. 이 관리인은 그자신이 때로는 귀족이였다. 례컨대 《이 계산서는 브장쏭의 기사이며 성주인 쟈크 드 또레쓰가 1359년 12월 25일부터 1360년 12월 28일까지 전기 성주령에서 납부하는 지대에 대하여, 부르고뉴공작과 백작을 위하여 디죵에서 회계를 보고있는 령주에게 제출한것이다》.(알렉씨스 몽떼이 《각종 사서의 수고개론》, 234~235페지) 여기에서는 벌써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얼마나 큰 몫이 중개자의 수중에 들어가는가를 볼수 있다. 례컨대 경제령역에서는 금융업자, 거래소중매인, 도매상, 소매상이 기업의 단물을 빨아먹는다. 민법의 령역에서는 변호사가 당사자 쌍방을 탈취한다. 정치에서는 의원들이 선거자들보다 위주가 되며 대신들이 군주보다 위주가 된다. 종교에서는 하느님이 그의 《중개자》에 의하여 배후로 밀려나며 후자는 또 목사들에 의하여 밀려나는데 목사들은 또한 선량한 양사양공과 그의 양떼사이의 불가결의 중개자인것이다. 프랑스에서도 영국에서처럼 큰 봉건령지들은 무수한 소농지로 분할되였지만 그러나 농촌주민에게는 비할수 없으리만큼 더 불리한 조건하에서였다. 14세기에 차지농장ㅡfermes 또는 terriers—이 출현하였다. 그 수는 부단히 증가하여 10만을 훨씬 초과하였다. 그들은 생산물의 $\frac{1}{12}$ 내지 $\frac{1}{5}$의 지대를 화폐 또는 현물로 지불하였다. terriers는 그 토지의 가치와 면적에 따라 봉토(fiefs), 소봉토(arrière-fiefs) 등등으로 불리였는데 그 중 대부분은 수아르빵에 불과하였다. 이 terriers들은 모두 그의 주민들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등급의 재판권을 가지고있었는데 거기에는 4등급이 있었다. 이러한 모든 소폭군들 밑에서 농촌주민이 얼마나 압박을 받았겠는가 하는것은 쉽게 리해할수 있을것이다. 몽떼이는 말하기를 현재는 4,000개의 재판소(치안재판소를 포함하여)가 있을뿐인데 당시에는 16만개의 재판소가 있었다고 한다.

5. 공업에 대한 농업혁명의 반작용. 산업자본을 위한 국내시장의 형성

간헐적으로 부단히 반복된 농촌주민의 수탈과 토지로부터의 그들의 추방은 우리가 본바와 같이 전적으로 모든 동업조합적 제 관계밖에 있는 무산자군을 계속 도시공업에 공급하였다.① 이와 같은 사정은 로 A. 앤더슨으로 하여금(제임즈 앤더슨과 혼동하지 말것) 그의 상업사[486]에서 신의 직접적간섭을 신봉케하였다. 시초축적의 이 요소에 대하여 우리는 잠시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 죠프롸 쌩-일래르가 한곳에서의 우주물질의 조밀화를 다른 한곳에서의 그것의 희박화에 의하여 설명한바와 같이(230) 독립적인 자영농촌주민의 희박화에는 공업무산계급의 조밀화만 대응하는것은 아니다. 토지는 그의 경작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다름없는 량의 생산물 또는 전보다도 많은 량의 생산물을 제공하였는데 그것은 토지소유관계에서의 혁명이 경작방법의 개량, 협업의 확대, 생산수단의 집적 등등을 수반하였기때문이며 또한 농촌임금로동자들이 보다 높은 로동강도를 강요당하였을뿐만아니라(231) 그들이 자기자신을 위하여 로동하는 생산분야가 점점 더 축소되였기때문이다. 이와 같이 농촌주민의 일부가 유리됨과 동시에 그들의 이전의 생활수단도 또한 유리된다. 이 생활수단은 이제 와서는 가변자본의 물질적요소로 전화한다. 쫓겨난 농민은 이 생활수단의 가치

(230) 그의 저서 《자연철학에 대한 인식》, 1838년 빠리판을 보라.

(231) 이 점을 제임즈 스튜어트경은 강조하고있다.[487]

① 이 책 823~833페지를 보라. —편집자

를 임금의 형태로 자기의 새로운 주인인 산업자본가에게서 벌지 않으면 안된다. 공업을 위한 국내농업이 제공하는 공업원료도 생활수단과 동일한 사정이였다. 그것은 불변자본의 한 요소로 전화하였다.

례컨대 프리드리흐2세의 시대에 아마방적에 모두가 종사하고있었던 웨스트팔렌의 농민의 일부는 폭력적으로 수탈되고 토지로부터 추방되였으나 그들의 나머지 부분은 대차지농업가의 날품팔이로동자로 되였다고 하자. 동시에 대아마방적공장과 직조공장이 생기여 《유리된 사람들》이 거기에서 임금로동을 한다고 하자. 아마는 보기에는 이전과 꼭같다. 아마의 한오리의 섬유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신체내에 새로운 사회적령혼이 깃들어있다. 이제와서는 아마는 수공업공장주의 불변자본의 일부분을 이룬다. 이전에는 그것은 자기가 재배하여 가족과 함께 조금씩 방적하던 무수한 소생산자들사이에 분배되였는데 이제 와서는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방적하게 하며 직조하게 하는 한 자본가의 수중에 집중되여있다. 아마방적에서 지출된 추가적로동은 이전에는 무수한 농민가족들의 추가적소득으로서 또는 프리드리흐2세시대에는 프로씨아왕을 위하여 조세로서 실현되였다. 이제와서는 그것은 소수의 자본가의 리윤으로서 실현된다. 이전에는 농촌에 흩어져있던 방추와 직기는 지금에 와서는 로동자와 마찬가지로 또 원료와 마찬가지로 소수의 큰 로동병영에 집합된다. 또 방추와 직기와 원료는 이전에는 방적공과 직포공의 독립적생존을 보장하는 수단이였는데 이제 와서는 그들을 지휘하며(232) 그들로부터 부지불로동을 짜내기 위한 수단으로

---

(232) 자본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희들을 지휘하는 로력의 보수로서 너희들이 아직도 가지고있는 얼마 안되는것을 나에게 양도한다는 조건하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전화된다. 대수공업공장이나 대차지농장의 외모를 보아서는 그것들이 수많은 소생산장들이 하나로 결합된것이며 또 수많은 독립적소생산자들의 수탈에 의하여 형성된것이라는것은 알수 없다. 그러나 편견이 없는 관찰자는 이 외모에 속지 않는다. 혁명의 사자인 미라보의 시대에는 대수공업공장들은 오늘 우리가 합병경지라고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manufatures réunies 즉 합병수공업공장이라고 불리였다. 미라보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다만 수백명의 사람이 하나의 지배인의 지휘하에서 로동하며 보통 합병수공업공장이라고 불리는 대수공업공장에 대해서만 주의를 돌리고있다. 이와는 반대로 수많은 로동자들이 분산되여 각각 독자적으로 경영하고있는 수공업공장들에 대해서는 거들떠볼 가치도 없는것으로 간주되고있다. 그것들은 전혀 무시되고있다. 이것은 큰 잘못이다. 왜냐 하면 그것들만이 국민적부의 참으로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는것이기때문이다.…합병공장은 한두명의 기업가를 놀랄만큼 부유하게 하지만 그러나 로동자들은 보수가 좋든나쁘든간에 날품팔이로동자에 지나지 않으며 기업가의 복을 같이 나눌수는 결코 없는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분산된 공장에서는 아무도 부유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많은 로동자들이 행복하게 산다.…근면하고 검박한 로동자의 수가 증가할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현명한 생활방식, 근면을 자기들의 처지를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수단이라고 인정하며 얼마 안되는 임금인상—이것은 결코 장래를 위하여 중요한것일수 없으며 기껏해야 사람들로 하여금 하루살이 살림을 좀 낫게 하게 할뿐이다—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는 인정하지 않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농경제와 결합된 분산적인 개별적수공업공장은 자유로운 수공업공이다.》(233)

농촌주민의 일부분을 수탈하고 농촌으로부터 그들을 추

봉사할수 있는 영예를 제공할것이다.》(J. J. 루쏘 《정치경제학에 관한 론술》 (1760년 제네바판, 70페지))

(233) 미라보 《프리드리히대제치하의 프로이쎈왕국에 대하여》, 1788년 런던판, 제3권, 20~109페지의 이곳저곳. 미라보가 분산된 작업장을 《합병》 작업장보다 경제적이며 생산적이라고 간주하며 또한 후자를 정부의 보호하에 있는, 단순히 인공적인 온실식물로 보고있는것은 당시 구라파대륙의 대부분의 수공업공장의 상태에 의하여 설명된다.

방하는것은 산업자본을 위하여 로동자와 더불어 그들의 생활수단 및 그들의 로동재료를 유리시킬뿐만아니라 또한 국내시장을 조성한다.

사실상 소농민을 임금로동자로 전화시키며 그들의 생활수단과 로동수단을 자본의 물질적요소로 전화시키는 제 사건은 동시에 이 자본을 위하여 그 국내시장을 조성한다. 종전에 농민가족은 자신이 생활수단과 원료를 생산하고 가공하였으며 그리고 그 대부분을 자신이 소비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 원료와 생활수단이 상품으로 되였다. 대차지농업가는 이것들을 팔며 수공업공장에서 자기의 시장을 발견한다. 실, 아마포, 거칠게 만든 모직물 등등 즉 매개 농민가족이 자기의 수중에 있는 원료로써 자가용으로 방적하고 직조하던 물건들은 이제 와서는 공장제수공업의 제품으로 전화하며 그 제품의 판로는 다름아닌 농촌지방이다. 다수의 분산된 고객들은 종래에 독자적으로 경영하는 다수의 소생산자를 찾아갔으나 이제 와서는 산업자본에 의하여 공급되는 대시장으로 모여든다.(234) 이리하여 이전의 자작농들의 수탈, 생산수단으로부터의 그들의 분리와 병행하여 농촌부업의 파괴, 공장제수공업과 농업의 분리과정이 진행된다. 그리고 농촌가내수공업을 파괴함으로써만 한 나라의 국내시장으로 하여금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 필요한 범위와 공고성을 가질수 있게 한다.

그러나 본래의 공장제수공업시기는 아직 근본적변화를

---

(234) 《만약 한 로동자의 가족이 다른 일을 하는틈에 그들자신의 로력으로 남모르게 20폰드의 양모로써 자기의 년년의 의복을 만든다면 이는 아무런 주목도 끌지 않는다. 그러나 이 양모를 시장에 가지고가서 공장으로 보내고 다음에는 중개인에게로 또 그다음에는 상인에게로 보내고 하면 많은 상업활동을 거치게 되며 또 이 상업활동에 필요한 명목자본은 이 양모가치의 20배나 될것이다.…이렇게 되여 로동계급은 비참한 공장인구, 기생적상인계급 및 의제적인 상업적, 화폐적 및 금융적 제도의 유지를 위하여 착취를 당한다.》 (데이비드 어커트 《상용어》, 120페지)

가져오는것은 아니다. 우리가 알고있는바와 같이 공장제수공업은 도시의 수공업과 농촌의 가내부업을 광범한 배경으로 삼으면서 국민생산의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할따름이다①. 공장제수공업이 이러한 수공업과 부업을 어떤 형태, 어떤 산업부문, 어떤 지점에서 파괴하면 그것은 다른 곳에서 그것들을 소생시킨다. 왜냐 하면 공장제수공업은 원료의 가공을 위하여 일정한 정도까지 그러한것들을 필요로 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장제수공업은 경작을 부업으로 하고 생산물을 직접 또는 상인의 손을 거쳐서 공장제수공업에 판매하기 위한 공업로동을 본업으로 하는 새로운 소농민계급을 산생한다. 이 사실은 영국력사의 연구가를 우선 혼란에 빠지게 하는 리유의 하나—비록 가장 주요한 리유는 아니더라도—이다. 이 영국력사의 연구가는 한편으로는 15세기 마지막 30여년부터 영국에서는 농촌에서 자본주의적경제가 장성하고 농민층의 몰락이 더욱더 심해간다고 하는 계속되는 불평—이따금 중단되기는 하지만—을 들어왔으며 또 한편으로는 이 농민층이 비록 그 수는 감소되며 그 조건들은 점점 더 악화되고있지만(235) 여하튼 계속 존재하고있다는것을 보고있기때문이다. 그 주요원인은 영국에서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때로는 곡물재배가, 때로는 목축업이 우세를 차지하며 이와 같이 시대변천에 따라 농민생산의 규모가 변동한다는데 있다. 대공업만이 기계로써 자본주의적농업에 공고한 기초를 제공하며 농촌주민의 압도적대다수를 철저히 수탈하며 농촌가내공업의 근본인 방적업과 직조업을 파괴함으로써 농업과 농촌가내수공

(235) 크롬웰의 시대는 례외이다. 공화국이 존속하던 때에는 영국인민대중의 모든 층은 튜더왕조하의 몰락상태에서 빠져나올수 있었다.

① 이 책 425~426페지를 보라. —편집자

업과의 분리를 완성한다.(236) 따라서 또 대공업만이 산업자본을 위하여 전체 국내시장을 정복한다.(237)

6. 산업자본가의 발생

산업(238)자본가의 발생은 차지농업가의 발생처럼 그렇게 점차적인 방식으로 진행된것이 아니다. 의심할바없이 많은 소동업조합장주들과 그보다 더 많은 독립적소수공업자들과 또는 임금로동자들까지도 소자본가로 전화되고 그리고 임금

---

(236) 타키트는 본래의 공장제수공업으로부터, 또 농촌적 또는 가내적 공업의 파괴로부터 기계의 채용과 함께 대양모공업이 발생하였다는것을 알고있다.(타키트 《로동인구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의 력사》, 1846년 런던판, 제1권, 142~143페지) 《쟁기와 멍에는 신이 발명한것이며 영웅들이 사용한것이였다. 그런데 직기나 방추나 방차의 유래는 그만큼 고귀하지 못하겠는가? 당신들은 방차와 쟁기를, 방추와 멍에를 서로 분리하면 공장과 빈민구제원, 신용과 공황, 두개의 적대적국민인 농업국민과 상업국민을 가지게 된다.》(데이비드 어커트, 《상용어》, 1855년 런던판, 122페지) 그런데 여기에 캐어리가 나타나 영국은 다른 모든 나라들을 순전한 농업국으로 전화시키고 자신은 그 농업국의 공장주[488]로 되려고한다고 영국을 비난하는데 그것은 확실히 부당한것은 아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이렇게 하여 토이기는 파멸당하였는데 그것은 《(영국에서는) 토지소유자와 경작자가 쟁기와 직기, 쇠스랑과 망치의 자연적결합에 의하여 자기의 처지를 강화하는것이 결코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노예무역》, 125페지) 그의 의견에 의하면 어커트자신도 토이기를 파멸시킨 주모자의 한사람으로서 토이기에서 영국의 리익을 위하여 자유무역을 선전하였다는것이다. 가장 유쾌한것은 캐어리가—그런데 그는 대단한 로씨야추종자이다—이 분리과정을 촉진시키는 바로 그 보호무역제도①에 의하여 그 과정을 저지하려고 하고있다는 사실이다.

(237) 밀, 로져즈, 고올드윈 스미스, 포씨트 등등과 같은 영국의 박애주의적경제학자들과 죤 브라이트일파와 같은 자유주의적공장주들은 마치 하느님이 카인에게 그의 동생 아벨의 행처를 물은것처럼[489] 영국토지귀족에게 이렇게 묻는다. 수천의 우리 농민들은 어데로 갔는가? 또 그대들은 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라고. 그들은 그 자유로운 토지보유자들의 파멸에서 왔다. 그렇다면 왜 당신들은 더 나아가서 독립적 직조업자, 방적업자, 수공업자들은 어디로 갔는가라고는 묻지 않는가?

(238) 여기에서 《산업》(Industris)이라는 말은 《농업》이라는 말에 상대하여 사용되였다. 《범주》적의미로서는 차지농업가는 공장주와 마찬가지로 산업자본가(Industrieller Kapitalist)인것이다.

---

① 이 책 649, 867페지를 보라. 一편집자

로동의 착취를 점차 확대하며 이에 따라 축적을 강화함으로써 본격적인 자본가로 되였다. 중세기도시의 유년기에는 도주한 농노중에서 누가 주인으로 되며 누가 종복으로 되는가 하는 문제는 대개는 그들중에서 누가 먼저 도주하였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였는데 자본주의적생산의 유년기에도 흔히 그러하였다. 그러나 달팽이걸음같이 더딘 이와 같은 방법은 15세기말의 대발견[490]들에 의하여 창조된 새로운 세계시장의 상업요구에 결코 상응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중세기는 아주 판이한 경제적사회구성체에서 성숙되여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시대이전에 일반적으로 자본으로 인정되는 두개의 각이한 자본형태 즉 고리대자본과 상인자본을 남겨놓았다.

《현재 사회의 모든 부는 우선 자본가의 수중으로 들어간다.…그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대를, 로동자에게 임금을, 조세와 10분의 1세의 징수자에게 그의 요구액을 지불하고 년로동생산물의 대부분을, 아니 그 최대부분이며 부단히 장성하는 부분을 자기자신을 위하여 남겨둔다. 자본가는 이제는 사회적부전체의 최초의 소유자라고 볼수 있다. 비록 이 소유권을 그에게 준 어떠한 법률도 없지만…소유에서의 이 변화는 자본의 리자의 징수로써 이루어졌다.…그리고 전 구라파의 립법자들이 고리대금지법으로써 이것을 방지하려고 하였다는것은 적지 않게 주목할 만한 일이다.…나라의 전체 부에 대한 자본가의 권력은 소유권에서의 완전한 혁명인데 이와 같은 혁명은 어떠한 법률 또는 어떠한 일련의 법률에 의하여 수행되였는가?》(239)

이 저자는 혁명이라는것이 법률에 의하여 수행되는것은 아니라는것을 알았어야 할것이다.

농촌에서의 봉건제도와 도시에서의 동업조합제도는 고리대와 상업에 의하여 형성된 화폐자본의 산업자본으로의 전화

---

(239) 《자연적소유권과 인위적소유권과의 비교》, 1832년 런던판, 98~99페지. 이 익명저서의 저자는 T. 호지스킨이다.

를 방해하였다.(240) 이러한 제한들은 봉건적가신단의 해체와 농촌주민의 수탈 및 부분적인 추방과 함께 제거되였다. 새로운 공장제수공업이 해안의 수출항구 또는 구도시와 그의 동업조합제도의 통제밖에 있는 농촌지점들에 설치되였다. 이때문에 영국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공업배양지들을 반대하는 자치도시들의 치렬한 투쟁이 일어났다.

아메리카에서의 금은산지의 발견, 토착민의 섬멸, 노예화 및 광산에의 생매장, 동인도의 정복과 략탈의 개시, 아프리카의 상업적흑인수렵장으로의 전화—이러한것들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시대를 고하는 서광이였다. 이러한 목가적인 과정은 시초축적의 주요한 계기들이다. 그뒤를 이어 일어난것은 지구를 무대로 하는 구라파국가들의 상업전쟁이였다. 이 전쟁은 에스빠냐로부터의 니데를란드의 리탈[491]로써 개시되였으며 영국의 반쟈꼬벵전쟁[403]에서 거대한 규모에 달하였으며 중국에 대한 아편전쟁 등등에서 지금도 계속되고있다.

시초축적의 각이한 계기들은 많건적건 시간적순서를 이루고 특히 에스빠냐, 뽀르뚜갈, 화란, 프랑스 및 영국 등에 분배되고있다. 영국에서는 이 계기들이 17세기말에 식민제도, 국채제도, 현대적조세제도 및 보호무역제도로서 체계적으로 총괄된다. 이와 같은 방법들은 부분적으로는 포악무도한 폭력에 립각하는것이였는데 례컨대 식민제도가 그러하다. 그러나 이 모든 방법들은 국가권력 즉 사회의 집중적이며 조직적인 폭력을 리용하여 봉건적생산방식의 자본주의적생산방식으로의 전화과정을 온실적으로 촉진하여 그 과도기를

---

(240) 1794년에 이르러서도 리즈의 소직조업자들은 상인이 공장주가 되는것을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을 청원하기 위하여 대표를 의회에 파견하였다.(에이킨의사 《만체스터주변 30~40마일의 지방지》)

단축시키려 한다. 폭력은 새로운 사회를 배태하고있는 모든 낡은 사회의 조산부이다. 폭력은 그자체가 하나의 경제적잠세력이다.

기독교적식민제도에 관하여서는 기독교의 연구를 전문으로 하고있는 사람인 윌리엄 하우이트가 이렇게 말하고있다.

《소위 기독교인종이 세계의 도처에서 또 그들에 의하여 정복될 수 있었던 모든 민족들에 대하여 수행한 만행과 포악무도한 폭행은 어떠한 력사적시기에도 그 류례가 없으며 또 가장 미개하고 몽매하며 가장 무정하고 파렴치한 인종도 포함한 그 어떠한 인종에도 류례가 없는 것이다.》(241)

17세기의 전형적인 자본주의국가였던 화란의 식민지경영사는 배신, 매수, 학살 및 비렬의 류례없는 정경을 보여준다(242). 화란인이 쟈바섬에서 사용할 노예를 얻기 위하여 쎌레베스섬에서 실시한 인간략탈제도처럼 특징적인것은 없다. 이 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인간도적이 훈련되였다. 도적, 통역 및 판매인은 이 거래의 주역이였으며 토착왕자는 주되는 판매인이였다. 략탈되여온 젊은이들은 노예선으로 보낼만큼 장성할 때까지 쎌레베스섬의 비밀감옥에 은닉되였다. 한 공식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레컨대 마카싸르라는 이 도시는 비밀감옥으로 충만되여있는데 그중 어떤것은 다른것보다 더 무서우며 거기에는 가족으로부터 강제로 분리되여 쇠사슬에 얽매워 탐욕과 포악의 희생자로 된 가엾은 인간들이 가득차있다.》

---

(241) 윌리엄 하우이트 《식민과 기독교. 전체 식민지에서의 구라파인들의 토착민취급에 대한 통속적력사》, 1838년 런던판, 9페지. 노예취급에 관하여서는 샤를 꽁뜨의 《립법론》(1837년 브류쎌 제3판)에 많은 자료가 있다. 자산자가 자기 모습대로 거리낌없이 세계를 개조할수 있는 곳에서 자기자신과 로동자를 어떠한것으로 만드는가를 알기 위하여서는 이런 저서를 상세히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242) 전 쟈바 부총독 토머스 스탬포드 래플즈 《쟈바의 력사》 1817년 런던판 (제2권, CXC, CXCI페지)

말라카를 빼앗기 위하여 화란인들은 뽀루뚜갈총독을 매수하였다. 1641년에 총독은 화란인들이 시내에 들어오는것을 허가하였다. 그들은 곧 총독의 집으로 달려가서 그를 학살함으로써 매수비 21,875파운드의 지불을 《금욕》하였다. 그들의 발이 닿은 곳은 어디나 황폐화되고 인구가 감소되였다. 쟈바섬의 한 주인 바뉴완기주에 1750년에는 주민의 수가 8만명이상이였는데 1811년에는 8,000명에 불과하였다. 이것이야말로 괜찮은 장사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영국의 동인도회사[146]는 동인도에서의 정치적지배권이외에 차무역과 중국과의 무역 전반에 대하여나 또 구라파를 왕래하는 화물수송에 대하여서나 배타적인 독점권을 가지고있었다. 그런데 인도의 연안항해와 도서들간의 항해 그리고 인도내륙무역은 이 회사의 고급직원들의 독점으로 되여있었다. 소금, 아편, 빈랑 및 기타 상품에 대한 독점은 부의 무진장한 광산이였다. 이 직원들은 자기들이 가격을 설정하고 불행한 인도인들을 마음대로 략탈하였다. 총독도 이러한 사적거래에 참가하였다. 그의 총애를 받은자들은 련금술사보다 더 교묘하게 무로부터 금을 만들어낼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수 있었다. 거액의 재산이 버섯처럼 하루사이에 솟아져나왔으며 시초축적은 한실링의 선대도 없이 진행되였다. 워런 헤이스팅즈의 재판은 이와 같은 실례로 가득차있다. 그중 일례를 들어보자. 설리반이라는자는 그가 아편생산지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인도의 한 지방에 공무를 띠고 떠나려고 하던 때에 아편납입계약을 접수하였다. 설리반은 그의 계약을 4만파운드로 빈이라는자에게 팔았으며 빈은 또한 그것을 같은날에 6만파운드로 다시 팔았다. 이 계약의 마지막 구매자와 실행자로 된자는 그렇게 하고도 막대

한 리득을 얻었다고 언명하고있다. 의회에 제출된 한 문건에 의하면 이 회사와 그 직원들은 1757년부터 1766년까지에 인도인들로 하여금 600만파운드를 자기들에게 기증하게 하였다. 1769년부터 1770년까지에 영국인들은 쌀을 전부 매점하고 그것을 엄청난 가격이 아니고는 다시 팔지 않음으로써 기근을 제조하였다.(243)

토착민의 취급이 가장 횡포하였던 곳은 물론 서인도와 같이 수출무역만을 사명으로 한 재배식민지였으며 메히꼬 및 동인도와 같이 강도살인의 수중에 내맡겨진 부유하고 인구가 조밀한 나라들이였다. 그러나 본래의 식민지들에서도 시초축적의 기독교적성격은 어찌할수 없는것이였다. 근엄한 신교의 대가들인 뉴잉글랜드의 청교도[492]들은 1703년에 그들의 립법회의 결의에 의하여 인디안의 머리가죽 한장이거나 포로 일명에 대하여 40파운드의 상금을 걸었으며 1722년에는 머리가죽 한장에 상금은 100파운드로 되였으며 1744년에 매싸츄세쯔만지역에서 어떤 종족이 역도라고 선언된후에는 다음과 같은 가격을 붙였다. 즉 12세이상의 남자의 머리가죽은 새통화 100파운드, 남자포로는 105파운드, 녀자나 아동 포로는 55파운드, 녀자나 아동의 머리가죽은 50파운드이다! 수십년후에 식민제도는 영 본국에 대하여 반역자로 된 경건한 펠리그림 파더즈[493]의 자손들에게 복수하였다. 영국인의 매수와 사촉하에 그들은 토인들의 도끼에 찍혀죽었다. 영국의회는 경찰견에 의한 살륙과 머리가죽벗기기를 《신과 자연이 자기에게 부여한 수단》이라고 선언하였다.

---

(243) 1866년에는 오리싸주에서만도 100만명이상의 인도인이 아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굶어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식료품을 판매함으로써 인도의 국고를 부유하게 하려고 백방의 노력을 다하였다.

식민제도는 무역과 항해를 급격히 발전시켰다. 《독점회사》(루테르의 말[256])는 자본집적의 강력한 공간이였다. 식민지는 급속히 발생하는 공장제수공업에 판매시장을 보장하여주었으며 시장독점에 의하여 보강된 축적을 보장하였다. 구라파밖에서 직접적인 략탈과 노예화와 살인강도에 의하여 획득된 재물은 본국으로 흘러들어와 거기에서 자본으로 전화하였다. 식민제도를 제일먼저 완전히 발전시킨 화란은 1648년에 이미 상업번영의 절정에 달하였다. 화란은

《동인도무역과 구라파의 서남부와 동북부간의 상업거래를 거의 독차지하고있었다. 이 나라의 어업, 항해 및 공장제수공업은 다른 모든 나라를 릉가하고있었다. 아마도 이 공화국의 자본은 구라파의 다른 모든 지역의 자본보다 많았을것이다》.[494]

이 글을 쓴 컬리흐는 다음과 같이 부언할것을 잊어버리고있다. 즉 화란의 인민대중은 1648년에 이미 구라파의 다른 모든 지역의 인민대중보다 더 과도한 로동을 하고있었으며 더 빈곤하였으며 더 참혹한 억압을 당하고있었다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산업적패권은 상업적패권을 수반한다. 이와는 반대로 본래의 공장제수공업시기에는 상업적패권이 산업상의 우세를 보장하여준다. 그때문에 식민제도가 그 당시에는 주요한 역할을 논것이다. 이 식민제도는 구라파의 옛 신들과 나란히 제단에 앉아있다가 어느날 이 신들을 모두 한꺼번에 때려엎어버린 《낯설은 신》이였다.[495] 식민제도는 부정축재를 인류의 최후의 유일한 목적으로서 선언하였다.

중세기에 이미 제노아와 베니스에서 그 기원을 보게 되는 공공신용제도 즉 국채제도는 공장제수공업시기에 전 구라파에 보급되였다. 식민제도는 그에 따르는 해상무역 및 상업

전쟁과 더불어 이 공공신용제도의 온실로 되였다. 그리하여 이 제도는 우선 화란에서 확립되였다. 전제국가이든 립헌국가이든 공화제국가이든간에 국채 측 국가의 양도는 자본주의 시대에 그 락인을 찍는다. 소위 국민적부중에서 현실적으로 현대적인민의 전체적소유에 들어가는 유일한 부분—이것이 바로 그들의 국채이다.(243a) 그렇기때문에 어떤 국가의 인민이 많은 부채를 지면 질수록 그 국민은 부유하게 된다는 현대적학설은 그야말로 당연한것이다. 공공신용은 자본의 신조이다. 그리하여 국채의 발생에 따라 결코 용서할수 없는 큰 죄로 되는것은 성령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국채에 대한 불신이다.

공채는 시초축적의 가장 강력한 공간의 하나로 된다. 마치도 마술지팽이를 휘두르는것처럼 공채는 비생산적인 화폐에 생식력을 부여하며 그것을 자본으로 전화시키는데 그나마 화폐를 산업에 투자할 때나 심지어는 고리대금업에 투자할 때에도 반드시 수반하는 위험과 번잡을 겪을 필요가 전혀 없다. 국가의 채권자들은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왜냐 하면 그들이 대부한 금액은 쉽게 양도될수 있는 공채증서로 전화하며 이것은 그와 같은 액의 현금과 조금도 다름없이 그들의 수중에서 기능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여 조성된 유한금리생활자계급이나 정부와 국민사이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노는 금융업자들의 일확천금의 부는 고사하고라도 또한 온갖 국채의 상당한 부분을 하늘에서 떨어진 자본으로서 리용하는 징세청부인, 상인, 사적공장주들의 일확천금의 부는 고사하고라도 국채는 주식회사, 온갖 종류의 유가증

(243a) 윌리엄 코비트가 지적하고있는바와 같이 영국에서 모든 공공기관은 《왕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있으나 그대신에 《국민의》 채무라는것이 있다.

권거래, 주식매매, 한마디로 말하여 거래소투기와 현대적은행의 지배를 홍성시켰다.

국립이라는 이름을 붙인 대은행들은 그 출생 첫날부터 사적투기업자들의 회사에 불과하였는데 그들은 정부에 협력하였으며 그들에게 부여된 특권에 의하여 정부에 화폐를 대부할수 있었다. 그러므로 국채축적의 가장 확실한 측도기로 되는것은 이러한 은행들의 주식의 계속적등귀인데 이와 같은 은행들의 전면적인 발전은 잉글랜드은행의 창립(1694년)으로부터 시작된다. 잉글랜드은행은 자기의 화폐를 8%로 정부에 대부하는것으로써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와 동시에 이 은행은 동일한 자본으로 화폐를 주조할수 있는 권한을 의회로부터 부여받음으로써 그 자본을 은행권의 형태로 다시한번 공중에게 대부하였다. 잉글랜드은행은 이 은행권을 가지고 수형을 할인하며 상품담보대부를 하며 귀금속을 사들일 수 있었다. 얼마안가서 이 은행자체가 만들어낸 신용화폐는 주화로 되였으며 잉글랜드은행은 이 주화로 국가에 대부를 하였고 국가를 대신하여 공채의 리자를 지불하였다. 이 은행은 한손으로는 주고 다른 손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도로 받았을뿐만아니라 도로 받으면서도 은행은 자기가 준 최후의 한푼에 이르기까지 국민에 대한 영원한 채권자로 되여 있었다. 이 은행은 점차 나라의 금속저장의 불가피한 저장소로 되였으며 전체 상업신용의 중심으로 되였다. 영국에서는 마녀에 대한 화형을 그만둔 때에 바로 은행권위조자의 교형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은행거두, 금융업자, 금리생활자, 중개인, 주식투기업자 및 주식거래업자들의 일당이 돌연히 나타난것이 동시대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하여서는 당시의 저술들 례컨대 볼링브루크의 저술이 증명하

여준다.(243b)

국채와 더불어 국제신용제도가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흔히 이러저러한 나라의 시초축적의 원천의 하나를 은폐한다. 례컨대 베니스의 략탈제도의 여러가지 비루한 행위는 몰락하여가는 베니스로부터 거액의 화폐를 대부받은 화란의 자본적부의 은폐된 기초로 되여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화란과 영국사이에도 있다. 이미 18세기초에는 화란의 공장제수공업은 훨씬 뒤떨어졌으며 화란은 지배적인 상공업국가가 아니게 되였다. 그러므로 1701~1776년기간에 화란의 주요한 사업의 하나로 된것은 거대한 자본의 대부 특히 자기의 강력한 경쟁자인 영국에 대한 대부였다. 류사한 관계는 현재 영국과 미국사이에도 있다. 오늘 미국에 나타나고있는 출처불명의 많은 자본은 어제 금방 영국에서 자본화된 아동의 피인것이다.

국채는 국가수입에 의거하고있으며 이것으로써 년년의 리자 등등의 지불에 충당하여야 하기때문에 현대적조세제도는 국채제도의 필수적인 보충물로 되였다. 국채는 정부로 하여금 림시비를 납세자가 당장 그 중하를 느끼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지출할수 있게 하지만 그러나 결과로서는 세금을 증수하지 않을수 없게 한다. 한편 계속 증대되는 부채에 의하여 야기된 세금의 증가는 정부로 하여금 새로운 림시지출을 할 때마다 부단히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수 없게 한다. 그리하여 가장 필요한 생활수단에 대한 과세(따라서 그 등귀)를 그 축으로 하는 현대적재정제도는 그자체내의 조

(243b) 《만약 오늘날 따따르인들이 구라파에 가득 들어왔다면 그들에게 우리의 금융업자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리해시키기는 매우 곤난할것이다.》 (몽떼스끼의 《법의 정신》, 1769년 런던판, 제4권, 33페지)

세의 자동적인 루진의 맹아를 내포하고있다. 과중한 과세란 우연한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세의 원칙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가 제일 먼저 시작된 화란에서 위대한 애국자 데 위뜨는 그의 《잠언》[496]중에서 이 제도는 임금로동자들을 순종, 검약, 근면하게 하며 또한…과도한 로동에 종사하게 하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찬양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사로 되는것은 이 제도가 임금로동자의 상태에 주는 파괴적영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제도에 의하여 진행된 농민, 수공업자, 한마디로 말하여 하층중산계급의 모든 구성부분에 대한 폭력적수탈이다. 이 점에 관하여서는 자산계급적경제학자들사이에서도 의견상이는 없다. 현대재정제도의 수탈적작용은 이 제도의 불가분의 구성부분의 하나인 보호무역제도에 의하여 더욱 강화된다.

공채와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재정제도가 부의 자본화, 대중에 대한 수탈에서 노는 거대한 역할로 말미암아 코비트, 다블데이 등등과 같은 일련의 저술가들은 부당하게도 현대적 인민의 빈곤의 주요원인을 거기에서 찾게 되였다.

보호무역제도①는 공장주들을 만들어내며 독립적로동자를 수탈하며 국민의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을 자본화하며 낡은 생산방식으로부터 현대적생산방식으로의 이행을 폭력적으로 단축시키기 위한 인위적수단이였다. 구라파의 국가들은 서로 다투어 이 발명의 특허를 얻으려 하였으며 일단 부정축재자에게 봉사하게 되자 이 목적을 위하여 간접적으로는 보호관세에 의하여, 직접적으로는 수출장려금 등등에 의하여 자국 인민만을 략탈한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예속되여있는 이웃나라들에서 모든 산업을 폭력적으로 전멸시켰는데 례컨

① 이 책 649페지를 보라. —편집자

대 잉글랜드는 아일랜드의 양모공장제수공업을 전멸시켰다. 구라파대륙에서는 이 과정은 꼴베르의 선례[497]에 따라 더욱더 단순화되였다. 여기에서는 산업가들의 시초자본의 일부분이 직접 국고에서 흘러나왔다. 미라보는 이렇게 웨친다.

《작센의 공장제수공업이 번영한 원인을 무엇때문에 멀리 7년전쟁 이전에서 찾으려 하는가? 1억 8,000만의 국채에 눈을 돌리기만 하면 될것이다!》 (244)

식민제도, 국채, 중세, 보호무역제도, 상업전쟁 등등—본래의 공장제수공업시기의 이 모든 새싹들은 대공업의 유년기에 거대하게 성장한다. 대공업의 탄생은 헤로데스왕이 한 바와 같은 대대적인 아동략탈[330]로써 축복된다. 영국해군이 자기의 해병을 강제징모하듯이 공장들은 자기의 로동자를 강제징모한다. P. M. 이든경은 15세기의 마지막 30여년부터 시작하여 그의 시대인 18세기말에 이르기까지의 농촌주민의 토지수탈의 참혹성에 대해서는 극히 랭담하였으며 또한 자본주의적농업과 《경지와 목장간의 옳은 비률의 설정》①에 《필요한》 이 과정을 크나큰 만족감을 가지고 경축하였으나 그는 공장제수공업적생산을 공장적생산으로 전화하며 자본과 로동력간에 옳은 비률을 설정하기 위하여 아동을 략탈하고 노예화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동일한 경제학적동찰력을 보여주고있지 않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다음과 같은 문제 즉 경영의 성과를 올리기 위하여 빈민아동들을 오두막과 빈민구제원에서 탈취하여 이들을 몇조로 나우어 교대시키면서 야간의 대부분을 혹사하며 휴식도 없이 일시키는 공장제수공업, 년령과 성격이 서로 다른 수많은 남녀를 한곳에 몰아넣음으로써 불피

(244) 미라보 《프리드리히대제치하의 프로이센왕국에 대하여》, 제6권, 101페지.

① 이 책 836페지를 보라. —편집자

코 악습에 물들어 방탕과 음란에 이르게 하는 공장제수공업, 바로 이와 같은 공장제수공업이 국가적 및 개인적 행복을 총체적으로 증가시킬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아마도 공중의 관심사가 될만하다.》(245)

필던은 이렇게 말한다.

《다비셔, 노팅감셔 특히는 랭카셔에서는 최근에 발명된 기계가 수차를 돌릴수 있는 하천가에 밀접한 큰 공장들에서 사용되였다.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이곳들에서는 수천명의 일손이 갑자기 필요하게 되였다. 그런데 특히 그 당시까지 인구가 희박하였으며 또 토지가 척박하였던 랭카셔에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이 요구되였다. 아동들의 민첩한 작은 손가락이 특히 요구되였다. 즉시로 런던, 버밍감, 기타의 교구빈민구제원으로부터 견습공 (!) 을 모집하는 관습이 생겼다. 7세부터 13내지 14세까지의 의지할곳 없는 수천명의 이러한 아동들이 북부로 수송되였다. 고용주 (즉 아동도적) 가 자기의 견습공을 입히고 먹이고 공장 가까이 있는 견습공숙소에 류숙시키는것이 상례로 되였다. 그들의 로동을 감독하기 위하여 감시인이 배치되였다. 이 감시인의 급료는 아동들에게서 짜낸 생산물량에 비례하였기때문에 아동들을 될수록 더 많이 로동시키는것이 이 노예감독들의 리익으로 되였다. 그 결과 자연히 학대가 심하였다.…많은 공장지구들에서 특히는 랭카셔에서 공장주의 손아귀에 맡겨진 이러한 무고하고 의지가지할데 없는 아동들은 비참하기 그지없는 혹사를 당하였다. 그들은 과도한 로동에 죽도록 시달리였으며…채찍으로 맞았으며 쇠사슬에 얽매였으며 극히 교활한 학대로 고통을 받았다. 기아로 피골이 상접한 그들은 채찍으로써 로동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그들은 때로는 자살하는데까지 이르렀다!…세상에서 동떨어져있은 다비셔, 노팅감셔, 랭카셔의 아름답고 랑만적인 산골짜기도 고문과 혼히는 살인의 음산한 장소로 화하였다!…공장주들의 리윤은 막대한것이였다. 이것은 그들의 승냥이와 같은 탐욕에 불을 질렀을뿐이다. 그들은 야간로동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즉 그들은 한 조의 직공들을 주간로동으로 피로에 쓰러지게 한 다음에는 야간로동을 위하여 다른 조의 직공들을 준비하였다. 주간조는 야간조가 방금 버리

(245) 이든 《빈민의 상태》, 제2권, 제1장, 420~422페지.

고 간 침대로 기여들어갔으며 또 그와 반대로 야간조는 주간조가 버리고 간 침대로 기여들어갔다. 한때도 침대가 식을 사이가 없다고 랭카셔 사람들은 말하고들있다.》(246)

공장제수공업시기에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발전함에 따라 구라파의 사회여론은 수치와 량심의 최후의 흔적마저 상실하였다. 여러 나라들에서는 어떠한 비행이라도 그것이 자본축적의 수단으로 되기만 한다면 그것을 파렴치하게 자랑하군 하였다. 례컨대 우직자인 A. 앤더슨의 소박한 상업년대기를 읽어보라. 이 년대기에서는 종래에는 영국이 흑인무역을 아프리카와 영령 서인도사이에서만 하였는데 이제는 아프리카와 에스빠냐령 아메리카사이에서 해도 좋다는 특권을 유트레히트평화조약체결시에 아시엔토조약[500]에 의하여 에스빠냐인으로부터 강탈한 사실을 영국국책의 승리라고 떠들어대고 있다. 영국은 1743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4,800명의 흑인을 에스빠냐령 아메리카에 공급할 권리를 얻었다. 이것은 동시에 영국의 밀수에 대한 공공연한 엄폐물이였다. 리버풀은 노

(246) 쥰 필던 《공장제도의 저주》, 5~6페지. 공장제도의 최초의 비행에 관하여서는 에이킨의사 《만체스터주변 30~40마일의 지방지》, 219페지와 기즈번 《대브리텐의 상중사회계급의 인간의 의무의 연구》, 1795년판, 제2권을 보라.—증기기관이 공장을 폭포가 있는 농촌으로부터 도시의 중심으로 이전시켰으므로 《금욕을 즐기는》 부정축재자들은 이제는 아동재료를 자기의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수 있게 되며 빈민구제원으로부터 노예를 강제로 공급받을 필요가 없게 되였다.—로버트 필경(《구변좋은 대신》의 아버지)이 1815년에 아동보호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을 때 프란씨스 호너(금덩이조사위원회[498]의 걸출한 인물이며 리카도의 친우)는 하원에서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한 파산자의 가재와 함께 공장아동의 한 조—만일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수 있다면—를 재산의 일부로서 광고하고 경매에 붙였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년전 (1813년) 에 아주 지독한 한 사건이 고등법원[499] 법정에 상정되였다. 한패의 아동들에 관한 사건이였다. 런던의 한 교구에서 그들을 어느 한 공장주에게 인도하였으며 이 공장주는 그들을 다시 다른 공장주에게 양도하였다. 나중에 수명의 자선가가 그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들은 절대적기아상태에 있었다. 그보다 더 무서운 다른 한 사건을 의회조사위원회의 한 위원인 그가 알게 되였다. 수년전에 런던의 한 교구와 랭카셔의 한 공장주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였는데 이에 의하면 그 공장주는 건전한 아동 20명에 천치 한명씩을 끼워받게 되여있었다.》

예무역의 기초우에서 크게 발전하였다. 노예무역은 이 도시의 시초축적의 방법으로 되고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리버풀의 《명망》은 여전히 노예무역 즉—우에서 인용한 1795년의 에이킨의사의 저서를 보라—《상업적기업정신을 열광에까지 제고시키며 훌륭한 해원을 양성해내며 막대한 화폐를 가져다준》 노예무역의 핀다로스이다. 리버풀에서 노예무역에 사용된 선박은 1730년에 15척, 1751년에 53척, 1760년에 74척, 1770년에 96척, 1792년에 132척이였다.

면방직업은 영국에서는 아동노예제도를 채용하였으나 그것은 동시에 미국의 종래는 많거나 적거나 가부장제적이였던 노예경제를 상업적착취제도로 전화시키는 동력을 주었다. 일반적으로는 구라파에서의 임금로동자의 은폐된 노예제도는 새세계에서의 로골적인 노예제도를 자기의 발판으로 삼는것이 필요하였다.(247)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영원한 자연법칙》이 자유롭게 발현할수 있게 하며 로동자들을 그들의 로동수단으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을 완성하며 한 극에서는 사회적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을 자본으로 전화시키고 다른 한 극에서는 인민대중을 임금로동자로, 자유로운 《로동빈민》(248)—이것은 현대사의

---

(247) 1790년에 자유민에 대한 노예의 비률은 영령 서인도에서는 1명 대 10명, 프랑스령 서인도에서는 1명 대 14명, 화란령 서인도에서는 1명 대 23명이였다.(헨리 브룸 《구라파렬강의 식민정책의 연구》, 1803년 에딘버러판, 제2권, 74페지)

(248) 《로동빈민》이라는 표현은 임금로동자계급이 주목을 끌마큼 된 순간부터 영국법률에 나타나고있다. 이 《로동빈민》은 한편으로는 《라태한 빈민》, 거지 등등과 상대되며 또 한편으로는 아직 털을 다 뽑히여버린 닭이 아니고 자기의 로동수단의 소유자인 로동자들과 상대된다. 이 《로동빈민》이란 표현은 법률에서 정치경제학으로 옮아가서 여기에서 칼페퍼, J. 챠일드 등등으로부터 A. 스미스와 이든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사용하고있다. 이로써 우리는 이 《로동빈민》이라는 표현을 《밉살스러운 정치적위선》이라고 언명한 《밉살스러운 정치적위선가》인 에드먼드 버크의 선의를 가히 짐작할수 있다. 아메리카동란①의 초기에는 북아메리카식민지에 고용되여 영국과두정부에 고용되

결작이다—으로 전화시키는것은 이렇게도 힘든 일이였다.[501] 오지에가 말하는바와 같이 만약 화폐가 《한쪽 볼에 피자국을 띠고 이 세상에 나온다.》(249)고 하면 자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털구멍에서 피와 오물을 흘리면서 이 세상에 나온다.(250)

7. 자본주의적축적의 력사적경향

자본의 시초축적 즉 자본의 력사적발생은 결국 무엇에 귀착되는가? 그것이 노예 및 농노의 임금로동자의 직접적전화가 아니며 따라서 단순한 형태변환이 아닌 이상 그것은 오직 직접적생산자의 수탈 즉 자기의 로동에 립각한 사적소유

여 프랑스혁명을 반대하여 랑만주의자의 역할을 논 이 아첨쟁이는 극히 범속한 자산자였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상업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며 따라서 신의 법칙이다.》(E. 버크 《곡물부족에 관한 의견과 상론》, 1800년 런던판, 32페지) 신과 자연의 법칙에 충실한 그가 항상 자기자신을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팔았다는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타커목사의 저술가운데서 이 에드먼드 버크가 자유주의자였던 시대의 그의 극히 적절한 성격묘사를 찾아볼수 있다. 타커는 목사였고 토리당원이였으나 다른 점에서는 정직한 인간이였고 유능한 정치경제학자였다. 현재 수치스러운 무절조가 횡행하고있으며 《상업의 법칙》이 가장 두터이 신앙되고있다는것을 고려할 때 버크도배—그 후계자들과 다른 점은 단 한가지 재능뿐이다—에 대하여 몇번이고 락인을 찍는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249) 마리 오지에 《공공신용 및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그 력사에 관하여》 (1842년 빠리판, 265페지)

(250) 《분기평론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있다. 《자본은 소란과 분쟁을 피하는것이며 겁쟁이의 본성을 가졌다. 이것은 진리이지만 그러나 결코 완전한 진리는 아니다. 자연이 진공을 두려워하듯이 자본은 리윤이 없거나 또는 리윤이 극히 적은것을 두려워한다. 상당한 리윤이 있으면 자본은 용감해진다. 10%의 리윤이 보장되면 자본은 어디에서나 사용된다. 20%가 보장되면 자본은 활기를 띠며 50%가 보장되면 대담무쌍해지며 100%라면 인간의 법을 모두 유린하며 300%라면 단두대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범하지 않는 범죄가 없다. 만약 소란과 분쟁이 리윤을 가져다준다면 자본은 그것들을 다 고무추동할것이다, 이에 대한 증거는 밀수와 노예무역이다.》(T. J. 단닝 《로동조합과 파업》, 1860년 런던판, 35~36페지)

의 해체를 의미할뿐이다.

사회적, 집단적 소유의 대립물로서의 사적소유는 오직 로동수단 및 외부적로동조건들이 사인에게 속하는 곳에만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인이 로동자인가 또는 비로동자인가에 따라 사적소유의 성격도 또한 달라진다. 얼핏 눈에 뜨이는 이 사적소유의 무한히 다양한 색채는 이 량극사이에 있는 중간상태들을 반영할따름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로동자의 사적소유는 소생산의 기초이며 소생산은 사회적생산과 로동자자신의 자유로운 개성의 발전에 필요한 조건이다. 확실히 이 생산방식은 노예제도, 농노제도 및 기타의 예속적 제 관계하에서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이 번영하며 자체의 모든 정력을 발휘하고 적당한 전형적형태를 취하는것은 오직 로력자가 그자신이 사용하는 로동조건의 자유로운 사유자인 경우, 농민이라면 그가 경작하는 경지의, 수공업자라면 그가 능숙하게 다루는 도구의 자유로운 사유자인 경우뿐이다.

이 생산방식은 토지와 기타 생산수단의 분산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이러한 생산수단의 집적을 배제하는 동시에 동일한 생산과정내부에서의 협업과 분업, 자연에 대한 사회적 지배와 통제, 사회적생산력의 자유로운 발전도 배제한다. 그것은 다만 생산 및 사회의 협소한 자연발생적한계와만 조화될수 있는것이다. 그것을 영구화하려는것은 빼꾀르가 옳게 지적하고있듯이 《일반적인 범용을 명령》하려는것이나 다름없다.[502] 일정한 정도에 달하면 그것은 자기자체를 파괴하는 물질적수단을 만들어낸다. 이 순간부터 사회의 태내에서는 이 생산방식을 질곡으로 느끼는 세력과 정열이 태동하기 시작한다. 이 생산방식은 멸망하지 않을수 없으며 또 멸망된다.

그것의 멸망 즉 개인적이며 분산적인 생산수단의 사회적으로 집적된 생산수단으로의 전화, 따라서 다수인의 령세한 소유의 소수인의 거대한 소유로의 전화, 따라서 광범한 인민대중으로부터의 토지와 생활수단과 로동도구의 수탈—인민대중으로부터의 이러한 처참하고 가혹한 수탈이 자본의 전사를 이룬다. 거기에는 일련의 폭력적방법이 포함되여있는데 우리는 그가운데서 오직 시초축적의 방법으로서 획기적인것만을 우에서 고찰하였다. 직접적생산자의 수탈은 가장 무자비한 만행으로써 그리고 가장 비렬하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야비하고 가장 가증스러운 정열의 충동하에서 수행된다. 자신의 로동으로 획득한, 말하자면 개개의 독립적로력자와 그의 로동조건과의 유착에 립각한 사적소유는 타인의 로동이기는 하나 형식상으로는 자유로운 로동의 착취에 기초한 자본주의적사적소유에 의하여 구축된다.(251)

이 전화과정이 낡은 사회를 깊이에 있어서나 넓이에 있어서나 충분히 분해시키자마자, 또 로력자가 이미 무산자로 전화되고 그들의 로동조건이 자본으로 전화되자마다, 그리고 또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제발로 서게 되자마자 로동의 가일층의 사회화와 토지 및 기타 생산수단의 사회적으로 리용되는 생산수단 즉 공동적인 생산수단으로의 가일층의 전화, 따라서 또 사유자의 가일층의 수탈은 새로운 형태를 취한다. 이제는 수탈을 당할자는 벌써 독립적경영을 하는 로력자가 아니라 다수 로동자를 착취하는 자본가이다.

이 수탈은 자본주의적생산자체의 내재적법칙의 작용에 의

---

(251) 《우리는 사회의 완전히 새로운 상태에 있다.…우리는 온갖 종류의 소유를 온갖 종류의 로동으로부터 분리시켜려 한다.》 (씨스몽디 《정치경제학의 새 원리》, 제2권, 434페지)

하여 즉 자본의 집중에 의하여 진행된다. 한 자본가가 많은 자본가를 때려눕힌다. 이러한 집중 즉 소수자본가에 의한 다수 자본가의 수탈과 병행하여 로동과정의 협업적형태가 더욱 더 큰 규모로 발전하며 과학의 의식적인 기술적응용, 토지의 계획적리용, 공동적으로만 사용할수 있는 그러한 로동수단으로의 로동수단의 전화, 모든 생산수단을 결합된 사회적로동의 생산수단으로서 사용함으로써 얻는 로동수단의 절약, 각국 인민들의 세계시장망에의 인입, 따라서 또 자본주의제도의 국제적성격 등이 발전한다. 이 전화과정의 모든 리익을 탈취하고 독점하는 대자본가의 수가 부단히 줄어가는 동시에 빈곤, 압박, 예속, 타락, 착취의 정도도 증대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수가 부단히 증가하며 또 자본주의적생산과정자체의 기구에 의하여 훈련되며 련합되며 조직되는 계급인 로동계급의 반항도 또한 증대한다. 자본의 독점은 이 독점과 더불어 또 이 독점밑에서 개화한 그 생산방식의 질곡으로 된다. 생산수단의 집중과 로동의 사회화는 마침내 그 자본주의적외피와 조화할 수 없는 점에 도달한다. 자본주의적외피는 파렬한다. 자본주의적사적소유의 조종이 울린다. 수탈자는 수탈된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으로부터 생겨나는 자본주의적취득방식, 따라서 또 자본주의적사적소유는 자신의 로동에 기초한 개인적인 사적소유의 첫 부정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생산은 자연과정의 필연성을 가지고 그자체의 부정을 낳는다. 이것은 부정의 부정이다. 이 부정은 사적소유를 재건하지 않지만 자본주의시대의 성과를 기초로 하는 즉 협업과 토지 및 로동자체에 의하여 생산된 생산수단의 공동소유를 기초로 하는 개인적소유를 재건한다.

자신의 로동에 기초한 개인의 분산된 사적소유가 자본주

의적사적소유로 전화하는것은 사실상 벌써 사회적생산경영과정에 기초를 두고있는 자본주의적사적소유가 사회적소유로 전화하는것보다 물론 훨씬 더 오래 걸리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다. 전자의 경우는 소수의 강탈자가 인민대중을 수탈하는것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인민대중이 소수의 강탈자를 수탈하는것이다.(252)

(252) 《자산계급이 무의식적으로 촉진시켰고 또 그로서는 저항할수 없는 산업의 진보는 경쟁에 의한 로동자들의 분리 대신에 결사에 의한 그들의 혁명적련합을 가져온다. 이리하여 대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자산계급이 생산물을 생산하며 생산물을 점유하는 지반자체가 자산계급의 발밑에서 무너져간다. 자산계급은 무엇보다도먼저 자기자신의 매장인을 낳는다. 자산계급의 멸망과 무산계급의 승리는 다같이 불가피적이다.…오늘날 자산계급에 대립하고있는 모든 계급들중에서 오직 무산계급만이 참으로 혁명적인 계급이다. 다른 모든 계급은 대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몰락하고 멸망하나 무산계급은 대공업자체의 산물인것이다. 중간신분들 즉 소공업가, 소상인, 수공업자, 농민들이 자산계급과 투쟁하는것은 중간신분으로서의 자기의 생존을 수호하고 멸망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이다. 따라서 그들은 혁명적이 아니고 보수적이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반동적이기도 하다. 그것은 그들이 력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고 애쓰기때문이다.》 (칼 맑스 및 엥겔스 프리드리히 《공산당선언》, 1848년 런던판, 11, 9페지[372])

제 25 장

현 대 식 민 리 론(253)

정치경제학은 매우 다른 두 종류의 사적소유를 원칙상 혼동하고있다. 그중 하나는 생산자자신의 로동에 기초하고있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타인의 로동의 착취에 기초하고있는것이다. 후자는 비단 전자의 직접적대립물을 이룰뿐만아니라 또한 전자의 무덤우에서만 성장한다는것을 정치경제학은 망각하고있다.

정치경제학의 고향인 서구라파에서는 시초축적의 과정은 많든적든간에 이미 완성되였다. 자본주의제도는 여기에서 모든 국민적생산을 직접 정복하였거나 또는 그 관계가 아직 덜 발전한 곳에서는 그 제도와 더불어 아직도 계속 존속하고있으면서 쇠퇴하고있는, 낡은 생산방식에 속하는 사회층들을 적어도 간접적으로 통제하고있다. 정치경제학자는 제반 사실이 그의 의식형태를 비난하는 소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열렬히 이 완성된 자본세계에 전자본주의 세계의 법률관념과 소유관념을 적용한다.

식민지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식민지에서는 어디에서나 자본주의적지배체제는 자기자신의 로동조건의 소유자이며 자기의 로동에 의하여 자본가를 치부케 하는것이 아니라 자기

(253) 여기서 문제로 하고있는것은 실제적인 식민지 즉 자유이민에 의하여 개척되는 처녀지이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말하면 의연히 구라파의 식민지이다. 그밖에 노예제도의 폐지에 의하여 사정이 전혀 달라진 구재배식민지도 이 부류에 속한다.

자신을 치부케 하는 생산자의 장애에 부닥친다. 여기에서는 이 두 정반대되는 경제제도의 모순은 그들간의 투쟁에서 실제로 나타난다. 자본가의 배후에 본국의 권력이 있는 곳에서는 자본가는 자신의 로동에 기초한 생산방식과 취득방식을 폭력적으로 제거하려고 노력한다. 자본에 아부하는 정치경제학자로 하여금 본국에서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그자체의 반대물과 동일하다는것을 리론적으로 설명하게 하는 리해관계, 그 동일한 리해관계가 여기에서는 그로 하여금 《사실을 그대로 밝히게》 하고있으며 이 두 생산방식의 대립을 소리높이 선언하게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는 로동의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 즉 협업, 분업, 기계의 대규모적사용 등등은 로동자의 착취와 그에 상응하는 생산수단의 자본으로의 전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것을 증명한다. 소위 국민적부의 리익을 위하여 그는 인민적빈궁을 만들어내기 위한 인위적수단을 탐구한다. 그의 변호론적갑옷은 여기에서는 타버린 심지처럼 토막토막 부스러져간다.

E. G. 웨익필드의 큰 공적은 식민지에 관하여 그 어떤 새로운것을 발견한것이 아니라(254) 식민지에서 본국의 자본주의적관계에 관한 진리를 발견한것이다. 보호무역제도가 그 발생당시에(255) 본국에서 자본가를 만들어내는데 노력한것처럼 웨익필드의 식민리론—영국은 한동안 이 식민리론을 립법적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려고 하였다—은 식민지에서 임금로동자를 만들어내는데 노력한다. 이것을 그는 《systematic

---

(254) 식민지자체의 본질에 관한 웨익필드의 약간의 탁견은 벌써 그보다 먼저 중농주의자인 미라보(아버지)와 또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영국의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던것이다.

(255) 보호무역제도는 후에 국제적인 경쟁전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한것으로 된다. 그러나 그 동기는 여하튼간에 그 후과는 여전히 동일한것이다.

colonization》(계통적식민)이라고 부르고있다.

웨익필드가 우선 식민지에서 발견한것은 어느 한사람이 화폐, 생활수단, 기계 및 기타 생산수단을 소유하더라도 임금로동자와 같은 보충물 즉 자기자신을 자유의사에 의하여 팔지 않을수 없는 다른 사람이 없다면 그는 아직 자본가로 되지 않는다는것이다. 그는 자본이란 물건이 아니며 물건들에 의하여 매개된 사람들간의 사회적관계라는것을 발견하였다.(256) 그는 필씨가 총액 5만파운드의 생활수단과 생산수단을 영국으로부터 신화란①의 스원강으로 가지고갔다는것을 개탄하고있다. 필씨는 예견성있게도 이밖에 로동계급의 남녀성년과 아동들을 300명 데리고갔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하자 《필씨에게는 그의 잠자리를 보아준다든가 강물을 길어다줄 하인이 한사람도 없었다》.(257) 불행한 필씨는 모든것을 예견하였지만 그러나 영국의 생산관계를 스원강으로 수출하는것만은 예견하지 못하였던것이다!

웨익필드의 다음과 같은 발견들을 리해하기 위하여 두가지의 설명을 가하여두자. 우리가 알고있는바와 같이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은 직접적생산자의 소유물로서는 자본②이 아니다. 그것들은 동시에 로동자에 대한 착취수단과 지배수단으로서도 복무하는 그러한 조건하에서만 자본으로 된다. 그러

(256) 《흑인은 흑인이다. 일정한 관계하에서만 그는 노예로 된다. 면방적기계는 면화로 실을 뽑는 기계이다. 일정한 관계하에서만 그것은 자본으로 된다. 이러한 관계를 떼낸다면 그것은 자본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금이 그자체로서는 화폐가 아니며 또 사탕이 사탕가격이 아닌것과 마찬가지이다.…자본은 사회적생산관계이다. 그것은 하나의 력사적생산관계이다.》(칼 맑스 《임금로동과 자본》, 1849년, 4월 7일부 《신라인신문》, 제266호)

(257) E. G. 웨익필드 《영국과 미국》, 제2권, 33페지.

① 오스트랄리아의 옛이름. 一편집자

② 이 책 820~822페지를 보라. 一편집자

나 그것들의 이러한 자본주의적령혼은 정치경제학자의 머리속에서는 그것들의 물질적실체와 매우 긴밀히 결합되여있으므로 그는 그것들을 어떠한 사정하에서도, 심지어는 자본의 정반대물인 경우에도 자본이라고 부른다. 웨익필드에게 있어서도 그러하다. 또 호상 독립적이며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많은 로동자의 개인적소유물을 이루는 생산수단의 분산을 그는 자본의 균분이라고 부르고있다. 정치경제학자나 봉건적법학자나 다름이 없다. 봉건적법학자는 순전한 화폐관계에까지도 봉건적인 법률적딱지를 붙였던것이다.

웨익필드는 이렇게 말한다.

《만약 자본이 모든 사회성원들사이에 균등하게 분배된다면 어느 누구도 자기자신의 손으로 사용할수 있는것보다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려고 하지 않을것이다. 아메리카의 새로운 식민지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 이러한데 거기서는 토지소유에 대한 열망이 임금로동자계급의 존재를 방해하고있는것이다.》(258)

따라서 로동자가 자기자신을 위하여 축적할수 있는 동안은—그런데 그는 자기의 생산수단의 소유자로 되고있는 동안은 그렇게 할수 있다—자본주의적축적과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임금로동자계급이 없는것이다. 그러면 구구라파에서는 어떻게 로동자로부터의 로동조건의 수탈이, 따라서 자본과 임금로동이 생겨났는가? 그것은 매우 독특한 사회계약에 의하여서이다.

《인류는…자본의 축적을 촉진하는 간단한 방법을 채용하였는데》 물론 인류는 그것을 아담의 시대이래 자기 존재의 최종적이며 유일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여왔던것이다. 《인류는 자본의 소유자와 로동의 소유자로 분할되였다.…이 분할은 자유의사에 기초한 합의와 결합의

---

(258) E. G. 웨익필드 《영국과 미국》, 제1권, 17페지.

결과였다》.(259)

한마디로 말하여 인류의 대다수는 《자본축적》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자신을 수탈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사람들은 사회계약을 몽상의 왕국으로부터 현실의 왕국으로 옮겨놓을수 있는 인간과 환경이 식민지에만 존재하기때문에 특히 거기에서는 이러한 광신적인 자기포기의 본능이 분방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할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자연적식민에 대립하는 《계통적식민》이란 무엇을 위한것인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카련방의 북부 제 주에서는 임금로동자의 부류에 인구의 10분의 1이나마 속하고있는지 의심스럽다.…영국에서는…인민의 대부분이 임금로동자이다.》(260)

사실 자본의 영광을 위한 로동인류의 자기 수탈의 본능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예제도는 웨익필드에 의하더라도 식민지의 부의 유일한 자연발생적기초인것이다. 그의 계통적식민은 순전한 웅급책에 불과하다. 왜냐 하면 그가 상대로 하여야 하는것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기때문이다.

《산도밍고의 최초의 에스빠냐이주민들은 에스빠냐로부터 로동자를 한사람도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로동자가 없이는 (즉 노예제도가 없이는) 자본은 파멸하든가 또는 적어도 매개인이 자기자신의 손으로 사용할수 있을 정도의 적은 규모로 축소될것이다. 이것은 영국인들이 건설한 최후의 식민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거기에서는 종자, 가축, 도구 등등으로 되여있는 거액의 자본이 임금로동자의 부족으로 인하여 파멸하였으며 또한 거기에서는 어떠한 이주자도 자기자신의 손으로 사용할수 있는 규모를 초과하는 자본을 가지고있지 않았다.》(261)

---

(259) E. G. 웨익필드 《영국과 미국》, 제1권, 18페지.
(260) 우와 같은 책, 42~44페지.
(261) 우와 같은 책, 제2권, 5페지.

이미 본바와 같이 인민대중으로부터의 토지의 수탈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기초①이다. 이와는 반대로 자유식민지의 본질은 대량의 토지가 아직 인민의 소유이며 따라서 이주자마다 그 일부를 자기의 사적소유로, 또한 개인적생산수단으로 전화시킬수 있으며 그리고도 뒤에 오는 이주자들이 그렇게 하는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데 있다.(262) 여기에 식민지번영의 비밀이 있는 동시에 또한 식민지의 암종—자본의 이주에 대한 그 반항—의 비밀이 있는것이다.

《토지가 대단히 눅으며 모든 사람이 자유로우며 또한 각자가 자기의 희망대로 자기자신을 위하여 한뙈기의 토지를 입수할수 있는 곳에서는 로동은 대단히 비쌀뿐만아니라—로동자의 생산물중에서 그가 받는 몫으로 보아—거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대가로써도 결합로동을 얻기는 힘들다.》(263)

식민지에서는 로동조건과 그 조건의 기초인 토지로부터 로동자가 아직 분리되여있지 않거나 또는 다만 산재적으로나 또는 너무나 제한된 범위에서만 분리되여있기때문에 여기에서는 아직 공업으로부터의 농업의 분리도 없으며 농촌가내공업도 없어지지 않고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자본을 위한 국내시장이 어디로부터 오게 되는가?

《노예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큰 기업을 위하여 자본과 로동을 결합하는 노예주를 제외하고는 아메리카의 인구의 어느 부분도 농업을 전업으로 하지 않는다. 토지를 자기로 경작하는 자유로운 아메리카인들은 동시에 다른 많은 일에 종사하고있다. 그들은 대개 그들에게 필요한 가구와 도구의 일부를 자기로 만든다. 그들은 흔히 자기의 집을 자기로

---

(262) 《토지가 식민의 요소로 되기 위하여서는 비단 미경지여야 할뿐만아니라 또한 사유지로 전화될수 있는 공유지여야 한다.》(E. G. 웨익필드 《영국과 미국》, 제2권, 125페지.)

(263) 우와 같은 책, 제1권, 247페지.

---

① 이 책 820~842페지를 보라. —편집자

지으며 자기 손으로 만든 공업생산물을 대단히 먼 시장에 가지고간다. 그들은 방적자인 동시에 직포자이기도 하며 자기가 소비할 비누, 양초, 신발, 의복을 자기로 만든다. 아메리카에서는 토지경작이 흔히 야장공, 제분업자 또는 소매상인의 부업으로 되여있다.》(264)

이와 같은 괴물들사이에서 자본가를 위한 《금욕의 장소》가 어디에 남아있겠는가?

자본주의적생산의 큰 미점은 그것이 임금로동자를 임금로동자로서 부단히 재생산할뿐만아니라 또한 자본축적에 비례하여 항상 임금로동자의 상대적과잉인구를 생산한다는 점에 있다. 이리하여 로동의 수요공급의 법칙은 정상적인 궤도에서 유지되며 임금의 변동은 자본주의적착취에 적합한 한계내에 제한되며 그리고 끝으로 자본가에 대한 로동자의 필요불가결한 사회적예속관계 즉 절대적예속관계가 보장된다. 그것은 본국에 즉 종주국에 있는 정치경제학자는 그것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자유로운 계약관계 즉 한편은 자본이라는 상품을 가지고있고 다른 한편은 로동이라는 상품을 가지고있는 대등하고 독립적인 상품소유자들간의 자유로운 계약관계인것처럼 교묘하게 기만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식민지에서는 이 아름다운 환상은 파멸된다. 여기에서는 많은 로동자가 이미 성인으로서 세상에 나타나기때문에 인구의 절대적증가는 본국에서보다 훨씬 빠르지만 그러나 로동시장은 항상 공급부족이다. 로동의 수요공급의 법칙은 파괴를 당한다. 한편으로 구세계는 착취를 탐내고 금욕을 열망하는 자본을 부단히 투입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로동자로서의 임금로동자의 규칙적인 재생산은 매우 완강하고 부분적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에 부닥친다. 하물며 자본의 축적에 비하여 과

---

(264) E. G. 웨익필드 《영국과 미국》, 제1권, 21~22페지.

잉한 임금로동자의 생산이란 더 말할나위도 없다! 오늘의 임금로동자도 래일에는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농민 또는 수공업자로 된다. 그는 로동시장으로부터 사라지지만 결코 빈민구제원으로 가는것은 아니다. 자본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기자신을 위하여 로동하며 자본가 제씨를 치부케 하는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을 치부게 하는 독립적생산자에로의 임금로동자의 이와 같은 부단한 전화는 이번에는 로동시장의 상태에 극히 유해로운 반작용을 한다. 문제는 임금로동자의 착취도가 어울리지 않을만큼 낮다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임금로동자는 금욕적인 자본가에 대한 예속관계와 함께 그에 대한 예속감정까지도 잃어버리는것이다. 우리의 E. G. 웨익필드가 그렇게도 용감하게, 그렇게도 웅변적으로 그렇게도 감동적으로 묘사하고있는 모든 폐단은 이에 유래하는것이다.

그는 임금로동의 공급이 부단하지도 않으며 규칙적으로도 되지 않으며 충분하지도 않다고 개탄한다. 그것은 《언제나 지나치게 적을뿐만아니라 또한 확실하지도 않다》(265).

《로동자와 자본가사이에 분배하여야 할 생산물은 비록 크다 할지라도 로동자는 너무나도 큰 몫을 차지하므로 그는 급속히 자본가로 된다.…그렇지만 보기 드물만큼 장생하여도 많은 부를 축적할수 있는자는 극히 적다.》(266)

로동자들은 그들의 로동의 최대부분의 지불을 자본가가 금욕하는것을 절대로 용허하지 않는다. 비록 자본가가 아주 약아서 자기의 자본과 더불어 자기자신의 임금로동자를 구라파로부터 수입하여온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

(265) E. G. 웨익필드 《영국과 미국》, 제2권, 116페지.
(266) 우와 같은 책, 제1권, 131페지.

《그들은 곧 임금로동자임을 그만두고 곧 독립적농민으로 전화되거나 또는 바로 임금로동시장에서 자기들의 이전고용주의 경쟁자로까지 전화된다.》(267)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유능한 자본가는 자기자신의 귀중한 화폐로써 바로 자기자신의 산 경쟁자를 구라파에서 수입하여온것이다! 그러니 만사는 다 틀렸다! 식민지에서 임금로동자의 예속관계와 예속감정이 결여되여있다고 웨익필드가 개탄하는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의 제자 메리베일은 이렇게 말한다. 식민지들에서는 임금이 높기때문에 거기서는

《보다 값싸고 보다 온순한 로동에 대한 갈망 즉 로동자자신이 자본가에게 조건을 지시하는것이 아니라 자본가가 조건을 지시할수 있는 그러한 계급에 대한 갈망이 존재한다.…구문명국들에서는 로동자는 비록 자유롭기는 하지만 자연법칙에 의하여 자본가에게 종속되여있는데 식민지들에서는 이 종속관계가 인위적수단에 의하여 조성되지 않으면 안된다.》(268)

---

(267) E. G. 웨익필드 《영국과 미국》, 제2권, 5페지.

(268) 메리베일 《식민 및 식민지에 관한 강의》, 제2권, 235~237, 314페지의 이곳저곳. 온건한 자유무역론자이고 속류경제학자인 몰리나리조차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노예제도가 폐지되였으나 그에 해당한 량의 자유로동으로 강제로동이 대체되지 않은 식민지들에서는 매일 우리 눈앞에서 발생하는것과는 반대의것을 보았다. 우리가 본바와 같이 단순한 로동자들이 오히려 산업기업가들을 착취하고있으며 생산물중에서 그들에게 속할 정당한 몫을 훨씬 초과하는 임금을 요구하고있다. 재배농장주들은 자기들의 사탕을 팔아도 임금의 증대를 보상할만한 가격을 받을수 없었기때문에 부족액을 처음에는 자기들의 리윤으로써, 다음에는 자기들의 자본으로써 보상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많은 재배농장주들은 이와 같이 하여 령락하였으며 다른 재배농장주들은 불가피한 령락을 면하려고 기업을 폐쇄하였다.…의심할바없이 수세대의 인간의 파멸보다는 자본축적의 파멸이 보다 나을것이다. (얼마나 관대한 몰리나리씨인가!) 그러나 쌍방이 다 파멸되지 않는다면 더욱 좋지 않겠는가.》(몰리나리 《경제학연구》, 1846년 빠리판, 51~52페지) 몰리나리씨여, 몰리나리씨여! 만약 구라파에서는 《기업가》가 로동자의 《정당한 몫》을 잘라먹고, 서인도에서는 로동자가 기업가의 《정당한 몫》을 잘라먹을수 있다면 도대체 십계는, 모세와 예언자들은[416], 수요공급의 법칙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당신이 인정하는바와 같이 구라파의 자본가가 매일 지불하지 않고있는 《정당한 몫》이란 무엇인가? 거기에서 즉 자본가를 《착취》하리만큼 로동자들이 《단순하다》는 식민지에서 몰리나리씨는 다른 경우라면 자동적으로 작용하는 수요공급의 법칙을 경찰적방법으로 바른 궤

그러면 웨익필드의 의견으로는 식민지의 이와 같은 폐단의 결과는 어떠한것인가? 그것은 생산자와 국민적재산을 《분산시키는 야만적제도》이다.(269) 무수한 독립경영의 소유자들사이에 생산수단을 분산시키는것은 자본의 집중을 파괴하는 동시에 결합로동의 모든 기초를 파괴한다. 여러해에 걸치며 고정자본의 투하를 요하는 장기적기업은 모두 그 운영상 장애에 부닥친다. 구라파에서는 자본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는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는 로동계급은 자본의 산 부속물로 되고있으며 항상 과잉상태로 존재하며 항상 리용될수 있기때문이다. 그런데 식민지나라들에서는 어떠한가! 웨익필드는 지극히 비통한 하나의 일화를 이야기하고있다. 그는 카나다와 뉴욕주의 수명의 자본가들과 담화하였는데 거기에서는 설상가상으로 이민의 파도가 자주 정체되며 《과잉》로동자를 침전시킨다. 통속극의 한 등장인물은 다음과 같이 탄식한다.

《우리의 자본은 장기간 걸려야 완성할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위해서 준비되였던것이다. 그러나 곧 우리를 등지고 떠나가리라는것을 알고있는 그러한 로동자를 가지고 이와 같은 작업에 착수할수 있었겠는가? 이러한 이주민들의 로동을 확보할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우리는 즐겨 즉석에서 그것도 높은 가격으로 그들을 고용하였을것이다. 그뿐만아니라 그들이 떠나가리라는것이 분명한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때는 언제나 이주민의 새로운 공급이 확실하였다면 우리는 그들을 고용하였을것이다.》(270)

웨익필드는 영국의 자본주의적농업과 그 《결합》로동을 아메리카의 분산적농민경영과 화려하게 대비시켜 보인후에

도에 올려세우려고 매우 속을 태우고있다.

(269) 웨익필드 《영국과 미국》, 제2권, 52페지.

(270) 우와 같은 책, 제2권, 191~192페지.

자기도 모르게 사태의 반면마저 보여주었다. 그는 아메리카의 인민대중을 유족하며, 독립적이며, 기업심이 강하며, 비교적 교양있는것으로 묘사하고있다. 그러나

《영국농업로동자는 가엾은 사람이며 극빈민이다.…북아메리카와 일부 신식민지들을 제외하고 농업에 사용되는 자유로동의 임금이 로동자의 필요불가결한 생존수단을 어느 정도 훨씬 초과하는 그런 나라가 또 어디 있겠는가?…의심할바없이 영국의 부림말은 귀중한 재산이므로 영국의 경작자보다 훨씬 더 좋은 급양을 받고있다》.(271)

그러나 걱정할것은 없다. 국민적부는 본래 인민의 빈궁과 동일한것이니까.

그러면 식민지의 반자본주의적암종은 어떻게 치료할것인가? 만약 모든 토지를 일거에 국민적소유로부터 사적소유로 전화시킨다면 이것으로 화근은 근절되겠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식민지도 또한 근절될것이다. 그런데 묘책은 일석이조에 있는것이다. 정부는 처녀지에 수요공급의 법칙과는 상관없는 가격 즉 인위적가격을 정하여 이주민이 토지를 구입하고(272) 독립적농민으로 전화될수 있을만큼 돈을 벌 때까지는 비교적 장기간 임금로동을 하지 않을수 없게 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임금로동자로서는 비교적 사기 힘든 그러한 가격으로 그에게 토지를 판매함으로써 형성되는 기금으로 즉 신성한 수요공급의 법칙을 침해함으로써 임금으로부터 짜내는 이 화폐기금으로, 그 기금이 증대하는 정도에 따라 구라파로부터

---

(271) 웨익필드 《영국과 미국》, 제1권, 24, 47, 246페지.

(272) 《자기의 손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자가 일자리를 구하여 수입을 얻는것은 토지와 자본의 점유의 덕택이라고 당신들은 말한다.…그렇지만 자기의 손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자가 존재한다는것은 오직 토지의 개인적점유의 덕택이다.…어떤 사람을 진공속에 집어넣는다면 그에게서 공기를 빼앗는것이다. 당신들이 토지를 점령하는 경우에도 꼭 마찬가지이다.…그것은 그를 아무런 부도 없는 진공속에 집어넣어 당신의 의지에 복종하지 않으면 생활할수 없게 하는것이다.》(쁠랭 《정치경제학. 혁명과 소위 사회주의유토피아의 기원》, 1857년 빠리판, 제3권, 267~271페지의 이곳저곳)

식민지로 빈민들을 수입해들어옴으로써 자본가나으리를 위하여 임금로동시장을 충만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는 《최선의 세계에서는 만사가 최선의 상태에 있게 될것이다》.[177] 이것이야말로 《계통적식민》의 대비밀이다. 웨익필드는 의기양양하게 웨친다.

《이 계획에 의하면 로동의 공급은 상시적이며 규칙적일것이다. 왜냐 하면 첫째로, 어떠한 로동자도 로동하여 돈을 벌 때까지는 토지를 구입할수 없으므로 모든 이주로동자들이 임금을 얻으려고 결합하여 로동함으로써 그들이 고용주에게 보다 많은 로동을 사용할수 있도록 자본을 생산해줄것이기때문이며 둘째로, 임금로동을 그만두고 토지소유자로 되는자는 누구나 바로 토지를 구입함으로써 식민지에 새로운 로동을 수입하기 위한 기금을 보장할것이기때문이다.》(273)

국가가 정하는 토지가격은 물론 《충분한 가격》이여야 한다. 즉 이것은 《로동자가 임금로동시장에서 자기를 대신할 다른 사람들이 나타날 때까지는 독립적농민으로 되는것을 방해할수 있을만큼》(274) 높지 않으면 안된다. 이 《충분한 토지가격》이란 로동자가 임금로동시장으로부터 농촌으로 돌아가는 허가를 받기 위하여 자본가에게 지불하는 몸값을 완곡하게 바꾸어 말한것에 불과하다. 로동자는 우선 자본가나으리가 더 많은 로동자를 착취할수 있는 《자본》을 그에게 창조해주어야 하며 다음에는 자기의 《대리자》를 로동시장에 내놓아야 하는데 이 대리자를 정부는 로동자의 부담으로 그의 이전 주인인 자본가나으리를 위하여 바다건너에서 수송하여오는것이다.

웨익필드씨가 특히 식민지에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한 《시초축적》의 이 방법을 영국정부가 여러해동안 실시하여

(273) 웨익필드 《영국과 미국》, 제2권, 192페지.
(274) 우와 같은 책, 45페지.

왔다는것은 대단히 특징적이다. 물론 그 실패는 필의 은행법[153]의 실패만큼 수치스러운것이였다. 그 결과는 이민이 영국식 민지로부터 미국으로 쏠렸다는것뿐이였다. 동시에 구라파에서의 자본주의적생산의 진보는 정부의 압력의 증대를 수반하면서 웨익필드의 처방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한편으로는 해마다 미국으로 몰려가는 대량적이며 끊임없는 인간의 흐름은 미국의 동부에 정체적인 침전물을 남긴다. 왜냐 하면 구라파로부터의 이민의 파도는 다른 파도가 사람들을 서부로 옮겨가는것보다 더 빠르게 미국의 동부의 로동시장에 그들을 투입하기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남북전쟁[8]은 막대한 국채를 수반하였으며 또한 그와 동시에 조세의 중압, 비렬하기 짝이 없는 금융귀족의 제조, 철도, 광산 등의 개발을 위한 투기회사들에의 공유지의 거대한 부분의 증여—요컨대 자본의 극히 급속한 집중을 수반하였다. 이리하여 이 큰 공화국은 이제는 이주로동자를 위한 언약의 땅이 아니게 되였다. 거기에서는 임금의 저하와 임금로동자의 예속은 아직도 구라파의 표준수준에 도달하기에는 멀었지만 자본주의적생산은 거족적으로 발전하고있다. 웨익필드까지도 큰소리로 비난하고있는것이지만 영국정부가 파렴치하게도 귀족과 자본가들에게 식민지미경지를 막 팔아버리는 사실, 금광에 의하여 인입되는 사람들의 흐름, 그리고 또한 영국상품의 수입이 가장 소규모의 수공업까지도 끌어넣는 경쟁—이 모든것이 특히 오스트랄리아에서(275) 충분한 《상대적과잉로동자인구》를 낳고있으며 그리하여 거의 모든 우편선마다 오스트랄리아의 로

(275) 오스트랄리아는 그가 자기자신의 립법자로 되자 물론 이주민에게 유리한 법률들을 제정하였지만 그러나 영국이 실시한 토지의 방매는 장애로 되고있다. 《1862년의 새로운 토지법의 첫째가는 주요한 목적은 인민의 이주를 더욱 용이하게 하는데 있다.》(공유지 대신 G. 다피의 저서 《빅토리아토지법》, 1862년 런던판 (3페지))

동시장의 공급과잉이라는 흉보를 전달하게 되였으며 또 거기에서는 곳에 따라 매음이 런던의 헤이마케트[503]에서와 같이 성행하고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로 하는것은 식민지의 상태가 아니다. 여기에서의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구세계의 정치경제학이 신세계에서 발견하고 소리높이 선언한 다음과 같은 비밀이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방식과 축적방식, 따라서 또 자본주의적소유는 자기 로동에 기초하는 사적소유의 철폐 즉 로동자의 착취를 전제로 한다는것이다.

주 해

주 해

1 《**자본론**》은 맑스가 일생의 정력을 들여 연구한 성과이며 그의 가장 주요한 저서이다. 맑스는 이 저서들을 저술하기 위하여 40년대초부터 서거할 때까지 40년이란 세월을 바치였다.

맑스가 정치경제학연구에 착수한것은 1843년말 빠리에서였다. 그는 현존제도와 자산계급적정치경제학에 대한 비판을 내용으로 하는 대작을 집필하는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았다. 이 분야에서의 그의 최초의 연구성과는 《1844년 경제학철학 친필원고》, 《독일의 의식형태》, 《철학의 빈곤》, 《임금로동과 자본》, 《공산당선언》 등과 같은 저서에 반영되였다. 이 저서들에서 맑스는 벌써 자본주의착취의 원리, 자본가와 임금로동자의 리해관계의 불상용적대립, 자본주의 경제관계와 사회정치관계의 적대적 및 일시적 성격 등을 폭로하였다.

1848~1849년의 혁명으로 말미암아 맑스는 자기의 경제학연구를 얼마간 중단하였다. 1849년 8월에 맑스는 런던으로 망명하지 않을수 없었는데 런던에 와서야 비로소 이 연구를 계속할수 있었다. 그는 자산계급경제학자의 저서와 국민경제사를 깊이있게 전면적으로 연구하였으며 많은 국가 특히는 당시 전형적인 자본주의나라였던 영국의 경제를 연구하였다. 이 시기에 그의 흥미를 끈 문제는 자본주의생산방식의 기원과 중요한 특징, 토지소유의 력사와 지대리론, 화폐류통과 가격의 력사 및 리론, 경제공황, 기술사와 공학사, 식민지 등이였다.

맑스의 저술사업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조건하에서 진행되였다. 그는 끊임없이 빈곤과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흔히 생계비를 얻기 위해 연구를 중단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물질적궁핍속에서 장기간 계속되는 과로로 인하여 맑스는 중병에 걸렸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1857년에 그는 이미 거대한 준비작업을 마쳤는데 이로써 그는 수집된 자료를 체계화하고 개괄하는 연구작업의 완성단계에 들어설수 있었다.

1857년 7월부터 1858년 6월까지의 기간에 맑스는 후날의 《자본론》의 초고라고 할수 있는 인쇄전지 약 50매에 달하는 원고를 작성하였다. 초고를 작성하는 과정에 맑스는 정치경제학대작의 집필계획을 작성하였는데 끊임없는 수정과 보완을 거쳐 이 집필계획은 다음과 같이 여섯책으로 나뉘여 저술하기로 되여있었다. (1)자본에 관하여 (서론적인 몇개 장절이 있음.); (2)토지소유에 관하여; (3)임금로동에 관하여; (4)국가에 관하여; (5)국제무역에 관하여; (6)세계시장에 관하여. 그중 제1책 《자본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4편을 예정하고있었다. 즉 (a) 자본일반; (b) 경쟁; (c) 신용; (d) 주식자본. 여기에서 제1편 자본일반은 또 3개 부분으로 나뉘였다. 즉 (1) 자본의 생산과정, (2) 자본의 류통과정, (3) 량자의 통일 또는 자본, 리윤과 리자. 이 마지막 3개 부분이 후날《자본론》을 전 3권으로 구분한 기초로 되였다.

맑스는 최초에 자기가 저술하는 책을 분책으로 출판하려 했다. 제1분책은 제1책의 제1편 즉 (1) 상품; (2)화폐 또는 단순한 류통; (3)자본이라는 3개 장을 포괄시켜 《비교적 완정한 저서》로 되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정치적고려에서 제1분책의 최종고 즉《정치경제학비판》에는 제3장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맑스는 바로 이 장으로부터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된다고 지적하였고 또 정부의 검열이 있고 또 지배계급에게 달갑지 않은 저자에 대한 경찰의 탄압과 온갖 박해가 있는 환경에서 그러한 장을 맨 처음부터 즉 광범한 공중이 이 새로운 저작을 아직 알고있지 못하고있는 때에 세상에 내놓는다는것은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였다. 《제1분책》을 위하여 맑스는 상품에 관한 장을 특별히 썼으며 1857~1858년 친필원고중 화폐에 관한 장을 철저히 개작하였다.

《정치경제학비판》 제1분책은 1859년에 출판되였다. 그후에 곧 제2분책 즉 1857~1858년 친필원고의 주요내용을 이루고있는 자본에 관한 장도 출판할 예정이였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그는

루이 보나빠르트가 고용한 밀정 k. 포그트의 비방적공격을 폭로하는 론설과 기타 긴급한 문제들에 대한 론설을 출판물에 발표할 필요가 있었기때문에 이 작업을 옹근 1년 반이나 연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1861년 8월에야 비로소 그는 다시 제2분책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는 1862년 12월 28일 L. 쿠겔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제2부분의 집필을 마침내 끝내였습니다. 이제 정서하는 일과 인쇄에 들어가기전 마지막 윤색작업만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인쇄전지로 약 30매가량 됩니다. 이 부분은 제1분책의 속편으로 〈자본론〉이라는 표제로 단독 출판하게 될것입니다. 〈정치경제학비판〉은 다만 부제로 들어갈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때 당시, 더 확실하게 말한다면 1863년에 와서 맑스는 또 다른 친필원고를 작성하였는데 그 총량은 1857～1858년의 친필원고를 훨씬 초과한 23개의 노트를 이루며 인쇄전지로 약 200매에 달하였다. 그가운데 절반(노트 Ⅵ－ⅩⅧ)은 경제학설사를 서술한것으로서 《잉여가치학설》이란 이름으로 되여있었다. 그외의 노트들에서는 《자본론》 각권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취급하였다. 1861～1863년의 전반 친필원고는《자본론》의 제2고로 간주되고있다.

맑스는 그후의 집필과정에서 자기의 저서를 3개 부분으로 나누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친필원고중의 리론사에 관한 부분은 제4의 마지막 부분을 이루기로 되여있었다. 맑스는 1866년 10월 13일 쿠겔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전체 저작은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제1책 자본의 생산과정, 제2책 자본의 류통과정, 제3책 총과정의 제 형식, 제4책 리론의 력사.》 맑스는 이 저작을 개개의 분책으로 나누어 출판하려던 종전의 계획을 포기하고 먼저 기본적으로나마 전 저작을 완성한 다음에 그것을 출판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맑스는 1861～1863년 친필원고에 기초하여 이 친필원고에서 아직 충분히 전개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저술하는데 힘을 몰부었다. 그는 농업, 신용 및 화폐류통 문제를 포함한 수많은 경제 및 기술 문헌들을 더 연구하였으며 통계자료, 각종 의회문건,

공업에서의 아동로동과 영국무산계급의 주택형편에 관한 공식보고 등등을 연구하였다. 그뒤 맑스는 2년 반(1863년 8월부터 1865년 말까지)이란 시간을 들여 새로 방대한 친필원고를 작성하였는데 이것은 처음으로 상세히 작성된 전 3권의 《자본론》의 리론저서 원고였다. 저작 전체를 다 집필한후 (1866년 1월)에야 비로소 맑스는 인쇄하기 위해 원고의 최종가필에 들어갔다. 엥겔스의 충고에 의하여 그는 단번에 전체 저작을 다 출판하지 않고 우선 제1권을 출판하기로 결심하였다. 맑스는 이 최종적완성사업을 아주 면밀하게 진행하였는데 본질상 이것은 제1권 전체의 완전한 또 하나의 개작이였다. 서술의 전일성, 완전성,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맑스는 1859년에 출판된 저서 《정치경제학비판》 제1분책에 포함되여있는 주요한 문제들을 《자본론》 제1권의 서두에서 비교적 간결한 형태로 다시 서술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이 문제들은 지금은 제1편 《상품과 화폐》의 전체를 차지하고있다.

《자본론》 제1권이 출판(1867년 9월)된후 맑스는 독일문판의 재판준비 및 외국어로의 번역과 관련하여 제1권을 위한 작업을 계속하였다. 그는 제2판(1872년)에서 많은 정정을 가하였으며 로씨야문판을 출판하는데 중요한 지적을 하였다. 로씨야문판은 1872년에 뻬쩨르부르그에서 출판되였는데 그것은 《자본론》의 첫 외국문판이였다. 맑스는 1872~1875년에 분책으로 출판된 프랑스문판을 상당히 많이 가공하고 교열하였다.

한편 맑스는 《자본론》 제1권이 나온후에 전체 저작을 끝 완성할 작정으로 다음권들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완수하지 못하였다. 국제로동자협회 총무위원회의 각 방면의 활동에 많은 시간을 바쳐야 했다. 건강상태가 나빴기때문에 더욱 자주 작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맑스의 비상한 과학적 성실성과 면밀성, 또 엥겔스가 말한바와 같이 《자기의 위대한 경제학적발견을 공포하기전에 그것을 될수 있는대로 완벽하게 만들려고 한》 데서 나타난 그 엄격한 자기비판정신은 그로 하여금 이러저러한 문제를 고찰할 때에 몇차례나 보충적인 연구를 되풀이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이러한 창작가운데서 또 많은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였다.

《자본론》의 다음 두권은 맑스가 서거한후 엥겔스가 출판준비를 하여 발간하였다. 제2권은 1885년에, 제3권은 1894년에 출판되였다. 이 두권을 출판함으로써 엥겔스는 과학적공산주의의 보물고에 헤아릴수 없는 극히 귀중한 기여를 하였다. 그외에 엥겔스는 또 《자본론》 제1권의 영문역본(1887년)을 교열하였고 《자본론》 제1권의 독일문판 제3판(1883년)과 제4판(1890년)의 출판을 준비하였다. 《자본론》 제1권의 제4판 출판을 준비할 때 엥겔스는 맑스자신의 지시에 근거하여 본문과 각주를 최종적으로 교열하였다.

《자본론》 최초의 한문역본은 진계수가 번역하고 1930년 3월 상해 곤륜서점에서 출판한 《자본론》 제1권 제1분책이였다. 《자본론》 제1권의 첫 한문판 완전역본은 후외려, 왕사화가 공동으로 번역하고 세계명작번역사의 명의로 1936년 6월에 출판되였다. 《자본론》 전 3권의 완전역본은 곽대력, 왕아남이 번역하고 1938년 8월과 9월에 상해독서생활출판사에 의해 출판되였다.

이 책은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1판, 제23권에 기초하고 《맑스엥겔스전집》 1991년 력사고증판 제2부분 제10권 즉 1890년에 엥겔스가 편집출판한 독일문판 제4판에 근거하여 다시 교열하였다. 제4판에는 원래 《자본론》 제1권 프랑스문판 서문과 발문 그리고 영문서문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나온 판본은 이 문헌들을 다 넣었으므로 우리도 원문에 근거하여 다시 교열한 다음 이 책에 수록하였다. —7페지

2 1867년 독일문판 제1판에 《상품과 화폐》라는 제목으로 되여있는 《자본론》 제1권 제1장을 두고 말한다. 그가운데는 《정치경제학비판》 1859년 베를린판 제1분책의 내용에 대한 개술이 포함되여 있다. 맑스는 1866년 10월 13일 L. 쿠겔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개술을 하게 된 원인을 밝히였다. 그후 1873년에 《자본론》 독일문판 제2판을 준비할 때 맑스는 자기의 저서를 개작하였으며 그 구성을 많이 변동시켰다. 그는 종전의 제1장과 부록을 독립적인 세개의 장으로 만들었고 이 세개의 장으로 제1편을 구성하였

다. 구체적인 개작상황에 대하여는 《제2판의 발문》을 보라.(이 책 14페지) —7페지

3 《정치경제학비판》 제1분책중의 《상품분석의 력사에 대하여》, 《화폐계량단위의 학설》과 《류통수단과 화폐의 학설》 이 세개의 절이 완전히 삭제되였다.(《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445~457, 470~481, 552~582페지를 보라.) 맑스는 1863~1865년 경제학 친필초고를 저술할 때 매장의 리론부분의 뒤에 리론사 부분을 덧붙이려고 했던 최초의 구상을 포기하고 리론사를 《자본론》 제4책에서 서술하려고 계획하였다. 이 부분은 후에 《잉여가치학설》이라는 책이름으로 발표되였다. —7페지

4 F. 라쌀의 저서 《바스띠아—슐쩨—델리츠씨. 경제학적옳리안 또는 자본과 로동》의 제Ⅲ장《교환, 가치와 자유경쟁》을 두고 말한다.(이 책의 1864년 베를린판 120~158페지를 보라.) 라쌀은 이 책 149페지에서 맑스의 1859년 《정치경제학비판》을 참조하라고 지적하였다.

라쌀의 표절행위에 대하여는 맑스가 1864년 6월 3일에 엥겔스에게 보낸 편지와 1866년 10월 13일에 L. 쿠겔만에게 보낸 편지를 보라. —8페지

5 **이름은 다르지만 이것은 바로 그대를 두고 하는 말이다.** (Mutato nomine de te fabulanarratur) 이 말은 호라찌우스의 《풍자시집》 제1권의 첫번째 시에서 인용한 말이다. —11, 371페지

6 영국의 사회통계응용은 독일보다 훨씬 앞섰다. 1662년 런던시의 관원인 J. 그랑트는 최초로 계산을 인구통계에 구체적으로 응용하였다. 그러나 정치산술(통계)의 진정한 창시인은 W. 페티이다. 그는 1676년에 저술한 《정치산술》이란 저서에서 산술의 방법으로 사회경제문제를 분석하였다. —12페지

7 **미국독립전쟁** 즉 1775~1783년 북아메리카독립전쟁은 영국의 지배를 받고있던 북아메리카의 13개 영국식민지가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다. 7년동안의 전쟁이 있은후 영국은 북아메리카에 있는 식민지에 대한 압박과 착취를 강화하여 당지 신흥자산계급과 인민대중의 반항을 불러일으켰다.

1774년 북아메리카식민지의 대표들은 제1차대륙회의를 열고 영국 국왕에게 청원서와 영국상품을 제한할데 대한 법안을 상정하였다. 1775년 4월 19일, 전쟁은 렉싱턴에서 폭발하였다. 5월 10일 필라델피아에서 제2차대륙회의를 열어 대륙군을 내오기로 하고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반영전쟁중인 1776년 7월 4일에 열린 대륙회의에서 《독립선언》을 통과하였으며 아메리카합중국의 창립을 선고하였다. 1781년 9월 영국주력군이 요크시에서 격패를 당하자 핍박에 의하여 강화를 하였으며 1783년 9월에 전쟁쌍방은 빠리강화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서 영국은 미국을 정식으로 승인하였고 승리를 이룩한 북아메리카인민들은 아메리카에서 첫 자산계급공화국을 수립하였다. —12페지

8 **미국남북전쟁** 즉 1861~1865년기간에 일어난 미국국내전쟁이다. 19세기중엽에 미국남부의 식물재배원 농장주들이 실시하는 노예제와 북부자산계급이 실시하는 고용로동제간에는 모순이 갈수록 심각해지였다. 1860년 11월 노예제제한을 주장한 공화당 립후보자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미국남부의 노예주들은 노예제를 수호하기 위한 반란을 일으켰다. 1861년 2월에 선후로 독립을 선포한 남부의 11개 주는 몽고메리대회에서 미국남부동맹을 결성하고 공공연히 국가를 분렬하였으며 그해 4월 12일에 샘터요새(남칼로리나주)를 포격하고 국내전쟁을 도발하였다. 1865년 4월 남부 동맹의 수도 리치먼드가 점령되고 남부동맹련합군이 투항함으로써 전쟁은 종식되였다. 북부 각주는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국가의 통일을 수호하였으며 자본주의의 줄기찬 발전에 나서는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12, 40, 235, 267, 356, 397, 417, 495, 546, 586, 594, 623, 734, 780, 983, 1038페지.

9 **고교회파**는 19세기에 산생한 영국국교회의 일파이다. 고교회파의 신앙자들은 주로 토지귀족과 금융귀족들이였다. 그들은 예로부터 전해내려온 호화로운 의식을 유지할것을 주장하였고 천주교도들과 전통적인 련계를 가질것을 강조하였다. 영국국교회에는 이와 대립되는 다른 일파인 저교회파(각주 448을 보라)가 있었는데 그 옹호자들은 신교성향을 띠고있는, 주로 자산계급과 하층교직인사들이였

다. —13, 837, 876페지

10 **39개 교조**는 영국녀왕 엘리자베스 1세가 주도하여 제정한 영국국교회의 신앙요강이다. 1562년에 녀왕은 클램이 기초한 42개 교조를 심사하여 비준하였는데 후에 이것을 39개 교조로 줄이였다. 1563년부터 모든 교직자들은 취임시 반드시 이 교조를 엄격히 지킬것을 맹세하여야 했다. 1571년 영국국회가 이를 법안으로 통과함으로써 39개 신조는 정식으로 영국국교회 교조로 되였다. —13페지

11 **청서**(Blue Books)는 영국 의회와 정부 그리고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문서 또는 보고서의 총칭이다. 청서라는 명칭은 그 표지가 청색인데서 온것이다. 영국은 17세기부터 청서를 발표하였는데 그것은 영국경제사와 외교사의 연구를 위한 주요한 관변측 공식자료였다. —14, 33, 353, 674페지

12 맑스는 자신의 종전계획을 실현하지 못하였다. 맑스가 서거한후 《자본론》 제2책과 제3책은 엥겔스가 맑스의 주요저서 제2권과 제3권으로 편집하여 선후로 1885년과 1894년에 출판하였다. 엥겔스는 《자본론》 제4책을 출판하지 못하였다. —14, 486페지

13 **제 갈길을 가라, 남이야 뭐라든!** (Segui il tuo corso, e lascia dir le genti!) 단떼 《신곡》의 《련옥편》중 다섯번째 노래중에 나오는 말(Vien dietro a me, e lascia dir legenti)을 바꾸어 말한것이다. —14페지

14 《자본론》 제1권의 프랑스문판은 전 9집(44개 분책)으로 1872년부터 1875년사이에 출판발행되였다. 1872년 2월초에 J. 루아가 프랑스문번역을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1871년 12월말부터 맑스로부터 독일문판 제2판의 친필원고를 받았다. 1872년 2월 맑스는 프랑스문번역본을 교열하기 시작하였는데 5월에 맑스는 첫 몇페지의 인쇄전지를 받았다. 이 해에 맑스는 여러가지 일을 하는 한편 《자본론》의 프랑스문판을 내는 일에 바삐 보냈다. 그가 독일문판 제2판 《발문》을 쓰기에 앞서 프랑스문판 제1집이 출판되였고 제2집은 1873년 2월초에 출판되였다. 《자본론》 제1권 프랑스문의 중역본은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43권

에 수록되였다. —16, 27, 31페지

15 **프로씨아—프랑스전쟁**은 1870~1871년사이에 프랑스와 프로씨아가 유럽대륙의 패권을 쟁탈하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다. 프랑스는 독일의 통일을 저지하고 라인강 좌측연안지역을 쟁탈하기 위하여 1870년 7월 19일에 프로씨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전쟁에서 프랑스군은 련이어 패배하였다. 1870년 9월 2일 나뽈레옹3세가 스당에서 투항하자 제2프랑스제국은 붕괴되고 프로씨아군은 승승장구로 진격하여 프랑스의 대부분 령토를 점령하였다. 이때 빠리의 무산계급은 봉기를 단행하여 정권을 탈취하고 빠리꼼뮨을 내왔다. 프랑스의 자산계급정부는 프로씨아의 도움을 받아 꼼뮨을 진압하였다. 1871년 5월 10일 쌍방은 프랑크푸르트 강화조약을 체결하였으며 프로씨아는 알자스와 로렌 및 50억프랑에 달하는 배상금을 획득하였다. 프로씨아—프랑스전쟁을 통하여 프로씨아는 독일의 통일을 완수하고 독일제국을 수립하였다. —16페지

16 S. 마이에르. 《윈의 사회문제. 한 〈로동공급자〉 저》, 1871년 윈판. —16페지

17 《자본론》 제1권, 독일문판 제3판(1883년)과 제4판(1890년)에는 이 발문의 첫 네개 단락이 빠져있다. —16페지

18 **관방학**은 독일에서 16~18세기에 설치한 행정, 재정, 경제 및 기타 학과로 구성된 통일된 교과과정으로서 당시 독일의 관료립후보자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필수과목이였다. 많은 유럽 나라의 중세기 대학 및 후날의 자산계급대학들에서도 다 이 과목을 설치하여 수강하였다. —17페지

19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455페지를 보라. —18페지

20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의 친필원고)》 노트 XIV 782~850a페지. 즉 《리카도학파의 해체》 중 《(1)R.토런즈》, 《(2)제임스. 밀》, 《(3)론전저서》, 《(4)머칼러크, 존 램지》 등 4개 절을 보라. —18페지

21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의 친필원고)》 노트 XIV 852~890페지를 보라. 즉 《리카도의 리론을 의거로 정치경제학

을 반대하는 무산계급의 반대파》중 《(1)소책자 〈국민곤난의 원인과 그 해결책〉》, 《(2)레이븐스턴》, 《(3)호지스킨》 등 3개 절과 노트 XVIII, 1084~1086페지를 보라. —18페지

22 **신성동맹**이란 유럽 각 전제군주들이 유럽 각국의 진보운동을 탄압하고 봉건군주제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결성한 반혁명련맹이다. 나뽈레옹1세를 전승한후 로씨야짜리황제 알렉싼드르 1세와 오지리 메터르나히수상이 공동으로 이 동맹을 발기하여 1815년 9월 26일 빠리에서 이 동맹이 창립되였고 동시에 신성동맹조약이 체결되였다. 유럽의 거의 모든 군주국들이 이 동맹에 참가하였다. 이 국가의 군주들은 원회의에서 새로 정한 변계를 유지하고 각국의 혁명을 진압하기 위하여 서로 경제, 군사 및 기타의 원조를 제공할 의무를 지녔다. 신성동맹은 유럽 각국의 자산계급혁명과 민족해방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각기 수차의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유럽 각국간의 모순과 민족해방운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1830년의 프랑스 7월혁명후 신성동맹은 실질적으로는 이미 해체되였다. —18페지

23 **곡물법**은 영국정부가 토지소유자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1815년부터 실시한 법령으로서 목적은 국외로부터의 곡물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려는것이였다. 곡물법은 영국 본토의 곡물가격이 한 쿼터당 80실링이하일 때는 곡물수입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1822년에 이 법은 약간 수정되였고 1828년에는 련동적세률을 도입하여 국내시장 곡물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곡물수입세를 인상하고 반대로 영국 곡물가격이 인상할 때에는 곡물수입세를 인하하기로 하였다. 이 곡물법의 실시로 빈민계층은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동시에 이 곡물법의 실시로 로동력의 고용원가가 올라 국내무역의 발전을 방애하였기때문에 산업자산계급에게도 불리하였다. 곡물법은 산업자산계급과 토지귀족간의 투쟁을 유발하였다. 만체스터의 공장주 R. 코브던과 J. 브라이트가 1838년에 창립한 곡물법반대동맹의 령도하에 진행된 이 투쟁은 자유무역이란 구호를 내들었다. 1846년 6월 영국의회는 곡물법폐지에 관한 법안을 통과하였다. —19, 393, 913페지

24 **곡물법반대동맹**은 영국산업자산계급의 조직으로서 만체스터의 공장주 R. 코브던과 J. 브라이트가 1838년에 창립한것이다. 곡물법은 영국정부가 토지소유자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외로부터의 곡물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법령으로서 1815년부터 실시되였다. 동맹은 무역의 완전자유를 실시하고 곡물법을 철폐할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목적은 국내의 곡물가격을 저락시킴으로써 로동자의 임금을 낮추고 토지귀족의 경제 및 정치 지위를 약화시키려는것이였다. 동맹은 로동자와 공업주는 리해관계가 일치하다고 선전하면서 대지주를 반대하는 투쟁에 로동자대중을 리용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때 영국의 선진적인 로동자들은 독자적인 정치성격을 띤 로동자운동(헌장운동)을 진행하였다. 1846년 곡물법이 철폐된후 곡물법반대동맹은 해산을 선포하였지만 동맹의 일부 분기구는 사실상 1849년까지 존속하였다. —19페지

25 수상 로버트 필이 단행한 1842년과 1844년의 재정개혁을 가리킨다. 그는 모든 수출세 및 원료와 반제품을 상대로 징수하던 관세를 폐지하거나 인하시키고 국가재정수입의 감소를 미봉하기 위하여 수입세를 실시하였다. 그후 1853년에 원료와 반제품을 상대로 징수하던 모든 관세를 취소하였다. —19페지

26 J. S. 밀을 대표로 하는 혼합주의의 산생에 대하여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의 친필원고)》 노트 Ⅶ 318～331페지와 노트 Ⅷ 332～345페지를 보라. —20페지

27 맑스는 여기에서 그가 1859년에 출판한 《정치경제학비판》 제1분책을 우선 념두에 두고있다. 독일의 일부 신문들만 이 저서의 출판에 대하여 간단한 소식으로 발표하였다. —21페지

28 J. 디츠겐의 《칼 맑스의 〈자본론. 정치경제학비판〉 1867년 함부르그판에 대하여》를 두고 말한다. 이 글은 1868년 《민주주보》 제31, 34, 35, 36호에 실리였다. 1869～1876년에 이 신문은 《인민국가》라는 새 명칭으로 발간되였다. 1870년초부터 1872년말까지 《인민국가》지는 디츠겐의 다음과 같은 글들을 발표하였다. 《국민경제학문제》(1870년 제1, 2, 24, 25, 26호); 《사회민주주의적종교》(1870년 제65, 66, 67호, 1871년 제37, 38, 62호, 63

호): 《H. F. 지베르에게 보내는 공개서한》(1872년 제31호); 《자산계급사회》(1872년 제75, 77호). —21페지

29 여기서는 1867~1883년 빠리에서 발간된 잡지 《실증철학. 평론》을 가리키고있다. 이 잡지의 1868년 11, 12월의 제3호에 실증주의철학자 O. 꽁뜨의 신봉자인 E. B. 제—로베르찌가 쓴 《자본론》 제1권에 대한 간단한 서평이 발표되였다. —22페지

30 H. 지베르의 《최근에 보충 및 설명을 한 리카도의 가치리론과 자본리론》, 1871년 끼예브판, 170페지

지베르의 이 책은 맑스가 1872년 12월 12일에 N. F. 다니엘슨에게 보낸 편지에서 매우 보고싶은 책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맑스는 1873년 1월 18일 다니엘슨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책을 받았다고 하였다. —22페지

31 여기서는 J. 파우헤르가 1868년(제5년권)의 《국민경제와 문화사계간》(베를린) 제20권 216페지에 발표한 《자본론》에 대한 간단한 서평과 O. K. 듀링이 1867년 《현대지식보충자료》(힐드부르그하우젠)의 제3권 제3책 182페지에 발표한 《자본론》에 대한 서평을 두고 말한다. —22페지

32 N. N. 까우프만이 쓴 《칼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의 견해》를 두고 말한다. —22페지

33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412~414페지를 보라. —23페지

34 맑스는 1868년 3월 6일 L. 쿠겔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자신의 변증법은 헤겔의 변증법과 다르다고 말한적이 있다. —25페지

35 독일의 자산계급철학자들인 L. 뷔히네르, F. A. 랑게, O. K. 듀링, G. T. 페히네르 등을 말한다. —25페지

36 G. W. F. 헤겔의 《철학전서요강》 제1부 《론리학》 1840년 베를린판 XIX페지 (《헤겔전집》 제6권)를 보라. —25페지

37 친필원고의 형태로 남겨놓은 제2권에는 본래 자본의 류통과정(제2책)과 전반과정의 각종 형태(제3책)를 포함시켜야 했었다. 이 책 13페지를 보라. —31페지

38 맑스자신이 사용하였던 독일문판 제2판 《자본론》을 두고 말한

다. 맑스는 이 책에 수정을 가하였는데 수정된 상황은 《맑스엥겔스전집》 1989년 력사고중판 제2부분 제8권 《대조표》 854~945페지를 보라. —31페지

39 《**로동공급자**》와 《**로동령수자**》와 같은 술어들은 1870~1882년사이에 A. A. F. 셰브라이, K. 스트라스브게르, F. 비쳐그, S. 마이에르, H. F. 지베르, L. 브렌타노, A. 헤르드, V. 비머트, 겔츠남작, A. 봐그네르, M. 빌츠, J. 프린스-스미스와 K. 왈크가 사용하였다. 그리고 책자 《1870년 6월 본 로동자문제대회기록》(1870년 베를린판 편집자는 위원회 사무국장 L. 나게르.)의 1~3페지에서도 사용되였다. 이 두 술어는 각기 자본가와 고용로동자를 대표하고있다. 1867년전에 맑스는 그가 남긴 《자본론》 제1권 친필원고 《제6장 직접적생산과정의 결과》 각주 139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지금 독일어에서 자본가 즉 로동의 물적인격화를 수취하는자를 Arbeitsgeber〔로동공급자〕라고 하고 로동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로동자를 Arbeitsnehmer〔로동령수자〕라고 부르고있다.》 —32페지

40 《**신 3분의 2**》란 가치가 탈레르의 3분의 2에 해당한 은화로서 17세기말엽부터 19세기중엽까지 일부 독일공국들에서 류통되였다. —33페지

41 《자본론》 독일문판 제2판 서문은 발문으로서 발표되였다. 이 책 14~23페지를 보라. 무학무능하고 편견만 있는 저술가들에 대해서는 이 책 22페지를 보라. —34페지

42 《자본론》 제2권은 1885년 7월에 출판되였다. 거기에는 맑스의 종전 계획중의 제2책 일부 내용 즉 자본의 류통과정부분만 들어있다. (이 책 13페지를 보라). —34페지

43 《자본론》 제1권 영문판은 쌔뮤얼 무어와 에드워드 에이블링이 번역하고 엥겔스가 교열감수하였다. 이 책은 1887년초에 영국출판상 V. S. 샹넨샤은이 런던에서 두책으로 나누어 출판하였다. —31페지

44 《자본론》 제1권의 영문은 독일문판 장별과 일치하지 않다. —36페지

45 맑스가 《〈자본론〉 제1권의 미국판을 위하여 내놓은 개정의견》

을 가리킨다. 이것은 맑스가 미국에서 출판할 영문판을 위하여 쓴 것이다. 그는 이 친필원고를 F. A. 조르게에게 부쳤으나 책출판계획이 실현되지 못하였다. 조르게는 엥겔스가 제1권 영문번역문을 교열하고있다는 소식을 알고 이 친필원고를 엥겔스에게 보내였다. 이 친필원고는 《맑스엥겔스전집》 1989년 력사고증판 제2부분 제8권 25~36페지에 수록되였다. —36페지

46 엥겔스는 생전에 《자본론》 제2부와 제3부 영문판을 출판하려던 념원을 이루지 못하였다. —38페지

47 《**로동계급의 성경**》에 대해서는 F. 메링의 《독일사회민주당력사》 1889년 슈투트가르트판 제2권 227페지를 보라. 메링은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죤. 필리쁘. 베케르는 〈자본론〉을 로동계급의 성경이라고 하였다.》 메링은 여기에서 베케르의 론문(1868년 《선구자》 잡지 제8호)의 다음과 같은 한 단락을 두고 말한다. 《지금 우리는 전에 언급한적이 있는 저작의 요점을 마침내 게재하여 포부가 있는 사람들 특히는 모든 로동련맹이 이 사회주의성경, 이 새로운 복음전서를 구매하도록 권장하게 되였다.》 메링의 《독일사회주의민주당사. 력사의 탐색》(1877년 마그데부르그판) 70페지에도 비슷한 말이 있다. 《거의 비슷한 시간에 맑스는 함부르크의 마이스너에서 그의 대작 제1권을, 그것도 지금까지 유일한 한권인 〈자본론〉—공산주의성경을 출판하였다.》 —39페지

48 맑스의 《〈자본론〉 제1권 제2판 개정의견표》를 두고 말한다. 《맑스엥겔스전집》 1989년 력사고증판 제2부분 제8권 5~24페지를 보라. —41페지

49 맑스는 책표지를 잘못 쓴것이 아니라 책페지를 틀리게 썼다. —42, 814페지

50 일부 자산계급의 대변자들은 맑스가 1863년 4월 16일의 W. 글래드스턴의 연설에서 인용한 글을 고의적으로 위조했다고 수차 비난하였는데 엥겔스는 이 자산계급대변자들의 중상을 폭로하기 위하여 특별저서 《브렌타노 맑스를 공격. 소위 인용문 위조에 관하여. 문제의 경위와 문헌》을 썼다. 이 저서는 1891년 함부르그에서 출판되였다. —43페지

51 《베벨을 반대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꼬마 라스케르의 새 발명》이라고 맑스가 말한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념두에 둔것이다. 1871년 11월 8일 제국국회회의에서 민족주의자-자유주의자인 자산계급대의원 라스케르는 베벨을 반대하는 론전에서 만일 독일의 로동자들이 빠리꼼뮨참가자들의 모범을 따르려고 생각한다면 《정직하고 재산있는 공민들은 그들을 곤봉으로 때려죽일것이다.》라고 언명하였다. 그러나 이 말은 감히 그대로 공포하지 못하고 속기록에서 《그들을 곤봉으로 때려죽일것이다.》라는 말을 《자기의 권력으로 그들을 억누를것이다.》라고 고쳤다. 베벨은 이러한 위조를 폭로하였다. 라스케르는 로동자들속에서 조소의 대상으로 되였다. 그의 키가 작았기때문에 그에게 《꼬마 라스케르》라는 풍자적별명을 붙였다. -44페지

52 엥겔스의 이 말은 쉐익스피어 희극《헨리4세》 제1부 제2막 제4장에 나오는 한마디 말이다. 극중의 허풍쟁이이며 겁쟁이인 폴스타프는 그가 적과 싸운 무훈담을 이야기할 때 《나는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검을 잡고있었다.》고 하였다. -47페지

53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419페지를 보라. -53페지

54 **법적가정**(fictio juris)은 원래 법률의 한개 원칙으로서 현실에 없는 사실을 법률적으로는 존재하는 사실로 간주하여 처리하는것이다. 본문에서 뜻은 현실과 모순되는 하나의 가정을 두고 말한다. -55, 780페지

55 S. 바틀러의 장편서사시《휴디브라스》제2부 제1장에 나오는 한구절이다. -55페지

56 1785년 E. 카트래트는 기계직포기를 발명하였다. 19세기 20년대와 30년대에는 증기직포기가 비교적 널리 사용되였다. -59페지

57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422페지를 보라.《가치로서》가 거기에서는 《교환가치로서》로 되여있다. -60페지

58 W. 제이커브 《귀금속 생산과 소비에 관한 력사적연구》(전 2권) 1831년 런던판을 보라. 맑스는 1857~1858년 경제학친필원고중에서 제이커브의 이 말을 직접 인용하였다. 《아마 모든 시대에서

귀금속의 생산비용은 다 그것의 력사상 지불된 가치를 초과하였을 것이다.》《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279페지를 보라. —61페지

59 H. 메리베일의 《식민과 식민지에 관한 연설》 1841년 런던판 제1권 52페지를 보라. 맑스는 1857~1858년 경제학친필원고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직접 인용하였다. 《에슈웨게(1823년)는 브라질에서 80년간 채취한 금강석의 총가치가 18개월간 생산한 설탕 가루 또는 커피의 가치에 미치지 못할것이라고 예측하였다.》《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246페지를 보라. —61페지

60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427페지 및 이하 몇페지를 보라. —62페지

61 **고대인도의 공동체**는 원시사회가 해체되고 계급사회관계가 산생되던 시기에 형성된 고대인도사회의 전형적인 로동조직형태이다. 생산자집단인 부락공동체는 당지의 농민과 기타 모종의 방식으로 농업생산과 련결된 사람들로 구성되였다. 부락공동체는 상당히 독자적으로 모든 지구의 인공관개와 배수를 기초로 하는 생산을 조직하였다. 기후와 지리적위치의 제한으로 부락공동체는 하나의 특수한 제도를 형성하였다. 즉 수공업을 농업생산에 편입시켰다. 부락공동체의 원시형태의 특점은 매우 오래도록 보존되였다. 비록 약 기원 1세기중기에 재산차이(부락공동체에 계급이 형성)가 나타났지만 그러나 구성원들의 토지우선권의 존속(카스트제도가 형성되고 수공업이 계속 농업의 제약을 받았다.)은 부락공동체의 최종해체를 막았다. 맑스의 《인도에서의 브리텐의 지배》(《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12권, 137~144페지) 그리고 1857~1858년 경제학친필원고(《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0권, 467, 476~478페지)를 보라. —63, 128, 497페지를 보라.

62 W. 페티는 그의 《조세공납에 관한 론술》 1667년 런던판 47페지에서 **《로동은 물질적부의 아버지이고 토지는 그 어머니이다》**라고 말하였다. 맑스는 1857~1858년 경제학친필원고에서 페티의 이 말(《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333페지, 428페지를 보라.)을 인용하였다. 그는 1875년 4~5월에 쓴 《독일로동

당강령에 대한 주해》에서 로동은 모든 물질적부의 원천이라는 견해를 비판하였다. —65페지

63 《**신의 새끼양**》에 대해서는 《신약전서•요한복음》 제1장 제29절을 보라. —78페지

64 《**빠리는 확실히 미사값에 상당하다.**》(Paris vaut bien une messe)는것은 신교에서 천주교로 전향하면 빠리시민들이 자기를 왕으로 승인하겠다고 약속한것과 관련하여 1593년에 한 앙리4세의 말이다. —79페지

65 **반성규정**은 헤겔의 《론리학》 제1권 《객관론리》 제2부 《본질론》 1834년 베를린판 (《헤겔전집》 제4권)을 보라. —86페지

66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헤아륜리학》은 E. 베케르가 편찬한 《아리스토텔레스전집》, 1837년 옥스포드판, 제9권, 99~100페지에 수록되여있다. —89페지

67 F. L. A. 페리에와 샤를 가닐의 상업중시론적인 관점에 관하여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IX 391페지와 노트 Ⅷ 358~361페지를 보라. —91, 119페지

68 맑스가 말한 **현대자유무역행상인**들에는 F. 바스띠아외에도 또 독일 자유무역파의 신도들인 Y. 프린스-스미, V. 버무트, 파우헤르 율리우스, A. 미샤에리스, M. 회엘스, H. 슐째-델리츠 등이 있다. 그들은 로동자들에게 강의를 하였는데 그들중 일부는 로동자협회에서 자기들의 목적을 선전하였다. —91페지

69 **롬바드거리**는 런던 시티구에 있는 한 거리이다. 이 거리에는 대은행들이 있었기에 런던금융시장의 동의어로 쓰이고있다. —91페지

70 이것은 맑스가 H. D. 머클라우드의 《은행업의 리론과 실천》 1866년 런던 제2판에 대하여 한 평론이다.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538페지와 맑스가 1868년 3월 6일 엥겔스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 책에 대한 평가가 있다. —91페지

71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제7장을 보라. —93페지

72 맑스가 말하는 **리카도학파**란 R. 토런즈, 제임스 밀과 존스튜어트 밀을 대표자로 하는 자산계급경제학자들인데 그들은 D. 리카도의 주요저서 《정치경제학과 조세원리》가 1817년에 런던에서 출판

된후 용속경제학으로 고전자산계급경제학을 대체하였으며 자산계급의 방식으로 리카도리론중의 기본대립을 해결하려 하였다. 그 결과 맑스가 말한것처럼 리카도학파가 해체된것은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때문이였다. 《(1)자본과 로동간의 가치법칙의 교환,(2)일반 리윤률의 형성. 잉여가치와 리윤을 동등시하다. 가치와 비용가격의 관계를 리해하지 못하였다.》(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V 851페지)를 보라. 이 학파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Ⅶ 319페지～노트 Ⅷ 347페지를 보라. —94, 427, 700페지

73 맑스의 《철학의 빈곤. 쁘루동선생의 〈빈곤의 철학〉에 대한 대답》 제1장 제2절을 두고 말한다. 여기에서 맑스는 Th. 호지스킨의 《통속정치경제학》, W. 톰프슨의 《인류의 행복을 제일 촉진하는 부의 분배원리의 연구》, T. L. 에드몽쯔의 《실천적, 정신적, 정치적인 경제학》 등 저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맑스는 또 브레이의 《로동에 대한 불공정한 현상 및 그 해결책》이라는 책을 상세하게 인용하였다. 죤. 그레이의 《사회제도》라는 책에 대하여 맑스는 《정치경제학비판》 제1분책가운데서 인용하였다.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478～480페지를 보라). —102페지

74 맑스가 말한 **쁘루동학파**는 프랑스소자산계급사회주의자이며 무정부주의자인 P. J. 쁘루동의 옹호자들을 가리킨다. 쁘루동은 소자산계급립장에서 출발하여 자본주의를 비판하였고 소사적소유의 영원한 존속을 환상하였다. 쁘루동파는 《교환은행》을 내오고 무리자대부를 방출함으로써 소생산자의 사유제를 수호하려 하였다. 그들은 개량의 방법으로 자본주의 《나쁜 면》을 제거하고 자본주의 《좋은 면》을 보류할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무산계급의 폭력적혁명과 정치투쟁을 반대하였으며 모든 정부와 국가를 취소할것을 주장하였다. 19세기 50년대와 60년대에 그들은 프랑스로동운동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였다. 맑스와 엥겔스의 비판으로 인하여 더우기는 1859년에 출판된 《정치경제학비판》 제1분책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411~582페지)에서의 비판은 《쁘루동주의를 송두리채 뽑아버렸다.》(맑스가 1859년 7월 22일 엥겔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빠리꼼뮨의 실제경험은 쁘루동의 소자산계급적공상적사회주의관을 반박하였다. 꼼뮨은 《쁘루동의 사회주의학설의 무덤》으로 되였다 (맑스의 《프랑스국내전쟁》을 보라.). 그러나 사회주의관점과 반국가주의와 같은 쁘루동의 일부 중요한 사상은 이러저러한 무정부주의 류파들가운데서 나타났다. —102페지

75 괴테의 《파우스트》의 제1부 제4장 《파우스트의 서재》. —102페지

76 **《감각적인 동시에 초감각적인 물건》**, 괴테의 《파우스트》 제1부 제16장 《마르테의 화원》을 보라. —106페지

77 1848~1849년 혁명이 실패한후 유럽에는 정치적반동의 시기가 도래했다. 당시 유럽의 귀족과 자산계급은 유령론 특히는 책상을 춤추게 하는 강신론에 열중하였다. 바로 이 시기에 중국에서는 태평천국혁명운동이 일어났다. 엥겔스는 그의 《자연변증법》의 《신령세계에서의 자연연구》라는 글에서 유령론을 깊이 분석하였다. —106페지

78 **《이마에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것이 씌여져있다.》**, 《신약전서. 요한묵시록》 제14장 제1절과 제9절을 보라. —110, 119, 502페지

79 로빈슨이야기를 언급할 때 맑스는 D. 리카도의 저서 《정치경제학 및 조세원리》, 1821년 런던판 제3판 제1장 특히는 제1장의 제3절을 념두에 두고있었다. 맑스는 1857년 8월에 쓴 《머리글》에서 로빈슨이야기가 자산계급정치경제학에 일으킨 역할을 전면적으로 론술하였다(《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0권, 22~25페지를 보라.). 엥겔스가 1869년 11월 19일 맑스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와 관련한 론술이 있다. —113페지

80 **《오엔씨의 평행사변형》**, D. 리카도의 저서 《농업의 보호관세에 대하여》, 1822년 런던 제4판, 21페지를 보라. R. 오엔은 자기의 공상적사회개혁계획을 전개하며서 주택구를 평행사변형 또는 정방형으로 건설하는것이 경제적으로나 가정생활을 조직하는 견지에서나 가장 합리적인것이라는것을 증명하였다. 《오엔의 평행사변

형》이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유래된것이다. —113페지

81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454~455페지. —113페

82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426페지. —115페지

83 고대아시아적, 고대적 등등의 생산방식에 관해서는 1857~1858년 경제학친필원고에서 이미 론술되였다.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0권, 487~488페지와 제31권, 413페지를 보라. —117페지

84 고대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견해에 의하면 무수하게 많은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들은 자체의 자연법칙에 의하여 발생하고 존재한다. 신은 존재한다 해도 어디까지나 세계밖에 즉 세계와 세계와의 사이에 존재하며 우주의 발전에도, 인간생활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117페지

85 맑스가 1843년말에 쓴 《〈헤겔법철학비판〉 서문》에 이 사상이 들어있다. —117페지

86 맑스가 말하는, 본 저서 제3책과 제4책에서 D. 리카도의 가치량을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론(1863~1865년 경제학친필원고)》, 제3책, 제2장 《5, 각종 상품의 생산가격에 대한 로임의 보편적인 인상 또는 인하(하락)의 영향》(《맑스엥겔스전집》, 1992년 력사고증판, 제2부분, 제4권, 제2책, 273~278페지) 그리고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I 650~652페지 즉 《리카도의 잉여가치리론》의 《(1)로동량과 로동의 가치》란 절을 보라. —118페지

87 **교부**란 기원 2~6세기 기독교계 최초의 그리스어와 라틴어 작가에 대한 총칭으로서 교회에서의 사도적신앙의 대변자라는 뜻이다. 그들의 저서는 대부분 후세 기독교 교의와 신학에 비교적 깊은 영향을 주었다. 지식과 지력을 폄하하고 절대적인 신앙을 찬미하며 《이단교》 즉 기독교이외의 종교와 철학 특히 고대의 유물론을 적대시하는것이 교부의 관점에서 가장 근본이였다. —119, 124페지

88 **《경제학자들》**(economists)이란 원래 중농학파에 대한 호칭이였다. 《경제학자들》은 약 19세기중엽에 각종 경제학설의 저술가들이 널리 사용하면서부터 더는 어떤 특정 경제학설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리고 F. 께내 및 그의 문생 P. S. 드느무르는 자신을 《중농학파》라고 하였다. —119, 132페지

89 맑스의 《철학의 빈곤》, 제2장, 제1절의 《일곱번째 즉 마지막 하나의 설명》을 보라. —120, 875페지

90 미국의 독일문신문이란 K. 하인쩬이 보스턴에서 발행한 《선구자》 일것이다. 이 신문은 1859년 7월 12일 제26호 제2판 제IV란과 3페지 제1란의 《잡문집》 특별란에 닉명으로 《칼 맑스선생》이란 글을 실었다. 이 글은 맑스가 《정치경제학비판》 《서문》에서 서술한 자기 저서의 전부 계획과 맑스의 유물주의력사관 기본인식에 관한 내용을 《사회혁명의 시대가 다가왔다》는 말을 빼놓고는 그대로 적어넣었다(《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411～413페지를 보라) 뒤이어 필자는 용속유물주의의 관점을 억지로 맑스에게 덧붙이면서 《녀인의 정서는 하나의 왕국을 뒤엎었고 제후의 정서는 세계의 일부분을 심하게 파괴하였으며 개혁자의 사상은 전 세계를 진작하고 모든 〈경제학〉과 모든 〈생산관계〉를 포기하였다.》고 하였다. 《자본론》에 대한 하인쩬의 반응에 관해서는 맑스가 1869년 11월 6일에 엥겔스에게 보낸 서한을 보라. —120페지

91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412페지를 보라. —120페지

92 맑스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V 836페지를 보라. —122페지

93 쉐익스피어 《헛소동》, 제3막, 제3장. —122페지

94 **랑디**는 빠리근교의 한 지방이다. 12～19세기에 해마다 이곳에서 큰 교역시장이 정기적으로 열렸다. —123페지

95 **평등파**는 17세기 영국혁명시기 땅이 없거나 적은 농민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급진적파벌로서 전칭은 진정평등파이고 일명 굴지파라고도 하였다. 그들은 토지사유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원시적인 평균공산주의사상을 고취하면서 집단적인 공유토지개간으로 이 사상을 실현하려 시도하였다. —124페지

96 **키니크파**는 기원전 3세기 자연주의를 주장하는 고대그리스의 철학

학파로서 키니크파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안티스테네스가 창립하였다. 자연을 숭상하는 이 학파는 자연과 사회를 대립시키면서 사회생활과 문화생활을 자연적이 아닌 하찮은것으로 여겼다. 이는 도시국가 빈민과 부분적권리를 박탈당한 자유민들의 대노예주의 교만하고 사치하며 황음무도한 생활에 대한 소극적인 반항 그리고 재부에 대한 멸시, 검소함에 대한 숭상을 반영하였다. 고의적으로 풍속을 문란케 하고 거리낌없이 행동하는것은 키니크파의 가장 뚜렷한 표현이였다. —124, 598페

97 괴테 《파우스트》, 제1부, 제3장 《파우스트의 서재》. —126페지

98 《신약전서 · 요한의 묵시록》, 제17장, 제13절과 제13장, 제16~17절을 보라.

《묵시록》(또는 《요한의 묵시록》은 《신약전서》의 초기기독교 문헌으로서 기원 1세기에 집필되였다. 《묵시록》의 저자는 로마제국에 대한 일반적증오감을 표시하고있는데 그는 로마제국을 《짐승》이라는 이름으로 락인찍고있으며 악마의 화신으로 인정하고있다. 맑스가 여기에서 인용한 이 말은 화폐를 암시하고있다. —127페지

99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480페지이하를 보라. 그밖에 맑스가 쁘루동주의자 L. A. Darimon을 비판한 내용(《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0권 59~88페지)을 보라. —127페지

100 **잉카국**은 남아메리카 서남부의 고대나라이다. 그 나라의 군주를 잉카라고 하고 국민을 잉카인이라고 하였다. 11세기이후, 아이마라와 퀘추아 이 두 큰 부락은 뻬루 꾸스꼬 골짜기에서 륙속 린근 지역을 겸병하여 15세기중엽에는 강대한 노예제국가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원시사회의 잔재가 아주 많이 남아있었다. 잉카사회는 행정제도가 엄밀하며 귀족, 평민, 노예 3개 계급으로 나뉘여져있었다. 같은 조상의 가정들로 무어진 씨족공동체 또는 농촌공동체(Aylla)가 사회의 기본단위를 이루고있으며 그들은 토지와 가축을 공유하고있었다. 16세기 잉카국이 가장 번영했던 시기에는 그들의 판도가 지금의 뻬루, 에꽈도르, 볼리비아, 칠레북부지

역에까지 확장되였으나 1533년에 잉카국은 에스빠냐식민자들에 의해 소멸되였다. —128페지

101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216페지와 475～476페지를 보라. —130페지

102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550페지를 보라. —130페지

103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548～552페지를 보라. —130페지

104 《판데크텐》은 로마민법전의 주요구성부분으로 거기에는 로마법학가들의 저서가운데서의 노예주리익에 부합되는 일부 단편들이 들어있다. 《판데크텐》은 비잔티움의 유스티니아누스1세가 집정하던 시기에 편찬되였고 기원 533년에 법률로 공포되였다. 《판데크텐》에는 화폐는 추상적인 가치량이고 귀금속인 금은도 마찬가지로 허구한 가치일뿐이며 이 가치는 최고국가권력이 임의로 규정할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여있다. —132페지

105 필리프6세 발루아가 영국을 반대하는 전쟁을 여러번 발동하면서 세금징수령을 여러차례 내린데서 주화의 품질이 내려갔다. —132페지

106 이 말은 콘스탄티누스2세가 기원 356년에 반포한 칙서(《테오도시우스법전》, 제IX장, 제23절, 제2단락을 보라.)에서 인용하였다. 동로마제국 테오도시우스2세 집정시기에 편찬된 《테오도시우스법전》은 4세기와 5세기의 황제칙령을 수록하였다. —132페지

107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478～481페지를 보라. —137페지

108 R. 오엔은 미래의 새 사회에서 은행권형태로 로동가치를 표현하는 지페는 국내수요와 화물교환을 충족시키는데 사용되는것이므로 지페의 발행은 반드시 현유 비축과 맞먹어야 하며 지페는 실제적가치가 있는 생산물과 교환될 때만이 획득할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137페지

109 W. E. 패리 《대서양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서북항로를 발견하기

위한 항해의 일지. 윌리엄 에드워드 패리의 지휘하에 제국군함 헤클라호 및 그라이퍼호로 1819~1820년에 수행되였음》. 1821년, 런던판, 제2판, 277~278페지. —138페지

110 《공중위생에 관한 추밀원의무관의 보고》, 1864년 런던판, 12~17페지, 232~233페지와 248페지를 보라. —138페지

111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470~481페지를 보라. —139, 145페지

112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469~470페지를 보라. —140페지

113 고대신화에는 인류력사가 5개 시대로 나뉘여져있는데 황금시대와 은시대는 이 5개 시대중의 첫 두시대였다. 가장 행복스러웠던 황금시대에는 사람들이 근심걱정을 모르고 살았다. 그 뒤의 시대에 와서 비로소 사람들의 생활이 달라졌다. 다섯번째 시대인 마지막 시대—철시대—는 불공정, 폭행, 살륙으로 충만되여있었다. 5개 시대에 관한 전설은 그리스의 서사시인 헤시오도스와 로마의 서정시인 오비디우스의 작품에 씌여져있다. —143페지

114 1707년에 있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합병을 말하는데 이 합병에 의하여 스코틀랜드는 종국적으로 영국에 통합되였다. 이 합병으로 하여 스코틀랜드의회가 해산되였기때문에 두 나라간에 존재하였던 경제적장벽도 제거되였다. —143페지

115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466페지를 보라. —143페지

116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469페지를 보라. —145페지

117 G. W. F. 헤겔의 개념의 실현은 필연으로부터 자유에로의 이행을 거쳐야 한다는데 관한 관점은 그의 《철학전서요강》, 제1부 《론리학》, 제147절, 1834년, 베를린판(《헤겔전집》, 제6권)을 보라. —148페지

118 성 히에로니무스의 《에우스타키우스에게 보내는 편지—순결성의 보존에 관하여》. —148페지

119 단떼 《신곡 · 천국편》, 제24권. —148페지

120 F. 라쌀의 이 저서 특히는 이 주해에 대한 맑스의 해석은 1858년 2월 1일과 1859년 2월 25일 엥겔스에게 보낸 맑스의 편지를 보라. —151페지

121 상품의 결사적인 비약에 관하여 맑스는 《정치경제학비판. 제1분권》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483페지를 보라.—152페지

122 **《선물로 받는 말의 이발을 보지 말라》**는 로마 고대성구인데 공짜로 받는 물건을 나쁘다고 마다할가 하는 뜻이다. 성 히에로니무스가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단 주해의 서문에서 이 성구를 사용하였다. —153페지

123 맑스는 《자본론》 로씨야문 역자 H. Ф. 다니엘쏜에게 보낸 1878년 11월 28일부 편지에서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정정할것을 제의하였다. 《실제로 매 1엘레의 가치는 아마포총량에 지출되여있는 사회적로동량의 일부분의 물질화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맑스의 《자본론》 제1권 독일문판 제2판의 자용본에서도 이와 같이 수정을 하였는데 단지 다른 사람의 필적일뿐이다. 그러나 《자본론》 제1권 독일문판 제3판과 제4판에서는 고치지 않았다. —154페지

124 **《진정한 사랑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The course of true love never does run smooth)는 쉐익스피어의 《여름밤의 꿈》, 제1막, 제1장을 보라. —154페지

125 **《시인의 분산된 사지》**(Disjecta membra poetae)는 호라찌우스의 《풍자시집》 제1권 풍자시 4에 나오는 한구절이다. —154, 478, 506, 644페지

126 **《파는것은 사는것이다.》** 이 말은 F. 께내한테서 직접 나온 말이 아니라 뒤뽕 드 느무르의 저서 《께내의사의 명제들, 또는 그의 사회경제학원리의 개요》에서 인용한것이다. 《중농학파》, E. 대르의 서문과 주석 첨부, 1846년 빠리판 제1부, 392페지를 보라. —156페지

127 **화폐는 구린내가 나지 않는다**(non olet)는 《이러한 세금은 구린내가 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로마황제 베스파시아누

스가 변소에 특별세금을 부과한데 대하여 그를 비난한 자기 아들에게 한 말이다. —158페지

128 《**영생불사의 물**》, 《신약전서 · 요한복음》 제4장 제14절을 보라. —161페지

129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490~493페지를 보라. —163페지

130 J. B. 쎄가 쓴 《정치경제학에 관한 론술》 1817년 빠리판 제3판 제2권 33~52페지를 보라. 여기에서 그는 경제공황을 언급하였다. 계속하여 제2권 제3책의 《정치경제학 기본원리개요》 459페지에서 그는 《상품은 판매를 위해 구매하는 생산물》이라고 했다. —164페지

131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563페지를 보라. —175페지

132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554~560, 564페지 이하를 보라. —177페지

133 죤 스튜어트 밀씨의 《정치경제학 원리 및 사회철학에서의 정치경제학 원리의 일부 응용》 1848년 런던판, 제1권 서문 3~4페지를 보라. —177페지

134 아서 웰링턴이 인솔한 영국군대가 1808~1825년사이에 나뽈레옹 1세를 반대하는 전쟁에서 휘황한 전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영국의 윌리엄 페니크장군(카즈준남작)은 1855년 11월 27일에 그가 지휘하여 방어하는 카즈성을 로씨야군대에게 넘겨줬다. —177페지

135 A. H. 뮐레르《정치의 기본》. 1809년 베를린판, 제2책, 280페지. —178페지

136 왕무옴의 지폐제도개혁에 관한 주장과 그가 1853년과 1854년(함풍 3년과 4년)에 황제에게 상주문을 두번 올린 상황에 대하여는 곽말약이 1936년 10월에 쓴 《〈자본론〉 중의 왕무옴》(《말약문집》 제11권 1958년 인민문학출판사판 28~34페지에 수록)과 오함이 1937년 3월에 쓴 《왕무옴과 함풍시대의 지폐제도개혁》(《오함사학론저선집》 제2권 1986년 인민출판사판 184~210페지에 수록)을 보라. —180페지

137 로씨야정부는 1861년에 와서야 북경에 공사를 파견하였다. 그 이전에 즉 1715년부터는 《로씨야정교 북경주재 전도단》(일명 전도사단, 포교단이라고도 한다)이 실제적으로 관변측대표의 역할을 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공사관》은 《전도단》이라고 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에 관한 저작은 전도단이 편집한 문집 《로씨야제국 북경주재 포교단성원의 론설문집》 제3권을 두고 말한다. 이 《론설문집》은 로씨야문을 독일문으로 번역할 때 책 이름을 《북경주재 로씨야제국 공사관의 중국 관련 저작》이라고 하였다. —180페지

138 영어의 《sovereign》이라는 단어는 《군주》, 《국왕》도 의미하며 또 금화 1파운드의 명칭으로도 된다. —181페지

139 G. W. F. 헤겔의 모든 한도가 없어지게 된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그가 쓴 《론리학》 제1권 《객관론리》 제1부 《존재론》 1833년 베를린판 421~455페지(《헤겔전집》 제3권)를 보라. —181페지

140 P. 봐기배르 《프랑스상론》, 《18세기의 재정경제학자》, 1843년 빠리판, 213페지를 보라. 《〈정치경제학비판. 제1분책〉 초고의 한 대목》(《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337페지)을 보라. —185페지

141 **《물건의 신경》**(nexus rerum)은 각종 물건의 련계 또는 주요한 물건이라는 뜻을 담고있다. 여기서는 화폐를 말한다. —186페지

142 맑스는 화폐를 **《담보물》** 또는 《사회적담보물》이라 칭하였는데 한면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니코마코스륜리학》 제5권 제8장 제14절을 보라)를 말하고 다른 한면으로는 영국의 경제학자 죤 벨러즈가 화폐에 대해 내린 정의(죤 벨러즈가 쓴 《빈민, 공업, 상업, 식민지 및 패덕에 관한 론술》 1699년 런던판 13페지를 보라)를 말한다. 맑스는 《7개 노트의 색인》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311페지를 보라)을 인용하였고 이 주해에서 벨러즈의 말을 인용하였다.

맑스는 1851년에 쓴 《런던필기》의 **《완성된 화폐체계》** 제 LX절 (《맑스엥겔스전집》 1986년 력사고증판 제4부분 제8권 48페지)에서 Y. G. 뷰시의 론점에 대하여 《화폐는 자산계급사회의 보편적인 담보물이다.》라고 간단하게 개괄하였다.(Y. G. 뷰시가 쓴 《나라 경제와 상업으로부터 본 화폐류통》 1800년 함부르그-킬 제2판 제1권 298~299페지를 보라.) 맑스는 《런던필기》 노트·VI에서 죤 로크의 1691년의 저서(《리자 인하와 화폐가치 인상의 제 결과에 대한 약간한 고찰》)중의 《화폐는 담보물이다》에 관한 견해(《로크저작집》(전 4권) 1768년 런던판 제2권 15페지를 보라)를 발췌하였다.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0권, 110페지를 보라. —186페지

143 포키스령토에 있는 델포아의 아폴로신전은 중립적이며 불가침한 성역으로 여겨졌다. 대량의 기증품과 귀중한 물품들이 소장되여 있음으로 하여 이 신전은 중요한 재정중심이 되였다. 기원전 356년에 포키스인들은 신전을 점령하고 물품을 략탈하여 대규모의 군사투쟁(즉 기원전 356~346년의 제3차 신성전쟁)을 유발하였다. 마케도니아국왕 필리쁘2세도 이 전쟁에 참가하였다. 몇년이 지난후(기원전 338년의 카이로네아전역) 그는 이 전쟁에서 이룩한 영향력을 그리스에 대한 통치로 확장하였다. —187페지

144 **성배** 중세기의 전설에 따르면 성배는 예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의 몸에서 흐르는 피를 받는 성스러운 컵이라고 한다. 중세기이후 교회에서는 성배(적어도 컵 동체)는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야 하고 만일 은컵일 경우에는 안에 도금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어떤 금컵은 진주보석을 상감해야 하였다. —188페지

145 **《부자로 되거나 부자로 보이게 하자.》** 디드로 《1767년의 살롱》에서 인용하였다. —190페지

146 **동인도회사**는 1600년부터 1858년까지 존재하였던 영국의 무역회사로서 영국이 인도, 중국 및 기타 아시아나라들에서 략탈적인 식민정책을 실시하는 도구였다. 18세기중엽부터 동인도회사는 군대와 함대를 가진 거대한 군사적력량으로 되였다. 이 회사의 명

목으로 영국식민주의자들은 인도정복에 성공하였다. 이 회사는 장기간 인도와의 무역을 독점하고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관리기능을 조종하여왔다. 1857년~1859년 인도에서 일어난 민족해방폭동은 영국인들로 하여금 그 식민지지배형식을 변경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즉 이 회사는 해산되였고 인도는 영국 국왕의 령지로 되였다. —191, 1010페지

147 《동인도(금은덩어리) 1864년 2월 8일부 하원의 질문에 대한 대답.》 3페지. —191페지

148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534페지를 보라. —194페지

149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541페지를 보라. —196페지

150 《맑스엥겔스전집》 력사고증판에 수록된 《자본론》 제1권 제1~4판에서 제1판에 직접 《정비례》로 고친이외에 기타 각 판에는 여전히 《반비례》로 되여있다. 그러나 편집자는 주해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맑스는 여기서 화폐류통의 일반법칙을 말하고있다(이 책 141~144페지를 참조하라). 이로부터 지불기한이 비교적 긴 상황에서는 화폐의 지불수단이 증가되였음을 보아낼수 있다. 각주(107)도 이 점을 설명하고있다.》 —200페지

151 맑스가 여기에서 인용한것은 W. 페티의 저서 《아일랜드의 정치적해부. 1672년》 1691년 런던판의 부록 《현자에게 한마디》이다. —200, 204, 314페지

152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550페지이하를 보라. —201페지

153 1844년 영국정부는 은행권으로 황금을 태환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로버트 필이 제의한대로 잉글랜드은행개혁법을 실시하였다. 즉 잉글랜드은행을 두개의 독립된 부문—은행부와 발행부로 나누고 은행권은 일정한 수량의 황금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황금담보가 없는 은행권은 발행액수를 1,400만 파운드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1844년에 실시한 은행법은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실제로 류통되고있는 은행권의 수량은 법정기금

에 의해서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류통령역내에서의 은행권 수요량에 의해서 결정되였다. 경제공황시기에는 화폐수요량이 특별히 크기때문에 영국정부는 잠시 1844년에 반포한 법률의 실시를 정지하고 황금담보가 없는 은행권의 총액을 증가하였다. 맑스는 《자본론》 제3권 제34장에서 1844년에 실시한 은행법의 내용과 그 의의에 대해 전문적인 평론을 하였다.

맑스는 영국은행제도의 발전과 1844년 필의 은행법을 자세히 연구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가 1850～1853년사이에 쓴 《런던필기》의 관련 부분(《맑스엥겔스전집》 1983년 력사고증판 제4부분 제7권 89～94, 108～109페지; 1986년 력사고증판 제4부분 제8권 111～113페지, 251페지와 269페지) 및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569, 579페지를 보라. —201, 580, 1038페지

154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563페지이하를 보라. —202페지

155 D. 리카도의 저서 《금은덩이의 높은 가격은 은행권의 가치가 저락한 증거이다.》 1811년 런던 개정 제4판을 보라. —202페지

156 **《통화원리》**(Currency principle) 또는 《통화학설》(Currency theory)은 19세기 영국에서 널리 류행되였던 통화리론으로서 1825년에 나타나기 시작한 자본주의주기성발전에 대한 자산계급경제학자들의 일종 반응이였다. 이 학설의 대표자들은 리카도의 화폐수량설에서 출발하여 상품의 가치와 가격은 류통분야의 화폐수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목적은 안정적인 화폐류통을 유지하는것이였으며 은행권의 필수적인 황금담보와 귀금속수출입상황에 근거한 은행권발행량의 조절이 이 목적에 도달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잘못된 리론적전제로부터 출발한 《통화학설》파는 생산과잉에 의한 경제공황의 결정적원인이 그들에 의해 선포된 화폐류통법칙을 위반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이 리론의 대표인물로는 S. J. 로이드(1850년부터는 오버스틴남작), R. 토런스, J. W. 노르만, W. 클래어, J. 아버스넛 등이였다. 그들은 금속류통의 추상적법칙을 은행권발행에 적용시킬것을 주장

하였다. 그들은 금속화폐이외에 은행권을 역시 《통화》(즉 류통수단)라고 하였다. 그들은 귀중한 금속으로 은행권을 위한 충족한 준비금을 마련한다면 안정적인 화폐류통을 실현할수 있을것이라고 믿었으며 은행권의 발행은 귀금속의 수출과 수입에 의해 조절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 리론에 립각한 영국정부의 여러가지 시도(1844년 은행법과 1845년 은행법을 포괄하여)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이 리론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하고 또 실천상에서도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것을 증명하였을 뿐이다(《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577～580페지를 보라). —202, 841페지

157 J. R. 머칼러크의 《정치경제학문헌. 정치경제학 부문별 주요론문들의 분류목록》 1845년 런던판, 181페지를 보라. —202페지

158 J. 스튜어트의 금은의 특징은 세계화폐라는 설에 관하여서는 그가 쓴 《정치경제학원리연구》 1770년 베를린판 제2권, 370페지를 보라. 맑스는 《정치경제학비판》 제1분책에서 스튜어트의 이 설을 언급한적이 있다.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562페지를 보라). —203페지

159 《화폐를 낳는 화폐》(money which begets money)는 애담 스미스의 《제 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에 대한 연구》 1802년 런던판, 87페지에서 인용. 맑스의 《1844년 경제학철학친필원고》를 참조하라. —217페지

160 **프랑스 화사원**을 가리킨다. 프랑스학사원은 몇개 부문 즉 몇개의 학원으로 구성된 프랑스의 최고과학기관이다. 데스뚜뜨 드 뜨라씨는 륜리학및정치학학원의 원사였다. —228페지

161 **《여기가 로두스이다. 여기서 뛰여보라!》**(Hic Rhodus, hic salta!). 이것은 이소프의 우화 《허풍쟁이》에 나오는 말이다. 즉 한 허풍쟁이가 자기가 로두스섬에서 매우 멀리 뛰였다고 억설하자 다른 사람들이 이 말로 반박하였다. 전의로는 여기서 네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를 증명하라는 뜻이다. —233페지

162 분명히 O. 파울리의 《고전고대실용백과전서》 1839～1852년 스투트가르트판 제1～6권을 말한다. 맑스는 1857년 7월 16일과 9

월 25일 엥겔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저서를 언급한바 있다. —234페지

163 **꾸자혁명**은 로므니아력사상 중요한 사변이다. 1859년 1월에 저명한 사회활동가이며 정치활동가인 알렉싼드르 꾸자는 처음에는 몰다비야군주로, 다음에는 왈라키아군주로 선출되였다. 장기간 오스만제국에 예속되여있던 이 두 두나이공국은 1862년에 통합되여 로므니아국가의 통일기반이 되였다. 꾸자는 정권을 장악하자 일련의 자산계급민주주의적개혁을 실현할 목적을 내세웠다. 그러나 그의 정책은 지주들과 일부 자산계급의 큰 반항에 부딪치게 되였다. 지주의 대표가 우세를 차지하고있던 국민의회가 정부측이 제기한 토지개혁안을 거부하자 꾸자는 1864년에 반동적국민의회의 해산, 새 헌법의 공포, 선거자범위의 확대, 정부권력의 강화 등을 가져온 정변을 일으켰다. 이러한 새로운 정치적환경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은 농노제를 폐지하고 속매를 통해 토지를 농민에게 분여할것을 규정하였다. —235, 331페지

164 **채무노예제**(peonage)는 로역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는 형식을 말한다. 맑스는 1867년 10월 11일에 L. 쿠겔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에 대해 론술한적이 있다. —235페지

165 W. 페티 《아일랜드의 정치적해부》 1691년 런던판, 64페지. 이 책 364페지의 각주(1)을 보라. —240페지

166 에덴에 관하여서는 《구약전서 · 창세기》 제2장 제8절을 보라. —245페지

167 J. 벤삼은 소위 유용철학 즉 공리주의의 대표인물가운데 하나이다. 그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리익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였다. 그러나 모든 리익은 옳바로 리해한다면 내적인 조화상태에서 존재하고있다. 매 사람이 옳바로 리해하는 리익은 곧 사회의 리익이다. —245페지

168 **《예정된 조화의 덕택》**(prästabilierte Harmonie)은 G. W. 라이프니츠의 용어이다. 그의 철학 특히 그의 단자론에 따르면 각 단자의 조화로운 질서는 하느님이 사전에 정해놓은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세계의 사물은 서로 떨어져 존재하였을것이다. —246페

169 《신약전서·마태복음》, 제6장, 제23절과 《신약전서 · 루가복음》, 제12장, 제25절. —250페지

170 A. R. J. 뛰르고의 이 저서는 1766년에 집필되였다. 맑스는 이 해를 이 저서 발표의 해로 정하였다. 사실상 이 책은 1769~1770년에 P. S. 듀뽕 드느무르가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맑스는 1844년 E. 대르가 빠리에서 출판한 판본을 인용하였다. —250페지

171 《a toolmaking animal》(도구를 만드는 동물)이란 말은 본틀리의 저서 《기계사용으로 인한 로동시간단축의 유익한 점과 그 정책에 관한 서한》, 1780년, 런던판에서 인용하였다. 맑스는 1859~1863년에 런던에서 쓴 노트 VII 155페지에서 이 저서 2~3페지의 한마디 말을 인용하였다. 《사람들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인간을 정의하였다…a toolmaking animal 또는 engineer 〈프랭클린〉은 인간에 대한 가장 적합하고 가장 특징적인 정의로 많은 사람들에게 채납되였다.》 —251페지

172 H. 슈또르흐 《정치경제학강의, 또는 국민의 번영을 규정하는 원칙의 설명》, 1823년, 빠리판, 제1권, 229~238페지. —253페지

173 A. 쉐르벌리에 《부와 빈곤. 사회적부의 현실적분배의 인과설명》, 1841년, 빠리판, 14페지. —253페지

174 성경외전에 나오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선량한 길을 걷고있지만 결국에는 지옥의 심연에 빠지고만다.》(《외전 · 시라크의 예수의 지혜서》 또는 《벤시라잠언》, 제21장, 제10절)라는 말을 바꾸어 인용하였다. —267페지

175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430페지를 보라. —269페지

176 **《그로 하여금 미소를 금치 못하게 하는 이 사정》**은 괴테의 비극 《파우스트》, 제1부, 제3장(《파우스트의 서재》)의 시구를 바꾸어 인용한것이다. —271페지

177 **《최선의 세계에서는 만사가 최선의 상태에 있다.》**(Tout pour le mieux dans le meilleur des mondes possibles)는 볼떼르의 소설 《깡디드》의 경구이다. —272, 1037페지

178 **《사랑에 번민하듯》**은 괴테의 《파우스트》, 제1부, 제5장(《라

이프찌히에 있는 아우에르바호주막》)을 보라. —272페지

179 **《로동자는 말할줄 아는 도구일뿐이다》**는 고대로마의 작가 마르쿠스 테렌티우스 와로의 말을 바꾸어 인용한것이다. 그는 《농업론》, 제1권, 제17장, 제1절에서 노예는 《말할줄 아는 도구》이고 동물은 《소리를 낼줄 아는 도구》이며 쟁기는 《말을 못하는 도구》라고 하였다. 맑스는 D. 라마제의 《로마인의 정치경제학》, 1840년, 빠리판에서 인용하였다.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247페지를 보라. —274페지

180 맑스 《자본론(1863~1865년 경제학친필원고)》 제3책(《맑스엥겔스전집》, 1992년, 력사고증판, 제2부분, 제4권, 제2책)을 보라. —299, 539, 560, 618, 656, 768페지

181 **《무로부터는 유가 창조될수 없다.》**는 루크레찌우스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제1권, 155~159행을 인용한것이다. —300페지

182 **투퀴디데스**는 고대그리스의 력사학자이다. 맑스는 윌헬름 로쉐르를 윌헬름 투퀴디데스 로쉐르라고 야유하였는데 그것은 맑스의 말에 의하면 이 속류경제학자가 자기의 저서 《국민경제학원리》 제1판 서문에서 《겸손하게도 자신을 정치경제학에서의 투퀴디데스라고 언명》하였기때문이다. 로쉐르는 투퀴디데스의 저서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특별히 선생님이라고 일컫는 그런 고대력사학자와 마찬가지로 나도 나의 저작이 …유익하기를 바라는바이다.》 등등(맑스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 922페지를 보라). —302페지

183 독일의 작가이며 문학평론가인 J. C. 고트쉐드는 문학에서 일정한 긍정적역할은 하였으나 또한 그는 어떠한 새로운 문학사조도 고집스레 배척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이름은 문학상의 교만성과 우둔성의 동의어로 되였다. —302페지

184 맑스의 《자본론》, 독일문, 제1판, 주석에서 든 방적업의 례이다. 이 례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Ⅱ 87페지에서 발취한것이다. 독일문판, 제2판에 나오는 주해 (31)의 내용은 엥겔스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고쳐 쓴것이다. 1865년 11월 20일 그리고 1868년 5월 7일과 16일에 맑

스가 엥겔스에게 보낸 서한을 보라. —306페지

185 W. 제이커브 《영국농업이 필요로 하는 보호관세에 관한 고찰의 속편. S. 위트브레드의원선생에게 보내는 편지》, 1815년, 런던판, 33페지. —306페지

186 맑스 《자본론(1863~1865년 경제학 친필원고)》, 제3책(《맑스엥겔스전집》, 1992년, 력사고증판, 제2부분, 제4권, 제2책, 제2장 《리윤의 평균리윤으로의 전화》)을 보라. —306페지

187 1833년의 공장법 《련합왕국공장의 아동로동과 소년로동의 강도에 관한 법령(1833년 8월 29일)》을 두고 말한다.(《공중일반법률집》, 1833년, 런던판, 제103장을 보라). 맑스는 이 책 320~326페지에서 1833년의 공장법을 전문 론술하였다. —312, 386페지

188 **천년기설의 신자**란 단어는 그리스어 실리오이(Chilias 즉 천이라는 말)에서 온것이다. 노예제도의 해체시기에 나온 천년기설의 신앙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지상에 정의와 평등, 행복의 《천년왕국》을 수립한다는 신비주의적종교학설을 선양하였다. 이는 농민과 도시빈민들의 심리상태를 반영하였다. 이 신앙은 초기 기독교에서 광범히 보급되였으며 그후 점차 각종 중세기적교파의 교리에 다시 나타났다. —318페지

189 A. 유어 《공장철학. 또는 대브리텐공장제도의 과학적, 도덕적, 상업적 경제의 해설》, 1835년, 런던판, 406페지. —319페지

190 영국의 10시간로동법안에 관해서는 이 책 307~337페지, 엥겔스의 《영국의 10시간로동법안》(《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10권, 299~310페지) 그리고 맑스의 《국제로동자협회 창립선언》과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V, 217~218페지를 보라. —319, 390페지

191 **소실링파**(little shilling men) 또는 버밍감학파는 19세기 상반기 버밍감에서 형성된 경제학파이다. 그들은 리상적인 화폐측정단위설을 선전하였으며 따라서 화폐란 단지 《계산명칭》에 불과하다고 보면서 화폐의 계산명칭(례하면 파운드, 실링)이 일정량의 귀금속과 련계됨을 부인하였다. 버밍감학파를 대표하는 토머스 애

트우드와 마사이아스 애트우드형제와 리차드 스푸너 등등은 영국에서의 화폐계량단위의 금함유량을 저하시키는 안을 제기하였는데 이것을 《소실링안》이라고 한다. 이 학파의 명칭도 바로 여기서 나왔다. 한편《소실링파》는 류통하는 화폐량을 축감하려는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여 나섰다. 그들은 자기 학파의 주장을 실현함으로써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시켜 공업에 활기를 띠게 하며 나라의 전반적번영을 보장할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이 제기하는 화폐가치의 인하는 가치가 떨어진 화폐로 국채와 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할수 있는데 불과하였다. 다시말하면 그것은 각종 신용의 기본접수자인 국고와 대기업주들에게 일정한 리득을 주는것이였다. 맑스는 자기의 로작 《정치경제학비판》 제1분책에서 이 학파에 대하여 말하고있다.(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476~477페지를 보라.) —325페지

192 **《금전문제에서는 인정이란 있을수 없다》**는 대이비드 한제만이 1847년 6월 8일, 프로씨아합동의회의 연설에서 한 말이다. 《제1회프로씨아합동의회의 연설 및 연설자》, 1847년, 베를린판, 417페지를 보라. 맑스의 《자산계급과 반혁명》 제4절의 서두에서도 이 말을 인용하였다. —327페지

193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Ⅲ, 106페지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2권, 217~218페지) 와 노트 XX, 1314페지에는 모두(로임제도와 정상적인 로동일)에 관한 론술이 있다. —327페지

194 **《조직규정》**(Règlement organique)은 두나이 두 공국(몰다비야와 왈라키아)의 첫 헌법이다. 1828~1829년의 로씨야—토이기전쟁이후 로씨야군대가 이 두 공국을 점령하였다. 이 헌법은 이 두 공국의 로씨야행정당국의 수반인 뻬. 뗴. 끼셀료브가 1831년에 실시한것이다. 조직규정에 의하면 매 공국의 립법권은 대지주들이 선출하는 의회에 일임되고 행정권은 토지귀족, 승려, 도시의 대표자들이 선출하는 종신군주들에게 위임된다. 조직규정은 부역을 포함한 종전의 봉건질서를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대귀족들과

상층숭려들의 지배적지위를 강화하였다. 한편 조직규정은 국내관세장벽의 제거, 자유무역의 실시, 사법과 행정의 분립 등등과 같은 일련의 자산계급적개혁을 규정하였다. 1848~1849년 혁명기간에 조직규정이 폐지되였다. —332페지

195 《공장로동조례개정에 관한 법령(1850년 8월 5일)》을 가리킨다. 이 법령은 로동일 시간을 규정하였다.

맑스는 아마 하원에서 결정하여 1859년 8월 9일에 인쇄한 《공장법》 3~5페지를 리용하였을것이다. —335, 373, 407페지

196 이 주석에서 고쳐진 내용은 1866년 2월 10일에 맑스가 엥겔스에게 보낸 편지를 보라. 이 편지에서 맑스는 《나는 〈로동일〉, 이 절에 대하여 력사적확장을 하였는데 이것은 나의 본래 계획을 벗어난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충해넣는것〉은 1865년까지의 당신의 저서에 대한 (간단한) 보충입니다(나는 주석에서 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로동일》 이 절은 《자본론》, 제1권, 독일문판, 제1판에서는 제3장의 구성부분으로 되여있으며 독일문판, 제2판에서는 제3편, 제8장으로 되여있다. —335페지

197 파우헤르는 독일문으로 Faucher이다. 이는 fauchen(웨침)과 어근이 동일하다. 맑스는 1867년 11월 30일에 쿠겔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교정에 대해 언급할 때 《파우헤르는 정치경제학의 〈행각전도사〉 입니다. 이 자는 로쉐르, 라우, 몰 등 〈박식한〉 독일 경제학자의 셈에도 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Faucher을 명사로 간주하지 않고 오직 동사 fauchen(웨침)으로 봅니다.》 —335페지

198 제프리 초서의 《수탉과 여우》는 드라이덴의 《고대와 현대의 우화》, 1713년, 런던판, 280페지를 보라. —338페지

199 《전일공》과 《반일공》 간의 차이에 관해서는 《공장감독관보고. 1858년 10월 31일》, 1858년, 런던판을 보라. —339페지

200 **추밀원**은 영국국왕소속의 최고자문기관으로서 내각대신들과 기타 관원들 그리고 종교계의 고위급대표들로 구성되였다. 이 기관은 13세기에 처음으로 설립되였다. 장기간 이 기관은 의회를 거치지

았고 국왕을 대표하여 립법하는 권력을 가지고있었다. 17세기이전에는 나라를 다스리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8세기와 19시기에 의회제도가 발전하고 내각의 권력이 강화됨에 따라 추밀원의 역할이 급격히 약화되여 단지 식민, 종교, 행정 사무면의 신소권력만을 보유하게 되였다. 사실 현시기 영국에서의 추밀원은 아무런 의의를 가지지 않는다. —340, 552, 636, 886페지

201 이 자료의 실제출처는 《아동로동조사위원회(1862년). 제1차보고》, 1863년, 런던판, 9페지이다. —340페지

202 《영국로동계급의 형편》의 《기타 로동부문》이란 절을 보라. —341, 354페지

203 **《또다시 크리스피누스》**(Ecce iterum Crispinus)는 유베날리스 《풍자시집》에 있는 네번째시의 첫구절이다. 이 풍자시집은 첫부분에서 로마황제 도미티아누스의 한 궁신인 크리스피누스를 호되게 비판하였다. 이 말은 전의로 《또다시 바로 그 인물》 또는 《또다시 바로 그 사실》이란 뜻을 가지고있다. —345페지

204 맑스는 이 책 203페지의 각주 (51) 그리고 1862년 10월에 쓴 《빵의 제조》에서도 빵의 불순제조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347페지

205 프로타고라스는 고대희랍의 궤변학파 철학가이다. 그는 물질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상태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인식론면에서 진리의 객관성을 부인하고 인간인식의 상대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인식의 내용은 인식하는 인간에게 달렸다고 보면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며 존재하는 사물의 존재척도이며 존재하지 않는 사물의 비존재척도》라고 하였다. —347페지

206 **엘레아학파**는 기원전 6세기말부터 5세기 고대희랍철학의 관념론적학파이다. 이 학파의 가장 중요한 대표자는 크세노폰, 파르메니드, 제논이였다. 엘레아학파는 운동과 현상의 다양성이 현실에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오직 상상속에만 존재한다는것을 증명하려 하였다. —347페지

207 **대배심단**이란 1933년까지 영국에 있은 배심원집단으로 군의 우두머리가 군중에서 뽑은 12~23명의 《순박하고 성실한》 사람들

로 구성되였다. 이 배심단은 사건을 사전에 토의하며 기소자를 형사재판에 넘기는 문제를 결정하였다. —350페지

208 영국국교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정하였다. 영국국교는 성일면에서 유태교와 다르지만(유태교는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어두워질 때까지가 안식일임.) 안식일에 관한 규례는 유태교와 마찬가지로 엄격하였다. 즉 안식일에는 아무도 장사를 하거나 려행을 떠나서는 안된다, 짐을 짊어져서는 안되며 짐을 실은 가축을 몰고와서도 안되며 집에서 물건을 내여가서는 안된다. 특히 어떤 로동에 종사하는것을 금지한다. —352, 368페지

209 영국농업무산계급의 운동 즉 스윙폭동은 1830~1833년초 영국의 남부와 동남부 많은 군의 고농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운동이다. 이 운동은 경제공황으로 인해 그리고 소작을 주는 농장주들이 탈곡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고농들의 빈곤과 실업 현상이 늘어난데서 기인되였다. 폭동을 일으킨 고농들은 탈곡기의 사용을 반대하고 로임의 인상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스윙대위》라는 이름으로 소작을 주는 농장주와 지주에게 공갈편지를 보내고 곡식더미를 불사르고 탈곡기를 파손하는것으로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다. 그러나 휘그당정부 그레이훈작의 명령에 의해 농촌무산계급의 이러한 분산적인 폭동은 잔혹한 무력탄압을 받았다. —352, 912페지

210 1872년 3월말에 워릭군에서 창설된 농업로동자조합은 농업로동자들의 로임을 인상시키기 위한 파업을 령도하였다. 이 파업은 워릭부근의 중부와 동부의 각 군으로 재빨리 확산되였다. 1872년 5월에 J. 아치의 령도하에 전국농업로동자조합이 설립되였으며 1873년말에는 조합성원이 약 10만명으로 늘어났다. —352페지

211 맑스의 이 구상은 실현되지 못했다. 그밖에 여기에서 말하는 제2권은 《자본론》 제2책과 제3책을 가리킨다. 이 책 13페지를 보라. —352페지

212 맑스는 T. 칼라일의 저서 《현대평론. (1) 현시대. (2) 모범감옥》에 대한 자기의 서평을 두고 말한다.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10권, 311~323페지를 보라.)《천재는 없어지

고 숭배만이 남았다.》는 말은 쉴러의 《거세당한자와 남자》 중의 시구를 바꾸어 인용한듯 하다. —356페지

213 W. 스트레인지 《건강의 7개 근본》, 1864년, 런던판, 84페지. —359페지

214 1866년의 경제공황이 있기전에 영국은 상공업이 번영되고 많은 주식회사들이 분분히 설립되였다. 그리하여 J. 러셀내각의 점점 더 많은 자유주의자산계급들은 1865년에 이 발전을 전반 사회의 진보라고 일컬었다.

맑스가 여기에서 묘사한 《진보의 해》의 영국로동자들의 형편에 관해서는 엥겔스가 후에 자신의 저서 《〈영국로동계급의 형편〉 1892년 독일문판 서문》에서 《맑스의 〈자본론〉 제1권에서는 영국의 공업번영이 절정에 달한 1865년경의 영국로동계급의 형편을 상세하게 서술하고있다.》고 썼다. —367페지

215 **《영국사람이 노예로 되는 일은 결코, 결코 없을것이다!》** (Britons never, never shall be slaves!)는 작사가 J. 톰슨과 작곡가 Th. 아은이 1740년에 지은 노래 《영국이여, 해상을 장악하라!》 중의 마지막 구절이다. —368페지

216 **엑세터회당**은 런던에 있는 한 건물로서 여기에 여러 종교단체와 자선단체들이 모여있다. —369페지

217 **《내가 죽은후에는 대홍수가 일든말든 내 알바 아니다!》** (Après moi le déluge!)는 프랑스왕 루이15세가 빈번한 축제와 호화로운 연회로 나라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 나라를 위험한 지경에 빠뜨릴수 있다고 한 측근자들의 충고에 대하여 대답한 말이라고 한다. —375페지

218 괴테 《줄라이카에게》. —375페지

219 **《한접시의 불콩료리를 받고 자기의 장자상속권을 팔다.》**는 말은 성서의 한 전설에서 나온 말인데 지금은 일상용어에서 형상적인 비유로 쓰이고있다. 전설에 의하면 불콩료리를 만들고있던 야코브는 사냥에서 돌아와 지쳐 쓰러지면서 불콩료리를 좀 먹자고 사정하는 형에게 장자명분을 양도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형 이사브는 불콩료리를 얻어먹기 위해 맹세를 하고 자기의 장자상속권을

팔았다고 한다.(《구약전서 · 창세기》 제25장, 제29~34절을 보라). —376페지

220 **창궐한 대흑사병**은 1347~1350년에 서유럽을 휩쓴 무서운 전염병이다. 자료에 의하면 당시 흑사병으로 인해 사망된자는 약 2,500만명으로 전체 서유럽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였다. —377, 948페지

221 하느님이 엿새동안 하늘, 땅, 바다와 거기에 있는 만물을 만들고 7일째되는 날 안식하였다는 전설은 《구약전서 · 출애급기》 제20장, 제1~17절을 보라. —382페지

222 이 자료들은 맑스가 엥겔스의 《영국로동계급의 형편》중 《개개의 로동부문 협의의 공장로동자》란 절에서 인용하였을것이다. 거기에는 1802년의 도제법 및 1819년 (엥겔스가 1818년으로 잘못 썼음.) , 1825년, 1831년 그리고 1833년의 공장법이 언급되여있다. 그밖에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X, 1243페지를 보라. —386페지

223 1833년 6월 25일의 제1차보고 즉 하원의 결정에 의하여 1833년 6월 28일 인쇄된 《공장조사위원회. 칙명위원회 중앙평의회 제1차보고》. 여기에 나오는 편지는《녀왕폐하의 내무대신에게 보낸 공장감독관의 보고. 1848년 10월 31일까지의 반년》, 1849년, 런던판, 141페지에서 발췌하였다. —388페지

224 《**위험은 지체하는데 있다.**》는 로마의 력사학자 티투스 리비우스의 저서 《건국이래의 로마사》, 제38권, 제25장, 제13절에 나오는 말이다. —388페지

225 《〈련합왕국내 공장아동로동규제법안〉 위원회의 보고. 증언첨부》, 1832년 8월 8일 하원의 결정에 의하여 인쇄. —389페지

226 **해방법령**이란 영국정부가 1831년 11월 2일에 반포한, 인도서부에 생활하고있는 14세이상 흑인의 로동시간을 9시간으로, 14세이하 흑인의 로동시간을 6시간으로 한정할데 관한 규정을 두고 말하는듯 하다. —389페지

227 **쟈거노트**는 인도의 큰 신의 하나인 비슈누의 화신이다. 극히 호화로운 종교의식, 극단적인 종교적열광, 이것이 쟈거노트를 숭배

하는 교파의 특징이다. 이러한 열광은 스스로 고생하고 스스로 참살한데서 나타난다. 성대한 종교의식을 진행할 때 어떤 신자들은 비슈누의 우상을 실은 수레바퀴밑에 몸을 던졌다. —389, 812, 875페지

228 영국헌장운동의 강령성문헌인 **인민헌장**을 가리킨다. 인민헌장은 1837년에 하원의 6명 의원과 6명의 런던로동자협회 회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출하였으며 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법안으로서 1838년 5월 8일에 각지 군중대회에서 공포되였다. 헌장은 일반 선거권(21세이상의 남자에게), 매년의 의회선거, 비밀투표, 선거구의 균등화, 의회대의원립후보자에 대한 재산상 자격제한의 금지, 대의원유급제 등 6개 항목으로 되여있다. 1839년과 1842년 그리고 1849년의 3차례 의회회의에서 인민헌장을 통과시키자는 헌장파의 청원서가 부결되였다. —390페지

229 곡물법반대동맹(주해 24를 보라.)지지자들은 자유무역이 실시되면 로동자들의 실질로임이 제고되며 로동자들은 이전에 받던것의 2배나 되는 큰 빵덩어리(big loaf)를 받게 될것이라고 로동자들을 선동하였다. 게다가 이들은 또 해당한 글을 써붙인 두개의 빵덩어리—큰것과 작은것—를 직관선동수단으로 삼아 큰거리에 들고 다녔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약속과 간계는 죄다 거짓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곡물법이 폐지됨으로써 공고화된 영국의 산업자본은 로동계급의 사활적리해관계에 대한 침해를 강화하였다. —391, 623페지

230 《천년왕국》에 관한 기독교교의에 따르면 세계말일이 다가오기전 천년동안은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직접 세계를 다스린다. 이 기간에 기독교를 신앙하는 신도들은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되며 마귀는 잠시 결박되고 복음이 순조롭게 세계에 전파된다. 《신약전서 · 요한묵시록》 제20장, 제3, 4절을 보라. —391페지

231 **국민공회 의원들**이란 18세기말 프랑스자산계급혁명시기에 특별한 전권을 받고 성이나 군대에 파견된 국민공회(1792~1795년의 프랑스공화국 국민회의) 대표를 말한다. —395페지

232 영국의회의 제3차이자 마지막 한차례인 인민헌장의 부결을 암시하고있다(주해 228을 보라). 헌장파는 원래 1848년 4월 10일에 런던에서 대규모시위행진을 조직하고 시위군중들이 의회청사로 가서 인민헌장의 통과를 청구하는 제3차청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시위를 금지하는 정부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이번 시위를 막았다. 헌장파지도자중의 많은 사람 례하면 A. 오코너는 동요하여 시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시위군중을 해산하도록 설득하였다. 영국정부는 시위행진의 실패를 리용하여 로동자를 반대하고 헌장파를 탄압하였다. 그 결과 대규모체포가 실시되였는데 약 500여명의 가장 유명하고 가장 적극적이며 가장 급진적인 사람들이 체포되였다. 그중에는 존스도 포함된다. 그는 1848년 6월부터 1850년 7월까지 구금되였다. 엥겔스는 《1845년과 1885년의 영국》에서 헌장운동의 이번 실패를 언급하면서 《로동계급의 활동은 뒤전에 밀려나게 되였고 자본가계급은 전면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였다. —397페지

233 1848년 6월 23일~26일 빠리로동자들이 일으킨 영용한 봉기를 가리킨다. 이번 봉기는 대자산계급이 로동운동을 반대하여 내린, 로동자취업을 위해 설립된 국가공장에 대한 폐쇄령을 반대하여 일어났다. 6월 25일 봉기를 탄압한 브레아장군이 폰텐블로초소에서 봉기군에 의해 살해되였으며 이로 인해 봉기자 두명이 후에 사형당하였다. 나흘동안 영용하게 투쟁한 4만 5,000명의 로동자는 까베냑장군의 부대에 의해 탄압되였는데 그들은 우선 투쟁하는 로동자와 농민근로자를 격리시킴으로서 이번 봉기를 진압하였다. 봉기의 실패는 유럽범위에서의 혁명력량을 약화시켰으며 반혁명의 역공격에 유리하게 하였다. 맑스는 《1848년~1850년의 프랑스계급투쟁》에서 이번 봉기를 론술하면서 《이것은 현대사회의 두 계급을 분렬시키는 대규모적인 첫 전투이며 자산계급제도의 존망을 위해 진행한 투쟁이였다.》라고 지적하였다.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10권, 153페지를 보라. —397페지

234 **혐의자단속법**(loi des suspects) 또는 사회치안법(lois de sûreté publique)은 1858년 2월 19일에 프랑스립법원에서 채택한 법률

인데 이 법은 제2제국의 제도를 적대시한다는 혐의를 받은 사람은 모두 투옥시키거나 프랑스와 알제리의 외딴 지방에 추방하거나 프랑스령토에서 완전히 축출하는 무제한한 권리를 나뽈레옹3세 황제와 그 정부에 부여하였다. —397페지

235 쉐익스피어 《베니스상인》, 제4막, 제1장. —400페지

236 **10동표**는 로마노예제국가의 고대립법기념물인 《12동표》의 첫·변종으로 기원전 451년에 나왔다. 사적소유를 보호할 사명을 띤 이 법률은 재산이 없는 채무자의 자유를 박탈하며 그를 노예로 팔거나 룡지처참할것을 규정하였다. 이 법률은 로마사법의 기원으로 된다. —400페지

237 S. N. H. 랭개의 《민법리론, 또는 사회의 기본원리》, 1767년, 런던판, 제2권, 제5책 제20장을 보라. —400페지

238 독일의 철학자 G. F. 다우메르는 자기의 저서 《기독교고대의 성례》, 1847년, 함부르그판, 제1권, 33~34페지에서 최초의 기독교도는 성찬시에 인육을 사용하다였다는것을 증명하였다. 맑스는 1847년 11월 30일 런던독일로동자교육협회에서 한 연설에서도 이를 언급하였다. —400페지

239 **세습재판소**란 지주의 법정을 가리킨다. 세습재판소는 봉건령주의 토지소유권범위내에서 미약한 사법권(재산사법권과 유산사법권, 토지재산사법권)을 가지고있다. 이러한 법정은 흔히 한명의 세습법관(향장이나 집사)에게 위탁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402페지

240 C. 푸리에가 그려낸 미래사회에서 사람들은 1로동일에 몇가지 로동에 종사하게 된다. 즉 1로동일은 수개의 《**단시간로동**》(courtes seances)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매개 로동은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넘지 않는다. 이러한 단시간로동에 의하여 로동생산능률은 급격히 높아지며 그 결과 극히 빈곤한 로동자마저 종전의 임의의 자본가보다 더 충분히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게 된다고 푸리에는 생각하였다. —404페지

241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10권, 307페지. —406페지

242 **2월혁명**이란 1848년 2월에 일어난 프랑스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

을 가리킨다. 금융자산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는 《7월왕조》는 극단적인 반동정책을 실시하면서 모든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반대하고 자본주의발전을 저해하며 무산계급과 농민에 대한 착취를 가심화한데서 전국 인민의 불만을 자아냈다. 농업의 흉작과 경제공황은 국내모순을 가일층 격화시켰다. 1848년 2월 22～24일에 빠리에서 혁명이 일어나 《7월왕조》를 뒤엎고 자산계급공화파의 림시정부를 건립하고 프랑스제2공화국의 성립을 선포하였다. 이것은 유럽의 1848～1849년대혁명의 제1차혁명이였다. 무산계급과 소자산계급이 이 혁명에 적극 참가하였지만 혁명의 열매는 자산계급의 수중에 들어갔다. —416페지

243 1866년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볼티모에서 열린 미국로동자대회를 두고 말한다. 대회에 로동조합에 결속된 6만명이상의 로동자를 대표하는 60명의 대표가 참가하였다. 8시간로동제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문제, 로동자의 정치활동문제, 협동조합문제, 모든 로동자를 로동조합에 망라시키는 문제 등등이 대회에서 심의되였다. 대회에서는 또한 로동계급의 정치단체인 전국로동자동맹을 창설하는 결정이 채택되였다. —418페지

244 여기에서 인용하고있는 국제로동자협회 제네바대회의 결의는 맑스가 1866년 8월말에 쓴 《림시중앙위원회 대표들에게 보내는 개별적문제들에 대한 지시》에 기초하여 작성되였다. —418페지

245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10권, 299페지를 보라. —419페지

246 **《자기들을 괴롭히는 뱀》**은 하이네의 시 《하인리흐》(《현대시》)중의 한 시구를 약간 바꾸어놓은것이다. —419페지

247 **대헌장**(Magna Charta) 즉 자유대헌장(Magna Charta Libertatum)은 기사와 시민들의 지지를 받은 대봉건주들과 대주교들이 영국의 왕인 《무토왕 죤》에게 제출한것이다. 1215년 6월 15일 영국의 왕인 《무토왕 죤》이 서명한 이 대헌장은 국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한편 대봉건주들과 귀족들에게 우선적으로 특권을 주고있다. 지어는 봉건주들과 귀족들이 그들의 특권이 침해를 받을 경우 왕실을 반대하는 폭동을 궐기할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대헌장은

기사계층과 시민들에게도 일정한 양보를 하였지만 기본주민대중 즉 농노들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주지 않았다. 여기서 맑스는 자본과의 장기적인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영국의 로동계급이 전취한, 로동일을 제한하는 법률들을 두고 말한다. -420페지

248 1789년 8월 26일 빠리 제헌국민의회가 통과시킨 인권선언 즉 《인권과 공민권 선언》을 두고 말한다. 이 선언은 자유, 재산, 안전과 압박에의 반항은 박탈해서는 안되는 천부적인 인권임을 선고하고있다. -419페지

249 **이 얼마나 큰 변화인가!** (Quantum mutatus ad illo!) 베르길리우스 《아에네아스의 노래》, 제2권, 274시행을 보라. -420페지

250 아르키메데스의 한마디 명언은 이러하다. 《나에게 하나의 튼튼한 지점을 달라.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놓을테니.》 -423페지

251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V 782~851페지를 보라. -427페지

252 **《사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였다.》** 이 말은 프랑스의 해군 제독 드 빠라의 한 편지(《드 빠나의 회고록 및 서신. 프랑스혁명사》 1851년, 빠리판, 제2권, 197페지)에 있는 말이다. 이 말은 당시 널리 사용되고있었는데 이 말이 딸레리랑이 한 말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은 18세기말 프랑스자산계급혁명에서 아무런 교훈도 찾을수 없었던 왕정파에 대하여 한 말이였다. -427페지

253 속류경제학은 현상의 법칙을 무시하고 현상의 외관에 매달린다. 이 말에 대해서는 맑스가 1868년 7월 11일 L. 쿠게만에게 보낸 편지 및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V 920~921페지를 보라. -427페지

254 스삐노자는 그의 저서 《륜리학》(제1부 보충)에서 무식은 충분한 론거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자연에 대한 숭려적목적론적견해의 대표자들을 반대하여 한 말인데 이 목적적견해의 대표자들은 《신의 의사》를 온갖 현상의 원인의 원인으로 내세웠으며 이에 대한 그들의 유일한 론거는 그밖의 원인에 대해서는 알수 없다는것을 내세우는것이였다. -427페지

255 G. W. F. 헤겔의 량적변화가 일정한 점에서 질적변화를 가져온다

는 견해에 대해서는 그의 《론리학》 제1권, 《객관적론리》 제1부, 《존재론》 1833년 베를린판 (《헤겔전집》 제3권)을 보라. 맑스는 1867년 6월 22일부 엥겔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가 여기서 헤겔의 견해를 인용하여 수공업기술자가 자본가로 변화하는 과정을 묘사한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엥겔스는 이 페지의 각주(205a) 및 그 이후의 《반듀링론》에서 화학과정에 근거하여 량적인 변화와 질적인 변화간의 변증관계에 대하여 론술하였다. -429페지

256 마르틴 루테르의 《상업과 고리대에 대하여》는 《존경하는 마르틴 루테르박사의 저서집 제6부》, 1589년 위텐베그판, 296페지를 보라. -430, 1012페지

257 A . 께뜰래의 평균적개인에 대한 론의는 그의 《인간과 그의 능력의 발전에 대하여, 또는 사회물리학에 대한 론술》, 1842년, 에딘버러판, 9페지를 보라. -451페지

258 W. 로쉐르씨의 《국민경제체계》 제1권 《국민경제학원리》 1858년 슈투트가르트-아우그스부르그 중보, 제3판, 88~89페지. -452페지

259 맑스 《자본론(1863~1865년 경제학원고》 제3책 (《맑스엥겔스전집》, 1992년 력사고증판, 제2부분, 제4권, 제2책, 제1장 《잉여가치의 리윤에의 전화》.

엥겔스는 《자본론》, 제1권, 독일문판, 제4판의 교열을 보기전에 이미 이 편과 《자본론》 제3책의 제2~4편을 완성하여 인쇄에 넘길 준비를 하고있었다. 엥겔스의 1890년 4월 9일부 F. D. 뉴윈후스에게의 편지를 보라. -454, 586페지

260 아리스또텔레스는 《니케마흐륜리학》에서 인간을 도시의 시민(zoon politicon)으로 정의하고있다. "politicon"이라는 말은 《국가의》란 뜻도 되고 《도시의》라는 뜻도 된다. 왜냐 하면 고대희랍에서는 도시와 국가가 같은 개념이였으며 모두 (polis)로 표시하였기때문이다. 인간에 관한 정의에 대해서는 맑스도 1857~1858년 경제학원고의 《서언》 부분에서 론술한바 있다.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0권, 25페지를 보라.) -456페지

261 공상적사회주의자들의 사상의 영향에 의하여 로치데일시(맨체스터북부)의 로동자들이 1844년에 정의로운 선구자조합을 세웠다. 이 조합은 최초에는 하나의 소비협동조합이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확대되여 생산협동조합으로 되였다. 로치데일시 선구자조합이 설립되면서 영국과 기타 나라들의 협동조합운동은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462페지

262 O. 콩트는 그의 1830~1842년판 저서 《실증철학교정》에서 실증론에 대해 론술하고있는데 그의 실증론은 과학을 주로 현존하는 사물 즉 사실상(《실증적》)의 물질 및 그들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찰과 리해 두가지로 귀결시키고있다. 콩트는 그의 사회사상 -로동자와 자본가의 화합-으로부터 출발하여 리론활동과 실천활동은 그것이 어떠한것이든 모두 자본주의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데 있다고 보고있다. 그의 이 견해는 1848~1849년 혁명이후 프랑스와 기타 나라의 자본가계급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일으켰다. 맑스는 1866년 7월 7일부 엥겔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콩트에 대한 견해를 언급하였다. -464페지

263 고대 아시아의 건축물. 례하면 아슬니니훼의 불당, 바빌론의 이스타르성문, 중국의 만리장성, 이집트인들의 유명한 지싸금자탑, 에트루리아인들이 세운 기원전 7~4세기의 불당과 릉묘들을 말한다. -465페지

264 주식회사에 대하여 맑스는 《자본론(1863~1865년 경제학원고)》, 제3책에서 이미 론술한바 있다. (《맑스엥겔스전집》, 1992년, 력사고증판, 제2부분, 제4권, 제2책, 제14장, 제6절을 보라). -466페지

265 고전적공동체에 대해서는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0권, 472페지를 보라. -467페지

266 맑스는 여기에서 A. 스미스가 그의 주요저서에서 제침업의 18종 작업에 대해 언급한것을 두고 말한다. (《제 국민적부의 성격과 원인의 연구》, 1802년 빠리판, 제1장, 13페지를 보라). -471페지

267 W. 페티의 공장제수공업의 분업에 관한 견해는 그의 《인류의 증

식을 론함》(《정치산술론문집》, 1699년 런던판, 35페지)을 보라. -477페지

268 뉴른베르그의 조립공이자 시계제조공인 P. 헨라엔이 1510년을 전후하여 만든 최초의 태엽으로 시계바늘을 움직이는 소형회중시계를 두고 말한다. -477페지

269 이 실례는 《각국의 공업》, 1855년 런던판, 202~204페지에서 인용한것이다. 맑스는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X 1183페지에 이 수치를 인용한바 있다. -483페지

270 맑스는 여기서 J. H. M. F. 버퍼의 《공업기술학력사》, 1810년 괴팅겐판, 제2권, 198, 381~384페지의 론술에 근거하고있다. 맑스는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원고)》 노트 XIX 1170~1171페지에서 이 공업기술학에 대해 인용한바 있다. -486페지

271 맑스는 여기서 J. H. M. F. 버퍼의 《공업기술학력사》, 1810년 괴팅겐판, 제1권, 109페지의 론술에 근거하고있다. 맑스는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X 1163페지와 1164페지에서 물방아에 관한 론술을 인용한바 있다. 맑스는 1863년 1월 28일부 엥겔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에 관하여 이야기한바 있다. -486페지

272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VIII 347페지, 노트 IV 394페지, 414페지, 노트 XIV 778~779페지 및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2권, 308~314페지를 보라. -486페지

273 엥겔스가 여기서 인용한것은 맑스의 《루이스 H. 모건의 〈고대사회〉 적요》이다. -492페지

274 1861년이후 면화에 대한 수요가 증대한것은 1861~1865년 미국의 남북전쟁(주해 8을 보라)으로 말미암아 면화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492페지

275 맑스가 여기서 J. H. M. F. 버퍼의 《공업기술학력사》, 1807년 괴팅겐판, 제1권, 413~414페지의 론술에 근거하고있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원고)》 노트 XIX 1175페지를

보라. -493페지

276 **모든자를 반대하는 모든자의 싸움**(Bellum omnium contra omnes)은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호브즈가 한 말이다. 이 말은 그의 1642년의 론문 《공민에 대하여》 중의 독자에게 드리는 서문 (《호브즈철학저서집》, 1668년 암스테르담판, 제1권, 7페지) 및 그의 영문저서 《레바이아산 또는 교회국가와 시민국가의 본질, 형식과 권리》 1651년 런던판의 라틴어번역본(《호브즈철학저서집》, 1668년 암스테르담판, 제2권, 83페지)에 있다. -496페지

277 맑스의 《철학의 빈곤》, 제2권, 제2절 《분업과 기계》를 보라. -497, 501, 504, 581페지

278 인도공동체에 대하여 맑스는 여기서 언급하고있는 저서에만 근거한것이 아니라 T. 라벨의 저서 《자바의 력사》, 1817년 런던판, 제1권, 285페지의 자료에도 근거하였다. 맑스는 《인도에서의 브리텐의 지배》(《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12권, 137~144페지를 보라.) 및 1853년 6월 14일부 엥겔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라벨의 《자바의 력사》를 인용한바 있다. -499페지

279 라플라타 각 국이란 아르헨띠나, 우루과이, 빠라과이를 말한다. -502페지

280 전설에 의하면 기원전 494년 로마의 평민과 귀족사이에 대충돌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귀족 메네니우스 아그리파가 폭동을 일으키고 성산에 올라가 귀족들을 반대하고있는 평민들에게, 위를 반대해서 소란을 일으킨 인체의 일부분에 관한 우화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화해를 하라고 설득하였다 한다. 메네니우스 아그리파는 당시의 사회를 사람의 몸체에 비유하였는데 평민은 몸체의 손에 해당하며 이 몸체의 위인 귀족을 먹여살린다고 하였다. 그런데 손과 위를 따로 떼여놓으면 불가피적으로 몸체를 사멸하게 되며 그와 마찬가지로 평민이 그 의무리행을 거부한다면 고대로마국가는 멸망한다는것이다. -502페지

281 **기예 및 수공업 협회**(Society of Arts and Trades)는 자산계급의 자선적성격을 띤 교육단체로서 1754년 런던에서 창립되였다. 19세기 50년대에는 알베트친왕이 협회의 지도자로 있었다. 이 협회

는 《기예, 수공업 및 상업을 장려》하며 《가난한 사람에게 일거리를 주고 상업을 확장하며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장려하는것이 자기의 목적이라고 굉장하게 선포하였다. 협회는 영국의 대중적인 파업운동의 발전과 로동자의회의 설립 움직임을 막아보려는 목적에서 로동자와 기업주간의 조정자역할을 수행하려고 하였다. 맑스는 1854년 2월 7일에 집필한 《청서. —2월 6일의 의회변론. —오룰로브백작의 사명. —동맹군함대의 행동. —아일랜드려. —로동자의회의 개최에 대하여》에서 이 협회를 《술책과 협잡의 협회》라고 불렀다.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13권, 68페지를 보라). —506, 521, 542, 986페지

282 G. W. F. 헤겔 《법철학의 기본》, 1840년 베를린, 제2판, 247페지, 제187절의 주(《헤겔전집》, 제8권)를 보라. —506페지

283 W. 로쉐르의 《국민경제학원리》, 1858년 슈투트가르트—아우그스부르그 증보, 제3판을 보라. —507페지

284 《행복에 관한 대화》(1741년 런던판)는 《3편의 론문》중의 세번째 론문이다. 론문의 저자는 《일기와 왕복서신》(1844년 런던판 제1~4권)을 발표한 외교관 맘즈버리백작 제임즈 해리스가 아니라 그의 부친인 제임즈 해리스이다. 맑스가 여기서 인용한 말에 대해서는 《3편의 론문》, 1772년 런던 수정, 제3판, 292페지를 보라. —508페지

285 아르킬로코스의 《어떤 일은 이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어떤 일은 저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이 말은 쎅스투스 엠피리쿠스의 저서 《수학자를 반대하여》, 제11권, 44페지에서 인용해온것이다. —508페지

286 **《그는 많은 일을 할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을 하나 다 잘하지 못하였다.》**는 이 말은 호메로스의 《마르길타스》에 있는 말인데 맑스는 위 플라톤 대화편 《아지바드2세》에서 이 말을 인용하고있다. 편집자 W. 한밀턴이 《슈트아터전집》, 제8권, 311페지에 가한 주를 보라. —508페지

287 **30명의 폭군이 몰락하던 시기**란 기원전 5세기말, 고대아테네에서

30명의 폭군의 폭정이 뒤엎어지고 노예소유자적민주주의가 복구된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에 아테네에서 상업자본과 고리대자본이 발전하였다. -509페지

288 이 말은 플라톤의 《리상국》 제2책, 11.370b-c에서 인용한 말이다. 맑스는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에서도 이 말을 인용하였다(《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2권 320페지를 보라). -509페지

289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1861-1863년 원고)》(《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2권, 321페지)을 보라. -510페지

290 **플라톤리상국**은 고대희랍철학자 플라톤이 그의 저서 《리상국》에서 묘사한 리상형의 노예제공화국이다. 이런 공화국에서 자유시민은 3개의 신분으로 구분되는데 노예는 이 3개의 신분에 속하지 않았다. 각 신분간에는 분업이 엄격하였는바 소수의 철학자에게는 관리의 기능이 예정되여있었고 군인들은 전쟁에 참가하며 시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여야 하였고 농민과 수공업자는 인민에게 생활수단을 생산하여 공급해야 하였다. -510페지

291 A. 유어의 《공장철학 또는 대브리텐공장제도의 과학적, 도덕적, 상업적 경제의 해설》, 1835년 런던판, 21페지. -512페지

292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X 1237페지를 보라. -515페지

293 《각국의 공업》, 1855년 런던판, 164~165페지.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X 1176페지를 보라. -515페지

294 19세기의 자연과학의 유물론을 말하며 그 대표적인 인물들로는 독일의 동물학자 K. 프거터, 화란의 생물학자 Y. 머라이쇼터, 독일의 의사 L. 비시너이다. 그들은 인민들에게 무신론과 자연과학에 관한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사회력사적유물론의 관점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변증법적인 사유방식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윈주의와 관계가 밀접하였기때문에 다윈의 리론으로 사회의 발전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엥겔스는 《칼 맑스 〈정치경제학비판. 제1분책〉》의 제2부분에서 비시너 등의

협애하고 용속한 사유방식을 비판하는 동시에 유물론적력사관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있다. -516페지

295 **열기관**(kalorische Maschine)이란 보통의 기체의 용적은 가열과 랭각에 의하여 팽창 또는 수축한다는 원리에 기초하여 만든 기관이다. 그것은 증기기관에 비하여 육중한데다 효률이 낮았다. 열기관은 19세기 30년대에 J. 애리커슨에 의해 발명되였으나 19세기말엽에 이르러서는 이미 실용적의의를 완전히 상실하였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X 1176페지를 보라. -516, 629페지

296 맑스는 여기에서 《각국의 공업》, 1855년 런던판, 145~146페지의 자료에 근거하고있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X 1184페지를 보라. -517페지

297 맑스는 여기에서 《각국의 공업》, 1855년 런던판, 222~250페지의 자료에 근거하고있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X 1206~1211페지를 보라. -517페지

298 맑스는 여기서 J. H. M. F. 버퍼의 《공업기술학력사》, 1807년 괴팅겐판, 제1권, 271페지의 자료에 근거하고있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X 1172페지 마지막을 보라. -518페지

299 **젠니방적기**는 1764~1767년에 제임즈 하그리브즈가 발명하여 그의 딸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방적기이다. -518페지

300 **《마당질하는 소의 입에 꾸레미를 씌우지 말라.》** 이 말에 대해서는 《구약전서·신명기》, 제25장, 제4절을 보라. -519페지

301 맑스는 여기에서 《각국의 공업》, 1855년 런던판, 252페지의 자료에 근거하고있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X 1167페지를 보라. -519페지

302 맑스는 여기서 J. H. M. F. 버퍼의 《공업기술학력사》, 1807년 괴팅겐판, 제1권, 105페지의 자료에 근거하고있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X 1167페지를 보라. -519페지

303 맑스는 여기서 J. H. M. F. 버퍼의 《공업기술학력사》, 1807년

피팅겐판, 제1권, 132~134페지의 자료에 근거하고있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X 1211페지를 보라. -519페지

304 맑스는 여기서 J. H. M. F. 버퍼의 《공업기술학력사》, 1807년 피팅겐판, 제1권, 105페지의 자료에 근거하고있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X 1211페지를 보라. -519페지

305 맑스는 여기서 A. 유어의 《기술사전》, 1843년 쁘라하판, 제1권, 423~430페지의 자료에 근거하고있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X 1203페지를 보라. -519페지

306 맑스는 여기서 J. H. M. F. 버퍼의 《공업기술학력사》, 1807년 괴팅겐판, 제1권, 138~140페지와 147~149페지의 자료에 근거하고있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X 1165~1166페지를 보라. -522페지

307 맑스는 여기서 J. H. M. F. 버퍼의 《공업기술학력사》, 1807년 괴팅겐판, 제1권, 173~174페지의 자료에 근거하고있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X 1166~1167페지를 보라. -522페지

308 맑스는 여기서 《각국의 공업》, 1855년 런던판, 227페지의 자료에 근거하고있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원고)》 노트 XIX 1204페지와 1207페지를 보라. -523페지

309 맑스는 여기에서 《각국의 공업》, 1855년 런던판, 198페지와 200페지의 자료에 근거하고있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X 1183페지를 보라. -524페지

310 《국제박람회》에 관해서는 1862년 9월 19일부 《기치》지 (런던), 제11889호, 제5면, 제6란에 소개되여있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II 747페지에 이 자료들이 있다. -524페지

311 맑스는 여기에서 《각국의 공업》, 1855년 런던판, 155~156페지의 자료에 근거하고있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

년 원고)》 노트 XIX 1184페지를 보라. -530페지

312 S. 푸리에는 인류력사의 매 시기의 본질적특징을 《주축》이라고 말하고있다. 말하자면 모든것은 하나의 축을 에워싸고 돈다는것이다. (푸리에 《일반적통일론》, 제2권, 《푸리에전집》, 1841년 빠리 제2판, 제3권, 304페지를 보라.) -531페지

313 맑스는 여기에서 《각국의 공업》, 1855년 런던판, 238~239페지의 자료에 근거하고있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X 1185페지와 1209페지를 보라. -532페지

314 맑스는 여기에서 《각국의 공업》, 1855년 런던판, 222~247페지의 자료에 근거하고있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원고)》 노트 XIX 1206~1211페지를 보라. -533페지

315 맑스는 여기에서 《각국의 공업》, 1855년 런던판, 225페지의 자료에 근거하고있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X 1206페지를 보라. -533페지

316 맑스는 여기에서 《각국의 공업》, 1855년 런던판, 223, 227, 228페지의 자료에 근거하고있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원고)》 노트 XIX 1206~1207페지를 보라. -533페지

317 **《인간의 손의 창조물》**은 쉴레르의 시 《종의 노래》에 있는 시구이다. -534페지

318 J. B. 쎄는 가치 및 부에 관하여 A. 스미스와 진행한 론쟁에서 기계는 리윤의 일부를 이루는, 가치를 창조하는 봉사를 한다고 말하고있다. J. B. 쎄의 《정치경제학에 대하여》, 1817년 빠리판, 제1권, 제4장을 보라. -537페지

319 J. 베인즈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의 《면화무역. 이 문제에 대하여 블랙번, 문학, 과학, 기계학 협회 회원들에게 한 두 강의》, 1857년 블랙번-런던판, 48페지를 보라. -538페지

320 맑스는 여기에서 《각국의 공업》, 1855년 런던판, 228~231페지의 자료에 근거하고있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X 1207페지를 보라. -539페지

321 R. 데카르트의 동물은 단순한 기계라는 견해는 그의 저서 《인류

에 대하여》, 1664년 레이덴판을 보라. -540페지

322 C. L. 폰 할레의 동물은 인간의 조수라는 견해는 그의 저서 《국가학의 부흥》, 1816년 원터틀판, 제1권, 332페지와 378페지의 각주 8을 보라.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X 1162페지를 보라. -540페지

323 F. 베이컨의 생산방식의 변화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실제적지배를 사유방법의 변화의 결과로 본 견해는 그의 저서 《신도구》, 1798년 베를린판, 《서언》, 13페지와 《잠언》, 81, 102페지를 보라. -540페지

324 기계에 의한 날염이 손에 의한 날염을 대체한 상황에 대해서는 엥겔스의 《영국로동계급의 형편》 중의 《기타 로동부문》을 보라. -541페지

325 E. 위트니가 발명한 조면기가 로동생산성을 제고시킨 상황에 대해서는 맑스가 1861년 11월 1일경에 쓴 저서 《영국의 위기》와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V 208페지(《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2권, 391페지)를 보라. -541

326 맑스는 여기에서 《봄베이상회. 1859~1860년 보고》의 자료에 근거하고있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V 209페지(《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2권, 391페지》)를 보라. -542페지

327 J. F. 위트슨의 보고 (1861년 4월 19일부 《기예협회잡지》(런던), 408페지에 게재)에서 언급된 이 자료들에 대해서는 맑스가 1859~1863년 런던에서 쓴 노트 VII 207페지를 보라. 거기에는 1861년이 1860년으로 잘못 표기되여있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V 209페지에도 이 자료들이 있다.(《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2권, 391페지》). -542페지

328 광산에서의 녀성과 아동(10세미만의)의 로동을 금지시킨것은 1842년의 광산법에서 제정한것이다. 이 책 한문판 569페지를 보라. -544페지

329 **곳프리강장제**란 아편으로 만든 인체에 해로운 진정제이다. 엥겔스는 저서 《영국로동계급의 형편》 중의 한 절인 《결과》에서 곳프리가 로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해로운 점을 묘사하고있다. -546페지

330 **《히로데스적략탈》**이란 맑스가 자본주의적생산이 아동로동자들의 신체를 망그러뜨리는 잔혹한 착취를 비유하여 한 말이다. 히로데스의 아동에 대한 도살은 《신약전서 · 마태복음》, 제2장, 제16~18절에 있다. -557, 1017페지

331 씨니어가 운산을 할 때에 사용한 수자는 미리 지불된 100,000파운드인것이 아니라 한명의 로동자가 갖고있는 몫인 100파운드(《공장법이 면방직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편지》, 1837년 런던판, 14페지를 보라)였다. 맑스는 런던노트 XI에서 씨니어의 저서를 인용할 때 이를 시정한바 있다.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235페지와 제32권, 379페지를 보라.) -560페지

332 **《첫사랑의 시기》**는 쉴레르의 시 《종의 노래》에 있는 시구이다. -561페지

333 《공장감독관 보고. 1856년 10월 31일까지의 반년기간》. 1857년 런던판, 12페지. 맑스가 1857년 4월에 집필한 《영국의 공장제도》에도 이 통계자료가 들어있다. -573페지

334 맑스는 여기서 《각국의 공업》, 1855년 런던판, 156페지의 자료에 근거하고있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X 1176페지를 보라. -575페지

335 맑스는 《철학의 빈곤》, 제2장, 제2절 《분업과 기계》의 마지막 부분에서 A. 유어의 《공장철학》 중의 몇마디를 인용한적이 있다. -578페지

336 A. 유어 《공장철학. 또는 대브리텐공장제도의 과학적, 도덕적, 상업적 경제의 해설》, 1835년 런던판, 22페지. -580페지

337 《영국로동계급의 형편》 중의 《개개의 로동부문. 협의의 공장로동자》라는 절과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X 1245페지의 첫머리를 보라. -582페지

338 《영국로동계급의 형편》 중의 《개개의 로동부문. 협의의 공장로동자》라는 절을 보라. -582, 584페지

339 **분권제**란 Ch. 몽떼스끼외가 그의 저서 《법의 정신》에서 국가의 권력은 립법, 행정, 사법 등 3권으로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학설이다. 그에 의하면 이 3권은 상호간 독립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면서 또한 상호간 균형을 이루고 감독을 진행해야 한다는것이다. 이 학설은 프랑스에서 절대적인 지배적지위에 있는 전제제도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었다. -584페지

340 Ch. 푸리에는 공장을 《**완화된 감옥**》(les bagnes mitigés)이라고 불렀다. 그의 저서 《허위적이며 분산적이며 협오스러운 위선적 산업과 이에 대립하는 자연적이며 련합적이며 매혹적이며 진실하며 4배나 더 많은 생산물을 내는 진정한 산업》, 1835년 파리판, 59페지를 보라. -587페지

341 맑스가 이 주해에서 언급하고있는 S. 란첼롯띠티의 책이란 《현대-과거의 지혜에 못지 않은 지혜》를 말한다. 이 책에 있는 인용문은 J. 베크만의 저서 《발명사》, 1786년 라히비시판, 125~129페지를 보라. J. H. M. F. 버퍼도 《공업기술학력사》, 1807년 괴팅겐판, 제1권, 490페지에서 독일인들이 리봉 및 레스를 짜는 기계를 개조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있다. -587페지

342 맑스는 여기서 J. H. M. F. 버퍼의 《공업기술학력사》, 1807년 괴팅겐판, 제1권, 269페지의 자료에 근거하고있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X 1172페지를 보라. -588페지

343 **러다이트운동**이란 18세기중엽부터 19세기초엽까지 로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한 운동을 말한다. 이 운동은 전설중의 로동자 수령 러다이트의 이름으로 명명되였는데 그가 제일 처음으로 기계를 파괴한 사람이라고 한다. 이 운동은 대략 1760년경에 셰필드와 노팅감에서 일어났으며 1811~1817년의 공황기간에 영국 전역으로 확산되였다. -588페지

344 영국정부는 1812년 H. A. 씨드머스가 내무대신, H. L. 카슬레이가 외무대신을 맡은후 로동자들의 기계파괴운동을 잔혹하게 탄압

하였다. 이와 동시에 프랑스를 반대하는 전쟁 즉 이른바 반자꼬벵전쟁을 도발하였다 (주해 403을 보라.). -588페지

345 **1834년의 빈민구제법** 즉 《잉글랜드와 웨일즈 빈민구제법의 수정 및 그것의 보다 훌륭한 실시를 위한 법령》을 말한다. 이 법령은 1834년 8월 14일에 발효하였다. 그 이전에는 1601년에 발효되여 한번도 중대한 수정을 가한적이 없는 빈민구제법이 실시되고 있었다. 1882년 영국의회는 당시 실시되고있던 빈민구제법 및 그 실시상황을 검토하고 새로운 빈민구제법을 제정하기 위해 이를 한 위원회에 위임하였다. 동 위원회는 당시의 빈민구제법이 영국의 빈곤인구를 날로 증대시키는 주된 원인의 하나라고 인정하였다. 이로부터 그들이 얻어낸 가장 중요한 결론은 빈민구제법의 중요한 실시수단으로 빈민원(Workhouse)을 만들고 이를 관장할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것이였다. 1834년의 빈민구제법은 이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로동능력이 있는 사람과 그 가족에게 일체의 금전 또는 식품 구제를 금지시키고 빈민원에서 강제적인 로동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빈민원의 생산조건은 몹시 렬악하였고 로동강도가 큰 대신 생산효률은 낮았다. 그곳에서 실시되는 제도는 죄인들을 강박적으로 고역에 참가시키는 감옥제도와 별반 차이가 없어 《가난뱅이들의 바스티유감옥》으로 불리웠다. -591, 911페지

346 여기의 자료는 엥겔스가 1867년 1월 29일부 맑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인용하고있다. -595페지

347 아래 도표중의 자료는 T. 브라시의 저서 《로동과 임금 일람》, 1872년 런던판, 124~125페지에서 인용하고있다. -595페지

348 P. 개스켈 《수공업로동자와 기계》, 1836년 런던판, 23, 34~35페지.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2권, 389페지를 보라. -597페지

349 맑스가 밝히고있는 출처는 P. 개스켈의 저서 제1판이지만 실지 그가 인용한것은 1836년 런던에서 《수공업로동자와 기계》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제2판이다. -597페지

350 맑스는 여기서 《각국의 공업》, 1855년 런던판, 232페지의 자료

에 근거하고있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 원고)》 노트 XIX 1208페지를 보라. -597페지

351 J. 네이즈미스의 증언이다. T. 브라시의 저서 《로동과 임금 일람》, 1872년 런던판, 129~130페지를 보라. -597페지

352 《**흉도 말로 가리워진다**》(Nominibus mollire licet mala)는 이 말은 오비디우스의 《련애술》, 제2권, 657행에서 인용하고있다. -602페지

353 영국에서는 1801년부터 10년에 1차씩 재산통계를 포함한 인구조사(주해 6을 보라.)를 실시해왔다. -608페지

354 《면화기근》이란 1863년 4월 28일부 《타임즈》, 제24544호, 제8판, 제5란에 실린 글이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X 1270페지를 보라. -608페지

355 맑스는 《인구조사》, 1861년 런던판, XXXIV페지의 자료에 근거하여 이 수치를 계산한것이다. 그 자료에는 《가스장치, 가스용기구 등의 기계제조에 88명, 가스기사 83명, 가스장치에 5,469명, 가스 미터, 증류기, 가스계측기 등의 제조에 314명, 가스라이프제조에 565명, 가스제조소 서비스부문에 8,672명》으로 되여있다. 맑스는 분명 계산을 잘못한것이다. 이 수치에 근거하면 총수치는 15,191명이 된다. -611페지

356 맑스는 《인구조사》, 1861년 런던판, XXXVII페지에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이 수치를 계산해냈다. 거기에는 《철도 경리처 247명, 철도객차 강판 및 완충재 제조 로동자 99명, 철도객차, 차량 제조로동자 774명, 철도회사 직원, 수위, 복무원 26,846명, 철도도급상 549명, 기차운전기사, 보일러공 10,414명, 철도로동자 27,773명, 철도등 제조로동자 5명, 관원, 요원, 기차역 역장 14,539명, 철도경찰 1,444명, 철도신호등 제조로동자 8명, 차륜 제조로동자 54명, 기타 관련 인원 47명》으로 되여있다. 맑스는 분명 계산을 잘못한것이다. 이 수치에 근거하면 총수치는 82,779명이 된다. -611페지

357 《인구조사》, 1863년 런던판, 제37페지에 이 공업부문에 관한 수치가 나오는데 맑스가 계산해낸 총수치는 이와 다르다. 맑스는

분명 《공장. 1861년 4월 24일부 하원의 질문에 대한 대답》, 1862년 런던판, 31페지의 수치를 인용한것이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X 1217페지를 보라. —612페지

358 《인구조사》, 1863년 런던판에는 이 수치가 없다. 맑스는 분명 《공장. 1861년 4월 24일부 하원의 질문에 대한 대답》, 1862년 런던판, 31페지의 수치를 인용한것이다. 거기에 18세이상의 남자가 177,596명이다고 되여있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VIII페지를 보라. —612페지

359 《인구조사》, 1863년 런던판, 37~39페지, LIII, LV와 LXV페지에 이 공업부문에 관한 수치가 있는데 맑스가 계산해낸 총수치는 이와 다르다. —612페지

360 Ch. 가닐씨의 《정치경제학의 제 체계에 관하여》, 1821년 런던 제2판, 제2권, 212페지.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VIII 368페지를 보라. —612페지

361 《공장감독관보고. 1856년 10월 31일까지의 반년》, 1857년 런던판, 16페지.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X 1224페지를 보라. —613페지

362 《공장감독관보고. 1856년 10월 31일까지의 반년》, 1857년 런던판, 31페지.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X 1222, 1218페지를 보라. —616페지

363 맑스는 이 자료들을 의회문건 《밀, 알곡 및 곡분. 1867년 2월 18일부 하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인용하고있다. —619페지

364 **결사금지법**은 영국의회에서 1799년과 1800년에 통과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일체 로동자조직의 결성과 활동도 금지하였다. 1824년에 의회는 이 법률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1824년에 식품가격이 올라가면서 각지에서 파업이 잇따르자 자본가들은 로동자결사를 다시 금지할것을 요구하였다. 의회는 W. 허스키슨의 제의에 의하여 로동자결사상황조사위원회를 발족하였으나 결국 로동자들의 투쟁에 의하여 결사금지법안은 통과되지 못하였다. 1825년 7월 6일, 의회는 결사법(로동조합법)을 통과하면서 결사금지법같

은 법령을 폐지한다는것을 재차 확인하였다. 그러나 1825년의 결사법에 따르면 로임과 로동시간 규정에 취지를 둔 로동자조직만 징벌대상에서 면제되였고 당국은 여전히 로동조합의 활동을 제한하였다. 특히 로동자들이 조합에 가입하며 파업에 참가하라는 선동활동은 《강요》, 《폭력》으로 간주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 —622, 993페지

365 《면화기근》이란 1863년 4월 28일부 《타임스》, 제24544호, 제8면, 제5란에 실린 글이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X 1270—1272페지를 보라. —622페지

366 영국과 프랑스가 1860년 1월 23일에 체결한 통상조약을 말한다. 이 조약에 의하여 프랑스는 영국에 의류, 비단제품, 악세사리, 자수품과 공예품 등 물품을 수출할 때 대부분 면세대우를 받았고 이를 위해 프랑스는 영국상품수입금지규정을 폐지하고 그 대신 상품가격의 30% 최고세액을 징수함과 동시에 영국석탄에 대한 수입세를 100키로그람당 15상팀으로 낮추었다.

통상조약에 대한 상세한 상황은 맑스가 1860년에 집필한 《프랑스와 영국간의 새로운 조약》을 보라. —623페지

367 영국이 아시아시장의 확장을 강행한것을 두고 말한다. 중국과의 무역에 대한 동인도회사의 독점이 폐지된(1833년)후 영국의 개인상인들은 중국시장에 대거 침입하였다. 그들은 영국정부의 백방으로 되는 지지밑에 중국인민을 독해하는 아편을 대대적으로 중국에 밀수입하였다. 그후 영국은 중국을 침략하는 아편전쟁을 도발하여 략탈적인 불평등조약을 중국에 강요하였다.

영국은 인도에 대해서는 주로 렴가면직물을 대량 수출하여 시장을 확대하였다. 인도의 수공방직업자들은 밀려드는 영국의 기계면직물과 경쟁할수 없게 되여 대량으로 실업을 당하고 지어 굶어죽게 되였다. —628페지

368 맑스는 여기에서 《각국의 공업》, 1855년 런던판, 392, 394페지의 자료에 의거하고있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X 1179~1177페지를 보라. —630페지

369 맑스가 여기서 말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동로동조사위원회. 제2

차보고》, 1864년판 XXXIX페지 296, 299호를 보라. —641페지

370 **중앙등기소 소장**이란 영국의 중앙호적등기소 장관을 이르는 말이다. 이 등기소는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외에 10년에 한번씩 인구조사를 진행하였다. —645, 882, 900, 915페지

371 의회문헌 《공장. 1861년 4월 24일부 하원의 질문에 대한 대답》, (1862년 2월 11일 인쇄) 9페지를 두고 말한다. —649페지

372 《공산당선언》 제1절《자산자와 무산자》를 보라. —664, 1025페지

373 **《그대 내 쌀주머니를 빼앗아갈진대, 그대는 내 목숨을 빼앗는것이로다.》** 쉐익스피어 《베니스상인》, 제4막, 제1장을 보라. —664페지

374 **《제화공이여, 자기의 본분을 지키라!》**(Ne sutor ultra crepidam!) —고대희랍의 저명한 화가 아펠레스가 그의 그림에 대한 한 제화공의 비판에 대하여 대답한 말이다. 이 제화공은 그림에 대하여 전혀 모르면서도 그림에 있는 구두의 어떤 결함을 가지고 비판하였던것이다. 플리니우스의 《박물지》,제35권, 제85페지를 보라. —666페지

375 맑스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670페지

376 공장제도는 사회혁명의 출발점이라는 로버트 오엔의 견해에 대해서는 그의 저서《만체스터에서 한 6편의 연설문》, 1833년 만체스터판, 56~58페지를 보라. 맑스는 《정치경제학비판(1857~1858년 친필원고)》(《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109~110페지)에서 관련 단락을 인용하였다. —684페지

377 1878년의 공장 및 작업장법이란 공장법과 작업장법을 통합하여 개정한 법률(빅토리어 41년 통과. 제16장)을 말한다. 《공장 및 작업장법, 1878년, A. 레드그레이브의 서언 첨부》, 1879년 런던판을 보라. 맑스는 그가 소장하고있는 이 책의 레드그레이브의 주해옆에 줄을 그었다. —684페지

378 레옹스 드 라배른뉴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농촌경제》, 1885년 에딘버러—런던판을 가리킨다. —685페지

379 제임즈 앤더슨의 저서 《곡물법 성격 탐구. 스코틀랜드의 새로운

곡물법안에 대하여》, 1777년 에딘버러판; 《농촌과 농촌 사무론문집》, 1775~1796년 에딘버러판, 제1~3권; 《지금까지 유럽의 농업진보를 방해하는 원인에 대한 연구》, 1779년 에딘버러판; 《농학, 박물학, 기예와 각 류형의 문헌에 대하여》, 1799~1802년 런던판, 제1~6권을 가리킨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 495페지와 550페지를 보라. —687페지

380 T. R. 말사스가 타인의 인구론을 표절한것에 대해서는 그의 저서 《지대의 본성과 장성 및 지대를 규제하는 원리에 대한 연구》, 1815년 런던판을 보라.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 495페지와 499페지를 보라. —687페지

381 E. 웨스트의 《토지에 대한 자본의 적용에 관한 론술, 그리고 곡물수입을 엄하게 제한한 실책에 대하여》 1815년 런던판.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 495페지를 보라. —687페지

382 D. 리카도의 《정치경제학 및 조세의 원리》, 1817년 런던판.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 452~453, 483, 485페지와 노트 XI 495~496페지와 564페지를 보라. —687페지

383 J. 밀의 《정치경제학원리》, 1821년 런던판.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V 799~800페지를 보라. —688페지

384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VII 300~318페지와 노트 VIII 347~376페지와 노트 IX 377~408페지를 보라. —691페지

385 **《어린애를 끄는 줄에 매여 걸음마를 익히게 하듯 인간을 자기 손에서 놓지 않는다.》** 이 말은 18세기말 독일의 시인 슈툴베르그의 시 《자연에 드리노라》의 한구절을 바꾸어쓴 말이다. —697페지

386 P. J. 프루동의 《경제적모순의 체계 또는 빈곤의 철학》, 1848년 빠리판, 제1권, 73페지. —698페지

387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V 852페지와 노트 XXII 1374페지를 보라. —700페지

388 맑스는 H. ϕ. 다니엘쏜에게 보낸 1878년 11월 28일부 편지에서 이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것을 건의하였다. 《다음에는 사회적생산의 각이한 력사적형태들을 밀이 어떻게 취급하고있는가를 보여주는 훌륭한 표본이 나온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어디서나 소수의 례외를 제외하고는 로동자와 자본가가 서로 계급으로서 대립하고있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지배적인 현재의 사태를 전제로 한다. 그것은 자본가는 로동자에 대한 지불도 포함한 전체 비용을 선대한다는것이다.〉 로동자와 자본가가 서로 계급으로서 대립하고있는 경제제도하에서는 자본가가 그렇게 하는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것이 아니라는것을 밀은 혼연히 믿으려 한다.》 —702페지

389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VI 220페지와 노트 XII 636~639페지를 보라. —710페지

390 맑스의 《자본론(1863~1865년 경제학친필원고)》, 제3책(《맑스엥겔스전집》, 1992년 력사고증판, 제2부분, 제4권, 제2책, 제1장 《잉여가치의 리윤에로의 전화》, 제2장 《리윤의 평균리윤에로의 전화》)를 보라. —711페지

391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I 498~508페지를 보라. —717페지

392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 445~489페와 노트 XI 490~495, 515~522페지를 보라. —721페지

393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X 1279페지를 보라. —723페지

394 로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권과 관련한 A. 스미스의 견해에 대해서는 그의 《제 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 1802년 빠리판 제1권, 59페지 및 이하 페지를 보라.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I 49페지(《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2권, 104페지)와 노트 VI 247페지 및 이하 몇페지에 이와 관련한 자료들이 있다. —724페지

395 **사회계약설**은 계약을 통해 사회제도 특히는 국가모델을 창출하여 인류를 원시상태에서 해방한다는 학설이다. 이 학설은 인간의 권리는 천부적이라고 주장하고있으며 주로 군주의 권리는 신이 부여한것이라는 봉건주의의 교리를 반대하고있다. 사회계약설은 군주지배자들이 인민과의 계약을 파괴하고있다고 인정하면서 자산계급혁명을 변호하여 나섰다. 이 학설의 주요한 대표자들로는 T. 홉스, P. 가젠리, B. 스삐노자, J. 로크, H. 그로티우스, J. J. 루쏘, A. H. 라디세브, T. 제퍼슨, T. 페인 등이 있다. —729페지

396 맑스의 《철학의 빈곤》, 제1장, 제2절 《구성된 가치 또는 종합가치》. —730페지

397 《**필요가격**》은 F. 께네의 《상업과 수공업자의 로동에 관한 문답》, 《중농학파》, 1846년 빠리판, 제1부 XXXV페지에서 인용하였으며 《**자연가격**》은 A. 스미스의 《제 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 J. L. 머칼러크 편찬, 1828년 에딘버러판, 제1권, 107페지에서 인용하였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VI 243페지를 보라. —731페지

398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456페지를 보라—733페지

399 이것은 로마법중의 계약관계에 관한 4가지 공식이다. 원문은 Do ut facias, facio ut facias, facio ut des, do ut des이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57～1858년 친필원고)》(《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0권, 458페지)와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XI 1326페지를 보라. —735페지

400 맑스는 일찌 경제학저작을 6권으로 쓰려 계획하였다. 맑스가 1859년에 쓴 《정치경제학비판》의 《서문》(《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411～415페지)를 보라. 계획중의 제3권은 《임금로동》에 관한것이였으며 거기에서도 로임의 각종 특수형태를 연구할 예정이였다. 비록 《자본론》에 로임과 그 기본형태에 대한 론술이 포함되여있지만 맑스는 로임의 각종 특수형태를 포함시켜야 할 《임금로동》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다. —738페지

401 맑스는 아마 《임금로동》에서 경쟁이 상품으로서의 로동력의 판매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저술하려 하였을것이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V 219페지와 노트 XX 1257페지를 보라. -746페지

402 저서 《상업일반의 성질에 관한 시론》(1756년 암스테르담판)의 저자는 리쳐드 깡띠용이다. 이 저서의 영문판은 리쳐드 깡띠용의 친척인 필리프 깡띠용에 의하여 개작되였다. -756페지

403 **반자꼬벵전쟁**이란 1792~1815년에 영국, 프로시아, 오스트리아와 로씨아 등 나라들이 참가한 유럽국가동맹이 프랑스공화국을 반대하여 나뽈레옹의 프랑스와 진행한 수차의 전쟁을 가리킨다. 전쟁기간에 영국정부는 근로자를 반대하는 테러정부를 수립하였다. 영국 통치자들은 각종 인민들의 봉기를 진압함과 동시에 모든 로동자들의 결사를 반대하는 법령을 반포하였다. 자산계급은 이 시기에 근로시간을 10시간에서 12、14시간과 18시간으로 연장할것을 요구하였다. -756, 819, 911, 1008페지

404 1861~1865년 미국의 남북전쟁(주해 8을 보라)시기에 북부 각 주의 해군들이 남부의 각 주를 봉쇄하여 미국의 면화공급이 중단되였으며 그리하여 면화기근이 일어났다. 이 영향을 받아 유럽의 대부분 방직공업이 정지상태에 빠졌으며 로동자들의 생활형편이 극히 악화되였다. -780v

405 궁내 시종장 칼브는 쉴레르의 비극《간계와 사랑》의 등장인물이다. 제3막 제2장에서 칼브는 독일의 한 군주의 궁내대신이 꾸민 음모에 가담하기를 처음에는 거절한다. 그때 궁내대신은 자기가 사직하겠다고 위협한다. 이렇게 되면 칼브도 부득이 사직하지 않을수 없게 되는것이다. 이에 몹시 놀란 칼브는 부르짖는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당신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당신은 학문이 있는분인데요! 그런데 나는- 아아! 전하께서 나를 사직시킨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782페지

406 **독일로동자협회**는 맑스와 엥겔스가 벨지끄에 거주하고있는 독일인 로동자들을 정치적으로 계몽하며 그들에게 과학적공산주의사상을 선전하기 위하여 1847년 8월말에 브류쎌에서 창설한것이다.그

전칭은 브류쎌독일로동자교육협회이다. 맑스와 엥겔스 및 그 전우들의 지도하에 협회는 벨지끄의 독일 혁명적무산자들을 단합하는 합법적인 중심으로 되였다. 협회의 우수분자들은 공산주의자동맹브류쎌지부에 가입하였다. 협회는 브류쎌민주협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역할을 발휘하였다. 프랑스의 1848년 2월 자산계급혁명(주해 242를 보라)이 있은후 벨지끄 경찰당국이 협회원들을 체포, 추방하였기때문에 브류쎌에서의 협회의 활동은 중단되고말았다. —786페지

407 단순재생산의 순환이 라선형으로 진행된다는 S. D. 씨스몽디의 견해에 대해서는 그의 저서 《정치경제학의 새 원리 또는 부와 인구와의 관계에 관하여》, 1827년 빠리판, 제1권, 119페지를 보라. —790페지

408 유태인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결국 유태민족 전체를 형성하였다는것에 대해서는 《신약전서 · 마태복음》 제1장을 보라. —800페지

409 G. W. F. 헤겔 《법철학의 기본》, 1840년 베를린 제2판, 제203절, 보충 259페지(《헤겔전집》 제8권). —803페지

410 J. St. 밀의 저서 《추리적, 귀납적 론리학체계, 증명의 원칙과 과학적연구방법과의 관계》 (전 2권), 1843년 런던판을 가리킨다. —803페지

411 맑스의 《자본론. 정치경제학비판》, 제2권, 제2책 《자본의 류통과정》, 프리드리히 엥겔스 편찬, 1885년 함부르그판, 341～489페지를 보라. —803페지

412 F. 께네는 그의 저서 《경제표》, 1758년 베르사유판에서 처음으로 도표를 리용하여 사회총자본의 재생산과 류통을 설명하려 시도하였다. 맑스는 O. 멜이 1846년에 빠리에서 출판한 《주요한 경제학가들의 론문집》, 제2권 《중농학파》 중의 께네의 글을 리용하였다. 맑스는 그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 제422페지와 그이하 페지 그리고 1863년 7월 6일과 1877년 8월 8일에 엥겔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경제표에 대해 론술하였다. —803페지

413 《**여하한 날자도 없는**》이란 말은 쉴레지엔의 대지주 리흐놉스키가 1848년 7월 25일 프랑크푸르트국민회의에서 독립적으로 존립할 뽈스까의 력사적권리를 반대하여 연설할 때 한 말이다. 그는 여러번 이 말을 하면서 번마다 두개의 부정사를 한꺼번에 사용하였다. 즉 이 말을 《Keinen Datum hat》라고 할 대신에 《Keinen Datum nicht hat》라고 하여 독일어의 문법상 규정을 위반하였다. 그래서 그의 연설은 만장의 폭소를 자아냈다. 리흐놉스키의 이 연설에 관하여 더 상세한것은 맑스와 엥겔스가 1848년 8월 7일~9월 6일에 쓴 《뽈스까의 문제에 관한 프랑크푸르트의 변론》중의 제7절을 보라. —805페지

414 《**인간의 동정감**》은 쉴레르의 서사시 《인질》에서 인용한것이다. —807페지

415 괴테의 《파우스트》, 제1부, 제2막 《성문밖에서》에 나오는 말을 바꾸어 말한것이다. —807페지

416 기독교의 전설에 의하면 성서 《구약전서》는 모세와 기타 예언자들이 집필하였다고 한다. 맑스는 《**모세이며 예언자들**》이라는 표현을 여기서는 이것이 중요한것이다! 이것이 첫째가는 계률이다! 라는 의미로 쓰고있다. —809, 1034페지

417 J. B. 쎄는 《**부자들의 저축은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으로 하여 이루어지는것이다.**》라는 말을 J. G. C. A. H. 꼴랭의 《정치경제학》, 1857년 빠리판, 제3권, 341페지에서 인용한것이다. —809페지

418 **7월 혁명**이란 1830년 7월에 일어난 프랑스자산계급혁명을 가리킨다. 1814년에 나뽈레옹 제1제국이 무너진후 대토지귀족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부르봉왕조가 복벽하였다. 부르봉왕조는 봉건전제통치를 극력 회복하고 자본주의발전을 압제하고 언론출판자유를 제한하였다. 이것은 자산계급과 귀족지주간의 모순을 격화시켰고 인민들의 반항을 불러일으켰다. 1830년 7월 27~29일의 혁명은 부르봉왕조를 뒤엎었다. 금융자산계급이 혁명의 과실을 절취하였는바, 오를레앙의 공작 루이 필리프를 위수로 한, 금융자산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는 7월 왕조가 건립되였다. —811페지

419 1831년에 일어난 리옹 방직로동자들의 폭동과 영국 농업로동자

들의 여러차례의 폭동을 가리킨다. —811페지

420 **한정은 부정이다**(determinatio est negatio)라는 말은 B. 스삐노자의 명제이다. 그는 1674년 6월 2일 xx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말을 《제한은 부정이다》라는 의미로 썼다(스삐노자 《서한집》 중의 편지 제50을 보라). 맑스는 여기에서 스삐노자의 이 명제를 헤겔의 유명한 해석에서 인용하였다. 《철학전서요강》,제1부 《론리학》, 1840년 베를린판, 180페지(《헤겔전집》 제6권); 《론리학》, 제1권, 《객관론리》, 제1부, 《존재론》, 1833년 베를린판, 117페지(《헤겔전집》 제3권); 《철학사강연록》, 제1권, 1833년 베를린판, 294페지(《헤겔전집》 제13권)를 보라. —811페지

421 여기서 인용하고있는것은 A. 포터의 저서 《정치경제학. 그 대상, 용도, 원리. 미국인의 생활상태에 의하여 고찰》 1841년 뉴욕판이다. 서론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이 저서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1833년에 영국에서 발간된 G. 스크루프의 저서 《정치경제학 원리》의 첫 10개 장을 수정한것이다. —812페지

422 1862년 9월 22일 아메리카합중국 대통령 링컨은 《노예해방선언》을 반포하였고 그 선언은 1863년 7월 1일부터 발효하였다. 1865년 1월 헌법개정안 제13조에 의해 노예제가 페지되였다. —813페지

423 경제공황으로 인하여 벨지끄 샤를레르와지역의 공장주들은 1867년초에 야금 로동자와 부속광정의 광산로동자들의 로임을 10% 인하하였다. 로임을 인하한 첫날에 빵과 밀가루의 가격이 또 올랐다. 이 지역의 야금공업 로동자들은 로임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면서 1867년 2월 1~3일에 파업을 단행하였다. 2월 2~8일 많은 광산 로동자들이 밀가루값을 인하할것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가하였다. 파업로동자들은 2월 2일에 마르시엔느의 정미공장을 점령하였다. 시장의 명령에 의해 파업로동자들에게 총을 발사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고 그중 3명의 로동자는 치명상을 입었다. —816페지

424 《영국로동계급의 형편》 중의 서론부분을 보라. —824페지

425 《**하루도 붓 안드는 날이 없다**》(nulla dies sine linea)는 말은 저명한 고대 희랍화가 아펠레스가 한 말이라 한다. 그는 조금씩이라도 매일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829페지

426 맑스의 《자본론. 정치경제학비판》, 제2권, 제2책, 《자본의 류통과정》, 프리드리히 엥겔스 편집, 1885년 함부르그판, 130~140페지를 보라. —830페지

427 **특유재산**(Peculium)이란 고대로마에서 가장이 자유민이나 노예에게 그들이 경영하거나 관리하도록 넘겨줄수 있었던 일부분의 재산을 말한다. 특유재산의 점유는 사실상 주인에 대한 노예의 예속을 폐지하지 않았으며 법률상으로 특유재산은 여전히 주인의 소유였다. 례컨대 특유재산의 소유자인 노예는 제삼자와 거래하는것이 허락되여있지만 그것은 단지 노예신분에서 벗어나는데 충분한 금액을 획득하지 못하게 하는 범위내에서만 허락되였던것이다. 특별히 유리한 거래나 특유재산을 현저히 증대시키는 기타 방법은 보통 가장자신이 도맡아하였다. —831, 839페지

428 S. N. H. 랭개의 《**법의 정신이란 소유권이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그의 저서 《민법리론, 또는 사회의 기본원리》, 1767년 런던판, 제1권, 236페지를 보라. —836, 992페지

429 《구약전서 · 창세기》 제1장, 제28절. —837페지

430 아마 V. R. 미라보의 저서 《인민의 벗》, 1755년 빠리판을 가리킬것이다. 이 저서에서 미라보는 각국의 부에 있어서는 반드시 가급적으로 많은 인구가 주요원천이 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F. 께내는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1757년 7월 27일 께내와 미라보사이에 한차례의 토론이 있은후 미라보는 중농주의학설을 신봉하게 되였다. 미라보는 께내의 제자가 되였다. —837페지

431 아마 Th. 챠머즈의 저서 《사회의 도덕적상태 및 도덕적전망과 관련된 정치경제학에 대하여》, 1832년 글라스고 제2판 특히는 제11장 344페지와 346페지를 가리킬것이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IX 417페지를 보라. 《목사들이 주의 포도원에서 축복된 로동을 하고있다.》는 말은 《신약전서 · 마태복음》 제20장, 제1절을 보라. —838페지

432 로임률로 인한 폭력적충돌에 관한 A.·스미스의 견해에 대해서는 그의 저서 《제 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 1776년 런던판, 제8장 《로임》 특히 81~83페지를 보라. —840페지

433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 제1분책, 제2장 c절 《류통수단과 화폐에 관한 학설》중의 마지막 몇페지(《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574페지 및 이하 페지)를 보라. —842페지

434 A. 스미스의 저서 《제 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 1814년 에딘버러판, 제1권, 142페지. —843페지

435 엥겔스의 《국민경제학비판대강》의 결말부분을 보라. —860페지

436 영국은 1849~1859년 기간에 몇차례의 전쟁 즉 크림전쟁(1853~1856), 중국침략전쟁(1856~1858년과 1859~1860년), 페르샤침략전쟁(1856~1857)에 참가하였다. 뿐만아니라 영국은 1849년에 인도를 정복하였으며 1857~1859년에는 군대를 출동하여 인도의 민족해방봉기를 진압하였다. —864페지

437 A. 스미스 《제 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 제1권, 제8장, 웨이크필드 편찬, 1835년 런던판, 제1책 195페지. —872페지

438 J. 스튜어트 《정치경제학원리연구》, 1770년 더블린판, 제1권 39, 40페지. —877페지

439 **자유무역리론**은 자산계급 국민경제학설의 일부분이다. 특히 18~19세기 중엽에 영국의 자산계급 사상가들이 이 리론을 크게 고취하였다. 이 리론의 저명한 대표자는 바로 애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이다. 이런 학설은 자유무역에 대한 요구를 리론적으로 론증하였다. 그들은 관세나 수출입을 금지하는 등 제한의 방법으로 자유무역을 저해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1846년에 영국은 곡물법(주해 23을 보라)을 폐지함으로써 자유무역을 크게 저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였다. 맑스는 자유무역의 실현을 종교에서의 천년왕국(주해 230을 보라)의 실현에 비교하였다. —878페지

440 이 인용문과 관련해서는 한차례의 론전이 있었다. 엥겔스의 제4판 서문과 맑스가 1872년에 쓴 《브렌타노에게 주는 답변》, 《브렌타노에게 주는 두번째 답변》이 이 점을 말해준다. 뒤의

두편의 글은 맑스가 브렌타노가 《조화. 로동자문제잡지》에 실은 두편의 글 《칼 맑스는 어떻게 인용하는가》와 《칼 맑스는 어떻게 변명하는가》에 대한 답변이다. 엥겔스의 글 《브렌타노가 맑스를 공격하다》와 맑스가 1872년 5월 23일에 F. A. 조르게에게 보낸 편지에는 모두 이 론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맑스는 《국제로동자협회 창립선언》에서도 이 인용문을 인용하였다. —883페지

441 N. 발로 《풍자시집》, 제8수. —884페지

442 엥겔스의 《영국로동계급의 형편》을 가리킨다. —885페지

443 A. 스미스 《제 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 1814년 에딘버러판, 제1권, 6페지. —886페지

444 잉글랜드의 농업로동자들의 영양상태에 대해서는 맑스의 《국제로동자협회 창립선언》을 보라. —887페지

445 **포토시광산**은 볼리비아 남부의 자원이 풍부한 은광지구에 위치해 있는데 1545년에 발견되여 17세기에 와서는 가장 중요한 은광중심이 되였다. 이 광산에서 생산되는 은은 당시 세계 은총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890페지

446 맑스는 J. E. Th. 로저스의 저서 《영국의 농업과 가격의 력사》에 많은 자료들이 있다고 인정하고 1866년 12월 17일과 1867년 1월 19일 엥겔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책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리고 《자본론》에서 이 자료를 인용할 자리를 남겨두겠다고 말하였다. —910페지

447 안토니 애슐리 쿠퍼(샤프츠버리백작)는 1844년부터 1846년초에 하루작업시간을 10시간으로 단축할 법률초안을 여러번 하원에 제출하였다. 그 이전인 1840년에는 애슐리의 제안에 근거하여 황실위원회를 설립하고 1833년 공장법을 실시하지 않고있는 공업부문의 로동자들의 형편을 조사하였다. 1842년 그는 광산에서 녀성과 13세이하의 아동들의 로동을 금지시킬 법안을 제출하였다. 1845년에 그는 또 날염공장에서 아동공의 고용을 제한할 법안을 제출하였다. —913페지

448 **저교회파**란 영국국교회의 한 류파이다. 19세기에 고교회파(주해

9를 참조하라.)가 생긴후 교회의 권위와 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것을 반대하고 천주교의 옛 제도를 회복할것을 주장하는 류파를 저교회파라고 불렀다. 자산계급과 하층승려들이 주로 이 류파에 속해있었다. 저교회파는 의식을 간소화할것을 주장하고 자산계급-기독교적 도덕 및 자선사업을 설교하였다. 샤프츠버리백작(일명 애슐리경)은 이런 활동으로 하여 저교회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있었다. 그러므로 맑스는 그를 풍자하여 이 교회의 법왕이라고 불렀다. -914페지

449 **자유주의파**란 경제자유주의, 생산과 무역의 무제한자유를 옹호하는 경제학자들에 대한 칭호이다. 그들은 상승시기의, 이미 부분적으로 집권한 자산계급의 리익을 표현하였다. 그들은 자본주의 제도가 교란없이 운행될수 있도록 국가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보장하여줄것을 기대하였다. 자산계급 자유주의의 《자유방임》(laissez faire, laissez aller)의 구호는 무역의 자유를 주장하고 경제범위내의 일체 사항에 대한 국가의 그 어떤 간섭도 반대하는 그들의 견해를 표현하였다. 자유주의파의 견해 즉 자유무역리론(주해 439를 보라)은 중농학파의 저서와 A. 스미스, D. 라카도의 저서에 원천을 두고있다. -916페지

450 **《과거의 좋은 시절의 찬미자》**에 대해서는 호라찌우스 《시문학》, 제173절을 보라. -916페지

451 맑스는 《국제로동자협회 창립선언》에서도 이 자료들을 인용하였다. -917페지

452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11권, 228~235페지를 보라. -935페지

453 S. 푸리에가 말하는 《공개적성교》에 대해서는 그의 저서 《경제적 및 협동체적 신세계》의 제5편 제36장 보충과 제6편 결론을 보라. -939페지

454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하고 죄악적인 도시이다. 《구약전서. 창세기》 제18장 제19절을 보라. -939페지

455 맑스가 남긴 원고중 4페지는 아일랜드문제에 대한 제강이다. 이것은 그가 1867년 11월 26일의 국제로동자협회 총위원회회의에

서 연설하기 위해 준비한것인데 그는 그 회의에서 연설하지 않았다. 이 제강에는 이 절의 마지막 몇페지에 나오는 류사한 사실이 포함되여있다. 맑스는 1867년 12월 16일 런던독일로동자협회에서 한 보고의 제강(도합 10페지)에서 같은 문제를 론술하였다. —941페지

456 **《그와 같은 큰 나으리가 얼마나 인간다운가!》**라는 말은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천당서곡》)에 등장하는 메피스토펠레스의 말을 바꾸어 말한것이다. —957페지

457 **《식욕이 밥상을 받으면 더 나는 법이다.》**(L´appetit vient en mangeant)는 말은 F. 라블레의 풍자소설 《거인전》, 제1권 제5장에서 나오는 말이다. —959페지

458 여기서 말하는 《자본론》, 제3책은 《1863～1865년 경제학원고》 제3책(이 책 13페지를 보라)을 가리킨다. 그러나 《1863～1865년 경제학원고》에나 엥겔스가 편찬한 《자본론》, 제3권에는 이에 관한 론술이 없다. —959페지

459 **피니안회원**이란 아일랜드소자산계급 혁명가들이다. 최초의 피니안조직은 1857년에 아일랜드와 미국에서 창립되였다. 이 조직은 미국내의 아일랜드출신 이주민들을 단합시켰다. 피니안회원들은 영국의 식민통치를 뒤엎고 민주주의공화국을 수립하며 소작인들을 그들이 경작하는 토지의 소유자로 전화시킬것 등등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정치강령을 무장봉기에 의하여 실현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음모활동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60년대말에 피니안회원들은 대규모적인 탄압을 당하였다. 70년대에 이 운동은 실패하였다. —960페지

460 **《가혹한 운명이 로마인을 괴롭힌다, 동포살육의 죄행이.》**(Acerba fata Romanos agunt scelusque fraternae necis)는 호라찌우스 《서정시집》 제7수에서 인용한것이다. —960페지

461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훔쳐먹었다는 전설에 대해서는 《구약전서·창세기》 제3장을 보라. —961페지

462 맑스는 《자본론》 제1권의 프랑스문판에서 이 자리에 주해를 달고 괴테의 《경구와 같은 문답식의 교의》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한단락의 말을 인용하였다. 《소학교선생님: 얘, 너 그 선물들이 어디서 생긴건지 아냐? 어린이: 알구말구요. 그저 생길순 없는거구, 아버지가 준거예요. 소학교선생님: 아버진 어디서 가져왔다더냐? 어린이: 할아버지가 주었겠죠. 소학교선생님: 하긴 그렇겠지, 그런데 할아버진 어디서 가져왔다더냐? 어린이: 남의것을 빼앗았대요.》 —962페지

463 15세기말이래의 **세계시장의 혁명**이란 지리적인 대발견으로 형성된 경제적결과를 가리킨다. 인도로 통하는 해로와 서인도군도와 아메리카대륙을 발견함으로써 상로에는 변화가 일어났다. 즉 이딸리아북부의 무역도시인 제노아, 베니스 등은 통과무역에서 지배적지위를 상실하게 된 반면에 뽀르뚜갈, 화란, 에스빠냐와 영국은 대서양연안에 위치해있었기때문에 득을 얻어 세계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965페지

464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에 대한 서부의 단마르크인과 노르웨이인의 략탈을 가리킨다. 9세기초에 단마르크인들은 잉글랜드를 침범하기 시작하였으며 초기에 략탈하던데로부터 후에 와서는 잉글랜드동북지구에 이민구역을 내왔다. —967페지

465 J. 스튜어트의 도처에 소용도 없이 저택과 성곽에 가득차있던 봉건적가신단이라는 말은 그의 저서 《정치경제학 원리연구》, 1770년 더블린판, 제1권, 52페지를 보라. —967페지

466 영국 봉건주의사회가 위기에 처하면서 귀족들간에 왕위와 국가직위 계승문제로 쟁탈이 일어났다. 이 쟁탈은 왕위쟁탈을 위한 두 봉건가문의 장미전쟁(1455~1485)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랭카스터가문은 붉은 장미를 문장(紋章)으로 하고 요크가문은 흰 장미를 문장으로 하였다. 랭카스터가문은 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남방의 일부 대봉건주들과 기사계층, 시민계층을 대표하였고 요크가문은 북방 대귀족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 전쟁은 랭카스터가문의 헨리6세때에 시작되여 요크가문의 리처드3세가 전복되여서야 끝났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로한 봉건가문들이 거의 멸종되였으며 그 결과 영국에 새로운 튜더왕조가 세워지고 헨리7세가 왕위를 쟁탈하여 전제정체를 수립하였다. —968페지

467 《도처에 극빈민》(Pauper ubique jacet)이라는 말은 오비디우스의 저서 《파스티》, 제1권, 218시행의 한 구절이다. —972페지

468 표도르 이와노위치의 치하(당시 로씨야의 실제적인 통치자는 보리스 고두노브였다.)인 1597년에 발포된 도주한 농민들의 수색령을 두고 말하는것이 분명하다. 이 명령에 의하여 지주들의 가혹한 억압과 간책에 못이겨 도주한 농민들을 5년내에 수색하여 다시 그들의 이전주인에게 강제로 되돌려보내게 되였다. 이 명령은 계속 농노제도를 확대하고 농민들의 상대적인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었다. —974페지

469 《명예혁명》이란 영국의 1688년 정변을 가리킨다. 이 정변에 의하여 영국에서는 슈트어트왕조의 제임즈2세를 전복하고 화란공화국의 집권자 오렌지공 윌리엄3세를 영국의 국왕으로 추대하였으며 1689년부터 영국에서 토지소유자귀족과 대자산계급간의 타협에 기초한 립헌군주제를 확립하였다. 인민대중이 참가하지 않은 이번 정변을 자산계급사학가들이 《명예혁명》이라고 불렀다. —974페지

470 **공화혁명**이란 1642~1646년의 영국자산계급혁명을 가리키며 그 결과로 영국은 1649년에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975페지

471 1796년 런던에서 발간된 론평소책자 《고귀한 에드먼드 버크가 자신과 자신이 받는 년금에 대하여 베드페드공작과 로더데일백작이 현 의회회기초 상원에서 한 비난과 관련하여 고귀한 경에게 보낸 편지》를 가리킨다. —975페지

472 맑스가 1863년 영국박물관 도서관에서 쓴 8개의 단독 《보충노트》(beihefte)를 가리킨다. 이 노트는 자모 A, B, C, D, E, F, G, H로 표기하였는데 본문중의 글은 《보충노트B》에서 인용한 것이다. —977페지

473 **리찌니우스법**은 기원전 367년에 고대로마에서 채택된 법률이며 리찌니우스토지법이라고도 부른다. 이 법은 공유지를 개인리용에 넘겨주는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였으며 채무를 부분적으로 취소하였다. 대토지소유제와 귀족들의 특권을 반대한 이 법에는 평민들의 정치경제적지위가 어느 정도 강화된 사실이 반영되였다.

로마의 전통적인 설에 의하면 이 법은 호민관인 리찌니우스와 섹스티우스가 제정한것이라고 한다. —979페지

474 **스토아학파**는 기원전 4세기말 고대희랍에서 생긴 학파이다. 이 학파의 창시자인 제논이 늘 아테네시장의 화랑에서 자기의 사상을 피력하였다 하여 화랑학파(그리스문으로 화랑을 stoa라 한다)라고도 한다.

스토아학파철학은 론리학, 물리학, 륜리학으로 나뉘는데 륜리학이 중심이고 론리학과 물리학은 륜리학의 기초를 이루었다. 이 학파는 주로 운명에 복종할것을 선양하며 종교적색채가 짙은 범신론사상을 띠고있었는바, 유물론적경향도 가지고있고 관념론적사상도 가지고있었다. 말기의 스토아학파는 운명에 만족하고 복종할것을 고취하고 인간의 일생은 필연적으로 죄를 갖고있고 고통스러우므로 참고 욕망을 억제하여야 고통과 죄악에서 해탈해 정신적안녕과 행복을 얻을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말기의 스토아학파의 륜리사상은 기독교가 흥기할수 있는 사상적조건이 되였다. —980페지

475 스튜어트왕조의 지지자들이 이른바 《어린 왕위참망자》 찰즈 에드워드를 영국의 왕좌에 앉힐것을 요구하여 1745~1756년에 폭동을 일으킨것을 두고 말한다. 이 폭동은 동시에 지주의 착취와 대대적인 토지수탈을 반대해나선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인민대중들의 반항을 반영한것이였다. 잉글랜드의 정규군에 의하여 이 폭동이 진압된후 스코틀랜드고지의 씨족제도는 급격히 와해되기 시작하였고 토지로부터의 농민의 추방은 더욱더 심해졌다. —981페지

476 **탁스만**이란 씨족제도가 스코틀랜드에서 지배하고있던 때의 씨족의 수장인 레어드(《대인》)에 직속하는 작은 두목의 칭호이다. 레어드는 전체 씨족의 소유지인 토지를 탁스만들이 관리하도록 나누어주었다. 그들은 이 레어드에게 그의 권력을 인정하는 표식으로 많지 않은 공물을 바치였다. 한편 탁스만은 자기가 받은 토지를 자기 신하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씨족제도가 붕괴되자 레어드는 지주로 되였으며 탁스만은 본질상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로

되였다. 이와 함께 이전의 공납 대신 지대가 나타나게 되였다. 씨족제도 내부의 탁스만의 역할에 대해서는 맑스의 《선거. —금융상태의 악화. —싸덜런드공작부인과 노예제도》(《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11권, 제609~610페지)를 보라. —981페지

477 **게일인**은 스코틀랜드 북부와 서부의 산간지구에서 생활한 토착민이며 고대 켈트인의 후예이다. —982페지

478 맑스가 1853년 2월 9일 《뉴욕매일론단보》에 발표한 글 《선거. —금융상태의 악화. —싸덜런드공작부인과 노예제도》(《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11권, 제607~615페지를 보라)를 가리킨다. —983페지

479 농업인구의 생활형편이 부단히 악화되고있을 때 프랑스혁명(1789~1795년)의 영향을 받은 작센 선제후국의 농민들은 1790년 8월에 폭동을 일으켰다. 봉건주들은 추방되거나 도망을 갔다. 8월중순에 농민들은 큰 농업지역의 주인이 되였다. 도시인구의 지지와 령도가 결핍하였기때문에 1790년 9월에 폭동은 무력으로 진압되였다. —985페지

480 **즉결재판소**(Petty Sessions)는 작은 사건들을 간단한 소송절차로 처리하는 영국의 치안법원의 법정이다. —990페지

481 A. 스미스 《제 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 1814년 에딘버러판, 제1권 237페지. —992페지

482 영국 자유당을 가리킨다. 1832년 영국의회가 개혁된후 19세기 50년대말과 60년대 상반기에 영국에는 자유당과 보수당 2개 정당이 형성되였다. 자유당은 공상업자산계급을 대표하는 뉴휘그당인과 자유주의파(주해 449를 보라), 필분자들인 좌익 토리당인으로 구성되였다. 자유당은 창립된후 영국의 량당제에서 휘그당인의 위치를 대체하였다. —996페지

483 **《옴모》 단속법**은 이미 중세기에 영국에서 존재하였다. 이 단속법은 《지어는 옴모활동을 위한 구실이 합법적인 경우일지라도 여하튼 온갖 옴모활동》을 금지하였다. 결사금지법(주해 364를 보라)이 채택되기전이나 그것이 폐지된후이나 할것없이 로동자들의

조직이나 계급투쟁은 이 《음모》 단속법에 근거하여 진압되였다. —996페지

484 1793년 6월부터 1794년 6월까지의 프랑스의 쟈꼬벵독재정부를 두고 말한다. 이 정부는 혁명적소자산계급을 대표하였다. 이 정부의 지도자는 M. 로베스피에르와 A. L. 생쥬스트이다. —997페지

485 나폴레옹제국시기에 제정된 1810년 **형법전**(Code penal) 제414~416 조항에는 결사를 금지한다고 규정되여있다. 1864년 5월 25일의 한 법률은 파업금지의 규정을 폐지하였다. 1884년 3월 21일의 한 법률은 로동조합의 건립을 허용하였다. —997페지

486 A . 앤더슨은 그의 저서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상업의 기원의 년대기적서술》, 1764년 런던 제1판, 제1권, 22페지에서 15세기 경제의 주요특징을 론할 때 《신의 직접적간섭》에 대해 언급하였다. —1001페지

487 J . 스튜어트 《정치경제학원리연구》 1770년 더블린 제1판, 제1책, 제16장. —1001페지

488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 제1분책〉 제2장 초고단편》(《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판, 제31권, 제364페지)을 보라. —1006페지

489 하느님이 카인에게 아벨의 행처를 물었다는 전설에 대해서는 《구약전서 · 창세기》, 제4장, 제9절을 보라. —1006페지

490 인도로 가는 항로의 발견과 서인도군도와 아메리카대륙의 발견을 두고 말한다. —1007페지

491 **에스빠냐로부터의 니데를란드의 리탈**은 니데를란드자산계급혁명(1566~1609년)의 결과이다. 니데를란드의 혁명은 세계사에서 최초로 성공한 자산계급혁명이다. 16세기중엽에 니데를란드의 도시와 농촌에서 자본주의가 상당히 발전하였지만 종주국인 에스빠냐 전제주의와 그 지주로 되는 천주교회의 엄중한 저해를 받아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이 날로 격화되여갔다. 1566년에 직접 천주교회를 반대하는 성상파괴운동이 일어났다. 1567년 봄에 이 운동은 진압당하였다. 1572년 북방의 각 주에서 대규모의 폭동을 일으키고 오렌지공 윌리엄을 북방 각 주의 집정으로 추대하였다.

남방의 혁명정세도 날로 고조되여갔고 1576년에 브뤼셀폭동이 일어나 니데를란드에서의 에스빠냐의 통치기구를 뒤엎었다. 서남 몇개 주의 귀족들은 혁명이 부단히 심화되자 두려움을 느껴 1579년 1월 6일에 아라스동맹을 결성하고 에스빠냐당국과 타협하였다. 동년 1월 23일에 신교를 신봉하는 북방의 7개 주가 위트레흐트동맹을 결성하여 주련방공화국이 건립될수 있는 기초를 닦아놓았다. 1581년에 북방의 각 주는 3급회의를 결성하고 에스빠냐로부터 리탈하여 독립한다고 선포하고 자산계급의 주련방공화국을 정식으로 건립하였다. 화란주의 경제와 정치지위가 가장 중요하였기때문에 화란공화국이라고도 불렀다.

1609년에 에스빠냐는 하는수 없이 화란과 12년 정전협정을 체결하여 사실상 화란의 독립을 인정하였다. —1008페지

492 **청교도**란 영국 기독교(신교)의 한 파벌인 칼뱅교의 신도들이다. 영국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생긴 영국국교회는 더는 로마교황에 종속되지 않음을 선포하고 영국국왕을 교회의 교주로 삼았지만 천주교의 주교제나 중요 교의, 의식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교회는 봉건왕권의 중요한 도구로 되였다. 16세기 후반기에 와서 급진적인 칼뱅교가 영국에서 전파됨에 따라 청교도들이 국교회내부의 한 분파로 되였으며 그들은 J. 칼뱅의 신에 의한 인간운명의 예정설을 받들어 천주교의 위계제도와 번다한 절차를 반대하였다. 그들은 민주공화의 원칙으로 교회조직을 내오고 경영을 하며 변돈을 놓아 돈을 버는것을 허용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런 요구는 자산계급의 요구에 더욱 부합되였다. —1011페지

493 **필리그림 파더즈**(Pilgrim fathers)란 16세기말과 17세기초에 잉글랜드에서 박해와 탄압을 받다 북아메리카에 이민을 간 잉글랜드 청교도들을 두고 말한다. 이로부터 영국의 북아메리카에로의 대규모적인 이민이 시작되였고 이런 이민은 당시 뉴스코틀랜드 각 주의 자산계급이 발전할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주었다. —1011페지

494 G. 컬리허 《현대 주요상업국가의 상업, 공업, 농업에 대한 력사적서술》, 1830년 에나판, 제1권, 371페지. —1012페지

495 맑스는 여기서 D. 디드로의 《라모의 조카》에서 나오는 다음의

말을 바꾸어 말하고있는것 같다. 《한 낯설은 신이 그 지방의 우상이 모셔져있는 제단에 공손히 앉아있다가 차차 지위가 튼튼해지자 어느 하루 팔꿈치로 옆에 있는 동료를 슬쩍 밀쳤다. 그러자 쿵하는 소리와 함께 그 우상이 쓰러졌다.》 —1012페지

496 맑스가 여기서 인용한 얀 데 위트의 잠언이란 《화란공화국과 서부플리슬란드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원리와 잠언》을 두고 말한다. 이 책은 1662년에 라이덴에서 처음으로 발간되였다. 당시 사람들은 이 저서의 저자를 위트로 인정하였다. 현재 판명된바에 의하면 이 저서의 저자는 화란의 경제학자이며 기업가인 피테르 폰 데르호레(또는 피테르 데 라 쿠르)이며 얀 데 위트는 이 저서의 두개장을 썼을뿐이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1861~1863년 친필원고)》 노트 XXIII 1438페지 b를 보라. —1016페지

497 J. B. 꼴베르가 봉건군주제도를 위해 확립한 중상주의 경제정책체계를 두고말한다. 꼴베르는 국가와 봉건지배자들이 높은 리익을 얻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봉건착취를 받지 않는 공상업자들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왕실도 이런 세금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공장제수공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일련의 법령을 반포하였다. 이는 객관적으로 자본주의요소의 성숙과정을 자극하였다. —1017페지

498 **금덩이조사위원회**(Bullionkomitee)는 영국 하원이 1810년에 설립한 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은행권의 평가절하와 귀금속의 가격상승원인을 검토하고 류통수단과 영국과 기타 국가의 환평가 상황을 제시하는 임무를 맡았다. —1019페지

499 **고등법원 법정**은 영국의 고등법원을 가리키며 1873년 개혁후 최고법원의 분원으로 되였다. 개혁이전에는 줄곧 최고형사법원으로서 모든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최고상소법원이였고 하급 사법기구의 판결을 재심하는 권리를 갖고있었다. —1019페지

500 **아시엔토조약**이란 왕위쟁탈로 인하여 일어난 에스빠냐전쟁(1701—1714년)중 영국과 에스빠냐가 1713년 3월 26일에 체결한 조약이다. 이 조약에 의하면 영국인은 에스빠냐령 아메리카에서 노예를 판매할수 있었다. 이 조약은 1713년 7월 13일에 체결한 유

트레히트평화조약 제12관에서 재확인되였다. —1019페지

501 《이렇게도 힘들다》(Tantae molis erat)— 베르길리우스의 《아에네아스의 노래》의 제1부, 33시행의 한구절. —1021페지

502 《일반적인 법칙을 명령》하려는것이란 구절에 대해서는 C. 페피르 《사회경제 및 정치경제의 새 리론, 또는 사회조직의 연구》,1842년 빠리판, 435페지를 보라. —1022페지

503 헤이마케트는 런던 서구의 번화한 거리이다. —1039페지

本书根据人民出版社2004年1月第1版北京第1次印刷版本翻译出版。

이 책은 인민출판사 2004년 1월 제1판 북경 제1차인쇄본에 의하여 번역출판한다.

맑 스

자 본 론

제 1 권

★

중국민족어문번역센터 번역

민족출판사 출판발행

(북경시 화평리 북가 14호　우편번호 100013)

http://www.mzcbs.com

중국민족어문번역센터 컴퓨터조판

북경시예휘인쇄유한회사 인쇄　각지 신화서점 판매

조문실 전화: 58130528　발행부 전화: 64211734

2007년 7월 제1판　2007년 7월 북경 제1차 인쇄

판본기록: 850×1168mm 1/32　전지: 35.625

값: 66.00원

图书在版编目(CIP)数据

资本论. 第1卷：朝鲜文 / 中央马列编译局编；中国民族语文翻译中心译. —北京：民族出版社，2007. 7
ISBN 978-7-105-08277-3

Ⅰ.资…Ⅱ.①中…②中… Ⅲ.马克思著作-马克思主义政治经济学-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Ⅳ. A123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7)第064558号

ISBN 978-7-105-08275-9



中国民族语文翻译中心译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http://www.mzcbs.com
中国民族语文翻译中心微机照排
北京市艺辉印刷有限公司 各地新华书店经销
朝文室电话：58130528 发行部电话：64211734
2007年7月第1版 2007年7月北京第1次印刷
开本：850×1168毫米 1/32 印张：35.625
ISBN 978-7-105-08277-3/A · 93
民文(朝15) 定价：66.00元